맑 스

자 본 론

제 3 권

전 세계 무산자는 련합하라!

맑 스

자 본 론

제 3 권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중역

민 족 출 판 사

범 례

1. 본문과 부록중의 문헌은 집필 또는 발표한 시간의 순서대로 배렬했다. 개별적인 경우에 한부의 저작 또는 문헌 시리즈의 완전성과 유기적인 련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렬순서를 융통성있게 처리했다.

2. 차례와 본문중에 별표 * 가 있는 표제들은 모두 편자가 단것이다.

3. 인용문에 있는 거듭서명표 〔 〕내의 문자와 문장부호는 맑스 또는 엥겔스가 단것이고 인용문중에 찍힌 방점·은 맑스 또는 엥겔스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단것이다.

4. 차례와 본문중에 있는 꺾쇠괄호 [ ]내의 문자는 편자가 첨가한것이다.

5. 편집자가 단것이외의 각주는 맑스 또는 엥겔스가 단것이다.

6. 《자본론》 제1권부터 제3권까지의 본문중 편집자의 각주에 표시한 페지수와 주해의 본문내 출처를 표시한 페지수는 모두 중문판 페지수를 가리킨다.

차 례

F. 엥겔스 서문 ····· 3~34

제 3 부
자본주의적생산의 총과정(상)

제 1 편
잉여가치의 리윤으로의 전화 및 잉여가치률의 리윤률로의 전화

제1장 비용가격과 리윤 ····· 37~60
제2장 리윤률 ····· 61~71
제3장 리윤률과 잉여가치률간의 관계 ····· 72~102
제4장 회전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 ····· 103~112
제5장 불변자본의 사용상의 절약 ····· 113~150
Ⅰ. 개론 ····· 113
Ⅱ. 로동자를 회생으로 하는 로동조건들의 절약 ····· 128
Ⅲ. 동력생산, 동력전달 및 건물에 있어서의 절약 ····· 140
Ⅳ. 생산의 배설물의 리용 ····· 145
Ⅴ. 발명에 의한 절약 ····· 149
제6장 가격변동의 영향 ····· 151~196

Ⅰ. 원료의 가격변동, 그것이 리윤률에 미치는 직접적영향 …… 151
Ⅱ. 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 자본의 유리와 구속 …… 158
Ⅲ. 일반적례증: 1861~1865년의 면화공황 …… 178
제7장 보유 …… 197~202

제 2 편
리윤의 평균리윤으로의 전화

제8장 각이한 생산부문들에서의 각이한 자본구성과
이로부터 생기는 리윤률의 차이 …… 203~220
제9장 일반적리윤률(평균리윤률)의 형성과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 …… 221~246
제10장 경쟁에 의한 일반적리윤률의 평균화. 시장
가격과 시장가치. 초과리윤 …… 247~285
제11장 로임의 일반적변동이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286~292
제12장 보유 …… 293~301
Ⅰ. 생산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 293
Ⅱ. 평균구성의 상품의 생산가격 …… 295
Ⅲ. 자본가의 보상리유 …… 297

제 3 편
리윤률의 경향적저하의 법칙

제13장 법칙 그 자체 …… 303~332
제14장 반대로 작용하는 제 원인 …… 333~346
Ⅰ. 로동의 착취도의 증대 …… 333

Ⅱ. 로동력의 가치이하로의 로임의 인하 ····· 338
Ⅲ. 불변자본의 제 요소의 저렴화 ····· 338
Ⅳ. 상대적과잉인구 ····· 339
Ⅴ. 대외무역 ····· 340
Ⅵ. 주식자본의 증가 ····· 345
제15장 법칙의 내적모순의 전개 ····· 347～384
Ⅰ. 개론 ····· 347
Ⅱ. 생산의 확대와 가치증식간의 충돌 ····· 355
Ⅲ. 인구과잉에 수반하는 자본과잉 ····· 360
Ⅳ. 보유 ····· 374

제 4 편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의 상품거래자본 및 화폐거래자본으로의 전화(상인자본)

제16장 상품거래자본 ····· 385～404
제17장 상업리윤 ····· 405～435
제18장 상인자본의 회전. 가격 ····· 436～453
제19장 화폐거래자본 ····· 454～464
제20장 상인자본에 관한 력사적고찰 ····· 465～484

제 5 편
리자 및 기업자리득으로의 리윤의 분렬. 리자부자본

제21장 리자부자본 ····· 485～515

제22장 리윤의 분할. 리자률. 《자연》 리자률 ····· 516～533
제23장 리자와 기업자리득 ····· 534～564
제24장 리자부자본의 형태에 있어서의
자본관계의 표면화 ····· 565～577
제25장 신용과 의제자본 ····· 578～601
제26장 화폐자본의 축적, 그것이 리자률에
미치는 영향 ····· 602～634
제27장 자본주의적생산에서의 신용의 역할 ····· 635～644
제28장 ,류통수단과 자본. 투크와 풀라톤의
견해 ····· 645～672

자본주의적생산의 총과정(하)

제 5 편
리자 및 기업자리득으로의
리윤의 분렬. 리자부자본(계속)

제29장 은행자본의 구성부분 ····· 675～692
제30장 화폐자본과 현실적자본. Ⅰ ····· 693～719
{상업신용. 산업순환 각 단계에 있어서의 화폐자본과 현실적자본}
제31장 화폐자본과 현실적자본. Ⅱ(계속) ····· 720～734
1. 대부자본에로의 화폐의 전화 ····· 720
{대부자본의 량은 현실적화폐의 량과는 독립하여있다}
2. 대부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에로의 자본 또는 수입의 전화
····· 730
제32장 화폐자본과 현실적자본. Ⅲ(끝) ····· 735～758

{현실적자본의 유리에 기인한 대부자본의 구성. 개론. 결과}
제33장 신용제도하에서의 류통수단 ····· 759～797
제34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영국의 은행립법 ····· 798～824
제35장 귀금속과 환자시세 ····· 825～865
Ⅰ. 금저장의 운동 ····· 825
Ⅱ. 환자시세 ····· 838
제36장 자본주의이전 ····· 866～894

제 6 편
초과리윤의 지대로의 전화

제37장 서론 ····· 895～931
제38장 차액지대. 개론 ····· 932～944
제39장 차액지대의 제1형태(차액지대Ⅰ) ····· 945～980
제40장 차액지대의 제2형태(차액지대Ⅱ) ····· 981～998
제41장 차액지대Ⅱ—제1의 경우: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 999～1010
제42장 차액지대—제2의 경우: 생산가격이
저하되는 경우 ····· 1011～1036
Ⅰ.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 1011
Ⅱ. 추가적자본의 생산성의 률이 저하되는 경우 ····· 1024
Ⅲ. 추가적자본의 생산성의 률이 상승하는 경우 ····· 1027
제43장 차액지대Ⅱ—제3의 경우: 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결론 ····· 1037～1077
제44장 차액지대는 가장 나쁜 경작지에서도
생긴다 ····· 1078～1092

제45장 절대지대 …… 1093～1129
제46장 건축지지대. 광산지대. 토지가격 …… 1130～1142
제47장 자본주의적지대의 발생 …… 1143～1189
Ⅰ. 서론 …… 1143
Ⅱ. 로동지대 …… 1154
Ⅲ. 생산물지대 …… 1161
Ⅳ. 화폐지대 …… 1164
Ⅴ. 분익농제와 농민적분할지소유 …… 1173

제 7 편
제 수입과 그 원천

제48장 삼위일체적공식 …… 1191～1217
Ⅰ …… 1191
Ⅱ …… 1194
Ⅲ …… 1196
제49장 생산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 1218～1245
제50장 경쟁의 외관 …… 1246～1281
제51장 분배관계와 생산관계 …… 1282～1291
제52장 계급 …… 1292～1293
에프. 엥겔스 《자본론》 제3부에 대한 보유 …… 1295～1329
Ⅰ. 가치법칙과 리윤률 …… 1298
Ⅱ. 거래소 …… 1326

주해 …… 1333～1391

사 진

《자본론》 제3권 독일문 제1판 속표지 ····· 5~6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원고의 첫페지 ····· 39~40
비서가 베낀 《자본론》 제3권의 첫페지
웃쪽의것은 엥겔스의 보유와 교열 필적 ····· 45~46
엥겔스의 《가치법칙과 리윤률》 원고의 첫페지 ···· 1301~1302

칼 맑스

자 본 론

정 치 경 제 학 비 판

제 3 권

제3부: 자본주의적생산의 총과정

엥겔스 편집

서 문

드디여 맑스의 주요로작의 이 제3부, 리론적부분의 종결을 이루는것을 간행할수 있게 되였다[1]. 1885년에 제2부를 출판할 때 나는 제3부는 몇개 극히 중요한 편들은 물론 례외이겠지만 아마 기술상 곤난밖에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편들 즉 전권중 가장 중요한 편들이 이렇게 많은 곤난을 나에게 주리라고는 당시에 생각지도 못하였으며 또 이 제3부의 완성을 이렇게도 지연시킨 다른 여러가지 장애들에 대하여서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우선 첫째로 그리고 가장 나를 방해한것은 오래전부터의 시력쇠퇴인데, 이때문에 나는 집필로동시간을 다년래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왔으며 지금도 다만 례외적으로 인공광선하에서 펜을 들고있을따름이다. 게다가 또 밀어버릴수 없는 다른 일들이 있었다. 즉 맑스와 나의 구저작들의 신판과 번역, 따라서 수정, 서문, 증보 등등의 일들이였는데 이러한 일들은 새로운 연구 없이는 왕왕 불가능하였다. 그중에서도 제1부의 영문판[2]은 그 본문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있었으며 따라서 많은 시간을 나에게서 빼앗아갔다. 최근 10년간의 국제적사회주의문헌의 방대한 증가를 특히 맑스와 나의 구저작들의 번역본의 수효를 얼마간이라도 알아본 사람이라면 내

가 번역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언어, 따라서 그의 번역의 교열을 거절할수 없는 언어의 수가 극히 제한되여있는것을 내가 다행으로 여기는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해줄것이다. 그러나 문헌의 증가는 국제로동운동 자체가 그만큼 장성하였다는 하나의 징조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 국제로동운동의 장성은 나에게 새로운 의무들을 부과하였다. 우리가 사회적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자들과 로동자들의 국내운동을 중간에서 알선하는 일은 그 상당한 부분이 맑스와 나에게 부과되여있었다. 이 일은 전체 운동이 강대해짐에 따라 더 늘어갔다. 그런데 맑스가 서거하기전까지는 그가 이 일의 주요한 부담을 짊어지고있었는데 그가 서거한 후에는 부단히 증대되는 일이 나 한사람의 어깨우에 떨어졌다. 그러는 동안에 각국 로동자당들이 서로 직접 련락하는것이 통례로 되였으며 또 다행히도 날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의연히 나의 리론적사업을 위하여 그만하였으면 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 나의 협력을 빈번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나처럼 50년 이상이나 이 운동에서 활동하여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운동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거부할수 없는, 즉시에 수행하여야 할 의무인것이다. 16세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격동기에 있어서도 사회적리해관계의 령역에서는 순전한 리론가는 오직 반동측에만 있으며 또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제씨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론가인것이 아니라 다만 이 반동의 변호론자에 불과한것이다.

나는 런던에 거주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 정당간의 련락은 겨울에는 주로 서신으로 하고 여름에는 대부분 면담을 통하여 하게 되였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또 부단히 수가 늘어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Von

Karl Marx.

Dritter Band, erster Theil.

Buch III:
Der Gesammtprocess der kapitalistischen Produktion.
Kapitel I bis XXVIII.

Herausgegeben von Friedrich Engels.

Das Recht der Uebersetzung ist vorbehalten.

Hamburg
Verlag von Otto Meissner.
1894.

《자본론》 제3권 독일문 제1판 속표지

가고있는 나라들에서의 운동과정과, 그보다도 더 심하게 수가 늘어가고있는 기관지들을 살필 필요성으로 하여 나는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 일을 겨울사이에 특히 1년의 첫3개월간에 완성하는수밖에 없게 되였다. 사람이 70고개를 넘으면 뇌수의 마이네르트련상섬유의 작용이 어찌할수 없이 굼떠진다. 어려운 리론적사업에서의 중단을 극복하기는 이전처럼 쉽지 않고 또 빠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겨울의 사업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해 겨울에 그 대부분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은 특히 가장 곤난한 제5편에서 그러하였다.

이하의 서술에서 독자들이 알수 있겠지만 본권의 편집사업은 제2부의 편집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제3부를 위하여는 단 하나의 초고가, 그것도 극히 불충분한 초고가 있었을뿐이다. 대체로 각 편의 서두는 상당히 면밀하게 추고되여있었으며 문장도 대개 다듬어져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수록 원고의 정리는 더욱 개략적이고 불충분한것으로 되였으며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차적론점들에 관한 기론(岐论)이 더욱 많아지고 그 기론들의 종국적배치는 후일의 정리에 맡겨졌으며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씌여진 사상을 표현하는 문장은 더욱더 길고 복잡하여졌다. 많은 개소에서 필적과 서술은 과로로 하여 질병이 발작하였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였음을 너무나 똑똑히 보여주는데 이런 질병의 발작은 저자로 하여금 자립적인 로작을 최초에는 점점 더 어렵게 하고 나중에는 일시 아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1863년으로부터 1867년까지의 사이에 맑스는 《자본론》의 마지막 2부의 초고와 제1부의 인쇄회부원고를 완성하였을뿐만아니라 또한 국제로동자협회[3]의 창립 및 확대와 관

련된 대량의 사업도 수행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1864년과 1865년에는 그의 건강장해의 엄중한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 장해때문에 맑스는 제2부와 제3부의 최후의 정리를 자기손으로 완성할수 없었던것이다.

나의 일은 나 자신도 종종 애를 써야만 판독할수 있는 초고를 전부 새로 필사하여 읽기 쉬운 원고를 작성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는데 이것만 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편집을 시작할수 있었다. 나는 이 편집을 극히 필요한것에만 국한시키고 명료성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될수 있는대로 초고의 특징을 보존하였다. 개별적으로 반복된것들도 맑스가 보통 하고있듯이 대상을 매번 다른 측면으로부터 포착하거나 또는 적어도 다른 표현방식으로 재현하고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내가 변경하였거나 추가한것이 단순히 편집적인 성질의것이 아닌 곳 또는 맑스가 제공한 사실적재료를 가공하여 될수 있는대로 맑스의 정신을 보존한것이기는 하지만 나 자신이 결론을 지어야 할 곳에서는 그 개소 전체를 대괄호①에다 넣고 나의 성명의 첫글자를 달았다. 내가 단 주가운데는 괄호가 없는것도 여기저기 있다. 그러나 나의 성명의 첫글자가 달려있는것은 그 주 전체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이 있다.

초고에 있어서는 자명한 일이지만 원고에는 후에 가서 전개하기로 되여있는 론점들이 허다하게 지적되고있는데 이 약속이 어느 경우에나 다 리행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은 장래에 완성할것이라는 저자의 의도를 표시하는것이므

① 본권에서는 대괄호 { } 를 사용하였다.—편집자

로 그대로 두었다.

다음에는 개별적문제들로 넘어가자.

제1편을 위하여서는 주요원고는 다만 많이 줄이여야 사용할수 있는것이였다. 맨 처음에는 잉여가치률과 리윤률과의 관계의 모든 수학적계산(우리의 제3장을 이루는것)이 나오고 한편 우리의 제1장에서 전개된 대상은 후에 가서야 부대적으로 취급되고있다. 여기에서는 각각 2절판 8페지 분의, 두개의 수정하기 시작한 원고가 도움이 되였으나 이것들도 완전히 련관이 잡히게 작성된것은 아니였다. 지금의 제1장은 이것들로써 편찬되였다. 제2장은 주요원고에서 취하였다. 제3장을 위하여서는 일련의 미완성의 수학적계산이 있었으며 또한 70년대에 쓴것으로서 잉여가치률과 리윤률과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거의 완성된 한권의 노트도 있었다. 제1부의 영어번역의 대부분을 수행한 나의 벗 쌔뮤엘 무어는 나를 위하여 이 노트의 정리를 맡아주었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는 케임브리지대학출신의 오랜 수학자인 그가 훨씬 더 적임자였다. 그다음에 나는 그가 요약한것에 의하여 그리고 가끔 주요원고를 리용하면서 제3장을 완성하였다.—제4장은 표제만 있을뿐이였다. 그러나 이 장에서 취급되고있는 문제, 즉 리윤률에 미치는 회전의 영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것이기때문에 나 자신이 이것을 완성하였는데 그때문에 본문중의 이 장 전부를 괄호안에 넣었다. 이것을 완성하면서 알게 된것이지만 리윤률에 관한 제3장의 공식은 보편적으로 타당한것이되기 위하여서는 사실상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것이였다. 제5장 이하에서는 주요원고가 본편의 나머지부분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하기는 여기에서도 극히 많은 자리바꿈과 보충이 필요하게 되였지만.

그다음의 3개 편은 문장상의 교열을 제외한다면 거의 전적으로 원래의 원고에 의거할수 있었다. 대개 회전의 영향에 관련되여있는 몇개 개소는 내가 삽입한 제4장과 일치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개소들도 역시 괄호안에 넣고 나의 성명의 첫글자를 달았다.

주되는 곤난은 제5편에 있었는데 이 편도 제3부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대상을 취급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편을 한창 쓰고있을 때 맑스는 상술한 중병의 하나에 걸리였던것이다. 따라서 본편에 있어서는 완성된 초고가 없었고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할 륜곽적인 개요조차 없었으며 다만 왕왕 발취형식의 수기, 론평, 자료들의 무질서한 퇴적에 불과한, 정리하기 시작한것이 있을뿐이였다. 내가 처음에 시도한것은 제1편에서 어느정도 성공한바와 같이 불충분한것을 채우며 또 다만 암시에 그치는 단편들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본편을 완성하여 본편이 적어도 저자가 주려고 기도한 모든것을 근사하게라도 제공하려고 한것이였다. 나는 이것을 적어도 세번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말았으며 이때문에 랑비한 시간은 본권의 출판을 지연시킨 주요원인의 하나인것이다. 나는 결국 이 방법으로써는 안되겠다는것을 깨달았다. 이 방법대로 한다면 이 령역의 방대한 전체 문헌을 섭렵하지 않으면 안될것이고 그렇게 하여 결국 무엇인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맑스의 저작은 아닐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시도를 단념하고 될수 있는대로 현존 자료들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다만 아주 필요한 보충만을 가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1893년 봄에 본편을 위한 주요한 일을 마치였다.

개개의 장들에 대하여 말하면 제21~24장은 기본상 완성

되여있었다. 제25장 및 제26장에서는 인용자료를 선택하고 다른 개소에서 발견한 자료를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 제27장과 제29장은 거의 전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편집할수 있었으나 제28장은 반대로 이곳저곳에서 배렬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제30장으로부터 진짜 곤난이 시작되였다. 여기서부터는 다만 인용문으로써 이루어지고있는 자료를 적당하게 정리할뿐만아니라 또한 삽입문, 기론 등등에 의하여 부단히 중단되여 다른 개소에서 왕왕 완전히 부대적으로 계속되고있는 사고과정도 적당히 정리하는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제30장은 자리를 바꾸는것과 삭제하는것으로써 완성되였는데 이 삭제된것은 다른 개소에서 리용할수 있었다. 제31장은 다시 련계가 더 잘 잡히게 작성되여있었다. 그런데 원고에는 이어서 《혼란》이라고 표제한 긴 한편이 있는데 이것은 1848년과 1857년의 공황에 관한 의회보고로부터의 순전한 발취로써 이루어지고있으며 거기에는 특히 화폐 및 자본, 금의 류출, 과도한 투기 등등에 관한 23명의 실업가 및 경제학적저술가들의 진술이 수집되여있으며 이곳저곳에 짤막한 해학적인 단평이 가해져있다. 여기에는 화폐와 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당시 류행되고있던 거의 모든 견해가 질문자나 응답자에 의하여 대표되여있다. 그리고 화폐시장에서는 무엇이 화폐이며 무엇이 자본인가 하는데 대한, 여기에서 드러난 《혼란》을 맑스는 비판적으로 그리고 풍자적으로 취급하려고 하였다. 나는 여러가지로 시도한 끝에 이 장을 완성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 재료, 특히 맑스의 단평이 가해져있는 자료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개소에서 리용하였다.

그다음에는 내가 제32장에 수록한것이 상당히 잘 정리되

여 계속되고있으나 바로 그다음에는 본편에서 언급되고있는 온갖 대상에 관한 의회보고로부터의 재로운 한더미의 발취가 저자의 길거나 짧은 평언들과 뒤섞여 계속되고있다. 종말에 이르면서는 이러한 모든 발취와 평주는 점점 더 화폐금속과 환자시세의 운동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고있으며 또다시 각종 보유적인것들로써 끝을 맺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이전》(제36장)은 완성되여있었다.

《혼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하의 그리고 이미 이전 개소들에 수록되지 않은 한에서의 이 모든 자료로부터 나는 제33장 내지 제35장을 엮었다. 물론 련계를 맺기 위하여 나는 많은 글을 삽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삽입문이 단순히 형식적인 성질의것이 아닌 한 그것은 내가 쓴것이라고 밝히였다. 이와 같이 하여 드디여 나는 다소라도 본 문제와 관계가 있는 저자의 **모든** 론술을 본문중에 수록할수 있게 되였다. 발취중 다른 개소에서 나온것의 반복에 불과하거나 또는 원고에서 상세히 언급되여있지 않은 점들에 관계되는 얼마 안되는 부분이외에는 아무것도 빠뜨린것이 없다.

지대에 관한 편은 훨씬 완전히 씌여져있기는 하였으나 결코 잘 정리되여있지는 않았다는것은 맑스가 제43장(원고에서는 지대에 관한 편의 마지막부분)에서 전편의 계획을 간단히 개괄할 필요를 느끼고있는 사실에 의하여서도 알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괄하는것은 편집상 매우 필요한것이였다. 그것은 원고가 제37장으로부터 시작되여 다음은 제45장 내지 제47장이 계속되며 그다음에야 비로소 제38장 내지 제44장이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제일 힘이 든것은 차액지대 Ⅱ의 표였으며 그리고, 제43장에서는 거기에서 취급되여야 할, 이 종류의 지대에 관한 제3의 경우가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는 사

실의 발견이였다.

이 지대에 관한 편을 위하여 맑스는 70년대에 이미 아주 새로운 특수연구를 완성하고있었다. 그는 1861년의 《개혁》[4] 후 로씨야에서 불가피한것으로 된, 토지소유에 관한 통계기록과 기타 출판물들—로씨야의 친우가 매우 바람직한 완전한 것으로 그에게 제공한것—을 수년래 원어로 연구하여 발취하고있었고 본편을 새로 작성할 때에 그것들을 리용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로씨야에서는 토지소유의 형태도 농업생산자들의 착취의 형태도 다양하였으므로 지대에 관한 편에서는 제1부에서 산업적고용로동을 연구할 때 영국이 논것과 동일한 역할을 로씨야가 놀아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맑스는 이 계획을 실현할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제7편은 완전히 씌여지고있기는 하였으나 초고에 불과하였으며 인쇄에 회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끝이 없이 엉킨 문장들을 분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마지막장은 서두만 있을뿐이였다. 이 장에서는 수입의 3대형태—지대, 리윤 및 로임—에 대응하는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의 3대계급—토지소유자, 자본가 및 임금로동자—과 그들의 존재와 함께 필연적으로 주어진 계급투쟁이 자본주의시대의 사실상 현존하는 산물로서 서술되여야 할것이였다[5]. 이와 같은 결론적개괄을 맑스는 인쇄직전의 최후의 개정때까지 보류하는것이 보통이였다. 그것은 그때에 최신의 력사적사건들이 언제나 어김없이 그의 리론적전개에 대한 가장 현실성있는 례증을 제공하였기때문이다.

인용문과 례증은 제2부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제1부에서보다 훨씬 적다. 제1부로부터의 인용문에는 제2판 및 제3판의 페지수가 밝혀져있다. 원고중 이전의 경제학자들의 리론적서

술을 참조할것을 지적하고있는 곳에서는 대개 성명만 들고있고 인용개소 그 자체는 마지막으로 손을 댈 때에 적어넣기로 되여있었다. 나는 이것을 물론 그대로 두는수밖에 없었다. 의회보고중에서 리용되고있는것은 4개뿐이였으나 이것들은 상당히 풍부하게 리용되고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1) (하원)《위원회의 보고》 제8권, 《상업곤궁》 제2권 제1부, 1847~1848년. 증언기록.—《상업곤궁》 1847~1848년으로서 인용.

2) 1847년의 상업곤궁에 관한 상원비밀위원회 보고. 보고는 1848년에 인쇄. 증언은 1857년에 인쇄(1848년에 인쇄하여서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상업곤궁》, 1848~1857년으로서 인용.

3) 보고. 은행법, 1857년.—보고, 은행법, 1858년.—1844년 및 1845년의 은행법의 효과에 관한 하원위원회의 보고. 증언 첨부.—《은행법》(때로는 또 《은행위원회》) 1857년 또는 1858년[6]으로서 인용.

제4부—잉여가치학설사[7]—에는 될수만 있다면 곧 착수할 것이다.

《자본론》 제2부 서문에서 나는 당시 《로드베르투스가 맑스의 리론의 비밀의 원천이며 탁월한 선구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떠들어대던 제씨들[8]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나는 그들에게 《로드베르투스의 경제학이 무엇을 줄수 있는가》를 증명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 가치법칙에 저촉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도리여 그것에 기초하여 균등한 평균리윤률이 형성될수 있으며 또 형성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제씨들은 그당시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그러나 여하튼 대체로 과학적이 아닌—리유에 의하여 선량한 로드베르투스를 1등급의 경제학자라고 떠들어대였으나 그들은 누구도 례외없이 대답을 못하고있다. 그런데 도리여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손을 대는것을 수고할만한 일로 간주하였다.

W. 렉시스교수는 제2부에 대한 자기의 비판(《콘라드년지》 제11권 1885년 452~465페지)에서 비록 직접적인 해결을 주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취급하고있다[9].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각이한 종류의 상품들을 **따로따로** 고찰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의 가치는 그것들의 교환가치와 동등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교환가치는 그것들의 가격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것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이 모순 (리카도—맑스의 가치법칙과 균등한 평균리윤률간의 모순) 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 모순의 해결은 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개개의 상품종류에 대하여는 로동에 의한 가치측정을 포기하고 다만 **전체**로서의 상품생산만을, 그리고 총자본가계급과 총로동자계급사이로의 그 분배만을 안중에 두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생산물중에서 로동자계급은 일정한 부분만을 받는다…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다른 부분은 맑스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잉여생산물을 이루며 따라서 또…잉여가치를 이룬다. 그런데 자본가계급의 성원들은 이 총잉여가치를 자기들사이에서 분배한다. 이 분배는 그들이 사용하는 로동자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들 각자가 투하한 자본량에 비례하여 진행되며 이에 있어서는 토지도 또한 자본가치로서 계산에 들어간다.》 상품에 체현된 로동단위수에 의하여 규정되는 맑스의 관념적가치는 가격

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은 《현실적가격에 이르게 하는 추이의 출발점으로는 간주될수》 있다. 《이 현실적가격은 같은 크기의 자본은 같은 크기의 리윤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약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자본가들은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그 관념적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다른 자본가들은 그 관념적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을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에 있어서의 손실과 리득은 자본가계급의 내부에서 상쇄되므로 잉여가치의 총량은 모든 가격이 상품의 관념적가치에 비례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서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고있지 않으나 애매하고 천박하게나마 대체로 옳게 **제기되고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이 저자와 같이 《속류경제학자》라고 자랑스럽게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할수 있는 이상의것이며 후에 취급하게 될 다른 속류경제학자들의 업적과 비교하여본다면 참으로 놀랄만한것이다. 이 저자의 속류경제학은 확실히 특수한 종류의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리득은 물론 맑스의 방식으로 도출될**수 있으**나 그러나 이 견해를 **강요**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와는 반대이다. 속류경제학은 적어도 더 그럴듯한 자기의 설명방식을 가지고있다.

《자본주의적판매자들인 원료생산자, 공장주, 도매상인, 소매상인은 각각 구매한것보다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다시말하면 상품의 원가를 일정한 비률만큼 높임으로써 그들의 장사에서 리익을 얻는다. 다만 로동자만은 이와 같은 가치추가를 할수 없다. 그는 자본가에 비하여 불리한 립장에 있으므로 자기의 로동을 이 로동이 그 자신에게 들이게 하는 가격으로 즉 필요생계비로 판매하지 않을수 없다…그리하여 이 가격추가는 구매자인 임금로동자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고 총생산물가치의 일부분을 자본가계급의 수중으로 이전시킨다.》

여기서 자본리윤의 이와 같은 《속류경제학적》 설명은 실제상 맑스의 잉여가치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것, 렉시스의 견해에 의하면 로동자들은 맑스가 말하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불리한 립장》에 처해있다는것, 로동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가격이상으로 판매할수 있는데 로동자들은 그렇게 할수 없으므로 그들은 모두 기만당하고있다는것, 그리고 이 리론의 기초우에서는, 이곳 영국에서 제번즈—멩거의 사용가치설 및 한계효용설[10]의 기초우에 수립된것과 적어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속류사회주의가 수립될수 있다는것을 그리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알수 있을것이다. 아니 나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추측한다. 만약 죠지 버너드 쇼씨가 이 리윤론을 알았더라면 그는 아마 이것을 두손으로 부둥켜안고 제번즈와 칼 멩거는 해임시키고 이 반석우에다 그의 미래의 페이비안교회당을 새로 건립할수도 있었을것이다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리론은 맑스의 리론을 다른 말로 고쳐쓴것에 불과하다. 대체로 모든 가격추가는 무엇에 의하여 지불되는가? 로동자들의 《총생산물》에 의하여서이다. 그것도 바로 《로동》이라는 상품, 또는 맑스가 말하는 로동력이라는 상품이 그것의 가격이하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의하여서이다. 왜냐하면 생산비보다 비싸게 판매되는것이 모든 상품의 공통된 속성이라면 그리고 로동만이 례외로서 언제나 생산비대로만 판매된다면 로동이야말로 이 속류경제학의 세계에서 통칙으로 되여있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자본가 또는 자본가계급의것으로 되는 초과리윤은 바로 로동자가 자기 로동의 가격의 보상분을 재생산한 다음에 그가 지불을 받지 않는 생산물—잉여생산물,

부지불로동의 생산물, 잉여가치—을 더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있으며 또 결국은 오직 이 사실에 의하여서만 성립될수 있는것이다. 렉시스는 표현의 선택에서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그는 이상의 견해가 자기 자신의 견해라고는 어디서나 솔직히 말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 자신의 견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상대하고있는 사람은 보통의 속류경제학자들, 맑스의 눈에는 그 어느 누구나 《기껏해야 어떻게 할 도리 없는 천치에 불과하다.》고 그 자신이 말하고있는 속류경제학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속류경제학자로 가장한 맑스주의자이라는것이 매우 명백하다. 이 가장이 의식적인것인가 또는 무의식적인것인가 하는것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흥미가 없는 심리학적문제이다. 이것을 밝혀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때에는 렉시스와 같은 그렇게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별있는 사람이 복본위제와 같은 어리석은것을 변호[11]해나설수 있었다는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던가 하는것도 연구하게 될것이다.

이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답하려고 시도한 첫사람은 **콘라드 슈미트**박사—《맑스의 가치법칙에 기초한 평균리윤률》(슈투트가르트, 디쯔판, 1889년)[12]—이다. 슈미트는 시장가격형성의 세목을 가치법칙 및 평균리윤률과 일치시키려고 한다. 산업자본가는 자기의 생산물에서 첫째로, 자기의 선대자본의 보상분을 받으며 둘째로, 그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잉여생산물을 받는다. 그러나 이 잉여생산물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는 생산에 자기의 자본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면 이 잉여생산물을 취득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량의 대상화된 로동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의 이 선대자본은 이 잉여생산물

을 획득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대상화된 로동의 량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산업자본가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그런데 생산물들은 가치법칙에 의하면 그것들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에 비례하여 호상 교환되므로 또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의 잉여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은 바로 그의 자본으로 퇴적된 과거로동이므로 잉여생산물들은 그것들의 생산에 필요한 자본들에 비례하여 교환되는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것들에 체현된 로동에 비례하여 교환되는것은 아니라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각 자본단위에 귀속되는 몫은 생산된 잉여가치총액을 이 목적에 사용된 자본총액으로 제한것과 동등하다. 그러므로 동등한 자본은 동등한 기간에 동등한 리윤을 낳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것은 그와 같이 계산되는 잉여생산물의 비용가격 즉 평균리윤이, 지불된 생산물의 비용가격에 추가되여 지불생산물과 부지불생산물의 량자가 이 증대된 가격으로써 판매되는데 의하여서이다. 그리하여 슈미트가 생각하고있는바와 같이 개개의 상품의 평균가격은 가치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리윤률은 실현된다.

이 구상은 매우 교묘한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헤겔의 모범[13]을 따르고있는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것도 또한 헤겔의 구상의 대다수와 공통하다. 잉여생산물인가 지불생산물인가 하는데 의하여서는 아무런 차이도 생기지 않는다. 즉 가치법칙이 평균가격에 대하여도 **직접** 타당하여야 한다면 이 량자는 다 그것들의 생산에 필요하며 또 그것에 소비된 사회적필요로동에 비례하여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견해와는 처음부터 대립된다. 그것은 즉 자본을 구성하는 퇴적

된 과거로동은 다만 일정한 액의 기성가치일뿐만아니라 또 생산 및 리윤형성의 요인이기때문에 가치창조적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가지고있는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견해이다. 가치법칙은 이와 같은 속성은 오직 산로동에만 속한다는것을 확정한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동등한 리윤을 기대하며 따라서 자기들의 선대자본을 자기들의 리윤에 대한 일종의 비용가격으로 간주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슈미트가 이런 사고방식을 리용하여, 이것을 매개로 하여 평균리윤률에 따라서 계산된 가격을 가치법칙과 일치시키려 한다면 그는 가치법칙 그 자체를 폐기하는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가치법칙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사고방식을 공동규정적요인으로서 이 법칙에 합체시키기때문이다.

만일 퇴적된 로동이 산로동과 함께 가치창조적이라면 가치법칙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

또는 그것이 가치창조적이 아니라면 슈미트의 론증은 가치법칙과 량립하지 않는다.

슈미트는 문제해결의 문턱까지 접근하였을 때에 이 옆길로 들어섰는데 그것은 그가 매 개별적상품의 평균가격과 가치법칙과의 일치를 증명할수 있게 하는, 될수 있으면 수학적인 공식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목표에 거의 접근하였을 때 미로에 빠지기는 하였지만 그의 소책자의 기타의 내용은 그가 얼마만한 리해를 가지고 《자본론》의 첫 2부로부터 그이상의 결론을 지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종래에 설명할수 없었던 리윤률저하의 경향에 관하여 맑스가 제3부 제3편에서 준 옳은 설명을 독자적으로 발견한 영예를 그는 지니고있다. 산업잉여

가치로부터 상업리윤을 끌어낸것 그리고 리자 및 지대에 관하여 맑스가 제3부 제4편 및 제5편에서 전개한 사항들을 예상케 하는 일련의 론술들을 주고있는것도 그의 영예이다.

그후의 한 저술(《신시대》지 1892~1893년 제3호 및 제4호)가운데서 슈미트는 또 다른 하나의 해결방법을 시도하고 있다[14]. 이 방법이 귀착되는바는 평균리윤률을 형성시키는것은 경쟁이라는것이며 그것은, 경쟁은 자본을 과소리윤을 주는 생산부문으로부터 과대리윤을 주는 다른 생산부문으로 이전시키기때문이라는것이다. 경쟁이 리윤을 균등화하는 큰 힘이라는것은 별로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슈미트가 론증하려고 시도하는것은 리윤의 이러한 균등화는 과도하게 생산된 상품의 판매가격을 사회가 가치법칙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지불할수 있는 가치척도로 귀착시키는것과 동일하다는것이다. 왜 이 방법도 목표에 도달할수 없었는가 하는것은 이 책에서의 맑스의 설명 자체에서 충분히 알수 있다.

슈미트 이후에 이 문제에 손을 댄것은 **P. 파이어먼**이다(《콘라드년지》 제3집 제3권 793페지)[15]. 나는 맑스의 서술의 다른 측면에 관한 파이어먼의 론술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 론술들은 맑스가 설명하는 그곳에서 마치도 정의를 내리려 하는것처럼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맑스에게서 고정된 기성적인, 절대적으로 타당한 정의를 찾을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에 기초하고있다. 사물들과 그것들의 호상관계가 고정적인것으로서가 아니라 가변적인것으로서 파악될 때에는 그것들의 사상적반영인 개념도 또한 변화와 변형을 받게 된다는것, 그것들은 경화된 정의속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력사적 또는 론리적 형성과정에서 전

개된다는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왜 맑스가 제1부의 서두에서 그의 력사적전제로서의 단순상품생산으로부터 출발하고[16] 그다음에 이 기초로부터 자본에 도달하려 하는가, 왜 여기서 그는 단순한 상품으로부터 출발하고 개념적으로도 력사적으로도 제2차적형태 즉 이미 자본주의적으로 변화된 상품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가 하는것도 아마 명백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물론 파이어먼에게는 전혀 리해될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것과 여러가지로 항변을 일으킬지도 모를 부차적인것들을 제쳐놓고 우리는 곧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넘어가자. 이 저자에게 리론이 가르쳐주고있는것은 잉여가치률이 주어져있는 경우에는 잉여가치는 사용된 로동력의 수에 비례한다는것인데 그에게 경험이 보여주고있는것은 평균리윤률이 주어져있는 경우에는 리윤은 사용된 총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는것이다. 파이어먼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것에 의하여 설명하고있다. 리윤은 단지 하나의 관습적인(즉 그가 말하는바에 의하면 일정한 사회구성에 속하여 그것과 존망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리윤의 존재는 오직 자본과만 결부되여있다. 자본은 만일 그것이 리윤을 얻을만한 힘이 있다면 경쟁에 의하여 모든 자본들에 대하여 동등한 리윤률을 얻지 않을수 없게 된다. 동등한 리윤률이 없이는 어떠한 자본주의적생산도 불가능하다. 이 생산형태를 전제로 하면 어떤 개별적자본가에게 있어서나 리윤의 량은 리윤률이 주어져있다면 다만 그의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될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리윤은 잉여가치로써, 부지불로동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로동의 착취에 의하여 그 크기가 규정되는 잉여가치가 어떻게 하여 이 착취에 요구되는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그 크기가 규정되는 리윤으로 전화하는가?

《그것은 오직…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비률이 가장 큰 모든 생산부문들에 있어서는 상품이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된다는것, 즉 또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의 비률=c:v가 가장 작은 생산부문들에 있어서는 상품이 그 가치보다 싸게 판매된다는것, 그리고 다만 c:v라는 비률이 일정한 평균치를 표시하는 곳에서만 상품이 그 진정한 가치대로 판매된다는것…에 의하여서이다. 이렇게 개개의 가격이 그 각자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다는것은 가치원리의 부정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일부 상품들의 가격은 다른 상품들의 가격이 가치이하로 저하되는것과 동일한 비례로 가치이상으로 상승하기때문에 가격의 총액은 의연히 가치의 총액과 동등하며… 〈결국〉 이 불일치는 없어지기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하나의 《교란》이다. 《그러나 정밀과학에 있어서는 예견할수 있는 교란은 결코 법칙의 부정으로 간주하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이상의 서술을 제9장의 해당 개소와 비교하여보면 파이어먼은 여기에서 사실상 이미 결정적인 점에 접촉하고있다는것을 발견할것이다. 그러나 파이어먼이 이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상의 발견 이후에도 또한 얼마나 많은 중간고리가 요구되였는가 하는것은 그렇게 중요한 그의 론문이 부당한 랭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의하여서도 증명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았으나 그들은 모두 역시 이 위험한 일에 손을 대였다가 욕을 볼가바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만 파이어먼이 자기의 발견을 미완성형태로 내버려두었다는것에 의하여뿐만아니라 또한 맑스의 서술에 대한 그의 리해와 그리고 이 리해에 기초한, 맑스의 서술에 대한 그 자신의 일반적비판에 명백한 결함이 있었다는것에 의하여서도 설명된다[17].

어떤 곤난한 문제에 손을 대여 남의 웃음거리로 되는 경

우가 있을 때 거기에 쮜리히의 교수 **율리우스 월프**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바(《콘라드년지》 제3집 제2권 352페지 이하[18])에 의하면 이 문제 전체는 상대적잉여가치에 의하여 해결된다.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은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증대에 기초한다.

《불변자본의 증대는 로동자들의 생산력의 증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생산력의 이 증대는 (생활수단의 저렴화를 통하여) 잉여가치의 증대를 수반하기때문에 잉여가치의 증대와 총자본중에서 불변자본이 차지하는 비률의 증대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불변자본의 증대는 로동생산력의 증대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가변자본이 변함없고 불변자본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맑스가 말한대로 잉여가치가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선 문제였다.》

그런데 맑스는 제1부의 무수한 개소에서 이와는 정반대되는것을 말하고있다. 사실 상대적잉여가치는 가변자본이 감소하더라도 불변자본의 증대에 비례하여 증대한다고 맑스가 말한듯이 주장하는것은 어떠한 의회적표현도 따라가지 못할만큼 놀라운것이다. 사실 율리우스 월프씨가 그의 문장의 매 개 줄에서 증명하고있는것은 그가 절대적잉여가치에 대하여서도, 상대적잉여가치에 대하여서도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전혀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사실 그 자신도

《우리는 여기에서 얼핏보면 참으로 허튼소리의 둥지속에 있는듯한 감이 난다.》

라고 말하고있는데 이것은 기왕이니 말이지만 그의 전체 론문중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말이다. 그러나 대체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율리우스 월프씨는 그의 천재적인 발견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나머지 이에 대하여 맑스에게 사후의 찬사를 드

리지 않을수 없으며 그 자신의 이 터무니없는 허튼소리를

《그의(맑스의) 자본주의경제의 비판체계가 여하한 예리성과 선견지명을 가지고 기초되였는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

라고 자화자찬함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뒤에 더 재미있는것이 나온다. 월프씨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리카도는 동등한 자본지출은 동등한 잉여가치(리윤)를 낳는다고 주장한 동시에 동등한 로동지출은 동등한(량으로 보아) 잉여가치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일방의 주장이 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런데 맑스는 이러한 문제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제3부에서) 의심할바없이 론증한것은** 제2의 주장이 가치법칙의 무조건적인 귀결이 아니라는것이며 실로 이 주장은 그의 가치법칙과 모순되는것이며 따라서…직접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두 사람중에서 누가 틀렸는가, 나인가 맑스인가를 연구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오유에 빠지고있다는것을 그는 물론 생각하지 못하고있다.

만일 내가 이 굉장한 문구에 관하여 한마디라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독자를 모욕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이 경우의 희극을 전혀 못보고만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한가지만을 첨가하여둔다. 그가 당시 이미 무엇을 《맑스가 제3부에서 의심할바없이 증명하였》는가를 말할수 있은 그런 대담성과 동일한 대담성을 가지고 그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소위 교수사이의 횡설수설을 퍼뜨리고있는데 그 지껄임에 의하면 콘라드 슈미트의 상기저술은 《엥겔스의 직접적추동에 의한것》이라는것이다. 율리우스 월프씨

여! 당신이 삶을 누리고 활동하는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 해답을 은밀하게 자기의 친우에게 알려주는것이 보통일인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것을 나는 당신을 위하여 즐겨 믿는바이다. 그러나 내가 교제하고있는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비렬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본 서문이 당신에게 증명하여줄것이다.

맑스가 서거하자 **아낄레 로리아**씨는 재빨리 맑스에 관한 론문[19]을 《누오바 안톨로기아》(1883년 4월)에 발표하였다. 그것은 우선 허위자료로 가득찬 전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는 사회적, 정치적 및 문필적 활동의 비판이다. 여기에서는 맑스의 유물사관이 어떤 큰 목적을 추측할수 있게 하는 확신으로써 위조되고 외곡되여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달성되였다. 즉 1886년에 같은 로리아씨는 《정치제도에 관한 경제리론》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거기에서 그는 1883년에는 그렇게도 전적으로 또 그렇게도 고의적으로 외곡한 맑스의 력사리론을 자기 자신의 발견이라고 선포하여 세인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물론 거기에서는 맑스의 리론이 상당히 비속한 수준으로 전락되였다. 력사적증거와 실례는 소학교 4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될수 없는 오유들로 충만되여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단말인가?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상태와 사건들은 그것들에 상응한 경제적상태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발견은 이 저서가 보여준바에 의하면 결코 맑스에 의하여 1845년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로리아씨에 의하여 1886년에 이루어진것이다[20], 적어도 그는 이것을 자기의 동국인에게, 그리고 그의 저서가 프랑스어로 간행된 이래로는 약간의 프랑스인들에게도 그럴듯하게 믿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새로

윤 획기적인 력사리론의 창시자로서 이딸리아에서 뽐낼수 있다. 적어도 이딸리아의 사회주의자들이 절취당한 공작새의 깃을 저명한 로리아씨로부터 뽑아낼 시기가 될 때까지는 그러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리아씨의 수법의 하나의 작은 표본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에게 맑스의 전체 리론은 **의식적인** 궤변에 립각하고있다. 맑스는 배리를, 그것이 **배리라는것을 알고있는** 경우에도 물리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고 확언한다. 그리고 그는 이와 류사한 속된 허튼소리를 한바탕 늘여놓음으로써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맑스도 역시 우리의 파두아교수와 동일한 기만수단으로써 보잘것없는 무대효과를 올리는 로리아류의 야심가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이제는 그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비밀을 루설할수 있으며 또 그와 동시에 그는 우리를 리윤률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한다.

로리아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맑스에 의하면 불변자본은 리윤을 낳지 않으므로 자본주의적산업기업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이것을 로리아씨는 여기에서 리윤과 동일시하고 있다.)의 량은 이 기업에 사용되는 가변자본에 의존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실지에 있어서는 리윤은 가변자본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총자본에 의존하기때문이다고. 그런데 이것은 맑스 자신도 알고있는것이며(제1부, 제11장[21]) 제 사실이 외견상 그의 리론과 모순되고있다는것을 시인하고있다[22]. 그러면 그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있는가? 그는 자기의 독자들에게 아직 간행하지 않은 속권을 보라고 한다. 이 속권에 관하여 로리아씨는 이미 이전에 **자기의** 독자들에게 맑스가 일순간이라도 그것을

쓰려고 생각한 일이 있다고는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그는 이제는 개가를 올리면서 웨친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맑스가 계속 자기의 론적들을 위협하는데 리용하고있는 이 제2권[23]은 과학적론증에 막힐 때에 그가 리용하는 교활한 방책임에 틀림없을것이라고 내가 주장한것은 부당한것이 아니였다》고.

그리고 이러니까 맑스가 과학적기만에 있어서 저명한 로리아씨와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것을 이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자인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로리아씨에 의하면 맑스의 잉여가치론은 일반적인 균등한 리윤률이라는 사실과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는것이라는것만은 알게 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제2부가 나왔으며 그와 동시에 바로 이같은 점에 관하여 내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문제도 나왔다[24]. 만약 로리아씨가 우리와 같이 수줍어하는 독일인의 한 사람이라면 그는 어느 정도 난처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뻔뻔스러운 남국인이다. 그는 더운 지방의 출신이며 그 지방에서는 그 자신도 립증할수 있는바와 같이 얼지 않음①이 어느 정도까지 자연조건으로 되여있다. 리윤률에 관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제기되였다. 로리아씨는 그것을 해결할수 없는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이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기로서 자기를 초과하게 될것이다.

이 기적은 《콘라드년지》(신집 제20권 272페지 이하)에서 콘라드 슈미트의 상기저작에 관한 론문가운데 나타났다.

---

① 《얼지 않음》의 원문은 《Unverfrorenheit》인데 이 말은 《뻔뻔스러움》이라는 뜻도 가지고있다.—편집자

상업리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슈미트에게서 배우고나자 그에게는 모든것이 대번에 명백하여졌다.

《그런데 로동시간에 의한 가치규정은 자기의 자본중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로임에 투하하는 자본가들에게 리익을 주므로 비생산적자본(상업자본이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이 자본가들로부터 보다 높은 리자(리윤이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를 강요하여 개개의 산업자본가들사이에 균등을 실현할수 있다…례컨대 산업자본가 A, B, C가 각각 100로동일을 그리고 각각 0, 100, 200의 불변자본을 생산에 사용하고 또 100로동일분의 로임은 50로동일을 포함하고있다고 하면 이 자본가들은 각각 50로동일의 잉여가치를 얻게 되는데 리윤률은 제1의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100%, 제2의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33.3%, 제3의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20%이다. 그러나 만약 제4의 자본가 D가 300이라는 비생산적자본을 축적하고 이 자본에 의하여 자본가 A로부터는 40로동일의 가치가 있는 리자(리윤)를, 자본가 B로부터는 20로동일의 가치가 있는 리자를 요구한다면 A, B 두 자본가의 리윤률은 20%로 저락되여 C의 그것과 같게 될것이며 300의 자본을 가진 자본가 D는 60의 리윤을, 즉 다른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20%의 리윤률을 얻을것이다.》

이렇게도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저명한 로리아는 10년전에는 자기가 해결할수 없는것이라고 선언한 바로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였다. 그런데 이 《비생산적자본》은 산업자본가들로부터 평균리윤률을 넘는 그들의 이 초과리윤을 탈취할뿐만아니라 바로 토지소유자가 차지농업가의 초과리윤을 지대로서 집어삼키듯이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수 있는 힘을 대체 어디서 얻는가 하는 이 비밀은 유감스럽게도 그가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사실상 상인들은 지대와 완전히 류사한 공납을 산업가들에게서 징수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리윤률을 형성시킬것이다. 물론 상업자본은 거

의 누구나 알고있듯이 일반적리윤률형성의 극히 중요한 한 요인이다. 그러나 상업자본은 일반적리윤률을 넘는 모든 초과잉여가치를, 그것도 일반적리윤률이 형성되기전에 흡취하며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지대로—그것도 더구나 어떠한 토지소유도 필요로 하지 않고—전화시킬수 있는 마력을 가지고있다고 감히 주장할수 있는자는 다만 마음속에서는 전체 정치경제학을 경멸하는 문필상의 모험가뿐이다. 이만 못지 않게 놀라운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즉 상업자본은 바로 평균리윤률에 해당할따름인 잉여가치를 획득하는 산업가들을 발견한다는것, 그리고 이들의 생산물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판매함으로써 맑스의 가치법칙의 이 불행한 희생자들의 운명을 다소라도 완화시키는것을 명예로 삼는다는것이다. 맑스가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재간을 필요로 했다고 상상하는것은 대체 어떠한 요술쟁인가!

그러나 우리의 저명한 로리아가 그 영광에 찬 모습이 드러나는것은 우리가 그를 그의 북방의 경쟁자들, 례컨대 이역시 어제오늘에 알려진 인물이 아닌 율리우스 월프씨와 비교하여볼 때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관한 월프씨의 대작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가 이 이딸리아인의 곁에서는 얼마나 왜소한 멍멍개로 보이는가! 이 대가의 품위있는 뻔뻔스러움의 곁에서는 이 월프씨는 얼마나 서투른가, 겸손하다고까지 말할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맑스는 다른 모든 사람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였고 로리아 자신과 꼭 같은 의식적인 궤변가이며 역설가이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이며 사기군이였다는것, 맑스는 진퇴량난에 빠졌을 때에는 언제나, 내놓을수도 없고 또 내놓을 의사도 없다는것을 그 자신이 매우 잘 알고있는 속권중에서 자기의 리론을 완성하

겠다고 공중앞에 빈 약속을 한다는것—이러한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이 로리아대가는 뻔뻔스럽게 주장한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비상한 재주를 겸비한 한없는 뻔뻔스러움, 발로 걷어채워도 태연자약하는 영웅적무시, 타인의 업적을 가로채는 재빠름, 허풍치는 약장사식광고, 동료도배들을 리용하는 매명조직—이 모든 점에서 누가 그와 어깨를 겨눌수 있겠는가?

이딸리아는 고전적인 나라이다. 현대세계의 서광이 여기에서 비치기 시작한 위대한 시대이래 이 나라는 단떼로부터 가리발디에 이르기까지 무비의 고전적완성을 달성한 위대한 인물들을 낳았다. 그러나 굴종과 타국의 지배의 시대는 이 나라에 다른 고전적인 가면도 남겨놓았는데 그중 특히 뚜렷한 두개의 형은 스가나렐형과 둘카마라형이였다. 우리는 이 량자의 고전적통일이 우리의 저명한 로리아씨에게 구현되였음을 본다.

마지막으로 나는 대서양 저쪽으로 독자들을 안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뉴욕에서 의학박사 G. **스티벌링**씨도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을, 그것도 극히 간단한 해결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대서양의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인정하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간단한것이였다. 이에 그는 대단히 분개하여 무수한 소책자와 신문론설을 통하여 대양의 량쪽에서 통렬하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에 대해서는 《신시대》[25]지상에 그의 전체 해결이 계산착오에 립각하고있다는것이 지적되였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태연하였다. 맑스도 역시 계산착오가 있었으나 많은 점에서 옳았다는것이다. 그러면 스티벌링의 해결을 검토하기로 하자.

《동등한 자본을 가지고 동등한 시간 작업하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률은 다른 두 공장을 들어보자. 총자본 (c+v)를 y라고 하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비률의 차를 x로써 표시하자. 공장 Ⅰ에서는 y=c+v이며 공장 Ⅱ에서는 y=(c-x)+(v+x)이다. 따라서 잉여가치률은 공장 Ⅰ에서는 $\frac{m}{v}$이며 공장 Ⅱ에서는 $\frac{m}{v+x}$이다. 총자본 y 또는 c+v가 주어진 시간내에 증식된 총잉여가치(m)를 리윤(p)이라고 칭하면 p=m이다. 따라서 리윤률은 공장 Ⅰ에서는 $\frac{p}{y}$ 또는 $\frac{m}{c+v}$이며 공장 Ⅱ에서도 마찬가지로 $\frac{p}{y}$ 또는 $\frac{m}{(c-x)+(v+x)}$, 즉 역시 $\frac{m}{c+v}$이다. 따라서…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즉 가치법칙에 기초하여서는 동등한 자본과 동등한 시간이 사용되나 사용되는 산로동의 량이 다른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의 변동으로부터 동등한 평균리윤률이 생긴다는 방식으로 해결된다.》(G. 스티벌링 《가치법칙과 리윤률》 뉴욕, 존 하인리히판)

이 계산은 극히 훌륭하고 명백한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박사 스티벌링씨에게 **하나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즉 공장 Ⅰ이 생산하는 잉여가치 총량이 공장 Ⅱ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 총량과 틀림없이 동등하다는것을 그는 무엇에 의하여 아는가 하는것이다. c, v, y와 x에 관해서는 즉 다른 모든 인수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두 공장에 있어서 동등한 크기이라는것을 그는 명확히 말하고있으나 m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여기에 나오는 두 잉여가치량을 그가 대수학적으로 m으로써 표시한다고 하여 그것들이 동등하다는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스티벌링씨가 아무런 그이상의 설명도 없이 리윤 p를 잉여가치와 동일시하고있는것만큼 오히려 이 점이야말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될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경우만이 가능하다. 즉 그 하나는 쌍방의 m이 동등한 경우, 다시말하면 두 공장이 각각 동등한 량의 잉여가치를 생

산하는 경우, 따라서 총자본의 크기가 동등하면 리윤의 액도 동등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라면 스티벌링씨는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것을 처음부터 전제로 하고있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공장이 다른 공장보다 더 많은 액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라면 그의 계산 전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것이다.

스티벌링씨는 자기의 이 계산착오우에 산더미같은 계산을 쌓아올려 공중앞에 전시하는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계산들은 거의 모두가 마찬가지로 틀린것이며 례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계산은 그가 증명하려고 하는것과는 전혀 다른것을 증명하고있다고 나는 그의 기분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보증을 할수 있다. 례컨대 그는 1870년 및 1880년의 아메리카국세조사자료를 비교하는데 의하여 사실상 리윤률의 저락을 증명하고있으나 그는 이 저하를 완전히 그릇되게 설명하고있으며 그는 리윤률은 언제나 변함없으며 안정되여있다는 맑스의 리론을 실천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이 맑스의 《안정되여있는 리윤률》이란 순전한 허구에 불과하며 또 리윤률저하의 경향은 스티벌링박사가 제시한것과는 정반대의 제 원인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은 이 제3부 제3편에서 알수 있다. 박사 스티벌링씨는 확실히 선의에서 그렇게 생각하였을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과학적문제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먼저 자기가 리용하려고 하는 저서를 저서에 씌여진대로 읽기를, 그리고 특히 거기에 씌여져있지 않는것을 읽지 않도록 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 연구의 귀결은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도 무엇인가 업적을 남긴것은 역시 맑스학파뿐이라는것이다. 파이어먼과

콘라드 슈미트가 이 제3부를 읽는다면 그들은 각각 그들 자신의 로작의 자기부분에 대하여 만족을 느낄수 있을것이다.

F. 엥겔스

런던, 1894년 10월 4일

제 3 부

자본주의적생산의 총과정

(상)

제 1 편

잉여가치의 리윤으로의 전화 및 잉여가치률의 리윤률로의 전화

제 1 장

비용가격과 리윤

제1부에서는 그 자체로서 본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이 직접적생산과정으로서 제시하는 제 현상이 연구되였었는데 이 직접적생산과정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외적인 사정들로부터의 모든 제2차적인 영향은 무시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 자본의 생애가 끝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세계에 있어서는 **류통과정**에 의하여 보충되는데 이 류통과정은 제2부의 연구대상이였다. 제2부에서는 특히 제3편에서 사회적재생산과정의 매개로서의 류통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명백히 된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과정과 류통과정의 통일인것이다. 이 제3부의 과업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이 통일을 일반적으로 고찰하는것일수는 없다. 오히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본 자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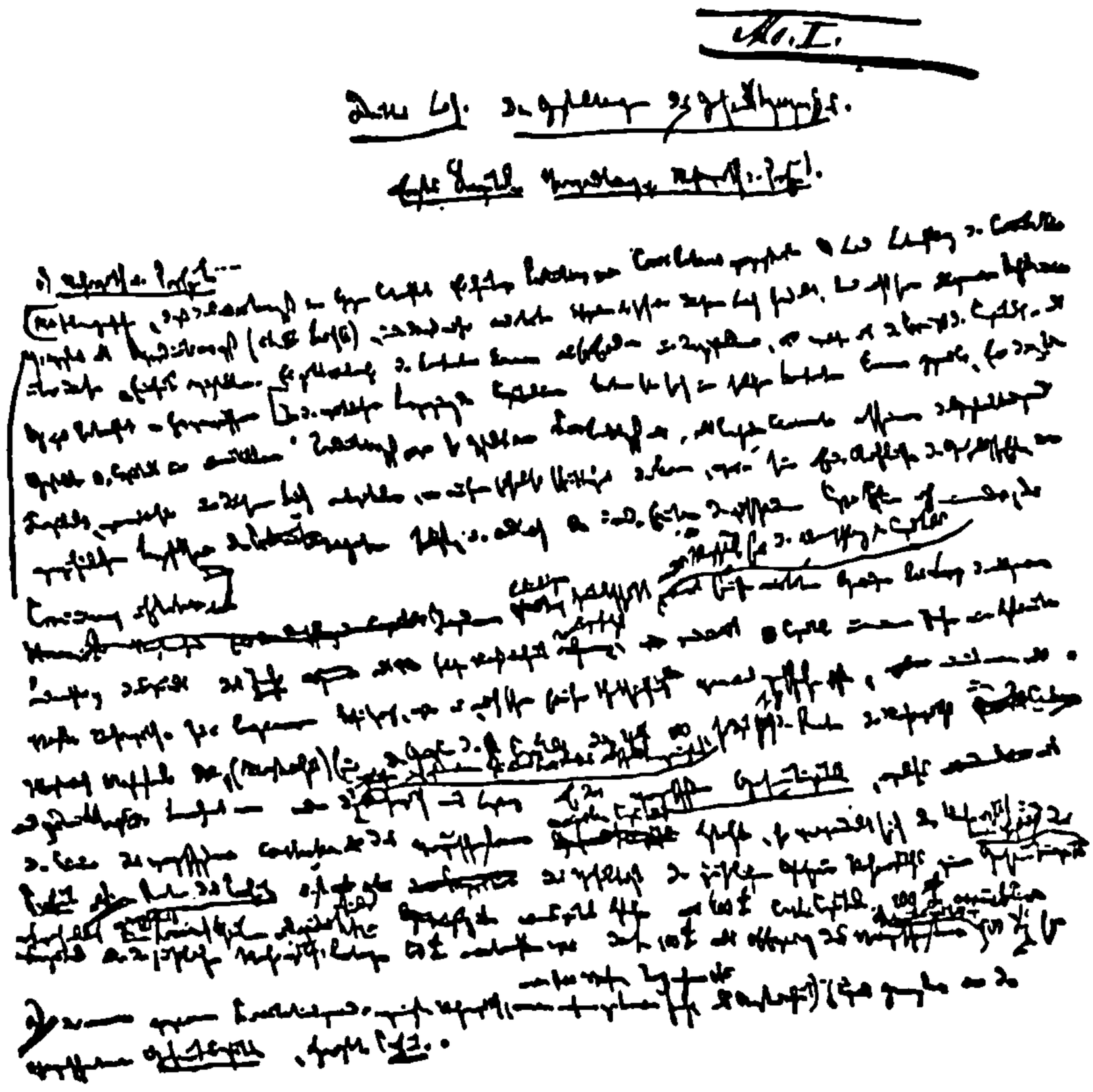
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형태들을 발견하고 서술하는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운동하고있는 자본들은 구체적형태로 대립하고있는데 이 구체적형태에 있어서는 직접적생산과정에 있는 자본의 모습이나 류통과정에 있는 자본의 모습이나 오직 특수한 계기로서만 나타날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제3부에서 전개하는바와 같은 자본의 여러가지 모습은 사회의 표면에서 각이한 자본들의 호상작용에서, 경쟁에서, 생산당사자 자신들의 일상적의식에서 나타나는 형태에로 한걸음 한걸음 접근하여간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는 매개 상품의 가치 W는 W=c+v+m이라는 공식으로 표시된다. 이 생산물가치로부터 잉여가치 m을 공제하면 생산요소들에 지출된 자본가치 c+v의 등가 또는 보상가치만이 상품에서 남는다.

례컨대 일정한 상품의 생산에 500파운드—로동수단의 마멸분에 20파운드, 생산재료에 380파운드, 로동력에 100파운드—의 자본지출이 필요하고 잉여가치률이 100%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400c+100v+100m=600파운드이다.

잉여가치 100파운드를 공제하고나면 500파운드의 상품가치가 남는데 이것은 지출된 500파운드의 자본을 보상할뿐이다. 상품의 가치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과 사용된 로동력의 가격을 보상하는 이 부분은 상품이 자본가 자신에게 들이게 한것을 보상할따름이며 따라서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상품의 비용가격을 이루는것이다.

상품이 자본가에게 들이게 하는것과 상품의 생산 그 자체에 드는것과는 틀림없이 두개의 전혀 각이한 크기이다. 상품가치중에서 잉여가치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원고의 첫페지

로동자에게 부지불로동을 들이게 하는것이기때문에 자본가에게는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로동자 자신도 생산과정에 들어간후부터는 자본가의것으로서 기능하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자본가가 상품의 현실적생산자이므로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상품의 비용가격이 상품 자체의 현실적인 비용으로서 나타난다. 비용가격을 k라고 부른다면 W=c+v+m이라는 공식은 W=k+m이라는 공식, 즉 상품가치=비용가격+잉여가치로 전화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중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자본가치를 보상하는데 불과한 부분들을 비용가격이라는 범주로 총괄한다는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특수한 성격을 표현한다. 상품의 자본주의적비용은 **자본**의 지출로써 측정되며 상품의 현실적비용은 **로동**의 지출로써 측정된다. 그렇기때문에 상품의 자본주의적비용가격은 상품의 가치 또는 상품의 현실적비용가격과 량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상품의 가치보다 적은것이다. 왜냐하면 W=k+m이므로 k=W-m이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품의 비용가격은 결코 자본가의 부기에만 존재하는 한 항목인것은 아니다. 이 가치부분의 독립화는 상품의 현실적생산에서 부단히 실제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가치부분은 류통과정을 통하여 상품형태로부터 생산자본의 형태로 부단히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상품의 비용가격은 상품생산에 소비된 생산요소들을 부단히 재구매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용가격이라는 범주는 상품의 가치형성 또는 자본의 증식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600파운드라

는 상품가치의 $\frac{5}{6}$ 즉 500파운드가 지출된 500파운드의 자본의 등가 또는 보상가치를 이룰따름이며 따라서 이 자본의 소재적요소들을 재구매하는데 충분할따름이라는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는 상품가치중 상품의 비용가격을 이루는 이 $\frac{5}{6}$가 어떻게 생산되였는가, 잉여가치를 이루는 나머지 $\frac{1}{6}$이 어떻게 생산되였는가 하는것을 모른다. 그러나 비용가격이 자본주의적경제에서 가치생산 그 자체의 하나의 범주라는 허위적외관을 띤다는것은 연구가 보여줄것이다.

우리의 례로 돌아가자. 한 로동자에 의하여 평균적인 사회적 1로동일에 생산된 가치가 6실링=6마르크라는 화폐액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한다면 선대자본 500파운드=400c+100v는 $1,666\frac{2}{3}$의 10시간 로동일의 가치생산물인데, 그중 $1,333\frac{1}{3}$로동일은 생산수단의 가치=400c에, $333\frac{1}{3}$로동일은 로동력의 가치=100v에 결정되여있다. 따라서 잉여가치률이 100%라고 가정되여있는 조건하에서는 새로 형성되여야 할 상품자체의 생산에는 100v+100m=$666\frac{2}{3}$의 10시간로동일이라는 로동력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제1부 제7장 201/193 페지[26]를 보라) 새로 형성된 생산물의 가치 600파운드는 1) 생산수단에 지출된 불변자본의 재현가치 400파운드와 2) 새로 생산된 가치 200파운드로 구성된다. 상품의 비용가격=500파운드는 재현된 400c와 새로 생산된 가치 200파운드의 절반(=100v)을, 따라서 상품가치중 그 발생으로 보아 전혀 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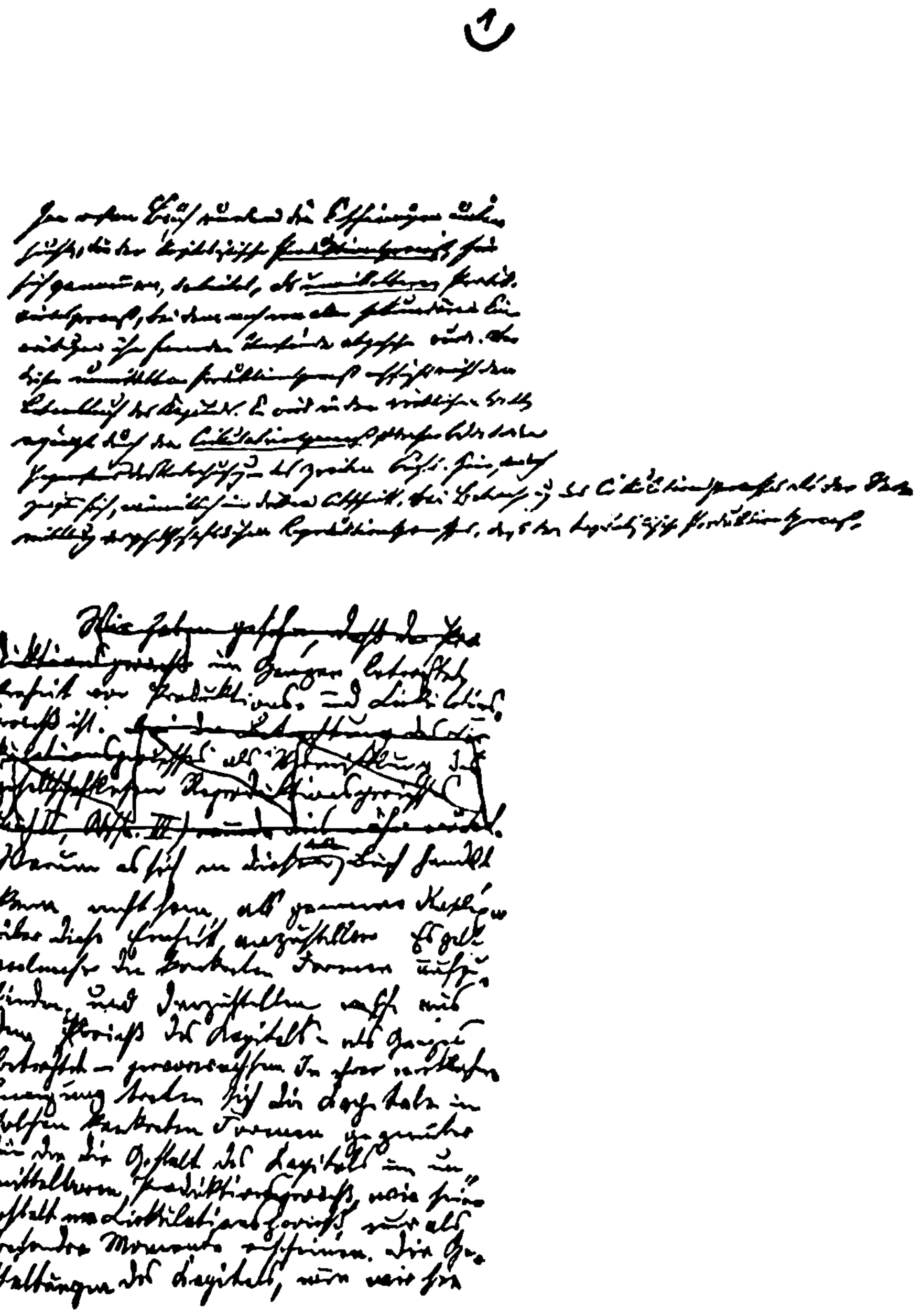
한 두 요소를 포함한다.

$666\frac{2}{3}$의 10시간 로동일에 지출된 로동의 합목적적성격으로 말미암아 총액 400파운드라는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물로 이전된다. 그러므로 이 낡은 가치는 생산물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재현하지만 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이 상품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존재하는것은 다만 그것이 이전에 선대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존재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 지출된 불변자본은 상품가치중 그자체가 상품가치에 첨가하는 부분에 의하여 보상된다. 따라서 비용가격의 이 요소는 2중적의의를 가진다. 즉 한편으로는 그것은 상품가치중 지출된 자본을 보상하는 구성부분이기때문에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가는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지출된 자본의 가치이기때문에 또는 생산수단에 그만큼 비용이 들기때문에 상품가치의 한 구성부분을 이룰따름이다.

비용가격의 다른 구성부분에 관해서는 이와 정반대이다. 상품생산중에 지출된 $666\frac{2}{3}$로동일은 200파운드의 새로운 가치를 형성한다. 이 새로운 가치중 한 부분은 100파운드의 선대가변자본 또는 사용된 로동력의 가격을 보상할따름이다. 그런데 이 선대자본가치는 결코 새로운 가치의 형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로동력은 선대자본에서는 **가치**로서 계산되나 생산과정에서는 **가치형성자**로서 기능한다. 선대자본중에서 나타나는 로동력의 가치 대신에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생산자본중에서는 가치를 형성하는 산로동력 자체가 나타난다.

상품가치의 이러한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합쳐져 비용가격을 이루는데 이 구성부분들간의 차이는 지출된 불변자본부

분에서나 지출된 가변자본부분에서나 가치량에 변동이 일어나면 즉시로 분명하여진다. 동일한 생산수단의 가격 또는 불변자본부분이 400파운드로부터 600파운드로 오르거나 또는 반대로 200파운드로 내린다고 하자. 첫째 경우에는 비단 상품의 비용가격이 500파운드로부터 600c+100v=700파운드로 오를뿐만아니라 상품가치 자체도 600파운드로부터 600c+100v+100m=800파운드로 오른다. 둘째 경우에는 비단 비용가격이 500파운드로부터 200c+100v=300파운드로 내릴뿐만아니라 상품가치 자체도 600파운드로부터 200c+100v+100m=400파운드로 내린다. 지출된 불변자본은 그 자체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기때문에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는 한 생산물의 가치는 이 자본가치의 절대량에 따라 증감한다. 반대로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는 경우에 동일한 량의 로동력의 가격이 100파운드로부터 150파운드로 오르거나 또는 반대로 50파운드로 내린다고 가정하자. 첫째 경우에는 비용가격이 500파운드로부터 400c+150v=550파운드로 오르며 둘째 경우에는 500파운드로부터 400c+50v=450파운드로 내리지만 그러나 두 경우에 다 상품가치는 여전히 600파운드이다. 그것은 첫째 경우에는 400c+150v+50m, 둘째 경우에는 400c+50v+150m이다. 선대가변자본은 그 자체의 가치를 생산물에 첨가하지 않는다. 가변자본의 가치 대신에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가치가 생산물에 들어가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가변자본의 절대적가치량의 변동은 그것이 로동력의 가격의 변동을 표현할따름인 한에서는, 상품가치의 절대량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용하는 로동력에 의하여 창조되는 새로운 가치의 절대량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기때문이다. 그러한 변동은 도리여 새로운 가치의 두 구성부분—그중 한 부분은



비서가 베낀 《자본론》 제3권의 첫페지
웃쪽의것은 엥겔스의 보유와 교열 필적

잉여가치를 형성하며 다른 부분은 가변자본을 보상하고 따라서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간다—의 량적비률에만 영향을 미칠따름이다.

비용가격의 두 부분—우리의 경우에는 400c+100v—에 공통적인것은 그것들이 상품가치중 선대자본을 보상하는 두 부분이라는것뿐이다.

그런데 이 현실적사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전도되여 나타나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노예제도에 기초한 생산방식과 구별되는것은 특히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이 로동 자체의 가치 또는 가격으로서 또는 로임으로서 나타난다는것에 의하여서이다(제1부 제17장). 그렇기때문에 선대자본의 가변가치부분은 로임에 지출된 자본으로서, 생산에 지출된 모든 로동의 가치 또는 가격을 지불하는 자본가치로서 나타난다. 례컨대 10시간이라는 평균적인 사회적 1로동일이 6실링이라는 화폐량에 구현된다고 가정한다면 100파운드의 선대가변자본은 $333\frac{1}{3}$의 10시간로동일에 생산된 가치의 화폐표현이다. 그런데 이 선대자본에서 나타나는, 구입된 로동력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의 어떤 부분도 형성하지 않는다. 이 가치 대신에 생산과정 자체에서는 산로동력이 나타난다. 로동력의 착취도가 우의 례에서와 같이 100%라면 로동력은 $666\frac{2}{3}$의 10시간로동일에 걸쳐 지출되고 따라서 생산물에 200파운드의 새로운 가치를 첨가한다. 그런데 선대자본에 있어서는 100파운드의 가변자본은 로임에 투하된 자본으로서, 또는 $666\frac{2}{3}$의 10시간로동일에 걸쳐 수행되는 로동의 가격으로서

나타난다. 100파운드를 $666\frac{2}{3}$로 제하면 10시간로동일의 가격으로서 3실링이 나오는데 이것은 5시간로동의 가치생산물이다.

만일 선대자본과 상품가치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Ⅰ. 선대자본 500파운드=생산수단에 지출된 자본 400파운드(생산수단의 가격)+로동에 지출된 자본 100파운드($666\frac{2}{3}$로동일의 가격 또는 로임).

Ⅱ. 상품가치 600파운드=비용가격 500파운드(지출된 생산수단의 가격 400파운드+지출된 $666\frac{2}{3}$로동일의 가격 100파운드)+잉여가치 100파운드.

이 공식에서 로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이 생산수단, 례컨대 면화나 석탄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구별되는것은 다만 그것이 소재적으로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지불에 복무한다는것에 의하여서이고 결코 그것이 상품의 가치형성과정에서, 따라서 또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다른 역할을 논다는것에 의하여서가 아니다. 생산수단의 가격은 이미 선대자본에 나타났던대로 상품의 비용가격에로 복귀하는데 이것은 이 생산수단이 이미 합목적적으로 리용되였기때문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상품생산에 지출된 $666\frac{2}{3}$로동일에 대한 가격, 또는 로임도 그것이 이미 선대자본에 나타났던대로 상품의 비용가격에 복귀하는데 그것도 바로 이 로동량이 합목적적형태로 지출되였기때문이다. 우리에게 보이는것은 오직 기성의 기존가치 즉 선대자본의 가치중 생산물가치의 형성에 들어가는 부분들뿐이며 새로 가치를 창조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차이는 사라져버렸다. 500파운드라는 전체 비용가격은 이제는 2중적의의를 가진다. 즉 첫째로, 이것은 600파운드의 상품가치중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500파운드의 자본을 보상하는 구성부분이라는 의미이며 둘째로, 상품가치의 이 구성부분 자체가 존재하는것은 오직 그것이 이전에 사용된 생산요소들인 생산수단과 로동에 대한 비용가격으로서 즉 선대자본으로서 존재하였었기때문이라는 의미이다. 자본가치가 상품의 비용가격으로서 복귀하는것은 그것이 자본가치로서 지출되였기때문이며 또 그 한에 있어서만이다.

선대자본의 여러가지 가치구성부분들이 소재적으로 각이한 여러가지 생산요소들에 즉 로동수단이나 원료나 보조재료나 로동에 투하되여있다는 사정은 상품의 비용가격이 소재적으로 각이한 이 생산요소들을 다시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조건지을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용가격 자체의 형성에 관해서는 오직 한가지 구별 즉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만이 인정되고있을뿐이다. 우리의 례에서 20파운드는 로동수단의 마멸분으로서 계산되였다(400c=로동수단의 마멸분 20파운드+생산재료분 380파운드), 이 로동수단의 가치가 상품의 생산전에 1,200파운드였다면 상품이 생산된후에는 두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즉 20파운드는 상품가치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며, 1,200-20 또는 1,180파운드는 여전히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로동수단의 잔존가치로서 즉 자본가의 상품자본의 가치요소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본의 가치요소로서 존재한다. 로동수단과는 반대로 생산재료와 로임은 상품의 생산에 전부 지출되며 따라서 또 이것들의 전체 가치가 생산된 상품의 가치에 들어간다. 선대자본의 이 각이한 구성부분

들이 회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이라는 형태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이미 본바이다[27].

따라서 선대자본은 1,680파운드 즉 고정자본 1,200파운드+류동자본 480파운드(=생산재료 380파운드+로임 100파운드)이다.

그러나 상품의 비용가격은 500파운드(고정자본의 마멸분 20파운드, 류동자본 480파운드)에 불과하다.

그런데 상품의 비용가격과 선대자본간의 이 차이는, 상품의 비용가격을 이루는것은 오직 상품의 생산에 현실적으로 지출된 자본이라는것을 확증할따름이다.

이 상품의 생산에는 1,200파운드라는 가치의 로동수단이 사용되나 이 선대자본가치중에서 단지 20파운드만 생산에서 상실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용된 고정자본은 그 일부분만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가는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부분만 상품의 생산에 지출되기때문이다. 사용된 류동자본은 상품의 비용가격에 전부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상품의 생산에 지출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하는것은 소비된 고정자본부분도 류동자본부분도 그것들의 가치량에 비례하여 똑같이 그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간다는것, 그리고 상품가치의 이 구성부분은 일반적으로 그 상품생산에 지출된 자본에서만 생긴다는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 1,200파운드라는 선대고정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상실되는 20파운드를 생산물가치에 첨가할뿐만아니라 그것이 이 과정에서 상실하지 않는 1,180파운드까지도 첨가하지 않는가 하는것을 리해할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비용가격의 계산과 관련된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차이는 오직 비용가격은 외관상 지출된 자본가치로써

또는 로동을 포함한, 지출된 생산요소들이 자본가 자신에게 들이게 하는 가격으로써 형성된다는것을 확증할따름이다. 다른 한편으로 로동력에 투하되는 가변자본부분은 가치의 형성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류동자본이라는 항목하에서 불변자본(생산재료로써 구성되고있는 자본부분)과 명백히 동일시되고 있으며 이리하여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의 신비화는 완성된다(1).

이제까지 고찰한것은 상품가치의 한 요소인 비용가격뿐이였다. 이제는 상품가치의 다른 구성부분인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 또는 잉여가치도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잉여가치라는것은 우선 상품의 비용가격을 넘는 상품가치의 초과분이다. 그런데 비용가격은 지출된 자본의 가치와 같으며 이 자본의 소재적요소들로 부단히 재전화되기때문에 이 가치초과분은 상품생산에 지출되였으며 상품류통으로부터 돌아오는 자본의 가치증가분이다.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29] 잉여가치 m은 가변자본 v의 가치변화에서만 발생하는것이며 따라서 원래는 단순히 가변자본의 증가분이지만 그러나 생산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역시 지출된 총자본 c+v의 가치증가분을 이룬다. 공식 c+(v+m)은 로동력에 선대된 일정한 자본가치 v가 하나의 류동량으로 즉 하나의 불변량이 하나의 가변량으로 전화되는데 의하여 m이 생산된다는것을 표시하는데 이 공식은 또 (c+v)+m으로써도 표시될수 있다. 생산이 개시되기전에는 우리에게는 500파운드의 자본이 있었다. 생산후에는 우리에게는 500파운드의 자본에 100파운드의 가치증가분을 합한것이 있다(2).

---

(1) 이 신비화로부터 경제학자의 머리속에 어떠한 혼란이 일어날수 있는가 하는것은 제1부 제7장 제3절 216/206페지[28]이하에서 N. W. 씨니어의 례에 의하여 설명되였다.

그러나 잉여가치는 선대자본중 가치증식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일뿐만아니라 또한 이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증가분을 이루고있다. 즉 그것은 비단 상품의 비용가격으로써 보상되는 소비된 자본에 대하여서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생산에 사용된 총자본에 대하여서도 하나의 증가분을 이룬다. 생산과정에 들어가기전에는 1,680파운드라는 자본가치를 가지고있었다. 즉 로동수단에 투하된 고정자본 1,200파운드—이중에서 20파운드만이 마멸분으로서 상품의 가치속에 들어간다—플라스 생산재료 및 로임으로서의 류동자본 480파운드가 있었다. 생산과정이 끝난후에는 우리는 생산자본의 가치구성부분으로서의 1,180파운드 플라스 상품자본 600파운드를 가지고있다. 이 두 가치액을 합하면 자본가는 이제는 1,780파운드라는 가치를 갖는다. 그가 이것에서 선대총자본 1,680파운드를 공제한다면 100파운드의 가치증가분이 남는다. 그러므로 잉여가치 100파운드는 사용된 자본 1,680파운드에 대하여서도, 생산중에 지출된 그 일부분 500파운드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가치증가분을 이루는것이다.

이제 자본가에게는, 이 가치증가분은 자본으로써 진행되는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것, 따라서 그것은 자본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는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과정후에는 존재하고 생산과정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우선 생산에서 지출된 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잉여가치는

---

(2) 《우리가 사실상 이미 알고있는바와 같이 잉여가치는 다만 v 즉 로동력으로 전환된 자본부분에 기인하는 가치변화의 결과일따름이며 따라서 v+m=v+Δv(v 플라스 v의 증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치변화와 가치가 변화하는 비률은 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선대총자본도 또한 증가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애매하게 된다. 선대총자본은 500이였던것이 지금은 590이 된다.》 (제1부 제7장 제1절 203/195페지[30])

생산수단과 로동으로 구성되는 이 자본의 각이한 가치요소들로부터 마찬가지로 발생하는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요소들은 마찬가지로 비용가격의 형성에 참가하기때문이다. 이 요소들은 선대자본으로서 존재하는 자체의 가치들을 마찬가지로 생산물가치에 첨가하며 불변적가치량과 가변적가치량으로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출된 모든 자본이 오직 로임으로써만 구성된다거나 또는 오직 생산수단의 가치로써만 구성된다고 가정한다면 명백하여진다. 그렇게 되면 첫째 경우에는 상품가치는 400c+100v+100m이 아니고 500v+100m일 것이다. 로임에 투하된 500파운드의 자본은 600파운드의 상품가치의 생산에 사용된 전체 로동의 가치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생산물의 비용가격을 이룬다. 그러나 지출된 자본의 가치를 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으로서 재현시키는 이 비용가격의 형성은 이 상품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과정이다. 상품가치중의 잉여가치구성부분 100파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모른다. 상품가치=500c+100m인 둘째 경우에도 완전히 마찬가지다. 이 두 경우에 우리는 어떤 주어진 가치로부터 잉여가치가 생기는것은 이 가치가 로동의 형태로든 또는 생산수단의 형태로든간에 생산자본의 형태로 선대되였기때문이라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대자본가치는 그것이 지출되여있고 따라서 상품의 비용가격을 형성한다고 하는 리유로써 잉여가치를 형성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선대자본가치가 상품의 비용가격을 형성하는 바로 그 한에서는 그것은 잉여가치를 형성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지출된 자본의 등가를, 그 보상가치를 형성할따름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선대자본가치가 잉여가치를 형성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지출된 자본으로

서의 그 특수한 속성에서가 아니라 선대된 따라서 사용된 자본일반으로서의 그 특수한 속성에서 잉여가치를 형성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는 선대자본중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비용가격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도 생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에서도 류동적구성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기는것이다. 소재적으로는 총자본이 생산물형성자로서 복무하며 로동수단도 생산재료도 로동도 다 그러하다. 가치증식과정에는 총자본의 일부분만이 들어가지만 현실적로동과정에는 소재적으로 총자본이 들어간다. 총자본은 비용가격형성에는 부분적으로만 참가하지만 잉여가치형성에는 그 전체가 참가한다는 리유는 아마도 바로 여기에 있을것이다. 그것은 여하튼 결론은 역시 잉여가치는 사용된 자본의 모든 부분들로부터 동시에 생긴다는것으로 된다. 이 추론은 말사스의 조잡한 말을 빌어한다면 다음과 같이 더욱 간단하게 단축될수 있다.

《자본가는 그가 선대하는 자본의 모든 부분들로부터 동등한 리익을 기대한다.》(3)

이와 같이 선대총자본의 소산으로서 표상된 잉여가치는 **리윤**이라는 전화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일정한 가치액이 자본인것은 그것이 리윤을 얻기 위하여 투하되기때문이며(4) 또는 리윤이 나오는것은 일정한 가치액이 자본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리윤을 p라고 부른다면 공식 W=c+v+m=k+m은 공식 W=k+p 또는 **상품가치=비용가격+리윤**으로 전화된다.

---

(3) 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 제2판 런던 1836년 268페지.

(4) 《자본이란 리윤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것이다.》 말사스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 런던, 1827년 86페지.

따라서 여기에서 처음 우리앞에 있는 리윤은 잉여가치와 동일한것인데 다만 신비화된—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형태를 취하고있는것이다. 비용가격의 외관상의 형성에 있어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구별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생산과정중에 일어나는 가치변화의 근원은 가변자본부분으로부터 총자본으로 옮겨지지 않을수 없다. 한 극에서는 로동력의 가격이 로임이라는 전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때문에 반대극에서는 잉여가치는 리윤이라는 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상품의 비용가격은 상품의 가치보다 작다. W=k+m이므로 k=W-m이다. 공식 W=k+m이 W=k 즉 상품의 가치=상품의 비용가격으로 단축되는것은 m=o 인 경우뿐이다. 그러한 경우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결코 있을수 없는것이다. 하기는 특수한 시장경기하에서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품의 비용가격 또는 그 이하로까지도 저락할수 있지만.

그러므로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어떤 리윤이 실현되는데 그 리윤은 상품의 가치중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과 같으며 따라서 상품가치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 전체와 같은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리윤을 낼수 있다. 상품의 판매가격이 그 비용가격보다 높은 한 상품의 가치보다 저렴하다 하더라도 상품속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언제나 실현되며 따라서 언제나 리윤을 얻는다. 우리의 례에서는 상품가치=600파운드, 비용가격=500파운드이다. 상품이 510, 520, 530, 560, 590파운드로 판매된다면 그것은 각각 90, 80, 70, 40, 10파운드만큼 그 가치보다 저렴하게 판매되지만 그러나 그 판매

에서 각각 '10, 20, 30, 60, 90파운드의 리윤이 나온다. 상품가치와 그 비용가격사이에는 분명히 무수한 판매가격이 있을 수 있다. 상품가치중에서 잉여가치로써 이루어지는 요소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중간가격이 나타나는 실제상의 여지는 더욱 크다.

이것으로써 명백해지는것은 일상적인 경쟁의 제 현상, 례컨대 싼값으로 파는 어떤 경우들, 일정한 산업부문들에서의 상품가격의 비정상적인 저렴(5) 등등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학이 리해못한 자본주의적경쟁의 기본법칙, 즉 일반적리윤률과 이것에 의하여 규정되는 소위 생산가격을 규제하는 법칙은 나중에 보는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와 비용가격간의 이 차이에 기초하고있으며 이 차이로부터 생기는 리윤을 내면서도 상품을 그 가치보다 싸게 판매할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하고있다.

상품의 판매가격의 최저한계는 상품의 비용가격에 의하여 주어져있다. 상품이 그 비용가격보다 싸게 판매된다면 생산자본중의 지출된 구성부분들은 판매가격으로써 전부 보상될수는 없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다면 선대된 자본가치는 없어지고만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자본가는 비용가격을 상품의 실제적인 **내재적**가치라고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비용가격은 그의 자본을 단지 유지하기만 하는데 필요한 가격이기때문이다. 그리고 또 상품의 비용가격은 자본가 자신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지불한 구매가격이며 따라서 그 상품의 생산과정 자체에 의하여 규정된 구매가격이라는것이 첨가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실현되는 가치초과

---

(5) 제1부 제18장 571/561페지[31] 참조.

분 또는 잉여가치는 자본가에게는 상품의 가치가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의 판매가격이 그 가치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나며 그리하여 마치도 상품에 포함되고있는 잉여가치는 상품의 판매를 통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판매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것 같이 보인다. 우리는 이 착각을 이미 제1부 제4장 제2절(《자본의 일반적공식의 제모순》)에서 자세히 해명하였지만 여기에서 잠시 이 착각이 토런즈 등에 의하여 리카도를 넘는 정치경제학의 진보로서 다시 주장된 그 형태를 돌이켜보자.

《자연가격은 생산비로써, 바꾸어말하면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에 지출된 자본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자연가격이 리윤을 포함할수는 없다…차지농업가가 자기의 밭을 경작하는데 100쿼터의 곡물을 지출하고 그대신 120쿼터를 회수한다면 비용을 넘는 생산물의 초과분인 20쿼터는 그의 리윤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초과분 또는 리윤을 그의 비용의 일부분이라고 부르는것은 불합리할것이다…제조업자는 일정한 량의 원료, 도구 및 로동을 위한 생활자료를 투하하고 그 대신 일정한 량의 완성상품을 얻는다. 이 완성상품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선대된 원료, 도구 및 생활자료보다 더 많은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부터 토런즈는 비용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 또는 리윤은 소비자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교환을 통하여 자본의 모든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이것들의 생산에 드는것보다 약간 더 많은 량을 준다》는

데로부터 발생한다고 결론짓는다(6).

사실상 어떤 소여의 량을 넘는 초과분은 이 량의 일부분을 형성할수 없으며 따라서 리윤도 즉 자본가의 지출을 넘는

(6) R. 토런즈 《부의 생산에 관한 론술》, 런던, 1821년, 51~53, 349페지

상품가치의 초과분도 이 지출의 일부분을 형성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형성에 자본가에 의하여 선대된 가치 이외에 아무런 다른 요소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생산에 들어간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생산에서 나올수 있는가가 리해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무에서 유가 발생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런데 토런즈는 이러한 무에서의 창조를 상품의 생산분야로부터 상품의 류통분야로 옮겨놓음으로써만 그것으로부터 도피한다. 토런즈는 말한다. 리윤은 생산에서는 나올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리윤은 이미 생산의 비용에 포함되였을것이며 따라서 이 비용을 넘는 초과분이 아닐것이기 때문이라고. 램지[32]는 그에게 대답하여 말한다. 리윤은 그것이 상품교환 이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품의 교환에서 나올수는 없다고. 교환되는 생산물의 가치총액은 이 가치총액을 가진 생산물 자체의 교환에 의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이 가치총액은 교환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말사스는 상품이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되는것을 토런즈와는 달리 설명하고 있지만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설명하지 않고있지만 그러나 그는 명백히 토런즈의 권위에 의거하고있다는것이다(7)[33].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온갖 론증은 사실상 완전히 당시 대단히 류행되고있던 연소의 부중[34]과 같은것이 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상태에서는 비자본주의적생산자까지도 자본주의적관념에 지배된다. 대체로 현실사정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갖고있는 탁월한 발자끄는 그의 최후의 소설 《농민》에서 소농민이 고리대금업자에게 그의 호의

---

(7) 말사스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 런던, 1853년, 70, 71페지.

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일을 거저 해주고도 자기 자신의 로동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하등의 현금투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고리대금업자에게 아무것도 중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것을 적절하게 묘사하고있다. 그리하여 고리대금업자는 일거량득의 리득을 본다. 그는 로임의 현금투하를 절약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밭에서 일하지 않기때문에 점점 더 령락되여가는 농민을 고리대금의 그물에 점점 더 깊이 걸려들게 하는것이다.

상품의 비용가격은 상품의 현실적가치를 이루며 잉여가치는 상품을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는데로부터 생긴다는 견해, 따라서 상품의 판매가격이 그 비용가격과 동등하다면 즉 상품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 플라스 로임과 동등하다면 상품은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견해, 이러한 어리석은 견해를 쁘루동은 그의 관례대로 학자연하게 뽐내면서 새로 발견한 사회주의의 비밀이라고 불어댔던것이다[35]. 이와 같이 상품가치를 비용가격에 귀결시키는것은 사실상 그의 인민은행[36]의 기초를 이룬다. 이전에도 설명한바와 같이 생산물의 각이한 가치구성부분들은 생산물 자체의 비례적부분들로 표시될수 있다. 례컨대(제1부 제7장 제2절 211/203페지[37]) 20폰드의 면사의 가치가 30실링—즉 생산수단이 24실링, 로동력이 3실링, 잉여가치가 3실링—이라고 하면 이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frac{1}{10}$=2폰드의 면사로 표시될수 있다. 이제 만약 이 20폰드의 면사가 그 비용가격 27실링으로 판매된다면 구매자는 2폰드의 면사를 거저 얻게 된다. 즉 이 상품은 그 가치보다 $\frac{1}{10}$만큼 더 싸게 판매된다. 그러나 로동자가 잉여로동을 제공하였다는것은 종전과 다름이 없는데 다만 그것을 면사의 자본주

의적생산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구매자를 위하여 제공하였을따름이다. 모든 상품이 그 비용가격대로 판매된다면 그 결과는 모든 상품이 그 비용가격보다 더 비싸게 그러나 그 가치대로 판매되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할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일것이다. 왜냐하면 로동력의 가치, 로동일의 길이, 로동의 착취도가 어느 경우에나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각이한 상품종류의 가치에 포함되고있는 잉여가치의 량은 이 상품들의 생산에 선대된 자본들의 유기적구성이 다름에 따라서 극히 다를것이기때문이다.(8)

(8) 《각이한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 및 잉여가치의 량은 로동력의 가치가 주어지고 로동력착취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자본들의 가변적구성부분의 크기에, 즉 산로동력으로 전환된 그 구성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제1부 제9장 312/303페지[38])

제 2 장

리 윤 률

자본의 일반적공식은 G—W—G'이다. 즉 어떤 가치액이 그보다 더 많은 가치액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하여 류통에 투하되는것이다. 이와 같은 더 많은 가치액을 낳는 과정은 자본주의적생산이며 이러한 가치액을 실현하는 과정은 자본의 류통이다. 자본가가 상품을 생산하는것은 상품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며 상품의 사용가치나 자기의 개인적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자본가의 관심사로 되는 생산물은 손으로 잡을수 있는 생산물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물의 가치중 생산물에 소비된 자본의 가치를 넘는 초과부분인것이다. 자본가는 자본의 각 구성부분들이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노는 각이한 역할에 대해서는 고려함이 없이 총자본을 선대한다. 그는 다만 선대자본을 재생산하기 위하여뿐만아니라 선대자본을 넘는 일정한 가치초과분을 생산하기 위해 이 모든 구성부분들을 동일하게 선대하는것이다. 그는 그가 선대하는 가변자본가치를 오직 산로동과 교환하는데 의하여서만, 산로동을 착취하는데 의하여서만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전화시킬수 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러한 로동의 실현조건들인 로동수단 및 로동대상, 기계 및 원료를 선대하는데 의하

여서만, 즉 그가 소유하고있는 가치액을 생산조건들의 형태로 전화시키는데 의하여서만 로동을 착취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가 자본가인것은 또 일반적로동의 착취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것은 단지 그가 로동조건들의 소유자로서 단순한 로동력소유자로서의 로동자와 대립하기때문이다. 이미 제1부[39]에서 명백히 한바와 같이 비로동자가 이러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있다는 사정이야말로 로동자를 임금로동자로, 비로동자를 자본가로 전화시키는것이다.

자본가에게는, 그가 가변자본에서 리득을 끌어내기 위하여 불변자본을 선대한다고 보건 또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하여 가변자본을 선대한다고 보건 즉 기계나 원료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화폐를 로임에 지출한다고 보건 또는 로동을 착취할 가능성을 얻기 위하여 화폐를 기계와 원료에 선대한다고 보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오직 자본의 가변부분만이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만 그러나 가변부분은 다른 부분 즉 로동의 생산조건도 선대되는 조건하에서만 그것을 창조하는것이다. 자본가는 다만 불변자본을 선대함으로써만 로동을 착취할수 있으므로, 또 가변자본을 선대함으로써만 불변자본의 가치를 증식시킬수 있으므로 그의 관념에서는 이 자본들은 모두 같은것으로 되며 뿐만아니라 그의 리득의 현실적정도는 가변자본에 대한 비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자본에 대한 비률에 의해서, 즉 잉여가치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윤률—리윤률은 나중에 보는바와 같이 동일하면서도 각이한 잉여가치률을 표현할수 있다—에 의해서 규정되는만큼 더욱 그렇게 되는것이다.

생산물의 비용에는 생산물의 가치중 자본가가 지불한 모든 구성부분 또는 그가 그 등가를 생산에 투입한 모든 구성

부분이 속한다. 이러한 비용은 자본이 단순히 보존되거나 또는 자체의 최초의 규모대로 재생산되기 위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에 포함되고있는 가치는 그것의 생산에 드는 로동시간과 같으며 또 이 로동의 총량은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에 있어서의 상품의 비용은 상품에 대상화된 로동중 그가 지불한 부분만으로써 이루어진다.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로동은 로동자에게는 지불로동과 꼭 마찬가지로 로동이 드는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지불로동과 꼭 마찬가지로 가치를 창조하며 가치형성요소로서 상품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자본가에게는 아무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다. 자본가의 리윤은 그가 지불하지 않았던 것을 판매할수 있다는데서 생긴다. 잉여가치 또는 리윤은 바로 상품가치가 상품의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 즉 상품에 포함되여 있는 총로동량이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지불로동량을 넘는 초과분인것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는 그것이 어디에서 생기든간에 선대총자본을 넘는 초과분이다. 따라서 이 초과분은 총자본에 대하여 $\frac{m}{C}$이라는 분수로써 표시되는 비률을 이루고있다. 이 C는 총자본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잉여가치률 $\frac{m}{v}$과 구별되는 **리윤률** $\frac{m}{C}=\frac{m}{c+v}$을 얻는다.

가변자본으로 측정되는 잉여가치의 비률을 잉여가치률이라고 부르며 총자본으로 측정되는 잉여가치의 비률을 리윤률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동일한 량을 두개의 각이한 방법으로 측정한것인데 척도가 다르기때문에 동일한 량의 각이한 비률 또는 관계를 표시한다.

잉여가치률의 리윤률로의 전화가 잉여가치의 리윤으로의

전화를 도출하여야 하며 그 반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실상 리윤률이 력사적으로도 출발점이다. 잉여가치와 잉여가치률은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것이고 연구를 통해서 해명하여야 할 본질적인것이다. 리윤률 따라서 잉여가치의 형태인 리윤은 현상의 표면에 나타나는것이다.

개별적자본가에 대하여 말한다면 명백히 그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것은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선대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 즉 그가 자기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가치초과분의 비률인데 자본의 특수한 구성부분들에 대한 이 초과분의 일정한 비률과 이 부분들과의 그의 내적련관은 자본가의 관심을 끌지 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일정한 비률과 이러한 내적련관을 모호하게 하는것이 그의 관심사인것이다.

상품의 비용가격을 넘는 상품가치의 초과분은 직접적생산과정에서 생기는것이지만 그것은 류통과정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그리고 이 초과분이 마치 류통과정에서 생기는것과 같은 외관을 더 쉽게 갖게 되는것은 이 초과분이 실현될것인가 아닌가, 또 실현된다면 어느 정도로 실현될것인가 하는것이 현실에서, 경쟁의 내부에서, 현실적시장에서 시장상황에 의존하기때문이다. 여기에서 론할 필요도 없는것이지만 어떤 상품이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팔리거나 싸게 팔리거나 하여도 다만 잉여가치의 분배에 변화가 생길따름이며 또 이러한 분배의 변화 즉 각이한 사람들이 잉여가치를 분할하는 비률의 변화는 잉여가치의 량이나 그 성질을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류통과정에서는 제2부에서 고찰한바와 같은 전화들이 진행될뿐만아니라 이러한 전화들은 현실적경쟁 즉 가치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의 상품의 매매와 동시에 일어나는것이며 개별적자본가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실현하

는 잉여가치는 로동의 직접적착취에 의존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간의 호상협잡에도 의존한다.

류통과정에서는 로동기간 이외에 류통기간이 작용하며 그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실현될수 있는 잉여가치량이 제한된다. 그밖에 류통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계기들도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생산과정과 류통과정 이 량자는 부단히 호상 침투하고 서로 엉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단히 각자를 구별하는 특징적인 표식들을 모호하게 만든다. 잉여가치의 생산 및 가치일반의 생산은 류통과정에서는 우에서 분명히 된바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받게 된다. 자본은 그 전화의 순환을 통과한다. 마지막에 자본은 말하자면 그 내부적인 유기적생활로부터 외부적인 생활관계에 들어간다. 이 관계에서는 자본과 로동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일방으로는 자본과 자본이 대립하고 타방으로는 개개인이 다시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서로 대립한다. 류통기간과 로동기간은 서로 교차하는 궤도를 그리며 이리하여 량자가 다 동일하게 잉여가치를 규정하는것 같이 보인다. 자본과 임금로동이 서로 대립하는 시초형태는 외관상 이 형태와는 독립한 관계의 간섭에 의하여 가장된다. 잉여가치 자체는 로동시간의 취득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상품의 판매가격이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상품의 비용가격은 용이하게 상품의 실제가치로 나타나며 그때문에 리윤은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품의 내재적가치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난다.

물론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도 잉여가치의 성질은 부단히 자본가의 의식에 떠오르는데 이것은 이미 잉여가치의 고찰에 있어서 타인의 로동시간에 대한 자본가의 탐욕 등이 우

리에게 보여준바와 같다. 그러나 1) 직접적생산과정 자체도 하나의 소멸되여가는 계기에 불과하며 그것은 부단히 류통과정으로 이행하며 또 류통과정도 생산과정으로 이행하며 그리하여 생산과정에서 명확하게 또는 불명확하게 떠오르는 생산과정에서 얻게 되는 리득의 원천에 대한 즉 잉여가치의 성질에 대한 예감도 기껏하여 다음과 같은 관념과 동등한 힘을 가지는 하나의 계기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즉 실현된 초과분의 원천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독립한 류통 자체에서 발생하는, 따라서 로동에 대한 자본의 관계와는 관계없이 자본에 속하는 운동이라는 관념이다. 그런데 램지, 말사스, 씨니어, 토런즈 등등과 같은 현대경제학자들까지도 마치 자본은 단순히 자체의 물적존재에 있어서 오직 바로 자본을 자본으로 만드는, 로동에 대한 그 사회적관계와는 독립하여 로동과 함께 그리고 로동과는 독립하여 잉여가치의 독립적원천이라는것의 증거로서 이상과 같은 류통현상들을 직접 들고있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원료의 가격, 기계의 마멸분 등등과 함께 로임도 포함하고있는 비용의 항목중에서는 부지불로동의 착취는 다만 비용중에 들어가는 한 항목의 지불상의 절약으로서 즉 다만 일정한 로동량에 대한 지불의 감소로서 나타날뿐이다. 이 절약은 원료를 싸게 구입하거나 또는 기계의 마멸분을 감소시키는것과 전혀 마찬가지인것이다. 그리하여 잉여로동의 착취는 그 특수한 성격을 상실하며 잉여가치에 대한 그 특수한 관계는 알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1부 제6편[40]에서 명확히 한바와 같이 로동력의 가치가 로임의 형태로 표시된다는 사정에 의하여 한층 더 촉진되고 용이하게 된다.

자본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초과가치(리윤)의 원천으

로서 나타난다는데 의하여 자본관계는 신비화된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라윤률을 통한 이행에 의하여 리윤이라는 형태로 전화되는 방식은 이미 생산과정에서 일어난 주체와 객체의 전도가 가일층 발전한것에 불과하다. 이미 생산과정에서 우리는 로동의 모든 주체적인 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나는것을 보았다[41]. 한편으로는 가치가, 즉 산로동을 지배하는 과거로동이 자본가로 인격화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로동자가 다만 대상적인 로동력으로서,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전도된 관계로부터는 필연적으로 이미 단순한 생산관계 자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전도된 관념, 잘못된 의식이 발생하는데 이 의식은 진정한 류통과정의 제 전화와 제 변태에 의하여 가일층 발전된다.

리카도학파의 연구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리윤률의 법칙을 직접 잉여가치률의 법칙으로서 설명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전혀 그릇된것이다. 자본가의 두뇌에서는 이 법칙들은 물론 구별되지 않는다. $\frac{m}{C}$이라는 표현에서는 잉여가치는 총자본의 가치로써 측정되고있는데 이 총자본은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선대되는것이며 이 생산에서 그 일부분은 전부 소비되나 일부분은 다만 사용되여있을따름이다. 사실상 $\frac{m}{C}$이라는 비률은 선대총자본의 증식도를 표현한다. 즉 잉여가치의 개념적인 내부적련관과 성질에 따라서 보면 그것은 가변자본의 변동의 크기가 선대총자본의 크기에 대하여 어떠한 비률을 이루는가를 표시한다.

총자본의 가치량은 그 자체로서는 잉여가치량에 대하여 아무런 내재적관계도 없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그러하다. 총자본 마이나스 가변자본 즉 불변자본은 소재적요소로 보면

로동의 실현을 위한 소재적조건들인 로동수단과 로동재료로써 이루어진다. 일정한 량의 로동이 상품에 실현되고 따라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량의 로동재료와 로동수단이 필요하다. 첨가되는 로동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로동의 량과 이 산로동이 첨가되여야 할 생산수단의 량간에는 일정한 기술적비률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에서 잉여가치 또는 잉여로동의 량과 생산수단의 량간에도 일정한 비률이 존재한다. 례컨대 로임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이 하루에 6시간이라면 로동자는 6시간의 잉여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 100%의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2시간의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12시간에는 6시간에 소비하는 생산수단의 2배를 소비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가 6시간에 첨가하는 잉여가치는 6시간 또는 12시간에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이 생산수단의 가치는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으며 문제로 되는것은 다만 기술적으로 필요한 량이다. 원료나 로동수단이 싼가, 비싼가 하는것은 전혀 아무래도 좋다. 다만 그것이 필요한 사용가치를 가지고있기만 하면, 그것이 흡수되여야 할 산로동에 대한 기술적으로 정해진 비례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1시간에 a실링어치의 면화 x폰드가 방적된다는것을 안다면, 물론 12시간에는 12x폰드=12a실링의 면화가 방적된다는것도 역시 알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6의 가치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이 12의 가치에 대해서도 잉여가치의 비률을 계산해낼수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가치**에 대한 산로동의 비률이 이러한 관계에 있게 되는것은 오직 a실링이 면화 x폰드의 명칭으로서 복무하는 한에서만이다. 왜냐하면 면화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동안은 일정한 량의

면화는 일정한 가격을 가지며 따라서 또 반대로 일정한 가격은 일정한 량의 면화의 지표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6시간의 잉여로동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2시간의 로동을 시켜야 하며 따라서 12시간분의 면화를 준비하여야 한다는것이 알려져있으며 또한 이 12시간에 필요한 면화량의 가격이 알려져있다면 우회적으로 면화의 가격(필요량의 지표로서의)과 잉여가치간의 비률이 설정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원료의 가격으로부터는 례컨대 6시간이 아니라 다만 1시간동안에 방적될수 있는 원료의 량을 추정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불변자본의 가치와 잉여가치간에는 따라서 또 총자본의 가치(=c+v) 와 잉여가치간에는 아무런 내부적인 필연적관계도 없다.

잉여가치률이 알려져있고 잉여가치량이 주어져있다면 리윤률이 표현하는것은 그것이 사실상 그러한것 즉 잉여가치의 다른 하나의 측정법에 불과하며 로동과 교환되는데 의하여 직접 잉여가치를 발생하게 하는 자본부분의 가치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총자본의 가치에 대하여 잉여가치를 측정하는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즉 현상세계에서는) 사태는 이와 반대로 되여있다. 잉여가치는 주어져있으나 그것은 상품의 비용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으로서 주어져있다. 이 경우에 이 초과분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산과정에서의 로동의 착취에서인가, 류통과정에서 구매자를 속여서 리득을 얻는데서인가 또는 이 량자에서인가 하는것은 의연히 비밀로 남아있다. 그리고 또 주어져있는것은 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이 초과분의 비률 즉 리윤률이다. 비용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이 초과분을 선대총자본의 가치에 대하여 계산한다는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 자연적인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총자본이 증식된 비률 즉 그 증식도가 발견되기때

문이다. 따라서 이 리윤률로부터 출발한다면 이 초과분과 로임에 투하된 자본부분간의 어떠한 특수한 관계도 추정할수는 전혀 없다. 말사스가 이 길을 밟아서 잉여가치의 비밀과 자본의 가변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특수한 관계의 비밀에 파고들어가려고 시도할 때 어떠한 가소로운 실책에 빠지고있는가는 나중의 한 장[42]에서 보게 될것이다. 리윤률 그 자체가 보여주는것은 오히려 같은 크기의 자본부분들에 대한 이 초과분의 동일한 관계인데 자본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이외에는 어떠한 내부적구별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구별을 보여주는것도 다만 초과분이 2중의 방식으로 계산되기때문이다. 즉 첫째로는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이라는 단순한 량으로서 계산된다. 초과분의 이러한 첫째 형태에서는 류동자본은 전부 비용가격에 들어가는데 고정자본중에서는 마멸분만이 비용가격에 들어간다. 그리고 둘째로는 선대자본의 총가치에 대한 이 가치초과분의 비률로서 계산된다. 여기에서는 고정자본 전체의 가치가 류동자본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계산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류동자본은 두번 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가는데 고정자본은 한번은 류동자본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가고 한번은 류동자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간다. 이리하여 류동자본과 고정자본간의 구별은 여기에서는 유일한 구별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초과분은 헤겔식으로 말하여[43] 리윤률로부터 그 자체에 반사되여온다면, 바꾸어말하여 초과분이 리윤률에 의하여 더 상세히 특징지어진다면 그것은 매년 또는 일정한 류통기간에 자본에 의하여 자본 자체의 가치이상으로 생산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난다.

그렇기때문에 리윤률은 잉여가치률과 량적으로 구별된다—잉여가치와 리윤은 사실상 동일한것이며 량적으로도 같은데—하더라도 리윤은 잉여가치의 전화형태이며 이 형태에서는 잉여가치의 원천과 그 존재의 비밀이 은폐되고 말살된다. 사실상 리윤은 잉여가치의 현상형태이다. 후자는 분석을 통하여 비로소 리윤으로부터 끄집어낼수 있는것이다. 잉여가치에서는 자본과 로동간의 관계가 드러나있다. 자본과 리윤의 관계, 즉 자본과 잉여가치—일방으로는 상품의 비용가격을 넘는, 류통과정에서 실현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나며 타방으로는 총자본에 대한 그의 관계를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나는 잉여가치—의 관계에서는 **자본은 그 자체에 대한 관계로서** 나타나며 이 관계에서는 자본은 시초가치액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가치와 구별된다. 자본이 생산과정과 류통과정을 통하는 그 자체의 운동중에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낳는다는것—이것은 사람들에게 의식되여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것은 이제는 신비화되고 자본 그 자체에 속하는 숨은 속성에서 나오는것 같이 보인다.

우리가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을 파고들어가면 갈수록 자본주의적관계는 더욱더 신비화되며 그 내부적조직의 비밀은 더욱더 폭로되지 않을것이다.

본 편에서는 리윤률은 잉여가치률과 수적으로 다르다. 이에 반하여 리윤과 잉여가치는 단지 형태만 다른 동일한 수량으로서 취급된다.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외면화가 더욱 진행되며 리윤이 수적으로도 잉여가치와 다른 량으로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볼것이다.

제 3 장

리윤률과 잉여가치률간의 관계

앞장의 마지막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제1편 전체에서 가정되여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본에 해당되는 리윤총액은 주어진 류통기간중에 이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총액과 같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잉여가치가 일방으로는 각이한 파생적형태 즉 자본리자, 지대, 조세 등등으로 나뉘여진다는것, 그리고 또 타방으로는 이 잉여가치가 제2편에서 언급될 일반적평균리윤률에 의하여 취득되는바와 같은 리윤과는 대다수 경우에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을 당분간 무시한다.

리윤이 량적으로 잉여가치와 같다고 인정되는 한, 리윤의 크기와 리윤률의 크기는 각개의 경우에 주어지거나 또는 확정될수 있는 단순한 수량간의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연구는 우선 순수한 수학적인 령역에서 진행된다.

제1부와 제2부에서 쓰던 부호들을 그대로 쓰기로 하자. 총자본 C는 불변자본 c와 가변자본 v로 나뉘여지며 잉여가치 m을 생산한다. 이 잉여가치의 선대된 가변자본에 대한 비률, 즉 $\frac{m}{v}$을 잉여가치률이라고 하고 이것을 m′로써 표시한다. 그

러므로 $\frac{m}{v}=m'$이며 따라서 $m=m'v$이다. 이 잉여가치가 가변자본에 대한 관계에가 아니라 총자본에 대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리윤(p)이라고 불리우며 잉여가치 m의 총자본 C에 대한 비률, 즉 $\frac{m}{C}$은 리윤률 p'라고 불리운다. 이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p'=\frac{m}{C}=\frac{m}{c+v}$$

m 대신에 우에서 찾아낸 m의 치(値) m'v를 놓는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p'=m'\frac{v}{C}=m'\frac{v}{c+v}$$

이 방정식은 또한 다음과 같은 비례로 표현될수 있다.

$$p':m'=v:C$$

리윤률의 잉여가치률에 대한 비는 가변자본의 총자본에 대한 비와 같다.

이 비례로부터 리윤률 p'는 언제나 잉여가치률 m'보다 적다는것이 나온다. 왜냐하면 가변자본 v는 C 즉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합계 v+c보다 언제나 작기때문이다. 그러나 v=C의 경우 즉 자본가가 불변자본 즉 생산수단을 조금도 선대하지 않고 다만 로임만을 선대하는 유일한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밖에도 몇개의 요인들이 고찰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c와 v와 m의 크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것이며 따라서 여기서 간단히 그것들에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화폐의 가치**.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나 불변이라고 가정할수 있다.

둘째로, **회전**. 이 요인을 우리는 당분간 전혀 고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은 나중의 한 장에서 특별히 취급하게 되기때문이다. {여기에서 미리 다음의 한가지 점만을 말하여둔다. 즉 $p'=m'\frac{v}{C}$라는 공식이 엄밀히 말하여 정확한것은 가변자본의 1회전기간에 대해서만이라는것,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잉여가치률 m′대신에 잉여가치의 년률 m′n을 놓는데 의하여 이 공식을 년회전에 대하여서도 정확한것으로 되게 한다는것이다. 여기에서 n은 1년간의 가변자본의 회전수이다(제2부 제16장 제1절을 보라).—F. 엥겔스}

셋째로, **로동생산성**이 고려되여야 하는데 그것이 잉여가치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1부 제4편에서 상세히 론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 리윤률에도, 적어도 개별적자본의 리윤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것은 제1부 제10장 323/314페지[44]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 개별적자본이 사회적 평균적생산성보다 높은 생산성으로써 작업하고 그 생산물을 동일한 상품의 사회적평균가치보다 낮은 가치로써 내놓으며 그리하여 추가리윤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편에서도 아직 상품이 사회적인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생산되며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기때문이다. 즉 어느 개별적경우에나 우리는 로동생산성이 변함없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사실상 어떤 하나의 산업부문에 투하된 자본의 가치구성 즉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과의 일정한 비률은 언제나 로동생산성의 일정한 정도를 표현한다. 따라서 만일 이 비률에 불변자본의 소재적구성부분들의 단순한

가치변동이나 로임의 변동과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로동생산성에도 이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또 우리는 c와 v와 m이라는 요인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변화가 동시에 로동생산성에서의 변화도 포함하고있다는것을 자주 볼것이다.

나머지 세 요인들 즉 **로동일의 길이, 로동강도 및 로임**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잉여가치의 량과 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1부[45]에서 상세히 론술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이 세 요인들이 변함없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지만 만일 v와 m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v와 m을 규정하는 이러한 계기들의 크기에 있어서의 변동도 포함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여기에서는 다만 간단히 다음과 같은것을 상기하기만 하면 된다. 즉 로임은 잉여가치의 크기와 잉여가치률의 높이에 대하여 로동일의 길이와 로동강도와는 반대로 작용한다는것, 로임의 상승은 잉여가치를 감소시키는데 로동일의 연장과 로동강도의 제고는 잉여가치를 증대시킨다는것이다.

례컨대 100이라는 자본이 20명의 로동자를 사용하여 10시간로동과 주임금총액 20으로써 20이라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80c+20v+20m;\ m'=100\%,\ p'=20\%.$$

로임의 증가없이 로동일이 15시간으로 연장된다고 하자. 그러면 20명의 로동자의 총가치생산물은 40으로부터 60으로 증대되는데(10:15=40:60), 지불된 로임 v는 동일하므로 잉여가치는 20으로부터 40으로 증대되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80c+20v+40m;\ m'=200\%,\ p'=40\%.$$

다른 한편으로 의연히 10시간로동에서 로임이 20으로부터 12로 내린다면 40이란 총가치생산물은 처음과 마찬가지이지만 그 분할은 달라진다. v는 12로 내리며 따라서 나머지 28이 m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80c+12v+28m;\ m'=233\frac{1}{3}\%,\ p'=\frac{28}{92}=30\frac{10}{23}\%$$

이와 같이 로동일의 연장(또는 로동강도의 상응한 제고)도 로임의 저하도 잉여가치의 량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잉여가치률을 높인다. 반대로 로임의 증대는 기타 조건들이 동등한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을 저락시킬것이다. 따라서 로임증대의 결과로 v가 증가한다면 이것은 로동량의 증대를 표시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같은 로동량에 대한 보다 높은 지불을 표시할따름이다. m'와 p'는 증대되지 않고 저하된다.

여기서 이미 명백한바와 같이 로동일, 로동강도 및 로임의 변화는 동시에 v와 m 및 이것들간의 비률, 따라서 또 총자본 c+v에 대한 m의 비률 p'의 변동을 동반함이 없이는 일어날수 없다. 마찬가지로 v에 대한 m의 비률의 변화도 역시 바로 우에서 언급한 세가지 로동조건들중의 적어도 하나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는것도 명백하다.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것은 총자본의 운동과 그 가치증식에 대한 가변자본의 특수한 유기적관계이며 또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과의 구별이다. 불변자본은 가치형성이 고찰되는 한에서는 다만 그것이 가지고있는 가치때문에 중요할뿐이다. 여기서 1,500파운드라는 불변자본이 례컨대 톤당 1파운드의 철 1,500톤을 대표하건, 톤당 3파운드의 철 500톤을 대표하건 그것은 가치형성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다. 불변자본의 가치에 의하여 대표되는 현실적소재량은 가치형성과 리윤률

에 대하여는 전혀 관계없는것인데 리윤률은 불변자본의 가치 증감이 불변자본에 의하여 대표되는 소재적사용가치의 량에 대하여 어떠한 비률을 갖든간에 불변자본의 가치와는 반대방향으로 변동한다.

가변자본에 있어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가변자본이 가지고있는 가치 즉 가변자본에 대상화되여있는 로동이 아니라 가변자본에 의하여 운동시켜지며 그리고 가변자본으로 표현되고있지 않는 총로동의 단순한 지표로서의 그 가치인것이다. 이 총로동과, 가변자본 자체에 나타나있고 따라서 지불된 로동과의 차액 즉 총로동중 잉여가치를 형성하는 부분은 가변자본 자체속에 포함되고있는 로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더 커진다. 10시간로동일이 10실링=10마르크와 같다고 하자. 로임 즉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필요로동이 5시간=5실링이라면 잉여로동은 5시간이며 잉여가치는 5실링이다. 필요로동이 4시간=4실링이라면 잉여로동은 6시간이며 잉여가치는 6실링이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가치의 크기가 가변자본이 운동시키는 로동량의 지표가 아니고 오히려 이 지표의 척도자체가 변동한다면 이와 함께 잉여가치률은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반비례하여 변화된다.

이제는 상술한 리윤률의 방정식 $p'=m'\frac{v}{C}$를 있을수 있는 각이한 경우들에 적용하여보기로 하자. $m'\frac{v}{C}$의 개개의 요인의 치(値)를 순차로 변화시켜 이러한 변화가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하기로 하자. 그러면 각이한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들은 하나의 동일한 자본이 순차적으로 변화된 작용상태라고도 볼수 있으며 또는 각이한 산업부문들에나 각이

한 나라들에 동시에 나란히 존재하며 비교를 하기 위하여 들게 되는 각이한 자본들이라고도 볼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드는 몇개의 례들을 하나의 동일한 자본의 시간적으로 계기하는 상태들로 리해하기가 무리이거나 또는 실제로 불가능하게 보인다면 이러한 의의는 그 례들을 독립적인 자본들의 비교라고 보면 곧 없어진다.

이리하여 $m'\frac{v}{C}$라는 적(积)을 그 두 인수 m'와 $\frac{v}{C}$로 분해하여보자. 우선 m'를 불변치라고 하고 $\frac{v}{C}$의 있을수 있는 제 변동의 결과를 연구하자. 그 다음에는 분수 $\frac{v}{C}$를 불변치라고 가정하고 m'로 하여금 있을수 있는 제 변화를 다 겪도록 하자. 끝으로 모든 인수들이 변화한다고 하고 리윤률에 관한 법칙들이 도출될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보기로 하자.

I. m'는 불변이고 $\frac{v}{C}$는 가변인 경우

이 경우에는 몇개의 파생적인 경우가 포함되는데 이 경우를 위하여서는 일반적공식을 세울수 있다. 두 자본 C와 C_1이 있는데 그 가변적구성부분은 각각 v와 v_1이며 량자에 공통한 잉여가치률은 m', 리윤률은 p'와 p'_1이라면 다음과 같이 된다.

$$p'=m'\frac{v}{C};\ p'_1=m'\frac{v_1}{C_1}$$

이제 C와 C_1 그리고 v와 v_1의 비률을 정하고 례컨대 분수 $\frac{C_1}{C}$의 치를 E, 분수 $\frac{v_1}{v}$의 치를 e라고 한다면 $C_1=EC$,

$v_1=ev$로 된다. 이제 p'_1에 관한 상기 방정식에서 C_1과 v_1 대신에 여기서 얻은 치를 놓는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p'_1=m'\frac{ev}{EC}$$

그런데 상기 두 방정식을 비례식으로 전화시킴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또 하나의 공식을 끌어낼수 있다.

$$p':p'_1=m'\frac{v}{C}:m'\frac{v_1}{C_1}=\frac{v}{C}:\frac{v_1}{C_1}$$

분자와 분모를 동일한 수로 승하거나 제하여도 분수의 치는 동일하므로 $\frac{v}{C}$와 $\frac{v_1}{C_1}$을 백분비로 환산할수 있다. 즉 C와 C_1을 둘 다 100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frac{v}{C}=\frac{v}{100}$로, $\frac{v_1}{C_1}=\frac{v_1}{100}$로 되며 또 상기 비례식에서 분모를 버릴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된다.

$$p':p'_1=v:v_1$$

즉 동등한 잉여가치률로 기능하는 임의의 두 자본의 경우에는 리윤률들의 비는 각자의 총자본들에 대하여 백분비로 계산된 가변자본부분들의 비와 같다.

이 두 공식은 $\frac{v}{C}$의 변동의 모든 경우들을 포괄하고있다.

이러한 경우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기전에 또 하나 지적할것이 있다. C는 c와 v 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계이므로, 또 잉여가치률과 리윤률은 보통 백분비로 표현되기때문에 c+v의 합계를 역시 100과 동등하다고 하는것이, 즉 c와 v를 백분비로 표현하는것이 일반적으로 편리하다. 12,000의 불변자본과 3,000의 가변자본으로 구성된 15,000의 자본이 3,000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말하든가 또는 이 자본을 백분비로 환원하든가 하는것은 리윤량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같지 않으나 리윤률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같은것이다.

15,000C=12,000c+3,000v(+3,000m)

100C=80c+20v(+20m)

두 경우에 다 잉여가치률 m'는 100%이며 리윤률은 20%이다.

두 자본, 레컨대 상기의 자본과 다음과 같은 다른 하나의 자본과를 비교하여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12,000C=10,800c+1,200v(+1,200m)

100C=90c+10v(+10m)

여기에서 두 경우에 다 m'=100%, p'=10%이며 그리고 상기 자본과의 비교는 백분비의 형태에 있어서 훨씬 알기 쉽다.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자본에 일어나는 변화가 문제로 되는 경우라면 백분비의 형태는 드물게밖에는 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백분비의 형태는 이 변화들을 거의 언제나 말살하기때문이다. 어떤 자본이

80c+20v+20m

이라는 백분비의 형태로부터

90c+10v+10m

이라는 백분비의 형태로 이행하였다면 이 변화된 백분비구성 90c+10v가 생긴것이 v의 절대적감소의 결과인지 또는 c의 절대적증가의 결과인지 또는 량자의 결과인지 알수 없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수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변동의 경우들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여 이 변동이 일어났는가에 모든것이 귀착된다. 즉 80c+20v가 90c+10v로 된것은 레컨대 가변자본은 불변인데 불변자본이 증대한 결과로 12,000c+3,000v가 27,000c+3,000v(백분비로는 90c+10v)로 전화한때문인가 또는 불변자본은 불변인

데 가변자본이 감소된 결과로 $12,000c+1,333\frac{1}{3}v$(백분비로는 역시 90c+10v)로 이행한 결과로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였는가 또는 끝으로 두개의 피가수(被加数)가 다 변화하여 례컨대 13,500c+1,500v(백분비로는 역시 90c+10v)로 된때문인가 하는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경우를 순차로 고찰하여야 하며 따라서 편리한 백분비의 형태를 거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저 제2차적으로 응용하는수밖에 없을것이다.

1) m′와 C는 불변이고 v는 가변인 경우

v가 그 크기를 변동하는 경우에는 오직 C의 다른 구성부분인 불변자본 c가 v의 변화와 액수는 같으나 방향은 반대로 그 크기를 변동하는 결과로써만 C는 불변일수 있다. C가 시초에 80c+20v=100인데 후에 v가 10으로 감소된다면 c가 90으로 증대되는 조건에서만 C는 여전히 100일수 있다. 즉 90c+10v=100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v가 v±d로 즉 d만큼 증대되였거나 또는 감소된 v로 전화된다면 지금의 경우의 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c가 c∓d로 즉 변동하는 액수는 같으나 방향은 반대로 변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률 m′는 불변인데 가변자본 v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잉여가치량 m도 변동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m=m′v인데 m′v중의 하나의 인수 v가 다른 치를 주기때문이다.

우리 경우의 제 전제들로부터는 시초의 방정식

$$p'=m'\frac{v}{C}$$

이외에 v의 변동에 의하여 제2의 방정식

$$p'_1=m'\frac{v_1}{C}$$

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에서 v는 v_1로 변화하였으며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변화된 리윤률 p'_1이 발견될수 있다.

이 리윤률은 다음과 같은 해당 비례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p':p'_1=m'\frac{v}{C}:m'\frac{v_1}{C}=v:v_1$$

즉 잉여가치률과 총자본이 불변인 경우에 시초의 리윤률과 가변자본의 변화에 의하여 생긴 리윤률과의 비는 시초의 가변자본과 변동된 가변자본과의 비와 같다.

자본이 시초에 상술한바와 같이

Ⅰ. 15,000C=12,000c+3,000v(+3,000m)였었는데 이제는

Ⅱ. 15,000C=13,000c+2,000v(+2,000m)라면

두 경우에 다 C=15,000이며 m′=100%이며 Ⅰ의 리윤률 20%와 Ⅱ의 리윤률 $13\frac{1}{3}$% 와의 비는 Ⅰ의 가변자본 3,000과 Ⅱ의 가변자본 2,000과의 비와 같다. 즉 $20\%:13\frac{1}{3}\%=3,000:2,000$ 이다.

그런데 가변자본은 증대될수도 있고 감소될수도 있다. 우선 그것이 증대되는 경우의 례를 들어보자. 어떤 자본이 시초에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기능한다고 하자.

Ⅰ. 100c+20v+10m; C=120, m′=50%, $p'=8\frac{1}{3}\%$.

이제 가변자본이 30으로 증대된다면 총자본이 변함없이 그대로 120이기 위하여는 전제에 따라 불변자본이 100으로부터 90으로 감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50%라는 잉여가치률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생산된 잉여가치는 15로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Ⅱ. 90c+30v+15m; C=120, m′=50%, P′=12$\frac{1}{2}$%.

우선 로임은 불변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자. 그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의 기타 요인들 즉 로동일과 로동강도도 역시 여전히 불변이여야 한다. 따라서 v의 증대(20으로부터 30으로의)는 이전보다 로동자들이 $\frac{1}{2}$만큼 더 사용된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그리하여 총가치생산물도 역시 $\frac{1}{2}$만큼 즉 30으로부터 45로 증대되며 그것이 종전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frac{2}{3}$는 로임으로, $\frac{1}{3}$은 잉여가치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로동자수는 증가되여도 그와 동시에 불변자본 즉 생산수단의 가치는 100으로부터 90으로 감소되고있다. 여기서 볼수 있는것은 로동의 생산성의 저하가 불변자본의 동시적감소와 결부되여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가 경제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로동의 생산성의 저하, 따라서 사용로동자수의 증대를 쉽게 파악할수 있는 농업이나 채취공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적생산의 한계내에서와 그 기초우에서는—불변자본의 감소와 결부되여있는것이 아니라 그 증대와 결부되여있다. 상기 c의 감소가 단순한 가격저락에 의하여 초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개별적자본이 Ⅰ에서 Ⅱ로 이행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례외적인 사정하에서만이다. 그러나 두개의 독립적자본이 각이한 나라들에나 또는 농업이나 채취공업의 각이한 부문들에 투하된 경우에 있어서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보다 많은 로동자들이(따라서 보다 큰 가변자본

이) 사용되면서 보다 값이 낮은 또는 보다 빈약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작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로임이 불변이라는 전제를 버리고 가변자본이 20으로부터 30으로 증대된것은 로임이 $\frac{1}{2}$만큼 증가하였기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전혀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 동일한 수의 로동자—레컨대 20명의 로동자—가 량적으로 동일한 생산수단, 또는 조금밖에 감소되지 않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작업을 계속한다. 로동일이 불변이라면—레컨대 10시간이라면—총가치생산물도 역시 불변이다. 그것은 여전히 30이다. 그러나 이 30은 선대가변자본 30을 보상하는데 전부 사용된다. 잉여가치는 없어질것이다. 그런데 전제에 의하면 잉여가치률은 불변이고 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50%이다. 이것은 오직 로동일이 $\frac{1}{2}$만큼 연장되여 15시간으로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20명의 로동자가 15시간에 총가치 45를 생산할것이며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여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Ⅱ. $90c+30v+15m$; $C=120$, $m'=50\%$, $P'=12\frac{1}{2}\%$.

이 경우에 이 20명의 로동자는 Ⅰ의 경우에서보다 더 많은 로동수단 즉 도구, 기계 등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다만 원료나 보조재료의 량이 $\frac{1}{2}$만큼 증대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의 가격이 저락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전제하에서의 Ⅰ로부터 Ⅱ로의 이행은 개별적자본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극히 있을수 있는 일일것이다. 그리고 자본가

는 그의 불변자본의 가치감소의 결과로 입을수 있는 손실을 리윤의 증대로써 적어도 얼마간 보상할것이다.

이제는 가변자본은 증대되지 않고 감소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상술한 례를 전도시켜 Ⅱ를 시초자본으로 보고 Ⅱ로부터 Ⅰ로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Ⅱ. 90c+30v+15m이

Ⅰ. 100c+20v+10m으로 전화되는데 이러한 전치의 결과로 쌍방의 리윤률과 이것들의 호상관계를 규제하는 조건들은 조금도 변동되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v가 30으로부터 20으로 감소되는것은 불변자본은 증대되였는데 $\frac{1}{3}$만큼 적은 수의 로동자가 사용되였기때문이라면 여기서 보게 되는것은 현대산업의 정상적인 경우이다. 즉 로동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전보다 적은 로동자들이 이전보다 많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운동이 그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리윤률의 저하와 필연적으로 결부되고있다는것은 이 제3부의 제3편에서 밝혀질것이다.

그런데 v가 30으로부터 20으로 감소되는것은 로동자수는 종전과 같으나 보다 낮은 임금으로 사용되기때문이라면 로동일이 불변인 한 총가치생산물은 여전히 30v+15m=45일것이다. v는 20으로 감소하기때문에 잉여가치는 25로, 잉여가치률은 50%로부터 125%로 증대될것이나 이것은 우리의 전제와 반대될것이다. 우리의 경우의 조건들의 한계내에 머물러있기 위해서는 잉여가치는 50%의 비률로써는 도리여 10으로 저하되며 따라서 총가치생산물은 45로부터 30으로 저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로동일이 $\frac{1}{3}$만큼 단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 그렇게 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된다.

$$100c+20v+10;\ m'=50\%,\ p'=8\frac{1}{3}\%.$$

임금이 저하되는 조건하에서의 로동시간의 이러한 단축은 실제로는 있을수 없을것이라는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래도 좋다. 리윤률은 여러 가변수의 함수이다. 그리고 이 가변수들이 어떻게 리윤률에 작용하는가를 알려고 한다면 각 가변수의 개개의 영향을 순차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이러한 고립적영향이 동일한 자본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용허되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2) m'는 불변이고 v는 가변이며 C는 v의 변화에 의하여 변화하는 경우

이 경우는 상술한 경우와 다만 정도가 구별될뿐이다. c는 이 경우에는 v가 증대 또는 감소되는만큼 감소 또는 증대되지 않고 불변이다. 그러나 대공업과 농업의 오늘날의 제조건하에서는 가변자본은 총자본중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일 따름이며 그렇기때문에 총자본의 감소나 증대도 그것이 가변자본의 변화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역시 비교적 적은 것이다. 여기서 다시

Ⅰ. $100c+20v+10m;\ C=120,\ m'=50\%,\ p'=8\frac{1}{3}\%$이라는 자본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이 자본은 레컨대

Ⅱ. $100c+30v+15m;\ C=130,\ m'=50\%,\ p'=11\frac{7}{13}\%$로 변화될것이다. 가변자본이 감소되는 반대경우도 역시 Ⅱ로부터 Ⅰ로

의 역이행으로써 설명될것이다.

경제적 제 조건은 본질상 상술한 경우와 동일할것이므로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Ⅰ로부터 Ⅱ로의 이행은 로동의 생산성이 절반만큼 저하한다는것, 100c를 리용하기 위하여는 Ⅱ에서는 Ⅰ에서보다 절반만큼이나 더 많은 로동을 필요로 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경우는 농업에서 나타날수 있다(9).

상술한 경우에는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으로 전화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전화에 의하여 총자본은 불변이였으나 이 경우에는 가변부분이 증대하는 때에는 추가자본의 구속이 일어나며 가변자본이 감소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되였던 자본의 유리가 일어난다.

3) m′와 v는 불변이고 c는 가변, 따라서 C도 가변인 경우

이 경우에

$p'=m'\frac{v}{c}$라는 방정식은 $p'_1=m'\frac{v}{C_1}$로 변한다. 그리고 량측에 다 나타나는 인수를 지워버리면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나온다.

$$p'_1:p'=C:C_1$$

즉 잉여가치률이 동등하고 가변자본부분이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리윤률은 총자본에 반비례한다.

례컨대 다음과 같은 세개의 자본 또는 동일한 자본의 세

---

(9) 원고에는 여기에 《이러한 경우가 지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나중에 연구할것》이라고 적혀있다.

가지 각이한 상태가 있다고 하자.

Ⅰ. 80c+20v+20m; C=100, m′=100%, p′=20%

Ⅱ. 100c+20v+20m; C=120, m′=100%, p′=$16\frac{2}{3}$%

Ⅲ. 60c+20v+20m; C=80, m′=100%, p′=25%

그러면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된다.

20%:$16\frac{2}{3}$%=120:100 및 20%:25%=80:100.

m′가 불변인 조건하에서 $\frac{v}{C}$의 변동들에 관하여 앞에서 주어진 일반적공식은

$p'_1=m'\frac{ev}{EC}$이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p'_1=m'\frac{v}{EC}$로 된다. 왜냐하면 v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인수 $e=\frac{v_1}{v}$는 여기에서는 1로 되기때문이다.

m′v=m 즉 잉여가치량이며 또 m′와 v는 다 불변이기때문에 m도 C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잉여가치량은 이 변동 전이나 후나 동일하다.

c가 령으로 감소되면 p′=m′로 될것이다. 즉 리윤률은 잉여가치률과 같을것이다.

c의 변동이 일어나는것은 불변자본의 소재적요소들의 단순한 가치변동으로 인해서이든가 또는 총자본의 기술적구성의 변화로 인해서 즉 해당 산업부문에서의 로동의 생산성의 변화로 인해서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산업과 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사회적로동생산성의 증대에 의하여 Ⅲ으로부터 Ⅰ로의 그리고 Ⅰ로부터 Ⅱ로의 순서(상기의 례에서)의 이행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20을 지불받고 40이라는 가치를 생산하는 로동량이 처음에는 60의 가치를 가진 로동

수단을 사용할것이다. 생산성이 증대되고 가치가 불변인 조건하에서는 사용되는 로동수단은 우선 80으로, 그 다음에는 100으로 증가할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순서는 생산성의 저하를 조건으로 할것이다. 동일 로동량으로 움직이게 되는 생산수단이 이전보다 적어질것이며 생산은 축소될것이다. 이것은 농업, 광업 등등에서 일어날수 있다.

불변자본의 절약은 한편으로는 리윤률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을 유리시키며 따라서 자본가에게는 중요한것이다. 이 점과 또한 불변자본의 요소들 특히 원료의 가격변동의 영향에 관하여는 나중에① 더 자세히 연구할것이다.

여기에서도 다시 분명한것은 불변자본의 변동은 그것이 c의 소재적구성부분들의 증감에 의하여 초래되였는가 또는 그것들의 단순한 가치변동에 의하여 초래되였는가에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리윤률에 영향을 준다는것이다.

4) m′는 불변이고 v, c 및 C 가 모두 가변인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변화된 리윤률에 관한 상기 일반적공식

$$p'_1=m'\frac{ev}{EC}$$

가 기준으로 된다. 잉여가치률이 불변인 경우에는 이 공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것이 얻어진다.

a) E가 e보다 더 큰 경우 즉 가변자본보다 총자본이 더 큰 비률로써 증가하도록 불변자본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리윤률은 저하된다. 80c+20v+20m이라는 한 자본이 170c+30v+30m

① 본권 91~153페지를 보라.—편집자

이라는 구성으로 이행한다면 m'는 의연히 100%지만 $\frac{v}{C}$는 v도 C도 증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frac{20}{100}$으로부터 $\frac{30}{200}$으로 저하되며 이에 따라서 리윤률은 20%로부터 15%로 저하된다.

b) 리윤률이 의연히 변함없는것은 e=E인 경우, 즉 분수 $\frac{v}{C}$가 외견상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한 치를 유지하는 경우, 즉 분자와 분모가 동일한 수로 승제되는 경우뿐이다. 80c+20v+20m과 160c+40v+40m은 20%라는 동일한 리윤률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명백하다. 그것은 m'는 의연히 100%이며 $\frac{v}{C}=\frac{20}{100}=\frac{40}{200}$이 두 례에서 다 동일한 치를 표시하기때문이다.

C) e가 E보다 큰 경우, 즉 가변자본이 총자본보다 더 큰 비률로써 증가하는 경우에는 리윤률은 높아진다. 80c+20v+20m이 120c+40v+40m으로 된다면 리윤률은 20%로부터 25%로 높아진다. 그것은 m'는 불변이지만 $\frac{v}{C}=\frac{20}{100}$은 $\frac{40}{160}$으로 즉 $\frac{1}{5}$로부터 $\frac{1}{4}$로 증대되였기때문이다.

v와 C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이 량적변동을 즉 v와 C가 어느 정도까지는 동일한 비률로 변동하며 그리하여 이 한계까지는 $\frac{v}{C}$는 의연히 불변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이 한계를 넘으면 량자중 하나만이 변동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잡한 경우를 상술한 보다 간단한 경우들중의 하나로 환원한것이다.

례컨대 80c+20v+20m이 100c+30v+30m으로 변한다면 이 변동에서는 c에 대한 v의 비률, 따라서 또 C에 대한 v의 비률

은 100c+25v+25m에 이르기까지는 의연히 불변일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기까지는 리윤률도 의연히 그대로이다. 이리하여 이제는 100c+25v+25m을 출발점으로 삼을수 있다. 우리는 v가 5만큼 증대되여 30v로 되였고 그 결과 C가 125로부터 130으로 증대하였다는것을 알게 되며 따라서 v만이 변동하고 이로 말미암아 C가 변동하는 제2의 경우를 보게 된다. 리윤률은 시초에 20%였으나 이 5v가 첨가됨으로써 잉여가치률이 같은 조건하에서 $23\frac{1}{13}$%로 높아진다.

이와 마찬가지의 보다 간단한 경우로의 환원은 v와 C가 반대방향으로 크기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일어날수 있을것이다. 례컨대 다시 80c+20v+20m으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110c+10v+10m 형태로 이행시킨다면 40c+10v+10m까지의 변화에서는 리윤률은 처음과 다름없이 20%일것이다. 이 중간형태에 70c가 첨가됨으로써 리윤률은 $8\frac{1}{3}$%까지 저락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경우를 역시 오직 하나의 가변량 즉 c만이 변동하는 경우로 환원한것이다.

이리하여 v, c 및 C의 동시적변동은 아무런 새로운 관점도 주지 않으며 결국은 언제나 단 하나의 요인만이 가변인 경우에 귀착된다.

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미 다 검토된 셈이다. 즉 v와 C가 수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크기이지만 그것들의 소재적요소들은 가치변동을 겪었으며 따라서 v는 운동시켜지는 로동의 변화된 량을, c는 운동시켜지는 생산수단의 변화된 량을 표시하는 그러한 경우이다.

80c+20v+20m에서 20v는 시초에는 1일 10시간로동을 하는

20명의 로동자의 임금을 표시하였다고 하자. 매 로동자의 임금이 1로부터 $1\frac{1}{4}$로 올랐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20v로서는 20명이 아니라 16명의 로동자에게밖에 지불할수 없다. 그런데 20명이 200로동시간에 40이라는 가치를 생산하였다면 16명은 1일 10시간 즉 도합 160로동시간에는 32라는 가치밖에 생산하지 못할것이다. 로임으로 20v를 공제하면 32중에서 잉여가치로는 겨우 12가 남게 된다. 잉여가치률은 100%로부터 60%로 저락할것이다. 그런데 전제에 의하면 잉여가치률은 불변이여야 하므로 로동일은 $\frac{1}{4}$만큼 즉 10시간으로부터 $12\frac{1}{2}$ 시간으로 연장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20명의 로동자가 1일 10시간에 즉 200로동시간에 40이라는 가치를 생산한다면 16명의 로동자는 1일 $12\frac{1}{2}$시간에 즉 200로동시간에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며 80c+20v라는 자본은 여전히 20이라는 잉여가치를 생산할것이다.

이와 반대로 로임이 저하되여 20v로 30명의 로동자의 로임이 지불된다면 m'는 로동일이 10시간으로부터 $6\frac{2}{3}$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에만 의연히 불변일수 있다. $20\times10=30\times6\frac{2}{3}=$ 200로동시간이다.

이러한 반대되는 가정들의 경우에 c가 화폐로서의 가치표현으로서는 의연히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제 관계에 상응하여 변화된 생산수단의 분량을 어느 정도까지 표시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본질상 이미 우에서 고찰되였다. 이런 경우는 순수한 형태로서는 극히 례외적으로만 있을수 있을것이다.

c의 요소들의 가치변동이 이 요소들의 량을 증감하나 c의 가치총액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러한 가치변동은 v의 크기의 변동을 동반하지 않는 한 리윤률에도 잉여가치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방정식에서 v, c 및 C의 변동의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검토하였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잉여가치률이 불변인 조건하에서도 리윤률은 저락하거나 불변이거나 또는 증대할수 있다. 왜냐하면 c 또는 C에 대한 v의 비률에 있어서의 극히 사소한 변화라도 리윤률을 변동시킬만하기때문이다.

그리고 또 v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m′의 불변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한계가 나타난다는것이 분명히 되였다. c의 온갖 일방적변동도 역시 v가 그 이상 더 불변인 채로 있을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frac{v}{C}$의 있을수 있는 모든 변동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m′도 역시 가변적으로 되지 않을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것은 명백하다. m′가 변동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 연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의 방정식에서의 각이한 가변량들의 이러한 호상작용이 더욱 명백히 나타날것이다.

Ⅱ. m′가 가변인 경우

방정식

$$p'=m'\frac{v}{C}$$

를 다른 방정식

$$p'_1=m'_1\frac{v_1}{C_1}$$

—여기에서 p'_1, m'_1, v_1및 C_1는 p', m', v 및 C의 치가 변화된것을 의미한다—로 이행시킨다면 $\frac{v}{C}$가 의연히 불변이거나 그것 역시 변화하거나에 관계없이 잉여가치률이 각이한 경우의 리윤률의 일반적공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p'_1=m'\frac{v}{C}:m'_1\frac{v_1}{C_1}$$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p'_1=\frac{m'_1}{m}\times\frac{v'_1}{v}\times\frac{C'_1}{C}\times p'$$

1) m'는 가변이고 $\frac{v}{C}$는 불변인 경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방정식이 나온다.

$$p'=m'\frac{v}{C};\ p'_1=m'_1\frac{v}{C}$$

이 두 방정식에서 $\frac{v}{C}$는 같은 치이다. 그렇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나온다.

$$p':p'_1=m':m'_1$$

같은 구성을 가진 두 자본의 리윤률의 비는 그 두 자본의 잉여가치률의 비와 같다. 분수 $\frac{v}{C}$에서 중요한것은 v와 C의 절대량이 아니라 오직 량자간의 비률이기때문에 이것은 그 절대량이 어떠하든간에 같은 구성을 가진 모든 자본들에 마찬가지로 타당한것이다.

80c+20v+20m; C=100, m′=100%, p′=20%

160c+40v+20m; C=200, m′=50%, p′=10%

100%:50%=20%:10%

v와 C의 절대량이 두 경우에 다 같다면 리윤률들의 비는 잉여가치량들의 비와 같다. 즉

$$p' : p'_1 = m'v : m'_1 v = m : m_1$$

이며 례컨대 다음과 같이 된다.

80c+20v+20m; m′=100%, p′=20%

80c+20v+10m; m′=50%, p′=10%

20%:10%=100×20:50×20=20m:10m

그러면 같은 절대적구성 또는 백분비구성을 가진 자본들의 잉여가치률이 다른것은 로임이나 로동일의 길이나 또는 로동강도가 다른 경우에만 있을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Ⅰ. 80c+20v+10m; m′=50%, p′=10%

Ⅱ. 80c+20v+20m; m′=100%, p′=20%

Ⅲ. 80c+20v+40m; m′=200%, p′=40%

의 세 경우에 생산된 총가치생산물은 Ⅰ에서는 30(20v+10m), Ⅱ에서는 40, Ⅲ에서는 60이다. 이것은 세가지 경우에 일어날수 있다.

첫째로, 로임이 각이하며 따라서 20v가 매개 경우에 각이한 로동자수를 나타내는 경우. Ⅰ에서는 15명의 로동자가 $1\frac{1}{3}$파운드의 임금으로 10시간 고용되여 30파운드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중 20파운드는 로임을 보상하며 10파운드는 잉여가치로 남는다고 하자. 임금이 1파운드로 인하되면 20명의 로동자가 10시간 고용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40파운드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중 20파운드는 로임에 상당하며 20파운

드는 잉여가치이다. 임금이 더 인하되여 $\frac{2}{3}$파운드로 된다면 30명의 로동자가 10시간 고용되여 60파운드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중 임금에 상당한 20파운드를 공제하고도 40파운드가 잉여가치로 남는다.

이 경우 즉 자본의 백분비구성이 불변이고 로동일이 불변이고 로동강도가 불변이며 잉여가치률의 변동이 로임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리카도의 가정이 들어맞는 유일한 경우이다.

《리윤은 로임이 낮거나 또는 높은데 **정확히 비례하여** 높거나 또는 낮게 될것이다》(머칼러 편찬 《D. 리카도저작집》, 1852년 《정치경제학원리》, 제1장 제3절 18페지)

또는 **둘째로**, 로동강도가 각이한 경우. 이 경우에는 례컨대 20명의 로동자가 동일한 로동수단으로써 매일 10로동시간에 일정한 상품을 Ⅰ에서는 30개, Ⅱ에서는 40개, Ⅲ에서는 60개를 생산하는데 매개 상품은 그것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이외에 1파운드의 새로운 가치를 표시한다. 매개 경우에 20개=20파운드는 로임을 보상하기때문에 잉여가치로 남는것은 Ⅰ에서는 10개=10파운드, Ⅱ에서는 20개=20파운드, Ⅲ에서는 40개=40파운드이다.

또는 **셋째로**, 로동일의 길이가 각이한 경우. 같은 로동강도로써 20명의 로동자가 Ⅰ에서는 매일 9시간, Ⅱ에서는 12시간, Ⅲ에서는 18시간 로동한다면 그것들의 총생산물의 비 30:40:60은 9:12:18의 비와 같다. 또 로임은 어느 경우에나 20이므로 역시 각각 10, 20 및 40이 잉여가치로 남는다.

이와 같이 잉여가치률의 높이에는, 따라서 $\frac{v}{c}$가 불변인

경우에는 리윤률에도 로임의 상승 또는 저하는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며 로동강도의 제고 또는 저하와 로동일의 연장 또는 단축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 m′와 v는 가변이고 C는 불변인 경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적용된다.

$$p' : p'_1 = m' \frac{v}{C} : m'_1 \frac{v_1}{C} = m'v : m'_1 v_1 = m : m_1$$

두 리윤률의 비는 해당 잉여가치량들의 비와 같다.

가변자본이 변하지 않는데 잉여가치률이 변한다는것은 가치생산물의 크기와 그 분배가 변한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v와 m′가 동시에 변동한다는것도 언제나 가치생산물의 분배의 변화를 포함하는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치생산물의 크기의 변동을 포함하는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세개의 경우가 가능하다.

a) v와 m′가 반대방향으로, 그러나 같은 크기만큼 변동한다. 례컨대

80c+20v+10m; m′= 50%, p′=10%

90c+10v+20m; m′=200%, p′=20%

이 두 경우에 가치생산물은 다 같으며 따라서 수행된 로동량도 같다. 즉 20v+10m=10v+20m=30이다. 차이는 다만 제1의 경우에는 20이 로임으로 지불되고 10이 잉여가치로 남는데 제2의 경우에는 임금이 다만 10이여서 잉여가치가 20이라는것뿐이다. 이것은 v와 m′가 동시에 변동하여도 로동자수, 로동강도, 로동일의 길이가 의연히 그대로인 유일한 경우이다.

b) m′와 v는 역시 반대방향으로 변동하지만 그러나 량자

의 변동의 크기는 같지 않다. 이 경우에는 v나 m′의 어느 편의 변동이 더 크다.

Ⅰ. 80c+20v+20m; m′=100%, p′=20%

Ⅱ. 72c+28v+20m; m′=$71\frac{3}{7}$%, p′=20%

Ⅲ. 84c+16v+20m; m′=125%, p′=20%

Ⅰ에서는 가치생산물 40이 20v로 지불되고 Ⅱ에서는 가치생산물 48이 28v로 지불되고 Ⅲ에서는 가치생산물 36이 16v로 지불된다. 가치생산물이나 로임이나 다 같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가치생산물의 변화는 수행된 로동량의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로동자수, 로동시간, 로동강도중 어느 하나의 변화 또는 이 세가지중 두개 이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C) m′와 v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 경우에는 일방이 타방의 작용을 강화한다.

90c+10v+10m; m′=100%, p′=10%

80c+20v+30m; m′=150%, p′=30%

92c+ 8v+ 6m; m′= 75%, p′= 6%

이 경우에도 세개의 가치생산물은 각이하다. 즉 20과 50과 14이다. 그리고 매개 경우의 로동량의 크기의 이러한 차이는 역시 로동자수나 로동시간이나 로동강도의 차이에, 또는 이러한 요인들중 몇개의 요인 또는 모든 요인들의 차이에 귀착된다.

3) m′도 v도 C 도 가변인 경우

이 경우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 않으며 m′가 가변인 경우인 Ⅱ에서 주어진 일반적공식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와 같이 잉여가치률의 크기의 변동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나온다.

1) $\frac{v}{C}$가 의연히 불변인 경우에는 p′는 m′와 같은 비률로 증감한다.

80c+20v+20m; m′=100%, p′=20%

80c+20v+10m; m′=50%, p′=10%

100%:50%=20%:10%.

2) $\frac{v}{C}$가 m′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즉 m′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m′가 감소하면 감소하는 경우에는 p′는 m′보다 큰 비률로 증감한다.

80c+20v+10m; m′=50%, p′=10%

70c+30v+20m; m′=$66\frac{2}{3}$%, p′=20%

50%:$66\frac{2}{3}$%<10%:20%.

3) $\frac{v}{C}$가 m′와 반대방향으로, 그러나 m′의 변동보다 작은 비률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p′는 m′보다도 작은 비률로 증감한다.

80c+20v+10m; m′=50%, p′=10%

90c+10v+15m; m′=150%, p′=15%

50%:150>10%:15%.

4) $\frac{v}{C}$가 m′와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m′의 변동보다도 더 큰 비률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p′는 m′가 감소하여도 증대하며 또는 m′가 증대하여도 감소한다.

80c+20v+20m; m′=100%, p′=20%

90c+10v+15m; m′=150%, p′=15%

m′는 100%로부터 150%로 증대하였으며 p′는 20%로부터 15%로 감소하였다.

5) 끝으로 $\frac{v}{C}$가 m′와 반대방향으로, 그러나 m′와 마침 동일한 비률로 그 크기를 변동하는 경우에는 m′가 증감하여도 p′는 의연히 불변이다.

이 최후의 경우만은 좀 더 론할 필요가 있다. 우에서 $\frac{v}{C}$가 변동하는 경우들에 동일한 잉여가치률이 극히 다양한 리윤률로 표현될수 있다는것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동일한 리윤률의 기초에 극히 각이한 잉여가치률이 놓여있을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m′가 불변인 경우에는 C에 대한 v의 비률의 어떠한 변동도 리윤률의 차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는데 m′의 크기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리윤률이 같기 위해서는 m′의 변동에 정확히 상응할만큼 $\frac{v}{C}$의 크기가 반대방향으로 변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일은 동일한 자본에 있어서는 또는 동일한 나라에서의 두 자본에 있어서는 극히 례외적으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례컨대 다음과 같은 자본을 들어보자.

80c+20v+20m; C=100, m′=100%, p′=20%

그리고 로임이 저하되여 동일한 로동자수를 20v로써가 아니라 이제는 16v로써 얻을수 있게 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한 4v가 유리되여 다음과 같이 된다.

80c+16v+24m; C=96, m′=150%, p′=25%

이제 종전과 같이 p'가 20%로 되기 위해서는 총자본은 120으로, 따라서 불변자본은 104로 증대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104c+16v+24m; C=120, m'=150%, p'=20%.

이것이 가능한것은 오직 임금의 저하와 동시에 로동의 생산성에 변화가 일어나 그때문에 자본구성의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나 또는 불변자본의 화폐가치가 80으로부터 104로 증대하는 경우, 요컨대 오직 례외적으로 나타나는, 제 조건의 우연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경우만일것이다. 사실상 m'의 변동이 동시에 v의 변동, 따라서 또 $\frac{v}{c}$의 변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완전히 한정된 사정하에서만 생각할수 있다. 즉 고정자본과 로동만이 사용되고 로동대상은 천연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산업부문들에서만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리윤률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사태는 다르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리윤률은 실제로 대개 각이한 잉여가치률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다섯개의 모든 경우들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리윤률의 증대는 잉여가치률의 감소 또는 증대에 상응할수 있으며 리윤률의 감소는 잉여가치률의 증대 또는 감소에 상응할수 있으며 리윤률의 불변은 잉여가치률의 증대 또는 감소에 상응할수 있다. 리윤률의 증대, 감소 또는 불변이 또한 잉여가치률의 불변에 상응할수 있다는것은 Ⅰ절에서 보았다.

따라서 리윤률은 두개의 주요요인인 잉여가치률과 자본의 가치구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두 요인의 작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수 있는데, 이에 있어서 자본의 구성은 백분률로 표시할수 있다. 왜냐하면 두 자본부분중에서 어

느 부분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가 하는것은 여기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기때문이다.

두개의 자본의 리윤률 또는 련속적으로 나타나는 두개의 각이한 상태에 있는 동일한 자본의 리윤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같다.**

1) 자본의 백분비구성이 같으며 또 잉여가치률도 같은 경우.

2) 백분비구성이 같지 않고 잉여가치률도 다르고 잉여가치률과 백분비로 계산된 가변자본부분과의 적(m′와 v와의 적) 즉 총자본에 대하여 백분비로 계산된 잉여가치**량**(m=m′v)이 같은 경우. 바꾸어말하면 두 경우에 다 m′와 v라는 두 요인이 서로 반비례하는 경우.

리윤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같지 않다.**

1) 자본의 백분비구성이 같고 잉여가치률이 같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리윤률들의 비는 잉여가치률들의 비와 같다.

2) 잉여가치률이 같으며 백분비구성이 같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리윤률들의 비는 가변자본부분들의 비와 같다.

3) 잉여가치률이 같지 않으며 백분비구성도 같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리윤률들의 비는 m′와 v와의 적들의 비 즉 총자본에 대하여 백분비로 계산된 잉여가치량들의 비와 같다.(10)

---

(10) 원고에는 잉여가치률과 리윤률간의 차 (m′ — p′)에 관한 극히 상세한 계산들이 아직도 더 있는데 이 차에는 여러가지 흥미있는 특징들이 있으며 또 이 운동은 두 률이 서로 멀어지거나 서로 접근하는 여러가지 경우들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운동은 곡선으로 표시할수도 있다. 내가 이 재료의 수록을 단념한것은 그것이 본권의 당면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때문이며 또 여기에서는 이 점을 더 구명하고저 하는 독자들에게 단순히 이렇다는것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것만으로써도 충분하기때문이다.—F. 엥겔스

제 4 장

회전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

{회전이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또 리윤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2부에서 고찰되였다. 이것을 간단히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회전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되기때문에 전체 자본이 동시에 생산에 사용될수는 없다. 따라서 자본의 일부는 화폐자본의 형태로든 재고원료의 형태로든 완성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자본의 형태로든 또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형태로든 부단히 유휴상태에 있다. 적극적인 생산 즉 잉여가치의 생산과 취득을 위하여 작용하는 자본은 언제나 이 부분만큼 감소되며 생산되고 취득되는 잉여가치는 언제나 같은 비률로 감소된다. 회전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유휴상태에 있는 자본부분은 전체 자본에 비하여 더욱 작아지며 따라서 또 기타 조건들이 동등한 경우에는 취득되는 잉여가치는 더욱 커진다.

이미 제2부에서 상세히 론한바와 같이 회전기간 또는 그 두 부분인 생산기간과 류통기간중의 어느 일방의 단축은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량을 증대시킨다[46]. 그러나 리윤률이란 다만 어떤 잉여가치의 생산에 사용되는 총자본에 대한 그 잉여가치량의 비률을 표시할따름이므로 이상과 같은 단축은 모

두다 리윤률을 증대시킨다는것이 명백하다. 앞에서, 제2부 제2편에서 잉여가치에 관하여 론술한것은 리윤과 리윤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여기에서 중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몇개의 주요한 요점들만을 강조하려 한다.

생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은 로동생산성을 높이는것인데 이것은 보통 산업의 진보라고 불리운다. 만일 이로 말미암아 동시에 값비싼 기계 등등의 설치로 자본의 총지출이 현저히 강화되지 않는다면 따라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 리윤률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리윤률은 상승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야금업과 화학공업의 최신진보들 중 많은것은 확실히 그러하다. 새로 발견된 벳서머, 지멘스, 질크라이스트—토마스 등의 제철 및 제강 법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종전에 매우 오래 끌던 과정들을 최소한도까지 단축한다. 콜타르로부터의 알리자린, 즉 꼭두선이염료의 제조는 종전에 수년을 요하였던 동일한 결과를 수주일에, 그것도 이미 이전부터 콜타르염료의 제조에 사용되고있던 공장시설로써 가져온다. 꼭두선이의 성장에는 1년이 필요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염료를 취하기까지는 더 몇해동안이나 뿌리를 성숙시켜야 했던것이다.

류통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은 교통의 개량이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최근 50년간은 지난 세기 후반기의 산업혁명과 비할수 있는 혁명을 수행하였다. 륙상에서는 쇄석을 깐 도로가 철도에 의하여, 해상에서는 느리고 불규칙적인 범선이 빠르고 규칙적인 기선항로에 의하여 차요한 지위로 밀려났다. 그리고 전 지구는 전신선으로 둘러싸였다. 수에즈운하는 비로소 참으로 동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로의 기선교통을 위하여 열리였다. 동아시아로 상품을 수송하는

류통기간은 1847년에는 아직도 적어도 12개월을 요하였었는데(제2부 235페지[47]를 보라) 이제는 약 12주로 단축될수 있게 되였다. 1825~1857년기간의 2대 공황책원지였던 미국과 인도는 이 교통수단의 변혁의 결과로 구라파의 산업국가들에 70~90%만큼 접근하게 되였던것이며 이리하여 그들의 폭발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던것이다. 전 세계 상업의 회전기간도 동일한 정도로 단축되였으며 이에 참가한 자본의 활동능력은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제고되였다. 이것이 리윤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총자본의 회전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을 순수한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두 자본에 대하여 기타의 모든 조건들은 같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잉여가치률과 로동일 이외에 특히 자본의 백분비구성도 같다고 가정하자. 이제 80c+20v=100C라는 구성을 가지고 100%의 잉여가치률로 1년에 2회전하는 자본 A를 들어보자. 그러면 년생산물은

160c+40v+40m이다. 그러나 리윤률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이 40m은 회전한 자본가치 200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선대자본가치 100에 대하여 계산되며 그리하여 p′=40%로 된다.

다음에 이 자본을, 구성은 B=160c+40v=200C이고 잉여가치률은 역시 100%이나 1년에 1회전만 하는 자본 B와 비교하여보자. 그러면 년생산물은 A와 같이

160c+40v+40m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40m은 선대자본 200에 대하여 계산되여야 하며 그때문에 리윤률은 겨우 20% 즉 A의 리윤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같은 백분비구성을 가진 두 자본에 있어서 잉여가치률이 같고 로동일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본의 리윤률은 두 자본의 회전기간에 반비례한다. 비교되는 두 경우에 구성이나 잉여가치률이나 로동일 또는ㅅ로임이나 어느 하나가 같지 않다면 물론 그로 말미암아 리윤률의 가일층의 차이가 생기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회전과는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 이미 제3장에서 론술되였다.

.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또 리윤의 생산에 미치는 회전기간의 단축의 직접적영향은 그로 하여 가변자본부분의 활동효과가 제고된다는데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제2부 제16장 《가변자본의 회전》을 보면 될것이다. 거기에서 명백해진것은 년 10회전하는 500의 가변자본이 이 기간에 취득하는 잉여가치량은 같은 잉여가치률과 같은 로임으로 1년에 1회밖에 회전하지 않는 5,000의 가변자본이 취득하는 잉여가치량과 같다는것이였다.

10,000의 고정자본(그 년마멸분을 10%=1,000으로 한다.)과 500의 류동불변자본과 500의 가변자본으로써 구성되는 자본 Ⅰ을 들어보자. 100%의 잉여가치률로 가변자본은 1년에 10회 회전한다고 하자. 간단히 하기 위하여 이하의 모든 례에서는 류동불변자본은 가변자본과 동일한 시간에 회전한다고—실제로도 거의 대개 그러할것이지만—가정하자. 그러면 그러한 1회전기간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100c(\text{마멸분})+500c+500v+500m=1,600$$

그리고 10회전에서의 년총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1,000c(\text{마멸분})+5,000c+5,000v+5,000m=16,000,$$

$$C=11,000,\ m=5,000,\ p'=\frac{5,000}{11,000}=45\frac{5}{11}\ \%$$

다음에 자본 Ⅱ를 들어보자. 그 고정자본은 9,000, 그

년마멸분은 1,000, 류동불변자본은 1,000, 가변자본은 1,000, 잉여가치률은 100%, 가변자본의 년회전수는 5회라고 하자. 그러면 가변자본의 각 1회전기간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200c(\text{마멸분})+1,000c+1,000v+1,000m=3,200,$$

5회전의 년총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1,000c(\text{마멸분})+5,000c+5,000v+5,000m=16,000,$$

$$C=11,000,\ m=5,000,\ p'=\frac{5,000}{11,000}=45\frac{5}{11}\%.$$

그다음에 또 자본 Ⅲ을 들어보자. 그 고정자본은 전혀 없으나 그 대신 류동불변자본은 6,000이며 가변자본은 5,000이라고 하자. 이 자본이 100%의 잉여가치률로 1년에 1회전한다고 하자. 그러면 년총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6,000c+5,000v+5,000m=16,000,$$

$$C=11,000,\ m=5,000,\ p'=\frac{5,000}{11,000}=45\frac{5}{11}\%.$$

따라서 세 경우에 모두 년잉여가치량은 동일하게 5,000이며 세 경우에 모두 총자본도 역시 동일하게 11,000이므로 리윤률도 동일하게 $45\frac{5}{11}\%$이다.

그런데 상기 자본 Ⅰ의 경우에 가변부분의 년회전수가 10회가 아니라 다만 5회라고 한다면 사태는 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1회전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200c(\text{마멸분})+500c+500v+500m=1,700.$$

또는 년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1,000c(\text{마멸분})+2,500c+2,500v+2,500m=8,500,$$

$$c=11,000,\ m=2,500,\ p'=\frac{2,500}{11,000}=22\frac{8}{11}\%.$$

리윤률은 절반으로 저하되였는데 그것은 회전기간이 2배로 되였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1년간에 취득되는 잉여가치량은 **가변**자본의 1회전기간에 취득되는 잉여가치량에 가변자본의 년회전수를 승한것과 같다. 1년간에 취득되는 잉여가치 또는 리윤을 M이라고 하고 1회전기간에 취득하는 잉여가치를 m이라고 하고 가변자본의 년회전수를 n이라고 한다면 M=mn이며 년간잉여가치률은 M′=m′n이다. 이것은 제2부 제16장 제1절에서 이미 서술되였다[48].

두말할것도 없이 리윤률의 공식 $p'=m'\frac{v}{C}=m'\frac{v}{c+v}$가 옳바른것은 분자의 v가 분모의 v와 동일한 경우뿐이다. 분모에서 v는 총자본중 평균적으로 가변자본으로서 로임에 사용된 부분 전체이다. 분자의 v는 다만 그것이 어떤 분량의 잉여가치 m을 생산하고 취득하였다는것에 의하여 규정되여있을따름이며 v에 대한 이 m의 비률 $\frac{m}{v}$이 잉여가치률 m′이다. 오직 이러한 길을 거쳐서만 방정식 $p'=\frac{m}{c+v}$은 다른 방정식 $p'=m'\frac{v}{c+v}$로 전화한다. 이제 분자의 v는 더 자세히 규정되여 분모의 v 즉 자본 C의 총가변부분과 같아야 한다는것으로 된다. 바꾸어말하면 방정식 $p'=\frac{m}{C}$을 방정식 $p'=m'\frac{v}{c+v}$로 전화시켜도 틀리지 않는것은 오직 m이 가변자본의 1회전기간에 생산된 잉여가치를 의미하는 경우뿐이다. m이 이 잉여가치의 일부분밖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m=m′v는 옳은것이지만 그러나 이 v는 이 경우에는 C=c+v중의 v보다 적은것이다. 왜냐하면 가변자본총액보다 적은 액이 로임에 투하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m이 v의 1회전으로부터 나오는 잉여가치보다 많은것을 포함하고있다면 이 v의 일부 또는 전부가 두번 즉 우선 제1회전에서, 다음에는 제2회전에서 또는 제2회전과 그 다음 회전들에서 기능한다. 따라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지불된 로임의 총액인 v는 c+v중의 v보다 더 큰것이며 따라서 계산은 부정확한것으로 된다.

년리윤률의 공식이 완전히 정확한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잉여가치률 대신에 잉여가치의 년률을, 즉 m′대신에 M′ 또는 m′n을 놓아야 한다. 바꾸어말하면 m′ 즉 잉여가치률에—또는 결국 동일한것으로 되지만 C에 포함되여있는 가변자본부분 v에—n 즉 이 가변자본의 년간회전수를 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p'=m'n\frac{v}{C}$가 얻어지며 이것이 년리윤률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으로 된다.

그러나 한 기업에 가변자본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가 자신도 모른다. 이미 제2부 제8장에서 본바와 같이 또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자본가에게 있어서 자기의 자본에서의 유일한 본질적구별로서 느껴지는것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과의 구별이다. 류동자본중 화폐형태로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부분은 은행에 예금하지 않은 한 자기의 금고에 두는데 그 금고로부터 자본가는 로임을 위한 화폐를 꺼내며 또 그 동일한 금고로부터 원료나 보조재료를 위한 화폐도 꺼내며 이 량자를 동일한 현금분개장의 대변에 기장한다. 그리고 그가 비록 지불된 로임에 대하여 특별분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 분개는 년말에 가서는 로임으로 지불된 총액 즉 vn을 표시할것이고 가변자본 v 그 자체를 표시하지는 않을것이다. 이 v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본가는 특별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에 이 계산의 한 례를 들기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 제1부 209/201페지[49]에서 말한 10,000개의 물방추를 가진 면방적공장을 례로 들어보자. 그리고 이 공장의 1871년 4월의 어느 1주간에 관한 통계자료가 온 1년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기계에 포함되고있는 고정자본은 10,000파운드였다. 류동자본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2,500파운드였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상당히 높게 어림잡은 수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신용조작 따라서 타인자본의 일상적인 또는 일시적인 리용은 전혀 없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이 어림잡음은 시인될수 있는것이다. 주간생산물은 그 가치로 보면 기계의 마멸분 20파운드, 선대된 류동불변자본 358파운드(건물임차료 6파운드, 면화 342파운드, 석탄, 가스, 기름 10파운드), 로임에 투하된 가변자본 52파운드, 잉여가치 80파운드로써 구성되여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20c(\text{마멸분})+358c+52v+80m=510.$$

따라서 매주 선대된 류동자본은 358c+52v=410이였으며 그 백분비구성은 87.3c+12.7v였다. 이것을 류동자본총액 2,500파운드에 대하여 계산하면 불변자본은 2,182파운드이며 가변자본은 318파운드가 된다. 로임을 위한 년간 투하총액은 52파운드의 52배 즉 2,704파운드였으므로 318파운드의 가변자본이 1년간에 거의 정확히 $8\frac{1}{2}$회 회전한것으로 된다. 잉여가치률은 $\frac{80}{52}=153\frac{11}{13}\%$였다. 이러한 요소로부터 리윤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식 $p'=m'n\frac{v}{C}$에 각 요소의 치 $m'=153\frac{11}{13}$, n=8

$\frac{1}{2}$, v=318, C=12,500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153\frac{11}{13}^{50}\times 8\frac{1}{2}\times\frac{318}{12,500}=33.27\%.$$

간단한 공식 $p'=\frac{m}{C}$을 리용하여 이것을 검산하여 보자. 1년간의 총잉여가치 또는 리윤은 80파운드×52=4,160파운드로 되며 이것을 총자본 12,500파운드로 제하면 우에서 든 수자와 거의 같은 33.28%가 된다. 이것은 매우 높은 리윤률인데 일시적으로 극히 유리한 사정들(극히 낮은 면화가격과 극히 높은 면사가격)에 의해서만 설명되는것이며 현실에 있어서는 아마 1년 전체에 걸쳐 그런것은 아닐것이다.

공식 $p'=m'n\frac{v}{C}$에서 m'n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제2부에서 잉여가치의 년률이라고 칭한것이다.[48] 그것은 상기의 경우에는 $153\frac{11}{13}\%\times 8\frac{1}{2}$이며 정확히 계산하면 $1,307\frac{9}{13}\%$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직한 사람[51]이 제2부에서 든 한 례에 나오는 1,000%라는 엄청난 잉여가치의 년률에 아연실색하였다면 여기서 만체스터의 생생한 실천에서 그의 앞에 내놓은 1,300% 이상의 잉여가치의 년률이라는 사실을 보면 아마도 안정할것이다. 최고의 번영기—물론 우리는 이미 오래동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있지만—에는 그러한 높은 년률도 결코 희귀한 것은 아니다.

기왕이니 여기에 현대적대산업에서의 실제적인 자본구성의 한 례가 있다. 총자본은 12,182파운드의 불변자본과 318파운드의 가변자본으로 분할되며 도합 12,500파운드이다. 즉 백분비로는 $97\frac{1}{2}c+2\frac{1}{2}v=100C$이다. 총자본의 40분의 1에 불

과한 부분이, 그러나 1년간에 8회이상 반복하여 로임의 지불에 복무하였다.

자기의 기업에 관해서 이러한 계산을 하려고 생각하는 자본가는 아마 얼마 없을것이므로 통계학자는 사회적총자본중의 불변부분과 가변부분과의 비률에 관하여 거의 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있다. 다만 미국의 통계조사가 오늘의 제 관계하에서 가능한것을 보여주고있을따름이다. 즉 매개 기업부문에서 지불된 로임총액과 획득된 리윤총액이 그것이다. 이 자료는 산업가들 자신의 검열하지 않은 통보에만 기초하고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것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귀중한것이며 이 대상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있는 유일한것이다. 구라파에서는 우리의 대산업가들에게 이러한 폭로를 요구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상냥하다.—F. 엥겔스}

제 5 장

불변자본의 사용상의 절약

Ⅰ. 개　　론

가변자본이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수의 로동자가 명목상 동일한 로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절대적잉여가치의 증대, 또는 잉여로동의 연장, 따라서 또 로동일의 연장은— 이 경우에 초과로동시간에 대한 지불여부는 아무래도 좋다— 불변자본의 가치를 총자본에 대하여서나 가변자본에 대하여서나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잉여가치량의 증대와 잉여가치률의 있을수 있는 증대를 도외시하더라도 리윤률을 상승시킨다. 불변자본의 고정부분 즉 공장건물, 기계 등등의 규모는 이것들로써 16시간 로동이 진행되든 또는 12시간 로동이 진행되든 마찬가지이다. 로동일의 연장은 불변자본중의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밖에 또 그렇게 됨으로써 고정자본의 가치는 보다 적은 수의 회전기간에 재생산되며 따라서 이 자본이 일정한 리윤을 얻기 위하여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은 단축된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일의 연장은 초과로동시간이 지불되는 경우에도, 또 일정한 한도까지는 초과로동시간이 정상적인 로동시간보다 더 높이 지불되는 경우에도 리윤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현대적산업체계에서 고정자본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부단히 커지는것은 리윤에 눈이 어두운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로동일의 연장을 위한 주요한 자극이였다.(11)

로동일이 불변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태는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보다 큰 로동량을 착취하기 위하여는(여기에서는 로임의 감액 또는 정상적수준 이하로의 로임의 인하는 별도로 하므로) 로동자수를 증대시켜야 하며 그와 동시에 일정한 비률로 건물, 기계 등과 같은 고정자본의 량을 증대시키는것이 필요하다. 혹은 또 로동강도가 증대되든가 로동의 생산력이 제고되든가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여 더 많은 상대적잉여가치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원료를 사용하는 생산부문들에서는 주어진 기간에 보다 많은 원료 등등이 가공되기때문에 불변자본의 류동부분의 량이 증대된다. 둘째로 동일한 수의 로동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가 증가되며 따라서 또 불변자본의 이 부분도 증가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증대에는 불변자본의 증대가 동반되며 로동의 착취의 증대에는 로동을 착취하기 위한 생산조건들의 비용의 증가 즉 보다 큰 자본투하가 동반된다. 그러므로 리윤률은 이에 의하여 일방으로는 저하되며 타방으로는 증대된다.

많은 일상적인 경비는 로동일이 길든짧든간에 거의 변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감독비는 750명의 로동자가 12시간로동을 하는 경우보다 500명의 로동자가 18시간로동을 하는 경우에 더 적다.

---

(11) 《모든 공장에서 거액의 고정자본이 건물과 기계에 투하되고있기때문에 이러한 기계가 운전될수 있는 시간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리윤은 클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10월 31일.》 8페지).

《한 공장의 경영비는 10시간로동의 경우에도 12시간로동의 경우와 거의 같다》(《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7페지).

국세와 지방세, 화재보험료, 각종 고정적사용인들의 로임, 기계의 감가, 공장의 기타 각종 비용은 로동시간이 길든 짧든 변함이 없다.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이러한 비용은 리윤에 비하여 더 크게 된다(《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19페지).

기계 및 기타 고정자본구성부분들의 가치가 재생산되는 기간은 실제로는 이것들의 단순한 존속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기능하며 리용되는 로동과정의 총지속기간에 의해서 규정된다. 로동자가 12시간 대신에 18시간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1주간에 3일이 더하여지며 1주는 1주 반으로 2년은 3년으로 된다. 그러므로 초과로동시간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로동자는 정상적인 잉여로동시간외에 2주간마다 그 다음 1주일을, 2년마다 그 다음 1년을 더 무상으로 로동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계가치의 재생산은 50% 촉진되며 다른 조건하에서 필요되는 시간의 $\frac{2}{3}$만으로 달성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나 원료의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제6장)에서나 문제의 무익한 복잡화를 피하기 위하여 잉여가치의 량과 률은 주어져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협업, 분업 및 기계에 대하여 론할 때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52] 대규모적생산을 특징짓는 생산조건들의 절약은 본질적으로는, 이 조건들이 사회적로동의, 사회적으로 결합된 로동의 조건들로서, 따라서 로동의 사회적조건들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것이다. 그것들은 호상련결이 없는 한무리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또는 기껏해서 작은 규모에서 직접 협업

할따름인 로동자들에 의하여 분산된 형태로 소비되는것이 아니라 전체 로동자에 의하여 생산과정에서 공동으로 소비된다. 한두개의 중앙동력기를 가진 큰 공장에서는 이러한 동력기의 비용은 그 마력수 따라서 그 가능한 작용범위와 동일한 비률로서는 증가하지 않으며, 전동장치의 비용은 그것에 의하여 운동을 전달받는 작업기의 수량과 동일한 비률로서는 증가하지 않으며, 작업기의 기체 자체의 비용도 기능하는 작업기의 기관으로 되는 도구의 수가 증대되는것과 동일한 비률로서는 증가하지 않는다, 등등. 그리고 또 생산수단의 집중은 온갖 종류의 건물을 절약한다. 이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작업장소뿐만아니라 창고 등등도 절약한다. 연료나 조명 등등을 위한 지출도 마찬가지이다. 기타의 생산조건들은 그것을 리용하는 사람이 많든적든간에 역시 같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집중과 그 대량적사용에서 나오는 이 모든 절약은 본질적조건으로서 로동자의 집결과 공동작업 즉 로동의 사회적결합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약이 로동의 사회적성격에서 나오는것은 바로 잉여가치가 고립적으로 본 매 개별적로동자의 잉여로동에서 나오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단한 개량까지도 오직 대규모로 결합된 전체 로동자의 생산에 의하여 제공되고 허용되는 사회적경험과 관찰에서만 나온다.

생산조건들에서의 절약의 다른 큰 부류에 관하여도 사정은 역시 동일하다. 우리가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소위 페물이라고 하는 생산상의 배설물을 동일한 산업부문 또는 다른 산업부문의 새로운 생산요소들로 재전화시키는것 즉 이러한 소위 배설물이 생산과 따라서 소비—생산적소비 또는 개인적소비—의 순환속에 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나중에 좀 더 상

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부류의 절약도 대규모의 사회적로동의 결과이다. 대규모적사회적 로동에서만 폐물이 대량으로 생기게 되며 그리하여 그 폐물 자체가 다시 거래의 대상으로 되며 따라서 생산의 새로운 요소로 된다. 폐물은 공동적생산 따라서 대규모적생산의 폐물로서만 생산과정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며 여전히 교환가치의 담당자로 되는것이다. 이러한 폐물은—그것이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수행하는 역할과는 관계없이—다시 판매될수 있게 되는 정도에 따라서 원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이 원료비에는 항상 원료의 정상적인 폐물화 즉 원료가공시에 평균적으로 상실되지 않을수 없는 량이 계산에 들어가고있기때문이다. 불변자본의 이 부분의 비용의 감소는 가변자본의 크기와 잉여가치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만큼 리윤률을 높인다.

잉여가치가 주어진 경우에는 리윤률은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자본의 가치의 감소에 의하여서만 높일수 있다. 불변자본이 상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그 교환가치가 아니라 오로지 그 사용가치만이 문제로 된다. 방적공장에서 아마가 얼마만한 로동을 흡수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로동의 생산성의 정도 즉 기술적발전의 단계가 주어진 경우에는 아마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아마의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계가 례컨대 3명의 로동자에게 주는 방조는 그 기계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계의 기계로서의 사용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술적발전의 어느 단계에서는 나쁜 기계가 고가일수도 있으며 다른 단계에서는 좋은 기계가 렴가일수도 있다.

례컨대 면화나 방적기계가 보다 렴가로 되였기때문에 자본가가 얻는 리윤이 증대되였다는것은 방적업에서가 아니라

기계제조업과 면화재배업에서 로동의 생산성이 제고된 결과이다. 일정한 량의 로동의 대상화에 필요한, 따라서 일정한 량의 잉여가치의 취득에 필요한 로동조건들에 대한 비용이 이제는 적어진다. 이 일정한 량의 잉여가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감소된다.

생산과정에서 전체 로동자—사회적으로 결합된 로동자—에 의하여 생산수단이 공동으로 사용됨으로써 얻어지는 절약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되였다. 류통기간의 단축(여기에서는 교통수단의 발전이 주요한 물질적계기이다)에서 생기는 불변자본지출의 절약에 관해서는 나중에 가일층 고찰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곧 고찰되여야 할것은 기계의 부단한 개량에서 나오는 절약이다. 즉 1) 기계의 재료의 개량 례컨대 철에 의한 목재의 교체. 2) 기계제작일반의 개량에 의한 기계의 저렴화 그리하여 불변자본의 고정부분의 가치는 대규모의 로동의 발전에 따라서 부단히 증대하지만 결코 이와 동일한 정도로는 증대하지 않는다(12). 3) 기존기계를 더 렴가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수 있게 하는 특수한 개량, 례컨대 증기기관 등등의 개량인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언급할것이다. 4) 보다 좋은 기계에 의한 폐물의 감소.

주어진 생산기간에 있어서의 기계의 마멸 및 일반적으로 고정자본의 마멸을 감소시키는것은 모두 개개의 상품을 값싸게 할—매개 상품은 자체에 해당한 마멸부분을 자체의 가격에서 재생산하기때문에—뿐만아니라 동시에 이 기간의 해당한 자본지출을 감소시킨다. 보수작업 등등은 그것이 필요하

---

(12) 공장건설에 있어서의 진보에 관한 유어의 의견을 보라[53].

게 되는 정도에 따라서 기계의 원가에 계산된다. 기계의 내구성이 증대되였기때문에 이러한 로동이 감소되는것은 그만큼 기계의 가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절약에 관하여도 역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그것은 즉 이러한 절약은 대부분의 경우에 오직 결합로동자의 존재하에서만 가능하며 흔히는 더 큰 규모로 조직된 작업에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절약은 직접 생산과정에서의 로동자의 더 큰 규모의 결합을 요구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우에 **어떤 한** 생산부문 례컨대 철, 석탄, 기계의 생산이나 건축업 등등에서의 로동생산력의 발전은—그것은 또 부분적으로 정신적생산 특히 자연과학과 그 응용령역에서의 성과와도 련관되여있다—**다른 한** 산업부문 례컨대 방직공업이나 농업에서의 생산수단의 가치, 따라서 그 비용의 감소의 조건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산업부문으로부터 생산물로서 나오는 상품은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다른 산업부문으로 들어가기때문이다. 이러한 상품의 저렴화정도는 그것이 생산물로서 나오는 생산부문에서의 로동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며 동시에 이 저렴화는 그 상품이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감으로써 생산되는 상품들의 저렴화의 조건일뿐만아니라 또한 이 상품을 요소로 하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건 따라서 리윤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인것이다.

산업의 전진적발전에서 생기는 불변자본의 이러한 절약의 특징은 이 경우에는 **한** 산업부문에서의 리윤률의 증대는 **다른** 산업부문에서의 로동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초래된다는것이다. 이 경우에 자본가가 얻는것은 이 자본가 자신이

직접 착취하는 로동자의 산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사회적 로동의 산물인 리득인것이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의 궁극적 원인으로 되는것은 언제나, 발현되고있는 로동의 사회적성격이며 사회내부의 분업이며 정신로동 특히 자연과학의 발전이다. 여기서 자본가가 리용하는것은 사회적분업의 전체의 리익이다. 여기서 자본가가 사용하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며 따라서 리윤률을 높이는것은 외부의 부문 즉 자본가에게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부문에서의 로동생산력의 발전이다.

또 다른 하나의 리윤률의 증대는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로동의 절약에서가 아니라 불변자본 그 자체의 사용상의 절약에서 생긴다. 로동자들의 집중과 그들의 대규모적협업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불변자본이 절약된다. 동일한 건물이나 동일한 난방, 조명 설비 등등도 그 비용은 대규모생산에서는 소규모생산에서보다 비교적 적게 든다. 동력기나 작업기도 역시 그러하다. 그것들의 가치는 절대적으로는 증대한다 하더라도 생산확대의 진전에 비하면 또 가변자본의 크기 또는 움직여지는 로동력의 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한 자본이 그 자체의 생산부문에서 이루는 절약은 우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로동의 절약에 즉 그 자체내에서의 로동자의 지불로동의 감소에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상술한 절약은 타인의 부지불로동에 대한 이러한 최대로 가능한 취득을 될수 있는대로 경제적인 방식으로 즉 주어진 생산규모에서 될수 있는대로 적은 비용으로 실현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절약이 불변자본의 생산에 사용되는 사회적로동의 생산성의 상술한바와 같은 착취에 기초하는것이 아니라 불변자본 그 자체의 사용상의 절약에 기초하고있는 한, 이러한 절약은 직접 일정한 생산부문 그 자체 내부에서의 협업 및 로동의 사회적

형태에서 발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 등등이 그 사용가치가 증대하는 동일한 정도로는 그 가치가 증대하지 않는 그러한 규모에서의 생산에서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두가지 사정에 대하여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c의 가치=0이라면 p'=m'일것이며 리윤률은 최대한에 달할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로동 그 자체의 직접적착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결코 사용되는 착취수단들—고정자본이든 원료 및 보조재료이든—의 가치가 아니다. 그것들이 로동의 흡수자로서, 로동 따라서 또 잉여로동이 그것들속에 또는 그것들에 의하여 대상화되는 수단들로서 복무하는 한에서는 기계, 건물, 원료 등등의 교환가치는 전혀 아무래도 좋다. 여기에서 오로지 문제로 될수 있는것은 한편으로는 그것들의 량 즉 일정한 량의 산로동과 결합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필요한 량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의 합목적성 즉 기계뿐만아니라 또한 원료 및 보조재료의 우수한 질이다. 리윤률은 부분적으로는 원료의 질에 의존한다. 좋은 재료는 폐물을 보다 더 적게 낸다. 따라서 동일한 량의 로동을 흡수하는데 요구되는 원료의 량은 더 적어진다. 그리고 또 작업기가 받는 저항도 더 적어진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잉여가치와 잉여가치률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나쁜 원료의 경우에는 로동자는 동일한 량을 가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임금의 지불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그 결과로 잉여로동이 감소된다. 이것은 또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에도 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은 제1부 627/619페지[54]이하에서 서술된바와 같이 사용되는 로동의 량보다도 그 생산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의 절약에 대한 자본가의 열광은 리해

할만하다. 아무것도 헛되이 쓰든가 랑비하지 않는것, 생산수단을 생산 자체가 요구하는 량만큼만 지출하는것은 부분적으로는 로동자의 훈련과 교양에 의존하며 부분적으로는 자본가가 결합된 로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규률에 의존한다. 이 규률은 현재 이미 도급제로임에 있어서는 거의 전적으로 무용하게 되고있듯이 로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일하는 사회제도하에서는 무용하게 될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열광은 생산요소들의 위조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의 가치를 감소시키는데 의하여 리윤률을 높이는 주요수단이다. 게다가 또 이러한 생산요소들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한다는것이 이 가치가 생산물에 재현하는 한에서는 사기의 중요한 요소로서 첨가된다. 이러한 계기는 특히 독일산업에서 결정적역할을 놀고있는데 독일산업에서는 처음에 좋은 견본을 보내기만 하면 다음에 나쁜 상품을 보내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할수 있다는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경쟁의 령역에 속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여기에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이러한 불변자본의 가치의 감소에 의하여 따라서 비용의 감소에 의하여 초래되는 리윤률의 상승은 그것이 생기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것이 사치품인가 또는 로동자의 소비에 들어가는 생활수단인가 또는 생산수단일반인가 하는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만 잉여가치률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만 중요한것이다. 왜냐하면 잉여가치률은 본질적으로는 로동력의 가치에 즉 로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와 잉여가치률은 주어진것으로서 전제되여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이것은 리윤률을 규정한다—은 오로지 불변자본의 가치에만 의존하는것이고 결코 불변자본을 이루는 요소들의 사용가치에 의존하는것은 아니다.

생산수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되는것은 물론 그 절대적가치총액이 증대하는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절대량은 로동생산력의 발전 및 그에 동반하는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비상히 증대하는것이기때문이다. 불변자본의 사용상의 절약은 어떠한 측면으로부터 보아도 부분적으로는 오로지 생산수단이 결합된 로동자의 공동적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소비된다는 사실의 결과이며 따라서 이 절약자체도 직접적인 생산적로동의 사회적성격의 산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그러나 또 이 절약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에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분야에서의 로동의 생산성이 발전한 결과이며 따라서 단지 자본가 X가 사용하는 로동자들을 이 자본가 X에 대립시켜 고찰할뿐만아니라 총로동을 총자본에 대립시켜 고찰한다면 이러한 절약도 역시 사회적로동생산력의 발전의 산물로 나타나는것이며 차이는 다만 자본가 X가 비단 자기의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로동의 생산성에서뿐만아니라 타인의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로동의 생산성으로부터도 리익을 끌어낸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불변자본의 절약이 로동자에게는 전혀 낯선 그리고 절대로 관계가 없는 조건—로동자에게는 관여할바가 전혀 없는—으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자본가가 동일한 화폐로써 많은 로동을 구매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적은 로동밖에 구매하지 못하는가(왜냐하면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거래는 자본가의 의식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기때문에) 하는것은 로동자에게 확실히 무엇인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자본가에게

언제나 극히 명백하다. 생산수단의 사용상의 이 절약 즉 일정한 성과를 최소의 지출로써 달성하는 이 방법은 로동에 내재하는 다른 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에서 자본에 고유한 힘으로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독특하며 이 생산방식을 특징짓는 방법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생각이 그다지 기이한것으로 느껴지지 않는것은 사실의 외관이 그것에 합치되기때문이며 그리고 자본관계가 로동자들을 그들 자신의 로동의 실현조건들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또 소외되게 함으로써 그 내부적련관을 사실상 은폐하기때문이다.

첫째로, 불변자본을 이루는 생산수단은 자본가의 화폐만을 표시하며(랑게에 의하면 로마의 채무자의 신체가 채권자의 화폐를 대표하고있은듯이[55]) 자본가와만 관계가 있을뿐이지만 한편 로동자는 현실적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과 접촉하게 되는 한 생산을 위한 사용가치 즉 로동수단과 로동재료로서의 그것과 관계가 있을뿐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가치가 감소되든가 증대되든가 하는것은 로동자와 자본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헤컨대 로동자가 가공하는것이 동인가 철인가 하는 사정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자본가는 생산수단의 가치증가가 일어나 그때문에 리윤률의 저하가 일어나면 —우리가 나중① 에 보듯이—문제를 달리 보기를 좋아한다.

둘째로, 이 생산수단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서는 동시에 로동의 착취수단인 한에서는 이 착취수단이 상대적으로 렴가인가 고가인가 하는것은 로동자에게는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이것은 말을 다루는 고삐와 굴레가 비싼가 싼가 하는

① 본권 125~153페지를 보라.—편집자

것이 말에게는 아무래도 좋은것과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56] 사실상 자기로동의 사회적성격에 대한 로동자의 관계 즉 하나의 공통한 목적을 위한 자기의 로동과 타인의 로동과의 결합에 대한 관계는 자기에게 있어서 외적인 힘에 대한 관계이다. 이 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은 로동자에게는 타인의 소유물이며 만일 그가 그 랑비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그 랑비는 그에게는 전혀 아무래도 좋은것일것이다. 로동자 자신에게 속하고있는 공장 콘컨대 로츠데일의 공장[57]에서는 사태가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거의 더 말할 필요도 없는것이지만 일방의 생산부문에서의 로동의 생산성이 타방의 생산부문에서의 생산수단의 저렴화나 개량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리윤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 이러한 사회적로동의 일반적관련은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으로서 나타나며 자본가만이 이러한 생산수단을 구매하며 취득하는 한 사실상 그것은 자본가에게만 관계되는것이다. 자본가는 자기 자신의 생산부문의 로동자의 생산물로써 타인의 생산부문의 로동자의 생산물을 구매하며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의 로동자의 생산물을 무상으로 취득한 한에서만 타인의 로동자의 생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 관계는 류통과정 등등에 의하여 다행히도 은폐되고있다.

이밖에도 또 대규모생산이 자본주의적형태에서 처음으로 발전하는것이므로 일방으로는 리윤에 대한 추구와 타방으로는 상품을 될수 있는대로 렴가로 생산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불변자본의 사용상의 이러한 절약이 마치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특유한것으로 따라서 자본가의 기능인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한편으로는 사회적로동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변자본사용상의 절약을 촉진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편으로는 로동자 즉 산로동의 담당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로동조건들에 대한 경제적인 즉 합리적이며 절약적인 사용간의 소외와 무관심만으로 그치는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모순적이며 적대적인 그 성질로 말미암아 로동자의 생명과 건강의 랑비를, 그들의 생존조건 그 자체의 저하를 불변자본사용상의 절약으로 따라서 리윤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간주하는데까지 이른다.

로동자는 일생의 대부분 시간을 생산과정에서 지내기때문에 생산과정의 조건들은 대부분 그의 능동적생활과정의 조건들이며 그의 생활조건들인데 이 생활조건들의 절약이 바로 리윤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58] 과도로동 즉 로동자의 역축으로의 전화가 자본의 자기 증식을, 잉여가치의 생산을 촉진하는 방법인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절약의 범위에는 자본가가 건물의 절약이라고 부르는 비좁고 건강에 해로운 장소에 로동자들을 가득 몰아넣으며 동일한 장소에 위험한 기계들을 한데 밀어넣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으며 그 성질로 보아 건강에 해롭거나 또는 광산에서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생산과정들에서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는것 등등도 포함된다. 로동자에게 생산과정이 보다 인도적이며 유쾌하고 또는 적어도 견딜만한것으로 되게 하는 그 어떤 시설도 결여되여있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것은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도 없는 랑비일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생산은 모든 면에서 린색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재료에 대

하여는 몹시 랑비한다. 이것은 마치 그 생산방식이 다른 한편으로 그 생산물을 상업에 의하여 분배하는 방법과 경쟁방식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수단을 몹시 랑비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은 한편으로 개별적자본가에게 리득을 보게 하는것을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손실로 되게 하는것이다.

자본은 산로동을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필요로동으로 축감하고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을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리용에 의하여 부단히 축감하며 따라서 직접 사용되는 산로동을 될수 있는대로 절약하려는 경향을 가지지만 자본은 또 필요한 정도로 축감된 이 로동을 가장 경제적인 조건하에서 사용하려는 즉 사용되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될수 있는 한 최소한도로 축감하려는 경향도 가지고있다. 상품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에 포함되여있는 필요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라면 자본만이 이 규정을 비로소 실현하는 동시에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을 부단히 단축시킨다. 이리하여 상품의 가격은 그 최저한도까지 인하된다. 그것은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의 매개 부분이 최소한도로 축감되기때문이다.

불변자본의 사용상의 절약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용되는 자본의 량이 증대되고 이와 함께 그 가치액도 증대된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대량의 자본이 한사람의 수중으로 집적하였다는것을 말한다. 그런데 바로 한사람의 수중에서 사용되는 량의 증대—이에 상응하여 대체로 사용되는 로동량이 절대적으로는 증대되나 상대적으로는 감소된다—야말로 불변자본의 절약을 가능

하게 한다. 개별적자본가로 보면 필요한 자본투하의 규모가 크게 되며 특히 고정자본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나 가공되는 재료의 량이나 착취되는 로동의 량에 대한 관계에서는 투하자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것이다.

다음에는 몇개의 례증으로 이를 간단히 설명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에 든것부터 즉 동시에 로동자들의 생존 및 생활조건들로서 나타나는 한에서의 생산조건의 절약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II. 로동자를 희생으로 하는 로동조건들의 절약

탄광. 가장 필요한 지출을 등한히 하는것.

《탄광주들사이에서 벌어지고있는 경쟁으로 말미암아…극히 뚜렷한 육체적곤난들을 극복하기에 필요한 이외의 다른 비용은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요이상으로 많은 탄광로동자들사이에서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부근의 농촌 날품팔이로동자의 임금보다도 조금밖에 높지 않은 임금을 받고 모진 위험과 극히 유해로운 영향에 즐겨 몸을 내맡기는데 그것은 탄광로동이 그밖에 또 그들의 자식까지도 유리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2중의 경쟁만으로도…탄광들의 대부분이 극히 불완전한 배수와 환기, 종종 렬악하게 건설된 수직갱과 렬악한 동발, 무능한 기계기술자, 설계도 시공도 좋지 못한 갱도와 차도로 경영되고있는 원인으로 되는데 충분하다. 이것이 로동자의 생명과 수족과 건강의 파괴를 일으키는데 만일 그 통계가 있다면 무서운 광경을 보여줄것이다.》(《광산과 탄광 등에서의 아동고용에 관한 제1차보고》, 1829년 4월 21일, 102페지)

1860년경 영국의 탄광들에서는 매주 평균 15명의 사망자

가 났다. 《탄광재해》에 관한 보고(1862년 2월 6일)에 의하면 1852~1861년의 10년간에 도합 8,466명의 사망자가 났다. 그러나 이 보고자체가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이 수자는 실제보다 훨씬 적은것이였다. 왜냐하면 감독관들이 금방 임명되였을따름이고 그들의 관할구역이 너무 컸던 최초의 수년간에는 다수의 재해 및 사망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있고 감독관들의 수가 부족하고 그들의 권한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제도가 수립된이래로 재해건수가 심히 감소되였다는 바로 이 사정은 자본주의적착취의 자연적경향을 무엇보다도 잘 표시하는것이다. 이러한 인간희생은 대부분 탄광주들의 추악한 탐욕의 결과인데 례컨대 종종 그들은 수직갱을 하나밖에 파게 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어떠한 효과적인 환기도 불가능할뿐만아니라 이 유일한 수직갱이 막히는 경우에는 밖으로 빠져나올수도 없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고찰하면 그리고 류통과정이나 경쟁의 과도함을 도외시한다면 실현되여 상품에 대상화된 로동에 대하여는 극도로 절약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생산은 다른 어떠한 생산방식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랑비자 즉 산로동의 랑비자이며 살과 피의 랑비자일뿐만아니라 신경과 뇌수의 랑비자이다. 사실상 인류사회의 의식적재건에 직접 선행하는 이 력사시기에 있어서 개인적발전의 극도의 랑비에 의하여서만 인류일반의 발전은 보장되며 실현된다. 여기에서 서술되고있는 모든 절약은 로동의 사회적성격에서 나오는것이므로 로동자의 생명과 건강의 이러한 랑비를 일으키는것도 사실상 바로 로동의 이러한 직접적인 사회적성격인것이다. 이점에서 특징적인것은 이미 공장감독

관 R. 베이커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

《이러한 **공동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어린 생명의 희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방지할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신중한 고려를 요한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157페지).

공장. 여기서 볼수 있는것은 본래의 공장에서도 역시 로동자의 안전, 편의 및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온갖 예방책이 완전히 결여되고있다는것이다. 산업군의 사상자를 헤아리는 전투보고(매년의 공장보고를 참조하라)의 대부분은 바로 이에 기인된다. 장소나, 환기 등등이 불충분한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1855년 10월에도 레너드 호너는 극히 많은 공장주들이 수평축의 안전장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반항하고있는것을 한탄하고있다. 그 위험은 종종 사망자를 내는 재해들에 의하여 계속 증명되고 또 안전장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생산에 지장을 주는것도 아닌데 공장주는 이 규정에 저항하고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55년 10월.》 6페지). 이 법률규정과 기타의 법률규정에 대한 공장주들의 이러한 저항은 무보수의 치안판사들의 충실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 치안판사들은 대개 그 자신이 공장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주의 친우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판결하여야 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신사들의 판결이 어떠한것이였던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상급재판소 판사 캠블이 자기에게 상소된 이러한 판결의 하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해석인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폐기이다》(우와 같은 보고, 11페지).

동일한 보고에서 호너가 말하고있는바에 의하면 많은 공장들에서 로동자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기계를 운전한다고 한다. 정지하고있는 기계곁에서도 언제나 무엇이고 하여야 하기때문에 그 경우에도 언제나 손과 손가락이 기계와 접촉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렇게 신호를 소홀히 한다는것때문에만도 부단히 사고가 발생한다(우와 같은 보고, 44페지). 공장주들은 당시 만체스터에서 공장립법에 반대하기 위한 동맹을 결성하였는데 그것은 이른바 《공장법개정을 위한 국민협회》였다. 이 동맹은 1855년 3월에 1마력당 2실링의 회비로써 총액 50,000파운드 이상을 모아서 이 돈으로써 공장감독관의 고발에 대한 동맹원의 소송비를 지불하며 또 동맹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되여있었다. 목적은 리윤을 위해서라면 《살해는 살인이 아니다[59]》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였다. 스코틀랜드의 공장감독관 죤 킨케이드경이 글라스고의 한 상회에 관하여 말하고있는바에 의하면 이 상회는 자기 공장에 있는 고철로써 그 공장의 전체 기계에 안전장치를 하였으며 이렇게 하는데 9파운드 1실링이 들었다. 이 상회가 상술한 동맹에 가입하였다고 하면 그의 110마력에 대하여 11파운드라는 회비를 즉 그 상회가 전체 안전장치에 들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을것이다. 그런데 그 국민협회는 명백히 이러한 종류의 안전장치를 규정한 법률에 반항하기 위하여 1854년에 설립되였던것이다. 1844~1854년의 전 기간에 공장주들은 이 법률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파머스톤의 지시에 근거하여 공장감독관들은 금후 이 법률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공장주들에게 통고하였다. 공장주들은 즉시 자기들의 협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협회의 유력한 회원들중에는 그 자신이 치안판사였으며 그러한 자격

으로서는 법률을 스스로 적용하여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1855년 4월에 신내무대신 죠지 그레이경이 공장주들에게 하나의 절충안을 제의하였는데 이 절충안에 의하면 정부는 안전장치에 관한 법률을 거의 명목상으로만 집행하는것으로써 만족한다는것이였다. 그러나 협회는 이것까지도 분연히 거부하였다. 유명한 기사 윌리암 페어번은 여러 소송들에서 감정인으로서 자본의 절약과 그 침해된 자유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걸고 진력하였던것이다. 공장감독관장 레너드 호너는 공장주들측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

공장주들은 그래도 안심하지 않고 마침내 녀왕좌재판소[60]의 판결을 쟁취하였는데 이 판결의 해석에 의하면 1844년의 법률은 지상 7피트 이상의 높아에 설치되여있는 수평축에는 안전장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것이다. 그리고 최후적으로 1856년에 그들은 위선자 윌슨 패튼—종교를 간판으로 삼고 돈주머니 기사들을 위해서는 추악한 일을 하기에 언제나 준비되여있는 경건한 사람들중의 하나—을 통하여 그들이 어쨌든 만족할수 있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법률은 사실상 로동자들로부터 일체 특별보호를 박탈하였으며 기계로 인한 재해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통재판소로 가라고 로동자들에게 가르치고있는데(영국의 높은 재판비용의 조건하에서는 순전한 조롱이지만) 타방으로 이 법률은 전문가의 감정실시에 관한 극히 교묘하게 꾸며낸 규정에 의하여 공장주들의 패소를 거의 있을수 없는 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재해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감독관 베이커는 1858년 5월부터 10월에 이르는 반년간에 재해건수가 바로 그 전의 반년간과 비교하더라도 21%가 늘어났다고 인정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총재해건수의 36.7%는 피할수 있는것이

였다. 확실히 1845년과 1846년에 비하여 1858년과 1859년에는 감독을 받는 산업부문들의 로동자수는 20% 증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건수는 현저히 감소되였다. 즉 29% 감소되였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론쟁점이 현재(1865년)까지 해결된 한에서는 그것은 주로 새로운 기계의 도입에 의하여 해결되고있는데 이 새로운 기계에는 이미 처음부터 안전장치가 되여있고 거기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공장주들도 그 도입에 찬성하는것이다. 로동자들중에는 그들의 상실된 팔에 대하여 다액의 손해배상을 법정에서 인정받고 또 이 판결을 최고법정에서까지도 인정받는데 성공한자가 몇사람 있었다(《공장감독관보고, 1861년 4월 30일.》 31페지와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4월.》 17페지).

기계작업에서 직접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로동자들(그중에는 많은 아동들이 있다)의 생명과 수족을 보호하는 수단의 절약문제에 관해서는 이상으로써 그친다.

실내로동.—공간의 절약 따라서 건물의 절약이 얼마나 심히 로동자들을 비좁은 실내에 몰아넣는가 하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그때문에 환기장치도 절약된다. 이 두 원인은 긴 로동시간과 함께 호흡기병을 몹시 증가시키며 따라서 사망을 증가시킨다. 다음의 례증은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 《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3년》으로부터 취한것이다. 이 보고는 본권 제1부에서 잘 알려진 죤 싸이먼의사에 의하여 편찬된것이다[61].

로동자들의 결합과 그들의 협업이 대규모의 기계사용, 생산수단의 집적 및 그 사용의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폐쇄된 공간에서의 그리고 로동자들의 건강이 결정적인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생산을 용이하게 하는것이 결

정적인것으로 되는 제 조건하에서의 이러한 대량적공동로동 이야말로, 같은 작업장에서의 이러한 다수인의 밀집이야말로 일방으로는 자본가의 증대하는 리윤의 원천이며 타방으로는 로동시간의 단축과 특별예방책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한 동시에 로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의 랑비의 원인인것이다.

싸이먼의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대량의 통계에 의하여 증명하고있다.

《한 지방의 주민이 실내의 공동로동에 끌려들게 됨에 따라 기타 조건들이 변함없다면 같은 비률로 이 지방의 페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진다》(23페지). 그 원인은 환기가 나쁜것이다. 《그리고 실내에서 경영되는 큰 산업이 있는 지방에서는 어디에서나 이 산업의 로동자들의 사망증가는 그 지방 전체의 사망통계를 페병의 현저한 과다로써 특징지울만하다는 일반적원칙의 례외는 아마도 잉글랜드 전체를 통하여 단 하나도 없을것이다》(23페지).

1860년과 1861년에 위생당국의 조사를 받은 실내경영의 산업부문들에 관한 사망통계는 다음과 같은것을 보여주고있다. 즉 잉글랜드의 농업지방에서 페결핵 및 기타 페병으로 인한 사망건수 100을 낸것과 같은 수의 15~55세의 동일한 남자인구에 대하여 페결핵으로 인한 사망건수는 코번트리에서는 163, 블랙번 및 스킵턴에서는 167, 콩글턴 및 브래드퍼드에서는 168, 레스터에서는 171, 리크에서는 182, 매클즈필드에서는 184, 볼턴에서는 190, 노팅엄에서는 192, 로치데일에서는 193, 더비에서는 198, 쏠퍼 및 애쉬턴-언더-라인에서는 203, 리즈에서는 218, 프레스턴에서는 220, 만체스터에서는 263이다(24페지). 다음 표는 더 적절한 례를 보여준다. 이 표는 15세부터 25세까지의 남녀에 관하여 각각 10만명에 대하여 계산된, 페병사망수를 표시한다. 선택된 지방은 녀자

는 실내경영의 산업에만 사용되고 남자는 거기에 있는 모든 로동부문에 사용되고있는 지방들이다.

공장로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비률이 비교적 큰 견직업지방에서는 남자의 사망수도 상당히 높다. 여기에서는 폐결핵 등등으로 인한 남녀의 사망률이 보고에서 말하고있듯이

《우리 견직업의 대부분이 경영되고있는 혹심한 위생상태》

를 폭로하고있다.

그리고 다름아닌 이 견직업이야말로 공장주들이 자기들의 기업의 례외적으로 량호한 위생조건을 구실로 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의 례외적으로 긴 로동시간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허가도 받은 산업인것이다(제1부 제8장 제6절 296/286페지[62]).

지방	주요산업	각 10만명의 15세 내지 25세의 폐병사망수	
		남	녀
버컴프스티드	밀짚세공업(녀공)	219	578
레이튼바저드	밀짚세공업(녀공)	309	554
뉴포드-패그널	레스제조업(녀공)	301	617
타 우 스 터	레스제조업(녀공)	239	577
요 우 빌	장갑제조업(주로 녀공)	280	409
리 크	견직업(주로 녀공)	437	856
콩 글 턴	견직업(주로 녀공)	566	790
매클즈필드	견직업(주로 녀공)	593	890
건강한 농업지방	농업	331	333

《이제까지 조사된 산업부문들중에서 스미스의사가 재봉업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는것보다 더 혹심한 광경을 보여준것은 하나도 없다…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작업장들은 위생상태에서 심한 차이가 있

다. 그러나 거의 모두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차있으며 환기가 나쁘며 건강에 극히 해롭다…이 방들은 그렇지 않아도 매우 무덥다. 낮에도 안개가 낄 때나 겨울의 저녁때에 가스불을 켤 때에는 온도는 80도 심지어 90도(섭씨로는 27~33도)로 오르며 그때문에 땀이 흐르고 수증기가 유리창에 서리여 물이 줄줄 흘러내리든가 천장에서 떨어지므로 로동자들은 틀림없이 감기에 걸릴것이지만 창을 몇개 열어놓은채로 두지 않을수 없다.》—런던의 웨스트엔드에 있는 가장 큰 작업장들중 16개의 작업장들의 상태에 관하여는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이러한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방들에서 로동자 1인당 최대용적은 270립방피트이며 최소용적은 105립방피트이고 전체의 평균은 1인당 156립방피트에 불과하다. 어떤 작업장은 주위가 복도로 되여있고 천장이 하나 있을뿐인데 그속에서 92명 내지 100명이 작업하고있으며 대량의 가스가 타고 바로 옆에 변소가 있으며 용적은 1인당 150립방피트를 넘지 않는다. 다른 한 작업장은 우로부터 광선이 들어오는 안마당에 있는 개우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또 지붕에 뚫린 작은 창문을 통해서밖에는 환기가 될수 없는데 여기서는 1인당 112립방피트의 용적에서 5명 내지 6명이 일하고있다.》 그리고 《스미스의사에 의해서 묘사된 이러한 혹심한 작업장들에서 재봉공들은 하루에 보통 12~13시간 작업하며 어떤때에는 15~16시간이나 작업이 계속된다》(25~26, 28페지).

종업원수	산업부문 및 지방	10만명당 년령별 사망률		
		25—35세	35—45세	45—55세
958,265	농업, 잉글랜드와 웨일즈	743	805	1,145
22,301 남자 12,377 녀자	재봉공, 런던	958	1,262	2,093
13,803	식자공 및 인쇄공, 런던	894	1,747	2,367

(30페지)

여기서 지적하여두고싶은것은—그리고 실지로 이 보고의 집필자인 의무부장 죤 싸이먼도 말하고있지만—런던의 재봉공, 식자공, 인쇄공의 사망률은 25~35세의 년령에 있어서는

너무 적게 보고되고있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산업부문에서는 런던의 고용주들은 다수의 젊은이들(아마도 30세미만의)을 도제나 《견습공》으로서 즉 수업을 시키기 위하여 농촌으로부터 받아들이기때문이다. 이들은 런던의 산업사망률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되는 취업자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들의 런던거류는 일시적인것에 불과하기때문에 같은 비률로는 런던의 사망자수를 증대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이 거류기간중에 병에 걸리면 농촌집으로 돌아가며 만일 거기에서 죽으면 거기서 사망이 등록된다. 이러한 사정은 보다 젊은 년령층에는 더 심한것이며 런던의 이 년령층의 사망률은 산업의 비위생성의 척도로서는 전혀 의의없는것으로 되게 한다(30페지).

식자공의 사정도 재봉공과 마찬가지인데 식자공에게 있어서는 환기부족이나 유독한 공기 등등외에 또 야간작업이 첨가된다. 그들의 보통로동시간은 12시간으로부터 13시간, 때로는 15시간으로부터 16시간에 이르기도 한다.

《가스불이 켜지면 심한 열기와 질식할것 같은 공기…활자주조장의 증기와 기계나 하수도로부터의 악취가 아래층으로부터 올라와서 웃층의 공기를 더 혼탁하게 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아래층방들의 열기가 천정을 덥게 한다는것만으로도 웃층방들은 더워난다. 그리고 만일 대량의 가스를 소비하는 방이 아래에 있으면 이것은 실로 모진 재난이다. 아래층에 증기기관이 설치되여있어 가옥 전체에 고약한 열기가 가득차있는 곳에서는 더욱 나쁘다…일반적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보통 환기가 부족하며 해가 저문후에 열기와 가스연소의 산물을 배제하기는 전혀 불충분하다는것이며 많은 작업장 특히 이전에 주택이였던 작업장은 극히 한탄할만한 상태라는것이다.》 《12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도 고용되고있는 몇개의 작업장 특히 주간신문이 인쇄되는 작업장에서는 이를 낮 하루밤에 걸쳐 거의 중단없이 작업이 진행된다. 또 〈긴

급) 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식자실들에서는 일요일에도 로동자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의 로동일은 매주 6일이 아니라 7일이 되고있다》(26, 28페지).

부인복제조녀공에 관해서는 이미 제1부 제8장 제3절 249/241페지[63]에서 그 과도로동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그들의 작업장은 이 보고에서는 오드의사가 묘사하고있다. 낮에는 좀 나은편이라고 하더라도 가스가 타는 시간중에는 너무나 덥고 공기가 불결하며 비위생적이다. 비교적 량호한 34개의 작업장에서 오드의사가 알아낸 녀공 1인당 평균용적은 립방피트로 다음과 같은 수자를 보여주고있다.

《4개소에서는 500이상. 다른 4개소에서는 400~500. 5개소에서는 (300~400. 다른 5개소에서는 250~300. 7개소에서는) 200~250. 4개소에서는 150~200. 끝으로 9개소에서는 단지 100~150. 이 작업장들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곳에서도 환기가 불완전하여 지속적인 작업은 겨우 해나갈수 있는 정도이다…환기가 잘되더라도 해진후에는 가스불을 많이 켜야 하므로 작업장들은 대단히 무덥게 된다.》

그리고 오드의사는 중매업자의 부담으로 경영되는 비교적 작은 부류의 한 작업장을 방문하여 그 작업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용적 1,280립방피트의 한 방. 현재 녀공은 14명. 용적은 1인당 91.5립방피트. 여기의 녀공들은 일에 지쳐 허약해보였다. 그들의 수입은 주 7~15실링이고 그밖에 차(茶)가 더 있었다…로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14명이 들어찬 조그마한 방은 환기가 나빴다. 열수 있는 창문 두개와 난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난로는 막혀있었다. 특별한 통풍장치가 없었다》(27페지).

이 보고에서는 부인복제조녀공의 과도로동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고급부인복제조소의 젊은 녀공의 과도로동이 많은 경우에 공중을 놀래우고 분격을 자아낼만큼 무서운 정도로 진행되는것은 1년중 약 4개월간밖에 안된다. 그러나 이 4개월동안은 작업장에서는 통례로 매일 웅군 14시간동안 작업이 진행되며 급한 주문이 쌓이는 경우에는 며칠이고 계속하여 17~18시간이나 작업이 진행된다. 다른 계절에는 작업장에서의 작업은 아마도 10~14시간 진행될것이다. 자택에서 일하는 자들은 보통 12시간이나 13시간 일하는것이 통례이다. 부인용외투, 깃, 내의 기타의 제조에서 재봉틀작업도 포함한 공동작업장에서의 작업의 시간은 좀 짧으며 대체로 10~12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오드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제조소들에서는 정규적로동시간이 어떤 시기에는 특수지불을 받는 초과로동시간에 의하여 몹시 연장되고있고 또 다른 제조소들에서는 정규적로동시간후에 완성하기 위하여 일감을 집으로 가지고간다. 이러한 초과로동은 어떠한 형태로이건 종종 강제적이라는것을 부언할수 있다》(28페지).

죤 싸이먼은 이 페지의 한 주(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전염병학협회 서기 레드클리프씨는 1류 제조소들의 부인복제조 녀공들의 건강을 조사하는 기회를 특히 많이 가졌는데 그는 녀공들 자신의 입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스스로 말한 매 20명중에서 사실로 건강한자는 단 한명뿐이라는것을 발견하였다. 나머지 녀공들은 각이한 정도의 육체피로나 신경쇠약, 그때문에 생긴 많은 기능장애를 보여주었다.》 그 원인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고있다. 첫째로, 로동시간이 긴것인데 이것을 그는 한가한 계절에도 매일 최저 12시간으로 어림잡고있다. 또 둘째로, 《작업장이 비좁고 환기가 좋지 못한것, 가스불에 의하여 더러워진 공기, 부족하거나 불량한 음식물, 가정적위안을 위한 배려가 돌려지지 않는것이다.》

영국보건국 장관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리론적으로 로동자들의 첫째로 가는 위생권리를 주장하는것은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 권리란 그들의 고용주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모이게 하든간에 이 공동로동은 고용주의 책임과 비용에 의존하고있는만큼 일체 불필요한 비위생적상태로부터 해방되여야 한다는 권리이다. 그리고 사실상 로동자들 자신이 위생상의 정의를 자기들을 위하여 강요할수 없는 동안은 그들은 또한 립법자의 추측되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공적불법방해제거법을 실시하여야 할 당국으로부터의 효과적인 조력을 기대할수도 없는것이다》(29페지). 《어떤 정확한 한계를 정하여 그 한계를 넘으면 고용주가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데는 확실히 약간의 사소한 기술적곤난이 있을것이다. 그러나…원칙적으로는 건강보호에 대한 요구는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단순한 종업으로부터 생기는 무한한 육체적고통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생명을 침해당하고 단축시키고있는 무수한 남녀로동자들을 위하여 나는 감히 다음과 같은 희망을 표명하여둔다. 즉 로동의 위생조건들도 역시 일반적으로 적절한 법적보호하에 놓이게 할것, 적어도 모든 실내작업장의 효과적인 환기가 보장되며 또 그 성질상 비위생적인 매개 로동부문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가능한 한 제한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31페지).

Ⅲ. 동력생산, 동력전달 및 건물에 있어서의 절약

레너드 호너는 1852년 10월의 그의 보고에서 증기마치의 발명가로서 유명한 기사인 패트릭로프트의 제임즈 네이즈미스의 편지를 인용하고있는데 이 편지[64]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내가 언급하고있는것과 같은 조직체계변경과 개량(증기기관의)에 의하여 달성된 동력의 거대한 증대에 대해서는 공중은 조금밖에 모르고있다. 우리의 지방(랭카셔)의 기계력은 거의 40년동안 인

습이라는 비겁하고 편견에 찬 전통의 억압하에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는 다행히 이로부터 해방되였다. 최근 15년간에 특히 최근 4년간에 (즉 1848년이래) 복수식증기기관의 운전방식에서 약간의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그 결과…동일한 기관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작업량을 수행하면서도 석탄소비를 매우 크게 감소시켰음을 보게 되였다…이 지방의 공장들에 증기력이 도입되여서부터 다년간에 걸쳐 복수식증기기관의 운전가능속도는 매분 약 220피트의 피스톤행정이라고 인정되였다. 즉 피스톤행정 5피트의 기관은 이미 규정상 1분간에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수를 22로 제한하고있었다. 기관을 이보다 빨리 운전한다는것은 부적당하다고 간주되였던것이다. 그리고 전체 장치가 매분 220피트의 피스톤운동이라는 이 속도에 맞추어져있었기때문에 다년간에 걸쳐 이러한 완만하고 무의미하게 제한된 속도가 전체 생산을 지배하였던것이다. 그런데 후에 다행히 이 규정을 몰랐기때문이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담한 혁신자의 의식적인 창의의 결과였는지 어쨌든 더 높은 속도가 시험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좋았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이 모범을 따랐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한바와 같이 기계가 굴레를 벗었으며 전동장치의 주륜이 개량되여 그때문에 증기기관은 매분 300피트이상 돌수 있게 되였는데 기계의 속도는 종전대로 유지되였다…증기기관의 속도의 이러한 증대는 이제는 거의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리용할수 있는 동력을 더 많이 얻었을뿐만 아니라 속도조정륜의 운동량증진에 의하여 운동도 훨씬 규칙적인것으로 되였다는것이 알려졌기때문이다. 증기압과 복수기의 진공도가 불변이라면 단지 피스톤운동이 빨라지는것만으로도 더 많은 동력을 얻은것이다. 례컨대 1분간에 200피트의 속도로 40마력을 내는 증기기관에 적당한 변화를 가하여 동일한 증기압과 진공도로 1분간에 400피트를 낼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한다면 꼭 2배의 동력을 얻을것이다. 두 경우에다 증기압과 진공도는 동일하기때문에 기계의 개별적부분들의 긴장, 따라서 (사고) 의 위험은 속도가 증대되여도 그리 크게 증대하지는 않는다. 다른 점이라면 다만 피스톤이 운동이 빨라진데 비례하여, 또는 거의 그에 비례하여 보다 많은 증기가 소비된다는것뿐이다. 그밖에 축받이 또는 마찰부분의 마멸이 얼마간 더 빨라지지만 이것은 거의 문

제로도 되지 않는다…그러나 피스톤의 운동을 가속화하는데 의하여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일러에 더 많은 석탄을 연소시키거나 또는 보다 큰 증발력을 가진 보일러를 사용하거나 하여야 하며 요컨대 증기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사실 또 그렇게 되였으며 더 큰 증기발생능력을 가진 보일러가 〈속도가 높아진〉 낡은 기관에 설치되였다. 이리하여 이 기관은 많은 경우에 100%나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였다. 1842년경에는 콘월의 광산들에서 증기기관에 의하여 매우 값싼 동력생산이 진행된다는것이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면방직업에서의 경쟁은 공장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리윤의 주요원천을 절약에서 찾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콘월식기관이 보여준 1시간당 및 1마력당 석탄소비의 현저한 차이, 또한 울프식 2중씰린더기관의 매우 경제적인 효률은 우리 지방에서도 연료절약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게 하였다. 콘월식기관과 2중씰린더기관은 $3\frac{1}{2}$ 내지 4폰드의 석탄으로 매시간에 1마력을 내였는데 면방직업지방의 기관은 일반적으로 1마력 1시간당 8폰드 내지 12폰드의 석탄을 소비하였던것이다. 우리 지방의 공장주들과 기계제조업자들도 이러한 현저한 차이에 자극을 받아 동일한 수단에 의하여 매우 경제적인 결과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콘월에서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보통으로 되였다. 그것은 이러한 지방들에서는 석탄가격이 높았기때문에 공장주들은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부분을 될수 있는대로 축소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로, 리윤이 높았던 이전의 호경기시대에도 보일러의 표면의 절반이 외계의 찬 공기에 로출되여있었으나 이러한 다수의 보일러가 이제는 두터운 펠트나 벽돌이나 몰탈이나 기타의 재료로써 피복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높은 비용으로써 일으킨 열이 발산하는것은 방지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증기파이프도 보호되였으며 씰린더는 모직천이나 목재로 싸주게 되였다. 둘째로, 고압의 응용이 시작되였다. 종래에는 안전변은 1평방인치에 대하여 4폰드나 6폰드 내지 8폰드의 증기압에서도 열릴 정도로만 무게를 두었는데 이제는 14폰드 내지 20폰드까지 압력을 높이는데 의하여…석탄이 매우 크게 절약된다는것이 발견되였던것이다. 바꾸어말하면 공장에서

의 작업은 이전보다 현저히 적은 석탄소비로 되였다…충분한 자금과 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압력의 증가와 극한까지의 팽창의 방식을 실행하여 1평방인치당 30, 40, 60 및 70폰드의 압력의 증기를 공급하는 합목적적으로 작성된 증기보일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압력을 보고 구식기사는 아마 기첩을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기압의 증대의 경제적성과는…매우 신속히 파운드, 실링, 펜스라는 극히 명백한 형태로 나타났기때문에 복수식기관에서는 고압증기보일러가 거의 보편적인것으로 되였다. 개혁을 철저히 한 사람들은 울프식기관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제작된 기관은 대부분 그러하였다. 즉 그것은 2개의 씰린더를 가진 울프식기관인데 한 씰린더에서는 보일러로부터 나오는 증기가 대기의 압력을 넘는 초과압력에 의하여 동력을 내며 다음에는 그 증기가 이전처럼 피스톤이 운동할 때마다 공중으로 빠져나가는것이 아니라 용적이 약 4배나 더 큰 저압씰린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로 팽창한 다음에 복수기로 도입된다.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성과는 매 시간에 $3\frac{1}{2}$ 내지 4폰드의 석탄으로써 1마력을 내는것이다. 그런데 구식기관에서는 이에 12폰드 내지 14폰드가 필요하였던것이다. 잘만 장치하면 2중씰린더 또는 고압저압결합기관의 울프식을 기존 구식기관에 응용하고 그리하여 동시에 석탄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구식기관의 효률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동일한 결과는 최근 8~10년간에 고압기관과 복수기관을 결합시켜서 고압기관에서 사용한 증기를 복수기관에 옮겨 이 복수기관을 운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달성되였던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경우들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새로운 개량들의 몇개 또는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에 동일한 증기기관의 작업능력이 얼마나 증대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를 얻기는 용이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중량의 증기기관에서 현재는 적어도 이전보다 평균 50%만큼 더 많은 효률 또는 일을 얻게 된다는것, 또 속도가 1분간에 220피트로 제한되여있던 시기에 50마력을 내던 동일한 증기기관이 이제는 많은 경우에 100마력이상을 내고있다는것은 확실하다. 복수기관에서 고압증기를 사용하는데 의하여 나오는 가장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기업확장을 위하여 구식증기기관들에

대하여 제기되는 요구의 현저한 증대는 최근 3년간에 관상(管狀)보일러를 채용하게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기생산의 비용은 또다시 현저히 감소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52년 10월.》 23~27페지).

동력기에 관하여 말한것은 전동기나 작업기에 대하여도 말할수 있다.

《최근 몇해동안에 기계개량의 급속한 전진에 의하여 공장주들은 동력을 증가하지 않고 생산을 확장할수 있게 되였다. 로동일이 단축되였기때문에 로동의 보다 절약적인 사용이 필요하게 되였다. 그리고 관리가 잘되고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에서는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생산을 늘이는 방식들이 탐색되고있다. 우리 지방의 매우 현명한 한 신사의 호의로 나는 그의 공장의 종업로동자의 인수와 년령, 사용된 기계와 184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지불된 로임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였다. 1840년 10월에 그의 상회는 600명의 로동자를 사용하고있었는데 그중 200명은 13세미만이였다. 1852년 10월에는 로동자는 350명뿐이였었는데 그중 13세미만은 겨우 60명뿐이였다. 이 두해에 있어서 운전된 기계들의 수는 극히 보잘것없는 례외들을 제외하고는 동일하였으며 같은 금액이 로임으로서 지불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52년 10월.》 58~59페지에 있는 레드그레이브의 보고).

기계의 이러한 개량은 새로운, 합목적적으로 설계된 공장건물에 설치될 때 비로소 그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계의 개량에 관하여 내가 말하여두고싶은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새로운 기계들의 설치에 적합한 공장의 건축에 있어서 일대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나는 연사작업을 전부 최하층에서 하고있으며 거기에만 2만 9,000개의 연사방추를 설치하고있다. 이 방과 창고만에서 나는 적어도 10%의 로력절약을 실현하고있는데 이것은 연사방법 그 자체의 개량의 결과라기보다는 기계들을 유일한 관리하에 집중시킨 결과이다. 나는 동일한 수의 방추를 유일한 전동축에 의하여 운전할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다른 상회들에 비하여 하나의 전동축에서 60% 내지 80%를 절약하고있다. 그밖에 또 유지 등등을 크게 절약하게 된다…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공장설비의 개선과 기계의 개량에 의하여 적게 잡아도 로동을 10% 절약하였으며 그밖에 동력, 석탄, 유지, 전동축, 피대 등등을 크게 절약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109~110페지에 있는 어떤 면방적업자의 증언).

Ⅳ. 생산의 배설물의 리용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생산 및 소비의 배설물의 리용범위는 확대된다. 생산의 배설물이란 공업과 농업의 배물을 말하며 소비의 배설물이란 일부분은 인간의 자연적물질대사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말하고 일부분은 소비대상들이 소비된후에 남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생산의 배설물은 화학공업에서는 소규모생산의 경우에 상실되는 부산물이며 또 기계를 제조할 때 폐물로 나와서 다시 원료로서 철생산에 들어가는 쇠밥 등등이다. 소비의 배설물은 인간의 자연적배설물, 누더기형태로 남는 헌옷 등등이다. 소비의 배설물은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의 사용에 관하여는 자본주의적경제에서는 막대한 랑비가 일어난다. 례컨대 런던에서 450만명의 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본주의적경제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템즈강을 더럽히는데 그것을 사용할뿐 달리 처리할줄을 모른다.

원료의 가격등귀는 물론 배물리용에 대한 자극으로 된다.

대체로 이러한 재리용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배설물이 대량적으로 있을것. 이것은 대규모의 작업에서만

비로소 생긴다. 원래의 형태로서는 사용될수 없었던 재료를 기계의 개량에 의하여 새로운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것. 과학 특히 화학의 진보에 의하여 이러한 폐물의 유용한 성질이 발견되는것 등등이다. 례컨대 롬바르디아, 남부중국 및 일본에서와 같이 소규모의 원예식농업에서도 확실히 이러한 종류의 대절약이 진행된다. 그러나 대체로 이런 방식에서는 농업의 생산성은 다른 생산분야들로부터 끌어오는 인간로동력의 심한 랑비를 대가로 추리고 얻게 된다.

소위 폐물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큰 역할을 논다. 례컨대 1863년 12월의 공장보고에서는 잉글랜드에서도 아일랜드의 많은 지방들에서도 차지농업가가 아마재배를 싫어하고 또 좀처럼 그것을 재배하지 않는 주요한 리유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지적되고있다.

《많은 폐물이…수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적은 소마공장에서 아마가공시에 생긴다…폐물은 면화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은데 아마에 있어서는 매우 많다. 물에 잠그기와 기계빗질로 잘 처리하면 이러한 손실을 현저히 줄일수 있다…아일랜드에서는 아마는 흔히 매우 서툰 방법으로 빗질하여 28~30%나 상실되고만다.》

이러한것은 모두 보다 좋은 기계를 사용하는데 의하여 제거될수 있을것이다. 이 경우에 아마부스러기가 많아지는것에 대하여 공장감독관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아일랜드의 일부 소마공장으로부터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소마공들은 거기에서 생긴 폐물을 집으로 가지고가서 난로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이 찌꺼기야말로 매우 가치있는 재료인것이다》(우와 같은 보고, 140페지).

솜부스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원료의 가격변동을 취급하는 곳에서 언급할것이다.

양모공업은 아마가공공업보다 형편이 좋았다.

《전에는 양모부스러기와 모직물누더기를 수집하여 재가공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로 간주되였는데 이러한 편견은 재생양모공업과 관련하여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이 공업은 요크샤의 양모공업지방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의심할바 없이 솜부스러기를 가공하는 기업도 공인된 수요의 충족에 기여하는 생산부문으로서 얼마 안가서 동일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이다. 30년전에는 모직물누더기 즉 순모천쪼각의 값은 1톤당 평균 4파운드 4실링가량 되였는데 최근 몇년간에는 1톤당 44파운드로 되였다. 그리고 수요는 격증하여 면모교직물까지도 리용되게 되였는데 그것은 털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솜만 없애버리는 수단이 발견되였기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수천명의 로동자가 재생양모의 제조에 종사하고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도 큰 리익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는 대체로 좋은 품질의 천을 매우 싼값으로 살수 있기때문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107페지).

이와 같이 갱신되는 재생양모는 1862년말에는 이미 영국 산업의 양모총소비량의 $\frac{1}{3}$을 차지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81페지). 《소비자》의 《큰 리익》이란 그의 모직의복이 이제는 종전의 불과 3분의 1의 시간에 해지고 6분의 1의 시간에 실올이 보이게 된다는데 있다.

영국의 견직물공업도 역시 같은 내리막 길을 걸었다. 1839년부터 1862년까지는 진짜 생사의 소비는 좀 감소되였는데 명주부스러기의 소비는 2배로 늘어났다. 기계의 개량에 따라, 다른 조건하에서는 거의 무가치한 이 재료에서 각종 목적에 사용될수 있는 명주를 제조할수 있게 되였다.

폐물리용의 가장 적절한 실례를 보여주고있는것은 화학

공업이다. 화학공업은 그자체의 폐물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여 그것을 리용할뿐만아니라 또한 극히 다종다양한 산업의 폐물도 리용하고있다. 례컨대 이전에는 거의 쓸모없었던 콜타르를 아닐린염료 즉 꼭두선이염료(알리자린)로 전화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약품으로도 전화시키고있다.

생산의 배설물을 재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러한 절약과 구별하여야 할것은 폐물을 내는것의 절약 즉 생산의 배설물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는것이며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와 보조재료를 최대한도로 직접 리용하는것이다.

폐물의 절약은 부분적으로는 사용되는 기계의 품질에 의하여 제약된다. 기름, 비누 등등은 기계의 제 부분들이 정밀하게 가공되여있고 잘 닦아져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더 절약된다. 이것은 보조재료에 관한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그런데 이것은 극히 중요한것이다—원료중에서 생산과정에 폐물로 전화되는 부분이 큰가작은가 하는것은 사용되는 기계나 도구의 품질에 의존한다. 끝으로 이것은 또한 원료자체의 품질여하에도 의존한다. 원료자체의 품질은 이번에는 부분적으로는 원료를 생산하는 채취공업과 농업의 발전에(본래의 의미에서의 문화①(쿨투르)의 진보에) 의하여 제약되며 부분적으로는 원료가 제조공장에 들어가기전까지에 통과하게 되는 여러 과정의 발전정도에 의존한다.

《빠르망띠에가 증명한바에 의하면 그다지 멀지 않은 시대, 례컨대 루이 14세 시대부터 프랑스에서는 제분기술이 현저히 개량되여 새로운 제분기는 구식제분기에 비하여 동일한 량의 곡물로부터 거의 $\frac{1}{2}$

① 《문화》란 단어의 원문은 《Kultur》이다. 원뜻은 농경과 농경에 의한 식물의 재배를 말하는데 후에 이 말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 방면의 육성을 뜻하게 되였다. 즉 오늘 말하는 《문화》, 《문명》의 뜻을 갖게 되였다.—편집자

이상 더 많은 빵을 제공할수 있게 되였다. 사실상 빠리주민의 1인당 년곡물소비량은 처음에는 4스띠예, 그다음은 3스띠예, 마지막에는 2스띠예로 계산되였는데 오늘에는 1인당 단지 $1\frac{1}{3}$스띠예 즉 약 342폰드이다…내가 오래 살고있던 베르슈에서는 화강암과 트라프암으로 된 매돌을 가진 조잡하게 만들어진 제분기가 30년전부터 비상히 진보한 기계학의 원리에 따라서 개조되여왔다. 제분기에는 라패르떼산의 좋은 매돌을 장치하였으며 곡물을 두번 갈았고 체를 회전운동시키였으며 그리하여 동일한 량의 곡물로부터 $\frac{1}{6}$이나 더 많은 가루를 낸다. 그리하여 나는 로마인과 우리의 매일 곡물소비량이 매우 다른 그 리유를 간단히 알게 되였다. 그 리유는 전적으로 제분과 빵제조방법이 불완전한데 있다. 쁠리니우스가 제18권 제20장 제2절에서 말하고있는 기묘한 사실도 나는 이것에 의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로마에서는 가루가 그 품질에 따라 1모디우스당 40, 48 또는 96아스로 판매되였다. 동일한 시대의 곡물가격에 비하여 비상히 높은 이러한 가격은 제분기가 당시 아직 유치하고 불완전하였다는것과 그때문에 제분비용이 상당히 높았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듀로 드 라말 《로마인의 정치경제학》, 1840년 빠리판, 제1권 280~281페지).

V. 발명에 의한 절약

고정자본의 사용상의 이러한 절약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로동조건이 대규모로 사용되는 결과이며 요컨대 로동조건이 직접 사회적인 사회화된 로동의 조건들로서 또는 생산과정에서의 직접적인 협업의 조건들로서 작용하는 결과이다.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기계적 및 화학적 제 발명이 상품의 가격을 높임이 없이 응용될수 있는 조건인것이며 그리고 또 이것은 언제나 불가결의 조건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적인 생산적소비에서 생기는 절약은 대규모적생산하에서만 가

능하게 된다. 그러나 또 끝으로 어디서 어떻게 절약할것인가, 이미 이루어진 발견들을 어떻게 가장 간단히 리용할것인가, 리론의 실행—생산과정에의 리론의 응용—에 있어서 어떠한 실제적인 알륵을 극복해야 할것인가 하는 등등은 결합로동자의 경험에 의하여 비로소 발견되며 명백해지는것이다.

겸하여 말해두지만 일반적로동과 공동적로동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량자는 생산과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며 량자는 서로 침투하지만 량자간에는 역시 구별이 있다. 일반적로동이란 모든 과학적로동, 모든 발견, 모든 발명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현존하는 사람들의 협업을 조건으로 하며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사람들의 로동의 리용을 조건으로 한다. 공동적로동은 개인들의 직접적협업을 전제로 한다.

상술한것은 종종 보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새로운 확증을 얻는다.

1) 새로운 기계의 최초의 제조비와 그 재생산비간의 큰 차이. 이에 관해서는 유어 및 배버지[65]를 참조하라.

2) 대체로 새로운 발명에 기초하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은 후에 그 페허우에서 그 유골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는것. 그때문에 최초의 기업가는 대개 파산하며 후에 나타나 건물, 기계 등등을 저렴한 값으로 입수하는 기업가들이 비로소 번영하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인간정신의 일반적로동의 모든 새로운 발전과 결합로동에 의한 이 발전들의 사회적응용으로부터 최대의 리윤을 끌어내는자는 대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비렬한 화폐자본가들이다.

제 6 장

가격변동의 영향

Ⅰ. 원료의 가격변동, 그것이 리윤률에 미치는 직접적영향

여기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률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는 사태를 그 순수한 모습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률은 변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고찰하는 원료의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자본의 수축 또는 팽창의 결과로 한 자본이 사용하는 로동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은 있을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은 변하지 않더라도 잉여가치량은 변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그것을 우연적인 경우로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계의 개량과 원료의 가격 변동이 주어진 한 자본이 사용하는 로동자의 수량과 로임의 높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 불변자본의 변화가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과 2) 로임의 변화가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히 해답이 나온다.

그러나 일반론으로서 여기에서도 먼저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것을 말하여두고싶다. 만일 불변자본의 절약

이나 원료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변화는 비록 로임에는, 따라서 잉여가치의 률과 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리윤률에는 영향을 준다는것이다. 그 변화는 $m' \frac{v}{C}$에서 C의 크기를 변경시키며 따라서 분수 전체의 치를 변경시킨다. 따라서 여기서는—잉여가치의 고찰에서 서술한바와는 달리—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생산분야에서 일어나는가, 이 변화들의 영향을 받는 산업부문이 로동자를 위한 생활수단과 그러한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한 불변자본을 생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여기에서 서술하는것은 이 변화가 사치품생산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치품생산이라는 것은 로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것이 아닌 모든 생산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원료에는 보조재료, 례컨대 인디고, 석탄, 가스 등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또 기계가 이 절에서 고찰되는 한에서는 철, 목재, 피혁 등등이 기계 자체의 원료로 되여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기계 자체의 가격은 그 기계의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의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기계를 구성하는 원료나 기계의 운전에 소비되는 보조재료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기계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리윤률이 저하된다.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또 반대로 된다.

이하의 연구에서는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의 가격변동만을 고찰하기로 하며 로동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기계의 생산에 있어서의 원료나 기계사용에서 소비되는 보조재료인 한에서의 원료의 가격변동은 도외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것만은 여기에서 말하여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즉 기계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주요요소인 철, 석탄, 목재 등등의 자연부는 여기에서는 자본의 자연적풍요성으로서 나타나며 로임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는 관계없이 리윤률을 규정하는 한 요소라는것이다.

리윤률은 $\frac{m}{C}$ 또는 $\frac{m}{c+v}$이므로 c 따라서 C의 크기에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사정은 m 및 v와 그것들의 호상비률이 변하지 않더라도 리윤률에 역시 변동을 가져온다는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원료는 불변자본의 한 주요부분이다. 본래의 원료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산업부문에도 원료는 보조재료로서 또는 기계의 구성부분 등등으로서 들어가며 따라서 원료의 가격변동은 그만큼 리윤률에 영향을 미친다. 원료의 가격이 d액만큼 저락하면 $\frac{m}{C}$ 또는 $\frac{m}{c+v}$은 $\frac{m}{C-d}$ 또는 $\frac{m}{(c-d)+v}$으로 된다. 따라서 리윤률은 올라간다. 이와 반대로 원료가격이 오르면 $\frac{m}{C}$ 또는 $\frac{m}{c+v}$은 이제는 $\frac{m}{C+d}$ 또는 $\frac{m}{(c+d)+v}$으로 된다. 따라서 리윤률은 저락한다. 그렇기때문에 기타의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리윤률은 원료의 가격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오르내린다. 이로부터 원료가격의 변동이 생산물의 판매분야에서의 변화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수요공급관계를 전혀 도외시하더라도 공업국에 있어서는 원료의 저렴한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또 대외무역은, 그것이 필요생활수단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로임에 미치는 일체의 영향을 도외시하더라도 리윤률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알게 된다. 즉 대외무역은 공업 또는 농업에 들어가는 원료 또는 보조재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것이다. 지금까지 리윤률의 성질에 대하여서와 리윤률과

잉여가치률과의 특수한 차이에 대하여 불완전하게 리해하고 있었기때문에 일방으로는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확인되고있는 원료가격이 리윤률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은 리론적으로 이것을 전혀 그릇되게 설명하고있으며(토런즈)[66] 타방으로는 리카도[67]와 같이 일반적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례컨대 세계무역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료에 대한 관세의 페지나 경감이 공업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쉽게 알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원료가 될수 있는대로 자유롭게 들어올수 있게 하는것은 이미 합리적으로 수립된 보호관세제도의 중요원칙으로 되였다. 이것은 곡물관세[68]의 페지와 함께 영국의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요목표였는바 그들은 면화관세도 마찬가지로 페지할것을 특히 원하고있었다.

본래의 원료는 아니지만 보조재료인 동시에 식료품의 주요요소이기도 한 물건의 가격인하의 중요성에 관한 일례로서는 면방적업에서의 밀가루의 사용을 들수 있을것이다. 이미 1837년에 R. H. 그레그(13)는 당시 대브리텐의 면방적업에서 운전되고있던 10만대의 력직기와 25만대의 수직기가 날실에 풀물을 먹이기 위하여 1년간에 소비한 밀가루의 량을 4,100만폰드였다고 계산하였다. 그밖에도 표백이나 기타의 과정에서도 이 량의 3분의 1이 더 소비되였다. 이와 같이 소비된 밀가루의 총가치를 그는 최근 10년간에 년 34만 2,000파운드였다고 계산하고있다. 대륙에서의 밀가루가격과의 비교는 곡물관세로 말미암아 공장주들은 밀가루 한가지만 하여도 매년

---

(13) R. H. 그레그 《공장문제와 10시간로동법안》, 1837년 런던판, 115페지.

17만파운드를 더 지불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1837년에 대하여 그레그는 이렇게 더 지불한것이 적어도 20만파운드라고 보고있으며 또 어떤 상사에 있어서는 밀가루값이 높아진것이 1년간 1,000파운드에 달하였다는것을 말하고있다. 그 결과

《면밀하고 타산적인 기업가들인 대공장주들은 만일 곡물관세가 폐지되면 1일에 10시간 로동으로도 아주 충분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98페지).

곡물관세는 폐지되였다. 그밖에 면화 및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도 폐지되였다. 그러나 이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10시간로동법안[69]에 대한 공장주들의 반대는 이전 그 어느때보다도 더 격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후 곧 10시간공장로동이 법으로 되였을 때 그 첫째번 결과는 전반적 임금인하의 기도였다.

원료 및 보조재료의 가치는 그것들의 소비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치에 전부 그리고 단꺼번에 들어가지만 고정자본의 제 요소들의 가치는 다만 고정자본의 마멸정도에 따라서만, 따라서 점차적으로만 생산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리윤률은 사용자본이 얼마만큼 소비되는가 하는것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본의 가치총액에 의하여 규정된다 하더라도 생산물의 가격은 고정자본의 가격에 의하여서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로 원료의 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이것은 그저 말이 난김에 말하여둘뿐이지만—우리는 여기에서 아직도 상품들은 가치대로 판매되는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경쟁에 의하여 초래되는 가격변동은 여기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기때문에 시장의

확대 또는 수축은 개개의 상품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이 가격의 등락에 반비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제품의 가격은 원료가격의 등귀와 동일한 비률로 등귀하지는 않으며 또 원료가격의 저락과 동일한 비률로 저락하지는 않는다는것을 보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상품들이 가치대로 판매되는 경우에 비하여 리윤률은 한 경우에는 보다 더 내려가며 다른 한 경우에는 보다 더 올라간다.

그리고 또 사용되는 기계의 수량과 가치는 로동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지만 이 생산력의 장성과 동일한 비률로 즉 이 기계에 의하여 제공되는 생산물량의 증대와 동일한 비률로 증대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료가 들어가는 산업부문 즉 로동대상 자체가 이미 이전의 로동의 생산물인 산업부문들에서는 로동생산력의 증대는 바로 보다 많은 량의 원료가 일정한 량의 로동을 흡수하는 비률에서, 즉 례컨대 1로동시간에 생산물로 전화되고 상품으로 가공되는 원료의 분량의 증가에서 표현된다. 그리하여 로동생산력이 발전됨에 따라 원료의 가치는 상품생산물의 가치중 부단히 증대되는 한 구성부분을 이루는데 이것은 원료의 가치가 상품생산물의 가치에 전부 들어가기때문일뿐만아니라, 총생산물의 매개 부분에 있어서 기계의 마멸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과 새로 추가된 로동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이 모두다 부단히 감소되여가기때문이다. 이 감소운동의 결과로 원료에 의하여 형성되는 다른 가치부분은 상대적으로 증대하는데 이것은 다만 이 증대가 그 원료 자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로동의 생산성의 제고에 의하여 초래되는, 원료측에서의 해당한 가치감소로 말미암아 상쇄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그리고 또 원료와 보조재료는 로임과 꼭 마찬가지로 류

동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매차의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부단히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기계는 그 마멸분만이 그것도 우선은 준비금의 형태로 보상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 생산물이 판매될 때마다 그 마멸부분이 이 준비금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것은 사실상 결코 그렇게 중요한것이 아니며 다만 년총판매액중에서 해당한 년마멸부분이 준비금에 제공된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을뿐이다— 여기에서 원료가격의 등귀는 전체 재생산과정을 축소 또는 방해할수 있다는것이 명백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품판매로부터 얻은 가격으로는 상품의 모든 요소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기때문에 또는 그 가격으로는 생산과정을 자체의 기술적기초에 적합한 규모로 지속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기계의 일부만이 가동하게 되든가 또는 전체 기계가 관례로 되여있는 시간대로 완전히 가동할수 없게 되기때문이다.

끝으로 폐물이 나오기때문에 드는 비용은 원료가격의 변동에 정비례하여 변동하며 원료가격이 오르면 증가되고 원료가격이 내리면 감소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1850년에 이미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었다.

《원료의 가격등귀로부터 오는 큰 손실의 한 근원은 실제의 방적업자가 아니면 아마 누구에게도 눈에 띄우지 않을것이다. 즉 그것은 솜부스러기에 의한 손실이다.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면화가 등귀하면 방적업자의 비용 특히 저등급의 방사의 제조에 드는 비용은 지불되는 가격인상액보다도 높은 비률로 증가한다. 굵은 실의 방적에서 나오는 솜부스러기는 넉넉히 15%에 달한다. 따라서 면화가격이 $3\frac{1}{2}$펜스일 때에 이 률로 말미암아 중량 1폰드당 $\frac{1}{2}$펜스의 손실이 생긴다면 면화가격이 1폰드당 7펜스로 오르면 이 률로써는 손실은 벌써 1폰드당 1펜스

로 증가한다》(《공장감독관보고, 1850년 4월.》 17페지)

그러나 미국의 남북전쟁[70]의 결과로 면화가 거의 100년래 미증유의 가격으로 등귀하였을 때 보고의 말투는 전혀 달라졌다.

《현재 솜부스러기에 지불되는 가격과 솜부스러기를 공장에서 다시 원료로서 사용하는것은 아메리카면 대신에 인도면을 사용함에 있어서 생기는 솜부스러기로 인한 손실상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상한다. 이 차이는 약 $12\frac{1}{2}$%이다. 인도면의 가공에서는 손실이 25%이며 따라서 그 면화때문에 방적업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그가 면화에 지불하는것보다 $\frac{1}{4}$만큼 더 많다. 아메리카면이 1폰드당 5 내지 6펜스였을 때에는 솜부스러기로 인한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1폰드당 $\frac{3}{4}$펜스를 넘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 1폰드의 면화에 2실링의 비용이 들며 따라서 솜부스러기로 인한 손실이 6펜스에 달하는 오늘날에는 이 손실은 매우 큰것이다》(14)(《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106페지).

Ⅱ. 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 자본의 유리와 구속

우리가 이 장에서 연구하는 현상들은 그것들을 충분히 전개하기 위하여는 신용제도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전제

---

(14) 보고의 마지막 구절에는 틀린것이 있다. 솜부스러기의 손실은 6펜스가 아니라 3펜스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손실은 인도면에 있어서는 25%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카면에 있어서는 $12\frac{1}{2}$~15%에 불과하다. 우에서 5 내지 6펜스인 가격에 대하여는 동일한 률은 옳게 계산되였다. 아메리카면도 남북전쟁의 최후의 수년간에 구라파로 온것에 있어서는 솜부스러기의 비률은 이전에 비하여 왕왕 상당히 높아졌던것은 사실이였지만.—F. 엥겔스

로 하는데 이 세계시장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를 이루며 그 생활환경을 이룬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의 그러한 보다 구체적형태들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것은 자본의 일반적성질을 파악한후에야 비로소 가능한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 형태의 서술은 이 저작의 계획외에 속하는것이며 이 저작의 속편이라도 쓴다면 그것에 속하는것이다. 그렇지만 본절의 표제에 쓴것과 같은 현상들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할수 있다. 이 현상들은 첫째로는 서로 관련되여있으며 둘째로는 리윤률과도 리윤량과도 관련되여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다음과 같은 리유만으로도 간단히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이러한 현상들은 리윤률뿐만아니라 리윤량—이것은 사실상 잉여가치량과 동일하다—도 잉여가치의 량이나 그 률의 운동과는 독립하여 증감할수 있다는 외관을 조성하기때문이다.

일방으로는 자본의 유리와 구속, 타방으로는 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이것들을 각이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가?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자본의 유리와 구속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가치증대와 가치감소란 자명한것이다. 이것들이 의미하는바는 어떤 일반적인 경제적사정들로 말미암아—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사적자본의 특수한 운명이 문제인것이 아니기때문이다—기존자본의 가치가 증감한다는것 따라서 생산에 선대된 자본의 가치가 그 자본에 의하여 사용되는 잉여로동으로 말미암아 증식되는것과는 관계없이 증감한다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자본의 구속이라고 하는것은 생산을 종전의 규모로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생산물의 총가치중의 일정한 부

분들이 새로 불변자본 또는 가변자본의 요소들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가 자본의 유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종전의 규모의 한도내에서 지속하기 위하여 생산물의 총가치중 지금까지는 불변자본으로나 가변자본으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일부분이 이제는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여분으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의 유리 또는 구속은 수입의 유리 또는 구속과는 다르다. 어떤 자본 C의 년잉여가치가 례컨대 x라고 하면 자본가의 소비로 들어가는 상품들이 저렴하게 되였기때문에 종전과 동일한 분량의 기호품 등등을 얻는데 x-a로 넉넉할수 있다. 따라서 수입의 일부=a는 유리되여 이제는 소비의 증가를 위하여서든 자본으로의 재전화(즉 축적)를 위하여서든 복무할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동일한 생활방식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x+a가 필요하다면 생활방식이 제한되지 않으면 안되든가 또는 종전에는 축적되였던 수입부분=a가 이제는 수입으로서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치증대와 가치감소는 불변자본에서나 가변자본에서 또는 량자에서 다같이 일어날수 있다. 그리고 불변자본에서는 또 그 고정부분이나 류동부분에서 또는 량자에서 다같이 일어날수 있다.

불변자본으로서 고찰하여야 할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원료라고 통칭하는 원료, 보조재료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반제품과 기계와 기타의 고정자본이다.

우에서는 특히 원료의 가격 또는 가치의 변동과 이것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타의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리윤률은 원료가치의 높이에 반비례한다는 일반적법칙을 얻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어떤 기업에

투하되는 자본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자본투하 즉 화폐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 투하되는 자본을 도외시하면 이미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큰 한 부분은 류통분야에 있으며 다른 부분은 생산분야에 있다. 한 부분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으며 화폐로 전화되여야 한다. 다른 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화폐로서 존재하고있으며 생산조건들로 재전화되여야 한다. 끝으로 제3부분은 생산분야내에 있는데 그 일부분은 원료, 보조재료, 시장에서 구입된 반제품, 기계 및 기타의 고정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의 시초의 형태대로 존재하며 다른 한부분은 아직 제조중에 있는 생산물로서 존재하고있다. 이 경우에 가치증대 또는 가치감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은 이 구성부분들간의 호상비률에 아주 크게 달려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선 고정자본은 전부 제외하고 불변자본중 원료, 보조재료, 반제품, 제조중에 있는 상품과 완성되여 시장에 있는 상품으로써 구성되는 부분만을 고찰하자.

원료의 가격 례컨대 면화가격이 오르면 보다 저렴한 면화로써 제조된 면제품—방사와 같은 반제품과 직물 등등과 같은 완성품—의 가격도 오른다. 마찬가지로 또한 아직 가공되지 않고 창고에 있는 면화의 가치도 가공중에 있는 면화의 가치도 오른다. 이러한 면화는 반작용에 의하여 보다 많은 로동시간의 표현으로 되기때문에 그것이 구성부분으로서 들어가는 생산물에 그 면화자체가 시초에 가지고있은것보다도 또 자본가가 그것에 지불한것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첨가한다.

그리하여 원료가격이 올라갈 때 대량의 완성상품이 그

완성정도는 여하간에 시장에 현존하면 이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와 함께 기존자본의 가치증대가 일어난다. 생산자들의 수중에 있는 원료 등의 재고에 있어서도 동일한것을 말할수 있다. 이 가치증대는 개개의 자본가에게 있어서나 또는 자본의 한 특수한 생산부문 전체에 있어서까지도 원료가격의 등귀로 하여 생기는 리윤률의 저하를 보상할수 있으며 또 보상하고도 남을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쟁의 영향의 세세한것에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것들을 지적할수 있다. 1. 원료의 재고가 상당히 많다면 그것은 원료생산지에서 발생하는 가격등귀에 반대작용을 한다. 2. 시장에 반제품 또는 완성상품이 가득 쌓여있으면 완성상품과 반제품의 가격이 그 원료의 가격에 비례하여 등귀하는것을 방해한다.

이것과 반대되는것은 원료가격이 저락하는 경우인데 이 저락은 기타의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한 리윤률을 제고시킨다. 시장에 있는 상품, 아직 제조중에 있는 물품, 원료의 재고는 다 감가되며 이로 말미암아 리윤률의 동시적제고에 반대작용을 미친다.

례컨대 영업년도말에, 원료가 대량으로 새로 제공될 시기에, 따라서 농업생산물에 있어서는 수확직후에 생산분야와 시장에 있는 재고가 적으면 적을수록 원료가격변동의 영향이 더욱 순수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전체 연구는 가격의 등락은 현실적가치변동의 표현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가격변동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되고있으므로 가격변동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실상 아무래도 좋다. 따라서 여기에서 서술되고있는것은 가격의 등락이 가치변동

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신용제도, 경쟁 등등의 영향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

리윤률은 선대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생산물가치의 초과분의 비률과 동등하므로 선대자본의 가치감소에서 오는 리윤률의 제고는 자본가치의 손실과 결부되여있을것이며 또 선대자본의 가치증대에서 오는 리윤률의 저락은 리익과 결부될수 있을것이다.

불변자본의 다른 한 부분 즉 기계나 일반적으로 고정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경우에 일어나는 가치증대 특히 건축물, 토지 등등과 관련되는 가치증대는 지대에 관한 학설을 떠나서는 연구될수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 취급될수 없다. 그러나 가치감소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일반적인 중요성을 가지고있다.

우선 부단히 개량이 진행되고 그때문에 현존하는 기계, 공장설비 등등은 상대적으로 그 사용가치가 감소되며 따라서 또 그 가치도 감소된다는것. 이 과정이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것은 새로 도입된 기계가 아직 일정한 성숙도에 달하지 않은 최초의 시기이며 따라서 이 시기에 기계는 그 가치를 미처 재생산하기전에 부단히 낡아빠진다. 이것은 그러한 시기에 흔히 로동시간의 무제한한 연장, 주야교대제작업이 실시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의 마멸도가 너무 높이 계산되지 않고 보다 짧은 기간내에 기계의 가치가 재생산되는것이다. 반대로 만약 기계의 작용기간이 짧은것(개량이 예견되기때문에 기계의 수명이 짧은것)이 그와 같이 하여 보상되지 않는다면 기계는 과대한 가치부분을 무형의 마멸분으로서 생산물에 이전하게 되며 따라서 그것은 손로동과도 경쟁할수 없게 될것이다.(15)

기계나 건축설비, 일반적으로 고정자본이 일정한 성숙도에 도달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것이 적어도 그 근본구조에 있어서 비교적 장기간 변함이 없다면 이 고정자본의 재생산방법이 개량되는 결과로 류사한 가치감소가 생긴다. 이 경우에 기계 등등의 가치가 감소하는것은 그것이 보다 새로운, 보다 생산적인 기계 등등에 의하여 급속히 배제되든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 그 가치가 감소되기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왜 대기업이 종종 첫째번 소유자가 파산한후에 둘째번 소유자의 수중에서 비로소 번영하는가 하는 원인의 하나인데 그 기업을 저렴하게 구입한 둘째번 소유자는 그때문에 처음부터 보다 적은 투자로 자기의 생산을 시작한다.

농업에서는 생산물의 가격을 등락시키는것과 동일한 원인이 자본의 가치도 증감시킨다는것이 특히 눈에 띄는데 그것은 그 자본 자체가 대부분 곡물, 가축 등등의 생산물로써 구성되기때문이다(리카도[73]).

다음에는 가변자본에 관하여 더 언급하여야 할것이다.

로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 로동력의 가치가 증대하고 또는 이와 반대로 이 생활수단의 가치가 감소되기때문에 로동력의 가치가 감소되는 한에서는—그런데 가변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는 이 두 경우 이외에는 달리 표현되지 않는다—로동일의 길이가 변하지

---

(15) 이 실례는 개중에도 배버지[71]의 저서에서 볼수 있다. 통례의 보조수단—로임인하—은 이 경우에도 응용되며 따라서 이 부단한 가치감소는 캐어리씨가 그의 조화론 적두뇌속에서 몽상하는바와는[72] 전혀 다른 작용을 한다.

않는다면 이 가치중대에는 잉여가치의 감소가 상응하고 이 가치감소에는 잉여가치의 중대가 상응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동시에 다른 사정들—자본의 유리와 구속—도 결부될수 있는데 이 사정들은 앞에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제 간단히 론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력의 가치감소(이것은 로동의 실질가격의 등귀와도 결부될수 있다)의 결과로 로임이 내리면 종전에 로임에 투하되였던 자본의 일부분은 유리된다. 가변자본의 유리가 일어나는것이다. 이 사정이 새로 투하되는 자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란 이 자본이 보다 높은 잉여가치률을 가지고 작용한다는것뿐이다. 종전보다 적은 화폐로써 동일한 분량의 로동을 운동시키며 그리하여 로동의 지불부분을 희생으로 하여 부지불부분이 중대한다. 그러나 종전부터 운전되고있는 자본에 있어서는 잉여가치률이 제고될뿐만아니라 또 그밖에 종래에 로임에 투하되였던 자본의 일부가 유리된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구속되여있었으며 기업을 종전의 규모로 지속하기 위하여는 생산물의 판매액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로임으로 투하되고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변함없는 부분을 이루었던것이다. 이제는 이 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동일한 기업의 확대를 위하여서이든 다른 생산분야에서 기능하기 위하여서이든간에 새로운 투자로서 리용할수 있게 된다.

례컨대 매주 500명의 로동자의 로동을 사용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500파운드가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400파운드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생산된 가치의 량이 두 경우에 다 1,000파운드라면 첫째 경우에는 매주의 잉여가치

량은 500파운드, 잉여가치률은 $\frac{500}{500}$=100%였었는데 임금이 저락한후에는 잉여가치량은 1,000-400=600파운드로 되며 잉여가치률은 $\frac{600}{400}$=150%로 된다. 그리고 잉여가치률의 이러한 제고는 400파운드의 가변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불변자본으로써 동일한 생산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미 기능하고있는 기업에서는 이 경우에 가변자본의 가치감소의 결과로 잉여가치량이 500파운드에서 600파운드로 증대하고 잉여가치률이 100%에서 150%로 제고되여있을뿐만아니라 그밖에 100파운드가 가변자본에서 유리되며 이 100파운드로 다시 로동을 착취할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로동량이 보다 유리하게 착취될뿐만아니라 또한 100파운드의 유리로 말미암아 500파운드라는 동일한 가변자본으로 전보다 많은 로동자들을 보다 높은 잉여가치률로 착취할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보자. 사용되는 로동자가 500명이고 생산물분할의 최초의 분배비률은 400v+600m=1,000이며 따라서 잉여가치률은 15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 로동자는 매주 $\frac{4}{5}$파운드=16실링을 받는다. 가변자본의 가치가 증대되였기때문에 500명의 로동자에 이제는 매주 500파운드의 비용이 든다면 매개 로동자의 주임금은 1파운드로 되며 400파운드로는 400명의 로동자밖에 움직일수 없게 된다. 따라서 종래와 동일한 수의 로동자가 사용된다면 500v+500m=1,000으로 되고 잉여가치률은 150%에서 100%로 즉 $\frac{1}{3}$이 저락할것이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에 의하여 이 잉여가치률이 낮

아진다는것이 유일한 영향일것이다.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다면 리윤률도 그에 상응하여 같은 비률로써는 아니더라도 저락할것이다. 례컨대 c=2,000이라고 하면 첫째 경우에는 2,000c+400v+600m=3,000이고 m′=150%, p′=$\frac{600}{2400}$=25%로 된다. 둘째 경우에는 2,000c+500v+500m=3,000이고 m′=100%, p′=$\frac{500}{2500}$=20%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미 투하되고있는 자본에 있어서는 결과는 이중적일것이다. 400파운드의 가변자본으로써는 이제는 400명의 로동자밖에 사용할수 없으며 그것도 그 경우의 잉여가치률은 또한 100%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400파운드의 총잉여가치를 제공할뿐이다. 그리고 또 2,000파운드의 가치의 불변자본을 기능하게 하려면 500명의 로동자가 필요하므로 400명의 로동자는 1,600파운드의 가치의 불변자본밖에 운동시킬수 없다. 따라서 생산을 종래의 규모대로 계속하여 기계의 $\frac{1}{5}$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변자본을 100파운드 증대시켜 종전과 같이 500명의 로동자가 사용될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것은 종래에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었던 자본이 구속되는데 의하여서이다. 즉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축적의 일부분이 이제는 다만 보충을 위하여 사용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입으로서 지출되기로 된 부분이 구 자본에 추가되는데 의해서이다. 그 결과로 100파운드만큼 많은 가변자본의 투하로써 100파운드만큼 적은 잉여가치가 생산된다. 동일한 수의 로동자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동시에 매개 로동자가 제공하는 잉여가치는 감소된다.

가변자본의 유리에서 오는 리익과 그 구속에서 오는 손

해는 어느것이나 다만 이미 투하되여있는 자본, 따라서 주어진 사정하에서 재생산되고있는 자본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에 있어서는 일방에서 얻는 리익, 타방에서 입는 손실은 잉여가치률의 제고 또는 저락에 국한되며 그리고 또 비록 비례적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리윤률의 변동에 국한된다.

바로 우에서 연구한 가변자본의 유리와 구속은 가변자본의 요소들 즉 로동력의 재생산비의 가치감소와 가치증대의 결과이다. 그러나 로임률이 변하지 않아도 생산력이 발전한 결과로 동일한 분량의 불변자본을 움직이기 위하여 보다 적은 로동자밖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역시 가변자본은 유리될 수 있을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동생산력이 감퇴한 결과로 동일한 분량의 불변자본에 대하여 보다 많은 로동자가 필요하게 되면 반대로 추가적가변자본의 구속이 일어날수 있다. 이와 반대로 종전에 가변자본으로서 사용된 자본의 일부분이 이제는 불변자본의 형태로 사용되며 따라서 동일한 자본의 구성부분들사이에서의 분배가 달라질따름인 경우에는 그것은 잉여가치률 및 리윤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여기에서 고찰되는 부류의 자본의 구속과 유리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미 본바와 같이 불변자본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치증대 또는 가치감소의 결과로 구속 또는 유리될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도외시하면 불변자본의 구속은 로동생산력이 증대하여 동일한 로동량이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며 따라서 보다 많은 불변자본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가변자본의 일부분이 불변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는다고 전

제하고). 동일한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레컨대 농업에서 보게 되는바와 같이 생산력이 감퇴하여 동일한 량의 로동이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생산수단을 레컨대 보다 많은 종자, 비료, 배수시설 등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어날수 있다. 여러가지 개량들과 자연력의 응용 등등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적은 가치의 불변자본이 이전에는 더 많은 가치의 불변자본이 수행한것과 동일한 기술적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불변자본은 가치감소가 없어도 유리될수 있다.

제2부에서 본바와 같이[74] 상품이 판매되여 화폐로 전화되면 이 화폐의 일정한 부분은 다시 불변자본의 소재적요소들로—그것도 매개 생산부문의 일정한 기술적성격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비률로—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로임 따라서 가변자본을 도외시하면—보조재료를 포함한 원료인데 이 보조재료는 광업과 채취산업일반에서와 같이 본래의 원료가 들어가지 않는 생산부문들에서 특히 중요하다. 가격중 기계의 마멸분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은 그 기계가 일반적으로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동안은 오히려 관념적으로 계산에 들어간다. 그 부분이 지불되여 화폐로 보상되는것이 오늘인가 래일인가 즉 자본의 회전기간의 어느 시기의 일인가 하는것은 크게 문제로 되지 않는다. 원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원료가격이 등귀하면 로임을 공제한후에 그것을 상품가치에서 완전히 보상하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격심한 가격변동은 재생산과정에서 중단, 대충돌, 지어는 파국까지도 야기한다. 특히 본래의 농업생산물 즉 유기적자연에서 나오는 원료는 수확고의 변동 등등에 의하여 이러한 가치변동—여기에

서는 아직도 신용제도는 전혀 도외시한다—을 받는다. 여기서는 통제할수 없는 자연조건들인 계절의 좋고 나쁨 등등에 따라서 동일한 량의 로동이 극히 각이한 량의 사용가치로 되여 나타날수 있으며 또 그때문에 이 사용가치의 일정한 량은 극히 각이한 가격을 가질수 있다. x라는 가치가 상품 a의 중량 100폰드로 표시된다면 a의 1폰드의 가격은 $\frac{x}{100}$이며 1,000 폰드의 a로 표시된다면 a의 1폰드의 가격은 $\frac{x}{1000}$이다 등등.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원료가격변동의 하나의 요소이다. 둘째 요소는 여기에서는 다만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서 언급하는것이지만—경쟁이나 신용제도는 여기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고찰범위밖에 있으므로—다음과 같은것이다. 즉 사물의 본성으로 보아 당연한것이지만 식물성 및 동물성 소재의 성장과 생산은 일정한 정도의 자연적기간과 결부되여있는 일정한 유기적법칙들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런 소재는 례컨대 기계나 기타의 고정자본, 석탄, 광석 등등의 증가가 —보통의 자연조건을 전제하면—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극히 단기간에 일어나는것과 동일한 정도로 급격히 증가될수는 없다. 그러므로 불변자본중 기계 등등의 고정자본으로 구성되는 부분의 생산과 증가가 불변자본중 유기적원료로써 구성되는 부분보다 더 빨리 진척되고 그때문에 이 유기적원료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보다 더 급속히 증가하고 따라서 그 가격이 등귀한다는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며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기까지도 하다. 이 가격등귀는 사실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1) 가격의 등귀가 운수비의 증대를 메우기때문에 이 원료들은 더욱 먼

곳으로부터 공급된다는것. 2) 이러한 원료의 생산이 증가된다는것. 그러나 생산물량의 증가는 사물의 본성으로 보아 아마도 1년후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일어날수 있을것이다. 3) 이전에 리용되지 않았던 온갖 대용품이 리용되게 되고 페물이 더 경제적으로 취급되게 되는것. 가격의 등귀가 생산의 확대와 공급에 대하여 극히 현저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때에는 대개 이미 전환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원료와 이 원료를 요소로 하는 모든 상품들의 등귀가 오래 지속된 결과로 수요가 감퇴하며 따라서 또 원료가격에도 반작용이 일어난다. 이 반작용이 각이한 형태들로의 자본의 가치감소를 통하여 야기하는 동요들을 도외시하더라도 곧 언급하게 될 다른 일련의 사정들이 또 나타난다.

그러나 우선 상술한것으로부터 이미 다음과 같은것이 명백하다. 즉 자본주의적생산이 발전하면 할수록, 따라서 불변자본중 기계 등등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을 갑자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축적이(특히 번영기에 볼수 있는바와 같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기계나 기타 고정자본의 상대적과잉생산은 더 커지며 그만큼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의 상대적과소생산은 더 빈번하여지며 그만큼 이러한 원료가격의 상술한바와 같은 등귀와 이에 상응하는 반작용은 더 현저하게 된다.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주요요소의 하나인 이 격심한 가격변동을 원인으로 하는 심한 동요도 그만큼 더 빈번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원료가격의 등귀로 말미암아 일방으로는 수요의 감소가 일어나고 타방으로는 여기에서는 생산의 확대가, 저기에서는 보다 먼곳에 있어서 종래에는 그리 리용되지 않았거나 전혀 리용되지 않았던 생산지로부터의 공급이 야기

되거나 이 량자에 의하여 수요를 초과하는—특히 원래의 높은 가격에 있어서는 수요를 초과하는—원료공급이 일어남으로써 이 높은 가격의 폭락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각이한 관점들로부터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료생산물의 가격의 갑작스러운 폭락은 그 재생산을 저해하고 그리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생산하고있는 수출국들의 독점이 회복된다. 아마도 어떤 제한을 받으면서 회복될것이나 여하간 회복된다. 물론 원료의 재생산은 일정한 자극의 결과로 확대된 규모에서 진행된다. 특히 다소간에 이 생산을 독점하고있는 나라들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기계 등등의 량이 증대된 결과로서 진행되는 생산의 토대—약간의 동요가 있은후에 이제는 새로운 정상적인 토대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여야 할—는 최후의 회전순환중에 있었던 과정들로 말미암아 심히 확대되였다. 그러나 그 경우에 제2차적 원료원천지들의 일부에서는 확대된지 얼마 안되는 재생산이 다시 몹시 저해된다. 그리하여 레컨대 수출표에 의하여 명백히 지적할수 있듯이 최근 30년간(1865년까지의) 아메리카의 면화생산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인도의 면화생산은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갑자기 다시 다소간 오래동안 감퇴하였다. 원료의 가격이 등귀할 때에는 산업자본가들은 서로 모여서 련합체를 만들어 생산을 조절하려고 한다, 레컨대 1848년 면화가격이 등귀한후에 만체스터에서 그러하였으며 아일랜드의 아마생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자극이 사라지고 《가장 저렴한 시장에서 구매한다》는(상기 련합체들이 목적하는바와 같이 적합한 원산국이 소여시기에 제공할수 있는 직접적인 일시적인 가격에는 관계없이 이 나라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할 대신에) 경쟁의 일반적원칙이 다시 지배하게 되자마자 공

급의 조절은 다시 《가격》에 내맡기여진다. 원료생산의 공동적인, 결정적인 그리고 예측적인 통제—이러한 통제는 대체로 자본주의적생산의 법칙들과 전혀 량립할수 없는것이며 따라서 언제나 헛된 희망에 그치거나 또는 직접적인 큰 위험과 궁지에 빠졌을 순간에 례외적으로 취하는 공동조치에 한정되는것이다—의 의도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절할것이라는 신념에 자리를 양보한다.(16) 이러한 경우에 자본가들의 미신은 대단히 혹심한것이며 그것은 공장감독관들까지도 그들의 보고중에서 이에 대하여 몇번이고 당황하고있는 정도이다. 풍년과 흉년의 교체도 물론 보다 저렴한 원료를 가져오게 한다. 이 사정이 수요의 확대에 미치는 직접적영향은 도외시하더라도 리윤률에 미치는 상술한바와 같은 영향이 자극으로서 여기에 첨가된다. 그 경우에 기계 등등의 생산이 원료생산에 점차로 앞서게 된다는 상술한 과정은 보다 큰 규모로 반복된다. 원료의 개량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여 비단 량적으로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원료가 충분히 공급되여 례컨대 아메리카적품질의 면화가 인도로부터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구라파로부터 오래 지속되며 규칙적으로 증대하는 부

---

(16) 이상의것이 씌여진 때(1865년)로부터 모든 문명국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의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현저히 강화되였다. 급속히 그리고 거대하게 팽창하는 현대적생산력이 그 운동이 복종하여야 할 자본주의적상품교환의 법칙들을 매일과 같이 더욱더 심하게 벗어난다는 사실—이 사실은 오늘날 자본가들 자신의 의식에 점점 더 침투하고있다. 이것은 특히 두개 징조에서 나타나고있다. 첫째로는 근래의 일반적인 보호관세열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출능력있는 상품을 제일 많이 보호한다는데 의하여 특히 구래의 보호관세주의와 구별된다. 둘째로는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따라서 또 가격과 리윤을 조정하기 위한 대생산분야 전체의 공장주들의 카르텔(트레스트)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이 실험들은 경제의 날씨가 비교적 좋은 시기에 있어서만 실시될수 있는것이다. 폭풍이 불어오기만 하면 이러한 실험들은 당장 휘날려 가버리며 생산이 조정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당할 사명을 가진것은 확실히 자본가계급이 아니라는것이 증명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은 이러한 카르텔의 목적은 종래보다도 더 급속히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우게끔 배려한다는것뿐이다.—F. 엥겔스

단한 수요가 필요할것이다(인도의 생산자가 그의 본국에서 어떤 경제적조건에 처하여있는가는 전혀 도외시한다). 그러나 원료의 생산분야는 발작적으로 때로는 갑자기 확대되고 그다음에는 또 급격히 축소된다. 이 모든것도 또 자본주의적 생산일반의 정신도 1861~1865년의 면화기근[75]에 의하여 잘 연구할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원료가 일시적으로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또 볼수 있었다. 사실 공급은 충분하여도 그것이 비교적 곤난한 조건하에서 충분한것이라면 가격이 등귀할수도 있을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원료가 결핍되여있을수도 있다. 면화공황시에는 최초에 이 후자의 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의 력사에서 최근의 현대에 접근하면 할수록 더욱더 규칙적으로 특히 결정적산업부문들에서 유기적자연에서 획득한 원료의 상대적인 등귀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그후의 가치감소의 교체가 부단히 반복되는것을 보게 된다. 이상에서 서술된것은 공장감독관들의 보고들에서 빌려온 다음과 같은 실례들에서 보게 될것이다.

력사의 교훈—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농업을 고찰하더라도 얻을수 있는것이지만—은 자본주의체계는 합리적인 농업의 방해로 된다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합리적인 농업은 자본주의체계와 량립될수 없으며(비록 자본주의체계가 농업의 기술적발전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로동하는 소농민의 손이든가 또는 련합된 생산자들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우에서 언급한 영국의 공장보고서들로부터의 례증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영업상태는 비교적 좋다. 그러나 호황기와 불황기와의 순환은 기계의 증가에 따라 단축되며 또 그와 함께 원료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라 영업상태의 변동도 보다 빈번히 반복된다…1857년의 공황이 있은 후 현재는 신용이 회복되였을뿐만아니라 공황 그 자체가 거의 완전히 망각된듯하다. 이 호전의 지속여부는 원료의 가격에 아주 크게 달려있다. 이미 나타난 징조로 보면 약간의 경우들에는 이미 최고한에 달하고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제조업은 점점 더 불리하게 되며 마침내 전혀 리윤을 가져오지 않게 될것이다. 레컨대 소모사업의 리익이 컸던 1849년과 1850년을 들어보면 영국산 소모사의 가격은 1폰드당 13펜스이고 오스트랄리아산은 14펜스로부터 17펜스였으며 1841년부터 1850년까지의 10년간의 평균으로는 영국산 양모의 평균가격은 1폰드당 14펜스를 넘은 일이 없고 오스트랄리아산은 17펜스를 넘은 일이 없다는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재난의 해였던 1857년초에는 오스트랄리아산 양모는 23펜스였다. 그것이 공황중의 최악의 시기였던 12월에는 18펜스로 내렸으나 1858년중에는 다시 현재의 가격21펜스로 올랐다. 영국산 양모도 역시 1857년초에 20펜스로부터 시작하여 4월과 9월에는 21펜스로 올랐고 1858년 1월에는 14펜스로 내렸으며 그후에는 17펜스로 올랐으며 따라서 상술한 10년간의 평균보다 1폰드당 3펜스가 높았다…이것은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에 근사한 가격에 기인하였던 1857년의 파멸이 망각되고있든가 또는 현존하는 방추가 방적할수 있는 바로 그만큼한 양모밖에는 생산이 안되든가 또는 직물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등귀할것이라든가 하는것을 보여준다…그러나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온바에는 믿기 어려울만한 짧은 기간에 방추와 직기의 수뿐만아니라 그 운전속도도 몇배로 되여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로부터 프랑스에로의 양모수출도 거의 그와 동일한 비률로 증가하였는데 한편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현유의 양의 평균년령은 점점 저하되고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사육자들은 그들이 보유하고있는 가축을 될수 있는대로 빨리 화폐로 전화하려고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이런것을 모르고 일정한 유기적법칙들에 따라서 증가할수밖에 없는 생산물의 공급에 의하여 그 성공여부가 좌우되는 기업에 자기들의 기능과 자본을 건 사람들을 볼 때 종종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모든 원료의 수요공급상태는…면방직업에서의 많은 동요 그리고 또 1857년 가을의 영국의 양모시장의 상태와 그에 따라 발생한 상업공황을 설명하는것 같다》(17)(《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10월.》, 56~61페지에 있어서의 R. 베이커).

요크샤의 웨스트라이딩의 소모사공업의 번영기는 1849~1850년이였다. 거기에서 이 공업에 취업하고있은 인원수는 1838년에 29,246명, 1843년에 37,000명, 1845년에 48,097명, 1850년에 74,891명이였다. 같은 지방에서 력직기수는 1838년에 2,768대, 1841년에 11,458대, 1843년에 16,870대, 1845년에 19,121대, 1850년에 29,539대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50년 [10월]》 60페지). 소모사공업의 이 번영은 1850년 10월에는 이미 의심되기 시작하였다. 1851년 4월의 보고에서 부감독관 베이커는 리즈와 브래드퍼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상업상태는 얼마전부터 극히 불만족스러운것으로 되였다. 소모사 방적업자들은 1850년의 리윤을 급속히 상실하였으며 직물업자의 대다수도 그리 나은 편이 아니였다. 내가 보는바에 의하면 지금은 이전의 어느때보다도 많은 양모기계가 쉬고있으며 아마방적업자들도 로동자들을 해고하고 기계를 쉬우고있다. 섬유공업의 순환은 지금은 실제로 극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방추의 생산능력과 원료의 분량과 인구의 증가사이에 아무런 균형도 유지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52페지)

면방적업도 마찬가지이다. 우에서 방금 인용한 1858년 10월의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

(17) 우리는 베이커씨와 함께 1857년 양모공황을 원료와 제품간의 가격의 불균형으로써 설명하지 않는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불균형 그 자체는 하나의 징조에 불과하였고 공황은 전반적인것이였다.—F. 엥겔스

《공장에서의 로동시간이 확정된 이래 모든 섬유공업의 원료소비액, 생산액, 임금액은 간단한 비례법으로 환원되였다…나는 블랙번의 현임시장 베인즈씨의 면방직업에 관한 최근의 보고를 다음에 인용하겠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지방의 산업통계를 비상히 면밀하게 종합하고있다.

〈매 현실 마력은 전방기가 붙은 자동방추 450개, 또는 쓰롯슬방추 200개, 또는 실감개, 날치우개, 풀먹임기계가 붙은 40인치폭 직기 15대를 움직인다. 1마력당 종업로동자수는 방적에서는 $2\frac{1}{2}$명, 직포에서는 10명이다. 그들의 평균임금은 1주 1인당 $10\frac{1}{2}$실링이 좀 넘는다… 가공되는 평균번수는 경사에 있어서는 30~32번이고 위사에 있어서는 34~36번이다. 매주 생산되는 방사률 1방추당 13온스라고 가정하면 1주에는 82만 4,700폰드의 방사가 나오며 그것을 위하여 2만 8,300파운드의 면화 97만폰드 즉 2,300퉁구리가 소비된다…우리 지방(블랙번의 주위 반경 5마일이내의 지역)에서 매주의 면화소비는 153만폰드 즉 3,650퉁구리인데 그 비용가격은 4만 4,625파운드이다. 이것은 련합왕국의 전체 면방적업의 $\frac{1}{18}$, 기계직조업 전체의 $\frac{1}{6}$에 해당한다.〉

따라서 베인즈씨의 계산에 의하면 왕국의 면방추총수는 2,880만개이며 이것을 충분히 가동시키기 위하여서는 년 14억 3,208만폰드의 면화가 필요할것이다. 그러나 면화 수입량은 수출량을 공제하고 1856년 및 1857년에는 10억 2,257만 6,832폰드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4억 950만 3,168폰드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친절히도 나에게 해명하여준 베인즈씨가 생각하는바에 의하면 블랙번지방의 소비에 기초한 년면화소비량의 계산에서는 방적되는 번수뿐만아니라 기계의 우수성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과대한 결과가 나올것이라 한다. 그는 련합왕국의 년 총면화소비량을 10억폰드로 보고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이 옳고 현실적으로 2,250만폰드의 공급초과가 일어나고있다면 수요와 공급은 지금은 거의 균형을 유지하고있는것 같이 생각된다. 그런데 베인즈씨에 의하면 그 자신의 지방에서 설치중에 있으며 따라서 기타의 지방들에서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판단되는 추

가적 방추와 직기를 더 고려에 넣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된다》(59~61페지).

Ⅲ. 일반적례증: 1861~1865년의 면화공황

전사(前史) 1845~1860년

1845년. 면방직업의 번영기. 매우 낮은 면화가격. 이에 관하여 L. 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최근 8년동안에 나는 지난 여름과 가을에 있어서와 같이 영업이 그렇게 활기띤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면방적업에서 그러하였다. 온 반년을 통하여 매주 나는 공장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 보고를 받았다. 그중에는 새로운 공장들이 일어섰으며 얼마 안되는 수였지만 텅 비고있었던 공장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발견한것도 있었으며 조업중에 있던 공장들이 확장되여 새로운 보다 강력한 증기기관이 설치되고 많은 작업기가 증설된것도 있었다》(《공장감독관보고. 1845년 10월.》 13페지).

1846년. 불평이 시작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매우 많은 면방적공장주들로부터 그들의 영업의 부진상태에 관한 불평을 듣고있다…최근 6주간에 몇개의 공장들은 보통 하루에 12시간으로부터 8시간으로 조업을 단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은 확대되는것 같다…면화가격의 심한 등귀가 일어났으나…제품의 가격등귀는 나타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오히려…그 가격은 면화가격의 등귀 이전보다도 낮아졌다. 최근 4년간의 면방적공장수의 대증가는 일방으로는 원료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타방으로는 시장에 대한 제품공급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이 두 원인은 원료공급과 제품수요가 변하지 않은 한 다같이 리윤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 두 원인은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주

었다. 왜냐하면 일방으로는 최근에 면화의 공급이 부족하였으며 타방으로는 국내외 여러 시장에서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였기때문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46년 10월.》 10페지).

원료수요의 증가와 시장의 제품공급과잉은 물론 서로 손을 맞잡고 진행되는것이다.—기왕이니 말하지만 당시의 산업확장과 그뒤에 계속된 불경기는 면방직업지방에만 국한된것은 아니였다. 브래드퍼드의 소모사공업지방에는 1836년에는 318개의 공장이 있었을뿐인데 1846년에는 490개나 있었다. 이 수자는 결코 실제적인 생산증가를 표시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공장들도 동시에 현저히 확대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아마방적업에도 타당하다.

《이 모든것은 최근 10년간 다소간에 시장의 공급과잉의 원인으로 되였는데 현재의 영업부진은 대부분 이 과잉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영업의 부진상태가 공장과 기계의 그처럼 급속한 확대로부터 온다는것은 전적으로 당연한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46년 10월.》 30페지).

1847년. 10월에는 화폐공황. 할인률은 8%. 그 이전에 이미 철도투기, 동인도수형투기는 파국에 이르고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면화, 양모 및 아마의 수요가 이러한 산업들의 확장에 따라 증가한데 대하여 베이커씨는 대단히 흥미있게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바에 의하면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특히 그 공급이 평균 이하로 감소한 시기에 일어났으므로 화폐시장의 혼란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이 산업들의 현재의 부진상태를 설명하기에 거의 충분한것이다. 이 견해는 나 자신의 관찰에 의하더라도 그리고 사업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들은바에 의하더라도 완전히 확증된다. 이러한 각이한 산업부문들은 할인이 아직도 겨우 5%나 그 이하로 될수 있었을때에 이미 심한 부진상태에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생사의

공급은 풍부하였고 가격은 적당하였으며 따라서 영업도 활기를 띠였는데…최근 2~3주간에는 의심할바없이 화폐공황이 견사공장주들에게뿐만아니라 그들의 주요고객인 류행복제조업자들에게도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발표된 공식보고를 보면 면방직업은 최근 3년간에 약 27% 증가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때문에 면화의 가격은 개략적으로 말하여 1폰드당 4펜스로부터 6펜스로 올랐는데 방사는 공급이 증가된 덕택으로 이전의 가격을 조금 넘고있는데 불과하다. 양모공업은 1836년부터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그것은 요크셔에서는 40%, 스코틀랜드에서는 그이상 증가하였다. 소모사공업의 확장은 더욱 크다(18). 이 부문에서는 같은 기간에 74% 이상의 확장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원모의 소비는 막대하게 증가하였다. 아마공업은 1839년이래 잉글랜드에서는 약 25%, 스코틀랜드에서는 22%,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90%의 증가를 보여준다(19). 이 결과는 같은때에 아마가 흉작이였으므로 원료는 1톤당 10파운드 올랐는데 반대로 방사가격은 매 한 묶음에 6펜스 저락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47년 10월.》 30~31페지).

1849년. 1848년의 마지막 수개월이래 영업상황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였다.

《아마가격은 매우 저렴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상당한 리윤을 확실히 보장할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공장주들은 자기의 영업을 부단히 계속하였다. 양모공장주들은 이해의 처음에는 잠시 대단히 분망하였다.…그러나 내가 념려한것은 양모제품의 위탁판매가 종종 현실적수요를 대신한다는 사실, 그리고 외관상 번영의 시기 즉 완전취업의 시기가 정당한 수요의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였다. 수개월간 소모사업은 특히 호경기였다…상술한 기간의 처음에는 양모가 특히 저렴하였다. 방적업자들은 유리한 가격으로 그리고 또 상

---

(18) 영국에서는 짧은 털로 방모사를 방적하여 직조하는 양모공업(주요 중심지는 리즈)과 긴털로 소모사를 방적하여 직조하는 소모사공업(중심지는 요크셔의 브래드퍼드)과는 엄밀히 구별되여있다.—F. 엥겔스

(19) 아일랜드에서의 아마사기계방적업의 이 급속한 확장은 그당시 독일(슐레지엔, 라우지츠, 웨스트팔렌)의 수방사제아마포수출에 치명적타격을 주었다.—F. 엥겔스

당한 량을 저장하였다. 양모가격이 춘기경매에서 등귀하였을 때 방적업자들은 그때문에 리익을 보았으며 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고 절박한것이였기때문에 그들은 이 리익을 계속 유지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4월].》 42페지).

《우리가 최근 3~4년이래 공장지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영업상황의 변동을 주시한다면 어디인가 큰 교란의 원인이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거기에는 증가된 기계의 거대한 생산력이 하나의 새로운 요소로 된것이 아닌가?》(《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4월.》 42~43페지)

1848년 11월, 1849년 5월 및 그해 여름부터 10월까지에는 영업이 더욱더 활기를 띠였다.

《특히 브래드퍼드 및 핼리팩스를 중심으로 하여 군집하고있는 소모사직물제조업들에서 그러하였다. 이 영업은 과거 어느때에는 비록 근사하게나마 현재의 규모에 도달한 일이 없었다…원료투기와 앞으로 있을수 있는 원료공급을 예견할수 없다는 사정은 이전부터 면방직업에서는 다른 어떤 생산부문에서보다도 더 큰 교란과 보다 더 빈번한 동요를 환기하였다. 지금 여기에는 거치른 면제품의 재고가 퇴적하고있으며 그것은 소방적업자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또 이미 손해를 주게 되여 그들중에는 조업을 단축하고있는자들도 많다(《공장감독관보고. 1849년10월.》 64~65페지).

1850년. 4월. 계속 호경기. 례외

《바로 굵은 번수의 방사와 중직물을 위한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였기때문에 면방직업이 일부에서는 대불경기…소모사공업을 위하여 최근에 설비된 기계의 증대도 류사한 반응을 초래하지 않을가 념려된다. 베이커씨의 계산에 의하면 1849년만 하여도 이 생산부문에서는 직기의 생산물은 40%, 방추의 생산물은 25~30% 증가하였으며 게다가 확장은 지금도 동일한 비률로 계속되고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50년 4월.》 54페지).

1850년. 10월.

《면화가격은 계속…이 산업부문에서 심한 불경기의 원인으로 되고있는데 원료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들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생사가격의 대폭동은 이 부문에서도 자주 불경기를 초래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50년 10월.》 14페지).

여기에서 인용되고있는 왕립아일랜드아마재배협회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아일랜드에서는 다른 농산물들의 가격은 낮았는데 아마의 가격은 높았기때문에 다음해의 아마재배의 커다란 증가를 보증하였다(33페지).

1853년. 4월. 대번영. 이에 대해 L. 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랭카셔 공장지대의 상황에 대하여 내가 직무상 관계로 알게 된 17년동안 이러한 일반적인 번영을 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활기는 모든 부문들에서 비상하다》(《공장감독관보고. 1853년 4월.》 19페지).

1853년. 10월. 면방직업의 불경기. 《과잉생산》(《공장감독관보고. 1853년 10월》 15페지).

1854년. 4월.

《양모공업은 활기는 띠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공장들에서 완전취업을 보장하였다. 면방직업도 마찬가지였다. 소모사공업은 이해의 상반년 전체를 통하여 아주 불규칙적이였다…아마공업에서는 크림전쟁 때문에 로씨야로부터의 아마 및 대마의 공급이 감소되였으므로 혼란이 일어났다》(《공장감독관보고. 1854년 [4월].》 37페지).

1859년.

《스코틀랜드의 아마공업에서는 아직도 불황인데…그것은 원료가 적고 값이 비싸기때문이다. 우리가 주로 공급을 받고있는 발찍연해 제

국에서의 지난해의 농작물의 질이 나빴다는것은 이 지방의 영업에 유해로운 영향을 미칠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거치른 직물의 생산에 있어서 아마를 점점 구축하고있는 황마는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량도 적지 않다…단디에서는 기계의 약 절반이 현재 황마를 방적한다》(《공장감독관보고. 1859년 4월.》 19페지).—《원료가격이 높은 결과로 아마방적업은 아직도 여전히 충분한 리익을 보지 못하고있으며 다른 모든 공장들은 완전조업을 하고있는데 아마기계가 쉬고있는 실례들은 많다…황마방적업은…비교적 만족할만한 상태에 있다. 그것은 근자에 이 원료는 적당한 가격에까지 내려갔기때문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59년 10월.》 20페지)

1861~1864년. 미국의 남북전쟁[70]. 면화기근. 원료의 결핍과 고가에 의한 생산과정중단의 최대실례

1860년. 4월.

《영업상황에 관하여 기쁨으로써 보고할수 있는것은 원료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견직공업을 제외한 모든 섬유공업들이 최근 반년간 대단히 호경기였다는것이다…일부 면방직업지방들에서는 광고를 내여 로동자들을 모집하였으며 노포크나 기타 농촌지방으로부터 로동자들이 그곳으로 이동하였다…어떤 공업부문에서나 원료가 크게 부족되고있는것 같다…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고있는것은 오직 이 부족뿐이다. 면방직업에서는 신설공장의 수, 기존공장의 확장, 로동자에 대한 수요가 현재처럼 컸던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것이다. 사면팔방으로 원료를 구하고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4월.》 57페지).

1860년. 10월.

《면방직업, 양모공업 및 아마공업 지방들에서의 영업상황은 량호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영업상태는 1년 남짓한 이전부터 대단히 량호하였다고 전하여지고있는데 원료가격이 높지만 않았더라면 더욱더 량

호하였을것이다. 아마방적업자들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 초조하게 철도에 의하여 추가적인, 인도의 공급원천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있고 그에 따라 인도의 농업이 발전하여 마침내…그들의 수요에 상응할 아마공급을 받을것을 기다리고있는것 같다》(《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10월.》 37페지).

1861년. 4월.

《영업상황은 현재 부진이다…소수이지만 일부 면방적공장들은 로동시간을 단축하고있고 다수 견직물공장들은 부분적으로만 조업하고있다. 원료는 비싸다. 거의 모든 섬유공업부문들에서 원료는 소비자대중을 위하여 가공될수 있을만한 가격을 넘고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61년 4월.》 33페지).

1860년에 면방직업에서는 과잉생산이였다는것이 지금에 와서는 분명하여졌다. 그 영향은 그다음 몇해동안이나 감촉되였다.

《1860년의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에서 흡수될 때까지는 2년 내지 3년이 걸렸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127페지). 《1860년초 동아시아의 면제품시장의 부진상태는 평균 3만대의 력직기가 거의 전적으로 이 시장을 위한 직물생산에 종사하고있는 블랙번에서의 영업에 해당한 반작용을 주었다. 그 결과로 여기에서는 로동에 대한 수요는 면화봉쇄의 영향이 감촉되기 수개월전에 이미 제한되였다…이것으로 말미암아 다행히도 많은 공장주들이 파산을 면하였다. 재고가 보유되고있는 한에서는 가치는 증대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위기에서는 불가피하였을 무서운 가치감소가 회피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28~30페지).

1861년. 10월.

《영업은 얼마전부터 극히 부진이였다…겨울 수개월간에는 많은 공장들이 로동시간을 대단히 단축하리라는것은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니다. 여하간 이것은 예견될수 있었다…아메리카로부터 우리 나라에로의 통상적인 면화수입과 우리 나라로부터의 수출을 중단시킨 원인들은 도외시하더라도 최근 3년간의 생산의 급격한 증가와 인도 및 중국시장의 혼란때문에 오는 겨울에는 로동시간이 필연적으로 단축될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1년 10월.》 19페지).

솜부스러기. 동인도면화(수라트). 로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기계의 개량. 전분 및 광물에 의한 면화의 대용. 이 전분풀이 로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는 번수의 방사의 방적업자. 공장주들의 기만

《어떤 공장주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내고있다. (1방추당 면화소비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려에 넣고있지 않는것 같다. 즉 면화가 비쌀 때에는 보통 방사(40번 이하, 주로 12~32번)를 생산하고있는 방적업자는 누구나 될수 있는대로 가는 번수의 방사를 방적하게 될것이라는것, 즉 종전의 체12번 대신에 제16번을, 또는 제16번 대신에 제22번을, 등등으로 방적하게 될것이라는것이다. 그리고 이 가는 실로 짜는 직조업자는 그만큼 많은 풀을 먹임으로써 자기의 천을 보통의 무게로 만들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참으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리용되고있다. 믿음직한 소식통으로부터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보통의 수출용 내의천 한필의 중량이 8폰드인데 $2\frac{3}{4}$폰드의 풀로 되여있다는것이다. 다른 종류의 직물에는 왕왕 50%에 이르기까지 풀이 들어있다. 그리하여 공장주는 자기의 직물을 매 폰드에 원료인 방사에 대하여 지불한것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부자가 된다고 자랑하는데 결코 거짓말을 하고있는것이 아니다》(《공장감독관보고. 1864년 4월.》 27페지).

《내가 또 듣게 된 증언에 의하면 직조공들은 자기들의 질병의 증가를 풀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풀은 동인도면화로 방적되는 날실에 사용되며 이제는 이전과 달라서 순전한 곡분으로써만 만들어지고있지 않

다. 그러나 이 곡분대용품은 직물의 무게를 현저히 증대시켜 례컨대 15폰드의 방사를 직조하면 20폰드의 직물이 되므로 매우 큰 리익을 얻는다는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63페지. 이 대용품은 중국점토라고 불리우는 활석분 또는 프렌치 쵸크라고 불리우는 석고였다).—《직조업자 (여기서는 로동자를 가리킨다) 의 수입은 날실용풀로서 곡분 대신에 대용품을 사용하는데 의하여 대단히 감소되고있다. 이 풀은 방사를 무겁게 하나 그러나 또 팟팟하고 약하게 만든다. 날실의 올 하나하나가 소위 〈사침대〉를 통하여 직기로 들어가는데 이 사침대의 튼튼한 실올이 날올 바로잡는것이다. 팟팟하게 풀먹인 경사때문에 사침대의 실올은 계속 끊어진다. 끊어질 때마다 그것을 고치기에 직조공들은 5분이나 시간을 빼앗긴다. 직조공들은 이러한 수리를 지금은 종전보다도 적어도 10배나 더 자주 하지 않으면 안되며 직기는 물론 로동시간중에 그만큼 적게 일하게 된다》(우와 같은 보고 42~43 페지).

《애쉬턴, 스테일리브리지, 모우즐리, 오울덤 등등에서는 로동시간이 완전히 3분의 1이나 단축되였으며 매주마다 더욱 단축되고있다… 로동시간의 이러한 단축과 동시에 많은 부문들에서는 임금인하도 실시되고있다》(13페지).

1861년초에 랭카셔의 일부 지방들에서 기계직조공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일부 공장주들은 5~7.5%의 임금인하를 선포하였다. 로동자들은 임금률은 그대로 유지하고 로동시간을 단축할것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기업주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파업이 일어난것이다. 1개월후에 로동자들은 양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이제 두가지를 다 얻었다.

《로동자들이 마침내 동의한 임금인하외에 지금은 많은 공장들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61년 4월.》 23페지).

1862년. 4월.

《로동자들의 고통은 나의 전번 보고 당시 이후 대단히 심하여졌다. 그러나 그처럼 갑작스러우며 또 그처럼 심한 고통을 이처럼 무언으로 단념하고 이처럼 참을성있는 자제로써 견디여낸것은 산업사상 일찌 있어본적이 없다》(《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4월.》 10페지).—《현재 완전실업자의 비률은 1848년 당시보다 훨씬 더 큰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일어난것은 보통의 공황이였으나 그래도 불안하게 된 공장주들로 하여금 현재 매주 발표되고있는것과 같은 면방직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도록 할만큼 큰것이였다…1848년 5월에는 만체스터의 면방직업로동자 총수중 15%는 실업하였으며 12%는 단시간작업을 하였고 70%이상은 전시간작업을 하고있었다. 1862년 5월 28일에는 15%는 실업하였으며 35%는 단시간작업을 하였고 49%가 전시간작업을 하였다…린접지방 레컨대 스토크포트에서는 불완전취업자, 완전실업자의 백분비는 그보다도 높고 완전취업자의 백분비는 보다 낮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여기에서는 만체스터에서보다 굵은 번수의 실이 방적되기 때문이다(16페지).

1862년. 10월.

《최근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861년에] 련합왕국에는 도합 2,887개의 면방직공장이 있었으며 그중 2,109개가 나의 관구(랭카셔 및 체셔) 에 있었다. 나의 관구에 있는 2,109개의 공장중 매우 큰 부분은 로동자를 소수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공장들이라는것을 나는 물론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이 수가 그렇게 큰것을 발견하고 나는 놀랐다. 392개의 공장 즉 19%에서는 증기력 또는 수력의 동력이 10마력미만, 345개 즉 16%에서는 10 내지 20마력, 1,372개에서는 20마력이상이다… 이 소공장주들중 매우 큰 부분—총수의 3분의 1이상—은 얼마전까지도 그 자신들이 로동자였었다. 그들은 자본을 지배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따라서 주요한 부담은 나머지 $\frac{2}{3}$에 부과될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18~19페지).

동일한 보고에 의하면 당시에 랭카셔와 체셔의 면방직업 로동자들중 완전취업자는 4만 146명 즉 11.3%, 불완전취업자는 13만 4,767명 즉 38%, 실업자는 17만 9,721명 즉 50.7%였다. 그중에서 면화기근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부분인 가는 번수의 실의 방적을 주로 하는 만체스터와 보울턴에 관한 수자를 제외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즉 완전취업자는 8.5%, 불완전취업자는 38%, 실업자는 53.3%로 된다(19～20페지).

《가공되는 면화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것은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해의 첫 수개월동안 공장주들이 저렴한 값으로 사들일수만 있다면 어떠한 면화라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공장의 운전을 계속하려고 하였을 때 이전에는 보통 좋은 면화를 사용하고있었던 공장들에 나쁜 면화가 다량으로 들어왔다. 로동자들의 임금상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그때문에 여기저기서 파업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로동자들이 본래의 도급제임금으로서는 이제는 참아나갈수 있는 정도의 하루 임금을 벌수 없었기때문이다…일부 경우들에는 나쁜 면화의 사용으로 인한 차액은 전시간작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금총액의 절반에 달하였다》(27페지).

1863년. 4월.

《금년에는 완전취업을 할수 있는 면방직업로동자들은 절반을 그리 넘지 않을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4월》 14페지).

《현재 공장들에서 사용하지 않을수 없는 동인도면화를 사용하는 경우의 극히 큰 결함은 그 경우에 기계의 속도를 몹시 감소시키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최근 수년간에 이 속도를 높이고 그리하여 동일한 기계가 많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온갖 수단이 다 강구되였다. 속도가 감소되면 공장주들뿐만아니라 로동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로동자들의 다수는 도급제임금으로—방적공은 방적된 실 한폰드에 얼마, 직조공은 직조된 직물 한필에 얼마로—지불을 받기때문이며 기타 주임

금으로 지불을 받는 로동자들의 경우에도 생산의 감소의 결과로 임금이 감소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나의 조사와…나에게 인도된 이해의 면방직업로동자들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1861년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평균 20%, 일부 경우들에는 50%가 감소된것을 알게 된다》(13페지).—《수입액은…어떤 재료를 가공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로동자들의 상태는 그들이 받는 임금액으로 보면 현재(1863년 10월)는 작년의 같은 시기보다 훨씬 좋다. 기계는 개량되였고 원료에 대한 지식도 늘었으며 로동자들은 처음에는 많은 곤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다 용이하게 감당하여낸다. 작년 봄에 나는 프레스톤에서 재봉학교(실업자를 위한 자선시설)에 들렀는데 매주에 4실링을 벌수 있다고 하는 공장주의 말을 듣고 얼마전에 직조공장으로 갔던 두 소녀가 복교를 청원하고 매주에 1실링도 벌수 없었다고 불평을 말하고있었다. 나는 자동방적기를 다루는 방적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두대의 자동방적기를 맡아보면서 2주일간 완전작업을 하여 8실링 11펜스를 벌었고 이 금액중에서 집세를 제하였는데 그 경우에 공장주는(실로 인자하게도!) 집세의 절반을 선물로서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방적공은 6실링 11펜스란 금액을 받았다. 많은 지방들에서 1862년 마지막 수개월간에 자동방적기를 다루는 방적공들은 매주에 5~9실링, 직조공들은 매주에 2~6실링을 벌었다…현재는 상태가 훨씬 좋아지고있다. 비록 대다수 지방들에서 수입액은 더욱더 심하게 감소되였지만…인도면화의 섬유가 짧은것과 그것이 더러운것외에도 기타의 여러 원인이 수입액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였다. 례컨대 인도면화에다 솜부스러기를 많이 섞는것이 현재는 관례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방적공들의 곤난을 더한층 증대시킨다. 섬유가 짧으면 그것을 방적기로부터 끌어내고 실을 꼴 때에 실올이 끊어지기 쉬우며 또 방적기를 제대로 움지이게 할수도 없다…또한 실올에 큰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되므로 한명의 녀직공은 한대의 방직기밖에 맡아볼수 없는것이 보통이며 두대 이상을 맡아볼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많은 경우에 로동자의 임금은 직접 5%, $7\frac{1}{2}$% 또 10%나 인하되였다…많은 경우에 로동자는 될수 있는대로 원료를 잘 다루어 보

통정도의 임금률로 수입할수 있도록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직조공들이 때로 극복하여야 할 또 하나의 곤난은 그들이 나쁜 재료에서 좋은 직물을 만들어내야 하며 작업이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인하로써 처벌된다는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41~43페지).

임금은 전시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가련한것이였다. 면방직업로동자들은 지방당국으로부터 부조(이것은 사실상 공장주들에 대한 부조였다.—제1부 598/589페지[76]를 보라)를 받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공공작업—배수공사, 도로건설, 돌깨기, 가로포장—에도 자진하여 나섰다. 자산계급전체가 로동자들을 감시하였다. 최저의 품삯이 급여되여 로동자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부조위원회는 부조명부에서 그를 삭제하였다. 로동자들은 굶어죽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산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로동하든가 하여야 하였으며 이 경우에 부조위원회는 공장주들의 충직한 주구노릇을 하였기때문에 이것은 공장주 제씨들에게 있어서 황금시대였다. 동시에 공장주들은 정부와의 비밀합의하에 될수 있는 한에서는 국외이주를 방해하였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로동자들의 살과 피로 존재하는 자기들의 자본을 항상 준비상태로 보유하기 위하여서이며 부분적으로는 로동자들로부터 짜내는 집세를 확보하기 위하여서였다.

《부조위원회는 이 점에서 대단히 엄격히 굴었다. 작업이 제공되면 그것을 제공받은 로동자들은 즉시로 부조명부에서 삭제되고 그리하여 그 작업을 접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이 작업에 나가는것을 거부한다면…그 원인은 그들의 수입액이 이름뿐인데다가 작업은 비상히 어려울것이라는데 있었다》(우와 같은 보고. 97페지).

로동자들은 공공사업법에 따라 그들에게 예정된 어떠한

종류의 로동에도 즐겨 종사하였다.

《근로작업을 조직하는 원칙은 도시에 따라 현저히 달랐다. 그러나 옥외에서의 작업이 절대로 로동시험이 아니였던 곳에 있어서까지도 이 작업에 대하여 지불된것은 통례대로의 부조액에 불과하든가 또는 그보다 그다지 높지 않은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작업은 사실상 로동시험으로 되였다》(69페지). 《1863년의 공공사업법은 이 폐단을 제거하고 로동자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날품팔이군으로서의 일임금을 벌수 있도록 한다는것이였다. 이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였다. 1) 지방당국으로 하여금 화폐를 〔중앙 구빈국장의 동의를 얻어〕 국고 대부위원회로부터 차용할수 있게 하는것. 2) 면방직업지방도시들의 개선을 용이하게 하는것. 3) 실업로동자에게 일거리와 적당한 보수를 제공하는것.》

1863년 10월말까지 이 법률에 따라 88만 3,700파운드에 이르는 대부액이 허가되였다(70페지). 착수된 사업은 주로 하수도공사, 도로공사, 가로포장, 수도용물공장 등등이였다.

블랙번의 위원회의 회장 헨더슨씨는 이 점에 관하여 공장감독관 레드그레이브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내고있다.

《공공사업법에 따라 블랙번시회가 이 지방의 실업로동자들에게 제공한 작업을 그들이 쾌히 받아들인것 이상으로 나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한것은 고통과 곤궁의 현시기에 있어서의 나의 전체 경험을 통하여 지금까지 있던 일이 없다. 이전에는 기능로동자로서 공장에서 일하던 면방적로동자들과 현재는 날품팔이군으로서 깊이 14 내지 18피트나 되는 하수도에서 일하고있는 그들과의 대조보다 더 좋은 대조는 생각하기 곤난할것이다.》

(로동자들은 이 일에 의하여 가족수에 따라 매주 4~12 실링을 벌었는데 이 거액의 금액으로 종종 8명의 식구를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정배들은 이에 의하여 이중의 리

익을 보았다. 첫째로, 그들은 연기에 끄슬린 그리고 내버려 두었던 그들의 도시의 개선을 위한 자금을 례외적인 낮은 리자로 얻었으며 둘째로, 그들은 로동자들에게 보통의 임금률보다도 훨씬 낮게 지불하였다.)

《로동자는 거의 열대적인 기온에 익숙하였으며 체력보다도 손놀림의 기교와 정확성이 그에게 무한히 더 유용하였던 작업에 익숙하였으며 현재 그가 받을수 있는 임금의 2배 때로는 3배의 임금에 익숙하였던것인데 그가 제공된 그 일을 즐겨 접수하였다는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명예스러운 자제와 사려를 의미한다. 블랙번에서는 있을수 있는 거의 모든 옥외작업에서—굳고 무거운 진흙땅을 상당한 깊이로 파냄에 있어서, 배수, 돌깨기, 도로공사에 있어서, 깊이 14, 16 때로는 20피트나 되는 하수도의 굴착에 있어서—사람들은 시험을 겪었다. 그 경우에 그들은 자주 깊이 10~12인치나 되는 진창과 물속에 서있게 되며, 이에 있어서 그들은 언제나 습한 한기—잉글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이렇지만 여기에서보다 더 심한 지방은 더 없다—를 무릅쓰게 된다》(91~92페지).—《로동자들의 태도는 거의 비난할 여지가 없는것이였다…그들은 즐겨 옥외작업을 받아들였으며 또 그것을 감당해냈다》(69페지).

1864년. 4월

《때때로 각이한 지방들에서 주로 일정한 부문들 례컨대 직조업에서 로동자가 부족하다는 불평소리가 들려온다…그러나 이 불평의 근원은 이 특수한 부문에서 실지로 로동자들 자신이 얼마만큼 부족하다는데 있을뿐만아니라 사용되는 방사의 질이 나쁜 결과로 로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적다는데도 있는것이다. 지난달에는 어떤 공장주들과 그들의 로동자들간에 임금으로 인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파업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한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공공사업법의 실시를 공장주들은 경쟁으로서 간주하는것이며 그때문에 베이커프지방위원회는 그 활동을 정지하였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공장이 다 돌고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동자의 부족이 나타났기때문이다》(《공장감독관 보고. 1864년 4월.》 9페지).

확실히 그것은 공장주 제씨에게는 비상한 시기였다. 공공사업법의 결과로 수요가 대단히 증가하여 베이커프의 채석장에서는 꽤 많은 공장로동자들이 이제는 하루에 4~5실링의 벌이를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공공사업—1848년의 국민작업장[77]의 신판이였으나 이번에는 자산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제정된것—은 점차 중지되였다.

무가치체에서의 실험

《나는 극히 인하된 임금〔완전취업자들의〕 즉 각이한 공장들에서의 로동자들의 실제수입액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코 그들이 매주 동일한 금액을 번다는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로동자들은 여기에서는 심한 임금의 동요를 받고있는데 그것은 공장주들이 동일한 공장에서 각이한 등급의 면화들로써 또 면화와 솜부스러기의 각이한 배합으로써 부단히 실험을 진행하는 까닭이다. 소위 〈혼합〉이 빈번히 변동되며 로동자들의 수입액은 혼면의 품질에 따라 오르내린다. 때로 그것은 이전의 수입액의 15%에 불과하였으며 1~2주간에 50% 또는 60%로 내려갔다.》

이 말을 하고있는 감독관 레드그레이브는 다음에 실제에서 얻은 임금자료를 들고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중 다음의 실례만 들면 충분하다.

A. 직조공, 가족 6명, 1주에 4일 취업, 6실링 $8\frac{1}{2}$펜스. B. 연사공, 1주에 $4\frac{1}{2}$일 취업, 6실링. C. 직조공, 가족 4명, 1주에 5일 취업, 5실링 1펜스. D. 조방공, 가족 6명, 1주에

4일 취업, 7실링 10펜스. E. 직조공, 가족 7명, 1주에 3일 취업, 5실링 등등. 레드그레이브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한다.

《이상의 자료는 주목할만한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부 가족들에 있어서는 취업이 하나의 불행으로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은 그 취업으로서는 수입이 심히 저하되여 그 수입이 가족성원 전체가 실업하게 되는 때에 받게 되는 부조금액에도 달하지 않는 경우에 추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가족의 절대적필요의 극소부분밖에는 충족시킬수 없을 정도로 되기때문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50~53페지).

《1863년 6월 5일 이래 어느 주간에 있어서나 전체 로동자들의 평균총취업시간은 2일 7시간 몇분 이상이 된 일이 없었다》(우와 같은 보고, 121페지).

공황의 시초부터 1863년 3월 25일까지 구빈국, 중앙부조위원회 및 런던시위원회에 의하여 약 300만파운드가 지출되였다(13페지).

《가장 가는 실을 방적하는 어떤 지방에서는…시 아일랜드 면화로부터 애급면화로 변화시켰기때문에 방적공은 15%의 간접적인 임금인하를 당하였다…인도면화와 혼합하기 위하여 솜부스러기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어떤 광대한 지방에서는 방적공은 5%의 임금감액을 당하였을뿐만아니라 그밖에 수라트면화나 솜부스러기를 가공하기때문에 20~30%를 더 상실하였다. 직조공의 담당기대수는 4대로부터 2대로 감소되였다. 1860년에는 직조공은 매개 직기에서 5실링 7펜스를 벌었는데 1863년에는 3실링 4펜스밖에 벌지 못하였다…아메리카면화로서는 이전에 3펜스 내지 6펜스였던 벌금 (방적공에 대한) 이 현재는 1실링 내지 3실링 6펜스에 이르고있다.》

애급면화가 동인도면화와 혼합되여 사용되는 어떤 지방

에서는

《물방적공의 평균임금은 1860년에는 18~25실링이였었는데 현재는 10실링 내지 18실링이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면화가 나빠진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실을 더 세게 꼬기 위하여 물의 속도를 감소시킨데도 있다. 평시라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표에 의한 특별지불이 있었을것이다》(43~50페지). 《동인도면화는 아마도 여기저기에서 공장주들에게는 유리하게 가공되고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임금표 53페지를 보라) 1861년 에 비하여 로동자들이 고통을 받고있는것을 보고있다. 수라트 면화의 사용이 고정된다면 로동자들은 1861년과 동등한 수입액을 요구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만약 면화나 제품의 가격에 의하여 그것이 보상되지 않는다면 공장주들의 리윤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105페지).

집세.

《로동자들이 살고있는 오막살이가 공장주의 소유이라면 로동자의 집세는 조업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공장주에 의하여 임금에서 빈번히 공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물의 가치는 저락하였으며 오막살이들은 지금은 이전에 비하여 20~50%만큼이나 저렴하게 빌릴수 있다. 매주에 3실링 6펜스나 들었던 오막살이가 현재는 2실링 4펜스로 때로는 그 이하로도 빌릴수 있다》(57페지).

이주. 공장주들은 로동자들의 이주를 당연히 반대하였다. 그것은 일면으로는 그들이

《면방직업의 경기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자기들의 공장을 가장 유리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을 수중에 유지하여두려고 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또 《공장주들중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로동자들이 살고있는 집 소유자도 많이 있는데 그들중 적어도 몇몇 사람은 체납되고있는 집세의 일부분을 어떻게 하나 나중에 지불받을것을 타산하고있기》 때문이다(96페지).

버널 오스본씨는 1864년 10월 22일에 자기의 선거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랭카셔의 로동자들은 고대철학자(스토아학파)들처럼 행동하였다고 말하였다. 양처럼은 아니였던가?

제 7 장

보　　유(補　遺)

이 편에서 가정하고있는바와 같이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취득되는 리윤량은 이 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총액과 동등하다고 가정하자. 그렇지만 자산자는 리윤을 잉여가치 즉 부지불잉여로동과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이다.

1) 류통과정에서는 자산자는 생산과정을 망각한다. 상품의 가치의 실현—이것에는 상품의 잉여가치의 실현이 포함되여있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것을 의미한다. {원고에는 여기에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맑스가 이점을 더 상세히 설명하려고 생각하였다는것을 암시한다.—F. 엥겔스}

2) 로동의 착취도가 동일하다고 전제하면, 이미 본바와 같이 신용제도에 의한 일체의 변경, 자본가들간의 일체의 호상 기만과 사취 그리고 또 일체 유리한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을 도외시한다면 리윤률은 다음과 같은데 의하여 매우 달라지게 된다. 즉 원료가 저렴한가, 그리 저렴하지 않은가, 원료구입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많은가 적은가. 또 사용되는 기계가 생산적이고 합목적적이고 또 값싼가 어떤가에 따라

서, 또 생산과정의 각이한 단계의 전체 조직이 완전한가 어떤가에 따라서, 원료의 랑비가 제거되고있는가 어떤가, 지휘감독이 간단하고 효과적인가 어떤가 하는 등등에 따라서 리윤률은 극히 각이할수 있다. 요컨대 일정한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가 주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이 동일한 잉여가치가 보다 큰 리윤률로 표현되는가 또는 보다 작은 리윤률로 표현되는가, 따라서 그것이 보다 많은 리윤량을 제공하는가 또는 보다 적은 리윤량을 제공하는가 하는것은 자본가 자신이거나 그의 관리인과 사무원의 개인적사업능력에 크게 달려있다. 1,000파운드라는 로임의 생산물인 1,000파운드라는 동일한 잉여가치가 기업 A에서는 9,000파운드, 다른 기업 B에서는 1만 1,000파운드의 불변자본에 관련되는것이라고 하자. A의 경우에는 $p'=\frac{1,000}{10,000}=10\%$이며 B의 경우에는 $p'=\frac{1,000}{12,000}=8\frac{1}{3}\%$이다. 총자본은 A에 있어서는 B에 있어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리윤을 생산하고있는데 그것은 두 경우에 다 선대된 가변자본은 1,000이며 또 그것으로부터 얻어낸 잉여가치도 역시 1,000이며 따라서 두 경우에 다 동등한 수의 로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크기의 착취가 일어나고있지만 A에 있어서는 리윤률이 B에 있어서보다 높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로동의 착취가 동등한 경우에도 동일한 량의 잉여가치의 표시상의 차이 또는 리윤률 따라서 또 리윤 그 자체의 크기의 차이는 다른 원인으로부터 유래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또 단지 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수완에 있어서의 차이에서만 나올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정은 자본가에게 착각을 일으켜 자본가로 하여금 그의 리윤이 로동의 착취의 덕택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로동의 착취에는 의존하지 않는 다른 사정

특히 그의 개인적활동의 덕택이기도 하다고 확신하게 하는것이다.

이 제1편에서 서술된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견해(로드베르투스[78])가 틀렸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자본의 량적변화는 리윤과 자본간의 비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리윤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다. 왜냐하면 리윤의 량이 증가하면 리윤계산의 기초로 되는 자본의 량도 증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되기때문이라는것이다(이것은 지대의 경우와는 다르다. 례컨대 토지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지대는 증대한다).

이 견해가 정확한것은 다음 두 경우뿐이다. 첫째로는 다른 모든 사정, 따라서 특히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화폐상품인 상품의 가치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동일한것은 다만 명목적인 가치변동의 경우 즉 기타의 사정들이 변하지 않고 가치기호가 등귀 또는 저락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총자본=100파운드이고 리윤=20파운드이고 따라서 리윤률=20%이라고 하자. 이제 금이 100% 저락 또는 등귀한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100파운드의 가치가 있었던 동일한 자본은 200파운드의 가치가 있을것이며 리윤은 4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게 될것이다. 즉 리윤은 이전처럼 20파운드로 표시되지 않고 이제는 이 40파운드로 표시될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의 가치는 50파운드로 감소되고 리윤은 10파운드라는 가치가 있는 생산물로 표시된다. 그러나 두 경우에 다 200:40=50:10=100:20=20%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사실상 자본가치에는 량적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고 다만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잉여가치의 화폐표

현에 량적변화가 일어났을따름이다. 따라서 $\frac{m}{C}$ 즉 리윤률이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다.

또 하나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치의 량적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량적변화가 v:c라는 비률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즉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고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움직여지는 로동력의 지표로 간주되는 가변자본)과 생산수단에 투하된 자본과의 비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거기에 있는것이 C인가 nC인가 $\frac{C}{n}$인가에 따라서, 례컨대 1,000인가 2,000인가 500인가에 따라서, 리윤률이 20%이라면 리윤은 제1의 경우에는 200, 제2의 경우에는 400, 제3의 경우에는 100일것이다. 그러나 $\frac{200}{1,000}=\frac{400}{2,000}=\frac{100}{500}$=20%이다. 즉 리윤률은 이 경우에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의 구성은 의연히 동일하며 자본의 량적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리윤량의 증감은 다만 사용된 자본의 크기의 증감을 표시할따름이다.

따라서 첫째 경우에는 다만 사용된 자본의 외관적인 량적변화가 일어날따름이며 둘째 경우에는 현실적인 량적변화가 일어나나 자본의 유기적구성에는, 즉 자본의 가변부분과 불변부분과의 비률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된 자본의 량적변화는 그에 앞서 자본의 구성부분들의 하나에 가치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며 따라서(가변자본과 함께 잉여가치 그 자체도 변하지 않는한) 사용된 자본의 구성부분들의 상대적크기에 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던가 또는 이 상대적크기의 변화(대규모의 작업이나 새로운 기계의 채용 등등에 있어서와 같이)가 사용된 자

본의 두 유기적구성부분들의 상대적크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경우들에는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용된 자본의 크기의 변화는 리윤률의 동시적변화를 수반하지 않을수 없다.

리윤률의 증대는 언제나 잉여가치가 그 생산비 즉 선대총자본에 대한 비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증대되는데로부터 생긴다. 바꾸어말하면 리윤률과 잉여가치률간의 차가 감소되는데로부터 생긴다.

자본의 유기적구성부분들의 변동이나 자본의 절대량과는 관계없는 리윤률의 변동을 가능하게 하는것은 선대자본—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고정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가 류동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관계없이—의 가치가 선대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기존자본과는 관계없이 증대 또는 감소하였기때문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다는것이다. 모든 상품의—따라서 또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의—가치는 그 상품자체에 포함되여있는 필요로동시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 상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필요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재생산은 시초의 생산의 조건들과는 다른, 보다 곤난한 조건하에서 진행될수도 있고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진행될수도 있다. 동일한 물적자본을 재생산하는데 있어서 변화된 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2배의 시간이 또는 반대로 2분의 1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화폐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자본의 가치는 이전에는 100파운드였다면 이제는 200파운드로나 또는 50파운드로 될것이다. 만약 이 가치증대 또는 가치감소가 자본의 모든 부분들에 균등하게 일어난다면 리윤도 그에 따라 2배의 화폐액 또는 다만 절반의 화폐액으

로 표현될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가치증대 또는 가치감소가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변화를 포함한다면, 즉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률을 증대 또는 감소시킨다면 리윤률은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한 가변자본의 상대적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가변자본의 상대적감소에 따라 감소할것이다. 만약 선대자본의 화폐가치만이(화폐의 가치변동에 의하여) 증대 또는 감소한다면 잉여가치의 화폐표현도 같은 비률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 리윤률은 의연히 불변이다[79].

제 2 편

리윤의 평균리윤으로의 전화

제 8 장

각이한 생산부문들에서의 각이한 자본구성과 이로부터 생기는 리윤률의 차이

전편에서는 그중에서도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아도 리윤률이 어떻게 변할수 있는가, 즉 어떻게 증대 또는 저하할 수 있는가 하는것을 증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로동의 착취도는, 따라서 또 잉여가치률 및 로동일의 길이는 소여 나라의 사회적로동이 분배되는 모든 생산분야들에서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가정한다. 생산분야가 다르면 로동의 착취도 여러가지로 다르다는데 대하여 이미 애담 스미스[80]는 이 차이는 온갖 현실적인 보상리유 또는 편견에 의하여 인정된 보상리유에 의하여 평균화되며 따라서 이 차이는 외견상의 그리고 일시적인것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일반적관계들의 연구에 있어서는 고려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상세히 증명하였다. 다른 차이 례컨대 로임의 높이에서의 차이는 주로 이미 제1부의 서두(19페지[81])에서 지적한 단순로

동과 복잡로동간의 차이에 기초하는것이며 비록 그것은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로동자들의 운명을 상당히 다르게 만들기는 하지만 결코 이 각이한 분야들에서의 로동의 착취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례컨대 금세공의 로동은 날품팔이군의 로동보다 더 비싸게 지불된다 하더라도 금세공의 잉여로동은 날품팔이군의 잉여로동에 비하여 그만큼 더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것이다. 그리고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서의, 지어는 동일한 생산분야의 각이한 자본투하들간에서의 로임 및 로동일 따라서 잉여가치률의 평균화는 여러가지 지역적인 장애들로 말미암아 저애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평균화는 자본주의적생산이 진보함에 따라 또 모든 경제적관계들이 이 생산방식에 종속되는데 따라 점점 더 실현된다. 이러한 마찰들에 대한 연구가 로임을 연구하는 각 특수로작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적생산의 일반적연구에서 그것들은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것으로서 무시될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언제나 전제로 되는것은 현실적 제 관계는 그것들의 개념에 일치한다는것이며 또는 같은 말이지만 현실적 제 관계는 그것들이 그것들 자체의 일반적류형을 표현하는 한에 있어서만 서술된다는 그것이다.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잉여가치률의 차이, 따라서 또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로동착취도의 차이는 당면의 연구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본편에서 서술하려는것은 바로 한 나라의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리윤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것이다. 그렇지만 각이한 나라들의 리윤률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이전에 서술한것을 여기에서 서술하려는것과 대비하기만 하면 된다는것이 명백하다. 우선 각이한 나라들의 잉여가치률의 차이를 고찰하고 그다음에 이 주어진 잉여가치률

에 기초하여 각이한 나라들의 리윤률의 차이를 비교하여야 할것이다. 각이한 나라들의 리윤률의 차이는 그것이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잉여가치률의 차이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닌 한 그 차이는 반드시 여러가지 사정들에 기인하는것이지만 이 사정하에서는 본장의 연구에서도 전제되고있는바와 같이 잉여가치가 어디서나 동등하며 불변이라고 전제되는것이다.

전장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잉여가치률이 불변이라고 전제하면 일정한 자본에 의하여 획득되는 리윤률은 불변자본의 이러저러한 부분의 가치를 증감시키는 사정,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의 불변적구성부분과 가변적구성부분간의 비률을 변경시키는 사정들로 말미암아 상승 또는 저하될수 있다. 그리고 또 자본의 회전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키는 사정들도 마찬가지로 리윤률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것도 이미 서술하였다. 리윤의 량은 잉여가치의 량과 동일하기때문에 즉 잉여가치 자체와 동일하기때문에 리윤의 **량**은—리윤**률**과는 달라서—우에서 언급한 가치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게 되였다. 그러한 가치변동은 다만 주어진 잉여가치 따라서 또 주어진 크기의 리윤이 표현되는 률 즉 리윤의 상대적인 크기, 선대자본의 크기에 비한 리윤의 크기를 변경시킬따름이다. 그러한 가치변동의 결과로 자본의 구속 또는 유리가 발생하는 한 그러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리윤률뿐만아니라 리윤 자체도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이미 투하된 자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새로 투하되는 자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밖에 리윤 자체의 증감은 항상 그러한 가치변동의 결과로 얼마나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로동이 동일한 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질수 있는가, 다시말하면 동일한 자본이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얼마나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잉여가치량을 생산할수 있는가 하는데 의존한다. 이와 같은 외견상의 례외는 일반적인 법칙에 모순되거나 그것의 례외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고 사실상 일반적법칙의 적용의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전편에서 본바와 같이 로동의 착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불변자본의 구성부분들의 가치변동에 따라 또한 자본의 회전기간의 변동에 따라 리윤률은 변동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자연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즉 동시에 병존하는 각이한 생산부문들의 리윤률은 기타의 조건들이 변함없고 사용되는 자본들의 회전기간이 각이하든가 또는 이 자본들의 유기적구성부분들간의 가치비률이 각이한 경우에는 각이할것이다. 우리는 종전에 동일한 자본에서 시간상 전후하여 발생하는 변화로서 고찰한것들을 이제는 각이한 생산부문들에 병존하는 각이한 투자들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차이들로서 고찰하게 된다.

이 경우에 우리가 연구하여야 할것은 1) 자본들의 **유기적구성**의 차이, 2) 자본들의 회전기간의 차이이다.

이 연구 전체의 전제로 하는것은 두말할것 없이 다음과 같은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일정한 생산부문의 자본의 구성 또는 회전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생산부문에 투하된 자본의 평균적인 정상적관계를 말하는것이며 일반적으로 문제로 하는것은 일정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의 평균이고 이 분야에 투하된 개별적자본들의 우연적인 차이가 아니라는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잉여가치률과 로동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되고있으므로 또 이 가정은 로임이 변하지 않는다는것도 포

합하고있으므로 일정한 량의 가변자본은 일정한 량의 움직여지는 로동력을 표현하며 따라서 또 일정한 량의 대상화된 로동을 표현한다. 례컨대 100파운드가 100명의 로동자의 주임금을 표시하며 따라서 사실상 100개의 로동력을 표시한다면 n×100파운드는 n×100명의 로동자의 로동력을, 또 $\frac{100}{n}$ 파운드는 $\frac{100}{n}$ 명의 로동력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가변자본은(로임이 정해진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일정한 크기의 총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량의 지표로 된다. 따라서 사용되는 가변자본의 크기의 차이는 사용되는 로동력의 량의 차이의 지표로 된다. 100파운드가 1주간의 100명의 로동자를 표시하며 따라서 또 주로동이 60시간인 경우에 6,000 로동시간을 표시한다면 200파운드는 12,000로동시간을 표시하고 50파운드는 다만 3,000로동시간을 표시할따름이다.

자본의 구성이라는것은 이미 제1부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본의 능동적구성부분과 피동적구성부분간의 비률,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비률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두개의 비률이 고려되는데 이것들은 비록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동등한 작용을 일으킬수 있다 하더라도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것은 아니다.

첫째 비률은 기술적토대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리하여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주어진것으로 간주될수 있다. 례컨대 1일간에 일정한 량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따라서 또—그 속에 포함되여있는것이지만—일정한 량의 생산수단 즉 기계, 원료 등등을 움직이고 생산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수의 로동자에 의하여 표시되는 일정한

량의 로동력이 요구된다. 일정한 량의 생산수단에는 일정한 수의 로동자가 상응하며 따라서 이미 생산수단에 대상화된 일정한 량의 로동에는 일정한 량의 산로동이 상응한다. 이 비률은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심한 차이를 가지며 또 때로는 동일한 산업의 각이한 부문들에서도 심한 차이를 가진다. 극히 각이한 산업부문들에서 이 비률이 우연히 전적으로 또는 거의 동일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비률은 자본의 기술적구성을 형성하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본래의 기초로 된다.

그러나 또 가변자본이 로동력의 단순한 지표이고 불변자본이 이 로동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생산수단의 량의 단순한 지표인 한에서는 그 비률이 각이한 산업부문들에서 동일한 경우도 있을수 있다. 례컨대 동을 가공하는 어떤 작업과 철을 가공하는 어떤 작업은 로동력과 생산수단량사이에 있어서 동등한 비률을 전제로 할수 있다. 그런데 동은 철보다 비싸기때문에 두 경우에 있어서의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가치비률은 각이할것이며 따라서 이 두 총자본의 가치구성은 각이할것이다. 기술적구성과 가치적구성간의 구별은 어떠한 산업부문에서도 다음과 같은데서 나타난다. 즉 기술적구성은 변하지 않더라도 두 자본부분의 가치비률은 변할수 있으며 또 기술적구성은 변하더라도 가치비률은 동일할수 있다는데서 나타난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다만 사용된 생산수단의 량과 로동력의 량과의 비률의 변동이 그것들의 가치가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데 의하여 상쇄되는 경우에만 그럴수 있다.

자본의 가치적구성이 자본의 기술적구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것을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가치구성을 자

본의 **유기적**구성이라고 부른다.(20)

그리하여 가변자본에 있어서는 그것이 일정한 량의 로동력 즉 일정한 수의 로동자 또는 일정한 량의 움직여지는 산로동의 지표라고 전제한다. 전편에서 본바와 같이 가변자본의 가치의 크기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로동량의 가격의 고저만을 표시할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잉여가치률 및 로동일이 변하지 않는것으로 간주되며 일정한 로동시간의 로임이 주어진것으로 간주되여있기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다. 이와는 반대로 불변자본의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는 물론 일정한 량의 로동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생산수단의 량의 변동의 지표일수도 있으나 그것은 또 한 생산분야에서 움직여지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다른 생산분야에서 움직여지는 생산수단의 가치와의 차이로부터 나올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두 관점이 다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100파운드가 100명의 로동자의 주임금이라고 가정하자. 매주의 로동시간은 60시간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잉여가치률은 100%라고 하자. 이 경우에는 로동자는 60시간중 30시간은 자기를 위하여 로동하고 30시간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로동한다. 100파운드라는 로임에는 사실상 100명의 로동자의 30로동시간, 즉 도합 3,000로동시간만이 체현되여 있는데 로동자들이 로동하는 나머지 3,000시간은 자본가가 호주머니에 넣는 100파운드의 잉여가치 또는 리윤에 체현되

---

(20) 우에서 서술된것은 제1부 제3판 628페지 즉 23장의 서두[82]에서 이미 간단히 서술되였다. 제1판과 제2판에는 이 개소가 없었으므로 여기서 그것을 한번 다시 서술할 필요가 있었던것이다.—F. 엥겔스

여있다. 그렇기때문에 100파운드의 로임은 100명의 로동자의 주로동이 대상화된 가치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로동일의 길이와 잉여가치률은 주어진것이므로) 이 자본에 의하여 100명의 로동자가 도합 6,000로동시간동안 움직여지고있다는것을 표시한다. 100파운드의 자본이 이것을 표시하는것은 첫째로 그것은 움직여지고있는 로동자의 수를 표시하고있기때문이다. 왜냐하면 1파운드=1주간의 1명의 로동자이므로 100파운드=100명의 로동자이기때문이다. 또 둘째로 움직여지는 매개 로동자는 100%라는 주어진 잉여가치률의 조건하에서 그의 로임에 포함되여있는것보다 두배나 더 많은 로동을 수행하며 그리하여 반주일간의 로동의 표현인 그의 로임 1파운드는 온 1주일간의 로동을 움직이며 또한 100파운드는 그것이 50주의 로동을 포함하고있을뿐이지만 100주의 로동을 움직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로임에 투하된 가변자본에 있어서는 그 가치 즉 로임액이 일정한 량의 대상화된 로동을 표시하는 한에 있어서의 가변자본과 그 가치가 그 가변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산로동량의 단순한 지표인 한에 있어서의 가변자본과의 사이에 극히 중요한 구별을 두는것이 필요하다. 이 산로동의 량은 그 가변자본에 포함되여있는 로동량보다 언제나 더 크며 따라서 또 그 가변자본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나타난다. 이 가치는 한편으로는 가변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자수에 의하여 규정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자들이 수행하는 잉여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가변자본에 대한 이러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수 있다.

한 투자가 생산분야 A에서는 총자본 매 700에 대하여

100만을 가변자본에 지출하고 600을 불변자본에 지출하는데 한편 생산부야 B에서는 600이 가변자본에 지출되고 100만이 불변자본에 지출된다고 하면 A의 총자본 700은 다만 100에 해당하는 로동력만을 움직이며 따라서 종전의 가정하에서는 다만 100로동주 또는 6,000시간의 산로동만을 움직일것이지만 동등한 크기의 B의 총자본은 600로동주 따라서 36,000시간의 산로동을 움직인다. 그러므로 A의 자본은 다만 50로동주 즉 3,000시간의 잉여로동만을 취득할것이지만 B의 동등한 크기의 자본은 300로동주 즉 18,000시간의 잉여로동을 취득할것이다. 가변자본은 그 자체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의 지표일뿐만아니라 동시에 주어진 잉여가치률의 조건하에서는 그것에 의하여 이 한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초과로동 즉 잉여로동의 지표이기도 하다. 로동의 착취도가 같은 조건하에서 리윤은 첫째 경우에는 $\frac{100}{700}=\frac{1}{7}=14\frac{2}{7}$%일것이며 둘째 경우에는 $\frac{600}{700}=85\frac{5}{7}$% 즉 6배의 리윤률로 될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경우에는 리윤 자체가 6배 클것이며 A에 있어서는 100이고 B에 있어서는 600일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자본에 의하여 B에 있어서는 6배의 산로동이 움직여지며 그리하여 로동의 착취도가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또 6배의 잉여가치 따라서 6배의 리윤이 생산되기때문이다.

만일 A에서는 700파운드가 아니라 7,000파운드의 자본이 사용되는데 B에서는 700파운드의 자본만이 사용된다면 자본 A는 유기적구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7,000파운드중에서 1,000파운드가 가변자본으로서 사용될것이다. 즉 매주 1,000명의 로동자=60,000시간의 산로동이 사용될것이며 그중 30,000시

간이 잉여로동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A는 매 700파운드로써 여전히 B에 비하여 다만 6분의 1의 산로동을 움직일따름이며 따라서 또 6분의 1의 잉여로동을 움직일따름이며 따라서 또 6분의 1의 리윤을 생산할따름일것이다. 리윤률을 고찰한다면 자본 B에 있어서는 $\frac{600}{700}=85\frac{5}{7}$%인데 자본 A에 있어서는 $\frac{1,000}{7,000}=\frac{100}{700}=14\frac{2}{7}$%이다. 같은 크기의 자본액을 취하더라도 이 경우에 리윤률은 각이하다. 그것은 잉여가치률이 동등하더라도 움직여지는 산로동량이 각이한 결과로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각이하며 따라서 또 리윤이 각이하기때문이다.

사실상 이와 동일한 결과는 한 생산분야의 기술조건이 다른 생산분야와 동일하지만 사용되는 불변자본요소들의 가치가 더 크거나 더 작은 경우에도 나올수 있다. 두 분야에서 다 100파운드를 가변자본으로서 사용하며 매주 100명의 로동자를 사용하여 동일한 량의 기계와 원료를 움직이지만 이 기계와 원료가 B에서는 A에서보다 더 비싸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가변자본 100파운드에 대하여 불변자본은 A에서는 례컨대 200파운드, B 에서는 400파운드가 해당되게 될것이다. 그러면 잉여가치률이 100%인 때에는 생산된 잉여가치는 두 경우에 다 100파운드이다. 따라서 리윤도 두 경우에 다 100파운드이다. 그러나 A에서는 $\frac{100}{200c+100v}=\frac{1}{3}=33\frac{1}{3}$% 이고 B에서는 $\frac{100}{400c+100v}=\frac{1}{5}=20$%이다. 사실상 만약 우리가 두 경우에 다 총자본의 일정한 부분을 취한다면 B에서는 매 100파운드중에서 다만 20파운드 즉 $\frac{1}{5}$만이 가변자본이며 A에

서는 매 100파운드중에서 $33\frac{1}{3}$파운드 즉 $\frac{1}{3}$이 가변자본이다. B는 A보다 더 적은 산로동을 움직이기때문에 매 100파운드에 대하여 더 적은 리윤을 생산한다. 그리하여 리윤률의 차이는 여기에서도 또 투하된 자본의 매 100에 대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의 차이 따라서 또 리윤량의 차이로 귀착된다.

이 둘째 례와 먼저 례와의 차이는 다만 다음과 같은것뿐이다. 즉 A와 B간의 평균화는 둘째 경우에는 기술적토대가 같은 조건하에서 A나 B의 불변자본의 가치변동만을 필요로 한다면 이와 반대로 첫째 경우에는 두 생산분야들에서의 기술적구성 자체가 각이하며 또 그것은 평균화를 위하여는 개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차이는 자본의 절대적인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문제로 되는것은 항상 매 100의 자본중 얼마가 가변자본이며 얼마가 불변자본인가 하는것뿐이다.

이와 같이 백분비로 계산한 각이한 크기의 자본들은—또는 이 경우에는 결국 동일한것으로 되지만 같은 크기의 자본들은—로동일이 같고 로동의 착취도가 같은 조건하에서 극히 각이한 량의 리윤을 생산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각이한 량의 잉여가치를 생산하기때문이며 또 바로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각이함에 따라 자본의 가변부분이 각이하며 따라서 자본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산로동의 량이 각이하며 따라서 또 자본들에 의하여 취득되는 잉여로동량 즉 잉여가치 따라서 리윤의 실체가 각이하기때문이다.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총자본의 동등한 크기를 가진 부분들이 크기가 다른 잉여가치의 원천을 포함하고있는데 잉여가치의 유일한 원천은 산로동이다. 로동의 착취도가 동등한 조

건하에서는 자본=100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의 량 따라서 또 그 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 잉여로동의 량은 이 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백분비적구성이 90c+10v인 어떤 자본이 로동의 착취도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10c+90v의 구성을 가진 자본과 같은 량의 잉여가치 또는 리윤을 생산하였다면 잉여가치 따라서 가치일반은 로동과는 전혀 다른 원천을 가졌어야 할것이라는것, 또 그와 함께 정치경제학은 모든 합리적인 기초를 상실하리라는것은 극히 명백할것이다. 여전히 1파운드가 60로동시간분의 1명의 로동자의 주임금이며 잉여가치률이 100%라고 하면 분명히 1명의 로동자가 1주일동안에 제공할수 있는 총가치생산물은 2파운드일것이다. 따라서 10명의 로동자는 1주일동안에 20파운드이상을 제공할수는 없을것이다. 이 20파운드중에서 10파운드는 로임을 보상하므로 10명의 로동자는 10파운드보다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조할수는 없다. 그런데 90명의 로동자는 그들의 총생산물이 180파운드이고 로임이 90파운드이므로 9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창조할것이다. 그리하여 리윤률은 한 경우에는 10%일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90%일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치 및 잉여가치는 대상화된 로동과는 다른 어떤것일것이다. 따라서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백분비로 표현된 자본들—또는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은 같지 않은 비률로 불변적요소와 가변적요소로 분할되며 같지 않은 량의 산로동을 움직이고 그리하여 같지 않은 량의 잉여가치 따라서 리윤을 생산하기때문에 리윤률 즉 총자본에 대하여 백분비로 잉여가치를 계산한것은 각이하다.

그러나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백분비적으로 계산된 자본들 또는 각이한 생산분야에 있는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이

그것들의 유기적구성이 각이한 결과로 같지 않은 리윤을 생산한다면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있는 같지 않은 자본들의 리윤은 이 자본들의 각자의 크기에 비례할수 없으며 따라서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리윤은 이 분야들에서 사용된 각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용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리윤이 증대하는것은 백분비적으로 보면 리윤은 어디서나 동등하다는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있는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은 그것들의 유기적구성이 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리윤률을 가진다는것을 전제로 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주어진 동일한 생산분야에서만 또는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동등한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서만 리윤량은 사용된 자본량에 정비례한다. 같지 않은 크기의 자본들의 리윤이 그 자본들의 크기에 비례한다는것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은 동등한 크기의 리윤을 낳는다는것 또는 모든 자본들에 있어서의 리윤률은 그 자본들의 크기와 그것들의 유기적구성이 어떠하든간에 동등하다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전개된것은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불변자본의 가치 플라스 그 상품에서 재생산된 가변자본의 가치 플라스 이 가변자본의 증가분 즉 생산된 잉여가치와 같다. 잉여가치률이 같은 조건하에서는 잉여가치량은 가변자본의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은 명백하다. 100이라는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는 한 경우에는 90c+10v+10m=110이며 다른 경우에는 10c+90v+90m=190이다. 상품들이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제1의 생산물은 110으로 판매되고 그중 10은 잉여가치 또는 부지불로동을 표시한다. 제2의 생산물은 190으로

판매되고 그중 90은 잉여가치 또는 부지불로동을 표시한다.

이것은 각이한 나라들의 리윤률을 서로 비교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구라파의 어떤 나라에서는 잉여가치률이 100%라고 즉 로동자는 하루의 절반은 자기를 위하여 로동하고 절반은 고용주를 위하여 로동한다고 하고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는 잉여가치률이 25%라고 즉 로동자는 하루의 $\frac{4}{5}$를 자기를 위하여 로동하고 $\frac{1}{5}$을 고용주를 위하여 로동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 구라파나라에서는 국민적자본의 구성이 84c+16v이며 아시아나라에서는 사용되는 기계 등등이 적어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량의 로동력에 의하여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원료가 비교적 적으므로 구성은 16c+84v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얻게 된다.

구라파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가치는 84c+16v+16m=116이고 리윤률은 $\frac{16}{100}$=16%이다.

아시아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가치는 16c+84v+21m=121이고 리윤률은 $\frac{21}{100}$=21%이다.

따라서 아시아나라에서의 잉여가치률은 구라파나라의 $\frac{1}{4}$이지만 리윤률은 구라파나라의것보다 25% 이상이나 더 크다. 케일리, 바스띠아 따위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지을것이다.

겸하여 말하지만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리윤률의 차이는 대체로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잉여가치률의 차이에 기초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에서는 동일한 잉여가치률로부터 나오는 각이한 리윤률을 비교할것이다.

리윤률의 각이한 원천으로서 자본들의 유기적구성의 차

이이외에, 즉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같은 크기의 자본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의 량의 차이 따라서 또 기타의 조건들이 동등하다면 잉여로동의 량의 차이외에 또 하나의 원천이 있다. 즉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자본회전의 길이의 차이가 그것이다. 제4장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들의 구성이 동등하고 기타의 조건들이 동등하다면 리윤률은 회전기간에 반비례하며 또한 동일한 가변자본이라도 회전기간이 다르면 각이한 량의 년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회전기간의 차이는, 왜 각이한 생산분야에 있는 동등한 크기의 자본이 동등한 기간에 동등한 크기의 리윤을 생산하지 않는가, 따라서 또 왜 이 각이한 분야들에서의 리윤률이 각이한가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 분할되는 자본구성의 비률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비률은 그 자체로서는 리윤률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것이 리윤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것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뿐이다. 즉 이 구성의 차이가 가변부분과 불변부분간의 비률상 차이와 일치하는 경우 따라서 리윤률의 차이가 생기는것이 류동부분과 고정부분의 비률상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가변부분과 불변부분간의 비률상 차이때문인 경우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정구성부분과 류동구성부분간의 비률상 차이가 일정한 리윤이 실현되는 회전기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만약 자본들이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 각이한 비률로 분할된다면 확실히 그것은 항상 자본들의 회전기간에 영향을 주며 회전기간의 차이를 일으키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동일한 자본들에 의하여 리윤이 실현되는 회전기간이 각이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례컨대 A는 부단히 생산물의 보다 더 많은 일부분을 원료 등등으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데 B는 보다 적은 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기계 등등을 보다 긴 기간동안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산을 하는 한 그들의 자본의 일부분은 언제나 움직여지고있으며 일방에 있어서는 원료 즉 류동자본으로서, 타방에 있어서는 기계 등등 즉 고정자본으로서 움직여지고있다. A는 부단히 자기 자본의 일부분을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시키고 또 화폐형태로부터 다시 원료형태로 전화시킨다. 그런데 B는 자기 자본의 일부분을 비교적 긴 기간에 그러한 전화없이 로동도구로서 리용한다. 만약 량자가 동등한 량의 로동을 사용한다면 그들이 1년 동안에 판매하는 생산물량의 가치는 같지 않을것이다. 량자의 생산물량은 동등한 량의 잉여가치를 포함할것이다. 그리고 선대자본 전체에 대하여 계산되는 두 자본의 리윤률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 분할되는 두 자본의 구성과 두 자본의 회전기간이 각이하다 하더라도 동일한것이다. 두 자본은 그 회전기간이 각이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리윤을 실현한다.(21) 회전기간의 차이는 그 자체로서는 오직 그것이 일정한 기간에 동일한 자본에 의하여 획득되고 실현될수 있는 잉여로동량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한에 있어서만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자본의 류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분할되는 구성의 차이는 반드

---

(21) {제4장으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상술한것이 정당한것은 다만 자본 A 및 B의 가치구성은 다르지만 두 자본의 백분비 가변적구성부분들이 두 자본의 회전기간에 정비례하고 두 자본의 회전수에 반비례하는 경우뿐이다. 자본 A의 백분비구성은 고정자본 20c+류동자본 70c, 따라서 90c+10v=100이라고 하자. 잉여가치률이 100%라면 10v는 1회전동안에 10m을 생산하며 1회전에 대한 리윤률은 10%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 B는 고정자본 60c+류동자본 20c, 따라서 80c+20v=100이라고 하자. 이 20v는 상기 잉여가치률에 있어서 1회전동안에 20m을 생산하며 1회전에 대한 리윤률은 20%이다. 즉 A에 비하면 2배이다. 그러나 A는 1년간에 2회 회전하는데 B는 다만 1회전만 회전한다면 1년간에 A에 있어서도 역시 2×10=20m으로 되며 그리하여 년리윤률은 두 경우에 다 동등하며 20%로 된다.—F. 엥겔스}

시 그 자체의 리윤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회전기간의 차이를 포함하는것이 아니라면 리윤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류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분할되는 구성상의 차이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본의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가 여기에서는 리윤률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회전기간의 차이를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것에 의하여 발생한다는것이 명백하다.

그리하여 각이한 산업부문들에서 류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분할되는 불변자본의 각이한 구성은 그 자체로서는 리윤률에 대하여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률이 결정적인것이며 또 불변자본의 가치따라서 또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상대적크기는 불변자본의 구성부분들의 고정적 또는 류동적 성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게 될것이다.—이것은 흔히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내는것이지만—즉 고정자본이 현저하게 증대된 곳에서는 그것은 생산이 대규모적으로 수행되며 따라서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것, 바꾸어말하면 사용되는 산로동력이 그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생산수단의 량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것을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해명하였다.—즉 각이한 산업부문들에서는 자본들의 유기적구성의 차이에 상응하여 또 일정한 한계내에서 자본의 회전기간의 차이에 상응하여 각이한 리윤률이 지배한다는것, 따라서 또 잉여가치률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리윤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며 따라서 동등한 크기의 자본은 동등한 기간에 동등한 크기의 리윤을 낳는다는 법칙(일반적경향으로 보아)은 다만 동등한 유기적

구성을 가진 자본들에 있어서만—회전기간들이 동등하다고 전제하면—적용된다는것이다. 상술한것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론술의 기초에 서있었던것 즉 상품들이 가치대로 판매된다는것을 기초로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비본질적이며 우연적인 그리고 상쇄되는 차이들을 도외시한다면 각이한 산업부문들에 있어서 평균적리윤률의 차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또 사실 자본주의적생산의 전체 체계를 폐절함이 없이는 그런 차이란 존재할수 없다는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가치리론은 여기에서는 현실적운동과 일치하지 않으며 생산의 실지현상들과 일치하지 않는듯이 보이며 따라서 또 이러한 생산의 실지현상들을 리해하려는 희망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는듯이 보인다.

본권 제1편으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각이한 생산분야의 생산물들의 비용가격은 이 생산물들의 생산에 동등한 크기의 자본부분들이 선대되여있다면 이 자본들의 유기적구성이 아무리 각이하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비용가격에 있어서는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구별은 자본가에 있어서는 소멸되고만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가가 100파운드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그가 90c+10v를 지출하든 또는 10c+90v를 지출하든간에 그에게는 동등한 비용이 든다. 그 상품은 어느 경우에나 그에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바로 100파운드의 비용을 들이게 한다.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비용가격은 동등한 크기의 자본이 투하되면 생산된 가치 및 잉여가치가 아무리 각이하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비용가격의 이러한 동등성은 투자의 경쟁의 기초를 이루며 이 경쟁에 의하여 평균리윤이 형성된다.

제 9 장

일반적리윤률(평균리윤률)의 형성과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

자본의 유기적구성은 어떠한 순간에도 두개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째로는 사용되는 로동력과 사용되는 생산수단량사이의 기술적비률에 의해서이며 둘째로는 이 생산수단의 가격에 의해서이다. 이 구성은 이미 본바와 같이 백분비에 의하여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자본이 $\frac{4}{5}$의 불변자본과 $\frac{1}{5}$의 가변자본으로써 이루어지고있다면 그 자본의 유기적구성을 우리는 80c+20v라는 공식으로써 표현한다. 그리고 또 비교에 있어서는 불변의 잉여가치률, 그것도 어떠한 임의의 비률 례컨대 100%가 가정된다. 따라서 80c+20v인 자본은 20m의 잉여가치를 낳으며 이것은 총자본에 대하여 20%의 리윤률로 된다. 그런데 이 자본의 생산물의 현실적가치의 크기는 불변자본중의 고정부분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고정부분중 마멸분으로서 얼마만큼 생산물에 들어가고 얼마만큼 안들어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 사정은 리윤률에 대하여는, 따라서 우리의 당면한 연구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좋으므로 우리는 간단히 하기 위하여 불변자본은 어디서나 똑같이 고찰되는 자본들의 년생산물에 전부 들어간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자본들은 그 가변부분의 크기에 비례하여 해마다 동등한 량의 잉여가치를 실현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회전기간의 차이가 이 관계에서 일으킬수 있는 차이를 당분간 도외시한다. 이 점은 나중에 론하기로 한다.

다섯개의 각이한 생산분야들을 들고 거기에 투하된 자본들의 유기적구성이 례컨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고 하자.

자 본	잉여가치률	잉여가치	생산물가치	리윤률
Ⅰ. 80c+20v	100%	20	120	20%
Ⅱ. 70c+30v	100%	30	130	30%
Ⅲ. 60c+40v	100%	40	140	40%
Ⅳ. 85c+15v	100%	15	115	15%
Ⅴ. 95c+5v	100%	5	105	5%

여기에서 우리는 생산분야가 다르면 로동의 착취도가 같더라도 리윤률은 자본들의 각이한 유기적구성에 상응하여 매우 다른것을 보게 된다.

다섯개의 분야들에 투하된 자본총액은 500, 이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의 총액은 110, 그것들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들의 총가치는 610이다. 만약 이 500을 하나의 자본이라고 간주하고 그중의 Ⅰ부터 Ⅴ까지는 다만 이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을 이룰따름이라고 하자(례컨대 한 면방직공장에서 각이한 부분들—소면실, 조방실, 방적실, 직포실—에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에 각이한 비률이 존재하는데 전체 공장에 대한 평균비률은 계산하여보아야만 알수 있는 경우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자본 500의 평균구성은 390c+110v 또는 백분비로써는 78c+22v일것이다. 총자본의 $\frac{1}{5}$로 간주될 따름인 100이라는 매개 자본들의 구성은 이 78c+22v라는 평균구성일것이다. 마찬가지로 매 100에 대하여는 평균적잉여가치로서 22가 해당될것이다. 그러므로 평균리윤률은 22%일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500에 의하여 생산된 총생산물의 매 $\frac{1}{5}$의 가격은 122일것이다. 그리하여 선대된 총자본의 매 $\frac{1}{5}$의 생산물은 122의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그릇된 결론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비용가격을 100으로 계산하지 않는것이 필요하다.

80c+20v이고 잉여가치률이 100%인 경우에 만약 전체 불변자본이 년생물에 들어간다면 자본 I=100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총가치는 80c+20v+20m=120일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일정한 생산분야들에서 물론 있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c:v의 비률이 4:1 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이한 자본들의 매 100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 상품의 가치들은 c의 고정적구성부분과 류동적구성부분사이의 비률이 다름에 따라 다를것이며 또 자본들이 다르면 그 고정적구성부분들 자체의 마멸에도 빠르고 늦은 차이가 있고 따라서 동등한 기간에 동등하지 않은 가치량을 생산물에 첨가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리윤률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좋다. 80c가 년생산물에 이전하는

가치가 80이든 50이든 또는 5이든간에 따라서 년생산물이 80c+20v+20m=120이든, 50c+20v+20m=90이든 또는 5c+20v+20m=45이든간에 이 모든 경우에 생산물의 가치가 그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은 20이며 또 이 모든 경우에 리윤률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이 20은 자본 100에 대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자본 I의 리윤률은 모든 경우에 20%이다. 이것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우에서와 동일한 다섯개의 자본에 대한 다음표에서 불변자본의 각이한 부분이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간다고 하자.

자 본	잉여 가치률	잉여 가치	리윤률	소비된 c	상품 가치	비용 가격
Ⅰ. 80c+20v	100%	20	20%	50	90	70
Ⅱ. 70c+30v	100%	30	30%	51	111	81
Ⅲ. 60c+40v	100%	40	40%	51	131	91
Ⅳ. 85c+15v	100%	15	15%	40	70	55
Ⅴ. 95c+5v	100%	5	5%	10	20	15
합계 390c+110v	—	110	—	—	—	—
평균 78c+ 22v	—	22	22%	—	—	—

Ⅰ로부터 Ⅴ까지의 자본들을 또다시 하나의 총자본으로 간주한다면 이 경우에도 다섯개의 자본들의 총액의 구성은 500=390c+110v이고 따라서 평균구성은 78c+22v이며 의연히 이전과 동일하다는것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평균잉여가치도 22이다. 이 잉여가치를 Ⅰ로부터 Ⅴ까지의 자본들에 균등하게 분배하면 다음과 같은 상품가격들이 나올것이다.

자 본	잉여가치	상품가치	상품의 비용가격	상품가격	리윤률	가치로부터의 가격의 배리
Ⅰ. 80c+20v	20	90	70	92	22%	+2
Ⅱ. 70c+30v	30	111	81	103	22%	-8
Ⅲ. 60c+40v	40	131	91	113	22%	-18
Ⅳ. 85c+15v	15	70	55	77	22%	+7
Ⅴ. 95c+5v	5	20	15	37	22%	+17

총괄하면 상품들은 2+7+17=26만큼 가치보다 비싸게, 8+18=26만큼 가치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균등한 분배에 의하여 생기는 가격의 배리 즉 선대자본 매 100에 대한 22라는 평균리윤이 Ⅰ로부터 Ⅴ까지의 상품의 각 비용가격에 첨가됨으로써 생기는 가격의 배리는 상쇄된다. 상품들의 일부분이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되는것과 동일한 비률로 다른 부분은 그 가치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그리고 다만 이러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는데 의하여서만 Ⅰ로부터 Ⅴ까지의 자본들의 각이한 유기적구성에도 불구하고 Ⅰ로부터 Ⅴ까지의 리윤률이 균등하게 22%로 될수 있게 된다.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각이한 리윤률들의 평균을 취하고 이 평균을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비용가격들에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격—이것이 **생산가격**이다. 생산가격의 전제는 일반적리윤률의 존재이며 일반적리윤률은 또 매개의 특수한 생산분야들의 리윤률들이 각기 이미 동일한 수의 평균률로 환원되고있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특수한 리윤률은 매개 생산분야에서 $\frac{m}{c}$이며 그것들은 본권 제1편에서 한것처럼 상품가치로부터 전개되여야 한다. 그러한 전개가 없이는 일

반적리윤률(따라서 또 상품의 생산가격도)은 의미도 내용도 없는 개념일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생산가격은 상품의 비용가격 플라스 일반적리윤률에 따라 백분비적으로 비용가격에 첨가된 리윤과 같다. 즉 상품의 비용가격 플라스 평균리윤과 같다.

각이한 생산부문들에 투하된 자본들의 유기적구성들이 각이함으로 하여, 따라서 주어진 크기의 총자본중에서 가변부분이 차지하는 백분률이 각이함에 따라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이 매우 각이한 량의 로동을 움직인다는 사정으로 하여 그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은 또한 매우 각이한 량의 잉여로동을 취득하며 또는 매우 각이한 량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에 따라 각이한 생산분문들에서 지배적인 리윤률들은 원래는 매우 각이하다. 이 각이한 리윤률들은 경쟁에 의하여 이 모든 각이한 리윤률들의 평균인 일반적리윤률로 평균화된다.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어떠하든간에 이러한 일반적리윤률에 따라 주어진 크기의 자본에 귀속하는 리윤은 평균리윤이라고 불리운다. 한 상품의 가격이 만약 그 상품의 비용가격 플라스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본(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자본뿐만아니라)에 대한 년평균리윤중 그 상품의 회전조건들에 따라 그 상품에 귀속하는 부분과 같다면 이 가격이 바로 그 상품의 생산가격이다. 례컨대 500이라는 자본에 있어서 그중 100을 고정자본이라 하고 그 10%를 류동자본 400의 1회전기간의 마멸분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회전기간중의 평균리윤을 10%라고 하자. 그러면 이 회전기간에 제조되는 생산물의 비용가격은 마멸분 10c+류동자본400(c+v)=410이며 그 생산가격은 비용가격 410+50(500에 대한 10%의 리윤)=460일것이다.

그러므로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상품

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 상품들의 생산에 지출된 자본가치들을 회수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분야에서 이 상품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생산한 잉여가치 또는 리윤을 얻는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생산분야들에서의 사회적총자본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생산된 총잉여가치 또는 총리윤중에서 균등한 분배에 의하여 총자본의 매개 해당부문에 귀속하는 분량만큼의 잉여가치 따라서 리윤을 얻을따름이다. 매개 선대자본은 그 구성이 어떠하든간에 매 100에 대하여 1년 또는 다른 기간에 이 기간분으로서 총자본의 매 100에 귀속하는 분량만큼의 리윤을 얻는다. 이 경우에 각이한 부분의 자본가들은 리윤이 문체로 되는 한 주식회사의 단순한 주주들과 같은 관계에 있는데 이 주식회사에서는 리윤의 몫이 자본 매 100에 대하여 균등하게 분배되며 따라서 각이한 자본가들에 있어서 이 몫에 차이가 있는것은 다만 각자가 총기업에 투입한 자본의 크기에 따라, 총기업에의 그의 참가비률에 따라, 그의 주식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상품가격중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자본가치부분들을 보상하는 부분, 따라서 이 소비된 자본가치를 도로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즉 비용가격은 전적으로 각 생산분야내부에서의 지출들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상품가격중 이 비용가격에 첨가되는 다른 구성부분인 리윤은 이 일정한 자본이 이 일정한 생산분야에서 일정한 기간에 생산되는 리윤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총생산에 사용된 사회적총자본의 해당 부분으로서 사용된 매개 자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에 평균적으로 귀속되는 리윤량에 의하여 규정된다.(22)

---

(22) 쉐르벨리에[83]

그러므로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그 생산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가 생산에서 소비한 자본의 가치량에 해당한 화폐를 회수하며 그리고 사회적총자본의 일정한 부분으로서의 자기의 선대자본에 비례하여 리윤을 끌어낸다. 그의 비용가격은 특수한것이다. 이 비용가격에 첨가되는 리윤은 그의 특수한 생산분야에는 의존하지 않으며 선대자본 매 100에 대한 단순한 평균이다.

전례에서 나오는 I로부터 V까지의 다섯개의 각이한 투자가 한사람의것이라고 가정하자 I로부터 V까지의 매개 투자에서 사용자본 100에 대하여 얼마만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이 상품의 생산에 소비되는가는 주어져있을것이며 또 I로부터 V까지의 상품들의 이 가치부분은 물론 상품가격의 일부분을 형성할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가격은 선대되고 소비된 자본부분의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가격은 I로부터 V까지의 매 상품종류들에 있어서 각이할것이며 비용가격으로서 소유자에 의하여 각이하게 확정될것이다. 그러나 I로부터 V까지에서 생산된 각이한 잉여가치량 또는 리윤량에 관하여 말한다면 자본가는 아주 간단히 그것을 자기의 선대된 총자본에 대한 리윤으로 간주할것이며 그리하여 자본 매 100에 대하여 일정한 해당 부분이 배당될것이다. 따라서 I로부터 V까지의 개개의 투자들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비용가격은 각이할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품들에 있어서 판매가격중 자본 매 100에 추가되는 리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디서나 동등할것이다. 따라서 I로부터 V까지의 상품들의 총가격은 그것들의 총가치 즉 I로부터 V까지의 비용가격총액 플라스 I로부터 V까지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리윤총액과 동등할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상품

들의 총가격은 I로부터 V까지의 상품들에 포함되여있는 과거로동과 새로 첨가된 로동총량의 화폐적표현일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자체에서는—사회를 모든 생산부문들의 총체로 고찰한다면—생산된 상품들의 생산가격총액은 상품들의 가치총액과 동등하다.

이 명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모순되는듯이 보인다. 즉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생산자본의 요소들이 보통 시장에서 구매되며 따라서 그것들의 가격은 이미 실현된 리윤을 포함하기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본다면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가격이 그속에 포함되여있는 리윤과 함께 다른 산업부문의 비용가격에 들어간다는 사실 즉 한 산업부문의 리윤이 다른 산업부문의 비용가격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전국의 상품들의 비용가격총액을 일방에 놓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리윤 또는 잉여가치총액을 타방에 놓는다면 우리는 정확한 계산을 얻게 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례컨대 상품 A를 들어보자. 그것의 비용가격속에는 B, C, D의 리윤들이 들어가고 B, C, D 의 비용가격속에도 A의 리윤이 들어간다고 하자. 만일 계산을 하여본다면 A와 리윤은 A 자체의 비용가격속에는 없을것이며 또한 B, C, D 등등의 리윤들도 그것들 자체의 비용가격속에는 없을것이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리윤을 자기의 비용가격에 계산해넣지는 않는다. 례컨대 n개의 생산분야들이 있으며 그 매개 분야에서 p와 동등한 리윤을 얻는다면 모든 분야들의 합계에서는 비용가격=k-np이다. 여기에서 총계산을 고찰한다면 한 생산분야의 리윤이 다른 생산분야의 비용가격에 들어가는 한, 이 리윤은 이미 최종생산물의 총가격에 들어가며 그리하여 재차 리윤측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리윤측

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만 그 상품 자체가 최종생산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생산가격이 어떤 다른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이다.

어떤 상품의 비용가격에 생산수단의 생산자들의 리윤을 이루는 금액 p가 들어가고 또 이 비용가격에 리윤 p_1이 첨가된다면 총리윤 p는 $=p+p_1$이다. 그 경우에는 리윤으로서 들어가는 모든 가격부분들을 덜어낸후의 상품의 총비용가격은 그 상품 자체의 비용가격 마이나스 p이다. 이 비용가격을 k라고 한다면 더 말할것도 없이 $k+P=k+p+p_1$이다. 제1부 제7장 제2절, 211/203페지[84]에서 잉여가치를 연구할 때 본바와 같이 매개 자본의 생산물은 마치 그 일부분은 자본을 보상하고 다른 일부분은 다만 잉여가치를 표현하는것처럼 취급할수 있다. 이러한 계산을 사회의 총생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전체를 고찰하면 레컨대 아마의 가격속에 포함되여있는 리윤은 두번 즉 아마포가격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나는 동시에 또 아마생산자의 리윤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날수는 없기때문이다.

레컨대 A의 잉여가치가 B의 불변자본에 들어가는 한에 있어서는 리윤과 잉여가치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는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이 지불로동으로 이루어지고있는가 또는 부지불로동으로 이루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다만 B가 A의 잉여가치를 지불한다는것을 표시할따름이다. 총계산에서는 A의 잉여가치가 두번 계산될수는 없다.

그러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레컨대 자본 B의 생산물의 가격이 그 가치로부터 배리되는것은 B에서 실현된 잉여가치는 B의 생산물의 가격중에 첨가되여있는 리윤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적을수 있기때문인데 이것외에 동일한 사정이 자본 B의 불변부분을 이루는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로동자들의 생활수단으로서 자본 B의 가변부분도 이루는 상품들에도 적용되는것이다. 불변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부분자체는 비용가격 플라스 잉여가치와 동등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용가격플라스 리윤과 동등하며 이 리윤은 또 그것이 대신하게 되는 잉여가치보다 더 클수도 있고 더 적을수도 있다. 가변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평균적인 1일의 로임은 항상 필요생활수단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로동자가 로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의 가치생산물과 동등하다. 그러나 이 시간수 자체가 또 필요생활수단의 생산가격이 그 가치로부터 배리되는데 의하여 부정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한 상품에 잉여가치로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것이 다른 상품에 지나치게 적게 들어감으로써, 따라서 또 상품들의 생산가격에 포함되여있는 가치로부터의 배리들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언제나 해소되는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적생산 전체에서는 언제나 다만 극히 착잡하고 근사적인 방식으로서만이, 영구적인 변동들의 결코 고정될수 없는 평균으로서만 일반적인 법칙은 지배적인 경향으로서 관철되는것이다.

일반적리윤률은 선대자본의 매 100에 대한 일정한 기간 례컨대 1년간의 각이한 리윤률들의 평균으로써 형성되는만큼 이 일반적리윤률에서는 각이한 자본들의 회전기간의 차이에 의하여 초래되는 차이도 해소되고있다. 그러나 이 차이들은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각이한 리윤률들에 규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각이한 리윤률들의 평균에 의하여 일반적리윤률이 형성된다.

일반적리윤률의 형성을 설명하는 상기례증에서는 매개

생산분야의 매개 자본은 100이라고 가정하였는데 그렇게 한 것은 리윤률의 백분비적차이를 명시하기 위해서이고 따라서 또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의 차이를 명시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는 현실적인 잉여가치량은 그러한 매개 생산분야들에서의 자본의 구성이 주어져있기때문에 사용된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개별적생산분야의 특수적인 리윤률은 사용되는 자본이 100이든 m×100 또는 xm×100이든 그것에 의하여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리윤률은 총리윤이 10:100을 이루는 경우에나 1,000:10,000을 이루는 경우에나 의연히 10%이다.

그러나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량, 따라서 또 리윤량은 총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률여하에 따라 매우 각이하므로 생산분야가 각이하면 리윤률이 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자본 매 100에 대한 평균리윤, 따라서 평균리윤률 또는 일반적리윤률은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자본들의 각이한 크기에 따라 극히 각이할것이라는것은 분명하다. 네개의 자본 A, B, C, D 를 들어보자. 어느 자본이나 잉여가치률은 100%라고 하자. 총자본 매 100에 대하여 가변자본은 A에서는 25, B에서는 40, C에서는 15, D에서는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총자본 매 100에 대한 잉여가치 또는 리윤은 A에서는 25, B에서는 40, C에서는 15, D에서는 10, 합계 90으로 될것이며 따라서 네개의 자본들이 동등한 크기라면 평균리윤률은 $\frac{90}{4}\%=22\frac{1}{2}\%$일것이다.

그러나 만약 총자본의 크기가 A=200, B=300, C=1,000, D=4,000이라면 생산되는 리윤들은 각각 50, 120, 150, 400일

것이다. 5,500의 자본에 대하여 도합 720의 리윤 즉 $13\frac{1}{11}$%의 평균리윤률일것이다.

생산된 총가치의 량은 A, B, C, D에 각각 선대된 총자본의 량이 각이함에 따라 각이하다. 그러므로 일반적리윤률의 형성에 있어서는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리윤률의 차이만을 문제로 하여 그것들의 단순평균을 내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 각이한 리윤률이 평균의 형성에 참가하는 비중이 역시 문제로 된다. 그런데 이것은 매 특수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상대적크기에 즉 매 특수생산분야에 투하된 자본이 사회적총자본의 얼마만한 부분을 이루고있는가 하는데 의존한다. 물론 총자본중의 큰 부분 또는 작은 부분이 높은 리윤률을 낳는가 또는 낮은 리윤률을 낳는가 하는데 따라 대단히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또 총자본에 대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에 얼마만한 자본이 투하되여있는가,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에 얼마만한 자본이 투하되여있는가에 의존한다. 이것은 고리대금업자가 자기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을 각이한 리자률 례컨대 4%, 5%, 6%, 7% 등등으로 대부하여 얻는 평균리자률과 같은것이다. 이 평균률은 그가 자기 자본의 얼마만한 부분을 각이한 리자률로 대부하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리하여 일반적리윤률은 다음과 같은 두개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

1)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자본의 유기적구성, 따라서 개별적분야들에서의 각이한 리윤률에 의하여.

2) 이 각이한 분야들로의 사회적총자본의 분배 즉 매 특수적분야에 따라서 또 매 특수한 리윤률로 투하된 자본의 상

대적크기, 즉 사회적총자본중에서 매개 특수적생산분야들이 흡수하는 량의 상대적부분에 의하여

제1부와 제2부에서는 우리는 다만 상품의 **가치**만을 론하였다. 이제는 한편으로는 이 가치의 일부분으로서 **비용가격**이 분리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의 전화된 형태로서 상품의 **생산가격**이 전개되였다.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을 80c+20v이라 하고 년잉여가치률 m′를 100%라고 하면 자본 100에 대한 년평균리윤은 20일것이며 일반적년리윤률은 20%일것이다. 자본 100에 의하여 1년간에 생산되는 상품들의 비용가격 k가 얼마이든간에 그 상품들의 생산가격은 k+20일것이다. 자본의 구성이=(80-x)c+(20+x)v인 생산분야들에서는 실지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이 분야에서 생산된 년리윤은 20+x로서 20보다 더 클것이며 또 생산된 상품가치는 k+20+x여서 k+20 즉 그 상품의 생산가격보다 더 클것이다. 자본의 구성이 (80+x)c+(20-x)v인 분야들에서는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 또는 리윤은 20-x 즉 20보다 더 적을것이며 따라서 상품가치 k+20-x는 생산가격 k+20보다 더 적을것이다. 회전기간에 있을수 있는 차이를 도외시한다면 상품의 생산가격은 자본의 구성이 우연히 80c+20v인 분야들에서만 상품의 가치와 일치할것이다.

사회적로동생산력의 특수적발전은 매 특수한 생산분야에 따라 정도가 다르며 그것이 높은가 낮은가 하는것은 일정한 량의 로동에 의하여 따라서 로동일이 주어져있는 조건하에서는 일정한 수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생산수단들의 량에 정비례하며 따라서 일정한 량의 생산수단에 필요한 로동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평균자본에 비하여 백분비적으로 보다 많은 불변자본을 따라서 보다 적은 가

변자본을 포함하는 자본을 **높은** 구성의 자본이라고 부른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평균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비률을 차지하고 가변자본이 보다 큰 비률을 차지하는 자본을 우리는 **낮은** 구성의 자본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그 구성이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과 일치한 자본을 우리는 평균적구성의 자본이라고 부른다. 사회적평균자본의 백분비구성이 80c+20v라면 90c+10v의 자본은 사회적평균보다 **높으며** 70c+30v의 자본은 사회적평균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이 mc+nv이고 이 m과 n은 불변량이고 m+n=100이라면 (m+x)c+(n-x)v는 한 자본 또는 한 자본군의 높은 구성을 표시하며 (m-x)c+(n+x)v는 그보다 낮은 구성을 표시한다. 이 자본들이 년 1회전한다는 전제하에서 평균리윤률이 선정된후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표가 보여준다. 여기에서 I은 평균구성을 표시하며 따라서 평균리윤률은 20%이다.

Ⅰ. 80c+20v+20m. 리윤률=20%.
생산물가격=120. 가치=120.

Ⅱ. 90c+10v+10m. 리윤률=20%.
생산물가격=120. 가치=110.

Ⅲ. 70c+30v+30m. 리윤률=20%
생산물가격=120. 가치=130.

그리하여 자본 Ⅱ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들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그 생산가격보다 작으며 자본 Ⅲ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들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이 가치보다 작다. 그리하여 자본의 구성이 우연히 사회적평균구성인 생산부문의 자본 Ⅰ의 경우에만 가치와 생산가격은 동등할것이다. 그밖에 이 표시방법을 일정한 경우들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물론 다음과 같은것

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즉 기술적구성에서의 차이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불변자본요소들의 단순한 가치변동에 의하여 c와 v간의 비률을 일반적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배리시키는가 하는것이다.

이상에서 말한것은 분명히 상품의 비용가격에 대한 규정을 수정한다. 처음에 우리는 상품의 비용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된 상품들의 **가치**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런데 어떤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상품의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비용가격으로 되며 따라서 비용가격으로서 다른 상품의 가격형성에 들어갈수 있다. 생산가격은 상품의 가치로부터 배리될수 있으므로 어떤 상품의 비용가격에 다른 상품의 이러한 생산가격이 포함되여있는 경우에는 이 비용가격도 그 상품의 총가치중 그 상품에 들어가는 생산수단들의 가치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보다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다. 비용가격의 이러한 수정된 의의를 잊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상품의 비용가격이 그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된 생산수단들의 가치와 같다고 한다면 언제나 착오가 생길수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당면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 점에 대하여 더 상세히 고찰할 필요는 없다. 여하튼 상품의 비용가격은 항상 그 상품의 가치보다 더 작다는 명제는 의연히 정당하다. 왜냐하면 가령 상품의 비용가격이 그 상품에 소비된 생산수단들의 가치로부터 아무리 배리된다 하더라도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이 지나간 착오는 아무래도 좋기때문이다. 상품의 비용가격은 주어진것이며 이 자본가의 생산과는 독립한 전제인데 자본가의 생산의 결과는 잉여가치를 포함하는 상품이며 따라서 상품의 비용가격을 넘는 가치초과분을 포함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또 비용가격은 상품가

치보다 더 작다는 명제는 이제는 실제로 비용가격은 생산가격보다 더 작다는 명제로 전화되였다. 생산가격이 가치와 같은 사회적총자본에 있어서는 이 명제는 비용가격이 가치보다 더 작다는 이전의 명제와 일치한다. 특수한 생산분야들에 있어서 이 명제는 의미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기초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놓여있다. 즉 사회적총자본을 고찰한다면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들의 비용가격은 가치보다도 작다는, 또는 생산된 상품의 총량에 있어서는 이 가치와 일치한 생산가격보다도 작다는 사실이다. 상품의 비용가격은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지불로동의 량과만 관계되며 가치는 그 상품속에 포함되여있는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의 총량과 관계되며 생산가격은 지불로동 플라스 개별적생산분야 자체에는 의존하지 않는 일정한 량의 부지불로동의 총량과 관계된다.

상품의 생산가격은 k+p 즉 비용가격 플라스 리윤이라는 공식은 이제는 더 자세히 되여 p=kp′(여기에서 p′는 일반적리윤률)이므로 생산가격은 k+kp′와 같다고 규정된다. 만약 k=300이고 p′=15%라면 생산가격은 $k+kp'=300+300\times\frac{15}{100}=345$ 이다.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상품의 생산가격에 량적변동이 일어나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서이다.

1) 상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즉 상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죽은로동과 산로동의 량이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그 특수한 생산분야에는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리윤률의 변동의 결과로.

2) 일반적리윤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적변화로

말미암아 그 특수한 생산분야 자체에서 생긴 가치변동에 의하여, 또는 이 생산분야의 불변자본에 형성요소들로서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변동에 의하여.

3) 마지막으로 이 두 사정이 함께 작용하는데 의하여.

개별적생산분야들에서의 실지리윤률에는—앞으로 해명하는바와 같이—끊임없이 큰 변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리윤률의 현실적변화는 그것이 어떠한 비상한 경제적사변에 의하여 례외적으로 야기되지 않는 한, 대단히 긴 기간에 걸치는 일련의 동요의 결과가 썩 후에 나타난것인데 이러한 동요가 .고정되고 평균화되여 일반적리윤률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비교적 단기간의 경우에는(시장가격의 변동은 전혀 도외시하고) 생산가격의 변화는 명백히 상품의 현실적인 가치변동으로써 즉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총량의 변동으로써 언제나 설명되여야 한다. 동일한 가치의 단지 화폐표현에 불과한 변동은 여기에서는 물론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다.(23)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총자본을 고찰한다면 그것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총액(또는 화폐로 표현하면 그 가격)은 불변자본의 가치+가변자본의 가치+잉여가치라는것은 명백하다. 로동의 착취도를 변하지 않는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 리윤률이 변동될수 있는것은 잉여가치량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오직 불변자본의 가치가 변동하거나 가변자본의 가치가 변동하거나 또는 이 량자가 다 변동하여 C가 변동하고 따라서 일반적리윤률 $\frac{m}{C}$이 변동하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나 일반적리윤률의 변동은 불변자본, 가변자

(23) 코비트[85], 174페지

본 또는 동시에 이 량자에 형성요소들로서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또 일반적리윤률은 상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로동의 착취도가 변동하면 변동할수 있다.

혹은 또 로동의 착취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일반적리윤률은 로동과정에서 기술적변화가 일어나기때문에 사용되는 로동의 총량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변동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적변화는 언제나 그 생산에 이제는 이전에 비하여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로동을 필요로 하는 상품의 가치변동에 나타나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그 가치변동을 수반하지 않을수 없다.

제1편에서 본바와 같이 잉여가치와 리윤은 량적으로 보면 동일하다. 그러나 리윤률은 처음부터 잉여가치률과 다른 것이다. 이 차이는 우선 다만 다른 계산방식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또 리윤률은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올라가거나 내려올수 있으며 또 그 반대로도 될수 있으므로 그리고 또 자본가에게 실지 관심사로 되는것은 다만 리윤률이므로 이러한 차이는 처음부터 잉여가치의 현실적기원을 아주 애매하게 하며 신비화한다. 그렇지만 량적차이는 잉여가치률과 리윤률 사이에만 있었고 잉여가치와 리윤 그 자체사이에는 없었다. 리윤률에 있어서는 잉여가치가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며 잉여가치가 자체의 척도로서의 총자본과 관계되기때문에 잉여가치 자체는 총자본으로부터, 그것도 총자본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균등하게 발생하는것처럼 나타나며 그리하여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유기적차이는 리윤이라는 개념에서는 소멸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잉여가치 자체는 이러한 리윤이라는 전화된 모습에서는 자체의 기원을 부정하고

자체의 성격을 상실하여 알아볼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 한에 있어서는 리윤과 잉여가치간의 차이는 다만 질적인 변화 즉 형태변화에만 관계되여있었는데 현실적인 량적차이는 이 최초의 전화단계에서는 다만 리윤률과 잉여가치률간에만 존재하고 아직 리윤과 잉여가치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리윤률이 형성되고 또 그것에 의하여 각이한 생산분야에서 주어진 사용자본의 크기에 상응하는 평균리윤이 형성되면 사태는 다르게 된다.

이제는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생산된 잉여가치 따라서 또 리윤은 상품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여있는 리윤과 일치하는것은 다만 우연적일따름이다. 통례로 리윤과 잉여가치는 비단 그 비률이 다를뿐만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른 량이다. 이제는 로동의 착취도가 주어져있는 조건하에서는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직접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내부의 자본가에 대하여서보다 사회적자본의 총체적인 평균리윤에 대하여 따라서 자본가계급일반에 대하여 더 중요하다. 그것이 매개 특수한 생산부문의 자본가에 대하여 중요한것은 오직(24) 그의 부문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평균리윤의 조절에 하나의 규정적요소로서 참가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자본가의 배후에서 진행되며 그에게 보이지도 않으며 그가 리해하지도 못하며 사실상 그가 관심을 돌리지도 않는 과정이다. 이제는 특수한 생산분야들에서의 리윤과 잉여가치간의—리윤률과 잉여가치률간에서뿐만아니라—현실적인 량적차이는 이 경우에 자신을 기만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자본가에 대해

---

(24) 두말할것도 없이 여기에서는 임금인하, 독점가격 등등에 의하여 일시적인 추가리윤을 얻을수 있는 가능성을 도외시한다. [F. 엥겔스]

서뿐만아니라 로동자들에 대해서도 리윤의 진정한 본성과 기원을 완전히 은폐한다.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되면 가치규정의 기초 자체는 보이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잉여가치가 단순히 리윤으로 전화한것으로도 상품가치중 리윤을 형성하는 부분은 상품의 비용가격으로서의 다른 가치부분에 대립되며 따라서 이미 여기에서 자본가는 상품의 생산에 드는 총로동이 아니라 이 로동중 그가 산생산수단 또는 죽은생산수단의 형태로서 지불한 부분만을 안중에 두기때문에 가치의 개념은 그에게서 없어지며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 리윤이 상품의 내재적인 가치밖에 있는 어떤것으로서 나타난다면 이제는 이 관념이 완전히 확증되고 고정되고 경화된다. 왜냐하면 특수한 생산분야를 고찰한다면 비용가격에 첨가되는 리윤은 사실상 그 분야 자체에서 진행되는 가치형성과정의 한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분야밖에 있는 조건들에 의하여 확정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내부적련관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밝혀지고있다는 사정, 이후의 서술과 제4부[86]에서 보게 될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기초로서의 가치규정을 보전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잉여가치와 리윤, 잉여가치률과 리윤률간의 구별을 억지로 무시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상들에서 눈에 띄우는 그 구별들을 고집하기 위하여 이 가치규정과 함께 문제에 대한 과학적태도의 온갖 기초를 내버렸다는 사정—리론가들의 이러한 혼란은 경쟁전에 사로잡혀있으며 그 현상을 결코 통찰하지 못하는 실무적자본가가 기만적인 외관을 뚫고 이러한 과정의 내부적본질 및 내부적구조를 인식하는데 전혀 무능력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

제1편에서 전개된 리윤률의 상승 및 저하에 관한 전체

법칙들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이중적의의를 가진다.

1)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칙들은 일반적리윤률의 법칙들이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리윤률을 상승 또는 저하시키는 많은 각이한 원인들을 본다면 일반적리윤률은 매일 변동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한 생산분야에서의 운동은 다른 생산분야에서의 운동을 상쇄하며 여러가지 영향들은 서로 교차되고 마비된다. 우리는 나중에 이러한 변동들이 결국 어느 편으로 지향하는가 하는것을 연구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들은 완만한것이다. 개개의 생산분야들에서의 변동들의 돌발성, 다면성 및 각이한 지속성으로 말미암아, 변동들은 부분적으로는 시간상으로 차례차례 상쇄되고 그리하여 가격등귀에 가격저락이 뒤따르고 또 그 반대로도 되며 따라서 변동들은 국부적인것으로서 즉 특수한 생산분야에 국한되게 되며 마지막으로 각이한 국부적변동들은 서로 상쇄되게 된다.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내에서는 변동이 일어나며 일반적리윤률로부터의 배리들이 일어나는데 이 배리들은 한편으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쇄되고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은 동시에 발생하는 다른 국부적인 변동들에 의하여 상쇄되기때문에 역시 일반적리윤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리윤률은 매개 분야에서의 평균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될뿐만아니라 또한 각이한 특수한 분야들로의 총자본의 분배에 의하여서도 규정되므로, 그리고 이러한 분배는 끊임없이 변동하므로 이것도 또한 일반적리윤률의 변동의 항시적인 원인인것이다. 그러나 이 원인 역시 이러한 운동의 비중단성①과 전면

① 제1판에서는 《중단성》으로 되여있다.—편집자

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자체를 마비시킨다.

2) 매개 분야의 내부에서는 이 분야의 리윤률은 장기간 또는 단기간 변동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이 변동들이 일련의 등락을 거친후에 일반적리윤률에 영향을 주는데 충분한, 따라서 국부적범위를 넘는 의의를 획득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만큼 공고화될 때까지 그렇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간적 및 시간적 한계내에서는 본권 제1편에서 전개된 리윤률의 법칙들이 역시 적용된다.

자본의 매개 부분은 균등하게 리윤을 생산한다는(25) 리론적견해—잉여가치의 리윤으로의 최초의 전화에 관한—는 하나의 실제적사실을 표현한다. 산업자본의 구성이 어떠하든간에 그것이 4분의 1의 죽은로동과 4분의 3의 산로동을 움직이든 또는 4분의 3의 죽은로동과 4분의 1의 산로동을 움직이든간에, 즉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3배의 잉여로동을 흡수하든 또는 3배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든간에—로동의 착취도가 같다면 또 어느 경우에나 모든 생산분야들의 평균구성만이 문제로 되기때문에 어쨌든 사라지는 개별적인 차이들을 도외시한다면—산업자본은 두 경우에 다 동등한 크기의 리윤을 제공할것이다. 시야가 좁은 개별적자본가(또는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의 전체 자본가들)가 그의 리윤은 자기 또는 자기 부문이 사용하는 로동으로부터만 나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개별적자본가의 평균리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 리윤이 어느 정도로 총자본 즉 그의 모든 자본가동료들에 의한 로동의 총착취에 의하여 매개되는가 하는것은 그에게는 전혀 리해될수 없는것이며 자

---

(25) 말사스[87]

산계급리론가인 경제학자들 자신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밝히지 않았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로동을—일정한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뿐만아니라 사용하는 로동자수까지도—절약하고 죽은로동(불변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당한 행위로 나타나며 처음부터 결코 일반적리윤률 및 평균리윤을 침해하지 않는것처럼 보인다.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의 감소가 리윤을 침해하는것처럼 보이지 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적어도 개별적자본가에 있어서는 리윤증대의 가장 가까운 원천으로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산로동만이 리윤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한 생산분야에서 비용가격중 불변자본의 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이 증대 또는 감소한다면 이 부분은 류통으로부터 나오며 처음부터 증대 또는 감소되여 상품의 생산과정으로 들어간다. 다른 한편 사용된 일정한 수의 로동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보다 많이 또는 보다 적게 생산물을 생산한다면 따라서 로동자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량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량이 변동한다면 비용가격중 가변자본의 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은 여전히 동일할수 있다. 즉 동일한 크기로 총생산물의 비용가격에 들어갈수 있다. 그러나 합계하면 총생산물을 이루는 그 하나하나의 상품에 해당되는 로동(지불로동과 따라서 또 부지불로동)은 보다 많든가 또는 보다 적으며 따라서 또 이 로동에 대한 지출도 보다 많든가 또는 보다 더 적다. 즉 로임의 몫도 보다 크든가 또는 보다 더 적다. 자본가가 지불하는 총로임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것은 매개 상품에 대하여 계산하면 다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상품의 비용가격의 이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것이다. 그런

데 개개의 상품 자체에서이든 또는 그 요소들에 있어서이든 이러한 가치변동이 일어났기때문에 개개의 상품의 비용가격(또는 일정한 크기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총량의 비용가격)은 증대 또는 감소하더라도 례컨대 평균리윤이 10%라면 그것은 여전히 10%이다. 비록 이 10%는 개개의 상품을 고찰하면 우리가 전제로 한 가치변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이 개개의 상품의 비용가격에서의 량적변동에 따라 극히 각이한 크기를 표시하기는 하지만.(26)

가변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것이다. 왜냐하면 가변자본은 잉여가치의 원천이며 또 자본가의 치부에 대한 그 관계를 은폐하는 모든것이 전체 체계를 신비화하기때문이다—사태는 조잡하게 된다. 또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조잡하게 나타난다. 즉 례컨대 1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100명의 로동자들의 주임금을 표시한다고 하자. 만약 이 100명의 로동자들이 주어진 로동일의 조건하에서 200개의 상품=200W라는 주생산물을 생산한다면 1W의 비용은—비용가격중 불변자본이 첨가하는 부분을 도외시하면—100파운드=200W이므로 $1W=\frac{100파운드}{200}$=10실링이다. 그런데 지금 로동의 생산력이 변동하였다고 하자. 례컨대 생산력이 2배로 되고 동일한 수의 로동자들이 이전에 200W를 생산하던것과 동일한 시간에 200W의 2배를 생산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 비용은(비용가격이 다만 로임으로써만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이제는 100파운드=400W이므로 $1W=\frac{100파운드}{400}$=5실링이다. 만약 생산력이 절반으로 저하된다면 동일한 로동은 다만 $\frac{200w}{2}$

(26) 코비트[68] [20페지]

만을 생산할것이며 100파운드=$\frac{200w}{2}$이므로 이제는 1W=$\frac{200파운드}{200}$=1파운드이다.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의 변동, 따라서 상품가치의 변동은 이제는 비용가격에 관하여서는, 따라서 또 생산가격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로동시간에 동일한 로임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다소에 따라 동일한 로임이 보다 많은 상품에 분배되든가 또는 보다 적은 상품에 분배되든가 하는 차이로서 나타난다. 자본가에게 보이는것, 따라서 또 경제학자에게 보이는것은 로동의 생산성이 변동함에 따라 상품 한개에 해당하는 지불로동부분이 변동하고 그와 함께 매개 상품의 가치도 변동한다는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상과 같은것이 매개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부지불로동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것이 보이지 않는다. 평균리윤이 사실상 그 자체의 분야에서 흡수되는 부지불로동에 의하여서는 우연적으로밖에는 규정되지 않으므로 더구나 그러하다. 상품의 가치가 그것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실은 이제는 오직 이러한 조잡하고 무개념적인 형태로만 나타난다.

제 10 장

경쟁에 의한 일반적리윤률의 평균화. 시장가격과 시장가치. 초과리윤

일부 생산분야들에서 사용되는 자본은 중등의 구성 또는 평균구성을 가진다. 즉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과 전적으로 같거나 또는 그에 가까운 구성을 가진다.

이 분야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생산가격은 화폐로써 표현된 그 상품들의 가치와 전적으로 또는 근사적으로 일치하다. 다른 방식으로는 수학적인 한계에 도달할수 없다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도달할수 있을것이다. 경쟁은 매개 분야에서의 생산가격이 이와 같은 중등구성을 가진 분야들에서의 생산가격, 즉=k+kp'(비용가격 플라스 비용가격에 평균리윤률을 승한것)에 따라 형성되도록 사회자본을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 분배한다. 그런데 이 평균리윤률은 이런 중등구성을 가진 분야 즉 리윤이 잉여가치와 일치하는 분야에서 백분비적으로 계산된 리윤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리윤률은 모든 생산분야들에서 동일하다. 즉 자본의 평균구성이 지배하는 중등생산분야들의 리윤률로 평균화되여있다. 그러므로 모든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리윤총액은 잉여가치의 총액과 동등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 사회적총생산물의 생산가격총

액은 그 가치총액과 동등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각이한 구성을 가진 생산분야들간에서의 평균화는 항상 이 분야들을 중등구성을 가진 분야들—이 분야들의 구성이 사회적평균수와 완전히 일치되든 또는 다만 근사적으로 일치되든간에—과 동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다소간에 평균에 근사적인 생산분야들에서도 역시 리상적인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등수준으로 지향하는 평균화경향 다시말하면 이 리상적인 중등수준을 중심으로 하여 규제되는 경향이 생긴다. 그리하여 생산가격을 가치의 단순히 전화된 형태로 만들며 또는 리윤을 잉여가치의 단순한 부분으로 전화시키는 경향이 필연적으로 지배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에 비례하여 분배되는것이 아니라 매개 생산분야에서 사용된 자본의 량에 비례하여 분배되며 따라서 동등한 크기의 자본량에 대하여는 그 구성이 어떠하든간에 사회적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전체 잉여가치중의 동등한 크기의 몫(해당한 부분)이 할당되도록 분배된다.

그리하여 중등이거나 또는 근사적으로 중등인 구성을 가진 자본들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은 가치와, 또 리윤은 이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와 전적으로 또는 근사적으로 일치한다. 다른 모든 자본들은 그 구성이 어떠하든간에 경쟁의 압력하에서 중등의 구성을 가진 자본들과 평균화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런데 중등의 구성을 가진 자본들은 사회적 평균자본과 동등하거나 또는 근사적으로 동등하므로 모든 자본들은 그것들 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가 얼마이든간에 이 잉여가치 대신에 평균리윤을 자체의 상품의 가격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한다. 즉 생산가격을 실현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즉 평균리윤이 형성되는 경우,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이 형성되는 경우에는—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초래되였든간에—이 평균리윤은 항상 사회적평균자본에 대한 리윤, 즉 그것의 총액이 잉여가치의 총액과 동등한 리윤이외의것일수 없으며 또 이 평균리윤이 비용가격에 첨가되여 초래되는 가격은 생산가격으로 전화된 가치이외의것일수 없다. 일정한 생산분야들에 있는 자본들이 어떠한 원인에서이든 평균화과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것이다. 그 경우에는 평균리윤은 사회적자본중 평균화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계산될것이다. 평균리윤은 매개 생산분야들에 있는 자본량에 대하여 그것들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되는 잉여가치총량이외의것일수 없다는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실현된 부지불로동의 총량이며 이 총량은 지불된 죽은 로동 및 지불된 산로동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에게 속하는 상품들과 화폐의 총량가운데 나타난다.

이 경우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는 리윤들의 일반적리윤률에로의 이러한 평균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균화는 명백한 결과이고 출발점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한것은 상품가치의 평가, 례컨대 화폐로써의 평가는 다만 그것들의 교환의 결과일수 있을뿐이라는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 평가를 상품가치와 상품가치의 현실적교환의 결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품이 현실적가치대로 교환되는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는가?

우선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모든 상품들이 그 현실적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상술한바에 의한다면 이 경우에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는 극히 각이한 리윤률이 지배할것이다.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는가(즉 그것들에 포함되여있는 가치에 비례하여 그것들의 가치대로의 가격으로 서로 교환되는가) 또는 상품들이 그 각자의 생산에 선대된 자본들의 동등한 량에 대하여 동등한 크기의 리윤을 얻게 하는 그러한 가격으로 판매되는가 하는것은 명백히 두개의 전혀 다른 일이다.

같지 않은 량의 산로동을 움직이는 자본들이 같지 않은 량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음과 같은것을 전제로 한다. 즉 로동의 착취도 또는 잉여가치률이 동일하다는것 또는 그것에 존재하는 차이들이 현실적인 또는 상상적인(관습적인) 보상 리유들에 의하여 평균화된다는것이다. 이것은 로동자들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며 또 한 생산부문으로부터 다른 생산부문으로의 로동자들의 끊임없는 이동에 의한 평균화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일반적잉여가치률—모든 경제법칙들과 마찬가지로 경향으로부터 본—을 우리는 리론적간단화로서 전제로 하고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사실상의 전제이다.—비록 그것은 례컨대 잉글랜드의 농업날품팔이군들에 대한 정주법[89]과 같이 다소간에 현저한 지방적차이를 산생시키는 실제적마찰에 의하여 많게나 적게 지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리론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법칙들이 순수하게 전개된다는것이 전제로 된다. 현실에서는 언제나 근사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사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이전의 경제상태들의 잔재들에 의한 불순화와 혼합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점점 더 크게 된다.

모든 곤난은 상품들이 단순히 **상품들**로서 교환되는것이 아니라 **자본의 생산물들**로서 교환되는데로부터 나온다. 자본들은 잉여가치총량으로부터 그것들의 크기에 비례하여 자기의 몫을 또는 그것들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몫을 요구하는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자본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생산된 상품들의 총가격은 이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상품들의 총가격은 이 자본의 생산물을 이루는 개별적상품들의 가격총액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면 결정적인 점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날것이다. 로동자들 자신이 제각기 생산수단들을 소유하고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교환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이 상품들은 자본의 생산물이 아닐것이다. 각이한 로동부문들에서 사용되는 로동수단 및 로동재료의 가치는 그들의 로동의 기술적성질에 따라 다를것이다. 또한 사용되는 생산수단들의 각이한 가치는 도외시하더라도 일정한 로동량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량은 어떤 상품은 한시간에 제조될수 있으나 어떤 상품은 하루가 걸려야만 제조될수 있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역시 다를것이다. 그리고 또 이 로동자들은 각이한 로동강도 등등으로부터 생기는 평균화를 계산에 넣어 평균적으로 동등한 량의 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 두 로동자는 다 그들의 하루 로동의 생산물을 이루는 상품들에서 우선 그들의 지출 즉 그들에 의하여 소비된 생산수단들에 대한 비용가격을 보상할것이다. 이 비용가격은 그들의 로동부문의 기술적성질에 따라 다를것이다. 둘째로, 두 로동자는 동등한 량의 새로운 가치를, 즉 그들이 생산수단에 첨가한 로동일과 동등한 가치를 창조할것이다. 이 새로운 가치는 그들의 로임 플라스 잉여가치를 포함할것

이다. 이 잉여가치는 그들의 필수적욕망을 넘는 잉여로동인데 그 성과는 그들 자신에게 속할것이다. 이것을 자본주의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로동자는 동일한 로임 플라스 동일한 리윤을 얻으며 그리하여 례컨대 10시간로동일의 생산물에 표현된 가치를 얻을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그들의 상품들의 가치는 다를것이다. 례컨대 상품 Ⅰ에는 상품 Ⅱ에 비하여 소비된 생산수단에 해당한 가치부분이 더 많이 포함될것이다. 또 그밖에 모든 가능한 차이들을 즉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상품 Ⅰ은 상품 Ⅱ보다 더 많은 산로동을 흡수하며 따라서 그 생산에 상품 Ⅱ보다 더 긴 로동시간을 요구한다고 하자. 그리하여 상품 Ⅰ과 상품 Ⅱ의 가치는 대단히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에 로동자 Ⅰ과 로동자 Ⅱ가 완성한 로동의 생산물인 상품가치의 총액도 서로 다를것이다. 여기서 투하된 생산수단의 총가치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을 리윤률이라고 부른다면 Ⅰ과 Ⅱ에 있어서의 리윤률도 또한 대단히 다를것이다. 생산중에 Ⅰ과 Ⅱ에 의하여 매일 소비되여 로임을 대표하는 생활수단들은 이 경우에는 선대된 생산수단의 일부분—우리가 다른 경우들에는 가변자본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이룰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는 동등한 로동시간에는 Ⅰ에 있어서나 Ⅱ에 있어서나 동일할것이다. 또는 더욱 정확히 말한다면 Ⅰ과 Ⅱ는 각각 1로동일의 생산물의 가치를 얻으므로 그들은 선대된 《불변》 요소들의 가치를 공제하고 동등한 가치를 얻으며 그 일부분은 생산중에 소비된 생활수단들의 보상분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다른 부분은 그것을 초과하는 잉여가치로 간주될수 있다. 만약 Ⅰ이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면 그것은 그의 상품가치중 이 《불변》 부분을 보상하는 부분이 보다 큰것에 의하여 보상되며 따라서 또 그는 그의

생산물의 총가치중 보다 더 큰 부분을 이 불변부분의 소재적 요소들로 재전화하여야 하는데 Ⅱ는 보다 적은 액을 불변부분으로서 회수하였다면 그는 그만큼 보다 적게 불변부분에 재전화시키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리윤률의 차이는 아무래도 좋은 사정이다. 그것은 마치도 오늘날 임금로동자에 있어서 그로부터 착취된 잉여가치량이 어떠한 리윤률로 표현되는가 하는것이 아무래도 좋은 사정인것인것과 마찬가지이며 또 국제무역에서 각이한 국가들사이의 리윤률의 차이가 그들간의 상품교환에 대하여 아무래도 좋은 사정인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치대로의 또는 거의 가치대로의 상품교환은 자본주의적발전의 일정한 고도를 필요로 하는 생산가격대로의 교환에 비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단계를 필요로 한다.

각이한 상품들의 가격이 최초에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확정되고 규제되든간에 가치법칙은 언제나 상품의 가격의 운동을 지배한다. 다른 조건들이 같은 형편에서는 상품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로동시간이 길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하여 가치법칙에 의한 가격 및 가격운동의 지배는 도외시하더라도 상품의 가치를 리론적으로뿐만아니라 력사적으로도 생산가격의 선행자로 간주하는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 이것은 생산수단이 로동자에게 속하는 그러한 상태에 적용되며 이러한 상태는 고대세계 및 현대세계에서 자신이 로동하며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농민들에게서, 수공업자들에게서 볼수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전에 서술한 견해(27)와

(27) 당시 1865년에는 이것은 다만 맑스의 《견해》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마우레르로부터 모르건[90]에 이르기까지의 원시공동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있으면서부터

일치된다. 즉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발전은 동일한 공동체의 각 성원들사이에서가 아니라 각이한 공동체들사이에서의 교환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견해와도 일치한다.[91] 그것은 이러한 원시적상태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더 후기의 노예제 및 농노제에 기초하는 상태에 대하여서도 같이 말할수 있으며 또 수공업의 동업조합적조직에 대하여서도 같이 말할수 있다. 하기는 각 생산부문에 고정된 생산수단들이 한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로 쉽게는 이전될수 없으며 따라서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호상관계는 일정한 한계까지는 각이한 나라들 또는 공산주의적공동체들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한에 있어서 그러하지만.

상품들이 호상 교환되는 가격이 상품들의 가치에 거의 일치하기 위하여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것들이 요구된다. 1) 각이한 상품들의 교환이 전적으로 우연적인 교환 또는 다만 림시적인 교환이 아니게 되는것, 2) 상품들의 직접적교환이 고찰되는 한 이 상품들이 교환쌍방에서 다 그것들에 대한 호상욕망에 거의 일치하는 비률로 생산되는것, 이것은 교환쌍방의 판매의 경험에 의하여 초래되며 따라서 계속적인 교환자체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3) 판매를 문제로 하는 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독점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가치보다 높게 판매할수 있거나 가치보다 낮게 방매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 없을것. 우연적독점이라는것은 수요공급의 우연적 상태에 의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조성되는 독점을 말한다.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가

는 이것은 거의 어디에서도 론쟁할수 없는 사실로 되였다.—F. 엥겔스

정은 물론 상품들의 가치가 중심으로 되여 상품의 가격은 이 중심을 둘러싸고 운동하며 가격의 부단한 등락은 이 중심을 둘러싸고 평균화된다는것을 의미할뿐이다. 그밖에 또한 언제나 **시장가치**—이에 대하여서는 후에 론술한다—는 각이한 생산자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개별적상품들의 개별적가치와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상품들중 어떤 상품들의 개별적가치는 시장가치보다 낮을것이며(즉 그것들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시장가치가 표현하는 로동시간보다 더 적다) 다른 상품들의 개별적가치는 시장가치보다 높을것이다. 시장가치는 한편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평균가치로 간주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분야의 평균적조건하에서 생산되며 그 분야의 생산물의 대량을 이루는 상품들의 개별적가치로 간주되여야 할것이다. 최악의 조건 또는 최량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시장가치를 규제하는것은 다만 특수한 조합에서만 볼수 있는데 시장가치는 역시 시장가격의 변동의 중심을 이룬다. 그런데 시장가격은 동일한 종류의 상품들에 있어서는 동일한것이다. 만약 평균가치 즉 량극단사이에 놓여있는 대량의 상품의 중등가치대로의 상품공급이 보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시장가치보다 낮은 개별적가치를 가지는 상품들은 특별잉여가치 또는 초과리윤을 실현하지만 시장가치보다 높은 개별적가치를 가지는 상품들은 그것들 자신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실현할수 없다.

최악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판매는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이 상품들이 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한다는 견해는 문제의 해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상술한바와 같이 가정되고있는 경우에 가격이 중등의 시장가치보다 더 높다면

수요는 보다 더 적을것이다.① 가격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어떤 하나의 상품종류는 시장에서 다만 일정한 자리를 차지할수 있다. 가격이 변동하여도 이 자리가 여전히 동일한것은 보다 높은 가격이 보다 적은 상품량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또는 보다 낮은 가격이 보다 큰 상품량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뿐이다. 반대로 만약 수요가 대단히 커서 최악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에 의하여 가격이 규제되더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가치를 규정한다. 이러한것은 수요가 보통의 수요를 초과하거나 또는 공급이 보통의 공급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만약 생산되는 상품들의 량이 중등의 시장가치로 판매되는 경우보다 크다면 최량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시장가치를 규제한다. 례컨대 이러한 상품들은 전적으로 또는 근사적으로 그것들의 개별적가치대로 판매될수 있는데 이때 최악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지어는 자체의 비용가격조차 실현하지 못하며 또 중등적평균의 조건의 상품들은 그것들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일부분만을 실현할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을수 있다. 여기에서 시장가치에 대하여 말한것은 생산가격이 시장가치대신에 나타나면 생산가격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생산가격은 매 개별적분야에서 규제되며 또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도 규제된다. 그러나 생산가격 자체는 또한 매일의 시장가격이 그것을 에워싸고 변동하며 일정한 기간에 그것을 에워싸고 평균화되는 중심인것이다(최악의 조건하에서 작업하는자들에 의한 생산가격의 규정에 관하여서는 리카도를 참조하라[92]).

---

① 제1판에서는 《보다 더 큽것이다》로 되여있다. 맑스의 원고에 따라 수정한다. —편집자

가격이 어떻게 규제되든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가치법칙은 가격의 운동을 지배한다. 이 지배는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의 증감이 생산가격을 등락시키는데 의하여 실현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리카도는(그는 물론 그가 말하는 생산가격이 상품의 가치로부터 배리한다는것을 느끼고있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내가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연구는 상품의 상대적가치의 변동의 결과에 관한것이고 그 절대적가치의 그것에 관한것이 아니다.》[93]

2) 생산가격을 규정하는 평균리윤은 언제나 사회적총자본의 해당 부분으로서의 주어진 자본에 귀속하는 잉여가치량과 거의 같지 않을수 없다. 일반적리윤률 따라서 평균리윤이 화폐가치로 계산된 현실적인 평균적잉여가치보다 더 높은 화폐가치로 표현되여있다고 하자. 그 경우에 자본가들이 고찰되는 한에서는 그들이 서로 자기의것이라고 하는 리윤이 10%이든 또는 15%이든 그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어느것의 백분비도 더 현실적상품가치에 합치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화폐적표현은 서로 과장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로동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전제에 의하면 그들은 정상적인 로임을 받으며 따라서 평균리윤의 인상은 로임으로부터의 현실적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즉 자본가의 정상적인 잉여가치와는 전혀 다른 어떤것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평균리윤의 인상에 의하여 생기는 상품가격의 인상에는 가변자본의 화폐적표현에 있어서의 증대가 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상 선대된 총자본에 대한 현실적잉여가치의 비률에 의하여 주어지는 수

준을 넘는 리윤률 및 평균리윤의 그러한 일반적인 명목적인 상은 로임의 인상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또 불변자본을 형성하는 상품들의 가격인상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다. 저락의 경우에는 또한 그와 반대로 된다. 상품들의 총가치는 총잉여가치를 규제하며 또 총잉여가치는 평균리윤의 수준을 따라서 또 일반적리윤률의 수준을 규제하므로—일반적법칙으로서 또는 제 변동을 지배하는 법칙으로서—가치법칙은 생산가격을 규제한다는것이 명백하다.

경쟁이 우선 한 분야에서 실현하는것은 상품들의 각이한 개별적가치들로부터 하나의 같은 시장가치 및 시장가격을 성립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각이한 분야들에서의 자본들의 경쟁만이 비로소 각이한 분야들간에서의 리유률을 평균화하는 생산가격을 산생한다. 후자의 결과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전자를 위하여서보다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더 높은 정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동일한 생산분야, 동일한 종류 및 거의 동일한 품질의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각이한 개별적가치들이 **하나의** 사회적가치 즉 상술한 시장가치로 평균화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생산자들간의 경쟁과 또한 그들이 함께 그들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의 존재가 필요하다. 종류가 동일한, 그러나 각기 다른 개별적색채를 띤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시장가격이 시장가치와 일치하고 시장가치로부터 우로도 아래로도 배리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각이한 판매자들이 호상 가하는 압력이 매우 커서 사회적 욕망이 요구하는 상품량 즉 사회가 시장가치를 지불할수 있

을만한 상품량을 시장에 내놓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생산물량이 이 수요를 초과한다면 상품들은 그 시장가치보다 싸게 판매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이와 반대로 생산물량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에는, 또는 같은 말이지만 판매자들간의 경쟁의 압력이 그들로 하여금 이 상품량을 시장에 가져오지 않을수 없도록 할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들은 그 시장가치보다 비싸게 판매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만약 시장가치가 변한다면 총상품량이 판매될수 있는 조건들도 변할것이다. 시장가치가 내린다면 평균적으로 사회적욕망(여기에서는 언제나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의미한다)은 증대되며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보다 많은 상품량을 흡수할수 있다. 시장가치가 오른다면 그 상품들에 대한 사회적 욕망은 적어지며 보다 적은 상품량이 흡수된다. 그러므로 수요공급이 시장가격을 조정한다면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시장가치로부터의 시장가격의 배리를 조정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가치가 수요공급관계를 또는 수요공급의 변동이 시장가격을 진동시키는 중심을 조정한다.

문제를 좀더 상세히 고찰한다면 알게 되듯이 개개의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건들이 여기서는 일정한 종류의 상품총량의 가치를 규정하는 조건들로서 재생산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생산은 처음부터 대량생산이며 또 기타의 보다 덜 발전된 생산방식들에서—적어도 주요한 상품들에 있어서는—비록 다수의 소규모생산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소량으로 생산되는것들이 공동생산물로서 즉 한 생산부문전체 또는 그것의 크거나 적은 부분의 공동생산물로서 비교적 소수의 상인들에 의하여 대량으로 시장에 집중되고 퇴적되며 판매되기때문이다.

여기서 겸하여 지적하여두지만 《사회적욕망》 즉 수요의 원칙을 규제하는것은 본질적으로는 각이한 계급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또 그들 각자의 경제적지위에 의하여 따라서 특히 첫째로는 로임에 대한 잉여가치전체의 비률에 의하여, 둘째로는 잉여가치가 분배되는 각이한 부분들(리윤, 리자, 지대, 조세 등등)의 비률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도 또한 수요공급관계는 그것이 작용하는 기초가 설명되지 않는 한 절대로 아무것도 설명할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상품과 화폐는 량자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통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본바와 같이(제1부 제1장 제3절) 판매 및 구매 행위에서 이 두 규정이 량극에 대극적으로 분배되여 상품(판매자)은 사용가치를 대표하고 화폐(구매자)는 교환가치를 대표하게 된다. 상품이 사용가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는것은 판매의 한 전제였다. 다른 전제는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량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을 대표하며 따라서 상품의 개별적가치(또는 이 전제하에서는 동일한것이지만 판매가격)가 상품의 사회적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28)

이것을 한 부문전체의 생산물로서 시장에 있는 상품량에 적용하여보자.

우리가 전체 상품량, 우선은 **한** 생산부문의 전체 상품량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며 다수의 동일한 상품들의 가격총액을 **하나의** 합계된 가격으로 간주한다면 사태는 가장 쉽게 설명될것이다. 이 경우에는 개개의 상품에 관하여 서술된

---

(28)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베를린판[94]

모든것은 이제는 시장에 있는, 일정한 생산부문의 상품량에 대하여 전적으로 적용된다. 상품의 개별적가치가 그것의 사회적가치에 일치되여야 한다는것은 이제는 상품총량이 그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로동을 포함하며 이 상품량의 가치는 그것의 시장가치와 같다는 의미에서 현실화되며 또는 더 나아가 규정된다.

그러면 이 상품들의 대량이 거의 동일한 정상적인 사회적 제 조건하에서 생산되였고 따라서 이 가치가 동시에 이 상품량을 이루는 개개의 상품들의 개별적가치라고 가정하자. 이제 만약 상품의 비교적 작은 일부분은 이 조건보다 나쁜 조건하에서 생산되였고 다른 일부분은 그것보다 좋은 조건하에서 생산되였으며 그리하여 한 부분의 개별적가치는 대다수 상품들의 중등가치보다 더 크며 다른 한 부분의 개별적가치는 이 중등가치보다 더 작으나 이 량극은 균형을 이루고 그리하여 이 량극에 속하는 상품들의 평균가치는 중등의 대량에 속하는 상품들의 가치와 같다면 그 경우에는 시장가치는 중등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29) 이 상품량전체의 가치는 중등의 조건하에서 생산된 상품들 및 그보다 나쁘거나 또는 좋은 조건하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포함한 모든 개개의 상품의 가치를 합계한 현실적총액과 같다. 이 경우에는 이 상품량의 시장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이 상품량에 포함되여있는 필요로동시간—는 중등의 대량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와 반대로 시장에 투입된 그 상품의 총량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보다 나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가

---

(29)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95

보다 좋은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와 균형을 이루지 않고 그리하여 보다 나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량 부분이 중등의 상품량에 비하여서나 다른 극에 비하여서나 상대적으로 현저히 크다고 가정하면 그 경우에는 보다 나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량이 시장가치 또는 사회적가치를 규제한다.

마지막으로 중등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량이 중등의 조건보다 나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량을 훨씬 초과하며 또 중등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량에 비하여서까지도 현저히 크다고 가정하면 그 경우에는 최량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시장가치를 규제한다. 시장이 공급과잉인 경우에는 언제나 최량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시장가격을 규제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도외시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있는 것은 시장가치와 구별되는 한에서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시장가치자체의 각이한 규정이다.(30)

---

(30) 따라서 지대와 관련된 슈또르흐와 리카도간의 론쟁(사태로 보아서만 론쟁이지 사실상 그들은 서로 대방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시장가치(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시장가격 또는 생산가격)가 최악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의하여 규제되는가(리카도) 아니면 최량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의하여 규제되는가(슈또르흐)[96] 하는 론쟁은 쌍방이 다 옳고 쌍방이 다 옳지 않으며 또한 쌍방이 다 중등의 경우를 전혀 무시하였다는것으로 귀착된다. 가격이 최량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의하여 규제되는 경우들에 관한 코비트의 론술을 참조하라.[97] 《그〔리카도〕가 레컨대 한개의 모자와 한개의 구두와 같은 두개의 각이한 상품 종류에서 취한 두개의 상품이 각각 동등한 로동량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에 그것들이 서로 교환된다고 주장한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상품〉이라는것은 개개의 모자라든가, 개개의 구두 등등이라고 리해할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품종류〉라고 리해하여야 할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영국에서 전체 모자들을 생산하는 총로동은 이 전체 모자들에 분할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이 점이 최초에 그리고 이 학설의 전반적서술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나에게는 생각된다》(《정치경제학에 있어서의 약간의 용어상 론쟁에 관한 고찰》 1821년 런던판, 53~54페지).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물론 현실에서는 다만 근사적으로 또 가지각색으로 변경되면서 나타날뿐이지만) 첫번째 경우에는 중등의 가치에 의하여 규제되는 전체 상품량의 시장가치는 상품들의 개별적가치들의 총액과 같다. 그렇지만 량극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대하여서는 이 가치는 그 상품들에 강요되는 평균가치로서 나타난다. 그 경우에는 최악의 극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품을 개별적가치보다 싸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며 최량의 극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상품을 개별적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한다.

두번째 경우에는 량극에서 생산되는 개별적인 가치량들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며 보다 나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결정적의의를 갖는다. 엄밀히 말하면 매 개별적상품 또는 상품총량의 매개 해당 부분의 평균가격 또는 시장가치는 이제는, 각이한 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들을 합계함으로써 나오는 상품총량의 총가치와 이 총가치중 매 개별적상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시장카치는 유리한 극에 속하는 상품의 개별적가치보다도 또는 중등부분에 속하는 상품들의 개별적가치보다도 더 높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리한 극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개별적가치보다는 역시 낮을것이다. 시장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이 후자에 접근하는가 또는 마침내 이 후자와 일치하는가 하는것은 불리한 극에서 생산되는 상품량이 그 상품분야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수요가 조금이라도 우세하다면 불리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개별적가치가 시장가격을 규제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유리한 극에서 생산되는 상품량이 다른 극의것에 비하여서뿐만아니라 중등

의 조건의것에 비하여서도 보다 큰 규모를 차지한다면 시장가치는 중등가치보다 낮게 된다. 량극과 중등의 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액을 합계함으로써 계산되는 평균가치는 이 경우에는 중등의 가치보다 낮다. 그리고 그것은 유리한 극이 차지하는 규모의 상대적크기에 따라 중등의 가치에 접근하든가 멀어지든가 한다. 만약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약하면 유리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그것이 얼마나 크든간에 그 가격을 그 개별적가치의 수준으로 내림으로써 우세를 강점한다. 시장가치는 공급이 수요를 심히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량의 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개별적가치와 결코 일치할수 없다.

여기에서 **추상적으로** 서술된, 시장가치의 이러한 확정은 현실적시장에서는 구매자들간의 경쟁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확정된 가치대로 상품량을 흡수할만한 수요가 있을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점에 도달한다.

둘째로, 상품이 사용가치를 가진다는것은 다만 그것이 어떤 사회적욕망을 충족시킨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우리가 개개의 상품만을 문제로 삼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특정상품에 대한 욕망—그 상품의 량은 이미 그 가격속에 포함되여있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되였으며 더 나아가 충족되여야할 욕망의 량에는 고려를 돌리지 않아도 되였다. 그러나 한편에는 어떤 생산부문전체의 생산물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것에 대한 사회적욕망이 있게 되면 이 충족되여야 할 욕망의 량은 본질적인 계기로 된다. 이제는 이 사회적욕망의 정도 즉 그 량을 고찰하는것이 필요하게 된다.

우에서 주어진 시장가치에 관한 규정들에서는, 생산되는

상품의 량은 동일하며 주어진 량이라는것이 가정되여있다. 그리고 각이한 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이 상품량의 구성부분들간의 비률만이 변동한다는것, 따라서 동일한 상품량의 시장가치는 각이하게 규제된다는것이 가정되여있다. 이 상품량이 보통의 공급량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생산된 상품들의 일부분이 일시 시장으로부터 끌려나갈수 있는 가능성은 도외시하자. 만일 이 상품량에 대한 수요도 역시 보통의것이라면 이 상품은 그 시장가치대로 판매된다. 이 시장가치가 우에서 연구된 세 경우중 어느것에 의하여 규제되든간에 그러하다. 이 상품량은 일정한 욕망을 충족시킬뿐만아니라 그것을 그 사회적범위에서 충족시킨다. 이와는 반대로 이 상품량이 그에 대한 수요보다 더 작거나 더 크다면 이 시장가치로부터의 시장가격의 배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첫째 배리는 만일 상품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항상 최악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시장가치를 규제하며 상품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항상 최량의 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시장가치를 규제한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각이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각 상품량들간의 비률로 보아서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량극중의 한극이 시장가치를 규정한다는데 있다. 수요와 생산물량간의 차가 더욱 크면 시장가격도 시장가치로부터 상하로 더욱 크게 배리할것이다. 그런데 생산되는 상품량과 상품이 그 시장가치대로 판매되는 량간의 차는 두가지 원인으로부터 생길수 있다. 그 하나는 이 량자체가 변동하여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많게 되고 그리하여 주어진 시장가치를 규제하던것과는 다른 규모에서 재생산이 진행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수요는 변하지 않았지만 공급이 변하였고 따라서 상대적인 과잉

생산 또는 과소생산이 발생한것이다. 또 하나는 재생산 즉 공급은 변하지 않으나 수요가 감소 또는 증대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할수 있다. 이 경우에 공급의 절대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대량 즉 욕망에 비한 또는 욕망으로 측정된 공급량은 변한것이다. 결과는 첫째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다만 방향이 반대로 되였을뿐이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량측에서 일어나지만 그 방향이 반대이든가 또는 방향은 동일하여도 정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 한마디로 말하여 변화는 량측에서 일어나지만 그 변화가 량측간의 종전의 비률을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최후의 결과는 언제나 우에서 고찰한 두개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귀착하지 않을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곤난한것은 그것이 동의반복에 귀착하는듯이 보인다는것이다. 우선 공급을 즉 시장에 있거나 또는 시장에 제공될수 있는 생산물을 보기로 하자. 여기서 전혀 무용한 세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일정한 각 산업부문에서의 년재생산량을 고찰하기로 하고 그 경우에 각이한 상품들이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와 례컨대 다음해의 소비를 위하여 저장될수 있다는 크고작은 가능성은 전혀 도외시하기로 하자. 이러한 년재생산은 우선 일정한 량으로 표현되는데 주어진 상품량이 한개한개 분할적인것으로 측정되는가 또는 련속적인것으로서 측정되는가에 따라 량 또는 개수로 표현된다. 이 상품량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용가치일뿐만아니라 그 사용가치가 어떤 주어진 크기로서 시장에 존재하는것이다. 그런데 둘째로 이 상품량은 일정한 시장가치를 가지고있는데 이 시장가치는 단위로 쓰이는 상품 또는 상품량의 시장가치의 배수

로서 표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 있는 상품량의 크기와 그 상품의 시장가치간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련계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례컨대 일부 상품들은 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있는데 다른 상품들은 특히 낮은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어떤 일정한 가치액을 일방의 상품에 있어서는 극히 큰 량으로, 타방의 상품에 있어서는 극히 작은 량으로 표시될수 있기때문이다.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량과 이 상품의 시장가치간에는 다만 다음과 같은 련관이 있을뿐이다. 로동생산성의 일정한 기초우에서는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일정한 량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일정한 량의 사회적로동시간이 요구된다.—비록 이 비률은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각이하며 또한 이 상품의 유용성 또는 그 사용가치의 특수한 성질과는 아무런 내적관련도 없지만. 기타의 조건들이 전적으로 동일한 형편하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 a량에 b로동시간이 걸린다면 na량에는 nb로동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회가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물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한 사회는 그 물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상 상품생산에 있어서는 분업이 전제로 되여있으므로 사회는 그가 처분할수 있는 로동시간의 일부분을 이 물품의 생산에 돌리는것으로써 이 물품을 구매하는것이며 따라서 이 주어진 사회가 처분할수 있는 일정한 량의 로동시간으로써 이 물품을 구매하는것이다. 사회중 분업에 의하여 자기 로동을 이 특정된 물품의 생산에 돌려야 하는 부분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물품들로 표시되는 사회적로동에 의하여 동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적물품에 소비된 사회적로동의 총량 즉 사회가 그 총로동력중 이 물품의 생산에 돌리는 해당 부분 따라서 이 물품의

생산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이 일정한 물품에 의하여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의 규모간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련관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우연적인 련관이 존재할뿐이다. 어떤 상품종류의 매개 물품 또는 매개 일정량은 다만 그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로동만을 포함하며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면 이 종류의 상품전체의 시장가치는 필요로동만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이 일정한 상품이 당시의 사회적욕망을 초과하는 정도로 생산된다면 사회적로동시간의 일부분은 랑비되고있는것이며 그 경우에는 이 상품량은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에 포함되여있는것보다 훨씬 더 적은 량의 사회적로동을 대표한다(생산이 사회의 현실적인, 예정적통제하에 있는 곳에서만 사회는 일정한 물품의 생산에 지출되는 사회적로동시간의 량과 이 물품에 의하여 충족시켜야 할 사회적욕망의 규모간에 련계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이 상품들은 그 시장가치보다 싸게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일부분은 전혀 판매되지 못할수도 있다. 일정한 종류의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로동의 량이 이 생산물에 의하여 충족되여야 할 특수한 사회적욕망의 규모에 비하여 과소한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그러나 일정한 물품의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로동의 량이 충족되여야 할 사회적욕망의 규모에 상응하며 그리하여 생산된 상품량의 수요가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의 재생산의 보통규모에 상응한다면 이 상품은 그 시장가치대로 판매된다. 상품들의 가치대로의 교환 또는 판매는 합리적인것이며 상품들의 균형의 자연법칙이다. 이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배리를 설명하여야 할것이고 거꾸로 배리로부터 법칙 자체를 설명할것이 아니다.

이제는 다른 측면 즉 수요를 고찰하여보자.

상품들은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기 위하여 생산수단으로서 또는 생활수단으로서 구매되는데 어떤 상품들이 이 두 목적에 다 복무할수 있다는 사정은 조금도 사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들에 대한 수요는 생산자들(여기서는 자본가들—왜냐하면 생산수단들은 자본으로 전화된다고 가정되고있기때무에)측으로부터와 소비자들측으로부터 생긴다. 어느 측이나 우선 수요측에 일정한 량의 사회적욕망이 존재하고 이것에 대하여 공급측에는 각이한 생산부문들에서의 일정한 량의 사회적생산이 상응한다고 가정되여 있는듯이 보인다. 면방적업이 매년의 재생산을 주어진 규모에서 반복하여 진행하려면 종전대로의 량의 변화가 필요하며 또 자본축적에 의한 재생산의 매년의 확대를 고려에 넣는다면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량의 면화의 추가가 있어야 한다. 생활수단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로동계급은 종래의 평균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각이한 상품종류들에의 배분이 다소간 달라질것이지만 적어도 이전과 동일한 량의 필요생활수단을 반복하여 얻지 않으면 안된다. 또 매년의 인구증가를 고려에 넣는다면 일정한 량의 필요생활수단의 추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계급들에 대하여서도 다소간의 수정을 가한다면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그리하여 수요측에는 어떤 크기의 일정한 사회적욕망이 존재하며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에 어떤 물품의 일정한 량이 필요한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사회적욕망의 량적 규정은 극히 신축성이 있으며 변동하기 쉬운것이다. 이 욕망의 고정성은 외관적인것이다. 만일 생활수단들이 보다 더 저렴하든가 또는 화폐임금이 보다 더 높다면 로동자들은 더 많

은 생활수단들을 살것이며 이 종류의 상품들에 대한 보다 더 큰 《사회적욕망》이 나타날것이다. 그러나 그 《수요》가 아직도 그 육체적욕망의 최저한계이하에 있는 피구제빈민 등등은 전혀 도외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례컨대 면화가격이 인하된다면 면화에 대한 자본가들의 수요가 증대할것이며 더 많은 추가적자본이 면방적공업에 투하될것이다 등등. 이 점에 있어서 결코 망각하여서는 안될것은 우리의 전제하에서는 생산적소비를 위한 수요는 자본가의 수요이라는것 그리고 자본가의 진정한 목적은 잉여가치의 생산이며 그리하여 그는 다만 이 목적을 위하여서만 어떤 종류의 상품들을 생산한다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정은 자본가가 례컨대 면화의 구매자로서 시장에 나타나는 한 그가 면화에 대한 욕망을 대표하는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실 또 면화의 판매자에 대하여도 구매자가 면화를 내의를 만드는 천으로 전화시키든 솜화약으로 전화시키든 또는 그것으로써 자신의 귀와 온 세상 사람들의 귀를 틀어막으려고 생각하였든간에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사정은 자본가가 어떤 종류의 구매자인가 하는데는 큰 영향을 미친다. 면화에 대한 그의 욕망은 현실에서는 그것이 리윤획득에 대한 그의 욕망의 가장에 불과하다는 사정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변경된다. 상품에 대하여 **시장**에서 대표된 욕망—수요—이 **현실적인 사회적**욕망과 량적으로 차이가 나는 한계는 물론 상품들이 다름에 따라 매우 각이하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것은 요구되는 상품량과, 상품의 화폐가격이 변하든가 또는 구매자의 화폐조건 또는 생활조건이 변하는데 따라 요구될 상품량간의 차이인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그 결과인 시장가치로부터의 시

창가격의 배리를 리해하는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참으로 어려운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규정하는데 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것은 일정한 생산부문의 상품량이 그 시장가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시장가치대로 판매될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비률로 되여있는 경우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듣게 되는 첫째 점이다.

둘째로는 만약 상품이 그 시장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는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그것들은 작용하지 않게 되며 또 바로 그렇기때문에 상품은 그 시장가치대로 판매된다. 두개의 힘이 반대방향으로 균등하게 작용하면 그것들은 서로 상쇄되며 밖으로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이 두개의 힘의 작용과는 다른것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상쇄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게 되며 더는 시장가치에 작용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왜 시장가치는 어떤 다른 화폐액이 아니라 바로 이 화폐액으로써 표현되는가 하는데 대하여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생산의 현실적인 내적법칙들은 명백히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으로부터는 설명될수 없다(이 두개의 사회적추진력의 보다 심오한 분석은 여기에서는 해당한 장소가 아니므로 전혀 도외시한다). 왜냐하면 이 법칙들은 수요와 공급이 작용하지 않게 되는, 즉 쌍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순수하게 현실화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은 사실상 결코 일치하는 일이 없으며 또 일치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우연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과학적견지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제로라고 보

아야 하며 일어나지 않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가정한다.[98] 왜 그런가? 그것은 현상들을 합법칙적인, 그것들의 개념에 부합되는 모습에서 고찰하기 위하여서이다. 즉 현상들을 수요공급운동에 의하여 산생되는 외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고찰하기 위하여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공급운동의 현실적경향을 발견하며 그것을 일정한 정도로 확정하기 위하여서이다. 여러가지 불일치는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며 또 그것들은 부단히 서로 뒤이어 발생하는것이므로 그것들은 반대방향에 의하여, 그 호상 모순에 의하여 서로 상쇄된다. 그리하여 어느한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불일치는 련이어 계속 발생하므로—그리고 한 방향으로의 배리가 반대방향으로의 배리를 일으키므로—어떤 길거나 짧은 기간 전체를 고찰한다면 수요와 공급은 부단히 일치한다. 그러나 다만 이미 경과한 운동의 평균으로서만 그리고 그것들의 모순의 부단한 운동으로서만 일치하는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장가치로부터 배리되는 시장가격도 그 평균수로 본다면 시장가치로 평균화된다. 왜냐하면 시장가치로부터의 배리들은 플라스 및 마이나스로서 서로 상쇄되기때문이다. 그리고 이 평균수는 다만 리론적인 중요성을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자본에 대하여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있다. 왜냐하면 자본의 투하는 길거나 짧은 일정한 기간의 여러가지 변동과 평균화를 계산에 넣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요공급관계는 한편으로는 다만 시장가치로부터의 시장가격의 배리들을 설명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만 이러한 배리들이 해소되는 경향, 즉 수요공급관계의 작용이 해소되는 경향을 설명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가치를 가지지 않고 가격을 가지는 상품이란 례외는 여기에서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수요와 공급은 그것들의 불일치에 의하여 생기는 작용의 해소를 대단히 각이한 형태로 실현할수 있다. 례컨대 수요가 감소되고 따라서 시장가격이 내린다면 그 결과는 자본이 끌려나오며 그리하여 공급이 감소된다. 그러나 또 필요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발명으로 말미암아 시장가치자체가 저하되고 그리하여 그것이 시장가격과 일치될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시장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결과는 이 생산부문에 자본이 너무 많이 류입되여 생산이 확대되고 그리하여 시장가격자체가 시장가치보다 저렴하게 될수 있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체를 축소시키는 가격등귀를 발생시킬수 있다. 또한 이러저러한 생산부문에서는 시장가치자체가 길거나 짧은 기간에 오를수 있다. 왜냐하면 요구되는 생산물의 일부분은 이 기간에 보다 나쁜 조건하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수요공급이 시장가격을 규정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가격이 그리고 더 분석한다면 시장가치가 수요공급을 규정한다. 수요의 경우에는 이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수요는 가격과는 반대방향으로 운동하며 가격이 저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공급되는 상품에 들어가는 생산수단의 가격은 그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를 규정하며 따라서 또 이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가 포함하는 상품의 공급도 규정하기때문이다. 면화의 가격은 면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적의의를 갖는다.

이 혼란—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의 규정 및 가격에 의한

수요공급의 규정—에는 또한 수요가 공급을 규정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규정하며 생산이 시장을 규정하고 시장이 생산을 규정한다는것이 첨가된다.(31)

평범한 경제학자라도(각주를 보라) 알수 있는바와 같이 외부적사정들에 의하여 산생되는 공급 또는 수요의 변동이 없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비률은 상품들의 시장가치의 변동의 결과로 변동될수 있는것이다. 시장가치가 어떠하든간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하여서는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평범한 경제학자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수요공급관계가 시장가치를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장가치가 수요공급의 변동을 설명한다는것을 의미한

(31) 다음과 같은 《명철한 론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떤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임금과 자본과 토지의 량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애담 스미스가 상품의 자연가격이라고 부르고있는것도 달라지며 또 이전에는 상품의 자연가격이였던 가격은 이 변화와 관련하여 그 상품의 시장가격으로 된다. 왜냐하면 비록 공급도 수요량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 량자는 변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치변동의 결과로 시장가치 또는 A. 스미스가 문제로 하는 생산가격이 변하기때문이다.) 이 공급은 이제는 생산비로 되고있는것을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충분하게 꼭 합치되지는 않고 그것보다 크게 되거나 또는 그것보다 적게 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공급과 새로운 생산비와의 관련에서 유효수요로 되여있는것과의 비률은 이전과는 다르게 된다. 그래서 만일 아무런 장애에도 봉착하지 않는다면 공급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결국은 이 변화가 상품에 새로운 자연가격을 부여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즉 상품은 그 공급의 변화에 의하여 그 자연가격을 얻게 되므로 자연가격은 수요와 공급간의 어떤 비률에 의하여 성립되는것이며 그것은 바로 시장가격이 다른 어떤 비률에 의하여 성립되는것과 마찬가지이며 그리하여 자연가격은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간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수요공급의 대원칙은 A. 스미스가 자연가격이라고 부르는것을 규정하기 위하여서도 시장가격이라고 부르는것을 규정하기 위하여서도 활용된다.》—말사스[99])》(《정치경제학에 있어서의 약간의 용어상 론쟁에 관한 고찰》, 1821년 런던판, 60~61페지). 이 현명한 분이 리해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이 경우에는 바로 생산비의 변동, 따라서 또 가치의 변동이 수요의 변화, 따라서 수요공급간의 비률의 변화를 일으킨다는것이며 또 이러한 수요의 변화는 공급의 변화를 수반할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 사상가가 증명하려고 하는것과 정반대의것을 증명할것이다. 즉 그것은 생산비의 변동은 결코 수요공급관계에 의하여 규제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산비 자체가 이 관계를 규제한다는것을 증명할것이다.

다. 《고찰》의 필자는 주에서 인용된 개소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 비률 (수요와 공급간의) 은 우리가 〈수요〉 및 〈자연가격〉 이라는 말을 이때까지 A. 스미스에 련관시켜 리해한것과 같은 의미로 리해한다면 언제든지 동등한 비률이 아닐수 없다. 왜냐하면 공급이 유효수요와 동등할 경우, 즉 자연가격보다 높게도 낮게도 지불하려 하지 않는 수요와 동등할 경우에만 자연가격은 사실상 지불될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각이한 시기에는 동일한 상품이 두개의 극히 각이한 자연가격을 가질수 있지만 그러나 두 경우에 다 수요와 공급간의 비률은 같은것 즉 동등한 비률일수 있다.》

따라서 시기가 다르면 동일한 상품에 두개의 각이한 《자연가격》이 생기지만 상품이 두 경우에 다 그것의 《자연가격》대로 판매되기 위하여서는 수요와 공급은 매 경우에 일치할수 있으며 또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 승인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의 비률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자연가격자체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연가격은 명백히 수요공급과는 관계없이 규정되며 따라서 수요공급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

어떤 상품이 그 시장가치대로 즉 그속에 포함되여있는 사회적필요로동에 비례하여 판매되기 위하여서는 이 종류의 상품총량에 지출되는 사회적로동의 총량이 이 상품에 대한 사회적욕망, 즉 지불능력있는 사회적욕망의 량에 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 그리고 수요공급관계의 변동에 상응하는 시장가격의 변동은 매개 상품종류에 지출되는 로동의 총량을 부단히 이 한도로 제한하려고 한다.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간의 관계에서는 첫째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간의 관계, 상품과 화폐간의 관계, 구매자와 판

매자간의 관계가 재현되며 둘째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관계—비록 이 량자가 다 제삼자인 상인에 의하여 대표될수 있기는 하지만—가 재현된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고찰에 있어서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서로 개별적으로 대립시키면 된다. 상품의 완전한 변태를 위하여서는, 따라서 구매와 판매의 전 과정을 위하여서는 세 사람이 있으면 된다. A는 자기의 상품을 B에게 판매하여 자기의 상품을 B의 화폐로 전화시키며 다음에 C에게서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화폐를 다시 상품으로 전화시킨다. 전 과정은 이 세 사람사이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화폐의 고찰에 있어서는 상품은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상품이 화폐로 전화되며 화폐로부터 상품으로 재전화되는 과정에 상품이 경과하는 형태변화들만이 문제로 되였으므로 가치로부터 배리되는 가격들을 고찰할 리유는 전혀 없었기때문이다. 상품이 일단 판매되고 수입된 화폐로써 새로운 상품이 구매된다면 전체 변태가 우리 앞에 있는것이며 상품의 가격이 상품의 가치보다 낮은가 높은가 하는것은 형태변화자체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무래도 좋다. 상품의 가치는 기초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화폐는 이 기초로부터 출발하여서만 비로소 개념적으로 설명될수 있으며 또 가격은 그 일반적개념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화폐형태에 있는 가치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물론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고찰에 있어서는 한 상품의 한 변태가 진행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 가정된다. 오히려 이러한 변태들의 사회적인 엉킴이 고찰된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화폐의 류통에 도달하며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의 전개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은 류통수단으로서의 기능에로의 화폐의 이행 및 이

이행으로부터 나오는 화폐의 모습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중요하지만 개개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에 대하여서는 아무래도 좋다.

이와는 반대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는 공급은 일정한 상품종류의 판매자들 또는 생산자들의 합계와 동등하며 수요는 동일한 상품종류의 구매자들 또는 소비자(개인적 또는 생산적)들의 합계와 동등하다. 그리고 이 두 합계는 전일체로서 집합력으로서 호상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개개인은 다만 사회적힘의 일부분으로서만, 총체의 원자로서만 작용하며 경쟁이 생산 및 소비의 **사회적**성격을 나타내는것은 바로 이 형태에서이다.

경쟁에 있어서 당분간 보다 더 약한 측은 동시에 거기에서는 개개인이 자기의 경쟁자들의 집단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고 또 종종 그 집단을 반대하여 활동하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의 경쟁자의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느껴지게 되는 측인데, 보다 더 강한 측은 항상 다소간에 단결된 전체로서 적수에 대립한다. 일정한 종류의 상품들에 있어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면 어느 한계내에서는 어떤 구매자는 다른 구매자보다 높은 가격을 내며 그리하여 이 상품을 전체 구매자들에게 대하여 시장가치이상으로 비싸게 만드는데 타방으로는 판매자들은 공동으로 상품을 높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면 어떤자가 보다 더 저렴하게 방매하기 시작하며 다른자들도 그의 뒤를 따르지 않을수 없게 되는데 구매자들은 공동으로 시장가격을 될수 있는대로 시장가치이하로 떨구려고 노력한다. 공동의 편에 서는것이 각자의 관심사로 되는것은, 공동으로 행동하면 공동에 반대하는것보다 그에게 더 리득이

있는 한에서만이다. 그리고 자기의 편이 약한 편이 되기만 하면 공동은 깨여지고 매개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 될수 있는대로 잘해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하여 상품을 당시의 시장가격 또는 시장가치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더 많이 팔고 시장에서 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수 있게 되면 그는 그렇게 행동하는것이며 그리하여 점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저렴한 생산방법을 채용하여 사회적필요로동을 새로운 보다 더 적은 척도로 낮추게 하는 행동이 시작된다. 한편이 우세하면 이 편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리득을 본다. 그것은 마치도 그들이 공동의 독점을 실행하는것 같다. 한편이 보다 약하게 되면 각자는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써 좀 더 강자(례컨대 더 적은 생산비로써 생산하는자)가 되려고 하던가 또는 적어도 될수 있는 대로 그 처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 경우에 각자는 자기의 이웃이 어떻게 되든간에—비록 자기의 행동이 자기 자신뿐만아니라 자기의 모든 동료들에게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전혀 개의하지 않는다.(32)

수요와 공급은 가치의 시장가치로의 전화를 전제로 하며 또 그것들이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 진행되는 한, 상품이 자본의 생산물로 되는 한 수요와 공급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을 따라서 상품의 단순한 매매와는 전혀 다른 복잡한 관계들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상품의 가치의 가격

---

(32) 《만약 한 집단의 매개 성원이 전체의 리득 또는 소유물중에서 일정한 몫 또는 해당하는 부분이상을 결코 얻을수 없다면 그는 이 리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곧 단결할것이다 (그는 수요공급관계가 허용한다면 그렇게 한다). 이것은 독점이다. 그러나 각자는 비록 총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자기몫의 절대액을 어떻게든 증대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종종 그렇게 할것이다. 이것은 경쟁이다》(《수요의 성질 및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 1821년 런던판, 105페지).

으로의 형태적전화 즉 단순한 형태변화인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의 시장가치로부터의, 더 나아가서는 생산가격으로부터의 일정한 량적배리인것이다. 단순한 구매 및 판매에 있어서는 상품생산자들 자신이 서로 상대하면 되는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더 자세히 분석하면 각이한 계급들 및 계급부분들—이들은 사회의 총수입을 자기들사이에서 분배하여 수입으로서 소비하며 따라서 이 수입에 의하여 형성되는 수요를 형성한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들자신에 의하여 그들사이에 형성되는 수요공급의 리해를 위하여서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전체 모습을 알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상품형태로 류통에 투입된 가치량에 대하여 다른 형태—화폐형태 또는 다른 상품의 형태—로서 동등한 가치량을 끌어내는것이 문제로 될뿐만아니라 생산에 선대된 자본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생산부문에 사용되였든간에, 동일한 크기의 다른 모든 자본이 받는것과 동일한 또는 자기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 동일한 크기의 잉여가치 또는 리윤을 끌어내는것이 문제로 된다. 따라서 적어도 최저한으로서, 평균리윤을 제공하는 가격 즉 생산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자본은 자기를 하나의 **사회적권력**으로서 의식하며 매개 자본가는 사회적총자본에서의 자기몫에 비례하여 이 사회적권력을 가진다.

첫째로, 자본주의적생산자체는 특정한 사용가치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며 또 일반적으로 자체가 생산하는 상품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다. 어느 생산분야에서도 자본주의적생산에 대하여서 중요한것은 다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것

뿐이며 로동생산물에 의하여 일정한 량의 부지불로동을 취득하는것뿐이다. 또 마찬가지로 자본에 종속되는 임금로동은 그 성질로 보아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 로동의 특수한 성격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며 그것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형태를 변화하고 한 생산분야로부터 다른 생산분야로 내던져지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사실상 이제는 한 생산분야는 다른 생산분야와 좋고 나쁜것에 차이가 없다. 모든 생산분야는 동일한 리윤을 낳는다. 그리고 모든 생산분야는 거기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욕망이든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쓸데없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런데 상품들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이미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는 거기에 투하된 자본량의 유기적구성이 다름에 따라 대단히 각이한 리윤률이 생긴다. 그러나 자본은 리윤률이 낮은 분야로부터 떠나서 더 높은 리윤을 낳는 다른 분야로 이동한다. 이러한 부단한 출입에 의하여, 한마디로 말하여 리윤률의 오르내림에 따라 자본이 각이한 생산분야들로 분배되는데 의하여 자본은 생산분야가 각이하여도 평균리윤이 동일하게 되고 따라서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되게 하는 그러한 수요공급관계를 산생한다. 한 국민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그 나라의 상태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적합하면 할수록 자본은 그러한 평균화를 더욱더 실현하게 된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그 조건들도 발전하며 자본주의적생산은 생산과정이 진행되는 사회적전제조건의 총체를 자기의 특수적성격, 자기의 내재적법칙들에 종속시킨다.

이와 같은 부단한 불균등의 부단한 평균화가 더욱 신속

히 진행되는것은 1) 자본이 보다 가동적인 경우 즉 한 분야나 한 장소로부터 다른 분야나 다른 장소로 자본을 이동시키기 더욱 쉬운 경우이며, 2) 로동력을 한 분야로부터 다른 한 분야로, 한 생산지점으로부터 다른 한 생산지점으로 보다 신속히 이동시킬수 있는 경우이다. 첫째 조건은 다음과 같은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내부에서의 상업의 완전한 자유. 자연적독점이외의 모든 독점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독점의 배제. 그다음으로는 신용제도의 발달. 신용제도는 리용할수 있는, 분산된 대량의 사회적자본을 집중하여 개개의 자본가들과 대립시킨다. 마지막으로 자본가들에게로의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종속. 이 종속은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되는 모든 생산분야들에서의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가 문제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설정한 전제속에 이미 포함되여있다. 그러나 이 평균화 자체가 보다 큰 장애에 봉착하게 되는것은 비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는 다수의 대량적인 생산분야들(례컨대 소농민에 의한 경작)이 자본주의적기업들간에 개재하고 이것들과 련결되여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큰 밀도.—둘째 조건은 다음과 같은것을 전제로 한다. 로동자가 한 생산분야로부터 다른 한 생산분야로 또는 한 생산지점으로부터 다른 한 생산지점으로 이동하는것을 방해하는 온갖 법률들의 폐지. 자기의 로동의 내용에 대한 로동자들의 무관심. 모든 생산분야의 로동이 될수록 단순로동으로 환원되는것, 로동자들에게 있어서의 직업적편견의 근절. 마지막으로, 또 특히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의 로동자의 종속. 이 문제에 대한 이 이상의 분석은 경쟁에 관한 전문연구에 속한다.

상술한것으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매 개별적자본가

나 매 특수한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가의 총체나 총자본에 의한 총로동자계급의 착취 및 이 착취의 정도에는 일반적인 계급적공감으로부터 뿐만아니라 직접 경제적으로 참가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선대총불변자본의 가치를 포함한 기타 모든 조건이 주어져있다고 전제한다면 평균리윤률은 총자본에 의한 총로동의 착취도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평균리윤은 자본의 매 100이 생산하는 평균잉여가치와 일치하며 또 잉여가치에 관하여서는 금방 말한것은 처음부터 자명한것이다. 평균리윤에 관하여 말한다면 리윤률을 규정하는 계기의 하나로서 선대자본의 가치가 그것에 첨가될뿐이다. 사실상 한 자본가 또는 일정한 생산분야의 자본이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있는 로동자들의 착취에서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것은 례외적인 과도로동 또는 평균수준이하로의 임금의 인하 또는 사용되는 로동의 례외적인 생산성에 의하여 어떤 특별리득 즉 평균리윤을 초과하는 리윤을 얻을수 있는가 하는 점에 국한되여있다. 이 점을 도외시하면 자기 생산분야에서 가변자본을 따라서 한명의 로동자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이것은 사실상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자본가는 다만 가변자본만을 사용하며 그리하여 자기의 전체 자본을 로임에 지출하는(이것도 사실상 있을수 없는 일이지만)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의한 로동계급의 착취에 관심을 가지며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리윤을 부지불잉여로동으로부터 끌어낼것이다. 그런데 로동의 착취도는 로동일이 주어져있다면 로동의 평균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 로동강도가 주어져있다면 로동일의 길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로동의 착취도에 의하여 잉여가치률의 높이가 결정되며 따라서 가변자본의 총액이 주어져있다면 잉여가치의 크기 따라서 또 리윤의 크기가 결정된

다. 어떤 분야의 자본이 총자본과는 달리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는 로동자들의 착취에 대하여 갖는 그 특별한 관심을, 개개의 자본가는 그의 분야 전체의 자본과는 달리 그에 의하여 사용되는 로동자들의 착취에 대하여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매 특수한 분야 및 매 개별적자본가는 총자본이 사용하는 사회적로동의 생산성에 대하여 동일하게 관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 생산성에 의하여 다음의 두개 사정이 결정되기때문이다. 첫째로는 평균리윤을 나타내는 사용가치의 량이다. 그리고 이것은 평균리윤이 새로운 자본의 축적기금으로 되며 또 향락을 위한 수입기금으로도 되기때문에 이중으로 중요하다. 둘째로는 선대총자본(불변자본 및 가변자본) 가치의 크기이다. 그리고 이 크기는 자본가계급전체의 잉여가치 또는 리윤의 크기가 주어져있다면 리윤률 즉 일정한 량의 자본에 대한 리윤을 규정한다. 한 특수한 분야 또한 이 분야의 한 특수한 개별적기업에서의 로동의 특수한 생산성이 직접 그 기업에 관여하고있는 자본가들의 관심사로 되는것은 다만 이 로동생산성이 그 개별적분야로 하여금 총자본에 비하여 또는 그 개별적자본가들로 하여금 자기의 분야에 비하여 초과리윤을 얻을수 있게 하는 한에서만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것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정확한 증명을 얻는다. 즉 왜 자본가들은 그들사이의 경쟁에 있어서는 허위적인 형제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로동계급전체에 대해서는 진정한 공제회동맹을 결성하는가 하는데 대한 증명을 얻는다.

생산가격은 평균리윤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것에 생산가격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것은 A. 스미스가 《자연가격》

이라고 불렀고 리카도가 《생산가격》, 《생산비》라고 불렀고 중농학파들이 《필요가격》이라고 부르는것과—그러나 그들중에는 생산가격과 가치의 구별을 설명한 사람은 없었다—사실상 동일한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가격은 공급의 조건이며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상품의 재생산의 조건이기때문이다.(33) 또한 상품의 가치가 로동시간에 의하여, 즉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반대하는 그 동일한 경제학자들이 무엇때문에 언제나 생산가격을 시장가격의 변동의 중심으로서 운운하는가 하는것도 리해된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것은 생산가격이 상품가치의 이미 전적으로 표면화된 명백히 무개념적인 형태이기때문이며 경쟁가운데서 나타나고있는대로의, 따라서 속류자본가의 의식속에, 따라서 또 속류경제학자들의 의식속에 있는대로의 형태이기때문이다.

이상에서 말한것으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시장가치(이것에 대하여 말한 모든것은 필요한 제한을 가하면 생산가격에도 적용된다)는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최량의 조건하에서 생산하는자들의 초과리윤을 포함한다. 공황 및 과잉생산일반의 경우들을 제외하면 이것은 모든 시장가격들에—아무리 시장가격이 시장가치 또는 시장생산가격으로부터 심히 배리한다 하더라도—적용된다. 즉 시장가격이라는것은 동일한 종류의 상품들에 대하여서는 이 상품들이 대단히 각이한 개별적조건하에서 생산될수 있으며 따라서 대단히 각이한 비용가격을 가질수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이 지불된다는

---

(33) 말사스[100]

것이다(보통 의미에서의 독점—인위적 또는 자연적독점—의 결과로서의 초과리윤에 관하여서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초과리윤은 그밖에 또한 어떤 생산분야들이 그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 따라서 그 리윤의 평균리윤으로의 귀착으로부터 면할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경우들에도 발생할수 있다. 지대에 관한 편에서 우리는 초과리윤의 이 두 형태의 가일층의 변종들을 고찰할것이다.

제 11 장

로임의 일반적변동이 생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의 평균구성을 80c+20v라고 하고 리윤을 20%라고 하자. 이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은 100%이다. 로임의 일반적인상은 기타의 조건들이 동등하다고 하면 잉여가치률의 인하이다. 평균자본에 있어서는 리윤과 잉여가치는 일치한다. 로임이 25% 올라간다고 하자. 동일한 량의 로동을 움직이는데 이전에는 20이 들었다면 이제는 25가 든다. 그러면 80c+20v+20p 대신에 80c+ 25v+15p의 회전가치로 된다. 가변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은 여전히 40이라는 가치액을 생산한다. v가 20으로부터 25로 증가되면 초과분 m 또는 p는 15밖에 안된다. 105에 대한 15의 리윤은 $14\frac{2}{7}$%이며 이것은 새로운 평균리윤률이 될것이다. 평균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와 일치하므로 이 상품의 생산가격은 변동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로임의 인상은 리윤의 인하를 초래할것이나 상품의 가치와 가격의 변동은 초래하지 않을것이다.

이전에는 평균리윤이 20%였으며 1회전기간에 생산된 상

품의 생산가격은 그 비용가격 플라스 그에 대한 20%의 리윤과 같았다. 따라서 $k+kp'=k+\frac{20k}{100}$였다. 여기에서 k는 가변량이며 상품에 들어가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따라, 또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고정자본이 생산물에 옮기는 마멸분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제는 생산가격은 $k+\frac{14\frac{2}{7}k}{100}$이다.

그러면 우선 사회적평균자본의 최초의 구성 80c+20v(이것은 이제는 $76\frac{4}{21}c+23\frac{17}{21}v$로 되여있다.) 보다 낮은 구성 례컨대 50c+50v라는 구성을 가진 자본을 들어보자. 이 경우에는 년생산물의 생산가격은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 고정자본이 마멸분으로서 년생산물로 들어갔으며 회전기간은 I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로임을 인상하기전에는 50c+50v+20p=120이다. 로임이 25% 인상하면 동일한 량의 로동을 움직이는데 가변자본을 50으로부터 $62\frac{1}{2}$로 증가하게 된다. 만일 년생산물이 이전의 120이란 생산가격으로 판매된다면 결과는 $50c+62\frac{1}{2}v+7\frac{1}{2}p$로 될것이며 따라서 리윤률은 $6\frac{2}{3}$%로 될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평균리윤률은 $14\frac{2}{7}$%이며 그리고 우리는 기타의 모든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로 $50c+62\frac{1}{2}v$라는 이 자본도 이만한 리윤을 얻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런데 $112\frac{1}{2}$의 자본은 $14\frac{2}{7}$의 리윤률하에서는 $16\frac{1}{14}$의 리윤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생산가격은 이제는 $50c+62\frac{1}{2}v+16\frac{1}{14}p=128\frac{8}{14}$이다. 그리하

여 이 경우에는 25% 로임이 인상된 결과로 동일한 량의 동일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120으로부터 $128\frac{8}{14}$로 즉 7%이상 올라갔다.

반대로 평균자본보다 높은 구성, 례컨대 92c+8v의 구성을 가진 생산분야를 들어보자. 최초의 평균리윤은 이 경우에도 20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도 고정자본이 년생산물로 들어가며 회전기간은 Ⅰ과 Ⅱ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상품의 생산가격은 이 경우에도 120이다.

로임이 25% 올라간 결과로 동일한 로동량에 대하여 가변자본은 8로부터 10으로 증가하며 따라서 상품의 비용가격은 100으로부터 102로 올라갔고 타방으로는 평균리윤률은 20%로부터 $14\frac{2}{7}$%로 내렸다. 그런데 $100:14\frac{2}{7}=102:14\frac{4}{7}$이다. 따라서 이제는 102에 할당되는 리윤은 $14\frac{4}{7}$이다. 그러므로 총생산물은 $k+kp'=102+14\frac{4}{7}=116\frac{4}{7}$로 판매된다. 말하자면 생산가격은 120으로부터 $116\frac{4}{7}$로 즉 $3\frac{3}{7}$만큼 내려갔다.

그리하여 로임이 25% 올라간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1) 사회적평균구성의 자본에 있어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2) 구성이 보다 낮은 자본에 있어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리윤의 저락과 동일한 비률로써는 아니지만 올라갔다.

3) 구성이 보다 높은 자본에 있어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역시 리윤과 동일한 비률로써는 아니지만 내려갔다.

평균자본의 상품의 생산가격은 전과 같고 생산물의 가치와 동등하므로 모든 자본의 생산물의 생산가격총액도 전과

같고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총액과 동등하다. 일방에 있어서의 등귀와 타방에 있어서의 저락은 총자본에 있어서는 사회적평균자본의 수준으로 평균화된다.

상품의 생산가격이 Ⅱ의 례에서는 오르고 Ⅲ의 례에서는 내린다면 잉여가치률의 저락 또는 로임의 일반적상승으로부터 나오는 반대작용만으로서도 이미 분명하듯이 이 경우에 로임의 인상을 상품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것은 문제로 될수 없다. 왜냐하면 Ⅲ에서는 생산가격의 저락이 자본가의 리윤의 저락을 물론 보상할수 없으며 또 Ⅱ에서도 가격의 등귀가 리윤의 저락을 방해하지 않기때문이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나 내리는 경우에나 다 리윤은 가격이 변하지 않는 평균자본의 경우와 동일하다. 리윤은 Ⅱ에서도 Ⅲ에서도 동일하며 $5\frac{5}{7}$만큼 즉 25%를 좀 넘게 저락한 평균리윤이다. 따라서 만일 가격이 Ⅱ에서는 등귀하지 않고 Ⅲ에서는 저락하지 않는다면 Ⅱ에서는 저락한 새로운 평균리윤보다 낮은 리윤으로 그리고 Ⅲ에서는 그보다 높은 리윤으로 판매하게 된다. 자본 매 100에서 로동에 투하되는것이 50이냐 25이냐 10이냐 하는데 따라 로임인상은 로임에 자기 자본의 $\frac{1}{10}$을 투하하는자와 $\frac{1}{4}$을 투하하는자와 또는 $\frac{1}{2}$을 투하하는자에 대하여 극히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평균구성보다 낮은가 높은가에 따라 생산가격이 일방에서 등귀하고 타방에서는 저락하는것은 오직 새로운 저락한 평균리윤으로의 리윤들의 평균화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로임의 일반적저락 및 이것에 상응하는 리윤률의

따라서 또 평균리윤의 일반적증대는 사회적평균구성으로부터 반대방향들로 배리하는 자본들의 생산물인 상품들의 생산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그 결과(이것을 리카도는 연구하지 않았다)를 얻자면 단지 우에서 한 설명을 거꾸로 하기만 하면 된다.

Ⅰ. 평균자본=80c+20v=100, 잉여가치률=100%, 생산가격=상품가치=80c+20v+20p=120, 리윤률=20%. 로임이 4분의 1만큼 저락한다면 동일한 불변자본은 20v가 아니라 15v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따라서 상품가치는 80c+15v+25p=120이다. v에 의하여 생산된 로동량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며 다만 그 로동량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가치가 자본가와 로동자사이에 분배되는 비률이 변할따름이다. 잉여가치는 20으로부터 25로, 잉여가치률은 $\frac{20}{20}$으로부터 $\frac{25}{15}$로 즉 100%로부터 $166\frac{2}{3}$%로 증대하였다. 95에 대한 리윤은 이제는 25이며 따라서 100에 대한 리윤률은 $26\frac{6}{19}$이다. 이 자본의 새로운 백분비적구성은 이제는 $84\frac{4}{19}$c+$15\frac{15}{19}$v=100이다.

Ⅱ. 평균보다 낮은 구성. 최초에는 우에서와 같이 50c+50v였다. 로임이 $\frac{1}{4}$만큼 저하된 결과로 v는 $37\frac{1}{2}$로 감소되며 따라서 선대총자본은 50c+$37\frac{1}{2}$v=$87\frac{1}{2}$로 감소된다. 이것에다 새로운 리윤률 $26\frac{6}{19}$%를 적용하면 100:$26\frac{6}{19}$=$87\frac{1}{2}$:$23\frac{1}{38}$로 된다. 이전에는 120의 값이 있었던 동일한 상품량이 이제는 $87\frac{1}{2}$+$23\frac{1}{38}$=$110\frac{10}{19}$의 값이 있다. 가격이 거의 10만큼 저락되였다.

Ⅲ. 평균보다 높은 구성. 최초에는 92c+8v=100이였다. 로임이 $\frac{1}{4}$만큼 저하하면 8v는 6v로 감소하고 총자본은 98로 감소한다. 따라서 $100:26\frac{6}{19}=98:25\frac{15}{19}$로 된다. 상품의 생산가격은 이전에는 100+20=120이였는데 이제 로임이 저하한 후에는 $98+25\frac{15}{19}=123\frac{15}{19}$로 되며 따라서 거의 4만큼 등귀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이상에서 설명된것을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하고 필요한 변경만 가하면 된다는것이며 로임의 일반적저하의 결과는 잉여가치와 잉여가치률 그리고 기타의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리윤률의—비록 다른 비률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일반적증대를 가져오며 그와 함께 평균보다 구성이 낮은 자본의 상품생산물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의 저락을, 평균보다 구성이 높은 자본의 상품생산물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의 등귀를 가져온다는것이다. 로임의 일반적상승의 경우와는 바로 반대의 결과이다.(34) 로임의 상승과 저하의 두 경우에 다 전제로 되고 있는것은 로동일도 변하지 않고 모든 필요생활수단의 가격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로임의 저하가 가능한것은 로임이 이전부터 로동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았던가 또는 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인하되였던가 하는 조건하에서만이다. 로임의 상승 또는 저하가 보통 로동자

---

(34) 리카도[101](그는 물론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평균화를 리해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여기에서 론술하고있는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론술하고있다)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여본 일조차 없으며 첫째 경우만을 즉 로임의 상승과 상품의 생산가격에 대한 그 영향만을 고찰하고있다는것은 극히 특징적이다. 그리고 흉내 잘 내는 노복[102]은 이 극히 자명하고 사실상 동의반복적인 적용을 해보려고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다.

의 소비로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 따라서 또 생산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에 사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것은 부분적으로는 아래에 지대에 관한 편에서 연구될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것은 명백히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로임의 상승 또는 저하가 필요생활수단의 가치변동에 의하여 생긴다면 앞에서 서술한것에 수정이 필요한것은 그 가격변동에 의하여 가변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상품들이 불변자본에도 구성요소로서 들어가고 따라서 다만 로임에 대하여서만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닌 한에서만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품들이 로임에 대하여서만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는 이상의 설명에 필요한 모든것이 이미 포함되여있다.

이 장 전체를 통하여 일반적리윤률과 평균리윤의 형성, 따라서 또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는 주어진 사실로서 전제되고있다. 문제로 되였던것은 다만 로임의 일반적 상승 또는 저하가 주어진것으로서 전제된 상품의 생산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는가 하는것뿐이였다. 이것은 이 편에서 취급된 기타의 중요한 점들에 비하면 극히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편에 속하는 문제들중 리카도가 취급하고있는 유일한것이며 그나마 나중에 보게 되듯이[103] 일면적으로 그리고 불만족하게 취급하고있는것이다.

제 12 장

보 유

Ⅰ. 생산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상품의 생산가격은 오직 다음과 같은 두 원인에 의하여서만 변동할수 있다.

첫째, 일반적리윤률이 변하는것. 이것은 오직 평균잉여가치률자체가 변동하든가 또는 평균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취득된 잉여가치총액의, 선대된 사회적총자본액에 대한 비률이 변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잉여가치률의 변동이 로임의 정상상태이하로의 저하 또는 그 이상으로의 상승—그런데 이와같은 운동은 다만 진동적인것으로서만 보아야 할것이다—에 근거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변동은 오직 로동력의 가치가 저하하든가 증대한 때문에만 생길수 있다. 이런 저하나 증대는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로동의 생산성의 변화가 없이는, 따라서 로동자들의 소비로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변동이 없이는 생길수 없다.

혹은 사회의 선대총자본에 대한 취득된 잉여가치총액의 비률이 변동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변동은 잉여가치률로부터 생기는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총자본으로부터, 그것도 총자본의 불변부분으로부터 생기지 않을수 없다. 이 불변부

분의 량은 기술적으로 보면 가변자본에 의하여 구매된 로동력에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며 또 이 불변부분의 가치의 량은 이 불변부분의 량자체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이 가치량도 역시 가변자본의 가치량에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다. 동일한 량의 로동이 보다 많은 불변자본을 움직인다면 그 로동은 보다 생산적으로 된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의 생산성에 변동이 생기면 일정한 상품의 가치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두 경우에 다 다음과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일반적리윤률에 변동이 생겼기때문에 어떤 상품의 생산가격이 변동하여도 그 상품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기타 상품들에 가치변동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

둘째, 일반적리윤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상품의 생산가격이 변동할수 있는것은 오직 그 상품자체의 가치가 변동된 조건하에서만이며 그 상품자체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이 많게 되든가 또는 적게 되든가 하는 조건하에서만인데 이에 있어서 그 상품자체를 그것의 최종형태로 생산하는 로동의 생산성이 변동하든 또는 그 상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생산하는 로동의 생산성이 변동하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면사의 생산가격이 저락할수 있는것은 면화가 보다 저렴하게 생산되기때문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개량되여 방적로동이 보다 생산적으로 되였기때문이다.

생산가격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k+p 즉 비용가격과 리윤의 합계와 같다. 그런데 이것은 k+kp'와 같다. 여기에서 k 즉 비용가격은 부정량이며 생산분야가 다름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경우에나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와 같다. 그리고 p'는 백분비로 계산된 평균리윤률이다. k=200이고 p'=20%이면 생산가격은 $k+kp'=200+200\times\frac{20}{100}$ =200+40=240이다.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이 생산가격은 여전히 동일한것일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상품의 생산가격의 모든 변동은 결국은 가치변동으로 귀착되지만 그러나 상품가치의 모든 변동이 반드시 생산가격의 변동으로 표현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그 특수한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의 총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므로 상품 A의 변동은 상품 B의 대립적변동에 의하여 상쇄되고 그리하여 일반적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수 있다.

Ⅱ. 평균구성의 상품의 생산가격

이미 본바와 같이 가치로부터의 생산가격의 배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1) 상품의 비용가격에 첨가되는것이 그 상품에 포함되여 있는 잉여가치가 아니라 평균리윤이라는것.

2) 이와 같이 가치로부터 배리하는 어떤 상품의 생산가격이 다른 상품의 비용가격에 요소로서 들어가며 따라서 이미 이 사정에 의해서도 상품의 비용가격속에는 이미 그 상품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로부터의 배리가—그 상품자체에 있어서 평균리윤과 잉여가치의 차액으로 말미암아 발생할수 있는 배리는 도외시하더라도—포함될수 있다는것.

그렇기때문에 평균구성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

들의 경우에도 비용가격은 그 상품들의 생산가격중의 이 구성부분을 이루는 요소들의 가치총액으로부터 배리하는 일이 있을수 있다. 평균구성을 80c+20v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러한 구성의 현실적자본에 있어서 80c는 불변자본 c의 가치보다 크든가 작든가 하는 일이 있을수 있다. 왜냐하면 이 c는 그 생산가격이 가치로부터 배리하고있는 상품들로써 구성되고있기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임의 소비로 들어가는 상품들의 생산가격이 그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v가 그 가치로부터 배리될수도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로동자가 이 상품들을 되사기 위하여(보상하기 위하여) 로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이 필요생활수단의 생산가격과 그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필요한것에 비하여 보다 길든가 또는 보다 짧으며 따라서 로동자가 수행하여야 할 필요로동이 보다 많든가 또는 보다 적은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평균구성의 상품들에 대하여 설정된 명제들의 정당성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는다. 이 상품들에 귀속되는 리윤의 량은 그 상품들자체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량과 같다. 례컨대 80c+20v라는 구성을 가진 상술한 자본의 경우에 잉여가치의 규정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이 수자들이 현실적가치들의 표현인가 아닌가 하는것이 아니라 그 수자들이 호상 어떤 비률을 이루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즉 v는 총자본의 $\frac{1}{5}$이며 c는 그 $\frac{4}{5}$이라는것이다.. 이 비률로 되여있기만 하다면 우에서 가정한바와 같이 v가 낳는 잉여가치는 평균리윤과 같다. 다른 한편으로 잉여가치가 평균리윤과 같기때문에 생산가격=비용가격+리윤=k+p=k+m이며 생산가격은 실제상 상품의 가치와 같은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로

임의 상승 또는 저하가 상품의 가치를 변동시키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k+p도 변동시키지 않으며 그것은 다만 리윤률측에 상응하는 반대의 운동—저락 또는 증대—을 일으킬따름이다. 즉 로임의 상승 또는 저하의 결과로 이 경우에 상품의 가격이 변동된다면 이 평균구성의 분야에서의 리윤률은 다른 분야의 리윤률수준보다 높게 또는 낮게 될것이다. 오직 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에서만 평균구성의 분야는 다른 분야와 같은 리윤수준을 유지한다. 이리하여 평균구성의 분야에는 마치 이 분야의 생산물이 그 현실적가치대로 판매되는것과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한다. 즉 상품들이 그 현실적가치대로 판매된다면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로임의 상승 또는 저하는 그에 상응하는 리윤의 저하 또는 상승을 초래하나 상품의 가치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것은 분명하며 또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로임의 상승 또는 저하는 결코 상품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제나 잉여가치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것은 분명하다.

III. 자본가의 보상리유

이미 말한바와 같이 경쟁은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리윤률을 평균화하여 평균리윤률로 되게 하고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각이한 분야들의 생산물의 가치를 생산가격으로 전화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이 한 분야로부터 잠시 리윤이 평균수준을 넘는 다른 분야로 부단히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 일정한 산업부문에서 일정한 기간에 련이어 나타나는 흉년과 풍년의 교체와 결부된 리윤의 변동

은 고려되여야 한다. 각이한 생산분야들사이에서의 자본의 이러한 끊임없는 류출과 류입은 리윤률의 상승과 저하 운동을 산생하는데 이러한 운동은 서로 다소간에 상쇄되며 이 상쇄에 의하여 리윤률을 어디서나 동일한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수준으로 귀착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자본의 이러한 운동은 무엇보다먼저 항상 시장가격의 상태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이 시장가격이 리윤을 여기에서는 일반적평균수준이상으로 높이고 저기에서는 그 이하로 낮추는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 우리와 관계없는 상인자본을 당분간 도외시하는데 이 상인자본은 어떤 류행품에 대한 투기의 돌발적인 발작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량의 자본을 비상한 속도로 한 기업부문으로부터 끌어내며 마찬가지로 급격히 다른 기업부문에 투입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생산분야—공업, 농업, 광업 등등—에서는 자본이 한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데는 큰 곤난이 있으며 특히 기존의 고정자본때문에 그 이동이 곤난하다. 그뿐만아니라 경험이 보여주는바에 의하면 어떤 산업부문 례컨대 면방직업은 어느 시기에는 비상히 높은 리윤을 낳는다면 다른 시기에는 보잘것없는 리윤만을 가져오든가 지어는 결손을 보기까지도 하며 그리하여 수년에 걸치는 일정한 순환에서는 평균리윤은 다른 부문들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자본은 이윽고 이 경험을 고려하는데 익숙하여진다.

그런데 경쟁이 보여주지 않는것, 그것은 생산의 운동을 지배하는 가치규정이다. 가치는 생산가격의 배후에 서서 결국은 그것을 규정하는것이다. 반대로 경쟁이 보여주는것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1) 평균리윤. 이것은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자본의 유기적구성과는 관계가 없는것이며 따라서 또

일정한 착취분야에서 일정한 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 산로동의 량과도 관계가 없는것이다. 2) 로임의 높이에 있어서의 변동의 결과인 생산가격의 등귀와 저락. 이것은 상품의 가치관계와는 얼핏 보면 완전히 모순되는 현상이다. 3) 시장가격의 변동. 이 변동은 일정한 기간의 상품의 평균시장가격을 시장**가치**로 귀착시키는것이 아니라 이 시장가치로부터 배리하는, 그것과는 극히 다른 시장생산가격으로 귀착시키는것이다. 이 모든 현상들은 가치가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에도, 잉여가치가 부지불잉여로동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잉여가치의 성질에도 모순되는듯이 보인다. **따라서 경쟁에 있어서는 모든것이 전도되여 나타난다.** 표면에 나타나는바와 같은 경제적 제 관계의 완성된 모습은 그 현실적존재에 있어서는, 따라서 또 이 제 관계의 담당자나 대리자들이 이 제 관계를 해명하려고 할 때 가지고있는 개념들에 있어서도 이 제 관계의 내적인, 본질적인, 그러나 은폐된 핵심모습 및 그에 상응하는 개념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모습이나 개념에 대하여 거꾸로 되여있고 반대로 되여있다.[104]

그리고 자본주의적생산이 일정한 정도에까지 발전하면 개개의 분야들의 각이한 리윤률이 평균화되여 일반적리윤률로 되는것은 결코 다만 시장가격이 자본을 끌어당겼다 밀어냈다 하는데 의하여서만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평균가격과 그것에 상응하는 시장가격이 일정한 시기를 걸쳐 확립된 다음에는 이 평균화에서 **일정한 차이들이** 상쇄된다는것이 개개의 자본가들의 **의식**속에 떠오르게 되며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이 차이들을 즉시로 그들 호상간의 계산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 차이들은 자본가들의 관념속에 살고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보상리유로서 계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에 기본관념은 평균리윤자체이며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은 동일한 기간에는 동등한 크기의 리윤을 낳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념이다. 이 관념의 근저에는 또 매개 생산분야들의 자본은 그것의 크기에 비례하여 사회적총자본에 의하여 로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총잉여가치의 분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념이 놓여있다. 바꾸어말하면 매개 특수자본은 다만 총자본의 쪼각으로서만 보아야 하며 매 자본가는 사실상 총기업의 주주—각기 자기 주권의 크기에 비례하여 총리윤에 참여하는—로서 보아야 한다는 관념이 놓여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자본가의 계산이 진행된다. 례컨대 상품이 보다 오래동안 생산과정에 머물던가 또는 상품이 보다 먼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회전이 비교적 완만한 자본은 이로 인하여 상실되는 리윤을 역시 타산하는것이며 이것을 가격에 부과함으로써 보상하는것이다. 또는 례컨대 해운업에서와 같이 큰 위험을 겪게 되는 자본투하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격인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보험업이 발전하면 위험은 사실상 모든 생산분야에 있어서 동등하게 된다(코비트의 저서[105]를 참조하라). 그러나 보다 위험이 큰 생산분야는 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자체의 상품의 가격으로 받는다. 사실에 있어서 이 모든것은 다음과 같은것으로 귀착된다. 즉 어떤 자본투하를 보다 리윤이 적은것으로 만들고 다른 자본투하를 보다 리윤이 많은것으로 만드는—그런데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모든 자본투하가 동등하게 필요한것으로 간주된다—매개사정은 영원히 유효한 보상리유로서 계산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그러한 동기 또는 계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경쟁의 활동은 이미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가가 다음과 같은것을 망각하고있을따름이다. 또는 오히려 경쟁이 그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보지 못하고있을따름이다. 즉 각이한 생산부문들에서 상품가격을 호상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가들이 서로 주장하는 이 모든 보상리유는 다만 그들모두가 자기들의 자본에 비례하여 공동의 로획물인 총잉여가치에 대하여 동등한 청구권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에 립각하고있다는것뿐이다. 자본가들이 실제로 사취하는 리윤이 그들이 착취하는 잉여가치와 다르기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보상리유는 총잉여가치에 대한 몫을 평균화하는것이 아니라 **리윤자체를 창조하는것인듯이 보인다.** 그것은 리윤은 단지 이러저러한 동기에 의하여 상품의 비용가격에 부가된것으로부터 나오는것처럼 보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잉여가치의 원천에 관한 자본가의 관념에 대하여 제7장 116페지①에서 말한것은 모두 평균리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여기서는 상품의 시장가격과 로동의 착취도가 주어져있고 비용가격의 절약이 개인적기능, 주의력 등등에 의존하는 한에서만 문제가 달리 제기된다.

① 본권 155페지를 보라.—편집자

제 3 편

리윤률의 경향적저하의 법칙

제 13 장

법칙 그 자체

로임과 로동일이 주어져있다면 어떤 가변자본 레컨대 100은 일정한 수의 움직여지는 로동자를 표시한다. 그것은 이 로동자수의 지표이다. 레컨대 100파운드가 100명의 로동자에 대한 1주간분의 로임이라고 하자. 이 100명의 로동자가 수행하는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이 같다고 하면, 따라서 그들이 매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즉 자기들의 로임의 재생산을 위하여 로동하는 시간과 자본가를 위하여 즉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로동하는 시간이 같다고 하면 그들의 총가치생산물은 200파운드이고 그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100파운드일것이다. 잉여가치률 $\frac{m}{v}$은 100%일것이다. 그러나 이 잉여가치률은 이미 본바와 같이 불변자본 c 따라서 또 총자본 C의 크기가 다름에 따라 극히 각이한 리윤률로 표현될것이다. 왜냐하면 리윤률은 $\frac{m}{C}$이기때문이다. 잉여가치률이 100%이라

면 다음과 같이 된다.

$c=50,\ v=100$이라면 $p'=\frac{100}{150}=66\frac{2}{3}\%$,

$c=100,\ v=100$이라면 $p'=\frac{100}{200}=50\%$,

$c=200,\ v=100$이라면 $p'=\frac{100}{300}=33\frac{1}{3}\%$,

$c=300,\ v=100$이라면 $p'=\frac{100}{400}=25\%$,

$c=400,\ v=100$이라면 $p'=\frac{100}{500}=20\%$.

이와 같이 로동의 착취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동일한 잉여가치률은 점점 저락하는 리윤률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불변자본의 물량이 증가되는데 따라 비록 동일한 비률로써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변자본의 가치량도 따라서 또 총자본의 가치량도 증가하기때문이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자본구성의 이러한 점차적인 변화가 개개의 생산분야에서 일어날뿐만아니라 많으나적으나 모든 생산분야에서 또는 적어도 결정적인 생산분야들에서 일어나고 따라서 그 변화가 일정한 사회에 속하는 총자본의 유기적평균구성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이 점차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잉여가치률 즉 자본에 의한 로동의 착취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일반적 리윤률의 점차적인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이미 서술한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한 법칙으로서 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가변자본은 불변자본에 비하여 따라서 또 움직여지는 총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되여간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다만 주어진 가치량의 가변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동일한 수의 로동

자, 동일한 량의 로동력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내부에서 발전하는 특유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로동수단, 기계 및 각종 고정자본, 원료 및 보조재료의 부단히 증가되는 량을—따라서 또 가치량이 부단히 증가되는 불변자본을—동일한 시간에 운동시키고 가공하고 생산적으로 소비한다는것뿐이다. 이와 같이 불변자본 따라서 또 총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부단히 감소되는것은 평균적으로 본 사회적자본의 유기적구성이 부단히 제고되는것과 동일하다. 이것은 또한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이 부단히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며, 이 발전은 바로 기계 및 고정자본일반의 사용이 증가됨으로써 보다 많은 량의 원료 및 보조재료를 동일한 수의 로동자가 동일한 시간에 즉 보다 적은 로동으로써 생산물로 전화시킨다는데서 표현된다. 불변자본의 가치량의 이러한 증가—비록 그것은 불변자본을 소재적으로 구성하는 현실적사용가치량의 증가를 표시하기에는 거리가 멀지만—에 상응하여 생산물이 점점 저렴하게 된다. 매개 생산물은 그 자체로서 보면, 로동에 투하되는 자본이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비률을 차지하는 보다 낮은 생산단계에서보다도 더 적은 로동량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장의 서두에서 가설적으로 제시한 순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현실적경향을 표현한다. 자본주의적생산은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상대적감소의 진전에 따라 총자본의 부단히 높아가는 유기적구성을 낳는데 그 직접적인 결과는 로동의 착취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지어 그것이 높아가는 경우에도 잉여가치률은 부단히 저하하는 일반적리윤률로 표현된다는것이다(왜 이 저하가 이와 같이 절대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저하의 경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것은 더

나아가서 서술하게 될것이다①).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의 점진적저하의 경향은 다만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점진적발전을 말하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고유한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하여 리윤률이 이것이외의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저하할수 없다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에 따라 잉여가치의 일반적평균률은 저하하는 일반적리윤률로 표현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본질로부터 하나의 자명한 필연성으로서 증명되는것이다. 사용되는 산로동의 량은 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대상화된 로동의 량 즉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량에 비하여 부단히 감소하므로 이 산로동중 지불되지 않고 잉여가치로 대상화되는 부분의, 사용되는 총자본의 가치량에 대한 비률도 부단히 감소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사용되는 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잉여가치량의 이 비률이 리윤률을 형성하는것이며 따라서 리윤률은 부단히 저하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는 이 법칙은 대단히 간단한것 같이 보이지만 다음의 한 편[106]에서 보게 되는바와 같이 종래의 모든 경제학은 그것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경제학은 이 현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려는 모순된 기도에 고심하였다. 그런데 이 법칙은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것으로서, 그것은 신비를 이루고있고 이 신비의 해결이 애담 스미스이래의 전체 정치경제학의 중심문제로 되고있다고 말할수 있으며 또 애담 스미스 이래의 각이한 학파들간에서의 차이는 그 해결을 위한 기도상의 차이에 있다고 말할수

---

① 본권 제14장을 보라.—편집자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종래의 전체 정치경제학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을 모색하였으나 이 구별을 결코 명확하게 정식화하지는 못하였다는것, 그것은 결코 잉여가치를 리윤에서 분리하여 서술하지 않았으며 또 결코 리윤일반을 그 각이한, 호상 독립화된 구성부분들—산업리윤, 상업리윤, 리자, 지대—과 구별하여 순수하게 서술하지 않았다는것, 그것은 결코 자본의 유기적구성상의 차이 따라서 또 일반적리윤률의 형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것을 고려한다면 종래의 정치경제학이 이 수수께끼의 해결에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는것은 더는 수수께끼가 아니게 된다.

리윤이 각이한 호상 독립화된 범주들로 분렬되는것을 서술하기전에 이 법칙을 서술하는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것이다. 리윤이 각이한 부분으로 분렬되여 각이한 부류의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는것과는 관계없이 이 법칙을 서술할수 있다는것은 처음부터 이 법칙이 그 일반성에 있어서 리윤의 분렬이나 분렬에서 발생하는 리윤의 제 범주들간의 호상관계와는 관계없다는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리윤이라고 말하고있는것은 잉여가치 그 자체의 별명에 불과하며 다만 이 잉여가치가 그 원천인 가변자본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총자본과의 관계에서 표시되고있을따름이다. 그러므로 리윤률의 저하는 선대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자체의 비률의 저하를 표시하며 따라서 이 잉여가치가 각이한 범주들로 어떻게 분배되든지 그것에는 관계없는것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의 구성 c:v=50:100인 자본주의발전단계에서는 100%의 잉여가치률은 $66\frac{2}{3}$%의 리윤률로 표현되나 c:v=400:100인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동일한 잉여가치률

이 불과 20%라는 리윤률로 표현된다. 어느 한 나라에서 계기적으로 나타나는 각이한 발전단계들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각이한 나라들에서 동시에 병존하여 나타나는 각이한 발전단계들에 대하여도 말할수 있다. 첫째번의 자본구성이 평균을 이루고있는 미발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리윤률은 $66\frac{2}{3}$%일것이며 보다 훨씬 높은 둘째번 발전단계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20%일것이다.

이 두 나라의 리윤률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없어질수 있고 또 지어는 거꾸로 될수도 있을것이다. 즉 발전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로동의 생산성이 비교적 낮으며 따라서 보다 다량의 로동이 보다 소량의 동일한 상품으로 표시되고 보다 큰 교환가치가 보다 적은 사용가치로 표시될것이며, 따라서 로동자는 자기 시간의 보다 큰 부분을 자기 자신의 생활수단 또는 가치의 재생산을 위하여 돌리고 보다 적은 부분을 잉여가치의 창조를 위하여 돌리게 될것이며 보다 적은 잉여로동을 제공할것이므로 거기서는 잉여가치률이 보다 낮을것이라는 사정에 의하여서이다. 례컨대 발전이 늦은 나라에서 로동자가 로동일의 $\frac{2}{3}$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로동하고 $\frac{1}{3}$은 자본가를 위하여 로동한다고 하면 상기 례와 같은 전제하에서는 동일한 로동력은 $133\frac{1}{3}$로써 지불되며 다만 $66\frac{2}{3}$의 초과분을 제공할것이다. $133\frac{1}{3}$의 가변자본에 50의 불변자본이 상응할것이다. 따라서 잉여가치률은 이제는 $66\frac{2}{3}:133\frac{1}{3}$ =50%일것이며 리윤률은 $66\frac{2}{3}:183\frac{1}{3}$ 즉 약 $36\frac{1}{2}$%일것이다.

이상에서는 리윤이 분렬되여나가는 각이한 구성부분들은 연구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들은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미리 지적하여둔다. 발전단계가 각이한 나라들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특히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의 나라들과, 로동자는 현실적으로 자본가에 의하여 착취되고있지만 로동은 아직 형식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되고있지 않은 나라들(례컨대 인도에서는 라이트[107]가 자립적인 농민으로서 경영에 종사하며 따라서 고리대금업자가 그로부터 리자의 형태로 비단 그의 전체 잉여로동뿐만아니라 지어는 자본주의적으로 표현하면 그의 로임의 일부까지도 탈취할는지 모르지만 그의 생산은 그 자체로서는 아직 자본에 종속되여있지는 않다.)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리자률의 수준에 의하여 그 나라의 리윤률의 높이를 측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심히 그릇된것일것이다. 그러한 리자에는 전체 리윤이 포함되여있으며 지어는 리윤보다도 많은것이 포함되여있는데 이 리자는 자본주의적생산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리윤의 일정한 부분을 이룰따름이다.[108]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서는 리자률을 주로 규정하고있는것은 리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오히려 고리대금업자가 어떠한 비률로 지대를 취득하는가 하는것을 표시하는데 불과한 제 관계(지대의 소유자인 호족들에 대하여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는 대부)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단계가 각이하고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각이한 나라들에서는 잉여가치률(리윤률을 규정하는 한 요인)은 표준로동일이 비교적 긴 나라에서보다 비교적 짧은 나라에서 높을수 있다. **첫째로**, 영국의 10시간로동일은 그 강도가 높기때문에 오지리의 14시간로동일과 동등

하다면 로동일의 분할이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영국에서의 5시간의 잉여로동은 세계시장에서 오지리에서의 7시간보다 높은 가치를 표시할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영국에서는 오지리에서보다 로동일의 보다 큰 부분이 잉여로동을 이룰수 있다.

동일한 잉여가치률 또는 상승하는 잉여가치률까지도 표현되는 리윤률의 저하의 법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정량의 사회적평균자본 례컨대 100이라는 자본을 들어볼 때 그중 로동수단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점점 커지며 산로동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점점 적어진다는것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에 첨가되는 산로동의 총량은 이 생산수단의 가치에 비하여 감소되므로 부지불로동과 이것을 표시하는 가치부분도 선대총자본의 가치에 비하여 감소된다. 바꾸어말하면 투하총자본중 산로동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부단히 감소되며 따라서 이 총자본은—비록 사용되는 로동중 지불부분에 대한 부지불로동의 비률은 동시에 증가할는지 모르지만—그 크기에 비하여 점점 더 적은 잉여로동을 흡수한다. 가변자본부분도 불변자본부분도 절대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가변자본은 감소하고 불변자본은 증가한다는것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로동의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100이라는 자본이 80c+20v로써 구성되고 이 20v는 20명의 로동자와 동등하다고 하자. 잉여가치률은 100% 즉 로동자들은 반날은 자기를 위하여 로동하고 반날은 자본가를 위하여 로동한다고 하자. 다른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자본이 20c+80v이고 이 80v는 80명의 로동자와 동등하다고 하자. 그러나 이 로동자들은 자기를 위하여는 로동일의 $\frac{2}{3}$를 필요로

하며 자본가를 위하여는 다만 $\frac{1}{3}$을 로동한다고 하자. 다른 모든 조건들이 같다면 로동자들은 첫째 경우에는 40, 둘째 경우에는 120의 가치를 생산한다. 첫째 자본은 80c+20v+20m=120을 생산하고 리윤률은 20%이며 둘째 자본은 20c+80v+40m=140을 생산하고 리윤률은 40%이다. 따라서 첫째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은 100%이고 그것이 단지 50%뿐인 둘째 경우의 2배이지만 리윤률은 둘째 경우에는 첫째 경우의 2배이다. 그러나 그대신에 동등한 크기의 자본이 취득하는 잉여로동은 첫째 경우에는 로동자 20명분이고 둘째 경우에는 로동자 80명분이다.

리윤률의 점진적저하의 법칙 즉 산로동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대상화된 로동량에 비하여 취득되는 잉여로동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법칙은 사회적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착취되는 로동의 절대량, 따라서 또 사회적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 잉여로동의 절대량이 증가하는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으며 또한 개개의 자본가들의 지휘하에 있는 자본들이 지휘하는 로동의 량, 따라서 또 잉여로동의 량이 증가하며 또 잉여로동자체는 자본들이 지휘하는 로동자들의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증가한다는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례컨대 200만이라는 주어진 로동자인구를 가정하면 그리고 또 평균로동일의 길이와 강도, 로임, 따라서 또 필요로동과 잉여로동간의 비률도 주어진것으로 가정하면 이 200만명의 총로동은, 그리고 또한 그중 잉여가치로 표시되는 잉여로동도 항상 동일한 가치량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로동이 움직이는 불변자본—고정자본 및 류동적자본—의 량이 증대함에 따라 이 자본의 가치에 대한 상술한 가치량의 비률은 저

하한다. 그것은 이 자본의 가치는 이 자본의 량과 함께, 비록 동일한 비률로써는 아니더라도 같이 증대하기때문이다. 이 비률 따라서 또 리윤률은 자본이 여전히 동일한 량의 산로동을 지휘하고 동일한 량의 잉여로동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저하한다. 이 비률이 변동하는것은 산로동의 량이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이미 대상화된 로동의 량이 증가하기때문이다. 이 감소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며 움직여지는 로동과 잉여로동의 절대량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 리윤률의 저하는 총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의 절대적감소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 상대적인 감소에서, 불변적구성부분에 비한 그것의 감소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주어진 로동량과 잉여로동량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증가하는 로동자수에 대하여도 따라서 또 주어진 전제하에서는 지휘되는 로동 일반 또 특수적으로는 그 부지불부분인 잉여로동의 증대하는 량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로동자인구가 200만으로부터 300만으로 증가한다면 이들에게 로임으로 지불되는 가변자본도 종전에는 200만이던것이 이제는 300만인데 불변자본은 400만으로부터 1,500만으로 증가한다면 주어진 전제(로동일과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는다는)하에서는 잉여로동량 따라서 잉여가치량은 절반 즉 50% 증대하여 200만으로부터 300만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로동의, 따라서 잉여가치의 절대량이 50% 증대하였으나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률은 2:4로부터 3:15로 저락할것이며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것이다 (단위 100만).

Ⅰ. $4c+2v+2m$, $C=6$, $p'=33\frac{1}{3}\%$,

II. 15c+3v+3m, C=18, $p'=16\frac{2}{3}\%$.

잉여가치량은 절반 증가하였는데 리윤률은 종전보다 절반 저하하였다. 그런데 리윤은 잉여가치가 사회적자본에 대하여 계산된데 불과하며 따라서 리윤의 량, 그 절대량은 사회적으로 보면 잉여가치의 절대량과 같다. 따라서 선대총자본에 대한 이 리윤량의 비률의 비상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즉 일반적 리윤률의 비상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리윤의 절대량, 리윤총량은 50% 증가할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이 사용하는 로동자의 수 즉 자본이 움직이는 로동의 절대량, 따라서 자본이 흡수하는 잉여로동의 절대량, 따라서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량, 따라서 자본이 생산하는 리윤의 절대량은 리윤률의 부단한 저하에도 불구하고 증가할수 있으며 또 부단히 증가할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을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일시적변동들을 도외시하면—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다.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본질적으로는 동시에 축적과정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단순히 재생산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치량은 사용되는 로동력이 불변인 경우에도 로동의 생산성의 제고에 따라 증대한다. 그러나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산되는 사용가치의 량은 보다 더 신속하게 증가되며 그 속에는 생산수단도 포함된다. 그리고 추가로동—이것을 취득함으로써 이 추가적부는 자본으로 재전화될수 있다—은 이 생산수단(생활수단을 포함하여)의 가치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그 량에 의존하는것이다. 왜냐하면 로동자가 로동과정에서 상대하는것은 생산수단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용가치이기때문이다. 그

런데 자본의 축적 자체와 그것에 수반하는 자본의 집적은 그 자체가 또 생산력제고의 한 물질적수단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이 증가에는 로동자인구의 증가가 포함된다. 즉 잉여자본에 상응하는, 지어는 잉여자본의 수요를 대체로 언제나 초과하는 로동자인구, 따라서 과잉로동자인구의 창조가 포함된다. 과잉자본이 그것이 지휘하는 로동자인구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과잉이 되는것은 이중으로 작용할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로임을 증대시킴으로써, 따라서 로동자들의 자녀들을 감소시키고 파멸시키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결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로동자인구를 점점 증가시킬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상대적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방법들(기계의 채용과 개량)을 사용하는데 의하여 보다 더 급속하게 인위적인 상대적과잉인구를 조성할수 있는데 이 상대적과잉인구 그 자체는 또한 인구의 현실적인 급속한 증가의 온실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빈궁이 인구를 산생하기때문이다.[109]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축적과정—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한 계기에 불과하다—의 성질로부터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결론은 자본으로 전화될 생산수단의 량이 증대되면 그에 상응하여 증대되고 지어는 과잉으로 되는 착취될수 있는 로동자인구를 항상 수중에 가지고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정 및 축적과정의 진전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취득되는 잉여로동의 량, 따라서 또 사회적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 리윤의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생산과 축적의 이 동일한 법칙들은 불변자본의 량과 함께 그 가치를, 산로동으로 전환되는 가변자본 부분의 가치보다 점점 더 급속하게 증대시킨다. 따라서 이 동일한 법칙이 사회적자본에 대하여서는 증대하는 리윤의 절

대량과 저하하는 리윤률을 낳는다.

자본주의적생산과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적로동의 생산력이 발전하고 생산부문들, 따라서 또 생산물들이 몇배로 늘어나면 동일한 가치량이 점점 증대하는 사용가치와 향락의 량을 나타낸다는것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도외시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발전행정은 로동과정의 규모와 함께 그 범위가 점점 더 크게 되는것을 조건지으며 또 그것에 상응하여 매 개별적기업을 위한 자본선대가 증대하는것을 조건짓는다. 그러므로 자본의 집적의 증대(그것에는 동시에 비록 적은 정도이기는 하지만 자본가수의 증대가 수반된다.)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물질적조건의 하나이며 또한 이 생산과 축적 자체에 의하여 산생되는 결과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것과 손에 손을 맞잡고 또 호상 작용하에서 다소간에 직접적인 생산자들의 루진적수탈이 진행된다. 그리하여 개개의 자본가들에게 대하여 자명한것은 그들이 점점 큰 로동자군을 지휘하게 되며(비록 그들에 있어서 가변자본은 불변자본에 비하여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취득하는 잉여가치의 량, 따라서 리윤의 량은 리윤률의 저하와 동시에 또 그 저하에도 불구하고 증가한다는것이다. 대량의 로동자군을 개개의 자본가들의 지휘하에 집적하게 하는 바로 동일한 원인이야말로 사용되는 고정자본의 량과 원료다 보조재료의 량을 사용되는 산로동의 량에 비하여 점점 더 큰 비률로 증대시키는 원인인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한마디 언급하기만 하면 충분한것이지만 로동자인구가 주어진 경우에 로동일의 연장이나 강화, 로동의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한 로임의 가치저하에 의하여 잉여가치률이 증대하면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상대

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잉여가치량 따라서 리윤의 절대량은 증가한다.

이러한 사회적로동의 생산력의 발전, 총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상대적감소와 이에 따라 촉진되는 축적—다른 한편으로 축적은 반작용적으로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과 가변자본의 가일층의 상대적감소의 출발점으로 된다—으로 표시되는 법칙들, 이 동일한 발전은 일시적인 변동들을 도외시하면 사용되는 총로동력이 점점 더 증가되여가는것으로 표현되며 잉여가치 따라서 또 리윤의 절대량이 점점 더 증대되여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동일한 원인들에서 리윤률의 저하와 절대적리윤량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 이중성격의 법칙은 어떠한 형태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즉 주어진 제 조건하에서는 취득되는 잉여로동의 량이 증대되고 따라서 잉여가치의 량이 증대한다는것, 그리고 총자본을 고찰하면, 또는 개개의 자본을 총자본의 단순한 쪼각으로서 고찰하면 리윤과 잉여가치는 동일한 크기의것이라는것, 이 두가지에 기초하고 있는 법칙은 어떠한 형태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자본의 일정한 부분 례컨대 100을 들어서 이에 대한 리윤률을 계산하자. 이 100은 총자본의 평균구성 례컨대 80c+20v를 표시한다고 하자. 본권 제2편에서 본바와 같이 각이한 생산부문들에서의 평균리윤률은 매개 부문의 특수한 자본구성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자본의 사회적평균구성에 의하여 규정된다.① 불변부분에 비하여, 따라서 총자본 100에 비하여 가변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로동의

① 본권 193~195페지를 보라.—편집자

착취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이 증대하는 경우에도 리윤률은 저하되며 잉여가치의 상대적크기 즉 선대총자본 100의 가치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은 저하된다. 그러나 이 상대적크기가 저하될뿐만이 아니다. 총자본 100이 흡수하는 잉여가치 또는 리윤의 크기는 절대적으로 저하된다. 잉여가치률이 100%라면 60c+40v라는 자본은 40이라는 잉여가치량, 따라서 리윤량을 생산한다. 70c+30v라는 자본은 30이라는 리윤량을 생산한다. 80c+20v라는 자본에 있어서는 리윤은 20으로 저하된다. 이 저하는 잉여가치량, 따라서 리윤량에 관련된것이고 또 이러한 저하는 총자본 100이 보다 적은 산로동일반을 움직이므로 착취도가 같다면 그것이 보다 적은 잉여로동을 움직이며 따라서 보다 적은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데로부터 나오는것이다. 사회적자본, 따라서 사회적평균구성의 자본의 어떤 부분을 계량기준으로서 취하고 이것으로 잉여가치를 계산한다면—그런데 어떠한 리윤계산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다—일반적으로 잉여가치의 상대적저하와 그 절대적저하는 동일한것이다. 상술한 례에서는 리윤률이 40%로부터 30%로, 그리고 또 20%로 저하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동일한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량 따라서 리윤의 절대량이 40으로부터 30으로 감소되고 또 20으로 감소되기때문이다. 잉여가치의 계량기준으로 되는 자본의 가치량은 주어져있고 100이므로 이 불변량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의 저하는 잉여가치와 리윤의 절대량의 감소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일따름이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동의반복이다. 그러나 이 감소가 생긴다는 사정은 이미 증명된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발전의 성질에서 나오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한 자본에 대한 잉여가

치의, 따라서 리윤의, 따라서 또 백분률로 계산한 리윤률의 절대적감소를 초래하는 동일한 원인들은 사회적자본(즉 자본가 전체)에 의하여 취득되는 잉여가치의, 따라서 리윤의 절대량의 증대를 초래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초래되여야 하는가? 그것은 대체 어찌하여 초래될수 있는가? 바꾸어말하면 어떠한 조건들이 이 외관적인 모순에 포함되고있는가?

사회적자본을 100씩 나눈 그 매개 부분, 따라서 사회적 평균구성을 가진 100씩의 자본은 주어진 량이며 따라서 이 량에 있어서는 리윤률의 저하는 리윤의 절대량의 감소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리윤률과 리윤량의 계량기준으로 되는 자본이 바로 불변량이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총자본의 크기와 개개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는 자본의 크기는 하나의 가변량이며 그것은 전제된 조건들에 상응하려면 그 가변부분의 감소에 반비례하여 변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술한 례에서 백분비구성이 60c+40v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잉여가치 또는 리윤은 40이였으며 따라서 리윤률은 40%였다. 이 구성하에서 총자본은 100만이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잉여가치, 따라서 총리윤은 40만이다. 그후에 구성이 80c+20v로 된다면 잉여가치 또는 리윤은 로동의 착취도가 불변이면 매 100에 대하여 20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리윤률의 저하, 즉 매개 100이라는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잉여가치 또는 리윤은 절대량으로 보면 이미 증명된바와 같이 증대—례컨대 40만으로부터 44만으로 증대—하는것이므로 그것은 이 새로운 구성과 동시에 형성된 총자본이 220만으로 증대하였기때문에만 가능한것이다. 움직여지는 총자본의 량은 220%로 증대하였는데 리윤률은 50% 저

하하였다. 자본이 2배로 되였을따름이라면 그 자본은 20%의 리윤률로는, 이전의 100만의 자본이 40%의 리윤률로 생산한 것과 같은 분량의 잉여가치와 리윤을 생산할수 있었을따름일 것이다. 자본이 2배이하로 증대하였다면 그 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 또는 리윤은 이전에 100만이라는 자본이 생산한것보다 적을것이다. 이 100만의 자본은 이전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잉여가치를 40만으로부터 44만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100만으로부터 110만으로 증대하기만 하면 되였을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것은 이미 이전에 전개된 법칙[110] 즉 가변자본의 상대적감소, 따라서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같은 량의 로동력을 움직이여 같은 량의 잉여로동을 흡수하기 위하여는 부단히 증대하는 큰 량의 총자본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생산이 발전하는것과 동일한 비률로 상대적으로 과잉한 로동자인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발전하는데 그것은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이 **감소하기**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증대하기**때문이며 따라서 로동과 생활수단간의 또는 이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한 수단간의 절대적불균형때문이 아니라 로동의 자본주의적착취에서 생기는 불균형 즉 부단히 늘어나는 자본의 증대와 증대하는 인구에 대한 자본의 수요의 상대적감소간의 불균형때문이다.

리윤률이 50% 저하하면 그것은 절반이 저하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리윤량이 여전하려면 자본은 2배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리윤률이 저하하여도 리윤량이 여전하려면 총자본의 증대를 표시하는 승수(乘数)가 리윤률의 저하를 표시하는 제수(除数)와 동등하지 않으면 안된다. 리윤률이 40으로부터 20으로 저하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이전과 동일하기 위하여는 총자본은 반대로 20:40의 비률로 증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리윤률이 40으로부터 8로 저하한다면 자본은 8:40의 비률로 즉 5배로 증대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100만이라는 자본은 40%로 40만을 생산하고 500만이라는 자본은 8%로 역시 40만을 생산한다. 결과가 이전과 동일하기 위하여는 그렇게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결과가 증가된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자본은 리윤률이 저하하는것보다 더 큰 비률로 증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말하면 총자본중의 가변적구성부분—총자본의 부분으로서의 그 백분률은 저락함에도 불구하고—이 절대적으로 이전과 동일할뿐만아니라 이전보다 절대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는 총자본은 가변자본의 백분률이 저하되는것보다 더 큰 비률로 증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자본은 새로운 구성에서는 로동력의 구입을 위하여 이전의 가변자본부분을 필요로 할뿐만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변자본부분을 필요로 하므로 그만큼 더 크지 않으면 안된다. 100이라는 자본중의 가변부분이 40으로부터 20으로 감소된다면 총자본은 40보다 큰 가변자본을 사용할수 있기 위하여는 200이상으로 증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착취당하는 로동자인구의 량이 변하지 않고 로동일의 길이와 강도만이 증대되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자본량은 증대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구성이 변하면 이전과 같은 착취관계하에서 동일한 량의 로동을 사용할수 있기 위하여서도 사용되는 자본의 량은 증대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동일한 발전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진전에 따라 한편으로는 리윤률의 루진적저하의 경향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득되는 잉여가치 또는 리윤의 절대량의 부단한 증가로 표현되며 그리하여 전

체로서 보면 가변자본 및 리윤의 상대적감소에 이 량자의 절대적증가가 상응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량면적작용은 이미 서술한바와 같이 다만 총자본의 증가가 리윤률의 저하보다도 더 빠르다는것으로 나타날수 있을따름이다. 보다 높은 구성, 즉 불변자본의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증가의 조건하에서, 절대적으로 증가한 가변자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총자본은 구성의 고도화에 비례하여 증대할뿐만아니라 그것보다 더 급속히 증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문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동일한 로동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자본량이 필요하고 증대하는 로동력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보다 더 큰 자본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리하여 로동생산력의 제고는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는 필연적으로 항시적인 외관적과잉로동인구를 낳는다. 가변자본이 종전에는 총자본의 $\frac{1}{2}$이였는데 이제는 $\frac{1}{6}$에 불과하다면 동일한 로동력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총자본은 3배로 되지 않으면 안되며 2배의 로동력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총자본은 6배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리윤률의 저하의 법칙을 설명할수 없었던 종래의 경제학은 개개의 자본가와 사회적자본의 리윤량의 증대, 리윤의 절대량의 증대를 일종의 위안의 리유로 삼았는데 그러나 이것도 단순한 판에 박힌 문구와 가능성들에 기초한것이다.

리윤의 량이 두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 즉 첫째로는 리윤률에 의하여, 둘째로는 이 리윤률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본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은 동의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능성으로 말하면 리윤량은 리윤률이 동시에 저하되여도 증대할수 있다는것은 이 동의반복의 한 표현

에 불과하며 사태의 전진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리윤량이 증대하지 않아도 자본은 증대한다는것, 나아가서는 리윤량이 감소하는 때에도 자본은 증대할수 있다는 것은 역시 가능하기때문이다. 100의 25%는 25이며 400의 5%는 20에 불과하다(35). 그러나 만약 리윤률을 저하시키는 그 동일한 원인들이 축적, 즉 추가자본의 형성을 촉진한다면, 그리고 매개 추가자본이 추가로동을 움직이여 추가잉여가치를 생산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리윤률의 단순한 저하 그 자체가 불변자본, 따라서 원래의 총자본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한다면 상술한 전체 과정은 조금도 신비로운것이 아니게 된다. 리윤률이 저하되는것과 동시에 리윤량이 증대한다는 가능성을 속여먹기 위하여 어떠한 고의적인 계산상의 외곡에 매달리는가 하는것은 나중에 볼것이다.[106]

이미 말한바와 같이 일반적리윤률의 저하의 경향을 낳는

---

(35) 《우리는 또 비록 자본의 리윤률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축적과 로임의 등귀의 결과로 어떻게 저하한다 하더라도 리윤총액은 증가할것이라고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10만파운드의 축적이 반복될 때마다 리윤률은 20%로부터 19%, 18%, 17%로 저하한다고, 즉 리윤률이 부단히 저하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본의 소유자로 되는 사람들이 받는 리윤총액은 끊임없이 증가될것이라는것, 이 리윤총액은 자본이 20만파운드인 경우에는 10만파운드인 경우보다 클것이며 30만파운드인 경우에는 더욱 클것이며 그렇게 되여 률은 저하하더라도 자본이 증가할 때마다 그것은 증가할것이라는것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루진적증가는 일정한 기간동안에만 확실하다. 즉 20만파운드의 19%는 10만파운드의 20%보다 많고 또 30만파운드의 18%는 20만파운드의 19%보다 많다. 그러나 자본이 축적되여 일정한 거액에 이르고 리윤이 다시 저하하게 되면 그 이상의 축적은 리윤총액을 감소시킬것이다. 즉 축적은 100만파운드에 이르렀고 리윤은 7%이라고 가정하면 리윤총액은 7만파운드일것이다. 이제 이 100만파운드에 10만파운드의 자본이 더 추가되고 리윤이 6%로 저하한다면 자본총액은 100만파운드로부터 110만파운드로 증가하지만 자본소유자들이 받는것은 66,000파운드이고 이것은 4,000파운드가 감소된것일것이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제7장, 매칼러크 편 《리카도저작집》 1852년, 68~69페지). 사실상 여기에서는 자본은 100만으로부터 110만으로, 즉 10% 증가하는데 리윤률은 7로부터 6으로, 즉 $14\frac{2}{7}$% 저하한다는것이 가정되고있다. 그의 눈물은 이때문에 생긴다.[111]

그 동일한 원인이 자본의 가속적축적 따라서 또 자본이 취득하는 잉여로동(잉여가치, 리윤)의 절대량 또는 총량의 증가를 일으킨다. 경쟁에 있어서는, 따라서 경쟁당사자들의 의식에 있어서는 모든것이 전도되여 나타나는데 이 법칙도 역시 그러하다. 즉 외관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 두 현상간의 내적인 필연적인 련관도 또한 그러한것이다. 바로 우에서 말한 비률의 범위에서는 대자본을 움직이는 자본가가 외관상으로 높은 리윤을 얻고있는 소자본가보다 많은 리윤량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경쟁을 극히 피상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어떤 사정하에서는, 례컨대 공황기에 볼수 있는바와 같이 대자본가가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소자본가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자본가는 실제로 이 사정을 리용한다. 즉 소자본가들을 구축하려고 고의로 자기의 리윤률을 인하한다. 특히는 나중에 상세히 언급될 상인자본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현상을 보아도 리윤의 저하는 기업의 확장, 따라서 자본의 확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 그릇된 리해에 대한 진실로 과학적인 표현은 나중에 보여줄 것이다. 이와 류사한 피상적인 견해는 개별적기업부문들이 자유경쟁체제에 종속되여있는가, 독점체제에 종속되여있는가에 따라 그 기업부문들에서 얻는 리윤률들의 비교에서도 나온다. 경쟁당사자들의 머리속에서 형성되고있는것과 같은 아주 천박한 견해가 우리의 로쎄르에게서 발견된다. 그것은 즉 리윤률의 이러한 인하는 《보다 현명하고 보다 인간적》[112]이라는 견해이다. 여기에서는 리윤률의 저하는 자본의 증가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그리고 자본의 증가와 결부된 자본가의 타산, 즉 리윤률은 저하하여도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리윤량은 커질것이라는 타산의 **결과**로서 나타나고있다. 이 모

든것은(A. 스미스의 경우는 제외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언급할것이다[113]) 도대체 일반적리윤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한 몰리해와 가격은 사실상 상품의 현실적가치를 넘는 다소간에 자의적인 리윤부분의 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미숙한 관념에 립각하는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미숙한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내재적법칙들이 경쟁의 내부에서 전도되여 나타나는 그 표현형태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것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초래되는 리윤률의 저하는 리윤량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법칙은,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격의 저락은 그 상품들에 포함되여있고 상품들의 판매에 의하여 실현되는 리윤량의 상대적증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도 표현된다.

생산력의 발전과 그 상응하는 자본구성의 고도화는 부단히 증대하는 생산수단량을 부단히 감소하는 로동량에 의하여 움직이므로 총생산물의 매개 세분되는 부분, 매개 상품 또는 생산된 상품총량중의 매개 일정한 상품량은 보다 적은 산로동을 흡수하며 그리고 또 사용된 고정자본의 마멸분으로서도 소비된 원료 및 보조재료로서도 보다 적은 대상화된 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개 상품은 생산수단에 대상화된 로동과 생산중에 새로 첨가된 로동의 보다 적은 총량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개의 상품가격이 저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리윤량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률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수 있다.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새로 첨가된 로동은 보다 적으나 이 로동의 부지불부분은 지불부분에 비하여 증가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일정한 한계내에서만이다. 개개의 상품에 새로 첨가되는 산로동의 총량이 생산의 발전중에 비상히 급속하게 절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개개의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부지불로동의 량도 비록 상대적으로는 즉 지불부분에 비하여는 얼마나 증가하든지간에 절대적으로는 감소할것이다. 매개 상품당 리윤량은 잉여가치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로동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몹시 감소될것이다. 그리고 이 감소를 완만히 하는것은 리윤률의 저하를 완만히 하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다만 불변자본의 요소들이 저렴하게 되는 경우뿐이며 또 본권 제1편에서 지적한 기타 사정들 즉 잉여가치률이 불변인 경우에 그리고 지어는 그것이 저하하는 경우에도 리윤률을 제고하는 사정뿐이다.

개개의 상품들의 총화가 자본의 총생산물을 구성하는데 이것들의 가격이 저락한다는것은 일정한 량의 로동이 보다 대량의 상품들에 실현되며 따라서 매개 상품은 이전보다 적은 로동을 포함한다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변자본의 일부인 원료 등등의 가격이 등귀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별적경우(례컨대 로동생산력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모든 요소들을 균등하게 저렴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잉여가치률이 증대하여도 리윤률은 저하할것이다. 왜냐하면 1) 새로 첨가된 로동의 총량이 이전보다 감소된다면 그 부지불부분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전의 보다 대량의 총량중에서의 보다 소량의 부지불부분보다 적기 때문이며, 2) 보다 높은 자본구성은 개개의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가치중에서 일반적으로 새로 첨가된 로동을 표시하는 부분이 원료, 보조재료 및 고정자본의 마멸분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비하여 감소된다는 점에서 표현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개의 상품의 가격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비률이 변동하는것, 즉 새로 첨가되는 산로동을 표시하는 가격부분이 감소되고 이전에 이미 대상화된 로동을 표시하는 가격부분이 증가되는것은 개개의 상품의 가격에 있어서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감소가 표현되는 형태이다. 이 감소는 자본의 일정한 크기, 례컨대 100에 있어서 절대적인것과 마찬가지로 재생산된 자본의 세분되는 부분으로서의 매개 상품에 있어서도 절대적이다. 그러나 리윤률은 만약 개개의 상품의 가격요소들에 대하여 계산하기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있는것과는 다르게 표시될것이다. 그것도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이다.

{리윤률은 사용된 총자본에 대하여, 그것도 일정한 기간, 사실상으로는 1년에 대하여 계산된다. 1년간에 생산되고 실현된 잉여가치 또는 리윤의 총자본에 대한 비률을 백분비로 계산한것이 리윤률이다. 따라서 이 리윤률은 1년이 아니라 해당 자본의 회전기간을 계산의 기초로 하는 리윤률과는 반드시 동등하지는 않다. 이 자본이 바로 1년에 1회전하는 경우에만 량자는 일치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1년간에 얻어지는 리윤은 그 1년간에 생산되고 판매된 상품들에 대한 리윤총액에 불과하다. 이제 상품들의 비용가격에 대하여 리윤을 계산한다면 리윤률은 $\frac{p}{k}$ 인데 여기에서 p는 1년간에 실현된 리윤이고 k는 동일한 기간에 생산되여 판매된 상품들의 비용가격의 총액이다. 이 리윤률 $\frac{p}{k}$가 현실적인 리윤률 $\frac{p}{C}$ 즉 리윤량을 총자본으로 제한것과 일치할수 있는것은 k=C인 경우 즉 자본이 정확히 1년

에 1회전하는 경우만이라는것은 명백하다.

한 산업자본의 각이한 세개의 상태를 들어보자.

Ⅰ. 8,000파운드의 자본이 1개당 30실링의 상품을 1년에 5,000개 생산하여 판매하며 따라서 년회전액은 7,500파운드로 된다. 이 자본은 매개 상품에 대하여는 10실링의 리윤을 얻으며 1년간에는 2,500파운드의 리윤을 얻는다. 따라서 매개 상품에는 20실링의 선대자본과 10실링의 리윤이 들어있으며 따라서 1개당 리윤률은 $\frac{10}{20}$=50%이다. 7,500파운드의 회전액에 대하여는 선대자본은 5,000파운드이고 리윤은 2,500파운드이다. 이 회전액에 대한 리윤률 $\frac{p}{k}$도 역시 50%이다. 그런데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하면 리윤률 $\frac{p}{C}=\frac{2,500}{8,000}=31\frac{1}{4}$%이다.

Ⅱ. 자본이 1만파운드로 증대한다고 하자. 로동생산력이 증대하였으므로 이 자본은 1년간에 1만개의 상품을 1개당 20실링의 비용가격으로 생산할수 있다고 하자. 이 자본은 상품을 1개당 4실링의 리윤을 붙이며 따라서 24실링으로 판매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년생산물의 가격은 1만 2,000파운드이며 그중 1만파운드는 선대된 자본이고 2,000파운드는 리윤이다. $\frac{p}{k}$는 1개당 $\frac{4}{20}$이고 년회전액에 있어서는 $\frac{2,000}{10,000}$이며 따라서 두 경우에 다 20%이다. 그리고 총자본은 비용가격의 총액 즉 1만파운드와 같으므로 현실적리윤률 $\frac{p}{C}$도 이번에는 20%이다.

Ⅲ. 로동생산력이 부단히 증대하는 조건하에서 자본도 1만 5,000파운드로 증대하여 이제는 1년간에 3만개의 상품을 1개당 13실링의 비용가격으로 생산하게 되며 그것이 1개당 2

실링의 리윤이 붙어서 즉 15실링으로 판매된다고 하자. 따라서 년회전액은 30,000×15실링=22,500파운드이며 그중 1만 9,500파운드는 선대된 자본이고 3,000파운드는 리윤이다. 따라서 $\frac{P}{k}=\frac{2}{13}=\frac{3,000}{19,500}=15\frac{5}{13}$%이다. 그런데 $\frac{P}{C}$는 $\frac{3,000}{15,000}$=20%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직 Ⅱ의 경우에만, 즉 회전한 자본가치가 총자본과 같은 경우에만 상품 1개당 또는 회전액당 리윤률은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된 리윤률과 같다. Ⅰ의 경우, 즉 회전액이 총자본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품의 비용가격에 대하여 계산된 리윤률은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된 현실적인 리윤률보다 높다. Ⅲ의 경우, 즉 총자본이 회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품의 비용가격에 대하여 계산된 리윤률은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된 현실적인 리윤률보다 낮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것이다.

상업의 실제에서는 회전의 계산이 부정확한것이 보통이다. 실현된 상품가격의 총액이 사용된 총자본의 총액에 달하면 자본은 1회전한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현된 상품의 **비용가격**의 총액이 총자본과 같게 되는 때에야 비로소 **자본**은 완전한 1회전을 끝마칠수 있다.—F. 엥겔스}

이 경우에 또다시 분명한것은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개개의 상품 또는 어떤 임의의 기간에 생산된 상품생산물을 그 자체만으로 고립시켜, 단순한 상품으로서 고찰하지 않고 선대자본의 생산물로서 그리고 이 상품을 생산하는 총자본에 대한 관계에서 고찰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이다.

그런데 리윤률은 생산되여 실현된 잉여가치의 량을 다만 상품속에 재현하는 소비된 자본부분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이 자본부분 플라스 소비되지는 않으나 사용되여 생산에서 계속 복무하는 자본부분으로 측정함으로써 계산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리윤량은 상품 자체에 포함되고있어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실현되는 리윤 또는 잉여가치의 량과 같을수 있을따름이다.

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면 개개의 상품의 가격은 내린다. 개개의 상품속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은 지불로동이나 부지불로동이나 다 보다 적게 된다. 동일한 로동이 례컨대 3배의 생산물을 생산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개개의 생산물에 해당한 로동은 3분의 2가 적어진다. 그리고 리윤은 개개의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이 로동량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개개의 상품에 해당한 리윤량은 감소되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잉여가치률이 제고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것이다. 자본이 이전과 동일한 수의 로동자들을 동등한 착취도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총생산물에 해당한 리윤량은 처음의 리윤량이하로 감소되지는 않는다(이전보다 적은 수의 로동자가 이전보다 높은 착취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럴수 있다). 왜냐하면 개개의 생산물에 해당한 리윤량이 감소되는것과 동일한 비률로 생산물의 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리윤량은 이전과 동일하고 다만 상품의 총량에 대하여 그것이 다르게 분배될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 첨가된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량이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에 분배되는 비률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리윤량이 증대되는것은 사용되는 로동량이 동일하면 부지불잉여로동이 증대하는 경우뿐이며 또 로동의 착취도가 변하지 않으면 로동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뿐이다. 혹은 또 이 량자가 다 같이 작용하는 경우뿐이다. 이 모든 경우—그러나 전제에 따라 가

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증대와 사용되는 총자본량의 증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상품은 이전보다 적은 리윤량을 포함하며 또 리윤률은 개개의 상품에 대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도 감소된다. 일정한 량의 부가로동이 이전보다 많은 상품량으로 표시되며 개개의 상품의 가격은 내린다. 추상적으로 고찰하면 생산력의 제고로 하여 개개의 상품의 가격이 내리며 따라서 이와 같이 보다 저렴한 상품의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리윤률은 이전과 같을수 있다. 례컨대 생산력의 제고가 상품의 모든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균등하게 그리고 동시에 작용하고 그리하여 로동의 생산성이 제고되는 것과 동일한 비률로 상품의 총가격이 내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가격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호상비률이 이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다. 그런데 잉여가치률의 상승과 불변자본 특히 고정자본의 요소들의 현저한 가치감소가 결부되는 경우에는 리윤률은 지어는 증대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본바와 같이 리윤률은 장기간을 두고 보면 저하될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개의 상품의 가격저락만으로써는 결코 리윤률에 관한 결론이 나올수 없다. 모든것은 상품의 생산에 참가하고있는 자본의 총액의 크기에 달린다. 례컨대 1엘레의 직물의 가격이 3실링으로부터 $1\frac{2}{3}$실링으로 저락한다고 하자. 이러한 가격저락이전에는 그 가격속에 $1\frac{2}{3}$ 실링의 방사 등등의 불변자본과 $\frac{2}{3}$실링의 로임과 $\frac{2}{3}$실링의 리윤이 포함되여있었는데 가격저락 이후에는 1실링분의 불변자본과 $\frac{1}{3}$실링의 로임과 $\frac{1}{3}$실링의 리윤이 포함되고있다는것

을 안다하더라도 리윤률이 의연히 동일한가 어떤가 하는것은 모른다. 그것은 선대총자본이 증가하였는가 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그리고 이 총자본이 주어진 기간에 얼마나 많은 엘레를 더 생산하는가에 달려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본성에서 나오는 현상 즉 로동의 생산성이 제고되면 개개의 상품 또는 일정한 분량의 상품의 가격은 저락하고 상품수는 증대하며 개개의 상품에 대한 리윤량과 상품총액에 대한 리윤률은 저하되나 상품총액에 대한 리윤량은 증대한다는 현상—이 현상은 표면상으로는 다만 개개의 상품에 대한 리윤량의 감소, 이 상품의 가격의 저락, 사회의 총자본 또는 개개의 자본가가 생산한 증가된 상품총수에 대한 리윤량의 증대로 표시될따름이다. 그리하여 이 현상은 자본가는 개개의 상품에 첨가하는 리윤을 자발적으로 적게 붙이지만 그가 생산하는 보다 많은 수량의 상품에 의하여 보상되는듯이 해석된다. 이 견해는 양도리윤[114]이라는 관념에 립각한것이며 이 관념은 또 상인자본의 견해에서 끌어낸것이다.

이전에 제1부 제4편 및 제7편에서 본바와 같이[115] 로동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상품량이 증대하여 개개의 상품 자체가 저렴하게 되는것은(이 상품들이 로동력의 가격에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 가격의 저락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상품들에 있어서의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의 비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쟁에서는 모든것이 그릇되게 나타나므로 즉 전도되여 표시되므로 개개의 자본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수 있다. 즉 1) 자기는 상품의 가격을 저락시킴으로써 개개의 상품에 대한 자기의 리윤을 감소시키나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량이

증가되기때문에 보다 큰 리윤을 얻으며, 2) 자기는 개개의 상품의 가격을 확정하고 승법에 의하여 총생산물의 가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런데 원래의 수속은 제법이고 (제1부 제10장, 314/323페지를 보라[116]) 승법은 그러한 제법을 전제로 하는 제2단계로서만 옳은것이다. 속류경제학자는 사실상 경쟁에 사로잡힌 자본가들의 괴상한 견해들을 마치도 보다 리론적이고 보다 개괄적인것 같은 언어로 번역하고 이 견해들을 정당화하려고 애쓸뿐이며 그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117]

사실상 상품의 가격이 내리고 이 저렴하게 된 상품의 증가에 기초한 리윤량의 증대는 리윤량이 증대하는 동시에 리윤률이 저하한다는 법칙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리윤률의 저하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의 등귀와 일치할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연구는 이전에 제1부 314~323페지[116]에서 상대적잉여가치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론술한 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개량되였으나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생산방법을 적용하는 자본가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그러나 자기의 개별적생산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경쟁에 의하여 평균화될 때까지 리윤률이 증대한다. 이 평균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제2의 필요조건인 투하자본의 증대가 나타난다. 자본증가의 정도에 따라 자본가는 이전에 사용한 로동자군의 일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부나 또는 그 이상의 로동자군을 새로운 조건하에서 사용할수 있게 될것이며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또는 보다 많은 리윤량을 생산할수 있게 될것이다.

제 14 장

반대로 작용하는 제 원인

종전의 모든 시기에 비하여 최근 30년간에 사회적로동생산력이 대단히 발전된것을 고려한다면 특히 본래의 기계이외에도 사회적생산과정의 총체에 들어가는 방대한 량의 고정자본을 고려한다면 거기에는 종래의 경제학자들을 괴롭히던 곤난, 즉 리윤률의 저하를 설명한다는 곤난 대신에 정반대의 곤난, 즉 이 저하가 왜 보다 크지 않은가 또는 보다 급속하지 않은가를 설명한다는 곤난이 제기된다. 거기에는 반대로 작용하는 제 영향이 역할을 놀고있는데 그것들이 일반적법칙의 작용을 방해하고 상쇄하며 이 일반적법칙에 다만 하나의 경향이라는 성격만을 부여하는데 그때문에 또 우리는 일반적 리윤률의 저하를 경향적저하라고 부른것이다. 이런 원인들중 가장 일반적인것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Ⅰ. 로동의 착취도의 증대

로동의 착취도, 잉여로동과 잉여가치의 취득은 특히 로동일의 연장과 로동의 강화에 의하여 증대된다. 이 두 점에 대하여서는 제1부에서 절대적잉여가치 및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을 취급할 때 상세히 서술하였다. 로동강화의 계기들중에는 례컨대 한 로동자가 보다 많은 기계를 감시하여야 하는 그런 경우처럼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증가, 따라서 리윤률의 저하를 포함하는것들이 많다. 이 경우에는—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에 복무하는 대다수의 방식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잉여가치률의 증가를 초래하는 동일한 원인들이 사용된 총자본의 주어진 크기로 고찰한 잉여가치량의 감소를 포함할수 있다. 그러나 그밖에 로동강화의 계기들중에는 례컨대 기계속도의 증대와 같이 동일한 시간에 보다 많은 원료를 소비하며 또 고정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기계를 보다 급속히 마멸시키기는 하지만 기계의 가치와 기계를 움직이는 로동의 가격의 비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것도 있다. 그러나 취득되는 잉여로동의 량을 증대시키면서 사용되는 로동력과 그 로동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불변자본과의 비률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불변자본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것은 특히 로동일을 연장시키는 현대산업의 이 발명품이다. 그밖에 또 이미 지적한바이지만—그리고 이것이 리윤률의 경향적저하의 본래의 비밀을 이루는것이지만—상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들은 대체로 한편으로는 주어진 로동량중에서 될수 있는대로 많은 부분을 잉여가치로 전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대자본에 비하여 될수 있는대로 적은 로동을 사용하는것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로동의 착취도를 높일수 있게 하는 그 동일한 원인들이 동일한 총자본으로써 이전과 같은 량의 로동을 착취할수 없게 한다. 이것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인데 이 경향은 한편으로는 잉여가치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자본에 의하여 산생되는 잉여가치량, 따라서 리윤률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또 녀성로동과 아동로동의 대량적채용에 관하여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비록 가족 전체에게 주는 로임총액이 증가하는—이러한 일은 결코 일반적현상은 아니지만—경우에도 한 가족전체가 이전보다 대량의 잉여로동을 자본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농업에서와 같이 사용되는 자본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단순히 방법들을 개선함으로써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을 촉진하는 모든것은 이상과 동일한 작용을 한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변자본을 취업로동력의 지표로서 보는 한에서 사용되는 불변자본은 가변자본에 비하여 증대하지 않으나 생산물량은 사용되는 로동력에 비하여 증대한다. 동일한 것은 로동(그 생산물이 로동자들의 소비로 들어가느냐 또는 불변자본의 요소들로 들어가느냐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의 생산력이 교통상의 장애나 자의적인 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방해로 되는 제한들 즉 일반적으로 온갖 종류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도 이로 말미암아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률이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는지도 모른다. 즉 리윤률의 저하를 방해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부단히 촉진하는 원인들에는 아직 발명들이 보급되기전에 그것들을 리용하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일시적이기는 하나 부단히 반복되여 때로는 이 생산부문에서 때로는 저 생산부문에서 나타나는것과 같은 일반적수준을 초과하는 잉여가치의 증대도 포함되는가 어떤가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어진 크기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두 인수(因数)의 적(积) 즉 잉여가치률에 이 률로 취업하는 로

동자수를 숭한 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잉여가치률이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로동자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로동자수가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잉여가치률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가변자본의 절대량과 잉여가치률의 복합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이미 본바와 같이 상대적잉여가치의 률을 증대시키는 동일한 원인들은 평균적으로는 사용되는 로동력의 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대립적운동이 어떤 일정한 비률에 의하여 진행되는가 하는데 따라 거기에 정도의 차가 생긴다는것, 그리고 리윤률저하의 경향은 특히 로동일의 연장에서 생기는 절대적잉여가치의 률을 높이는데 의하여 약화된다는것은 명백하다.

리윤률의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바와 같이 리윤률의 저하에는 사용되는 총자본량의 증대에 의한 리윤량의 증가가 상응한다.① 사회의 총가변자본을 고찰하면 그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는 생산되는 리윤과 같다. 잉여가치의 절대량과 함께 그것의 률도 증대하였다. 전자가 증대한것은 사회에 의하여 사용되는 로동력의 량이 증대하였기때문이고 후자가 증대한것은 이 로동의 착취도가 증대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크기의, 례컨대 100이라는 자본에 대하여 말하면 잉여가치량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여도 잉여가치률은 증대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 률은 가변자본부분이 가치증식을 하는 비률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그 량은 총자본중에서 가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잉여가치률의 증대는—그것은 특히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이 전혀 증가하지 않거나 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사정하에서도 생기므로—잉여

① 본권 236페지이하를 보라.—편집자

가치량을 규정하고 따라서 또 리윤률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이 요인은 일반적법칙을 폐기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요인때문에 이 일반적법칙은 오히려 경향으로서, 즉 반대로 작용하는 사정들로 말미암아 그것의 절대적인 관철이 저지되고 완만하여지고 약화되는 법칙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잉여가치률을 증대시키는 동일한 원인들이(로동시간의 연장조차도 대공업의 한 결과이다) 주어진 자본에 의하여 사용되는 로동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지므로 이 동일한 원인들은 리윤률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또 이 저하과정을 완만하게 하는 경향을 가진다. 만약 1명의 로동자가 합리적으로는 2명이 아니면 수행할수 없는 로동을 강요당한다면 그리고 이 1명의 로동자가 3명을 대신할수 있는 사정하에서 그렇게 강요당한다면 그 1명의 로동자는 이제는 이전의 2명분의 잉여로동을 제공할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는 잉여가치률은 증대한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3명분은 제공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잉여가치량은 감소된다. 그러나 잉여가치량의 감소는 잉여가치률의 증대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제한된다. 총인구가 증대된 잉여가치률로 고용된다면 인구는 동일하지만 잉여가치량은 증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더욱 증대한다. 그리고 이것은 총자본의 크기에 비한 취업로동자수의 상대적감소와 결부되여있지만 이 감소는 잉여가치률의 증대에 의하여 완화되거나 저지된다.

다른 점으로 넘어가기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싶은것은 자본의 크기가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잉여가치률은 잉여가치량이 감소하더라도 증대할수 있으며 또 그 반대로 될수도 있다는것이다. 잉여가치량은 잉여가치률에 로동자수를 승한것과 같다. 그러나 이 률은 결코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것

이 아니고 가변자본에 대하여서만 계산되는것이며 사실상은 매 1로동일에 대하여서만 계산되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리윤률**은 자본가치의 크기가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잉여가치량**이 역시 증대 또는 감소하지 않고서는 결코 증대 또는 감소할수 없는것이다.

Ⅱ. 로동력의 가치이하로의 로임의 인하

이 사정에 대하여는 여기에서는 경험적사실로서만 지적하여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들수 있는 기타의 많은 사정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일반적분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 저술에서 취급되지 않는 경쟁의 서술에 속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리윤률저하의 경향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Ⅲ. 불변자본의 제 요소의 저렴화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또는 잉여가치률과는 관계없이 리윤률을 증대시키는 원인들에 관하여 본권 제1편에서 서술한것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특히 총자본을 고찰한다면 불변자본의 가치는 그것의 물량과 동일한 비률로는 증가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례컨대 구라파의 한 방적로동자가 현대적공장에서 가공하는 면화량은 구라파의 한 방적로동자가 종전에 방차로써 가공하던 량에 비하면 매우 큰 정도로 증가되였다. 그러나 가공된 면화의 가치는 그 량과 같은 비률로는 증대하지 않는다. 기계나

기타 고정자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의 량을 증대시키는 동일한 발전이 로동생산력의 증대로 하여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불변자본의 가치는 비록 그것이 부단히 증가되고있지만 불변자본의 물질적분량, 즉 동일한 량의 로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생산수단의 물질적분량과 같은 비률로 증가되는것을 방해한다. 개개의 경우에는 불변자본의 가치는 변하지 않거나 또는 지어 저락되여도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량은 증가될수 있다.

상술한것과 관련되고있는것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생기는, 현존자본(즉 그 소재적요소들)의 가치감소이다. 이것도 또한 리윤률의 저하를 저지하는, 끊임없이 작용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비록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는 리윤을 낳는 자본의 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리윤량을 감소시킬수도 있는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리윤률저하의 경향을 산생하는 동일한 원인들이 또 이 경향의 실현을 완화하기도 한다는것이 명백하여진다.

Ⅳ. 상대적과잉인구

상대적과잉인구의 산생은 리윤률의 저하로 나타나는 로동생산력의 발전과 불가분적인것이며 또한 그 발전에 의하여 촉진되는것이다. 상대적과잉인구는 한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현저히 나타난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산부문들에서 자본에 대한 로동의 다소간의 불완전한 종속이 존속하고 게다가 이 불완전한 종

속이 얼핏 보기에는 일반적발전수준에 상응하기보다도 더 오래 가는 원인이다. 이러한것은 고용할수 있는 또는 해고된 임금로동자가 값싸고 많은 결과이며 또 많은 생산부문들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손로동의 기계로동으로의 전화에 대하여 더욱 완강하게 반항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산부문들 특히는 사치품생산부문들이 나타나는데 이 생산부문들은 바로 다른 생산부문들에서의 불변자본의 우세에 의하여 종종 유리되는 그러한 상대적인 과잉인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자체는 또 산로동이라는 요소의 우세에 립각하고있고 점차적으로만 다른 생산부문들과 동일한 발전의 길을 밟는다. 어느 경우에나 다 가변자본은 총자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로임은 평균보다 낮아서 이 생산부문들에서는 잉여가치률도 잉여가치량도 매우 높다. 그런데 일반적리윤률은 특수한 생산부문들에서의 리윤률의 평균화에 의하여 형성되는것이므로 여기에서도 또 리윤률의 저하의 경향을 산생하는 동일한 원인들이 이 경향과 상반되는 대항력을 야기하여 이 경향의 작용을 다소간 마비시킨다.

V. 대외무역

대외무역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불변자본의 요소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가변자본이 전화되는 필요생활수단들이 저렴하게 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리윤률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대외무역은 잉여가치률을 높이고 불변자본의 가치를 감소시키기때문이다. 대외무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작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의 규모를 확대할수 있

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대외무역은 한편으로는 축적을 촉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감소를 촉진하고 따라서 리윤률의 저하를 촉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외무역의 확대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유년기에는 이 생산방식의 기초였지만 그 생산방식의 발전에 따라 이 생산방식의 내적필연성에 의하여, 시장의 부단한 확대에 대한 이 생산방식의 요구에 의하여 이 생산방식자체의 산물로 되였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서술된것과 동일한 이중적인 영향을 보게 된다(리카도는 대외무역의 이 측면을 완전히 간과하였다[118]).

또 하나의 문제—이것은 그 특수성때문에 본래 우리의 연구의 한계밖에 있는것이지만—는 대외무역 특히는 식민지무역에 투하된 자본이 얻는 보다 높은 리윤률로 말미암아 일반적리윤률이 높아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외무역에 투하된 자본이 보다 높은 리윤률을 얻을수 있는것은 첫째로 여기에서는 생산조건들이 락후한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과 경쟁하게 되고 그리하여 보다 선진적인 나라는 자기의 상품을 경쟁국들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더라도 그 상품의 가치이상으로 판매하기때문이다. 보다 선진적인 나라의 로동이 이 경우에 보다 높은 비중을 가진 로동으로서 사용되는 한에서 리윤률은 증대한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보다 높은 로동으로서 지불받지 않는 로동이 그러한것으로서 판매되기때문이다. 동일한 관계는 상품이 거기에로 발송되고 상품이 거기로부터 판매되는 나라에 대하여도 생길수 있다. 즉 그러한 나라는 받는것보다 많은 대상화된 로동을 현물로 주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 그 상품을 자국에서 생산할수 있는것보다 저렴하게 받는 일이 있을수 있다. 그것

은 어떤 새로운 발명이 보급되기전에 그것을 리용하는 공장주가 차기의 경쟁자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도 자기의 상품의 개별적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는것과 같은것이다. 즉 이 공장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로동의 특별히 높은 생산력을 잉여로동으로서 사용하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는 초과리윤을 실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등등에 투하된 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자본이 보다 높은 리윤률을 얻을수 있는것은 거기에서는 발전도가 낮으므로 리윤률은 일반적으로 보다 높기때문이며 또한 노예와 막로동자 등등을 사용함으로써 로동의 착취도도 높기때문이다. 그러면 일정한 부문들에 투하된 자본에 의하여 그와 같이 산생되여 본국으로 송부되는 그러한 비교적 높은 리윤률은 본국에서 독점에 의하여 장애를 받지 않는다면 왜 일반적리윤률의 평균화에 참가하고 따라서 이 일반적리윤률을 상응하게 높여서는 안되는지 전혀 리해할수 없다(36). 이러한것은 자본이 투하되는 부문들이 자유경쟁의 법칙하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리해할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리카도의 념두에 있는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것이다. 외국에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는 화폐로 거기에서 상품들이 구입되여 대충물로서 본국으로 반송된다. 그리하여 이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되는것이므로 이러한것은 기껏해야 가장 유리한 이 생산분야가 다른 생산분야들 이상으로 얻는 일시적인 특별리익을 이룰수 있을따름이라는것이다. 이러한 외관은 화폐형태를 도외시하자마자 없어지고만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나라는 교환에 있어서 보다

(36) 이 점에서는 A. 스미스가 옳고 리카도는 옳지 않다.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의 주장은 리윤의 균등은 리윤의 일반적증대에 의하여 실현될수 있다는것이고 나의 의견은 유리한 기업의 리윤은 급속히 일반적수준으로 떨어질것이라는것이다》(《리카도저작집》 매칼러크 편, 73페지).

적은 량의 로동에 대하여 보다 많은 로동을 받는다. 비록 이 차액, 이 여액은 일반적으로 로동과 자본과의 교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계급에 의하여 취득되게 되지만. 그러므로 식민지나라에서 리윤률이 일반적으로 높기때문에 리윤률이 높은 한에서는 이 높은 리윤률은 식민지나라의 자연조건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낮은 상품가격과 병행할수 있는것이다. 평균화는 일어나지만 이것은 리카도가 생각하듯이 원수준으로의 평균화는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대외무역은 국내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발전시키고 따라서 불변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을 감소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과잉생산을 조성하고 따라서 얼마간 더 지나서는 다시 반대의 작용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분명히 된바와 같이 일반적리윤률의 저하를 초래하는 동일한 원인들이 이 저하를 저지하고 완만하게 하고 부분적으로는 마비시키는 반대의 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원인들은 법칙을 폐기하지 않으나 법칙의 작용을 약화시킨다. 그렇지 않다면 리해될수 없는것은 일반적리윤률의 저하가 아니라 반대로 이 저하의 상대적인 완만성일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칙은 다만 경향으로서 작용할뿐이며 그 작용은 다만 일정한 사정하에서 장기간에 걸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가기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번 서술한 두개의 명제를 다시한번 반복하여보자.

첫째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과정에 상품의 저렴화를 낳는 동일한 과정은 또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사회적자본의 유기적구성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 결과로 리윤률의

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개개의 상품의 상대적비용의 감소, 따라서 또 이 비용중 기계의 마멸분을 포함하는 부분의 감소를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가치의 증대와 동일시하여서는 안된다. 비록 반대로 불변자본의 상대적비용의 감소—불변자본의 소재적요소들의 량은 동등하든가 또는 증가하는 조건하에서의—는 어떤것이나 리윤률을 높이는 즉 점점 적은 비률로 사용되는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의 가치를 상응하게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것이지만.

둘째로, 그 총체가 자본의 생산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들에는 그 상품들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재료나 그 생산에 소비된 로동수단에 대하여 그 상품들에 포함되여있는 산부가로동의 비률이 점점 감소된다는 사정, 따라서 사회적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개개의 상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이 더 적어지므로 개개의 상품들에 대상화되여있는 산부가로동의 량은 점점 감소된다는 사정—이러한 사정은 상품들에 포함되여있는 산로동이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으로 분할되는 비률과는 관계가 없다. 그와 반대이다. 상품들에 포함되여있는 산부가로동의 총량은 감소되더라도 지불부분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데 의하여 부지불부분은 지불부분에 비하여 증대한다. 왜냐하면 한 상품에 있어서의 산부가로동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동일한 생산방식이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를 수반하기때문이다. 리윤률의 경향적저하는 잉여가치률, 따라서 로동의 착취도의 경향적상승과 결부되여 있다. 따라서 리윤률의 저하를 임금률의 상승으로부터 설명하는것은 례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것은 없다. 통계는 리윤률을 형성하는 제 관계를 리해함으로써만 각이한 시기와 각이한 나라들에서

의 임금률에 관한 현실적분석을 할수 있게 된다. 리윤률이 저하하는것은 로동이 보다 비생산적으로 되기때문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으로 되기때문이다. 잉여가치률의 증대와 리윤률의 저하는 량자가 다 로동의 생산성의 증대가 자본주의적으로 표현되는 특수한 형태들에 불과하다.

Ⅵ. 주식자본의 증가

이상의 5개 점에 다음과 같은것을 더 첨가할수 있으나 이것에 대하여는 잠시 더 깊이 연구할수 없다. 가속적인 축적과 병행하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일부는 다만 리자부자본으로서 계산되고 사용될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자본가는 기업자리득을 취득하는데, 자본을 대부하는 매개 자본가는 리자로써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리윤률의 높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리윤률에 있어서는 리윤=리자+각종 리윤+지대이며 리윤이 이 특수한 범주들에 분할되는것은 일반적리윤률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좋기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는것이 아니라 이 자본들은 비록 큰 생산적인 기업들에 투하되여있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공제한후에는 다만 다소간의 리자, 이른바 배당금을 낳을뿐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것이다. 례컨대 철도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자본들은 일반적리윤률의 평균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본들은 평균리윤률보다 낮은 리윤률을 주기때문이다. 만약 이 자본들이 참가한다면 평균리윤률은 훨씬 더 저하될것이다. 리론적으로 보면 이 자본들도 계산에 넣을수 있으며 그

때에는 외관상으로 존재하며 자본가의 행동을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리윤률보다도 낮은 리윤률을 얻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기업들에서는 불변자본은 가변자본에 비하여 가장 크기때문이다.

제 15 장

법칙의 내적모순의 전개

Ⅰ. 개 론

본권 제1편에서 본바와 같이 리윤률은 언제나 잉여가치률을 그 실제의 높이보다 낮게 표현한다. 이제 본바와 같이 상승하는 잉여가치률까지도 저하하는 리윤률로 표현하는 경향을 가진다. 리윤률이 잉여가치률과 같은 경우는 오직 c=0인 경우 즉 총자본이 로임으로 투하되는 경우뿐일것이다. 저하하는 리윤률이 저하하는 잉여가치률을 나타내는것은 오직 불변자본의 가치와 불변자본을 움직이는 로동력의 량간의 비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이든가 또는 이 로동력의 량이 불변자본의 가치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경우뿐이다.

리카도는 리윤률을 고찰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잉여가치률만을 고찰하고있으며 이것도 로동일이 내포적으로 및 외연적으로 불변량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고찰하고있다.[119]

리윤률의 저하와 가속적축적은 량자가 생산력의 발전을 표현하는 한에서는 동일한 과정의 각이한 표현에 불과하다. 축적에 따라 대규모의 로동의 집적이 진행되고 따라서 자본의 구성이 높아지는 한에서는 축적은 또 리윤률의 저하를 촉진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윤률의 저하는 또 소자본가들에 대

한 수탈에 의하여 그리고 최후에 남은 직접적생산자들에게서도 그들에게 아직 수탈할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수탈하는데 의하여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촉진한다. 이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축적도 그 률이 비록 리윤률의 저하에 따라 저하되기는 하지만 량적으로 보면 촉진되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총자본의 증식률 즉 리윤률이 자본주의적생산의 자극인 한에서는(자본의 증식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유일한 목적이기때문에) 리윤률의 저하는 새로운 독립자본의 형성을 완만하게 하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발전을 위협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과잉인구와 아울러 과잉생산, 투기, 공황, 과잉자본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리카도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절대적인 생산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생산방식이 자기 자체에 대하여 제한을 조성한다는것을 느끼고있으며 따라서 이 제한을 생산에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자연에 기인하는것으로(지대론에서) 귀착시키고있다. 그러나 리윤률의 저하에 대한 그들의 공포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부의 생산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한에 봉착한다는 감촉이다. 그리고 이 특유한 제한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제한성과 그것의 오직 력사적이며 일시적인 성격을 증명한다. 그것은 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부의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생산방식은 결코 아니며 도리여 일정한 단계에서는 부의 가일층의 발전과 충돌한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120]

확실히 리카도와 그의 학파는 리자를 포함한 산업리윤만을 고찰하고있다. 그러나 지대도 비록 그 절대량은 증대하고 또 상대적으로 산업리윤에 대한 비률도 증대할수 있는것이지

만 그 률은 저하하는 경향을 가진다(리카도 이전에 지대의 법칙을 전개한 E. 웨스트의 저서[121]를 보라). 사회적총자본 C를 고찰하고 리자와 지대를 공제한후에 남는 산업리윤을 p_1, 리자를 z, 지대를 r이라고 표시하면 $\frac{m}{C}=\frac{p}{C}=\frac{p_1+z+r}{C}=\frac{p_1}{C}+\frac{z}{C}+\frac{r}{C}$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잉여가치총액 m은 부단히 증가하지만 $\frac{m}{C}$은 마찬가지로 부단히 감소되는것이다. 왜냐하면 C가 m보다도 더 급속히 증대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frac{m}{C}=\frac{p}{C}$와 $\frac{p_1}{C}$, $\frac{z}{C}$, $\frac{r}{C}$는 각기 그 자체만으로 보면 부단히 감소되는데 p_1, z, r는 각기 그 자체만으로 보면 부단히 증대할수 있다는것, 또는 p_1은 z에 비하여 또는 r는 p_1에 비하던가 p_1 및 z에 비하여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것은 결코 아무런 모순도 아니다. 총잉여가치 또는 리윤 m=p는 증대하나 동시에 리윤률 $\frac{m}{C}=\frac{p}{C}$는 저하하는 조건하에서는 m=p가 분할되는 부분들인 p_1, z, r의 량적비률은 총액 m에 의하여 주어지는 한계내에서는 임의로 변동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m의 또는 $\frac{m}{C}$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것은 아니다.

p_1, z, r의 호상간의 변동은 각이한 항목들간으로의 m의 각이한 분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frac{m}{C}$ 즉 일반적리윤률은 저하하더라도 $\frac{p_1}{C}$, $\frac{z}{C}$ 또는 $\frac{r}{C}$ 즉 총자본에 대한 개별적산업리윤률, 리자률 및 지대의 비률은 각각 다른것에 비하여 증대할수 있다. 다만 이 삼자의 총계가 $\frac{m}{C}$과 같다는것이 의연

히 조건으로 되여있을따름이다. 리윤률이 50%로부터 25%로 저하한다면, 례컨대 잉여가치률이 100%일 때 자본구성이 50c+50v로부터 75c+25v로 변한다면 첫째 경우에는 1,000의 자본은 500의 리윤을 낳을것이며 둘째 경우에는 4,000의 자본은 1,000의 리윤을 낳을것이다. m 또는 p는 2배로 되였으나 p'는 절반이 저하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50%중에서 20은 리윤, 10은 리자, 20은 지대에 해당하였다면 $\frac{p_1}{C}$=20%, $\frac{z}{C}$=10%, $\frac{r}{C}$=20%였다. 25%로 되여도 이러한 비률들이 동일하다면 $\frac{p_1}{C}$=10%, $\frac{z}{C}$=5%, $\frac{r}{C}$=10%이다. 그런데 이제 $\frac{p_1}{C}$이 8%로, $\frac{z}{C}$가 4%로 저하하면 $\frac{r}{C}$는 13%로 증대할것이다. r의 상대적크기는 p_1 및 z에 비하여 증대할것이나 p'는 의연히 같을것이다. 이 두 전제하에서 p_1, z, r의 합계는 증대할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4배로 증대된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기때문이다. 그리고 원래는 산업리윤(플라스 리자)이 전체 잉여가치를 포함한다는 리카도의 전제[122]는 력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그릇된것이다. 도리여 오직 자본주의적생산의 진보에 따라서만, 1) 전체 리윤은 우선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들의 수중에 들어가서 그 후에 분배되는것이고, 2) 지대는 리윤을 넘는 초과분으로 규착되는것이다.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 다시 지대는 증대하는데 이 지대는 리윤(즉 총자본의 생산물로서 본 잉여가치)의 일부분이고 생산물중 자본가가 차지하는 특수한 부분은 아니다.

필요한 생산수단 즉 충분한 자본축적을 전제로 하면 잉여가치의 창조에는 잉여가치률 따라서 로동의 착취도가 주어

진 경우에는 로동자인구외에는 다른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로동자인구가 주어진 경우에는 로동의 착취도이외의 다른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며 이 잉여가치는 잉여생산물로, 즉 생산된 상품중에서 부지불로동이 대상화되여있는 해당 부분으로 표시된다.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은 이 잉여가치의 생산—그리고 이 잉여가치의 일부분의 자본으로의 재전화 즉 축적은 이 잉여가치생산의 불가결한 일부분을 이룬다—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직접적목적이며 결정적동기[123]라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본주의적생산을 그렇지 않은것으로서 즉 향락을 또는 자본가들을 위한 향락수단의 생산을 직접적목적으로 삼는 생산으로서 묘사하여서는 결코 안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내적본질 전체에 의하여 표현되는 자본주의적생산의 특수한 성격을 전혀 무시하는것으로 된다.

이 잉여가치의 획득은 직접적생산과정을 이루는데 이 직접적생산과정에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상술한 제한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제한도 없다. 착취할수 있는 잉여로동량이 상품에 대상화되여있으면 잉여가치는 생산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잉여가치생산으로는 다만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제1막인 직접적생산과정이 끝날따름이다. 자본은 일정한 량의 부지불로동을 흡수하였다. 리윤률의 저하로 표현되는 과정의 발전에 따라 이와 같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총량은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 이때에 과정의 제2막이 시작된다. 총상품량 즉 총생산물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도,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도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판매되지 않든가 부분적으로밖에 판매되지 않든가 또는 생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밖에 판매되지 않든가 하면 로동자는

물론 착취되였으나 이 착취는 자본가에 있어서는 그대로는 실현되지 않으며 착취도 잉여가치가 전혀 실현되지 않든가 부분적으로밖에 실현되지 않을수 있으며 지어는 자본가의 자본이 부분적으로 상실되든가 전부 상실될수도 있다. 직접적 착취의 조건들과 그 실현의 조건들은 같지 않다. 그것들은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을뿐만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다른것이다. 전자는 사회의 생산력에 의하여서만 제한되여있으며 후자는 각이한 생산부문들사이의 균형관계와 사회의 소비력에 의하여 제한되여있다. 그러나 사회의 소비력은 절대적생산력에 의하여도 절대적소비력에 의하여도 규정되여 있지 않다. 그것은 적대적분배관계에 기초한 소비력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는것이다. 이 분배관계에 의하여 사회의 대중의 소비는 다소간 협소한 한계내에서만 변동될수 있는 최저한으로 축소되는것이다. 그리고 이 소비력은 또 축적욕 즉 자본을 증대하고 확대된 규모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려는 욕망에 의하여 제한되여있다. 이것은 생산방법 자체에 있어서의 부단한 혁명에 의하여, 이 혁명과 부단히 결부된 현존 자본의 가치감소에 의하여, 전반적경쟁전에 의하여, 그리고 몰락의 위협하에서 다만 존속만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산을 개선하고 또 생산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에 의하여 주어지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부단히 확대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시장의 련계들과 그 련계들을 규제하는 조건들도 점점 더 생산자들과는 독립한 자연법칙의 모습을 취하고 점점 더 통제할수 없는것으로 된다. 이 내적 모순은 생산의 외적범위의 확대에 의하여 해결을 보려고 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력은 소비관계들이 립각한 협애한 기초와 더욱더 모순되게 된다. 이 모순에

찬 기초우에서는 자본의 과잉이 인구과잉의 증대와 결부되여 있다는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량자를 결합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량은 증대할것이지만 바로 그때문에 이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조건들과 그것이 실현되는 조건들사이의 모순은 증대할것이기때문이다.

일정한 리윤률이 주어져있다면 리윤량은 항상 선대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축적은 또 이 리윤량중 자본으로 재전화되는 부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리윤 마이나스 자본가가 소비하는 수입과 같으므로 그것은 이 리윤량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될뿐만아니라 자본가가 그것으로써 구매할수 있는 상품들 즉 일부는 자본가의 소비로, 그의 수입으로 들어가며 일부는 그의 불변자본으로 들어가는 상품들의 저렴성에 의하여서도 결정될것이다(로임은 이 경우에 주어진것으로서 전제되고있다).

로동자가 움직이는 자본량, 그리고 그가 그 가치를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유지하며 생산물로 재현하게 하는 자본량은 로동자가 첨가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것이다. 자본량이 1,000이고 첨가된 로동이 100이라면 재생산된 자본은 1,100이다. 자본량이 100이고 첨가된 로동이 20이라면 재생산되는 자본은 120이다. 리윤률은 첫째 경우에는 10%이고 둘째 경우에는 20%이다. 그렇지만 100으로부터는 20으로부터보다 더 많은것이 축적될수 있다. 그리하여 자본의 흐름이 더욱 장성하는것(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자본의 가치감소는 도외시한다) 또는 자본이 축적되는것은 리윤률의 높이에 비례하여서가 아니라 자본이 이미 가지고있는 무게에 비례하여서이다. 높은 리윤률은 그것이 높은 잉여가치률에 립각하고있는 한에서는 로동이 비생산적이지만 로동일이 대단히 긴 경우에는

있을수 있다. 그것이 있을수 있는것은 로동이 비생산적이지만 로동자의 욕망이 대단히 적으며 그때문에 평균임금이 대단히 낮기때문이다. 낮은 임금에는 로동자의 정력의 결핍이 상응할것이다. 그 경우에는 높은 리윤률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은 완만하다. 인구는 증대하지 않고 로동자에 지불되는 임금은 적지만 생산물에 드는 로동시간은 길다.[124]

리윤률이 저하하는것은 로동자가 보다 덜 착취당하기때문이 아니라 사용되는 자본에 비하여 사용되는 로동이 적어지기때문이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리윤률의 저하가 리윤량의 증대와 동시에 진행된다면 년로동생산물중에서 자본가가 자본이라는 범주로(소비된 자본의 보상분으로서) 취득하는 부분은 증대되며 리윤이라는 범주로 취득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여기로부터 목사 챨머즈의 다음과 같은 환상[125]이 나온다. 즉 년생산물중에서 자본가들이 자본으로서 지출하는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이 삼키는 리윤은 더욱더 크다. 그래서 국교회[126]는 자본가들을 도와서 잉여생산물의 큰 부분을 자본화하지 않고 소비하게 한다는것이다. 이 목사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있다. 여하튼 리윤량은 리윤률이 저하하여도 투하되는 자본의 크기에 따라 증가된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집적을 조건짓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생산조건들이 대량의 자본의 사용을 요구하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자본의 집중을 즉 대자본가에 의한 소자본가들의 병탄을, 그리고 소자본가들의 자본상실을 조건으로 한다. 그것은 또 다만 생산자들로부터의 로동조건들의 재분리인데, 그 소자본가들은 아직 이 생산자들에 속한다. 왜냐하면 소자본가들에 있어서는 자기 로동이 아직도 일정한 역할을 놀기때문이다.

자본가의 로동은 일반적으로 그의 자본의 크기에, 즉 그의 자본가인 정도에 반비례한다. 이러한 일방의 로동조건과 타방의 생산자들과의 분리야말로 자본의 개념을 형성하는것이고 그것은 시초축적(제1부 제24장)과 함께 시작되여 그 다음에는 부단한 과정으로서 자본의 축적과 집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소수인의 수중으로의 현존자본의 집중과 다수인의 자본상실(수탈이 이제는 이렇게 모습을 변한다)로서 표현된다. 이러한 과정은 구심력과 함께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들이 부단히 반복하여 집중배제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얼마 안가서 자본주의적생산을 붕괴시키고말것이다.

Ⅱ. 생산의 확대와 가치증식간의 충돌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발전은 이중으로 나타난다. 첫째로는 이미 생산된 생산력의 크기로, 새로운 생산이 진행되는 생산조건들의 가치의 크기와 량의 크기로, 그리고 이미 축적된 생산적자본의 절대적크기로 나타난다. 둘째로는 로임으로 투하되는 자본부분이 총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것으로, 즉 주어진 자본의 재생산과 가치증식에 필요한, 따라서 대량생산에 필요한 산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집적을 전제로 한다.[127]

사용되는 로동력에 관하여서도 생산력의 발전은 역시 이중으로 나타난다. 첫째로는 잉여로동의 증대로 즉 로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필요로동시간의 단축으로 나타난다. 둘째로는 주어진 자본을 움직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동력의 량(로동자수)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 두 운동은 함께 진행될뿐만아니라 호상 제약하며 동일한 법칙이 표현되는 두 현상들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리윤률에 대하여는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리윤의 총량은 잉여가치의 총량과 같으며 리윤률은 $\frac{m}{C}=\frac{\text{잉여가치}}{\text{선대총자본}}$ 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는 총액으로서는 첫째로는 잉여가치률에 의하여, 둘째로는 이 률로 동시에 사용되는 로동량에 의하여 또는 같은 말이지만 가변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요인인 잉여가치률이 상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요인인 로동자수가(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생산력의 발전이 사용되는 로동의 지불부분을 감소시키는 한에서는 그것은 잉여가치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잉여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렇지만 생산력의 발전이 주어진 자본에 의하여 사용되는 로동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한에서는 그것은 잉여가치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잉여가치률에 승하여야 하는 다른 인수를 감소시킨다. 하루에 12시간 로동하는 2명의 로동자는 매 개인이 2시간밖에 로동하지 않는 24명의 로동자가 제공하는것과 동일한 량의 잉여가치를 제공할수 없다. 가령 그 2명의 로동자가 공기만을 마시고 살수 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전혀 로동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하다.[128]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로동의 착취도의 증대에 의하여 로동자수의 감소를 보상하는데는 넘을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보상은 물론 리윤률의 저하를 저지할수는 있어도 그것을 제거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리윤률은 저하하나 리윤량은 사용되는 자본량이 증대함에 따라 증대한다. 리윤률이 주어져있으면 자본이 증대하는 절대량은 자본

의 현존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현존량이 주어져있으면 자본이 증대하는 비률 즉 자본의 증대률은 리윤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산력의 증대(이것은 또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항상 현존자본의 가치감소와 동시에 진행되는것이다①)가 직접적으로 자본의 가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것은 그것이 리윤률의 증대에 의하여 년생산물가치중 자본으로 재전화되는 부분을 증가시키는 경우뿐이다. 로동생산력이 문제인 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 있는것은(이 생산력은 현존자본의 **가치**와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로동생산력의 증대에 의하여 상대적잉여가치가 증대하든가 불변자본의 가치가 감소되든가, 즉 로동력의 재생산으로나 불변자본의 요소들로 들어가는 상품들이 저렴하게 되든가 하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량자는 다 같이 현존자본의 가치감소를 포함하며 량자는 다같이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상대적감소를 수반한다. 량자는 다같이 리윤률의 저하를 일으키며 또 량자는 다같이 그 저하를 완만하게 한다. 그리고 또 리윤률의 상승이 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일으키는 한에서는 그것은 로동자인구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따라서 자본을 비로소 자본으로 만드는 착취재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로동생산력의 발전은 현존자본가치의 증가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일한 교환가치를 표시하는 사용가치의 량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사용가치들은 자본의 물질적실체, 그 물적요소들을 형성하며 그 소재적대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불변자본을,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가변자본을 이루기때문이다. 자본으로 전화될수 있는

---

① 본권 263페지를 보라.—편집자

물건들이 그 교환가치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자본과 동일한 로동으로써 보다 많이 생산된다. 이러한 물건들은 추가로동의 흡수에, 따라서 또 추가잉여로동의 흡수에, 따라서 추가자본의 형성에 기여할수 있다. 자본이 지휘할수 있는 로동량은 자본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자본을 구성하는 원료와 보조재료, 기계와 고정자본의 요소들, 생활수단의 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것들의 가치가 어떠하든 관계없다. 따라서 사용되는 로동량, 따라서 또 잉여로동의 량이 증대함으로 재생산되는 자본의 가치도, 이것에 새로 첨가되는 잉여가치도 증대하는것이다.

그러나 축적과정에 포함되여있는 이 두 계기는 리카도가 취급하고있는것처럼 단순히 정지적으로 병존하는것으로서만 고찰하여서는 안된다. 그 두 계기는 하나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모순은 모순되는 경향들과 현상들로 나타난다. 서로 대항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서로 대항하여 작용한다.

사회적총생산물중에서 자본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의 증가에 의하여 생기는 자극들이 로동자인구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상대적인데 불과한 과잉인구를 조성하는 요인들도 작용한다.

리윤률이 저하되는 동시에 자본의 량은 증대되며 또 이와 함께 현존자본의 가치감소가 진행되는데 이 가치감소는 리윤률의 저하를 저지하고 자본가치의 축적에 촉진적인 자극을 준다.

생산력의 발전과 동시에 자본구성의 고도화, 불변부분에 비한 가변부분의 상대적감소가 발전한다.

이 각이한 영향들은 때로는 주로 공간적으로 서로 나란히 작용하며 때로는 주로 시간적으로 서로 뒤를 이어 작용한

다. 서로 대항적인 제 요인들의 충돌은 주기적으로 공황에서 출로를 찾는다. 공황은 언제나 현존하는 모순들의 일시적인 폭력적해결에 불과하며 교란된 균형을 순간적으로 회복하는 폭력적폭발에 불과하다.

모순은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가치와 이것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와는 관계없이, 또 자본주의적생산이 진행되는 사회적관계들과는 관계없이 생산력의 절대적발전으로의 경향을 포함하고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현존자본가치의 유지와 그 가능한 최고도의 증식(즉 이 가치의 부단히 촉진되는 증대)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이 생산방식의 독특한 성격은 현존자본가치를 이 가치의 가능한 최대한의 증식의 수단으로서 리용하는데 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들은 리윤률의 저하, 현존자본의 가치감소, 이미 생산된 생산력들을 희생으로 하는 로동생산력의 발전을 포함한다.

현존자본의 주기적가치감소는 리윤률의 저하를 저지하고 새로운 자본의 형성에 의하여 자본가치의 축적을 촉진하는데 복무하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내재된 수단인데 이 가치감소는 자본의 류통과정과 재생산과정이 진행되는 주어진 관계들을 교란하고 따라서 생산과정의 돌연한 정체와 공황을 수반한다.

생산력의 발전과 병행하는,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상대적감소는 로동자인구의 증가에 자극을 주지만 그것은 동시에 부단히 인위적인 과잉인구를 조성한다. 자본의 축적은 가치상으로 보면 리윤률의 저하에 의하여 완만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용가치의 축적을 더욱더 촉진하며 이 사용가치의 축적은 또 축적을 가치상으로 보아도 가속적으로 진행시킨다.

자본주의적생산은 그 자체에 내재하는 이런 제한들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자기앞에 이 제한들을 새로, 그리고 더욱 거대한 규모로 나타나게 하는 수단에 의하여서만 이것들을 극복한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진정한 제한**은 **자본 그 자체**이다. 즉 자본과 자본의 자기증식은 생산의 출발점 및 종결점으로서, 동기 및 목적으로서 나타난다는것이며 생산은 **자본**을 위한 생산에 불과하고 그와는 반대로 생산수단이 생산자들의 **사회**의 생활과정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은 아니라는것이다. 생산자대중의 수탈과 빈궁화에 립각하는 자본가치의 유지와 증식은 오직 이러한 제한의 내부에서만 수행될수 있는데 이런 한계들은, 자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산방법들, 그리고 생산의 무제한한 증가, 자기목적으로서의 생산,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무조건적발전을 지향하는 생산방법들과 부단히 모순된다. 수단—사회적생산력의 무조건적발전—은 현존자본의 가치증식이라는 제한된 목적과 부단히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물질적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이 생산력에 상응하는 세계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력사적수단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그의 이 력사적임무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생산관계들간의 부단한 모순이다.[129]

III. 인구과잉에 수반하는 자본과잉

리윤률의 저하에 따라서 로동의 생산적사용을 위하여 개개의 자본가의 수중에 필요한 자본의 최소한은 증대한다. 이

최소한은 로동의 착취일반을 위하여서도, 또 사용되는 로동시간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즉 사용되는 로동시간이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로동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집적도 증대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리윤률이 낮은 대자본은 리윤률이 높은 소자본보다도 더 급속하게 축적하기때문이다. 이 증대하는 집적은 다시 일정한 고도에 달하면 이번에는 리윤률의 새로운 저하를 초래한다. 이리하여 대량의 분산된 소자본들은 모험의 길—투기, 신용사기, 주식사기, 공황—에 들어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소위 자본의 과다라는것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리윤률의 저하가 리윤량에 의하여 보상되지 못하는 자본—새로 형성되는 자본의 어린 가지들은 언제나 이렇다—의 과다[130] 또는 그 자체만으로써는 독자적행동을 할수 없으므로 신용의 형태로 대기업의 지도자들에게 그 처분이 위임되는 그러한 자본들의 과다를 말하는것이다. 이러한 자본과다는 상대적과잉인구를 낳는 동일한 사정들에서 나오며 따라서 이 상대적과잉인구를 보충하는 현상이다. 비록 량자는 서로 대립된 두극에, 즉 한쪽에는 실업자본, 다른 한쪽에는 실업로동자인구가 서있는것이지만.

그러므로 개개의 상품의 과잉생산이 아니라 자본의 과잉생산—자본의 과잉생산은 항상 상품의 과잉생산을 포함하는것이지만—이 의미하는것은 자본의 과잉축적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과잉축적이 무엇인가를 리해하기 위하여는(이것의 보다 상세한 연구는 더 아래에서 진행될것이다) 그것을 절대적인것으로 가정하기만 하면 된다. 자본의 과잉생산은 어떠한 경우에 절대적인것인가? 그것도 이러저러한 생산령역

이나 두세개의 중요한 생산령역에 미치는것이 아니라 그 범위 자체에 있어서 절대적인 즉 전체 생산령역을 포함하는 과잉생산이란 어떠한 경우인가?

자본주의적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자본이 0으로 되면 거기에는 자본의 절대적인 과잉생산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의 목적은 자본의 증식이다. 즉 잉여로동의 취득이며 잉여가치, 리윤의 생산이다. 그러므로 로동자인구에 비하여 자본이 너무 증대하여 이 로동자인구가 제공하는 절대적로동시간이 연장될수도 없고 상대적잉여로동시간이 확장될수도 없게 된다면(상대적잉여로동시간의 확장은, 로동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임금상승의 경향이 강한 경우에는 어쨌든 불가능한것이지만), 따라서 증대한 자본이 증대하기전과 같거나 또는 그것보다 적은 잉여가치량밖에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는 자본의 절대적과잉생산이 생길것이다. 즉 증대한 자본 $C+\Delta C$는 자본 C가 ΔC만큼 증대하기전에 생산한것보다 많지 않은 리윤, 지어는 그보다 더 적은 리윤을 생산할것이다. 두 경우에 다 일반적리윤률의 심한 돌연적저하가 일어날것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저하를 일으키는 자본구성의 변동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한것이 아니라 가변자본의 화폐가치의 증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와 이에 상응하는 필요로동에 대한 잉여로동의 비률의 감소로 인한것일것이다.

현실에서는 사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것이다. 즉 자본의 일부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유휴상태에 놓이게 될것이며(왜냐하면 자본은 여하튼 자기를 증식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이미 기능하고있는 자본을 그 지위에서 구축하지 않으면 안될것이기때문에) 다른 부분은 유휴 또는 반유휴 자본의 압박으로 하여 보다 낮은 리윤률로 증식하게 될것이다. 추가

자본의 일부분은 구자본 대신에 등장하고 그리하여 구자본이 추가자본의 한부분으로 된다는것은 이 경우에 아무래도 좋다. 여하튼 한편에는 구자본액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추가자본액이 있다는것은 변함없을것이다. 리윤률의 저하는 이번에는 리윤량의 절대적감소를 수반할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제하에서는 사용되는 로동력의 량은 증대될수 없으며 잉여가치률도 제고될수 없고 따라서 잉여가치량도 증대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소된 리윤량이 증대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또 취업자본이 원래의 리윤률로 증식하고 따라서 리윤량이 이전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역시 리윤량은 증대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될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리윤률의 저하를 포함하는것이다. 이전에는 1,000이라는 총자본이 100이라는 리윤을 냈으나 그것이 1,500으로 증대한후에도 여전히 리윤을 100밖에 내지 못한다면 둘째 경우에는 1,000의 자본은 다만 $66\frac{2}{3}$의 리윤밖에 내지 못하게 된다. 구자본의 증식은 절대적으로 감소될것이다. 자본 1,000은 새로운 사정하에서는 이전에 $666\frac{2}{3}$라는 자본이 낸것보다 더 많은것을 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구자본의 이러한 사실상의 가치감소는 투쟁없이 일어날수는 없으며 추가자본 ΔC는 투쟁없이 자본으로서 기능할수는 없을것이라는것은 분명하다. 리윤률이 저하되는것은 자본의 과잉생산으로 하여 일어나는 경쟁때문이 아닐것이다. 그런것이 아니라 반대로 리윤률의 저하와 자본의 과잉생산이 동일한 사정에서 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 경쟁전이 시작될것이다. 이전부터 기능하고있는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원자

본을 자기손으로 감소시키지 않기 위하여, 생산부문내부에서 그 원자본이 차지하는 자리를 협착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C중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부분을 다소간에 유휴상태에 두든가 또는 일시적손실을 무릅쓰고라도 추가자본의 유휴화를 새로운 침입자나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경쟁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그 추가자본을 사용할것이다.

⊿C중 새로운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는 부분은 구자본을 회생으로 하여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도할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그 구자본의 일부분을 유휴상태에 두며 구자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자리를 내놓게 하고 구자본 자체는 부분적으로밖에 취업하지 않고있든가 또는 전혀 취업하지 않고있는 추가자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수 없도록 강요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달성될것이다.

구자본이 자본으로서 기능하여야 하고 가치증식을 하여야 하는 한에서는 구자본의 일부는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유휴상태에 놓여있어야 하며 그 자본속성은 유휴상태에 있어야 한다. 어떠한 부분이 이와 같이 유휴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것은 경쟁전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적리윤률의 평균화를 취급한 개소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경쟁은 자본가계급의 우애의 실천으로서 작용하며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은 각자가 투입한 몫에 따라 공동의 획득물을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러나 벌써 리윤의 분배가 아니라 손실의 분배가 문제로 되자마자 각자는 될수 있는대로 자기의 손실분을 적게 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전체 자본가계급에 있어서는 손실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본가들 각자가 얼마만큼 부담하여야 하는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각자가 분담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이제는 힘과 책략의 문제로 되며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쟁은 적대적형제들간의 투쟁으로 전화한다. 그러면 매개 자본가의 리해와 자본가계급간의 리해의 대립이 바로 이전에 이러한 리해의 일치가 경쟁에 의하여 실제로 관철되였던것과 마찬가지로 그 본성을 들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충돌이 다시 제거되고 자본주의적생산의 《건전한》 운동에 상응하는 제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가? 제거의 방식은 제거가 문제로 되고있는 그 충돌의 발현 자체에 이미 포함되여있다. 그 방식은 추가자본 ΔC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치액만큼한 자본이 유휴하든가, 지어는 그 부분적인 파멸까지도 포함하고있다. 하기는 충돌의 설명으로부터 이미 분명한바와 같이① 이 손실은 개개의 개별자본들간에 결코 균등하게 분배되는것이 아니고 경쟁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경쟁전에 있어서는 특수한 우월성 또는 이미 차지하고있는 지위에 따라 손실이 극히 불균등하게, 극히 각이한 형태로 분배되며 그리하여 어떤 자본은 유휴상태에 놓이며 다른 어떤 자본은 소멸되며 제3의 자본은 다만 상대적인 손실을 보든가 다만 일시적인 가치감소를 당하든가 하는것이다.

그러나 여하간에 균형은 다소간의 범위에서의 자본의 유휴에 의하여 지어는 파멸에 의하여도 회복될것이다. 이 유휴와 파멸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의 물질적실체에도 미칠것이다. 즉 고정자본이든 류동자본이든 생산수단의 일부분은 기능하지 않을것이며 자본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것이다. 이미 개시된 생산경영의 일부분도 정지될것이다. 이 점에서는 시간은 모든 생산수단(토지를 제외한)을 침식하고 악화시키는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기능

① 본권 217~220페지를 보라.—편집자

의 정지때문에 생산수단의 훨씬 더 심한 현실적파괴가 일어날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의 주요한 영향은 이러한 생산수단이 생산수단으로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것, 생산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이 길거나 짧은 기간에 파괴된다는 그것일것이다.

주요한 파괴, 게다가 가장 급격한 성격의 파괴는 가치속성을 가진 한에서의 자본에 관하여, 자본**가치**에 관하여 생길것이다. 자본가치중 단지 잉여가치 또는 리윤의 장래의 몫을 받을데 대한 수형의 형태로 있는 부분, 사실상 생산에 대한 각이한 형태들로서의 채무증서에 불과한것은 그것이 타산하고있는 수입의 감소에 따라 곧 가치가 감소된다. 금은의 현금의 일부분은 유휴상태에 놓이게 되고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시장에 있는 상품의 일부분은 그 가격의 엄청난 저하에 의하여서만, 따라서 그것이 표시하는 자본의 가치감소에 의하여서만 그 류통과정과 재생산과정을 수행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정자본의 요소들도 다소간 그 가치가 감소된다. 그뿐만아니라 일정한, 전제된 가격관계가 재생산과정의 조건으로 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은 일반적가격저락에 의하여 정체와 혼란에 빠진다. 이 혼란과 정체는 자본의 발전과 동시에 발전하며 상술한 전제된 가격관계들에 립각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일정한 기한이 붙어있는 지불의무의 련쇄를 도처에서 끊어버리며 그때문에 자본과 동시에 발전한 신용제도의 붕괴가 생기는데 의하여 더욱 격화되고 그리하여 격렬한 급성적공황, 돌연적인 강제가치감소와 그리고 재생산과정의 현실적정체와 혼란을 따라서 재생산의 현실적축소를 일으킨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였을것이다. 생산의 정체는 로동자계급의 일부분을 유휴상태에 놓이게 하였을것

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취업부분으로 하여금 평균수준이하까지로의 로임의 인하를 감수하지 않을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을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자본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조건하에서 상대적 또는 절대적 잉여가치가 증대한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번영기는 로동자들간에서의 결혼을 성행케 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사망률을 감소시켰을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인구의 현실적인 증가를 포함하고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로동하는 인구의 증가를 포함하고있지는 않으나 자본에 대한 로동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치도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로동자들의 수가 증가한것이나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저하와 경쟁전은 매 자본가에게 자극을 주어 새로운 기계, 새로운 개량된 로동방법, 새로운 결합의 사용에 의하여 자기의 총생산물의 개별적가치를 그 일반가치이하로 낮추려고 하였을것이다. 즉 주어진 량의 로동의 생산력을 제고하며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률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로동자들을 유리시키도록, 요컨대 인위적인 과잉인구를 조성하도록 자극하였을것이다. 그리고 또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가치감소 자체는 리윤률의 상승을 포함하는 한 요소로 될것이다. 사용된 불변자본의 량은 가변자본에 비하여 증대하였을것이나 이 량의 가치는 저락할수 있었을것이다. 거기에 나타난 생산의 정체는 그후의 생산확대—자본주의적한계내에서의—를 준비하였을것이다.

그리하여 순환이 새로 진행될것이다. 기능의 정체로 말미암아 가치가 감소된 자본의 일부분은 그 원래의 가치를 회복할것이다. 여하간 확대된 생산조건하에서, 확대된 시장에서, 또 제고된 생산력에 의하여 동일한 악순환이 다시 수행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정한 극단적인 전제하에서도 자본의

절대적과잉생산은 결코 절대적과잉생산일반인것은 아니며 결코 생산수단의 절대적과잉생산인것은 아니다. 그것이 생산수단의 과잉생산인것은 다만, 생산수단이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이며 따라서 생산수단이 자체의 량의 증대에 따라 증대한 가치에 비례하여 이 가치의 증식을 포함하는 어떤 추가적가치를 낳아야 하는 한에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시 과잉생산일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건전한》, 《정상적》인 발전이 요구하는 착취도로써, 즉 적어도 사용되는 자본량의 증대에 따라 리윤량을 증가시키는 착취도로써 따라서 자본의 증대에 비례하는 리윤률의 저하, 또는 자본의 증대보다 더 급속한 리윤률의 저하를 배제하는 착취도로써 로동을 착취할수는 없을것이기때문이다.

자본의 과잉생산은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즉 주어진 착취도로써 로동을 착취하기 위하여 사용될수 있는 생산수단—로동수단 및 생활수단—의 과잉생산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착취도는 일정한 점 이하로 저락되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교란과 정체, 공황, 자본의 파괴를 초래한다. 자본의 이 과잉생산이 다소간 큰 상대적과잉인구를 수반한다는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로동생산력을 제고시키며 상품생산물량을 증가시키며 시장을 확대하며 자본의 축적을 량적으로나 가치상으로나 촉진하며 리윤률을 저락시킨 사정, 이 동일한 사정들이 상대적과잉인구 즉 과잉로동자인구를 낳았고 또 부단히 낳고있으며 이 인구가 과잉자본에 의하여 사용될수 없는것은 그들이 낮은 로동착취도로밖에 사용될수 없기때문이며 또는 적어도 그들이 주어진 착취도하에서 가져올 리윤률이 낮기때문이다.

자본이 외국으로 보내여진다면 그것은 국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적용될수 없기때문인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보다 높은 리윤률로 사용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본은 취업로동자인구에 대하여는, 그리고 그 나라일반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과잉되는 자본이다. 이 자본은 절대적과잉자본으로서 상대적과잉인구와 나란히 존재하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것은 이 량자가 서로 나란히 존재하고 서로 제약하는 하나의 실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축적과 결부된 리윤률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경쟁전을 일으킨다. 리윤량의 증대에 의하여 리윤률의 저하가 보상되는것은 사회의 총자본에 대하여서만, 그리고 지위가 공고한 대자본가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새로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추가자본은 그러한 보상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이제부터 그러한 조건들을 전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리윤률의 저하는 자본가들간에 경쟁전을 일으키는것이며 그 반대인것은 아니다. 이 경쟁전은 물론 로임의 일시적인 상승을 수반하며 또 이때문에 가일층 리윤률이 일시적으로 저하하는것을 수반한다. 동일한것은 상품의 과잉생산, 시장의 공급과잉에도 나타난다.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리윤의 생산이 자본의 목적이므로 그리고 자본은 생산량을 생산규모에 적응시키는 방법들에 의하여서만 이 목적을 달성하는것이고 그 반대의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므로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의 제한된 소비의 규모와 이 내재적인 제한을 부단히 돌파하려는 생산과의 사이에는 부단히 갈등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 여하간 자본은 상품으로써 구성되며 따라서 자본의 과잉생산은 상품의 과잉생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상품의 과잉생산을 부인하는 그 동일한 경제학자들이 자

본의 과잉생산을 인정하는것은 괴이한 현상이다.[131] 일반적과잉생산이 발생하지 않고 각이한 생산부문들간에서의 불균형이 발생하는것[132]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바는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개개의 생산부문들의 균형은 부단한 과정으로서 불균형으로부터 나타난다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총생산의 호상관련은 맹목적인 법칙으로서 생산당사자들에게 강요되는것이고 그들의 집체적 리성에 의하여 파악되고 따라서 지배되는 법칙으로서 생산과정을 그들의 공동통제하에 복종시키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요구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나라들에 적합한 정도로 소비하고 생산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만약 과잉생산은 상대적인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 전체가 바로 상대적인 생산방식에 불과한것이며 그 제한은 절대적인것이 아니나 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있어서는 그 기초우에서는 절대적인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민대중에게 부족되는 그 동일한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할것인가? 그리고 국내의 로동자들에게 평균정도의 필요생활수단을 지불할수 있기 위하여 이 수요를 외국에서, 먼 시장에서 구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 어떻게 가능할것인가? 그것이 가능한것은 오직 이 특수한 자본주의적관련속에서만 과잉생산물은, 그 소유자도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본으로 재전화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비에 사용할수 없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까닭이다. 끝으로 만약 자본가들은 자기들사이에서 상품을 교환하고 소비하면 된다고 말한다면[133]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전체 성격을 망각하고있는것이며 문제는 자본의 증식이고 자본

의 소비가 아니라는것을 망각하고있는것이다. 요컨대 과잉생산이란 명백한 현상들에 대한 모든 반대의견들(이 반대의견들은 이러한 현상의 발생을 막지 못한다)이 귀착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제한들은 결코 **생산일반**의 제한들이 아니며 따라서 이 특수한 생산방식, 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제한이 아니라는것이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모순은 바로 생산**력**의 절대적발전을 지향하는 이 생산방식의 경향에 있으며 이 발전은 자본이 그 아래에서 운동하며 또 그 아래에서만 운동할수 있는 특수한 생산**조건**들과 부단히 충돌하는 것이다.

생활수단이 현존인구에 비하여 너무 많이 생산되는것이 아니다. 반대이다. 대량의 인구가 버젓하게 인간답게 살수 있기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적게 생산된다.

인구중의 로동능력있는 부분을 취업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생산수단이 생산되는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이다. 첫째로는 인구중의 너무 많은 부분이 사실상 로동능력이 없는 부분으로서 생산되는것이며 이 부분은 그들의 처지로 하여 타인의 로동의 착취에 의존하고있든가 또는 어떤 비참한 생산방식하에서만 로동이라고 간주될수 있는 그러한 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는 로동능력있는 인구 전체가 가장 생산적인 제 조건하에서 로동하기에 따라서 로동시간중에 사용되는 불변자본의 량과 효과에 의하여 그들의 절대적로동시간이 단축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생산수단이 생산되는것이다.

그러나 로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리윤률로 기능할수 있기에는 너무 많은 로동수단과 생활수단이 주기적으로 생산된다. 상품들속에 포함되여있는 가치와 그 가치속에 들어있는 잉여가치를, 자본주의적생산에 의하여 규정

되는 분배조건들과 소비관계들 밑에서 실현하여 새로운 자본으로 전화시킬수 있기에는, 즉 이 과정을 부단히 반복되는 폭발없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품들이 생산되는것이다.

부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인 대립적형태에 있는 부로서는 너무 많은 부가 주기적으로 생산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제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타난다.

1. 로동생산력의 발전은 리윤률의 저하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드는데 이 법칙은 일정한 점에서 로동생산력 자체의 발전과 가장 첨예하게 대항하며 따라서 공황에 의하여 부단히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2. 생산의 확대 또는 축소는 사회적욕망에 대한, 사회적으로 발전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생산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부지불로동의 취득에 의하여, 그리고 대상화된 로동일반에 대한 이 부지불로동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는 자본주의적으로 표현하면 리윤에 의하여, 그리고 사용되는 자본에 대한 이 리윤의 비률에 의하여 즉 일정한 높이의 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생산의 확장이 다른 전제하에서라면 도리여 훨씬 불만족한것으로 나타날 정도에서 이미 제한이 나타난다. 자본주의적생산은 욕망의 충족이 정지를 요구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리윤의 생산과 실현이 정지를 요구하는 곳에서 정지한다.

리윤률이 저하하면 한편으로는 개개의 자본가가 개량된 방법 등등에 의하여 자기의 개개의 상품의 개별적가치를 사회적평균가치이하로 저하시키려 하며 그리하여 주어진 시장

가격하에서 초과리윤을 얻으려고 자본의 긴장이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혹이 나타나며 그것은 일반적인 평균수준에 의존하지 않고 이 수준을 넘는 얼마간의 특별리윤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투자, 새로운 모험에 대한 열광적인 탐구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조장된다.

리윤률 즉 자본증식의 비률은 새로운, 독립적으로 형성되고있는 모든 자본의 여린 가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리윤률이 리윤량에 의하여 보상되는 소수의 기성의 대자본들의 수중에서만 자본형성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생산을 활기띠게 하는 불은 꺼지고말것이다. 생산은 잠들고말것이다. 리윤률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추진력이며 오직 리윤을 낳으면서 생산되는것만이 또 그러한것인 한에 있어서만 생산된다. 리윤률의 저하에 대한 영국경제학자들의 걱정은 여기서 생긴다. 그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리카도가 불안을 느끼고있다는것은 바로 자본주의적생산의 조건들에 대한 그의 깊은 리해를 보여주는것이다. 리카도가 비난받는 점, 즉 그가 자본주의적생산을 고찰함에 있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는 랭담하고 오직 생산력의 발전만을—그것이 인간과 자본**가치**를 얼마나 희생시킴으로써 얻어지는것이라 하더라도—안중에 두었다는 그점[134]이 바로 그의 학설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이다. 사회적로동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의 력사적임무이며 존재리유이다. 바로 그것에 의하여 자본은 무의식적으로 보다 높은 생산형태의 물질적조건들을 창조한다. 리카도를 불안하게 만든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자극이며 축적의 조건이고 추진력인 리윤률이 생산 자체의 발전에 의하여 위태롭게 된다는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량적관계가 전부이다. 사실상 이것의 기초에는 보다 깊은 그 무엇이 있는데 그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낄뿐이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제한성, 그 상대성, 즉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생산방식이 아니고 다만 물질적생산조건들의 일정한 제한된 발전시기에 상응하는 하나의 력사적인 생산방식에 불과하다는것이 순 경제학적방식으로 즉 자산계급적립장에서, 자본주의적리해력의 한계내에서, 자본주의적생산의 립장에서 표시되고있다.

Ⅳ. 보 유

로동생산력의 발전은 산업부문들이 다름에 따라 심히 다르며 게다가 정도를 보아 다를뿐만아니라 종종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므로 평균리윤(=잉여가치)량은 가장 선진적산업부문들에서의 생산력발전에 따라 추정될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낮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생산력의 발전은 산업부문들이 다름에 따라 심히 각이한 비례로 진행될뿐만아니라 종종 반대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사정은 비단 경쟁의 무정부성과 자산계급적생산방식의 특성에서만 생기는것은 아니다. 로동의 생산성은 자연조건과도 결부되여있는데 이 자연조건은 생산성—사회적조건에 의존하는 한에서의—이 제고되는것과 같은 비률로 덜 생산적이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이한 분야들에서 대립적운동이 일어나며 여기에서는 진보가 있게 되고 저기에서는 퇴보가 일어난다. 례컨대 모든 원료의 대부분의 량을 좌우하는 계절의 영향이라든가 산림, 탄광, 철광산의 고갈 등등을 생각해보면 알것이다.[135]

불변자본의 류동부분, 즉 원료 등등은 량적으로 보면 로

동의 생산력의 발전에 비례하여 부단히 증대하나 고정자본 즉 건물, 기계, 조명설비 및 난방설비 등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기계는 그 체적이 증대함에 따라 절대적으로는 비싸게 되지만 상대적으로는 싸게 된다. 5명의 로동자가 이전의 10배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하여 그때문에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10배로 되지는 않는다. 불변자본중의 이 부분의 가치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증대하지만 결코 동일한 비례로 증대하지는 않는다. 이미 여러번 강조한바와 같이 리윤률의 저하로 표현되는바와 같은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의 비률과 로동생산성의 발전에 따라 개개의 상품과 그 가격으로 표현되는바와 같은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의 비률은 다른것이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들어가는 과거로동시간과 산로동시간을 포함한 총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생산성이 제고된다는것은 바로 산로동의 몫이 감소되고 과거로동의 몫이 증가되는것, 그러나 그 결과는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총로동량이 감소된다는것, 따라서 과거로동량이 증가하는것보다도 더 많이 산로동량이 감소된다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에 체현된 과거로동—불변자본부분—은 부분적으로는 고정자본의 마멸분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상품속에 전부 들어간 류동불변자본—원료와 보조재료—으로써 구성된다. 원료나 보조재료에서 나오는 가치부분은 로동생산성[의 제고]에 따라 감소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생산성은 이 소재들에 관하여서는 그것들의 가치가 감소되였다는 바로 그 점에 표현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불변자본중의 고정부분이 크게 증가되고 따라서 그 가치중 마멸에 의하여 상품으로 이전하는 가치부분도 대단히 증대한다는것이 바로 로동생산력의 제고의 특징인것이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생산

방법이 생산성을 현실적으로 제고시키는것으로서 립증되기 위하여는 그 생산방법에 의하여 고정자본의 마멸분으로서 개개의 상품에 이전되는 추가적가치부분이 산로동의 감소에 의하여 절약되는 공제가치부분보다 더 적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산방법은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개별적경우에 볼수 있는바와 같이 고정자본의 추가마멸부분이외에 보다 많은 또는 보다 비싼 원료나 보조재료로 인한 추가가치부분이 상품가치의 형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이 생산방법은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산로동의 감소에서 생기는 가치감소분이 모든 가치추가를 메우고도 남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상품으로 들어가는 총로동량의 이러한 감소는 어떠한 사회적조건들밑에서 생산이 진행되는가에 관계없이 로동생산력의 제고의 본질적인 표식인것 같이 보인다.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생산을 예정된 계획에 의하여 규제하는 사회에서는, 지어는 단순한 상품생산에 있어서도 로동의 생산성은 역시 무조건적으로 이 척도에 따라 측정될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어떤 일정한 자본주의적생산부문이 그 상품의 표준품 한개를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고정자본의 마멸분은 1개당 $\frac{1}{2}$실링 또는 마르크. 원료나 보조재료는 $17\frac{1}{2}$실링. 로임은 2실링이며 잉여가치률이 100%인 조건하에서 잉여가치는 2실링. 총가치는 22실링 또는 마르크. 간단히 하기 위하여 이 생산부문에서는 자본은 사회적자본의 평균구성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것의 가

치와 일치하고 자본가의 리윤은 생산된 잉여가치와 일치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상품의 비용가격은 $\frac{1}{2}+17\frac{1}{2}+2=20$실링이며 평균리윤률은 $\frac{2}{20}=10\%$이고 상품 1개당의 생산가격은 그 가치와 같으며 22실링 또는 마르크이다.

지금 어떤 기계가 발명되여 그 기계는 상품 1개당의 생산에 필요한 산로동을 2분의 1로 감소시키거나 그 대신에 고정자본의 마멸분으로써 이루어지는 가치부분을 3배로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마멸분은 $1\frac{1}{2}$실링, 원료와 보조재료는 이전과 같이 $17\frac{1}{2}$실링, 로임은 1실링, 잉여가치는 1실링, 합계 21실링 또는 마르크이다. 상품의 가치는 이제는 1실링 감소되였다. 새로운 기계는 명확히 로동생산력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자본가에게는 사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의 비용가격은 이제는 $1\frac{1}{2}$실링의 마멸분, $17\frac{1}{2}$실링의 원료와 보조재료, 1실링의 로임, 합계는 이전과 같이 20실링이다. 리윤률은 새로운 기계적용에 의하여 인차 변경하지는 않으므로 그는 비용가격보다 10%를 많이 받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이 2실링으로 된다. 그러므로 생산가격은 변함없이 22실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치보다 1실링 높다. 자본주의적조건하에서 생산을 진행하는 사회에서는 상품은 저렴하게 되지 **않았으며** 이 새로운 기계는 아무런 개량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이 새로운 기계를 채용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계를 채용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아직 마멸되지 않은 기계는 완전히 무가치하게 되고 단순한 고철로 되며 따라서 직

접적인 손실을 당할것이므로 자기에게 공상적으로 보이는 이 우둔한짓을 그는 극히 조심한다.

그러므로 자본에 있어서는 로동생산력의 증대의 법칙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자본에 있어서는 이 생산력이 제고되는것은 일반적으로 산로동의 절약이 과거로동의 첨가보다도 더 큰 경우가 아니라 산로동중의 **지불**부분의 절약이 과거로동의 첨가보다도 더 큰 경우뿐인데 그것은 이미 제1부 제13장 제2절 409/398페지[136]에서 간단히 설명한바와 같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하나의 새로운 모순에 빠진다. 이 생산방식의 력사적사명은 인간로동의 생산성의 발전을 사정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다. 이 경우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생산성의 발전에 장애로 되면 그것은 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것으로 된다. 이것으로써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자기가 로쇠하여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져간다는것을 새로 증명할따름이다} (37)

생산력의 제고에 따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적기업의 효과적경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자본의 최소한이 증대되는것은 경쟁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생산설비가 일반적으로 채용되면 소자본들은 앞으로 그 생산에서 배제된다. 오직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기계발명이 있은 초기에만 소자본들도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철도와 같이 불변자본의 비률이 비상히 높은 거대한 기업들은 평균리윤률을 가져오지 않고 단지 그 일부분인 리자만을 가져온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리

---

(37) 이상을 괄호안에 넣은것은 그것이 원고중의 한 주[137]를 고쳐쓴것이지만 일부 설명에서 원문에 있는 재료의 범위를 넘고있기때문이다.—F. 엥겔스

윤률은 더욱더 저하할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큰 자본집합체도 주식형태로 직접적인 활용장소를 찾아낸다.

자본의 증대, 따라서 자본의 축적이 리윤률의 저하를 포함하는것은 다만 이 증대에 따라, 앞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자본의 유기적구성부분들의 비률에 변동이 생기는 한에 있어서이다. 그런데 생산방식의 변혁은 부단히 매일과 같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중의 이러저러한 크거나 또는 작은 부분은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그 구성부분의 주어진 평균비률의 기초우에서 축적을 계속하며 따라서 자본이 증대하여도 아무런 유기적구성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또 리윤률저하의 원인도 생기지 않는다. 옆에서는 이미 새로운 방법들이 채용되고있는데 평온하게 진행되고있는 낡은 생산방법의 기초우에서 부단히 자본이 증대하며 따라서 또 생산이 확장되는것은 또한 어째서 사회의 총자본이 증가하는것과 동일한 비률로 리윤률이 감소되지 않는가 하는 하나의 원인인것이다.

로임으로 투하되는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로동자의 절대수가 증가하는것은 모든 생산부문에서 일어나는것이 아니고 또 모든 생산부문에서 균등하게 일어나는것도 아니다. 농업에서는 산로동의 요소의 감소는 절대적일수 있다.

그밖에 또 임금로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증가한다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요구일따름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있어서는 로동력을 매일 12~15시간 사용하는것이 더는 필요없게 되면 이미 로동력은 과잉하게 된다. 생산력의 발전이 로동자의 절대수를 감소시킨다면 즉 사실상 전 국민으로 하여금 보다 적은 시간

에 그들의 총생산을 수행할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혁명을 일으킬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의 다수를 무용지물로 만들것이기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또한 자본주의적생산의 특수한 제한이 나타나며 또 자본주의적생산이 결코 생산력의 발전과 부의 생산의 절대적형태가 아니며 오히려 일정한 점에 가서는 이 발전과 충돌하게 된다는것이 나타난다. 부분적으로는 이 충돌은 주기적공황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공황은 로동자인구중의 이러저러한 부분이 종래의 취업방식으로는 과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제한은 로동자의 과잉시간이다. 사회가 얻는 절대적과잉시간은 자본주의적생산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 생산력의 발전이 중요한것은 오직 그것이 로동계급의 잉여로동시간을 증가시키는 한에서이며 물질적생산을 위한 로동시간일반을 감소시키기때문이 아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은 대립속에서 운동한다.

어미 본바와 같이 자본축적의 증대는 자본집적의 증대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자본의 권력 즉 사회적생산조건이 현실적생산자들에 대하여 독립화되고 자본가에 있어서 인격화된것이 증대한다. 자본은 점점 자본가를 그 집행자로 하는 사회적력량으로 나타나며 이 권력은 개개인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될수 있는것과는 이미 아무런 가능한 관계도 전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소외되고 독립화된 사회적권력이며 이 권력이 물건으로서 그리고 이 물건에 의하여 실현되는 자본가의 권력으로서 사회에 대립하는것이다. 자본이 형성되는 일반적 사회적 권력과, 이 사회적생산조건들을 지배하는 개개의 자본가들의 사적권력간의 모순은 점점 더 첨예하게 발전하며 이 관계의 해소를 포함하는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생산조건들을 일반적인 공통한 사회적생산조건들로 개편하는 것을 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이 개편은 자본주의적생산하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그리고 이 발전이 진행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138]

어떠한 새로운 생산방법이 아무리 생산적이고 아무리 잉여가치률을 제고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리윤률을 저하시킨다면 그 생산방법을 자진하여 채용하는 자본가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새로운 생산방법은 상품을 저렴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처음에는 상품을 그 생산가격보다 비싸게, 아마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한다. 그는 자기 상품의 생산비와 다른 보다 더 높은 생산비로 생산된 상품들의 시장가격간에서 생기는 차액을 취득한다. 그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 상품들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의 평균이 새로운 생산방법하에서 필요한 로동시간보다 크기때문이다. 그의 생산방법은 사회적생산방법의 평균보다 우월한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그의 생산방법을 보급시켜 그것을 일반적법칙에 복종시킨다. 그리하여 리윤률의 저하가 일어나며—아마도 처음에는 이 생산분야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야들과 균등하게 된다—따라서 그 저하는 자본가들의 의사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더 지적하여야 할것은 그 생산물이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로동자의 소비나 로동자의 생활수단의 생산조건들로 들어가지 않는 분야에서도, 따라서 상품의 저렴화가 상대적잉여가치를 증가시키고 로동력을 저렴하게 할수 없는 생산분야들에서도 동일한 법칙이 지배한다는 사실이다(물론 이 모든 부문들에서의 불변자본의 저렴화는 로

동자의 착취가 변하지 않아도 리윤률을 높일수 있다). 새로운 생산방법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이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수 있다는 증거가 실제로 제시되면 낡은 생산조건들밑에서 사업하는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생산물을 그 완전한 생산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상품의 가치는 이미 저락하였고 그들이 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은 사회적필요로동시간보다 길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이것은 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것이지만—그들도 역시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률이 감소되고있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된다.[139]

기계의 사용이 그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을 저렴하게 하도록 하는 모든 사정들은 항상 개개의 상품에 의하여 흡수되는 로동량의 감소로 귀착된다. 그러나 둘째로는 개개의 상품으로 그 가치가 들어가는 기계의 마멸부분의 감소로 귀착된다. 기계의 마멸이 완만하면 할수록 그 마멸부분은 그만큼 더 많은 상품들에 분배되고 그 기계는 그 재생산기한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더 많은 산로동을 대체한다. 두 경우에 다 가변자본에 비한 고정적불변자본의 량과 가치가 증가한다.

《다른 모든 사정들이 같다면 한 국가가 그 리윤에서 저축하는 능력은 리윤률에 따라 변동하며 리윤률이 높으면 크고 리윤률이 낮으면 작다. 그러나 리윤률이 저하하면 다른 모든 사정들도 동등하지는 않다…낮은 리윤률은 보통 영국에서와 같이 인구에 비하여 급속한 축적률을 수반하며…높은 리윤률은 인구에 비하여 완만한 축적률을 수반한다》. 실례로는 뽈스까, 로씨야, 인도 등등(리챠드 조운즈《정치경제학서론강의》, 1833년 런던판 50~51페지).

죠운즈가 리윤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축적에 대한 유인과 능력은 증가한다고 강조한것은 정당하다.[140] 그것들이 증가하는것은 첫째로는 상대적과잉인구가 증대하기때문이다. 둘째로는 로동생산성의 제고에 따라 동일한 교환가치에 의하여 표시되는 사용가치의 량, 즉 자본의 물적요소들의 량이 증대하기때문이다. 셋째로는 생산부문들이 다양하게 되기때문이다. 넷째로는 신용제도나 주식회사 등등이 발전하고 또 그와 함께 자기 자신이 산업자본가가 되지 않고도 화폐를 자본으로 쉽게 전화할수 있기때문이다. 다섯째로는 이러저러한 욕망과 치부욕이 증가하기때문이다. 여섯째로는 고정자본의 대량투하가 증대하기때문이다. 등등.

자본주의적생산의 세개 주요한 사실:

1) 소수자의 수중에서의 생산수단의 집중. 이때문에 생산수단은 직접적로동자들의 소유로서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와 반대로 생산의 사회적능력으로 전화된다. 비록 처음에는 자본가들의 사적소유로 되지만. 자본가들은 자산계급사회의 수탁자이나 그들은 이 수탁의 모든 과실을 차지한다.

2) 사회적로동으로서의 로동 자체의 조직. 협업, 분업에 의하여, 그리고 로동과 자연과학과의 결합에 의하여.

어느 측면으로 보나 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사적소유와 사적로동을 폐절한다. 비록 대립적형태들에서이지만.[141]

3) 세계시장의 형성.

자본주의적생산방식내부에서 발전하는, 인구에 비한 거대한 생산력과 그리고 동일한 비률로써는 아니지만 인구보다는 훨씬 급속하게 증대하는 자본가치(이것의 물질적실체뿐만 아니라)의 증대는 증대하는 부에 비하여 점점 더 협소하여지

고있는 기초, 그것을 위하여 이 거대한 생산력이 작용하는 기초와 모순되며 또 이 팽창하는 자본의 증식관계와 모순된다. 이때문에 공황이 일어난다.

제 4 편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의 상품거래자본 및 화폐거래 자본으로의 전화 (상인자본)

제 16 장

상품거래자본

상인자본 또는 상업자본은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이라는 두 형태 또는 아종으로 나뉘여진다. 이 형태들을 우리는 이제 자본의 핵심적구조의 분석에 필요한 한에서보다 상세히 특징지을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것이 더욱 필요한것은 현대경제학이 그 최상의 대표자들조차 상업자본을 직접 산업자본과 혼동하고 또 상업자본을 특징짓는 특성을 사실상 전혀 간과하고있기때문이다.[142]

상품자본의 운동은 제2부[143]에서 분석되였다. 사회의 총

자본을 보면 그 일부분은 비록 언제나 다른 요소들로써 구성되고있으며 량적으로도 변동하는것이지만 언제나 화폐로 전화되기 위하여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으며, 다른 일부분은 상품으로 전화되기 위하여 화폐로서 시장에 있다. 사회의 총자본은 부단히 이 전화운동과정에 있으며 부단히 이 형태전환과정에 있다. 류통과정에 있는 자본의 이 기능이 일반적으로 한 특수한 자본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독립화되고 분업에 의하여 한 특수한 자본가부류에게 할당된 기능으로서 고정되는 한에서 상품자본은 상품거래자본 또는 상업자본으로 된다.

운수업이나 분배할수 있는 형태로 있는 상품들의 보관과 분배가 어느정도까지 류통과정내에서 지속하는 생산과정으로서 간주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이미(제2부 제6장 《류통비》 제2절 및 제3절) 론하였다. 상품자본의 류통중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상인자본 또는 상품거래자본의 독특한 기능들과 혼동되며 또 부분적으로는 이 자본의 독특하며 특수한 기능과 실지로 결부되여있다. 비록 사회적분업의 발전에 따라 상인자본의 기능도 순수한 형태로 즉 상술한 실질적기능으로부터 분리되여 그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것이지만. 따라서 자본의 이 특수한 모습의 특이성을 규정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상술한 기능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단지 류통과정에서만 기능하는 자본, 특히는 상품거래자본이 상술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자기의 기능과 결합시키고있는 한에서는 이 자본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상술한 기능들을 떼여버리고 제거한후에 이 자본의 순수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미 본바와 같이[144] 상품자본으로서의 자본의 정재, 그리고 자본이 류통분야내에서, 시장에서 상품자본으로서 통과

하는 변태—구매와 판매로 즉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와 화폐자본의 상품자본으로의 전화로 분해되는 변태—는 산업자본의 재생산과정 따라서 총생산과정의 한 단계를 이루고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산업자본은 류통자본으로서의 그의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는 생산자본으로서의 그 자체와 구별되는것이다. 그것들은 동일한 자본의 특수한, 서로 구별되는 두 존재형태들이다. 사회적총자본의 일부분은 부단히 이 류통자본으로서의 존재형태로 시장에 있으며 이 변태의 과정에 있다. 비록 각 개별적자본에 있어서는 상품자본으로서의 그것의 존재와 상품자본으로서의 그것의 변태는 부단히 소멸하며 또 부단히 갱신되는 하나의 통과점 즉 자본의 생산과정의 련속에 있어서의 하나의 통과단계에 불과하며 따라서 또 시장에 있는 상품자본의 제 요소들은 부단히 상품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오는 동시에 또 마찬가지로 부단히 생산과정의 새로운 생산물로서 상품시장에 반환되는데 의하여 부단히 교체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상품거래자본은 부단히 시장에 있는, 부단히 변태과정에 있는 그리고 언제나 류통분야에 국한되여있는 이 류통자본의 일부분의 전화된 형태에 불과하다. 여기서 일부분이라고 하는것은 상품매매의 일부분은 언제나 직접 산업자본가 자신들사이에서 부단히 진행되기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이 연구에서는 전혀 그만두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은 상인자본의 개념규정, 그 특수한 성질에 대한 인식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때문이며 타방으로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이미 제2부에서 남김없이 서술되여있기때문이다.[145]

상품거래자는 자본가일반으로서는 우선 자기가 선대하는

일정한 화폐액 즉 그가 이것을 x(이 화폐액의 최초의 가치)로부터 x+⊿x(이 화폐액 플라스 그에 대한 리윤)로 전화시키려 하는 화폐액의 대표자로서 시장에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가일반으로서뿐만아니라 특히 상품거래자로서의 그에 대하여서는 자명한 일이지만 그의 자본은 최초에 화폐자본의 형태로 시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는 상품을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상품을 거래하고 상품의 운동을 매개할따름이며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는 우선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화폐자본의 소유자가 아니면 안되기때문이다.

어떤 상품거래자가 3,000파운드를 가지고 그것을 거래자본으로서 증식한다고 하자. 그는 이 3,000파운드를 가지고 례컨대 3만엘레의 아마포를 아마포공장주에게서 엘레당 2실링으로 구매한다. 그는 이 3만엘레의 아마포를 판매한다. 년평균 리윤률이 10%이고 그가 모든 경비를 공제한후에 10%의 년리윤을 얻는다고 하면 그는 년도말에 3,000파운드를 3,300파운드로 전화시키게 된다. 그가 이 리윤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취급하게 될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의 자본의 운동형태만을 고찰하려 한다. 그는 3,000파운드로써 부단히 아마포를 구매하고 부단히 이 아마포를 판매한다. 즉 판매하기 위한 구매라는 이 행동, G—W—G′ 즉 자본이 완전히 류통과정에 구속되여있고 그 자본 자체의 운동과 기능밖에 놓여있는 생산과정이라는 중간단계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 자본의 단순한 형태를 부단히 반복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품거래자본과 산업자본의 단순한 하나의 존재형태로서의 상품자본과의 관계는 어떠한것인가? 아마

포제조업자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상인의 화폐로써 자기의 아마포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의 상품자본의 변태의 제1단계인 화폐로의 전화를 수행하였으며 이제는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는 한 그 화폐를 방사, 석탄, 로임 등등으로 또 타방으로는 자기의 수입의 소비를 위하여 생활수단 등등으로 재전화시킬수 있다. 따라서 수입의 지출을 도외시한다면 재생산과정을 계속할수 있다.

그러나 비록 아마포의 생산자인 그에게 있어서는 아마포의 화폐로의 변태 즉 아마포의 판매는 일어났지만 아마포 자체에 있어서는 아직 그것은 일어나고있지 않다. 아마포는 여전히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 있으며 그 제1의 변태를 수행하는 즉 판매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 아마포에 대하여는 그것의 소유자가 변경되였다는것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포 자체의 사명으로 보면, 과정에 있어서의 그 지위로 보면 그것은 여전히 상품자본이며 판매될 상품이다. 다만 그것은 이전에는 생산자의 수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상인의 수중에 있을따름이다. 아마포를 판매한다는 기능 즉 그 변태의 제1단계를 매개하는 기능은 이전에는 생산자가 아마포를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도 그 생산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으로 되여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상인에 의하여 생산자로부터 인수되여 상인의 특수한 영업으로 전화되고있다.

아마포의 생산자가 3,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3만엘레를 새로 시장에 투입하는데 필요한 중간기간중에 상인은 이전의 3만엘레를 판매할수 없었다고 가정하자. 상인은 3만엘레를 새로 구입할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3만엘레를 창고에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아직 화폐자본으로 재전화되고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체가 나타나고 재생산의 중단이 생긴다. 물론 아마포생산자가 추가적화폐자본을 가지고있어서 그것을 3만엘레의 판매와는 관계없이 생산자본으로 전화시켜 생산과정을 계속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사태를 조금도 변동시키지 못한다. 3만엘레에 선대된 자본이 고찰의 대상으로 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자본의 재생산과정은 필경 중단되여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실지로 명백히 나타나는것은 상인의 활동들은 대체로 생산자의 상품자본을 화폐로 전화하기 위하여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활동, 즉 류통과정 및 재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상품자본의 기능들을 매개하는 활동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독립적인 상인 대신에 생산자의 대리인이 전문적으로 이 판매에나 구입에 종사하여야 한다면 이 관련은 일순간도 은폐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상품거래자본은 전적으로 생산자의 상품자본 즉 화폐로의 전환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며 상품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시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상품자본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이 기능이 생산자의 부대적인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품거래자라는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으로서 나타나며 하나의 특수한 투자에 속하는 영업으로서 독립될따름이다.

그뿐만아니라 이것은 상품거래자본의 특수한 류통형태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상인은 상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한다. G—W—G'이다. 단순상품류통에서는 또는 산업자본의 류통과정으로서 나타나는 상품류통 W'—G—W에 있어서까지도 류통은 매개 화폐쪼각이 두번 손에서 손으로 넘어감으로써 매개된다. 아마포생산자는 자기의 상품인 아마포를

판매하여 그것을 화폐로 전화시킨다. 구매자의 화폐는 아마포생산자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이 동일한 화폐로써 그는 방사, 석탄, 로동 등등을 구매한다. 즉 아마포의 가치를 아마포의 생산요소들을 이루는 상품들로 재전화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화폐를 다시 지출한다. 그가 구매하는 상품은 그가 판매하는것과 동일한 상품이 아니며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아니다. 그는 생산물을 판매하였고 생산수단을 구매하였다. 그런데 상인자본의 운동에 있어서는 사태가 다르다. 아마포상인은 3,000파운드로써 3만엘레의 아마포를 구매한다. 그는 화폐자본(3,000파운드와 그외의 리윤)을 류통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동일한 3만엘레의 아마포를 판매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일한 화폐쪼각이 아니라 동일한 상품이 두번 위치를 바꾼다. 동일한 상품이 판매자의 수중으로부터 구매자의 수중으로 넘어가며 이제는 판매자로 된 그 구매자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구매자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동일한 상품이 두번 판매된다. 그리고 일련의 상인들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여러번 판매될수 있다. 그리고 바로 동일한 상품의 이 반복되는 판매, 두차례의 장소변동에 의하여 비로소 그 상품의 구입에 선대된 화폐를 최초의 구매자가 회수하며 그 화폐가 그에게로 환류되는것이다. 한 경우 W′—G—W에서는 상품이 동일한 화폐의 두차례의 장소변동에 의하여 한 모습으로 양도되고 다른 한 모습으로 취득된다. 다른 경우 G—W—G′에서는 동일한 상품의 두차례의 장소변동에 의하여 선대된 화폐가 다시 류통으로부터 회수된다. 바로 이것에서 나타나는것은 상품은 생산자의 수중으로부터 상인의 수중으로 넘어가더라도 아직은 최종적으로 판매되는것은 아니라는것, 상인은 다만 판매활동을 또는 상품자본의 기능의 매개를 계속

할따름이라는것이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바로 이것에서 나타나는것은, 생산적자본가에 대하여서는 W—G 즉 상품자본이라는 일시적모습으로 있는 그의 자본의 단순한 기능인것이 상인에 대하여서는 G—W—G′ 즉 그가 선대한 화폐자본의 특수한 증식과정이라는것이다. 상품의 변태의 한 단계가 여기에서는 상인에 있어서는 G—W—G′로서, 따라서 특수한 한 종류의 자본의 전개로서 나타난다.

상인은 최종적으로 상품, 즉 아마포를 소비자에게 판다. 이 소비자가 생산적소비자(례컨대 표백업자)이든 아마포를 자기의 개인적사용에 소비하는 개인적소비자이든간에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이것에 의하여 그의 수중에는 선대자본이(리윤과 함께) 돌아와 그는 활동을 새로 시작할수 있다. 만약 아마포를 살 때 화폐는 다만 지불수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상인은 물품을 받은후 6주간 지나서 지불하여도 좋고 또 그가 이 기일이전에 팔아버렸다면 이 경우에 그는 자신이 화폐자본을 선대하지 않아도 아마포생산자에게 지불할수 있을것이다. 만약 그가 아직 아마포를 팔지 못한다면 그는 3,000파운드를, 아마포가 그에게 인도되였을 때 즉시는 아니지만 지불기일에는 선대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리고 만일 시장가격이 저락하였기때문에 그가 아마포를 구입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면 그는 부족분을 자기의 자본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면 상품거래자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의 성격을 부여하는것은 무엇인가?—그 자본은 자신이 판매하는 생산자의 수중에서는 분명히 그의 자본이 재생산과정의 한 특수한 단계에, 즉 류통분야에 머무르는 동안에 취하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서만 나타날뿐이지만.

첫째로, 상품자본이 그 생산자와는 다른 담당자의 수중에서 화폐로의 최종적전화를, 따라서 그 제1의 변태 즉 상품자본으로서의 그것에 속하는 기능을 시장에서 수행한다는것, 그리고 상품자본의 이 기능이 상인의 활동에 의하여 즉 그의 매매에 의하여 매개되며 그리하여 이 활동이 산업자본의 기타 기능들과 분리된, 독립된 특별한 영업으로 형성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적분업의 하나의 특수형태이며 그리하여 본래는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한 특수한 단계—이 경우에는 류통단계—에서 수행되여야 할 기능의 일부분이 생산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류통담당자의 전문적인 기능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결코 이 특수한 업무는 재생산과정중에 있는 산업자본과는 다른 그리고 그에 대하여 독립적인 하나의 특수한 자본의 기능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을것이다. 례컨대 상품거래가 산업자본가의 단순한 판매원이나 기타의 직접적인 대리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은 그러한 독립적인 자본의 기능으로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2의 계기가 더 첨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이 계기는 독립적인 류통담당자인 상인이 화폐자본(자신의것이나 또는 차입한것)을 그의 위치에서 선대함으로써 첨가된다. 재생산과정중에 있는 산업자본에 대하여서는 단지 W—G 즉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 또는 단순한 판매로서 나타나는것이 상인에 대하여서는 G—W—G′로서 즉 동일한 상품의 구매와 판매로서, 따라서 또 화폐자본—구매시에는 그에게서 떠나고 판매에 의하여 그에게로 되돌아가는—의 환류로서 나타난다.

상인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사는데 자본을 선대하는 한에서는 상인에게 있어서 G—W—G로서 표시되는것은 언제나 W

—G 즉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이다. 그것은 언제나 상품자본의 제1의 변태이다. 비록 이 동일한 행위가 어떤 생산자에 있어서는 또는 그 재생산과정에 있는 산업자본에 있어서는 G—W로서, 즉 화폐의 상품(생산수단)으로의 재전화로서 또는 변태의 제2단계로서 나타날수는 있지만. 아마포생산자에게 있어서는 W—G는 제1의 변태이며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였다. 이 행위가 상인에게 있어서는 G—W로서 즉 그의 화폐자본의 상품자본으로의 전화로서 나타난다. 이제 상인이 아마포를 표백업자에게 판다면 이것은 표백업자에게 있어서는 G—W 즉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 또는 그의 상품자본의 제2의 변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인에게 있어서는 W—G를 나타내며 그가 구매한 아마포의 판매를 표시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마포제조업자가 제조한 상품자본은 이제야 비로소 종국적으로 판매된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상인의 이 G—W—G는 다만 두 생산자들간의 W—G를 위한 매개과정을 표시할따름이다. 혹은 또 아마포제조업자가 판매된 아마포의 가치의 일부분으로써 방사거래자로부터 방사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G—W이다. 그러나 방사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W—G이며 방사의 재판매이다. 또 상품자본으로서의 방사 자체에 관하여서는 그것은 다만 방사의 최종적판매에 불과하며 방사는 이 판매로 하여 류통분야에서 소비분야로 넘어가며 그것은 방사의 제1의 변태의 종국적인 종결로서의 W—G이다. 그러므로 상인이 산업자본가로부터 구매하든 또는 산업자본가에게 판매하든간에 상인의 G—W—G 즉 상인자본의 순환은 언제나 재생산되고있는 산업자본의 통과형태로서의 상품자본 그 자체에 관하여서는 단순히 W—G라는것, 단순히 그

제1의 변태의 완성이라는것을 나타낼따름이다. 상인자본의 G—W는 산업자본가에 있어서만 동시에 W—G이지만 산업자본가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자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만 산업자본가의 수중으로부터 류통담당자의 수중으로의 상품자본의 이행에 불과하다. 상인자본의 W—G가 비로소, 기능하고있는 상품자본의 최종적 W—G이다. G—W—G는 다만 동일한 상품자본의 두 W—G, 그 순차적인 두 판매에 불과하며 이 두 판매는 이 상품자본의 최종적판매를 매개할따름이다.

이리하여 상품자본이 상품거래자본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적인 종류의 자본의 모습을 취하는것은 상인이 화폐자본을 선대하기때문인데 이 화폐자본이 자본으로서 증식하며 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은 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상품자본의 변태, 그것의 상품자본으로서의 기능 즉 상품자본의 화폐로의 전화를 매개하는 일에만 종사하기때문이며 이것은 또 상품의 부단한 매매에 의하여 그 매개를 실현하는것이다. 이것이 이 상품거래자본의 전문적인 활동이다. 산업자본의 류통과정을 매개하는 이 활동은 상인이 사용하는 화폐자본의 전문적인 기능이다. 이 기능에 의하여 상인은 자기의 화폐를 화폐자본으로 전화시키고 자기의 G를 G—W—G′로서 나타나게 하며 이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그는 상품자본을 상품거래자본으로 전화시킨다.

상품거래자본은 그것이 상품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한에서는 또 존재하는 동안은—사회적총자본의 재생산과정을 고찰한다면—명백히 산업자본중 아직 시장에 있고 그 변태과정에 있는, 현재 상품자본으로서 존재하며 또 기능하고있는 부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본의 총재생산과정에 관련하여 고찰하여야 할것은 상인에 의하여 선대되

는 **화폐**자본뿐인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구매와 판매에만 사용될 사명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형태 이외의 다른 형태를 결코 취하지 않으며 생산자본의 형태를 결코 취하지 않고 또 항상 자본의 류통분야에 머물러있는 그러한 화폐자본이다.

생산자인 아마포공장주가 자기의 3만엘레를 상인에게 3,000파운드로 판매하였을 때 그는 그렇게 하여 얻은 화폐로 필요한 생산수단을 구매하며 그리하여 그의 자본은 다시 생산과정으로 들어간다. 그의 생산과정은 계속되고 중단없이 진행된다.[146]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가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아마포 자체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포는 아직 최종적으로 화폐로 재전화되지 않았으며 아직 사용가치로서 생산적소비에도 개인적소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마포상인은 이제 시장에서, 아마포생산자가 시초에 거기에서 대표하였던 동일한 상품자본을 대표한다. 아마포생산자에게 있어서는 변태과정이 단축되였으나 그것은 다만 상인의 수중에서 계속 진행되게 되였을따름이다.

만약 아마포생산자가 그의 아마포가 현실적으로 상품이 아니게 될 때까지, 그것이 최후의 구매자인 생산적소비자나 개인적소비자의 수중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면 그의 재생산과정은 중단될것이다. 또는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하여는 그는 자기의 활동들을 제한하여 자기의 아마포의 보다 작은 일부분을 방사, 석탄, 로동 등등, 요컨대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전화시키고 보다 큰 일부분을 화폐준비로서 보유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자본의 일부분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는 동안 다른 부분은 생산과정을 계속

진행할수 있도록 하며 그리하여 이 부분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등장할 때 그 부분은 화폐형태로 환류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의 자본의 이러한 분할은 상인의 개입에 의하여 제거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인의 개입이 없다면 류통자본중 화폐준비의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은 생산자본의 형태로 사용되고있는 부분에 비하여 점점 더 크지 않을수 없을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재생산규모는 제한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을 대신에 이제는 생산자는 자기 자본의 보다 큰 부분을 부단히 본래의 생산과정에 사용하고 보다 작은 부분을 화폐준비로서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제는 사회적자본의 다른 한 부분이 상인자본의 형태로 부단히 류통분야내부에 있다. 이 부분은 언제나 다만 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되고있다. 그러므로 이 자본을 가지고있는 인물이 바뀌였을따름인것처럼 보인다.

만약 상인이 3,000파운드로 아마포를 구매—그것을 다시 판매할 의도로—할 대신에 이 3,000파운드를 자신이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면 사회의 생산자본은 증대될것이다. 그 경우에는 물론 아마포생산자는 자기 자본의 보다 큰 부분을 화폐준비로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또 이제는 산업자본가로 전화된 상인도 역시 마찬가지일것이다. 한편 상인이 여전히 상인으로 남을 경우에는 생산자는 판매에 사용할 시간을 절약하여 생산과정을 감독하는데 돌릴수 있으나 상인은 자기의 전체 시간을 판매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인자본이 필요한 비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것들이 인정되여야 한다.

1) 분업의 결과로 전적으로 매매에만 종사하는 자본(상

품을 구입하기 위한 화폐외에 상인적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로동과 상인의 불변자본인 창고건물, 운수 등등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도 이에 속한다)은 산업자본가가 자기 업무의 상업적인 부분을 전부 자기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비하여 보다 적다는것.

2) 상인이 전문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기때문에 생산자에 있어서 그의 상품이 보다 일찍 화폐로 전화될뿐만아니라 상품자본 그 자체도 생산자의 수중에서보다도 더 빠르게 변태를 수행한다는것.

3) 상인자본 전체를 산업자본과의 관계에서 고찰한다면 상인자본의 1회전은 한 생산분야에 있는 다수 자본들의 회전들뿐만아니라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있는 일련의 자본들의 회전도 표시할수 있다는것. 첫째 경우는 례컨대 아마포상인이 자기의 3,000파운드로 어떤 아마포생산자의 생산물을 구매하고 그것을 다시 판매한후에 동일한 생산자가 동일한 분량의 상품을 다시 시장에 투입하기전에 다른 한 또는 몇몇 아마포 생산자의 생산물을 구매하고 그것을 다시 판매하며 그리하여 동일한 생산분야에 있는 각이한 자본들의 회전들을 매개하는 경우이다. 둘째 경우는 상인이 례컨대 아마포를 판매한후 이번에는 견직물을 구매하며 따라서 다른 생산분야에 있는 자본의 회전을 매개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여야 할것이다. 산업자본의 회전은 류통기간에 의하여서뿐만아니라 생산기간에 의하여도 제한된다. 상인자본의 회전은 그 자본이 일정한 상품종류만을 취급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 산업자본의 회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동일한 생산부문내의 모든 산업자본의 회전에 의하여 제한된다. 상인은 한사람의 아마포를 사서 판후에 이

사람이 다시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전에 다른 사람의 아마포를 사서 팔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상인자본이 한 생산부문에 투하한 몇개의 자본의 각이한 회전들을 차례차례로 매개할수 있다. 따라서 상인자본의 회전은 하나의 산업자본의 몇개의 회전들과 동일한것이 아니며, 따라서 또 이 하나의 산업자본가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였을 화폐준비를 대신할뿐이 아니다. 한 생산분야에서의 상인자본의 회전은 물론 그 분야의 총적생산에 의하여 제한되여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분야의 개개의 자본의 생산의 한계 또는 회전기간, 즉 생산기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의 회전기간에 의하여 제한되여있지는 않다. A가 어떤 상품을 제공하고 이 상품의 생산에 3개월이 걸린다고 하자. 상인은 이 상품을 례컨대 1개월간에 사서 판후에 또 다른 한 생산자의 동일한 생산물을 사서 팔수 있다. 혹은 또 례컨대 어떤 차지농업가의 곡물을 판후 그는 동일한 화폐로써 제2의 차지농업가의 곡물을 사서 팔수 있다 등등. 그의 자본의 회전은 그가 일정한 기간 례컨대 1년간에 차례차례로 사서 팔수 있는 곡물량에 의하여 제한되여있다. 한편 차지농업가의 자본의 회전은 류통기간을 도외시하면 1년간에 걸치는 생산기간에 의하여 제한되여있다.

그런데 동일한 상인자본의 회전은 각이한 생산부문들에 있는 자본들의 회전도 매개할수 있다.

동일한 상인자본이 각이한 회전들에서 각이한 상품자본들을 순차적으로 화폐로 전화하는데 복무하는 한에서는 즉 그 상품자본들을 차례차례로 사서 파는 한에서는, 즉 이 상인자본은 화폐일반이 일정한 기간에 몇번이나 류통하는데 의하여 여러가지 상품에 대하여 수행하는것과 같은 기능을 화

폐자본으로서 상품자본에 대하여 수행하는것이다.

상인자본의 회전은 같은 크기의 한 산업자본의 회전 또는 1회의 재생산과 동일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동일한 생산분야에 있는것이든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있는것이든 간에 일련의 그러한 자본들의 회전 총계와 같다. 상인자본이 급속히 회전하면 할수록 총화폐자본중 상인자본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그만큼 더 작으며 상인자본이 완만하게 회전하면 할수록 그 부분은 그만큼 더 크다. 생산이 발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일반적으로 상인자본의 총액은 류통에 투입되는 상품총액에 비하여 그만큼 더 크나 절대적으로는 또는 보다 발전된 상태에 비하여서는 그만큼 더 작다.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덜 발전된 상태에서는 본래의 화폐자본의 대부분이 상인의 수중에 있으며 그리하여 상인의 재산은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말하면 화폐재산을 형성한다.[147]

상인이 선대하는 화폐자본의 류통속도는 다음과 같은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생산과정이 갱신되고 각이한 생산과정들이 서로 맞물리는 속도, 2. 소비의 속도.

상인자본은 자기의 전체 가치량만큼 우선 상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한다는 상술한 회전만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상인은 이 두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는것이다. 그 경우에 그의 자본은 두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한 부분은 상품자본으로써 구성되며 다른 부분은 화폐자본으로써 구성된다. 여기서는 그는 상품을 구매하고 그의 화폐를 상품으로 전화시킨다. 저기에서는 그는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자본의 다른 부분을 화폐로 전화시킨다. 한편에서는 그의 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 그에게로 환류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는 상품자본이 그에게로 흘러온다. 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은 그만큼 더 작다. 이 부분들은 서로 컸다 작았다 하며 또 서로 균등하게 된다.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사용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사용 및 이에 기초하여 성장하는 신용제도가 결부되면 상인자본중의 화폐자본부분은 이 상인자본에 의하여 수행되는 거래량에 비하여 더욱더 감소된다. 내가 1,000파운드의 포도주를 3개월후 지불로 구매하여 3개월이 경과하기전에 이 포도주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면 이 거래에 한푼도 선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 상인자본의 역할을 하고있는 화폐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의 형태에 있는 산업자본 그 자체, 화폐형태로 환류하고있는 산업자본 그 자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것도 역시 매우 명백하다(1,000파운드의 상품을 3개월후 지불로 판 생산자가 그것에 대한 수형 즉 채무증서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받을수 있다는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으며 또 상품거래자의 자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만약 그사이에 상품의 시장가격이 $\frac{1}{10}$이 저락한다면 이 상인은 리윤을 전혀 얻지 못할뿐만아니라 3,000파운드 대신에 2,700파운드밖에 회수못할것이다. 그는 지불하기 위하여 300파운드를 보태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 300파운드는 가격차를 보상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기능할따름일것이다. 그러나 생산자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만약 생산자 자신이 저락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그도 역시 300파운드의 손실을 볼것이다. 그리고 준비자본이 없이는 동일한 규모로 생산을 다시 시작할수는 없을것이다.

아마포거래자는 3,000파운드의 아마포를 제조업자에게서

구매한다. 제조업자는 이 3,000파운드중에서 레컨대 2,000파운드를 방사의 구매를 위하여 지불한다. 그는 이 방사를 방사거래자에게서 구매한다. 제조업자가 방사거래자에게 지불하는 화폐는 아마포거래자의 화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포거래자는 그 화폐 대신에 이 금액만큼한 상품을 받았기때문이다. 그것은 제조업자 자신의 자본의 화폐형태이다. 지금 이 2,000파운드는 방사거래자의 수중에서는 환류한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2,000파운드가 어느정도로 아마포가 벗어버린 화폐형태 및 방사가 취한 화폐형태로서의 이 2,000파운드와 구별되는것으로서의 환류한 화폐자본인가? 방사거래자가 외상으로 구매하고 지불기한이 경과하기전에 현금으로 판매하였다면 이 2,000파운드중에는 산업자본자신이 그 순환과정에서 취하는 화폐형태와 구별되는것으로서의 상인자본은 한푼도 포함되여있지 않다. 상품거래자본은 이러한 상품자본 또는 화폐자본의 모습으로 상인의 수중에 있는 산업자본의 단순한 형태가 아닌 한에서는 화폐자본중 상인 자신의것으로서 상품매매에 운용되는 부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생산을 위하여 선대된 자본중 화폐준비, 구매수단으로서 언제나 산업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으며 또 언제나 그들의 화폐자본으로서 류통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을 축소된 규모에서 표시한다. 이 부분은 이제는 축소되여 상인적 자본가의 수중에 있으며 그러한것으로서 언제나 류통과정에서 기능한다. 그것은 총자본중 수입으로서 소비해버린 부분을 도외시하면 재생산과정의 부단한 진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구매수단으로서 시장에서 류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재생산과정이 급속하면 할수록 또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 즉 신용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총

자본에 대한 비률은 그만큼 작아진다.(38)

상인자본은 류통분야내에서 기능하는 자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류통과정은 총재생산과정의 한 단계이다. 그러나 류통과정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따라서 또 아무런 잉여가치도 생산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가치량의 형태변화들이 진행될따름이다. 사실상 상품의 변태가 진행될따름인데 이 변태 자체는 가치창조나 가치변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생산된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잉여가치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잉여가치가 이미 그 상품속에 존재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또 제2의 행위인 화폐자본과 상품(생산요소들)과의 재교환에 있어서 구매자에 의하여 아무런 잉여가치도 실현되지 않으며 여기서는 다만 화폐와 생산수단 및 로동력과의 교환에 의하

(38) 상인자본을 생산자본으로서 분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램지는 상인자본을 운수업과 혼동하고 상업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상품의 운수》라고 부르고있다(《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9페지). 이 혼동은 이미 베리(《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찰》 제4절[32페지])와 쌔(《정치경제학개론》 제1권 14~15페지)에게서 볼수 있다.—S. P. 뉴먼은 그의 《정치경제학요강》(앤도우 및 뉴욕, 1835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사회의 현재의 경제제도하에서는 상인이 하는 일, 즉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서서 전자에게 자본을 선대하고 그 대신에 생산물을 받으며 다음에 이 생산물을 후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에 자본을 회수하는 일은 그 자체가 사회의 경제적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거래인 동시에 그것에 의하여 취급되는 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하는 거래이다》(174페지). 이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인의 개입에 의하여 화폐와 시간을 절약한다. 이 봉사에는 자본과 로동의 선대가 필요되며 보수가 지불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하기때문인데 그것은 동일한 생산물이더라도 소비자의 수중에서는 생산자의 수중에서보다 값이 더 있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쌔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상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의 생산행위》(175페지)로서 나타나고있다. 뉴먼의 이 견해는 근본적으로 그릇된것이다. 상품의 **사용가치**가 생산자의 수중에서보다 소비자의 수중에서 더 큰것이다. 왜냐하면 사용가치는 대체로 소비자의 수중에서 비로소 실현되기때문이다. 사실 상품의 사용가치는 그 상품이 소비분야로 넘어가서야 비로소 실현되고 기능을 시작하는것이기때문이다. 생산자의 수중에서는 그 사용가치는 다만 잠세적인 형태로 존재할따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상품에 대하여 두번 지불하지는 않는다. 즉 우선 상품의 교환가치에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그것의 사용가치에 지불하지는 않는다. 나는 상품의 교환가치에 지불하고 그 대신에 그 사용가치를 취득한다. 그리고 상품이 생산자나 또는 중간상인의 수중으로부터 소비자의 수중으로 이전되는데 의하여서는 교환가치는 조금도 증가되지 않는것이다.[148]

여 잉여가치의 생산이 준비될따름이다. 도리여 이 변태가 류통기간—자본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며 따라서 또 아무런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 기간—을 요하는 한에서는 이 기간은 가치창조에 대한 제한으로 되며 또 리윤률로 나타나는 잉여가치는 바로 류통기간의 길이에 반비례할것이다. 그러므로 상인자본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즉 직접적으로는 창조하지 않는다. 상인자본이 류통기간의 단축에 기여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간접적으로 산업자본가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증가를 도울수 있다. 상인자본이 시장의 확장을 돕고 자본가들간에서의 분업을 매개하고 따라서 자본으로 하여금 보다 큰 규모로 작업할수 있게 하는 한에서는 그 기능은 산업자본의 생산성과 그 축적을 촉진한다. 상인자본이 류통기간을 단축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잉여가치의 선대자본에 대한 비률 즉 리윤률을 제고시킨다. 상인자본이 자본중 보다 적은 부분을 화폐자본으로서 류통분야에 구속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자본중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을 증대시킨다.

제 17 장

상업리윤

제2부에서 본바와 같이[149] 류통분야에서의 자본의 순수한 기능들—산업자본가가 우선 자기의 상품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 가치를 상품의 생산요소들로 재전화시키기 위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활동, 상품자본의 변태 W′—G—W를 매개하는 활동 즉 판매와 구매라는 행위—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낳지 않는다. 도리여 이 활동들을 위하여 객관적으로는 상품에 관하여, 주관적으로는 자본가에 관하여 필요한 시간은 가치와 잉여가치의 형성에 대한 한계를 조성한다는것이 설명되였다. 상품자본의 일부분이 상품거래자본의 모습을 취한다든가 또는 상품자본의 변태를 매개하는 활동들이 어떤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의 특수한 업무로서 또는 화폐자본의 한 부분의 전문적인 기능으로서 나타난다든가 하는것에 의하여서는 상품자본 그 자체의 변태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물론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상품의 판매와 구매—그리고 상품자본의 변태 W′—G—W는 요컨대 이것에 귀착한다—가 산업자본가자신에 의하여 수행되여도 그것은 결코 가치나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산업자본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여도

가치나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될수는 없다. 그리고 또 사회적총자본중 재생산과정이 류통과정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고 련속적인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부단히 화폐자본으로서 리용될수 있는것이 아니면 안되는 부분인 이 화폐자본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업자본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부류의 자본가에 의하여 동일한 기능들의 수행을 위하여 부단히 류통에 투입되게 되는 경우에도 가치나 잉여가치를 창조한다는 성질을 얻을수는 없다. 상인자본이 어느 정도까지 간접적으로 생산적일수 있는가 하는것은 이미 언급하였으며 또 나중에 더 상세히 론할것이다.

따라서 상품거래자본은—이것과 결부되여있을수 있는 보관, 발송, 운수, 분류, 선별과 같은 일체 이질적인 기능들을 제쳐놓고 판매하기 위한 구매라는 그 진정한 기능에만 국한한다면—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고 다만 그것의 실현을 매개하며 그와 동시에 상품들의 현실적인 교환, 어떤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상품들의 이행, 사회적물질변환을 매개할따름이다. 그렇지만 산업자본의 류통단계는 생산과 마찬가지로 재생산과정의 한 단계를 이루므로 류통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자본도 각이한 생산부문들에서 기능하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년평균리윤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상인자본이 산업자본보다 더 높은 백분률의 평균리윤을 가져온다면 산업자본의 일부분은 상인자본으로 전화될것이다. 만일 상인자본이 보다 낮은 평균리윤을 가져온다면 반대의 과정이 일어날것이다. 상인자본의 일부분은 산업자본으로 전화될것이다. 상인자본보다 더 쉽게 그 용도, 그 기능을 변경할수 있는 자본은 없다.

상인자본 자체는 아무런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평균리윤의 형태로 상인자본의 수중에 들어가는 잉여가치는 분명히 전체 생산적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일부분인것이다. 그러나 이제 문제로 되는것은 상인자본은 생산적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 또는 리윤중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을 어떻게 끌어오는가 하는것이다.[150]

상업리윤은 단순한 추가이며 상품의 가치를 넘는 상품의 가격의 명목상의 인상이라는것은 외관에 불과하다.

상인은 그의 리윤을 그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서만 끌어낼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며 그가 자기의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얻는 이 리윤은 그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과 같아야 하며 구매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과 같아야 한다는것은 더욱 명백하다.

상품을 구매하여서부터 판매하기까지의 추가비용(류통비)이 상품에 들어갈수도 있으며 또 들어가지 않을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구매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은 단지 리윤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연구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선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산업자본가에 있어서는 그의 상품의 판매가격과 구매가격과의 차액은 그 상품들의 생산가격과 그 비용가격과의 차액과 같으며 또는 사회적총자본을 고찰한다면 상품의 가치와 자본가에 있어서의 그것의 비용가격과의 차액과 같으며 이 차액은 또 상품에 대상화되여있는 로동의 총량이 상품에 대상화되여있는 지불로동의 량을 넘는 차액에 귀착된다. 산업자본가에 의하여 구매된 상품이 판매될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시 시장에 투입되기전에 그러한 상품은 생산과정을 통과하며 이 생산과정에서 후에 리윤으로서 실현되여야 할 상품의

가격구성부분이 비로소 생산된다. 그러나 상품거래업자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상품이 그의 수중에 있는것은 오직 상품이 그 류통과정에 있는 동안뿐이다. 그는 생산자본가에 의하여 시작된 상품의 판매, 그 가격의 실현을 계속할따름이며 따라서 상품이 새로운 잉여가치를 흡수할수 있는 중간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 산업자본가는 류통에서는 그전에 이미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리윤을 실현할뿐인데 상인은 그와는 반대로 류통에서 또 류통을 통하여 자기의 리윤을 실현할뿐만 아니라 비로소 리윤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서만 가능한것 같이 보인다. 즉 산업자본가가 상인에게 생산가격으로 판 상품 또는 총상품자본을 고찰하면 그 가치대로 판 상품을 상인이 그 생산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그 가격에 명목상의 추가를 가하며 따라서 총상품자본을 고찰하면 상품들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팔며 그 실질가치를 넘는 명목가치의 이 초과분을 취득하는것,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을 그 원 값보다 비싸게 파는데 의하여서이다.

이러한 추가의 형태는 매우 쉽게 리해할수 있다. 례컨대 1엘레의 아마포가 2실링이라고 하자. 내가 그것을 다시 판매함으로써 10%의 리윤을 얻으려고 하면 나는 그 가격에 $\frac{1}{10}$을 추가하여야 한다. 즉 1엘레를 2실링 $2\frac{2}{5}$펜스로 팔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현실적생산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은 $2\frac{2}{5}$펜스이며 이것은 2실링에 대하여 10%의 리윤이다. 이 경우에는 내가 실지로 구매자에게 파는 1엘레의 가격은 현실적으로는 $1\frac{1}{10}$엘레의 가격이다. 또는 결국 같은것으로 되지만 바로 내

가 구매자에게 $\frac{10}{11}$엘레만을 2실링으로 팔고 $\frac{1}{11}$엘레는 자기에게 남겨두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상 1엘레의 가격을 2실링 $2\frac{2}{5}$펜스로 계산한다면 나는 $2\frac{2}{5}$펜스로 $\frac{1}{11}$엘레를 되살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상품의 명목적인 가격인상에 의하여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분배에 참여하기 위한 두름길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상품의 가격인상에 의한 상업리윤의 실현이 우선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실상 리윤은 상품가격의 명목적인상에서 나온다는 즉 상품을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는데서 나온다는 전체 관념은 상업자본의 립장에서 발생한것이다.

그러나 좀더 상세히 고찰하면 이것은 단순한 외관이라는 것을 곧 알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지배적인 것으로 전제하면 상업리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여기에서 문제로 하는것은 평균만이고 개개의 경우는 아니다). 상품거래업자가 그의 상품을 생산가격보다 례컨대 10% 더 비싸게 파는데 의하여서만 그가 그의 상품에 대하여 10%의 리윤을 실현할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상품의 생산자 즉 산업자본가(그는 산업자본의 인격화로서 외계에 대하여는 언제나 《생산자》로서 나타난다)가 그 상품을 상인에게 생산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가정하였기때문이다. 만약 상품거래업자가 지불하는 그 상품의 구매가격이 그 생산가격과 같고 결국은 그 가치와 같고 따라서 상품의 생산가격, 결국은 가치가 상인에게 있어서의 비용가격을 표시한다면 사실상

상인의 구매가격을 넘는 그의 판매가격의 초과분—이 차액만이 그의 리윤의 원천이다—은 그 상품의 생산가격을 넘는 그 상업가격의 초과분이 아닐수 없으며 결국은 상인은 모든 상품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산업자본가는 상인에게 상품을 생산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가정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렇다기보다 이 가정에서는 무엇이 전제로 되였는가? 그것은 상업자본(여기서 문제로 하는것은 단지 상품거래자본으로서의 상업자본뿐이다)은 일반적리윤률의 형성에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일반적리윤률의 론술에 있어서는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 리유는 첫째로는 상업자본 그 자체가 그때에는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기때문이며 둘째로는 평균리윤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이 우선 각이한 생산분야에 있는 상업자본가들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생산되는 리윤 또는 잉여가치의 평균화로서 전개되여야 하였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상인자본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로 하는것은 리윤의 생산에는 참가하지 않고 그 분배에 참가하는 자본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의 론술을 보충할 필요가 있게 된다.

1년간에 선대되는 산업자본총액은 720c+180v=900(단위는 례컨대 100만파운드), m'는 100%라고 하자. 그러면 생산물은 720c+180v+180m이다. 다음에 이 생산물 또는 생산된 상품자본을 W라고 하면 그 가치 또는 생산가격(량자는 상품의 총계에 대하여서는 일치하므로)은 1,080이며 총자본 900에 대한 리윤률은 20%이다. 이 20%는 우에서 전개한바에 의하면 평균리윤률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잉여가치는 특수한 구성을 가진 이러저러한 자본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평균구성을 가진 총산업자본에 대하여 계산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W는 1,080,

리윤률은 20%이다. 그런데 이제 이 900파운드의 산업자본외에 100파운드의 상인자본이 더 첨가되고 이것이 그 크기에 비례하여 산업자본과 동일한 리윤몫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전체에 의하면 이 상인자본은 총자본 1,000의 $\frac{1}{10}$이다. 따라서 그것은 총잉여가치 180의 $\frac{1}{10}$의 몫을 얻고 그리하여 18%라는 비률의 리윤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실상 총자본의 나머지 $\frac{9}{10}$에서 분배되여야 할 리윤은 다만 162뿐이다. 즉 자본 900에 대하여는 역시 18%이다. 따라서 W가 산업자본 900의 소유자들에 의하여 상품거래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720c+180v+162m=1,062이다. 그리하여 상인이 자기의 자본 100에 대하여 18%의 평균리윤을 추가하면 그는 상품을 1,062+18=1,080 즉 상품의 생산가격으로 또는 총상품자본을 고찰하면 그 가치대로 판매한다. 비록 상인은 자기의 리윤을 오직 류통에서 또 류통을 통하여서만 얻으며 또 오직 자기의 구매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에 의하여서만 얻는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상품들을 가치보다 비싸게 또는 생산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상품을 가치보다 저렴하게 또는 생산가격보다 저렴하게 산업자본가로부터 구매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 상인자본은 그것이 총자본중에서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일반적리윤률의 형성에 규정적으로 참가한다. 따라서 상술한 경우에 평균리윤률이 18%라고 말한다면 만약 총자본의 $\frac{1}{10}$이 상인자본이 아니고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이 $\frac{1}{10}$만큼 저하되지 않았더라면 평균리윤률은 20%일것이다. 그와 함

께 생산가격의 보다 상세한 제한적인 규정이 나온다. 생산가격이라고 하면 여전히 상품의 가격 즉 상품의 비용(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불변자본+가변자본의 가치)+이에 대한 평균리윤이라고 리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평균리윤은 이제는 다르게 규정되여있다. 그것은 전체 생산적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총리윤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이 생산적자본의 총계에 대하여 계산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전체 생산적자본+상업자본에 대하여 계산되고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생산적자본의 총계가 우에서처럼 900이고 리윤이 180이라면 평균리윤률은 $\frac{180}{900}$=20%일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생산적자본이 900이고 상업자본이 100이라면 평균리윤률은 $\frac{180}{1,000}$=18%일것이다. 그러므로 생산가격은 k+20이 아니고 k(비용)+18이다. 평균리윤률에는 총리윤중 상업자본에 속하는 부분이 이미 계산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총상품자본의 현실적가치 또는 생산가격은 k+p+h(이 h는 상업리윤)와 같다. 따라서 생산가격 또는 산업자본가가 자체로서 판매하는 가격은 상품의 현실적생산가격보다 작다. 또는 상품총체를 본다면 산업자본가계급이 이것을 판매하는 가격은 그 가치보다 작다. 그리하여 우에서든 례에서는 900(비용)+900에 대한 18% 즉 900+162=1,062이다. 이제 상인이 자기가 100의 비용을 들이는 상품을 118로 판매한다면 그는 물론 18%를 추가한다. 그러나 그가 100으로 구매한 상품에는 118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는 상품을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는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에서 전개된 보다 상세한 의미에서의 생산가격이라는 표현을 견지하자. 그러면 분명히 산업자본가의 리윤은 상품의 비용가격을 넘는 생산가

격의 초과분과 같으며 이 산업리윤과는 달리 상업리윤은 상인에 있어서의 상품의 구매가격인 생산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과 같지만 상품의 현실적가격은 상품의 생산가격+상업리윤과 같다. 산업자본은 잉여가치로서 이미 상품의 가치속에 들어있는 리윤을 실현할따름이지만 상업자본이 리윤을 실현하는것도 다만 전체 잉여가치 또는 리윤이 산업자본에 의하여 실현된 상품가격에서 아직 실현되고있지 않기때문이다.(39) 그리하여 상인의 판매가격이 구매가격을 넘는것은 판매가격이 총가치를 넘기때문이 아니라 구매가격이 총가치보다 낮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상인자본은 잉여가치의 생산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 잉여가치의 평균리윤으로의 평균화에는 참가한다. 그러므로 일반적리윤률은 벌써 상인자본에 속하게 되는 잉여가치의 공제분 즉 산업자본의 리윤으로부터의 공제분을 포함하고있는것이다.

상술한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1) 상인자본이 산업자본에 비하여 크면 클수록 산업리윤의 률은 그만큼 더 작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

2) 제1편에서 분명히 된바와 같이 리윤률은 언제나 현실적잉여가치률보다 작은 비률을 표현한다면 즉 로동의 착취도를 언제나 과소하게 표현한다면, 례컨대 상술한 720c+180v+180m의 경우에는 100%의 잉여가치률을 불과 20%의 리윤률로서 표현한다면 이 비률은 이제 평균리윤률 자체가 상인자본에 속하게 되는 몫을 계산에 넣음으로써 더욱 작은것으로, 이 경우에는 20%가 아니고 18%인것으로 나타나는만큼 더욱더

(39) 존 벨러즈.[151]

배리된다. 따라서 직접 착취하고있는 자본가의 평균리윤률은 리윤률을 현실적인것보다 더 작게 표현한다.

다른 모든 사정들이 변함없다고 전제하면 상인자본(그러나 소상인의 자본은 하나의 잡종으로서 례외이다)의 상대적 크기는 그 회전속도에 반비례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일반의 활동력에 반비례한다. 과학적분석의 진행에 있어서는 일반적 리윤률의 형성은 산업자본과 그 경쟁으로부터 출발하며 나중에 비로소 상인자본의 개입에 의하여 정정되고 보충되고 수정되는것이다. 력사적발전의 진행에 있어서는 사태는 정반대이다. 상품의 가격을 처음으로 다소간에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하는것은 상업자본이다. 그리고 일반적리윤률이 처음으로 형성되는곳도 재생산과정을 매개하는 류통의 분야이다. 최초에는 상업리윤이 산업리윤을 규정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침투되고 생산자 자신이 상인으로 되였을 때 비로소 상업리윤은 총잉여가치중 사회적재생산과정에 종사하는 총자본의 해당한 일부분으로서의 상업자본에 귀속하는 해당한 부분으로 귀착된다.

상인자본의 개입에 의한 리윤의 보충적인 평균화에서는 다음과 같은것이 분명히 된다. 즉 상품의 가치에는 상인의 선대화폐자본에 해당한 추가요소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는것, 상인이 자기의 리윤을 얻기 위하여 가격에 추가하는것은 상품가치중 생산적자본이 상품의 생산가격의 계산에 넣지 않고 빼놓은 부분과 같을뿐이라는것이다. 즉 이 화폐자본은 산업자본가의 고정자본과 같은것이며 아직 소비되지 않아서 그 가치가 상품가치의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의 고정자본과 같은것이다. 즉 상인은 상품자본의 구매가격에 의하여 상품자본의 생산가격 G를 화폐로 보상한다. 그의 판매가

격은 우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G+⊿G와 같으며 이 ⊿G는 상품가격에 대한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추가분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가 상품을 판매하면 그의 수중에는 ⊿G외에 그가 그의 상품을 구매할 때 선대한 최초의 화폐자본이 돌아온다. 여기에서 또 명백하게 되는것은 그의 화폐자본은 산업자본가의 상품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전화된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이 상품자본의 가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것은 이 상품자본이 상인에게 판매되는것이 아니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상인의 화폐자본은 사실상 최종소비자가 하는 지불을 앞당길따름이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말한것은 우에서 가정한바와 같이 상인이 아무런 잡비용도 들이지 않는다는것, 즉 그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자본외에는 류동자본이든 고정자본이든 아무런 자본도 상품의 변태 즉 구매와 판매과정에 선대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가정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것은 우리가 류통비의 고찰(제2부 제6장)에서 본바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류통비는 부분적으로는 상인이 다른 류통담당자들에게서 청구할수 있는 비용으로서 나타나며 부분적으로는 직접 그의 특수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류통비가 어떠한 종류의것이든 즉 그것이 순전히 상인적인 업무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것이여서 상인의 특수한 류통비에 속하는것이든 또는 류통과정내부에서 첨가되는 보충적인 생산과정 례컨대 발송, 운수, 보관 등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항목들을 표시하는것이든간에 이 류통비는 상인측에서는 상품구매에 선대된 화폐자본외에 이상과 같은 류통수단들의 구입과 지불에 선대되는 추가자본을 전제한다. 이 비용

요소는 그것이 류동자본으로써 구성되는 한에서는 추가적인 요소로서 상품의 판매가격에 전부 들어가며 그것이 고정자본으로써 구성되는 한에서는 마멸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요소로서 상품의 판매가격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이 순전히 상업적인 류통비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치에 대한 아무런 현실적인 추가도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목상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상품의 판매가격에 들어가는것이다. 그러나 류동자본이든 고정자본이든간에 이 추가자본전체는 일반적리윤률의 형성에 참가한다.

순전히 상업적인 류통비(따라서 발송, 운수, 보관 등등을 위한 비용은 제외하고)는 상품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가치를 상품으로부터 화페로이든 화페로부터 상품으로이든 전화시키고 상품교환을 매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귀착된다. 이 경우에 류통행위중에도 지속될수 있는, 그리고 상인적인 업무가 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여 존재할수 있는 생산과정은 전적으로 도외시한다. 례컨대 현실적인 운수업 및 발송업과 같은것은 사실상 상업과 전혀 다른 산업부문일 수 있고 또 사실 그러하다. 또 매매되여야 할 상품이 부두나 기타의 공공장소들에 쌓여있을수도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상인이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에서는 이 비용은 제삼자에 의하여 상인의 대방(貸方)에 기입된다. 이 모든것은 상인자본이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다른 기능들과 가장 적게 혼합되여 나타나는 진정한 도매상업에서 볼수 있다. 운수업자, 철도업자, 선박업자는 《상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고찰하는 비용들은 구매와 판매의 비용들이다. 그것들은 이미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계산, 부기, 시장거래, 통신 등등에 귀착된다. 이것들에 필요한 불변자본은

사무소, 종이, 우편료금 등등으로써 이루어진다. 기타의 비용은 상업임금로동자의 사용에 선대되는 가변자본으로 귀착된다(발송비, 운수비, 관세전불금 등등은 부분적으로는 상인이 상품을 구매할 때 그것을 선대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상인에게 있어서는 구매가격에 들어가는것으로 간주될수 있다).

이러한 모든 비용들은 상품의 사용가치의 생산과정에 드는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의 실현과정에 드는것이다. 그것들은 순수한 류통비이다. 그것들은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류통과정에, 따라서 총재생산과정에 들어가는것이다.

이러한 비용들중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로 되는 유일한 부분은 가변자본에 투하되는 부분이다(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연구되여야 할것이다. 첫째로, 필요로동만이 상품의 가치에 들어간다는 법칙은 류통과정에서는 어떻게 관철되는가, 둘째로, 축적은 상인자본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로, 상인자본은 사회의 현실적인 총재생산과정에서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러한 비용들은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경제적형태에서 발생한다.

산업자본가들 자신이 그들의 상품을 서로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상실하는 로동시간—즉 객관적으로 말하면 상품의 류통기간—은 이 상품들에 결코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로동시간은 그것을 산업자본가 대신에 상인이 부담한다 하여도 그때문에 성격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상품(생산물)으로부터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로부터 상품(생산수단)으로의 전화는 산업자본의 필요한 기능이고 따라서

자본가의 필요한 활동이며 자본가는 사실상 자본이 인격화되여 자기 의식과 의사를 가지게 된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가치를 증식시키는것도 아니며 잉여가치를 창조하는것도 아니다. 상인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하여서는 또는 류통분야에서의 자본의 기능들의 매개를 생산적 자본가가 수행하지 않게 된후에 그가 계속 수행하는데 의해서는 그는 다만 산업자본가를 대신할따름이다. 이 활동들에 드는 로동시간은 자본의 재생산과정에 있어서의 필요한 활동들에 소비되는것이나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 만약 상인이 이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는다면(따라서 또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시간도 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자본을 산업자본의 류통담당자로서 사용하지 않을것이다. 그는 산업자본가의 중단된 기능을 더 계속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또 자본가로서 자기의 선대자본에 비례하여 산업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생산되는 리윤량의 분배에 참여하게 되지도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상업자본가는 잉여가치량의 분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즉 자기의 선대액을 자본으로서 증식하기 위하여 임금로동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의 영업과 그의 자본이 작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그가 사용하는 유일한 로동자일수 있다. 그가 지불을 받는것은 상품의 리윤중 상품의 구매가격과 현실적생산가격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타방으로 상인이 선대하는 자본량이 작은 경우에는 그가 실현하는 리윤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임금로동자 한사람의 로임보다도 결코 크지 않을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어 작을수도 있다. 사실상 상인외에 생산적 자본가의 직접적인 상업대리자들인 구입원, 판매원, 출장원이 기능하고있는데 그들은 로임의 형태로나 판매시마다 받는

리윤배당(수수료, 리익배당금)의 형태로 상인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을 얻고있다. 첫째 경우에는 상인이 독립적인 자본가로서 상업리윤을 얻는다. 둘째 경우에는 산업자본가의 임금로동자인 점원에게 리윤의 일부분이 로임의 형태로나 그를 직접적인 상업대리자로 삼고있는 산업자본가의 리윤에 대한 비례적배당의 형태로 지불되며 이 경우에는 그의 고용주가 산업리윤도 상업리윤도 다 차지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비록 류통대리자 자신에게는 그의 수입이 단순한 로임으로서, 즉 그가 수행한 로동에 대한 지불로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리윤의 크기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로동자 한사람의 로임과 동등할따름일지 모르지만 그의 수입은 오직 상업리윤에서만 생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로동이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이 아니기때문이다.

류통행위의 연장은 산업자본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1) 그 연장으로 말미암아 생산과정 자체의 지휘자로서의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되는 한에서는 그 자신의 시간의 손실을 의미하며 2) 그의 생산물이 화폐형태 또는 상품형태로서 류통과정에, 따라서 그의 생산물의 가치가 증식되지 않고 직접적인 생산과정이 중단되는 과정에 오래동안 체류하는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생산과정이 중단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생산이 제한되지 않으면 안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화폐자본이 선대되여 생산과정이 항상 동일한 규모로 지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어느 경우에나 종전의 자본으로써 얻는 리윤이 작아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리윤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화폐자본이 선대되여야 한다는것으로 귀착된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자본가 대신에 상

인이 나타나더라도 역시 동일하다. 산업자본가는 류통과정에 그리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되나 그대신 상인이 그것을 들이게 된다. 산업자본가는 류통을 위하여 추가자본을 선대하지 않아도 되나 그 대신에 상인이 그것을 선대하게 된다. 또는 결국 같은것으로 되지만 산업자본의 보다 더 큰 부분이 부단히 류통과정에서 떠돌아다니지 않게 되나 그 대신에 상인자본이 전적으로 거기에 몰려있으며 또 산업자본가가 얻는 리윤이 감소되는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그는 자기의 리윤의 일부분을 아주 상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인자본이 그 필요한 한도에 제한되여있는 한에서는 차이는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있을뿐이다. 즉 자본기능의 이러한 분할에 의하여 류통과정에서만 소비되는 시간이 적어지며 류통과정을 위하여 선대되는 추가자본이 적어지며 그리고 총리윤중 상업리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손실이 이 분할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적어진다는것뿐이다. 우에서 든 례에서는 상인자본 100과 함께 존재하는 720c+180v+180m이라는 자본이 산업자본가에게 162 즉 18%의 리윤을 남기고 따라서 18이라는 공제를 하게 한다면 상인자본의 이 독립화가 없으면 필요한 추가자본은 아마도 200으로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산업자본가의 총선대액은 900이 아니라 1,100이 되며 따라서 잉여가치 180에 대하여서는 리윤률이 다만 $16\frac{4}{11}$%로 될것이다.

이제 자기 자신의 상인이기도 한 산업자본가가 류통중에 있는 자기의 생산물이 화폐로 재전화되기전에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자본외에 자본(사무소비나 상업로동자의 임금)을 자기의 상품자본의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즉 류통과정을 위하여 선대하였다면 그것은 확실히 추가자본이기는 하

지만 그러나 잉여가치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상품의 가치에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품의 가치의 일부분은 다시 이러한 류통비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문에 추가적잉여가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총자본에 관하여 말하면 이것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것에 귀착된다. 즉 사회의 총자본의 일부분은 가치증식과정에 참가하지 않는 부차적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다는것, 그리고 사회적자본의 이 부분은 부단히 이 목적을 위하여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개개의 자본가와 산업자본가계급 전체에 있어서는 그때문에 리윤률이 감소되는데 그것은 동일한 량의 가변자본을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한에서 추가자본이 첨가될 때마다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류통업무자체와 결부된 추가비용이 산업자본가로부터 상인적자본가에 의하여 인수되는 한에서는 역시 이러한 리윤률의 감소가 일어나는데 다만 그 정도가 적고 그 방식이 다를뿐이다. 이 경우에는 사태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상인은 이러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선대하는것이며 또 이 추가자본에 대한 리윤은 상업리윤의 총액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보다 많은 량의 상인자본이 산업자본과 함께 평균리윤률의 평균화에 참가하게 되여 평균리윤이 저하된다. 우에서 든 례에서 상인자본 100 이외에 추가자본 50이 문제의 비용을 위하여 선대된다면 이제는 총잉여가치 180이 생산적자본 900 플라스 상인자본 150, 합계 1,050에 분배되게 된다. 따라서 평균리윤률은 $17\frac{1}{7}$%로 저하된다. 산업자본가는 상품을 상인에게 $900+154\frac{2}{7}=1,054\frac{2}{7}$

로 팔고 상인은 그것을 1,130(1,080+50—이 50은 그가 다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으로 판다. 그밖에 상인자본과 산업자본과의 분할에는 상업비용의 집중이 수반되고 따라서 상업비용의 감소가 수반된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문제는 상업자본가 즉 이 경우에는 상품거래자가 사용하는 상업임금로동자의 사정은 어떠한가 하는것이다.

한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상업로동자는 다른 온갖 로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로동자이다. 첫째로, 그의 로동이 상인의 가변자본에 의하여 구매되고 수입으로서 지출되는 화폐에 의하여 구매되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또 사적복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선대자본의 자기 증식을 위하여서만 구매되는 한에서 그는 임금로동자이다. 둘째로, 그의 로동력의 가치 따라서 그의 로임이 기타의 모든 임금로동자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로동의 생산물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의 독자적인 로동력의 생산비 및 재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는 한에서 그는 임금로동자이다.

그러나 상업로동자와 산업자본에 의하여 직접 사용되는 로동자간에는 산업자본과 상업자본간에 따라서 산업자본가와 상인간에 생기는 차이와 동일한 차이가 생기지 않을수 없다. 상인은 단순한 류통담당자로서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므로(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비용으로 상품에 첨가하는 추가가치는 이전부터 존재하는 가치의 추가로 귀착되기때문이다. 비록 이 경우에 그는 자기의 불변자본의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그가 동일한 기능의 수행에 사용하는 상업로동자도 그를 위하여 직접적인 잉여가치를 창조할수는 없다. 여기서도 생산적로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하는것은 로임

은 로동력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여있으므로 상인은 임금으로부터의 공제에 의하여 치부하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상인은 자기가 일부분밖에 지불하지 않은 로동에 대한 선대를 자기의 비용계산에 넣지는 않는다는것, 바꾸어말하면 그는 자기의 점원 등등으로부터 편취하는데 의하여 치부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상업임금로동자에 관하여 말하면 곤난은 결코 그들이 직접 잉여가치(리윤은 그 전화형태에 불과하다)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직접 자기들의 고용주를 위하여 리윤을 생산하는가 하는것을 설명하는데 있는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이미 상업리윤의 일반적분석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산업자본은 자기가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은 로동이 상품속에 포함되여있으며 실현되고있는 로동을 판매하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는데 이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상업자본은 상품속에(상품의 생산에 투하된 자본이 총산업자본의 해당한 부분으로서 기능하는 한에 있어서 그 상품속에) 포함되여있는 부지불로동을 생산자본에 전부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또 아직 상품속에 포함되여있으며 자기가 그것을 지불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지불을 받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는것이다. 잉여가치에 대한 상인자본의 관계는 잉여가치에 대한 산업자본의 관계와는 다르다. 산업자본은 타인의 부지불로동을 직접 취득하는데 의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상인자본은 이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산업자본으로부터 자기에게로 이전시키는데 의하여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만든다.

상업자본은 오직 가치를 실현한다는 자기의 기능에 의하여서만 재생산과정중에서 자본으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기능

하는 자본으로서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중에서 자기의 몫을 얻는다. 개개의 상인에 있어서 그의 리윤량은 그가 이 과정에 사용할수 있는 자본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리고 그의 사무원의 부지불로동이 크면 클수록 그는 그만큼 많은 자본을 매매에 사용할수 있다. 상업자본가는 그의 화폐를 자본화하는 그 기능 자체를 대부분 자기의 로동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이 사무원들의 부지불로동은 비록 잉여가치를 창조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위하여 잉여가치를 취득할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하는데 이것은 이 자본에 대하여는 결과로 보아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부지불로동은 이 자본에 있어서는 리윤의 원천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인적업무는 대규모로는, 자본주의적으로는 결코 운영될수 없을것이다.[152]

로동자의 부지불로동이 생산적자본을 위하여 직접 잉여가치를 창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임금로동자의 부지불로동은 상업자본을 위하여 그 잉여가치의 몫을 창조한다.

곤난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상인 자신의 로동시간과 로동은 비록 그를 위하여 이미 생산된 잉여가치의 몫을 창조하지만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은 아니라면 그가 상업로동력의 구입에 투하하는 가변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이다. 이 가변자본은 투하되는 비용으로서 선대상업자본에 넣어야 할 것인가? 넣어서는 안될것이라면 이것은 리윤률평균화의 법칙과 모순되는것 같다. 선대자본으로 계산될수 있는것은 100뿐인데 150을 선대할 자본가가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상업자본의 본질과 모순되는것 같다. 왜냐하면 이 자본종류가 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은 그것이 산업자본처럼 타인의 로동을 움직이는데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로동하

는데 의하여 즉 매매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의하여서이며 오직 이에 대한 대가로써만, 오직 그렇게 하는데 의하여서만 산업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자기의 수중에 이전시키기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연구하여야 한다. 상인의 가변자본, 류통에 필요한 로동의 법칙, 상인로동은 어떻게 그 불변자본의 가치를 유지하는가, 총재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상인자본의 역할, 끝으로 일방으로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으로의 타방으로는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의 이중화.)

가령 모든 상인이 그 자신의 로동에 의하여 회전시킬수 있을만큼의 자본밖에 가지고있지 않다면 상인자본의 무한한 분산이 일어날것이다. 이 분산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적자본이 보다 큰 규모에서 생산되고 보다 큰 량을 조작하는 정도에 따라 더욱 증대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리하여 상인자본과 생산적자본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된다. 자본은 생산분야에서 집중되는것과 동일한 비률로써 류통분야에서 분산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업자본가의 순전히 상업적인 업무, 따라서 그의 순전히 상업적인 지출은 무한히 확대될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100명의 상인과가 아니라 1,000명의 상인을 상대하여야 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상인자본의 독립화에서 오는 리익의 큰 부분은 상실될것이다. 순상업적인 비용외에 기타 류통비 즉 선별이나 발송 등등도 증대할것이다. 이것은 산업자본에 관한것이다. 이제는 상인자본을 고찰하자. 첫째로는 순상업적인 로동에 관하여서이다. 큰 수의 계산이 작은 수의 계산보다 시간이 더 드는것은 아니다. 100파운드씩 10회 구입하는데 드는 시간은 1,000파운드로 1회 구입하는데 드는 시간에 비하여 10배가 든다.

10명의 소상인과 통신하는데는 1명의 대상인과 통신하는데 비하여 10배의 통신, 용지, 우편 료금이 든다. 상업적인 작업장에서 어떤 사람은 부기를, 어떤 사람은 출납을, 어떤 사람은 통신을, 어떤 사람은 구입을, 어떤 사람은 판매를, 어떤 사람은 출장하는 등등과 같이 세밀한 분업이 진행된다면 로동시간은 매우 절약되며 그때문에 도매상업에서 사용되는 상업로동자의 수는 영업의 상대량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것이다. 이렇게 되는것은 동일한 기능이 대규모적으로 수행되든 소규모적으로 수행되든간에 거기에 드는 로동시간은 같은것이 상업에서는 산업에 비하여 훨씬 더 많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적도 상업에서는 산업의 작업장에서보다 력사적으로 일찍 나타나고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불변자본에 대한 지출을 보기로 하자. 100개의 소사무소는 1개의 대사무소보다도, 100개소의 소창고는 1개소의 대창고보다도 무한히 비용이 더 든다, 등등. 운수비는 적어도 선대되여야 할 비용으로서는 상인의 업무에 들어가나 이것도 분산에 따라 증대한다.

산업자본가는 자기 업무의 상업적부분에 보다 많은 로동과 류통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동일한 상인자본도 다수의 소상인들간에 분할되면 이 분산때문에 그 기능의 매개를 위하여 훨씬 더 많은 로동자들이 필요하게 될것이다. 그밖에 동일한 상품자본을 회전시키기 위하여서도 보다 많은 상인자본이 필요하게 될것이다.

상품들의 매매에 직접 투하되는 총상인자본을 B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상업적보조로동자들에 대한 지불에 투하되는 가변자본을 b라고 하면 B+b는 어느 상인이나 조수가 없이 해나간다고 가정하는 경우, 따라서 일부분도 b에 투하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경우에 필요한 총상인자본 B의 크기보다 작은것이

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아직 곤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상품의 판매가격은 1) B+b에 대한 평균리윤을 지불하는데 충족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B+b가 원래의 B일반의 축소이며 b가 없는 경우에 필요하게 될 상인자본보다 적은 상인자본을 표시한다는것에 의하여 설명되였다. 그러나 이 판매가격은 2) b에 대한 새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리윤외에 지불된 로임, 즉 상인의 가변자본=b 자체도 보상하는데 충족하여야 한다. 이 후자가 곤난한 점이다. b는 하나의 새로운 가격구성부분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으면 B+b에 의하여 얻는 리윤중 다만 상업로동자에 관하여서만 로임으로서 나타나고 상인 자신에 관하여서는 그의 가변자본의 단순한 보상분으로서 나타나는 일부분에 불과한가? 후자의 경우에는 상인이 자기의 선대자본 B+b에 대하여 얻는 리윤은 일반적리윤률에 따라 B에게 귀속하는 리윤 플라스 b와 같을따름이며 이 b는 그가 로임의 형태로 지불하는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아무런 리윤도 가져오지 않는것이다.

사실상 문제는 b의 한계(수학적의미에서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선 곤난한 점을 정밀히 확정하자. 상품의 매매에 직접 투하되는 자본을 B라 하고 이 기능에 소비되는 불변자본(물적거래비용)을 K라 하고 상인이 투하하는 가변자본을 b라고 하자.

B의 보상은 조금도 곤난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상인에 있어서는 실현된 구입가격에 불과하며 공장주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에 불과하다. 상인은 이 가격을 지불하며 그는 재판매에 있어서 B를 자기의 판매가격의 일부분으로서 회수한다. 이 B외에 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그는 B에 대한 리윤을 얻는다. 례컨대 상품은 100파운드이고 이에 대한 리윤은 10%라

고 하자. 그러면 이 상품은 110파운드로 판매된다. 이 상품은 이미 이전에 100파운드였으며 100의 상인자본은 여기에 다만 10을 첨가할따름이다.

그다음에 K를 보면 이것은 많아도 생산자가 판매와 구매에 소비할 불변자본부분—그러나 이것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에 사용하는 불변자본에 대한 추가분을 이룰 부분이다—과 크기가 같으며 사실상은 그보다 작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품의 가격중에서 부단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는 같은 말이지만 상품중의 해당한 부분이 이 형태로 부단히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며—사회의 총자본을 고찰하면—이 형태로 부단히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선대되는 불변자본의 이 부분은 직접 생산에 투하되여있는 전체 불변자본량과 마찬가지로 리윤률에 제한적으로 작용할것이다. 산업자본가가 그의 업무의 상업적인 부분을 상인에게 맡기는 한에서는 그는 이 자본부분을 선대할 필요가 없다. 산업자본가 대신에 상인이 그것을 선대한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이것은 명목상의것에 불과하다. 상인은 그가 소비한 불변자본(물적 거래비용)을 생산도 하지 않으며 재생산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불변자본의 생산은 어떤 종류의 산업자본가들의 고유한 업무로서 또는 적어도 그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이러한 산업자본가들은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에게 불변자본을 제공하는 자본가들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인은 첫째로, 이 불변자본의 보상을 받으며 둘째로, 이 불변자본에 대한 리윤을 받는다. 따라서 이 량자로 말미암아 산업자본가를 위한 리윤이 감소된다. 그러나 분업과 결부된 집적과 절약으로 하여 이 리윤 감소의 정도는 자본가 자신이 이 자본을 선대하여야 할 경우보다도 작다. 리윤률의 감

소는 그와 같이 선대된 자본이 보다 적기때문에 보다 적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판매가격은 B+K+(B+K)에 대한 리윤으로써 구성되여있다. 판매가격의 이 부분은 우에서 말한데 의하면 조금도 곤난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b 즉 상인이 선대하는 가변자본이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판매가격은 B+K+b+(B+K)에 대한 리윤+b에 대한 리윤으로 된다.

B는 구매가격을 보상할따름이고 B에 대한 리윤외에는 어떤 부분도 이 가격에 첨가하지 않는다. K는 K에 대한 리윤뿐만아니라 K 자체를 첨가한다. 그러나 K+K에 대한 리윤 즉 류통비중 불변자본의 형태로 선대된 부분+이에 상응한 평균리윤은 산업자본가의 수중에서는 상업자본가의 수중에서 보다 더 클것이다. 평균리윤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즉 먼저 완전한 평균리윤이—선대산업자본으로부터 B+K를 공제한후에—계산되나 이 평균리윤으로부터 B+K에 대한 공제분이 상인에게 지불되며 그리하여 이 공제분이 상인자본이라는 특수한 자본의 리윤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b+b에 대한 리윤에 관하여는 즉 리윤률이 10%라고 가정되고있는 이 경우에는 $b+\frac{1}{10}b$에 관하여는 사정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곤난이 있다.

상인이 b로써 구매하는것은 가정에 의하면 다만 상업로동 즉 자본류통의 기능들인 W—G 및 G—W를 매개하기에 필요한 로동이다. 그런데 상업로동은 자본이 상인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자본이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를 매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로동이다. 그것은 가치를 실현하지만 가치를 창조하지는 않는 로동

이다. 그리고 어떤 자본이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따라서 어떤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이 활동, 이 로동을 수행하는—한에서만 이 자본은 상인적인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일반적리윤률의 규제에 참가한다. 즉 총리윤으로부터 자기의 배당을 얻는다. 그런데 b+b에 대한 리윤에 있어서는 첫째로, 로동에 대한 지불이(왜냐하면 산업자본가가 상인에게 상인자신의 로동에 대하여 지불하든 또는 상인에게서 지불받는 사무원의 로동에 대하여 지불하든 그것은 다 마찬가지이기때문에) 포함되여있고 둘째로, 상인자신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이 로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에 대한 리윤이 포함되여 있는것같이 보인다. 상인자본은 첫째로, b의 상환분을 받고 둘째로, b에 대한 리윤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다음과 같은것으로 하여 발생하는것이다. 즉 상인자본은 첫째로는 자기가 **상인**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로동에 대하여 지불을 받는다는것, 둘째로는 자기가 **자본**으로서 기능하기때문에 즉 기능자본으로서의 자기에게 리윤으로서 지불되는 로동을 수행하기때문에 리윤의 지불을 받는다는것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이 해결되여야 할 문제이다.

B=100, b=10, 리윤률=10%라고 가정하자. 우리는 K=0이라고 가정하는데 그것은 구매가격중 여기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는 이미 설명된 요소를 다시 불필요하게 계산에 넣지 않기 위하여서이다. 그리하여 판매가격은 B+p+b+p(=B+Bp′+b+bp′, 여기에서 p′는 리윤률)=100+10+10+1=121로 될것이다.

그러나 b가 상인에 의하여 로임으로 투하되지 않는다면—b는 다만 상업로동에 대하여 즉 산업자본이 시장에 투입하는 상품자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로동에 대하여 지불될따름이므로—사태는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B=100

으로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상인은 자기의 시간을 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이것뿐이라고 가정하자. b 즉 10에 의하여 대표되고있는 상업로동은 만약 그것이 로임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고 리윤에 의하여 지불된다면 다른 하나의 상인적자본=100을 가정하는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 10%는 b=10이기때문이다. 이 제2의 B=100은 추가적으로 상품가격에 들어가지 않을것이지만 10%는 들어갈것이다. 그러므로 100씩 2번 즉 200이 기능하여 상품을 200+20=220으로 구매하게 될것이다.

상인자본은 절대로 류통과정에서 기능하는 산업자본의 일부분이 독립한 형태에 불과하므로 상인자본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선 상인자본에 특유한 현상들이 아직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산업자본과 직접 관련되여 산업자본의 가지(枝)로서 나타난다는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작업장과는 다른 사무소로서는 상업자본은 언제나 류통과정에서 기능한다. 따라서 바로 여기에서, 지금 문제로 되고있는 b도 우선 산업자본가 자신의 사무소에서 연구되여야 한다.[153]

애당초부터 이 사무소는 산업작업장에 비하면 언제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류통을 위하여 부단히 수행되여야 할 상업적활동들도 늘어난다는것은 명백한데 그것은 상품자본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서도 그 대금을 다시 생산수단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서도 또 그 전체에 대하여 계산을 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활동인것이다. 가격계산, 부기, 출납, 통신은 모두 이에 속한

다. 생산규모가 발전하면 할수록 산업자본의 상업적활동, 따라서 가치와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로동이나 기타의 류통비도 비록 비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더 증대한다. 그때문에 상업임금로동자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로동자가 고유한 의미에서의 사무소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지출은 비록 로임의 형태로 실시되지만 생산적로동의 구입에 투하되는 가변자본과는 구별된다. 그것은 직접으로는 잉여가치를 증가시킴이 없이 산업자본가의 지출, 선대되여야 할 자본의 량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이 지출에 의하여 지불되는 로동은 다만 이미 창조된 가치의 실현에 사용될뿐이기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기타 모든 지출이 다 그러하듯이 이 지출도 리윤률을 저하시킨다. 왜냐하면 선대자본은 증대하나 잉여가치는 증가하지 않기때문이다. 잉여가치 m은 변하지 않으나 선대자본 C는 $C+\Delta C$로 증가하면 리윤률 $\frac{m}{C}$ 대신에 그것보다 작은 리윤률 $\frac{m}{C+\Delta C}$이 나온다. 따라서 산업자본가는 불변자본을 위한 그의 지출들과 마찬가지로 이 류통비를 그 최소한도로 제한하려 한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그 상업임금로동자와의 관계는 그 생산적임금로동자에 대한 관계와 동일하지는 않다.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생산적임금로동자가 더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생산은 그만큼 대량적으로 되며 잉여가치 또는 리윤도 그만큼 더 커진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생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실현되여야 할 가치, 따라서 잉여가치가 크면 클수록, 따라서 생산된 상품자본이 크면 클수록, 사무소비용은 상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절대적으로는 더 증대하여 일종의 분업을 일으킬

동기로 된다. 리윤이 얼마나 이 지출의 전제로 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업임금의 증대에 따라 그 일부분이 종종 리윤에 대한 배당으로 지불된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가치의 계산이나 그 실현이나 실현된 화폐의 생산수단으로의 재전화와 결부되여있는 매개적조작에 불과한 로동, 따라서 이미 생산되여 이제부터 실현되여야 할 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는 로동, 이러한 로동이 직접적인 생산적로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치의 해당한 크기와 수량의 원인으로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작용한다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타의 류통비에 있어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많은것을 계량하고 포장하고 운송하기 위하여는 많은것이 있어야 한다. 포장로동, 운송로동 등등의 량은 그 활동의 대상인 상품의 량에 의존하는것이며 그 반대인것은 아니다.

상업로동자는 직접적으로는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로동의 가격은 그의 로동력의 가치에 의하여 즉 그 로동력의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한편 이 로동력의 행사는 긴장이나 힘의 발휘나 소모로서 기타의 모든 임금로동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로동력의 가치에 결코 국한되여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그의 임금은 그의 방조로 자본가가 실현하는 리윤량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것은 아니다. 자본가가 그에게 들이는 비용과 그가 자본가에게 가져다주는 리익과는 각이한 크기의것이다. 그가 자본가에게 리익을 가져다주는것은 그가 직접 잉여가치를 창조하는데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일부분은 부지불로동을 수행하는 한에서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한 비용의 감소를 방조하는데 의하여서이다. 본래의 상업로동자는 임금로동자들가운데서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부류에 속한다. 즉 그 로동이 숙련로동이고

평균로동이상인 임금로동자의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그 임금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진전에 따라 평균로동에 비하더라도 저락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사무소내의 분업때문이다. 즉 로동능력의 일면적인 발전만이 생산되게 되며 이 로동능력의 생산은 자본가에게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조금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오히려 로동자의 숙련은 기능자체에 의하여 발전하며 또 그것이 분업에 따라 일면적으로 되면 될수록 보다 급속히 발전하기때문이다. 둘째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교수법 등을 더욱더 실용적인것으로 되게 함에 따라, 예비교육, 상업지식, 언어지식 등등이 과학과 국민교육의 진보에 따라 점점 더 급속하게 용이하게 일반적으로 값싸게 재생산되기때문이다. 국민교육의 보급은 이 종류의 로동자들을 이전에는 이러한 직업에서 배제되여있었고 보다 렬악한 생활방식에 습관되여있었던 제 계급으로부터 보충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국민교육의 보급은 지원자들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경쟁을 격화시킨다. 그러므로 약간의 례외도 있지만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의 로동력은 가치가 감소된다. 그들의 로동능력은 제고되는데 그들의 임금은 저락한다.[154] 자본가는 보다 많은 가치와 리윤을 실현하게 되면 이러한 로동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로동의 증가는 언제나 잉여가치의 증가의 결과이며 결코 그 원인은 아니다.[39a]

(39a) 1865년에 쓴 상업무산계급의 운명에 대한 이 예언은 그후 어떻게 실증되였는가 하는것은 수백명의 독일인 사무원들이 체험하고있는것인데 그들은 모든 상업적활동들과 3~4개 나라 언어들에 통달하고있으면서도 런던의 씨티에서 1주간에 25실링의—숙련된 기계제조공의 임금보다도 훨씬 낮은—일자리를 구할수가 없었다. 원고에는 두 페지의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점을 더욱 상세히 서술할 예정이였다는것을 암시한다. 그밖에 또 제2부 제6장(류통비) 105~113페지를 참조하라. 거기에는 이미 이 점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점들이 언급되고있다.—F. 엥겔스

이리하여 하나의 이중화가 생긴다. 일방으로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으로서의(따라서 더 나가 규정하면 상업자본으로서의) 기능들은 산업자본의 일반적인 형태규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자본들, 따라서 또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이 전문적으로 이 기능들에 종사한다. 그리하여 이 기능들이 자본증식의 특수한 분야로 된다.

상업적기능과 류통비는 상업자본에 있어서만 독립하여 나타날뿐이다. 산업자본의 류통적측면은 산업자본이 부단히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 그속에 존재할뿐만아니라 작업장과 나란히 있는 사무소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측면은 상업자본에 있어서는 독립한다. 상업자본에 있어서는 사무소가 자기의 유일한 작업장이다. 류통비의 형태로 사용되는 자본부분은 도매상인에 있어서는 산업자본가에 있어서보다도 훨씬 더 큰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매개 산업적작업장에 부속되여있는 그 자신의 사무소외에 산업자본가계급전체에 의하여 류통비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부분이 개개의 상인들의 수중에 집중되며 이러한 상인들이 류통기능의 계속적수행을 맡아하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류통비의 계속적지출을 부담하기때문이다.

산업자본에 있어서는 류통비는 비생산적비용으로서 나타나며 또 사실 그러하다. 상인에게는 류통비는 그의 리윤의 원천으로서 나타나며 이 리윤은 일반적리윤률을 전제하면 류통비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이 류통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출은 상업자본에 있어서는 생산적인 투하이다. 따라서 상업자본이 구매하는 상업로동도 상업자본에 있어서는 직접 생산적인것이다.[155]

제 18 장

상인자본의 회전. 가격

산업자본의 회전은 산업자본의 생산기간과 류통기간의 통일이며 따라서 전체 생산과정을 포괄한다. 그와는 반대로 상인자본의 회전은 사실상 상품자본의 독립화된 운동에 불과하므로 상품변태의 제1단계 W—G 즉 한 특수한 자본의 자기 환류운동으로서—상업적인 의미에서의 G—W, W—G를 상인자본의 회전으로서—표시할따름이다. 상인은 먼저 구매하여 자기의 화폐를 상품으로 전화시키고 그다음에 판매하여 동일한 상품을 다시 화폐로 전화시키며 이와 같은것을 계속 부단히 반복한다. 류통내부에서는 산업자본의 변태는 언제나 W_1—G—W_2로서 표시된다. 즉 생산된 상품인 W_1의 판매에서 얻은 화폐는 새로운 생산수단 W_2를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것은 W_1과 W_2의 현실적교환이며 그리하여 동일한 화폐가 두번 그 소유자를 바꾼다. 화폐의 운동은 각이한 두 종류의 상품 W_1과 W_2의 교환을 매개한다. 그러나 상인의 경우에는 G—W—G'에서 반대로 동일한 상품이 두번 그 소유자를 바꾸며 이 상품은 화폐의 상인에게로의 환류를 매개할따름이다.

례컨대 상인자본이 100파운드이고 상인은 이 100파운드로 상품을 사며 그다음에 이 상품을 110파운드로 판다면 이

100이라는 그의 자본은 1회전을 한것이며 1년간의 회전수는 1년간에 이 운동 G—W—G'가 얼마나 반복되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구매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에 포함될수 있는 비용은 여기에서 무시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비용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 고찰하여야 할 형태를 조금도 변화시키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어진 상인자본의 회전수는 단순한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류통의 반복과 완전히 류사하다. 동일한 탈레르 화폐가 10회 류통하면 그것은 자기 가치의 상품을 10회 구매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상인의 동일한 화폐자본 례컨대 100이 10회 회전한다면 자기 가치의 상품을 10회 구매한다. 즉 10배의 가치의 총상품자본=1,000을 실현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화폐가 류통수단으로서 류통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화폐쪼각이 각이한 사람들의 손을 통과하고 동일한 기능을 반복하여 수행하며 따라서 류통하는 화폐쪼각의 수량은 류통속도에 의하여 보상된다. 그러나 상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화폐자본(이것이 어떠한 화폐쪼각으로써 구성되여있든 상관이 없이), 동일한 화폐가치가 그 가치액만큼의 상품자본을 반복적으로 사서 팔며 따라서 동일한 사람의 손에로 반복하여 G+⊿G로서 환류하며 그 출발점에로 가치 플라스 잉여가치로서 환류한다. 이것이 그 회전을 자본회전으로서 특징짓는다. 상인자본은 그것이 류통에 투입한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부단히 끌어낸다. 물론 상인자본의 회전이 빨라짐에 따라(발달한 신용제도하에서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도 우세하게 된다) 동일한 화폐량의 류통도 빨라진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상품거래자본의 회전의 반복은 결코 구매와 판매의 반복이외의 다른 어떤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한편 산업자본의 회전의 반복은 총재생산과정(소비과정을 포함한)의 주기성과 갱신을 표시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인자본에 있어서는 다만 외적인 조건으로서 나타날따름이다. 상인자본의 급속한 회전이 계속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산업자본은 부단히 상품을 시장에 투입하고 다시 상품을 시장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재생산과정일반이 완만하다면 상인자본의 회전도 완만하다. 물론 상인자본은 생산적자본의 회전을 매개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만 상인자본이 생산적자본의 류통기간을 단축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상인자본은 직접적으로는 생산기간에 작용하지 않으나 이 생산기간 역시 산업자본의 회전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제한으로 된다. 이것은 상인자본의 회전에 있어서의 첫째 한계이다. 그러나 둘째로 재생산적 소비에 의하여 형성되는 한계를 도외시하면 상인자본의 회전은 결국은 총개인적소비의 속도와 규모에 의하여 제한된다. 왜냐하면 상품자본중 소비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 전체가 이 속도와 범위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그런데(상인세계에서는 동일한 상품이 항상 한 상인으로부터 다른 상인에게로 팔리고 또 이러한 종류의 류통이 투기적시기에는 대단히 성행하는것으로 보일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인세계내부에서의 회전은 전혀 도외시하고) 상인자본은 첫째로, 생산적자본을 위한 단계 W—G를 단축시킨다. 둘째로, 현대적신용제도하에서는 상인자본은 사회의 총화폐자본의 하나의 큰 부분을 지배하며 그리하여 이미 산것을 최종적으로 팔기전에 자기의 구입을 반복할수 있다. 이 경우에 우리의 상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파는가 아니면 이 량자사이에

12명이나 되는 다른 상인이 끼여있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주어진 모든 제한을 넘어서 부단히 추진될수 있는 재생산과정의 거대한 신축성에 의하여 상인은 생산 그 자체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도 발견하지 않든가 또는 극히 신축성있는 제한을 발견할따름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상품의 성질에서 나오는 W—G와 G—W의 분리를 제외하고도 허구적인 수요가 조작된다. 상인자본의 운동은 그것의 독립화에도 불구하고 결코 류통분야내부에서의 산업자본의 운동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상인자본은 그 독립화의 덕택으로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재생산과정의 제한들과는 독립하여 운동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을 그 제한들을 넘어서까지 추진시킨다. 내적인 의존성과 외적인 독립성은 상인자본을 내몰아서 내적인 관련이 폭력적으로 공황에 의하여 회복되는 그러한 점까지 가게 한다.

그렇기때문에 공황이 처음에 출현하고 폭발하는것은 직접적소비와 관계가 있는 소매업에 있어서가 아니라 도매업과 그것에 사회의 화폐자본을 제공하는 은행업의 분야에서라는 그런 공황현상이 생기는것이다.

제조업자는 현실적으로 수출업자에게 판매할것이고 수출업자는 또 외국의 고객에게 판매할것이며 수입업자는 자기의 원료를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고 제조업자는 자기의 생산물을 도매상에게 판매할수 있을것이다. 등등. 그러나 어디엔가 보이지 않는 한 점에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모든 생산자들과 중간상인들의 재고가 점차 과잉된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소비는 보통 가장 왕성해지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한 산업자본가가 일련의 다른 산업자본가들을 움직이기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로동자가 완전취업을 하여 평소보다도 더 많이 지출할수 있기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수입이 늘어나면 그들의 지출도 늘어난다. 그밖에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제2부 제3편[156]) 불변자본과 불변자본간에도 부단히 류통이(가속화된 축적은 도외시하고) 일어나는데 이 류통은 결코 개인적소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우선 개인적소비로부터 독립되여있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개인적소비에 의하여 제한되고있다. 왜냐하면 불변자본의 생산은 결코 불변자본 자체를 위하여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개인적소비에 들어가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분야들에서 보다 많은 불변자본이 사용됨으로써만 진행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불변자본의 생산은 잠시동안은 기대되는 수요에 자극되여 무사히 진행될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부문들에서는 상인도 산업가도 경기가 대단히 좋아진다. 먼곳에서 판매하는 상인(또는 국내에서도 재고가 쌓이고있는 상인)의 자본환류가 늦어지고 적은 액이 거래되여 은행이 지불을 독촉하든가 또는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발행한 수형이 상품의 판매전에 만기가 되든가 할 때에는 공황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강제판매가 시작되며 지불하기 위한 판매가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벌써 파국이며 그것은 외관적인 번영을 단번에 끝장나게 하는것이다.

그런데 상인자본의 회전의 외면성과 무개념성은 더 심해진다. 그것은 동일한 상인자본의 회전이 극히 각이한 생산적 자본의 회전을 동시에 또는 순차로 매개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상인자본의 회전은 각이한 산업자본의 회전을 매개할수 있을뿐만이 아니라 상품자본의 변태의 반대의 단계도 매개할수 있다. 상인은 례컨대 아마포를 제조업자로부터 사서 그것을 표백업자에게 판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상인자본

의 회전—사실상은 동일한 W—G이며 아마포의 실현이다—이 각이한 두 산업자본에 있어서의 반대되는 두 단계를 표시한다. 상인이 일반적으로 생산적소비를 위하여 판매하는 한 그의 W—G는 항상 어떤 산업자본의 G—W를 표시하며 그의 G—W는 항상 다른 어떤 산업자본의 W—G를 표시한다.

우리가 이 장에서 하고있는것처럼 상인이 상품의 구입에 투하한 금액이외에 선대하는 자본부분인 류통비 K를 도외시한다면 상인이 이 추가적자본에서 얻는 추가리윤 ⊿K도 물론 떨어져나간다. 따라서 상인자본의 리윤과 회전이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것을 보려고 한다면 여기서 서술한대로 하는것이야말로 엄밀히 론리적이며 또 수학적으로 정확한 고찰방식이다.

사탕 1폰드의 생산가격이 1파운드라면 상인은 100파운드로써 100폰드의 사탕을 구매할수 있을것이다. 그가 1년간에 이 량을 매매하며 년평균리윤률이 15%라면 그는 100파운드에는 15파운드를 추가하고 1폰드의 생산가격인 1파운드에는 3실링을 추가할것이다. 따라서 그는 1폰드의 사탕을 1파운드 3실링으로 판매할것이다. 그런데 1폰드의 사탕의 생산가격이 1실링으로 내린다면 상인은 100파운드로써 2,000폰드를 구입하고 1폰드를 1실링 $1\frac{4}{5}$펜스로 판매할것이다. 사탕거래에 투하된 자본 100파운드에 대한 년리윤은 여전히 15파운드일것이다. 다만 상인은 전자의 경우에는 100폰드를 후자의 경우에는 2,000폰드를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가격의 높이는 리윤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나 매 폰드의 사탕의 판매가격중 상업리윤을 이루는 해당 부분 즉 상인이 일정한 량의 상품(생산물)에 가하는 가격추가의 크기와는 극히 큰, 결정

적인 관계가 있을것이다. 어떤 상품의 생산가격이 낮으면 상인이 그 상품의 구매가격에 즉 그 상품의 일정한 량에 선대하는 금액도 적으며 따라서 리윤률이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상인이 이 주어진 량의 저렴한 상품에서 얻는 리윤액도 적다. 또는 결국 같은것으로 되지만 그 경우에는 상인은 례컨대 100이라는 주어진 자본으로써 이 저렴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할수 있으며 그가 100으로써 얻는 총리윤 15는 이 상품량의 각개 부분에 대하여 소액으로 분배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이다. 이상과 같은것은 전적으로 상인이 거래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자본의 생산성의 고저에 달린것이다. 례컨대 한때의 화란동인도회사[157]처럼 상인이 독점자이며 동시에 생산도 독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음과 같은 흔히 볼수 있는 견해보다 더 엉터리 없는것은 없을것이다. 그것은 즉 상인이 개개의 상품에 대하여 적은 리윤으로 많은 상품을 파느냐 그렇지 않으면 많은 리윤으로 적은 상품을 파는냐 하는것은 상인에게 달렸다는 견해이다. 상인의 판매가격에 대한 두개의 한계로서 한편에는 그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품의 생산가격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역시 그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평균리윤률이 있다. 그가 결정할수 있는 유일한것이란—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본량과 기타 사정들이 일정한 역할을 노는것이지만—그가 비싼 상품을 거래하느냐 저렴한 상품을 거래하느냐 하는것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것은 전적으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정도에 달린것이고 상인의 의향에 달린것이 아니다. 다만 생산의 독점권을 틀어쥐고있은 이전의 동인도회사와 같은 그러한 상사회사만이 기껏해야 자본주의적생산의 초기에나 합당할뿐인 방법을 완전히 변화된 사정하

에서 지속하려는 망상을 할수 있었다.(40)

이러한 통속적인 편견—이것은 리윤 등등에 관한 그릇된 모든 견해와 마찬가지로 순전한 상업의 관찰과 상인적편견에서 나오는것이다—을 지지하는 사정들이란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 경쟁의 제 현상. 그러나 이것은 총상인자본중 주주들인 개개의 상인들사이에서의 상업리윤의 분배와만 관계되는것이다. 례컨대 어떤 상인이 자기의 적수를 꺼꾸러뜨리기 위하여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둘째로, 로쉐르교수류의 경제학자는 라이프찌히에서 의연히 다음과 같은 망상을 가질수 있다. 즉 판매가격의 변동을 일으킨것은 《현명과 인도》라는 원인이였으며 이 변동은 생산방식 자체의 변혁의 결과가 아니였다고 하는것이다.[112]

셋째로, 로동생산력이 제고되였기때문에 생산가격이 내리고 따라서 판매가격도 저락한다면 종종 수요가 공급보다도 빨리 증가되고 또 그와 함께 시장가격이 오르며 그때문에 판매가격이 평균리윤보다도 많은 리윤을 가져올수 있다.

넷째로, 상인은 자기 기업에서 보다 큰 자본을 보다 빨리 회전시키기 위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할수도 있다(이것은 언제나 그가 가격에 첨가하는 보통 리윤을 인하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은 오직 상인들 자신간의 경쟁에만

---

(40) 《리윤은 일반적원칙으로서는 가격이 어떠하든간에 언제나 동일하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물결우에 떠있는 물체처럼 제자리를 지킨다. 그러므로 상인은 물가가 오르면 가격을 올리고 물가가 내리면 가격을 내린다》(코비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1841년 런던판 20페지).[158]—본문에서 어디에서나 그러한것처럼 여기서 문제로 하는것은 보통의 상업뿐이고 투기가 아니며 투기의 고찰은 일반적으로 상업자본의 분할에 관한것이므로 우리의 고찰범위밖에 있다. 《상업리윤은 자본에 첨가되는 가치이며 이 가치는 가격과는 관계없는것이다. 둘째의 리윤(투기리윤)은 자본가치 또는 가격 그 자체의 변동에 기초하고있다》(우와 같은 책 128페지).

관계되는것이다.

이미 제1부에서 서술한바와 같이[159] 상품가격의 고저는 주어진 한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을 규정하는것도 아니고 잉여가치률을 규정하는것도 아니다. 비록 일정한 량의 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상대적인 량에 따라 개개의 상품의 가격, 따라서 또 이 가격의 잉여가치부분이 증감하는것이지만 각 상품량의 가격은 그것이 가치와 일치하는 한에서는 이 상품에 대상화된 로동의 총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소량의 로동이 다량의 상품에 대상화되면 개개의 상품의 가격은 낮으며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는 적다. 상품에 체현된 로동이 어떻게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으로 분할되는가, 따라서 이 가격중의 얼마만큼이 잉여가치를 표시하는가 하는것은 이 로동의 총량과는, 따라서 이 상품의 가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잉여가치률은 개개의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절대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 상대량에 의하여, 즉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비록 매 개별적상품의 잉여가치의 절대량은 작아도 그 률은 클수 있다. 이러한 매 개별적상품의 잉여가치의 절대량은 1차적으로는 로동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2차적으로만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으로의 로동의 분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상업적판매가격의 경우에는 생산가격도 하나의 주어진 외적인 전제이다.

이전 시대에 상업적상품가격이 높았던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때문이였다. 1) 생산가격이 높은것 즉 로동의 생산성이 낮은것. 2) 일반적리윤률이 없는것. 그것은 상인자본은 잉여가치중에서 자본의 이동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자기의

것으로 될수 있는것보다 훨씬 큰 몫을 취득한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없어졌다는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의 결과인것이다.

상업부문이 각이함에 따라 상인자본의 회전에는 길고짧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1년간의 그 회전수에는 많고적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상업부문내부에서도 경제순환의 단계가 각이함에 따라 회전은 빠를수도 있고 늦을수도 있다. 그렇지만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평균회전수는 있는것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상인자본의 회전은 산업자본의 회전과 다르다. 이것은 사물의 성질에서 나오는것이다. 산업자본의 회전상의 한 단계가 독립적인 한 상인자본 또는 적어도 그 일부의 완전한 회전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상인자본의 회전은 리윤규정과 가격규정에 대하여서도 역시 다른 관계에 있다.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회전은 한편으로는 재생산의 주기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시장에 투입되는 상품량은 그 회전에 의존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류통기간이 하나의 제한을, 그것도 신축성있는 제한을 이루며 이 제한이 가치와 잉여가치의 형성에도 다소간 제한적으로 작용하는것은 그것이 생산과정의 규모에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회전은 적극적인 요소로서는 아니지만 제한적인 요소로서,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에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의 형성에 규정적으로 참가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인자본에 있어서는 평균리윤률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이다. 상인자본은 리윤 또는 잉여가치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가 총자본중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 산업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리윤량에서 자기의 배당을 끌어내는

한에 있어서만 일반적리윤률의 형성에 규정적으로 참가할뿐이다.

제2부 제2편에서 서술된 제 조건하에서 어떤 산업자본의 회전수가 크면 클수록 그 자본이 형성하는 리윤량은 그만큼 크다. 그런데 물론 일반적리윤률의 성립에 의하여 총리윤은 각이한 자본들이 총리윤의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비률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총자본중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 즉 그것들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이한 자본들간에 분배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은 아니다. 총산업자본의 회전수가 크면 클수록 리윤량 또는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량 따라서 기타의 사정들이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리윤률은 그만큼 크다. 상인자본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상인자본에 있어서는 리윤률은 주어진 크기인데 이 크기는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리윤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총상업자본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즉 생산과정과 류통과정에 선대된 자본총액에 대한 총상업자본의 량적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총상업자본의 회전수는 물론 총자본에 대한 그것의 비률에 또는 류통에 필요한 상인자본의 상대적크기에 규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상인자본의 절대적크기와 그 회전속도는 명백히 반비례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총상업자본의 상대적 크기 즉 그것이 총자본중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기타의 모든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총자본의 절대적크기에 의하여 주어진다. 총자본이 10,000이라면 상인자본이 그의 $\frac{1}{10}$인 경우에는 상인자본은 1,000이며 총자본이 1,000이라면 그 $\frac{1}{10}$은

100이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상인자본의 상대적크기는 동일하지만 그 절대적크기는 다르며 총자본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인자본의 상대적크기 례컨대 총자본의 $\frac{1}{10}$을 주어진것으로 가정하자. 그런데 이 상인자본의 상대적크기 자체는 또 회전에 의하여 규정된다. 회전이 빠르면 상인자본의 절대적크기는 제1의 경우에는 례컨대 1,000이며 제2의 경우에는 100이며 따라서 그 상대적크기는 $\frac{1}{10}$이다. 회전이 보다 완만하면 그 절대적크기는 제1의 경우에는 례컨대 2,000이며 제2의 경우에는 200이다. 그러므로 그 상대적크기는 총자본의 $\frac{1}{10}$에서 $\frac{1}{5}$로 증대한다. 상인자본의 평균회전을 단축하는 사정 례컨대 운수수단의 발달은 그만큼 상인자본의 절대적크기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을 높인다. 반대인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된다. 발전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이전의 상태에 비하여 상인자본에 이중으로 작용한다. 즉 동일한 량의 상품이 보다 적은 량의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상인자본에 의하여 회전된다. 상인자본의 보다 급속한 회전과 그 기초인 재생산과정의 보다 큰 속도에 의하여 산업자본에 대한 상인자본의 비률이 감소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에 따라서 모든 생산이 상품생산으로 되며 따라서 모든 생산물이 류통담당자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첨가된다. 즉 소규모적으로 생산하고있던 이전의 생산방식하에서는 생산자 자신이 직접 현물로 소비하던 대량의 생산물과 현물로 수행된 대량의 급부를 도외시하고 생산자들의 극히 큰 부분이 자기의 상품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팔던가 또는 소비자들

의 개인적인 주문에 응하여 일하였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생산방식하에서는 상업자본은 그것이 회전시키는 상품자본에 대한 비률에 있어서는 보다 크기는 하지만 그것은

1) 절대적으로는 보다 작다. 왜냐하면 총생산물중의 비할수 없이 작은 부분이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상품자본으로서 류통에 들어가서 상인의 수중으로 들어가야 하기때문이다. 상업자본이 보다 작은것은 상품자본이 보다 작기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상업자본은 상대적으로는 보다 크며 그 회전이 보다 완만하기때문에 클뿐이 아니며 또 그것이 회전시키는 상품량에 대한 비률에 있어서 클뿐이 아니다. 그것이 보다 큰것은 로동의 생산성이 보다 낮아서 이 상품량의 가격, 따라서 또 그것에 선대되여야 할 상인자본이 자본주의적생산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크기때문이며 따라서 동일한 가치가 보다 소량의 상품으로 표시되기때문이다.

2)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보다 큰 상품량이 생산될뿐만아니라(이 경우에 이 상품량의 가치의 감소를 고려에 넣어야 한다) 동일한 량의 생산물 례컨대 곡물이 보다 큰 상품량을 형성한다. 즉 생산물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상업에 들어간다. 그 결과로서 또 상인자본의 량이 증대될뿐만아니라 류통에 투하되는 모든 자본 례컨대 항해, 철도, 전신 등등에 투하되는 모든 자본이 일반적으로 증대된다.

3) 그러나—이것은 《제 자본의 경쟁》[160]에서 상세히 론술 되여야 할 관점이지만—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진전에 따라, 소매상업으로 침투하기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투기의 발전 및 유리된 자본의 과잉에 따라 기능하지 않든가 또는 반기능밖에 하지 않는 상인자본이 증대된다.

그러나 총자본에 비한 상인자본의 상대적크기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면 각이한 상업부문들에 있어서의 회전의 차이는 상인자본의 몫으로 되는 총리윤의 크기에도 일반적리윤률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인의 리윤은 그가 회전시키는 상품자본의 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이 회전을 매개하기 위하여 그가 선대하는 화폐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된다. 일반적년리윤률이 15%이고 상인이 100파운드를 선대한다고 하면 그의 자본이 1년에 1회전하는 경우에는 그는 자기의 상품을 115로 판매할것이다. 그의 자본이 1년에 5회전한다면 그는 구입가격이 100인 상품자본을 103으로 1년에 5번 판매할것이며 따라서 1년간에는 500의 상품자본을 515로 판매할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여도 그의 선대자본 100에 대하여 얻는 년리윤은 여전히 15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상인자본은 그 회전수에 비례하여 산업자본보다 훨씬 높은 리윤을 얻게 될것인데 이것은 일반적리윤률의 법칙에 모순된다.

따라서 각이한 상업부문들에서의 상인자본의 회전수는 상품들의 상업가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 상업상의 가격추가의 크기 즉 일정한 자본의 상업리윤중 개개의 상품의 생산가격에 할당되는 부분의 크기는 각이한 사업부문들의 상인자본의 회전수 또는 회전속도에 반비례한다. 어떤 상인자본이 1년에 5회전한다면 그 상인자본은 동등한 가치의 상품자본에 대하여, 1년에 1회전밖에 할수 없는 다른 어떤 상인자본이 같은 가치의 상품자본에 첨가하는 추가액의 $\frac{1}{5}$밖에 첨가하지 않는다.

각이한 상업부문들에서의 자본들의 평균회전기간이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것으로 귀착된다. 즉 리윤량은 상인자본의 크기가 주어져있다면 일반적년리윤률에 의

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이 자본의 상업적활동의 특수한 성격에는 관계없이 규정되는데 이렇게 규정된 동일한 리윤량이 가치의 상품량에 분배되는 비례가 이 회전속도에 비례하여 각이하게 된다는것, 례컨대 년 5회전의 경우에는 상품가격에 $\frac{15}{5}$=3%가 첨가되나 년 1회전의 경우에는 15%가 첨가된다는것이다.

따라서 각이한 상업부문에서 상업리윤의 백분률은 동일하더라도 상품의 판매가격은 그 부문들에서의 회전기간에 비례하여 이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 전혀 각이한 백분률이 계산된다는데 의하여 이 률만큼 높아진다.

이와는 반대로 산업자본에 있어서는 회전기간은 생산되는 개개의 상품의 가치량에는 결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록 회전기간은 착취되는 로동량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주어진 자본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생산되는 가치 및 잉여가치의 량에는 영향을 주는것이지만. 이 사실은 생산가격을 념두에 두는 경우에는 물론 은폐되며 그렇지 않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각이한 상품들의 생산가격이 우에서 서술한 법칙들에 따라 그것들의 가치로부터 배리되기때문일따름이다. 총생산과정을, 총산업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량을 고찰한다면 일반적법칙이 확증된다는것을 곧 알게 된다.

이리하여 산업자본의 경우에 회전기간이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히 고찰하면 상품의 가치는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이 일반적법칙과 정치경제학의 기초로 돌아가게 되는데 한편 상업가격에 대한 상인자본의 회전의 영향이 보여주는 현상은 많은 중간항들을 극히 상세히 분석해보지 않는다면 가격의 완전히 자의적인

규정을 즉 자본이 1년간에 일정한 량의 리윤을 얻으려고 결심하고있다는 그 사실만에 의한 가격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같이 보인다. 특히 이러한 회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마치도 류통과정 그 자체가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생산과정과 독립적으로 상품가격을 규정하는것처럼 보인다. 재생산의 총과정에 관한 모든 피상적이며 전도된 견해는 상인자본의 고찰에서 취해온것이며 또 상인자본의 특유한 운동이 류통담당자의 머리속에 불러일으키는 관념에서 취해온것이다.

독자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인정해온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현실적인 내적련관들의 분석이 극히 복잡한 일이고 극히 세밀한 일이라면, 또 눈에 보이는 단순히 현상적인 운동을 내적인 현실적운동으로 환원하는것이 과학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적생산담당자 및 류통담당자들의 머리속에는 생산의 법칙들에 관하여, 이 법칙들로부터 완전히 배리되였으며 외관적인 운동의 의식정인 표현에 불과한 관념들이 형성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161] 상인이나 주식투기업자들이나 은행업자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완전히 전도되여있다. 제조업자들의 관념은 자기들의 자본이 복종하지 않을수 없는 류통행위들에 의하여 그리고 일반적리윤률의 평균화에 의하여 외곡되여있다.(41) 경쟁도 이들의 머리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완전히 전도된 역할을 논다. 가치와 잉여가치의 한계가 주어져있으면 자본들의 경쟁이 어떻게 가치를 생산가격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상업가

---

(41)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은 매우 소박하지만 동시에 또 매우 정확한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상품이 각이한 판매자에게서 대단히 다른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사정도 확실히 부정확한 계산에 그 원인이 있는 일이 아주 많다》(펠레르 및 오데르만 《상인적산술의 전체》 1859년 제7판[451페지]). 이것은 가격규정이 얼마나 순 리론적인것인가 즉 추상적인것인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격으로 전화시키고 잉여가치를 평균리윤으로 전화시키는가 하는것은 쉽게 간파할수 있다. 그러나 이 한계가 없으면 경쟁이 왜 일반적리윤률을 저 한계가 아니라 이 한계로, 1,500%가 아니라 15%로 귀착시키는가 하는것은 절대로 간파할수 없다. 경쟁은 일반적리윤률을 기껏해야 **하나의** 수준으로 귀착시킬수 있을따름이다. 그러나 이 수준 자체를 규정하기 위한 요소는 경쟁에는 절대로 없다.

따라서 상인자본의 관점에서는 회전 자체가 가격을 규정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자본의 회전속도는 주어진 자본이 착취할수 있는 로동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하는 한에서는 리윤량에,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에 규정적이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상업자본에 있어서는 리윤률은 외적으로 주어져있는것이며 리윤률과 잉여가치형성과의 내적련관은 전적으로 소멸되였다. 다른 사정들이 같고 특히 유기적 구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동일한 산업자본의 회전이 1년에 2회이던것이 4회로 된다면 이 자본은 2배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2배의 리윤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본이 그 자신에게 이와 같은 회전의 가속화를 허용할수 있게 하는 개량된 생산방식을 독점한다면 또 독점하고있는 동안은 극히 분명하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각이한 상업부문들에서의 각이한 회전기간은 일정한 상품자본의 1회전에서 얻게 되는 리윤은 이 상품자본을 회전시키는 화폐자본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는것으로 나타난다. 적은 리윤으로 급속히 회수시키는것은 특히 소매상에게 있어서는 그가 원칙으로서 준수하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자명한 일이지만 상인자본의 회전에 관한 이 법칙은 매개 상업부문에 있어서—보다 급속한 회전과 보다 완

만한 회전이 번갈아 나타나 서로 상쇄되는것은 무시한다—이 부문에 투하된 전체 상인자본에 의하여 수행되는 회전의 평균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것이다. B와 동일한 부문에 투하되는 A의 자본의 회전수는 평균회전수보다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다. 이 경우에 다른 자본들의 회전수는 평균회전수보다 적든가 또는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문에 투하된 상인자본의 총량의 회전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개개의 상인 또는 소매업자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는 이 경우에 초과리윤을 얻는데 그것은 산업자본가가 평균조건들보다도 유리한 조건들밑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초과리윤을 얻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쟁에 의하여 강요된다면 그는 자기의 리윤을 평균이하로 저락시키지 않고도 자기의 동료보다 더 싸게 판매할수 있다. 그에게 보다 급속한 회전을 할수 있게 하는 조건 자체가 매매할수 있는 조건이라면, 례컨대 판매장소의 위치라면 그는 그것을 위하여 특별임료를 지불할수 있다. 즉 그의 초과리윤의 일부분은 지대로 전화한다.

제 19 장

화폐거래자본

산업자본과 이제 우리가 첨가할수 있는 상품거래자본(이 상품거래자본은 산업자본의 류통운동의 일부분을 자기 자신의 특유한 운동으로서 넘겨받게 되므로)의 류통과정에서 화폐가 수행하는 순 기술적인 운동—이 운동은 자립화하여 하나의 특수한 자본의 기능으로 되며 이 자본이 그것을 그리고 그것만을 자기의 특유한 활동으로서 수행하게 될 때 이 자본을 화폐거래자본으로 전화시킨다. 산업자본의 일부분, 더 상세히 말하면 또 상품거래자본의 일부분은 계속 화폐형태로, 화폐자본일반으로서뿐만아니라 바로 이 기술적기능을 수행하고있는 화폐자본으로서도 존재할것이다. 이제는 총자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분리되여 화폐자본형태로 독립하는데 이 화폐자본의 자본주의적기능은 산업자본가 및 상업자본가 전체 계급을 위하여 이 활동을 수행하는데만 있다. 상품거래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류통과정에 화폐자본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산업자본의 일부분이 분리되여 나머지 전체 자본을 위하여 재생산과정의 이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화폐자본의 운동도 여전히 자기의 재생산과정중에 있는 산업자본의 독립화한 일부분의 운동에 불과하다.

오직 자본이 새로 투하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오직 그 한에 있어서만—축적의 경우에도 그렇지만—화폐형태에 있는 자본이 운동의 출발점과 종점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미 그 자체의 과정에 들어가있는 모든 자본에 있어서는 출발점도 종점도 다만 통과점으로서 나타날뿐이다. 산업자본은 생산분야에서 나와서 다시 생산분야로 들어갈 때까지 변태 W'—G—W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 한에서는 이미 단순한 상품류통의 경우에 보여준바와 같이 G가 변태의 한 단계의 결과인것은 사실상 다만 이 단계를 보충하는 반대단계의 출발점으로 되기 위한데 불과하다. 그리고 상업자본에 있어서는 산업자본의 W—G는 항상 G—W—G로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상업자본에 있어서도 일단 그것이 기능하기 시작하면 현실적과정은 언제나 W—G—W이다. 그러나 상업자본은 W—G와 G—W라는 두 행위를 동시에 수행한다. 즉 한 자본이 W—G라는 단계에 있을 때 다른 자본은 G—W라는 단계에 있을뿐만아니라 동일한 자본이 생산과정의 련속때문에 부단히 구매함과 동시에 부단히 판매한다. 그것은 동시에 부단히 두 단계에 있다. 그 일부분이 나중에 상품으로 재전화되기 위하여 화폐로 전화되는 동안에 다른 부분은 화폐로 재전화되기 위하여 상품으로 전화된다.

여기에서 화폐가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하는것은 상품교환의 형태에 의존한다. 두 경우에 다 자본가는 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폐를 지불하여야 하며 또 부단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화폐를 지불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화폐지불과 화폐수납의 단순한 기술적업무는 그 자체가 로동이며 이 로동은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는 차액계산, 결제행위를 필요하게 한

다. 이 로동은 하나의 류통비이며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로동이다. 이 로동은 그것이 하나의 특수한 부류의 대리자 또는 자본가에 의하여 나머지 전체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수행되는데 의하여 단축된다.

자본의 일정한 부분은 부단히 축장화폐로서, 잠세적인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구매수단의 준비, 지불수단의 준비, 화폐형태로 사용을 대기하고있는 유휴자본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본의 일부분은 부단히 이 형태로 환류한다. 이것은 수납이나 지불이나 부기외에도 축장화폐의 보관을 필요하게 하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의 특수한 업무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실상 축장화폐가 부단히 류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 분해되는것이며 또 판매에서 받는 화폐와 만기가 된 지불로부터 축장화폐가 재형성되는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기능 자체로부터 분리된, 화폐로서 존재하는 자본부분의 부단한 운동, 이 순 기술적인 업무가 특수한 로동과 비용—류통비—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되는 것이다.

자본의 기능들에 의하여 제약되여있는 이러한 기술적업무는 분업이 발전함에 따라 가능한 한 자본가계급 전체를 위하여 한 부류의 담당자 또는 자본가들에 의하여 전문적인 기능들로서 수행되든가 또는 그들의 수중에 집중된다. 그것은 이 경우에도 상인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중의 의미에서의 분업이다. 그것은 특수한 업무로 된다. 그리고 그것이 특수한 업무로서 이 계급 전체의 화폐기구를 위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중되여 대규모로 실시된다. 그렇게 되면 이 특수한 업무내부에서도 서로 독립한 각이한 부문들로의 분렬에 의하여, 또 이 부문들내부에서의 작업장의 형성에 의하여

또 분업이 일어난다(큰 사무소, 다수의 부기원과 출납원, 세분화된 분업). 화폐의 지불, 수납, 차액의 결제, 시좌구좌의 처리, 화폐의 보관 등등은 이러한 기술적업무들을 필요하게 하는 행위들로부터 분리되여 이 기능들에 선대되는 자본을 화폐거래자본으로 만든다.[162]

여러가지 업무가 독립하여 특수한 업무로 되는데 의하여 화폐거래업이 생기는데 이러한 업무는 화폐 자체의 각이한 규정성과 화폐의 제 기능으로부터 따라서 자본도 화폐자본의 형태에 있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제 기능들로부터 생기는것이다.

내가 이전에 지적한바와 같이 화폐제도일반이 최초에는 각이한 공동체들간에서의 생산물교환에서 발전하는것이다.(42)

그러므로 화폐거래업 즉 화폐상품을 취급하는 상업은 우선 국제교역으로부터 발전한다. 여러가지 국내주화가 존재하게 되면 외국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상인들은 자국의 주화를 그 지방의 주화로 또는 그와 반대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주화를 자국의 주화로 바꾸어야 하며 또 각이한 주화들을 세계화폐로서의, 주조하지 않은 순은 또는 순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로부터 환자업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근대적화폐거래업의 자연발생적기초의 하나로 보아야 할것이다.(43) 이로부터

---

(42) 《정치경제학비판》 27페지[163]

(43) 《주화가 중량과 품위로 보나, 주조권자였던 많은 군주들과 도시들의 타인으로 보나 극히 다종다양하였으므로 이미 이것으로부터도 주화에 의한 결제가 필요한 상업에서는 어디서나 그 지방의 주화를 사용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상인들은 외국시장에 려행할 때에는 현금지불을 위하여 주조하지 않은 순은을 준비하였으며 금도 준비하였다. 또한 그들은 귀로에 들어설 때 입수한 지방주화를 주조하지 않은 은이나 금과 바꾸었다. 그러므로 환자업 즉 주조하지 않은 귀금속을 지방주화로 바꾸는 일과 지방주화를 주조하지 않은 은 또는 금으로 바꾸는 일은 대단히 보급된 유리한 사업으로 되였다》(휠만 《중세기의 도시제도》, 1826~1829년. 본 판 제1권 437~438페지).— 《환자은행이라는 명칭이 생긴것은…위체나 위체수형에서가 아니라 화폐종류의 교환에

환자은행들이 발전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은(또는 금)이 류통주화와 구별되는 세계화폐로서—현재는 은행화폐 또는 상업화폐로서—기능한다. 환자업무는 그것이 단지 한 나라의 환자업자로부터 다른 나라의 환자업자에게 주는 려행자에 대한 지불지도서에 불과한 한에서는 이미 로마와 희랍에서도 본래의 환자업으로부터 발전한것이다.[164]

상품으로서의 금은(사치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거래는 금은거래업 즉 세계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들을 매개하는 상업의 자연발생적기초를 이룬다. 이 기능들은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제1부 제3장 제3절 c) 이중적이다. 즉 일방으로는 국제적지불의 결제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리자를 벌기 위한 자본의 이동에 수반하여 각국의 류통분야사이에서 일어나는 출입이동이 있으며 타방으로는 그와 함께 귀금속의 원산지로부터 나와 세계시장으로 가는 운동과 각국의 류통분야들 사이에서의 공급의 분배가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17세기의 대부분을 통하여 아직 금세공업자가 은행업자로서 기능하였다. 국제적지불의 결제가 수형거래 등등으로 더욱 발전하는것도, 또 유가증권업무에 관한 모든것도, 요컨대 여기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신용제도의 모든 특수한 형태들은 여

서이다. 1609년의 암스테르담 환자은행이 설립되기 훨씬 전에 네데를란드의 상업도시들에는 환자업자, 환자점 지어는 환자은행까지도 있었다…이 환자업자들의 업무는 외국상인들이 국내에 가지고오는 다종다양한 주화들을 법정통용력있는 주화로 바꾸는 일이였다. 그들의 활동범위는 점차 확대되였다…그들은 당시의 출납대리업자로 되였고 은행업자로 되였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정부는 출납대리업과 환자업의 결합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와 출납대리를 겸행하고 공적으로 활동할 일대 시설을 설립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시설이 유명한 1609년의 암스테르담 환자은행이였다. 마찬가지로 베네찌아, 제노바, 스톡크홀름, 함부르그의 환자은행들이 생긴것도 여러가지 화폐종류의 교환이 부단히 필요하게 되였기때문이였다. 이 모든 은행들중에서 지금도 존재하고있는것은 함부르그은행 하나뿐인데 자체의 주화제도가 없는 이 상업도시는 그러한 시설의 필요를 지금도 느끼고있기때문이다. 운운》(S. 비쎄링 《실용경제학 제요》, 1860년 암스테르담판, 제1권 247~248페지)

기에서 전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세계화폐로서는 국내화폐는 그 지방적성격을 벗어버린다. 어떤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의 화폐로 표현되며 그리하여 모든 나라의 화폐는 그것들의 금은 함유량으로 환원되는데 이 금은은 동시에 세계화폐로서 류통하는 두 상품으로서 부단히 변동하는 그것들의 호상가치비률로 환원되여야 한다. 이 매개를 화폐거래업자는 자기의 특수한 업무로 삼는다. 이와 같이 환자업과 금은거래업은 화폐거래업의 가장 시초적인 형태이며 그것은 화폐의 이중적기능 즉 국내화폐 및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과정으로부터 그리고 전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도 상업일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것들이 생긴다.

첫째로, 축장화폐로서의 화폐의 집적 즉 오늘날에는 자본중 지불수단 및 구매수단의 준비금으로서 항상 화폐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의 집적. 이것은 축장화폐의 제1형태이며 이 축장화폐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서 재현되고 또 일반적으로 상업자본의 발전에 수반하여 적어도 상업자본을 위하여 형성되는것이다. 어느것이나 국내류통에도 국제류통에도 적용된다. 이 축장화폐는 부단히 류동하는것이여서 부단히 류통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부단히 류통으로부터 되돌아온다. 다음에 축장화폐의 제2형태는 화폐형태로 놀고있어 잠시 운용되지 않고있는 자본의 형태인데 새로 축적되였으나 아직 투하되지 않은 화폐자본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화폐축장 자체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는 기능들은 우선 그 보관이나 기장 등등이다.[165]

그러나 **둘째로**, 이러한것에는 구매할 때의 화폐의 지출, 판매할때의 화폐의 수납, 지불금의 지불과 령수, 지불의 결

제 등등이 결부되여있다. 이 모든것을 화폐거래업자는 처음에는 상인이나 산업자본가의 단순한 **출납업자**로서 수행한다.(44)

화폐거래업은 그 원래의 기능에 대부의 기능과 신용의 거래가 결합하게 되면 충분한 발전을 보게 되는것이다. 비록 이러한것은 이미 화폐거래업의 발단에서도 있기는 하였지만. 이에 관하여는 다음편 리자부자본에서 서술할것이다.

금은거래 그 자체 즉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의 금은의 이전은 상품거래의 결과에 불과하며 그것은 국제지불상태와 각이한 시장들에서의 리자률상태를 표현하는 환자시세에

---

(44) 《네데를란드의 상업도시만큼 출납업자의 제도가 그 최초의 독립적인 성격을 순수하게 보존하고있는 곳은 아마 더는 없을것이다》(암스테르담에서의 출납업의 기원에 관하여는 E. 류자크 《화란의 부》 제3권을 보라). 《그들의 기능의 일부분은 구 암스테르담 환자은행의 기능과 일치하다. 출납업자는 자기의 업무를 리용하는 상인들로부터 일정한 화폐액을 받고 그 대신에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장부에 <대방란>을 개설한다. 그리고 또 상인들은 출납업자에게 자기들의 채권서류를 보내면 그는 상인 대신에 그것을 징수하고 그 금액을 그들의 대방에 기입한다. 타방으로 그는 상인들의 수형에 대하여 지불을 하고 그 금액을 그들의 시좌계산의 차방에 기입한다. 다음에 그는 이러한 수입금과 지불금에 대하여 소액의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그것은 이 량자간에서 처리하는 거래액의 크기에 따라서만 그의 로동에 해당한 보수를 얻게 된다. 동일한 출납업자와 거래하고있는 두 상인간에서 지불의 결제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지불은 호상 기장에 의하여 매우 간단히 처리되는데, 그것은 출납업자가 그들을 위하여 매일 그들의 호상 청구액을 결제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불의 매개가 본래의 출납업인것이다. 그러므로 출납업은 산업적기업, 투기, 백지신용의 개설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원칙은 출납업자가 자기의 장부에 구좌를 개설해준 사람을 위하여 결코 그 대방잔고를 넘는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것이여야 하기때문이다》(비쎄링 《실용경제학 제요》 243~244페지).—베네찌아의 금고조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필요에 의하여 그리고 현금을 이리저리 운반하기가 다른 지방에서보다도 어려운 베네찌아의 지형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의 도매상들은 적당한 보증, 감독 및 관리하에 금고조합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조합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고 이것을 담보로 하여 그들의 채권자에게 수형을 발행한다. 그다음에 지불된 금액이 그때문에 개설된 장부중의 채무자의 페지에서 차방에 기입되고 또 그것이 장부중의 채권자의 대방잔고에 추가되였다. 이것이 소위 환치은행의 최초의 맹아이다. 이 조합은 확실히 오랜것이다. 그러나 이 조합의 기원을 12세기에까지 거슬러올라가 찾는다면 그것은 이 조합을 1171년에 설립된 국채시설과 혼동하는것이다》(휩만 《중세기의 도시제도》, 제1권 453~454페지).

의하여 규정된다. 금은거래업자 그 자신은 다만 이 결과를 매개할따름이다.

화폐의 고찰에 있어서 화폐의 운동과 형태규정이 단순한 상품류통으로부터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것을 고찰할 때 이미 본바와 같이(제1부 제3장), 구매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서 류통하는 화폐량의 운동은 상품변태에 의하여, 즉 상품변태의 규모와 속도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것은 또 우리가 이제는 알고있는것처럼 그 자체가 다만 총재생산과정의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것이다. 화폐재료—금은—의 원산지로부터의 조달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직접적인 상품교환 즉 상품으로서의 금은과 다른 상품과의 교환으로 귀착되며 따라서 그 자체가 철이나 기타 금속의 조달과 마찬가지로 상품교환의 한 계기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귀금속의 운동에 관하여 말한다면(여기에서는 귀금속의 운동이 대차에 의한 자본의 이전, 상품자본의 형태로도 진행되는 이전을 표현하는 한에서는 이 운동을 문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제적상품교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은 국내적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운동이 국내적상품교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과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어떤 나라의 류통분야로부터 다른 나라의 류통분야로의 귀금속의 출입이동은, 그것이 다만 국내주화의 가치감소나 복본위제[11]에 의하여 일어나는 한에서는 화폐류통 그 자체와는 인연이 없는것이며 국가가 자의로 초래한 편향의 단순한 시정에 불과하다. 끝으로 축장화폐의 형성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이 국내상업이나 대외무역을 위한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의 준비금을 표시하는 한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휴자본형태인 한에서는 어느 경우에나 다 류통과정의 필연적인 침전물에 불과하다.

전체 화폐류통이 그 범위, 그 형태, 그 운동들에 있어서 상품류통의 단순한 결과이며 이 상품류통 자체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의 류통과정(여기에는 수입의 지출이 소매업에서 실현되는 한에서는 자본과 수입, 수입과 수입과의 교환도 포함되여있다)을 표시할따름이라면 역시 자명한 일이지만 화폐거래업은 상품류통의 단순한 결과이며 현상방식인 화폐류통을 매개할뿐이 아니다. 이 화폐류통 자체는 상품류통의 하나의 계기로서 화폐거래업에 있어서는 주어져있는것이다. 화폐거래업이 매개하는것은 화폐류통의 기술적업무이며 이 업무를 화폐거래업은 집중하고 단축하고 간단화하는것이다. 화폐거래업은 축장화폐를 형성하는것이 아니라 이 화폐축장이 자발적인 한에서는(따라서 유휴자본이나 재생산과정의 교란의 표현이 아닌 한에서는) 그것을 그 경제적최소한으로 축소하기 위한 기술적수단을 제공하는것이다. 왜냐하면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을 위한 준비금은 전체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매개 자본가에 의하여 따로따로 관리되는 경우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다. 화폐거래업은 귀금속을 구매하는것이 아니며 다만 상품거래업이 그것을 구매한후에 귀금속의 분배를 매개할따름이다. 화폐거래업은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는 차액결제를 쉽게 하는것이며 또 이 결제에 필요한 화폐량을 이 결제의 인위적인 기구에 의하여 감소시킨다. 그러나 화폐거래업은 호상지불의 련관도 범위도 규정하지 않는다. 례컨대 은행과 수형교환소들에서 서로 교환되는 수형과 행표는 완전히 독립적인 사업들을 표시하고 주어진 활동들의 결과이며 문제는 다만 이 결과들을 더 잘 기술적으로 결제하는데 있을뿐이다.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 류통하는 한에서는 매매의 범위와 차

수는 화폐거래업과는 전혀 관계없는것이다. 화폐거래업은 다만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기술적활동들을 단축할수 있을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전에 필요한 현금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뿐이다.

따라서 화폐거래업은 여기에서 고찰되고있는 순수한 형태로서는 즉 신용제도와 분리된것으로서는 다만 상품류통의 하나의 계기인 화폐류통의 기술과 이 화폐류통으로부터 생기는 여러가지 화폐기능들과 관계가 있을뿐이다.

이 점이 화폐거래업을 상품거래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게 하는것이다. 상품거래업은 상품의 변태와 상품교환을 매개하고 또는 상품자본의 이 과정을, 산업자본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자본의 과정으로서 나타나게까지 한다. 그러므로 상품거래자본은 그 자체의 류통형태 G—W—G를 표시하며 이형태에서는 상품이 두번 장소를 바꾸는데 의하여 화폐가 환류하는데 그것은 W—G—W에서 화폐가 두번 그 소유자를 바꾸는데 의하여 상품교환을 매개하는것과 반대로 되여있으나 화폐거래자본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특수한 형태를 표시할수는 없다.

화폐자본이 한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에 의하여 화폐류통의 이 기술적인 매개에 선대되는 한에서는—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인과 산업자본가들 자신이 목적에 선대하지 않을수 없는 추가자본을 축소된 규모로 표시하는 자본—자본의 일반적형태인 G—G′는 여기에도 현존하고있다. G의 선대에 의하여 G+⊿G가 선대자를 위하여 산생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G—G′의 매개는 변태의 물적계기에 관계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그 기술적계기에 관계할뿐이다.

화폐거래업자가 취급하는 화폐자본의 총량은 류통중에

있는 상인과 산업가들의 화폐자본이라는것, 그리고 화폐거래업자가 수행하는 활동은 상인과 산업가의 활동이 화폐거래업자에 의하여 매개되는데 불과하다는것은 아주 분명하다.

또한 화폐거래업자의 리윤은 잉여가치로부터의 공제분에 불과하다는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만 이미 실현된 가치(채권의 형태로 실현될따름인 경우에도)와 관계를 가질따름이기때문이다.

상품거래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기능의 이중화가 생긴다. 왜냐하면 화폐류통과 결부된 기술적업무의 일부분은 상품거래업자와 상품생산자들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제 20 장

상인자본에 관한 력사적고찰

상품거래자본 및 화폐거래자본의 화폐축적의 특수한 형태는 다음편에 가서 고찰하게 된다.

우에서 서술한바에 의하여 자명한것이지만 바로 광산업; 농업, 축산업, 제조업, 운수업 등등이 사회적분업에 의하여 형성된 산업자본의 분지를 이루며 따라서 특수한 투자분야를 이루고있는것처럼 상품거래자본의 형태나 화폐거래자본의 형태에 있는 상인자본도 산업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종류라고 간주하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매개 산업자본은 그 재생산과정의 류통단계에 있는 동안은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으로서 이 두 형태에 있는 상인자본의 전문적기능들로서 나타나는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조금만 보기만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것과 같은 조잡한 견해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에 있어서는 생산자본으로서의 산업자본과 류통분야에 있는 산업자본간의 구별이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하여 독립화되여있다. 즉 자본이 류통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취하는 일정한 형태들과 기능들이 자본의 분리된 부분의 독립적인 형태들과 기능들로서 나타나며 오직 자본의

그 부분과만 결합되여있다는것에 의하여 독립화되여있다. 산업자본의 전화형태와 각이한 생산분야에 투하되여있는 생산자본들간에는 각이한 산업부문들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소재적차이로 말미암아 천양지차가 있는것이다.[166]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는 실지는 다만 소재적측면에만 관심을 가지는 형태상 차이를 조잡하게 고찰하고있는데 이러한 조잡성외에도 속류경제학자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혼동의 기저에 두가지 사정이 더 놓여있다. 첫째로는 그가 상업리윤을 그 특성에 의하여 설명할 능력이 없다는것. 둘째로는 그의 변호론적노력인데 이 노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상품류통 따라서 화폐류통을 그 기초로서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특수한 형태에서 나오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라는 형태를, 더 나가서는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이라는 형태를 생산과정 그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모습들로서 도출하려고 하는것이다.

상품거래자본이나 화폐거래자본이 곡물재배와 구별되는것은 곡물재배가 축산업이나 제조업과 구별되는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것도 아주 분명하다. 즉 생산과 자본주의적생산과는 완전히 동일하다는것, 그리고 특히 생산적소비를 위한것이든 개인적소비를 위한것이든간에 사회성원들사이에서의 사회적생산물의 분배도 영원히 상인과 은행업자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은 마치 육류의 소비가 축산에 의하여, 의류의 소비가 그 제조에 의하여 영원히 매개되지 않으면 안되는것과 같은것이라는것은 분명하다.(45)

---

(45) 현명한 로쉐르[167]가 머리를 짜서 생각해낸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상업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매개》로서 특징짓는다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생산 자체를 소비의 《매개》(누구와 누구사이의?)로서 특징지을수 있을것이며 이로부터 당연히 상

스미스, 리카도 등등과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들도 자본의 기본형태인 산업자본으로서의 자본을 고찰하고 류통자본(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은 사실상 그 자체가 각 자본의 재생산과정중의 한 단계인 한에서만 고찰하고있기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독자적종류로서의 상업자본에 대하여는 당황하게 되였다. 산업자본의 고찰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가치형성, 리윤등등에 관한 명제는 직접으로는 상인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상인자본을 사실상 전혀 문제로 하지 않고 산업자본의 한 종류로서 그것에 언급하고있을따름이다. 그들이 특히 상인자본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례컨대 리카도가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그렇게 하고있는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상인자본이 가치를(따라서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외무역에 적용되는것은 국내무역에도 적용되는것이다.[169]

이상에서 상인자본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생산방식의 한계내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상업뿐만아니라 상업자본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보다 오랜것이며 사실상 그것은 자본의 력사적으로 가장 오랜 자유로운 존재방식이다.

업자본은 농업자본이나 공업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자본의 일부분이라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인간은 생산에 의하여서만 자기의 소비를 매개할수 있다(인간은 라이프찌히적교육[168]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거나 또는 자연을 점유하기 위하여는 로동이 필요하다(이것을 《매개》라고 부를수 있다)고 말할수 있으므로 이로부터는 당연히 생산의 특수한 사회적형태로부터 나오는 사회적《매개》도—그것은 매개이기때문에—필연성이라는 동일한 절대적성격을,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는것으로 된다. 매개라는 용어만으로 모든것을 결정한다. 그밖에 상인은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생산자들로부터 구별된 소비자들 즉 생산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당분간 도외시한다)간의 매개자가 아니고 이 생산자들 호상간의 생산물교환의 매개자이며 다만 무수한 경우에 그가 없이도 진행되는 교환의 중개자에 불과하다.

이미 본바와 같이 화폐거래업과 거기에 선대되는 자본은 그 발전을 위하여서는 도매상업의 존재, 더 나아가서는 상품거래자본의 존재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여야 할것은 다만 상품거래자본뿐이다.

상업자본은 류통분야에서 벗어나지 않는것이며 또 그 기능은 오직 상품교환을 매개하는것뿐이므로 그 존재를 위하여는—직접적물물교환에서 생기는 미발전형태들은 도외시한다—단순한 상품류통 및 화폐류통에 필요한 조건들 이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는 단순한 상품류통 및 화폐류통이 오히려 **상업자본**의 존재조건인것이다. 상품으로서 류통에 들어가는 생산물들이 어떠한 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 생산되든간에—원시공동체의 기초우에서 생산되든 또는 노예제생산, 소농민적 및 소시민적생산,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 생산되든간에—그로 말미암아 이 생산물들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으며 상품으로서의 이 생산물들은 모두다 교환과정과 거기에 수반되는 형태변화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인자본에 의하여 매개되는 량극은 상인자본에 대하여는 주어져있는것으로서 그것은 그 극들이 화폐에 대하여서나 화폐운동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유일하게 필요한것은 이러한 극들이 상품으로서 존재한다는것뿐이며 이 경우에 생산이 전체 범위에 걸쳐서 상품생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영생산자들의 생산에 의하여 그들의 직접적욕망을 충족시키고 남는 초과분만이 시장에 투입될뿐인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상인자본은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전제로서의 이러한 극의 운동 즉 상품들의 운동을 매개할따름이다.

생산물이 상업으로 들어가며 상인의 손을 통과하는 범위

는 생산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이 충분히 발전한 때에 그 최대한에 달한다. 이때에 생산물은 오직 상품으로서만 생산되고 직접적소비품으로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어떤 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도 상업은 생산자들(여기에서는 생산물의 소유자라고 생각해도 된다)의 향락이나 축장화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교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잉여생산물의 생산을 촉진하며 따라서 생산에 더욱더 교환가치를 목적하는 성격을 부여한다.

상품의 변태, 상품의 운동은 1) 소재적으로는 각이한 상품들 호상간의 교환으로써 이루어지며 2) 형태적으로는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 즉 판매와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 즉 구매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인자본의 기능은 이러한 기능에 즉 매매에 의한 상품들의 교환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인자본은 다만 상품교환을 매개할따름이다. 그러나 이 상품교환을 처음부터 단지 직접적생산자들간의 상품교환으로만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노예관계, 농노관계, 공납관계(원시공동체가 고찰되는 한에서)에 있어서는 노예소유자, 봉건령주, 공납수령국가가 생산물의 소유자이며 따라서 그 판매자이기도 하다. 상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매매한다. 매매는 상인의 수중에 집중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매매는 구매자(상인으로서의)의 직접적수요와 결부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상인에 의하여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생산분야의 사회적조직이 어떠하든간에 상인의 재산은 항상 화폐재산으로서 존재하며 그의 화폐는 항상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이 자본의 형태는 항상 G—W—G'이다. 교환가치의 독립적형태인 화폐가 출발점이며 교환가치의 증식이 독립적목적이다. 상품교환 그 자체와 이것을 매개하는 활동—생산에서 분리되여

비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은 단순히 부의 중식수단인것이 아니라 교환가치로서의 일반적인 사회적형태로 있는 부의 중식수단일따름이다. 추진적동기와 규정적목적은 G를 G+⊿G로 전화시키는것이다. G—G′라는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 G—W와 W—G′는 다만 이러한 G로부터 G+⊿G로의 전화의 과도적계기로서 나타날따름이다. 상인자본의 특징적인 운동으로서의 이 G—W—G′가 사용가치의 교환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생산자자신들간의 상품거래 W—G—W로부터 상인자본을 구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이 발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화폐재산은 그만큼 더 상인의 수중에 집중되거나 또는 그만큼 더 상인재산의 특수한 형태로서 나타날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는—즉 자본이 생산 자체를 정복하고 그것에 완전히 변화된 특수한 형태를 부여하는 때에는—상인자본은 하나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으로서만 나타난다. 이전의 모든 생산방식에서는 그리고 생산이 직접 생산자 자신들의 생활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일수록 상인자본은 그만큼 더 자본의 특히 뛰여난 기능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본이 생산 자체를 자기에게 종속시키기 훨씬 전에 상인자본이 왜 자본의 력사적형태로서 나타나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상인자본의 존재와 일정한 정도로의 발전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을 위한 력사적전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1) 화폐재산의 집적의 전제조건이기때문이며 또 2)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상업을 위한 생산을 전제로 하며 개개의 고객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대량적 판매를, 따라서 또 자기의 개인적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구매

하는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구매행위들을 자기의 구매행위에 집중하는 상인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상인자본의 일체 발전은 생산에 더욱더 교환가치를 목적하는 성격을 부여하며 생산물을 더욱더 상품으로 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상인자본의 발전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우리가 아래에서 더욱 상세히 볼것이지만 하나의 생산방식의 다른 생산방식으로의 이행을 매개하고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상인자본은 이전의 독립적존재로부터 자본투하일반의 하나의 특수한 계기로 떨어지며 리윤의 평균화는 상인자본의 리윤률을 일반적평균수준으로 귀착시킨다. 상인자본은 다만 생산적자본의 대리자로서만 기능한다. 상인자본의 발전에 따라 형성되는 특수한 사회상태는 여기에서는 더는 규정적인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인자본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가 지배한다. 이러한것은 같은 한 나라안에서도 말할수 있는데 례컨대 순수한 상업도시는 같은 한 나라안에서도 공업도시와는 전혀 다른 과거의 상태의 류사물을 이루고있는것이다.(46)

상인자본으로서의 자본이 독립적으로 우세하게 발전한다는것은 생산이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있다는것, 따라서 자본

(46) W. 키쎌바흐씨(《중세기에 있어서의 세계상업사와 구라파사회생활의 발전》 1860년판)는 사실상 여전히 상인자본이 자본일반의 형태인 세계의 관념속에서 살고있다. 그는 자본의 현대적의미에 대하여는 조금도 감득하지 못하고있는데 이는 《로마사》에서 《자본》과 자본의 지배를 말하고있는 몸젠씨와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근대사에서 본래의 상업신분과 상업도시는 정치적으로도 반동적인것으로 나타나고있으며 토지귀족이나 금융귀족과 동맹하여 산업자본에 대항하여나서고있다. 례컨대 리버풀의 정치적역할을 만체스터와 버밍엄의 역할과 비교하여보라. 산업자본의 완전한 지배는 곡물관세[68] 등이 폐지된후에야 비로소 영국의 상인자본과 금융귀족(moneyed interest)에 의하여 인정되였다.

이 자본과는 인연이 없는,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생산형태에 기초하여 발전한다는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상인자본의 독립적발전은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적발전과 반비례한다.

독립적인 상인재산은 자본의 지배적형태로서는 류통과정이 그 량극으로부터 독립한것을 의미하는데 이 량극이란 교환하는 생산자들 자신이다. 이 량극은 류통과정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또 류통과정도 이 량극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생산물은 여기서는 상업을 통하여 상품으로 된다. 여기서는 바로 상업이 생산물의 상품화를 발전시키는것이며 생산된 상품의 운동이 상업을 형성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본은 류통과정에서 처음으로 자본으로서 모습을 나타낸다. 류통과정에서 화폐는 자본으로 발전한다. 류통에서 생산물은 처음으로 교환가치로서 발전하며 상품 및 화폐로서 발전한다. 자본은 류통과정의 량극 즉 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각이한 생산분야들을 지배할수 있게 되기전에 류통과정에서 형성될수 있으며 또 거기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화폐류통과 상품류통은 그 내부적구조로 보아 아직도 주로 사용가치의 생산을 지향하고있는 극히 다종다양한 조직을 가진 생산분야들을 매개할수 있다. 이처럼 류통과정이 독립하여 거기에서 각이한 생산분야들이 제삼자를 통하여 서로 결합되는것은 두가지를 표현한다. 즉 한편으로는 류통이 아직 생산을 지배하지 않았고 생산에 대하여서는 주어진 전제에 대한 관계에 있다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이 아직도 류통을 단순한 계기로서 자체속에 포함하고있지 않다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그와는 반대로 이 두가지가 다 진행된다. 생산과정은 완전히 류통에 기초하고있으며 또 류

통은 생산의 하나의 단순한 계기, 하나의 통과단계이며 단순히 상품으로서 생산된 생산물의 실현이고 상품으로서 생산된 생산물의 생산요소들의 보상이다. 류통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자본형태인 상업자본은 여기에서는 다만 재생산운동중에 있는 자본의 형태들중의 하나로서 나타날따름이다.[170]

상인자본의 독립적발전은,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도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베네찌아인이나 게누아인이나 화란인 등등에게 있어서와 같은 중개상업(carrying trade)의 력사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있다. 즉 이 경우에는 주요한 리익은 자국 생산물의 수출에 의하여 얻는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공동체의 생산물의 교환을 매개하는데 의하여 그리고 쌍방의 생산국을 착취하는데 의하여 얻는것이다.(47) 이 경우에는 상인자본은 순수한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매개되는 량극 즉 생산분야들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이 상인자본형성의 주요원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개상업의 독점도 따라서 또 이 상업 자체도 이 독점에 의하여 쌍방에서 착취당하였으며 그 미발전에 의하여 이 독점의 존재의 기초를 이루고있던 그 민족들의 경제적발전에 따라 쇠퇴한다. 중개상업의 경우에 이것은 특수한 한 상업부문의 쇠퇴로서 나타날뿐만아니라 또한 순 상업민족들의 우세의 쇠퇴와 이 중개상업에 기초한 그들의 상업적부일반의 쇠

---

(47) 《상업도시의 주민들은 보다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정교한 가공품과 비싼 사치품을 수입하고 대토지소유자들의 허영심을 조장하였다. 대토지소유자들은 이러한 상품을 탐욕적으로 구매하였고 그 대가로 그들의 소유지의 대량의 원료생산물을 지불하였다. 이리하여 이 시대의 구라파의 대부분의 상업은 일국의 원료생산물을 공업적으로 보다 진보한 나라의 가공생산물과 교환하는데 있었다…이러한 취미가 일반적으로 류행되고 상당한 수요를 불러일으켰을 때 상인들은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류사한 가공업을 자국내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A. 스미스[《제 국민의 부》, 애버딘 1848년 런던판] 제3권 제3장[267페지]).

퇴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행정에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된다는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상인자본이 직접 생산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 상인자본이 어떠한 경영방법을 취하는가 하는데 대하여는 식민지경영일반(소위 식민제도)뿐만아니라 특히 구화란동인도회사[157]의 경영이 적절한 실례를 제공한다.

상인자본의 운동은 G—W—G'이므로 상인의 리윤은 첫째로, 류통과정내부에서만 진행되는 행위에 의하여 즉 구매와 판매라는 두개 행위에 의하여 련계된다. 둘째로, 그것은 최종행위인 판매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이것은 양도리윤 profit upon alienation[114]이다. 얼핏 보아 순수한 독립적인 상업리윤은 생산물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는 한에서는 불가능한것 같다. 비싸게 팔기 위하여 싸게 산다는것이 상업의 법칙이다. 따라서 등가물의 교환인것이 아니다. 거기에 가치라는 개념이 포함되여있는것은 각이한 상품들이 모두 가치이고 따라서 화폐이며 질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사회적로동의 표현인 한에서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품들은 동등한 가치량이 아니다. 생산물들이 교환되는 량적비률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우연적이다. 생산물이 상품형태를 취하는것은 그것들이 대체로 교환될수 있는것, 즉 동일한 제삼자의 표현인 한에서이다. 련속적인 교환과 교환을 위한 보다 규칙적인 재생산은 점점 이 우연성을 없앤다. 그러나 우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량자간의 매매자 즉 여러가지 화폐가격을 비교하고 차액을 차지하는 상인을 위하여서이다. 상인은 자기의 운동 자체에 의하여 등가성을 확립한다.

상업자본은 처음에는 다만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량극간의,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는 전제들간의 매개운동에

불과하다.

단순한 상품류통형태 W—G—W로부터 화폐는 비단 가치척도나 류통수단으로서뿐만아니라 상품의, 따라서 또 부의 절대적형태로서, 축장화폐로서 나타나고 그 화폐로서의 자기보존과 증대가 자기목적으로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상인자본의 단순한 류통형태인 G—W—G'로부터 화폐, 축장화폐는 단순한 양도에 의하여 자기를 보존하고 증식하는것으로서 나오는것이다.

고대의 상업민족은 세계의 간극에 있는 에페쿠로스의 신들[171]과 같이 또는 오히려 파란사회의 빈틈에 끼여사는 유태인들과 같이 존재하고있었다. 최초의 독립적인, 대규모로 발전한 상업도시들과 상업민족들의 상업은 순전한 중개상업으로서, 생산적인 민족들의 미개상태에 기초하고있었는데 그들은 이 민족들사이에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놀았다.[172]

자본주의사회 이전의 단계들에서는 상업이 산업을 지배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그와는 반대이다. 공동체들사이에서 진행되는 상업은 물론 많게나적게나 이 공동체에 반작용을 할것이다. 상업은 생산을 점점 더 교환가치에 종속시킬것이다. 왜냐하면 상업은 향락이나 생활유지를 생산물의 직접적 사용보다도 오히려 판매에 의존시키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상업은 낡은 관계들을 분해한다. 상업은 화폐류통을 증가시킨다. 상업은 이제는 다만 생산물의 잉여를 장악할뿐만아니라 점차 생산 그 자체를 침식하고 전체 생산부문을 자기에게 의존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분해작용은 생산적공동체의 성질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상업자본이 미발전의 공동체들사이의 생산물교환을 매개하는 한에서는 상업리윤은 사기협잡으로 보일뿐만아니라 대

부분 실제로 사기협잡에서 생기는것이다. 상업자본이 각이한 나라들의 생산가격간의 차액을 착취한다는것(그리고 이 점에서는 상업자본은 상품가치의 평균화와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은 도외시하고도 그 생산방식들하에서는 상인자본이 잉여생산물의 절대적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상인자본을 자기들간의 중개자로 하는 공동체들의 생산이 아직 기본적으로는 사용가치를 지향하고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 경제적조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류통에 들어가는 생산물부분을 판매한다는것,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그 가치대로 판매한다는것은 부차적의의밖에 가지지 않기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그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방식하에서는 상인의 거래상태인 잉여생산물의 주요소유자 즉 노예소유자나 봉건령주나 국가(례컨대 동양의 전제군주)가 향락적부를 대표하며 상인이 이 부를 노리고 덫을 치기때문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A. 스미스가 우에서 인용된 봉건시대에 관한 구절에서 옳게 그려내고있는것이다. 따라서 상업자본의 우세한 지배가 어디서나 략탈체계를 표시하고있으며(48) 또 상업자본

(48) 《지금 상인들은 귀족과 도적에 대하여 몹시 원망하고있다. 그것은 상인들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거래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설상가상으로 붙잡히고 매를 맞고 과세를 당하고 도적을 맞는다는것이다. 그러나 상인들이 정의를 위하여 이런것을 참는다면 물론 그들은 성인일것이다…그러나 그렇게 큰 부정과 비기독교적 절도와 략탈은 전 세계에서 상인들에 의하여 또 그들 호상간에서도 행하여지고있으므로 부정에 의하여 얻는 이러한 큰 재물이 다시 상실되거나 략탈당하거나 지어 그들 자신이 골롱을 얻어맞던가 붙잡히도록 하느님이 배려한다고 하여 무엇이 이상할것인가?…그리고 군주들이 그러한 부정한 상거래를 정당한 권력으로써 처벌하고 자기들의 신민들이 상인들에 의하여 그처럼 파렴치하게 략취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는것은 지당한 일이다. 군주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느님은 기사와 도적놈을 필요로 하며 그들을 써서 상인들의 부정을 처벌하는것이며 또 하느님의 악마는 바로 하느님의 악마를 써서 애급나라와 전 세계를 괴롭히고 혹은 적을 사용하여 그것을 멸망시키는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하느님은 한 악인을 써서 다른 악인을 처치하는데 그렇지만 하느님은, 기사는 1년에 한번이나 두번 한두사람을 략탈할뿐이지만 상인은 매일 전 세계를 략탈하므로 기사는 상인보다 작은 도적이라는것을 알게 하려고하는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군주들은 도적과

의 발전은 고대의 상업민족들에 있어서나 새로운 시대의 상업민족들에 있어서나 폭력적강탈, 해적, 노예사냥, 식민지의 압제와 직접 결부되여있는데 례컨대 까르타고, 로마에서 그러하였으며 나중에는 베네찌아인, 포도아인, 화란인 등등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상업 및 상업자본의 발전은 도처에서 교환가치를 지향하는 생산을 발전시키고, 그것의 범위를 확대하며 그것을 다양화하고 세계화하며 화폐를 세계화폐로 발전시킨다. 그때문에 상업은 기존생산조직들 즉 그 형태들은 모두 각이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용가치의 생산을 지향하고있는 기존생산조직들에 대하여 도처에서 다소간 분해적작용을 한다. 그러나 상업이 어느 정도까지 낡은 생산방식의 분해를 일으키게 하는가 하는것은 우선 낡은 생산방식의 견고성과 그 내부구성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 분해과정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즉 낡은 생산방식 대신에 어떠한 새 생산방식이 나타나는가 하는것은 상업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낡은 생산방식 자체의 성격에 의존하는것이다. 상업의 작용과 상인자본의 발전은 고대세계에서는 항상 노예경제를 그 결과로서 가져왔으며 때로는 출발점여하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생활수단의 생산을 지향하는 가부장적노예제도가 잉여가치의 생산을 지향하는 노예제도로

한무리로 되였다는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라. 그들은 1굴덴이나 반굴덴을 훔친 도적놈의 목을 매면서 전 세계를 도적질하는 놈들과 한동아리가 되여 다른 어떤 도적놈들보다도 더 기탄없이 훔치고있으미 실로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의 목을 맨다는 속담은 오늘에 있어서도 의연히 들어맞는것이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 카토가 말한것처럼 작은 도적은 옥에 갇히고 칼을 쓰나 큰 도적은 황금과 비단을 감고다니는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하느님은 그가 에제키엘에게 말한바와 같이 할것이다. 즉 한 도시가 불타서 이제는 군주도 상인도 없어져버리도록 하느님은 이 도적놈 저 도적놈 할것없이, 납과 청동처럼 한데 녹아붙게 만들것이다.》(마르틴 루테르 《상거래와 고리대에 관하여》 1527년[173])

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현대세계에서는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결과로서 가져온다. 이로부터 이러한 결과들 자체는 상업자본의 발전외에 또 전혀 다른 사정들에 의하여 제약되였다고 결론할수 있다.

도시산업 그 자체가 농업으로부터 분리되자 그 생산물은 처음부터 상품이며 따라서 그 판매는 상업의 매개를 필요로 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업은 도시발전에 의거하고 한편 도시발전은 상업에 의하여 제약된다는것은 그 한에서는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산업적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상업과 손을 잡고 나가는가 하는것은 전혀 다른 사정들에 의존한다. 고대로마에서는 이미 공화제 후기에 산업적발전은 조금도 진보하지 않았는데 상인자본은 고대세계에서는 미증유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코린트나 구라파 및 소아시아의 기타 희랍도시들에서는 상업의 발전은 산업의 높은 발전을 수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발전과 그 조건들과는 정반대로 상업정신과 상업자본의 발전은 종종 바로 정착하지 않은 유목민족들에 고유한것이였다.

의심할 여지도 없지만—바로 이 사실은 전혀 그릇된 견해들을 낳았다—16세기 및 17세기에 지리적발견[174]과 관련하여 상업에서 일어났으며 상인자본의 발전을 급속하게 촉진한 대혁명들이 봉건적생산방식으로부터 자본주의적생산방식으로의 이행을 촉진한 하나의 주요한 계기를 이룬다. 세계시장의 돌연적인 확장, 류통하는 상품들의 몇배의 증가, 아시아의 생산물과 아메리카의 재부를 차지하려는 구라파국가들간의 경쟁, 식민제도—이러한 모든것들은 생산의 봉건적제한의 타파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현대적생산방식은 그 최초의 시기인 공장제수공업시기에는 오직 그것을 위한

조건들이 중세기에 이미 형성되였던 곳에서만 발전하였다. 례컨대 화란과 뽀르뚜갈을 비교하여 보라.(49) 그리고 16세기와 부분적으로는 17세기에도 상업의 돌연적인 확장과 새로운 세계시장의 형성은 낡은 생산방식의 몰락과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앙양에 압도적영향을 주었다면 이것은 도리여 이미 형성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 일어났던것이다. 세계시장 그 자체는 이 생산방식의 기초를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 부단히 증대되는 규모로 생산하려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내재적인 필연성은 세계시장의 부단한 확대를 가져오는것이며 그리하여 이 경우에 상업이 산업을 변혁시키는것이 아니라 산업이 부단히 상업을 변혁시킨다. 상업지배권도 이제는 벌써 대공업의 제 조건들의 다소간의 우세와 결부되여 있다. 례컨대 영국과 화란을 비교하라. 지배적상업국으로서의 화란의 몰락의 력사는 상업자본의 산업자본에의 종속의 력사이다. 전 자본주의적인 민족적생산방식의 내부적견고성과 구성이 상업의 분해작용에 주는 장애들은 영국과 인도 및 중국과의 교역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생산방식의 광대한 기초가 소농업과 가내공업의 통일에 의하여 형성되고있으며 거기에다 인도에서는 토지의 공동소유에 립각한 촌락공동체의 형태가 첨가되는데 이것은 또한 중국에서도 시초적형태였다. 인도에서는 영국인들이 지배자로서 또

---

(49) 다른 사정들을 도외시하더라도 어업, 공장제수공업 및 농업에 두고있었던 기초가 화란의 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졌는가 하는것은 이미 18세기의 저술자들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되였다. 례컨대 매씨를 보라.[175]—이전의 견해가 아시아나, 고대나, 중세기의 상업의 규모와 의의를 과소평가하던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그것을 몹시 과대평가하는것이 류행으로 되였다. 18세기 초엽의 영국의 수출입을 고찰하고 오늘날의 그것과 대비하면 그러한 견해에서 가장 잘 벗어날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영국의 수출입은 이전의 어느 상업민족의 수출입보다도 비교할수 없으리만큼 큰것이였다(앤더슨 《상업의 력사》, [261페지이하]).

지대취득자로서 그들의 직접적인 정치적권력과 경제적권력을 동시에 리용하여 이러한 작은 경제적공동체를 분쇄하려 하였다.(50) 그들의 상업이 여기에서 생산방식에 혁명적으로 작용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다만 이러한 공농업생산의 통일의 태고적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방직업을 그들이 자기들 상품의 낮은 가격에 의하여 파멸시키고 그리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한에서만이다. 이 인도에서도 그들은 이 분해작업에는 극히 점차적으로밖에는 성공할수 없다. 직접적인 정치적권력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중국에서는 더구나 그러하다. 농업과 가공업의 직접적인 결부로부터 나오는 큰 경제와 시간의 절약은 여기에서는 대공업의 생산물에 극히 완강한 저항을 한다. 왜냐하면 이 대공업의 생산물의 가격에는 어디서나 대공업을 관통하고있는 류통과정의 비생산적비용이 들어가기때문이다. 그런데 로씨야의 상업은 영국의 상업과는 반대로 아시아적생산의 경제적기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있다.(51)

봉건적생산방식으로부터의 이행은 이중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산자는 상인이나 자본가로 되여 농업적자연경제 및 중세기도시공업의 동업조합적으로 구속된 수공업에 대하여서도 대립하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길이다. 혹은 또 상인이 직접 생산을 자기에게 종속시킨다. 이 나중의 길은 력사적으로 이행단계로서 작용한다 하더라도—례를 들면 17

---

(50) 만약 어떠한 민족의 력사에 실패로 돌아간 실제로 어리석은(실천에서는 수치스러운) 경제적실험의 력사를 제공하여주는것이 있다면 인도에서의 영국인들의 경영이 바로 그것이다. 벵갈주에서는 그들은 영국의 대토지소유의 만화를 창작하였으며 동남인도에서는 분할지소유의 만화를 창작하였다. 또 서북부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토지의 공동소유를 수반하는 인도의 경제적공동체를 그 자신의 만화로 전화시켰다.

(51) 로씨야가 오직 국내시장과 린접한 아시아시장에만 의거하는 독자적인 자본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려고 극히 경련적인 노력을 경주한 이래로 이 사정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F. 엥겔스

세기의 영국의 직물상이 아직도 독립하고있는 직조업자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그들에게 양모를 판매하고 그들의 직물을 구매한 경우와 같이—그 길은 그 자체로서는 낡은 생산방식의 변혁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낡은 생산방식을 보존하고 그것을 자기의 전제로서 유지한다. 례컨대 금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도 프랑스의 견직공업, 영국의 양말공업 및 레스공업에서의 제조업자는 대개는 다만 명목상의 제조업자였고 실제는 단순한 상인이였다. 그들은 직조공들에게는 본래의 분산된 방식으로 계속 일을 시키고 자기는 다만 상인으로서의 지배권을 행사할뿐이며 직조공들은 사실상 이 상인을 위하여 일하는것이다.(52) 이러한 방법은 어디서나 진정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길을 막는것이며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몰락한다. 그것은 생산방식을 변혁함이 없이 직접적생산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뿐이며 그들을 직접 자본에 종속된 로동자들보다도 더 나쁜 조건하에 있는 단순한 임금로동자 및 무산자로 전화시키며 낡은 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 그들의 잉여로동을 취득한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관계는 수공업적으로 경영되는 런던의 가구제조업의 일부에도 남아있다. 그것은 특히 해블리트탑구역[176]에서 매우 광범히 경영된다. 전체 생산이 매우 많은, 서로 독립한 영업부문들로 분할되여있다. 어떤 부문은 의자만을 만들고 다른 부문은 책상만을 만들고 제3부문은 장만을 만드는 등등이다. 그러나 이 영업부문들 자체는 몇몇 장공을 거느리는 한명의 소장주에 의하여 많게나적게나 수공업적으로 경영된다. 그러

(52) 라인지방의 리봉 및 끈 제조업과 견직업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크레펠드부근에는 이러한 농촌수직조업자들과 도시의 《제조업자들》과의 교통을 위하여 특별한 철도까지 부설되여있으나 그후 기계직조업으로 말미암아 이 철도는 수직조업자들과 함께 유휴상태에 놓이게 되였다—F. 엥겔스

나 생산은 직접 개인을 상대로 작업하기에는 너무나 대량적이다. 이 경우에 구매자는 가구상점의 소유자들이다. 토요일마다 장주는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그 경우에 가격에 대하여 흥정이 진행되는것은 전당포에서 이러저러한 물건의 대금에 대하여 흥정이 벌어지는것과 흡사하다. 이 장주들은 다음주에 원료를 다시 구매하고 로임을 지불할수 있기 위하여도 매주 판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그들은 본질상으로는 상인과 그들 자신의 로동자들간의 중개자에 불과하다. 상인이야말로 잉여가치의 최대 부분을 차지하는 진정한 자본가인것이다.(53) 이와 비슷한 현상은 이전에 수공업적으로 경영되였거나 또는 농촌공업의 부차적부문으로서 경영되였던 부문들로부터 공장제수공업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작은 자기 경영의 기술적발전에 따라—이미 그 경영 자체가 수공업적경영에도 사용될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대공업으로의 이행도 일어난다. 기계는 이미 손으로가 아니라 증기로 운전된다. 례컨대 최근 영국의 양말제조업에서 일어나고있는것과 같다.[177]

이리하여 여기에서 세가지 이행이 일어난다. **첫째로는** 상인이 직접 산업가로 된다. 상업에 기초한 산업부문들에서 특히 상인에 의하여 원료와 로동자가 함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사치품공업, 례컨대 15세기에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이딸리아로 수입된것과 같은 경우에 그러하다. **둘째로는** 상인이 소장주들을 자기의 중개자들로 만들든가 또는 직접 독립적생산자에게서 구입한다. 상인이 명목상으로는 생산자를 독

(53) 이 제도는 1865년이래 더욱 대규모로 발전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것은 《상원고한제도 특별위원회 제1차보고》, 1888년 런던판에 있다.—F. 엥겔스

립시켜놓고 또 그의 생산방식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셋째로는** 산업가가 상인으로 되고 직접 상업을 위하여 대규모적으로 생산한다.

중세기에는 포페가 옳게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상인은 동업조합적수공업자나 농민이 생산한 상품의 《전이자》에 지나지 않는다.[178] 상인이 산업가로 된다. 또는 오히려 수공업적인, 특히 농촌적인 소공업을 상인 자신을 위하여 일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가 상인으로 된다. 례컨대 직조장주가 자기가 사용하는 양모를 점차로 조금씩 상인에게서 받아 자기의 장공들과 함께 그 상인을 위하여 가공할 대신에 자신이 양모나 방사를 사서 자기의 직물을 상인에게 판매한다. 생산요소들은 그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직조업자는 개개의 상인이나 또는 일정한 고객을 위하여 생산할 대신에 이제는 상업세계를 위하여 생산한다. 생산자는 그 자신이 상인이다. 상업자본은 다만 류통과정을 수행할따름이다. 시초에는 상업은 동업조합적공업 및 농촌가내공업과 봉건적농업을 자본주의적경영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전제였다. 상업은 생산물을 상품으로 발전시킨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상업이 생산물을 위하여 시장을 창조하기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상업이 새로운 상품등가물을 공급하고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원료와 보조재료를 공급하며 그리하여 처음부터 상업에 기초하고있는 생산부문들 즉 시장 및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에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나오는 생산조건들에 기초하고있는 생산부문들을 창설하기때문이다. 공장제수공업이 어느 정도 공고화되면—그리고 대공업은 더구나 그렇지만—그것은 또 자기를 위한 시장을 창조하고 자기의 상품에 의하여 시장을 정복한다. 이제는 상업은 시장의

부단한 확장을 자기의 존재조건으로 삼고있는 산업생산의 머슴으로 된다. 부단히 확대되는 대량생산은 현존시장을 범람하게 하고 따라서 부단히 이 시장을 확대하려 하며 그 제한들을 돌파하려 한다. 이 대량생산을 제한하는것은 상업이 아니라(이것이 현존수요만을 나타내는 한에서는)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크기와 로동생산력의 발전정도이다. 산업자본가앞에는 언제나 세계시장이 있으며 그는 자기의 비용가격을 자국의 시장가격뿐만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가격과 비교하며 또 부단히 비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비교는 이전 시대에는 거의 전적으로 상인들만이 하는 일이였으며 그리하여 상업자본을 위하여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를 보증하는것이다.[179]

현대적생산방식의 최초의 리론적론술—중상주의[180]—은 필연적으로 류통과정의 표면에 상업자본의 운동으로서 독립하여 나타나는 제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외관만을 포착하였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상업자본이 자본일반의 최초의 자유로운 존재방식이기때문이다. 또 부분적으로는 봉건적생산의 최초의 변혁기, 현대적생산의 성립기에 상업자본이 미치는 압도적영향때문이다. 현대적경제의 참다운 과학은 리론적고찰이 류통과정으로부터 생산과정으로 이행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리자부자본도 확실히 자본의 태고적형태이다. 그런데 왜 중상주의가 리자부자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나중에 보게 될것이다.

제 5 편

리자 및 기업자리득으로의 리윤의 분렬. 리자부자본

제 21 장

리자부자본

일반적리윤률 또는 평균리윤률을 처음으로 고찰하였을 때에는(본권, 제2편) 이것은 아직 그 완성된 모습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것이 아니였다. 왜냐하면 그 평균화는 아직은 다만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산업자본들사이의 평균화로서만 나타났기때문이다. 이 점은 제4편에서 보충되였다. 거기서는 이 평균화에로의 상업자본의 참가와 상업리윤이 설명되였다. 일반적리윤률과 평균리윤은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협소한 한계내에서 나타났다. 이제부터 더 전개하는 행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리윤 또는 평균리윤이라고 말할 때는 후자의 의미에서 말한다는것 즉 오직 평균률의 완성된 모습에 관하여서만 말한다는것을 항상 념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이 평균률은 이제는 산업자본에 대하여서나 상업자본에

대하여서나 동일한것이므로 이 평균리윤만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는 산업리윤과 상업리윤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자본이 산업자본으로서 생산분야에 투하되든 또는 상업자본으로서 류통분야에 투하되든간에 그것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동일한 년평균리윤을 제공한다.

화폐—여기에서는 어떤 가치액의 독립적표현으로 간주되는것인데 이 가치액이 실제로 화폐형태로 존재하는가 상품형태로 존재하는가에는 관계없다—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자본으로 전화될수 있으며 이 전화에 의하여 어떤 일정한 가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고 증대시키는 가치로 된다. 화폐는 리윤을 낳는다. 즉 그것은 자본가로 하여금 로동자로부터 일정한 량의 부지불로동, 잉여생산물, 잉여가치를 짜내여 자기것으로 만들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화폐는 화폐로서 가지고있는 사용가치외에 하나의 추가적사용가치를 즉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사용가치를 얻는다. 여기서는 화폐의 사용가치란 바로 그것이 자본으로 전화하여 생산하는 리윤인것이다. 가능적인 자본으로서의, 리윤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속성에 있어서 화폐는 상품으로, 그러나 특수한 종류의 상품으로 된다. 또는 결국 같은것으로 되지만 자본은 자본으로서 상품으로 된다.(54)

년평균리윤률을 2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진 한 기계를 평균적인 조건하에서 평균정도의 지능과 합목적적인 활동에 의하여 자본으로서 사용하면 그것은 20파운드의 리윤을 제공할것이다. 따라서 100파운드를 마음

(54) 경제학자들이 문제를 이렇게 고려하고있는 몇개의 구절들을 여기에 인용할수 있을것이다—《당신들(잉글랜드은행)은 **자본이라는 상품**을 취급하는 대상인인가?》라고 이 은행의 한 리사는 《은행법에 관한 보고》(하원 1857년 〔104페지〕)를 위한 증인 심문에서 질문을 받았다.

대로 사용할수 있는 사람은 100파운드를 120파운드로 만들수 있는 힘 즉 20파운드의 리윤을 낼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는 자기의 수중에 100파운드의 가능적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1년간 이 100파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후자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자본으로서 사용한다면 전자는 후자에게 20파운드의 리윤을 생산하는 힘 즉 후자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며 후자가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힘을 주는것이다. 후자가 그 100파운드의 소유자에게 년말에 례컨대 5파운드를 즉 생산된 리윤의 일부분을 지불한다면 그로 하여 그는 이 100파운드의 사용가치의 대가 즉 그 자본기능, 20파운드의 리윤을 생산하는 기능의 사용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는것이다. 리윤중에서 그가 이 화폐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부분을 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리자는 리윤중에서 기능자본이 자기의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자본의 소유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특수한 명칭, 특수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 100파운드를 소유한다는것이 그 소유자에게 리자를 끌어오는 힘, 즉 그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리윤의 일정한 부분을 끌어오는 힘을 준다는것은 분명하다. 그가 100파운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후자는 리윤을 생산할수 없을것이며 대체로 이 100파운드에 관해서는 자본가로서 기능할수 없을것이다(55)

길버트와 더불어(주를 보라) 여기에서 자연적정의에 관하여 운운하는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생산당사자들사이에서

---

(55) 《리윤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화폐를 차용하는 사람이 리윤의 일부분을 대부자에게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자연적정의의 자명한 원리이다》(길버트 《은행업의 력사 및 원리》, 1834년 런던판 163페지).

진행되는 거래의 정의란 이 거래들이 생산관계로부터 자연적 귀결로서 발생한다는데 기초하고있다. 법률적형태에서는 이러한 경제거래가 참여자들의 의사행위로서 나타나며 그들의 공동의사의 발현으로서 또 국가에 의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강요되는 계약으로서 나타나지만 이러한 법률적형태들은 단순한 형태로서 이 내용 자체를 규정할수는 없다. 이 형태들은 다만 이 내용을 표현할따름이다. 이 내용은 그것이 생산방식에 상응하고 적합하기만 하면 정당한것이다. 생산방식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부당한것이다. 노예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부당한것이다. 상품의 품질을 기만하는것도 부당한것이다.

100파운드가 20파운드의 리윤을 낳는것은 그것이 산업자본으로서이든 상업자본으로서이든 어쨌든 자본으로서 기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으로서의 이 기능에 없어서는 안될 조건은 그 100파운드가 자본으로서 지출된다는것이며 따라서 화폐가 생산수단의 구입(산업자본의 경우)이나 또는 상품의 구입(상업자본의 경우)에 지출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100파운드가 지출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이미 존재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100파운드의 소유자 A가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소비에 지출하든가 또는 그것을 축장화폐로서 자기가 보유하든가 한다면 그 100파운드는 기능자본가 B에 의하여 자본으로서 지출될수는 없을것이다. B는 자기의 자본을 지출하는것이 아니라 A의 자본을 지출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A의 의사없이는 A의 자본을 지출할수 없다. 그러므로 최초에 100파운드를 자본으로서 지출하는것은 사실은 A이다. 비록 A의 자본가로서의 전체 기능은 100파운드를 자본으로서 지출하는데만 국한되는것이지만. 이 100파운드가 문제로 되는 한에서

는 오직 A가 B에게 100파운드를 위탁하고 따라서 그것을 자본으로서 지출하기때문에만 B가 자본가로서 기능하는것이다.

우선 리자부자본의 독특한 류통을 고찰하자. 그다음에 둘째번으로는 리자부자본이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독특한 방식, 즉 아주 양도되여버리는것이 아니라 대부되는 방식을 연구하여야 한다.

출발점은 A가 B에게 선대하는 화폐이다. 이 선대는 담보가 있거나 또는 담보가 없이도 실시될수 있다. 그러나 담보가 있는 첫째 형태는 상품을 담보로 하거나 또는 수형, 주식 등등과 같은 채무증서를 담보로 하는 선대를 례외로 하면 보다 고대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들은 여기에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는것은 보통형태의 리자부자본이다.

B의 수중에서 화폐는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화되며 G—W—G′의 운동을 통과하며 그다음에 G′로서, G+⊿G로서 A의 수중으로 돌아간다. 이 ⊿G는 리자를 표시한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자본이 장기간 B의 수중에 남고 리자는 일정한 기한마다 지불되는 경우는 잠시 도외시한다.

그러면 운동은 다음과 같이 된다.

G—G—W—G′—G′

여기에서 중복하여 나타나는것은 1)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지출이며 2) 실현된 자본으로서의, G′또는 G+⊿G로서의 화폐의 환류이다.

상업자본의 운동 G—W—G′에서는 동일한 상품이 두번 소유자를 바꾼다. 상인이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러번 소유자를 바꾼다. 그러나 동일한 상품의 그러한 장소변동은 모두 상품의 한 변태, 그 구매 또는 판매를 표시하며 그 상

품이 최종적으로 소비로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이 몇번이고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한편 W—G—W에서는 동일한 화폐의 장소변동이 두번 일어나지만 그것은 상품의 완전한 변태를 표시하며 상품이 우선 화폐로 전화되고 그다음에 화폐로부터 다시 다른 상품으로 전화되는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리자부자본의 경우에는 G의 제1차 장소변동은 결코 상품의 변태의 계기도 아니며 자본의 재생산의 계기도 아니다. G는 제2차의 지출에 있어서, 비로소 그러한 계기로 된다. 즉 이 G로써 상업을 운영하든가 또는 그것을 생산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기능자본가의 수중에서 비로소 그러한 계기로 된다. 여기서 G의 제1차 장소변동은 A로부터 B에게로의 G의 이전 또는 양도이외의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전은 어떤 법률적형태들과 조건하에서 진행되는것이 보통이다.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이중의 지출—그중의 첫째 지출은 A로부터 B에게로의 화폐의 단순한 이전이다—에는 화폐의 이중적환류가 상응한다. 화폐는 G′ 또는 G+⊿G로서 운동으로부터 기능자본가 B에게로 환류한다. 다음에 B는 화폐를 다시 A에게 양도한다. 그러나 이제는 동시에 리윤의 일부분을 붙여서 실현된 자본으로서, G+⊿G로서 양도한다. 이 경우에 ⊿G는 전체 리윤과 같은것이 아니라 다만 리윤의 일부분, 리자일따름이다. 화폐가 B에게로 환류하는것은 다만 B가 지출한 것으로서, 기능자본으로서, 그러나 A의 소유물로서 환류할뿐이다. 그러므로 화폐의 환류가 완전한것으로 되기 위하여는 B는 그것을 다시 A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B는 자본액외에 그가 이 자본액으로써 얻은 리윤의 일부분을 리

자라는 이름으로 A에게 넘겨주어야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A가 B에게 화폐를 넘겨준것은 다만 자본으로서 즉 운동중에서 자기를 유지할뿐만아니라 자기의 소유자를 위하여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가치로서 넘겨주었을뿐이였기때문이다. 화폐는 그것이 기능자본으로 있는 동안에만 B의 수중에 남는다. 그리고 화폐는 그것이 환류함에 따라—기한이 경과한 후에는—자본으로서는 기능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더는 기능하지 않는 자본으로서 화폐는 다시 A의 수중에, 즉 아직도 그냥 법률상 소유자로 되여있는 A의 수중에로 다시 양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상품에 특유한 형태, 즉 상품으로서의 자본에 특유한 대부라는 형태는 다른 거래에서도 판매라는 형태 대신에 나타나는 형태이지만 이것은 이미 자본이 여기서는 상품으로서 나타난다는 규정에서 또는 화폐가 자본으로서 상품으로 된다는 규정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본바와 같이(제2부 제1장) 또 여기서 간단히 상기할수 있는바와 같이 자본은 류통과정에서는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 두 형태에서는 자본은 자본으로서는 상품으로 되지 않는다.

생산자본이 상품자본으로 전화되면 그것은 시장에 투하되여 상품으로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상품으로서 기능할뿐이다. 여기에서는 자본가는 다만 상품의 판매자로서만 나타나며 그것은 구매자가 상품의 구매자로서만 나타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상품으로서는 생산물은 류통과정에서 그 판매에 의하여 그 가치를 실현하여야 하며 화폐로서의 전화된 모습을 취하여야 한다. 그렇기때

문에 이 상품이 소비자에 의하여 생활수단으로서 구매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수단으로서,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구매되는가 하는것은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다. 류통행위에서는 상품자본은 다만 상품으로서 기능할따름이고 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이 단순한 상품과 구별되는 상품**자본**인것은 1) 그것이 이미 잉여가치를 잉태하고있으며 따라서 그 가치의 실현이 동시에 잉여가치의 실현이기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품으로서의, 일정한 가격을 가진 생산물로서의 상품자본의 단순한 존재를 조금도 변화시키는것이 아니다. 2)상품으로서의 상품자본의 이러한 기능은 자본으로서의 상품자본의 재생산과정의 하나의 계기이며 따라서 상품으로서의 상품자본의 운동은 상품자본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정의 부분운동에 불과한 까닭에 동시에 또 자본으로서의 상품자본의 운동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그 운동이 이러한 운동으로 되는것은 판매행위 자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라 오직 이 판매행위와 이 일정한 가치액이 자본으로서 수행하는 총운동과의 련관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폐자본으로서도 자본은 사실상 단순히 화폐로서 즉 상품(생산요소)의 구매수단으로서 작용할따름이다. 이 경우에 이 화폐가 동시에 화폐자본으로, 자본의 한 형태로 되는것은 구매행위 즉 자본이 여기에서 화폐로서 수행하는 현실적기능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이 행위와 자본의 총운동과의 련관에서 나오는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화폐로서 수행하는 이 행위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을 준비하는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현실적으로 기능하며 현

실적으로 과정에서 그 역할을 노는 한에서는 여기에서는 상품자본은 상품으로서만 작용할따름이며 화폐자본은 화폐로서만 작용할따름이다. 변태의 개개의 계기를 그 자체로서 보면 어느 계기에서나 자본가는 비록 그 상품이 그에게 있어서 자본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자본**으로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것이 아니며 또는 화폐를 자본으로서 판매자에게 양도하는것이 아니다. 두 경우에 다 자본가는 상품을 단순히 상품으로서 양도하며 화폐를 단순히 화폐로서, 상품의 구매수단으로서 양도한다.

자본이 류통과정에서 자본으로서 나타나는것은 오직 전 과정의 련관속에서만이며 출발점이 동시에 복귀점으로서 나타나는 계기, G—G′ 또는 W—W′에서만이다(한편 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자본으로서 나타나는것은 자본가에게의 로동자의 종속과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인한것이지만). 그러나 이 복귀라는 계기에서는 매개는 사라진다. 여기에 존재하고있는것은 G′또는 G+⊿G이며(이 ⊿G만큼 증가된 가치액이 화폐형태로 존재하든 상품형태로 존재하든 또는 생산요소들의 형태로 존재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최초에 선대된 화폐액 플라스 그것을 초과하는 초과분 즉 실현된 잉여가치와 같은 화폐액이다. 그리고 바로 이 복귀점에서는, 즉 자본이 실현된 자본으로서, 증식된 가치로서 존재하는 이 복귀점에서는, 이 형태에서는—그 복귀점이 상상적 또는 현실적 휴지점으로서 고정되는 한에서는—자본은 결코 류통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류통으로부터 회수된것으로서, 전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자본이 다시 지출될 때에는 그것은 결코 **자본으로서** 제삼자에게 양도되는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품으로서 제삼자에게 판매되든가 또는 단순한 화폐로서 상품과의 교환으로 제

삼자에게 양도되는것이다. 자본은 그 류통과정에서는 결코 자본으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상품 또는 화폐로서만 나타날따름이며 이것이 류통과정에서는 **타인을 위한** 자본의 유일한 존재형태인것이다. 상품이나 화폐가 여기에서 자본으로 되는것은 그 상품이 화폐로 전화되고 그 화폐가 상품으로 전화되는 한에서가 아니며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상품이나 화폐의 현실적관계에서가 아니며 오직 자본가 자신에 대한 (주관적으로 보면) 또는 재생산과정의 계기로서의(객관적으로 보면) 상품이나 화폐의 관념적관계에서만이다. 현실적운동에서는 자본이 자본으로서 존재하는것은 류통과정에서가 아니라 오직 생산과정, 로동력의 착취과정에서만이다.

그러나 리자부자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렇지 않다는것이 리자부자본의 특수한 성격을 이루고있다. 자기의 화폐를 리자부자본으로서 증식시키려고 하는 화폐소유자는 그것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것을 류통에 투입하며 그것을 **자본으로서의** 상품으로 만든다. 비단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자본으로서의 상품으로 만든다. 화폐는 그것을 양도하는 사람에 있어서만 자본인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자본으로서, 잉여가치, 리윤을 창조하는 사용가치를 가지고있는 가치로서 제삼자에게 양도된다. 즉 운동속에서 자기를 유지하며 기능한 후에는 그 최초의 지출자의 수중에, 여기서는 화폐소유자의 수중에 돌아가는 가치로서 양도된다. 따라서 그 가치는 그저 잠시동안만 그의 수중에서 떠나고 그저 잠시동안만 그 소유자의 점유로부터 기능자본가의 점유로 옮겨갈뿐이며 따라서 지불되여버리는것도 아니고 판매되는것도 아니며 오직 대부될따름이다. 즉 첫째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며 또 둘째로는 실현된 자본으로서 따라서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그 사용가치를 실현한 자본으로서 돌아간다는 조건하에서만 그 가치는 양도되는것이다.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상품은 그 속성에 따라 고정자본으로서 또는 류동자본으로서 대부된다.[181] 화폐는 두 형태로 다 대부될수 있다. 고정자본으로서 대부될수 있는것은 례컨대 화폐가 종신년금의 형태로 상환되며 그리하여 리자와 함께 부단히 자본도 일부분씩 환류하는 경우이다. 어떤 종류의 상품들은 그 사용가치의 성질로 보아 언제나 오직 고정자본으로서만 대부될수 있다. 례컨대 가옥, 선박, 기계 등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대부되는 모든 자본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간에 또 그 사용가치의 성질로 말미암아 그 상환이 어떻게 변형되든간에 언제나 다만 화폐자본의 특수한 한 형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대부되는것은 언제나 일정한 화폐액이며 리자도 또 이 화폐액에 대하여 계산되기때문이다. 대부되는것이 화폐도 아니고 류동자본도 아니라면 그 상환도 고정자본이 환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부자는 주기적으로 리자와 고정자본 자체의 소비된 가치의 일부분 즉 주기적인 마멸분의 등가를 받는다. 그리고 대부기한이 경과하면 대부된 고정자본의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현물로 돌아온다. 대부된 자본이 류동자본이라면 그것도 역시 류동자본이 환류하는 방식으로 대부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환류**방식**은 어느 경우에나 재생산되는 자본 및 그 특수한 종류의 현실적순환운동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그러나 대부자본에 있어서 환류는 상환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왜냐하면 그 선대, 그 양도가 대부라는 형태를 취하기때문이다.

이 장에서 우리가 취급하는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화폐자본뿐이며 그밖의 대부자본의 모든 형태들은 이 화폐자본으로부터 파생된것이다.

대부된 자본은 이중으로 환류한다. 재생산과정에서는 그것이 기능자본가에게로 돌아가며 그 다음 또 한번은 대부자인 화폐자본가에게로의 이전으로서, 즉 자본의 현실적소유자, 법률상의 출발점에로의 상환으로서 복귀가 반복된다.

현실적류통과정에서는 자본은 언제나 다만 상품 또는 화폐로서 나타나며, 운동은 일련의 구매와 판매로 분해된다. 요컨대 류통과정은 상품의 변태로 분해된다. 그러나 재생산과정의 전체를 고찰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화폐로부터 출발하여 본다면(상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출발하는것이며 따라서 상품을 화폐의 모습으로 보는것이기때문이다) 그 경우에는 일정한 화폐액이 지출되여있고 일정한 기간후에 그것이 약간의 증가분과 함께 돌아온다. 선대된 화폐액의 보상분에 잉여가치를 첨가한것이 돌아온다. 그 화폐액은 일정한 순환운동을 경유하는 동안에 자기를 유지하였고 증식한것이다. 그런데 화폐는 그것이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화폐액으로서 대부되는것이며 이 화폐액은 일정한 기간후에는 추가분을 가지고 돌아오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동일한 과정을 경유하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화폐로서 지출되는것도 아니고 상품으로서 지출되는것도 아니다. 즉 화폐로서 선대되는 경우에도 상품과 교환되는것이 아니며 상품으로서 선대되는 경우에도 화폐와의 교환으로 판매되는것이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본으로서 지출되는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을 전체로서 그리고 통일체로서 고찰한다면 자본은 이러한 관계로서 나타나며 또 이 관계에서는 자본은 화폐를 낳는 화폐로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계가 여기에서는 매개적중간운동이 없이 단순히 자본의 성격으로서, 자본의 규정성으로서 자본에 합체된다. 그리고 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 대부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이러한 규정성에 있어서 양도되는것이다.

화폐자본의 역할에 관한 기묘한 견해는 쁘루동의 견해이다(《신용의 무보상성. F. 바스띠아씨와 쁘루동씨간의 론쟁》, 1850년 빠리판). 대부는 판매가 아니라는 리유에서 쁘루동에게는 유해한것으로 보인다. 리자를 받고 대부한다는것은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결코 양도함이 없이 동일한 물건을 부단히 반복하여 판매하고 부단히 반복하여 그 가격을 받는 능력이다》 (9페지).[182]

대부의 대상인 화폐, 가옥 등등은 구매와 판매의 경우와는 달리 소유자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쁘루동은 화폐를 리자부자본의 형태로 넘겨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등가도 받지 않는다는것을 보지 않는다. 어떤 매매행위에서나 대체로 교환과정이 진행되는 한에서는 확실히 목적물은 인도된다. 언제나 판매되는 대상의 소유는 양도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치는 인도되지 않는다. 판매에 있어서는 상품은 인도되지만 그것의 가치는 인도되지 않으며 이 가치는 화폐의 형태로 또는 여기서는 화폐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 채무증서나 지불청구권의 형태로 반환된다. 구매에 있어서는 화폐는 인도되지만 그것의 가치는 인도되지 않으며 그 가치는 상품의 형태로 보상된다. 재생산과정 전체를 통하여 산업

자본가는 동일한 가치를 자기의 수중에 보유하는데(잉여가치를 도외시하면) 다만 그 가치의 형태가 변할따름이다.

교환 즉 대상의 교환이 진행되는 한에서는 가치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일한 자본가는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수중에 보유한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되는 한에서는 교환은 진행되지 않는다. 교환이 진행되는 때에는 잉여가치는 이미 상품속에 포함되여있다. 개개의 교환행위를 고찰하지 않고 자본의 총순환 G—W—G′를 고찰한다면 부단히 일정한 가치액이 선대되며 이 가치액 플라스 잉여가치 또는 리윤이 류통으로부터 회수된다. 이 과정의 매개는 물론 단순한 교환행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자본으로서의 G의 이러한 과정에 대부화폐자본가의 리자가 기초하고있으며 이 과정으로부터 리자가 발생하는것이다. 쁘루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사실상 모자를 판매하는 모자제조업자는…모자 대신에 그 가치를 받으며 그것보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받는다. 그러나 대부자본가는…자기의 자본을 그대로만 상환받는것이 아니다. 그는 자본보다도 더 많은것을, 그가 교환에 투입한것보다도 더 많은것을 받는다. 그는 자본외에 또 리자를 받는다》(69페지).

이 경우에 모자제조업자는 대부자본가에 대립하는 생산자본가를 대표한다. 생산자본가가 어떻게 하여 상품을 그 가치대로 판매할수 있는가(생산가격에의 평균화는 이 경우에 그의 견해에 있어서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또 바로 그렇게 하는데 의하여 어떻게 자기가 교환에 투입하는 자본이상으로 리윤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 이 비밀을 분명히 쁘루동은 간파하지 못하고있다. 모자 100개의 생산가격이 115파운드이며

또 이 생산가격은 우연히 그 모자들의 가치와 같으며 따라서 그 모자를 생산하는 자본은 사회적평균구성을 가진 자본이라고 가정하자. 리윤이 15%이라면 모자제조업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115파운드로 판매하는데 의하여 15파운드의 리윤을 실현한다. 그에게 있어서 모자에는 100파운드밖에 들지 않는다. 그가 자기의 자본으로써 생산하였다면 그는 초과분 15파운드를 전부 차지한다. 만약 대부한 자본으로써 생산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그가운데서 5파운드를 리자로서 양도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것은 결코 모자의 가치를 변동하는것이 아니고 다만 이미 이 가치속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가 각이한 사람들사이에 분배되는 방식을 변동시킬따름이다. 이처럼 모자의 가치는 리자의 지불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쁘루동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는것은 무의미한것이다.

《상업에서는 자본의 리자가 로동자의 임금에 첨가되여 함께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는것이므로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의 생산물을 되살수 있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로동하여 살아간다는것은 리자가 지배하는 조건하에서는 모순을 내포하고있는 원칙이다》 (105페지).(56)

쁘루동이 자본의 성질을 얼마나 리해하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은 그가 자본일반의 운동을 리자부자본에 특유한 운동으로서 서술하고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나타나고있다.

---

(56) 그러므로 쁘루동의 말대로 한다면 《가옥》, 《화폐》 등등은 《자본》으로서 대부되는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 비용가격으로》 (43~44페지) 양도된다는것으로 된다. 루테르는 쁘루동보다는 좀 고명하였다. 그는 리윤을 얻는다는것이 대부나 구매의 형태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구매로부터도 고리대를 얻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한번에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먼저 대부에 의한 고리대 한가지를 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반대하고나서(최후의 심판일 이후) 우리는 구매하는 경우의 고리대에 대하여도 론계하려 한다》 (M. 루테르 《목사여러분,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라》, 위텐베르그판, 1540년).

《리자의 축적에 의하여 화폐자본은 교환이 진행될 때마다 부단히 그 원천으로 돌아가기때문에 부단히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부의 반복은 언제나 그 동일한 사람에게 리윤을 가져다주게 된다.》 [우와 같은 책 154페지]

그러면 리자부자본의 독특한 운동에서 쁘루동에게 아무리해도 리해될수 없는것은 어떤 점인가? 그것은 구매, 가격, 대상의 양도같은 범주들이며 또 이 경우에 잉여가치가 매개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것이다. 요컨대 이 경우에 자본이 자본으로서 상품으로 되여있는 현상, 따라서 판매가 대부로 전화되고 가격이 리윤의 분배몫으로 전화되는 현상이 리해되지 않는것이다.

자본이 자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는것은 일반적으로 자본이 그 총순환에서 진행하는 특징적인 운동이다. 이것은 결코 리자부자본에만 특징적인것은 아니다. 리자부자본에 특징적인것은 매개적순환으로부터 분리된, 외적인 복귀형태이다. 대부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을 내주며, 등가를 받음이 없이 그것을 산업자본가에게 양도한다. 그가 자본을 내주는것은 결코 자본의 현실적순환과정중의 행위가 아니며 다만 산업자본가에 의하여 실행되여야 할 이 순환을 준비할따름이다. 화폐의 이 첫째번 장소변동은 변태중의 어떠한 행위도, 구매도, 판매도 표시하는것이 아니다. 소유는 양도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환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등가도 받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화폐가 산업자본가의 수중으로부터 대부자본가의 수중으로 돌아가는것은 다만 자본을 양도하는 첫째번 행위를 보충할따름이다. 화폐형태로 선대된 자본은 순환과정을 통하여 다시 화폐형태로 산업자본가의 수중에 돌아간다. 그러나 자본은 지출될 때 산업자본가의것이 아니였으므

로 돌아올 때도 그의것으로 될수 없다. 재생산과정을 통하여서도 이 자본은 산업자본가의 소유로 전화될수 없다. 따라서 그는 그 자본을 대부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자본을 대부자의 수중으로부터 차용자의 수중으로 양도하는 첫째번 지출은 자본의 현실적재생산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다만 그것을 준비할따름인 하나의 법률상의 거래이다. 환류한 자본을 다시 차용자의 수중으로부터 대부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상환은 첫째번 거래의 보충적행위인 둘째번의 법률상 거래이다. 첫째번 거래는 현실적과정을 준비하고 둘째번 거래는 현실적과정이 끝난 다음에 수행되는 보충적행위이다. 따라서 대부자본의 출발점과 복귀점, 그 양도와 상환은 자본의 현실적운동의 전후에서 진행되고 그 현실적운동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의적인, 법률상의 거래들에 의하여 매개되는 운동들로써 나타난다. 자본이 처음부터 산업자본가의것이고 따라서 그의 소유로서 그에게로만 환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의 현실적운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차별도 없을것이다.

첫째번의 준비행위에 있어서는 대부자는 그의 자본을 차용자에게 양도한다. 둘째번의 보충적종결행위에 있어서는 차용자는 자본을 대부자에게 반환한다. 량자간의 거래만을 고찰하는 한에서는—리자를 잠시 도외시하면—따라서 대부자와 차용자간에서의 대부된 자본 자체의 운동만을 문제로 삼는 한에서는 이 두 행위(자본의 현실적재생산과정이 진행되는 길거나 짧은 기간에 의하여 분리된다)는 이 운동의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이 운동 즉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양도는 일반적으로 대부와 차용의 운동이며 화폐 또는 상품의 오직 조건부적인 양도라는 이 특수한 형태의 운동이다.

자본일반의 특징적인 운동 즉 화폐의 자본가에게로의 복

귀, 자본의 그 출발점으로의 복귀는 리자부자본에서는 그 복귀라는 형태를 취하는 현실적운동과는 분리된 전혀 외적인 모습을 취한다. A는 자기의 화폐를 화폐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서 양도한다. 여기서는 자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본은 다만 그 소유자를 바꿀따름이다. 화폐의 자본으로의 현실적전화는 B의 수중에서 비로소 수행된다. 그러나 A에 있어서는 이미 그것은 B에 대한 단순한 양도에 의하여 자본으로 되였다. 생산과정 및 류통과정으로부터의 자본의 현실적환류는 B에 있어서만 일어난다. 그러나 A에 있어서는 환류는 양도와 동일한 형태로 일어난다. 자본은 B의 수중으로부터 A의 수중으로 돌아간다. 일정한 기간에 대한 화폐의 양도, 대부 그리고 리자(잉여가치)가 붙은 그 회수—이것이 리자부자본 자체에 고유한 운동형태의 전체이다. 대부된 화폐가 자본으로서 수행하는 현실적운동은 대부자와 차용자간의 거래 밖에 있는 행위이다. 이 거래들 자체에서는 매개는 사라졌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직접적으로는 거기에 포함되여있지 않다. 독특한 종류의 상품으로서 자본은 또 독특한 양도방식을 가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환류도 또 일정한 계렬의 경제적과정들의 귀결과 결과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한 법률상의 계약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환류의 시간은 재생산과정의 진행에 의존한다. 리자부자본에서는 자본으로서의 그 환류는 대부자와 차용자간의 단순한 합의에 의존하는**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자본의 환류는 이 거래에 관하여서는 이미 생산과정에 의하여 규정된 결과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마치도 대부된 자본에서 화폐형태가 상실된 일이 전혀 없는것처럼 나타난다. 확실히 이 거래들은 실제로 현실적환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그러

나 이 점은 그 거래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에 있어서도 결코 언제나 그렇게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현실적환류가 제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차용자는 대부자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재원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의 단순한 **형태**—A라는 금액으로서 지출되고 일정한 기간내에 이 시간적간격외에는 아무런 다른 매개도 없이 $A+\frac{1}{x}A$ 라는 금액으로서 돌아오는 화폐—는 현실적자본운동의 무개념적인 형태에 불과하다.[183]

자본의 현실적운동에 있어서는 복귀는 류통과정의 한 계기이다. 우선 화폐가 생산수단으로 전화된다. 생산과정은 그것을 상품으로 전화시킨다.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그것은 화폐로 재전화되고 그 형태로 자본가—자본을 처음으로 화폐형태로 선대한—의 수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리자부자본에 있어서는 복귀도 양도도 다만 자본의 소유자와 제2의 인물간의 법률상 거래의 결과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보이는것은 오직 양도와 상환뿐이다. 그 사이에 진행된것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자본으로서 선대되는 화폐는 그것을 선대하는 사람, 즉 그것을 자본으로서 지출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즉 G—W—G'가 자본운동의 내재적인 형태이기때문에, 바로 그때문에 화폐소유자는 화폐를 자본으로서 즉 자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속성, 자기가 진행하는 운동중에서 자기를 가치로서 유지하고 증식하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대부할수 있는것이다. 화폐소유자가 화폐를 자본으로서 인도하는것은 화폐가 자본으로서 사용된후에 그것이 그 출발점으로 환류하기때문이다. 즉 바로 화폐가 차용자 자신

에게로 환류하기때문이며 일정한 기간후에는 그것이 차용자로부터 반환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대부—일정한 기간후에 반환된다는 조건하에서의 화폐의 양도—는 화폐가 현실적으로 자본으로서 사용되고 현실적으로 그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화폐가 자본으로서 수행하는 현실적순환운동은 차용자가 대부자에게 화폐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률상 거래의 전제이다. 차용자가 그 화폐를 자본으로서 투하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차용자의 일이다. 대부자는 화폐를 자본으로서 대부하는것이며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자본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기능은 화폐형태로서 자기의 출발점으로 환류할 때까지의 화폐자본의 순환을 포함하는것이다.

가치액이 화폐 또는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류통행위 G—W 및 W—G'는 다만 매개적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 가치액의 총운동의 개개의 계기들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으로서는 이 가치액은 총운동 G—G'를 수행한다. 그것은 화폐로서든가 또는 어떤 형태의 가치액으로서 선대되며 가치액으로서 돌아온다. 화폐의 대부자는 그것을 상품의 구매에 지출하는것이 아니다. 또는 가치액이 상품으로서 존재한다면 그는 그것을 화폐와의 교환으로 판매하는것이 아니며 자본으로서, G—G'로서, 일정한 기한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가치로서 선대하는것이다. 그는 구매하거나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대부한다. 따라서 이 대부는 그것을 화폐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서** 양도하기 위한 적당한 형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대부가 또 자본주의적재생산과정과는 관계없는 거래들의 형태로 될수 없다는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우리는 대부**자본**이 그 소유자와 산업자본가사이에서 수행하는 운동만을 고찰하였다. 이제는 **리자**를 연구하여야 한다.

대부자는 자기의 화폐를 자본으로서 지출한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가치액은 자본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에게로 환류한다. 그러나 그에게로의 대부된 가치액의 단순한 복귀는 대부된 가치액의 **자본으로서의** 환류가 아니고 대부된 가치액의 단순한 상환일것이다. 자본으로서 환류하려면 선대된 가치액은 운동중에서 자기를 유지할뿐만아니라 자기를 증식시키며 자기의 가치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G+⊿G로서 잉여가치와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이 ⊿G는 리자이다. 즉 평균리윤중에서, 기능자본가의 수중에 남지 않고 화폐자본가의것으로 되는 부분이다.

화폐가 자본으로서 화폐자본가에 의하여 양도된다는것은 화폐가 G+⊿G로서 그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대부기간에 리자는 기일마다 환류하나 자본은 환류하지 않고 비교적 오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상환되는 형태는 차후에 더 특별히 고찰되여야 한다.

화폐자본가는 차용자인 산업자본가에게 무엇을 주는가? 전자는 후자에게 실제로 무엇을 양도하는가? 오직 양도라는 행위만이 화폐의 대부를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양도로 즉 상품으로서의 자본의 양도로 만드는것이다.

오직 이 양도라는 행위를 통하여서만 자본은 화폐대부자에 의하여 상품으로서 타인에게 넘어가며 또는 대부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상품이 제삼자에게 자본으로서 넘어가는것이다.

보통의 판매에 있어서는 무엇이 양도되는가? 그것은 판매되는 상품의 가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는 다만 형태를 바꿀따름이기때문이다. 이 가치는 현실적으로는 화폐형태로 판매자의 수중으로 이행하기전에 가격으로서 관념적으로 상품속에 존재한다. 동일한 가치, 동일한 가치량이 여기서 다만 형태를 바꿀따름이다. 그것들은 한번은 상품형태로 존재하며 또 한번은 화폐형태로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판매자에 의하여 양도되며 따라서 또 구매자의 개인적 또는 생산적 소비로 이행하는것은 상품의 사용가치,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이다.

그러면 화폐자본가가 대부기간중에 양도하고 차용자인 생산자본가에게 넘겨주는 사용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여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다는것에 의하여,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화폐가 그 운동중에서 자기의 원래의 가치량을 보존하는외에 또한 일정한 잉여가치를, 평균리윤(평균리윤보다 높거나 낮은것은 여기서는 우연적인것으로서 나타난다)을 낳는다는것에 의하여 화폐가 얻는 사용가치이다. 다른 상품의 경우에는 최후사람의 수중에서 사용가치는 소비되고 따라서 상품의 실체가 없어지고 또 그와 함께 상품의 가치도 없어진다. 그와는 반대로 자본이라는 상품은 그 사용가치의 소비로 말미암아 그 가치와 그 사용가치가 유지될뿐만아니라 증가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화폐자본가는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이 사용가치—평균리윤을 낳는 능력—를 산업자본가에게 양도하는 기간중에 그는 대부자본에 대한 처분권을 산업자본가에게 넘기는것이다.

이와 같이 대부된 화폐는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자본가에 대한 관계에서 본 로동력과 일종의 류사점을 가지고있다. 다

만 산업자본가는 로동력의 가치는 지불하는데 대부된 자본의 가치는 그저 상환할뿐이다. 산업자본가에 있어서의 로동력의 사용가치는 로동력 자체가 가지고있는것보다 또 로동력에 들이는것보다 더 많은 가치(리윤)를 그 소비과정에서 낳는다는 것이다. 이 가치초과분이 산업자본가에게 있어서의 로동력의 사용가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되는 화폐자본의 사용가치도 가치를 낳고 증가시키는 그 능력으로서 나타난다.

화폐자본가는 사실상 사용가치를 양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넘겨주는것은 상품으로서 넘겨주는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상품으로서의 상품과의 류사성은 완전한것이다. 첫째로, 한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행하는것은 가치이다. 단순한 상품 즉 상품으로서의 상품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수중에나 판매자의 수중에나 동일한 가치가 남으며 그것이 다만 형태를 달리하고있을뿐이다. 그들은 쌍방이 다 거래전이나 거래후이나 자기들이 양도한것과 같은 가치를 전자는 상품의 형태로, 후자는 화폐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다른 점은 대부의 경우에는 다만 화폐자본가만이 이 거래에서 가치를 내준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장래의 상환에 의하여 이 가치를 보존하는것이다. 대부의 경우에는 한편만이 가치를 받는데 그것은 한편만이 가치를 내주기때문이다. 둘째로, 일방은 현실적사용가치를 양도하고 다른 일방은 이 사용가치를 받아서 소비한다. 그러나 보통의 상품의 경우와는 달라서 이 사용가치는 그 자체가 가치이다. 즉 화폐를 자본으로서 사용하는데 의하여 생기는 가치량이 화폐의 원래의 가치량을 넘는 그 초과분이다. 리윤은 이 사용가치이다.

대부되는 화폐의 사용가치는 그 화폐가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다는것, 자본으로서 평균적인 제 사정하에서는 평균

리윤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이다.(57)

그러면 산업자본가가 지불하는것은 무엇이며 따라서 또 대부되는 자본의 가격은 무엇인가? 매씨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차용한것의 사용에 대하여 리자로서 지불하는것은 그것이 생산할수 있는 리윤의 일부분이다.(58)

보통의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하는것은 그 상품의 사용가치이며 그가 지불하는것은 그 상품의 가치이다. 화폐의 차용자가 구매하는것도 역시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사용가치이다. 그런데 그가 지불하는것은 무엇인가? 확실히 그것은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가격 또는 가치가 아니다. 대부자와 차용자간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서와는 달라서 가치의 형태변환이 진행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가치가 한번은 화폐형태로 존재하고 또 한번은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일은 없다. 양도되는 가치와 회수되는 가치의 동일성은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치액인 화폐는 등가없이 양도되고 일정한 기간후에 반환된다. 대부자는 언제나 동일한 가치의 소유자이며 그 가치가 대부자의 수중으로부터 차용자의 수중으로 이행한후이라도 역시 그러하다. 단순한 상품교환에 있어서는 화폐는 항상 구매자편에 있으나 대부에 있어서는 화폐는 판매자편에 있다. 판매자는 그것을 일정한

---

(57) 《리자획득의 정당성은 어떤 사람이 리윤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차용된것〕이 옳게 사용되면 리윤을 낳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것에 의하여 결정된다》(《자연적리자률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이 론제에 관한 W. 페티경과 로크씨의 의견에 대한 검토》, 1750년 런던판 49페지. 이 저서의 익명저자는 j. 매씨이다).

(58) 《부자들은 자기들의 화폐를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이것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은 리윤을 내고 이렇게 얻은 리윤의 일부분을 소유자들을 위하여 납긴다》(우와 같은 책, 23~24페지).

기간 양도하며 자본의 구매자는 화폐를 상품으로서 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것은 화폐가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따라서 선대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차용자는 화폐를 자본으로서, 자체를 증식하는 가치로서 차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자본이나 그 출발점에서는, 그 선대의 순간에는 다 그러한것처럼 아직 자본 자체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 사용에 의해서만 비로소 증식되며 자본으로서 실현된다. 그러나 차용자는 그것을 **실현된** 자본으로서, 즉 가치 플라스 잉여가치(리자)로서 상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후자는 다만 차용자에 의하여 실현된 리윤의 일부분일따름이다. 다만 일부분일뿐이며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차용자에 있어서 대부된 자본의 사용가치는 그것이 그를 위하여 리윤을 생산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자측에서의 사용가치의 양도는 실시되지 않았을것이다. 다른 한편 리윤이 전부 차용자의것으로 될수도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는 사용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될것이며 선대된 화폐를 단순한 화폐로서만 대부자에게 반환할뿐이고 자본으로서, 실현된 자본으로서 반환하지 않는것으로 될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G+\Delta G$로서만 실현된 자본이기때문이다.

대부자와 차용자는 량자가 다 동일한 화폐액을 자본으로서 지출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후자의 수중에서만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리윤은 동일한 화폐액이 두 사람을 위하여 자본으로서 이중으로 존재하는데 의하여서는 2배로 되지는 않는다. 이 화폐액이 량자를 위하여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것은 오직 리윤의 분할에 의하여서만이다. 대부자의것으로 되는 부분을 리자라고 부른다.

전제에 의하면 전체 거래는 두 종류의 자본가들사이에서

즉 화폐자본가와 산업자본가 또는 상업자본가사이에서 진행된다.

망각하여서는 안될것은 여기서는 차본은 자본으로서 상품이라는것, 바꾸어말하면 여기서 문제로 되고있는 상품은 자본이라는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는 단순한 상품의 관점에서 보면 또는 자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본이 그 재생산과정에서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는 불합리한것이다. 판매와 구매가 아니라 대부와 차용이라는것은 여기서는 상품—자본—의 독특한 성질에서 나오는 구별이다. 또 여기서 지불되는것이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리자라는것도 역시 그러하다. 만일 리자를 화폐자본의 가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가격의 불합리한 형태로서 상품가격이라는 개념과 전적으로 모순된다.(59) 여기서 가격은 사용가치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그 어떤것에 대하여 지불되는 일정한 화폐액이라는 그 순전히 추상적이며 무내용한 형태로 환원되여있으나 가격의 개념으로 보면 가격은 그 사용가치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것과 같은것이다.

자본의 가격으로서의 리자란 원래 전혀 불합리한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한 상품이 2중의 가치를 가지고있다. 즉 처음에는 가치를 가지며 다음에는 이 가치와 다른 가격을 가지고있다. 비록 가격이란 가치의 화폐적표현이기는 하지만 화폐자본은 우선 어떤 화폐액에 불과하다. 또는 일정한 상품량의 가치가 화폐액으로서 고정된것에 불과하다. 만약 상품이

---

(59) 《통화에 적용되는 가치(value)라는 표현에는 세가지 의미가 있다…2) 후일에 들어오게 될 동일한 액의 통화와 구별되는, 실제로 수중에 있는 통화. 이 경우에는 통화의 가치는 리자률에 의하여 계산되며 또 리자률은 대부할수 있는 자본과 그것에 대한 수요와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R. 토런즈 《1844년 은행법의 실시가 상업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1847년[런던] 제2판[5~6페지]).

자본으로서 대부된다면 그 상품은 어떤 화폐액의 가장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으로서 선대되는것은 몇 폰드의 면화가 아니라 면화라는 형태속에 면화의 가치로서 존재하는 얼마의 화폐량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가격은 토런즈씨가 말하는것처럼(앞의 주 59를 보라) 통화로서의 자본은 아니더라도 화폐액으로서의 자본에 관련되는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여 어떤 가치액은 그 자신의 가격외에 즉 그 자신의 화폐형태로 표현되는 가격외에 다른 하나의 가격을 가질수 있는가? 가격이란 상품의 사용가치와는 구별되는 상품의 가치인것이다(그리고 시장가격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데 시장가격과 가치와의 차이는 질적인것이 아니고 다만 량적인것이며 다만 가치량에만 관계가 있을뿐이다). 가치와 질적으로 다른 가격이란 리치에 어긋나는 모순이다.(60)

자본은 그 가치증식에 의하여 자기가 자본이라는것을 표명한다. 그 가치증식의 정도는 그것이 자본으로서 실현되는 량적인 정도를 표현한다.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 또는 리윤—그 률 또는 높이—은 다만 그것을 선대자본의 가치와 비교하는것에 의해서 계산할수 있다. 그러므로 리자부자본의 가치증식의 대소도 역시 리윤액, 즉 총리윤중에서 그 자본의것으로 되는 부분을 선대자본의 가치와 비교하는것에 의해서만 계산할수 있다. 그러므로 가격이 상품의 가치를 표현한다면 리자는 화폐자본의 가치증식을 표현하며 따라서 그 화폐자본의 대가로서 대부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으로서 나타

---

(60) 《화폐 또는 통화의 가치라는 용어가 상품과 교환되는 때의 가치와 자본으로서 사용되는 때의 가치쌍방을 다 나타내기 위하여 무차별하게 사용된다면 이러한 용어의 애매함은 언제든지 혼란의 원천이다》(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77페지).—그러나 가치로서의 가치(리자)가 자본의 사용가치로 된다는 주요한 혼란(사태의 본질자체에 있는 혼란)이 투크에게는 리해되지 않는다.

난다. 이로부터 분명한것은 쁘루동이 하고있는것처럼 화폐에 의하여 매개되는 교환 즉 매매라는 단순한 관계를 직접 이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는것은 실로 애당초부터 어리석은 일이다. 근본적전제는 바로 화폐가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것, 따라서 또 자본 자체로서, 잠세적인 자본으로서 제삼자에게 인도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본 자체가 상품으로서 나타나는것은 자본이 시장에서 판매되여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사용가치가 현실적으로 양도되는 한에서이다. 그러나 자본의 사용가치는 리윤을 낳는다는 그것이다. 자본으로서의 화폐 또는 상품의 가치는 화폐 또는 상품으로서의 그것들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것들의 소유자를 위하여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자본의 생산물은 리윤이다. 화폐가 화폐로서 지출되는가 자본으로서 선대되는가 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다만 화폐의 각이한 사용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은 그 자체로서는 잠세적으로 자본인데 그것은 마치 로동력이 잠세적으로 자본인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1) 화폐는 생산요소로 전화될수 있고 또 사실 그대로 생산요소의 단순한 추상적표현이며 생산요소의 가치로서의 정재이기 때문이다. 2) 부의 소재적요소들은 이미 잠세적으로 자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재적요소들을 보충하는 대립물 즉 그것들을 자본으로 만드는것—임금로동—이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현존하고있기때문이다.

소재적부의 대립적인 사회적규정성—임금로동으로서의 로동에 대한 그 부의 대립—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되여

이미 자본소유 그 자체에서 표현되고있다. 이 계기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상시적인 결과이며 또 이 과정의 상시적인 결과로서 이 과정의 상시적인 전제인데 이 계기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 그 자체로부터 분리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표현되고있다. 즉 화폐 그리고 또한 상품은 그 자체로서 잠재적으로, 잠세적으로 자본이라는것, 그것들은 자본으로서 판매될수 있다는것, 그리고 그것들이 이 형태로서는 타인의 로동에 대한 지휘권이며 타인의 로동을 취득할데 대한 요구권을 부여하는것이며 따라서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라는것이다. 여기에서 또 다음과 같은것도 명백하게 된다. 즉 이 관계는 타인의 로동을 취득할수 있는 근거 및 수단이며 자본가측으로부터의 대가로서의 어떠한 로동도 아니라는것이다.[184]

다음으로 리자와 본래의 리윤으로의 리윤의 분할이 상품의 시장가격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에 의하여, 따라서 경쟁에 의하여 규제되는 한에서도 자본은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차이점도 류사점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상품의 시장가격은 생산가격과 일치한다. 즉 그때의 상품의 가격은 경쟁과는 관계없이 자본주의적생산의 내적법칙들에 의하여 규제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수요공급의 변동은 생산가격으로부터의 시장가격의 배리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는것이 아니며 이러한 배리는 상쇄되여 어떤 비교적 오랜 기간으로 보면 평균시장가격은 생산가격과 같기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이러한 힘은 작용하지 않게 되고 서로 상쇄되며 그렇게 되면 가격규정의 일반적법칙이 개개의 경우의 법칙으로서 나타난다. 그 경우에는 시장가격은 이미 그 직접적존재

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가격의 운동의 평균으로서뿐만아니라 생산방식 자체의 내재적법칙에 의하여 규제되여있는 생산가격에 일치한다. 로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그것들의 작용은 상쇄되며 로임은 로동력의 가치와 같게 된다. 그러나 화폐자본의 리자는 그렇지 않다. 리자의 경우에는 경쟁이 법칙으로부터의 배리를 규정하지 않으며 경쟁에 의하여 강제되는 법칙외에 다른 분할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욱 상세히 보겠지만 어떠한 《자연적》 리자률도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자연적리자률이라는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확정되는 률을 말한다. 리자률의 《자연적》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이 배리와 변동을 규정할뿐만이 아닌 경우, 따라서 호상 반대로 작용하는 힘들이 균형된 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규정이 폐절되는 경우에는 규정되여야 할것은 그 자체로서 무법칙이며 자의적인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더 상세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리자부자본에 있어서는 모든것이 외면적인것으로서 나타난다. 즉 자본의 선대는 대부자로부터 차용자에게로의 자본의 단순한 이전으로서 나타나며 실현된 자본의 환류는 차용자로부터 대부자에게로의 단순한 역이전, 리자를 수반한 자본의 상환으로서 나타난다. 또 리윤률은 1회전에서 얻는 리윤의 선대자본가치에 대한 비률에 의하여 규정될뿐만아니라 이 회전기간 자체의 길이에 의하여도 규정되며, 따라서 산업자본이 일정한 기간에 낳는 리윤으로서 규정된다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내재하는 규정도 역시 그러하다. 이것은 또 리자부자본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외면적인것으로,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대부자에게 일정한 리자가 지불된다는 식으로 나

타난다.

랑만파의 애담 뮐레르는 사물의 내적련관을 꿰뚫어보는 그의 평상시의 통찰력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물건의 가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리자의 규정에 있어서는 주로 시간이 고려된다》(《정치의 기본》, 1809년 베를린판[제3책] 138페지).

그에게 리해되지 않는것은 생산기간과 류통기간이 상품가격의 규정에 들어간다는것, 그리고 바로 그것에 의하여 자본의 일정한 회전기간에 있어서의 리윤률이 규정된다는것, 따라서 또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리윤의 규정에 의하여 다름아닌 리자의 규정도 주어진다는것이다. 그의 심각한 통찰력은 여기서도 여느때처럼 표면의 먼지를 보고 그것을 아주 신비롭고 중대한것처럼 요란스럽게 말하는데 있다.

제 22 장

리윤의 분할. 리자률.
《자연》 리자률

이 장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이후의 장들에서 취급하게 될 모든 신용상의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세목에 이르기까지 연구할수는 없다. 대부자들과 차용자들사이 경쟁과 그 결과로서의 화폐시장의 단기적인 변동들은 우리의 고찰범위에 들지 않는다.[160] 산업순환의 진행중에 리자률이 통과하는 순환은 그 서술을 위하여서는 산업순환 자체의 서술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산업순환의 서술도 여기서는 할수 없다. 세계시장에서의 리자률의 크거나 작은 근사적인 평균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개하려는것은 다만 리자부자본의 독립적모습과 리윤에 대한 리자의 독립화뿐이다.

리자는 리윤중의—우리의 지금까지의 전제에 의하면 산업자본가가 화폐자본가에게 지불하여야 할—일부분에 불과하므로 리자의 최고한계로 나타나는것은 리윤 자체이며 리자가 이 최고한계에 도달할 경우에는 기능자본가의것으로 되는 부분은 0일것이다. 리자가 실제로 리윤보다도 크고 따라서 리

윤에서 지불될수 없는 개별적경우를 도외시하면 리윤중 감독임금으로 분해될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 전개할 부분을 리윤전체에서 감한것을 아마 리자의 최고한계로서 간주할수 있을것이다. 리자의 최저한계는 전혀 규정할수 없는것이다. 리자는 임의의 수준까지 얼마든지 저락할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또 반대로 작용하는 사정들이 나타나서 항상 리자률이 상대적인 최저한계보다 높이 끌어올리는것이다.

《자본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과 이 자본 자체간의 비률은 화폐로 계량된 리자률을 나타낸다.》—《리자률은 1) 리윤률에 의하여 2) 총리윤이 대부자와 차용자사이에 분할되는 비률에 의하여 결정된다》(《경제학자》 1853년 1월 22일). 《자기가 차용한것의 사용에 대하여 리자로서 지불하는것은 차용한것으로 생산할수 있는 리윤의 일부분이므로 이 리자는 항상 그 리윤에 의하여 조절될수밖에 없다》(매씨 《자연적리자률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1750년 런던판 49페지).

우선 총리윤과 그중 리자로서 화폐자본가에게 지불되여야 할 부분간에 어떤 고정적인 비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분명히 리자는 총리윤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릴것이다. 그리고 총리윤은 일반적리윤률과 그 변동에 의하여 규정된다. 례컨대 평균리윤률이 20%이고 리자가 리윤의 $\frac{1}{4}$이라면 리자률은 5%일것이다. 평균리윤률이 16%이면 리자는 4%일것이다, 리윤률이 20%인 경우에 리자는 8%로 오를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산업자본가는 리윤률이 16%이고 리자률이 4%인 경우와 같은 리윤 즉 12%를 얻을것이다. 만약 리자가 6%나 7%로밖에 오르지 않는다면 산업자본가는 역시 리윤의 보다 큰 부분을 확보할것이다. 만약 리자가 평균리윤중의 불변

한 부분과 같다면 그 경우에는 일반적리윤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리윤과 리자간의 절대적차액은 그만큼 더 크게 될것이며 따라서 총리윤중 기능자본가의것으로 되는 부분도 그만큼 더 크게 될것이며 또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될것이다. 리자가 평균리윤의 $\frac{1}{5}$이라고 가정하자. 10의 $\frac{1}{5}$은 2이며 총리윤과 리자간의 차액은 8이다. 20의 $\frac{1}{5}$은 4이며 차액은 20-4=16이다. 25의 $\frac{1}{5}$은 5이며 차액은 25-5=20이다. 30의 $\frac{1}{5}$은 6이며 차액은 30-6=24이다. 35의 $\frac{1}{5}$은 7이며 차액은 35-7=28이다. 4%, 5%, 6%, 7%라는 각이한 리자률이 여기서는 모두 총리윤의 $\frac{1}{5}$ 즉 20%만을 표시할것이다. 따라서 리윤률이 각이하면 각이한 리자률이 총리윤중의 동일한 부분 또는 총리윤의 동일한 백분비적부분을 표시할수 있다. 리자의 비률이 이와 같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업리윤(총리윤과 리자간의 차액)은 일반적리윤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더 클것이며 반대인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될것이다.

다른 사정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즉 리자와 총리윤간의 비률을 많든적든 같은것으로 가정하면 기능자본가는 리윤률의 높이에 정비례하여 보다 높은 또는 보다 낮은 리자를 지불할수 있을것이며 또 기꺼이 지불할것이다.(61) 이미 본바과 같이 리윤률의 높이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반비례하므로 리자률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리윤률의 차이를 표현하는 한에서는 한 나라의 리자률의 높고낮음도 산업발전의 높이에

---

(61) 《자연적리자률은 개개인의 영업의 리윤에 의하여 지배된다》(매씨, 우와 같은 책[《자연적리자률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1750년 런던판] 51페지).

대하여 역시 반비례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것은 아님을 나중에 보게 될것이다. 이 의미에서는 리자는 리윤에 의하여,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리자를 조절하는 이 방식은 리자의 평균수준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것이다.

여하간 평균리윤률은 리자를 종국적으로 규정하는 최고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리자는 평균리윤률과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는 사정은 이제 곧 상세히 고찰할것이다. 리윤과 같은 하나의 주어진 전체가 두 사람사이에 분할되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우선 문제로 되는것은 이 분할되여야 할 전체의 크기이다. 그리고 이 크기 즉 리윤의 크기는 평균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일반적리윤률 따라서 례컨대 100이라는 주어진 크기의, 어떤 자본에 대한 리윤의 크기를 주어진것으로 전제하면 리자의 변동은 분명히 기능자본가라고는 하지만 차입자본으로써 영업하는 자본가의 수중에 남는 리윤부분의 변동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분할되여야 할 리윤의 크기, 즉 부지불로동의 가치생산물의 크기를 규정하는 사정들은 이 두 종류의 자본가들사이에서의 리윤의 분할을 규정하는 사정들과는 극히 다르며 종종 정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62)

현대산업이 그속에서 운동하는 회전순환—평온상태, 활기증진, 번영, 과잉생산, 파국, 정체, 평온상태 등등의 순환인데 이것의 보다 상세한 분석은 우리의 고찰범위에 들지 않

(62) 원고에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삽입되여있다. 《본장의 진행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리윤분할의 법칙들을 연구하기전에 우선 량적분할이 어떻게 질적분할로 되는가 하는것을 서술하는것이 더욱 좋을것이다. 전장으로부터 이 점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우선 리자를 리윤중의 그 이상으로 상세하게는 규정되지 않은 어떤 부분으로서 가정하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없다.》 [F. 엥겔스]

는다—을 고찰하여본다면 리자가 낮은 상태는 대개 번영기 또는 초과리윤의 시기에 상응하고 리자의 상승은 번영과 그 전환의 계선에 상응하고 극도의 고리대로도 되는 최고한은 공황에 상응한다는것을 보게 될것이다.(63) 1843년 여름부터는 뚜렷한 번영이 시작되였다. 1842년 봄에는 아직 $4\frac{1}{2}$%이던 리자률이 1843년의 봄과 여름에는 2%로 저락하고(64) 9월에는 $1\frac{1}{2}$%로까지 저락하였다(길버트[《은행실용업무개론》 1849년 런던 제5판 제1권 166페지]). 그후 1847년 공황기간에는 리자률은 8% 이상으로 올랐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리자가 정체에 수반될수도 있고 리자의 적당한 상승이 활기증진에 수반될수도 있다.

리자률이 극도에 달하는것은 공황시기인데 이때에는 지불을 하기 위하여서는 부담이 아무리 크더라도 차용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리자의 상승에는 유가증권가격의 저락이 상응하므로 이것은 동시에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화폐자본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로서는 리자부증권을 헐값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며 이러한 증권은 사태가 정상적인 경과를 취할 경우에는 리자률이 다시 저락하면 곧 적어도 그 평균가격에는 틀림없이 다시 도달하는것이다.(65)

---

(63) 《불경기직후의 제1시기에는 투기가 없고 화폐는 풍부하다. 제2시기에는 화폐는 풍부하고 투기도 성한다. 제3시기에는 투기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화폐를 찾게 된다. 제4시기에는 화폐가 결핍하고 불경기가 시작된다》(길버트 우와 같은 책[《은행실용업무개론》, 1849년 런던 제5판] 제1권 149페지).

(64) 투크는 이 저락을 《그전 수년간에는 유리한 투자분야가 없었다는것의 필연적인 수반현상으로서의 과잉자본의 축적에 의하여, 축장화폐의 방출에 의하여 그리고 영업의 발전에 대한 확신의 회복에 의하여》 설명하고있다(《1839년부터 1847년까지의 가격의 력사》, 1848년 런던판 54페지).

(65) 《어떤 은행업자의 오랜 한 고객은 20만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거절당하였다. 그가 자기의 지불정지를 통고하기 위하여 떠나려 할

그러나 리윤률의 변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리자률이 저락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주요원인이 있다.

Ⅰ. 《자본은 생산적투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차입되지 않을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총리윤의 률에 아무런 변동도 없이 리자률이 변동하는 일이 있을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국민의 부가 발전함에 따라 자기들의 선조의 로동에 의하여 충분한 기금을 소유하고 이 기금의 리자만 가지고 생활할수 있는 사람들의 계급이 발생하고 더욱더 증가하기때문이다. 청년기나 장년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가하다가 은퇴하여서부터는 축적된 금액의 리자를 가지고 편안히 만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나라의 부가 증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소액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용이하게 독립적인 재산을 만들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랜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새로 개발되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보다도 국민의 자본중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사회의 총생산적자본에 대하여 보다 높은 비률을 이루고있다. 영국에는 금리생활자계급이 얼마나 많은가! 금리생활자계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을 대부하는 사람들의 계급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 두 계급은 동일한것이기때문이다》 (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201~202페지).

Ⅱ. 신용제도가 발전한다는것, 그리고 그에 따라 사회의 모든 계급들의 모든 화폐저축을 산업자본가나 상인이 은행업자의 매개에 의하여 점점 더 리용할수 있게 된다는것, 그리고 이 저축이 부단히 집적되여 그것이 화폐자본으로서 작용할수 있는 량으로 된다는것, 이러한것도 역시 리자률을 압박

때에 은행업자는 그에게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은행가는 그 증권을 15만파운드로 사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H. 로이] 《환자시세의 리론, 1844년의 은행법》, 1864년 런던판 80페지).

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상세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리자률의 규정에 관하여 램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리자률은

《부분적으로는 총리윤의 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분적으로는 총리윤이 리자와 기업자리득(profits of enterprise)으로 분할되는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비률은 자본의 대부자와 차용자간의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경쟁은 예상되는 총리윤의 률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나 오직 그것만으로 조절되는것은 아니다.(66) 경쟁이 오직 그것만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것은 한편으로는 생산적으로 투자하려는 아무러한 의도도 없이 차용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할 수 있는 자본 전체의 크기가 총리윤의 어떠한 변동에도 관계없이 그 나라의 부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기때문이다》(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206~207페지).

평균리자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1) 큰 산업순환에서의 리자률의 변동을 통하여 그 평균을 계산하여야 하며 2) 자본이 비교적 장기간 대부되는 투자령역들에서의 리자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 나라에서 지배적인 평균리자률—부단히 변동하는 시장률과는 구별되는—은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서도 전혀 규정될수 없는것이다. 이 령역에는 경제학자들이 자연리윤률과 자연로임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연리자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 이미 매씨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는것은 완전히 옳다.

---

(66) 리자률은 전체로서 평균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므로 심한 사기적행위가 낮은 리윤률과 결부되는 일이 극히 빈번히 있을수 있다. 례컨대 1844년 여름의 철도사기가 그러하다. 잉글랜드은행의 리자률은 1844년 10월 16일에야 비로소 3%로 인상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누가 의문을 가질수도 있는 유일한것은 이 리윤중 얼마만한 부분이 차용자에게 속하고 얼마만한 부분이 대부자에게 속하는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하는데는 차용자와 대부자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하는수밖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정당한가 부당한가 하는것은 쌍방의 동의가 정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것임에 불과하기때문이다》([매씨 《자연적리자률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1750년 런던판]49페지).[185]

수요와 공급의 일치—평균리윤률을 주어진것으로 전제하여—는 여기서는 전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이 공식에 의거하는 경우에는(그리고 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것이 실제적으로 옳지만) 이 공식은 경쟁에는 좌우되지 않고 도리여 경쟁을 규정하는 기본원칙(조절하는 한계 또는 한계를 긋는 크기)들을 발견하기 위한 공식으로서 복무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공식은 경쟁의 실제나 경쟁의 현상들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있어서는 경쟁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제적관계의 내적련관의 하나의 관념—비록 이 자체도 피상적인것이라 하더라도—에 도달하기 위한 공식으로서 복무한다. 이것은 경쟁에 수반되는 변동들로부터 이 변동들의 한계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평균리자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등의 경쟁조건 즉 대부자와 차용자간의 균형이 왜 대부자에게 그의 자본에 대한 3%나 4%나 5% 등등의 리자율을, 또는 총리윤중 20%나 50%라는 일정한 백분비적부분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리유는 전혀 없다. 여기에서 경쟁 그 자체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 규정은 그 자체가 절대로 우연적이며 순수하게 경험적인것이며 다만 현학이나 망상만이 이 우연성을 필연적인것으로서

설명하려고 할수 있는것이다.(67) 은행립법과 상업공황에 관한 1857년 및 1858년의 의회보고서중에서 무엇보다도 재미있는것은 잉글랜드은행의 리사나, 런던의 은행업자나, 지방의 은행업자나 직업적리론가들이 허튼소리에서 한걸음도 나감이 없이 《산생된 현실적리자률》[real rate produced]에 관하여 끊임없이 지껄이고있는것을 듣는것이다. 허튼소리라고 하는것은 례컨대 《대부할수 있는 자본에 대하여 지불되는 가격은 이 자본의 공급에 따라 변동하여야 할것이다》라든가, 《높은 리자률과 낮은 리자률은 오래동안 병존할수는 없다》라든가 하는 따위의 판에 박힌 문구이다.(68) 관습, 법률적전통 등등도 경쟁 자체와 마찬가지로 중등리자률—이 리자률이 비단 평균수로서뿐만아니라 사실상의 크기로서 존재하는 한에서는—의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중등리자률은 이미 많은

---

(67) 례컨대 G. 오브다이크는 《정치경제학에 관한 론술》(1851년, 뉴욕판)에서 5%라는 리자률의 보편성을 영원한 법칙으로부터 설명하려는 극히 성과없는 시도를 하고있다.[186]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박한것은 《독점정신과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자연적국민경제학》(1845년, 하나우판)중에서의 칼 아른드씨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재화생산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리자률율—완전히 개발된 나라들에서—어느 정도 조절할 사명을 가진것 같이 보이는 현상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구라파의 삼림들의 수목량이 그 매년의 생장에 의하여 증가되는 비률이다. 이 생장은 수목의 교환가치와는 전혀 관계없이》(수목이 자기의 교환가치와는 관계없이 생장한다는것은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100에 대하여 3 내지 4의 비률로 진행된다. 이에 의하면》(즉 수목의 교환가치가 얼마나 그 수목의 생장에 좌우되더라도 수목의 생장은 수목의 교환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그것이》(리자률이)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의 현재의 수준이하로 저락한다는것은 기대할수 없을것이다》(124~125페지).—이것은 《삼림에 기원하는 리자률》이라고 부를만한것이다. 그리고 그 발견자는 동일한 저서에서 더 나가 《우리의 과학》을 위하여 자기를 《축견세의 철학가》[187]로서 칭찬받을만하게 하고있다[420~421페지].

(68) 잉글랜드은행은 물론 언제나 공개시장에서 지배적인 률을 고려하는것이지만 자기의 할인률을 금의 류입과 류출에 따라 높였다내렸다 한다. 《이때문에 잉글랜드은행의 할인률의 변동을 예견하면서 하는 수형할인에서의 투기가 지금은 화폐중심지(즉 런던의 화폐시장)의 거두들의 일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였다》([H. 로이] 《환자의 리론》, 113페지).

법률상의 소송사건에서도 리자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리자률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한걸음 더 나가 중등리자률의 한계를 왜 일반적인 법칙으로부터 끌어낼수 없는가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즉 리자의 성질에 있다. 리자는 오직 평균리윤의 일부분일따름이다. 동일한 자본이 이중적규정으로 나타난다. 즉 대부자의 수중에서는 대부할수 있는 자본으로서 나타나며 기능자본가의 수중에서는 산업자본 또는 상업자본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이 기능하는것은 한번뿐이며 그 자신이 리윤을 낳는것도 한번뿐이다. 생산과정 자체에서는 대부할수 있는 자본으로서의 자본의 성격은 아무런 역할도 놀지 않는다. 이 두 인물이 청구권을 가지고있는 이 리윤을 그들간에 어떻게 분할하는가 하는것은 어떤 회사의 공동리윤이 각이한 출자자들간에 백분비적으로 분할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순 경험적인, 우연의 령역에 속하는 사실이다. 리윤률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기초인 잉여가치와 로임으로의 분할에는 두개의 전혀 다른 요소인 로동력과 자본이 규정적으로 작용한다. 거기서는 두개의 독립변수의 함수가 서로 한계를 짓고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질적구별**로부터 생산된 가치의 **량적분할**이 발생한다. 잉여가치가 지대와 리윤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동일한것이 일어난다는것은 나중에 보게 될것이다. 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이제 곧 알게 될것이지만 반대로 **질적구별**은 잉여가치의 동일한 부분의 **순전한 량적분할**로부터 발생한다.

지금까지 서술한데 의하면 《자연적》 리자률이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단히

변동하는 리자의 시장률과 구별되는 중등리자률 또는 리자의 평균률은 일반적리윤률과는 반대로 그 한계를 어떠한 일반적 법칙에 의하여서도 확정할수 없는것이라면—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는 다만 총리윤을 두 자본소유자사이에 각이한 명의로 분배하는것뿐이기때문이다—반대로 리자률은 중등리자률이든 그때그때의 시장률이든간에 일반적리윤률의 경우와는 전혀 달리 하나의 균일한, 확정된 그리고 명확한 크기로서 나타난다. (69)

리자률과 리윤률의 관계는 상품의 시장가격과 상품의 가치와의 관계와 류사하다. 리자률이 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항상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 특수한 산업부문들에서 지배적일수 있는 특수한 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은 아니며 더구나 개별적자본가가 특수한 사업분야에서 얻을수 있는 초과리윤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은 아니다. (70) 그러므로 일반적리윤률은 사실상 평균리자률

---

(69) 《상품가격은 부단히 변동한다. 상품은 모두 각이한 용도를 가지고있다. 화폐는 어떠한 목적에도 쓰인다. 상품은 동일한 종류의것이더라도 품질이 다르다. 현금은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있으며 또는 적어도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자라는 말로 표현하는 화폐의 가격은 다른 어떤 물건들의 가격보다도 더 큰 확고성과 균등성을 가지고있는것이다》(J. 스튜어트 《정치경제학원리》, 프랑스어역, 1789년판 제4편 27페지).

(70) 《그러나 이러한 리윤분할의 법칙은 매개 대부자와 차용자에게 따로따로 적용될수는 없으며 대부자와 차용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수 있는것이다…현저하게 큰 리득이나 적은 리득은 기능의 보수 또는 지식부족의 결과이며 대부자들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대부자들은 리득이 적은것으로 하여 손해를 보는것이 아니므로 리득이 큰것으로 하여 리득을 볼 필요도 없기때문이다. 동일한 사업을 하는 개개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것은 각이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될수 있다. 만약 어떤 한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사업가들이 자기들이 차용한 화폐를 사용하여 같은 나라의 다른 상인들과 사업가들이 얻는 보통의 리윤보다도 더 많이 얻는다면 그 특별한 리득은 그것을 얻는데 보통의 솜씨와 지식밖에 요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것이고 그들에게 화폐를 제공한 대부자들의것이 아니다…왜냐하면 대부자들은 보통의 리자률의 지불도 허락하지 않는 나쁜 조건하에서 어떠한 상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화폐를 대부한것은 아닐것이며 따라서 또 그들은 자기들의 화폐에 의하여 얼마마

에서 경험적인 주어진 사실로서 다시 나타난다. 비록 후자는 결코 전자의 순수한 또는 확실한 표현은 아니지만.

차용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대부기간의 길고짧음에 따라 리자률 자체가 부단히 달라진다는것은 확실히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 종류에 있어서는 리자률은 어떤 주어진 순간에는 한결같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리자률의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을 침해하지 않는다.(71)

중등리자률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교적 오랜 기간에는 불변의 크기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일반적리윤률이—특수한 리윤률의 부단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에서의 변동은 다른 분야에서의 상반되는 변동에 의하여 상쇄되는것이지만—비교적 오랜 기간에만 변동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리윤률의 상대적불변성은 바로 중등리자률의 이러한 다소간 불변한 성격에서 나타난다.

한 리윤을 얻든지 보통의 리자률보다 더 많이 받아서는 안되기때문이다》(매씨 《자연적리자률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1750년 런던판 50~51페지)

(71) 잉글랜드은행의 할인률 5%

시장할인률, 60일불수형 ..... $3\frac{5}{8}$%

시장할인률, 3개월불수형 ..... $3\frac{1}{2}$%

시장할인률, 6개월불수형 ..... $3\frac{5}{16}$%

수형중매인에 대한 대부, 당일대부 ..... 1~2%

수형중매인에 대한 대부, 1주간대부 3%

주식중매인에 대한 대부, 2주간대부 최종률 ..... $4\frac{3}{4}$%~5%

예금리자(은행) ..... $3\frac{1}{2}$%

예금리자(할인소) ..... 3~$3\frac{1}{4}$%

같은 하루동안에 이 차이가 얼마나 클수 있는가 하는것은 1889년 12월 10일부 《매일 소식》 지의 시황란으로부터 인용한, 12월 9일의 런던화폐시장의 리자률에 관한 상기의 표가 보여준다. 최저는 1%이고 최고는 5%이다[F. 엥겔스].

그러나 부단히 동요하는 시장리자률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매개 순간에는 고정적 크기로서 주어져있다. 왜냐하면 화폐시장에서는 모든 대부될 수 있는 자본은 총량으로서 기능자본에 부단히 대립하며 따라서 한편에는 대부될수 있는 자본의 공급과 다른 편에는 이것에 대한 수요간의 비률이 그때그때의 시장리자수준을 결정하기때문이다. 점점 더 그렇게 되는것은 신용제도의 발전과 이에 동반되는 집중이 대부될수 있는 자본에 일반적,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고 대부할수 있는 자본을 한꺼번에, 동시에 화폐시장에 투하하게 되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리윤률은 언제나 오직 경향으로서, 여러가지 특수한 리윤률들의 평균화의 운동으로서 존재할뿐이다. 자본가들의 경쟁—이 경쟁자체가 다름아닌 그 평균화운동인데—이란 여기서는 리윤이 장기간 평균보다 낮은 분야로부터 자본가들이 점차로 자본을 철수하고 리윤이 평균보다 높은 분야에 역시 점차로 자본을 투하하는것이다. 혹은 또 추가자본이 이 분야들간에 분배되는 비률이 점차로 달라진다는것이다. 그것은 이 각이한 분야들에 대한 자본의 공급과 철수의 부단한 변동인것이며 결코 리자률의 결정에 있어서와 같은 동시적인 대량 작용인 것은 아니다.

이미 본바와 같이 리자부자본은 상품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범주이지만 독특한 종류의 상품으로 되는것이며 또 그때문에 리자는 리자부자본의 가격으로 되며 이 가격은 보통의 상품의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이 그러한것처럼 언제나 수요공급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러므로 리자의 시장률은 부단히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매 순간에는 상품의 그때그때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만큼 확정된 획일적인것으

로서 나타난다. 화폐자본가는 이 상품을 공급하고 기능자본가는 그것을 구매하며 그것에 대한 수요를 형성한다. 이러한 일은 일반적리윤률로의 리윤의 평균화의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다. 어떤 한 분야의 상품가격이 생산가격보다 낮거나 높다면(이 경우에는 각이한 사업에 특유한 변동이나 산업순환의 각이한 단계들과 관련되여있는 변동은 도외시한다) 그 평균화는 생산의 확대 또는 축소에 의하여 즉 각이한 산업자본이 시장에 투하되는 상품량의 증대 또는 감소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러한 증대 또는 감소는 개개의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자본의 류입 또는 류출을 통하여 일어난다. 이와 같이 상품들의 평균시장가격의 생산가격으로의 평균화가 일어나는데 의하여 일반적리윤률 또는 평균리윤률로부터의 특수한 리윤률의 배리들이 수정된다. 이 과정은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 **자체**가 리자부자본처럼 구매자에 대하여는 상품이라는것으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으며 또 결코 그렇게 나타날수도 없다. 이 과정이 나타나는 한에서는 그것은 다만 상품의 시장가격의 변동과 그것의 생산가격으로의 평균화에 있어서만 나타날뿐이며 평균리윤의 직접적인 확정으로서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일반적리윤률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1) 총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의하여, 2) 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이 잉여가치의 비률에 의하여, 3) 경쟁에 의하여서이다. 그런데 이 경쟁은 다만 개개의 특수한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자본이 그것들의 상대적크기에 비례하여 이 잉여가치로부터 동등한 배당을 끌어내게 하는 운동인 한에서의 경쟁이다. 따라서 일반적리윤률은 사실상 수요공급관계에 의하여 직접 그리고 매개없이 규정되는 리자의 시장률과는 전혀 다른,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원인들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

그렇기때문에 일반적리윤률은 리자률이 그런것처럼 결코 명백한 주어진 사실은 아니다.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나타나는 특수한 리윤률은 그 자체가 다다소소 불확실한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리자률이 나타나는 한에서는 그러한 리윤률의 균일성이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그 차별성이 나타나는것이다. 그러나 일반적리윤률 그 자체는 다만 리윤의 최저한계로서 나타날따름이며 현실적리윤률의 경험적이며 직접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서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리자률과 리윤률간의 이러한 차이를 강조함에 있어서 우리는 리자률의 고정화를 돕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정을 또 도외시하고있는것이다. 1) 리자부자본이 력사적으로 앞서 존재하였다는것과 전통적으로 계승된 일반적리자률이 존재한다는것, 2) 세계시장이 한 나라의 생산조건과는 관계없이 리자률의 확정에 직접적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은 리윤률에 미치는 그 영향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것이다.

평균리윤은 직접 주어진 사실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연구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될수 있는, 반대방향으로의 변동들의 평균화의 종국적결과로서 나타난다. 리자률은 그렇지 않다. 리자률은 적어도 어떤 지역내에서 일반적타당성을 가진것으로서 매일 확정되는 사실이며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활동에 있어서는 계산상의 전제 및 항목으로서 복무하기까지 하는 사실이다. 2%, 3%, 4%, 5%를 낳는것이 100파운드라는 각 화폐액이 가지는 일반적능력으로 된다. 기상보고가 기압과 온도의 상태를 기록하는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거래소보고는 이러저러한 자본을 대하여서가 아니라 화폐시장에 있는 자본 즉 일반적으로 대부될수 있는 자본에 대하여 리자률의 상태를 기록한다.[188]

화폐시장에서는 다만 대부자와 차용자가 서로 대립할뿐이다. 상품은 화폐라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있다. 자본이 특수한 생산분야 또는 류통분야에 투하됨에 따라 취하는 특수한 모습들은 여기에서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자본은 여기에서는 독립적가치의, 화폐의 무차별적인, 자기 자신과 동등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특수한 분야들간의 경쟁은 여기에서는 없어진다. 어느 분야나 다 같이 화폐차용자로서 출현하며 또 자본도 모든 분야들에 대하여 그 사용의 특정한 방식에는 관계없는 형태로 대립한다. 만약 산업자본이 다만 특수한 분야들사이의 운동과 경쟁에 있어서만 **전체 계급의 공동자본**으로서 **자기**를 나타낸다면 자본은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전체 분량에 따라 자본의 수요공급에서 전체 계급의 공동자본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자본은 화폐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있다. 즉 그 모습에서 화폐자본은 공동적인 요소로서 그 특수한 사용방식과는 관계없이 매개 특수한 분야의 생산상의 요구에 따라 각이한 분야들사이에 자본가계급간에 분배되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 대공업의 발전에 따라 화폐자본은 그것이 시장에 나타나는 한에서는 점점 더 개별적자본가 즉 시장에 있는 자본의 이러저러한 부분의 소유자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고 집중되고 조직된 대량으로서 나타나게 되며 이 대량은 현실적 생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자본을 대표하는 은행업자의 통제하에 놓인다. 그리하여 수요의 형태로 보면 대부될 수 있는 자본에는 한 계급 전체의 힘이 대립하며 마찬가지로 공급으로 보아도 그 자본 자체는 대량으로 집결된 대부자본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이상은 일반적리윤률이 왜 확정된 리자률에 비하여 몽롱

한것으로서 나타나는가 하는 몇가지 리유이다. 이 리자률은 그 크기로 보면 변동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차용자들에게 대하여 균등하게 변동하는데 의하여 차용자에게는 항상 고정된 주어진 크기로서 대립한다. 그것은 마치 화폐의 가치변동이 모든 상품에 대하여 화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것을 방해하지 않는것과 같은것이다. 또 상품의 시장가격이 매일 변동되더라도 그것은 시장가격이 매일매일의 가격표에 기록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것과 같은것이다. 리자률의 변동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규칙적으로 《화폐의 가격》으로서 기록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 자체가 상품으로서 제공되기때문이며 따라서 그 가격의 확정은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장가격의 확정이기때문이며 따라서 리자률은 항상 일반적리자률로서, 얼마만한 화폐에 대한 얼마만한 화폐로서 량적으로 규정된것으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리윤률은 동일한 분야내에서까지도, 또 상품의 시장가격이 동등한 경우에도 개개의 자본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조건들이 다름에 따라 다를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자본에 있어서의 리윤률은 상품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시장가격과 비용가격과의 차액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이한 리윤률은 처음에는 동일한 분야내에서, 그다음에는 각이한 분야들간에서 부단한 변동을 통하여서만 평균화될수 있다.

(이후의 추고를 위한 각서). 신용의 한 특수한 형태 즉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품은 양도되여도 그 가

치는 나중에야 비로소 실현된다는것. 만일 상품이 다시 판매된후에야 비로소 지불이 실시된다면 이 판매는 구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판매에 의하여 구매가 실현되는것이다. 즉 판매가 구매의 수단으로 된다. 둘째로, 채무증서, 수형 등이 채권자를 위한 지불수단으로 된다. 셋째로, 채무증서의 상쇄가 화폐를 대신한다.

제 23 장

리자와 기업자리득

리자는 우리가 방금 앞 두 장에서 본바와 같이 기능자본가인 산업자본가 또는 상인이 자기의 자본이 아니라 차용한 자본을 사용하는 한에서 이 자본의 소유자 겸 대부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리윤 즉 잉여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시초에 나타나며 시초에 그러한것이며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한것에 불과하다. 만약 그가 자기 자본만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리윤의 분할은 일어나지 않으며 리윤은 전부 그의것으로 된다. 사실상 자본의 소유자들이 자기로 자본을 재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한에서는 그들은 리자률을 결정하는 경쟁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미 이 점에서도 리자라는 범주—이것은 리자률의 규정없이는 있을수 없다—는 산업자본 자체의 운동과는 인연이 없다는것이 드러난다.

《리자률은 1년 또는 그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에 대하여 어떤 금액의 화폐자본의 사용의 보상으로서 대부자가 받으며 차용자는 지불하는데 동의하는 비률액이라고 정의하여도 될것이다…만일 자본의 소유자가 자본을 적극적으로 재생산에 사용한다면 그는 차용자들의 수에 대한 그 비률이 리자률을 결정한다는 자본가의 수에는 들지 않는다》(T. 투크 《가격의 력사》, 1838년 런던판 제2권 355~356페지).

사실상 오직 자본가가 화폐자본가와 산업자본가로 분리된다는것만이 리윤의 일부분을 리자로 전화시키고 대체로 리자라는 범주를 만들어내는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 두 종류의 자본가들간의 경쟁만이 리자률을 창조하는것이다.

자본이 재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한—그 자본이 산업자본가 자신의것이고 따라서 그는 그것을 대부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전제하더라도—그가 개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것은 이 자본 자체가 아니라 그가 다만 수입으로서 지출할수 있는 리윤뿐이다. 그의 자본이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한 그것은 재생산과정에 속하며 거기에 고정되여있다. 그는 그 자본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이 소유는 그가 이것을 자본으로서 로동의 착취에 리용하고있는 한 다른 방식으로 그가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하는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화폐자본가의 경우도 전적으로 마찬가지이다. 그의 자본이 대부되여있고 따라서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동안은 그 자본은 그에게 리자를 즉 리윤의 일부분을 가져오나 그는 본전을 마음대로 처분할수는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가 자본을 례컨대 1년 또는 수년간 대부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리자는 받으나 자본은 상환받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의 상환을 받더라도 아무런 차이도 생기지 않는다. 그가 자본을 상환받더라도 그것이 그를 위하여 자본—여기서는 화폐자본—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한 그는 그것을 부단히 새로 대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이 그의 수중에 있는 동안은 자본은 리자를 낳지 않으며 자본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이 리자를 낳고 자본으로서 작용하는 동안은 그것은 그의 수중에 있지 않는다. 여기로부터 자본을 영구히 대부할 가능성이 나온다. 그러므로 투크가 보즌케트를 반대하

여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전적으로 그릇된것이다. 투크는 보즌케트(《금속, 지페 및 신용통화》, 73페지)의 말을 인용한다.

《가령 리자률이 1%로 인하된다면 차입자본도 자기자본과 거의 동일한 선에 놓이게 될것이다.》

이에 대하여 투크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가한다.

《이러한 리윤률로, 또는 지어 이보다도 더 낮은 리윤률로 차입된 자본이 자기자본과 거의 동일한 선에 설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은 정말 기이한 주장이며 만일 그것이 이렇게 현명하고 또 론제의 개개의 점에 그렇게 정통한 저술가의 입에서 나온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중한 주의를 돌릴만한것은 아닐것이다. 그의 전제에 상환이라는 조건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그는 보지 못한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정을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있는것이 아닌가?》(T. 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1844년 런던 제2판 80페지)

가령 리자가 0이라면 자본을 차용하는 산업자본가도 자기 자본으로써 사업하는 산업자본가와 동등한 립장에 설것이다. 량자는 다 동일한 평균리윤을 얻을것이며 자본은 차용한것이든 자기의것이든간에 그것은 리윤을 생산하는 한에서만 자본으로서 작용하는것이다. 자본이 상환되여야 한다는 조건은 이 점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을것이다. 리자률이 령에 가까와지면 가까와질수록 즉 례컨대 1%로 인하되면 될수록 차용자본은 그만큼 더 자기자본과 동일한 립장에 놓이게 된다. 화폐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여야 하는 한 그것은 부단히 반복하여 대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도 현행리자률, 례컨대 1%의 률로 부단히 반복하여 동일한 산업자본가계급이나 상업자본가계급에게 대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

본가들이 자본가로서 기능하는 한 차용한 자본으로 기능하는 자본가와 자기의 자본으로 기능하는 자본가사이의 차이는 오직 일방은 리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타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것, 일방은 리윤 p를 전부 차지하는데 타방은 p-z를 즉 리윤 마이나스 리자를 차지한다는것뿐이다. z가 령에 가까와지면 가까와질수록 그만큼 더 p-z=p로 되며 두 자본은 점점 더 동등한 립장에 서게 된다. 일방은 자본을 상환하고 새로 차용하지 않으면 안되나 타방은 그의 자본이 기능하여야 하는 한 그것을 역시 부단히 새로 생산과정에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과정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처분할수는 없다. 이밖에 아직도 한가지 남아있는 차이는 일방은 자기 자본의 소유자이며 타방은 그렇지 않다는 자명한 차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순리윤과 리자로의 리윤의 이러한 순전히 량적인 분할이 어떻게 질적인 분할로 전변하는가? 바꾸어말하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사용할뿐 차용한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자본가도 역시 어떻게 자기의 총리윤의 일부분을 리자라는 특수한 범주에 넣고 그러한것으로서 특별히 계산하는가? 따라서 또 더 나아가 말하면 모든 자본이 차용한것이든 아니든간에 어떻게 리자부자본으로서의, 순리윤을 가져오는 자본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구별되는가?

누구나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리윤의 우연적인 량적분할이 모두 이처럼 질적인 분할로 변하는것은 아니다. 례컨대 일부 산업자본가들은 련합하여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고 법률적으로 확정된 협약에 따라 서로 리윤을 분배한다. 다른 산업자본가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각기 단독으로 동업자없이 경

영한다. 이 후자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리윤을 두개 부류로 나누어 한 부분을 개인리윤으로서 계산하고 다른 부분을 존재하지도 않는 사원을 위한 회사리윤으로서 계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량적분할이 질적분할로 변하지 않는다. 분할이 진행되는것은 우연히 소유자가 약간의 법인들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이 생기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아직도 리자형성의 현실적출발점에 좀더 머물지 않으면 안된다. 즉 화폐자본가와 생산자본가가 법률상에서 서로 다른 인격으로서뿐만아니라 재생산과정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노는 인격으로서, 또는 그 수중에서 동일한 자본이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이중의 운동을 수행하는 인격으로서 현실적으로 대립하고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방은 자본을 대부할따름이며 다른 일방은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

차용한 자본으로 경영하는 생산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총리윤은 두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즉 그가 대부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리자와, 리자를 넘는 초과분—리윤중에서 그 자신의 몫을 이루는—으로 나뉘여진다. 일반적리윤률이 주어져있으면 이 후자의 부분은 리자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리자률이 주어져있으면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또 총리윤 즉 리윤총액의 현실적가치량이 매개 구체적경우에 평균리윤으로부터 어떻게 배리하더라도 그중에서 기능자본가의 것으로 되는 부분은 리자에 의하여 규정된다. 왜냐하면 리자는(특수한 법적약정의 경우를 도외시하면) 일반적리자률에 의하여 확정되여있고 생산과정이 시작되기전에, 따라서 생산과정의 결과인 총리윤이 획득되기전에 미리 확정된 크기로서 전

제되여있기때문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의 본래의 독특한 생산물은 잉여가치이며 보다 상세히 규정한다면 리윤이다. 그러나 차용한 자본으로 경영하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이 생산물은 리윤이 아니라 리윤에서 리자를 감한것 즉 리자를 지불한후에 그의 수중에 남는 리윤부분이다. 따라서 이 리윤부분은 그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기능하는 한에서의 자본의 생산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기능자본으로서의 자본만을 대표하기때문이다. 자본이 기능하는 한에서 그는 자본의 인격화이고 또 자본은 그것이 리윤을 가져오도록 산업 또는 상업에 투하되는 한에서 그리고 그 사용자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업부문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한에서 기능한다. 따라서 그가 총리윤중에서 대부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리자와는 대립적으로 그의것으로 되는 나머지 리윤부분은 필연적으로 산업리윤 또는 상업리윤의 형태를 취한다. 또는 이 량자를 포괄하는 독일어표현으로써 표시한다면 Unternehmergewinn[기업자리득]의 모습을 취한다. 만일 총리윤이 평균리윤과 같다면 이 기업자리득의 크기는 오직 리자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된다. 만일 총리윤이 평균리윤으로부터 배리한다면 총리윤과 평균리윤간의 차액(쌍방에서 리자를 공제한후의)은 일시적인 배리—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리윤률의 일반적리윤률로부터의 배리이든 개개의 자본가가 일정한 분야에서 얻는 리윤의 이 특수분야의 평균리윤으로부터의 배리이든간에—를 일으키는 일체 시장시세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그런데 이미 본바와 같이 리윤률은 생산과정 자체내에서는 잉여가치에 의존할뿐만아니라 기타의 많은 사정들에도 의존한다. 즉 생산수단의 구입가격, 평균보다도 더 생산적인 방법, 불변자본의 절약

등등에 의존한다. 그리고 생산가격을 도외시하면 자본가가 구입 또는 판매를 생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하는가 낮은 가격으로 하는가, 즉 류통과정에서 총잉여가치의 보다 큰 부분을 취득하는가 보다 작은 부분을 취득하는가 또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는가 하는것은 그때그때의 시장시세에 의존하는 것이며 또 매개 거래에서는 자본가의 교활성과 경영수완에 의존한다. 그러나 여하간 총리윤의 량적분할은 여기서는 질적분할로 전화한다. 그리고 이 량적분할 자체는 **무엇이** 분할되는가, **어떻게** 능동적자본가가 자본을 운용하는가 또 그 자본이 기능자본으로서 즉 능동적자본가로서의 그의 기능의 결과로서 그를 위하여 얼마만한 총리윤을 내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것은 더욱더 그렇게 된다. 기능자본가는 여기서는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자로서 가정되고있다. 자본의 소유는 그에 대하여서는 대부자에 의하여, 화폐자본가에 의하여 대표되고있다. 따라서 그가 화폐자본가에게 지불하는 리자는 총리윤중 자본소유 그 자체에 귀속하는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이와 대립하여 리윤중 능동적자본가의것으로 되는 부분은 이제는 기업자리득으로서 나타나며 이 리득은 오직 그가 재생산과정에서 이 자본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 또는 기능으로부터만, 따라서 특히는 그가 기업자로서 산업 또는 상업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부터만 발생한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리자는 자본소유의 단순한 열매로서 즉 자본이 《일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는 한에서는 자본의 재생산과정으로부터 추상된 자본 그 자체의 단순한 열매로서 나타난다. 한편 그에게 있어서 기업자리득은 전적으로 그가 자본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능의 열매로서, 자본의 운동과 과정진행의 열매로서 나타나며 이 과정진행은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화폐자

본가의 비활동, 생산과정에의 불참가에 대립하여 그 자신의 활동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총리윤의 두 부분간의 질적분리, 즉 리자는 자본 그 자체의 열매이며 생산과정을 무시한 자본소유의 열매이며 기업자리득은 과정진행중의, 생산과정에서 작용하는 자본의 열매이며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가 재생산과정에서 노는 능동적역할의 열매라는것—이 질적분할은 결코 일방으로는 화폐자본가, 타방으로는 산업자본가의 단순한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있다. 왜냐하면 리자는 화폐자본가에게로, 즉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이며 생산과정 이전에 또 생산과정밖에서 단순한 자본소유를 대표하는 대부자에게로 흘러가며 기업자리득은 그저 기능하고있을뿐인 자본가 즉 자본의 비소유자에게로 흘러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차용한 자본으로 경영하는 한에서의 산업자본가에 대하여서나 자기의 자본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화폐자본가에 대하여서나 동일한 자본에 대하여, 따라서 그 자본에 의하여 산생되는 리윤에 대하여 각이한 청구권을 가진 각이한 두 인물사이에서의 총리윤의 순전한 량적분할이 질적분할로 전화되는것이다. 이제는 리윤의 일부분은 **하나의** 규정에 있어서의 자본 자체에 귀속되는 열매로서 리자로서 나타나며 다른 부분은 상반되는 규정에 있어서의 자본의 특유한 열매로서, 따라서 기업자리득으로서 나타난다. 하나는 자본소유의 단순한 열매로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단순히 그 자본으로써 기능하는 열매로서, 과정진행중의 자본의 열매 또는 능동적자본가가 수행하는 기능의 열매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총리윤의 이 두 부분이 마치도 두개의 본질적으로 각이한 원천에서 나오고있는듯한 그 두 부분의 이

러한 경화와 호상 독립화는 이제는 총자본가계급에 대하여서와 총자본에 대하여 고정되지 않을수 없다. 뿐만아니라 이 경우에 능동적자본가에 의하여 사용되는 자본이 차용된것이든 아니든 또는 화폐자본가의것인 자본이 그 자신에 의하여 사용되든 안되든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매개 자본의 리윤, 따라서 또 자본들 호상간의 평균화에 기초하고있는 평균리윤도 두개의 질적으로 다르고 호상 독립적이고 호상 의존하지 않는 부분으로 즉 각각 특수한 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리자와 기업자리득으로 분렬 또는 분해된다. 자기의 자본으로 경영하는 자본가도 차용한 자본으로 경영하는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총리윤을 자본의 소유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본의 대부자로서의 자기에게 귀속하는 리자와 능동적인 기능자본가로서의 자기에게 귀속하는 기업자리득으로 분할한다. 그리하여 이런 질적인 분할에 대하여서는 자본가가 현실적으로 다른 어떤 자본가와 함께 분할하여야 하는가 아닌가는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자본의 사용자는 자기의 자본으로 경영한다 하더라도 두 인격으로 즉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와 자본의 사용자로 분렬된다. 그의 자본 자체는 그것이 낳는 리윤이라는 범주와의 관련에 있어서 자본**소유권** 즉 생산과정**밖에** 있는 그 자체로서 리자를 제공하는 자본과 생산과정**안에** 있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기업자리득을 제공하는 자본으로 분렬된다.

이와 같이 리자는 확정되고 그리하여 이제는 오직 산업가가 타인의 자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이따금 일어나는 생산에는 관계없는 총리윤의 분할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산업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의 리윤은 리자와 기업자리득으로 갈라진다. 그리하여 단순히 량적인

분할이 질적인 분할로 된다. 이 분할은 산업가가 그의 자본의 소유자인가 아닌가 하는 우연한 사정과는 관계없이 일어난다. 그것은 단지 각이한 인물들간에 분배되는 리윤부분일 뿐만아니라 리윤의 각이한 두 범주이며 이 두개의 범주는 자본에 대하여 각이한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자본의 각이한 규정성에 관계되고있다.[189]

이리하여 리자와 기업자리득으로의 총리윤의 이 분할이 일단 질적분할로 되자 왜 그것이 총자본에 있어서나 전체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나 질적분할이라는 이러한 성격을 얻는가 하는 리유는 이제는 극히 간단히 알수 있다.

첫째로, 이러한것은 이미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경험적인 사정에서도 나온다. 즉 산업자본가들의 대다수는 비률은 각이하더라도 자기자본과 차용자본을 겸용하여 경영하며 또 자기자본과 차용자본간의 비률은 시기가 다름에 따라 변동한다는 사정이다.

둘째로, 총리윤의 일부분이 리자형태로 전화하는것이 총리윤의 다른 부분을 기업자리득으로 전화시킨다. 이 기업자리득은 사실상 리자가 특수한 범주로서 존재하게 되자 총리윤중 이 리자를 넘는 초과분이 취하는 대립적형태에 불과하다. 총리윤이 어떻게 리자와 기업자리득으로 분화되는가 하는 연구 전체는 간단히, 총리윤의 일부분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리자로서 경화되고 독립하는가 하는 연구로 귀착된다. 그런데 력사적으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그것에 상응하는, 자본과 리윤의 관념들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리자부자본은 완성된 전래의 형태로 존재하며 따라서 리자도 자본이 낳은 잉여가치의 완성된 하급형태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통속적인 관념에서는 화폐자본, 리자부자본이 지금도 그냥 자

본 그 자체의 보다 나은 의미에서의 자본으로 간주되고있다.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매씨의 시대까지 우세였던 견해, 즉 리자로 지불되는것은 화폐로서의 화폐라는 견해가 있다. 대부된 자본은 현실적으로 자본으로서 사용되든 안되든간에—소비를 위하여 차용되더라도—리자를 낳는다는 사정은 이 자본형태의 독립성에 관한 관념을 확고히 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초기에 리자는 리윤에 대하여, 리자부자본은 산업자본에 대하여 독립적인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의 가장 좋은 증거는, 리자는 총리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18세기중엽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였다는것(매씨에 의하여 또 그의 후에 흄에 의하여[190])이며 그리고 대체로 그러한 발견이 필요하였다는것이다.

셋째로, 산업자본가가 자기자본으로 경영하는가 차용자본으로 경영하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자본가에게 대하여 화폐자본가계급이 특별한 종류의 자본가로서 대립하며 화폐자본이 독립적종류의 자본으로서 대립하며 리자가 이 특별한 자본에 상응하는, 독립적잉여가치형태로서 대립한다는 사정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질적으로 보면 리자는 자본의 단순한 소유가 제공하는 잉여가치이며 자본의 소유자는 재생산과정밖에 서있지만 자본 자체가 제공하는것이며 따라서 자본이 그 과정으로부터 분리되여있으면서 제공하는것이다.

량적으로 보면 리윤중 리자를 형성하는 부분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그 자체에 관계되는것으로서가 아니라 화폐자본에 관계되는것으로서 나타나며 잉여가치의 이 부분의 률 즉 리자률은 또 이러한 관계를 확립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리자률은—이것이 일반적리윤률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독립

적으로 규정되기때문이며 둘째로, 리자률은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포착할수 없는 리윤률과는 반대로 모든 변동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고 균일하며 명백한, 항상 주어진 비률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만일 모든 자본이 산업자본가의 수중에 있다면 리자와 리자률은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총리윤의 량적분할이 취하는 독립적형태가 질적분할을 낳는다. 산업자본가가 자기를 화폐자본가와 비교하여본다면 그를 후자로부터 구별하는것은 단지 기업자리득뿐이다. 즉 총리윤중 리자률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주어치는 크기로서 나타나는 평균리자를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기업자리득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자기를 차용자본으로써가 아니라 자기자본으로써 경영하는 산업자본가와 비교하여본다면 후자는 단지 화폐자본가로서 그와 구별될뿐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리자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기때문이다. 두 경우에 다 산업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총리윤중 리자와 구별되는 부분은 기업자리득으로서 나타나며 리자 그 자체는 자본 그 자체가 가져오는, 따라서 또 자본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가져오게 될 잉여가치로서 나타난다.

개개의 자본가에 있어서는 이 점은 실지로 옳다. 그의 자본이 출발점에서 이미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고있든 또는 이제부터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여야 하는것이든간에 그가 그것을 리자부자본으로서 대부하려 하는가 아니면 생산자본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로 그것을 증식시키려 하는가 하는것은 그의 마음대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즉 일부 속류경제학자들이 하고있는것처럼 그것을 사회적자본 전체에 적용한다면 게다가 그것을 리윤의 근거로 든다면 그것은 물론 대단히 틀린것이다. 총자본은 화폐로서 존

재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것이므로 생산수단을 구매하여 가치를 증식시키는 사람들이 없이 총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는것은 물론 황당하다. 그보다도 더 황당한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자본은 생산적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아도 즉 잉여가치를(리자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창조하지 않아도 리자를 낳을것이라는것,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자본주의적생산이 없어도 진행될수 있다는것이다. 만일 자본가들중 부당하게 큰 부분이 자기들의 자본을 화폐자본으로 전화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화폐자본의 막대한 가치감소와 리자률의 심한 저락일것이다. 많은 자본가들은 곧 리자로써 생활해나갈수 없게 될것이며 따라서 산업자본가로 재전화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바와 같이 개개의 자본가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경영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평균리윤중 평균리자와 동등한 부분을, 생산과정을 무시하고서 자기의 자본 자체의 과실로서 간주하며 그리고 리자로서 독립된 이 부분에 대립하여 총리윤중 리자를 넘는 초과분을 단순히 기업자리득으로서 간주한다.

넷째로, {원고에는 공백}

이상에서 명백하게 된바와 같이 리윤중 기능자본가가 차입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분은 리윤중 차입자본이든 아니든간에 모든 자본이 자본으로서 리자라는 명칭하에 가져오는 부분의 독립적형태로 전화된다. 이 부분이 얼마마한 크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평균리자률의 높이에 의존한다. 이 부분의 기원은 오직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나타날뿐이다. 그것은 즉 기능자본가는 그가 자기자본의 소유

자인 한 리자률의 결정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하지 않는—적어도 능동적으로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윤에 대하여 각이한 청구권을 가지고있는 두 사람사이에서의 리윤의 순전히 량적인 분할이 질적인 분할로 전화되였는데 이 분할은 자본과 리윤자체의 성질에서 발생하는것처럼 보이는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본바와 같이 리윤의 일부분이 일반적으로 리자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였을 때 평균리윤과 리자와의 차액 즉 리윤중 리자를 넘는 초과분은 리자에 대립하는 형태로, 기업자리득의 형태로 전화되기때문이다. 이 두 형태 즉 리자와 기업자리득은 단지 그것들의 대립속에 존재할뿐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량자가 다 잉여가치와 관련되여있는것이 아니라 각이한 범주, 항목 또는 명칭으로 고정된 잉여가치의 부분들에 불과하며 그것들이 서로 관련되여있는것이다. 리윤의 한 부분이 리자로 전화되는 바로 그때문에 다른 부분은 기업자리득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리윤이라고 하는것은 언제나 평균리윤을 두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배리는 개별적리윤의 배리이든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리윤의 배리이든—따라서 경쟁전이나 기타의 사정들에 따라 평균리윤 또는 잉여가치의 분배가 여러가지로 변동하는것—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는 전혀 아무래도 상관이 없기때문이다. 이 점은 일반적으로 당면한 연구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리자는 램지가 말하는 순리윤[191]이며 이것은 재생산과정밖에 있는 단순한 대부자에게이든, 자기의 자본을 스스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에게이든간에 자본소유 그 자체가 가져오는것이다. 그러나 후자에게 자본소유가 이 순리윤을 가져다주는것도 그가 기능자본가인 한에서가 아니라

그가 화폐자본가이며, 자기의 자본을 리자부자본으로서 기능자본가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대부하는 대부자인 한에서이다. 화폐의, 일반적으로 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상시적인 결과인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존재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상시적인 전제이다. 화폐는 생산수단으로 전화되는 그 능력에 의하여 부단히 부지불로동을 지배하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과정과 류통과정을 화폐의 소유자를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전화시킨다. 따라서 리자는 다음과 같은것 즉 가치일반—일반적사회적형태로 있는 대상화된 로동—이 현실적생산과정에서는 생산수단의 모습을 취하는 가치가 독립적인 힘으로서 산 로동력에 대립하고 부지불로동을 취득하는 수단이라는것, 그리고 가치가 이러한 힘으로서 나타나는것은 가치가 타인의 소유로서 로동자에 대립하기때문이라는것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리자의 형태에 있어서는 임금로동에 대한 이 대립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리자부자본 그 자체는 임금로동이 아니라 기능자본을 자기의 대립물로 삼기때문이며 대부자본가 그 자체는 직접 재생산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가에 대립하는것이지 바로 이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생산수단을 수탈당하고있는 임금로동자에 대립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리자부자본은 **기능으로서의** 자본에 대립하는 **소유로서의** 자본이다. 그러나 자본은 그것이 기능하지 않는 한 로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며 로동에 대립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자리득은 임금로동에 대하여 대립을 이루는것이 아니며 다만 리자에 대하여서만 대립을 이룬다.

첫째로, 평균리윤을 주어진것으로 전제하면 기업자리득의 률은 로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리자률에 의하여 규정된

다. 기업자리득률의 높이는 리자률에 반비례한다.(72)

둘째로, 기능자본가는 기업자리득에 대한 자기의 청구권을, 따라서 기업자리득 자체를 자기의 자본소유에서 끌어내는것이 아니라 자본이 그저 활동없는 소유로서만 존재하는 경우의 규정성에 대립하는 자본의 기능에서 끌어내는것이다. 이 대립은 그가 차용한 자본으로 경영하고 따라서 리자와 기업자리득이 각이한 두 사람의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직접 존재하는 대립으로서 나타난다. 기업자리득은 재생산과정에서의 자본의 기능에서 발생한다. 즉 기능자본가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이 기능을 매개하는 경영,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러나 기능자본의 대표자라는것은 리자부자본을 대표하는것과 같은 놀고먹는 한직이 아니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자본가는 생산과정과 류통과정을 지휘한다. 생산적로동에 대한 착취는 자본가가 자기로서 하든 자기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시키든간에 노력이 든다. 따라서 그의 기업자리득은 그에게는 리자와 대립하여 자본소유와는 관계없는것으로서, 오히려 비소유자로서의—**로동자**로서의—그의 기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념이 생긴다. 즉 그의 기업자리득은 결코 임금로동에 대하여 어떤 대립을 이루는것이 아니라, 타인의 부지불로동에 불과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로임**이며 감독임금, wages of superintendence of labour이며 보통임금로동자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다. 왜냐하면 1) 그의 로동은 보다 복잡한 로

---

(72) 《기업자리득은 자본의 순리윤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고 후자가 전자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아니다》(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836년 에딘버러판 214페지. 순리윤은 램지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리자와 같은것이다).

동이기때문이며 2) 그는 자기 자신에게 로임을 지불하기때문이다. 자본가로서의 그의 기능은 잉여가치 즉 부지불로동을, 그것도 가장 경제적인 제 조건하에서 생산하는데 있다는 이 사정은 완전히 망각된다. 그것이 망각되는것은 자본가는 자본가로서의 기능을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단순한 자본소유자인 경우에도 리자는 자본가의것으로 되는데 반대로 기업자리득은 기능자본가가 그것을 가지고 기능하는 자본의 비소유자인 경우에도 그의것으로 된다는 이런 대립때문이다. 리윤 즉 잉여가치가 분할되는 두 부분의 대립적형태로 인해서 이 량자는 잉여가치의 부분들에 불과하다는것이 망각되고 또 잉여가치의 분할은 잉여가치의 성질, 그 기원 및 그 존재조건들을 조금도 변경시킬수 없다는것이 망각된다.

재생산과정에서는 기능자본가는 임금로동자에 대립하여 타인의 소유로서의 자본을 대표하며 화폐자본가는 기능자본가에 의하여 대표되는자로서 로동에 대한 착취에 참가한다. 능동적자본가는 다만 로동자에 대립한 생산수단의 대표자로서만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로동자를 자기를 위하여 로동하게 하며 또는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할수 있다는 사정은 재생산과정에서의 자본의 기능이 재생산과정밖에서의 단순한 자본소유에 대하여 이루는 대립으로 인해서 망각된다.

사실상 리윤 즉 잉여가치의 두 부분이 리자와 기업자리득으로서 취하는 형태에는 로동에 대한 어떠한 관계도 표현되고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다만 로동과 리윤사이에 또는 오히려 앞에서 서술한 두 부분의 합계이며 전체이며 통일인 잉여가치와의 사이에만 존재하는것이기때문이다. 리윤이 분할되는 비률, 그리고 이 분할이 실시되는 근거인 청구

권은 리윤을 기성의것으로서 전제로 하며 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만약 자본가가 자기가 기능하기 위한 자본의 소유자이라면 그는 리윤 또는 잉여가치를 전부 차지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 일부분을 법률상의 소유자로서의 제삼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은 로동자에 대하여는 완전히 관계없는 일이다. 이리하여 두 종류의 자본가사이에서의 리윤의 분할리유는 분할되여야 할 리윤의 존재리유로, 나중에 어떻게 분할되는가와는 관계없이 자본으로서의 자본이 재생산과정으로부터 끌어내는 잉여가치의 존재리유로 슬그머니 전화되여버린다. 리자는 기업자리득에 대립하고 기업자리득은 리자에 대립하며 량자는 서로 대립하는것이지만 로동에는 대립하지 않는다는것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온다. 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 즉 리윤은, 더 나가서는 잉여가치는 무엇에 기초하는가? 그것의 두 부분의 대립적형태에 기초한다! 그런데 리윤은 이 분할이 실시되기전에 그리고 이 분할이 문제로 되기전에 생산되는것이다.

리자부자본은 대부된 화폐가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화되고 리자를 일부분으로 하는 초과분이 생산되는 한에서만 리자부자본으로 실증된다. 그러나 이것은 리자부자본에는 리자를 낳는다는것이 생산과정과는 관계없이 속성으로서 고착되여있다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로동력도 그것이 로동과정에서 작용하고 실현되는 때에만 그 가치창조력을 실증한다. 그러나 이것은 로동력이 그 자체로서, 잠세적으로, 능력으로서 가치창조활동이며 그러한것으로서 과정으로부터 비로소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정의 전제로 된다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으로서 로동력은 구매된

다. 로동력은 생산적으로 로동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라도 그것을 구매할수 있다. 례컨대 순전히 개인적목적인 봉사 등등을 위하여 구매할수도 있다. 자본도 마찬가지이다. 차용자가 그것을 자본으로서 사용하는가 안하는가 즉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그것에 고유한 속성을 현실적으로 작용시키는가 안시키는가 하는것은 차용자의 마음대로이다. 그가 대가를 지불하는것은 두 경우에 다 그 자체로서, 가능성으로 보아 자본이라는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에 대하여서이다.[192]

그러면 기업자리득을 더 상세히 보기로 하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있어서 자본의 독특한 사회적규정성의 계`—타인의 로동에 대한 지휘권이라는 속성을 가지는 자본소유—가 고정되고 따라서 리자가 잉여가치중 자본이 이 관계에서 낳는 부분으로서 나타나는데 의하여 잉여가치의 다른 부분—기업자리득—은 필연적으로 자본으로서의 자본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규정성으로부터 분리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것으로서 나타나며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규정성은 자본리자라는 표현에서 이미 그 특수한 존재방식을 얻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자본으로부터 분리되면 생산과정은 로동과정일반이다. 그러므로 산업자본가도 자본소유자와 구별된자로서는 기능하는 자본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자본과 분리되여도 기능자인 사람으로서, 로동과정일반의 단순한 담당자로서, 로동자로서 그것도 임금로동자로서 나타나는것이다.[193]

리자가 그 자체로서 나타내고있는것은 바로 로동조건들의 자본으로서의 정재 즉 로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대립하는것으로서의, 또 로동에 대립하여 로동을 지배하는 개인적

권력으로 전화한것으로서의 로동조건의 정재이다. 리자는 타인의 로동의 생산물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의 단순한 자본소유를 나타낸다. 그러나 리자는 이러한 자본의 성격을 생산과정밖에서 자본에 속하는 어떤것, 그리고 이 생산과정 자체의 특수한 자본주의적규정성의 결과가 아닌 어떤것으로서 나타낸다. 리자는 이 어떤것을 로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립에서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로동과는 관계없이 한 자본가의 다른 자본가에 대한 단순한 관계로서 나타내는것이다. 즉 로동 자체에 대한 자본의 관계에 있어서는 외적인, 아무래도 좋은 규정으로서 나타낸다. 이리하여 리자에 있어서는 즉 자본의 대립적성격이 하나의 독립적표현을 자기에게 부여하는 리윤의 특수한 모습에 있어서는 이 성격은 자기에게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한다. 즉 이 대립이 이 표현에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전적으로 사상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것이다. 리자는 두 자본가사이의 관계인것이며 자본가와 로동자사이의 관계인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리자라는 형태는 리윤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기업자리득이라는, 더 나가서는 감독임금이라는 질적 형태를 부여한다. 자본가가 자본가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기능, 바로 로동자와 구별되고 로동자와 대립하는것으로서의 자본가에게 속하는 특수한 기능이 단순한 로동기능으로서 표현된다. 그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것은 그가 **자본가로서** 로동하기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본가라는 속성으로부터 떠나서 보더라도 **그도 역시** 로동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이 부분은 벌써 잉여가치가 아니라 그 반대물이며 수행된 로동의 등가물이다. 자본의 소외된 성격, 로동에 대한 자본의 대립이 현실적착취과정의 저편으로 즉 리자

부자본으로 옮겨지므로 이 착취과정 자체도 단순한 로동과정으로서 나타나며 거기에서는 기능자본가도 로동자가 하는것과는 다른 로동을 할뿐이다. 그리하여 착취하는 로동과 착취당하는 로동은 량자가 다 로동으로서는 동일하다는것으로 된다. 착취하는 로동도 착취당하는 로동과 마찬가지로 로동이다. 리자는 자본의 사회적형태로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립적이며 무차별적형태로 표현된다. 기업자리득은 자본의 경제적기능으로 되지만 이 기능의 일정한 자본주의적성격은 사상된다.

여기서도 자본가의 의식속에서는 이 제3부의 제2편[①]에서 말한 리윤의 평균리윤으로의 평균화에 있어서의 이러저러한 보상리유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것이 진행된다. 잉여가치의 분배에 규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보상리유가 자본가적사고방식에서 외곡되여 리윤 그 자체의 발생리유로 되며 그의 (주관적인) 정당화의 근거로 된다.

로동의 감독임금으로서의 기업자리득의 관념은 리자에 대한 기업자리득의 대립에서 발생하는데 이 관념은 그 이상의 근거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발견한다. 즉 사실상 리윤의 일부분은 로임으로서 분리될수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분리되고있다는 점, 또는 오히려 반대로 로임의 일부분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리윤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애담 스미스가 정당하게 발견한바와 같이 그 규모 등이 관리자에게 특별한 로임을 주기에 충분한 분업을 허용하는 사업부분의 관리자의 봉급에서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리윤(리

① 본권 제12장 제3절을 보라.—편집자

자와 기업자리득의 합계로서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여, 다른 한편으로는 리윤에서 리자를 공제한후에 소위 기업자리득으로서 남는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여 나타난다.[194]

감독과 지휘의 로동은 직접적생산과정이 사회적으로 결합된 과정의 모습을 가지며 독립적생산자들의 고립된 로동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73) 그러나 그 로동은 이중성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다수의 개인이 협력하는 모든 로동에서는 과정의 련관과 통일은 필연적으로 관현악단의 지휘자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지휘의사에서 나타나며 부분로동이 아니라 작업장의 전체 로동에 속하는 기능들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어떠한 결합된 생산방식에 있어서나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생산적로동이다.

다른 한편으로는—상업적부문을 전혀 도외시하면—이 감독로동은 직접적생산자로서의 로동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와의 대립에 기초하고있는 모든 생산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대립이 크면 클수록 이 감독로동이 노는 역할은 그만큼 더 크다. 그러므로 그것은 노예제도하에서 그 최고절정에 달한다.(74)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있어서도 불가결한것이다. 왜냐하면 이 생산방식에서는 생산과정은 동시에 자본가에 의한 로동력의 소비과정이기때문이다. 그것은 마치도 전제국가들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감독로동과 전면적간섭이 두 측면을, 즉 모든 사회의 성질에서 생기는 공동

---

(73) 《감독은 여기서는 〔농민적토지소유자의 경우〕 전혀 없어도 된다》(J. E. 케언즈 《노예의 힘》, 1862년 런던판 48~49페지).

(74) 《로동의 성질이 로동자를 〔즉 노예를〕 넓은 장소에 분산시킬것을 요구한다면 그 경우에는 감독자수는, 따라서 이 감독에 필요한 로동의 비용도 그에 비례하여 증대될것이다》(케언즈, 《노예의 힘》, 1862년 런던판 44페지).

사무의 수행과 정부와 인민대중과의 대립에서 생기는 특수한 기능들을 포괄하는것과 같은것이다.

노예제도를 직접 관찰한 고대저술가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러하였던것처럼 리론상으로 감독로동의 두 측면이 불가분으로 결합되여있는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절대적생산방식으로 간주하는 현대의 경제학자들에 있어서와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곧 하나의 실례로써 보여주겠지만 현대적노예제도의 변호론자들은 감독로동을 노예제도변호의 근거로서 리용할줄 알고있는것은 다른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임금로동제도의 근거로서 리용할줄 알고있는것과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카토시대의 뷜리쿠스.[195]

《농장노예(familia rustica)의 머리우에는 농장관리인(villicus von villa)이 서있어서 수지와 매매를 진행하고 주인의 지시를 받으며 주인이 없을 때에는 명령도 하고 처벌도 한다…관리인은 물론 다른 노예들보다는 자유로웠다. 마곤의 농서[196]는 관리인의 결혼, 산아, 재산소유를 허락하라고 권고하였으며 카토는 관리인을 녀관리인과 결혼시키라고 권고하였다. 관리인만은 행실이 좋은 경우에는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을수 있는 희망도 가지고있었을것이다. 기타의 점들에서는 전원이 하나의 공동세대를 이루고있었다…어느 노예나 그리고 관리인 자신도 자기의 필수품을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기간마다 정하여진 률로 지급받았으며 그것으로써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그 량은 로동에 기준하였기때문에 례컨대 노예들보다도 쉬운 로동을 하는 관리인은 노예들보다도 적은 량을 받았다》(몸젠 《로마사》, 1856년 제2판 제1권 809~810페지).

아리스토텔레스.

《왜냐하면 주인 (자본가) 은 노예의 획득 (로동을 구매하는 권력

을 부여하는 자본소유) 에 있어서가 아니라 노예의 리용 (생산과정에서의 로동자의, 오늘날은 임금로동자의 사용) 에 있어서 주인임을 실증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중대한것도 고상한것도 아니다. 즉 노예가 일할줄 알아야 할것을 주인은 명령할줄 알아야 한다. 주인이 스스로 애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 명예스러운 일**을 담당하고 주인자신은 국사에 종사하든가 철학을 연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베케르 편집, 제1권 제7장).

지배는 정치적령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령역에서도 권력자에게 지배하는 기능을 부과한다는것, 따라서 경제적령역에서는 그들은 로동력을 소비할줄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아이스토텔레스는 솔직한 말로 서술하고 거기에 첨부하여 이 감독로동은 중대한것도 아니므로 주인은 충분한 자력이 생기면 이 수고의 《명예》를 관리인에게 맡긴다고 말하고 있다.

지휘나 감독의 로동이 모든 결합된 사회적로동의 성질에서 나오는 특수한 기능이 아니고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단순한 로동력의 소유자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한에서는—노예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로동력이 로동자 자신과 함께 구매되든 로동자 자신이 자기의 로동력을 판매하고 따라서 생산과정이 동시에 자본에 의한 그의 로동의 소비과정으로서 나타나든간에—직접적생산자의 예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기능은 종종 이 관계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되고있으며 착취 즉 타인의 부지불로동의 취득도 그만큼 종종 자본의 소유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로임으로서 설명되고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는 1859년 12월 19일에 뉴욕의 한 집회에서 미국에서의 노예제의 옹호자인 변호사 오코너에 의하여 《남부를 위한 정의》라는 기치밑에서 한 설명보다 더 훌륭한 설명은 없

다. 그는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서 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자체가 흑인을 이 예속상태에 운명지운것이다. 흑인에게는 체력이 있으며 로동할 힘이 있다. 그러나 흑인에게 이 체력을 준 자연은 그에게 통치의 지혜도 로동의 의지도 주지 않았다(박수). 이 두가지것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로동할 의지를 주지 않은 그 자연 자신이 이 의지를 강요할 주인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적합한 풍토에서 그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를 통치하는 주인을 위하여서도 그를 유용한 노복으로 되게 하는 주인을 주었다. 나는 단언한다. 자연이 흑인에게 정해준 그 처지에 흑인을 놓는다는것은, 그에게 그를 통치하는 주인을 준다는것은 결코 부당한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흑인에게 로동을 강요하고 또 그를 통치하고 그를 그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유용한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인이 들이는 로동과 재능에 대하여 그의 주인에게 정당한 보수를 제공하도록 그에게 강요하는것은 결코 흑인의 권리를 박탈하는것은 아닐것이다.》[197]

그러면 임금로동자도 노예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로동을 강요하고 자기를 통치하는 주인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지배관계와 예속관계가 전제로 되면 임금로동자가 그 자신의 로임을 생산하는외에 감독임금, 즉 자기를 지배하고 감독하는 로동에 대한 보수를 생산할것을 강요당하고 《또 그를 통치하고 그들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유용한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인이 들이는 로동과 재능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주인에게 제공하도록》 강요당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감독과 지휘의 로동이 대립적성격에서, 로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에서 발생하는 한, 따라서 그것이 계급대립에 기초한 모든 생산방식과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공통적인 한에서는 이 로동은 자본주의적체계에 있어서도 모든 결합된 사회

적로동이 개개인에게 특수한 로동으로서 부과하는 생산적기능들과 직접적으로 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여있다. 에피트로포스(Epitropos)[고대희랍의 감독]의 로임이나 봉건시대의 프랑스에서 레지쇠르①(régisseur)[관리인]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의 로임은 이러한 관리인(manager)에게 지불을 할수 있을만큼 기업이 큰 규모로 운영되면 리윤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여 숙련로동에 대한 로임의 형태를 취한다. 비록 우리의 산업자본가들은 《국사에 종사하든가 철학을 연구하기》에는 아직도 멀었지만.

산업자본가가 아니라 산업관리인이야말로 《우리 산업제도의 넋》이라고 이미 유어씨가 말한바 있다.(75) 기업의 상업적부분에 관하여서는 필요한 모든것은 이미 전편에서 말하였다.②

자본주의적생산 자체는 지휘의 로동을 자본소유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거리를 헤매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 지휘로동이 자본가에 의하여 진행될 필요는 없게 되였다. 악대지휘자는 악단의 악기들의 소유자일 필요는 전혀 없으며 기타의 악사들의 《임금》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지휘자로서의 그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다. 자본가 자신이 높은 정도로 발전하면 대토지소유자를 쓸모없는것으로 생각하듯이 생산의 기능자로서의 자본가가 쓸모없는것으로 되였다는것은 협동조합공장이 증명하여준다. 자본가의 로동이 단순

(75) A. 유어 《공장철학》, 프랑스어역, 1836년 제1권 67~68페지. 여기에서 공장주들의 이 판다로스는 동시에 공장주들에게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기구에 대하여 조금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고 증언하고있다.[198]

① 《자본론》 제1권 제24장 《소위 시초축적》 중의 각주(229)를 보라.—편집자
② 본권 중문판 322~324페지를 보라.—편집자

히 자본주의적인 생산과정으로서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로동이 자본의 소멸과 함께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이 로동이 타인의 로동을 착취하는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 한에서는, 따라서 그것이 사회적로동으로서의 로동의 형태에서 나오며 하나의 공동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인의 결합과 협업에서 나오는 한에서는 이 로동은 자본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그것은 마치도 이 형태 자체가 자본주의적외피를 벗어버리면 자본과는 관계가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로동이 자본주의적로동으로서, 자본가의 기능으로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류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태내에서 발전한 형태들을 그것들의 대립적인 자본주의적성격으로부터 분리하고 해방시켜 생각하지 못한다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199] 화폐자본가에 대하여서는 산업자본가는 로동자이지만 그러나 자본가로서의, 즉 타인의 로동의 착취자로서의 로동자이다. 그가 이 로동에 대하여 요구하고 얻는 임금은 그가 취득한 타인로동의 량과 꼭 같으며 또 그것은 그가 착취에 필요한 수고를 스스로 짊어지는 한에서는 이 로동의 착취도에 직접 의존하는것이며 이 착취에 그가 들이는 노력—이것에 대해서 그는 적당한 지불을 하고 관리인에게 전가할수 있다—의 정도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공황후에는 언제나 영국의 공장지구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은 이전의 공장주들이 이전에도 자기의것이였던 공장을 이제는 흔히 자기의 채권자이기도 한 새로운 소유자의 관리인으로서 적은 임금을 받고 감독하는것이다.(76)

---

(76) 내가 알고있는 한 경우에는 1868년의 공황후에 어떤 파산된 공장주가 그 자신의 이전의 로동자들에게 고용된 임금로동자로 되였다. 즉 그 공장은 파산된후 한 로동자협동조합이 인계하였고 이전의 소유자는 지배인으로 고용되였다.—F. 엥겔스

관리임금은 상업관리인에 있어서나 산업관리인에 있어서나 기업자리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여 나타나는데 이것은 로동자협동공장에 있어서나 자본주의적주식기업에 있어서나 다 그러하다. 기업자리득으로부터의 관리임금의 분리는 다른 경우에는 우연적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상시적인 현상이다. 협동조합공장에서는 감독로동의 대립적성격은 없어진다. 왜냐하면 관리인은 로동자들로부터 급여를 받는것이며 로동자들과 대립하여 자본을 대표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기업—신용제도와 함께 발전하는—은 기능으로서의 이 관리로동을 자기자본이든 차입자본이든간에 자본의 소유로부터 점점 더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산계급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판기능이나 행정기능이 토지소유—봉건시대에 이러한 기능을 자기의 속성으로 하고있었다—로부터 분리되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한 자본소유자인 화폐자본가에게 기능자본가가 대립하고 또 신용의 발전에 따라 이 화폐자본 자체가 사회적성격을 가지게 되고 은행에 집중되여 이제는 그의 직접적소유자로부터가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부되는데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차입에 의하여서이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서이든 어떠한 명의에 의하여서도 자본의 소유자인것이 아닌 단순한 관리인이 기능자본가 그 자체에게 속하는 모든 실질적기능을 수행하는데 의하여 남는것은 기능자뿐이며 자본가는 불필요한 인물로서 생산과정에서 사라지고만다.

영국의 협동조합공장들의 공개된 수지계산서(77)로 본다면 이러한 공장들은 때로는 개인공장주들보다 훨씬 높은 리

(77) 본문은 1865년에 쓴것이므로 여기에서 인용한 수지계산서는 기껏해야 1864년까지의것이다.—F. 엥겔스

자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윤—다른 로동자들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투하된 가변자본의 일부분을 이루는 관리인의 임금을 공제한후의 리윤—은 평균리윤보다도 큰것이다. 리윤이 보다 높은 원인은 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불변자본의 사용상의 절약이 보다 큰것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것은 이 경우에는 평균리윤(=리자+기업자리득)은 사실상 그리고 뚜렷하게 관리임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크기로서 표시되고있다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리윤이 평균리윤보다도 컸으므로 기업자리득도 기타의 경우보다도 컸던것이다.

동일한 사실은 약간의 자본주의적주식기업, 례컨대 주식은행에서도 볼수 있다. 런던앤드웨스트민스터은행은 1863년에 30%의 년배당을 지불하였고 런던련합은행과 기타의 은행은 15%를 지불하였다. 여기서는 총리윤중에서 관리인의 봉급외에 예금에 지불되는 리자가 공제된다. 높은 리윤은 여기서는 예금에 대한 불입자본의 비률이 작은것으로써 설명된다. 례컨대 런던앤드웨스트민스터은행은 1863년에 불입자본은 100만파운드, 예금은 1,454만 275파운드였다. 런던련합은행은 1863년에 불입자본은 60만파운드, 예금은 1,238만 4,173파운드였다.

기업자리득과 감독임금 또는 관리임금과의 혼동은 시초에는 리윤중 리자를 넘는 초과분이 리자에 대립하여 취하는 특수한 형태에서 발생하였다. 이 혼동은 리윤을 잉여가치로서 즉 부지불로동으로서 설명하지 않고 자본가 자신이 수행한 로동의 대가로 받는 로임으로서 설명하려는 변호론적의도로 말미암아 더욱 발전되였다. 이것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자측으로부터 리윤을 리론적으로 그것이 리윤이라고 불리운것

으로, 즉 단순한 감독임금으로 실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였다.[200] 그리고 이 요구는 리론적분식에 대하여 더욱더 불유쾌한것으로서 대립하게 되였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다수의 산업적관리인이나 상업적관리인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급이 형성됨에 따라 이 감독임금도 다른 모든 로임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시장가격을 발견하게 되였기때문이며(78),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훈련을 받는 로동력의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일반적인 발전에 따라 모든 숙련로동임금과 마찬가지로 이 감독임금도 점점 더 저락하게 되였기때문이다(79). 로동자측에서의 협동조합의 발전과 자산계급측에서의 주식기업의 발전에 따라 기업자리득과 관리임금과의 혼동을 위한 최후의 구실도 지탱할수 없게 되였으며 리윤은 실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리론적으로 부인할수 없는것으로서 즉 단순한 잉여가치, 아무런 등가도 지불되지 않는 가치, 실현된 부지불로동으로서 나타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기능자본가는 현실적으로 로동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의 착취의 과실은 그가 차입한 자본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에는 리자와 기업자리득으로 즉 리자와 리윤중 리자를 넘는 초과분으로 분할된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주식기업에 있어서 관리

---

(78) 《장주들도 그들의 장공들과 마찬가지로 로동자이다. 이 역할에 있어서는 장주들의 리해관계는 그들의 장공들의 리해관계와 꼭 같다. 그러나 그들은 또 자본가가 아니면 자본가의 대리인이며 이 점에서는 그들의 리해관계는 장공들의 리해관계와 바로 정반대이다.》(호지스킨 《자본의 요구에 대한 로동의 옹호》, 1825년 런던판 27페지). 《이 나라의 공업로동자들사이에서의 교육의 보급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거의 모든 장주들과 고용주들의 로동 및 기능의 가치를 나날이 감소시키고있다》(우와 같은 책, 30페지).

(79) 《인습적인 장애의 일반적완화와 교육을 받을 기회의 증대는 미숙련로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숙련로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가진다》(J. S. 밀 《정치경제학원리》, 1849년 런던 제2판 제1권 479페지).

임금에 대한 새로운 기만이 발전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관리인의 옆에도 우에도 몇명의 리사나 감사가 나타나는데 이 리사나 감사에게 있어서 관리와 감독이란 사실상 주주들을 략탈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단순한 구실로 되기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씨티 또는 런던 영업생리학. 취인소와 다방스케치》(1845년 런던판)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은행업자나 상인들이 8~9개의 각이한 회사들의 리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얼마나 벌고있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례를 보면 알수 있다. 티머시 에이브러햄 커티스씨가 파산하였을 때 파산재판소에 제출된 그의 개인대차대조표에는 리사직이라는 항목에 800~900파운드의 년수입이 기재되여있었다. 커티스씨는 잉글랜드은행과 동인도회사의 리사였으므로 어느 주식회사나 그를 리사로 맞아들일수 있는것을 행운으로 생각하였다》(81~82페지).

그러한 회사들의 리사가 매주 열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받는 보수는 적어도 1기니(21마르크)이다. 파산재판소의 심리를 통해 알수 있는것은 이 감독임금은 보통 이 명목상의 리사들이 실제수행하는 감독과 반비례한다는것이다.

제 24 장

리자부자본의 형태에 있어서의 자본관계의 표면화

리자부자본에 있어서 자본관계는 그의 가장 표면적이며 가장 물신적인 형태에 이른다. 여기서는 G—G′, 보다 많은 화폐를 낳는 화폐, 량극을 매개하는 과정이 없이 자기 자신을 증식하는 가치가 나타난다. 상인자본 G—W—G′에서는 적어도 자본운동의 일반적형태가 존재하고있다. 비록 이 운동은 류통분야에만 머물고 따라서 리윤은 단순한 양도리윤으로서 나타나는것이지만. 그러나 여하튼 리윤은 일종의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서 표시되는것이지 단순한 **물건**의 산물로서 표시되는것은 아니다. 상인자본의 형태는 하나의 과정을, 반대되는 두 단계의 통일을, 상품의 구매와 판매라는 두개의 반대되는 과정으로 나누어지는 운동을 나타낸다. 이것은 G—G′ 즉 리자부자본의 형태에서는 없어진다. 례컨대 1,000파운드가 자본가에 의하여 대부되고 리자률이 5%라고 한다면 1,000파운드라는 가치는 1년간에 자본으로서는 C+Cz′—여기서 C는 자본이고 z′는 리자률 즉 이 경우에는 5%=$\frac{5}{100}$=$\frac{1}{20}$이다—이고

$1,000+1,000\times\frac{1}{20}=1,050$파운드이다. 자본으로서의 1,000파운드의 가치는 1,050파운드이다. 즉 자본은 결코 단순한 량이 아니다. 그것은 량적**관계**이며 주어진 가치로서의 본전이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잉여가치를 생산한 본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이다. 그리고 이미 본바와 같이 모든 능동적자본가에 있어서는 그들이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기능하든 차입자본을 가지고 기능하든간에 어쨌든 자본은 이러한 것으로서, 직접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로서 나타난다.

G—G'. 여기서 보게 되는것은 자본의 최초의 출발점이며 공식 G—W—G'에서의 화폐가 량극 G—G'로 환원된것인데 이 G'는 G+⊿G이며 보다 많은 화폐를 창조하는 화폐이다. 이것은 자본의 최초의 일반적공식이 무의미한 개괄로 축소된것이다. 이것은 완성된 자본이다. 즉 생산과정과 류통과정의 통일이며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잉여가치를 낳는 자본이다. 리자부자본의 형태에서는 이러한것이 직접적으로, 생산과정과 류통과정의 매개없이 나타난다. 자본은 리자의, 즉 자본 자신의 증식분의 신비로운 자기창조적인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물건**(화폐, 상품, 가치)은 이제는 단순한 물건으로서 이미 자본이며 자본은 단순한 물건으로서 나타난다. 총재산과정의 결과가 하나의 물건에 저절로 속하는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화폐를 화폐로서 지출하느냐 또는 자본으로서 대부하느냐 하는것은 화폐의 소유자 즉 항상 교환될수 있는 형태로 있는 상품의 소유자의 생각에 달린다. 그러므로 리자부자본에 있어서는 이 자동적인 물신, 즉 자기 자신을 증식하는 가치, 화폐를 낳는 화폐가 순수하게 형성된것이며 그것은 이 형태에서는 이미 그 기원의 아무런 흔적도 볼수 없다. 사회

적관계가 하나의 물건인 화폐와 그 자신에 대한 관계로서 완성되고있다. 화폐로부터 자본으로의 현실적전화 대신에 여기서는 다만 그 전화의 내용없는 형태만을 보게 된다. 로동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화폐의 사용가치는 가치를 창조한다는, 그것도 화폐 자신에 포함되여있는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창조한다는 사용가치로 된다. 화폐 자체가 이미 잠세적으로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이고 그러한 가치로서 대부되며 이 대부가 이 독특한 상품의 판매형태이다. 배가 열리게 하는것이 배나무의 속성인것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창조하고 리자를 낳는것이 화폐의 속성으로 된다. 그리고 화폐대부자는 그러한 리자를 낳는 물건으로서 자기의 화폐를 판매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도 이미 본바와 같이 기능자본으로서가 아니라 자본 자체로서, 화폐자본으로서 리자를 낳는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것도 외곡된다. 리자는 리윤 즉 기능자본가가 로동자에게서 짜내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제는 꺼꾸로 리자가 자본의 고유한 열매로서, 본원적인것으로서 나타나며 리윤은 이제는 기업자리득의 형태로 전화되여 재생산과정에서 첨가되는 단순한 첨가물과 추가물로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자본의 물신적인 모습과 자본물신의 관념이 완성되여있다. 우리가 G—G′에서 보는것은 자본의 개념없는 형태, 생산관계의 최고도에 달한 전도와 물화 즉 리자부라는 모습, 자본 자신의 재생산과정의 전제로 되여있는 자본의 단순한 모습이다. 그것은 화폐 또는 상품이 재생산과는 독립하여 그 자신의 가치를 증식하는 능력이며 자본의 신비화의 가장 뚜렷한 형태이다.

자본을 가치 또는 가치창조의 독립적인 원천으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속류경제학에 있어서는 물론 이 형태는 바라던 것이다. 그것은 이 형태에서는 리윤의 원천은 이제는 인식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고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결과가—과정 그 자체로부터 분리되여—독립적인 존재를 얻고있기때문이다.

화폐자본에 있어서 비로소 자본은 상품으로 되며 이 상품의 자기 자신을 증식시킨다는 성질은 그때그때의 리자률로 결정되여있는 고정가격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리자부자본으로서의, 그것도 리자부화폐자본으로서의 그 직접적형태(여기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리자부자본의 기타 형태들은 이 형태로부터 파생되며 이 형태를 전제로 하는것들이다)에 있어서 자본은 그 순수한 물신형태인 G—G′를 주체로서, 판매될수 있는 물건으로서 얻는다. 그것은 **첫째로는** 자본이 부단히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결과이며 이 화폐형태에서는 자본의 모든 규정성은 없어지고 자본의 현실적요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화폐야말로 바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들의 차이가 소멸되여있고 따라서 또 이 상품들과 그 생산조건들로 구성되는 산업자본들의 차이가 소멸되여있는 형태인것이다. 화폐는 가치—그리고 여기서는 자본—가 독립적인 교환가치로서 존재하는 형태이다.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는 화폐형태는 곧 사라져버리는 형태이며 단순한 통과계기이다. 이와는 반대로 화폐시장에서는 자본은 항상 이 형태로 존재한다. **둘째로는** 자본에 의하여 산생되는 잉여가치도 여기서는 역시 화폐형태이며 자본 자체에 속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자라는것이 나무에 고유한 속성인것과 같이 화폐를 낳는것(*tóxos*[리식과 리자])이 화폐자본으로서의 이 형태에 있는

자본에 고유한 속성으로 나타난다.[201]

리자부자본의 경우에는 자본의 운동이 짧은것으로 수축된다. 매개 과정은 생략되여 자본 1,000은 그 자체가 1,000이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100으로 전화되는 하나의 물건으로서 고정되여있다. 그것은 마치도 포도주를 움속에 넣어두면 일정한 시간후에 그 사용가치도 좋아지는것과 같다. 자본은 이제는 물건이지만 그러나 물건으로서 그것은 자본이다. 화폐는 이제는 가슴속에 사랑이 싹텄다.[202] 화폐가 대부되기만 하면 또는 재생산과정에 투하되기만 하면(그 소유자로서의 기능자본가를 위하여 기업자리득외에 리자를 제공하는 한에서는) 그것이 잠을 자든 안자든, 집에 있든 려행중에 있든, 낮이든 밤이든 거기에는 리자가 붙는다. 그리하여 리자부화폐자본에는(그리고 모든 자본은 그 가치표현으로 보면 화폐자본이며 바꾸어말하면 이제는 화폐자본의 표현으로서 간주된다) 화폐축장자의 경건한 념원이 실현되여있다.

이렇게 무엇이 물건에서 돋아나는것처럼 리자가 화폐자본에서 돋아난다는것(여기서는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이 이러한것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루테르로 하여금 그처럼 고리대를 반대하여 소박하게 고함치게 한것이다.[203] 루테르는 정한 기일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자기로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부자에게 비용이 드는것과 같은 경우나 례컨대 꽃밭같은것을 구매하는데 의하여 얻었을지도 모르는 리윤이 상술한 리유로 말미암아 대부자의것으로 되지 않는것과 같은 경우에는 리자를 요구할수 있을것이라는것을 말한 뒤에 다음에 같이 계속하고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 (100굴덴) 을 대부하였다. 그것에 의하여

당신은 내가 여기서 지불할수 없고 저기서 구매할수 없으며 따라서 량쪽에서 다 손해를 입지 않을수 없는 이중의 손해를 나에게 주었다. 이것은 즉 생긴 손해와 놓쳐버린 리득이라는 이중의 손실이라는것이다… 한스가 100굴덴을 대부하여 손해를 입고 그 손해의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다는것을 듣자 그들은① 막 뛰여들어와 매 100굴덴에 대하여 이러한 이중의 손실, 즉 지불이 안되여 입게 된 손실과 사지 못하고 놓쳐버린 꽃발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그것은 마치도 그 100굴덴에는 자연히 이러한 이중의 손실이 돌아난것과 같다.

그리하여 100굴덴이 있으면 그들은 이것을 대부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입지도 않은 그러한 이중의 손실을 계산한다…그렇기때문에 누가 당신에게 가한것도 아니고 따라서 증명할수도, 계산할수도 없는 꾸며낸 손해를 이웃 사람의 화폐로써 보상하는 당신이야말로 고리대금업자이다. 이러한 손해를 법률가들은 진실하지 않은 환상적인 손해라고 부르고있다. 각자가 자기에게 가해졌다고 상상하는 손해…그러므로 지불할수도 없고 구매할수도 없기때문에 손해가 생길수도 있다고 말하여도 안될것이다. 그것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며 존재하지 않는것을 존재하는것으로 만들며 불확실한것을 확실한것으로 만드는것이다. 이러한 고리대는 불과 몇해 안가서 전 세계를 삼켜버리지 않겠는가?…대부자의 의지에 의거하지 않고 그에게 닥치는 우연한 불행이라면 그는 그에 대한 배상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상업에서는 다르며 정반대이다. 상업에 있어서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근심도 위험도 손해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로동에 의하여 생활하고 부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호사를 하려고 한다. 내가 난로옆에 앉아서 나의 100굴덴의 돈으로 하여금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부한 화폐이기때문에 아무런 위험도 근심도 없이 그것을 돈주머니에 확보한다면 친구들이여, 누가 이것을 바라지 않겠는가?》(M. 루테르《목사 여러분,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라》, 1540년 위텐베르그판).

---

① 탐욕스러운 대부자들을 가리킨다.—편집자

자본이란 영원히 존속하고 증대하는 가치로서의 그 고유한 속성에 의하여—즉 스콜라학자[204]들이 말하는 숨은 자질에 의하여—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며 재생산에서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라는 관념은 련금술사의 환상을 훨씬 릉가하는 프라이스박사의 황당무계한 착상을 낳았다. 피트는 이 착상을 정말로 믿고 국채상환기금[205]에 관한 그의 법률에 있어서 그의 재정의 기둥으로 삼았다.

《복리를 낳는 화폐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증가한다. 그러나 증가률은 점점 빨라지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상도 할수 없으리만큼 급속하게 된다. 예수가 태여난 해에 5%의 복리로 대부된 1펜스는 오늘날에는 이미 전부 순금으로 되여있는 1억 5,000만개의 지구에 포함되는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으로 증대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단리로 대부되였다면 이 1펜스는 같은 기간에 단지 7실링 $4\frac{1}{2}$펜스로밖에 늘어나지 않았을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그 재정을 첫째 방도에 의하여서보다도 둘째 방도에 의하여 개선하려 하고있다》(80).

---

(80) 리챠드 프라이스 《국채문제에 관하여 공중에게 호소함》, 1772년 런던판[19페지]. 그는 소박하면서도 재치있게 말하고있다. 《돈은 단리로 꾸고 복리로 늘이라》(R. 해밀턴 《대브리텐의 국채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연구》, 1814년 에딘버러 제2판[133페지]). 이 말대로 한다면 돈을 꾸는것은 개인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치부수단일것이다. 그러나 내가 레컨대 100파운드를 년리 5%로 차용한다면 나는 년말에는 5파운드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며 가령 이 대부가 1억년간 지속된다고 해도 나는 그동안에 매년 언제나 100파운드밖에 대부할수 없을것이고 또한 매년 5파운드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방법으로는 나는 언제까지 가도 100파운드를 차용하여 105파운드를 대부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대체 무엇으로써 이 5%를 지불해야 하겠는가? 새로운 대부에 의해서 또는 내가 국가라면 조세에 의하여서이다. 그러나 산업자본가가 화폐를 차용한다면 리윤이 레컨대 15%라면 그는 5%를 리자로 지불하고 5%를 소비하고(비록 그의 식욕은 그의 수입에 따라 커지게 되지만) 5%를 자본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부단히 5%의 리자를 지불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이미 15%의 리윤이 전제로 되여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리윤률은 상술한 리유로 말미암아 레컨대 15%로부터 10%로 저하된다. 그러나 프라이스는 5%라는 리자가 15%라는 리윤률을 전제로 하고있다는것을 아주 잊어버리고 이 리윤률이 자본의 축적과 함께 계속되는것으로 삼고있다. 그는 화폐가 복리로 환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결코 현실적축적과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이 다만 화폐를 대부하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화폐가 어떻게 복리로 환류하게 되는가 하는것

그는 그의 저서《계승지불에 관한 고찰》,(1772년 런던판)에서 더 하늘높이 난다—

《예수가 태여난 해에〔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당에서〕6%의 복리로 대출된 1실링은 전체 태양계를 토성의 궤도의 직경과 같은 직경을 가진 하나의 구로 만든 경우에 포함될수 있는것보다도 더 큰 금액으로 증대하고있을것이다.》《그렇다고 하여 결코 국가가 곤난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최소의 저축으로 최대의 부채를 국가의 리해관계가 요구하는 짧은 기간에 상환할수 있기 때문이다》(13~14페지).

영국의 국채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리론적안내서인가!

프라이스는 기하급수에서 생기는 수의 거대함에 현혹되였던것이다. 그는 자본을 재생산과 로동의 조건들을 돌봄이 없이 자동기계로 보았고 단순한 자기증식수로 보았기때문에(마치도 말사스가 인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것으로 본것과 마찬가지로[206]) 자본증대의 법칙을 $s=c(1+z)^n$이라는 공식에서 발견하였다고 망상할수 있었다. 이 공식에서 s는 자본+복리의 합계이고 c는 선대자본이며 z는 리자률(100의 상응하는 부분으로 표시한것)이고 n은 이 과정이 계속되는 년수이다.

피트는 프라이스박사의 기만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1786년에 하원은 공익을 위하여 100만파운드의 기채를 결정하였다. 피트가 믿고있었던 프라이스의 설에 의하면 물론 이렇게 기채한 금액을《축적》하기 위하여 인민에게 과세하고 그리하여 복리의 기적에 의하여 국채를 요술과 같이 없애버리는것보다 나은 상책은 없었다. 상술한 하원의 결의

온 그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리자부자본의 고유한 성질이기때문이다.

에 이어서 곧 피트의 제안으로 하나의 법률이 제정되였는데 그것은

《만기가 된 종신년금을 포함하여 기금이 년 400만파운드로 증대될 때까지》(죠지3세, 제26년의 법률, 제31호)

25만파운드의 축적을 규정하였다.

피트는 국채상환기금에 충당할 금액을 증가할것을 제안한 1792년의 연설에서는 영국의 상업적우월의 원인으로서 기계, 신용 등등을 들었는데 그러나

《가장 광범위하며 가장 영속적인 원인으로서는 축적을 들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저 천재 스미스의 저작에서 완전히 전개되고 충분히 설명되였다…이러한 자본축적은 적어도 년리윤의 일부분을 저축하여 본전을 증가시키고 이 본전을 다음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리용하고 그리하여 계속적인 리윤을 내게 하는데 의하여 실현된다.》

그리하여 피트는 프라이스박사의 중개에 의하여 스미스의 축적론을 채무의 축적에 의한 국민의 치부로 전화시키고 나가서는 무한차용의, 차용금을 지불하기 위한 차용의 유쾌한 행진에 도달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근대적은행업의 아버지인 죠우싸이어 챠일드의 말에서 다음과 같은것을 발견하였다.

《100파운드는 10%의 복리로는 70년이 지나면 10만 2,400파운드를 낳을것이다》(챠일드 《상업에 관한 고찰》, 1754년 암스테르담 및 베를린판, 115페지, 1669년에 집필).

프라이스박사의 견해가 어떻게 경솔하게 현대경제학가운데 섞여들어가고있는가 하는것은 《경제학자》지의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된다.

《자본은 저축된 자본의 각 부분에 대한 복리에 의하여 모든것을 삼켜버리며 사람들의 수입의 원천인 세계의 모든 부는 오래전부터 자본의 리자로 되여있을 정도이다…모든 지대는 이제는 이전에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리자의 지불이다》(《경제학자》, 1851년 7월 19일).[207]

리자부자본이라는 그 속성에 있어서 자본에는 대체로 생산될수 있는 일체의 부가 속하는데 자본이 이제까지 받은것은 모두다 모든것을 삼켜버리는 자본의 식욕에 대한 분할지불에 불과하다. 자본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자본에는 인류가 제공할수 있는 모든 잉여로동이 속한다. 실로 몰로크이다.

끝으로 또 《랑만파의》 뮐레르의 다음과 같은 허풍이 있다.

《프라이스박사가 말하는 복리, 또는 인간의 자기 가속적인 힘의 비상한 증대는 이러한 거대한 작용을 산생하려면 몇세기를 통하여 분할도 중단도 되지 않은 한결같은 질서를 전제로 한다. 자본이 분할되여 제각기 따로따로 성장을 계속하는 몇개의 가지들로 세분되면 그 힘들의 축적의 총과정은 다시 새로 시작된다. 자연은 힘의 루진을 평균적으로 매개 로동자(!)에게 분배되는 20년 내지 25년의 행로에 분할하였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로동자는 그의 행로를 떠나며 이제는 그는 로동의 복리에 의하여 획득된 자본을 새로운 한 로동자에게 넘기든가 대다수의 경우에는 몇명의 로동자 또는 자식들사이에 분배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자본으로부터 본래의 복리를 끌어낼수 있기전에 우선 그 자본을 생기를 띠게 하는것 또는 리용하는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획득하는 거액의 자본은 가장 활약적인 공동체에서까지도 다년간에 걸쳐 점차로 축적되는것이며 로동의 직접적확대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 집적되면 대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개인이나 로동자나 은행이나 국가에 인도되며 그다음에 차용자는 이 자본을 현실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것에서 복리를 끌어내고 그 제공자

에게 단리를 지불할 의무를 용이하게 질수 있다. 끝으로 생산이나 절약의 법칙만이 적용된다면 인간의 힘과 그 생산물이 그처럼 크게 루진적으로 늘어갈것이라는 그 루진에 대하여서는 소비, 욕망, 랑비의 법칙이 반작용한다》(A. 뮐레르 《정치의 기본》, 1809년 베를린판, 제3권 147～149페지).

이보다도 머리털이 곤두서는 어리석은 수작을 얼마안되는 행수로 요약하기는 불가능하다. 로동자와 자본가, 로동력의 가치와 자본의 리자 등등의 우스운 혼동은 제외하고라도 복리의 획득은 자본이 《대부되고》 그것이 《다음에 복리를》 낳는다는것으로써 설명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우리의 뮐레르가 하는 방법은 어느 분야에서도 랑만주의적으로 특징적이다. 랑만주의의 내용은 사물의 가장 표면적인 외관에서 끌어낸 평범한 편견들로 이루어지고있다. 그다음에 이 그릇되고 보잘것*없는 내용이 그것을 기만하는 표현방식에 의하여 《높여》 지고 시화된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리윤(잉여가치)중에서 자본으로 재전화되는 부분, 즉 새로운 잉여로동의 흡취에 복무하는 부분을 리자라고 부를수 있는 한에서만 복리의 축적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1) 모든 우연적인 교란을 무시하더라도 재생산과정의 진행중에 부단히 기존자본의 일대부분은 많게나적게나 가치가 감소된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최초에 드는 로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재생산에 드는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로동시간은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감소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생산성의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서는 모든 기존자본은 자본저축의 긴 과정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극히 짧은 재생산기간

의 결과로서 나타난다.(81)

2) 이 제3부의 제3편에서 론증한바와 같이 리윤률은 자본축적의 증대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로동의 생산력의 증대에 비례하여 저하되며 이 생산력의 증대는 바로 불변자본부분에 비한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감소의 진전으로 표현된다. 만일 1명의 로동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불변자본이 10배로 되면 동일한 리윤률을 내기 위하여는 잉여로동시간도 10배로 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가서 로동시간 전체, 아니 하루의 24시간이 전부 자본에 의하여 점유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하여는 부족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리윤률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관념이 프라이스적인 루진의 기초에 놓여있으며 또 일반적으로 《복리로써 모든것을 삼켜버리는 자본》의 기초에 놓여있다.(82)

잉여가치와 잉여로동의 동일성에 의하여 자본축적에는 하나의 질적인 한계가 놓여진다. 즉 **총로동일이** 그것이고 생산력들과 인구의 그때그때의 발전이 그것이며 이 인구는 동시에 착취될수 있는 로동일수의 한계로 되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잉여가치가 리자라는 무개념적인 형태로 파악된다면 한계는 다만 량적인것이며 어떠한 상상도 미치지 못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리자부자본에서는 자본물신에 관한 관념이 완성되여있다. 이 관념에 의하면 축적된, 그리고 화폐형태로 고

---

(81) 밀과 캐어리 및 그들의 관점에 대한 로쉐르의 틀린 주석을 참조하라.[208]

(82) 《어떠한 로동도, 어떠한 생산력도,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기술도 복리의 압도적인 요구를 충족시킬수는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모든 저축은 자본가의 수입으로부터 이루어지는것이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요구는 부단히 제기되나 로동생산력은 그와 마찬가지로 부단히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부단히 일종의 상쇄가 진행된다》(《자본의 요구에 대한 로동의 옹호》, 23페지—호지스킨 저).[209]

정된 로동생산물은 타고난 비밀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순수한 자동기관으로서 기하급수적으로 잉여가치를 낳는 힘이 부여되여있으며 따라서 이 축적된 로동생산물은 《경제학자》지가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모든 시대의 세계의 모든 부를 정당하게 자기에게 귀속시키는것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할인하여왔다는것이다. 과거로동의 생산물, 과거로동 그 자체가 여기서는 그 자체로서 현재의 또는 미래의 산잉여로동의 일부를 배태하고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있는바와 같이 사실상 과거로동의 생산물의 가치의 유지는 그리고 그 한에서는 또 이 가치의 재생산도 **다만** 그 생산물이 산로동과 접촉하는 결과에 **불과**하며 또 둘째로는 과거로동의 생산물이 산잉여로동에 명령한다는것이 계속되는것은 오직 자본관계 즉 과거로동이 산로동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우세로 대립한다는 일정한 사회적관계가 존속하는 동안뿐이다.

제 25 장

신용과 의제자본

신용제도와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는 도구들(신용화폐 등등)의 상세한 분석은 우리의 계획안에 들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다만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일반을 특징짓기 위하여 필요한 몇개 점들만을 지적하면 된다. 이 경우에 우리는 상업신용과 은행신용만을 취급하기로 한다. 이 신용의 발전과 공적신용의 발전과의 련관은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나는 앞에서(제1부 제3장 제3절 b) 어떻게 단순상품류통에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형성되며 그와 함께 상품생산자와 상품거래자사이에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는것을 밝히였다. 상업의 발전과 류통만을 념두에 두고 생산하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에 따라 신용제도의 이 자연발생적인 기초는 확대되고 일반화되며 완성되여간다. 대체로 화폐는 여기서는 그저 지불수단으로서만 기능한다. 즉 상품은 화폐와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서상의 일정한 기일의 지불약속과 바꾸기 위하여 판매된다. 이 지불약속을 우리는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모두 수형이라는 일반적범주하에 총괄할수 있다. 이러한 수형은 그 만기지불일까지는 그 자체가 다시 지불수단으로서 류통한다. 그리고 이것

이 본래의 상업화폐를 이룬다. 이러한 수형은 나중에 채권채무의 상쇄에 의하여 결제되는 한에서는 절대적으로 화폐로서 기능한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화폐로의 최종적인 전화는 일어나지 않기때문이다. 생산자와 상인호상간에서의 이 호상선대가 신용의 본래의 기초를 이루고있는것처럼 그 류통도구인 수형은 본래의 신용화폐 즉 은행권 등등의 기초를 이룬다. 이 은행권 등등은 금속화폐이든 국가지폐이든 화폐류통에 기초하는것이 아니라 수형류통에 기초한다.

W. 리섬(요크셔의 은행업자)은 《통화에 관한 서한》(1840년, 런던, 증보제2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내가 보기에는 1839년 전년의 수형총액은 5억 2,849만 3,842파운드이며 (그는 외국수형을 총액의 약 $\frac{1}{7}$로 추산하고있다) 같은해에 동시에 류통한 수형의 금액은 1억 3,212만 3,460파운드이였다》(55~56페지). 《수형은 류통수단중 다른 모든 구성부분의 합계보다도 더 큰 액의 구성부분이다》(3~4페지). 《수형이라는 이 거대한 상부구조는 은행권과 금의 총액에 의하여 형성된 토대우에 서있다.(!) 그리고 사건들의 진행중에 이 토대가 너무나 협소하여지면 이 상부구조의 견고성은, 그리고 그 존재까지도 위태롭게 된다》(8페지). 《통화의 총액》(그가 말하는것은 은행권이다)《과 즉시 현금지불을 요구할수 있는 전체 은행들의 채무액들을 추산하면 나는 법률에 의하여 금태환을 청구할수 있는 금액의 총계를 1억 5,300만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이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드는 금의 액수는 1,400만파운드이다》(11페지).

《화폐과잉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또 수형의 일부분을 발생하여 수형의 거대하고 위험한 팽창을 조장하는 낮은 리자률과 할인률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수형을 통제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수형이 얼마만큼 현실적거래로부터, 례컨대 현실적매매로부터 발생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한 부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것이고 융통수형으로써만 이루어지고있는가 즉 류통중의 수형을 만기전에 받기 위하여 그것을 대신할 다른 수

형을 발행하며 그리하여 순전한 류통수단을 만들어내는데 의하여 의제자본을 만들어내는 경우인가를 분별하기는 불가능하다. 화폐가 지나치게 많고 값싼 시기에는 내가 알고있는바에는 이것이 매우 큰 액수에 달한다》(43~44페지).

J. W. 보우즌키트는 《금속, 지페 및 신용통화》(1842년 런던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매 영업일에 수형교환소》[210] (런던의 은행업자들이 들어온 행표와 만기수형을 서로 교환하는 장소) 《에서 결제되는 지불의 평균액은 300만파운드를 넘지만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매일의 화페준비액은 20만파운드를 좀 넘을뿐이다》(86페지). (1889년에는 수형교환소의 총 교환액은 76억 1,875만파운드 즉 약 300영업일에 일평균 2,550만파운드에 달하였다.—F. 엥겔스). 《수형은 그것이 리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사람에게서 저사람에게로 이전하는 한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페에는 의존하지 않는 류통수단(currency)이다》(92~93페지). 《평균하면 류통중의 수형에는 각각 두개의 리서가 있으며 따라서 매개 수형은 만기가 될 때까지 평균 두번 지불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이에 의하여 1839년중에 수형은 리서에만 의하여 5억 2,800만파운드의 2배 즉 10억 5,600만파운드, 1일 평균 300만파운드 이상의 가치의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형과 예금을 합하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화페의 도움이 없이 매일 적어도 1,800만파운드라는 금액의 화페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은 확실하다》(93페지).

투크는 신용일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신용이란 그의 가장 간단한 표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본액을 화페로서나 또는 일정한 화페가치로 평가된 상품으로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확실한 또는 불확실한 근거를 가진 신임이며 그 자본액은 항상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후에는 지불해야 하는것이다. 자본이 화페로 대부되는 경우 즉 은행권으로나 현금대부로나 거래자앞

으로의 수형으로 대부되는 경우에는 자본사용의 대가로서 반환액에 몇 퍼센트가 추가된다. 상품의 화폐가치가 당사자들사이에서 확정되고 그 이전이 판매를 이루는 경우에는 지불되여야 할 확정된 금액속에는 자본사용과 만기될 때까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여있다. 일정한 만기일을 정한 지불약속서는 대개 이러한 신용에 대하여 교부된다. 그리고 이 양도될수 있는 차용증서 또는 약속서는 대부자들이 이러한 수형의 만기전에 화폐형태로나 상품형태로 자기의 자본을 사용할 기회를 발견할 경우에는 대개 그들이 보다 저렴하게 차용하거나 구매할수 있는 수단으로 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신용이 수형의 다른 서명자의 신용에 의하여 강화되기때문이다》(《통화원리의 연구》, 87페지).

Ch. 꼬끌렝은 《산업에 있어서의 신용과 은행에 대하여》(《신구대륙평론》 1842년, 제31권[797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어떠한 나라에서나 신용거래의 대다수는 산업적관계 자체의 범위내에서 진행된다…원료의 생산자는 원료를 가공제조업자에게 선대하고 후자로부터 만기일이 확정된 지불약속서를 받는다. 이 제조업자는 자기가 맡은 작업부분을 수행한 다음에는 다시 같은 조건으로 자기의 생산물을 새로 더 가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제조업자에게 선대하며 그리하여 신용은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점점 더 확대된다. 도매상인은 소매상인에게 상품을 선대하는데 그 자신도 제조업자나 중개인으로부터 선대를 받는다. 어느 사람이나 한손으로 차용하고 다른 손으로 대부한다. 그것은 화폐일수 있으나 생산물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하여 산업적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결합되고 모든 방향으로 교차되는 많은 대부의 끊임없는 교환이 진행된다, 바로 이처럼 호상대부가 몇배로 증가되여가는것이 신용의 발전이며 또 여기에 신용의 힘의 진정한 근원이 있다.》

신용제도의 다른 측면은 화폐거래업의 발전과 련결되는데, 이 발전은 물론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상품거래업

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 전편(제19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기업가들의 준비금의 보관, 화폐의 출납과 국제적 지불의 기술적업무 따라서 금괴거래는 화폐거래업자들의 수중에 집중된다. 이 화폐거래업과 관련하여 신용제도의 다른 측면 즉 리자부자본 또는 화폐자본의 관리가 화폐거래업자들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발전한다. 화폐의 차용과 대부는 그들의 특수한 업무로 된다. 그들은 화폐자본의 현실적인 대부자와 차용자간의 매개자의 역할을 놀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측면에서 본 은행업자의 업무는 대부할수 있는 화폐자본을 자기의 수중에 대량으로 집중하는데 있으며 그리하여 개개의 화폐대부자 대신에 은행업자가 모든 화폐대부자의 대표로서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에게 대립하는데 있다. 그들은 화폐자본의 일반적관리자로 된다. 한편 그들은 상업세계 전체를 위하여 차용한다는데 의하여 모든 대부자들과 대립하여 차용자들을 집중한다. 은행은 한편으로는 화폐자본의 집중, 대부자들의 집중을 대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차용자들의 집중을 대표한다. 은행의 리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대부할 때의 리자보다 낮은 리자로 차용한다는데 있다.

은행이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대부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에 흘러들어온다. 우선 은행은 산업자본가의 출납업자이므로 은행의 수중에는 매개 생산자와 상인이 준비금으로서 보유하는 화폐자본과 지불수단으로서 그들에게로 지불되는 화폐자본이 집중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준비금은 대부할 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전화한다. 이리하여 상업세계의 준비금은 공동적인 준비금으로서 집중되기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는것이고 이전에는 준비금으로서 잠자고있던 화폐자본의 일부분도 대부되여 리자부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둘

째로는 은행이 대부할수 있는 자본은 대부할것을 은행에 위탁하는 화폐자본가들의 예금으로써 형성된다. 그리고 또 은행제도의 발전에 따라 특히 은행이 예금에 대하여 리자를 지불하게 되자 모든 계급들의 화폐저축과 일시적인 유휴화폐는 은행에 예금된다. 단독으로는 화폐자본으로서 작용할수 없는 작은 금액이 결합되여 큰 금액으로 됨으로써 하나의 화폐력량을 이룬다. 이와 같이 작은 금액을 수집하는것은 은행제도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본래의 화폐자본가와 차용자간에서의 은행제도의 매개적기능과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점차적으로만 소비되는 수입도 은행에 예금된다.

대부(우리는 여기에서는 본래의 상업신용만을 문제로 한다)는 수형의 할인—수형을 만기전에 화폐로 전화하는것—과 각이한 형태들의 선대에 의하여 실시된다. 즉 대인신용에 의한 직접선대, 각종 리자부증권, 국가증권, 주식에 대한 담보선대, 특히 적하증권, 창고보관증권, 기타 상품소유증서에 대한 선대에 의하여 실시되며 예금을 넘는 구좌대월 등등에 의하여 실시된다.

은행업자가 주는 신용은 각이한 형태들로 줄수 있다. 례컨대 다른 은행앞으로의 수형, 다른 은행앞으로의 행표, 동종의 신용개설, 끝으로는 발권은행인 경우에는 그 은행 자신의 은행권에 의하여 줄수 있다. 은행권은 은행업자에 의하여 개인수형과 대체되는, 어느 때에나 지참인에게 지불될수 있는 그 은행업자앞으로의 수형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지막 신용형태는 문외한의 눈에는 특히 주의를 끄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 종류의 신용화폐는 단순한 상업류통으로부터 나와 일반적류통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화폐로서 기능하기때문이다. 또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주요은행은 국립은행과 사립은행의 기묘한 혼합물로서 사실상 그 배후에 국가신용을 가지고있으며 그 은행권은 다다소소로 법정지불수단이기때문이다. 또 은행권은 류통하는 신용기호를 표시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에서 은행업자가 취급하는것은 신용 그 자체라는것이 명백하게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업자는 기타의 모든 형태의 신용도 취급하는데 그가 자기에게 예금된 현금화폐를 선대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사실상 은행권은 도매상업을 위한 주화를 이루고있을따름이며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언제나 예금이다. 그 가장 훌륭한 증명을 제공하는것은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다.

여러가지 종류의 특수한 신용기관들과 은행 자체의 특수한 형태들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는 이 이상 더 상세히 고찰할 필요는 없다.

《은행업자의 업무는…두 부분으로 구분될수 있다…1) 자본을 직접 운용할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수집하여 그것을 사용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 또는 인도하는것. 2) 고객들의 수입으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이고 이 고객들이 그 소비지출에 필요한만큼의 금액을 그들에게 지불하는것, 전자는 **자본**의 류통이고 후자는 **화폐**(currency)의 류통이다.》 《전자는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중,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분배이다. 후자는 주변의 지방적수요를 위한 류통의 조절이다.》—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36~37페지.

우리는 제28장에서 다시한번 이 개소에 돌아갈것이다.

《위원회보고》 제8권, 《상업곤경》 제2권 제1부 1847~1848년, 증언록.—(이하에서는 《상업곤경》 1847~1848년으로서 인용한다.) 40년대에는 런던의 수형할인에서는 무수한 경우에 은행권이 아니라 한 은행이 다른 은행앞으로 발행하

는 21일불수형이 사용되였다(지방은행업자 J. 피즈의 증언, 제4636 및 4645호). 같은 보고에 의하면 은행업자들사이에서는 화폐가 부족하게 되면 통례로 이러한 수형으로 자기들의 고객에게 지불하는 습관이 있었다. 령수자는 은행권을 희망하면 이 수형을 다시 할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은행에 있어서는 화폐를 만드는 특권을 얻는것과 같았다. 죤스 로이드회사는 화폐가 부족하여 리자률이 5%를 넘을 때에는 《썩 이전부터》 이 방식으로 지불을 하였다. 고객은 이러한 은행수형을 즐겨 받았다. 왜냐하면 죤스 로이드회사의 수형은 그 자신의 수형보다도 쉽게 할인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 수형이 20~30명의 손을 경유하는 일도 흔히 있었다(우와 같은 보고, 제901~905호, 제992호).

이러한 모든 형태는 지불청구권을 이전할수 있는것으로 만드는데 복무한다.

《신용의 형태에는 신용이 때로는 화폐기능을 수행하지 않아도 좋은 그러한 형태는 하나도 없다. 이 형태가 은행권이든, 수형이든, 행표이든간에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결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풀라톤 《통화조절론》 1845년, 런던 증보 제2판, 38페지).—《은행권은 신용의 잔돈이다》(51페지).

다음의것은 J. W. 길버트 《은행업의 력사 및 원리》(1834년 런던판)에서 인용한것이다.

《은행의 자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즉 투하자본(invested capital)과 차입된 은행자본(banking capital)으로 구성되여있다》(117페지). 《은행자본 또는 차입자본은 세가지 방도로 얻는다. 1) 예금의 수납에 의하여. 2) 본행의 은행권발행에 의하여. 3) 수형발행에 의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파운드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내가 이 100파운드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4%의 리자로 대부한

다면 나는 1년동안에 이 거래에 의하여 4파운드를 벌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나의 지불약속서 (I promise to pay[나는 지불할것을 약속한다]는것이 영국의 은행권의 보통의 형식이다) 를 받고 그것을 년말에 나에게 반환하고 마치도 내가 그에게 100파운드를 대부한것처럼 그것에 대하여 4%를 나에게 지불한다면 나는 이 거래에 의하여 4파운드를 벌게 된다. 그리고 또 지방의 도시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파운드를 내가 21일후에 이 100파운드를 런던에 있는 어떤 제삼자에게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그동안에 그 화폐로써 얻을수 있는 리자는 모두 나의 리윤으로 될것이다. 이상은 은행의 제 업무의 그리고 예금이나 은행권이나 수형에 의하여 은행자본이 조성되는 방도의 사실대로의 개괄이다》(117페지). 《은행업자의 리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의 차입자본 또는 은행자본의 액에 비례한다. 은행의 현실적리윤을 확정하려면 총리윤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리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 잔고가 은행리윤이다》(118페지). **《은행업자의 그의 고객에 대한 선대는 다른 사람들의 화폐로써 실시된다》**(146페지).

《은행권을 발행하지 않는 은행업자들은 바로 수형의 할인에 의하여 은행자본을 조성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할인업무에 의하여 자기은행의 예금을 늘인다. 런던의 은행업자들은 자기의 은행에 예금구좌를 가지고있는 상회를 위하여서만 할인한다》(119페지). 《거래은행에서 수형을 할인하고 이 수형의 전액에 대하여 리자를 지불한 상회는 적어도 이 금액의 일부분을 그에 대한 리자를 받지 않고 은행의 수중에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은행업자는 선대화폐에 대하여 보통의 리자률보다 높은 리자률을 받으며 자기의 수중에 남은 잔고만큼의 은행자본을 조달한다》(120페지).

준비금, 예금, 행표의 절약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예금은행은 예금잔고의 환치에 의하여 류통수단의 사용을 절약하고 소액의 현실적화폐로써 다액의 거래를 결제한다. 이렇게 하여 유리된 화폐는 은행업자가 할인 등등에 의하여 자기의 고객에게 선대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잔고의 환치는 예금제도의 효과를 높인다》

(123페지). 《서로 거래하는 두 고객이 동일한 은행에 구좌를 가지고 있든 각이한 은행에 구좌를 가지고있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왜냐하면 은행업자들은 수형교환소에서 자기들의 행표를 서로 교환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환치에 의하여 예금제도는 금속화폐의 사용을 완전히 구축할 정도로 확장될수도 있을것이다. 각자가 은행에 예금구좌를 가지고 자기의 지불을 모두 행표로 진행한다면 이 행표가 유일한 류통수단으로 될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업자들이 자기의 수중에 화폐를 가지고있다는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124페지).

은행의 수중에 지방적거래가 집중되는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이다. 1) 지점은행에 의하여. 지방은행은 그 지방의 소도시들에 지점을 가지고있으며 런던의 은행들은 런던의 각 지구에 지점을 가지고있다. 2) 대리점에 의하여.

《어느 지방은행이나 다 런던에 대리점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런던에서 자기의 은행권이나 수형의 지불을 하고 또 런던의 주민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구좌에 예금하는 화폐를 받아들인다》 (127페지). 각 은행업자는 다른 은행업자들의 은행권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다시 내놓지는 않는다. 좀 큰 도시들에서는 어디서나 다 은행업자들이 매주에 한두번 모여 은행권을 교환한다. 잔고는 런던앞 수형에 의하여 지불된다》 (134페지). 《은행의 목적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것은 모두 투기도 용이하게 한다. 거래와 투기는 많은 경우에 대단히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므로 어디서 거래가 끝나고 어디서 투기가 시작되는지 말하기 곤난하다…은행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용이하게 또 저렴하게 자본을 얻을수 있다. 자본이 저렴한것은 투기를 조장하는데 이것은 마치 고기와 맥주가 저렴한것이 대식과 주정을 조장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137～138페지). 《자기은행의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들은 항상 이 은행권으로 지불을 하므로 이 은행의 할인업무는 오직 그렇게 하여 얻은 자본으로써만 진행되는것처럼 보일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확실히 은행업자는 자기가 할인

하는 모든 수형에 대하여 자기의 은행권으로 지불할수 있지만 그래도 그의 수중에 있는 수형의 10분의 9는 현실적자본을 대표할수 있을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이 수형에 대하여 자기의 지페를 줄따름이지만 이 지페는 수형이 만기가 될 때까지 류통을 계속하고있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이다. 수형은 3개월이 지나야 만기가 될수 있는데 은행권은 3일만에 돌아오는수도 있다》(172페지). 《고객에 의한 당좌차월은 거래상 보통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금대부가 허여되는 목적이다… 현금대부는 개인보증에 의하여 허여될뿐만아니라 유가증권의 예탁에 의하여서도 허여된다》(174~175페지). 《상품을 담보로 하여 선대되는 자본은 수형할인에 의하여 선대되는 경우와 동일한 작용을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상품을 담보로 하고 100파운드를 차용한다면 그것은 그가 100파운드의 수형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고나서 이 수형을 은행업자에게서 할인받은것과 동일한것이다. 그러나 그 선대에 의하여 그는 자기의 상품을 시세가 좋아질때까지 보유할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긴급한 수요때문에 화폐를 얻기 위하여 당하지 않을수 없었을 희생을 피할수 있게 된다》(180~181페지).

《통화리론의 론평》(62, 63페지)

《내가 오늘 A에게 예탁하는 1,000파운드가 래일에는 다시 지불되여 B에게서 예금으로 된다는것은 론쟁할 여지 없는것이다. 모레는 그것은 다시 B에 의하여 지불되여 C에게서 예금으로 될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무한히 계속될수 있다. 이리하여 이 1,000파운드의 화페는 일련의 이전에 의하여 절대로 확정할수 없는 몇배의 예금액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총예금액의 10분의 9는 은행업자들의 장부상의 부기과목으로 존재하는외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수도 있다…례컨대 스코틀랜드에서 그러한데 거기서는 류통하고있는 화페(그것도 거의 지페뿐이다!)는 300만파운드를 넘은 일이 없었는데 예금은 2,700만파운드였다. 그런데 일반적이며 돌연적인 예금지불청구가 생기지 않는 동안은 이 동일한 1,000파운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만큼 용이하게 역시 확정할수 없는 금액을 결제할수 있다. 내가 오늘 어떤 기업가에 대한 나의 채무를 1,000파운드로 결제하면 그 동일한 1,000파운드가

래일은 다른 한 상인에 대한 이 기업가의 채무를 결제할수 있으며 또 모레는 은행에 대한 이 상인의 채무를 결제할수 있으며 이처럼 무한히 계속될수 있기때문에 동일한 1,000파운드는 이 사람손에서 저 사람손으로,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넘어가 상상할수 있는 어떠한 예금액도 결제할수 있는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길버트는 이미 1834년에 다음과 같은것을 알고있었다.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것은 모두 투기도 용이하게 한다. 거래와 투기는 많은 경우에 대단히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므로 어디서 거래가 끝나고 어디서 투기가 시작되는지 말하기 곤난하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담보로 하는 선대를 얻기가 용이하게 되면 될수록 그러한 선대를 더욱더 많이 받게 되며 그리고 우선 상품을 담보로 하는 선대금을 얻기 위하여서만 상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이미 제조된 상품을 먼 시장에 가져다 투매하려는 시도는 더욱더 증가된다. 어떻게 하여 한 나라의 상업계전체가 그러한 현혹에 사로잡힐수 있으며 또 그러한 현혹이 어떻게 종식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1845년부터 1847년까지의 영국의 상업사가 우리에게 적절한 실례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용이 무엇을 수행할수 있는가를 본다. 다음의 실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미리 몇가지만을 간단히 말하여두자.

1842년말에는 1837년 이래 거의 간단없이 영국산업을 억눌러왔던 압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2년간에는 영국 공업생산물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일층 더 증대되였다. 1845~1846년은 최고의 번영기였다. 1843년에는 아편전쟁이 영국의 상업을 위하여 중국의 문호를 열어놓았다. 이 새로운 시장은

이미 활기에 넘친 확장 특히 면방직업의 확장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어떻게 우리의 생산이 과다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3억의 인간을 입혀야 한다》고 당시 만체스터의 한 공장주는 필자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공장건물, 중기기관, 방적기계, 직기를 신설하여도 대량적으로 흘러들어오는 랭카셔의 잉여가치를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사람들은 생산을 증대시킨것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철도부설에 열중하였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공장주들과 상인들의 투기욕은 만족을 얻었는데 그것도 이미 1844년 여름이래의 일이였다. 사람들은 될수 있는대로 많이 즉 제1회의 불입에 충당할 만큼 돈이 자라는 한에서는 주식에 응모하였다. 다음의 불입에는 또 방법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다음 불입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에는—《상업곤경》 1848~1857년, 질문 제1059호에 의하면 1846~1847년에 철도에 투하된 자본은 7,500만 파운드에 달하였다—신용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상회의 본래의 사업도 또한 대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과중한 부담을 지고있었다. 높은 리윤에 유혹되여 리용할수 있는 류동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업무들이 확장되고있었다. 그러나 신용은 확실히 존재하였고 쉽게 얻을수 있었고 또 저렴하였다. 은행의 할인률은 낮았다. 즉 1844년에는 $1\frac{3}{4}$~$2\frac{3}{4}$%였고 1845년에는 10월까지 3% 이하였다가 이어서 단기간 5%까지(1846년 2월) 올랐고 그다음에는 다시 내려 1846년 12월에는 $3\frac{1}{4}$%로 되였다. 잉글랜드은행은 그 지하실에 일찍 있

어본적 없는 거액의 금저장을 가지고있었다. 국내의 모든 거래소의 시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면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는가, 왜 경기좋게 하지 않겠는가? 왜 영국제품을 갈망하고있는 외국시장에 제조할수 있는 모든 상품을 보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왜 제조업자 자신이 이중의 리익을 얻어서는 안되겠는가? 즉 극동에서 방사와 직물을 판매하는데서 얻는 리익과 그 대신에 입수한 물건을 영국에서 판매하는데서 생기는 리익을 얻어서는 안되겠는가?

이리하여 선대와의 교환으로 인도와 중국에 대한 대량위탁판매[211]제도가 생기였으며 이 제도는 이하의 주에서 상세히 서술되고있는바와 같은, 전적으로 선대를 얻기 위한 위탁판매제도로 발전하였으며 또 필연적으로 시장의 대량공급과잉과 파국으로 끝나지 않을수 없었다.

이 파국은 1846년의 흉작후에 돌발하였다. 잉글랜드 특히 아일랜드는 식량, 주로 곡물과 감자의 대량공급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을 제공한 나라들은 그 대가를 영국의 공업생산물로는 극히 적은 부분밖에 지불받지 못하였다. 귀금속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적어도 900만의 금이 외국으로 나갔다. 이 금중에서 웅근 750만이 잉글랜드은행의 금저장에서 나왔는데 그때문에 화폐시장에서의 잉글랜드은행의 행동의 자유는 심하게 방해되였다. 다른 은행들의 준비금도 잉글랜드은행에 두었고 사실상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과 같은것이였기때문에 이런 은행들도 이제는 역시 자기들의 금융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었다. 급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던 은행으로의 지불의 흐름이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그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정체되고말았다. 잉글랜드은행의 할인률은 1847

년 1월에는 아직도 3~3$\frac{1}{2}$%였었는데 최초의 공황이 시작된 4월에는 7%로 상승하였다. 이어서 여름에는 다시 일시적인 미약한 완화(6$\frac{1}{2}$%, 6%)가 나타났으나 또다시 흉작이 되자 공황은 새로 그리고 보다 격렬하게 발발하였다. 잉글랜드은행의 공정최저할인률은 10월에는 7%로, 11월에는 10%로 상승하였다. 즉 대다수의 수형이 무서운 고리로밖에는 할인될수 없게 되였거나 또는 전혀 할인될수 없게 되였다. 전반적인 지불정지는 꽤 많은 일류 상회들과 극히 많은 수의 중소상회들을 파산시켰다. 잉글랜드은행 자신도 교활한 1844년 은행법[212]에 의하여 이 은행에 부과된 제한들때문에 파산당하지 않을수 없는 위험에 빠졌다—그때에 정부는 일반적인 요청에 의하여 10월 25일에 이 은행법을 정지하고 그리하여 잉글랜드은행에 부과된 불합리한 법적구속을 해제하였다. 그리하여 잉글랜드은행은 그 보유은행권을 자유로 류통에 방출할수 있게 되였다. 이 은행권의 신용은 사실상 나라의 신용에 의하여 보장되고 따라서 동요가 없는것이였으므로 그와 함께 즉시로 화폐부족의 결정적인 완화가 나타났다. 물론 다수의 대소상회들은 절망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달아 아직도 파산하였으나 위기의 정점은 극복되였고 잉글랜드은행의 할인률은 12월에는 다시 5%로 내렸으며 1848년중에는 이미 사업활동의 갱신이 준비되였다. 그리고 이 사업활동은 1849년의 대륙의 혁명운동을 무력하게 만들고 50년대에는 처음으로 전대미문의 산업의 번영을 초래하였으나 그러나 이어서 또 1857년의 파국을 초래한것이였다.—F. 엥겔스}

Ⅰ. 1847년의 공황중에 국채증권과 주식이 엄청나게 가

치가 감소된데 관하여는 1848년에 상원에서 공개한 한 공문서가 설명을 주고있다. 그것에 의하면 1847년 2월의 상태에 비하여 그해 10월 23일의 가치저락은 다음과 같은 액에 달하였다.

영국의 국채증권	93, 824, 217파운드
독크 및 운하주	1, 358, 288파운드
철도주	19, 579, 820파운드
합계	114, 762, 325파운드

Ⅱ. 동인도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는 상품이 구매되였기때문에 수형이 발행된것이 아니라 할인할수 있는, 화폐로 바꿀수 있는 수형을 발행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 구매되였는데 이러한 거래에 나타난 사기에 관하여 1847년 11월 24일의 《만체스터의 초병》지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여 있다.

런던에 있는 A는 B에게 의뢰하여 만체스터에 있는 제조업자 C로부터 동인도에 있는 D에게 보내기 위한 상품을 구매하게 한다. B는 C가 B앞으로 발행한 6개월후불수형으로 C에게 지불한다. B도 역시 A앞으로의 6개월후불수형에 의하여 지불을 받는다. 상품이 배에 실리면 A는 송달된 선하증권에 대하여 역시 D앞으로의 6개월후불수형을 발행한다.

《이리하여 구매자도 화주도 쌍방이 다 그들이 실제로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기 수개월전에 자금을 입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형이 만기가 되면 이런 장기거래에서는 회수를 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구실밑에 그 기간이 고쳐지는 일이 극히 보통이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거래에서의 손실은 거래를 축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시키게 되였다. 관계자들이 가난하게 되면 될수록 이전의 투기들에서 잃은 자본에 대한 보상을 새로운 선대에서 얻기 위하여 그들이 구매할

필요가 점점 더 커졌다. 구입은 이제는 수요공급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게 되였고 그것은 곤경에 빠진 상회들의 금융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한 측면에 불과하다. 이편에서는 가공제조품의 수출에서 일어난 일이 저편에서는 생산물의 구입과 운송에서 일어났다. 수형을 할인받을만큼 충분한 신용이 있었던 인도의 상회들은 사탕, 인디고, 견사 또는 면화를 구매하였는데 이것은 구입가격이 최근의 런던의 가격에 비하여 리윤을 약속하였기때문이 아니라 런던의 상회앞으로 발행한 이전의 수형이 곧 만기가 되여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이다. 한짐의 사탕을 구매하고 그것의 대가를 런던의 상회앞으로의 10개월후불수형으로 지불하고 선하증권을 우편으로 런던에 보내는것보다 더 간단한 일이 있었겠는가? 그후 2개월도 못되여 배에 금방 실은 이 상품의 선하증권이, 따라서 그 상품 자체가 롬바드거리[213]에서 담보로 되였으며 런던의 그 상회는 이 상품에 대하여 발행된 수형이 만기가 되기 8개월전에 화폐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할인상의 손에 넉넉한 화폐가 있어서 선하증권이나 창고보관증권을 담보로 화폐를 선대할수 있으며 또 민씽골목[214]에 있는 〈유명한〉 상회들 앞으로의 인도상회들의 수형을 무제한의 액에 이르기까지 할인할수 있는 동안은 만사는 중단이나 곤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이러한 사기적인 방법은 인도로부터 오는 상품도, 인도로 가는 상품도 돛배를 타고 희망봉을 에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동안은 성행하였다. 상품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게 된—그것도 기선으로—이래로 의제자본을 제조해내는 이 방법은 상품의 긴 수송기간이라는 기초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전신에 의하여 영국의 기업가가 인도의 시장상황을, 또 인도의 상인이 영국의 시장상황을 당일에 알게 된 이래로는 이러한 방법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였다.—F. 엥겔스}

III. 아래의것은 이미 인용한 보고서 《상업곤경》(1847~1848년)에서 취한것이다.

《1847년 4월의 마지막 주에 잉글랜드은행은 리버풀왕립은행에 앞으로는 동 은행과의 할인업무를 반액으로 감소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이 통고의 영향은 극히 나빴다. 왜냐하면 리버풀에서의 지불은 근래에는 현금으로 진행되는것보다 수형으로 진행되는것이 훨씬 더 많았기때문이였으며 또 평소에는 자기들이 인수한 수형을 지불하기 위하여 다액의 현금을 은행으로 가져왔던 상인들도 근래에는 그들 자신이 자기의 면화나 기타 생산물의 대가로 받은 수형밖에 가져올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현상이 신속히 확대되였고 따라서 거래도 더욱 곤난하게 되였다. 은행이 상인들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였던 인수수형은 대개는 외국에서 그들앞으로 발행된것들이였고 종래에는 대개 생산물의 지불대금에 의하여 결제되였다. 상인들이 가져오는것은 지금은 이전과는 달리 현금이 아니라 수형인데 그 유효기간도 종류도 여러가지였고 상당한 수는 3개월후불의 은행수형이고 대다수는 면화수형이였다. 이러한 수형은 은행수형이면 런던의 은행업자들에 의하여 인수되였으며 그렇지 않은것은 브라질, 미국, 카나다, 서인도 등과 거래하고있는 각종 상인들에 의하여 인수되였다…상인들사이에서 서로 수형을 발행한것이 아니였으며 리버풀에서 생산물을 구매한 국내의 고객들이 그 지불을 런던의 은행앞으로의 수형으로든가 또는 런던의 다른 상회앞으로의 수형으로든가 또는 다른 누구앞으로의 수형으로 진행하였다. 잉글랜드은행의 그 통고는 판매된 외국생산물에 대한 수형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게 되였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3개월을 넘는것이 많았던것이다》(26~27페지).

영국의 1844~1847년의 번영기는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최초의 큰 철도사기와 결부되여있었다. 이 철도사기가 사업일반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우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여있다—

《1847년 4월에는 거의 모든 상회들이 자기의 상업자본의 일부분을 철도에 투하하는데 의하여 자기들의 사업을 많게나적게나 쇠약해지게 하기 시작하였다》(41~42페지).—《철도주 담보로 례컨대 8%라는

높은 리자률로써도 개인이나 은행업자나 보험회사들에 의하여 대부가 진행되였다》(66~67페지). 《이러한 상회들의 이렇게 많은 철도투자는 그들로 하여금 수형할인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과대한 자본을 차입하는데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67페지).—(질문) 《당신은 철도주의 불입이 4월과 10월〔1847년〕에 있었던 압력〔화폐시장의〕을 크게 조장하였다고 말하는것인가?》 (대답) 《그것은 4월의 압력에는 거의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불입은 4월까지는 또 아마 여름에 들어서서까지도 은행업자들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화폐의 실제적사용은 결코 불입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된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그 결과 년초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상당한 액수의 철도자금을 가지고있었다.》〔이것은 《상업곤경》(1848~1857년) 중의 은행업자들의 많은 증언에 의하여 확증된다.〕 《이 철도자금은 여름에 점점 적어지게 되였으며 12월 31일에는 아주 적어졌다. 10월의 압력의 한 원인은 은행의 수중에 있은 철도자금이 점차로 감소되였다는 그것이였다.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우리의 수중에 있은 철도자금잔고는 3분의 1이 감소되였다. 이것은 대브리텐 전체에 미치는 철도주불입의 영향이였다. 그것은 은행예금을 점점 고갈시켰다》(43~44페지).

쌔뮤얼 거니(악명높은 오버렌드—거니회사[215]의 사장)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1846년에는 철도를 위한 자본의 수요가 상당히 컸으나 리자률을 높이지는 않았다. 적은 금액이 큰 금액으로 응축되였으며 이 큰 금액이 우리의 시장에서 소비되였다. 그리하여 대체로 그 영향은 보다 많은 화폐를 씨티의 화폐시장에 투하하였으나 그만큼 많이 끌어내지는 못하였다는것이였다》[159페지].

리버풀주식은행의 리사 A. 호지슨은 수형이 얼마나 은행업자의 준비금을 형성할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전체 예금의 적어도 10분의 9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화폐 전부를 매일매일 만기가 되는 수형으로 바꾸어 우리의 증권상속에 넣어두는것이 우리의 습관이였다…그리하여 공황기에는 매일 만기가 되는 수형의 금액이 매일 우리에게 제기되는 지불청구의 금액과 거의 동등하게 될 정도였다》(53페지).

투기수형.

(제5092호)《수형(판매된 면화에 대한)은 주로 누구에 의하여 인수되였는가?》—〔본권에서 여러번 나오는 면방직공장주 R. 가드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상품중매인에 의하여서이다. 상인이 면화를 사서 그것을 중매인에게 넘겨주고 이 중매인앞으로 수형을 발행하고 그것을 할인하여 받는다.》—(제5094호)《그리고 이 수형이 리버풀의 은행에 가서 거기서 할인되는가?》—《그렇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도 할인된다…이 융자는 주로 리버풀의 은행에 의하여 진행되였으나 만일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보기에는 작년의 면화는 1폰드당 $1\frac{1}{2}$펜스나 2펜스는 저렴하였을것이다.》—(제600호)《당신은 투기업자로부터 리버풀의 면화중매인앞으로 발행된 매우 많은 수형이 류통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면화외의 다른 식민지생산물에 대한 수형을 담보로 한 당신의 선대에 관하여도 같은 말을 할수 있는가?》—〔리버풀의 은행업자 A. 호지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그것은 어떤 종류의 식민지생산물에 대하여도 그렇게 말할수 있지만 그중에도 면화에 대하여서는 특히 그렇다.》—(제601호)《당신은 은행업자로서 이런 종류의 수형을 되도록 거절하려고 하는가?》—《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량이 적당하기만 하면 그것을 전적으로 정당한 수형이라고 간주한다…이러한 종류의 수형은 흔히 연기된다.》

1847년의 동인도—중국시장에서의 사기.—찰즈 터너(리버풀에 있는 일류 동인도상회의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리셔스도와의 거래나 그와 류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일들을 우

리는 모두 알고있다. 중매인은 비단 이 상품을 담보로 하여 선대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것은 상품이 도착한후에 이 상품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수형을 지불하기 위하여 선대한다는 완전히 사리당연한 일이나 선하증권담보의 선대에 그치지 않고…그들은 생산물이 배에 실리기전에 또 약간의 경우들에는 그것이 제조되기전에 그 생산물을 담보로 하여 선대를 하였다. 례컨대 나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칼커타에서 6,000~7,000파운드의 수형을 산 일이 있다. 이 수형의 대금은 모리셔스도로 보내져 거기에서 사탕수수의 재배에 사용되였다. 수형은 영국으로 보내졌는데 거기에서 절반이상이 인수를 거부당하였다. 이어서 이 수형의 지불에 사용되여야 할 사탕의 배짐이 도착하였을 때는 이 사탕은 배에 실리기도전에, 아니 사실상은 아마 제조되기도전에 이미 제삼자에게 담보로 되여있었다는것이 알려졌다》(78페지). 《동인도시장으로 보내는 상품의 대금은 지금은 제조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런던에 약간의 신용을 가지고있다면 그는 런던앞으로 수형을 발행하고 지금은 할인률이 낮은 런던에서 그것을 할인하기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이 하여 얻은 화폐로써 제조업자에게 지불한다…인도로 상품을 배에 실어보낸 사람이 인도로부터 회수금을 받을수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12개월은 걸린다. 인도와의 거래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1만파운드나 1만 5,000파운드를 가지고있다면 런던의 상회에서 상당한 금액의 신용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그는 이 상회에 1%를 줄것이다. 그리고 인도로 보낸 상품의 대금은 이 런던의 상회로 보낸다는 조건으로 그 상회앞으로 수형을 발행할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그 런던의 상회는 실제적으로 현금선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두 당사자는 무언중에 잘 알고 있는것이다. 즉 그 수형은 회수금이 도착할 때까지 연기되는것이다. 이러한 수형은 리버풀, 만체스터, 런던에서 할인되였으나 그중 제 많은것은 스코틀랜드은행들의 수중에 있다》(79페지).—(제786호) 《최근 런던에 파산당한 한 상회가 있다. 그 장부검사에서 다음과 같은것이 발견되였다. 만체스터에 한 상회가 있고 다른 한 상회가 칼커타에 있다. 이 두 상회가 그 런던의 상회에 20만파운드의 신용을 개설하였다. 즉 이 만체스터의 상회의 고객들이 글라스고우와 만체스터로부터 칼커

타의 상회로 상품을 위탁판매로 보내고 런던의 상회앞으로 총액 20만파운드의 수형을 발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칼커타의 상회도 런던의 상회앞으로 역시 20만파운드의 수형을 발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수형이 칼커타에서 판매되고 그 대금으로써 다른 수형이 구매되였으며 그것이 런던으로 보내져서 런던의 상회는 이것에 의하여 글라스고우 또는 만체스터로부터 발행된 최초의 수형을 지불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하나의 거래에 의하여 60만파운드의 수형이 세상에 나왔다.》—(제971호)《지금은 칼커타의 한 상회가 배짐〔영국으로 보내는〕을 구매하고 런던에 있는 거래상앞으로 발행한 그 상회 자체의 수형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선하증권이 런던으로 보내여진다면 이 선하증권은 곧 런던의 거래상이 롬바드거리에서 선대를 받는데 리용될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상회는 런던에 있는 거래상들이 수형의 지불을 필요로 하기까지는 8개월간 화폐를 리용할수 있는것이다.》

Ⅳ. 1848년에는 1847년의 공황[216]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원의 비밀위원회가 나왔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제공된 증언은 1857년에야 비로소 공포되였다(이것은 상업곤경 1848~1857년으로서 인용한다). 여기에서 리버풀련합은행의 리사 리스터씨는 특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2444호)《1847년 봄에는 신용의 지나친 팽창이 나타났다…그것은 실업가들이 자기의 자본을 사업으로부터 철도로 옮겼으며 그리고도 사업은 이전 규모대로 계속하려고 하였기때문이다. 아마도 누구나 처음에는 철도주를 팔아 리윤을 얻고 그것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보상할수 있다고 생각하였을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알고 이전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던 자기들의 사업을 위하여 신용을 얻게 되였다. 그때문에 신용팽창이 일어났다.》

(제2500호)《인수한 은행들에 손실을 주게 된 이 수형들은 주로 곡물이나 면화에 대한것이였는가? …그것은 각종 생산물 즉 곡물, 면화, 사탕 및 기타 각종 외국생산물에 대한 수형이였다. 당시는 아마 기름을 내놓고는 가격이 저락하지 않은것이 거의 없었다.》—(제2506

호)《수형을 인수하는 중매인은 담보로 되는 상품의 가격저락에 대하여도 충분히 보증을 받지 않고는 수형을 인수하지 않는다.》

(제2512호)《생산물에 대하여서는 두 종류의 수형이 발행된다. 첫째 종류에는 국외로부터 수입업자앞으로 발행되는 제1차수형이 속한다…이렇게 생산물에 대하여 발행되는 수형은 생산물이 도착하기전에 만기가 되는 일이 자주 있다. 그때문에 상인은 상품이 도착하여도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품을 판매할수 있을 때까지 중매인에게 담보로 넣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곧 그 상품을 담보로 하여 다른 종류의 수형이 리버풀의 상인으로부터 중매인앞으로 발행된다…그리하여 중매인이 그 상품을 가지고있는가 또 그가 그 상품에 얼마만큼 선대하였는가 하는것을 중매인에 대하여 확인하는것이 은행업자의 일로 된다. 은행업자는 손실을 보는 경우에 보상받을만한 담보를 중매인이 가지고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516호)《우리는 외국으로부터의 수형도 받는다…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영국앞으로의 수형을 사서 그것을 영국에 있는 어떤 상회에 보낸다. 우리는 그 수형을 보아도 그것이 신중하게 발행된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생산물을 대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헛수형인가 하는것을 분별할수 없다.》

(제2533호)《당신은 거의 모든 종류의 외국생산물이 큰 손실을 보고 판매된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이 생산물에 부당한 투기가 진행되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그것은 그 매우 많은 액수의 생산물이 수입되였으나 그것을 처분하기 위한 소비가 없었다는데서 생겼다. 어느모로 보아도 소비는 대단히 감소되였다.》—(제2534호)《10월에는…생산물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

파국의 절정에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제각기 달아나라》①가 전개되는가에 대하여는 같은 보고에서 일류의 정통자이며 부랑자인 퀘이커교도인 오버렌드—거니회사의 쌔뮤얼 거니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있다.

---

① 프랑스의 성구로서 원문은 Sauve qui peut이다. 전장에서 크게 패할 때 웨치는 구호이다.—편집자

(제1262호)《공황이 있을 때 실업가는 자기의 은행권을 얼마만큼 유리하게 투하할수 있는가 또는 자기의 국고증권이나 3%리자부공채를 판매할 때에 1%의 손해를 보는가 2%의 손해를 보는가 하는것은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가 일단 불안에 사로잡히면 리득이나 손해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첫째이다.》

V. 두 시장의 호상공급과잉에 관하여는 동인도와의 거래를 하고있는 상인 알렉산드르씨가 1857년의 은행법에 관한 하원위원회(《은행위원회》 1857년으로서 인용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제4330호)《지금은 내가 만체스터에서 6실링을 투자하면 인도에서 5실링을 회수하고 인도에서 6실링을 투자하면 런던에서 5실링을 회수할수 있는 상태이다.》

이리하여 인도시장은 영국으로 하여 또 영국시장은 인도로 하여 동일하게 과잉하게 공급되고있었다. 그나마 이것은 1857년 여름의 일이였으며 1847년의 쓰라린 경험이 있은 때로부터 겨우 10년후의 일이였다!

제 26 장

화폐자본의 축적, 그것이 리자률에 미치는 영향

《영국에서는 추가적부의 부단한 축적이 진행되고있는데 이 부는 결국은 화폐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폐를 획득하려고 하는 념원에 다음가는 절실한 념원은 리자나 리윤을 가져오는 어떤 종류의 투자에 의하여 다시 그 화폐를 방출하려는 념원이다. 왜냐하면 화폐로서의 화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과잉자본의 부단한 류입과 동시에 그 운용범위가 점차적으로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자대상을 구하는 화폐의 주기적축적에 직면하지 않을수 없는데 이 축적은 사정에 따라 클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다. 다년간 국채는 영국의 과잉한 부를 흡수하는 큰 수단이였다. 국채가 1816년에 그 최대한에 도달하여 그이상 흡수작용을 하지 않게 된 이래로 매년 적어도 2,700만이라는 금액이 다른 투자장소를 구하고있었다. 거기에다가 각종 자본반환이 일어났다…그 운영에 대자본을 필요로 하고 또 때때로 유휴자본의 과잉분을 끌어들이는 기업은…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의 투자부문에서는 사용할 여지가 없는 사회의 과잉한 부의 주기적퇴적을 처리하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통화리론론평》, 1845년 런던판 32~34페지).

1845년에 관하여서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극히 짧은 기간내에 물가는 불경기의 최저점으로부터 뛰여올랐다…3% 리자부국채는 거의 액면가격과 같은 시세이다…잉글랜드은행의 지하실에 있는 금은 지금까지 그곳에 저장된적이 있는 어느 금액도 릉가한다. 각종 주식은 거의 어느 경우에도 들어본적 없는 가격을 표시하며 리자률은 거의 명목적일 정도로 저하하였다…모든것은 또다시 놀고있는 부의 무거운 축적이 영국에 현존한다는것을 증명하며 또다시 격렬한 투기열의 시대가 우리앞에 림박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한다》(우와 같은 책, 36페지).

《금의 수입은 대외무역에서의 리득의 확실한 징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얼핏보아도 명백히 이 금수입의 일부분은 어떤 다른 설명방식이 없는 한 그러한 리윤을 대표한다》(J. G. 하버드 《통화와 나라》, 1843년 런던판 40~41페지). 《가령 호경기가 계속되고 물가가 공정하며 화폐류통도 충분한 시기에 어떤 흉작으로 하여 500만의 금이 수출되고 같은 금액의 곡물이 수입되게 되였다고 하자. 통화》〔곧 알게 되겠지만 류통수단이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F. 엥겔스〕《는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될것이다. 개개인은 전과 같은 분량의 류통수단을 가지고있을는지 모르나 그들의 은행들에 있는 상인들의 예금과 화폐중매인들의 은행잔고와 은행들의 금고에 있는 준비금은 모두 감소되였을것이다. 그리고 유휴자본액의 이러한 감소의 직접적인 결과는 리자률의 상승, 례컨대 4%로부터 6%로의 상승일것이다. 영업은 건전하므로 신임은 흔들리지 않을것이나 신용은 보다 높이 평가될것이다》(우와 같은 책, 42페지). 《상품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리면 과잉화폐는 예금의 증가와 형태로 은행으로 환류하고 유휴자본의 과잉은 리자률을 최저한으로 저하시키는데 이러한 사태는 물가의 상승이나 사업의 활발화가 유휴화폐를 동원하게 되든가 또는 그 화폐가 외국의 유가증권이나 외국의 상품에 투자되여 흡수될 때까지 계속된다》(68페지).

다음의 발취는 다시 《상업곤경》에 관한 의회보고(1847~1848년)에서 취한것이다.—1846~1847년의 흉작과 기근의 결과로 식량의 대량수입이 필요하게 되였다.

《이때문에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였다…이때문에 다액의 화폐가 은행들로부터 류출되였다. 그리고 수형을 할인받아야 할 사람들은 더욱더 할인중매인들에게로 밀려갔다. 중매인들은 수형을 더욱 엄하게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에는 승인되였던 융자가 대단히 엄중하게 제한되였고 약한 상회들사이에서 파산자가 나왔다. 전적으로 신용에만 의거하던 사람들은 결국 쓰러졌다. 이것은 이미전부터 느껴오던 불안을 더욱 증대시켰다. 은행업자들과 기타 사람들은 자기들의 채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수형이나 기타 유가증권을 은행권으로 바꾸는것을 이전과 같이 확실하게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들은 융자를 더욱 심하게 제한하였으며 아예 그것을 거절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들의 채무를 앞으로 리행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은행권을 은닉하였다. 그들은 은행권을 전혀 내놓지 않으려 하였다. 불안과 혼란은 나날이 증대하였고 쫀 라슬경의 서한이 없었더라면 전반적인 파산이 나타났을것이다》 (74~75페지).

라슬의 서한[217]은 은행법을 정지시켰다.—앞에서 언급된 찰즈 터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상회들가운데는 큰 자산을 가지고있는 사람도 꽤 있었지만 그 자산은 류동적이 아니였다. 그들의 자본은 몽땅 모리셔스도의 토지소유나 인디고공장 또는 사탕공장들에 고정되여있었다. 그들이 일단 50~60만파운드의 채무를 걸머진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수형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류동자금을 가지고있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신용에 의하여서만 또 이 신용이 충족한 한에서만 자기들의 수형을 지불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81페지).

앞에서 든 S. 거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제1664호] 《지금 (1848년) 은 거래의 축소와 화폐의 심한 과잉이 보편적이다.》—(제1763호) 《나는 리자률을 그렇게 뛰여오르게 한 원인이 자본의 부족이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안이였으며 은행권입수의 곤난이였다.》

1847년에 영국은 수입한 식량의 대가로서 적어도 900만 파운드의 금을 외국에 지불하였다. 그중에서 750만파운드는 잉글랜드은행에서 나간것이고 150만파운드는 기타의 원천들에서 나간것이다(301페지).—잉글랜드은행 총재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47년 10월 23일에는 공채나 운하주, 철도주는 이미 1억 1,475만 2,225파운드나 가치가 감소되였다》(312페지).

같은 모리스는 G. 벤팅그경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제3846호]《당신은 각종 증권과 생산물에 투하된 모든 자본이 동일하게 가치가 감소되였으며 원료, 면화, 생사, 양털이 같은 헐값으로 대륙으로 수송되였으며 그리고 사탕, 커피 및 차가 강제매각으로 투매되였다는것을 모르고있는가?—식량의 대량 수입이 일으킨 금류출을 막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상당한 희생을 바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불가피하였다.—그러한 희생을 바치면서 금을 회수하려 하기 보다는 잉글랜드은행의 금고에 있는 800만파운드에 손을 대는것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아니,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영웅주의에 대하여 주석을 달아보자. 디즈레일리는 잉글랜드은행의 리사이며 전 총재인 W. 코튼씨에게 물었다.

《잉글랜드은행의 주주들이 1844년에 받은 배당은 얼마였는가?—그해에는 7%였다.—그러면 1847년의 배당은?—9%였다.—잉글랜드은행은 금년에 주주들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가?—납부한다.—1844년에도 하였는가?—아니다.(83)—그렇다면 이 은행법 (1844년의) 은 주

(83) 즉 이전에는 우선 배당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개개의 주주들에게 지불할 때에 그 배당에서 소득세가 공제되였다. 그런데 1844년 이후는 우선 소득세가 잉글랜드은행의 총리윤으로부터 납부되고 그다음에 배당이 《소득세면제》로 분배되게 되였다. 그러므로

주들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한것이다…그 결과는 이 새로운 법률의 시행이래 주주들의 배당은 7%로부터 9%로 증가하였고 그밖에 소득세도 이전에는 주주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이제는 은행이 납부한다는것인가?—**전적으로 그러하다**》(제4356~4361호).

1847년의 공황[216]때의 은행들에서의 화폐축장에 관하여 지방은행업자 피즈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제4605호)《잉글런드은행이 그의 리자률을 점점 더 인상하지 않을수 없었으므로 불안이 보편적인것으로 되였다. 지방은행들은 수중에 보유하고있는 화폐액을 증대시키고 또 은행권의 액도 증가시켰다. 평시에는 아마도 200~300파운드의 금이나 은행권밖에 가지고있지 않는것이 보통이던 우리들중의 다수는 즉시로 수천파운드를 금고나 책상속에 넣어두게 되였다. 그것은 할인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수형의 류통능력에 대해서도 큰 불안이 확대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화폐축장이 생겼다.》

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제4691호)《따라서 최근 12년간의 원인이 무엇이였든간에 여하튼 결과는 생산적계급일반에 유리하였다기보다는 유태인과 화폐거래업자에게 더 유리하였다.》

화폐거래업자가 공황의 시기를 얼마나 리용하는가에 대하여 투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워리크셔와 스태퍼드셔의 금속품제조업에서는 1847년에 매우 많은 상품주문이 거절되였는데 그 리유는 제조업자가 자기의 수형의 할인을 위하여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리자률이 그의 전 리윤이상을 삼킬정도였기때문이다》(제5451호).

이번에는 이미 앞에서 인용한바 있는 다른 하나의 의회

명목적인 백분률은 동일하더라도 후자의 경우에는 세금액만큼 높아진것이다.—F. 엥겔스

보고 《하원에서 상원에 회부한 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 1857년》(이하에서는 《은행위원회》 1857년으로서 인용한다)을 들어보자. 거기에서는 잉글랜드은행의 리사이며 《통화원리》[218]의 지지자들중의 일대 명성인 노먼씨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받고있다.

(제3635호)《당신은 리자률이 은행권의 량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자본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하였다. 당신에게 묻고싶지만 당신은 자본에는 은행권과 경화외에 무엇을 포함시키려는가?—나는 자본의 보통의 정의는 생산에서 사용되는 상품 또는 봉사라고 생각한다.》—(제3636호)《당신은 리자률에 대하여 말할때 자본이라는 말속에 모든 상품을 포함시키는가?—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시킨다.》—(제3637호)《당신은 리자률에 대하여 말할 때 자본이라는 말속에 그 모든것을 포함시키는가?—그렇다. 례컨대 어떤 면방직공장주가 자기공장을 위하여 면화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면 그는 아마도 자기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선대를 받고 그렇게 하여 얻은 은행권을 가지고 리버풀로 가서 구매함으로써 그의 면화를 조달할 것이다. 그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것은 면화이고 은행권 또는 금은 면화를 얻는 수단으로서밖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혹은 또 그는 자기 로동자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은행권을 차입하고 이 은행권으로써 그의 로동자의 임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로동자측에서는 또 식량과 주택을 필요로 하며 그 화폐는 그것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이다.》—(제3638호)《그런데 화폐에는 리자가 지불되는것이 아닌가?—확실히 우선 지불된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를 들어보자. 그가 신용으로 면화를 구매하고 은행에서 선대를 얻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현금지불의 경우에 가격과 신용구매에서의 만기일의 가격간의 차액이 지자의 기준일것이다. 가령 화폐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리자는 존재할것이다.》

이 의기양양한 시시한 소리는 《통화원리》의 이 거장에게 전적으로 알맞는것이다. 우선 은행권이나 금은 무엇인가

를 구매하는 수단이라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 자체 때문에 차용하는것은 아니라는 천재적인 발견.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리자률은 무엇에 의하여 규제되는가? 하는 물음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의 수요공급에 의하여서이다. 이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고있은것은 단지 수요공급은 상품의 시장가격을 조절한다는것뿐이다. 그러나 상품의 시장가격은 변하지 않더라도 전혀 다른 리자률이 그것과 대립할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교활한 변명이 나온다. 그것은 《그런데 화폐에는 리자가 지불되는것이 아닌가》라는 옳은 지적에 대하여서인데 이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하고있다. 즉 전혀 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은행업자가 받는 리자는 이 상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받은 화폐를 전혀 각이한 시장들에, 즉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의 수요공급관계가 전혀 다른 개개의 시장들에 투하하는 제조업자들도 같은 리자률로 화폐를 얻는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 거드름부리는 천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제조업자가 신용으로 면화를 산다면 《현금지불에서의 가격과 신용구매에서의 만기일의 가격간의 차액이 리자의 기준이다》라고. 그와 반대이다. 천재인 노먼이 그 조절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행리자률이야말로 현금지불에서의 가격과 신용구매에서의 만기일의 가격간의 차액의 기준인것이다. 우선 현금지불에서는 면화는 그 가격대로 판매되며 이 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시장가격 자체는 또 수요공급 상태에 의하여 조절되는것이다. 례컨대 그 가격이 1,000파운드라고 하자. 매매가 문제인 한에서는 제조업자와 면화중매인간의 거래는 이것으로써 끝난다. 그런데 제2의 거래가 첨가된다. 이 거래는 대부자와 차용자사이의 거래이다. 1,000

파운드라는 가치가 면화로 제조업자에게 선대되며 그는 그것을 례컨대 3개월안으로 화폐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리자의 시장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1,000파운드에 대한 3개월분의 리자가 현금지불에서의 가격에 가해지는 추가분으로 된다. 면화의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면화가치의 선대의 가격, 3개월간의 1,000파운드의 가격은 리자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면화 자체가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는 사실이 노먼씨에게는 례컨대 화폐는 전혀 없어도 리자는 존재할것이라는것을 증명할것이다. 만일 화폐가 전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일반적리자률은 없을것이다.

우선 자본이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이라는 비속한 관념이다. 이러한 상품이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한에서는 **자본**으로서의 그것의 가치는 **상품**으로서의 그것의 가치와 구별되여 그것의 생산적 또는 상업적 사용에 의하여 얻어지는 리윤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리윤률은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구매된 상품의 시장가격과 그 상품의 수요공급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고있는데 그것도 전혀 다른 사정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리자률이 일반적으로 그 리윤률을 그 한계로 삼는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노먼씨는 바로 이 한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 한계는 자본의 다른 모든 형태들과 **구별되는** 화폐자본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화폐자본의 수요공급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수도 있을것이다. 물적자본의 공급과 화폐자본의 공급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련이 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으며 또한 화폐자본에 대한 산업자본가의 수요가

현실적생산의 사정들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도 의심할바 없다. 노먼은 이 점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여주지 않고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화폐 그 자체에 대한 수요와 동일하지 않다는 명언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이 명언을 주는것은 다만 그와 오버스턴 및 기타 통화원리의 예언자들의 심중에는 언제나 인위적인 립법적간섭에 의하여 류통수단 자체를 자본으로 하여 리자률을 높이려고 애쓰고있다는 불순한 생각이 있기때문임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면 오버스턴경 즉 쌔뮤얼 죤즈 로이드에게로 넘어가서 국내에 《자본》이 그렇게 결핍하게 되자 왜 그는 자기의 《화폐》에 대하여 10%를 취하는가 하는것을 그가 어떻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제3653호)《리자률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두 원인중의 하나에서 생긴다. 즉 자본의 가치의 변동에서 생기든가》

(훌륭하다! 자본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름아닌 리자률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리자률의 변동은 리자률의 변동에서 생긴다. 《자본의 가치》란 리론적으로는 우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결코 다르게는 해석되지 않는다. 혹은 또 오버스턴씨가 자본의 가치를 리윤률로 리해한다면 이 심오한 사상가는 리자률은 리윤률에 의하여 규제된다는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화폐총액의 변동에서 생긴다. 리자률의 일체의 큰 변동들—변동의 지속 또는 범위로 보아 큰—은 명확히 자본의 가치의 변동에 귀착될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례증으로서는 1847년의 리자률의 상승 그리고 또 최근 2년간(1855~1856년)의 리자률의 상승보다 더 적절한것은 없다. 현존화폐액의 변동으로부터

생기는 리자률의 보다 작은 변동은 그 범위로부터 보더라도, 그 지속으로부터 보더라도 작은것이다. 그러한 변동은 빈번한것이며 또 빈번하면 할수록 그 목적을 위하여 더욱더 효과적이다.》

그 목적이란 오버스턴류의 은행업자들을 치부케 하는것이다. 친절한 쌔뮤얼 거니에는 이 점에 대하여 상원위원회에서 극히 소박하게 표현하고있다(《상업곤경》 1848년[—1857년]).

(제1324호)《당신의 의견으로는 지난해에 있었던 리자률의 대변동은 은행업자와 화폐거래업자에게 유리하였다는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것인가?—그것은 화폐거래업자에게 유리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거래상의 모든 변동은 거래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다.》—(제1325호)《은행업자는 리자률이 높게 되면 자기의 우수한 고객들이 빈궁하게 되기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당하게 될것이 아닌가?—아니다. 그러한 영향은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이 말하려는것이다.

화폐의 현재액이 리자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지금 곧 지적해야 할것은 오버스턴이 여기에서 또다시 혼동하고있다는것이다.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1847년에는(10월 이전에는 화폐의 부족과 그가 우에서 말한 《화폐의 현재량》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았다) 각종 원인들로 말미암아 증대하였다. 곡물의 등귀, 면화가격의 상승, 과잉생산에 의한 사탕의 판매불능, 철도투기와 파국, 외국시장의 면제품공급과잉,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은 단순한 수형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적인 대인도수출입, 이 모든것들 즉 공업에서의 과잉생산과 농업에서의 과소생산 따라서 전혀 각이한 원인들이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 즉 신용과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일

으켰다.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생산과정 자체의 행정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원인은 무엇이든간에 리자률 즉 화폐자본의 가치를 증대시킨것은 바로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였다. 오버스턴이 화폐자본의 가치는 그것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증대하였다고 말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동의반복이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자본의 가치》를 리자률의 상승의 원인으로서의 리윤률의 상승이라고 리해한다면 그것이 틀렸다는것은 곧 알게 될것이다.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 따라서 또 《자본의 가치》는 리윤이 감소되여도 증대할수 있다. 화폐자본의 상대적인 공급이 감소되면 그 《가치》는 높아진다. 오버스턴이 증명하려고 하는것은 1847년의 공황과 그것에 수반한 높은 리자률은 《화폐의 현재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것 즉 그가 고취한 1844년의 은행법[212]의 규정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것과 관계가 있었다. 비록 은행준비금—오버스턴의 창조물—의 고갈에 대한 공포가 1847～1848년 공황에 화폐공황을 첨가한 한에서는 관계가 있었던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아니다. 거기에는 화폐자본의 기근이 있었다. 그 원인은 현존자금에 비하여 과대한 영업이였으며 그것이 일어난것은 흉작, 철도에의 과대한 투자 특히 면제품의 과잉생산, 인도 및 중국과의 사기거래, 투기, 사탕의 과잉수입 등등의 결과인 재생산과정의 교란에 의하여서였다. 곡물이 1쿼당 120실링이였을 때에 그것을 구매한 사람들이 곡물이 60실링으로 저락한 때에 잃은것은 바로 그들이 초과지불한 60실링이였으며 곡물을 담보로 하는 선대에서의 같은 액의 신용이였다. 그들의 곡물을 120실링이라는 원래의 가격대로 화폐로 바꾸는것을 방해한것은 결코 은행권부족이

아니였다. 사탕을 과잉수입하여 그것을 거의 팔수 없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자기의 류동자본(floating Capital)[219]을 철도에 고정시키고 자기의 《본》업에서의 류동자본의 보상을 위하여는 신용에 의뢰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것은 오버스턴에 있어서는 《그의 화폐의 가치가 증대하였다는 도덕적느낌》으로 표현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자본의 가치의 상승에는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자본(상품자본과 생산자본)의 화폐가치의 저하가 직접 대응하였다. 일방의 형태에 있는 자본가치가 증대한것은 타방의 형태에 있는 자본가치가 내린때문이다. 그러나 오버스턴은 이러한 각이한 자본종류의 두 가치를 자본일반의 단일한 가치로 동일시하려고 하며 그것도 두 가치를 류통수단의 부족 즉 현존화폐의 부족에 대치시킴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동일한 액의 화폐자본도 극히 각이한 량의 류통수단으로써 대부될수 있다.

그러면 그가 든 1847년의 례를 들어보자. 잉글랜드은행의 공정리자률은 다음과 같다. 1월에는 3~3$\frac{1}{2}$%. 2월에는 4~4$\frac{1}{2}$%. 3월에는 대개 4%. 4월에는(공황) 4~7$\frac{1}{2}$%. 5월에는 5~5$\frac{1}{2}$%. 6월에는 대체로 5%. 7월에는 5%. 8월에는 5~5$\frac{1}{2}$%. 9월에는 5%, 그러나 5$\frac{1}{4}$, 5$\frac{1}{2}$ 또는 6%, 소변동. 10월에는 5, 5$\frac{1}{2}$, 7%. 11월에는 7~10%. 12월에는 7~5%.—이 경우에 리자가 올라간것은 리윤이 감소되여 상품의 화폐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 경우에 오버스턴이 1847년의 리자률이 올라간것은 자본의 가치가 올라갔기때문

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여기에서 자본의 가치라고 생각하고있는것은 다만 화폐자본의 가치일따름이다. 그리고 화폐자본의 가치는 바로 리자률이며 그밖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정체가 드러나서 자본의 가치는 리윤률과 동일시된다.

1856년에 지불된 높은 리자률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실상 오버스턴은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일종의 신용사기군, 즉 리자를 리윤에서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에서 지불하는 사기군이 나타났다는 징조였다는것을 몰랐다. 그는 1857년 공황[220]의 불과 수개월전에도 《사업은 아주 건전하다》고 단언하였던것이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제3722호) 《기업의 리윤이 리자률의 상승에 의하여 없어진다는 생각은 극히 잘못된것이다. 첫째로, 리자률의 상승은 좀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둘째로, 만일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것이고 꽤 높은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자본의 가치의 상승인데 그렇다면 자본의 가치는 왜 상승하는가? 그것은 리윤률이 상승하였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드디여 《자본의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가를 알게 된다. 여하간 리윤률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높으나 기업자리득은 감소하고 리자률은 상승하며 따라서 리자가 리윤의 대부분을 삼켜버리는 수도 있을수 있다.

(제3724호) 《리자률의 상승은 우리 나라에서 사업의 비상한 확장과 리윤률의 대상승의 결과였다. 그리고 리자률의 상승은 그 자체의 원인이였던 이상의 두 사실을 파괴한다는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말해야 좋을지 모를 론리적불합리이다.》

이것은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나 다름없이 론리적

이다. 즉 리윤률의 상승은 투기에 의한 상품가격의 등귀의 결과이며 만일 가격등귀가 그 자체의 원인 즉 투기를 파괴한다는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론리상의 불합리이다고. 어떤 사물이 그 자체의 원인을 종국적으로 파괴할수 있다는것은 오직 높은 리자률에 홀린 고리대업자에 있어서만 론리상의 불합리이다. 로마인의 위력은 그들이 진행한 정복의 원인이였지만 그들이 진행한 정복은 그들의 위력을 파괴하였다. 부는 사치의 원인이지만 사치는 부에 대하여 파괴적작용을 한다. 이 교활한자! 백만장자인 이 벼락부자귀족의 《론리》가 전 영국에 불러일으킨 존경보다도 더 잘 오늘날의 자산계급세계의 천치성을 나타낼수 있는것은 없다. 여하간 높은 리윤률과 사업확장은 높은 리자률의 원인일수 있다 하더라도 그때문에 높은 리자률이 높은 리윤의 원인으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높은 리윤률이 오래전에 사라진후에 이 높은 리자(공황중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바와 같은)가 지속되지 않았는가 또는 처음으로 절정에 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제3718호) 《할인률의 대상승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본의 가치증대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이 자본의 가치증대의 원인은 누구에 의하여서나 완전히 명백하게 발견될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이미 말한 사실이지만 이 은행법이 실시되고있었던 13년간에 영국의 무역은 4,500만파운드로부터 1억 2,000만파운드로 증대하였다. 이 간단한 수자에 포함되고있는 모든 사변들을 잘 생각하여보자. 무역의 그와 같은 거대한 증가에 수반되는 자본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생각하여보고 또 동시에 이 거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의 자연적원천 즉 이 나라의 년년의 저축이 최근 3~4년간에 전쟁목적을 위한 무익한 지출에 소비되였다는것을 생각하여보라.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리자률이 훨씬 더 높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놀랍게 생각한다. 바꾸어말하면 나는 이

거대한 경영의 결과인 자본결핍이 당신이 이미 알고있는것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놀랍게 생각한다.》

우리의 고리대리론가의 얼마나 놀라운 용어혼동인가! 여기에서도 그는 또다시 자기의 자본가치의 증대를 들고나온다! 한편에서는 재생산과정의 이 거대한 확장이 즉 현실적자본의 축적이 진행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같이 거대하게 증가한 이 무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나타났던것 같이 그는 생각하고있는듯 하다! 그러면 과연 이 생산의 거대한 증가 자체는 자본의 증가가 아니였던가? 그리고 만일 그것이 수요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동시에 공급을 그리고 또한 화폐자본의 공급의 증가까지도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리자률이 대단히 높이 상승하였다면 그것은 오직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도 더 급속히 증가하였기때문인데, 그것을 바꾸어말하면 산업생산의 확장에 따라서 신용제도에 기초한 그 운영도 확대되였다는데 귀착된다. 바꾸어말하면 현실적산업팽창이 《융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것인데 이 융자에 대한 수요는 명백히 우리의 은행업자가 말하는 《자본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의미하는것이다. 수출무역을 4,500만으로부터 1억 2,000만으로 증가시킨것은 확실히 자본에 대한 단순한 수요의 팽창은 아니다. 그리고 오버스턴이 크림전쟁[221]에 의하여 탕진된, 나라의 년년의 저축이 이 큰 수요에 대한 공급의 자연적원천을 이룬다고 말할 때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그러면 대체 소규모의 크림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시기[222]였던 1792~1815년의 영국은 무엇으로써 축적하였는가? 둘째로, 만일 자연적원천이 고갈하였다면 대체 자본은 어떠한 원

천에서 흘러나왔는가? 영국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차용한 일이 없다. 그런데 자연적원천외에 또 인위적원천이 있다면 자연적원천은 전쟁에서 리용하고 인위적원천은 사업에서 리용한다는것이야말로 한 나라에 있어서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화폐자본만이 있었다면 그것은 높은 리자률에 의하여 그 효과를 2배로 만들수 있었겠는가? 오버스틴씨는 명백히 이 나라의 년년의 저축(이것은 이 경우에는 소비되였다는것이다)은 단순히 화폐자본으로만 전화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축적 즉 생산의 증대와 생산수단의 증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화폐형태로서의 이 생산에 대한 채권의 축적이 무슨 쓸모가 있었겠는가?

오버스틴은 높은 리윤률에서 생기는 《자본의 가치》의 증대를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서 생기는 상승과 혼동하고있다. 이 수요는 리윤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인들로 말미암아 증대할수 있다. 그 자신도 1847년에는 현실적자본의 가치감소의 결과 이 수요가 증대하였다는것을 실례로 들고있다. 그는 자기에게 편리한대로 자본의 가치를 때로는 현실적자본에, 때로는 화폐자본에 련관시킨다.

우리의 이 은행왕의 불성실성은 그가 훈장식으로 극단화하는 그의 편협한 은행업자적립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답에서 나타난다.

(제3728호. 질문) 《당신은 할인률은 상인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실질적인 중요성이 있는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당신은 얼마면 보통의 리윤률이라고 보는지 말하여줄수 없는가?》

오버스틴씨는 이것에 대해 답변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고 언명한다.

(제3729호) 《평균리윤률을 7~10%라고 가정하면 2%로부터 7% 또는 8%에로의 할인률의 변화는 리윤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지 않은가?》

(이 질문 자체가 기업자리득률과 리윤률을 혼동하고있으며 또 리윤률이 리자 및 기업자리득의 공통의 원천이라는것을 간과하고있다. 리자률은 리윤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수 있으나 기업자리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오버스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첫째로 실업가들은 자기의 리윤을 대부분 삼켜버리는 할인률을 지불하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사업을 정지할것이다.》

(그렇다, 만일 그들이 파멸당하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그들이 할인률을 지불하는것은 그들의 리윤이 높은 동안에는 그들이 할인을 원하기때문이며 리윤이 낮은 때에는 그들이 할인을 필요로 하기때문이다.)

《할인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수형을 할인받는가?…보다 큰 자본을 얻으려고 원하기때문이다.》

(그만두어라! 그것은 자기의 고정된 자본의 화폐로서의 환류를 앞당기고 자기들의 사업의 정지를 모면하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그들은 만기가 된 지불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본의 증대를 요구하는것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든가 또는 순조롭지 않더라도 타인의 자본으로 투기하는 경우뿐이다. 할인은 결코 단순히 사업확장만을 위한 수단인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는 보다 큰 자본에 대한 지휘권을 얻으려 하는가? 이 자본을 사용하려고 하기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는 이 자본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리익이 나기때문이다. 그러나 할인료가 그의 리윤을 삼켜버린다면 그에게는 리익이 나지 않을것이다.》

이 의기양양한 리론가는 수형은 단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만 할인되는것이고 사업은 리익이 나기때문에 확장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첫째 전제는 그릇된것이다. 보통의 실업가가 할인받는것은 자기의 자본의 화폐형태를 앞당기는것에 의하여 재생산과정의 류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이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자본을 획득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는 신용을 자기가 받는 신용에 의하여 상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사업을 신용에 의하여 확장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수형의 할인은 아무런 쓸모도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할인은 다만 이미 자기의 수중에 있는 화폐자본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는것에 불과하기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더 장기적인 고정대부를 받는 편을 택할것이다. 물론 신용사기군은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기적인 사업으로 다른 사기적인 사업을 덮어가리기 위하여 자기의 공수형을 할인시킬것이다. 리윤을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타인의 자본을 자기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할것이다.

오버스턴씨는 그와 같이 할인을 추가자본의 차입과(자본을 대표하는 수형의, 현금화폐로의 전화와가 아니고) 동일시한 다음에 난제에 봉착하자 즉시로 퇴각한다.

(제3730호, 질문) 《상인들은 일단 사업에 손을 대게 되면 리자률은 일시 상승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은 부득이 자기들의 업무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오버스턴) 《어떤 한 거래에서 어떤 사

람이 높은 리자률로가 아니라 보다 낮은 리자률로 자본의 처분권을 입수할수 있게 된다면 사태를 이 제한된 관점에서 보는 한에서는 그것이 그에게 유쾌한 일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오버스턴씨가 지금 갑자기 자기의 은행자본만을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에게서 수형을 할인받는 사람을 자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한다면—그 사람의 자본이 상품형태로 존재한다는 리유로 또는 그 사람의 자본의 화폐형태가 수형이고 이 수형을 오버스턴씨가 다른 화폐형태로 전화시킨다는 리유로—그것은 하나의 제한없는 관점이다.

(제3732호) 《1844년의 은행법에 관련하여 리자률과 잉글랜드은행의 금저장과의 대략적인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말해줄수 없겠는가? 잉글랜드은행에 있는 금이 900만 내지 1,000만에 달하였을 때는 리자률은 6% 내지 7%였으며 또 금이 1,600만이였을 때는 리자률은 약 3% 내지 4%였다고 말하는것은 옳은가?》

(이 질문자는 잉글랜드은행에 있는 금의 량에 의하여 영향되는 한에서의 리자률을, 자본의 가치에 의하여 영향되는 한에서의 리자률로써 설명하도록 오버스턴에게 강요하려고 한다.)

《그렇다고는 말할수 없다…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1844년의 대책보다도 일층 더 엄격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금저장이 크면 클수록 리자률이 낮다는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견지로부터 일에 착수하여 금저장을 무한한 액으로까지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그 경우에는 우리는 리자률령으로 인하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질문자 케일리는 이 서투른 말재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제3733호)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500만의 금이 잉글랜드은행에 반환된다면 다음 6개월간에 금저장은 약 1,600만에 달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가령 이렇게 되여 리자률이 3% 내지 4%까지 저하한다면 그 경우에 리자률의 저하는 사업의 심한 축소때문에 생긴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수 있겠는가?—내가 말한것은 리자률의 저하가 아니라 리자률의 최초의 심한 상승은 사업의 대확장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일리가 말하고있는것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즉 리자률의 상승이 금저장의 수축과 함께 사업확장의 징후라면 리자률의 저하는 금저장의 확장과 함께 사업수축의 징후가 아닐수 없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오버스턴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

(제3736호. {질문}) 《당신 〔원문에는 언제나 각하로 되여있다〕 이 말한것은 화폐는 자본을 얻기 위한 도구라는것이라고 생각된다.》

(화폐를 도구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틀린것이다. 화폐는 자본의 **형태**이다.)

《금저장〔잉글런드은행의〕이 감소하는 경우에 큰 곤난은 반대로, **자본가들**이 화폐를 얻을수 없다는데 있지 않은가?—〔오버스턴〕그런것이 아니다. 화폐를 얻으려고 하는것은 자본가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가가 아닌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그들은 화폐를 얻으려고 하는가? …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가가 아닌 사람들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화폐에 의하여 자본가의 자본에 대한 지배권을 손에 넣으려 하기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는 제조업자나 상인은 자본가가 아니라는것 그리고 자본가의 자본은 단지 화폐자본뿐이라는것을 솔직하게 언명하고있다.

(제3737호)《그렇다면 수형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자본가가 아닌가?—수형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자본가일수도 있고 자본가가 아닐수도 있다.》

여기에서 그는 말문이 막히고있다.

그다음에 그는 상인들의 수형은 그들이 판매하였거나 배에 실은 상품을 대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는 이러한 수형이 상품의 가치를 대표하는것은 은행권이 금을 대표하는것과 마찬가지라는것을 부인한다(제3740, 3741호). 이것은 좀 파렴치한 일이다.

(제3742호)《화폐를 얻는것이 상인의 목적이 아닌가?—아니다. 화폐를 얻는것은 수형을 발행할 때의 목적이 아니다. 화폐를 얻는것은 수형을 할인받을 때의 목적이다.》

수형을 발행하는것은 상품을 신용화폐의 한 형태로 전화하는것이며 수형을 할인하는것은 이 신용화폐를 다른 신용화폐 즉 은행권으로 전화하는것이다. 여하간 오버스턴씨는 여기에서 할인의 목적이 화폐를 얻는것임을 인정한다. 이때까지는 그가 자본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화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추가자본을 얻기 위해서만 할인을 하게 한것이다.

(제3743호)《당신의 진술대로 한다면 1825년, 1837년 및 1839년에 일어난 공황의 압박하에서 실업계의 큰 소원은 무엇인가? 그들의 목적은 자본을 얻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정지불화폐를 얻는것인가?—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본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신용결핍이 일어나고있기대문에, 또 자기들의 상품을 가격보다 싸게 팔아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앞으로 제시된 만기수형을 위한 지불수단을 얻는것이다. 그들 자신이 전혀 자본을 가지고있지 않다면 그들은 지불수단과 동시에 당연히 자본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등가없이 가치를 얻기때문이다. 화폐 그 자체에 대한 요구는 항상 가치를 상품 또는 채권의 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환하려고 하는 소원에 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 공황의 경우를 도외시하더라도 자본의 차입과 할인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며 할인은 다만 화폐청구권이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즉 현실적화폐로 전화되는것을 실현하는데 불과하다.

{나—편집자—는 여기에서 몇마디를 삽입하려고 한다.

노먼의 경우에도 로이드 오버스틴의 경우에도 은행업자는 언제나 《자본을 선대하는》 자로서 나서고 그의 고객은 그로부터 《자본》을 요구하는자로서 나선다. 레컨대 오버스틴은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은행업자에게서 수형을 할인받는것은 《그가 **자본**을 얻으려고 하기때문이며》(제3729호) 또 만일 이 사람이 《**자본에 대한 처분권**을 낮은 리자률로 얻을 수 있다》(제3730호)면 그것은 그에게 유쾌한 일이다고. 《화폐는 **자본**을 얻기 위한 도구이다》(제3736호). 또 공황때에는 실업계의 큰 소원은 《**자본**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것》(제3743호)이다. 자본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로이드 오버스틴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것만은 분명하다. 즉 오버스틴은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주는것을 자본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고객이 아직 가지고있지 않은 자본이 선대되는것이며 고객이 지금까지 지배하고있었던것에 대한 추가라고 말하는것이다.

은행업자는 화폐형태로 리용할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분배자—대부라는 형태로서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도

습관이 되고있으므로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화폐를 넘겨주는 경우의 모든 기능이 대부인것처럼 생각된다. 그가 지불하는 모든 화폐는 그에게는 선대로서 나타난다. 만일 화폐가 직접 대부에 투하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옳다. 화폐가 수형할인에 투하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 자신에게는 수형의 만기까지는 선대이다. 이리하여 그의 머리속에는 자기는 선대가 아닌 지불은 할수 없다는 관념이 굳어진다. 그것도 그 선대라는것은 결코 리자 또는 리윤을 얻을 목적에서의 어떠한 화폐투하도 경제학적으로는 개인의 자격으로서의 그의 화폐소유자가 기업자의 자격으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대라고 간주된다는 단순히 그러한 의미에서의 선대가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어떤 금액을 대부의 형태로 넘겨준다면 고객이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자본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특정된 의미에서의 선대인것이다.

이 관념이야말로 은행사무실로부터 정치경제학으로 옮겨져서 어떤 착잡한 론쟁문제 즉 은행가가 현금화폐로 자기의 고객의 처분에 맡기는것은 자본가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화폐, 류통수단, 통화인가 하는 문제를 일으켰던것이다. 이—근본적으로는 간단한—론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은행의 고객의 립장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이 은행의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여 무엇을 얻는가 하는것이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단지 그의 개인적신용만으로 대부를 승락한다면 사태는 명백하다. 그는 종래로 사용하던 자기의 자본에 대한 추가로서 일정한 가치량의 선대를 무조건적으로 받는다. 그는 그 선대를 화폐형태로 받는다. 따라서 화폐를 받을뿐만이 아니라 화폐**자본**도 받는다.

만일 그가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선대를 받는다면 이것은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화폐가 그에게 지불되였다는 의미에서의 선대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의 선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도 역시 자본을 대표하는것이며 그것도 선대보다 더 큰 액을 대표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받는자는 그가 담보로 제공하는것보다도 적은 자본가치를 받는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추가자본의 취득인것이 아니다. 그가 이 거래를 하는것은 자본이 필요하기때문이 아니고—자본은 그가 이미 자기의 유가증권으로 가지고있다—화폐가 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화폐**의 선대는 있으나 자본의 선대는 없다.

선대가 수형의 할인에 의하여 실시된다면 선대라는 **형태**도 사라진다. 거기에 있는것은 순수한 매매이다. 수형은 양도서명에 의하여 은행의 소유로 넘어가고 그 대신 화폐는 고객의 소유로 넘어간다. 고객측에서의 상환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고객이 수형이나 또는 류사한 신용수단으로 현금화폐를 구매한다면 그것이 선대가 아닌것은 그가 자기의 기타 상품, 례컨대 면화, 철, 곡물로 현금화폐를 구매하는 경우와 조금도 다름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의 선대라고 전혀 말할수 없다. 상인들사이의 매매는 모두 자본의 이전이다. 그리고 선대가 일어나는것은 자본의 이전이 호상적이 아니고 일방적이며 기한부적인 경우뿐이다. 그러므로 자본선대가 수형할인에 의하여 실시될수 있는것은 그 수형이 결코 판매된 상품을 대표하지 않는 융통수형인 경우뿐인데 이런 수형은 그 정체가 알리면 어떤 은행업자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할인거래에서는 은행의 고객은 자본으로도 화폐로도 선대를 받는것이 아니며 판매한 상품과의 교환으로 화

폐를 받는것이다.

이와 같이 고객이 은행에 자본을 요구하여 그것을 받는 경우는 그가 단지 화폐를 선대받든가 은행에서 구매하든가 하는 경우와는 극히 명확하게 다른것이다. 그리고 특히 로이드 오버스턴씨는 자기의 자금을 담보없이는 좀처럼 선대하지 않는것이 보통이였으므로(그는 만체스터에 있는 나의 상회[223]와 거래하는 은행업자였다) 아량이 있는 은행업자들이 자본이 부족한 공장주들에게 대량의 자본을 선대한다는 그의 미사려구는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것도 마찬가지로 명백하다.

그런데 제32장①에서도 맑스는 대체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상인과 생산자들이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수 있는 한에서는 단순히 **화폐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수요이다. 그렇지 않은 한에서는 즉 지불수단의 선대가 그들에게 **화폐형태**를 줄뿐만아니라 어떤 형태에 있는것이든 그들에게 부족되는 지불을 위한 **등가물**도 주는 한에서는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이다.》 그리고 또 제33장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신용제도가 발달하여 화폐가 은행의 수중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화폐를 선대한다. 이 선대는 단지 류통중에 있는 화폐와만 관계가 있을뿐이다. 그것은 **통화**의 선대인것이며 이 통화에 의하여 류통되는 자본의 선대인것은 아니다.》 이것을 틀림없이 알고있을 채프먼씨도 할인거래에 관한 상술한 견해를 확인한다(은행위원회, 1857년).

---

① 본권 583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본권 602페지를 보라.—편집자

《은행업자는 수형을 가지고있다. 은행업자는 **수형을 구매한것이다**》(증언, 제5139호).

여하간 우리는 제28장[①]에서 다시 한번 이 론제로 돌아갈 것이다.—F. 엥겔스}

(제3744호) 《당신은 자본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제로 어떻게 리해하는지 말하여줄수 없는가?》—{오버스턴의 대답} 《자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쓰이는 각종 상품들로써 이루어진다. 고정자본이 있고 류동자본이 있다. 당신의 선박, 당신의 도크, 당신의 부두는 고정자본이고 당신의 식량, 당신의 의류 등등은 류동자본이다.》

(제3745호) 《외국으로의 금류출은 영국에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그렇지 않다. 이 말에 합리적인 의미가 붙는 한에서는.》

(그다음에는 낡은 리카도적화폐론이 나온다.[224])

《사물의 자연적인 상태에는 세계의 화폐는 세계의 각국에 일정한 비률로 분배된다. 이 비률은 그러한 분배》{화폐의}《에 있어서는 일방의 어떤 한 나라이든 타방의 세계중의 모든 다른 나라들간의 거래가 단순한 물물교환으로 되는 그러한 비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에 때때로 영향을 주는 교란적인 사정이 있으며 만일 이러한 영향이 나타난다면 어떤 한 나라의 화폐의 일부분이 다른 나라로 류출한다.》—(제3746호) 《당신은 지금 화폐라는 말을 썼다. 내가 당신이 앞에서 한 말을 틀리지 않게 리해하였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본의 손실이라고 불렀다.—내가 무엇을 자본의 손실이라고 불렀는가?》—(제3747호) 《금의 류출을.—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당신이 금을 자본으로 취급한다면 금류출은 의심할바 없이 자본의 손실이다. 금류출은 세계화폐를 구성하는 귀금속의 일정한 부분을 내버리는것이다.》—(제3748호) 《당신은 이전에 할인률의 변동은 자본가치의 변동의 단순한 징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그렇게 말하였다.》—(제3749호) 《또 할인률

① 본권 516~518페지를 보라.—편집자

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은행의 금저장과 함께 변동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한 나라의 화폐의 량》(그가 말하는것은 여기에서는 현실적금의 량을 의미한다.)《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리자률의 변동은 극히 보잘것없는것이다…》

(제3750호)《그러면 당신이 말하려는것은 할인률이 보통의 률을 넘어서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그러나 여전히 다만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에 자본의 감소가 일어났다는것인가?—이 말의 어떤 의미에서의 감소이다. 자본과 그것에 대한 수요간의 비률이 변동된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수요의 증가때문인것이고 자본량의 감소때문인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자본이란 바로 화폐 또는 금이였으며 그리고 조금전에는 리자률의 상승이 사업 또는 자본의 축소가 아니라 그 확장으로 말미암아 생긴 높은 리윤률에 의하여 설명되였다.)

(제3751호)《당신이 여기에서 특히 념두에 두고있는 자본이란 무엇인가?—그것은 전적으로 누구나 필요로 하는 자본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것은 국민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유로 사용할수 있는 자본인데 만일 이 사업이 2배로 되면 그것을 계속하기에 필요한 자본에 대한 수요에 큰 증가가 생기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이 교활한 은행업자는 우선 사업을 2배로 하여놓고 그리고나서 그것을 2배로 하기에 필요한 자본에 대한 수요를 2배로 한다. 그는 언제나 다만 자기의 사업을 2배로 하기 위하여 로이드씨에게 보다 더 큰 자본을 요구하는 고객만을 보고있는것이다.)

《자본은 다른 어떤 상품과도 같은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이 로이드씨에 의하면 바로 상품의 총체 이외의 다른 어떤것도 아니다.) 자

본은 수요공급의 여하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한다.》

(따라서 상품은 두번 가격이 변동한다. 한번은 상품으로서, 또 한번은 자본으로서.)

(제3752호)《할인률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은행의 금고안에 있는 금량의 변동과 관련되여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자본인가?—그런것이 아니다.》—(제3753호)《당신은 잉글랜드은행에 큰 자본저장이 적립되여있은 동시에 할인률이 높았던 실례를 들수 있는가?—잉글랜드은행에 적립되는것은 자본이 아니라 화폐이다.》—(제3754호)《당신은 리자률은 자본의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당신이 말하는 자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잉글랜드은행에 큰 금저장이 있은 동시에 리자률이 높았던 실례를 들수 있는지 말하여 줄수 없는가?—잉글랜드은행에 금이 퇴적되여있고 그와 동시에 리자률이 낮다는것은 대단히 있음직한 일이다. (하하 그런가!)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가 적은 시기 (자본이라는것은 화폐자본을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 즉 1844년과 1845년은 번영기였다) 는 자본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구를 당연히 축적할수 있는 시기이기때문이다.》—(제3755호)《그러면 당신은 할인률과 잉글랜드은행의 금고에 있는 금량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생각하는가?—관련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원칙적인 관련이 아니다. (그러나 1844년의 그의 은행법은 잉글랜드은행에 보유하는 금의 량에 따라 리자률을 조절할것을 바로 이 은행의 원칙으로 삼은것이다) 그것들은 동시에 일어날지도 모른다.》—(제3758호)《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려는것은 화폐가 부족한 시기에 할인률이 높기때문에 이 나라의 상인들이 당하는 곤난은 화폐를 얻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자본을 얻는데 있다는것인가?—당신은 두가지 일을 혼동하고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그러한 형태에서 혼합하지는 않는다. 곤난은 자본을 얻는데 있지만 또 화폐를 얻는것도 역시 곤난하다…화폐를 얻는 곤난과 자본을 얻는 곤난은 동일한 곤난을 그 과정의 각이한 두 단계에서 본것이다.》

여기에서 구실은 또다시 막힌다. 제1의 곤난은 수형을

할인받는것 또는 상품담보로 선대를 받는것이다. 이것은 자본 또는 자본의 상업적가치기호를 화폐로 전화하는 곤난이다. 그리고 이 곤난은 특히 높은 리자률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화폐를 받고나면 그다음에 제2의 곤난은 어디에 있는가? 지불하는것만이 문제라면 자기의 화폐를 내놓는것을 곤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또 구매가 문제라면 공황기에 상품을 구입하는데 곤난을 느낀 사람이 있겠는가? 또 이것이 곡물, 면화 등등이 등귀하고있는 특별한 경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곤난은 화폐자본의 가치 즉 리자률에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에만 나타날수 있을따름이다. 그리고 이 곤난은 그 사람이 이제는 상품을 구매할수 있는 화폐를 가지고있다는것으로 말미암아 극복되고있는것이다.

(제3760호)《그러나 할인률이 높은것은 화폐를 얻는 곤난을 증가하는것이 아닌가?—그것은 화폐를 얻는 곤난이 증가하는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화폐를 얻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다만 자본을 얻는 곤난이 증대가 개화한 상태의 복잡한 제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형태에 있을뿐이다.》

(그런데 이 형태가 은행가의 주머니에 리윤을 가져오는 것이다.)

(제3763호){오버스턴의 대답}《은행업자는 한편으로는 예금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금을 **자본의 형태로**…사람들의 수중에 맡기는것에 의하여 그것을 리용하는 중개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드디여 **그**가 무엇을 자본으로 리해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는 화폐를 《맡기는》것에 의하여, 보다 덜 완곡하게 말하면 리자를 받고 대부하는것에 의하여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이전에 오버스턴씨는 할인률의 변화는 잉글랜드은행의 금저장액 또는 화폐의 현재량의 변화와 본질적인 련관에 있는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동시에 일어나는것이라고 말한바 있는데 그후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고있다.

(제3805호)《국내의 화폐가 류출로 말미암아 감소되면 화폐의 가치는 증대하므로 잉글랜드은행은 이러한 화폐가치의 변동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가치의 변동에, 바꾸어말하면 리자률의 변동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상품과 비교한, **화폐로서의** 화폐의 가치는 여전히 동일하기때문이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잉글런드은행이 리자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제3819호)《나는 이 두가지를 결코 혼동하지 않는다.》

즉 화폐와 자본을 혼동하지 않는다는것인데 그것은 그가 이 두가지를 결코 구별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리유에서이다.

(제3834호)《나라의 생활필수품을 위하여 (1847년에 곡물을 위하여)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또 **사실상 자본이였던** 거대한 금액.》

(제3841호)《할인률의 변동은 의심할바 없이 금저장고(잉글랜드은행의)의 상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저장고는 국내에 있는 화폐량의 증감의 지표이기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화폐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비례하여 화폐의 가치는 저하 또는 상승하고 잉글랜드은행의 할인률은 그것에 적응할것이다.》

그리하여 오버스턴은 자기가 제3755호에서 단호하게 부인한것을 여기에서는 시인한다.

(제3842호)《량자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생긴다.》

즉 잉글랜드은행의 발행부에 있는 금량과 이 은행의 은행부에 있는 은행권준비고사이에서 관련이 생긴다. 여기에서 그는 리자률의 변동을 화폐량의 변동으로써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있는것은 틀린것이다. 국내의 류통화폐가 증가하기때문에 준비고가 감소할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이 증가되고 금속의 축장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리자률이 상승한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잉글랜드은행의 은행자본은 1844년의 은행법[212]에 의하여 제한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말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법률에 의하면 잉글랜드은행의 발행부와 은행부가 공통으로 가지고있는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제3859호)《높은 리윤률은 언제나 자본에 대한 큰 수요를 낳을것이다. 자본에 대한 큰 수요는 자본의 가치를 높일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드디여 오버스턴씨가 생각하고있는것과 같은 높은 리윤률과 자본에 대한 수요간의 관련을 알수 있다. 그런데 례컨대 1844년~1845년에 면방직공업에서 높은 리윤률이 일반적이였으나 그것은 면제품에 대한 수요는 컸는데 원면이 저렴하였기때문이며 또 계속 저렴하였기때문이다. 자본(앞에서 나온 진술에 의하면 오버스턴이 자본이라고 부르는것은 매 개인이 자기의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것이다)의 가치, 따라서 여기서는 원면의 가치는 제조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높은 리윤률은 많은 면제품제조업자들에게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화폐를 차입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것이다. 그것에 의하여 증대한것은

화폐자본에 대한 그들의 수요이고 그 이외의 어떤것에 대한 수요도 아니였다.

(제3889호)《금은 화폐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치도 종이가 은행권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제3896호)《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1840년에 적용한 론거, 즉 잉글랜드은행권의 류통고의 변동은 금저장고의 변동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론거를 포기하는것이라고 리해하여도 좋겠는가?—내가 그것을 포기하는것은…우리가 오늘날 알고있는 정도에서는 우리는 류통하고있는 은행권에 잉글랜드은행의 은행준비금가운데 있는 은행권도 첨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한에서이다.》

이것은 최상의것이다. 잉글랜드은행은 그가 보유하고있는 금의 액에 1,400만을 가한 금액의 지폐권을 발행할수 있다는 자의적인 규정은 물론 잉글랜드은행의 발행고가 금저장의 변동에 따라 변동한다는것을 필연적인것으로 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알고있는 정도》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잉글랜드은행이 이 규정에 따라 제조할수 있는(그리고 발행부가 은행부에 넘기는) 은행권의 량—이 금저장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잉글랜드은행의 발행부와 은행부사이의 류통은 잉글랜드은행의 벽밖에서의 은행권의 류통의 변동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 후자의 류통 즉 현실적인 류통은 이제는 은행당국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좋은것으로 되며 잉글랜드은행의 발행부와 은행부사이의 류통만이 결정적인것으로 되며 이 류통과 현실적인 류통과의 차이는 준비금에 나타난다. 이 은행내의 류통이 외계에 대하여 중요한것은 준비금이, 잉글랜드은행이 그 법정최고발행한도에 얼마나 접근하고있는가 그리고 이 은행의 고객들은 또 얼마만큼 은행부에서 받을수 있는가 하는것의 지표이라는 한에서만이다.

오버스턴의 불성실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례가 있다.

(제4243호) 《당신의 의견으로는 자본의 량은 근년에 우리가 할인률의 변동에서 본바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의 가치를 변동시킬만한 정도로 매달 변동하는가?—자본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의심할바 없이 단기간에도 변동할수 있다…만일 래일이라도 프랑스가 매우 큰 차관을 얻겠다고 발표한다면 그것은 의심할바 없이 곧 영국에서 **화폐의 가치 즉 자본의 가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것이다.》

(제4245호) 《프랑스가 그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갑자기 3,000만어치의 상품이 필요된다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다 과학적이며 보다 간단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본**에 대한 큰 수요가 일어날것이다.》

(제4246호) 《프랑스가 그 차관으로써 구매하려고 하는 **자본은 하나의** 사물이며 프랑스가 이것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화폐는 다른 하나의** 사물이다. 자체의 가치를 변동하는것은 **화폐**인가 아닌가?—우리는 또다시 이전 문제로 돌아가는데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이 위원회의 회의실보다도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연구하는것이 더 적합한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물러서는데 그러나 연구실로 물러서는것은 아니다.(84)

---

(84) 자본의 문제에서의 오버스턴의 개념혼란에 관한 보다 상세한것은 제32장 끝에 가서 서술한다.—[F. 엥겔스]

제 27 장

자본주의적생산에서의 신용의 역할

신용제도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말한것은 다음과 같다.

Ⅰ. 리윤률의 평균화를 매개하기 위하여 또는 전체 자본주의적생산이 립각하고있는 이 평균화의 운동을 매개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신용제도가 형성된다는것.

Ⅱ. 류통비의 감소.

1. 주요한 류통비의 하나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진 한에서의 화폐 그 자체이다. 화폐는 신용에 의하여 세가지 방식으로 절약된다.

A. 거래의 큰 부분에 화폐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것에 의하여.

B. 류통수단의 류통이 촉진되는데 의하여.(85) 이것은 부

---

(85) 《프랑스은행의 은행권평균류통고는 1812년에는 1억 653만 8,000프랑, 1818년에는 1억 120만 5,000프랑이였는데 화폐류통 즉 모든 수지총액은 1812년에는 28억 3,771만 2,000프랑, 1818년에는 96억 6,503만프랑이였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1818년의 류통활동과 1812년의 그것과의 비는 3:1이였다. 류통속도의 큰 조절기는 신용이다…화폐시장에 대한 격심한 압박이 왜 보통 충족된 류통과 일치하는가 하는것은 이것으로써 설명된다》(《통화리론론평》 65페지).— 《1833년 9월부터 1843년 9월까지의 사이에 대브리텐에서는 자기의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이 근 300개소가 나왔다. 그 결과로 은행권류통고가 250만이나 줄어들었다. 그것은 1833년 9월말에는 3,603만 5,244파운드였고 1843년 9월말에는 3,351만 8,544파운드였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스코틀랜드의

분적으로는 2에서 말하는것과 일치한다. 즉 한편으로는 이러한 촉진은 기술적이다. 다시말하면 소비를 매개하는 현실적 상품거래의 크기와 분량이 변하지 않는데 보다 적은 량의 화폐 또는 화폐기호가 동일한 복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은행업의 기술과 관련된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은 상품변태의 속도를 촉진하며 따라서 화폐류통의 속도도 촉진한다.

C. 지폐에 의한 금화의 대체.

2. 신용에 의하여 류통 또는 상품변태의, 나아가서는 자본의 변태의 개개의 단계를 촉진하고 따라서 또 재생산과정 일반을 촉진한다는것. (다른 한편으로 신용은 구매와 판매의 두 행위를 비교적 장기간 서로 분리시키고 따라서 투기의 기초로서 복무한다.) 준비금의 축소. 이것은 두 면으로부터 고찰할수 있다. 한 면으로는 통화의 감소로서, 다른 한 면으로는 자본중 부단히 화폐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의 축소로서 고찰할수 있다.(86)

Ⅲ. 주식회사의 형성. 이것에 의하여

1. 생산규모가 놀랄만큼 확장되며 개별자본으로서는 불가능하였던 기업이 나타났다. 동시에 종전에는 정부기업이였던 이러한 기업이 사회의① 기업으로 된다.

2. 그 자체로서 사회적생산방식에 립각하고 생산수단과 로동력의 사회적집적을 전제로 하는 자본이 여기에서는 직접

류통의 놀라운 활기는 잉글랜드에서라면 420파운드를 필요로 하는 화폐거래액을 스코틀랜드에서는 100파운드로써 처리할수 있게 한다》(우와 같은 책, 55페지. 이 마지막 서술은 업무의 기술적인 면에만 관계되는것이다).

(86) 《은행이 설립되기전에는 통화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액은 어느때나 현실적상품류통에 필요한것보다도 컸다》(《경제학자》, 1845년, 238페지).

---

① 여기에서의 《사회》, 《사회의》는 독일어원문으로 《Gesellschaft》, 《Gesellschaftlich》인데 《회사》, 《회사의》 뜻도 가지고있다.—편집자

개인자본에 대립하는 사회자본(직접 결합된 개인들의 자본)의 형태를 취하고 이러한 자본의 기업은 개인기업에 대립하는 사회①기업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 자체의 한계내에서 사적소유로서의 자본의 폐지이다.

3. 현실적으로 기능하고있는 자본가가 타인의 자본의 단순한 지배인, 관리인으로 전화하며 자본소유자는 단순한 소유자, 단순한 화폐자본가로 전화하는것. 그들이 취득하는 배당이 리자와 기업자리득을, 즉 총리윤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왜냐하면 지배인의 봉급은 일종의 기능로동의 단순한 로임이거나 또는 단순한 로임이여야 하며 이 로동의 가격은 다른 어떤 로동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로동시장에서 조절되기때문이다) 이 총리윤은 다만 리자의 형태로 즉 자본소유의 단순한 보상으로서만 취득된다. 이 자본소유가 이제는 현실적재생산과정에서의 기능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되는것은 지배인의 일신에 속하는 이 기능이 자본소유로부터 분리되는것과 전적으로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리윤은(이제는 이것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즉 차용자의 리윤에서 당연히 끌어내게 되는 리자뿐만아니라) 타인의 잉여로동의 단순한 취득으로서 나타나며 이 잉여로동은 생산수단이 자본으로 전화됨으로써, 즉 생산수단이 현실적인 생산자들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며 생산수단이 타인의 소유로서 우에는 지배인으로부터 아래는 맨 밑의 날품팔이군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들에 대립함으로써 발생한다. 주식회사에서는 기능은 자본소유와 분리되여있고 따라서 로동도 생산수단과 잉여로동의 소유와 완전히 분리되여있다. 자본주의적생

① 여기에서의 《사회》, 《사회의》는 독일어원문으로 《Gesellschaft》, 《Gesellschaftlich》인데 《회사》, 《회사의》 뜻도 가지고있다.—편집자

산의 최고도의 발전의 이 결과는 자본이 생산자들의 소유로, 그러나 이제는 개개의 생산자들의 사적소유로가 아니라 결합된 생산자들인 그들의 소유로, 직접적인 사회적소유로서의 소유로 재전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점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자본소유와 결합되여있는 재생산과정상의 모든 기능들이 결합된 생산자들의 단순한 기능으로, 사회적기능으로 전화하기 위한 통과점이다.

앞으로 더 나가기전에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다음과 같은 점을 더 지적하여두어야 하겠다. 즉 리윤은 여기에서는 순전히 리자의 형태를 취하므로 그러한 기업은 단순히 리자만 내는 경우에도 있을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리윤률의 저하를 저지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하여 비상히 큰 비률을 차지하는 이 기업들은 반드시 일반적리윤률의 평균화에 참가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맑스가 이상의것을 쓴 이래로 다 아는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2승 3승을 표시하는 새로운 산업경영형태들이 발전하였다. 오늘에는 모든 대산업령역에서 생산은 날로 더 빨리 증대할수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 증가된 생산물들을 위한 시장확장은 날로 더 완만해진다. 대공업이 수개월에 제조하는것을 시장은 수년이 걸려야 겨우 흡수할수 있다. 거기에 보호관세정책이 가해져서 그때문에 어느 공업국이나 다른 공업국에 대하여 특히 영국에 대하여 문호를 폐쇄하고 국내의 생산능력을 더욱 인위적으로 증대시킨다. 그 결과는 일반적인 만성적과잉생산, 낮아진 가격, 리윤의 저하, 지어는 리윤의 완전소멸이다. 요컨대 오래동안 칭찬을 받아온 경쟁의 자유도 드디여 종말에 달하여 그 공공연한, 체면없는 파산을 스스로 고하지 않을수 없다. 이 파산은 바로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한 부문의 대산업가들이 생산의 조절을 위하여 카르텔을 결성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위원회가 매개 기업이 생산하여야 할 량을 결정하고 받아들인 주문을 분배한다. 개별적경우에는 일시적이지만 국제카르텔까지도 나왔다. 례컨대 영국의 철생산과 독일의 철생산간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의 사회화의 형태도 아직 충분한것은 아니였다. 개별적회사들간의 리해의 대립은 너무나 빈번히 그 형태를 파괴하고 경쟁을 회복시켰다. 그리하여 생산규모가 그것을 허용한 몇개의 부문들에서는 이 기업부문의 총생산을 집중하여 통일적관리기관을 가진 **하나의** 큰 주식회사로 집중하게까지 되였다. 아메리카에서는 이것이 이미 여러번 실행되고있고 구라파에서는 지금까지의 최대의 실례는 《유나이테드 알카리트레스트》이다. 이것은 영국의 전체 알카리생산을 단 하나의 회사의 수중에 집중시켰다. 개개의—30개 이상의—공장의 이전 소유자들은 그들의 총투자의 사정가치를 주식으로 받았는데 그 총액은 약 500만파운드로서 이것은 트레스트의 고정자본을 표시한다. 기술상 관리는 종래의 사람들의 수중에 남아있으나 사업상 관리는 리사회의 수중에 집중되고있다. 약 100만파운드의 류동자본은 공중으로부터 모집되였다. 그러므로 총자본은 600만파운드이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전체 화학공업의 기초를 이루는 이 부문에서 경쟁이 독점에 의하여 대체되였고 전체 사회 즉 전 국민에 의한 장래의 수탈이 가장 만족스럽게 준비되고있다.—F. 엥겔스}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 그 자체내부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폐지이며 따라서 자기 자체를 폐기하는 모순인데 이 모순은 얼핏 보아도 명백히 새로운 생산형태로의 단순한 과도점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모순으로서 그것은 현상

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일정한 분야에서는 독점을 낳고 따라서 국가의 간섭을 요구한다. 그것은 새로운 금융귀족과 발기인, 창립자 및 유명무실한 리사의 모습으로서의 새로운 종류의 기생충들을 재생산하며 회사의 창립, 주식발행 및 주식거래에 관련된 사기와 기만의 전 체계를 재생산한다. 그것은 사적소유의 통제없는 사적생산이다.

Ⅳ. 주식제도—그것은 자본주의체계 그 자체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사적산업의 페기이며 그것이 확대되고 새로운 생산분야를 포착하는 정도에 따라 사적산업을 소멸한다—를 도외시하더라도 신용은 개개의 자본가들 또는 자본가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한계내에서 타인의 자본과 타인의 소유에 대한, 따라서 타인의 로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준다.(87) 자기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자본에 대한 지배권은 자본가에게 사회적로동에 대한 지배권을 준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소유하는 또는 소유한다고 세인이 생각하는 자본 그 자체는 다만 신용이라는 상부구조를 위한 기초로 될따름이다. 이것은 사회적생산물의 대부분이 경과하는 도매업에 특히 들어맞는다. 모든 척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내부에서 아직 다소간 시인되는 모든 변명리유는 여기에서는 사라진다.

---

(87) 례컨대 《타임스》 지에서 1857년과 같은 공황의 해[220]의 파산자표를 보고 파산자들의 자기재산과 그들의 부채액을 비교하여보라.—《참으로 자본과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투기시장에 대하여 아무런 실제적지식도 가지고있지 않는 사람들의 관념에 들어오는 모든것을 훨씬 릉가한다》(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79페지). 《자기의 본업을 위하여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있다는 평판이 있고 또 자기의 사업부문에서 큰 신용을 얻고있는 사람이 만일 그가 취급하는 상품들의 시세가 좋아진다는 락관적인 의견을 가지고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투기의 시초와 도중에 제반 사정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는 자기의 자본에 비하여 실로 막대한 액의 구입을 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136페지).—《제조업자나 상인 등은 모두 자기들의 자본을 훨씬 릉가하는 거래를 하고있다…자본은 오늘날은 어떤 상업적거래의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신용이 그 우에 세워지는 기초인것이다》(《경제학자》, 1847년, 1333페지).

투기적인 도매업자가 내걸고 모험하는것은 사회적소유이고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자본의 기원은 절약에 있다고 하는 문구도 역시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투기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절약할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례컨대 최근 프랑스전국이 빠나마운하사기군을 위하여 15억프랑을 절약한바와 같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빠나마운하사기[225]가 발생하기 웅근 20년전에 그 전체 모습이 정확히 서술되여있다.—F. 엥겔스〕 금욕에 대한 또 하나의 문구도 지금은 신용의 수단으로도 되는 그의 사치로 말미암아 직접 타격을 받는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보다 덜 발전된 단계에서는 아직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 관념들도 여기에서는 전혀 무의미하게 된다. 성공도 실패도 여기에서는 동시에 자본의 집중을 초래하고 따라서 최대의 규모에서의 수탈을 초래한다. 수탈은 여기에서는 직접적생산자들로부터 중소자본가들 자신에게까지 미친다.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출발점이다. 수탈의 실행은 이 생산방식의 목표이며 그것도 결국은 모든 개인들로부터의 생산수단의 수탈이다. 즉 생산수단은 사회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사적생산의 수단 및 사적생산의 생산물이 아니게 되며 이제는 오직 결합된 생산자들의 수중에 있는 생산수단이고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사회적생산물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회적소유일수 있을따름이다. 그러나 이 수탈은 자본주의체제 자체내부에서는 대립의 모습을 취하며 소수자에 의한 사회적소유의 취득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신용은 이 소수자에게 점점 더 순전한 모험가의 성격을 부여한다. 소유는 여기에서는 주식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그 운동과 이전은 순전히 취인소투기의 결과로 되며 여기서는 잔 고기들은 상어에게 삼키우고 양은 취인소 이리

에게 삼키운다. 주식제도내에는 이미 사회적생산수단이 개인적소유로서 나타나는 낡은 형태와의 대립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형태로의 전화 그 자체가 아직도 자본주의적 한계속에 국한되여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부와 사적부라는 부의 성격간의 대립을 극복하는것이 아니며 다만 이 대립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킬따름이다.

로동자들 자신의 협동조합공장[226]은 물론 어디서나 그 현실적조직으로서는 현존제도의 모든 결함을 재생산하고 또 재생산하지 않을수 없다 하더라도 낡은 형태내부에서 그 낡은 형태의 최초의 돌파인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로동간의 대립은 이 협동조합공장의 내부에서는 비록 처음에는 다만 조합으로서의 로동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자본가라는 형태, 즉 생산수단을 자기들 자신의 로동의 가치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형태에서이지만 이미 폐기되였다. 이와 같은 공장이 보여주는것은 물질적생산력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생산형태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한 생산방식에서 새로운 생산방식이 발전하여 형성되는가 하는것이다. 협동조합공장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서 생기는 공장제도가 없이는 발전될수 없었을것이며 또한 동일한 생산방식에서 생기는 신용제도가 없이도 발전될수 없었을것이다. 신용제도는 자본주의적개인기업이 점점 자본주의적주식회사로 전화하기 위한 주요기초를 이루고있는데 그것은 또한 다소간에 국가적인 규모에서 협동조합기업이 점점 확장하기 위한 수단도 제공한다. 자본주의적주식기업도 협동조합공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으로부터 련합적생산방식으로의 과도형태로서 간주되여야 할것인데 다만 전자에서는 대립이 소극적으로 후자에서는 적극적으로 폐기되고있을따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용제도의 발전을—그리고 이 제도에 포함되고있는, 자본소유의 잠재적페기를—주로 산업자본과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다음 장들에서는 신용을 리자부자본 자체와의 관련속에서 고찰한다. 즉 리자부자본에 대한 신용의 영향을, 또 그 경우에 신용이 취하는 형태를 고찰한다. 또한 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더 약간의 경제학상 특히 주의를 요하는것에 대하여 소견을 말하는것이 필요한것이다.

미리 다음과 같은것을 말해두려 한다.

신용제도가 과잉생산과 상업에서의 과도한 투기의 주요 공간으로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만 그 성질로 보아 탄력적인 재생산과정이 여기서는 극한까지 강행되기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강행되는것은 사회적자본의 큰 부분이 그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기때문이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소유자 자신이 가능하는 한 자기의 사적자본의 한계를 소심하게 타산하면서 하는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에 열중하기때문이다. 이리하여 다만 다음과 같은것이 명백히 될 뿐이다. 즉 자본주의적생산의 대립적성격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자본의 가치증식은 현실적이며 자유로운 발전을 오직 일정한 한계까지만 허용하며 따라서 실제로는 생산의 내재적인 속박과 제한을 이룬다는것, 이 제한은 부단히 신용제도에 의하여 타파된다는것뿐이다.(88) 따라서 신용제도는 생산력의 물질적발전과 세계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이러한것들을 새로운 생산형태의 물질적기초로서 일정한 높이에까지 발전시키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력사적사명이다. 동시에 신용은 이 모순의 폭력적폭발 즉 공황을 촉진하며 따라서 낡

(88) Th. 챠머스[《정치경제학…에 관하여》, 글라스고우판 1832년].

은 생산방식의 해체의 요소들을 촉진한다.

신용제도에 내재하는 이중적성격, 즉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동력인 타인의 로동의 착취에 의한 치부를 가장 순수하며 가장 거대한 도박과 사기 제도로 발전시키고 사회적부를 착취하는 소수자의 수를 점점 더 제한한다는 성격,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과도형태를 이룬다는 성격, 이중성이야말로 죤 로로부터 이사끄 뻬레르에 이르기까지의 신용의 주요선포자들에게 사기군이며 예언자라는 유쾌한 잡종적성격을 부여하는것이다.

제 28 장

류통수단과 자본. 투크와 풀라톤의 견해

통화와 자본과의 구별은 투크(89)나 윌슨 등이 하고있으

(89) 이것과 관련한 투크로부터의 인용은 390①페지에서는 독일어로 발취하여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원문으로 보여주자. 《The business of bankers, setting aside the issue of promissory notes payable on demand, may be divided into two branches, corrseponding with the distnction pointed out by Dr. (Adam) Smith of the transactions between dealers and dealers, and between dealers and consumers. One branch of the bankers' business is to collect *capital* from those who have not immediate employment forit, and to distribute or transfer it to those who have. The other brancn is to receive deposits of the *incomes* of their customers, and to pay out the amount, as it is wanted for expenditure by the latter in the objects of their consumption…the former being a circulation of *capital*, the latter of *currency.*》[《은행업자들의 업무는 요구불약속수형의 발행을 제외하면 모두 두 부문으로 분할할수 있는데, 이것은 (애담) 스미스박사에 의하여 지적된 상인들 상호간에 거래와 상인과 소비자간의 거래와의 구별에 상응하는것이다. 은행업자의 업무의 한 부문은 자본을 그 직접적용도를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수집하는것이며 또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본을 분배 또는 이전하는것이다. 다른 부문은 그들의 고객들의 수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예금을 받는것이며 또 고객들이 그 소비목적물에 대한 지출을 위하여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것이다…전자는 자본의 류통이고 후자는 통화의 류통이다》](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36페지). 전자는 《한편에 있어서의 자본의 집적이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의 자본의 분배》이며 후자는 《그 지방의 지방적목적을 위한 류통의 관리》이다(우와 같은 책, 37페지).—킨니어는 다음 개소에서 정확한 견해에 훨씬 더 접근하고있다. 《화폐는 두개의 근본적인 다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① 본권 454~455페지를 보라.—편집자

며 그 경우에 화폐, 화폐자본일반으로서의 류통수단과 리자부자본(영어에서 말하는 moneyed capital)으로서의 류통수단과의 구별이 뒤죽박죽으로 혼동된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귀착한다.

류통수단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수입의 지출**을 매개하고 따라서 개인저소비자와 소매상인사이의 거래를 매개하는 한에서는 **주화**(화폐)로서 류통한다. 이 소매상인의 범주에는 소비자에게—즉 생산적소비 또는 생산자와 구별되는 개인적 소비자에게—판매하는 모든 상인을 넣을수 있을것이다. 여기에서 화폐는 비록 부단히 **자본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주화의 기능에서 류통한다. 한 나라에서의 화폐의 일정한 부분은 언제나 이 기능에 충당된다. 비록 이 부분은 부단히 변동하는 개개의 화폐들로 이루어지는것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화폐가 **자본의 이전**을 매개하는 한에서는 구매수단(류통수단)으로서 매개하든 지불수단으로서 매개하든 그것은 **자본**이다. 따라서 이 화폐를 주화로부터 구별하는것은 구매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아니고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아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사이에 있어서도 그들이 서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한에서는 화폐는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할수 있기때문이며 또 상인과 소비자사이에서도 신용이 부여되여 수입이 우선

상인들사이의 교환수단으로서는 화폐는 자본의 이전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다. 즉 화폐로서의 일정한 액의 자본과 상품으로서의 같은 액의 자본과의 교환이다. 그러나 로임의 지불이나 상인과 소비자사이의 매매에 투하되는 화폐는 자본이 아니라 수입이다. 즉 사회 전체의 수입중 일상적지출에 사용되는 부분이다. 이 화폐는 부단한 일상적인 사용가운데서 류통되고있다. 그리고 다만 이 화폐만을 엄밀한 의미에서 류통수단(currency)이라고 부를수 있는것이다. 자본의 선대는 오직 은행이나 기타의 자본소유자의 의지에 달렸다.—왜냐하면 차용자는 언제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류통수단의 량은 화폐가 일상적지출의 목적으로 류통하는 사회 전체의 수요에 달렸다》(J. 킨니어 《공황과 통화》, 1847년 런던판 3~4페지).

소비되고 그다음에 지불이 수행되는 한에서는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구별은 둘째 경우에도 이 화폐가 일반, 즉 판매자를 위하여 자본을 보상할뿐 아니라 타방, 즉 구매자에 의하여서도 자본으로서 지출되고 선대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구별은 사실상 **수입의 화폐형태**와 **자본의 화폐형태**와의 구별인것이며 통화와 자본과의 구별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량적으로 보아 화폐의 일정한 부분이 상인들사이의 매개물로서도 **류통하며** 따라서 화폐는 **두** 기능에 있어서 동등하게 **통화**이기때문이다. 그런데 투크의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혼란이 섞여드는것이다.

1) 기능상의 제 규정의 혼동.

2) 두 기능을 합쳐서 류통하는 화폐의 량에 관한 문제의 혼입.

3) 두 기능에서 류통하는,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두 분야에서 류통되는 류통수단량의 호상간의 상대적비률에 관한 문제의 혼입.

1)에 대하여. 화폐는 일방의 형태에서는 통화(currency)이고 타방의 형태에서는 자본이라는 기능상의 제 규정의 혼동. 화폐가 수입의 실현을 위하여서이든 자본의 이전을 위하여서이든 일방 또는 타방의 기능에서 복무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매매 또는 지불에서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화폐가 그 지출자 또는 수취자의 계산상에서 주어지는 일보 더 나아간 규정, 즉 그것이 그에게서 자본을 표시하는가 하는 규정은 이 점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으며 이것은 또 이중으로 나타난다. 두 분야에서 류통하는 화폐의 종류는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화폐쪼각 례컨대 5파운드의 은행권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행하고 두 기능을 번갈아 수행한다. 이것은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때문에서도 불가피하다. 그것은 즉 소매상인이 자기의 자본에 화폐형태를 부여하는데는 그가 자기의 구매자로부터 받는 주화의 형태에 의할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보조주화는 그 류통중심을 소매상업의 령역에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소매상인은 거스름돈의 지불을 위하여 부단히 그것을 필요로 하고 또 자기의 고객들로부터 받는 지불에서 그것을 부단히 회수한다. 그러나 그는 화폐 즉 가치척도인 금속제주화를 따라서 영국에서는 파운드화도 받으며 또 은행권 특히 소액은행권 례컨대 5파운드와 10파운드의 은행권까지 받는다. 그는 이러한 금화와 은행권을 또 남아있는 보조주화도 매일 또는 매주 거래은행에 예금하고 자기의 은행예금담보의 지도수형에 의하여 자기의 구입액을 지불한다. 그러나 이 금화와 은행권은 역시 부단히 소비자로서의 전체 공중에 의하여 그 수입의 화폐형태로서 은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례컨대 소액화폐가 임금지불을 위하여 공장주들에 의하여) 출금되여 부단히 소매상인들에게로 환류하는데 이리하여 그것들은 이 소매상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본의 일부분을,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수입의 일부분도 새로 실현한다. 이 뒤의 사정은 중요한것인데 투크는 이것을 전혀 간과한다. 오직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 투하될 때에만 즉 재생산과정의 시초에서만(제2부 제1편[227]) 자본가치는 순수하게 자본가치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생산된 상품속에는 자본이 포함되여있을뿐만아니라 이미 잉여가치도 포함되여있기때문이다. 그 상품은 자본 자체일뿐아니라 이미 형성된 자본이며 수입원천과 합체되여있는 자본이다. 따라서 소매상인이 자기에게로 환류하는 화폐와의 교환으로 넘겨주

는것 즉 그의 상품은 그에 대하여서는 자본 플라스 리윤이며 자본 플라스 수입이다.

그러나 또 류통화폐는 소매상인에게 환류하는것에 의하여 그의 자본의 화폐형태를 회복한다.

따라서 수입의 류통으로서의 류통과 자본의 류통으로서의 류통과의 구별은 통화와 자본과의 구별로 하는것은 전혀 부당하다. 투크의 이러한 말투는 그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업자의 립장에 서있다는데로부터 나온다. 어느때나 공중의 수중에 있으며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은행권의 액(그것을 구성하는 은행권은 끊임없이 교체된다 하더라도)은 그에게는 종이와 인쇄 이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신앞으로 발행한, 류통하는 채무증서(수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화폐를 가져오며 따라서 그의 자본의 증식의 수단으로서 복무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자본과는 다른것이며 그 자신의 자본도 아니고 차입한 자본도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통화와 자본과의 독특한 구별이 생기는데 이 구별은 개념규정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더구나 여기에서 투크에 의하여 주어지고있는 개념규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규정성의 차이—화폐가 수입의 화폐형태로서 기능하는가 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기능하는가 하는 차이—는 우선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성격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화폐는 그것이 전자의 기능을 수행하든 후자의 기능을 수행하든간에 이 성격을 보존한다. 확실히 화폐는 그것이 수입의 화폐형태로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이 진정한 류통수단(주화,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것은 이러한 매매는 분산적으로 진행되기때문이고 또 수입을 지출하는 사람의 다

수를 차지하는 로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신용으로 구매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류통수단이 자본의 화폐형태인 상업계의 거래에서는 일부분은 집적에 의하여 일부분은 우세한 신용제도에 의하여 화폐는 주로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와 구매수단(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의 구별은 화폐자체에 속하는 구별인것이고 화폐와 자본과의 구별인것은 아니다. 소매상업에서는 동화와 은화가 보다 더 많이 류통하고 도매상업에서는 금화가 보다 더 많이 류통한다고 하여 그때문에 일방에 있는 은화나 동화와 타방에 있는 금화와의 구별이 통화와 자본과의 구별인것은 아니다.

2)에 대하여. 두 기능을 합쳐서 류통하는 화폐의 량에 관한 문제의 혼입.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든 지불수단으로서든 류통하는 한에서는—두 분야중 어디서든간에 또 기능이 수입의 실현인가 자본의 실현인가에 관계없이 화폐의 류통량에 대하여는 이전에 단순한 상품류통을 고찰할 때에 제1부 제3장 제2절 b에서 전개한 법칙이 적용된다. 류통속도, 즉 어떤 일정한 기간에 동일한 화폐쪼각이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반복하는 회수, 동시적으로 수행되는 매매 또는 지불의 량, 류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 끝으로 동일한 시간에 결제되여야 할 지불차액, 이러한것들이 두 경우에 다 류통하는 화폐의 량, 통화의 량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화폐가 지불자 또는 수취자에 있어서 자본으로 표시하는가 수입을 표시하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으며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류통하는 화폐의 량은 간단히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으로서의 그것의 기능에 의하여 규정된다.

3)에 대하여. 두 기능에서 류통하는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두 분야에서 류통하는 류통수단량의 상대적비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두 류통분야에는 내적련관이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지출되여야 할 수입의 량이 소비의 크기를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 생산 및 상업에서 류통하는 자본량의 크기와 재생산과정의 규모와 속도를 나타내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정들이 두 기능 또는 두 분야에서 류통하는 화폐량에 대하여 또는 영국사람들의 은행용어로 말하면 통화의 량에 대하여는 다른 작용을 하며 지어는 반대방향으로도 작용한다. 그리고 이 사실이 투크가 하고있는 통화와 자본과의 어리석은 구별에 새로운 근거를 준다. 《통화원리》[218]의 제씨가 각이한 두 사물을 혼동하고있다는 사정은 결코 그 사물들을 각이한 개념들로서 서술하기 위한 리유로 되는것은 아니다.

번영기 즉 재생산과정이 비상히 팽창하고 속도가 빨라지고 활기에 넘치는 시기에는 로동자들은 완전히 취업한다. 대개의 경우에는 임금의 인상도 일어나며 상업순환의 다른 시기에 임금이 평균수준이하로 내려가는것을 어느 정도 메운다. 그와 동시에 자본가들의 수입은 크게 늘어난다. 소비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상품가격도 통례로 오른다. 적어도 결정적사업부문들에서는 오른다. 그 결과 류통하는 화폐의 량은 적어도 일정한 한계내에서라고 하는것은 류통속도의 증대가 그 자체 또는 류통수단량의 증대를 제한하기때문이다. 사회적수입중 로임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시초에는 산업자본가에 의하여 가변자본의 형태로 선대되며 그리고 언제나 화폐형태로 선대되기때문에 번영기에는 그 류통을 위하여 보다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폐를 한번

은 가변자본의 류통에 필요한 화폐로서 계산하고 또 한번은 로동자들의 수입의 류통에 필요한 화폐로서 계산하는 식으로 두번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로동자들에게 임금으로서 지불되는 화폐는 소매거래에 지출되며 그것이 보다 작은 순환을 그리면서 또 여러가지 중간거래들을 매개한후에 소상인의 예금으로서 거의 매주마다 은행으로 돌아온다. 번영기에는 산업자본가들에 있어서 화폐의 환류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따라서 화폐융통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증대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다 많은 로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들의 가변자본의 류통을 위하여 보다 많은 화폐를 요구하기때문에 증대하는것은 아니다.

총체적인 결과는 번영기에는 수입의 지출에 쓰이는 류통수단의 량이 결정적으로 증대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이전에 필요한, 따라서 자본가들사이에서만 필요한 류통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호경기는 동시에 신용이 가장 탄력적이고 가장 용이한 시기이다. 자본가들사이에서의 류통의 속도는 직접 신용에 의하여 조정되며 따라서 제지불의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류통수단의 량, 그리고 지어는 현금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류통수단의 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증대할수 있으나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즉 재생산과정의 팽창과 비교하면 감소한다. 한편으로는 보다 큰 액의 제 지불이 전혀 화폐의 매개없이 청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정이 더욱 활발하여짐으로써 동일한 화폐량이 구매수단으로서도 지불수단으로서도 보다 빨리 운동하게 된다. 동일한 화폐량이 보다 다수의 개별적자본의 환류를 매개한다.

총체적으로 그러한 시기에는 화폐류통은 충족하게 나타

난다. 비록 제Ⅱ부분(자본의 이전)은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수축하고 제Ⅰ부분(수입의 지출)은 절대적으로 확대되지만.

환류가 상품자본의 화폐에의 재전화, G—W—G′를 나타낸다는것은 이미 재생산과정을 고찰할 때에 제2부 제1편에서 본바이다. 신용은 화폐형태로서의 환류를 산업자본가에 있어서도 상인에 있어서도 현실적환류의 시점에는 관계없는것으로 만든다. 산업자본가나 상인은 모두 신용으로 판매한다. 따라서 그의 상품은 그에게 있어서 화폐로 재전화되기전에 즉 그 자신에게로 화폐형태로 환류하기전에 양도되고있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신용으로 구매한다. 그리하여 그의 상품의 가치는 그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화폐로 전화되기전에, 상품가격이 만기가 되여 지불되기전에 이미 생산자본으로나 상품자본으로 재전화된다. 그러한 번영기에는 환류는 용이하게, 순조롭게 진행된다. 소매상인은 도매상인에게, 도매상인은 제조업자에게, 제조업자는 원료수입업자에게 등등으로 확실히 지불한다. 급속하고 확실한 환류라는 외관은 그것의 현실성이 없어진 후에도 장기간 일단 작용하기 시작한 신용에 의하여 유지된다. 왜냐하면 신용환류가 현실적 환류를 대신하기때문이다. 은행들은 자기의 고객들이 화폐보다도 수형을 더 많이 불입하게 되면 즉시 위험을 느끼기 시작한다. 앞에서—398페지①에서—인용한 리버풀은행의 리사의 증언을 참조하라.

여기에 내가 이전에 지적한것을 또 하나 삽입하여야 하겠다. 《신용이 우세한 시기에는 화폐류통의 속도는 상품의 가격보다도 급속히 증대한다. 그러나 신용이 감퇴됨에 따라

① 본권 465~466페지를 보라.—편집자

상품의 가격은 류통의 속도보다 더디게 저하된다》(《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83~84페지[228]).

공황기에는 사태는 반대로 된다. 제1의 류통은 수축되고 물가는 내리며 로임도 내린다. 취업로동자의 수는 제한되고 거래의 량은 감소된다. 이와는 반대로 제2의 류통에서는 신용이 감퇴됨에 따라 화폐융통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곧 뒤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다음의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즉 재생산 과정의 정체와 동시에 나타나는 신용의 감퇴에 있어서는 제1의 류통, 즉 수입의 지출에 필요한 류통량을 감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2의 류통, 즉 자본의 이전에 필요한 류통량은 증가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명제가 풀라톤 및 기타 사람들에게 의하여 제기된 다음과 같은 명제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 하는것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와 추가적류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전혀 다른것이며 량자가 함께 결합되는 일은 그리 없다.》(90)

---

(90) 《A demand for capital on loan and a demand for additional circulation are quite distinct things, and not often found associated》(풀라톤[《통화조절론》 1845년 런던판]82페지, 제5장의 표제).—《화폐융통에 대한(즉 자본의 대부에 대한) 수요는 추가적류통수단에 대한 수요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지어는 량자가 자주 결합되여있다고 생각하는것까지도 참으로 큰 잘못이다. 어느 수요나 특히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밑에서 발생하는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서로 대단히 다른것이다. 모든것이 번영하고 로임이 높고 물가가 오르고 공장은 번망한 때, 이러한 때에는 보다 크고 보다 빈번한 지불을 할 필요성과 결부된 추가적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류통수단의 추가적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보통이다. 그런데 리자가 상승하고 자본의 선대를 받으려는 압력이 잉글랜드은행에 가해지는것은 주로 상업순환의 보다 진척된 단계에서의 일이며 곤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환류가 지연되는 때의 일이다. 잉글랜드은행은 통례로 은행권 이외의 수단으로는 자본을 선대하지 않는다는것, 따라서 은행권의 발행을 거부한다는것은 융자를 거부한다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융자가 일단 제공되면 모든것은 시장의 필요에 적응한다. 대부는 그대로 남고 류통수단은 사용되지 않게 되면 발행자에게로 돌아온다. 따라서 의회보고서를 아주 피상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누구나 확신할수 있듯이 잉글랜드은행의 수중에 있는 유가증권의

우선 명백한것은 여기에 든 두 경우중 첫째 경우, 통화의 량이 증대하지 않을수 없는 번영기에는 이 매개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명백한것은 어떤 제조업자가 보다 많은 자본을 화폐형태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자기의 은행예금잔고로부터 보다 많은 금 또는 은행권을 꺼낸다 하더라도 그때문에 자본에 대한 그의 수요가 증대하는것은 아니며 다만 그가 자기의 자본을 지출

량은 그 은행권의 류통고와 동일한 방향에서 변동하기보다는 반대방향에서 변동하는 일이 많으며 따라서 이 대은행의 실례는 결코 지방은행업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학설의 례외인것은 아니다. 그 학설에 의하면 어떠한 은행도 그 은행권의 류통고가 이미 은행권류통의 보통의 목적에 적응하는 경우에는 그 류통고를 증가할수는 없으며 이 한계를 넘는 그 선대의 추가는 모두 그 은행의 자본에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은행의 보유유가증권의 일부분을 매각하든가 또는 그러한 유가증권에 대한 그 이상의 투자를 그만두든가 하는것에 의하여 공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내가 이전의 어느 페지에서 인용한바 있는 1833년부터 1840년까지의 기간의 의회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한 표는 이 진리에 대한 련속적인 실례들을 제공하는데 그중의 2개만을 들어보아도 대단히 특징적인것이므로 그 이상 다른 실례를 드는것은 불필요하다. 1837년 1월 3일 신용을 유지하고 화폐시장의 곤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글랜드은행의 자금이 극도로 긴장되였을 때 우리는 대부와 할인에 의한 이 은행의 선대가 1,702만 2,000파운드이라는 거액에 달한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전쟁이래 거의 들어보지 못한것이며 그것은 이 기간에 1,707만 6,000파운드라는 낮은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고있던 총발행고와 거의 동등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1833년 6월 4일에는 1,889만 2,000파운드라는 은행권류통고가 97만 2,000파운드를 넘기지 않는 잉글랜드은행의 사적유가증권보유액에 관한 은행보고와 결부되여있는데 이 액은 과거 반세기간의 기록중의 최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것에 가까운것이였다》(풀라톤 우와 같은 책, 97~98페지).—화폐융통에 대한 수요가 금(월슨, 투크 등이 자본이라고 부르고있는것)에 대한 수요와 일치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것은 잉글랜드은행 총재 웨걸린씨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알수 있다.—《이 금액 (3일간 계속하여 매일 100만씩) 에 이르기까지의 수형할인은 공중이 그 이상의 현재 류통고를 요구하지 않는 한 준비금 (은행권의) 을 감소시키지 않을것이다. 수형할인의 매개와 예금을 통하여 환류할것이다. 그러한 거래들이 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또는 국내에서 공황이 일어나 공중이 은행권을 은행들에 불입하지 않고 틀어쥐고있는것과 같은 일이 없는 한, 준비금은 그와 같이 거액의 거래들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다.》—《잉글랜드은행은 매일 150만을 할인할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은행의 준비금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있다. 은행권은 예금으로서 돌아온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발생하는 유일한 변화는 한 구좌에서 다른 구좌로의 단순한 이전이다》(《은행법에 관한 보고서》, 1857년, 증언 제241호, 제500호). 따라서 이 경우에 은행권은 신용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복무할따름이다.

하는 이 특수한 형태에 대한 그의 수요가 증대할뿐이라는것이다. 그 수요는 다만 그가 자기의 자본을 류통에 투입하는 기술적형태에 관계될따름이다. 례컨대 신용제도의 발전정도가 다르면 동일한 량의 가변자본, 동일한 액의 로임도 한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더 많은 류통수단을 필요로 하는것과 같은것이다. 례컨대 잉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보다도, 독일에서는 잉글랜드에서보다도 더 많은 류통수단을 필요로 하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재생산과정에서 작용하는 동일한 량의 자본이 계절이 다르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이한 화폐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풀라톤이 하고있는것과 같은 대립은 옳지 않다. 불경기를 번영기와 구별하는것은 결코 그가 말하는것처럼 대부에 대한 강한 수요인것이 아니라 이 수요의 충족이 번영기에는 용이하고 불경기에 들어가서는 곤난하다는것이다. 번영기에 일어나는 신용체계의 거대한 발전 따라서 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의 격증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는 이 수요에 대하여 공급이 쉽게 응한다는것, 실로 이것이야말로 불경기의 신용결핍을 초래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대부에 대한 수요의 크기와 차이가 이 두 시기를 특징짓는것은 아니다.

이미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 두 시기를 구별하는것은 우선 번영기에는 소비자와 상인과의 사이에서의 류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며 불경기에는 자본가들사이에서의 류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다는것이다. 사업의 불경기에는 전자가 감소하고 후자가 증대한다.

그런데 풀라톤과 기타 사람들의 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것으로서 반영되는것은 잉글랜드은행의 수중에 있는 유가증권—대부담보물과 수형—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이 은행의 은

행권류통고는 감소하고 그 반대의 시기에는 반대로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유가증권보유고는 화폐융통의 크기, 즉 할인수형의 크기나 류통할수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선대의 크기를 나타내는것이다. 그리하여 풀라톤은 이미 436페지의 주(90)①에서 인용한 개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잉글랜드은행의 수중에 있는 유가증권은 대개 그 은행권류통고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변동하는데 이 사실은 사영은행들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정되여온 다음과 같은 명제를 확증한다. 즉 어느 은행이나 그 고객의 수요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 그 은행권발행액을 증가할수는 없으며 만약 은행이 이 금액을 넘어서 선대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그 은행은 자기의 자본에서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유가증권을 류통시키든가 또는 평소에는 은행이 유가증권에 투하하였을 입금을 선대에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도 또 풀라톤이 무엇을 자본으로 생각하고있는가 하는것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무엇을 자본이라고 하는가? 은행은 이제는 그 자신의 은행권으로는 즉 은행에는 물론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지불약속서로는 더는 선대를 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러면 은행은 무엇으로 선대를 하는가? 유가증권준비 즉 국채, 주식 및 기타 리자부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서이다. 그런데 무엇과의 교환으로 은행은 이러한 증권들을 판매하는가? 화폐 즉 금과 은행권—이 은행권이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과 법정지불수단인 한에서—이다. 그러므로 은행이 선대하는것은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화폐이다. 그런데

① 본권 508~509페지를 보라.—편집자

이 화폐는 은행의 자본의 일부분을 이룬다. 은행이 금을 선대하는 경우에는 이 점은 완전히 분명하다. 은행권을 선대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이 은행권은 자본을 표시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것과의 교환으로 현실적인 가치를, 리자부증권을 양도하였기때문이다. 사영은행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판매에 의하여 그 은행에 흘러오는 은행권은 주로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과 그 은행자신의 은행권일수 있을따름이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은행권은 유가증권대금의 지불에 있어서 거의 접수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잉글랜드은행 자신의 경우에는 자기의 은행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본이 즉 리자부증권이 필요하다. 그뿐만아니라 잉글런드은행은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은행권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잉글런드은행이 이 은행권을 다시 발행하든가 또는 이 은행권 대신으로 같은 액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한다면 그 은행권은 이제는 자본을 표시한다. 그리고 그 은행권이 자본을 표시하는것은 그 은행권이 자본가에 대한 선대에 돌려지는 경우에도, 나중에 그러한 화폐융통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여 그것이 유가증권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돌려지는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본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는 다만 은행업자적인 의미로서만 사용되고있으며 그것은 은행업자가 자기의 단순한 신용보다 많은것을 대부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잉글런드은행은 그 선대를 모두 자기의 은행권으로 실시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례로 이 은행의 은행권류통고는 그가 보유하는 할인수형과 대부담보의 증가 따라서 이 은행이 실시하는 선대의 증가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면 류통에 투하된 은행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

은 어떻게 은행으로 환류하는가?

우선 화폐융통에 대한 수요가 국가의 국제수지의 역조로 하여 생기고 따라서 이 수요가 금의 류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사태는 매우 간단하다. 수형이 은행권으로 할인된다. 이 은행권이 잉글랜드은행 자신의 발행부에서 금과 교환되고 그 금이 수출된다. 그것은 마치도 잉글랜드은행이 수형의 할인에 있어서 은행권의 매개없이 직접 금을 지불한것과 같은것이다. 이와 같은 증가되는 수요—경우에 따라서는 700만파운드로부터 1,000만파운드에 달한다—는 물론 국내의 류통에는 단 한장의 5파운드은행권도 추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 잉글랜드은행은 자본을 선대하는것이고 류통수단을 선대하는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 말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첫째로는 은행은 신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치, 자기 자신의 자본이나 그에게 예탁된 자본의 일부분을 선대한다는것이다. 둘째로는 은행은 국내류통을 위한 화폐가 아니고 국제류통을 위한 화폐, 즉 세계화폐를 선대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화폐는 언제나 축장화폐의 형태로, 그 금속제의 형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는 화폐는 일단 가치의 형태일뿐만아니라 이 화폐를 자기의 화폐형태로 삼는 가치와 그 자체가 동등한것이다. 그런데 그 금은 잉글랜드은행에 대하여도 금수출상인에 대하여도 자본을, 은행업자자본 또는 상인자본을 표시하지만 수요는 자본으로서의 금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화폐자본의 절대적형태로서의 금에 대하여 생긴다. 이 수요는 바로 외국시장이 영국의 실현될수 없는 상품자본으로써 충만되여있는 순간에 생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요구되는것은 **자본**으로서의 자본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자본이다. 즉 화폐가 일반적인 세

계시장상품으로서 취하는 형태에 있는 자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귀금속이라는 화페의 시초적형태이다. 그러므로 금의 류출은 풀라톤, 투크 등이 말하는것처럼 《단순한 자본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화페의 문제》이다. 비록 하나의 특수한 기능에 있는 화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화페의 문제이다. 통화학설의 옹호자들은 그것은 **국내**류통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것이 풀라톤과 기타 사람들이 생각하고있는것과 같은 단순한 자본문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제지불수단으로서의 형태에 있는 화페의 문제이다.

《이 자본{국내에 흉작이 있은후 수백만쿼터의 외국 밀의 구입가격}이 상품으로 이전되는가 금속화페로 이전되는가 하는것은 거래의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정이다》(풀라톤, 우와 같은 책, 131페지).

그러나 그것은 금의 류출이 일어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는 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자본이 귀금속의 형태로 이전되는것은 그것이 상품형태로서는 전혀 이전될수 없거나 대단히 큰 손실을 보지 않고서는 이전될수 없기때문이다. 현대의 은행제도가 금의 류출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은 귀금속을 유일한 진정한 부라고 생각하는 중금주의[229]가 그것에 대하여 꿈에 느끼던 모든 불안보다도 훨씬 크다. 례컨대 1847～1848년 공황에 관한 의회위원회에서 잉글런드은행 총재 모리스에 대하여 한 다음과 같은 신문을 들어보자.

(제3846호. 질문) 《내가 재고품(stocks)과 고정자본의 가치감소에 대하여 말할 때에 각종 재고품과 생산물에 투하된 모든 자본이 동일하게 가치가 감소되였다는것, 원면, 생사, 원모가 동일한 헐값으로 대륙

에 운송되였다는것, 사탕, 커피, 차가 강제매각의 경우처럼 큰 희생을 내면서 판매되였다는것을 당신은 모르고있는가?—식량의 대량수입의 결과로 생긴 **금의 류출**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이 나라가 **다대한 희생**을 내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불가피하였다.》—(제3848호)《당신은 이러한 희생을 내면서 금을 회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은행의 금고에 있는 800만파운드에 손을 대는것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금이 유일하게 진정한 부라고 간주되고있다.

폴라톤이 인용한 투크의 발견 즉

《만족스러운 설명을 줄수 있는 한두개의 례외를 제외하면 지난 반세기동안에 일어난 금의 류출을 수반한 환자시세의 현저한 저락은 모두 언제나 류통수단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것과 함께 일어났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였다.》(폴라톤, 121페지)

라는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증명한다. 즉 이러한 금의 류출이 일어난것은 대부분 활기와 투기의 시기가 지난 다음의 일이며

《이미 시작한 붕괴의 신호로서…시장의 공급과잉, 우리 나라의 생산물에 대한 외국의 수요의 정지, 환류의 지연, 그리고 이 모든것들의 필연적결과로서의 상업상의 불신, 공장의 폐쇄, 로동자들의 기아, 산업과 기업의 전반적침체》(129페지)

로서 일어난다는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물론 동시에

《통화가 충족하면 금괴를 구축하고 통화가 부족하면 금괴를 흡수한다.》

라는 통화학설옹호자들의 주장에 대한 최량의 론박이다.

이 주장과는 반대로 잉글랜드은행의 강대한 금저장은 대부분 번영기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이 축장화폐는 언제나

격동기의 뒤에 오는 불경기와 침체기에 형성된다.

그렇기때문에 금류출에 관한 모든 지혜는 다음과 같은것에 귀착된다. **국제적** 류통수단 및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국내적** 류통수단 및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와 다르다는것(따라서 또 자연히 풀라톤이 112페지에서 말하고있듯이 《류출의 존재는 반드시 통화에 대한 국내적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라는것으로 된다), 그리고 귀금속의 국외수출 즉 국제류통에의 귀금속의 투입은 국내류통에의 은행권 또는 주화의 투입과 동일하지는 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전에 국제적지분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집적되고있는 축장화폐의 운동은 그 자체로서는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운동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것을 말하였다.[230] 확실히 내가 화폐의 성질로부터 전개한 축장화폐의 각이한 기능, 즉 국내의 지불수단을 위한, 만기가 된 지불을 위한 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이나 류통수단의 준비금으로서의 기능, 끝으로 세계화폐의 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이 단 하나의 준비금에 부과된다는것에 의하여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이것으로부터는 또 사정에 의하여서는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국내에로의 금류출이 외국으로의 류출과 결부될수 있다는 결론도 나온다. 그러나 이밖에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것은 이 축장화폐에 전적으로 자의로 부과되는 또 하나의 기능, 즉 신용제도와 신용화폐가 발전하고있는 나라들에서는 은행권의 태환의 보증금으로서 복무한다는 기능에 의해서이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 유일한 중앙은행에서의 전국의 준비금의 집중, 2) 가능한 한 최저한도로의 이 준비금의 감소라는 사정들이 첨가된다. 풀라톤의 다음과 같은 하소연도 이로부터 나온다(143페지).

《영국에서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가 고갈된다고 생각될 때 틀림없이 일어나는 열병적인 불안과 동요의 상태에 비하여 대륙제국에서는 환자시세의 변동이 전혀 고요하게 지나가는것이 보통이라는것을 생각하면 이 점에서 금속통화가 가지고있는 큰 우월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금류출을 도외시한다면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 례컨대 잉글랜드은행은 자기의 은행권발행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가 제공하는 화폐융통의 금액을 증가시킬수 있는가?

은행의 문밖에 있는 모든 은행권은 그것이 류통하고있든 개인의 금고에서 잠자고있든간에 그 은행 자신에 관하여 말하면 모두 류통중에 있다. 즉 은행의 보유밖에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이 자기의 할인과 담보대부 즉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선대를 확장한다면 그때문에 발행된 은행권은 다시 은행으로 환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만일 환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류통액을 증대시키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이 환류는 두 방식으로 진행될수 있다.

첫째로, 은행은 A에게 유가증권을 받고 은행권을 지불한다. A는 이 은행권으로써 B에게 만기수형을 지불하고 B는 그 은행권을 다시 은행에 예금한다. 이 은행권의 류통은 이것으로써 끝나지만 대부는 남아있다.

(《대부는 남아있지만 통화는 필요가 없게 되면 그 발행자에게로 돌아온다》 풀라톤, 97페지).

은행이 A에게 선대한 은행권은 이제는 은행에 돌아온다. 그런데 은행은 A의 또는 A가 할인한 수형의 지불인의 채권자이고 이 은행권에 표시된 가치액만큼 B의 채무자이며 따라서

B는 은행의 자본중 이 가치액에 해당한 부분을 자유로 사용할수 있다.

둘째로, A는 B에게 지불하고 B 자신 또는 B로부터 은행권으로 지불을 받는 C는 이 은행권으로써 만기수형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은행에 지불한다. 이 경우에는 은행은 그 자신의 은행권으로써 지불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거래는 끝난다(그러나 A로부터 은행에의 상환은 남아있다).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A에로의 선대는 어느 정도까지 자본의 선대로 볼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단순한 지불수단의 선대로 볼수 있는가?(91)

{이 점은 선대 자체의 성질에 달려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세 경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우—A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없이 그의 개인신용으로 은행으로부터 선대를 받는다. 이 경우에는 그는 지불수단을 선대받을뿐만아니라 또한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자본을 선대받는데 그는 상환할 때까지 이 자본을 자기의 사업에서 추가자본으로서 사용하고 증식시킬수 있다.

둘째 경우—A는 은행에 유가증권 즉 국채증권 또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것과의 교환으로 례컨대 시가의 3분의 2까지의 현금선대를 받았다. 이 경우에는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지불수단을 받았으나 추가자본을 받은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은행으로부터 받은것보다도 더 큰 자본가치를 은행에 인도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큰 자본

(91) 원고에서 여기에 계속되는 개소는 련결상 리해할수 없으므로 대괄호의 마지막까지는 편집자가 새로 고쳐쓴것이다. 기타의 관련에 있어서는 이 점은 이미 제26장①에 언급되여있다.— F. 엥겔스

① 본권 484~486페지를 보라.—편집자

가치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리자를 낳도록 일정한 형태로 투하되였기때문에 그의 목전의 필요—지불수단—를 위하여서는 리용될수 없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A에게는 그것을 판매하여 직접 지불수단으로 전화하지 않을 리유가 있었던것이다. 그의 유가증권은 특히 준비자본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있었으며 그러한 준비자본으로서 그는 그것을 기능하게 한것이다. 따라서 A와 은행사이에서는 일시적인 호상적인 자본이전이 일어났으며 그리하여 A는 아무런 추가자본도 받지 않았으나(오히려 반대이다!) 필요한 지불수단을 받았다. 그런데 은행에 있어서는 이 거래는 화폐자본을 대부금이라는 형태로 일시 고착시키는것, 화폐자본을 한 형태로 전화시키는것이였는데 이 전화야말로 은행업무의 본질적기능인 것이다.

셋째 경우—A는 은행에서 수형을 할인받고 그 대신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이 경우에는 그는 류동적이 아닌 형태에 있는 화폐자본을 은행에 판매하고 그 대신에 류동적인 형태에 있는 가치액을 받은것이다. 즉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수형을 판매하고 그 대신 현금을 받은것이다. 그 수형은 이제는 은행의 소유물이였다. 이 사실은 수형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 최종 서명양도자인 A가 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을 선다는것에 의하여서는 조금도 변하는것이 아니다. A는 이 책임을 기타의 서명양도자나 발행자와 분담하며 이들에 대하여서는 그 자신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것은 결코 선대가 아니고 완전히 보통의 매매이다. 그러므로 A는 은행에 대하여 아무것도 상환할 필요는 없으며 은행은 만기일에 수형에 대한 입금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A와 은행사이에서

는 호상간의 자본이전이, 그것도 기타의 모든 상품의 매매에 있어서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일어났으며 바로 그때문에 A는 아무런 추가자본도 받지 않았다. 그가 필요로 하였고 그리고 받은것은 지불수단이였으며 그는 그것을 은행이 그를 위하여 그의 화폐자본의 한 형태—수형—를 다른 한 형태—화폐—로 전화시켜준것에 의하여 받은것이다.

이리하여 현실적인 자본선대라고 할수 있는것은 첫째 경우뿐이다. 둘째 경우와 셋째 경우에는 기껏하여 어떠한 자본투하에 있어서도 《자본이 선대된다》는 의미에서만 자본선대를 운운할수 있다. 이 의미에서는 은행은 A에게 화폐자본을 선대하지만 그러나 A에 있어서 그것이 화폐**자본**인것은 기껏하여 그것이 그의 자본일반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요구하고 사용하는것은 특히 자본으로서가 아니라 특히 지불수단으로서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불수단을 조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보통의 상품판매는 모두 자본선대를 받는것으로 간주되여야 할것이다.— F. 엥겔스}

은행권을 발행하는 사영은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즉 그의 은행권이 지방적류통에 머물러있지도 않고 예금형태로나 만기수형의 지불을 위하여 그 은행 자신에게로 돌아오지도 않는 경우에는 이 은행은 이 은행권을 입수한 사람들에게 그것과의 교환으로 금이나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이 사영은행의 은행권의 선대는 사실상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의 선대를 의미하며 또는 이 은행에 대하여서는 같은것이지만 금의 선대를 따라서 그 은행의 은행자본의 일부분을 대표한다. 동일한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말할수 있

다. 즉 은행권발행의 법정 최고한도액이 정해져있는 잉글랜드은행 자신이나 기타의 어떤 은행도 은행권발행의 최고한도가 법정되여있는 자기은행의 은행권을 류통에서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선대로서 발행하기 위하여서는 유가증권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그 은행 자신의 은행권은 그 은행의 류동화된 은행자본의 일부분을 대표한다.

통화가 순전한 금속통화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1) 금의 류출{여기에서 금의 류출이라고 말하는것은 적어도 일부분은 외국으로 나가는 류출을 말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 F.엥겔스}이 금고를 텅비게 할수 있을것이며 또 2) 금은 주로 지불의 결제(지나간 거래의 청산)를 위하여서만 은행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은행의 선대는 크게 증대할 수 있을것이나 그것은 예금의 형태로나 만기수형의 지불에 의하여 은행으로 돌아올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은행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이 증가되는데 따라 은행의 총축장화폐는 감소될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은 이전에는 소유자로서 가지고있던것과 같은 금액을 이제는 그의 예금자들의 채무자로서 가지고있게 될것이고 이리하여 결국은 통화의 총량이 감소될것이다.

이제까지 전제로 되고있는것은 선대가 은행권으로 실시되고 따라서 은행권발행의 증가는 비록 인차 다시 없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수반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필요하지 않다. 은행은 A에게 지폐를 주지 않고 그대신에 장부신용을 개설해줄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은행의 채무자인 A가 은행의 상상적인 예금자로 되는것이다. A는 자기의 채권자에게 은행앞으로의 행표로써 지불하고 이

행표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에게 지불하고 이 은행업자는 그것을 수형교환소에서 자기앞으로의 미결제행표와 교환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권의 개입은 전혀 볼수 없으며 전제 거래는 은행이 집행하여야 할 청구권이 은행 자신앞으로의 행표로써 결제되고 은행이 받는 현실적보상은 A에 대한 신용청구권에 있다는 사실로 국한된다. 이 경우에는 은행은 A에게 자기의 은행자본의 일부분을 선대한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 자신의 채권을 선대하였기때문이다.

화폐융통에 대한 이러한 수요가 자본에 대한 수요인 한에서는 그것은 다만 화폐자본에 대한, 은행업자의 립장에서 본 자본에 대한 수요, 즉 금에 대한—외국으로의 금류출의 경우—또는 국립은행의 은행권에 대한 수요일따름인데 이 은행권은 사영은행으로서는 등가물을 주고 구매함으로써만 입수할수 있는것이고 따라서 사영은행에 대하여서는 자본을 표시하는것이다. 또는 끝으로 금이나 은행권을 얻기 위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리자부유가증권, 즉 국채증권이나 주식 등이 문제라고 하자. 그런데 이러한 유가증권은 그것이 국채증권이라면 다만 그것을 구매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자본이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의 구입가격을 나타내며 그가 그것에 투하한 자본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자본이 아니며 단순한 채권이다. 만일 그것이 토지저당증서라면 그것은 장래의 지대를 받을데 대한 단순한 지불지도서이며 또 그것이 주식이라면 그것은 장래의 잉여가치를 받을 권리를 주는 단순한 소유증서이다. 이 모든것들은 아무런 현실적자본도 아니고 자본의 어떤 구성부분도 이루지 않으며 또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또 그러한 거래

에 의하여 은행에 속하는 화폐가 예금으로 전화되고 그리하여 은행은 그 화폐의 소유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되고 다른 점유권에 의하여 그것을 보유할수 있다. 이 사실은 은행 자체에 대하여서는 중요하지만 국내에 현존하는 자본의 량을, 그리고 화폐자본의 량까지도 변동시키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본은 다만 화폐자본으로서만 나타나며 또 그것이 현실적화폐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본소유권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자본의 결핍과 그것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현실적**자본의 감소와 혼동되기때문인데, 현실적자본은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로 생산수단이나 생산물의 형태로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여 시장을 압박하고있는것이다.

이리하여 류통수단의 총량은 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데 어떻게 은행이 담보로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량이 증대할수 있는가, 따라서 은행은 쇄도하는 화폐융통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수 있는가 하는것은 극히 간단히 설명된다. 그런데 이 류통수단의 총량은 그러한 화폐결핍시기에는 이중의 방식으로 제한을 받는다. 즉 1) 금류출에 의하여. 2) 단순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이 2)의 경우에는 발생된 은행권이 즉시에 환류하거나 또는 은행 장부상의 신용에 의하여 은행권을 전혀 발행함이 없이 거래가 처리되며 따라서 단순한 신용거래에 의하여 그 결제가 거래의 유일한 목적이였던 지불들이 매개된다. 화폐가 단순히 지불의 결제를 위하여 기능하는 경우에는(그리고 공황시기에 선대를 받는것은 구매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지불하기 위하여서이며 새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지나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화폐의 류통은 다만 순간적인것

에 불과하며 이 결제가 전혀 화페의 개입없이 단순한 신용조작에 의하여 실시되는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는것, 즉 화페융통에 대한 요구가 대단한 기세로 밀려드는 경우에도 류통을 확대함이 없이 거대한 액의 이러한 거래가 진행될수 있다는것은 화페의 특성이다. 그러나 잉글랜드은행이 거액의 화페융통을 하고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 은행의 통화가 안정된대로 있거나 감소되기까지 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얼핏 보아도 명백히 풀라톤, 투크 및 기타 사람들이(화페융통을 대부자본의 차입, 추가자본의 차입과 동일시하는 그들의 오유의 결과로) 추론하고있는것처럼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페의(은행권의) 류통이 증가, 확대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거액의 융통이 요구되는 불경기에는 구매수단으로서의 은행권의 류통은 감소하므로 지불수단으로서의 은행권의 류통은 증가할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통수단의 총액 즉 구매수단으로 기능하는 은행권과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은행권의 합계는 안정된대로 있거나 지어는 감소될수도 있다. 발행한 은행으로 곧 환류하는 은행권의 지불수단으로서의 류통은 그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무러한 류통도 아닌것이다.

구매수단으로서의 류통이 감소하는것보다 높은 정도로 지불수단으로서의 류통이 증가한다면 비록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페가 량적으로 보아 현저히 감소하더라도 총류통액은 증가할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공황의 일정한 순간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것이다. 즉 그것은 신용이 완전히 붕괴되였을 때의 일인데 그러한 때에는 상품이나 유가증권이 팔리지 않게 되였을뿐만아니라 수형도 할인받을수 없으며 이제는 현금지불 또는 상인이 말하는 맞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통용되지 않는것이다. 풀라톤이나 기타 사람들은 지불수단으로서의 은행권의 류통이 이러한 화폐기근시기의 특징이라는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우연적인것으로 취급한다.

《은행권을 입수하려는 격렬한 경쟁은 공황기의 특징이며 또 때로는 1825년말과 같이 금괴의 류출이 아직도 계속되고있는 때에도 일시적인것에 불과한것이지만 돌연적인 발행액의 증가를 초래할수있는것인데 다시 이러한 경쟁의 실례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바에는 이러한 실례를 낮은 환자시세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부수적현상이라고 볼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의 수요는 류통 (구매수단으로서의 류통이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을 위한 수요가 아니라 축장을 위한 수요이며 금류출이 장기간 계속된후에 공황의 종막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깜짝 놀란 은행업자들과 자본가들측에의 (따라서 지불수단의 준비로서의) 수요이며 금류출이 멎을 전조이다》(풀라톤, 130페지).

지불의 련쇄가 급격히 중단된 때에 어떻게 화폐가 순전히 관념적인 한 형태에서 상품들에 대립하는 가치의 물적이고 동시에 절대적인 형태를 전변하는가 하는것은 이미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고찰한(제1부 제3장 제3절 b) 곳에서 설명하였다. 그 약간의 실례도 같은 개소의 주 (100)과 (101)에서 들었다. 이러한 중단 자체는 부분적으로는 신용의 동요와 이에 수반되는 사정을 즉 시장의 공급과잉, 상품의 가치감소, 생산의 중단 등등의 결과이며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의 원인이다.

그러나 분명히 풀라톤은 구매수단으로의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와의 구별을 통화와 자본과의 그릇된 구별로 전화시키고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류통에 대한 협애한 은행업자적관념이 그 기초에 놓여있는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수도 있을것이다. 대체 그

러한 핍박의 시기에 부족한것은 무엇인가, 자본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불수단이라는 규정된 형태에서의 화폐인가? 다 아는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론쟁문제이다.

우선 핍박이 금류출에서 나타나는 한에서 요구되는것은 국제지불수단이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지불수단이라는 규정된 형태에서의 화폐는 금속적현실성을 갖는 금이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실체, 가치덩어리로서의 금이다. 그것은 동시에 자본이다. 그러나 상품자본으로서의 자본이 아니라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이며 상품의 형태에 있는것이 아니라 화폐(그것도 이 말의 뛰여난 의미에서의 화폐인데 이 의미에서는, 화폐는 일반적인 세계시장상품으로서 존재한다)의 형태에 있는 자본이다. 여기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와 자본에 대한 수요간의 대립은 없다. 대립은 화폐라는 형태에 있는 자본간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형태, 또 자본이 여기에서 기능할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자본의 화폐형태이다.

이러한 금(또는 은)에 대한 수요를 도외시한다면 이러한 공황기에 어떤 방식으로 자본이 부족하다고 말할수는 없다. 례컨대 곡물등귀나 면화기근 등등과 같은 비상한 사정하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결코 이러한 시기의 필연적인 또는 통례적인 부수적현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화폐융통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나타났다고 하여 자본의 이러한 부족은 처음부터 존재해있었다고 즉시 결론지을수는 없다. 그 반대이다.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되여있으며 상품자본으로 범람하고있다. 그러므로 핍박의 원인으로 되는것은 여하튼 **상품**자본의 결핍인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는 나중에 다시 돌아갈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총과정

(하)

제 5 편

리자 및 기업자리득으로의 리윤의 분렬. 리자부자본

(계속)

제 29 장

은행자본의 구성부분

다음에는 은행자본이 무엇으로써 이루어지는가를 더 상세히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보아온것처럼 풀라톤이나 기타 사람들은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의(금의 류출이 고찰되는 한에서는 또 세계화폐로서의) 화폐간의 구별을 통화와 자본간의 구별로 전화시키고있는것이다.

자본이 이 경우에 노는 기묘한 역할로 말미암아 이 은행업자들의 경제학은, 화폐는 자본이 아니라는것을 계몽된 경제학이 고취하려고 정성껏 시도하던바와 같이 그만큼 정성스럽게 사실상 화폐는 특별히 훌륭한 의미에서의 자본이라는것

을 설교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게 되는바와 같이 이 경우에 화폐자본은 리자부자본이라는 의미에서의 화폐자본(moneyed capital)과 혼돈되고있는데 전자의 의미에서는 화폐자본은 항상 자본의 다른 형태들 즉 상품자본 및 생산자본과 구별되는것으로서의 자본의 하나의 통과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은행자본은 1) 현금 즉 금 또는 은행권과 2)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진다. 유가증권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될수 있다. 측 한 부분은 상업증권인 수형인데 이것은 류동하는것이고 시시각각으로 만기가 되는것이며 이것을 할인하는것이 은행업자의 본래의 업무로 되여있다. 다른 한 부분은 공적유가증권 례컨대 국채증권, 국고증권, 각종 주식으로서 요컨대 리자부증권인데 이것은 수형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이다. 부동산저당증권도 여기에 넣을수 있다. 이러한 물적구성부분들로써 이루어지고있는 자본은 다시 은행업자자신의 투하자본과 다른 사람들의 예금으로 구분되며 이 예금은 그의 은행영업자본 또는 차용자본을 이루고있다. 발권은행의 경우에는 여기에 또 은행권이 첨가된다. 예금과 은행권은 당분간 도외시하자. 여하튼 분명한것은 이러한 각이한 요소들이 은행업자 자신의 자본을 대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자본인 예금을 대표하는가 하는것은 은행업자자본의 현실적구성부분들—화폐, 수형, 리자부증권—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것이다. 은행업자가 자기의 자본만으로 영업을 하든, 자기에게 예금된 자본만으로 영업하든 이 구분은 의연히 변함없을것이다.

리자부자본이라는 형태와 함께 확정된 규칙적인 화폐수

입은 그것이 자본에서 생기든 생기지 않든간에 모든 자본의 리자로서 나타나게 된다. 우선 화폐수입이 리자로 전화되고 다음에 리자와 함께 그 리자의 원천으로 되는 자본도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자부자본과 함께 모든 가치액은 수입으로서 지출되지 않는 한 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즉 그 가치액이 낳을수 있으며 또는 현실적으로 낳는 리자에 대립한 본전으로서 나타난다.

사태는 간단하다. 평균리자률을 년 5%라고 하자. 그러면 500파운드라는 금액은 리자부자본으로 전화되면 매년 25파운드를 낳을것이다. 따라서 25파운드라는 확정된 년수입은 모두 500파운드라는 자본에 대한 리자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25파운드의 원천이 단순한 소유권 또는 채권이든 또는 레컨대 토지와 같은 현실적생산요소든간에 여하튼 그것이 직접 양도될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될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전히 환상적인 관념이며 또 그러한것일뿐이다. 실례로서 국채와 로임을 들어보자.

국가는 차용한 자본에 대하여 얼마간의 리자를 매년 자기의 채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게 계약해소를 통고할수는 없으며 다만 채권을, 그것에 대한 자기의 점유권을 팔수 있을뿐이다. 자본 그 자체는 국가에 의하여 다 소비되였으며 지출되였다. 자본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채권자가 가지고있는것은 1) 레컨대 100파운드라는 국가의 채무증서이다. 2) 이 채무증서는 국가의 세입 즉 년 조세수입에 대한 일정한 금액 레컨대 5파운드 또는 5%의 청구권을 부여한다. 3) 그는 이 100파운드의 채무증서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팔수 있다. 리자률이 5%이고 국가의 지불능력이 확실하다면 소유자

A는 이 채무증서를 보통 100파운드로 B에게 팔수 있다. 왜냐하면 B에게 있어서는 100파운드를 년 5%로 대부하는것이나 100파운드의 지불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5파운드라는 공물을 매년 확보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국가에 의하여 지불되는것이 거기에서 가지쳐나오는것(리자)이라고 간주되는 자본은 역시 환상적이며 의제적인 자본이다. 그것은 다만 국가에 대부된 금액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자본으로서 지출되며 투하되기로 예정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자본으로서 투하됨으로써만 자체를 유지하는 가치로 전화될수 있었을것이다. 원래의 채권자 A에 대해서는 년조세중 그의 수중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의 자본의 리자를 대표하는데 그것은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랑비자의 재산중 그의것으로 되는 부분이 그의 자본의 리자를 대표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두 경우에 대부된 화폐액은 자본으로서 지출된것은 아니였지만. 국가의 채무증서를 판매할 가능성은 A에 대해서는 본전을 회수할 가능성을 대표한다. B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의 개인적립장에서 보면 그의 자본은 리자부자본으로서 투하되여있다. 사태의 본질로 보면 B는 A를 대체하였을따름이고 국가에 대한 A의 채권을 구매하였을따름이다. 이러한 거래가 더 몇번이고 진행될지 모르지만 국채라는 자본은 의연히 순전히 의제적인 자본이며 이 채무증서가 판매될 수 없는것으로 된 순간부터 이 자본의 외관은 사라지고말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의제자본은 그 자체의 운동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국채라는 자본에서는 마이나스가 자본으로 나타나는데—바로 리자부자본일반이 모든 혼란한 형태의 모체이고 그리하

여 례컨대 은행업자의 관념에서는 채무가 상품으로서 나타날 수 있듯이—이제는 이러한 국채자본과 대비하여 로동력을 고찰하기로 하자. 로임은 여기서는 리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로동력은 리자를 낳는 자본으로 간주된다. 례컨대 1년간의 로임이 50파운드이고 리자률이 5%라면 1년간의 로동력은 1,000파운드의 자본과 동등한것으로 간주된다. 자본주의적사고방식의 착란은 여기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자본의 가치증식이 로동력의 착취에서 설명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로동력의 생산성이 로동력자체가 그러한 신비한 물건인 리자부자본이라는것에서 설명되기때문이다. 17세기 후반기에(례컨대 페티[231]에 있어서) 이것은 인기를 끄는 관념이였으나 이 관념은 오늘에도 부분적으로는 속류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주로 독일통계학자들에 의하여 진지하게 리용되고있다.(1) 여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이 무사상적관념을 불쾌하게 방해하는 두개의 사정이 있다. 첫째는 로동자는 이러한 리자를 얻기 위하여 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고 둘째는 로동자는 그의 로동력의 자본가치를 양도에 의하여 화폐화할 수는 없다는것이다. 사실상 그의 로동력의 년가치는 그의 년평균임금과 같은것이며 또 그가 그의 로동력의 구매자를 위하여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것은 바로 이 가치자체에 이 가치의 증식분인 잉여가치를 가한것이다. 노예제도하에서는, 로동자는 어떤 자본가치 즉 그의 구매가격을 가진다. 그리고 그가 임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우선 이

---

(1) 《로동자는 자본가치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그의 년수입의 화폐가치를 리자수익으로서 보는데 의하여 계산된다…만약…1일의 평균 임금률을 4%로써 자본화한다면 한 남성 농업로동자의 평균가치는 독일—오지리에서는 1,500탈레르, 프로씨아에서는 1,500탈레르, 잉글랜드에서는 3,750탈레르, 프랑스에서는 2,000탈레르, 로씨야내지에서는 750탈레르로 된다》(폰 레덴 《비교문화통계》, 1948년 베를린판 434페지).

구매가격의 리자를 지불하여야 하며 또 그밖에 이 자본의 년마멸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의제자본의 형성은 자본화라고 불리운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모든 수입은 평균리자률로 계산됨으로써, 즉 이 리자률로 대부되는 어떤 자본이 낳을 수익으로서 계산됨으로써 자본화된다. 례컨대 년수입이 100파운드이고 리자률이 5%라면 이 100파운드는 2,000파운드의 년리자로 될것이다. 그리하여 이 2,000파운드가 년수입액 100파운드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의 자본가치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100파운드라는 년수입은 사실상 그의 투하자본의 5%의 리자를 표시한다. 이리하여 자본의 현실적인 증식과정과의 모든 련관은 최후의 흔적까지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에 의하여 자기를 가치증식하는 자동체로서의 자본의 관념이 확립된다.

채무증서—유가증권—가 국채의 경우와 같이 순전히 환상적인 자본을 표시하는것이 아닌 경우에도 이 증권의 자본가치는 순전히 환상적인것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① 신용제도는 결합자본을 낳는다. 증권은 이 자본을 표시하는 소유증서로 된다. 철도, 광산, 항행 등 회사의 주식은 현실적자본을 표시한다. 즉 이러한 기업들에 투하되여 기능하는 자본 또는 이러한 기업들에 자본으로서 지출할 목적으로 주주들이 선대한 화폐액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 이러한 주식이 단순한 사기를 표시한다는것이 결코 배제된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자본은 이중으로 존재하는것은 아니다. 한번은 소유권 즉 주식의 자본가치로서, 그리고 또 한번은 상술한 기업들에 현실적으로 투

① 본권 493~495페지를 보라.—편집자

하되여있거나 또는 투하되여야 할 자본으로서 존재하는것은 아니다. 자본은 오직 이 후자의 형태로서만 존재하며 주식은 이 자본에 의하여 실현되는 잉여가치에 대한 비례적인 소유증서에 불과한것이다. A는 이 증서를 B에게 팔수 있으며 B는 그것을 C에게 팔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사태의 성질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A 또는 B는 자기가 가지고있는 증서를 자본으로 전화시켰는데 C는 자기의 자본을 주식자본에서 기대되는 잉여가치에 대한 단순한 소유증서로 전화시킨것이다.

국가증권뿐만아니라 또 주식도 포함한 이러한 소유증서들의 가치의 독립적운동은 그러한 소유증서들이 아마도 그 증서들이 기초하고있을 자본이나 청구권외에 현실적자본을 형성하는듯한 외관을 확정한다. 즉 이러한 소유증서들은 상품으로 되는것이며 이 상품의 가격은 독특한 운동을 하고 또 독특한 방식으로 확정된다. 이 소유증서들의 시장가치는 현실적자본의 가치가 변화하지 않아도(비록 그 가치증식은 변화할지 몰라도) 그 명목가치와는 다른 규정을 준다. 한편으로 그 시장가치는 그 권리명의에 의하여 취득되는 수익의 높이와 확실성에 따라 변동한다. 만약 어떤 주식의 명목가치 즉 본래 이 주식에 의하여 대표되던, 투자된 금액이 100파운드이고 또 기업이 5%가 아니라 10%를 제공하게 되였다면 기타 사정들이 변하지 않고 리자률이 5%인 경우에는 이 주식의 시장가치는 200파운드로 오른다. 왜냐하면 5%로 자본화되면 이 주식은 이제는 200파운드의 의제자본을 대표하기때문이다. 이 주식을 200파운드로 사는 사람은 이 자본투하에서 5%의 수입을 얻는다. 기업의 수익이 감소되면 반대로 된다. 이 증권의 시장가치는 부분적으로는 투기적인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적수입에 의해서뿐만아니라 또 예상되는, 미

리 계산되는 수입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자본의 가치증식이 변함없다고 전제하면 또는 국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아무런 자본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의 수익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여있고 기타의 점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여있다고 전제하면 이러한 유가증권들의 가격은 리자률과는 반대로 오르내릴것이다. 만약 리자률이 5%로부터 10%로 오른다면 5파운드의 수익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은 다만 50파운드의 자본만을 대표할따름이다. 만약 리자률이 $2\frac{1}{2}$%로 내린다면 동일한 유가증권은 200파운드의 자본을 대표한다. 유가증권의 가치는 언제나 다만 자본화된 수익, 즉 환상적자본에 대하여 현행리자률에 따라 계산된 수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폐시장의 핍박의 시기에는 이 유가증권의 가격은 이중으로 내릴것이다. 첫째로는 리자률이 오르기때문이며 둘째로는 이 유가증권을 화폐로 실현하기 위하여 그것이 대량으로 시장에 투하되기때문이다. 이 가격저락은 이러한 증권이 그 소유자에게 보증하는 수익이 국채증권의 경우처럼 변함없는 경우에도 또 유가증권이 대표하는 현실적자본의 가치증식이 산업기업들의 경우처럼 재생산과정의 교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일어난다. 이 마지막 경우에는 다만 상술한 가치감소에 새로운 가치감소가 더 첨가될뿐이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는 이러한 증권은 실패한 기업이나 또는 사기적기업을 대표하지 않는 한에서는 다시 자기의 원래의 수준으로 등귀한다. 공황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증권의 가치감소는 화폐재산의 집중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2)

---

(2) {2월혁명[232]의 직후에 빠리에서 상품과 유가증권이 극도로 가치가 감소되여 전

이러한 증권들의 가치감소 또는 가치증대가 이러한 증권이 대표하는 현실적자본의 가치운동과 관계없는것인 한, 한 나라의 부의 크기는 이러한 가치감소 또는 가치증대이후에도 그 이전과 똑같은것이다.

《1847년 10월 23일에는 공채 및 운하와 철도주는 벌써 1억 1,475만 2,225파운드나 가치가 감소되였다》(《상업곤경》, 1847~1848년 [제3800호], 잉글랜드은행총재 모리스의 증언).

이러한 증권의 가치감소가 생산 및 철도와 운하에서의 교통의 현실적정지나 또는 착수된 기업들의 중지나 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기업들에 대한 무익한 출자를 표현한것이 아니였던 한에서는 이 나라는 명목적인 화폐자본의 이러한 비누거품의 파렬에 의해서는 한푼도 더 가난해지지는 않았던것이다.

이러한 모든 증권들은 사실상 장래의 생산에 대한 축적된 청구권, 권리명의이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며 이 권리명의의 화폐가치 또는 자본가치는 국채의 경우와 같이 하등의 자본도 전혀 대표하지 않든가 또는 그것들이 대표하는 현실적자본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규제되는것이다.

자본주이적생산이 진행되는 모든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거대한 량의 소위 리자부자본 또는 화폐자본(moneyed capital)이 존재한다. 그리고 화폐자본의 축적이라는것은 대부분은 생산에 대한 이러한 청구권의 축적 이외에는, 즉 이

혀 팔리지 않았을 때 리버풀에 있은 스위스상인 R. 쯔윌헨바르트씨(그가 나의 부친에게 말한바에 의하면)는 가능한 모든것을 화폐로 바꾸어 현금을 가지고 빠리로 가서 로트쉴드를 방문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로트쉴드는 뚫어지게 그를 보다가 그에게로 다가와서 그의 량어깨를 움켜쥐였다. 《당신은 돈을 가지고있는가?》 — 《그렇습니다. 남작님.》 — 《응, 그렇다면 같이 해봅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멋진 장사를 하였다. — F. 엥겔스

러한 청구권의 환상적인 자본가치인 시장가격의 축적이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은행업자의 자본의 일부분은 이러한 소위 리자부증권에 투하되여있다. 이 증권자체는 현실적인 은행업무에서는 기능하지 않는 준비자본의 일부분이다. 그 최대의 부분은 수형 즉 산업자본가나 상인들의 지불약속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화폐대부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수형은 리자부증권이다. 즉 그가 이러한 증권을 구입할 때에는 만기까지의 기간의 리자를 공제하는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할인이라는것이다. 그리하여 수형이 표시하는 금액으로부터 얼마나 공제되는가 하는것은 그때의 리자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끝으로 은행업자의 자본의 최후의 부분을 이루는것은 금이나 은행권으로 되여있는 그의 화폐준비이다. 예금은 계약에 의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치는것으로 약정되여있지 않는한 언제나 예금자가 자유로 처분할수 있다. 예금은 부단히 변동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꺼내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충하기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일반적인 평균액은 그리 변동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생산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은행의 준비금은 평균적으로는 언제나 축장화폐로서 현존하는 화폐의 량을 표시하며 이러한 축장화폐의 일부분은 그 자체가 또한 증권으로 이루어진다. 즉 금에 대한 단순한 지불지도권이고 결코 자체가치가 아닌 증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은행업자의 자본의 대부분은 순전히 의제적인것이고 채권(수형), 국채증권(과거의 자본을 대표하는것) 및 주식(장래의 수익에 대한 지불지도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은행업자의 금고속에서 이러한 증권이 대표하고있

는 자본의 화폐가치는 그 증권이 확실한 수익에 대한 지불지도권(국채증권의 경우처럼)이든가 또는 현실적자본의 소유권증서(주식의 경우처럼)인 경우에도 완전히 의제적인것이며 적어도 일부분은 이러한 증권에 의하여 대표되는 현실적자본의 가치와는 독립해서 규제된다는것, 또는 이러한 증권이 대표하는것이 자본이 아니고 단순한 수익청구권인 경우에는 동일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부단히 변동되는 의제화폐자본으로 표현된다는것이다. 여기에 더 첨가되는것은 이러한 의제적인 은행업자자본의 대부분은 은행업자자신의 자본을 표시하는것이 아니라 리자가 붙거나 붙지 않거나에는 관계없이 은행업자에게 예금하고있는 공중의 자본을 표시한다는 사정이다.

예금은 언제나 화폐로 진행된다. 즉 금이나 은행권이나 또는 이러한것들에 대한 지불지도권으로써 진행된다. 현실적 류통의 수요에 따라 때로는 수축되고 때로는 확대되는 준비금을 제외하면 이러한 예금은 현실적으로는 언제나 한편으로는 산업자본가들과 상인들의 수중에 있다. 즉 그 예금으로써 수형의 할인이나 선대를 받는 그들의 수중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예금은 유가증권거래업자(거래소 중매인)의 수중이거나 또는 자기들의 유가증권을 판 개인들의 수중이거나 또는 정부의 수중에(국고증권이나 신규차입의 경우) 있다. 예금 그 자체는 이중적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예금은 이미 상술한바와 같이 리자부자본으로서 대출되고 따라서 은행의 금고에 있는것이 아니며 다만 은행의 장부상에서 예금자의 대방으로 나타나고있을따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자들의 호상대부가 그들의 예금행표에 의하여 상쇄되고 서로 없어지는 한에서는 예금은 그러한 단순한 장부상 금액으로서만 기능한다. 이 경우에 이러한 예금이 동일한 은행업자에게 있고 이

은행업자가 예금자들의 구좌호상간에서 환치하는가 또는 개개의 은행들이 그들의 행표를 서로 교환하여 차액만을 지불하는데 의하여 이 환치가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전혀 아무래도 좋다.

리자부자본과 신용제도의 발전에 따라 동일한 자본이나 지어는 동일한 채권이 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서 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각이한 방식으로 하여 모든 자본이 2배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배로 보인다.(3) 이 《화폐자본》의 대부분은 순전히 의제적인것이다.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금은 은행업자의 대부금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이 대부금은 결코 예탁현금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예금들이 환치거래에 복무하는 한에서 은행업자들이 그것을 대출한 다음에는 그것들은 은행업자를 위하여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은행업자들은 이러한 대차관계의 청산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예금들에 대한 상호지불지도권을 호상 지불한다.

A. 스미스는 화폐대부에 있어서 자본이 노는 역할에 관

---

(3) {자본이 이렇게 2배, 3배로 늘어나는 일은 최근년간에 더욱 현저하게 발전되였다. 례컨대 런던의 거래소보고중에서 이미 특별한 한 란을 차지하고있는 금융트레스트에 의하여서이다. 일정한 종류의 리자부증권, 례컨대 외국의 국가채권, 영국의 도시채권 또는 미국의 공채, 철도주 등을 구입하기 위한 회사가 설립된다. 례컨대 200만파운드라는 자본이 주식응모에 의하여 조달된다. 리사회는 그러한 유가증권을 구입하거나 또는 많게나 적게나 적극적으로 이 유가증권으로 투기를 하고 매년의 리자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것을 배당으로서 주주들에게 분배한다.—그리고 또 몇몇 주식회사들에서는 보통의 주식을 두 종류로 즉 우선주와 후배주로 구별하는 습관이 생겼다. 우선주는 물론 총리윤이 그것을 허락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확정리자지불, 례컨대 5%를 받는다. 그다음에 더 남는것이 있으면 그것을 후배주가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써 우선주에 대한 《견실한》 투자는 본래의 투기—후배주로써의—로부터 많게나 적게나 분리된다. 그런데 대기업중에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따라가는것을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의 주식에 100만파운드나 수백만파운드를 투하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주식의 명목가치만큼한 새로운 주식을 절반은 우선주로, 절반은 후배주로 발행하는 회사들이 설립되게 되였다. 이러한 경우에 원래의 주식은 새로운 주식발행의 기초로 되고있기때문에 2배로 되는것이다.— F. 엥겔스}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러나 화폐거래업에 있어서까지도 화폐는 이른바 지불지도권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소유자에게는 용도가 없는 자본들을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것이다. 이러한 자본은 그 이전의 도구로서 복무하는 화폐액보다 거의 몇배일지 모를 정도로 큰것일수 있다. 즉 동일한 화폐쪼각이 순차로 많은 각이한 대부에 복무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많은 각이한 구입에 복무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례컨대 A는 W에게 1,000파운드를 대부하고 W는 곧 이것을 가지고 B에게서 1,0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B자신에게는 이 화폐가 쓸데가 없으므로 그는 이 동일한 화폐쪼각을 X에게 대부하며 X는 이 화폐쪼각으로 지체없이 C에게서 역시 1,0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리유로 C는 그 화폐를 Y에게 대부하며 Y는 또 그 화폐로 D에게서 상품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동일한 금화 또는 지페는 불과 며칠사이에 각각 가치로 보면 이 화폐쪼각의 총액과 같은 세개의 각이한 대부와 세개의 각이한 구매의 매개로서 복무할수 있다. 세 사람의 화폐소유자 A, B, C가 세 사람의 차용자 W, X, Y에게 넘겨준것은 오직 그러한 구입을 하는 힘이다. 이 힘이야말로 이러한 대부의 가치이기도 하고 효용이기도 한것이다. 세 사람의 화폐소유자가 대부하는 자본은 그 자본으로 구매할수 있는 상품의 가치와 같으며 그러한 구입을 하는데 쓰이는 화폐의 가치보다 3배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대부들은 완전히 확실한것일수 있다. 왜냐하면 각 채무자들이 차용한 화폐로써 구매한 상품들은 적당한 때에 같은 가치의 금화 또는 지페를 리윤과 함께 되돌아오도록 사용되기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화폐쪼각이 그 3배나 30배가 되는 가치의 각이한 대부들의 매개로서 복무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순차로 그러한 상환의 수단으로서도 복무할수 있다》 (제2편 제4장[233]).

동일한 화폐쪼각이 그 류통속도에 따라서는 몇개의 각이한 구입들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그것은 또한 몇개의 각이한 대부도 할수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구입은 화폐를 한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것이며 대부는 아무런 구매에 의하여도 매개되지 않는,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이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기때문이다. 각 판매자들에 대하여 화폐는 그의 상품의 전화된 형태를 표시한다. 어떤 가치나 자본가치로서 표현되는 오늘날에는 화폐는 각이한 대부에서 순차로 각이한 자본들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화폐가 각이한 상품가치를 순차로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전의 명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동시에 화폐는 물적자본을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류통수단으로서 복무한다. 대부에 있어서는 화폐는 류통수단으로서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하는것은 아니다. 화폐가 대부자의 수중에 있는 동안은 그의 수중에서는 화폐는 류통수단이 아니고 그의 자본가치의 존재형태이다. 그리고 이 형태로 그는 그것을 대부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이전시킨다. 만약 화폐를 A는 B에게, B는 C에게 구매라는 매개가 없이 대부한다면 이 동일한 화폐는 세개의 자본들을 표시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자본만을, 오직 **하나의** 자본가치만을 표시할것이다. 화폐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자본을 표시하는가 하는것은 화폐가 각이한 상품자본의 가치형태로서 몇번 기능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A. 스미스가 대부일반에 관하여 말하고있는것은 예금에 대하여도 같이 말할수 있는데 예금이란 공중이 은행가에게 제공하는 대부의 특별한 명칭에 불과한것이다. 동일한 화폐쪼각은 임의의 회수의 예금을 위한 도구로서 복무할수 있다.

《오늘 어떤 사람이 A에게 예금한 1,000파운드가 래일에는 도로

지불되여 B에게서 예금으로 된다는것은 다툴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음날에는 B에 의하여 지불되여 C에게서 예금으로 될수 있으며 이렇게 무한히 계속될수 있다. 따라서 이 1,000파운드의 화폐는 일련의 양도에 의하여 전혀 확정될수 없는 몇배의 예금액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련합왕국에 있는 예금총액의 $\frac{9}{10}$는 은행업자들의 장부에 기입되여 있어 은행업자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는것 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가능하다. …례컨대 스코틀랜드에서는 화폐류통액은 300만파운드를 초과한적이 없었는데 예금액은 2,700만파운드에 달하고있다. 그리고 만약 은행에 대한 지불청구의 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1,000파운드가 반대의 길을 걸어 역시 확정할수 없는 금액을 마찬가지로 쉽게 다시 결제할수 있을것이다. 오늘 어떤 사람이 소매상인에 대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동일한 1,000파운드가 래일에는 도매상인에 대한 이 소매상인의 채무를 결제할수 있고 모레는 은행에 대한 이 도매상인의 채무를 결제할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무한히 계속되므로 동일한 1,000파운드가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든지 많은 예금액을 결제할수 있는것이다》(《통화리론론평》 62~63페지).

그리고 이 신용제도하에서는 모든것이 2배, 3배로 되며 단순한 환상의 산물로 전화되는데 이와 같은것은 사람들이 드디여 확실한 어떤것을 붙잡았다고 믿는 《준비금》에 대하여도 꼭같이 말할수 있다.

다시 잉글랜드은행총재 모리스씨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개인은행의 준비금은 예금형태로 잉글랜드은행의 수중에 있다. 금의 류출의 첫째 영향은 단지 잉글랜드은행에만 미치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은행들의 준비금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은행들이 우리 은행에 두고있는 준비금의 일부분의 류출이기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의 류출은 모든 지방은행의 준비금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상업곤경》, 1847~

1848년 [제3639호 및 제3642호]).

그리하여 결국 준비금은 현실적으로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인것이다.(4) 그러나 이 준비금도 또 이중적존재를 가진다. 잉글랜드은행의 은행부의 준비금은 이 은행이 발행할 권리를 가지고있는 은행권중 류통하는 은행권을 넘는 초과분과 같다. 은행권발행의 법정최고한도는 1,400만파운드(이것을 위해서는 금속준비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대략 이 은행에 대한 국가의 채무금액과 같다.) 플라스 이 은행의 귀금속보유액이다. 이리하여 만약 이 보유액이 1,400만파운드라면 이

(4) (그후 이러한 일이 더 발전되였다는것은 1892년 11월의 런던의 15개 대은행의 은행준비금에 관한 1892년 12월 15일부 《매일소식》 지에 실린 다음과 같은 공보가 보여준다.

은행명칭	부채(파운드)	현금준비(파운드)	백분비
씨티	9,317,629	746,551	8.01
캐피털—카운티즈	11,392,744	1,307;483	11.47
임피어리얼	3,987,400	447,157	11.22
로이즈	23,800,937	2,966,806	12.46
런던—웨스트민스터	24,671,559	3,818,885	15.20
런던서남	5,570,268	812,353	14.58
런던주식	12,127,993	1,288,977	10.62
런던—중부	8,814,499	1,127,280	12.79
런던군	37,111,035	3,600,374	9.70
국민	11,163,829	1,426,225	12.77
국민지방	41,907,384	4,614,780	11.01
파즈동맹	12,794,489	1,532,707	11.98
프레스커트	4,041,058	538,517	13.07
런던련합	15,502,618	2,300,084	14.84
월리엄즈—디컨—만체스터	10,452,381	1,317,628	12.60
총계	232,655,823	27,845,807	11.97

이 약 2,800만의 준비금중에서 적어도 2,500만이 잉글랜드은행에 예금되고있으며 기껏해서 300만이 현금으로서 15개 은행자신의 금고안에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은행의 은행부의 현금준비는 같은 1892년 11월에 1,600만에 도달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F. 엥겔스)

은행은 2,800만파운드의 은행권을 발행할수 있는것이며 만약 그중에서 2,000만이 류통하고있다면 은행부의 준비금은 800만이다. 이 경우에 이 800만이라는 은행권은 법률상 이 은행이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은행업자의 자본이며 또 동시에 이 은행의 예금을 위한 준비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금의 류출이 생겨 그때문에 금속보유액이 600만이 감소된다면—그렇게 되면 이 액만큼 은행권이 페기되지 않을수 없다.—은행부의 준비금은 800만으로부터 200만으로 줄어들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은행은 그 리자률을 현저히 높일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은행에 예금하고있는 은행들과 기타 예금자들은 잉글랜드은행에 있는 그들자신의 대방에 대한 준비금이 현저히 감소된것을 알게 될것이다. 1857년에는, 런던의 4대주식은행은 만약 잉글랜드은행이 1844년의 은행법[212]을 정지하는 《정부서한》을 입수하지 않는다면(5) 그들은 자기들의 예금을 찾아낼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렇게 되면 은행부는 파산당하였을것이다. 이리하여 은행부는 1847년처럼 류통하는 은행권의 태환보증으로서 발행부에는 수백만(례컨대 1847년에는 800만)이 있는데 파산당할수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태환보증이라는것도 또한 환상적인것이다.

《은행업자 자신들에게 직접 필요되지 않는 예금의 큰 부분은 (bill-brokers) 〔문자그대로는 수형중개인, 사실상에서는 절반은행가〕 들의 수중으로 넘어가며 그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런던이나 지방의 사람들에게 할인하여준 상업수형을 은행업자에게 그 선대의 담보로서 제공한다. 수형중개인은 은행업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5) 〔1844년의 은행법의 정지는 잉글랜드은행이 자기가 보유하는 금준비에 의한 보증을 고려함이 없이 은행권을 발행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액수의 종이의 제화폐자본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 은행이나 수형중개인들에게 선대하고 또 이들을 통하여 상업에도 선대를 할수 있게 하는것이다.—[F. 엥겔스]〕

즉시 반환되는 이 화폐의 반환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큰 금액으로 되여있는것은 〔잉글랜드〕은행의 현총재 니브씨가 자기의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는 어떤 중개인이 500만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알고있고 또 다른 한사람은 800만 내지 1,000만을 가지고있었다고 추정할 근거를 가지고있다. 어떤 사람은 400만을, 또 한 사람은 350만, 제삼자의 한 사람은 800만이상을 가지고있었다. 내가 말하는것은 중개인들의 수중에 있는 예금에 관하여서이다.〉》(《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 1857~1858년 Ⅴ페지 제8절)

《런던의 수형중개인들은…조금도 현금준비없이 거액의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련속 만기가 되는,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수형으로부터의 입금을 기대하였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자기들이 할인한 수형을 담보로 하여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선대를 얻을수 있다는 자기의 힘을 믿었다》[우와 같은 보고 Ⅷ페지 제17호].—《런던의 두 수형중개인상회가 1847년에 지불을 정지하였다. 그후에 두 상회는 거래를 회복하였다. 1857년에 그들은 다시 지불을 정지하였다. 한 상회의 부채는 1847년에는 개산으로 268만 3,000파운드였으나 그때의 그 자본은 18만파운드였다. 1857년에는 그 부채는 530만파운드였는데, 자본은 아마도 1847년 당시 액수의 $\frac{1}{4}$을 넘지 않았을것이다. 다른 상회의 부채는 두번 다 300~400만이였으며 자본은 4만 5,000파운드를 넘지 않았다》(우와 같은 보고 ⅩⅪ페지 제52절).

제 30 장

화폐자본과 현실적자본. I

신용제도의 연구에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있는 곤난한 문제들은 다만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첫째로, 본래의 화폐자본의 축적. 이 축적은 어느 정도까지 자본의 현실적축적, 즉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표식인가 또 어느 정도까지 그렇지 않은가? 자본의 소위 과다[plethora][234]라는, 언제나 리자부자본 즉 화폐자본에만 적용되는 이 표현은 다만 산업과잉생산의 특수한 표현방식에 불과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 이외의 특수한 현상을 이루는것인가? 이 과다, 화폐자본의 이 과잉공급은 정체하고있는 화폐량(금덩이, 금화 및 은행권)의 존재와 일치하는가, 따라서 현실적화폐의 과잉은 대부자본의 그러한 과다의 표현 및 현상형태인가?

그리고 **둘째로**, 화폐의 핍박 즉 대부자본의 부족은 어느 정도로 현실적자본(상품자본과 생산자본)의 부족을 표현하는가? 다른 한편 그것은 화폐 그 자체의 부족 즉 류통수단의 부족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

이제까지 화폐자본 및 화폐재산일반의 축적의 특유한 형태를 고찰한 한에서는 축적의 이 형태는 결국 로동에 대한

소유의 청구권의 축적으로 되였다. 국채라는 자본의 축적은 이미 명백히 된바와 같이 조세액중에서 어떤 금액을 앞당겨 취득할 권리를 얻는 국가의 채권자계급의 증대를 의미할따름이다.(6) 채무의 축적조차도 자본축적으로서 나타날수 있다는 사실에는 신용제도하에서 일어나는 외곡의 완성이 표현된다. 이 채무증서는 최초에 차용되여 이미 오래전에 지출된 자본을 위하여 발행된것인데 이미 소멸된 자본의 종이복제품도 그것이 팔수 있는 상품이고 따라서 자본으로 재전화될수 있는 한에서는 그 소유자에게는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사회사업, 철도, 광산 등등에 대한 소유증서는 확실히 사실상 현실적자본에 대한 증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자본에 대하여 자유로 처분할수 있게 하는것은 아니다. 현실적자본을 끌어낼수는 없다. 그 소유증서는 다만 이 현실적자본에 의하여 획득되여야 할 잉여가치의 일부분에 대한 법적청구권을 부여할따름이다. 그러나 이 증서도 역시 현실적자본의 종이복제품으로 되는것인데 그것은 적하증권이 하물자체와는 따로 그리고 하물과 동시에 가치를 가지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자본의 명목상 대표자로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자본은 그것과는 따로 존재하며 그리고 물론 이 복제품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현실적자본의

---

(6) 《국채증권은 세입중에서 채무의 지불에 돌려지는 부분을 표시하는 상상적인 자본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과 같은 액의 자본은 이미 소비되였는데 이 자본은 차입금을 표시하는 분모로서 복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국채증권이 대표하는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런데 그사이에 새로운 부가 산업로동에서 틀림없이 생겨날것이다. 매년 이 부의 일부분은 소비된 부를 대부한 사람들이 받을것으로 예정되는것이다. 이 부분은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세로서 징수되여 국가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반적인 자본과 리자간의 비률에 따라 하나의 상상적인 자본이 가정되는데 그 자본은 채권자들이 받게 될 년임대료를 낳을수 있는 자본과 같은 크기의 상상적인 자본이다》(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제2권 229~230페지).

소유자가 변경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그것은 리자부자본의 형태로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정한 수익을 보증할뿐만 아니라 또한 매각에 의하여 자본가치로서의 그 상환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종이증권의 축적이 철도, 광산, 기선 등등의 축적을 표현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현실적재생산과정의 확대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례컨대 동산소유에 대한 과세표의 확대가 이 동산의 확대를 표시하는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 판매될수 있고 따라서 자본가치로서 류통하는 복제품으로서는 이러한 소유증서는 환상적인것이며 그 가치액은 그것을 권리명의로 하는 현실적자본의 가치운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등락할수 있는것이다. 그 가치액 즉 거래소에서의 그 시세는 리자률의 저하가 화폐자본의 특유한 운동과는 관계없이 리윤률의 경향적저하의 단순한 결과인 한에서 이 리자률의 저하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리하여 가치표현으로 보면 그 매개 해당부분이 일정한 원래의 명목가치를 가지고있는 이 상상적부는 상술한 한가지 원인만으로도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과정에서 확대되여간다. (7)

이러한 소유증서의 가격변동에 의한 리득과 손실 그리고 철도왕 기타의 수중으로의 이 소유증서의 집중은 그 본성으로 보아 더욱더 투기의 결과로 되며 이 투기가 로동을 대신하여 자본소유의 본래의 획득방법으로서 나타나며 또 직접적

---

(7) 축적된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일부분은 사실상 산업자본의 단순한 표현이다. 례컨대 영국이 1857년에 미국의 철도와 기타 기업에 8,000만파운드를 투자하였을때 이 투자는 거의 전적으로 영국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매개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전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영국의 수출업자들은 이 상품들에 대하여 미국앞수형을 발행하였으며 이 수형을 영국인 주식응모자가 사들여 주금의 불입을 위하여 미국으로 송부하였던것이다. [— F. 엥겔스]

폭력대신으로 나타난다. 이 종류의 상상적화폐재산이 개인들의 화폐재산의 큰 부분뿐만아니라 이미 말한바와 같이 은행업자자본의 큰 부분을 이룬다.

이 문제를 빨리 끝마치기 위하여 한마디 할따름이지만 화폐자본의 축적이라는것은 일방의 사적화폐자본가와 타방의 국가, 자치체 및 재생산적 채무자들사이에서는 매개자로서의 은행업자(직업적인 대부자)의 수중에서의 부의 축적이라고 리해하여도 될것이다. 그것은 신용제도의 모든 거대한 확대, 대체로 신용전체가 이 은행업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사적자본으로서 리용되기때문이다. 이자들은 자본과 수입을 언제나 화폐형태로 또는 화폐에 대한 직접적청구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이 계급의 재산의 축적은 현실적축적과는 극히 다른 방향에서 진행될수 있으나 여하간 이 계급이 현실적축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한다.

당면의 문제를 보다 좁은 한계안에 끌어넣어 말한다면 국채나 주식이나 기타 각종 유가증권은 대부될수 있는 자본, 즉 리자를 낳기로 예정된 자본을 위한 투자분야이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이 자본을 대부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그것들의 형태로 투하되는 대부자본인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이 재생산과정에서 직접적역할을 노는 한에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념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산업가나 상인이 수형을 할인받거나 대부를 받으려고 할 때 그에게 필요한것은 주식도 아니고 국채증권도 아니라는것이다. 그에게 필요한것은 화폐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방식으로 화폐를 조달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가증권을 저당하거나 또는 판매하는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하는것은 바로 이 대부자본의 축적이며 그것도 특히는 대부될수 있는 화폐

자본의 축적이다. 여기서 문제로 하는것은 가옥, 기계 및 기타 고정자본의 대부가 아니다. 또 산업가들과 상인들이 그들사이에서 상품형태로써 재생산과정의 순환내부에서 서로 실시하는 선대도 아니다. 하기는 이 점도 미리 더 상세히 연구하여야 할것이지만 여기서는 다만 매개자로서의 은행업자들에 의하여 산업가나 상인들에게 실시되는 화폐대부만을 문제로 하는것이다.

그러면 우선 상업신용, 즉 재생산에 종사하고있는 자본가들이 호상 제공하는 신용을 분석하자. 이 신용은 신용제도의 기초를 이룬다. 이 신용을 대표하는것은 수형, 확정지불기한이 있는 채무증서, 연불증권이다. 각자는 한손으로는 신용을 주고 다른 손으로는 신용을 받는다. 우리는 당분간 은행업자의 신용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계기이다. 이러한 수형들이 상인자신들사이에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양도서명에 의해서—그러나 그사이에 할인이 진행됨이 없이—다시 지불수단으로서 류통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A로부터 B로의 채권의 양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조금도 사태의 련관을 변경시키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과 바꾸어놓을따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제는 화폐의 개입없이 진행될수 있다. 례컨대 방적업자 A는 면화중매인 B에게, B는 수입업자 C에게 수형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자. 그런데 흔히 볼수 있는 일이지만 C가 면사의 수출도 한다면 C는 수형으로 A에게서 면사를 살수 있고 또 방적업자 A는 C에게서 지불로서 받은 B자신의 수형으로 중매인 B에게 지불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오직 차액만을 화폐로 지불하면 되는것이

다. 그렇게 하면 이 거래전체가 면화와 면사와의 교환을 매개하고있을따름이다. 수출업자는 방적업자를 대표할따름이며 면화중매인은 면화재배업자를 대표할따름이다.

그런데 이 순수한 상업신용의 순환에 관하여는 두가지를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러한 호상간의 채권의 결제는 자본의 환류에 달린다. 즉 연기되여있을따름인 W—G에 달린다. 만약 방적업자가 포목제조업자로부터 수형을 받았다면 포목제조업자가 그 지불을 할수 있는것은 그가 시장에 내놓은 포목이 만기이전에 판매된 때이다. 만약 곡물투기업자가 거래상대인 중매인앞으로 수형을 발행하였다면 중매인이 화폐를 지불할수 있는것은 그사이에 곡물이 예상한 가격대로 판매되였을 때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불은 재생산 즉 생산 및 소비 과정의 류동성에 달린다. 그러나 신용은 호상적이므로 각자의 지불능력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지불능력에 달린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가 수형을 발행한 때에는 자기 자신의 기업에서의 자본의 환류를 기대하였든가 또는 그사이에 그에게 수형을 지불하여야 할 제삼자의 기업에서의 환류를 기대하였든가 그 어느 하나였기때문이다. 자본의 환류에 대한 기대를 도외시한다면 지불은 오직 자본의 환류가 지체되는 때 수형발행인이 자기의 채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처분할수 있는 준비자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할수 있다.

둘째로, 이 신용제도는 현금지불의 필요성을 제거하는것이 아니다. 우선 지출의 큰 부분인 로임, 조세 등등은 항상 현금으로 지불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례컨대 C로부터 수형으로 지불을 받은 B는 이 수형이 만기가 되기전에 그 자신이 D에 대한 만기수형의 지불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B는

현금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면화재배업자로부터 방적업자에 이르고 또 그 반대로 되는것으로서 우에서 전제된바와 같은 재생산의 완전한 순환은 하나의 례외일따름이며 항상 여러 곳에서 중단되지 않을수 없다. 재생산과정의 고찰(제2부 제3편[235])에서 본바와 같이 불변자본의 생산자들은 불변자본의 일부분을 자기들사이에서 교환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형은 많게나적게나 호상 상쇄될수 있다. 생산의 상승선에서 례컨대 면화중개인은 방적업자에게, 방적업자는 포목제조업자에게, 포목제조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아마도 다시 면화수입업자)에게 수형을 발행해야 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 거래의 순환이 나타나는것은 아니며 따라서 또 채권계렬의 회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례컨대 직조업자에 대한 방적업자의 채권은 기계제조업자에 대한 석탄공급업자의 채권에 의하여 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적업자는 그의 사업에서는 기계제조업자에 대하여 결코 반대채권을 가질수는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방적업자의 생산물인 면사는 결코 기계제조업자의 생산과정에 그 요소로서 들어갈수는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화폐로써 결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상업신용에 있어서의 한계는 그 자체로서 보면 1) 산업가나 상인의 부 즉 환류가 지연되는 경우의 그들의 준비자본처분력이며, 2) 이 환류 그 자체이다. 이 환류는 시간상 지연될수도 있으며 그동안에 상품가격이 내릴수도 있으며 시장의 정체로 말미암아 상품이 한동안 팔리지 않게 될수도 있다. 수형이 장기이면 장기일수록 우선 준비자본이 그만큼 크지 않으면 안되며 또 가격의 저락이나 시장의 공급과잉에 의한 환류의 감소 또는 지연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리고 또

최초의 거래가 상품가격의 등락을 노리는 투기에 의하여 일어났다면 환류는 그만큼 불확실하게 된다. 그러나 로동의 생산력이 발전하고 따라서 또 대규모적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1) 시장이 확대되고 생산장소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2) 따라서 신용이 장기화되지 않을수 없게 되며 3) 따라서 투기적요소가 더욱더 거래를 지배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대규모적이고 먼 시장을 위한 생산은 모든 생산물을 상업의 수중에 맡긴다. 그러나 국가의 자본이 배로 되여 상업 자신이 자기의 자본으로 천국의 생산물을 사들이여 다시 팔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 신용은 없어서는 안되는것이다. 이 신용은 량적으로는 생산의 가치량의 증대에 따라 증대하고 시간적으로는 시장이 점점 멀어짐에 따라 길어진다. 여기서는 호상작용이 일어난다. 생산과정의 발전은 신용을 확대시키고 신용은 산업이나 상업의 활동을 확대시킨다.

우리가 이 신용을 은행업자신용과 분리시켜 고찰하면 그것이 산업자본 그 자체의 규모와 함께 증대한다는것은 명백하다. 대부자본과 산업자본은 여기서는 동일한것이다. 대부되는 자본은 최종적인 개인적소비로 들어가게 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본의 불변적요소의 보상에 들어가게 된 상품자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부된 자본으로서 나타나는것은 항상 재생산과정의 일정한 단계에 있는 자본이며 그것이 매매에 의하여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되는데 그에 대한 등가는 후에 약속한 기한이 되여서야 비로소 구매자에 의하여 지불되는것이다. 그리하여 례컨대 면화는 수형과 교환되여 방적업자의 수중으로, 방사는 수형과 교환되여 포목제조업자의 수중으로, 포목은 수형과 교환되여 상인의 수중으로 넘어가며 상인의 수중으로부터 이

것은 수형과 교환되여 수출업자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수출업자의 수중으로부터 수형과 교환되여 인도의 상인의 수중으로 넘어가서 이 인도의 상인은 그것을 판매하고 그 대신 인디고를 구매하며 이렇게 계속된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면화는 포목으로의 전화를 수행하고 포목은 결국 인도로 수송되여 인디고와 교환되고 인디고는 구라파로 수송되여 거기서 다시 재생산에 들어간다, 재생산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은 이 경우에 신용에 의하여 매개되며 그리하여 방적업자는 면화의 대금을, 포목제조업자는 면사의 대금을, 상인은 포목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는 않는다. 이 과정의 첫째 행위에서는 면화라는 상품이 그 각이한 생산단계들을 통과하며 이 이행이 신용에 의하여 매개되는것이다. 그런데 이 면화가 생산에서 상품으로서의 최종형태를 얻게 되면 그 상품자본은 단지 각이한 상인들의 수중을 통과할따름인데 이러한 상인들은 먼 시장으로의 수송을 매개하고 그들중 최후의 상인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소비자에게 팔고 그 대신 다른 상품을 사들이며 그 상품이 또 소비로 들어가든가 재생산과정으로 들어가든가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두 시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시기에는 신용은 동일한 물품의 생산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제 단계들을 실시한다. 둘째 시기에는 신용은 수송을 포함하여 한 상인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상인의 수중으로의 이행, 즉 W—G라는 행위를 실시할따름이다. 그러나 이 둘째 시기에도 상품은 적어도 부단히 류통행위중에,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한 단계에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대부되는것은 결코 유휴자본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수중에서 그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되

는 자본이며 그 소유자에게 대하여는 단순한 상품자본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즉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 그것도 우선 적어도 화폐로 천환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인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신용에 의하여 매개되는것은 상품의 변태이며 단지 W—G뿐만아니라 또 G—W와 현실적생산과정이다. 재생산순환안에서의 신용—은행가의 신용을 도외시하면—이 많다는것은 대부에 제공되여있고 유리한 투하를 찾고있는 유휴자본이 많다는것이 아니라 재생산과정에서 자본이 대량으로 운용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신용에 의하여 매개되는것은 1) 산업자본가들이 문제인 한에서는 한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에로의 산업자본의 이행이며 호상 종속되여있고 호상 련결되여있는 생산분야들의 관련이며 2) 상인들이 문제인 한에서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되여 최종적으로 판매되거나 또는 다른 상품과 교환되기까지의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그 상품의 수송과 이행이다.

이 경우에 신용의 최대한도는 산업자본의 가장 충분한 운용 즉 소비의 한계를 무시하는 산업자본의 재생산력의 극도의 긴장과 같은것이다. 이 소비의 한계는 재생산과정자체의 긴장에 의하여 확대된다. 이 긴장은 한편으로는 로동자와 자본가에 의한 수입의 소비를 증대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적소비의 긴장과 동일한것이다.

재생산과정이 류동적이고 따라서 자본의 환류가 확실한 동안은 이 신용은 지속되고 확대되며 그 확대는 재생산과정자체의 확대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환류가 지연되고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되고 가격이 저락하여 그 결과로 정체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이미 산업자본의 과잉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자본이 그 기능을 수행할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과잉이다. 대량의 상품자본이 있으나 그것은 팔리지 않는다. 대량의 고정자본이 있으나 재생산의 정체로 하여 대부분은 놀고있다. 신용은 수축된다. 그것은 1) 이 자본이 놀고있기 때문이다. 즉 그 변태를 수행할수 없으므로 재생산의 한 단계에 정체하고있기때문이다. 2) 재생산과정의 류동성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였기때문이다. 3) 이 상업신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기때문이다. 방적업자는 생산을 축소하고 팔리지 않은 대량의 재고면사를 가지고있으므로 신용으로 면화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상인은 이미 상품을 충분한 정도 이상으로 가지고있기때문에 신용으로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재생산과정의 이러한 확대에 교란이 생기면 또는 다만 그 정상적인 긴장에 교란이 생기기만 해도 그와 함께 또 신용의 결핍도 나타난다. 상품을 신용으로 얻기가 더 곤난하여진다. 현금지불에 대한 요구와 신용판매의 조심성은 특히 산업경기순환중의 파국에 계속되는 단계에서 특징적이다. 누구나 팔것을 가지고있지만 팔수 없으며 그래도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팔지 않을수 없는 공황때에는 놀고있어 투하처를 찾고있는 자본의 량이 아니라 자기의 재생산과정에서 체류하고있는 자본의 량은 바로 이 신용결핍이 가장 심한(따라서 또 은행업자신용에서는 할인률이 가장 높은) 경우에 가장 크다. 이러한 때에는 이미 투하되고있는 자본도 재생산과정이 정체되고있으므로 사실상 대량적으로 놀고있다. 공장은 정지되고 원료는 퇴적되고 완성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시장을 공급과잉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생산자본의 결핍에 기인한다고 하는것보다 더 그릇된 일은 없다. 바로 이런 시기에야말로 생산자본의 과잉이 존재하는것이다. 즉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정상적인 그러나 당분간은 축소된 재생산규모

로 보아 과잉인것이며 부분적으로는 마비된 소비로 보아 과잉인것이다.

전사회가 다만 산업자본가와 임금로동자로써만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가격변동도 무시하기로 하자. 즉 총자본의 큰 부분이 그 평균적비률로 보상되는것을 방해하며 또 특히 신용에 의하여 발전하는 재생산과정 전체의 일반적관련하에서는 언제나 일시적인 일반적정체를 일으키지 않을수 없는 그런 가격변동은 무시하기로 하자. 또 신용제도에 의하여 조장되는 공거래와 투기적거래도 역시 무시하기로 하자. 그렇게 하면 공황은 오직 각이한 부문들의 생산의 불균형에서만, 또 자본가들자신의 소비와 축적간의 불균형에서만 설명될수 있는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지는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보상의 큰 부분은 비생산계급들의 소비능력에 의존한다. 그런데 로동자들의 소비능력은 부분적으로는 로임의 법칙에 의하여 제한되여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로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리윤을 낼수 있는 동안에만 고용될따름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제한되여있다. 모든 현실적공황의 궁극적원인은 역시 언제나 자본주의적생산의 충동에 대비한 대중의 빈궁과 소비제한이며 이 충동은 마치도 사회의 절대적소비능력만이 생산력의 한계를 이루는듯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려 하는것이다.

생산자본의 현실적부족에 관하여는 적어도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국가에 있어서는 주요식량이나 또는 가장 중요한 공업원료의 전반적흉작의 경우에만 말할수 있다.

그런데 이 상업신용에 본래의 화폐신용이 첨가된다. 산업가나 상인들의 호상 선대는 은행업자나 화폐대부자들로부터 산업가나 상인으로의 화폐선대와 엉켜있다. 수형할인의

경우에는 선대는 명목적인것에 불과하다. 어떤 제조업자가 자기의 생산물을 수형을 받고 판매하고 이 수형을 어떤 수형 중개인에게서 할인받는다. 사실상 이 중개인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가의 신용을 선대할따름이며 이 은행가는 이번에는 자기의 예금자들의 화폐자본을 중개인에게 선대하는데 이 예금자는 산업가나 상인들자신들로써, 그러나 또 로동자들로써 (저축은행을 통하여), 그리고 지대취득자나 및 기타 비생산적인 계급들로써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매개 제조업자나 상인은 다액의 준비자본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며 또 현실적환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부는 단지 융통수형발행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는데 의하여, 일부는 단순한 수형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거래에 의하여 전체 과정이 극히 복잡하여지는데 외관상으로는 여전히 견실한 거래나 순조로운 환류가 오래동안 평온하게 지속되고있는듯이 보여도 실상은 썩 이전부터 환류는 사기에 걸린 화폐대부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사기에 걸린 생산자들의 희생으로써만 실시될수 있게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은 언제나 바로 파국의 직전에는 거의 지나칠 정도로 건전한것으로 보인다. 그 가장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것은 례컨대 1857년 및 1858년의 《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인데 이 보고에서는 모든 은행 리사, 상인 요컨대 오버스턴경을 비롯하여 소환을 받은 모든 전문가들이 사업의 번영과 건전을 서로 축하하였는데 이것은 1857년 8월에 폭발한 공황의 바로 한달전이였던것이다. 그리고 투크는 괴이하게도 그의 《가격의 력사》에서 매개 공황을 연구한 력사학자로서 이 환상을 다시한번 되풀이하고있다. 기업은 언제나 극히 건전하며 사업은 계속 극도로 번영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붕괴가 일어나는것이다.

이제는 화폐자본의 축적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대부할수 있는 화폐자본의 증가는 반드시 현실적자본축적 또는 재생산과정의 확대를 표시하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은 산업순환에서는 공황을 치르고난 직후에 대부자본이 대량적으로 놀고있는 단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순간에는 생산과정은 수축되고(영국의 공업지대의 생산은 1847년 공황[216]후에 3분의 1이 줄었다.) 상품의 가격은 최저점으로 내렸으며 기업정신은 마비되여 일반적으로 리자률의 수준이 낮은데 이 낮은 수준이 여기서 표시하는것은 바로 산업자본의 수축과 마비로 인한 대부할수 있는 자본의 증대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상품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감소되고 로임에 투하되는 자본이 수축됨에 따라 류통수단의 필요가 적어진다는것,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채무가 부분적으로는 금의 류출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파산에 의하여 청산된 이후에는 세계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한 추가적화폐는 필요하지 않다는것, 끝으로 수형할인업무의 범위가 그 수형자체의 수와 금액의 감소에 따라 감소된다는것, 이러한 모든것은 일목료연하다. 그러므로 대부할수 있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류통수단을 위한것이든, 지불수단을 위한것이든간에(새로운 투자는 아직 문제로 되지 않는다.) 감소되며 따라서 대부할수 있는 화폐자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대부할수 있는 화폐자본의 공급도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증대되는것이다.

그리하여 1847년 공황이후에는 《거래의 감소와 화폐의 큰 과잉》이 일반적이였다.(《상업곤경》 1847~1848년, 증언 제1644호) 리자률은 《상업이 거의 완전히 정지되고 화폐를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매우 낮았다 (우와 같은 책 45페지, 리버풀 왕립은행의 리사 호지슨의 증언).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제씨들(호지슨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한 사람이다.)이 어떠한 황당한 말을 꾸며내고있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도 알수 있다.

《이 핍박 (1847년) 은 국내의 화폐자본의 현실적감소때문에 일어난것인데 이러한 감소가 생긴것은 부분적으로는 세계 각지로부터의 수입을 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필요성때문이였으며 부분적으로는 류동자본(floating capital)의 고정자본으로의 전화때문이였다》[우와 같은 책, 63페지].

류동자본의 고정자본으로의 전화가 어떻게 그 나라의 화폐자본을 감소시킬수 있는지 전혀 리해할수 없다. 왜냐하면 례컨대 당시 자본이 주로 고정되였던 철도를 보더라도 륙교나 레루에 금이나 지페가 소비되는것이 아니였고 또 철도주에 투하된 화폐는 그것이 단순히 불입금으로서 예탁된 한에서는 은행에 예금된 다른 모든 화폐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기능하였고 또 이미 우에서도 말한바와 같이①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키기까지 하였기때문이다. 또 그 화폐가 현실적으로 건설에 지출된 한에서는 그것은 국내에서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으로서 류통한것이다. 오직 고정자본은 수출할수 있는 물품이 아니고 따라서 수출할수 없게 됨에 따라 수출품의 대금환류에 의하여 조달되는, 리용할수 있는 자본도 없어지며 따라서 현금 또는 금괴로서의 환류도 없어지는 한에서는, 오직 그러한 한에서는 화폐자본이 영향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수출품도 판매되

① 본권 529페지를 보라.—편집자

지 못하고 대량으로 외국시장에 쌓여있었던것이다. 만체스터 및 기타 지방들의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중에서 자기의 정상적인 사업자본의 일부분을 철도주에 고정시켰으며 그때문에 자기의 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차입자본에 의존하고있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실제로 그들의 류동자본이 고정되여있었는데 그 결과는 그들 자신이 걸머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기업에 투하된 자본을 끌어내서 그것을 철도에가 아니라 례컨대 광산업, 즉 철, 석탄, 동 등의 그 생산물자체가 류동자본인 광산업에 투하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였을것이다.—리용할수 있는 화폐자본이 흉작, 곡물의 수입 및 금수출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감소된것은 물론 철도투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였다.

《거의 모든 상사들이 화폐를 철도에 투하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업들을 얼마간 말아먹기 시작하였다》 [우와 같은 책, 42페지].—《여러 상사들이 한 철도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컸기때문에 이러한 상사들은 너무나 많이 수형할인을 통하여 은행에 의존하게 되였으며 그렇게 하는데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였다》 (같은 호지슨, 우와 같은 책, 67페지). 《만체스터에서는 철도투기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 (제1부 제13장 제3절 c항[236] 및 기타 개소에서 여러번 인용한 R. 가드너, 우와 같은 책, 증언 제4884호).

1847년 공황의 주요원인의 하나는 시장의 엄청난 공급과잉과 동인도와의 상품거래에서의 무제한한 사기였다. 그런데 또 기타 사정에 의하여서도 이 부문의 매우 부유한 상사들이 파산을 당하였다.

《그들은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있었으나 그것을 류동적인것으로 할수 없었다. 그들의 전체 자본은 모리셔스도에서의 토지소유 또는 염료공장들과 사탕공장들에 고정되고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50만 내지

60만파운드의 채무를 지게 되였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수형을 지불하기 위한 류동자금을 가지고있지 않았다. 그리고 최후에 명확해진것은 자기들의 수형을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의 신용에 의거할밖에 없다는것이였다.》(동인도와 거래하는 리버풀의 대상인 C. 터너, 우와 같은 책, 제730호)

그리고 또 가드너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우와 같은 책, 제4872호)

《중국과의 조약[237]이 체결된 직후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 커졌으므로 주로 중국시장에서 팔리는 면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많은 대공장이 분명히 이 거래를 위하여 건설되였으며 이러한 공장들이 우리 나라의 모든 기존공장들에 첨가되였다.》—(제4874호)《이 장사는 어떻게 되였는가?—거의 형언할수 없을만큼 극도로 파멸적이였다. 나는 1844년과 1845년의 중국에 대한 수출총액중 $\frac{2}{3}$이상의 금액이 회수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차는 주요한 역수출품이고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있었으므로 제조업자들은 우리 차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하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타산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다음에 나오는것은 영국제조업자들의 특징적인 신조를 소박하게 표현한 말이다.

《어떤 외국시장과의 우리의 무역은 그 외국시장의 상품구매능력에 의하여 제한되는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나라에서 우리의 공업제품에 대한 역수출품으로서 우리가 받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우리의 능력에 의하여 제한된다.》

(영국이) 무역상대로 하는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은 물론 얼마든지 영국제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비할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부유한 영국은 역수출품의 생산물을 소화할

수 없는것이다.)

(제4876호)《나는 처음에 약간의 상품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약 15%의 손실을 보고 그것을 팔았는데 나의 대리점이 차를 저렴하게 살수 있었으므로 그것을 또 여기에서 판다면 그 손실을 보상할만큼한 리윤을 내게 될것이라고 충분히 확신하고있었다. 그런데 리윤은 고사하고 나는 흔히 25%, 지어는 50%의 손해까지 보았다.》—(제4877호)《제조업자들은 자기들의 계산으로 수출하였는가?—주로 그러하였다. 상인들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것을 빨리 알게 된것 같으며 제조업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느니보다 오히려 위탁판매를 하라고 권하였던것이다.》

그런데 1857년에는 손실과 파산은 주로 상인들에게 떨어졌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조업자들이 상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계산으로》 외국시장에 대한 과잉공급을 부담하도록 하였기때문이였다.

화폐자본의 팽창은 은행제도가 보급되였기때문에 이전에는 개인의 축장화폐 또는 주화준비였던것이 일정한 기간내에 언제나 대부자본으로 전화되기때문에 생기는데(아래의 입스위치지방의 실례를 보라. 거기에서는 1857년 직전의 불과 몇해사이에 차지농업가의 예금이 4배로 되였다①) 화폐자본의 이러한 팽창은 생산자본의 증대를 표현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은 런던의 주식은행들이 예금에 리자를 지불하기 시작한 때의 이러한 은행들에서의 예금의 증대가 생산자본의 증대를 표현하는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다. 생산규모가 동일한대로 있는 한에서 이러한 팽창은 생산자본에 비하여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을 풍부하게 할따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리

① 본권 중문판 563페지를 보라.—편집자

자률은 낮아지는것이다.

재생산과정이 다시 과도한 긴장상태의 직전의 번영상태에 도달하면 상업신용은 매우 크게 확장되는데 그 경우에 이 확장에는 사실상 다시 자본의 원활한 환류와 확대된 생산이란 《건전한》 기초가 있는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리자률은 최저한도보다는 높지만 역시 아직 낮다. 사실상 이 시기야말로 낮은 리자률 따라서 또 대부할수 있는 자본의 상대적풍족이 산업자본의 현실적확대와 일치하다고 말할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것이다. 자본환류의 용이성과 규칙성은 상업신용의 확장과 결부되여, 대부자본의 공급을 그 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보장하고 리자률의 수준이 오르는것을 방해한다. 다른 한편 이렇게 되면 준비자본이 없이 또는 대체로 어떠한 자본도 없이 사업을 하며 따라서 전적으로 화폐신용에만 의뢰하여 투기하는 기사들이 겨우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는 또 온갖 형태의 고정자본의 대확장과 새로운 대기업들의 대량적인 설립이 여기에 가첨된다. 리자는 이제는 그 평균적높이에까지 오른다. 그리고 리자가 다시 최고한도에 도달하는것은 새로운 공황이 폭발하여 신용이 갑자기 정지되고 지불이 정체되고 재생산과정이 마비되고 상술한 례외는 있지만 대부자본의 거의 절대적인 결핍과 함께 유휴산업자본의 과잉이 나타나게 되는 때이다.

따라서 리자률에서 표현되는 대부자본의 운동은 대체로 산업자본의 운동과는 반대방향으로 나간다. 아직 낮기는 하나 최저한도보다는 높은 리자률이 공황후의 《호전》과 신뢰의 증대와 함께 나타나는 단계, 또 특히 리자률이 그 평균적인 높이, 즉 그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중심점에 도달하는 단계, 오직 이 두 시기만이 풍부한 대부자본

과 산업자본의 대확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표시한다. 그러나 산업순환의 발단에서는 낮은 리자률과 산업자본의 수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순환의 종말에는 높은 리자률과 산업자본의 과잉이 동시에 나타난다. 《호전》에 수반되는 낮은 리자률은 상업신용이 아직도 제발로 서있기때문에 그것은 은행신용을 소량으로밖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것을 표시한다.

이 산업경기순환은 일단 최초의 충격이 주어지면 동일한 순환이 주기적으로 재생산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8) 해이상태에서는 생산은 그것이 이전의 경기순환에서 도달하였던 규모,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위한 기술적기초가 이루어져 있는 규모이하로 내려간다. 번영기—중간시기—에는 생산은 이 기초우에서 더 발전한다. 과잉생산과 투기적경기의 시기에는 생산은 생산력을 최고도로 긴장시키고 드디여 생산과정

---

(8) 〔내가 이미 다른 개소에서 말한바와 같이[238] 이 점에서는 최근의 전반적인 대공황이래 하나의 전환이 일어났다. 종래에는 순환주기가 10년이였던 주기적과정의 급성적형태는 상대적으로 짧고 약한 경기호전과 상대적으로 길고 결정적이 아닌 불경기의 보다 만성적이고 보다 오래 끄는 각이한 공업국들에서 각이한 시기에 일어나는 교체에 자리를 양보한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아마도 문제는 순환주기가 길어졌다는것뿐일것이다. 세계무역의 유년기였던 1815~1847년간에는 약 5년의 순환주기를 지적할수 있다. 1847~1867년간에는 순환주기는 명확히 10년이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격렬한 새로운 세계적공황의 준비기에 처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많은 점이 그것을 암시하고있는것 같다. 1867년의 최근의 전반적공황이래 큰 변동이 일어났다. 교통수단의 거대한 확장—대양기선, 철도, 전신, 수에즈운하—은 세계시장을 비로소 현실적으로 형성하였다. 종래의 공업을 독점하여온 영국이외에 서로 경쟁하는 몇개의 공업국들이 나타났다. 구라파의 과잉자본의 투하를 위하여서는 어느 대륙에서나 무한히 보다 광활하고 보다 다양한 령역들이 열려졌으므로 이 자본은 훨씬 광범히 분산되여 지방적인 과도한 투기는 보다 쉽게 극복된다. 이러한 모든것으로 말미암아 공황의 종래의 근원들과 공황발생의 기회는 대부분 제거되였거나 심히 약화되였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카르텔 및 트레스트의 출현으로 하여 후퇴하고, 다른 한편 외국시장에서의 경쟁은 영국이외의 모든 대공업국들에서 둘러치고있는 보호관세의 장벽에 의하여 제한되고있다. 그러나 이 보호관세자체는 세계시장에서의 지배권을 결정하여야 하는 종국적이고 전반적인 공업전쟁을 위한 무장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낡은 형의 공황의 재현을 방지하려고 하는 요소들의 하나하나는 훨씬 보다 격렬한 장래의 공황의 싹을 포함하고있다.—F. 엥겔스〕

의 자본주의적제한을 넘어선다.

공황기에 지불수단이 부족하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형의 현금전환성이 상품자체의 변태를 대신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는 점점 더 심해진다. 왜냐하면 일부 상사는 다만 신용에만 의거하여 영업하게 되기때문이다. 1844~1845년의 법률과 같은 무지하고 그릇된 은행립법은 이러한 화폐공황을 격화할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은행립법도 공황을 제거할수는 없는것이다.

재생산과정의 전체 련관이 신용을 기초로 하고있는 생산체계에서는 신용이 갑자기 정지되여 현금지불만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공황 즉 지불수단을 구하는 쇄도가 일어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얼핏 보아서는 모든 공황이 다만 신용공황 및 화폐공황으로만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오직 수형이 화폐로 전화될수 있느냐에 있다. 그런데 이 수형들은 대다수가 현실적매매를 대표하는데 이 매매가 사회적수요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 확대하는것이 결국 전체 공황의 기초로 되여있다. 그러나 그밖에 이러한 수형들중 많은 량이 단순한 투기적거래들을 표시하며 그것이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서 파탄된다. 이러한 수형은 또 타인의 자본으로써 해보다가 실패한 투기를 표시하며 끝으로 가치가 감소되였거나 심지어 전혀 판매될수 없게 된 상품자본 또는 이제는 결코 더는 실현될수 없는 자본의 환류를 표시한다. 어떠한 은행 례컨대 잉글랜드은행이 그의 지권(紙券)으로써 모든 투기업자들에게 부족한 자본을 공급하고 또 가치가 감소된 모든 상품들을 그것들의 원래의 명목가치대로 구매한다는것에 의하여 재생산과정의 강행적확장의 인위적인 체계전체를 치료한다는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여하간 여기서는 모든것이

외곡되여 나타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권의 세계에서는 현실적가격이나 그 현실적계기들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금괴나 경화나 은행권이나 수형이나 유가증권만이 나타나기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화폐거래전체가 집중되는 중심지 레컨대 런던에서는 이러한 전도(顚倒)가 나타난다. 전체 과정이 리해할수 없는것으로 된다. 생산의 중심지들에서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공황기에 드러나는 산업자본의 과잉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말해두어야 하겠다. 상품자본은 그 자체로서는 동시에 화폐자본이다. 즉 일정한 가치액이 상품의 가격으로 표현된것이다. 사용가치로서는 그것은 일정한 사용대상의 일정한 량이며 그것이 공황기에는 과잉이 된다. 그러나 화폐자본 그 자체로서는, 잠세적인 화폐자본으로서는 그것은 부단한 팽창과 수축을 겪게 된다. 공황의 전야와 그 진행중에는 상품자본은 잠세적화폐자본의 속성으로서는 수축된다. 상품자본은 그것의 소유자나 이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있어서는(또 수형이나 차입금의 담보로서도) 그것이 구입되였던 시기에 비하여, 또 그것이 기초하여 할인과 담보대부가 약정되였던 시기에 비하여 보다 적은 화폐자본을 표시한다. 만약 이것이 나라의 화폐자본은 핍박의 시기에 감소되고있다고 하는 주장의 의미라면 이것은 상품가격이 저락하였다는것과 동일한것이다. 여하간 물가의 이러한 붕락은 그것의 이전의 등귀를 상쇄하는데 불과하다.

비생산적계급들과 고정수입으로써 생활하는 모든 계급의 수입은 과잉생산이나 과도한 투기에 수반하여 가격이 팽창할 때에도 대부분은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비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그와 함께 재생산총액중에서 정상적으

로 그들의 소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을 보상하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그들의 수요가 명목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감소된다.

수출입에 관하여 말해두어야 할것은 모든 나라가 뒤에 뒤를 이어 공황에 휩쓸려든다는것, 그리고 그 경우에는 소수의 례외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지나치게 많이 수출입을 하였고 따라서 **국제수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역차로 되었으며** 그리하여 문제는 사실상 국제수지에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것이다. 례컨대 영국은 금류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있다. 영국은 지나치게 많이 수입한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어느 나라에도 영국상품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 역시 지나치게 많이 수입하였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이 수입되였다. (물론 신용으로 수출하는 나라와 신용으로는 수출하지 않거나 또는 얼마밖에는 수출하지 않는 나라들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나라들은 그대신 신용으로 수입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품이 위탁판매[211]로써 이 나라들에 발송되는 경우뿐이다.) 공황은 우선 신용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가장 적게 받는 영국에서 일어날수도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무역수지는 **영국에 있어서 순차**이지만 국체수지 즉 즉시 결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만기가 된 수지차액은 **영국에 있어서 역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무역수지가 순차이라는것은 부분적으로는 영국이 제공하는 신용에 의하여 설명되며 부분적으로는 대량의 자본이 외국에 대부되여있기때문에 본래의 무역수출품외에 대량의 상품이 영국으로 환류하는데 의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때로 공황은 우선 미국에서 즉 무역신용과 자본신용을 영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있는 이 나라에서 일어

난 일도 있다.) 영국에서의 파국은 금의 류출에 의하여 시작되며 또 그 류출을 수반하는데 영국의 국제수지를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수입업자들의 파산(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에 의하여 청산하며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상품자본의 일부분을 렴가로 외국에 방매하는데 의하여, 또 부분적으로는 외국유가증권의 매각, 영국유가증권의 구입 등등에 의하여 청산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차례다. 국제수지가 이 나라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순차였다. 그런데 평시에는 인정되고있는 국제수지와 무역수지간의 기한차가 이제는 공황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거나 또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단축된다. 모든 지불이 일시에 결제되여야 한다. 동일한 경과가 이번에는 이 나라에서 반복된다. 영국에는 이제는 금이 환류하고 다른 나라로부터는 금이 류출한다. 한 나라에서 과잉수입으로서 나타나는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과잉수출로서 나타나며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에서 과잉수입과 과잉수출이 일어난것이다(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것은 흉작 등의 경우가 아니라 전반적공황의 경우이다). 즉 신용과 이에 수반되는 일반적가격팽창에 의하여 촉진된 과잉생산이 일어났다.

1857년에 공황은 미국에서 일어났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금이 류출하게 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팽창이 파렬되자마자 영국에서 공황이 일어났으며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의 금류출이 일어났다. 영국과 구라파대륙사이에서도 동일하였다. 전반적공황의 시기에는 국제수지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적어도 상업이 발전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역차였다. 그러나 이 역차지불수지는 언제나 분대사격의 경우처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지불의 순번이

돌아오면 역차로 되는것이다. 그리고 공황이 일단 어떠한 나라 례컨대 영국에서 일어나면 그 공황은 이 지불기한의 서렬을 극히 단기간으로 몰아넣는다. 그 경우에는 이 모든 나라들은 과잉수출(따라서 과잉생산)을 한 동시에 과잉수입(따라서 과잉무역)을 하였다는것, 또 어느 나라에서나 물가가 등귀하여 신용이 과도히 팽창하였다는것이 명백히 된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붕괴가 일어난다. 이리하여 금류출현상이 어느 나라에서나 순차로 나타나는데 그 일반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것들을 보여준다. 1) 금류출은 공황의 현상에 불과한것이고 그것의 원인은 아니라는것, 2) 금류출이 각이한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순서는 다만 총결산을 하는 차례가 언제 그 나라에 돌아오는가, 공황의 기한이 언제 그 나라에 닥쳐오는가, 그리고 공황의 잠재적인 제 요소들이 언제 그 나라에서 파렬하는가를 보여줄따름이라는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저술가들—그런데 1830년이래의 언급할만한 경제학적문헌은 주로 통화, 신용, 공황에 관한것뿐이다—에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것이 특징적이다. 즉 그들은 공황기에 환자시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귀금속의 수출을 영국의 립장에서만, 순 일국적현상으로서 고찰하는데 만일 그들의 은행이 공황시기에 리자률을 높인다면 다른 모든 구라파의 은행들도 동일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또 오늘 그들의 나라에서 금류출의 경보가 울린다면 래일에는 미국에서, 모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울리리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눈을 감는다는것이다.

1847년에는 《영국이 지고있는 채무 (그 매우 큰 부분이 곡물로 인한것이였다) 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불행히도 그 대부분이

파산에 의하여 상환되였다. (부유한 영국이 구라파대륙과 미국에 대하여 파산에 의해서 숨을 돌린것이다.) 그런데 그 채무가 파산에 의해서 결제되지 않은 한에서는 채무는 귀금속의 수출에 의하여 상환되였다》(《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 1857년).

그리하여 영국에서의 공황이 은행립법에 의하여 격화되는 한에서는 이 은행립법은 기근의 시기에 곡물수출국으로부터 우선 그 곡물을 사취하고 그다음에 그 곡물대금을 사취하기 위한 수단인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기에 곡물의 수출을 금지한다는것은 스스로 많게나적게나 물가등귀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곡물수입을 위한 《채무를 파산에 의하여 상환한다》는 잉글랜드은행의 이러한 방책에 대항하는 극히 합리적인 수단이다. 그 경우에 곡물생산자들과 투기업자들이 그들의 리윤의 일부분을 자국의 리익을 위하여 잃어버리는것은 그들의 자본을 영국의 리익을 위하여 잃어버리는것보다 훨씬 나은것이다.

상술한것으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상품자본은 공황기나 일반적으로 영업침체기에는 잠세적화폐자본을 표시한다는 그 속성을 크게 상실하는것이다. 이것은 의제자본, 리자부증권에 관해서도 이것들 자체가 화폐자본으로서 거래소에서 류통하는 한에서는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리자가 오름에 따라 이 증권의 가격은 내린다. 그리고 그 가격은 일반적신용결핍때문에 증권소유자들이 화폐를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대량으로 시장에서 방매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데 의하여서도 저락한다. 끝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부분적으로는 그 주식을 지불지도증서로 하는 수입이 감소되기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그 주식이 상당히 빈번히 사기적성질의 기업을 대표하고있기때문에 저락한다. 공황기에는 이 의제화폐

자본은 크게 감소되고 따라서 또 그 소유자들이 그것을 담보로 하여 시장에서 화폐를 조달하는 힘도 크게 감소된다. 그러나 시세표에서 이러한 유가증권들의 화폐명칭이 감소하는 것은 이 유가증권들이 대표하는 현실적자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나 그 소유자들의 지불능력과는 큰 관계가 있는것이다.

제 31 장

화폐자본과 현실적자본. II

(계속)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형태에 있는 자본의 축적이 어느 정도로 현실적축적 즉 재생산과정의 확장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결말에 도달하지 않았다.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에로의 화폐의 전화는 생산자본에로의 화폐의 전화보다는 훨씬 간단한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1) 대부자본에로의 화폐의 단순한 전화.

2) 대부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에로의, 자본 또는 수입의 전화.

산업자본의 현실적축적과 관련되는, 적극적인 대부자본 축적을 포함할수 있는것은 오직 후자뿐이다.

1. 대부자본에로의 화폐의 전화

이미 본바와 같이 생산적축적과는 오직 그것과 반비례한다는 관련밖에 없는 대부자본의 퇴적, 그 너무 풍부한 과잉이 생길수 있다. 그것은 산업순환의 두 단계에서 나타난다.

즉 첫째로는 산업자본이 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의 어느 형태에서나 수축되고있는 시기 따라서 공황후의 경기순환의 초기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호전은 시작되였으나 아직 상업신용이 은행신용을 조금밖에 요구하지 않는 시기이다. 첫째 경우에는 이전에 생산과 상업에서 사용되였던 화폐자본이 유휴대부자본으로서 나타난다. 둘째 경우에는 화폐자본이 점점 더 큰 규모로 사용되지만 이제는 그 리자률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가 화폐자본가에게 조건을 지정하기때문이다. 대부자본의 과잉은 첫째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정체를 표시하며 둘째 경우에는 자본의 환류의 류동성과 신용의 단기성과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의 우세에 기초하여 상업신용이 은행신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고 있다는것을 표시한다. 다른 사람의 신용자본에 의지하는 투기업자들은 아직 출동하지 않았다. 자기자본으로써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순전한 신용거래들로부터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첫째 단계에서는 대부자본의 과잉은 현실적축적의 표현과는 정반대의것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이 과잉은 재생산과정의 새로운 확장과 동시에 나타나고 이것을 수반하지만 그러나 이 확장의 원인인것은 아니다. 대부자본의 과잉은 이미 감소되였으며 수요에 비하여 다만 상대적인것에 불과하다. 두 경우에 다 그것에 의하여 현실적축적과정의 확장이 촉진된다. 왜냐하면 첫째 경우에는 낮은 가격과 일치하고 둘째 경우에는 완만하게 등귀하는 가격과 일치하는 낮은 리자가 리윤중 기업자리득으로 전화되는 부분을 증대시키기때문이다. 번영기의 정점에 리자가 그 평균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것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에는 리자는 확실히 오르지만 리윤과 비례하여 오르는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본바와 같이 대부자본의 축적은 조금도 현실적축적이 없이 다만 기술적인 수단에 의하여, 례컨대 은행업무의 확장이나 집중, 류통준비금의 절약, 혹은 개인의 지불수단 준비금의 절약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이러한 준비금은 이리하여 언제든지 단기간 대부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이 대부자본은 비록 항상 단기간만 대부자본의 형태를 유지하지만(또 이와 마찬가지로 단기간만 할인거래에 복무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또한 류동자본(floating capital)이라고도 불리우며 그것은 부단히 류입하고 부단히 흘러가고 흘러들고 하며 한 사람이 그것을 끌어내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오는것이다. 이리하여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량은(여기에서 말하고있는것은 결코 수년에 걸치는 대부가 아니라 수형과 예탁증권담보의 단기대부뿐이다) 사실상 현실적축적과는 조금도 관계없이 증대한다.

《은행위원회》 1857년, (질문 제501호.) 《당신이 부동자본이라고 말하는것은 무엇인가?》 〔잉글랜드은행총재 웨걸린씨〕 《그것은 단기의 화폐대부에 돌릴수 있는 자본이다…(제502호)잉글랜드은행권…지방은행권 그리고 국내에 현존하는 화폐액이다.》 —〔질문〕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에 의하면 당신이 말하는 부동자본이 능동적인 화폐〔즉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이라면, 이 능동적인 화폐에는 매우 큰 변동이 일어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러나 누구에 의하여 이 능동적인 화폐가 선대되였는가, 화폐대부업자에 의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 자신에 의해서인가 하는것은 극히 큰 차이가 있다.—웨걸린의 답변〕 《부동자본속에 나는 변동이 큰 은행가의 준비금을 포함시켜 생각한다.》

즉 큰 변동이 일어난다는것은 예금중 은행가들에 의하여 다시 대부되지 않고 그들의 준비금으로 되여있는 부분, 그러

나 대부분은 또 그들의 준비금이 예금되고있는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으로 되여있는 부분에 큰 변동이 일어난다는것이다. 끝으로 그는 부동자본이란—bullion 즉 금괴와 경화라고 말한다(제503호). 화폐시장에서의 신용에 관한 이러한 종잡을수 없는 말에서는 정치경제학의 모든 범주가 얼마나 다른 의미와 다른 형태를 얻는지 실로 놀랄만하다. 거기에서는 《부동자본》은 《류동자본》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은 물론 완전히 다른것이다. 그리고 화폐는 자본이며 금괴는 자본이며 은행권은 통화이며 자본은 하나의 상품이며 채무는 상품들이며 또 고정자본은 팔리기 어려운 증권에 투하된 화폐인것이다!

《런던의 주식은행들은…그 예금은 1847년의 885만 774파운드로부터 1857년의 4,310만 724로 증가시켰다…위원회에 제공된 증거와 증언들에 의하여 추론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 거대한 금액중의 큰 부분은 종래에는 이 목적에 리용될수 없었던 원천들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은행업자에게서 구좌를 개설하고 그에게 예금하는 습관이 이전에는 이러한 목적에 리용될수 없었던 많은 원천들에 확장되였다. 또 은행가에게서 구좌를 개설하고 그에게 예금을 하는 습관이 이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자본〔!〕을 투하하지 않았던 무수한 계급들에 보급되였다는것이다. 지방사영은행들(주식은행들과 구별되는)의 협회 회장이고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이 협회에서 파견된 로드웰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있다. 입스위치지방에서는 이 습관이 근래에 그 지구의 차지농업가들과 소상인들 사이에 4배나 늘었다. 거의 모든 차지농업가들, 1년에 다만 50파운드의 차지료밖에 지불하지 않는자들까지도 이제는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대량의 예금은 물론 사업에서 그 용도를 발견하며 특히 상업활동의 중심지인 런던으로 인입되여 거기에서 우선 수형할인과 런던의 은행가들의 고객들에 대한 기타 선대에 사용된다. 그러나 은행가들이 직접 수요로 하지 않는 큰 한 부분은 수형중개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가는데 그들은 그것과의 교환으

로 자기가 이미 런던과 지방 사람들을 위하여 한번 할인한 상업수형을 은행가들에게 넘겨준다》(《은행위원회》 1858년, [v 페지] 제8호).

은행가는 수형중개인이 이미 한번 할인한 수형을 담보로 이 수형중개인에게 선대를 하므로 사실상 그는 이 수형을 또 한번 재할인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수형들의 많은것은 이미 수형중개인들에 의하여 재할인된것이며 은행가가 수형중개인의 수형을 재할인하는데 쓰이는 그 화폐로써 수형중개인은 새로운 수형을 재할인하는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되는것이다.

《팽창된 의제신용이 융통수형과 무담보신용에 의하여 조성되였는데 그것은 지방의 주식은행들이 이러한 수형들을 할인하고 다음에 그것을 런던시장에서 수형중개인들에게 재할인하게 하며 그것도 은행의 신용에만 의거하고 수형들의 기타의 질에는 고려함이 없이 재할인하게 하는 방식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되였다》(우와 같은 책 [XXI페지 제54호]).

이 재할인에 관하여서는, 그리고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이러한 순기술적증가가 신용투기를 조장하는데 관하여서는 《경제학자》지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흥미있다.

《나라의 일부 지방들에서는 다년간 자본 (즉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 은 그것이 사용될수 있는것보다 더 빨리 축적되였는데 다른 지방들에서는 자본 그 자체보다도 자본투하를 위한 수단이 더 빨리 증대하였다. 그리하여 농업지방의 은행업자들은 그들의 예금을 그들 자신의 지방들에서 유리하고 확실하게 투하할 기회가 없었는데 공업지방과 상업도시의 은행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제공할수 있는것보다 더 큰 자본수요가 있었다. 각이한 지방들의 상태가 이렇게 각이한 결과로 최근 수년간에 자본의 분배에 종사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사들이 생기고 그것이 급속히 확장되였다. 이러한 상사들은 보통 수형중개인

이라고 불리우고있지만 실지는 최대규모의 은행업자들이다. 이러한 상사의 업무는 과잉자본이 리용될수 없는 지방들의 은행들로부터 과잉자본을, 그리고 주식회사들과 대상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놀고있는 자금을 일정한 기간과 리자를 약정하여 차용하고 이 화폐를 보다 높은 리자률로 자본의 수요가 보다 큰 지방의 은행에 선대하는것이다. 통례로는 이 은행들의 고객들의 수형을 재할인하는 방도로써 진행한다…그리하여 롬바드거리[213]는 국내에서 유휴자본이 유효하게 리용될수 없는 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 다른 지방으로 유휴자본을 이전시키는 대중심지로 되였다. 그리고 이러한것은 각이한 국내지방들에 대해서도, 그것과 류사한 처지에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최초에는 이러한 업무는 거의 전적으로 은행에 적합한 담보에 의한 차용과 대부에 한정되여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자본이 급속히 증대하고 또 은행들의 설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욱더 절약됨에 따라 이러한 할인상사들이 리용할수 있는 자금도 증대되였으므로 그들은 처음에는 부두창고증권에 대하여, 다음에는 또 아직 전혀 도착하지 않은 생산물을 대표하는 선하증권에 대하여 선대를 하게 되였으며 또 이러한 증권에 대하여서는 통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수형이 이미 상품중개인앞으로 발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선대를 하였던것이다. 이러한 관례는 곧 영국의 거래의 전체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롬바드거리에서 제공되는 편의는 민씽골목[214]에서의 상품중개인들에게 매우 튼튼한 지위를 제공하였다. 상품중개인들은 이번에는 다시 수입상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였다. 수입상인들이 이 편의에 의하여 얻은바는 매우 컸으며 25년전이라면 상인이 자기의 선하증권이나 지어는 자기의 부두창고증권으로 융자한다는것은 그 상인의 신용을 완전히 떨어뜨리였을것인데 근년에는 이러한 관례는 일반적으로 되여서 그것을 통례로 간주하게 되였고 25년전처럼 그것을 드문 례외로 간주하지는 않게 되였다. 그뿐만아니라 이 제도는 매우 광범히 보급되여있어서 롬바드거리에서는 먼 식민지에서 **아직도 생장중에 있는** 작물을 담보로 발행된 수형에 의하여 큰 금액이 차용되고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편의의 결과로 수입상인들은 그들의 대외거래를 확장하였으며 종래는 자기들의 사업에 사용한 부동자본을 모든 투자처중에서

도 가장 부당한 투자처 즉 그들이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수 없는 식민지농장에 고정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용들의 직접적인 련쇄를 보게 된다. 우리의 농업지방들에서 수집된 나라의 자본은 조금씩 예금으로서 지방은행들에 맡겨지고 그것이 롬바드거리에 집중되여 운용된다. 그러나 자본은 우선 우리의 광업 및 산업지방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그 지방 은행앞으로의 수형의 재할인에 의하여 리용되게 되였다. 그다음에는 부두창고증권과 선하증권에 대한 선대에 의하여 외국생산물의 수입업자들에게 큰 편의를 주는데 리용되게 되였고 이로 하여 대외거래나 식민지거래에 종사하는 상사들의 〈정당한〉 상인자본은 유리되고 그리하여 해외식민지농장에서의 가장 부당한 투자에 사용될수 있었다》(《경제학자》, 1847년 1334페지).

이러한것이 신용의 《훌륭한》 련쇄이다. 지방의 예금자는 다만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에게 예금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또 이 은행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그가 잘 알고있는 개인에게만 실시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은행업자가 자기의 예금을 런던의 수형중개인의 처분에 맡기며 이 중개인이 예금자도 은행업자도 전혀 통제할수 없는 거래를 한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큰 공공기업들 례컨대 철도건설이 일시적으로는 대부자본을 증가시킬수도 있다. 그것은 불입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언제나 일정한 기간은 은행업자의 수중에서 자유로 리용될수 있는것으로서 남기때문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본바이다.

그런데 대부자본의 량은 통화의 량과는 전혀 다른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통화의 량이라고 하는것은 한 나라에 있는 모든 류통은행권과 귀금속금괴를 포함한 경화의 총액을 말한다. 이 량의 일부분은 그 크기로 보아 부단히 변동하는

제 은행의 준비금을 이룬다.

《1857년 11월 12일 (1844년의 은행법이 정지된 날) 에는 모든 지점들을 포함한 잉글랜드은행의 총준비금은 불과 58만 751파운드였는데 같은 때에 예금의 총액은 2,250만파운드였으며 그중 약 650만파운드는 런던의 은행가들의것이였다》(《은행법》, 1858년 LⅦ페지).

리자률의 변동(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동이나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리자률의 차이는 도외시한다. 전자는 일반적리윤률의 변동에 의하여 제약되고 후자는 리윤률의 차이나 신용의 발전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제약된다.)은 대부자본의 공급에 의하여 좌우된다(그밖의 사정들 례컨대 신뢰의 상태 등등은 모두 동등하다고 하면). 이 대부자본은 화폐, 즉 경화나 은행권의 형태로 대부되는 자본이며 산업자본 자체로서, 상품형태대로 상업신용에 의하여 재생산당사자 자신들간에서 대부되는 산업자본과는 구별되는 자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량은 류통하는 화폐의 량과는 다르며 그것과는 관계없는것이다.

례컨대 20파운드가 하루에 다섯번 대부된다면 100파운드의 화폐자본이 대부되는셈이며 이것은 동시에 이 20파운드가 다시 적어도 네번은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구매와 지불이라는 매개가 없었다면, 따라서 20파운드가 적어도 네번 자본의 전화된 형태(상품, 로동력도 포함한다)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20파운드는 100파운드라는 자본을 구성하는것이 아니며 다만 각각 20파운드씩의 5개의 채권을 구성할따름이기때문이다.

신용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대부에 리용될수 있는 모든 화폐자본은 은행이나 화폐대부업자에게 예금형태로 존재한다

고 가정할수 있다. 적어도 전체로서의 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본래의 투기가 아직 성행하기전의 호경기에는 신용을 얻기가 쉽고 신뢰가 증대하기때문에 류통기능의 대부분은 금속화폐나 지폐의 개입이 없이 단순한 신용이전에 의하여 수행된다.

류통수단의 량이 비교적 적은 때 예금액이 클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은 다만 다음과 같은것들에 의존한다.

1) 동일한 화폐쪼각에 의하여 수행되는 구매와 지불의 차수.

2) 동일한 화폐쪼각이 예금으로서 은행으로 돌아가는 그 재전화의 차수. 즉 그것이 반복하여 예금으로 전화하는데 의하여 매개되는 지불수단 및 구매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이 반복되는 차수. 례컨대 어떤 소매상인이 매주 100파운드의 화폐를 은행업자에게 예금한다고 하자. 은행업자는 이 화폐로 제조업자의 예금의 일부분을 지불한다. 제조업자는 그것을 자기의 로동자에게 지불한다. 로동자는 그것으로써 소매상인에게 지불하며 소매상인은 그것을 다시 은행에 예금한다. 이리하여 소매상인이 예금한 100파운드는 첫째로는 제조업자의 예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둘째로는 로동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셋째로는 그 소매상인 자신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넷째로는 동일한 소매상인의 화폐자본의 다른 일부분을 예금하기 위하여 복무하였다. 그리하여 20주가 지난 다음에는 만일 이 소매상인 자신이 이 화폐를 담보로 하여 수형을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는 동일한 100파운드로써 2,000파운드를 은행업자에게 예금한것으로 될것이다.

이 화폐자본이 어느 정도로 놀고있는가 하는것은 다만 제 은행의 준비금의 류출입에서만 나타날뿐이다. 그리하여

1857년에 잉글랜드은행 총재 웨걸린씨는 잉글랜드은행의 금이 《유일한》 준비자본이라고 결론한다.

(제1258호) 《내가 보기에는 할인률은 사실상 국내에 현존하는 유휴자본의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휴자본의 량은 사실상 금준비인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에 의하여 대표된다. 그러므로 금이 류출되면 그것은 국내의 유휴자본의 량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의 가치를 높이는것이다.》 —(제1364호)[뉴마치]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는 사실상 나라의 전체 거래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중앙준비금 또는 현금준비이다…바로 이 준비금 또는 이 저수지는 항상 대외환자시세의 영향을 받는것이다》 (《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 1857년).

현실적자본 즉 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의 축적에 대하여서는 수출입통계가 하나의 척도를 준다. 그리고 언제나 이 통계에 표시되는것은 10년이라는 순환주기로 운동하는 영국산업의 발전기(1815~1870년)에는 항상 공황**전의** 최후의 번영기의 최고한도가 바로 그다음에 오는 번영기의 최저한도로서 재현되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훨씬 보다 높은 새로운 최고한도로 상승한다는것이다.

번영의 해였던 1824년에 대브리텐 및 아일랜드로부터 수출된 생산물의 현실가치 또는 신고가치는 4,039만 6,300파운드였다. 이어서 1825년의 공황과 함께 수출액은 이 금액이하로 내려가고 매년 3,500만과 3,900만사이에서 동요하였다. 1834년에 다시 번영이 닥쳐오자 수출액은 종래의 최고수준을 넘어서 4,164만 9,191파운드로 상승하였으며 그리고 1836년에는 새로운 최고한도인 5,336만 8,571파운드에 달하였다. 1837년에는 그것은 다시 4,200만으로 내려가고 따라서 새로운 최저한도가 이미 이전의 최고한도보다 높게 되고 그후에

는 5,000만과 5,300만사이에서 동요하였다. 번영이 다시 닥쳐와 1844년에는 수출액이 5,850만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1836년의 최고한도를 다시 훨씬 릉가하였다. 1845년에는 수출액은 6,011만 1,082파운드에 달하고 그리고 1846년에는 5,700여만으로 내려갔으며 1847년에는 거의 5,900만, 1848년에는 약 5,300만인데 1849년에는 6,350만으로 상승하고 1853년에는 9,900만, 1854년에는 9,700만, 1855년에는 9,450만, 1856년에는 약 1억 1,600만이고 1857년에는 1억 2,200만이라는 최고한도에 달하였다. 1858년에는 수출액은 1억 1,600만으로 내리나 이미 1859년에는 1억 3,000만으로 상승하고 1860년에는 약 1억 3,600만이고 1861년에는 1억 2,500만에 불과하나(여기서 다시 새로운 최저한도가 이전의 최고한도보다 높아진다) 1863년에는 1억 4,650만에 도달하였다.

시장확대를 보여주는 수입에 대하여도 물론 동일한것을 지적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생산의 규모만을 문제로 삼는다.{이것은 영국에 대하여는 두말할것없이 사실상의 산업독점시기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세계시장이 아직도 확대되고있는 동안은 일반적으로 모든 현대적대공업국 전체에 대하여도 타당하다.—F. 엥겔스}

2. 대부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에로의 자본 또는 수입의 전화

여기서 우리는 화폐자본의 축적을 고찰하는데 그것은 상업신용의 호름의 정체의 표현도 아니며 또 현실적인 류통수단이나 재생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준비자본의 절약적표

현도 아닌 한에서의 화폐자본의 축적이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화폐자본의 축적은 례컨대 1852년과 1853년에 오스트랄리아나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금광[239]으로 인하여 일어났던것처럼 비상한 금류입으로 인하여 일어날수 있다. 이러한 금은 잉글랜드은행에 예금되였었다. 예금자들은 그 대신 은행권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 은행권을 또 즉시 은행업자에게 예금하지는 않았다. 그때문에 류통수단은 비상히 증가되였다(웨걸린의 증언《은행법특별위원회》, 1857년 제1329호). 잉글랜드은행은 할인률을 2%로 인하함으로써 이 예금을 리용하려고 하였다. 1853년의 6개월동안에 이 은행에 쌓여있는 금량은 2,200~2,300만으로 증대하였다.

화폐를 대부하는 모든 자본가들이 수행하는 축적은 두말할것없이 언제나 직접 화폐형태로 진행되지만 한편 이미 본바와 같이 산업자본가가 수행하는 현실적축적은 보통 재생산자본 자체의 제 요소의 증대에 의하여 수행되는것이다.[240] 그리하여 신용제도의 발전 및 대은행의 수중으로의 화폐대부업무의 거대한 집적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대부될수 있는 자본의 축적을 현실적축적과는 다른 형태로서 촉진시키지 않을수 없다. 대부자본의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현실적축적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생산과정의 발전의 결과이며 또 이러한 화폐자본가의 축적의 원천으로 되는 리윤은 다만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짜내는 잉여가치로부터의 한 공제분(동시에 **타인**의 저축에 대한 리자의 일부의 취득)에 불과하기때문이다. 대부자본은 동시에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 쌍방을 회생으로 하여 축적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산업순환의 불경기단계에서는 리자률이 매우 높아져서 약간의 특히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업부문들의 리윤을 일시 전부 삼켜

버릴수 있는 정도이다. 그와 동시에 국채증권이나 기타 유가증권의 가격은 내린다. 이것은 화폐자본가들이 가치가 저락된 이러한 증권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시기인데 이러한 증권들의 가격은 그다음 단계들에서 곧 다시 그 정상적수준으로 오르며 또 그 이상으로 오른다. 이어서 이 증권들은 다시 방매되고 그리하여 공중의 화폐자본의 일부분이 취득된다. 방매되지 않은 부분은 보다 높은 리자를 가져온다. 그것은 그때의 가격보다 싸게 구입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화폐자본가들은 자기들이 얻어서 자본으로 재전화시키는 모든 리윤을 우선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전화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화폐자본의 축적은 현실적축적으로부터 나오는것이지만은 현실적축적과는 다른것으로서 우리가 다만 화폐자본가나 은행업자들 자체만을 고찰하는 경우에도 이미 이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의 축적으로서 수행되는것이다. 그리고 이 축적은 재생산과정의 현실적확대에 수반하여 신용제도가 확장될 때마다 증대하지 않을수 없다.

리자률이 낮으면 이러한 화폐자본의 가치감소는 주로 예금자들의 부담으로 되는것이며 은행들의 부담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주식은행이 발전하기까지는 영국에서는 전체 은행예금의 $\frac{3}{4}$은 무리자였다. 오늘날 이 은행예금에 리자가 지불되는 경우에도 이 리자는 현행리자률수준보다는 적어도 1%는 낮다.

다른 부류의 자본가들의 화폐축적에 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리자부증권에 투하되여 그 형태로 축적되는 부분은 도외시하기로 한다. 우리는 다만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서 시장에 투입되는 부분만을 고찰하기로 하자.

여기서 우선 우리앞에 놓여있는것은 리윤중 수입으로서 지출되지 않고 축적으로 돌려지는 부분, 그러나 산업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당분간 자기의 기업에서 용도가 없는 부분이다. 이 리윤은 직접으로는 그것을 자기의 가치의 일부분으로 하는 상품자본중에 존재하며 이 상품자본의 가치와 함께 화폐로 실현된다. 만약 이 리윤부분이 상품자본의 생산요소로 재전화되지 않았다면(상인에 관해서는 당분간 도외시하고 따로 론하기로 한다) 그것은 잠시 화폐형태대로 머물지 않으면 안된다. 이 리윤의 량은 자본 그 자체의 량과 함께 증대하며 심지어 리윤률이 저하하는 경우에도 증대한다. 수입으로서 지출되여야 할 부분은 점차 소비되지만 그동안은 예금으로서 은행업자에게서 대부자본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리윤중 수입으로서 지출되는 부분의 증대까지도 점차적으로 부단히 반복되는, 대부자본의 축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리윤중 축적에 돌려지는 다른 하나의 리윤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신용제도 및 그 조직의 발전에 따라 수입의 증대, 즉 산업자본가들 및 상업자본가들의 소비의 증대까지도 대부자본의 축적으로서 표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수입이 점차로 소비되는 한에서는 모든 수입들에 적용된다. 즉 지대, 비교적 고급적인 형태의 로임 및 비생산적계급들의 수입 등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것들은 모두다 일정한 기간은 화폐수입의 형태를 취하며 따라서 예금으로 전화될수 있으며 따라서 또 대부자본으로 전화될수 있는것이다. 수입은 화폐로 전화된 상품자본가치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현실적축적의 표현 및 결과이지만 생산자본 그 자체는 아니라는것은 어떤 수입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소비에 돌려지는것이든 축적에 돌려지는것이든간에 여하튼 화폐형태로 존재하는것이기만 하면 다 이렇게 말

할수 있는것이다. 어떤 방적업자가 자기의 면사를 면화와 교환하였으나 수입을 이루는 부분은 화폐와 교환하였다고 하면 그의 산업자본의 현실적존재는 직조업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소비자의 수중으로 이행한 면사일것이며 그것도 이 면사는—재생산을 위한것이든 또는 소비를 위한것이든간에—그것에 포함되여있는 자본가치의 존재이기도 하고 또 잉여가치의 존재이기도 하다. 화폐로 전화되는 잉여가치의 크기는 면사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화폐로 전화되자마자 이 화폐는 이 잉여가치의 가치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것으로서의 화폐는 대부자본의 계기로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화폐가 이미 그 소유자 자신에 의하여 대부되여있지 않다면 그것이 예금으로 전화되는 이외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생산자본으로 재전화되기 위해서는 화폐는 이미 일정한 최저한도에 도달하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 32 장

화폐자본과 현실적자본. Ⅲ

(끝)

이리하여 자본으로 재전화되여야 할 화폐의 량은 대량적인 재생산과정의 결과인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보면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서는 그 자체가 재생산적자본의 량인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전개한것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입중 소비에 돌려지는 부분의 팽창(이 경우에 로동자는 도외시하는데 그것은 로동자의 수입은 가변자본과 같기때문이다)은 우선 화폐자본의 축적으로서 나타난다는것이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축적에는 산업자본의 현실적축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계기가 들어가는것이다. 왜냐하면 년생산물중 소비에 돌려지는 부분은 결코 자본으로 되지는 않기때문이다. 그중 일부분은 자본을, 즉 소비수단의 생산자들의 불변자본을 **보상**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화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이 불변자본의 생산자들의 수입의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수입을 나타내며 단순한 소비매개자로서 복무하는 그 동일한 화폐는 통례로 잠시동안은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이 화폐가 로임을 나타내는 한에

서는 그것은 동시에 가변자본의 화폐형태이다. 또 그것이 소비수단의 생산자들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그들의 불변자본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화폐형태이며 보상되여야 할 그들의 불변자본의 현물적요소들을 구매하는데 복무한다. 이 두 형태중의 어느 형태에 있어도 이 화폐는 그 량이 재생산과정의 규모에 따라 증대하여도 그 자체로서는 축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화폐는 잠시동안은 대부될수 있는 화폐의 즉 화폐자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측면에서 보면 화폐자본의 축적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것보다 큰 사본축적을 반영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소비의 확대는 화폐로 매개되는 까닭에 화폐자본의 축적으로서 나타나기때문이며 현실적축적을 위하여, 새로운 자본투하를 개시하는 화폐를 위하여 화폐형태를 제공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축적은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즉 산업자본이 그 순환과정에서 전화되는 모든 화폐는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선대하는** 화폐의 형태를 취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용하는** 화폐의 형태를 취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에서 진행되여야 할 화폐의 선대가 실지는 대부된 화폐의 선대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상업신용의 기초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기가 재생산과정에서 필요되는 화폐를 대부하는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것은 즉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의 한 부분으로부터 화폐를 대부받는 은행업자가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의 다른 부분에게 그 화폐를 대부하며 여기서 은행업자는 복을 주는 신으로서 나타나며 그와

동시에 이 자본의 처분권은 전적으로 중개자로서의 은행업자의 수중에 장악되는 형태인것이다.

화폐자본의 축적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약간의 특수한 형태들을 들수 있다. 례컨대 원료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가격의 저락으로 인하여 자본이 유리되는 일이 있다. 만약 산업자본가가 직접 자기의 재생산과정을 확장할수 없다면 그의 화폐자본의 일부분은 남아도는것으로서 순환으로부터 밀려나와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리고 둘째로 사업에 중단이 생기면 특히 상인의 경우에는 자본이 화폐형태로 유리된다. 상인이 이미 일련의 거래를 수행한후에 새로운 거래는 이러한 중단때문에 후일에 가서야 비로소 개시할수 있다면 실현된 화폐는 그에게 있어서는 단지 축장화폐를 나타내며 여분의 자본을 표시할따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화폐는 직접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축적을 표시한다. 첫째 경우에는 화폐자본의 축적이 표시하는것은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의 재생산과정의 반복이며 그때까지 구속되여있던 자본의 일부분이 현실적으로 유리되는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화폐자금으로써의 재생산과정의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런데 둘째 경우에는 그것은 다만 거래의 흐름의 중단을 표시할따름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다 화폐는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며 이러한 축적을 표시하고 화폐시장과 리자률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비록 그것은 첫째 경우에는 현실적축적과정의 촉진을 표시하고 둘째 경우에는 그것의 장애를 표시하지만. 끝으로 화폐자본의 축적은 큰 리득을 보고 재생산분야에서 물러서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산업순환중에 조성되는 리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사람들의 수효는 더욱 더 많아진다. 이 경우에는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축적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축적(그 상대적 크기로 보아)을 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산업자본가들이 단순한 화폐자본가로 전화되는 범위를 표시할따름이다.

그런데 리윤중의 다른 한 부분, 즉 수입으로서 소비되기로 예정되여있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부분이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것은 오직 그것을 낳은 생산분야에서 그것이 직접 사업의 확장에 사용될수 없는 경우뿐이다. 이러한 경우는 두가지 원인으로 하여 생길수 있다. 그 하나는 이 분야가 이미 자본으로 포화되여있다는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축적이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일정한 기업에서의 새로운 자본의 투하의 수량관계에 의하여 우선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축적은 우선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전화되고 다른 분야들에서의 생산의 확장에 복무한다. 다른 모든 사정들이 변함없다고 가정하면 자본으로 재전화하여야 할 리윤의 량은 취득된 리윤량에 의하여, 따라서 또 재생산과정자체의 확장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축적이 그 사용에 있어서 투하분야의 부족이라는 곤난에 봉착한다면, 따라서 생산부문들의 과도한 충만이나 대부자본의 과잉공급이 일어난다면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이러한 과잉[234]이 증명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제한성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후에 오는 신용투기는 이 과잉자본의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장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자본의 증식의 법칙들에 의한 장해, 즉 자본이 자본으로서 증식될수 있는 한계들에 의한 장해는 존재하는것이다. 화폐자본 자체의 과잉은 반드시 과잉생산을 표시하는것은 아니며 투자분야의 부족조

차도 표시하는것은 아니다.

대부자본의 축적이란 단순히 화폐가 대부될수 있는 화폐로서 침전한다는것이다. 이 과정은 자본으로의 현실적전화와는 극히 다른것이다. 그것은 다만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될수 있는 형태에서의 화폐의 축적일따름이다. 그러나 이 축적은 이미 지적된바와 같이 현실적축적과는 극히 다른 계기들을 표현할수 있다. 현실적축적이 부단히 확장되는 경우에는 화폐자본의 축적의 이러한 확장은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축적의 확장의 결과일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축적의 확대에 수반되지만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계기들의 결과일수 있으며 끝으로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현실적축적의 정체의 결과일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축적으로부터 독립한것이면서도 그것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제 계기들에 의하여 대부자본의 축적이 확장된다는 리유만으로도 순환의 일정한 단계들에서는 부단히 화폐자본의 과잉이 발생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 이 과잉이 신용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또 동시에 신용의 발전에 따라 생산과정을 그 자본주의적제한들을 넘어서 추진시킬 필요성, 과잉거래, 과잉생산, 과잉신용이 발전되지 않을수 없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또 항상 어떤 역운동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수 없다.

지대, 로임 등등으로부터의 화폐자본의 축적에 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간다는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계기만은 강조하여야 하겠다. 즉 현실적절약과 금욕[241](화폐축장자들에 의한)이라는 일은 그것이 축적의 요소들을 제공하는 한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진전에 수반하는 분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요소들의 최

소한을 받으면서도 은행파산때의 로동자들과 같이 흔히 자기들의 저축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맡겨진다는것이다. 한편으로는 산업자본가의 자본은 그 자신에 의하여 《저축》되는것이 아니며 그는 그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타인의 저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자본가는 타인의 저축을 자기의 자본으로 만들며 또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용이나 공중이 그들에게 주는 신용을 자기의 개인적치부의 원천으로 만든다. 자본주의제도의 최후의 환상, 즉 자본이 자기 자신의 로동과 저축의 소산인듯이 생각하는 환상도 이것으로 파멸된다. 리윤이 타인의 로동을 취득하는것일뿐만아니라 이 타인의 로동을 움직이며 착취하기 위한 자본도 타인의 소유물로 이루어지는데 이 타인의 소유물을 화폐자본가가 산업자본가의 처분에 맡기고 그대신 이번에는 화폐자본가가 산업자본가를 착취한다.

신용자본에 관하여 좀더 말하여야 하겠다.

동일한 화폐쪼각이 몇번 대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이미 우에서 본바와 같이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달려있다.

1) 동일한 화폐쪼각이 판매과정이나 지불과정에서 몇번 상품가치를 실현하는가, 따라서 몇번 자본을 이전시키는가 하는 점. 그리고 또 그것이 몇번 수입을 실현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화폐쪼각이 자본이든 수입이든간에 그것의 실현된 가치로서 몇번 소유자를 바꾸는가 하는것은 분명히 현실적거래들의 규모와 량에 달려있다.

2) 그것은 제 지불의 절약과 신용제도의 발전 및 조직에 달려있다.

3) 끝으로 신용들의 련쇄와 작용속도, 즉 동일한 화폐조각이 어떤 지점에서 예금으로서 침전하여도 그것이 다른 지점에서는 곧 다시 대부로서 나가는데 달려있다.

대부자본이 존재하는 형태가 다만 현실적화폐인 금은의 형태, 즉 그 소재가 가치의 척도로서 복무하는 상품의 형태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화폐자본의 큰 한부분은 필연적으로 항상 단순히 의제적인것이다. 즉 가치기호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가치청구권일것이다. 화폐가 자본의 순환에서 기능하는 한 확실히 그것은 일정한 기간은 화폐자본을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것이 아니라 생산자본의 제 요소와 교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실현될 때 류통수단으로서 지불되는것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를 위하여 대부자본으로 전화될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자본으로 전화되고 동일한 화폐가 반복하여 대부자본을 표시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한** 점에서만 금속화폐로서 존재할따름이다. 다른 모든 점에서는 그것은 다만 자본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할따름이다. 이러한 청구권의 축적은 전제에 의하면 현실적축적으로부터, 즉 상품자본 등의 가치가 화폐로 전화하는데로부터 생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청구권 또는 명의자체의 축적은 그 원천인 현실적축적과도 다르며 화폐의 대부에 의하여 매개되는 장래의 축적(새로운 생산과정)과도 다르다.

얼핏 보아 대부자본은 언제나 화폐형태로 존재하며(9) 후

---

(9) 《은행법》, 1857년, 은행가 트웰즈의 증언, (제4516호) 《은행가로서 당신이 거래하는것은 자본인가 화폐인가?—우리는 화폐를 거래하고있다.》—(제4517호) 《예금은 당신의 은행에 어떻게 불입되는가?—화폐로써이다.》—(제4518호) 《예금은 어떻게 지불되였는가?—화폐로써이다.》—[제4519호] 《그러면 예금은 화폐와는 다른 어떤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가?—그럴수 없다.》

에는 화폐청구권으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대부자본의 최초의 존재형태인 화폐는 이제는 차용자의 수중에서 현실적화폐형태로 존재하기때문이다. 대부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이미 화폐청구권으로, 하나의 소유권으로 전화되였다. 그렇기때문에 동일한 량의 현실적화폐라도 극히 각이한 량의 화폐자본을 표시할수 있다. 단순한 화폐는 그것이 실현된 자본을 표시하든 실현된 수입을 표시하든간에 단순한 대부행위에 의하여, 또는 발전된 신용제도하에서의 일반적형태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화폐의 예금으로의 전화에 의하여 대부자본으로 된다. 예금은 예금자에게 있어서는 화폐자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은행가의 수중에서는 오직 잠세적인 화폐자본에 불과하며 그것이 소유자의 금고속에서가 아니라 은행가의 금고속에서

오버스턴(제26장을 보라)[①]은 《자본》과 《화폐》사이에서 부단히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그에게 있어서 《화폐의 가치》는, 리자가 화폐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만은 리자를 의미한다. 《자본의 가치》는, 리자가 생산자본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그리고 이 자본이 낳은 리윤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리자를 의미하여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4140호) 《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제4148호) 《영국으로부터의 금의 수출은 국내의 화폐량을 감소하는데 이 감소는 물론 화폐시장일반에서의 수요의 증대를 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그의 의견에 의하면 자본시장에서 일으키는것이 아니다.) —(제4112호) 《화폐가 국외로 나가는것과 같은 정도로 국내에 있는 화폐량은 감소되여간다. 국내에 남는 화폐량의 이러한 감소는 이 화폐의 가치의 상승을 초래한다.》 (그의 리론에 의하면 이것은 원래 통화의 수축에 의하여, 상품가치에 비하여서의 화폐로서의 화폐의 가치상승이 일어나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리론에 의하면 화폐가치의 이러한 상승은 상품가치의 저락인것이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류통하는 화폐량이 가격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 그에게 있어서까지도 반박될수 없이 론증되였으므로, 이제는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감소가 리자부자본으로서의 화폐의 가치를, 따라서 리자률을 높인다는것으로 된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오르는것은 화폐의 류출을 저지하며 그리고 가치상승은 균형을 회복하기에 필요한만큼의 화폐를 되돌려올 때까지 계속된다.》—오버스턴이 빠지고있는 모순에 관한 계속은 아래에서 말하겠다.[②]

---

① 본권 468페지이하를 보라.—편집자
② 본권 581페지이하를 보라.—편집자

묵고있을따름일것이다.(10)

소재적부의 증대에 따라 화폐자본가의 계급은 커진다. 첫째로는 인퇴한 자본가, 금리생활자의 수효와 부가 증대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신용제도의 발전이 촉진되며 이에 따라 은행업자, 화폐대부자, 금융업자 등의 수효가 늘어난다.—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화폐자본의 발전에 따라 리자부증권, 국채증권, 주식 등의 량이 증대한다는것은 우에서 말한바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화폐자본에

---

(10) 이번에는 여기에 은행업자측으로부터의 지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의 예금도, 예금되여 은행업자의 수중에 있는 화폐도 량자가 다 《화폐》라는 혼란이 나타난다. 은행업자 트웰즈는 1857년의 은행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레를 들고있다. 《나는 나의 사업을 1만파운드를 가지고 시작한다. 나는 5,000파운드로써 상품을 구입하여 그것을 나의 창고에 넣는다. 나머지 5,000파운드를 은행가에게 예금하고 필요에 따라 행표를 발행하려 한다. 그런데 전액중에서 5,000파운드는 예금 또는 화폐의 형태로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전액을 나의 자본으로 간주한다》(제4528호). 여기로부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우스운 의논이 전개된다. (제4531호) 《그러면 당신은 자기의 5,000파운드의 은행권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가?—그렇다.》—(제4532호) 《그러면 그 사람은 5,000파운드의 예금을 가지고있는가?—그렇다.》—(제4533호) 《그런데 당신도 5,000파운드의 예금을 가지고있는가?—그렇다.》—(제4534호) 《그는 5,000파운드의 화폐를 가지고있고 당신도 5,000파운드의 화폐를 가지고있는가?—그렇다.》—(제4535호) 《그러나 결국 그것은 화폐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아니다.》—이 혼란은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서 생긴다. 5,000파운드를 예금한 A는 이것에 대하여 행표를 발행할수 있으며 아직도 그가 이 5,000파운드를 가지고있는 경우나 전혀 다름이 없이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다. 5,000파운드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에게 있어서 잠세적인 화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그가 그것에 대하여 행표를 발행하면 그때마다 그만큼 그의 예금은 줄어든다. 그가 현실적인 화폐를 찾아낸다면, 그리고 그의 화폐는 이미 다른데 대부되여있다면 그는 그 자신의 화폐로써 지불을 받는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예금한 화폐로써 지불을 받는것이다. 그가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앞으로 발행한 행표로써 B에게 채무를 지불하며 B는 이 행표를 자기의 거래은행업업자에게 예금하고 그리고 A의 은행업자도 역시 B의 은행업자앞으로의 행표를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두 은행업자들은 단지 행표를 교환할따름이라면 A가 예금한 화폐는 두번, 즉 첫째번은 A가 예금한 화폐를 받은자의 수중에서, 둘째번은 A자신의 수중에서 화폐기능을 수행한것이다. 둘째번기능은 채권의 상쇄(A가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채권과 이 은행업자가 B의 거래은행업자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채권의 상쇄)가 화폐의 매개없이 수행된다. 이러한 경우에 예금은 두번 화폐로서 기능한다. 즉 우선 현실적화폐로서 기능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화폐청구권으로서 기능한다. 단순한 화폐청구권은 제 채권의 상쇄에 의하여서만 화폐를 대신할수 있다.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권을 투기거래하는 증권중개업자가 화폐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놀게 되기때문이다. 이러한 증권들의 매매가 모두다 현실적자본투하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매매가 대부자본의 수요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말해도 좋을것이다. 왜냐하면 A가 자기의 증권을 판매한다면 그는 B가 이 증권에 투하하는것과 같은 액의 화폐를 끌어내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증권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그 증권이 원래 대표한 자본은(적어도 화폐자본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증권은 의연히 이러한 화폐자본에 대한 그만큼한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키는것이다. 그러나 여하간 그 경우에는 이전에 B가 리용할수 있었고 이제는 A가 리용할수 있는것은 화폐자본인것이다.

《은행법》, 1857년(제4886호). 《만일 내가 할인률은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과는 다른 상업수형의 할인에 돌릴수 있는 시장에 존재하는 자본의 량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견에는 할인률을 규정하는 원인들을 옳게 지적한것으로 되는가?》—〔채프먼〕《아니다. 내가 생각하는바에는 리자률은 쉽게 현금으로 전화될수 있는 모든 유가증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문제를 수형할인에만 국한시킨다는것은 부당할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성행하고있는바와 같이 정리공채나 지어는 국고증권까지》〔의 담보〕《에 보다 큰 화폐수요가 생기고 그것도 그 리자률이 상업리자률보다 훨씬 높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상업계가 매우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것은 불합리할것이기때문이다. 상업계는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영향을 받는것이다》—(제4890호)《은행업자들도 그렇다고 인정하는 우수하고 잘 팔리는 유가증권이 시장에 있어서 소유자들이 그것으로 화폐를 차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확실히 상업수형에 영향을 미친다. 례컨대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화폐를 정리공채 등으로는 6%로 대부할수 있는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화폐를 상업수형으로 5%로써 나에게 대부

하여주리라고 기대할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 내가 자기의 화폐를 6%로 대부할수 있다면 누구도 자기의 수형을 $5\frac{1}{2}$%로 할인하여달라고 나에게 요구할수는 없다.》—(제4892호) 《우리는 2,000파운드 또는 5,000파운드 또는 10,000파운드와 같은 유가증권을 확실한 투자로서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치도 그들이 화폐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듯이 말하는것은 아니다. 당신이 정리공채》{의 담보}《로써의 대부에 대한 리자률에 관하여 나에게 물었을 때 내가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수십만의 금액을 거래하는 사람들, 이른바 증권중매인들인데 그들은 거액의 공채에 응모하거나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그다음에는 이 증권을 유리하게 팔수 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화폐를 차입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신용제도의 발전에 따라 런던과 같은 큰 집중적화폐시장들이 조성되는데 그것은 동시에 이러한 증권의 거래중심지로도 된다. 은행업자들은 공중의 화폐자본을 대량으로 이러한 상인들의 처분에 맡기며 그리하여 이 도박군불량배들이 늘어난다.

《화폐는 증권거래소에서는 보통 다른 어디서보다도 값싸다》라고 1848년에 당시의 잉글랜드은행총재 (제임즈 모리스) 가 상원비밀위원회에서 진술하였다(《상업곤경》, 1848년, 1857년 인쇄, 제219호).

리자부자본의 고찰에서 이미 말한바와 같이 비교적 다년간에 걸치는 평균리자는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는 한 리윤의 평균률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고 기업자리득의 평균률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며 기업자리득 그 자체는 리윤 마이나스 리자에 지나지 않는것이다.①

상업리자—상업계의 범위내에서 할인 및 대부에 대하여

① 본권 418페지이하를 보라.—편집자

화폐대부업자들에 의하여 계산되는 리자—의 변동에 있어서도 산업순환의 경과중에 나타나는 한 단계에서는 리자률은 그 최저한도를 넘어서 중등의 평균높이에 도달하며(그후에 또 리자률은 이 높이를 룽가한다) 게다가 이 운동은 리윤의 증대의 결과인데 이것도 이미 언급하였고 또 나중에 보다 상세히 연구할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의 두가지를 말하여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리자률이 장기간에 걸쳐 높다면(여기서 문제로 하는것은 례컨대 영국과 같은 주어진 한 나라의 리자률에 관한것인데 거기에서는 중등의 리자률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주어져있으며 또 그것이 사적리자라고도 부를수 있는 장기간의 대부에 지불되는 리자에서도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얼핏 보아도 명백히 이 기간에 걸쳐 리윤률이 높다는 증거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업자리득의 률이 높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은 아니다. 이 마지막에 든 구별은 주로 자기의 자본으로 경영하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많게나적게나 없어진다. 그들이 높은 리자률을 실현하는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리자를 지불하기때문이다. 높은 리자률이 비교적 오래 지속할 가능성—여기에서는 본래의 팽박의 단계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아니다—은 리윤률이 높다는데 의하여 주어진다. 그러나 이 높은 리윤률에서 높은 리자률을 공제하면 낮은 기업자리득률밖에는 남지 않을수 있다. 기업자리득의 률은 높은 리윤률이 지속하여도 수축할수 있다.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는것은 일단 착수한 기업들은 계속 운영할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오로지 신용자본(타인의 자본)으로써 영업이 맹렬히 진행된다. 그리고 높은 리윤률은 때로는 투기적이고 예견적인 것일수 있다. 리윤률은 높으나 기업자리득은 감소한다면 높

은 리자률이 지불될수 있다. 높은 리자률은 리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차용한 타인의 자본 자체에 의하여서도 지불될수 있으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투기시기에 그렇다. 이러한 일은 한동안 지속될수도 있다.

둘째로, 리윤률이 높기때문에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며 따라서 리자률이 증대한다는 표현은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며 따라서 리자률이 높다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것이 아니다.

공황시기에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 따라서 또 리자률은 그 최고한도에 도달한다. 리윤률, 따라서 또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는 없어진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시기에는 누구나 다 오직 지불을 하기 위하여서만, 이미 짊어지고있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서만 돈을 꾼다. 이와는 반대로 공황후의 회복기에는 대부자본은 구매하기 위하여서 요구되며 화폐자본을 생산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요구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부자본은 산업자본가에 의하여서가 아니면 상인에 의하여 요구된다. 산업자본가는 그것을 생산수단과 로동력에 투하한다.

리자률이 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로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리자률의 상승의 원인으로 될수는 없다. 보다 높은 로임은 결코 보다 높은 리윤의 원인이 아니다. 비록 산업순환의 특수한 단계를 보면 그것은 보다 높은 리윤의 결과의 하나일수는 있지만.

로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가 가능한것은 로동에 대한 착취가 특히 유리한 제 조건하에서 수행되기때문이지만 그러나 로동력에 대한 수요, 따라서 가변자본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그 자체로서는 리윤을 증대시키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리윤을 그만큼 감소시키는것이다. 그렇지만 로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가변자본에 대한 수요, 따라서 또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수 있는데 이것은 또 리자률을 높일수 있다. 그 경우에는 로동력의 시장가격은 그 평균보다 높으며 평균보다 많은 로동자들이 고용되며 또 그와 동시에 리자률도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기때문이다. 로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을 비싸게 하며 그 가격을 증대시키지만 그러나 리윤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리윤은 주로 다름아닌 이 상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기초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로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동시에—전제된 제 사정하에서는—리자률을 높이는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때문이다. 만약 화폐자본가가 화폐대부를 그만두고 산업자본가로 전화되였다면 그가 이제는 로동에 대하여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서는 그의 리윤을 증대시키는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만큼 그의 리윤을 감소시킬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그의 리윤이 증대할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그가 로동에 대하여 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때문인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정은 그것이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에서는 리자률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다른 점들에서는 상황이 불리한 경우에 그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로임이 비싸진다면 로임의 상승은 리윤률을 저하시킬것이지만 그러나 그 상승이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것과 같은 정도로 리자률을 높일것이다.

로동을 도외시하면 오버스턴이 《자본에 대한 수요》라고 부르는것은 상품에 대한 수요일따름이다. 상품에 대한 수

요는 수요가 평균이상으로 증대하는 경우나 공급이 평균이하로 저락하는 경우나를 막론하고 상품가격을 제고시킨다. 산업자본가나 상인이 이전에는 자기가 100파운드를 지불하던것과 동일한 상품량에 대하여 이제는 례컨대 15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는 100파운드면 될것을 150파운드나 차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리자가 5%라고 하면 5파운드를 지불하면 될것을 $7\frac{1}{2}$파운드나 지불하여야 한다. 차입자본의 량이 증대하기때문에 그가 지불하여야 할 리자의 량이 증대할것이다.

오버스턴씨의 모든 시도는 대부자본과 산업자본의 리해관계를 동일한것으로서 표시하려는데 있는데 그의 은행법은 바로 이 두 리해관계의 차이를 화폐자본에 유리하게 리용할것을 타산하고있는것이다.

상품의 공급이 평균수준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많은 화폐자본을 흡수하지 않는 일이 있을수 있다. 상품의 총가치에 지불되여야 할 금액은 이전과 같거나 아마도 보다 적지만 그러나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받게 되는 사용가치의 량은 보다 적은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상품에 대한 수요는 비록 상품의 그 공급에 비하여 증대하고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등귀하였을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될 수 있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이고 따라서 리자률도 오르지 않을것이다. 리자률에 영향이 미칠수 있는것은 대부자본에 대한 총수요가 증대하는 경우뿐인데 상술한 제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공급이 례컨대 곡물, 면화 등의 흉작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평균수준이하로 감소되지만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대할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보다

더 등귀할것을 노리고 투기가 진행되기때문이며 가격을 등귀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공급의 일부분을 잠시 시장으로부터 끌어내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상업적《수형조작》에 의하여 화폐를 조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데 리자률은 이러한 시장에의 상품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그러한 시도에 의하여 오를수 있다. 리자률이 오르는것은 이 경우에는 상품자본의 공급의 인위적인 감소를 표현한다.

다른 한편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는 그 상품의 공급이 증대되여 그 상품이 그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기때문에 증대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화폐액으로 보다 많은 상품이 입수될수 있기때문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의연히 동일할수 있으며 또 감소될수도 있다. 그러나 이 유리한 순간을 생산의 목적에 리용하기 위하거나 또는 장래의 가격등귀를 기대하거나 하는데 의하여 투기적인 재고형성이 진행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높아진 리자률은 생산자본의 제 요소의 과잉재고형성에 자본이 투하된것의 표현일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품자본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만을 고찰한다. 산업순환의 각이한 단계에서 재생산과정이 변동하는 상태가 대부자본의 공급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은 이미 상세히 론술하였다. 리자률의 시장률은 (대부)자본의 공급수요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평범한 명제를 오버스턴은 약삭바르게도 대부자본은 자본일반과 동일한것이라는 그 자신의 가정과 슬쩍 뒤섞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의하

여 고리대업자를 유일한 자본가로 만들고 또 고리대업자의 자본을 유일한 종류의 자본으로 만들려고 한다.

핍박기에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이고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결코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아니다. 이 경우에 리자률은 현실적자본—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이 과잉되든 결핍되든간에 매우 높을수 있다.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상인이나 생산자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수 있는 한에서는 단순한 **화폐**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수요이다. 이러한 담보가 없는 한에서는 그것은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이다. 즉 지불수단의 선대가 그들에게 **화폐형태**를 줄뿐만아니라 어떠한 형태에 있는것이든 그들에게 부족되는 지불을 위한 **등가물**을 주는 한에서는 그러하다. 이 점이야말로 보통 류행되는 설의 쌍방의 의견이 공황의 판단에 있어서 다같이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한 점이다. 이 경우에 단지 지불수단이 부족할따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 확실한 담보의 소유자들만을 념두에 두고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이쪼각을 발행하는데 의하여 모든 파산된 투기업자들을 모두 지불능력있는 견실한 자본가들로 전화시키는것이 은행의 의무이고 은행이 그렇게 할 힘을 가지고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경우에 자본이 부족할따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말의 회롱을 일삼는 사람들이거나—왜냐하면 사실상 이러한 시기에는 과잉수입이나 과잉생산의 결과로 화폐로 **전화될수 없는** 자본이 대량으로 존재하기때문이다—그렇지 않으면 신용의 기사들에 대하여서만 말하고있을따름인데 이 신용의 기사들은 이제는 사실상 경영해나가기 위한 타인의 자본을 더는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이제는 은행에 대하여 자기들의 상실된 자본의 지

불을 도와줄뿐만아니라 또 투기를 계속할수 있게 하여줄것을 요구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는 화폐가 가치의 독립적형태로서 상품에 대립한다는것, 바꾸어말하면 교환가치가 화폐에서 독립적형태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인데 이러한것이 가능한것은 오직 일정한 상품이 재료가 되여 그 상품의 가치에서 다른 모든 상품들이 측정되며 또 그렇게 되는데 의하여 그 상품이 일반적상품으로 되고 다른 모든 상품들과 대립하는 특별히 훌륭한 상품으로 된다는데 의하여서이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나지 않을수 없는데 특히 한편으로는 신용거래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화폐에 의하여 화폐를 대규모로 대체하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그러하다. 신용이 수축되거나 또는 전혀 없어지는 핍박기에는 갑자기 화폐가 유일한 지불수단, 가치의 진정한 정재로서 절대적으로 모든 상품과 대립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상품의 전반적인 가치감소가 일어나며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키기가, 즉 상품자체의 순전히 환상적인 형태로 전화하기가 곤난하게 되며 지어는 불가능하게까지 된다. 그러나 둘째로 신용화폐 그 자체가 화폐인것은 오직 그 명목가치액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현실적화폐를 대표하는 한에서이다. 금이 류출함에 따라 신용화폐의 화폐에로의 태환가능성, 즉 그것과 현실적금과의 동일성은 의심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 태환가능성의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자률의 인상 등등의 강제적조치가 나오는것이다. 이러한것은 그릇된 화폐리론에 기초하여 오버스턴이나 그 동료들의 화폐상인의 리해관계에 의하여 국민에게 강요된 그릇된 립법에 의하여 많게나적게나 극단에까지 추진될수 있다. 그러나 그 기초는 생산방식자체의 기초와 함

께 주어져있다. 신용화폐의 가치감소(다만 상상적인것에 불과한 그 비화폐화는 결코 아니다)는 모든 현존관계들을 동요시킬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는 화폐에 있어서의 이 가치의 환상적인 독립적정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희생된다. 상품의 가치가 화폐가치로서 확실한것은 일반적으로 오직 화폐가 확실한 한에서이다. 그렇기때문에 불과 수백만의 화폐를 위하여 수백만의 상품이 희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불가피한것이며 자본주의적생산의 극치의 하나를 이룬다. 그 이전의 생산방식들에서는 이러한것은 볼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생산방식이 운동하는 좁은 지반우에서는 신용도, 신용화폐도 발전하지 못하기때문이다. 로동의 **사회적**성격이 상품의 **화폐정재**로서 나타나고 따라서 현실적생산 밖에 있는 하나의 **물건**으로서 나타나는 한에서는 현실적공황과는 독립한 또는 현실적공황의 첨예화로서 나타나는 화폐공황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분명한것은 은행의 신용이 동요하지 않은 한 은행은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화폐를 증가시키는데 의하여 공황을 완화시키나 신용화폐를 걷어들이는데 의하여서는 공황을 격화시킨다는것이다. 현대산업의 모든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국내의 생산이 조직되여있으면 금속은 사실상 국제무역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파괴되여있을 때에 그 결제를 위하여서 필요할것이다. 국내에서는 이제는 벌써 금속화폐가 필요없다는것은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나 소위 국립은행의 현금지불정지가 유일한 응급수단으로 취하여진다는데 의하여 증명되고있다.

두 개인의 경우에 호상 거래에서 량자가 다 서로 수지차액이 역차로 되여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일것이다. 그들이 서로 상대편의 채무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한 경우에 그들의 채무가 상쇄되지 않으면 그 잔액에 대하여서는 일방은 타방의 채무자가 아닐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사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다음의 명제에서 인정되고있다. 그것은 즉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결국 균형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지만 국제수지는 그 나라에 대하여 순차 또는 역차로 될수 있다는 명제이다. 국제수지는 일정한 시기에 지불기한이 닥쳐오는 무역수지라는 점에서 무역수지와 구별된다. 그런데 공황은 무역수지와 국제수지간의 차이를 짧은 기간으로 압축시킨다. 그리고 공황에 봉착하고있고 따라서 이제 지불기한이 닥쳐온 국가에 있어서 전개되는 일정한 상태—이러한 상태는 이미 이러한 결제기간의 단축을 수반한다. 처음에는 귀금속이 발송된다. 다음에는 위탁상품의 투매가 시작된다. 투매를 위하여 또는 국내에서 수출에 대한 선대화폐를 조달하기 위하여 상품이 수출된다. 리자률은 오르며 신용은 해약을 예고받으며 유가증권은 저락하며 외국유가증권은 투매되며 가치가 감소된 이 유가증권에의 투하에 외국자본이 인입되며 나중에는 파산이 닥쳐와 그것이 대량의 채권을 청산한다. 그 경우에 공황이 일어난 나라에 금속이 발송되는 일도 자주 있다. 그것은 이 나라앞으로 발행되는 수형은 불확실하며 따라서 지불은 금속으로 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기때문이다. 그밖에 또 아시아에 대하여서는 모든 자본주의적나라가 대체로 동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채무자라는 사정이 첨가된다. 이러한 각이한 사정들이 일단 다른 관계국에게 충분한 작용을 미치게 되면 곧 이 나라에서도 금은의 수출이 시작되며 간단히 말해서 지불기한이 닥쳐와 동일한 현상이 다시 반복되는것이다.

상업신용에 있어서는 신용가격과 현금가격의 차액으로서 리자가 상품가격에 들어가는것은 다만 수형의 유효기간이 보통보다 더 긴 경우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자는 상품가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가 한손으로는 상업신용을 받으며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준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 {이것은 나의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다.—F. 엥겔스} 그런데 이 형태로 할인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그것은 이 상업신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폐시장에 의하여 규제된다.

가령 리자률을 규정하는 화폐자본의 수요공급이 오버스턴이 주장하는것처럼 현실적자본의 수요공급과 동일한것이라면 고찰되는 상품이 다르면, 또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각이한 단계(원료, 반제품, 완성생산품)에서 고찰하면 리자는 같은 때에 낮기도 하며 높기도 하여야 할것이다. 1844년에 잉글랜드은행의 리자률은 4%(1월부터 9월까지)와 11월부터 년말까지의 $2\frac{1}{2}$% 내지 3%사이에서 동요하였다. 1845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2\frac{1}{2}$%, $2\frac{3}{4}$%, 3%였으며 마지막 수개월에는 3%와 5%사이였다. 페어 오를리안즈 면화의 평균가격은 1844년에는 $6\frac{1}{4}$ 펜스였고 1845년에는 $4\frac{7}{8}$ 펜스였다. 1844년 3월 3일에는 리버풀의 면화재고는 62만 7,042퉁구리였는데 1845년 3월 3일에는 77만 3,800퉁구리였다. 면화의 가격이 낮았던것으로 미루어본다면 리자률은 1845년에 틀림없이 낮았을것이고 또 사실상 이 기간에 대부분 낮았다. 그러나 방사로 미루어보면 리자률은 틀림없이 높았을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리윤은 절대적으로 높았기때문이다. 1845년에는 1

폰드당 4펜스의 면화로부터 4펜스의 방적비용으로 방사(40번수의 상2호 물 연사)를 방적할수 있었고 따라서 이 방사에 방적업자는 8펜스를 들였는데 그는 이것을 1845년 9월과 10월에는 1폰드당 $10\frac{1}{2}$펜스 내지 $11\frac{1}{2}$펜스로 판매할수 있었다(아래에 나오는 와일리의 증언을 보라)①.

문제전체는 다음과 같이 해결될수 있다.

만약 화폐대부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대신 대부자본가들이 기계, 원료 등등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이 이러한것들의 일부분을 자기 자신이 이러한것의 소유자인 산업자본가에게 대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가옥을 그렇게 하듯이 임대하는 경우에만 대부자본의 수요공급은 자본일반의 수요공급과 일치할것이다(하기는 자본일반의 수요공급이라는 문구는 불합리한것이다. 산업자본가나 상인에게 있어서는 상품은 그의 자본의 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자본 그 자체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항상 특수한 상품자체를 요구하고 이 상품이 그의 자본의 순환에서 놀아야 할 역할과는 관계없이 곡물 또는 면화라는 상품으로서 그것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대부자본의 공급은 산업자본가들에 대하여는 생산요소의 공급과 동일할것이며 상인들에 대하여는 상품의 공급과 동일할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 경우에 대부자와 차용자사이에서의 리윤의 분배는 우선 전적으로 이 자본의 어느만큼한것이 대부받은 자본이고 어느만큼한것이 그 리용자소유물인가 하는 그 비률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

웨걸린씨(《은행법》 1857년)에 의하면 리자률은 《유휴자본의 량》(제252호)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것은 《다만 투

① 본권 626페지를 보라.—편집자

하처를 구하는 유휴자본의 량의 한 지표에 불과한것이다》(제271호). 후에는 이 유휴자본은 《류동자본》(제485호)이라고 불리우고있는데 그것을 그는 다음과 같은것으로 생각하고있다. 《잉글랜드은행권과 국내의 기타 류통수단 례컨대 지방은행들의 은행권이나 국내의 현존주화…나는 류동자본중에 은행의 준비금도 포함시켜 생각한다》(제502호, 제503호). 그리고 후에는 금괴도 이에 포함시킨다(제503호). 그리하여 동일한 웨걸린씨는 《우리 (잉글랜드은행) 가 사실상 유휴자본의 대부분을 수중에 가지고있는》(제1198호) 시기에는 잉글랜드은행은 리자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있는데 한편 오버스턴씨의 상술한 증언에 의하면 잉글랜드은행은 《자본을 위한 장소인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웨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기에는 할인률은 국내의 유휴자본의 량에 의하여 규제된다. 유휴자본의 량은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에 의하여 대표되고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금속준비이다. 그러므로 금속준비가 감소된다면 그것은 국내의 유휴자본의 량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그 남아있는 부분의 가치를 높이는것이다》(제1258호).

죤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제2102호).

《잉글랜드은행은 그 은행부의 지불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은행부의 준비금을 충실히 하는데 전력을 다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이 은행은 류출이 시작되였다는것을 알게 되면 준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할인을 제한하든가 유가증권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준비금은 은행부만을 고찰하는 한에서는 오직 예금을 위한 준비일뿐이다. 오버스턴의 말에 의하면 은행부는 《자동

적》 은행권발행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은행업자로서 행동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핍박의 시기에는 잉글랜드은행은 은행권으로써만 이루어지고있는 은행부의 준비금과는 관계없이 금속준비에 대하여 극히 날카롭게 주시하는것이며 또 지불불가능을 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금속준비가 없어지는것과 동일한 정도에서 은행권으로써 이루어지는 준비금도 없어지는것이기때문이다. 또 1844년의 그의 은행법에 의하여 이것을 그렇게도 현명하게 처리한 오버스틴씨보다 이것을 더잘 알고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할것이다.

제 33 장

신용제도하에서의 류통수단

《통화속도의 큰 조절자는 신용이다. 이것에 의하여 왜 화폐시장에서의 첨예한 핍박이 통례로 통화의 충족한 현상과 동시에 일어나는가 하는것이 설명된다》(《통화리론론평》, 65페지).

이것은 이중의 의미로 리해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류통수단을 절약하는 방법들은 모두다 신용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례컨대 500파운드의 은행권을 들어보자. A는 오늘 이것을 수형의 지불을 위하여 B에게 준다. B는 당일로 이것을 자기 거래은행업자에게 예금한다. 이 은행업자는 또 당일로 이것으로써 C에게 수형을 할인하여준다. C는 이것을 자기의 거래은행에 지불하며 이 은행은 이것을 수형중매인에게 선대한다 등등. 이 경우에 은행권이 구매 또는 지불을 위하여 류통하는 속도는 그 은행권이 반복하여 예금형태로 어떤 사람의 수중에로 들어가고 다시 대부의 형태로 어떤 다른 사람의 수중에로 옮아가는 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류통수단의 단순한 절약이 최고도로 발전하여 나타나는 것은 수형거래소에서이다. 즉 거기서는 오직 만기수형이 교환될뿐이며 화폐는 주로 잔액의 결제를 위하여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들의 존재자체는 또 산업가

들과 상인들이 서로 제공하는 신용에 기초하고있다. 이 신용이 감소하면 수형 특히 장기수형의 수가 감소하며 따라서 또 이러한 차액결제방법의 효과도 감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약은 많은 거래에서 화폐를 배제하는데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기초하고있으며 이 기능은 또 신용에 기초하고있는데 이와 같은 절약에는 두가지(이러한 지불을 집중시키는 기술의 다소간의 발전을 무시한다면) 종류가 있을뿐이다. 즉 수형과 행표에 의하여 대표되는 많은 상호적채권이 동일한 은행업자에게서 결산되여 이 은행업자가 다만 한사람의 구좌로부터 다른 사람의 구좌로 채권을 환치할따름이든가 또는 이 결산이 각이한 여러 은행업자들사이에서 진행되든가 한다.(11) 800만 내지 1,000만의 수형을 례컨대 오버렌드—거니 상회와 같은 한사람의 수형중매인의 수중으로 집중시키는것은 이러한 결산의 규모를 지역적으로 확대시키는 주요수단의 하나였다. 이 절약에 의하여 단순히 차액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류통수단의 량이 적어지는 한에서는 류통수단의 효과가 제고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의 류통속도(이것에 의해서도 류통수단은 절약된다)는 전적으로 매매의 원활성여부에 달렸으며 또는 지불이 련달아 화폐에 의하여 진행되는 한에서는 지불의 련쇄에 달렸다. 그러나 신용은 류통속도를 매개하며 또

(11) 은행권이 류통을 계속하는 평균일수는 다음과 같았다.

년	5파운드권	10파운드권	20~100파운드권	200~500파운드권	1,000파운드권
1792	?	236	209	31	22
1818	148	137	121	18	13
1846	79	71	34	12	8
1856	70	58	27	9	7

(잉글랜드은행 출납원 마샬의 보고: 《은행법특별위원회 보고》 1857년 제2부 부록 300~301페지에서)

그에 의하여 그 속도를 높인다. 하나의 화폐쪼각은 례컨대 그 원래의 소유자인 A는 B에게서 구매하고 B는 C에게서, C는 D에게서, D는 E에게서, E는 F에게서 구매하고 이리하여 한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그 이행이 현실적매매에 의하여서만 매개되는 경우에는 다만 5회의 회전을 수행할수 있을따름이며 신용의 매개없이 단순한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면서 비교적 장기간 매개인의 수중에 남아있게 된다. 그런데 B가 A로부터 지불받은 화폐를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에게 예금하고 이 은행업자는 이것을 C에게 수형할인으로 지출하며 C는 D에게서 구매하고 D는 그것을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에게 예금하며 이 은행업자는 이것을 E에게 대부하고 E는 F에게서 구매한다면 단순한 류통수단(구매수단)으로서의 그 화폐의 운동속도자체도 이 경우에는 몇회의 신용활동에 의하여 매개된다. 즉 B가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에게 하는 예금과 이 은행업자가 C에게 하여주는 할인과 D가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에게 하는 예금과 이 은행업자가 E에게 하여주는 할인에 의하여, 즉 4개의 신용활동에 의하여 매개된다. 이러한 신용활동들이 없었더라면 이 동일한 화폐쪼각은 주어진 기간에 련달아 5회의 구매를 수행할수 없었을것이다. 동일한 화폐쪼각이 현실적매매의 매개없이—예금과 할인에 의하여—소유자를 바꾸었다는것이 이 경우에는 일련의 현실적 거래에서의 그 화폐쪼각의 소유자변경을 가속화한것이다.

어떻게 동일한 한장의 은행권이 각이한 은행업자들에게서 예금을 형성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우에서 서술한바와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동일한 은행업자에게서 각이한 예금을 형성할수도 있다. 은행업자는 A가 예금한 은행권으로써 B의 수형을 할인하고 B는 C에게 지불하며 C는 그 동일한 은행권을 그

것을 발생한 동일한 은행업자에게 예금한다.

이미 단순한 화폐류통(제1부 제3장 제2절)을 고찰할 때 론증한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류통하는 화폐의 량은 류통의 속도와 지불의 절약을 주어진것으로서 전제하면 상품의 가격과 거래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242] 동일한 법칙은 은행권의 류통에 대해서도 지배한다.

다음표에는 매 년도별로 공중의 수중에 있던 잉글랜드은행권의 년평균금액이 5파운드 및 10파운드권의 금액과 20~100파운드권의 금액과 그보다 더 높은 200~1,000파운드권의 금액들로 나뉘여 기록되고있으며 또 이러한 부류의것들이 각각 총류통액중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도 기록되고있다. 금액의 단위는 1,000파운드이며 그 이하 세자리수는 버린것이다.

년도	5~10 파운드권		20~100 파운드권		200~1.000 파운드권		총계
	파운드	%	파운드	%	파운드	%	파운드
1844	9,263	45.7	5,735	28.3	5,253	26.0	20,241
1845	9,698	46.9	6,082	29.3	4,942	23.8	20,722
1846	9,918	48.9	5,778	28.5	4,590	22.6	20,286
1847	9,591	50.1	5,498	28.7	4,066	21.2	19,155
1848	8,732	48.3	5,046	27.9	4,307	23.8	18,085
1849	8,692	47.2	5,234	28.5	4,477	24.3	18,403
1850	9,164	47.2	5,587	28.8	4,646	24.0	19,398
1851	9,362	48.1	5,554	28.5	4,557	23.4	19,473
1852	9,839	45.0	6,161	28.2	5,856	26.8	21,856
1853	10,699	47.3	6,393	28.2	5,541	24.5	22,653
1854	10,565	51.0	5,910	28.5	4,234	20.5	20,709
1855	10,628	53.6	5,706	28.9	3,459	17.5	19,793
1856	10,680	54.4	5,645	28.7	3,323	16.9	19,648
1857	10,659	54.7	5,567	28.6	3,241	16.7	19,467

(《은행법》, 1858년 XXVI페지)

이리하여 1844년으로부터 1857년에 이르는 기간에, 수출입에 의하여 보여준 거래액은 2배이상으로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류통은행권의 총액은 절대적으로 감소되였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5파운드와 10파운드의 소액은행권은 1844년의 926만 3,000파운드로부터 1857년의 1,065만 9,000파운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당시의 금류통의 심한 증가와 같은 때에 발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고액은행권(200~1,000파운드)은 1852년의 585만 6,000파운드로부터 1857년의 324만 1,000파운드로 감소되였다. 즉 250만파운드이상이 감소되였다. 이 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854년 6월 8일에 런던의 사영은행업자들은 주식은행을 수형교환소의 제도에 참가시켰다. 그런데 그후 곧 잉글랜드은행에서 최종적인 청산이 진행되게 되였다. 매일의 결제는 각 은행들이 잉글랜드은행에 가지고있는 구좌상에서의 환치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 제도의 채용에 의하여, 이전에는 각 은행이 호상 결제하는데 리용되였던 고액은행권은 필요없게 되였다》(《은행법》, 1858년 Ⅴ페지).

도매업에서의 화폐의 사용이 얼마나 최소한의 소액으로 축소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제1부 제3장 주(103)[243]에 수록되여있는 표를 참조하라. 이 표는 런던의 최대의 상회의 하나인 모리슨 딜론상회가 은행위원회에 제출한것인데 이러한 대상회에서는 하나의 소매상인이 자기의 각종 상품의 전체 재고를 구입할수 있었다.

1857년 은행법위원회에서의 W. 뉴마치의 증언(《은행법》, 1857년 제1741호)에 의하면 류통수단의 절약을 촉진시킨 다른 사정들이 또 있었다. 이것은 저렴한 우편료, 철도, 전신 등등 간단히 말해서 교통수단의 개량이다. 이리하여 잉

글랜드는 현재 거의 같은 은행권류통액으로 5배 내지 6배의 거래를 할수 있다. 그러나 또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10파운드 이상의 은행권이 류통으로부터 베제되였기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뉴마치에게 있어서는 1파운드은행권까지 류통하고있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은행권류통액이 약 31% 증대하였다는것을 당연히 설명하는것으로 생각된다(제1747호). 련합왕국의 은행권의 총류통액은 1파운드권도 포함하여 3,900만파운드라고 한다(제1749호). 금류통액은 7,000만파운드이다(제1750호). 스코틀랜드에서는 은행권류통액은 1834년에는 312만파운드, 1844년에는 302만파운드, 1854년에는 405만파운드였다(제1752호).

이 수자로부터도 명백한바와 같이 은행권이 언제나 화폐와 태환될수 있는것인 한 류통은행권의 수량을 증대시키는것은 결코 발권은행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불환지폐는 여기서는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다. 불환은행권이 일반적인 류통수단으로 될수 있는것은 다만 사실상 그것이 국가신용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있는 경우뿐인데 례컨대 현재의 로씨야가 그러하다. 따라서 불환은행권은 불환국가지폐의 법칙에 따르는데 이 법칙은 이미 설명되였다.(제1부 제3장 제2절 c항—주화 가치기호)—F. 엥겔스}

류통은행권의 수량은 거래상의 필요에 순응하는것이고 여분의 은행권은 모두 즉시로 그 발행자에게로 돌아간다.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은행권만이 법정지불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류통되는것이므로 우리는 지방은행들의 은행권의 얼마 안되는 그리고 지방적인것에 불과한 류통은 여기에서 무시해도 좋은것이다.

1858년 은행위원회에서 잉글랜드은행총재 니브씨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제947호. 질문) 《어떠한 대책을 취하더라도 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의 액은 동일하다고, 즉 약 2,000만파운드라고 당신은 말하는것인가?—평상시에는 공중의 사용에는 약 2,000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년간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정한 시기들에서는 그것은 100만내지 150만이 증가된다. 공중이 더많이 필요로 한다면 내가 말한바와 같이 그들은 언제나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그것을 입수할수 있다.》—(제948호) 《공황시기에는 당신이 은행권의 액을 감소시키려 하여도 공중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 리유를 말해줄수 없겠는가?—공황시기에는 공중은 내가 보기에는 은행권을 조달할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물론 잉글랜드은행이 채무를 지고있는 한 공중은 이 채무에 근거하여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은행권을 끌어낼수 있다.》—(제949호) 《그러면 언제나 약 2,000만파운드의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공중의 수중에 있는 2,000만파운드의 은행권, 이것은 변동한다. 그것은 1,850만, 1,900만, 2,000만 등등이다. 그러나 평균해서 1,900~2,000만이라고 말하여도 좋다.》

상업곤경에 관한 상원위원회앞에서의 토머스 투크의 증언(《상업곤경》, 1848~1857년)(제3094호).

《잉글랜드은행은 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의 액을 자기의 의지로 증대시킬 힘은 없다. 동 은행은 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의 액을 감소시킬 힘은 가지고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강제적인 조작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30년의 경험을 가진 노팅엄의 은행업자인 J. C. 라이트는 공중이 필요로 하며 또 요구하는것보다 많은 은행권을 지방은행이 류통시킬수는 없었다는것을 상세히 설명하고나서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상업

곤경》, 1848～1857년)(제2844호).

《잉글랜드은행에는 아무런 제한 (은행권발행상에) 도 없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그러나 과잉되는 통화는 모두 예금으로 되여 다른 형태를 취할것이다.》

스코틀랜드에 대하여도 동일한것을 말할수 있는데 거기서는 아일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1파운드권도 허용되고있고 또 《스코틀랜드인은 금을 싫어》[244]하므로 거의 지페만이 류통되고있다. 스코틀랜드의 한 은행의 중역인 켄니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은행들은 결코 그 은행권의 류통을 축소시킬수는 없으며 자기의

《의견으로는 국내의 거래가 성립하기 위하여 은행권이나 금이 필요되는 한, 은행업자들은 그들의 예금자의 요구에 의해서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이러한 거래들에 필요한만큼의 류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은면 안된다…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자기들의 업무를 축소할수는 있지만 은행권발행을 통제할수는 없다》(《상업곤경》, 제3446, 3448호).

스코틀랜드련합은행의 중역 앤더슨도 같은 견해를 말하고있다(《상업곤경》, 제3578호).

《은행권의 호상교환제도》{스코틀랜드의 은행들간의}《는 개별적 은행에 의한 은행권의 과잉발행을 저지하는가?—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권교환》〔이것은 사실상 과잉발행의 저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지만 각 은행의 은행권의 스코틀랜드전체에 걸친 류통가능성을 보장한다〕《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일반적인, 은행구좌를 가지고있다는 습관이다. 즉 얼마만큼이라도 화폐를 가지고있는 사람은 누구나 은행에 구좌를 가지고 자기에게 곧 필요가 없는 화폐는 전부 매일 은행에 넣는다. 그리하여 매 영업일이 끝나면 각자의 호주머니에 있는것 이외에는 모든 화폐가 은행들에 있게 된다.》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위원회에서의 아일랜드은행 총재 맥던넬과 아일랜드지방은행 중역 마리의 증언들을 보라.

은행권의 류통은 잉글랜드은행의 의사와 관계가 없는것처럼 이 은행권의 태환가능성을 보장하는 이 은행지하실의 금준비고에도 관계가 없다.

《1846년 9월 18일에는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류통액은 2,090만파운드였고 그 금속준비는 1,627만 3,000파운드였다. 1847년 4월 5일에는 류통액은 2,081만 5,000파운드였고 금속준비는 1,024만 6,000파운드였다. 그러므로 600만파운드의 귀금속의 수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류통액은 축소되지 않았다》(J. G. 킨니어 《공황과 통화》, 1847년 런던판 5페지).

그러나 물론 현재 영국에서 일반적인 사정하에서만 이렇게 말할수 있으며 또 잉글랜드에서도 오직 립법이 은행권발행과 금속준비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른것을 지시하지 않는 한에서만 이렇게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류통화폐—은행권과 금—의 량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거래자체의 요구뿐이다. 여기서는 우선 일반적거래상황이 어떠하든간에 매년 반복되는 주기적변동이 고려되는데 20년래

《어느달에는 류통액이 크고 다른 어느달에는 작으며 제3의 어느달에는 중간점에 있다》(뉴마치 《은행법》, 1857년 제1650호).

그리하여 매년 8월에는 수확상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수백만이 대개 금으로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국내류통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주로는 로임을 지불하기 위한것이므로 은행권은 이 경우에 영국에서는 그리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

고 또 년말까지는 이 화폐는 다시 잉글랜드은행으로 환류한다. 스코틀랜드에서 쏘브린화 대신에 거의 1파운드 은행권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상술한바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년2회, 즉 5월과 11월에 은행권의 류통액이 300만으로부터 400만으로 증가된다. 14일후에는 벌써 환류가 시작되고 1개월내에는 환류는 거의 끝난다(앤더슨, 우와 같은 책, [상업곤경, 1848~1857년]제3595~3600호).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의 류통액은 그밖에도 분기마다 일시적으로 변동되는데 그것은 《배당》 즉 국채리자의 분기마다의 지불에 의하여 생기는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은행권은 우선 류통으로부터 회수되고 이어서 다시 공중들사이에 방출되지만 그것은 매우 신속히 다시 환류한다. 웨걸린(은행법 1857년, 제38호)은 이때문에 일어나는 은행권류통의 변동의 액을 250만이라고 말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유명한 오버렌드-거니상회의 채프먼씨는 그때문에 일어나는 화폐시장에서의 교란을 훨씬 크게 계산하고있다.

《만약 당신이 국채리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류통으로부터 600만 내지 700만을 조세로서 끌어낸다면 그동안에 그만한 금액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있어야 한다》(《은행법》, 1857년 제5196호).

산업순환의 각이한 단계에 상응하는 류통수단의 액의 변동은 이보다 훨씬 크고 또 지속적이다. 이에 관하여 그 상회의 또 하나의 공동출자자이며 존경할만한 퀘키 교도 쌔뮤얼 거니가 말하는것을 들어보자(《상업곤경》, 1848~1857년 제2645호).

《10월말 (1847년) 에는 2,080만파운드의 은행권이 공중의 수중에 있었다. 당시 화폐시장에서 은행권을 입수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곤

난하였다. 이것은 1844년의 은행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은행권을 입수할수 없을것이라는 일반적인 위구때문이였다. 현재 (1848년 3월) 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의 금액은…1,770만파운드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상업상 경계할것은 아무런것도 없으므로 이 금액은 사용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것이다. 런던에는 자기가 사용할수 있는것보다 많은 은행권을 가지고있지 않는 은행업자나 화폐거래업자는 한사람도 없다.》—(제2650호) 《잉글랜드은행밖에 있는…은행권의 액은 상업계 및 신용의 상태를…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적류통상태의 지수로서는 전혀 불충분한것이다.》—(제2651호) 《현재 공중의 수중에 있는 통화의 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은 큰 정도로 현재의 침체상태에서 생겼다. 물가가 높고 또 거래가 활발하다면 이 1,770만파운드는 우리에게 부족감을 일으킬것이다》.

{선대를 하여도 그 환류가 규칙적으로 진행되여 신용에도 동요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사업상태가 계속되는 한 류통수단의 팽창과 수축은 단순히 산업가나 상인들의 수요에 따르게 된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금은 도매업에서 문제로 되지 않으며 또한 계절적변동을 도외시한다면 금의 류통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거의 불변한 크기라고 간주할수 있으므로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의 류통액은 이러한 변동의 아주 정확한 측도기로 된다. 공황후의 침체기에는 류통액은 가장 적고 수요가 부활됨에 따라 류통수단에 대한 수요도 커지며 이 수요는 번영이 진전됨에 따라 증대된다. 류통수단의 량은 과도한 긴장과 과도한 투기의 시기에 절정에 달한다.—이때에 공황이 돌발하며 어제까지도 그렇게 풍부하던 은행권이 하루밤사이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와 함께 수형을 할인하는 사람도,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선대를 하는 사람도, 상품을 사는 사람도 없어진다. 잉글랜드은행이 도와주러 간다.—그러나 그의 힘도 얼마 안가서 지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은행

권을 얻으려고 소리지르고 상품소유자들은 상품이 팔리지 않는데도 지불은 해야 하므로 은행권만 입수할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1844년의 은행법은 잉글랜드은행으로 하여금 그 은행권류통액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도록 강제한다. 상술한 은행업자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와 같은 책, 제2930호).

《경계기에는 이 나라는 평상시의 2배의 통화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은행업자나 기타 사람들이 류통수단을 저장하기때문이다》.

공황이 돌발하면 지불수단만이 문제로 된다. 그러나 이 지불수단을 입수함에 있어서 누구나 타인에 의존하며 또 그 타인이 만기일에 지불할수 있을것인가 하는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때문에 시장에 있는 지불수단, 즉 은행권을 입수하기 위한 진짜 장애물경주가 시작된다. 각자는 입수할수 있는만큼의 은행권을 저장하며 그리하여 은행권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날에 류통으로부터 자취를 감춘다. 쌔뮤얼 거니(상업곤경, 1848년～1857년, 제1116호)는 이러한 공포의 순간에 저장된 은행권의 액이 1847년 10월에는 400만 내지 500만파운드였다고 보고한다.—F. 엥겔스}

이 점에서 특히 흥미있는것은 1857년 은행법위원회에서 한, 거니의 공동출자자인 상술한 채프먼의 증언이다. 여기서는 관련있는 그 주요내용을 보여주려 한다. 비록 거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야 비로소 연구하게 될 약간의 점들도 취급되고있지만.

채프먼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4963호)《솔직히 말하면 류통수단이 매우 부족할 때에 비상한 화폐결핍과 핍박을 일으킬수 있는 어떤 한사람의 개별적자본가의 세력

하에 화폐시장이 놓이게 되는것(지금 런던에서 있는바와 같은)을 나는 정상적인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그것에 의하여 어떤 목적이 달성될수 있다면 류통수단중에서 100만파운드나 200만파운드의 은행권을 끌어낼수 있는 자본가는 한사람뿐이 아닐것이다.》

(제4965호). 하나의 대투기업자가 100만이나 200만의 정리공채를 팔아서 화폐를 시장에서 끌어낼수도 있는것이다. 그와 류사한 일이 바로 얼마전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매우 심한 핍박을 일으킨다》.

(제4967호). 그 경우에 은행권은 확실히 비생산적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런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큰 목적이란 공채의 가격을 폭락시키고 화폐의 핍박을 일으키는것인데 그는 완전히 그렇게 할수 있는것이다.》

그 한 실례. 어느날 증권거래소에 큰 화폐소요가 있었다.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다. 어떤 사람이 채프먼에게 7%로 5만파운드를 대부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채프먼은 놀랐다. 그의 리자률은 그보다 훨씬 낮았던것이다. 그는 동의했다. 그 후 곧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7\frac{1}{2}$%로 5만파운드를 더 차용하였으며 다음에는 8%로 10만파운드를 차용하였고 또 $8\frac{1}{2}$%로 더 차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채프먼도 불안을 느꼈다. 그후에 안 일이지만 많은 액의 화폐가 갑자기 시장에서 끌려나갔던것이다. 그러나 채프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래도 나는 8%로 큰 금액을 대부하였다. 그 이상은 나도 근심이였다. 어떻게 될지 몰랐기때문이였다.》

잊어서는 안될것은 대체로 언제나 1,900만 내지 2,000만의 은행권이 공중의 수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은행권중 현실적으로 류통하는 부분과 운용되지 않고 준비금으로서 은행에서 놀고있는 부분간의 비률은 부단히 또 크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이 준비금이 크고 따라서 현실적류통량이 작다면 그것은 화폐시장의 견지에서는 화폐는 풍부하다는것이다(the circulation is full, money is plentiful). 만약 준비금이 적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류통되는 화폐가 많다면 화폐시장의 견지에서는 화폐는 부족하다(the circulation is low, money is scarce)고 말한다. 즉 놀고있는 대부자본을 대표하는 부분의 액이 작은것이다. 산업순환의 각 단계들과는 관계없는 현실적인 류통수단의 팽창 또는 수축—그러나 공중이 필요로 하는 액은 종전과 다름이 없다—은 순전히 기술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례컨대 조세 또는 국채리자의 지불기일에만 일어난다. 납세기에는 은행권과 금이 보통정도를 넘어서 잉글랜드은행으로 류입하고 사실상 류통을 그 필요를 고려함이 없이 수축시킨다. 국채리자가 지불될 때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류통수단을 입수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은행들에서는 그 준비금이 일시 증가하므로 리자률은 저락한다. 이것은 류통수단의 절대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다만 이러한 류통수단을 류통에 투입하는 은행업자와만 관계가 있을뿐이다. 그리고 이 은행업자에게 있어서는 이 과정은 대부자본의 대출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는 거기에서 나오는 리윤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것이다.

일방의 경우에는 류통수단의 일시적인 이동이 일어날뿐이며 이 이동을 잉글랜드은행은 분기마다 오는 납세기 또는

역시 분기마다 오는 국채리자지불기 직전에 단기의 선대를 저리로 함으로써 균등하게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발행된 과잉한 은행권은 우선 조세의 지불로 하여 생기는 부족을 보충하는데, 상기 은행대부금의 상환은 국채리자의 지불로 말미암아 공중의 수중으로 들어간 과잉한 은행권을 은행으로 복귀시킨다.

다른 한 경우에는 류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충족한것은 언제나 같은 량의 류통수단이 현실적 통화와 예금, 즉 대출도구로 나누어지는 그 분배의 차이에 불과한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례컨대 잉글랜드은행으로의 금의 류입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에 발행된 은행권의 수량이 증대된다면 이 은행권은 잉글랜드은행 밖에서의 할인업무에 복무하고 대출금의 상환에 의하여 환류하는것이며 따라서 류통은행권의 절대량은 다만 일시적으로 증가될따름이다.

만일 영업이 확대되였기때문에 류통수단이 충만된다면 (그것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생길수 있다) 리윤의 증대와 새로운 투자의 증가로 인한 대부자본수요때문에 리자률이 비교적 높을수 있다. 만일 영업의 축소때문에 혹은 신용의 류동성이 크기때문에 류통수단이 적어졌다면 물가는 높아도 리자률은 낮을수 있다(하버드의 저작①을 보라).

류통수단의 절대량은 오직 핍박기에만 리자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만된 류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신용이 결핍하기때문에 생긴 화폐축장수단에 대한 수요만을 표시할따름이다(화폐의 류통속도와 동일한 화폐조각이 부단히 대부자본으로 전환되는 속도의 감소를 도외시하면).

---

① 본권 623~624페지를 보라.—편집자

례컨대 1847년에는 그러하였는데 그해에는 은행법의 정지는 류통수단의 팽창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퇴장된 은행권을 다시 세상에 끌어내여 류통에 투입하는데는 충분하였다. 혹은 또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류통수단이 필요하게 될수도 있다. 례컨대 1857년에 은행법이 정지된후 얼마동안 류통수단은 현실적으로 증대되였던것이다.

이러한 경우이외에는 류통수단의 절대량은 리자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절대량은—류통수단의 절약 및 속도를 불변이라고 전제한다면—첫째로는 상품들의 가격과 거래들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이 경우에 대개 이 계기들중 일방의 계기는 타방의 계기의 작용을 마비시킨다) 마지막으로는 신용상태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신용상태를 규정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둘째로는 상품가격과 리자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관련도 없는것이기때문이다.

은행제한법[245]이 시행되고있는 동안(1797~1820년)은 류통수단의 과잉이 나타났는데 리자률은 태환이 재개된 이후에 비하여 부단히 훨씬 높았다. 그후에 리자률은 은행권발행의 제한과 수형시세의 상승에 따라 급속히 저락하였다. 1822년, 1823년, 1832년에는 일반적인 류통수단은 적었고 리자률도 역시 낮았다. 1824년, 1825년, 1836년에는 류통수단은 많았고 리자률은 상승하였다. 1830년 여름에는 류통수단은 많았고 리자률은 낮았다. 도처에서 금광이 발견[239]된 이래 화폐류통은 전 구라파에 걸쳐 팽창되였으며 리자률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리자률은 류통화폐량에 의존하는것은 아니다.

류통수단의 발행과 자본의 대출간의 구별은 현실적재산생과정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생산의 각이한 구성들이 어떻

게 교환되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앞에서(제2부, 제3부) 이미 보았다. 례컨대 가변자본은 물질적으로는 로동자들의 생활수단이며 그들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화폐의 형태로 조금씩 그들에게 지불된다. 자본가는 이 화폐를 선대하지 않으며 안된다. 그리고 자본가가 지난 주에 자기가 지불한 그 낡은 화폐로써 그다음주에 새로운 가변자본을 지불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신용제도의 조직에 크게 의존한다. 사회적총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간에서의 교환행위, 례컨대 소비수단과 소비수단의 생산수단간에서의 교환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것들의 류통을 위한 화폐는 이미 본바와 같이 교환자들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후 이 화폐는 류통분야에 남지만 교환이 끝나면 반드시 또 그것을 선대한 사람의 수중으로 다시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 화폐는 그에게 있어서 그가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자본이상으로 선대된것이기때문이다(제2부 제20장[246]을 보라). 신용제도가 발전하여 화폐가 은행의 수중에 집중된 경우에 은행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화폐를 선대한다. 이 선대는 류통중에 있는 화폐와만 관계가 있을뿐이다. 그것은 류통수단의 선대인것이고 그것에 의하여 류통되는 자본의 선대인것은 아니다.

채프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5062호)《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이 매우 큰 액을 이루고있는데도 그것을 입수할수 없는 시기가 닥쳐올수 있다.》

화폐는 공황의 시기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대부될수 있는 자본으로, 대부될수 있는 화폐로 전화시키는것은 누구나 경계한다. 모두가 현실적지불용으로 화폐를 꽉 틀어쥐고

놓지 않는다.

(제5099호)《농촌지방의 은행들은 그들의 놀고있는 과잉자금을 당신에게나 런던의 기타 증권거래소들에게 보내는가?—그렇다.》—(제5100호)《다른 한편으로 랭카셔나 요크셔의 공장지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업적목적을 위하여 당신에게서 수형을 할인받는가?—그렇다.》—(제5101호)《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지방의 과잉화폐가 다른 지방의 요구에 의하여 리용될수 있게 되는가?—완전히 그렇다.》

채프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의 과잉화폐자본을 단기간 정리공채나 국고증권의 구입에 투하하는 은행계의 습관은 이 화폐를 어느날이고,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서 대부하는것이 습관으로 된후부터 최근에는 많이 감소되였다는것이다. 그 자신은 이러한 증권들을 사는것은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는 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화폐를 확실한 수형들에 투하하는데 이 수형중의 일부분이 매일 만기가 되기때문에 그는 매일 얼마만큼의 류동화폐를 기대할수 있는가를 언제든지 알고있는것이다.(제5100~5105호)—

수출의 증대까지도 많거나 적은 모든 나라에서 특히 신용을 제공하는 나라에서는 국내화폐시장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서 나타나지만 그 수요의 증대가 그러한것으로서 느껴지는 것은 핍박의 시기뿐이다. 수출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통례로 영국제품의 위탁판매에 대하여 장기수형이 제조업자들로부터 수출상인앞으로 발행된다(제5126호).

(제5127호)《이러한 수형을 때때로 갱신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채프먼}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에 붙이고있다. 우리는 그러한 수형은 인정하지 않을것이다…그러한 일은 확실히 있을수 있으나 나는 그러한것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순진한 채프먼) .》—(제5129호) 《작년 한해동안에만도 2,000만파운드나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그와 같이 수출의 대증가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자연히 이 수출을 대표하고있는 수형의 할인을 위하여 자본에 대한 큰 수요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는가?—확실히 그렇다.》—(제5130호) 《영국은 통례로, 그의 모든 수출에 대하여 외국에 신용을 주고있으므로 그 신용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 해당한 추가자본의 흡수가 필요하게 되지 않겠는가?—영국은 거액의 신용을 주고있다. 그러나 그 대신 영국에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신용을 받고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앞으로 발행하는 수형은 60일불이 보통이며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형은 90일불이 보통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신용을 준다. 우리가 상품을 독일로 보낼 경우에 2개월 내지 3개월의 신용을 준다.》

윌슨이 채프먼에게 질문한다(제5131호).—이러한 수입원료와 식민지상품에 대하여서는 그 적재와 동시에 이미 영국앞으로 수형이 발행되지 않는가? 또 그 수형들은 이미 선하증권과 동시에 도착하는것이 아닌가? 채프먼은 그럴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상인적》 거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채프먼은 말한다. 미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상품은 수송중에 상징화》 [제5133호]될것이다. 이 잠꼬대같은 말의 의미는 영국의 수출상인이 상품을 담보로 하여 런던에 있는 미국 대은행의 앞으로 4개월불의 수형을 발행하고 이 은행이 미국으로부터 지불을 받는다는것이다.

(제5136호) 《먼 나라들과의 거래는 통례로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자기의 자본이 회수되는것을 기다리는 상인들에 의하여 경영되는것이 아닌가?—상품담보로 선대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본을 투하할수 있는 큰 사부를 가지고있는 상회들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유명한 상회들의 수형인수에 의하여 대부분 선대로 전화된다.》—(제5137호) 《이러한 상회들은…런던, 리버풀 및 기타 지방들에

설치되여있다.》—(제5138호)《그렇다면 제조업자가 자기의 화폐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폐를 선대해주는 상인을 런던이나 리버풀에서 발견하든가 하는것은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된다. 여하간 영국에서 실시되는 선대라는 말이 아닌가?—완전히 그렇다. 제조업자가 이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그런데 1847년에는 거의 모든 경우들에 그러하였다)《공업제품을 취급하는 상인, 례컨대 만체스터에 있는 그러한 상인이 상품을 사서 런던에 있는 믿음직한 상회를 통하여 이것을 발송한다. 모든것이 협정대로 되였다고 런던의 상회가 확인하자 만체스터의 상인은 인도, 중국 및 기타 나라로 가는 이 상품을 담보로 하여 그 런던의 상회앞으로 6개월불 수형을 발행한다. 그다음에는 은행업자가 끼여들어서 그에게 이 수형을 할인하여준다. 그리하여 그가 이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무렵에는 그는 이 수형의 할인에 의하여 화폐를 이미 수중에 가지고있는것이다.》—(제5139호)《그러나 상인은 화폐를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은행가는 그것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 아닌가?—**은행가는 수형을 가지고있다. 은행가는 수형을 산것이다.** 그는 자기의 은행자본을 이 형태로, 즉 상업수형의 할인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따라서 채프먼도 수형할인을 선대라고는 보지 않고 상품의 구입이라고 보고있다.—F. 엥겔스}

(제5140호)《그러나 여하튼 그것은 런던의 화폐시장에 대한 수요의 일부분으로 되는것 아닌가?—확실히 그렇다. 그것은 화폐시장과 잉글랜드은행의 중요한 업무이다. 잉글랜드은행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형을 받는것을 기뻐한다. 이 은행은 이것이 좋은 투자라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다.》—(제5141호)《수출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화폐시장에서의 수요도 늘어나는가?—이 나라의 번영이 증진됨에 따라 우리(채프먼일당) 도 한몫본다.》—(제5142호)《그러면 이러한 각이한 투자령역들이 갑자기 확대된다면 그 자연적결과로서 리자률은 상승하는가?—그것은 의심할바 없다.》

(제5143호)채프먼은 《우리의 수출은 큰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많은 금이 필요하였는지 전혀 알수 없다》고 말한다.

(제5144호)존경할만한 윌슨은 질문한다.

《우리 나라의 수입에 대하여 받는 신용보다 우리 나라의 수출에 대하여 제공되는 신용이 더 크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인가?—나 자신도 그 점을 의심하고싶다. 만일 누가 인도로 발송한 그의 만체스터상품을 담보로 수형을 인수시키려고 하더라도 당신은 10개월 이내의것은 인수할수 없다. 인도가 우리에게 지불해주기전에 우리는 미국에 면화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아주 확실한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명하는것은 저으기 미묘한 점이다.》—(제5145호)《작년처럼 우리의 가공품수출이 2,000만파운드나 증가하였다면 벌써 그전에 이 증대된 상품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의 원료수입이 매우 크게 증대되여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여 이미 과잉수출은 과잉수입과 같은것이며 과잉생산은 과잉상업과 같은것이다) —확실히 그렇다.》—[제5146호]《우리는 매우 큰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수 없었다. 즉 차액은 이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역차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환자시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다액의 귀금속공급을 받아온것이다.》

(제5148호)에서는 윌슨이 대고리대업자인 채프먼에게 당신의 높은 리자는 큰 번영과 높은 리윤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고 묻는다. 채프먼은 이 아첨쟁이의 솔직함에 갑자기 놀라면서 물론 이것을 긍정하지만 동시에 아주 정직하게 다음과 같은 보류조건을 첨가한다.

《그렇게 할바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들은 리행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서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간에 그것을 리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높은 리자률)《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번영을 증시하는것일것이다.》

이 두 사람이 잊고있는것은 높은 리자률은 1857년에 그랬던것처럼 신용의 모험가들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증거

이기도 하다는것이다. 이 모험가들이 높은 리자를 지불할수 있는것은 그들이 그것을 타인의 호주머니로부터 지불하며(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한 리자률의 결정을 돕는다) 그동안에 예상한 리윤으로써 멋지게 해나갈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동시에 또 바로 그때문에 제조업자들도 실제로 매우 유리한 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환류는 선대제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만적인것으로 된다.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은것도 설명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잉글랜드은행에 관하여서는 하등의 설명도 필요없다. 왜냐하면 이 은행은 리자률이 높은 때에는 다른 은행들보다 낮은 률로 할인하기때문이다.

(제5156호) 《나는 감히 말하지만》—하고 채프먼은 말한다—《이렇게 오랜 기간 리자률이 높은 현재의 순간에 우리의 할인액은 최고한도에 도달하고있다.》

(채프먼이 이렇게 말한것은 파국이 오기 몇달전인 1857년 7월 21일이였다.)

(제5157호) 《1852년 (이해는 리자가 낮았다) 에는 할인고는 결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사실상 당시에는 사업이 아직도 훨씬 보다 건전하였기때문이다.

(제5159호) 《시장에 화폐가 대단히 남아돌아가고…그리고 잉글랜드은행의 할인률이 낮다면 우리는 수형의 감소에 직면할것이다… 1852년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단계에 있었다. 당시 나라의 수출입은 현재와는 전혀 비교될수 없는것이였다.》—(제5161호) 《이렇게 할인률이 높아도 우리의 할인액은 1854년과 같았다 (1854년에는 리자는 5~5$\frac{1}{2}$%였다) .》

채프먼의 증언에서 매우 재미있는것은 이 사람들은 사실

상 공중의 화폐를 자기의 소유물로 간주하고있으며 또 그들이 할인한 수형을 언제나 화폐로 바꿀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있다는 점이다. 문답에서 나타난 소박성은 놀랄만하다. 대상회들이 인수한 수형들을 언제나 화폐로 바꿀수 있도록 보장한다는것, 잉글랜드은행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정에서도 수형중개인들에게 그 수형들을 재할인하여주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립법의 의무로 된다. 그런데 1857년에는 3명의 이러한 수형중개인들이 파산당하였는데 그들은 약 800만의 채무를 지고 이 채무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 없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제5177호) 《그러면 당신의 의견으로는 이 수형들 (베어링상회 또는 로이드상회의 인수수형들) 은 마치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이 지금 강제적으로 금과 태환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할인되여야 한다고 말하려는것인가?—나는 그것들이 할인될수 없다면 대단히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스미스—페인상회 또는 죤스 로이드상회의 인수수형을 가지고있으면서 그것들을 할인하여 받을수 없기때문에 지불을 정지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극히 이상한 사태일것이다.》—(제5178호) 《그런데 베어링상회의 인수라는것은 수형이 만기가 되였을 때 일정한 액의 화폐를 지불한다는 의무를 지는것이 아닌가?—그것은 완전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베어링상회가 이러한 의무를 인수할 때에는 어떠한 상인이 이러한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나 다 그러한것처럼 이 의무를 소브린화로써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상회는 수형교환소에서 지불되리라고 타산한다.》—(제5180호) 《그러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기구가 고안되여 그 기구에 의하여 공중은 이 수형을 만기가 되기전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할인하지 않을수 없게 함으로써 화폐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아니다. 수형인수인의 립장에서 말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고있는것이 우리가 상업수형을 할인받을 가능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이라면 우리는 사태를 전부 변경하지 않

으면 안된다.》—(제5182호)《그러면 당신은 바로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이 금과 태환될수 있는것이 아니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상업수형〕《은 화폐로 전화되는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일정한 사정하에서는 바로 그렇다.》—(제5184호)《그러면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직한 상업수형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쉽게 화폐와 교환되도록 통화제도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그렇다고 생각한다.》—(제5185호)《그러나 당신은 잉글랜드은행이든 다른 누구이든간에 상업수형을 화폐와 교환하도록 법률로 강제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하는것은 아니겠지?—어쨌든 나는 만일 우리가 통화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국내상업수형의 확실성과 적법성을 의심하지 않는 한 그것이 화폐로 전화될수 없는 가능성을 방지할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것만은 단언한다.》

이것은 은행권의 태환성에 대비한 상업수형의 태환성이다.

(제5190호)《이 나라의 화폐거래업자들은 사실상 공중을 대표하고 있을따름이다.》—

후의 데이비슨사건의 배심정[247]에서의 채프먼씨와 같이. 《금융대사기사건》 을 보라.

(제5196호)《분기말에는 〔그때에 국채리자가 지불된다〕 우리가 잉글랜드은행에 의지하는것이…절대로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국채리자의 지불을 예상하고 600만 내지 700만의 국가수입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면 그동안에 그만한 금액을 제공할 사람이 누구이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화폐의 공급이 문제인것이고 자본 또는 대부자본의 공급이 문제인것은 아니다.)

(제5169호)《우리는 상업계의 형편을 알고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있을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국고증권이 팔리지 않게 되거나 동인도회사[248]의 채권이 전혀 무용지물로 되거나 가장 우수한 상업수형도 할

인을 받을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 업무상 요구만 있으면 즉시로 보통의 류통수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큰 불안에 싸이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은행업자들은 모두 그러할것이다. 이 결과로 누구나 자기의 준비금을 2배로 늘이게 된다. 만약 약 500명의 지방은행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런던의 거래은행에게 은행권으로 5,000파운드를 송금해달라고 의뢰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면 이 나라 전체에 대체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를 생각하여보라. 이 적은 금액을 평균적인것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아주 어리석은것이지만 그때에는 250만파운드가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보충될것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를 가지고있는 개인자본가들은 어떤 높은 리자로써도 그 화폐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채프먼처럼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기때문이다.

(제5195호)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화폐가 입수될수 있을지 어떨지 모른다면 오히려 리자를 받지 않는것이 낫다.》

(제5173호) 《우리의 제도는 다음과 같이 되여있다. 우리에게는 3억파운드의 부채가 있는데 그 지불이 현행 국정주화로써 어떤 한 순간에 요구될수도 있다. 그런데 이 국정주화는 우리가 그것을 전부 이 지불에 돌린다 하더라도 2,300만파운드가 될가말가하다. 이러한 상태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경련을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기때문에 공황시기에 신용주의로부터 중금주의에로의 급전환이 일어나는것이다.

공황시기의 국내공황을 도외시한다면 화폐의 량을 문제로 할수 있는것은 오직 금속, 즉 세계화폐가 고려되는 한에서만이다. 그런데 채프먼은 바로 이것을 제외하고 단지 2,300만의 **은행권**만을 문제로 한다.

동일한 채프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5218호) 《화폐시장에서의 교란〔1847년 4월과 후에는 10월〕의

시초적원인은 의심할바 없이 이 해의 비상한 수입의 결과로 환자시세를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화폐의 량에 있었다.》

첫째로, 이러한 세계시장화폐의 축장은 당시 최소한도로 축감되였다. 둘째로, 그것은 동시에 신용화폐, 즉 은행권의 태환성의 보증으로서 복무하였다. 이와 같이 그것은 두개의 전혀 다른 기능을 겸하고있었다. 이 두 기능은 화폐의 성질에서 나오는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화폐는 항상 세계시장화폐이며 신용화폐는 항상 세계시장화폐에 립각하고있는것이기 때문이다.

1844년의 은행법[212]의 정지가 없었더라면 1847년에는 《수형교환소는 그 업무를 수행할수 없었을것이다》(제5221호).

그러나 채프먼은 앞으로 다가올 공황을 예감하고있었다.

(제5236호)《화폐시장의 일정한 상태(그리고 현재의 상태는 이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하에서는 화폐를 입수하기가 매우 곤난하여 사람들은 은행에 의지하지 않을수 없다.》

(제5239호)《우리가 1847년 10월 19일, 20일 및 22일의 금요일과 토요일과 월요일에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끌어낸 금액에 관하여 말한다면, 만약 다음 수요일에 수형을 회수할수 있었다면 우리는 크게 감사하여마지않았을것이다. 공황이 지나가자 즉시 화폐는 우리의 수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0월 23일, 즉 화요일에는 은행법은 정지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공황은 기가 꺾이였던것이다.

제5274호에서는 채프먼은 같은 때에 런던으로 밀려들고있는 수형은 1억 내지 1억 2,000만파운드라고 생각하고있다. 여기에는 각 지방들에 있는 지방수형들은 포함되여있지 않다.

(제5287호)《1856년 10월에는 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의 액은

2,115만 5,000파운드로 증대되였으나 그래도 화폐를 수입하기는 극히 곤난하였다. 공중의 수중에 화폐가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폐를 입수할수 없었다.》

이것은 이스탄은행이 잠시(1856년 3월) 곤경에 처하고있은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불안때문이였다.

(제5290호)공황이 지나가면

《리자에서 리윤을 얻는 모든 은행업자들은 즉시로 자기들의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제5302호)채프먼은 은행준비금이 감소할 때의 불안을 예금에 대한 우려로써 설명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것으로써 설명한다. 즉 갑자기 큰 화폐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은 모두 화폐시장이 궁지에 빠진 경우에 은행을 최후의 의지로 삼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는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것으로써 설명하고있다. 그리고

《은행은 준비금이 매우 적을 때에는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일것이다.》

그런데 준비금이 사실상의 크기로서는 거의 없어진다는것은 그럴듯한 일이다. 은행업자들은 자기들의 일상 업무용의 최소한도의 금액을 일부분은 자기수중에 두고 일부분은 잉글랜드은행에 넣어둔다. 수형중개인들은 준비금없이 《이 나라의 사용되지 않는 은행화폐》를 가지고있다. 그리고 잉글랜드은행은 그 예금채무에 대하여 은행업자 등의 준비금과 정부예금 등을 가지고있을따름인데 그것을 이 은행은 최저점까지, 례컨대 200만파운드까지 인하한다. 그러므로 이 200만파운드의 지폐를 제외하고는 이 전체 기만은 핍박시기에는(그리고

핍박은 준비금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류출하는 금속대신으로 들어오는 은행권은 페기되여야 하기때문이다) 금속준비이외에는 아무런 준비금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따라서 금류출에 의하여 금속준비가 감소되면 그만큼 공황을 격화시킨다.

(제5306호)《수형교환소에서의 차액결제를 하기 위한 화폐가 거기에 없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자기의 지불을 국고와 스미스—페인상회앞으로의 일류수형들에 의하여 실시하는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제5307호)《그렇다면 정부가 당신에게 류통수단을 공급하여줄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기로 조달할것인가?—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공중이 들어와서 우리의 수중으로부터 류통수단을 가지고 간다. 그것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다.》—(제5308호)《그러면 당신은 만체스터에서 사람들이 매일 하고있는것을 런던에서 하려고 한다는 말인가?—바로 그렇다.》

자본에 관한 오버스턴의 관념에 대하여 케일리(애트우드학파[249]의 버밍엄사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채프먼의 대답은 매우 훌륭하다.

(제5315호)《이 위원회앞에서 증언한바에 의하면 1847년과 같은 핍박기에 사람들이 구하는것은 화폐가 아니라 자본이라는것인데 이에 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당신의 말을 리해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다만 화폐를 취급할뿐이다. 당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제5316호)《당신이 그것 (상업자본) 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가지고있는 그 사람자신의 화폐의 량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자본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이 그에게 제공하는 신용에 의하여—채프먼씨들의 매개에 의하여—그가 자기의 사업에서 운용하는 화폐중의 매우 적은 일부분인것이다.》

(제5339호)《우리가 우리의 현금지불을 정지한다는것은 부가 결핍하다는것인가?—결코 그렇지 않다…우리의 부는 결핍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도로 인위적인 제도하에서 행동하고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류통수단에 대한 비상한 위협적인 수효가 생기는 경우에 이 류통수단을 우리가 입수하는것을 방해하는 사정들이 발생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나라의 전체 상업을 마비시켜도 좋겠는가? 우리는 사업의 온갖 통로를 막아버려도 좋겠는가?》—(제5338호) 《만일 우리에게 대하여 정화지불과 이 나라의 산업중 어느것을 유지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면 나는 그 어느 편을 버려야 할것인가를 알고있다.》

《핍박을 격화시키고 그 결과로부터 리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제5358호) 수행되는 은행권의 퇴장에 관하여 그는 이러한 현상은 매우 쉽게 일어날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3대은행이면 충분할것이라 한다.

(제5383호) 《우리 수도의 대사업에 정통한 사람의 하나인 당신은 자본가들이 이 공황을 리용하여 회생자들의 파멸에서 거대한 리윤을 얻으려고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을것이 아닌가?—그 점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채프먼씨는 《희생자들의 파멸에서 거대한 리윤을 얻으려는》 시도로 결국은 상업에서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그의 이 말은 믿을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공동출자자인 거니가 사업상의 어떤 변동에도 사정이 정통한 사람에게는 유리한것이라고 말할 때 채프먼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례컨대 대륙으로 수출하거나 자기의 원료를 수입하는 제조업자가 있는데 그는 금괴를 거래하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제5046호).

그리하여 어느날 거니와 채프먼 자신도 《사정에 정통하지》 않아서 불명예스러운 파산을 당하게 되는 일도 생겼던

것이다.

이미 우에서 본바와 같이 은행권의 발행은 모든 경우에 자본의 선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1848년에 《상업곤경》에 관하여 상원위원회에서 한 투크의 아래와 같은 증언은 다만 자본의 선대는 그것을 은행이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을 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류통은행권량의 증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증명할따름이다.

(제3099호)《당신은 례컨대 잉글랜드은행은 은행권의 발행을 증대시키지 않고도 선대를 꽤 많이 확대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그것을 증명하는 사실들은 아주 많다. 가장 적절한 실례의 하나는 1835년인데 이해에 잉글랜드은행은 서인도의 예금들과 동인도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공중에 대한 증대된 선대에 사용하였다. 그때 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의 액은 실제로 얼마간 감소되였다…이와 류사한것은 1846년에 철도예금이 잉글랜드은행에 불입되였을 때에도 볼수 있었다. 유가증권은》〔할인한것과 예탁된것〕《약 3,000만으로 증대되였으나 공중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의 액에는 눈에 뜨일만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매업은 은행권이외에 제2의, 그리고 그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류통수단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즉 수형이다. 채프먼씨는 좋은 수형은 언제나 어떤 사정하에서나 지불에서 인수된다는것이 사업의 규칙적인 진행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제는 〈타우스베우욘토브〉는 아무 쓸모도 없는가? 대체 무엇이 쓸모가 있는가? 살려다우!》[250] 이 두 류통수단은 어떤 호상관계를 이루고있는가?

이에 대하여 길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행권의 류통액의 제한은 통례로 수형의 류통액을 증가시킨다. 수형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즉 상업수형과 은행수형이다…화폐가

부족되면 화폐대부업자는 말한다. 〈우리앞으로 수형을 발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수할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지방은행업자가 그의 고객을 위하여 수형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고객에게 현금을 주지 않고 자기의 런던 대리점앞으로 자기 자신의 21일불수형을 교부한다. 이러한 수형은 류통수단으로서 복무한다》 (J. W. 길버트 《1839년의 화폐시장핍박의 제 원인의 연구》 31페지).

이것은 약간 수정된 형태로 뉴마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법》, 1857년 제1426호).

《수형류통액의 변동과 은행권류통액의 변동간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단 하나의 비교적 동일한 결과는…할인률의 인상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핍박이 조금이라도 화폐시장에 나타나면 수형류통의 범위가 매우 크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발행되는 수형은 결코 길버트가 말하는바와 같은 단기은행수형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대부분은 융통수형인데 그것은 현실적거래를 전혀 대표하지 않든가 또는 수형을 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된 거래를 대표할 뿐이다. 이 두 종류의 수형의 실례는 우리가 충분히 들었다. 그러므로 《경제학자》 지(윌슨)는 이러한 수형의 확실성을 은행권의 확실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제시되는대로 태환될수 있는 은행권이 결코 외계에 과잉으로 남아있을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잉분은 태환되기 위하여 언제나 은행으로 환류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2개월불 수형은 대단히 과잉하게 발행될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발행을 통제할 아무런 수단도 없으며 만기가 된 경우에는 이것들은 아마도 벌써 다른 수형에 의하여 교체되고있을것이기때문이다. 어떤 국가가 장래의 어떤 기일에 지불되는 수형의 류통의 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제시되는대로 태환될수 있는 지폐의 류통에 대하여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데 대하여

서는 우리는 전혀 리해할수 없다》(《경제학자》, 1847년 575페지).

따라서 수형의 류통량은 은행권의 량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거래상의 필요에 의하여 규정된다. 1850년대에 련합왕국에서는 평상시에 3,900만의 은행권이외에 약 3억의 수형이 류통하고있었는데 그중에서 런던앞으로만 발행된것이 1억 내지 1억 2,000만을 차지하고있었다. 수형의 류통량은 은행권의 류통량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화폐가 부족한 시기에만 후자로부터 영향을 받을뿐이며 이러한 시기에는 수형의 량이 증대되고 그 질이 악화되는것이다. 끝으로 공황때에는 수형의 류통은 전적으로 정지되며 누구나 현금지불만을 받으려 하므로 아무도 지불약속을 사용할수 없다. 오직 은행권만이 적어도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류통능력을 유지하고있다. 그것은 국가가 그 재부의 전체를 가지고 잉글랜드은행의 배후에 서있기때문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1857년에는 그 자신이 화폐시장에서의 거두였던 채프먼씨까지도 런던에는, 일정한 순간에 화폐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러한 파렴치한 방식으로 보다 작은 화폐거래업자들의 피를 빨아먹을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여러명 있다는것을 통탄하고있다. 즉 몇마리의 큰 상어가 있어서 그들이 100만 내지 200만의 정리공채를 팔아 그만큼한 은행권(그리고 동시에 리용할수 있는 대부자본)을 시장으로부터 끌어냄으로써 핍박을 크게 첨예화시킬수 있다는것이다. 같은 방식으로써 핍박을 공황으로 전화시키는데는 3개의 대은행이 협력하면 충분하다는것이다.

런던의 최대의 자본세력은 물론 잉글랜드은행이지만 이

은행은 반(半)국가기관으로서의 그 지위로 하여 그 지배력을 이러한 란폭한 방식으로 발휘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도—특히 1844년 은행법 이후는—자기의 사리를 도모하는 수단과 방법을 충분히 잘 알고있다.

잉글랜드은행은 1,455만 3,000파운드의 자본을 가지고있으며 그밖에 약 300만파운드의 《잉여금》 즉 배당되지 않는 리윤과 조세 등으로서 정부로 들어가지만 사용될 때까지는 이 은행에 예금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모든 화폐를 자유로 리용한다. 만약 기타의 예금(평상시에는 약 3,000만파운드)과 무보증은행권을 가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뉴마치의 추산(《은행법》, 1857년 제1889호)도 상당히 적게 보고있다는 것을 알것이다.

《내가 확신하는바로는 부단히 {런던의} 화폐시장에서 사용되는 자금의 총액은 약 1억 2,000만파운드라고 볼수 있으며 이 1억 2,000만파운드중에서 매우 큰 부분, 약 15~20%는 잉글랜드은행이 지배하고있다.》

잉글랜드은행이 그 지하실에 있는 금속준비에 의하여 보증되여있지 않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한에서는 이 은행은 가치기호를 창조하는데 이 가치기호는 류통수단을 형성할뿐만아니라 이 은행에 대하여서는 이 무보증은행권의 명목액만큼한 추가자본—의제자본이라고 하더라도—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추가자본은 이 은행을 위하여 추가리윤을 제공한다.—은행법, 1857년에서 월슨은 뉴마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1563호) 《어떤 은행의 자기은행권의 류통액 즉 공중의 수중에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액은 그 은행의 유효자본에 대한 추가분을 이루는것이 아닌가?—확실히 그렇다.》—(제1564호) 《그렇다면 은행이 이 류통액에서 끌어내는 리윤은 모두 신용에서 생기는 리윤이고 은행이

현실적으로 가지고있는 자본에서 생기는 리윤이 아니지 않는가?—확실히 그렇다.》

동일한것은 물론 은행권을 발행하는 사영은행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866～1868호의 그의 답변에서 뉴마치는 이 발행된 은행권의 총액의 $\frac{2}{3}$(나머지 $\frac{1}{3}$에 대하여는 이 사영은행들은 금속준비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를 그 액만큼 경화가 절약된다는 리유에서 《그만큼한 액의 자본창조》라고 보고있다. 그렇다 해서 은행업자의 리윤이 다른 자본가들의 리윤보다 더 큰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화의 국민적절약에서 그가 리윤을 끌어낸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국민적절약이 사적리윤으로 나타난다는 사정은 조금은 자산계급경제학의 감정을 해치는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리윤은 국민적로동의 취득이기때문이다. 례컨대 1797～1817년의 잉글랜드은행이상 더 괴상한것이 있는가? 그것은 당시 이 은행의 은행권은 다만 국가의 덕분에 신용을 얻고있었을뿐인데 이 은행은 이 동일한 은행권을 종이로부터 화폐로 전환시키고 다음에 그것을 국가에 대부하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즉 공중으로부터 국채리자라는 형태로 지불을 받기때문이다.

여하간 은행들은 그밖에도 자본을 창조하는 수단을 가지고있다. 동일한 뉴마치의 말에 의하면 지방은행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과잉자금(즉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을 런던의 수형중매인에게 보내고 그대신 그들에게서 할인수형을 반송받는 습관이 있다. 은행은 이러한 수형들을 가지고 그의 고객들에게 봉사한다. 왜냐하면 이 지방고객들의 사업상 활동을 그들 자신의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

은 그들로부터 받은 수형을 자기수중에서 다시 내놓지 않는 것이 상례이기때문이다. 런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수형은 직접 런던에서 지불해야 하는 고객들이 런던앞으로의 자기의 송금수형을 은행에 요구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고객에게 교부하는데 복무할뿐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그 지방에서의 지불의 결제에도 복무한다. 왜냐하면 은행업자의 양도서명이 이러한 수형에 지방적신용을 보증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형은 례컨대 랭카셔에서는 지방은행 자신의 모든 은행권과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의 대대부분을 류통에서 배제하였다(우와 같은 책, 제1568~1574호).

여기서 은행들이 어떻게 신용과 자본을 창조하는가를 보았다. 즉 1) 자기의 은행권을 발행하는데 의하여, 2) 2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나 발행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받는 런던앞으로의 수형을 발행하는데 의하여, 3) 이미 할인된 수형으로 지불하는데 의하여. 이러한 수형의 신용능력은 우선 첫째로 그리고 주로 적어도 그 지방에 있어서는 이 은행의 양도서명에 의하여 조성되는것이다.

잉글랜드은행의 권력은 이 은행이 리자의 시장률의 조절을 진행하는데서 나타난다. 사업의 진행이 정상적인 시기에는 잉글랜드은행이 할인률을 인상하는 방도로써는(12) 그의

(12) 1894년 1월 17일 런던련합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총재 리치씨가 말한바에 의하면 1893년에 잉글랜드은행은 할인률을 $2\frac{1}{2}$%(7월)로부터 8월에는 3%, 4%로 인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간에 웅근 450만파운드의 금을 상실하였기때문에 5%로 인상하였고 그리하여 금이 환류하여 은행률은 9월에는 4%로, 10월에는 3%로 인하되였다. 그러나 이 은행률은 시장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것이다. 《은행률이 5%였을 때 시장률은 $3\frac{1}{2}$%였으며 금리는 $2\frac{1}{2}$%였다. 은행률이 4%로 저락하였을 때 시장할인률은 $2\frac{3}{8}$%였으며 금리는 $1\frac{3}{4}$%였다. 은행률이 3%로 되였을 때 시장할인률은 $1\frac{1}{2}$%였으며 금리는 좀더 낮았다》(《매일소식》, 1894년 1월 18일).—F. 엥겔스

금속준비로부터의 알맞은 금류출도 방지할수 없는 일이 일어날수 있다. 왜냐하면 류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최근 30년간에 대단히 자본력을 증대시켜온 사영은행이나 주식은행이나 수형중개인들에 의하여 충족되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잉글랜드은행은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위기에 대하여서는 은행업자 글린(글린—밀스—커리상회)이 《상업곤경》(1848～1857년)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한것이 역시 적용된다.

(제1709호)《국내의 핍박이 심한 시기에는 잉글랜드은행이 리자률을 좌우한다.》—(제1710호)《비상한 핍박의 시기에는…개인은행들이나 수형중매인들의 할인업무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그것이 잉글랜드은행의 일로 되며 그리하여 잉글랜드은행이 리자의 시장률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는것이다.》

물론 잉글랜드은행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고있는 공적기관으로서 자기의 이러한 권력을 사적 기업들에게 허용되고있는바와 같이 그렇게 기탄없이 리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버드도 은행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은행법》, 1857년).

(제2844호, 질문)《할인률이 가장 높을 때에는 잉글랜드은행이 가장 렴가로 봉사하고 할인률이 가장 낮을 때에는 수형중매인들이 가장 렴가로 봉사한다는것이 아닌가?》—(하버드)《언제나 그러할것이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은행은 결코 할인률을 그 경쟁자들과 같은 정도까지 인하하지는 않으며 또 할인률이 가장 높을 때에도 결코 그것을 그 경쟁자들과 같은 정도로 높이지는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기에 잉글랜드은행이 속된 말로 나사못을 죄기 시작한다면, 즉 이미 평균이상으로 높은

리자률을 더 인상한다면 그것은 사업계의 일대 사건이다.

《잉글랜드은행이 나사못을 죄기 시작하면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구매는 모두 정지된다…수출업자들은 가격의 저락이 최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것이며 그때에야 비로소 구매하고 그 이전에는 구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점에 도달한 때에는 수형시세는 이미 다시 조정되여있는것이다.—금은 이 가격저락의 최저점에 도달하기전에 수출되지 않게 된다. 수출을 위한 상품구입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으로 보낸 금의 일부를 회수할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류출을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늦다》(J. W. 길버트 《화폐시장핍박의 제 원인의 연구》, 1840년 런던판 35페지). 《외국환자시세에 의한 류통수단조절의 또 하나의 영향은 그것이 핍박시기에는 엄청난 리자률을 초래한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0페지). 《환자시세의 회복에 필요한 비용들은 나라의 생산적산업의 부담으로 되는데, 한편 이 과정의 진행중에 잉글랜드은행의 리윤은 이 은행이 보다 적은 액의 귀금속으로 업무를 계속하는데 의하여 적극적으로 증대된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그런데 우리의 친근한 쌔뮤얼 거니는 말한다.

《이러한 리자률의 큰 변동은 은행업자나 화폐거래업자들에게는 유리하다—사업상의 모든 변동은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다.》

그리고 거니 일당이 사업의 곤경을 꺼리낌없이 리용하여 자기배를 불리고있을 때 잉글랜드은행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그런짓을 할수는 없지만 이 은행도 상당한 리윤을 얻는다.—이 은행의 중역 제씨가 일반적사업상황을 아는데 특별한 편의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그들의 수중으로 저절로 들어오는 사적리윤은 문제로 하지 않더라도. 1817년에 태환의 재개시 당시 상원위원회에서 한 보고에 의하면 잉글랜드은행의 그러한 리윤은 1797～1817년의 전 기간에 다음과 같은 금액

으로 되여있었다.

특별배당 및 증가배당	7,451,136
주주 할당 신주	7,276,500
자본의 가치증가분	14,553,000
합계	29,280,636

이것은 1,164만 2,400파운드의 자본에 대하여 19년간에 생긴 것이다(D. 하드카슬 《은행 및 은행업자》, 1843년 런던 제2판 120페지). 아일랜드은행도 역시 1797년에 태환을 정지하였는데 이 은행은 총리윤을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1821년까지의 리익배당	4,736,085
공표 특별배당	1,225,000
자산의 증가분	1,214,800
자본의 가치증가분	4,185,000
합계	11,360,885

이것은 300만파운드의 자본에 대한 리윤이다(우와 같은 책, 363~364페지).

이제 집중에 관하여 말하여야 하겠다! 소위 국립은행들과 그것을 둘러싼 큰 화폐대부업자나 고리대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제도는 거대한 집중이며 그것은 산업자본가들을 주기적으로 소멸할뿐만아니라 또한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현실적생산에 간섭하는 법외적권력을 이러한 기생(寄生)계급들에게 부여한다.—그리고 이 도당은 생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또 생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1844년 및 1845년의 제 법률은 금융업자나 주식투기자들도 가맹하고있는 이

도적들의 권력이 증대하였다는 증거이다.

그래도 이 고귀한 도적들이 국내적 및 국제적 생산을 착취하는것은 오직 생산과 피착취자 자체의 리익만을 위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은행업자의 높은 도덕적품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에 의하여 의심을 풀게 될것이다.

《은행은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시설이다. 자기의 거래은행업자의 경계와 불신의 눈초리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자주 젊은 상인을 소란스럽고 방탕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있는가? 은행업자의 존경을 받도록, 언제나 존경할만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는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은행업자의 찡그린 량미간은 그의 벗들의 도덕적설교보다도 더 큰 영향을 그에게 준다. 자기가 사기를 하였거나 조금이라도 부당한 발언을 하였다고 협의를 받지 않으려고 그는 벌벌 떤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의혹을 초래하여 그때문에 은행융자가 제한되거나 지어는 해약될지도 모른다는 근심이 있기때문이다! 은행업자의 충고는 그에게 있어서는 목사의 충고보다도 더 중요하다》(스코틀랜드의 은행중역 C. M. 벨 《주식은행업의 철학》, 1840년 런던판 46～47페지).

제 34 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영국의 은행립법

{이전의 한 저서(13)에서 상품의 가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화폐의 가치에 관한 리카도의 리론이 연구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가장 필요한것만에 국한할수 있다. 리카도에 의하면 화폐—금속화폐—의 가치는 그 화폐에 대상화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나 그것은 오직 교환되는 상품의 량과 가격에 대하여 화폐의 량이 정당한 비률을 이루는 한에서만 그러한것이다. 화폐의 량이 이러한 비률보다 크게 된다면 화폐의 가치는 내리고 상품의 가격은 오른다. 화폐의 량이 정당한 비률보다 적어진다면 기타 조건들이 변함없는 경우 화폐의 가치는 오르고 상품의 가격은 내린다. 첫째 경우에는 이렇게 금이 과잉이 된 나라는 그 가치보다 저렴하게 된 금을 수출하고 상품을 수입할것이다. 둘째 경우에는 금은 그것이 그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나라로 흘러갈것이다. 한편 낮게 평가된 상품은 그 나라로부터 나와서 정상적가격을 실현할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갈것이다. 이러한 전제하

---

(13)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베를린판 150페지 및 이하 몇페지.[251]

에서는 《금자체가 주화로서든 금괴로서든 그 자체의 가치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금속가치의 가치기호로 될수 있으므로 만일 태환은행권이 류통하고있다면 이것도 또한 운명을 같이 할것은 자명한 일이다. 은행권이 태환될수 있는것이며 따라서 그 실질가치가 명목적가치와 일치하더라도 금이나 은행권으로 이루어진 류통화폐의 총량은 상술한 리유로 하여 그 총량이 류통상품의 교환가치와 금의 금속가치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는 수준보다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데 따라서 가치감소 또는 가치증가가 실현될수 있다…이러한 가치감소, 금에 대한 지폐의 가치감소가 아니라 금과 지폐를 합친것의 가치감소, 즉 일국의 류통수단의 총량의 가치감소는 리카도의 주요발견의 하나인데 이 발견을 오버스턴경일파가 자기들에게 복무하도록 하여 1844년과 1845년의 로버트 필경의 은행립법의 기본원리로 삼은것이다》(《정치경제학비판》, 155페지[252]).

이 리카도의 리론의 착오는 동일한 개소에서 지적되였으므로 여기에서 그 지적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흥미있는것은 다만 상술한 필의 은행법을 제정하게 한 은행리론가들 일파가 리카도의 교조를 가공한 그 방식뿐이다.

《19세기의 상업공황 특히 1825년 및 1836년의 대공황은 리카도의 화폐리론의 가일층의 발전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그 새로운 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공황은 이제는 흄에 있어서의 16세기 및 17세기의 귀금속의 가치감소와 같은 또는 리카도에 있어서의 18세기 및 19세기초의 지폐의 가치감소와 같은 개별적인 경제현상인것이 아니라 자산계급적생산과정의 모든 요소의 모순이 폭발한 세계시장의 대폭풍우였는데 그

근원과 그 방지책은 이 과정의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령역인 화폐류통의 령역에서 탐구되였다. 경제적기상학파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는 본래의 리론적전제는 실은 리카도가 순수한 금속류통의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하는 독단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남은 일은 신용류통 또는 은행권류통을 이러한 법칙들에다 복종시키는것뿐이였다.

상업공황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눈에 뜨이는 현상은 상품가격이 상당히 장기간 일반적으로 오르고있다가 후에 돌연적으로 그것이 일반적으로 내리는것이다. 상품가격의 일반적저하는 모든 상품에 비한 화폐의 상대적가치의 상승으로서 표현될수 있으며 또 가격의 일반적상승은 반대로 화폐의 상대적가치의 저하로서 표현될수 있다. 이상의 어느 표현방식에 있어서나 현상은 언명되고있을뿐이고 설명되여있지는 않다…용어를 달리하더라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것은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리카도의 화폐리론은 여기에서 그야말로 적합한것이였다. 왜냐하면 이 리론은 동의반복에다 인과관계의 외관을 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상품가격의 주기적인 일반적저하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화폐의 상대적가치의 주기적상승에 기인한다. 반대로 상품가격의 주기적인 일반적상승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화폐의 상대적가치의 주기적저하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물가의 주기적등락은 물가의 주기적등락에 기인한다고 말하여도 좋을것이다…동의반복을 인과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을 용인하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것은 아주 간단히 처리된다. 상품가격의 상승은 화폐가치의 저하에 기인하나 화폐가치의 저하는 우리가 리카도에게서 알게 되는바에 의한다면 넘쳐나는 류통에 기인한다. 즉 류통하는 화폐의 량이

화폐 자체의 내재적가치와 상품의 내재적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증대한다는데 기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상품가격의 일반적저하는 불충분한 류통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화폐의 내재적가치를 넘어서 등귀한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물가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것은 지나치게 많은 또는 지나치게 적은 화폐가 주기적으로 류통하기때문이다. 그런데 물가의 상승이 화폐류통의 감소와 함께 일어나고 물가의 저하가 류통의 증가와 함께 일어난다는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전혀 증명될수 없지만 류통하는 상품량이 감소 또는 증가되였기때문에 류통하는 화폐량이 절대적으로는 아니라도 상대적으로는 증대 또는 감소하였다고 주장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리카도에 의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물가변동은 순수한 금속류통의 조건하에서도 일어나지 않을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가지 변동이 번갈아 일어나는것에 의하여 상쇄된다. 왜냐하면 례컨대 불충분한 류통은 상품가격의 저하를 일으키며 상품가격의 저하는 외국으로의 상품수출을 일으키나 이 수출은 이번에는 국내로의 금의 수입을 일으키고 화폐의 이러한 류입은 또 상품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기때문이다. 넘쳐나는 류통의 경우는 반대로 되는데 그 경우에는 상품이 수입되고 금이 수출된다. 그런데 리카도가 말하는 금속류통의 성질 자체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일반적가격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격렬하고 강폭적인 형태, 그 공황형태는 신용제도가 발달한 시대에 속하는것이므로 은행권의 발행은 정확히 금속류통의 법칙들에 의하여 조절되지는 않는다는것은 명약관화하다. 금속류통은 귀금속의 수입 및 수출을 자기의 구급수단으로 하고있는데 귀금속은 곧 주화로서 류통에 들어가며 이리하여

그 류입 또는 류출에 의하여 상품가격을 저하 또는 상승시키는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상품가격에 대한 동일한 작용이 인위적으로 금속류통의 법칙들의 모방을 통하여 은행들에 의하여 초래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화폐가 외국으로부터 류입한다면 그것은 류통이 불충분하여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높고 상품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것, 따라서 새로 수입된 금에 비례하여 은행권이 류통에 투입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의 증거이다. 반대로 은행권은 금이 국외로 류출되는데 비례하여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은행권의 발행은 귀금속의 수출입에 따라서 또는 환자시세에 따라서 조절되지 않으면 안된다. 리카도의 그릇된 전제, 즉 금은 주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수입되는 모든 금은 류통하는 화폐를 증가시키며 그리하여 또 가격을 상승시키지만 금의 수출은 모든 주화를 감소시키며 그리하여 또 가격을 저하시킨다고 하는 전제, 이러한 리론적전제는 여기에서는 **그때그때에 현존하는 금과 동일한 량의 주화를 류통시키려고 하는 실제적실험**으로 된다. 오버스틴경(은행업자 죤즈 로이드), 토런즈대좌, 노먼, 클레이, 아바스너트 및 기타 많은 저술가들, 즉 영국에서 〈통화주의〉[218]학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를 설교하였을뿐만아니라 1844년 및 1845년의 로버트 필경의 은행법을 통하여 그것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은행립법의 기초로 삼았다. 최대의 전국적규모에서의 실험후에 이 립법이 리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실패를 당하였다는 사실은 신용론에서 비로소 서술할 수 있다》 (우와 같은 책, 165～168페지[253]).

이 학파에 대한 비판은 토머스 투크, 제임즈 윌슨(1844～1847년의 《경제학자》 지에서) 및 죤 풀라톤에 의하여 주어

졌다. 그러나 이들도 화폐의 성질을 얼마나 불충분하게 리해하였으며 화폐와 자본간의 관계를 얼마나 모르고있었는가 하는것은 이미 여러번 특히 제3부 제28장에서 본바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의 은행법에 관한 1857년의 하원위원회의 보고(《은행위원회》, 1857년)와 관련하여 좀더 서술하기로 한다.—F. 엥겔스}

잉글랜드은행의 전 총재 J. G. 하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400호)《금수출의 영향은…상품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리자률이 변동됨에 따라 리자를 체현하고있는 상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받기때문이다.》

그는 1834~1843년 및 1845~1853년에 관한 두개의 표를 내놓고있는데 이 표들은 가장 중요한 무역품종 15종의 가격운동이 금의 류출입 및 리자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러한 표들은 사실상 《투하처를 찾고있는 우리의 자본의 대표》인 금의 류출입과 리자률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제2402호)《1847년에는 극히 큰 금액의 미국의 유가증권이 미국으로 반송되였고 마찬가지로 로씨야의 유가증권이 로씨야로, 또 기타 대륙의 유가증권이 우리에게 곡물을 공급한 나라들로 반송되였다.》

다음에 드는 하버드의 표에서 기초로 되고있는 15종의 주요상품은 면화, 면사, 면직물, 양모, 모직물, 아마, 아마포, 인디고, 선철, 주석도금판, 동, 유지, 사탕, 커피, 명주 등이다.

Ⅰ. 1834~1843년

년 월 일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 (파운드)	시장 할인률 (%)	15종의 주요상품중 가격이		
			오른것	내린것	변동이 없는것
1834년 3월 1일	9,104,000	$2\frac{3}{4}$	—	—	—
1835년 3월 1일	6,274,000	$3\frac{3}{4}$	7	7	1
1836년 3월 1일	7,918,000	$3\frac{1}{4}$	11	3	1
1837년 3월 1일	4,077,000	5	5	9	1
1838년 3월 1일	10,471,000	$2\frac{3}{4}$	4	11	—
1839년 9월 1일	2,684,000	6	8	5	2
1840년 6월 1일	4,571,000	$4\frac{3}{4}$	5	9	1
1840년 12월 1일	3,642,000	$5\frac{3}{4}$	7	6	2
1841년 12월 1일	4,873,000	5	3	12	—
1842년 12월 1일	10,603,000	$2\frac{1}{2}$	2	13	—
1843년 6월 1일	11,566,000	$2\frac{1}{4}$	1	14	—

Ⅱ. 1844~1853년

년 월 일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 (파운드)	시장 할인률 (%)	15종의 주요상품중 가격이		
			오른것	내린것	변동이 없는것
1844년 3월 1일	16,162,000	$2\frac{1}{4}$	—	—	—
1845년 12월 1일	13,237,000	$4\frac{1}{2}$	11	4	—
1846년 9월 1일	16,366,000	3	7	8	—
1847년 9월 1일	9,140,000	6	6	6	3
1850년 3월 1일	17,126,000	$2\frac{1}{2}$	5	9	1
1851년 6월 1일	13,705,000	3	2	11	2
1852년 9월 1일	21,853,000	$1\frac{3}{4}$	9	5	1
1853년 12월 1일	15,093,000	5	14	—	1

하버드는 이에 다음과 같은 주해를 달고있다.

《1834~1843년의 10년간과 마찬가지로 1844~1853년에도 잉글랜드은행의 금의 변동에는 언제나 수형할인으로 선대되는, 대부될수 있는 화폐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가 수반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상품가격의 변동은 잉글랜드은행의 금의 변동에서 나타나는 통화의 량과는 전혀 관계없다는것을 보여준다》(《은행법보고》, 1857년 제2부분 290~291페지).

상품의 수요공급은 상품의 시장가격을 조절하므로 할인률에서 표현되는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또는 오히려 수요로부터의 공급의 배리)와 현실적《자본》에 대한 수요를 오버스턴이 동일시하고있는것은 얼마나 그릇된것인가 하는것이 여기에서 명백하다. 상품가격은 통화량의 변동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하는 주장은 이제는 할인률의 변동은 화폐자본과 구별되는 현실적인 소재적자본에 대한 수요의 변동을 표시한다고 하는 문구로써 은폐된다. 노먼도 오버스턴도 동일한 위원회에서 얼마나 이것을 실지로 주장하였는가, 또 그때 특히 후자가 얼마나 무력한 핑계로 모대기다가 드디여 아주 궁지에 빠졌는가 하는것을 우리는 이미 본바이다(제26장). 금의 현존량의 변동은 국내의 류통수단량을 증감시키므로 그것은 이 나라에서는 상품가격을 등락시키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사실상 케케묵은 허튼소리이다. 이 통화리론에 의하면 금이 수출된다면 금이 들어가는 나라에서는 상품가격이 오르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금수출국의 수출품의 가치는 금수입국의 시장에서 오르지 않을수 없다. 이와 반대로 금수입국의 수출품의 가치는 금수출국의 시장에서는 내릴것이며 금이 들어가는 그 상품의 원산국에서는 오르게 될것이다. 그

러나 사실상 금량의 감소는 다만 리자률을 높일따름이며 금량의 증가는 다만 리자률을 저하시킬따름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리자률의 변동이 비용가격의 확정 또는 수요공급의 결정에 대하여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동은 상품가격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다.—

같은 보고에서 인도와의 거래를 경영하는 대상회의 주인 N. 알렉산더는 50년대 중엽에 있어서의 인도와 중국에로의 은의 대량의 류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고있다. 이 류출은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국내전쟁[254]이 영국직물의 판매를 중지시킨것으로 말미암은것이며 부분적으로는 구라파에서 발생한 누에병이 이딸리아나 프랑스의 양잠업을 심히 축소시킨것으로 말미암은것이다.

(제4337호)《류출은 중국으로인가 인도로인가?—당신은 은을 인도로 보내고 그중 상당한 부분으로 아편을 사는데 그 아편은 전부 중국에 가서 명주실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된다. 그리고 인도시장상황으로 말하면(거기에는 은이 축적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에게는 직물이나 기타 영국제품을 보내기보다는 은을 보내는편이 유리하다.》—(제4338호)《프랑스로부터 큰 류출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을 받은것이 아닌가?—그렇다. 매우 큰 류출이 있었다.》—(제4344호)《프랑스나 이딸리아로부터 명주실을 수입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으로 벵갈제나 중국제의 명주실을 대량으로 보내고있다.》

그때문에 아시아에는 상품이 아니라 은—이 대륙의 화폐금속—이 보내졌는데 그것은 이러한 상품의 가격이 그 생산국(영국)에서 올랐기때문이 아니라 그 수입국에서 내렸기—과잉수입으로 말미암아—때문이다. 비록 이 은은 영국이 프랑스로부터 받은것이고 그 일부는 금으로써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통화리론에 의하면 이러한 수입이 있으면 물가

는 영국에서는 내리고 인도나 중국에서는 올라야 할것이다.

또 하나의 실례. 상원위원회에서(《상업곤경》, 1848~1857년) 리버풀의 일류상인의 한사람인 와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1994호) 《1845년말에는 그것》 {면방직업} 《이상 버는 사업은 없었으며 그만큼 큰 리윤을 내는 사업은 없었다. 면화재고는 풍부하였으며 질좋고 다루기 헐한 면화가 1폰드당 4펜스로 입수될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면화에서는 역시 4펜스의 비용으로 40번수 우등 2호 물연사를 방적할수 있어 방적업자의 총비용은 약 8펜스였다. 1845년 9월과 10월에는 이 방사가 $10\frac{1}{2}$펜스와 $11\frac{1}{2}$펜스로 대량으로 판매되였고 또 대량의 납품계약도 체결되였으며 일부 경우들에서는 방적업자들은 면화의 구입가격과 동등한 리윤을 냈던것이다.》—(제1996호) 《사업은 1846년초까지는 여전히 잘되고있다.》—(제2000호) 《1844년 3월 3일에는 면화의 재고{62만 7,042퉁구리}는 현재의 재고{1848년 3월 7일의 재고 30만 1,070퉁구리}의 2배이상이였으나 그러나 가격은 1폰드당 $1\frac{1}{4}$펜스 높았다. {5펜스에 대하여 $6\frac{1}{4}$펜스} 동시에 방사—40번수 우등 2호 물연사—는 $11\frac{1}{2}$~12펜스로부터 1847년 10월에는 $9\frac{1}{2}$펜스로 내렸으며 12월말에는 $7\frac{3}{4}$펜스로 내렸다. 방사는 그 원료로 사용된 면화의 구입가격으로 팔리였다》 (우와 같은 보고 제2021호, 제2022호).

이것은 자본이 《결핍》 하기때문에 화폐는 《고가》 여야 한다는 오버스턴의 리기주의적현명성을 증명하는것이다. 1844년 3월 3일에는 은행리자률은 3%였고 1847년 10월과 11월에는 그것이 8% 및 9%로 되였고 1848년 3월 7일에는 여전히 4%였다. 면화의 가격은 판매의 완전한 정체와 공황 및 이에 상응하는 높은 리자률때문에 공급의 규모에 상응한 그 가

격보다 훨씬 낮게 저락하였다. 그 결과는 한편으로는 1848년의 수입의 심한 감소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의 생산의 감소였다. 그때문에 1849년에는 새로 면화가격이 올라갔다. 오버스턴에 의하면 국내에 화폐가 지나치게 많았기때문에 상품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것이다.

(제2002호)《최근의 면방직업상태가 악화된것은 원료부족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면의 재고는 현저히 감소되였다고는 하지만 가격은 저하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오버스턴에게 있어서는 상품의 가격 또는 가치와 화폐의 가치 즉 리자률이 유쾌하게도 혼동되고있다. 1847년 5월에 카드웰과 찰즈 우드경이 통화리론에 따라 《1844년의 은행법을 그 전체 내용에 걸쳐 그대로 실시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와일리는 이 통화리론에 대한 자기의 총괄적판단을 질문 제2026호에 대한 답변에서 주고있다.

《이러한 주의는 화폐에는 인위적인,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상품에는 인위적인, 파멸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려 하는것이라고 나는 생각된다.》

그리고 또 그는 이 은행법이 사업일반에 주는 영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4개월불수형은 구입되여 합중국으로 향하게 되는 상품들에 대하여 상인들이나 은행업자들앞으로 발행되는 공업도시의 보통의 수형인데 이 수형도 큰 희생을 내지 않고서는 할인될수 없었으므로 10월 25일의 정부서한{은행법의 정지}이후 이 4개월불수형이 다시 할인될수 있게 되기까지는 주문의 수행이 몹시 어렵게 되였다》(제2097호).

따라서 지방에서도 이 은행법의 정지는 구제자와도 같은

작용을 하였던것이다.

(제2102) 《작년 10월》 〔1847년〕 《에는 여기에서 상품을 사는 거의 모든 미국인구매자들은 될수 있는대로 그들의 주문을 즉시 축소하였다. 그리고 화폐등귀의 보도가 미국에 도달하였을 때 새로운 주문은 모두 정지되였다.》 —(제2134호) 《곡물과 사탕은 례외였다. 곡물시장은 수확예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며 사탕은 막대한 재고와 수입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제2163호) 《미국에 대한 우리의 지불채무 중에서…많은것은 위탁상품의 강제매각에 의하여 결제되였으며 또 많은것은 이곳에서 아마 파산에 의하여 무효로 되였을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제2196호) 《나의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의 증권거래소에서는 **1847년 10월에는 70%까지의 리자가 지불되였다.**》

{오랜 진통을 수반한 1837년의 공황, 그에 뒤따른 1842년의 또 하나의 완전한 후속공황, 그리고 과잉생산을 전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산업가들이나 상인들의 리기주의적 맹목—실로 과잉생산이란 속류경제학에 의하면 황당무계한것이며 또 불가능한 일이다!—이러한것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그러한 혼란을 일으켜 이 혼란이 통화학파로 하여금 그 독단설을 전국적규모에서 실행에 옮겨놓을수 있게 한것이다. 1844~1845년의 은행립법은 통과되였다.

1844년의 은행법은 잉글랜드은행을 발행부와 은행부로 나눈다. 전자는 1,400만의 보증준비—대부분은 정부채무—와 최고 4분의 1까지는 은이여도 좋은 총금속준비를 보유하고 량자의 총액과 동등한 액의 은행권을 발행한다. 이 은행권은 공중의 수중에 있지 않는 한에서는 은행부에 놓여있어 일상의 사용에 필요한 소량의 주화(약 100만)와 함께 은행부의 상비준비금을 이룬다. 발행부는 공중에게서 금을 받고 그 대신 은행권을, 또 은행권을 받고 그 대신 금을 교부한다. 그

밖의 공중과의 거래는 은행부에서 처리한다. 1844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자기 은행권의 발행권을 갖게 된 사영은행들은 이 권한을 보존하였으나 그 은행권발행고는 할당에 한정되였다. 만약 이러한 은행의 하나가 자기 은행권의 발행을 그만둔다면 잉글랜드은행은 소멸된 할당액의 3분의 2만큼 무보증발행액을 증가시킬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이러한 무보증발행액은 1892년까지에는 1,400만으로부터 1,650만파운드로(정확히는 1,645만파운드로) 증가되였다.

이리하여 5파운드의 금이 은행금고로부터 류출할 때마다 5파운드은행권 한장이 발행부로 돌아가 폐기되며 준비금에 5장의 소브린 금화가 첨가될 때마다 새로운 5파운드권 한장이 류통에 들어간다. 이로써 금속류통의 법칙들에 엄밀히 복종하는 오버스턴의 리상적지폐류통이 실행되는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통화주의파의 주장에 의하면 공황은 영원히 불가능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잉글랜드은행을 독립적인 두개의 부로 나눈것은 리사회로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처분할수 있는 모든 자금을 자유롭게 리용할 가능성을 빼앗았고 그리하여 발행부는 수백만의 금과 그밖에 또 1,400만이라는 보증준비를 그대로 가지고있는데 은행부는 파산에 직면할수 있는 경우도 생길수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일은 다음과 같은 리유로 더욱 쉽게 일어날수 있었다. 그것은 거의 어떤 공황에서나 외국으로의 금의 큰 류출이 일어나는 시기가 나타나며 이 금류출은 주로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에 의하여 보상되여야 하기때문이다. 이 경우에 5파운드가 외국으로 흘러나갈 때마다 국내의 류통으로부터는 5파운드은행권이 한장 끌려나오며 따라서 류통수단의 량은 바로 그것이 가장 많이 또 가

장 절실히 필요하게 된 순간에 축소되는것이다. 이리하여 1844년의 은행법은 직접 전체 상업계를 추동하여 공황이 폭발하고있을 때 얼른 은행권의 예비를 저장케 하며 따라서 공황을 촉진시키고 격화시키게 한다. 이 은행법은 이와 같이 화폐융통에 대한 즉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를 결정적인 순간에 효과적으로 되도록 인위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의하여, 그리고 동시에 그 공급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의하여 공황기의 리자률을 미증유의 높이로 상승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 은행법은 공황을 제거하였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격화시켜 전 산업계가 파멸하든가 은행법이 파멸하든가 그 어느 하나가 파멸할밖에 없는 그러한 점에까지 이르게 하는것이다. 지금까지 두번 즉 1847년[216] 10월 25일과 1857년 11월 12일에 공황은 이러한 정점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때 정부는 1844년의 법률을 정지하는데 의하여 잉글랜드은행을 그 은행권발행의 제한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두번 다 그것으로 공황을 극복할수 있었다. 1847년에는 1류급의 담보만 있으면 은행권을 다시 받을수 있다는 확신만으로 400~500만의 퇴장은행권을 다시 세상에 끌어내여 류통에 투하시킬수 있었다. 1857년에는 100만이 채 못되는 은행권이 법정량이상으로 발행되였는데 그것은 극히 짧은 기간뿐이였다.

또 한가지 말해두어야 할것은 1844년의 립법은 아직도 19세기 최초의 20년간 즉 잉글랜드은행의 태환정지와 은행권의 가치감소의 시기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표시하고있다는것이다. 은행권이 신용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근심이 아직도 대단히 크다.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근심이였다. 왜냐하면 이미 1825년에는 류통이 정지되여있었던 낡은 1파운드은행권의 현존하는 저장을 발행하는데 의하여 공황이 극복되였고 이로

써 당시 은행권의 신용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렬한 불신임의 시기에도 동요하지 않았다는것이 증명되였기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완전히 리해할만한 일이기도 하다. 어쨌든 사실상 전체 국민이 그 신용을 가지고 이 가치기호의 배후에 서있는것이다.—F. 엥겔스}

이제는 이 은행법의 효과에 관하여 몇개의 증언을 들어보기기로 하자. J. S. 밀은 1844년의 은행법은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것은 다행히도 1857년 6월 12일이였다. 4개월후에는 공황이 폭발하였다. 밀은 문자그대로 《은행리사회와 상업계일반》에 향하여 그들이

《상업공황의 성질을, 그리고 과도한 투기를 지지하는데 의하여 그 자신들과 공중에게 극히 큰 손해를 주는것을 이전보다 훨씬 잘 리해하고 있다》(은행법위원회, 1857년 제2031호).

는데 대하여 축하를 보내고있다.

현명한 밀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있다. 만약 1파운드은행권이

《로임을 지불하는 제조업자들이나 기타 사람들에 대한 선대로서》 발행된다면 《이 은행권은 그것을 소비목적에 지출하는 다른 사람들의 수중으로 들어갈지 모르며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권은 그 자체로서 상품에 대한 수요를 구성하며 일시적으로는 가격등귀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른다》(제2066호).

그렇다면 밀씨는 제조업자들이 로임을 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종이로써 지불하기때문에 보다 높은 로임을 지불할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그는 제조업자가 선대를 100파운드은행권으로써 받고 그것을 금과 교환한다면 이 로임은 직접 1

파운드은행권으로써 지불되는 경우보다도 적은 수요를 형성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가? 또 그는 례컨대 어떤 광산지구에서는 로임이 지방은행의 은행권으로써 지불되였으므로 몇사람의 로동자들이 함께 한장의 5파운드은행권을 받았다는것을 모르고있는가? 이것은 그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소액은행권으로써 선대하면 고액은행권으로써 하기보다 더 쉽게 또 더 많이 화폐를 선대하게 되는것인가?

{1파운드은행권에 대한 밀의 이러한 기묘한 근심은 만약 정치경제학에 관한 그의 전체 저작이 어떤 모순에도 뒤걸음치지 않는 절충주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전혀 알수 없는것이였을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많은 점에서 오버스턴보다도 투크가 옳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품가격의 현존화폐량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믿고있다. 그러므로 그는 1파운드은행권이 한장 발행될 때마다—기타 모든 사정이 변함없다면—소브린금화 한개가 잉글랜드은행의 금고로 들어간다는것을 결코 믿지 않고있는것이다. 그가 근심하는것은 류통수단의 량이 증대되고 따라서 그것이 가치감소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것, 즉 상품가격을 높일지도 모른다는것이다. 상술한 의혹의 배후에 숨어있는것은 이 근심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F. 엥겔스}

잉글랜드은행을 두개 부로 나눈것과 은행권의 태환의 보증을 지나치게 걱정하는데 관하여 투크는 1848~1857년 상업곤경조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고있다.

1847년의 리자률이 1837년이나 1839년에 비하여 크게 변동된것은 단지 잉글랜드은행이 두개 부로 나누어진것으로 말미암은것이다(제3010호).—잉글랜드은행권의 확실성은 1825년

에도, 1837년 및 1839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제3015호).—1825년의 금수요는 지방은행의 1파운드은행권의 완전한 신용상실로 말미암아 생긴 빈자리를 메꾼다는 목적을 가졌을따름이였다. 이 빈자리는 잉글랜드은행이 1파운드은행권을 발행할 때까지는 금으로 메꿀수밖에 없었던것이다(제3022호).—1825년 11월과 12월에는 수출을 위한 금수요는 조금도 없었다(제3023호).

《국내외에서의 잉글랜드은행의 신용상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국채리자와 예금의 지불정지는 은행권의 태환정지보다 훨씬 더 엄중한 결과를 수반할것이다》(제3028호).

(제3035호)《당신이 말하려는것은 결국은 은행권의 태환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들은 모두 상업적핍박의 순간에는 새로운 중대한 곤난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것인가?—결코 그렇지 않다.》

1847년중에는 《은행권발행의 증대는 1825년에 그랬던바와 같이 아마도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를 다시 충실히 하는데 기여하였을것이다》(제3058호).

1857년의 은행법위원회에서 뉴마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제1357호)《이러한 두 부》〔잉글랜드은행의〕《의 분리와 그 필연적결과인 금준비의 두 분할의…첫째의 나쁜 결과는 잉글랜드은행의 은행업무가 즉 이 은행의 업무들중 이 은행을 이 나라의 상업과 보다 직접적으로 련결시키는 부문 전체가 종래의 준비금의 절반 반액으로써 운영되게 되였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준비금의 분할의 결과 만약 은행부의 준비금이 조금이라도 감소되면 잉글랜드은행은 곧 할인률을 인상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이 준비금의 감소는 할인률의 일련의 돌발적인 변동을 일으켰던것이다.》—(제1358호)《이러한 변동은 1844년이래 (1857년 6월까지) 약 60번 있었는데 1844년이전에는 동일한 기간에 12번도 될가말가하였다.》

1811년이후 잉글랜드은행의 리사였으며 일시 총재였던 파머가 상원의 상업곤경조사위원회(1848~1857년)앞에서 한 증언도 특히 흥미있는것이다.

(제828호)《1825년 12월에 잉글랜드은행은 약 110만파운드의 금밖에 수중에 남기지 않았다. 가령 당시 이 법률 (1844년의) 이 반포되여 있었다면 이 은행은 틀림없이 완전히 파산하였을것이다. 12월에는 잉글랜드은행은 1주일동안에 500만 내지 600만의 은행권을 발행하였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이것이 당시의 공황을 상당히 완화시킨것이다.》

(제825호)《만약 잉글랜드은행이 한번 착수한 거래를 끝까지 수행하려고 하였다면 현재의 은행립법은 붕괴되였을것이다고 생각되는 첫 시기 (1825년 7월 1일이후의) 는 1837년 2월 28일이였다. 당시에는 이 은행의 수중에 390만 내지 400만파운드가 있었다. 그러나 준비금으로 보유되였던것은 겨우 65만파운드에 불과하였을것이다. 또 하나의 시기는 1839년인데 이것은 7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계속되였다.》—(제826호)《그 경우에는 준비금의 액은 얼마였는가?—9월 5일에는 준비금은 도합 20만파운드의 부족이였다. 11월 5일에는 준비금은 약 100만 내지 150만으로 증가되였다.》—(제830호)《1844년의 법률은 1837년에 잉글랜드은행이 미국과의 거래를 원조하는것을 방해하였을것이다.》—(제831호)《미국과 거래하는 가장 주요한 상회의 셋이 파산하였다…미국과 거래하던 거의 모든 상회들은 신용을 상실하였다. 만약 당시 잉글랜드은행이 이들을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존속한 상회가 하나나 둘이상이 되였으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제836호)《1837년의 핍박은 1847년의 핍박과는 전혀 비교할수 없다. 1837년의 핍박은 주로 미국과의 거래에만 국한되였었다.》—(제838호) (1837년 6월초에 잉글랜드은행의 리사회에서는 핍박을 어떻게 완화시킬것인가 하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리자률을 높여서 물가를 내리게 하는것이 옳바른 원칙이라는 의견을 지지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화폐를 비싸게 하고 상품을 싸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지불이 수행될 수 있게 하는것이라는것이였다.》—(제906호)《잉글랜드은행의 권한의 종래의 자연적제한, 즉 그 현실적금속준비고 대신에 1844년의 법률에

의한 이 은행의 권한의 인위적인 제한이 실시되였다는것은 거래를 인위적으로 곤난하게 만들며 따라서 또 이 법이 없었더라면 생길수 없은 영향을 상품가격에 미쳤다.》—(제968호)《1844년의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는 보통의 사정하에서는 950만이하로는 감소시킬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물가나 신용에 대한 압박을 불러일으킬것이며 이 압박은 외국환자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여 금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발행부의 금보유액을 증가시키지 않을수 없을것이다.》—(제996호)《현재의 제한하에서는 당신》〔잉글랜드은행〕《은 외국환자시세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은이 필요하게 되였을 때에 그 필요한 은을 마음대로 쓸수 없다.》—(제999호)《잉글랜드은행의 은준비를 그 금속준비의 5분의 1로 제한한 그 규정은 무엇을 목적하고있었는가?—나는 이 질문에는 대답할수 없다.》

그 목적은 화폐를 비싸게 하는것이였다. 통화리론은 도외시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잉글랜드은행을 두 부로 나눈것과 마찬가지이며 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제 은행에 일정한 량을 넘는 은행권발행에 대하여서는 금준비를 보유할것을 강제한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나라의 금속준비의 분산이 일어났으며 불리한 환자시세를 조절하는 그 능력이 약화되였다.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리자률을 인상시키는데로 돌려지고있는것이다. 즉 잉글랜드은행은 금준비 없이는 1,400만파운드를 넘는 은행권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 은행부는 화폐과잉기에는 리자률을 인하하고 핍박기에는 이를 인상함으로써 보통의 은행과 같이 관리되여야 한다는 규정, 구라파대륙과 아시아와의 환자시세를 조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인 은준비를 제한한다는 규정, 수출을 위한 금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제 은행이 이제는 그

① 초판에서는 《화페》로 되여있다. 맑스의 원고에 의하여 수정하였다.—편집자

은행권의 태환성—사실상 완전히 환상적인 태환성—이라는 구실하에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1844년의 법률이 비로소 1857년에 스코틀랜드의 제 은행들에 대한 금지불청구의 쇄도를 일으켰던것이다. 새로운 은행립법도 국외로의 금류출과 국내에서의 금류출을 그 량자의 작용이 분명히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자의 시장률에 부단히 격심한 변동이 일어나는것이다. 은에 관하여 파머는 두번에 걸쳐 제992호와 제994호에서 잉글랜드은행이 은행권을 은으로 살 수 있는것은 다만 환자시세가 영국에 유리하여 은이 과잉된 경우뿐이라고 말하고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제1003호)《금속준비의 상당히 큰 부분을 은으로 보유해도 좋다는 그 유일한 목적은 환자시세가 영국에 불리한 시기에 대외지불을 쉽게 한다는것이다.》—(제1004호)《은은 다른 세계 각국에서 화폐로 되여있는 상품이므로…이 목적》〔대외지불과〕《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다만 합중국만은 최근에 금만을 받게 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잉글랜드은행은 핍박기에도 환자시세의 역조가 금을 외국으로 끌어내지 않는 한 리자률을 5%라는 이전의 수준보다 높일 필요는 없었다는것이다. 만약 1844년의 법률이 없다면 잉글랜드은행은 제시되는 1류수형을 곤난없이 모두 할인할수 있을것이다(제1018~제1020호). 그러나 1844년의 법률이 있은 때에는, 그리고 1847년 10월의 잉글랜드은행의 상태에서는

《동 은행이 어떠한 리자률을 신용능력있는 상회에 요구하더라도 상회는 자기의 지불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리자률의 지불을 거부할수는 없었다》[제1022호].

그리고 이 높은 리자률이야말로 이 법률의 목적이였다.

(제1029호) 《나는 리자률이 외국의 수요》 〔귀금속에 대한〕 《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의 신용결핍기에 은행에로의 쇄도를 방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자률의 인상과의 사이에 큰 구별을 두려고 생각한다.—(제1023호) 《1844년 법률이 제정되기전에는 환자시세가 영국에 유리하였으나 국내는 불안으로 싸이고 실로 진짜 공황이 지배한 때에도 은행권발행에는 아무런 한계도 지어지지 않고 단지 은행권의 발행에 의해서만 핍박상태는 완화될수 있었다.》

39년동안이나 잉글랜드은행의 리사직에 있었던 인물이 이러한 의견을 말하고있는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영은행업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 사람은 1801년이래의 스푸너—애트우드은행의 공동출자자인 트웰즈이다. 그는 1857년의 은행법위원회에 나온 모든 증인들중에서 이 나라의 현실상태에 눈을 돌릴수 있게 하여주며 또 공황이 닥쳐오고있음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다. 기타의 점들에서는 그는 버밍엄의 《소실링론자》[249]의 일종이며 사실 그의 공동출자자인 애트우드형제는 이 파의 창시자들이다(《정치경제학비판》, 59페지[255]를 보라).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제4488호) 《1844년의 법률이 작용한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은행업자로서 대답한다면 이 법률은 아주 훌륭하게 작용하였다고 말하고싶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각종 은행업자나 자본가〔화폐자본가〕에게 풍부한 수확을 주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안심하고 사업을 계획할수 있는 안정된 할인률을 필요로 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업가들에게는 매우 나쁜 작용을 하였다…이 법률은 화폐대부를 최고로 유리한 사업으로 만들었다.》—(제4489호) 《그것〔은행법〕은 런던의 주식은행이 주주들에게 20~22%를 지불할수 있게 하는가?—어느 한 은행은 최근에 18%를 지불하였고 또 다른 한 은행은 내가 아는바에는 20%

를 지불하였다. 이 은행들에는 이 법률을 아주 강렬히 지지할 온갖 리유가 있다.》—(제4490호) 《대자본을 가지고있지 않은 작은 사업가들과 정직한 상인들은…이 법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고있다…이것을 알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있는 유일한 재료는 그들의 인수수형으로서 지불되지 않은것들이 놀랄만큼 많다는것을 내가 보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인수수형은 대략 20~100파운드 되는 소액인것이 보통이며 그것들중에서 지불되지 않고 그대로 국내의 각지로 돌아가는것이 많은데 이것은 언제나…소상인들간에서의 부진의 징조인것이다.》

(제4494호)에서는 그는 사업은 지금 벌이가 안된다고 말한다. 그의 다음의 진술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미처 감촉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공황의 잠재를 보고있었기때문이다.

(제4494호) 《민씽골목[214]에서의 가격은 아직 어지간히 유지되고는 있으나 아무것도 팔리지 않으며 어떠한 가격으로도 팔수가 없다. 명목적인 가격을 유지하고있다.》

(제4495호)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 어떤 프랑스인이 3,000파운드의 상품을 어떤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민씽골목의 한 중매인에게 보낸다. 그 중매인은 요망하는 가격을 받을수 없으며 프랑스인은 그 가격보다 낮게 판매할수 없다. 상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프랑스인은 화폐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중매인은 프랑스인으로 하여금 그 상품을 담보로 하여 1,000파운드의 3개월불수형을 자기앞으로 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인에게 1,000파운드를 선대한다. 3개월후에는 수형이 만기되였으나 상품은 그냥 판매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매인은 수형의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는 비록 3,000파운드의 담보를 가지고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수 없으므로 곤경에 빠진다. 이와 같이 차례차

례로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 궁지에 빠지게 한다.

(제4496호)《대규모의 수출에 대하여 말하면…국내의 거래가 침체된 때에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수출을 일으킨다.》—(제4497호)《당신은 국내소비가 감소되였다고 생각하는가?—**대단히 크고…아주 엄청나다**…이 점에서는 소상인들이 최대의 권위이다.》—(제4498호)《그래도 수입은 대단히 크다. 이것은 거대한 소비를 말하는것이 아닌가?—**판매할수만 있다면** 물론 그렇다. 그러나 많은 창고들은 이러한 물건으로 차있다. 내가 방금 든 례로 말하면 3,000파운드의 상품이 수입되였는데 그것은 팔리지 않고있다.》

(제4514호)《화폐가 비싼 때에는 자본이 싸다고 당신은 말하는것인가?—그렇다.》

즉 이 사람의 의견은 높은 리자률은 비싼 자본과 동일한 것이라는 오버스틴의 의견과 결코 동일하지는 않은것이다.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경영되고있는가.

(제4616호)《…다른 사람들은 아주 사업에 열중하여 자기의 자본이 허용하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 거액의 수출입거래를 하고있다. 이 점에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어떠한 행운을 얻으면 큰 재산을 만들어 모든 지불을 끝낼수도 있다. 대체로 지금은 거래의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번의 상품발송에 20%, 30%, 40%의 손실을 보는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것은 그 다음거래에서 만회할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련달아 손실을 본다면 그때에는 파산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최근 매우 자주 보았다. 몇몇의 상회들이 1실링의 자산도 남기지 않고 파산하였다.》

(제4791호)《리자률》〔최근 10년간의〕《이 낮은것은 물론 은행업자들에게 불리한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전에 비하여 얼마나 리윤》〔그 자신의 리윤〕《이 높은가 하는것을 설명하기는 당신들에게 장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매우 곤난하다고 생각된다. 은행권이 너무 많이 발행되였기때문에 리자률이 저하되면 우리는 예금을 많이 가지게 된다.

리자률이 높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리득으로 된다.》—(제4794호)《적당한 리자률로 화폐가 입수될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우리는 대출을 증가한다. 그것은{우리 은행업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작용한다. 리자률이 상승하면 우리의 수중에는 보통보다 큰 비률이 들어온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것보다 많은것을 받는다.》

이미 본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모두 잉글랜드은행권의 신용을 확고부동한것으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은 은행권의 태환가능성을 위하여 900만 내지 1,000만의 금을 절대적으로 고정시키고있다. 이 축장화폐의 신성불가침은 옛날의 화폐축장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실현된다. W. 브라운(리버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상업곤경》, 1847~1857년 제2311호).

《그당시 이 화폐 (발행부의 금속준비) 가 가져온 효과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바다속에 내던져버리는것과 같았다. 실로 그것은 의회의 법률을 위반함이 없이는 조금도 사용될수 없었던것이다.》

건축청부업자인 E. 캡스는 이미 우에서 인용된바 있으며 또 런던의 현대건축제도의 서술(제2부 제12장[256])에서 그의 증언이 인용된바 있는데 그는 1844년의 은행법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있다(《은행법》 1857년).

(제5508호)《그렇다면 대체로 당신의 의견은 현재의 제도 (은행립법) 는 산업리윤을 주기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의 호주머니로 옮겨놓기 위한 참으로 교묘한 제도라는것인가?—그것이 나의 의견이다. 내가 알기에는 그 제도는 건축업에서 그러한 작용을 하였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스코틀랜드의 제 은행은 1845년의 은행법에 의하여 잉글랜드의 제도와 근사한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 은행들에게는 매개 은행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이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금준비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였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개의 증언이 있다(《상업곤경》, 1848～1857년).

스코틀랜드의 한 은행의 중역인 켄니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3375호)《1845년의 법률이 실시되기전에는 스코틀랜드에는 금류통이라고 부를만한것이 어떤것이 있었는가?—그러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제3376호)《그후로 금의 추가류통이 나타났는가?—조금도 나타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인들은 금을 싫어한다.》—(제3450호)스코틀랜드의 제 은행이 1845년이래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약 90만 파운드의 금은 그의 의견에 의하면 유해로울따름이며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자본에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무익하게 흡수하는것이다.》

그다음에는 스코틀랜드련합은행의 중역 앤더슨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3558호)《스코틀랜드의 제 은행측으로부터 잉글랜드은행에 대하여 생긴 커다란 유일한 금수요는 외국환자시세때문에 일어난것인가?—그렇다. 그리고 이 수요는 우리가 에딘버러에서 금을 보유하는것으로써는 감소되지 않는다.—(제3590호)《우리가 잉글랜드은행에 (또는 잉글랜드의 사영은행에) 동일한 액의 유가증권을 예탁하고있는 한 우리는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의 금류출을 일으킬수 있는 힘을 종래와 마찬가지로 가지고있다.》

끝으로 또 하나 《경제학자》지의 론설(월슨)이 있다.

《스코틀랜드의 제 은행은 유휴현금을 그들의 런던 대리점들에 예금하고있다. 이 대리점들은 그것을 잉글랜드은행에 예금한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은행에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

에 대한 지배력을 준다. 그리고 이 금속준비가 잉글랜드은행에 있으면 그것은 대외지불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언제나 준비되여있는것으로 된다.》

이 제도는 1845년의 법률에 의하여 교란되였다.

《스코틀랜드에 관한 1845년 법률이 제정된 결과 최근에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의 금화의 큰 류출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있을수 있을따름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였으나 그 수요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다…이때로부터 상당한 액이 정해놓고 스코틀랜드에 고정되여있고 또 그밖에 상당한 액이 부단히 런던과 스코틀랜드사이를 왕복하고있다. 만약 어떤 시기에 스코틀랜드의 한 은행업자가 자기의 은행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런던으로부터 금을 담은 상자가 운송되여온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동일한 상자는 대개 한번도 열어보지 않은채 런던으로 반송된다》(《경제학자》지, 1847년 10월 23일).

{그리고 은행법의 아버지인 은행업자 쌔뮤엘 죤즈 로이드, 일명 오버스틴경은 이 모든것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있는가?

그는 이미 1848년에 상업곤경에 관한 상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본이 없기때문에 일어나는 화폐핍박과 높은 리자률은 은행권의 발행을 증가시키는데 의하여 완화시킬수는 없다》(제1514호)

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비록 1847년 10월 25일의 정부서한에 의하여 은행권발행의 증가액이 **허가**된것만으로도 공황의 예봉을 꺾기에 충분하지만

그는

《높은 리자률과 제조업의 부진은 산업적 및 상업적 목적에 리용될수 있는 **물질적**자본의 감소의 필연적결과였다.》(제1604호)

는것을 고집한다.

그런데 수개월이래의 제조업의 부진은 물질적상품자본이 창고에 넘쳐나는데 그것이 팔리지 않았다는것 또 바로 그렇기때문에 팔리지도 않는 상품자본을 이 이상 생산하지 않기 위하여 물질적생산자본이 전부 또는 절반이 놀고있다는데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1857년의 은행법위원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1844년 법률의 제 원칙을 엄격하게, 신속히 준수하는데 의하여 만사가 규칙적으로 원활히 수행되고있으며 화폐제도는 공고하고 또 확고부동하게 되였으며 나라의 번영은 다툴 여지 없고 1844년 법률에 대한 공중의 신뢰는 날로 강화되고있다. 만약 위원회가 이 법률의 근거인 제 원칙의 건전성과 이 법률이 확보한 유익한 결과에 대한 그 이상의 실제적증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진실하고 충분한 대답은 이러하다. 당신의 주위를 살펴보라. 우리 나라의 사업의 현상태를, 국민의 만족을 보라. 사회의 모든 계급들의 부와 번영을 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게 한 법률의 존속을 저지하여야 하겠는가 아닌가를 결정할수 있을것이다》(《은행법위원회》, 1857년 제4189호).

오버스턴이 7월 14일에 위원회에서 노래한 이 열광적인 송가에 대하여 같은해 11월 12일에 반대가창이 대답하였다. 즉 잉글랜드은행리사회앞으로의 서한이 그것인데 이 서한에서 정부는 아직 구제할수 있는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적을 낳는 1844년의 법률을 정지하였던것이다.—F. 엥겔스}

제 35 장

귀금속과 환자시세

Ⅰ. 금저장의 운동

펍박기에 있어서의 은행권의 저장에 관하여 말하여야 할 것은, 여기서는 사회의 가장 원시적상태에서 불안한 시기에 나타났던것과 같은 귀금속으로서의 화폐축장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1844년 법률[212]의 효과가 흥미를 끄는것은 이 법률이 국내의 모든 귀금속을 류통수단으로 전화시키려고 하기때문이다. 이 법률은 금류출을 류통수단의 수축과 동일시하려고 하며 금류입을 류통수단의 확장과 동일시하려고 한다. 이 법률의 실시는 실험상, 그 반대라는것을 증명하였다. 곧 다음에 언급할 유일한 례외를 제외하면 1844년이래 잉글랜드은행권의 류통액은 이 은행이 발행할수 있었던 최고발행한도에 도달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857년의 공황[220]은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이 최고한도로써는 불충분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1857년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류통중에 있던 은행권은 평균 매일 이 최고한도를 48만 8,830파운드나 초과하였다(《은행법》, 1858년 XI페지). 법정최고발행한도는 당시 1,447만 5,000파운드에 은행지하실에 있는 금속준비액을 가한것이였다.

귀금속의 류출입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한편으로는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내에서의 금속의 이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금은의 원산지로부터 다른 나라들로의 금은의 류동 및 이러한 나라들간의 이 추가분의 분배와의 사이에 구별을 두어야 한다.

로씨야나 캘리포니아나 오스트랄리아의 금광[239]의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현세기초엽 이래로 공급은 다만 마멸된 주화의 보상, 사치품재료로서의 보통의 사용, 아시아로의 은수출용으로 충분하였을따름이였다.

그러나 그 이후 첫째로는 미국과 구라파의 아시아에 대한 무역의 증대에 따라 아시아로의 은수출이 비상히 증대되였다. 구라파로부터 수출된 은은 대부분 추가된 금에 의하여 보상되였다. 그리고 또 새로 수입된 금의 일부분은 국내의 화폐류통에 의하여 흡수되였다. 1857년까지 약 3,000만파운드의 금이 추가적으로 영국의 국내류통으로 들어갔다고 추산되고있다.(14) 그밖에 1844년이래 구라파와 북아메리카의 모든 중앙은행들의 금속준비의 평균액은 증대되였다. 국내화폐류통의 증대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것을 수반하였다. 즉 공황후 그에 계

---

(14) 이것이 화폐시장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하는것은 W. 뉴마치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보여준다. [《은행법》, 1857년] (제1509호) 《1853년말경에는 공중사이에 큰 불안이 일어났다. 9월에는 잉글랜드은행은 련달아 세번 할인률을 인상하였다…10월초순에는…공중속에서 큰 불안과 경계가 나타났다. 이 공포와 불안은 11월말에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오스트랄리아로부터 500만의 귀금속이 도착함으로 하여 거의 완전히 제거되였다. 같은 일은 1854년 가을, 10월과 11월에 약 600만의 귀금속이 도착함으로 하여 반복되였다. 또 같은 일은 1855년 가을, 다 아는 흉분과 불안의 시기에도 9월, 10월 및 11월에 약 800만의 귀금속이 도착함으로 하여 반복되였다. 1856년말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언제나 금융상 곤난이 있을 때 금을 실은 배의 도착을 당연하고 충분한 구제책으로 생각하는데 습관된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는 나는 위원회의 거의 모든 위원들의 경험에 의하여 호소할수 있는바이다.》

속되는 침체기에는 보다 많은 금화가 국내류통으로부터 밀려나가서 류동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미 은행준비금이 보다 급속히 증대하였다는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금광이 발견된 이래 부의 증대에 수반하여 사치품용의 귀금속소비가 증대하였다.

둘째로, 금은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사이에서 귀금속은 부단히 이리저리 류동한다. 동일한 나라가 금은을 부단히 수입하고 또 부단히 수출한다. 결국 류출이 일어났는가 류입이 일어났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것은 오직 어느쪽으로의 운동이 우세하였는가 하는것뿐이다. 왜냐하면 단지 진동적이며 또 가끔 평행적인 운동들은 대부분 상쇄되여버리기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결과만을 보고 이 두 운동의 부단성과 대체로 평행적인 행정을 간과하는것이다. 귀금속의 과잉수입과 과잉초과나 수출은 다만 상품의 수입과 수출관계의 결과 및 표현에 불과한듯이 생각하는것이 보통인데 한편 그것은 상품무역과는 관계없는 귀금속자체의 수입과 수출관계의 표현이기도 한것이다.

셋째로, 수출과 수입중 어느것이 우세한가 하는것은 대체로 중앙은행의 금속준비의 증감에 의하여 측정된다. 이 척도가 어느 정도 정확한가 하는것은 물론 우선 은행업무가 어느 정도 집중되고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왜냐하면 소위 국립은행에 축장되고있는 귀금속일반이 어느 정도로 전국의 축장금속을 대표하는가 하는것은 이 은행업무의 집중정도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런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측도기는 정확한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추가수입은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국내류통과 금은의 사치적사용의 증대에 의하여 흡수되기때문이다. 그밖에 또 이러한 추가수입이 없이도 금주화는 국내류통을 위하여 끌려나올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의 동

시적증가 없이도 금속준비가 감소될수 있기때문이다.

넷째로, 금속수출이 류출(drain)이라는 형태를 취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감소운동이 장기간 계속되여 감소가 운동의 경향으로서 나타나고 은행의 금속준비가 그 중등수준보다 훨씬 낮게 내려가 드디여 그 준비금의 중등의 최저한도에까지 감소되는 경우이다. 이 중등의 최저한도는 그것이 은행권태환의 보증 등에 관한 립법에 의하여 매 개별적경우들에서 각이하게 규정되여있는 한에서는 많게나적게나 임의로 확정되여있다. 이러한 류출이 영국에서 허용되는 량적한계에 관하여서는 뉴마치가 《은행법》(1857년) 증언(제1494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면 대외거래에 어떤 변동이 생겼기때문에 금속류출이 300만 내지 400만파운드를 초과할수 있으리라는것은 있음직한 일이 아니다.》

1847년에는 10월 23일에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의 최저수준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1846년 12월 26일에 비하여 519만 8,156파운드의 감소를 보여주며 또 1846년의 최고수준(8월 29일)에 비하여 645만 3,748파운드의 감소를 보여준다.

다섯째로, 소위 국립은행의 금속준비의 사명—그러나 결코 그것만으로 금속준비의 크기를 규제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금속준비는 국내거래 및 대외거래가 마비되기만 해도 증대될수 있기때문이다—은 세가지이다. 1) 국제적지불을 위한 준비금, 한마디로 하면 세계화폐의 준비금. 2) 팽창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는 국내금속류통을 위한 준비금. 3) 은행의 기능과 관련되여있고 단순한 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인 예금지불이나 은행권태환을 위

한 준비금. 그러므로 이 금속준비는 이상 세 기능의 어느 하나에 영향주는 사정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을수 있다. 즉 국제적준비금으로서는 지불차액—이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든간에 또 이것이 무역차액과 어떤 관계에 있든간에—의 영향을 받을수 있으며 국내금속류통의 준비금으로서는 이 류통의 확장 또는 수축의 영향을 받을수 있다. 제3의 기능, 즉 보증금으로서의 기능은 금속준비의 독립적운동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이중으로 작용한다. 만약 국내류통에서 금속화폐(따라서 또 은을 가치척도로 하는 나라들에서는 은화)를 대신하는 은행권이 발행된다면 준비금의 제2의 기능은 없어진다. 그리고 이에 복무하였던 귀금속의 일부분은 계속하여 외국으로 나갈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내류통을 위하여 금속주화의 끌어냄이 생기지 않으며 또 동시에 류통하고있는 금속주화의 일부분의 부동화에 의한 금속준비의 일시적보강도 수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예금지불이나 은행권의 태환을 위한 금속준비의 최저한도만은 어떤 사정하에서도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면 이것은 독특한 방식으로 금의 류출 또는 류입의 작용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준비금중 은행이 어떤 사정하에서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또는 은행이 다른 날에 무용한것으로서 내놓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것이다. 순수한 금속류통과 은행업이 집중된 상황하에서는 은행은 그 금속준비를 마찬가지로 그 예금의 지불을 위한 보증으로서 보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리고 금속이 류출된다면 1857년에 함부르그에서 일어났던것과 같은 공황이 일어날수 있을것이다.

여섯째로, 대개 1837년과 같은것을 제외한다면 현실적공황은 언제나 환자시세가 전환된후 즉 귀금속의 수입이 다시

수출을 초과한 때에 비로소 일어난것이다.

1825년에는 현실적파국은 금의 류출이 중지된 다음에 일어났다. 1839년에는 금의 류출이 일어났으나 파국에는 이르지 않았다. 1847년에는 금류출은 4월에 중지되였고 파국은 10월에 닥쳐왔다. 1857년에는 외국으로의 금류출은 11월초이래 중지되였고 11월도 늦게야 비로소 파국이 왔다.

이 점은 1847년 공황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이 경우에는 금류출은 비교적 경미한 전(前)공황을 일으킨후 4월에는 이미 중지되였으며 그후 진정한 상업공황이 10월에 이르러 비로소 일어났다.

다음의 증언은 1848년의 상업곤경에 관한 상원비밀위원회에서 한것들이다. 증언은 1857년에야 비로소 인쇄되였다(《상업곤경》, 1848～1857년으로서도 인용하였다).

투크의 증언.

《1847년 4월에는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공황과 같은것이였지만 비교적 단기간 계속되였고 또 이렇다 할만한 상업적파산도 수반하지 않았다. 10월에는 핍박은 4월의 어느 시기보다 훨씬 심하였으며 거의 전대미문의 수의 상업적파산이 일어났다》(제2996호).—《4월에는 환자시세 특히 미국에 대한 환자시세는 우리로 하여금 매우 큰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거액의 금을 수출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잉글랜드은행은 비상한 노력에 의하여서만 겨우 금류출을 정지시키고 환자시세를 올릴수 있었다》(제2997호).—《10월에는 환자시세는 영국에 유리하였다》(제2998호).—《환자시세의 전환은 이미 4월의 제3주에 시작되였다》(제3000호).—《환자시세는 7월과 8월에 변동하였으며 8월초부터는 시세가 언제나 영국에 유리하였다》(제3001호).—8월중의 금류출은 《국내류통을 위한 수요로부터 일어났다》[제3003호].

잉글랜드은행 총재 J. 모리스는 말한다. 1847년 8월이래

환자시세는 영국에 유리하게 되였고 그때문에 금의 수입이 일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은행의 금속보유고는 감소되였다.

《220만파운드의 금이 국내수요로 말미암아 국내로 나갔다》(제137호).—이것은 한편으로는 철도건설에서의 로동자의 고용의 증대에 의하여 설명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황시기에 자기 자신의 금준비를 가지려고 하는 은행가들의 념원》에 의하여 설명된다(제147호).

잉글랜드은행의 전 총재였고 1811년이래 이 은행의 리사였던 파머는 말한다.

(제684호) 《1847년 4월중순부터 1844년의 은행법이 정지된 그날까지[①]의 전 기간을 통하여 환자시세는 영국에 유리하였다.》

그러므로 1847년 4월에 독립적인 화폐공황을 일으킨 금속류출은 이 경우에도 역시 공황의 전조일따름이였으며 공황이 일어나기전에 이미 방향을 바꾸고있었다. 1839년에는 사업의 부진이 매우 심하여 큰 금속류출이—곡물대금 등으로서—일어났으나 공황도 화페공황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곱째로, 전반적공황이 종식되면 금은은 다시—그 생산국들로부터의 새로 생산된 귀금속의 류입을 도외시한다면—이전에 각국의 특수한 준비금으로서 균형을 유지하여 존재하였던 때와 같은 비률로 분배된다. 다른 사정들이 동등하다면 각국에 있는 금은의 상대적량은 그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노는 역할에 의하여 규정될것이다. 금은은 정상적수준보다 더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로부터 흘러나와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간다. 이러한 류출입운동은 각이한 국가의 준비금사이로의

① 1857년 11월 12일.—편집자

금은의 시초의 분배를 회복시킬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는 여러가지 사정들의 작용에 의하여 매개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환자시세를 고찰할 때에 언급될것이다. 정상적인 분배가 회복되면—이 점을 넘어서—우선 증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류출이 나타난다. {두말할것없이 이 최후의 문구는 다만 세계화폐시장의 중심으로서의 영국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F. 엥겔스}

여덟째로, 금속의 류출은 대개 외국무역상태의 변화의 징조이며 이 변화는 또한 사정이 다시 공황으로 향하여 성숙되고있다는 전조인것이다. (15)

아홉째로, 국제수지는 아시아에는 순차이고 구라파 및 미국에는 역차일수 있다. (16)

귀금속의 수입은 주로 두 시기에 일어난다. 한편으로는 리자률이 낮은 제1단계에서인데 이 단계는 공황의 뒤에 나타나며 생산의 축소를 표시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리자률은 상승하지만 아직 중등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제2단계에서이다. 이 단계에서는 환류는 쉽게 실현되며 상업신용은 크고 따라서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생산의 확대에 비례하여서는 증

---

(15) 뉴마치에 의하면 외국으로의 금의 류출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인에서 일어날수 있다. 1) 순 무역적인 원인에서. 즉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경우. 례컨대 1836년과 1844년사이와 그리고 또 1847년과 같은 경우인데 주로 곡물의 수입이 큰때문에 일어났다. 2) 영국의 자본을 외국에 투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례컨대 1857년의 인도의 철도에 대한 투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3) 외국에서의 최종적인 지출을 위하여. 1853년과 1854년 동방에서의 전쟁목적의 지출이 그것이다.

(16) (제1918호) 뉴마치 《만일 당신이 인도와 중국을 함께 고려한다면, 만일 당신이 인도와 오스트랄리아간의 거래를,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중국과 합중국간의 거래를 고려에 넣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에 거래가 3각거래이고 결산이 우리의 중개에 의하여 실시된다면…그 경우에는 무역수지는 영국에만 역차였을뿐만아니라 프랑스와 합중국에도 역차였다는것은 옳은것이다》 (《은행법》, 1857년).

대하지 않는다. 대부자본이 비교적 풍부한 이 두 단계에서는 금은의 형태로, 즉 우선 대부자본으로서밖에 기능할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의 과잉한 류입은 리자률에, 따라서 또 전체 사업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이 벌써 순조롭지 못하고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되여있고 외관상의 번영은 오직 신용에 의해서만 유지되게 되면, 따라서 이미 대부자본에 대한 매우 강한 수요가 존재하며 그렇기때문에 리자률이 적어도 중등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귀금속의 류출, 그 련속적인 심한 수출이 나타난다. 바로 귀금속의 류출에서 반영되는 이러한 제 사정하에서는 직접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 형태에 있는 자본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는 영향은 크게 강해진다. 그것은 직접 리자률에 작용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리자률의 상승은 신용거래를 축소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대시키며 그 모든 보조수단을 과도하게 긴장시킨다. 그때문에 이 시기는 파국의 전조로 되는것이다.

뉴마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은행법》, 1857년).

(제1520호)《그러면 류통하는 수형의 액은·리자률이 증대함에 따라 증대하는가?—그렇다고 생각된다.》—(제1522호)《평온한 보통의 시기에는 원장(元帳)은 교환의 현실적도구이다. 그러나 곤난들이 생기면 례컨대 내가 든것과 같은 제 사정하에서 잉글랜드은행의 할인률이 인상되면…그 경우에는 거래는 자연히 수형의 발행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수형들은 계약된 거래의 법률적증거로 복무하는데 보다 적합할뿐만아니라 또한 그 이상의 구입을 하는데도 보다 적합하며 무엇보다도 자본을 차입하기 위한 신용수단으로서 복무할수 있는것이다.》

게다가 또 사정이 어느 정도 절박하여 잉글랜드은행이 할인률을 인상하면—그와 동시에 잉글랜드은행은 자기가 할

인하는 수형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가할것이라는것도 예상된다—할인률이 점점 높아질것이라는 일반적불안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그리고 우선 신용의 기사는 미래의것을 할인받아 주어진 순간에 될수 있는대로 많은 신용수단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상술한 리유는 다음과 같은것으로 된다. 즉 수입된것이든 수출된것이든간에 귀금속의 단순한 량이 그 자체로서 작용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으로서의 귀금속의 특수한 성격에 의하여 작용하는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르내리는 천평의 한쪽 저울판에 털 하나를 더 올려놓아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데 충분한 그 털과 마찬가지로 작용하는것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작용하는가 하면 어느쪽이든 한쪽보다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사정하에서 그것이 가해지기때문이다. 이러한 리유가 없다면 500만파운드로부터 800만파운드의 금류출—이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의 한계이다—이 어떻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하는것을 전혀 리해할수 없을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이 조금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것은 영국에서 평균적으로 류통하고있는 7,000만파운드의 금과 비교하더라도 보잘것없는것인데 영국과 같은 생산규모하에서는 사실상 아주 미소한 크기이다.(17) 그러나 바로 신용제도 및 은행제도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모든 화폐자본을 생산에 복무하도록 강제하는(또는 결국 같은것으로 되지만 모든 화폐수입을 자본으

---

(17) 레컨대 웨걸린의 우스운 대답을 보라. 거기서 그는 500만의 금류출은 같은 액의 자본의 감소라고 말하고있으며 그것으로써 현실적산업자본의 무한히 보다 큰 가격등귀나 가치감소, 팽창이나 수축의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직접 현실적자본량의 팽창이나 수축(그 소재적요소들로 본)의 징후로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보다 못지 않게 우스운것이다.

로 전화시키는)것으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순환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금속준비를 그것이 놀아야 할 기능을 더는 놀수 없게 되는 그러한 최소한도로 축소시킨다. 실로 이러한 발달한 신용제도 및 은행제도야말로 전체 유기체의 이 과민성을 조성하는것이다. 덜 발전한 생산단계에서는 평균적크기에 비한 저장의 증감은 상대적으로 말하여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마찬가지로 매우 많은 금류출조차도 그것이 산업순환의 위험기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말하여 그리 영향이 없는것이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금속류출이 흉작 등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우는 도외시되였다. 이 경우에는 생산의 균형의 돌연적인 큰 교란이 일어나고 그 표현이 금류출인데 이 류출의 영향을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 영향은 생산이 맹렬히 진행되는 시기에 이러한 교란이 일어나면 그만큼 더 큰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권의 태환보증으로서의, 또 신용제도 전체의 추축으로서의 금속저장의 기능도 도외시하였다. 중앙은행은 신용제도의 추축이다. 그리고 금속준비는 또 이 은행의 추축이다.(18) 신용주의로부터 중금주의[229]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것은 이미 제1부 제3장의 지불수단의 론술에서 서술한바와 같다.[257]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금속기초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실재적부의 최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것은 투크에 의하여도 로이드 오버스턴에 의하여서도 인정되였다.

---

(18) 뉴마치(《은행법》, 1857년)—(제1364호)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는 사실상…중앙준비 또는 중앙금속준비이며 이에 기초하여 이 나라의 전체 거래가 진행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 나라의 전체 거래가 그 주위를 돌게 되는 추축이다. 나라의 기타 모든 은행들은 잉글랜드은행을 중앙준비소로서 또는 자기들의 경화준비를 끌어내야 하는 저수지로서 간주한다. 그리고 외국환자시세의 영향은 언제나 바로 이 준비소—이 저수지에 미치는것이다.》

론쟁의 중심은 다만 플라스냐 마이나스냐, 또 불가피한것에 대한 취급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느냐 보다 덜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것뿐이다.(19) 총생산에 비하면 문제로도 되지 않는 얼마 안되는 량의 금속이 제도의 추축으로서 인정되고있다. 그러므로 공황기에 추축으로서의 금속이 가지고있는 이 성격의 무시무시한 례증은 도외시하고라도 아주 미묘한 리론적이원론이 여기서 생기는것이다. 계몽된 경제학은 학자식으로 《자본》을 취급하는 동안은 금은을 사실상 제일 문제로 되지 않는, 제일 무용한 자본형태라고 최대의 경멸로서 내려보는것이다. 그런데 이 경제학이 은행제도를 취급하게 되면 모든것이 전도되여 금은은 특히 훌륭한 자본으로 되는것이며 이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로동의 모든 다른 형태는 다 희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금은은 부의 다른 모습으로부터 무엇에 의하여 구별되는가? 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구별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크기는 금은에 대상화된 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것이 아니라 부의 **사회적**성격의 독립적인 화신과 표현으로서 구별되는것이다. {사회적부는 오직 그 사적소유자인 개개인의 부로서만 존재한다. 그것이 사회적부로서 나타나는것은 오직 이러한 개개인이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를 서로 교환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생산하에서는 그들은 오직 화폐를 매개로 하여서만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화폐를 매개로 하여서만 개인적부는 사회적부로서 실현된다. 화폐속에, 이 물건속에 이 부의

(19) 《따라서 실제로 투크나 로이드나 다 금에 대한 과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리자률의 인상과 자본선대의 축소에 의하여 신용을 일찍 제한할것이라는것이다. 다만 로이드만은 그의 환상에 의하여 번잡한, 지어는 위험한 {립법적}제한들과 규정들을 만들고있는것이다》(《경제학자》지, 1847년 [12월 11일], 1418페지).

사회적성질이 구현되고있다.—F. 엥겔스) 따라서 부의 이 사회적정재는 사회적부의 현실적요소들과 나란히 또 그 외부에 피안의 존재로서, 물건으로서,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생산이 원활히 진행되는 동안은 이러한것은 망각된다. 신용은 역시 부의 사회적형태로서 화폐를 구축하며 그 자리를 빼앗는다. 생산의 사회적성격에 대한 신뢰야말로 생산물의 화폐형태를 다만 일시적인, 다만 관념적인것으로서 단순한 표상으로서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신용이 뒤흔들리면—이 단계는 현대 산업의 순환에서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출현한다—즉시로 모든 실재적인 부는 현실적으로 갑자기 화폐로, 금은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미친듯한 요구이지만 이 요구는 제도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것이다. 그리고 이 거액의 요구를 충족시킬 금은은 이 잉글랜드은행의 지하실에 있는 수백만파운드에 불과한것이다.(20) 그러므로 금류출의 영향중에는, 생산이 현실적으로 사회적생산으로서 사회적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이, 부의 사회적형태가 부의 외부에 있는 물건으로서 존재한다는 형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실상 자본주의체제에도 그 이전의 생산체제에도 이러한 체제가 상품거래와 사적교환에 기초하고있는 한에서는 공통한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체제에서 비로소 가장 명확히 그리고 허무맹랑한 모순과 배리의 가장 우습강스러운 형태로 나타나는것이다. 왜냐하면 1)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직

(20) 《금에 대한 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리자률을 인상하는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는데 당신은 전적으로 동의하는가?—채프먼》(대수형중매상회인 오버렌드—거니상회의 공동출자자)—《그것이 나의 의견이다. 우리의 금이 일정한 점까지 감소되였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즉시에 경종을 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이다. 우리는 불락하고있으므로 금을 외국으로 보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험을 각오하고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은행법》, 1857년 증언 제5057호).

접적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자 자신의 수요를 위한 생산은 가장 완전히 폐기되고 따라서 부는 오직 생산과 류통이 엉킨것으로서 표현되는 사회적과정으로서만 존재하기때문이며 2) 신용제도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적생산은 부와 그 운동의 이 금속적제한을, 물적인 동시에 환상적인 제한을 부단히 폐기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이 제한에 부딪치기때문이다.

공황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나타난다. 즉 모든 수형, 유가증권, 상품을 단번에 그리고 동시에 은행화폐로 바꾸어야 하며 그리고 일체의 은행화폐를 모두 금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난다.

II. 환 자 시 세

{화폐금속의 국제적운동의 청우계는 다 아는바와 같이 환자시세이다. 만약 영국이 독일에 지불하는것이 독일이 영국에 지불하는것보다 많다면 런던에서는 파운드로 표시된 마르크의 가격이 오르고 함부르그와 베를린에서는 마르크로 표시된 파운드의 가격이 내린다. 만약 독일에 대한 영국의 지불채무의 이러한 초과가 례컨대 영국에서의 독일의 구입의 초과 등에 의하여 다시 상쇄되지 않는다면 독일앞으로의 마르크수형에 대한 파운드가격은 영국으로부터 독일로 수형 대신에 금속—금화 또는 금덩이—을 보내는것이 유리한것으로 될 때까지 오르지 않을수 없다. 이것이 전형적인 과정이다.

만약 이러한 귀금속수출이 보다 대규모로 되고 또 보다 오래 계속된다면 영국의 은행준비금은 줄어들고 영국의 화폐시장은 잉글랜드은행을 선두로 하여 보호책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이 보호책은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주로 리자률을 높이는것이다. 매우 많은 금류출이 있을 경우에는 화폐시장은 보통 어렵게 된다. 즉 화폐형태의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현저하게 초과하며 이때문에 리자률이 높아지는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리하여 잉글랜드은행은 사태에 대응하는 할인률을 정하며 그것이 시장에서 실시되는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류출이 보통의 거래관계이외의 사정들로 하여(례컨대 외국차관, 외국에서의 투자 등등에 의하여) 생기며 런던의 화폐시장 그 자체가 리자률의 효과적인 인상을 결코 시인하지 않는 일도 있는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잉글랜드은행은 《공개시장》에서의 차입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문자그대로 《화폐를 귀하게 만들고》 리자의 인상을 시인하든가 또는 필요로 하게 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것은 잉글랜드은행으로서는 해마다 더 어렵게 된다.—F. 엥겔스}

그러면 리자률의 이러한 인상이 환자시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은 1857년의 은행립법에 관한 하원위원회에서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행법》 또는 《은행위원회》, 1857년으로서 인용)들이 보여준다.

죤 스튜어트 밀.

(제2176호) 《사업이 곤난하게 되면…유가증권의 가격이 크게 저락한다…외국인들이 이 영국에서 철도주를 구입하게 하거나 외국철도주의 영국인소유자들이 그것을 외국에서 판다…그만큼 금의 이전이 방해된다.》—(제2182호) 《각이한 나라들간의 리자률의 평균화나 상업적기압의 평균화는 보통 은행업자들과 유가증권거래업자들의 일대 부유계급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 계급은…가격이 오를것 같은 유가증권을 구입하려고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있다…그들이 구입하기에 적당한 장

소는 외국으로 금을 부송하는 나라일것이다.》—(제2184호)《이러한 자본투하가 1847년에는 패 큰 규모로 실시되여 금의 류출을 감소시키게 되였다.》

잉글랜드은행의 전 총재이며 1838년이래 이 은행의 리사인 J. G. 하버드—

(제2545호)《대량의 구라파의 유가증권이 있으며…그것은 구라파의 극히 각이한 화폐시장들에서 류통력을 가지고있는데 이 증권은 그것이 한 시장에서 1% 또는 2% 저락하면 곧 사들여서 그 가치가 아직도 유지되고있는 다른 시장들로 이송한다.》—(제2565호)《외국은 영국상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있는것이 아닌가?—매우 많은 액의 채무를 지고있다.》—(제2566호)《그러면 이러한 채무의 회수만으로도 영국에서의 거액의 자본축적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은가?—1847년에 우리 나라의 지위는 결국 미국이나 로씨야가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차용한 몇백만인가를 우리가 청산하는데 의하여 회복되였다.》

{동시에 영국도 역시 이 나라들에 대하여 곡물대금으로 《몇백만인가》를 채용하고있었고 영국인채무자들의 파산에 의하여 그 부채도 대부분 《청산》하였던것이다. 제30장 31페지에 인용한 1857년의 은행법 보고를 보라.[①]}

(제2572호)《1847년에는 영국과 빼께르부르그사이의 환자시세는 매우 높았다. 1,400만(금준비를 넘는)이라는 법정한도에 구속됨이 없이 은행권을 발행할수 있는 권리를 잉글랜드은행에 부여한 정부서한이 나왔을 때 그 조건은 할인률이 8%로 유지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 할인률로는 빼께르부르그로부터 런던으로 금을 보내게 하고 그것이 도착하면 판매된 금에 대하여 발행된 3개월불수형이 만기되기까지 그 금을 8%로 대부하는것은 유리한 거래였다.》—(제2573호)《모든 금거래에 있어서는 많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

① 본권 558페지를 보라.—편집자

는 환자시세이며 또 수형(금에 대하여 발행된)이 만기되기까지 화폐를 투하할수 있는 리자률이다.》

아시아와의 환자시세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한것은 일방으로는 영국의 아시아와의 환자시세가 불리한 경우에 영국은 영국의 중개에 의하여 아시아로부터의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보여주기때문이다. 타방으로는 윌슨씨가 이 경우에도 귀금속의 수출이 환자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일반의 수출이 환자시세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시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두 경우에 다 문제인것은 지불수단이나 구매수단으로서의 수출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수출이다. 우선 자명한것은 인도에서 철도부설에 투하하기 위하여 몇백만파운드를 인도로 귀금속으로 보내는가 또는 철도레루로 보내는가 하는것은 어느것이나 다 같은 자본액을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는 각이한 형태에 불과한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전은 보통의 상업적거래의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것이며 수출국은 이것에 대하여 차후의 이 철도의 수익으로부터의 년수입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보상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만약 이 수출이 귀금속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 수출은 그것이 귀금속이기때문에, 그리고 귀금속으로서 직접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이고 또 전체 화폐제도의 기초이기때문에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반드시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상술한 사정하에서는 이 귀금속을 수출하는 나라의 화폐시장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리자률에 직접 영향을 미칠것이다. 그것은 또 마찬가

지로 직접 환자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귀금속이 수출되는것은 런던의 화폐시장에 공급되는, 례컨대 인도앞으로의 수형만으로써는 이러한 특별송금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기때문이며 또 그러한 한에서이다. 따라서 인도앞으로의 수형의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환자시세가 일시적으로 영국에 불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국이 인도에 대하여 부채가 있기때문이 아니라 영국이 인도에 비상히 큰 금액을 보내야 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인도에로의 귀금속의 수출은 장기간 계속된다면 그것은 영국상품에 대한 인도의 수요를 증가시키도록 작용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구라파의 상품에 대한 인도의 소비능력을 증가시키는것이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자본이 레루 등등의 형태로 수출된다면 그것은 환자시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다. 왜냐하면 인도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화폐시장에도 영향을 줄리는 없다. 윌슨은 이러한 특별투자는 화폐융통에 대한 특별한 수요를 일으켜 리자률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것으로써 그러한 영향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하는것은 완전히 잘못일것이다. 레루가 어디로 부송되여 부설되든간에, 영국땅에서든 또는 인도땅에서든 그 레루는 일정한 분야에서의 영국의 생산의 일정한 확장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생산의 확장은 매우 광범한 한계내에서도 리자률의 인상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어리석은것이다. 화폐융통 즉 신용조작이 개입하는 거래의 금액은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작은 리자률이 변하지 않는 주어진 조

건하에서도 증가될수 있다. 40년대의 영국에서의 철도열시기에 실제로 그러하였다. 리자률은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현실적자본 즉 여기서는, 상품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는 이 상품들이 외국으로 보내게 된것이든 국내소비를 위한것이든간에 화폐시장에 대한 영향은 완전히 동일하다는것은 명백하다. 거기에 구별이 생길수 있는것은 외국에서의 영국의 투자가 그 상업적수출—지불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또 자본의 환류를 발생시키는 수출—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뿐일것이다. 또는 이러한 투자가 일반적으로 이미 신용의 과도한 긴장이나 투기적조작의 개시의 징조인 한에서만일것이다.

아래에서는 윌슨이 질문하고 뉴마치가 대답한다.

(제1786호)《당신이 앞에서 동아시아로 보낼 은수요에 관하여 말한데 의하면 부단히 동아시아로 다액의 저장금속이 수송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견으로는 인도와의 환자시세는 영국에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물론 있다…내가 아는바에는 련합왕국의 인도에 대한 수출의 실질가치는 1851년에는 742만파운드였다. 이것에는 인도회사의 수형의 금액, 즉 동인도회사가 자기 자신의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도로부터 가져오는 자금의 액을 첨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형의 금액은 그해에는 320만파운드였다. 그리하여 련합왕국의 인도에 대한 총수출은 1,062만파운드에 달하였다. 1855년에는…상품수출의 실질가치는 1,035만파운드로 증가하였다. 인도회사의 수형은 370만파운드였다. 따라서 총수출액은 1,405만파운드였다. 인도로부터 영국으로의 상품수입의 실질가치를 확정할 자료는 1851년에 대한것은 없다고 생각하나 1854년과 1855년에 대해서는 있다. 1855년에는 인도로부터 영국으로의 상품수입의 총실질가치는 1,267만파운드였다. 그리고 이 금액을 1,405만파운드와 비한다면 량국간의 직접무역에서 차액은 영국에 있어서는 138만파운드의 플라스로 된다.》

이에 대하여 윌슨은 환자시세는 간접무역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례컨대 인도로부터 오스트랄리아나 북아메리카에로의 수출은 런던앞으로의 수형에 의하여 지불되며 따라서 그것이 환자시세에 주는 영향은 상품이 직접 인도로부터 영국으로 수송되는 경우와 꼭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합해서 본다면 차액은 영국에 역차로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도에 부단히 아편대금으로서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또 영국은 중국에 여러가지 지불을 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은 이러한 두름길을 거쳐 인도로 가기때문이다(제1787호, 제1788호).

다음으로 제1791호에서 윌슨은 자본이 《레루나 기관차의 형태로 수출되든 또는 금속화폐의 형태로 수출되든》 환자시세에 대한 영향은 동일한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한다. 이에 대하여 뉴마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것은 완전히 옳다. 즉 최근 수년간에 철도부설을 위하여 인도로 부송된 1,200만파운드는 인도가 일정한 기한에 영국에 지불하여야 하는 년부금을 구입하는데 복무하였다고.

《귀금속시장에 대한 직접적영향을 문제로 하는 한 이 1,200만파운드의 투자는 화폐로서의 현실적투자를 위하여 금속이 수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한에서이다.》

(제1797호)(웨걸린의 질문)《만약 이 철(레루)의 대금의 환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째서 그것이 환자시세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수 있겠는가?—나는 투자중 상품의 형태로 수출되는 부분이 환자시세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량국간의 환자시세는 한 나라에서 공급되는 채무증서 또는 수형의 량을 다른 나라에서 그것에 대하여 공급하는 량과 비교한것에 의하여,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이 합리적인 환자시세리론이다. 1,200만의 수출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1,200만은 우선 이 나라에서 응모된것이다. 만일 그 사업이, 이 1,200만이 전부 칼커타나 봄베이나 마드라스에서 경

화로 투하되는 그러한 성질의 거래라고 한다면…이러한 돌연한 수요는 은가격과 환자시세에 강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것은 바로 동인도회사가 그의 환자수형을 300만으로부터 1,200만으로 증가시킨다고 래일이라도 통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1,200만의 절반은…영국에서 상품의 구입에…레루, 목재 및 기타 재료의 구입에…투하된다…그것은 인도로 수출되는 어떤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영국 자체내부에서 수행되는 영국자본의 투하이며 다만 그것일따름이다.》—(제1798호)(웨걸린)《그러나 철도에 필요한 철이나 목재와 같은 상품의 생산은 외국상품의 큰 소비를 조성하며 그것은 환자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것이 아닌가?—확실히 그렇다.》

지금 윌슨은 철은 그 큰 부분이 로동을 대표하며 또 이 로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로임의 큰 부분은 수입상품을 대표하다고 생각하고(제1799호)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1801호)《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수입상품의 소비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을 우리가 생산물의 형태로든 다른 어떤 형태로든 아무런 송금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한다면 이것은 환자시세를 우리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것이 아닌가?—이 원리는 바로 영국에서 철도대투자시대》{1845년}《에 나타난것이다. 3년, 4년 또는 5년간 련달아 당신들은 철도에 3,000만파운드를 투하하였으며 그것도 그 거의 전부를 로임에 투하하였다. 당신들은 3년동안에 철도, 기관차, 차량, 정거장의 건설에 의하여 전체 공장지구들을 합한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자기들의 로임을 차, 설탕, 주류 및 기타 외국상품들의 구입에 썼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입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이 대투자가 진행되는 동안에 영국과 기타 나라들간의 환자시세가 크게 교란되지 않았다는것은 확실하다. 귀금속의 류출은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류입이 있었다.》

(제1802호) 윌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영국과 인도간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환자시세가 평가(平价)인

경우에는 철과 기관차의 특별수출은 《인도와의 환자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뉴마치에게는 레루가 자본투하로서 수출되며 그 대가를 인도는 어떤 형태로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한 리해될수 없는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첨가하여 말한다.

《어떠한 나라도 거래상대인 모든 나라들과의 환자시세가 장기간에 걸쳐 불리할수는 없다는 원리는 나도 동의한다. 한 나라와의 불리한 환자시세는 필연적으로 다른 한 나라와의 유리한 환자시세를 조성한다.》

이에 대하여 윌슨은 범속한 반론을 대놓는다.

(제1803호)《그러나 자본이 어떠한 형태로 부송되든 자본의 이전이란것은 동일하지 않은가?—채무를 말하는 한에서는 물론 그렇다.》—(제1804호)《그러면 당신이 귀금속을 보내든 상품을 보내든 인도에서의 철도부설이 이 나라의 자본시장에 주는 영향은 동일하다는것인가? 그리고 전부가 귀금속으로 보내는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가치를 높인다는것인가?》

철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여하튼 그것은 레루에 포함되여있는 《자본》의 《가치》가 증대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문제는 화폐자본의 가치, 리자률이다. 윌슨은 화폐자본과 자본일반을 동일시하려는것이다. 간단한 사실은 우선 영국에서 인도의 철도를 위하여 1,200만의 응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시세와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며 또 1,200만의 용도도 화폐시장에 대하여는 역시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화폐시장이 형편이 좋으면 이것은 결코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는것이며 마치도 1844년과 1845년의 영국의 철도주에 대한 응모가 역시 화폐시장에 아무런 영

향도 주지 않았던것과 마찬가지이다. 화폐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곤난하게 된다면 그때문에 리자률이 영향을 받는 일이 확실히 있을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상승의 방향에서 영향을 받을뿐이고 이것은 실상 윌슨의 리론에 의하면 환자시세가 영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즉 귀금속의 수출의 경향을, 인도로의 수출이 아니라도 여하간 그 어느 나라로의 수출을 저지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윌슨씨는 하나의 문제로부터 다른 하나의 문제로 뛰여넘었다. 질문 제1802호에서는 환자시세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제1804호에서는 《자본의 가치》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두가지 사물이다. 리자률은 환자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환자시세는 리자률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환자시세가 변동하여도 리자률은 변동하지 않을수 있으며 또 리자률이 변동하여도 환자시세는 변동하지 않을수 있다. 외국에 자본을 보내는 경우에 다만 수송되는 자본형태의 차이만으로 그 영향에 이러한 차이가 조성된다는것, 즉 자본의 형태의 차이, 그것도 우선 자본의 화폐형태가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다는것, 이러한 경제학적계몽과 완전히 모순된다는것은 윌슨의 머리속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 윌슨에 대한 뉴마치의 대답은 윌슨이 이렇게 돌연적으로, 그리고 리유도 없이 환자시세로부터 리자률로 뛰여넘는것을 그에게 지적해주지 않는 한에서는 일면적인것이다. 뉴마치는 앞에서 인용한 질문 제1804호에 대하여 불확실하고 애매하게 대답한다.

《1,200만이 조달되지 않으면 안될 때 이 1,200만을 귀금속으로 보내는가 재료로 보내는가 하는것은 일반적리자률을 문제로 하는 한에서는 물론 어느것으로 하든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다음에 정반대의것을 말하기 위하여서는 이 《그렇지만》은 훌륭한 다리이다) 나는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요한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은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한 경우에는 600만파운드는 즉시 환류할것이기때문이다.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는 환류하지 않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600만이 이 나라에서 투하되는가 또는 전부 수출되는가에 따라 약간의 (얼마나 명확한가!) 차이가 생길것이다.》

600만이 즉시 환류할것이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600만파운드가 영국에서 지출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레루, 기관차 등등으로 존재하고 인도로 수송되여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다만 그 가치가 비로소 감가상각에 의하여 따라서 극히 완만하게 돌아올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600만의 귀금속은 아마도 매우 빨리 현물로 돌아올것이다. 600만이 로임으로 지출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다 소비되여버린다. 그러나 그것을 선대하는데 사용된 화폐는 여전히 국내에서 류통하든가 또는 준비금을 형성한다. 동일한것은 레루생산자들의 리윤에 대하여서도, 또 600만중에서 그들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환류에 대하여 뉴마치가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고있는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것을 직접 말하지 않기 위하여서일따름이다. 즉 화폐는 국내에 남아있으며 그것이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는 화폐시장에 있어서의 차이는(류통이 보다 많은 경화를 삼킬지도 모른다는것은 도외시하고) 오직 이 화폐가 B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A의 계산에 의해서 지출된다고 하는 차이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자본이 귀금속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다른 나라에 이전되는 이러한 종류의 투자가 환자시세(그것도 자본이 투하되는 나라와의 환자시세가 아니다.)에 영향을 줄수 있는것은 오직 이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다

른 외국상품의 특별수입이 필요한 한에서이다. 그 경우에 이 생산은 이 특별수입을 결제하기 위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것은 신용으로 수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일어나는데 그 수출이 투자로서 진행되든 보통의 상업적목적으로서 진행되든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이 특별수입은 반작용적으로 례컨대 식민지나 합중국측에 영국상품에 대한 특별수요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앞에서[제1786호] 뉴마치는 동인도회사의 환자수형이 있기때문에 영국으로부터 인도에로의 수출은 수입보다 크다고 말하였다.① 찰즈 우드경은 이 점에 대하여 그에게 반대심문을 한다. 이렇게 영국의 인도에로의 수출이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초과하는것은 실지는 영국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있다는데서 생기는것이다. 즉 동인도회사(현재는 동인도정부)의 수형은 결국 인도로부터 징수되는 공물로 귀착된다. 례컨대 1855년에는 인도로부터 영국으로의 수입은 1,267만파운드, 영국의 인도에로의 수출은 1,035만파운드이며 인도의 순차는 225만파운드였다.

《만약 사태가 이것으로써 다라면 이 225만파운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도로 송금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인도회사의 요구가 나타난다. 인도회사는 자기가 인도의 제 주앞으로의 수형을 총액 325만파운드까지 발행할수 있다는것을 고시한다 (이 금액은 동인도회사의 런던에서의 경비와 주주들에 지불할 배당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되였던것이다) . 그리고 이것은 무역에서 생긴 225만파운드의 차액을 청산할뿐만아니라 또한 100만의 잉여를 낳는다》 (제1917호).

(제1922호)(우드) 《그러면 이러한 인도회사의 수형의 작용은 인도

---

① 본권 654~655페지를 보라.—편집자

에로의 수출을 증대시키는것이 아니라 그만큼 감소시킨다는것인가?》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인도로의 동액의 수출로써 메꿀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뉴마치씨는 이것을 영국인들은 이 370만파운드로 《선정》을 인도에 수입한다는것으로써 설명한다(제1925호). 영국인들에 의하여 수입된 《선정》이 어떤것이였는가를 우드는 인도대신으로서 매우 잘 알고있었으나 그는 정당하게 또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제1926호).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바와 같이 인도회사의 수형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수출은 선정의 수출이고 상품의 수출은 아니다.》

영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이나 외국투자를 위하여 많은 수출을 하므로—따라서 보통의 거래경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수입을 즉 부분적으로는 수출된 《선정》의 보상이고 부분적으로는 식민지와 기타 나라들에 투하된 자본으로부터의 수입인 공물, 즉 아무런 등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공물을 받고있는것이므로—영국이 이러한 공물을 어떤 대충(对充)수출도 없이 그저 먹어버린다면 환자시세에는 영향이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또 영국이 이러한 공물을 영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으로 다시 투하하여도, 례컨대 영국이 그만큼한 군수품을 크림에 보내도 환자시세에는 영향이 없다는것도 명백하다. 뿐만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영국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한—물론 이 수입은 아무런 등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공물로서 또는 이 무상의 공물과의 교환에 의하여 또는 보통의 거래경로에 의해서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영국은 그것을 소비할수도 있고 자본으로서 다시 새로 투하할수도 있다. 이렇든저렇든 환자

시세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것을 현명한 윌슨은 간과하고있다. 수입의 일부분이 국내생산물로 이루어지든 또는 외국생산물로 이루어지든간에—후자의 경우는 외국생산물과 국내생산물의 교환을 전제로 할따름이다—이 수입의 소비는 생산적인것이든 비생산적인것이든 생산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칠것이지만 환자시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하의 진술들도 이것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제1934호) 우드는 뉴마치에게, 크림으로의 군수품부송은 토이기와의 환자시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라고 질문한다. 뉴마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단지 군수품을 보내는것만으로 어떻게 필연적으로 환자시세에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것은 나는 모르겠으나 귀금속을 보내는것은 확실히 환자시세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즉 여기에서 그는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을 다른 자본으로부터 구별하고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윌슨이 질문한다.

(제1935호) 《만약 당신이 어떤 물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영국에 관해서는 《선정》이라는 형태로나 이전에 수출된 투하자본이라는 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대응하는 수출이 수행된적이 없는 매우 큰 액의 수입이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윌슨씨는 망각하고있다. 여하간 그것은 통례적인 무역운동에 들어가는 수입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수입품은 례컨대 미국의 생산물과 다시 교환된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물이 대응하는 수입이 없이 수출된다는것은 이 수입품의 가치가 등가의 대외류출없이 소비될수 있다고 하는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대충수출없이 얻어진것이며 따라서 무역수지에 들어가지 않고 소비될수 있는것이다.)

《그 경우에는 당신은 당신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지게 된 대외채무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이 수입을 이미 미리 례컨대 외국에서 부여된 신용에 의하여 지불하였다면 그것으로 인한 채무는 전혀 지지 않을것이며 문제는 국제수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다. 문제는 지출이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 하는것으로 귀착되는데 이렇게 소비된 생산물이 국내생산물인가 또는 외국생산물인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거래에 의하여 환자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수출이 대응하는 수입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대외채무는 지불되지 않기때문이다.—이것은 각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하다.》

월슨의 강의는 결국 다음과 같은것으로 귀착된다. 대응하는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은 모두 동시에 대응하는 수출을 수반하지 않는 수입이다. 왜냐하면 수출상품의 생산에는 외국상품, 즉 수입된 상품이 들어가기때문이다. 전제는 그러한 모든 수출은 지불되지 않는 수입에 기초하거나 또는 지불되지 않는 수입을 조성한다는것 즉 대외채무를 조성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정을 도외시하더라도 그릇된것이다. 즉 1) 영국은 자기가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 무상수입을 받는다는것, 례컨대 인도로부터의 영국의 수입의 일부분이 그것이다. 영국은 그 수입품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 교환할수 있고 이 수입품을 대충수입없이 수출할수 있다. 여하간 가치에 관하여서는 영국은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은것을 수출할따름이다. 2) 영국은 이미 수입품 레컨대 추가자본을 형성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대가를 지불하였을수 있다. 영국이 이 수입품을 비생산적으로, 레컨대 군수품으로서 소비하여도 그것은 미국에 대한 채무를 형성하는것이 아니며 미국과의 환자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뉴마치는 제1934호와 제1935호의 진술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고있으며 이에 관하여 우드는 질문 제1938호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약 환류가 수반됨이 없이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 (군사지출)의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의 어떠한 부분도 이 물품이 수송되여가는 나라에서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 나라와의 환자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겠는가? 토이기와의 무역이 보통의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영국과 토이기간의 환자시세가 크림에로의 군수품의 수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수 있겠는가?》

여기서 뉴마치는 침착을 잃는다. 그는 자기가 이와 동일한 간단한 질문에 제1934호에서 이미 옳게 대답한것을 잊어버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실제문제는 이미 다 론한것 같이 생각되며 이제는 매우 고상한 형이상학적토론에 들어서고있다.》

{윌슨은 자기의 주장을 다른 표현방식으로 보여주고있다. 즉 환자시세는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의 어떠한 자본의 이전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며 이 이전이 귀금속의 형태로 수행되든 또는 상품형태로 수행되든 마찬가지라고 한다. 물론 윌슨도 환자시세가 리자률에 의하여 특히 호상간의 환자시세가 문제로 되고있는 두 나라의 현행 리자률들의 관

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것을 알고있다. 지금 그가 자본의 과잉 즉 우선 귀금속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과잉은 리자률에 대하여 결정적영향을 준다는것을 론증할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목표에 이미 일보 접근하고있는것이다. 그 경우에 이 자본의 큰 부분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것은 두 나라에서 리자률을, 그것도 반대방향으로 변동시키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제2차적으로는 두 나라간의 환자시세도 변동시키지 않을수 없다.—F. 엥겔스}

다음으로 그는 당시 그가 편집하던 《경제학자》지(1847년, 574페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귀금속을 포함한 각종 재고가 큰데 의하여 표시되는 자본과잉은 필연적으로 상품일반의 가격저하를 초래할뿐만아니라 자본의 사용에 대한 리자률의 가일층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1). 만약 우리의 수중에 앞으로 2년동안 이 나라에 소용될수 있는 충분한 상품재고가 있다면 이 상품에 대한 일정한 기간의 처분권은 재고가 겨우 2개월분밖에 없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낮은 률로 얻을수 있다(2). 모든 화폐대부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수행되든간에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의 상품처분권의 이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이 너무 많으면 화폐리자는 낮지 않으면 안되며 상품이 결핍하면 화폐리자는 높지 않으면 안된다(3). 만약 상품이 보다 풍부하게 류입된다면 판매자의 수는 구매자의 수에 비하여 증가할것이다. 그리고 상품량이 직접적인 소비의 욕망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상품의 더욱 더 많은 부분이 앞으로의 사용을 위하여 저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재고가 몇주일동안에 확실히 전부 판매될수도 있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후불 또는 신용으로 상품을 판매할것이다(4).》

명제 (1)에 관하여 지적하여야 할것은 공황후의 시기에 언제나 그러한것처럼 생산의 **축소**와 동시에 귀금속의 큰 **류입**

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이다. 그다음의 단계에서는 주로 귀금속을 생산하는 나라로부터 귀금속이 류입될수 있다. 보통 다른 상품들의 수입은 이 시기에는 수출에 의하여 상쇄된다. 이 두 단계들에서는 리자률은 낮으며 다만 서서히 상승할따름이다. 왜 그런가 하는것은 이미 본바이다. 이 낮은 리자률은 《각종류의 큰 재고》의 영향이라는것이 없어도 언제나 설명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면 이 영향은 대체 어떻게 생기는가? 례컨대 면화의 낮은 가격은 방적업자 등등의 높은 리윤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왜 리자률이 낮아지는가? 확실히 차입자본으로써 얻을수 있는 리윤이 높기때문인것은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다만 현재의 사정하에서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이 리윤에 비례하여서는 증대하지 않기때문이다. 즉 대부자본이 산업자본과는 다른 운동을 하기때문이다. 《경제학자》지가 증명하는것은 이와 정반대의것 즉 대부자본의 운동은 산업자본의 운동과 동일하다는것이다.

명제 (2)는 처음에 2년분의 재고가 있다는 어리석은 전제를 무의미한것으로 되지 않는 점에까지 줄여서 생각한다면 상품시장의 공급과잉을 가정하는것이다. 이것은 물가의 저락을 일으킬것이다. 한 퉁구리의 면화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이전보다 적어도 될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결코 한 퉁구리의 면화를 구입하기 위한 화폐가 이전보다 싸게 차용될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화폐시장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만약 이 화폐가 보다 싸게 차용될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상업신용이 은행신용에 평상시보다 적게 의지하면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기때문이다. 시장을 공급과잉되게 하는 상품은 생활수단이거나 또는 생산수단이다. 량자의 낮은 가격은 산업자본가의 리윤을 높인다. 그것이 산업자본의 풍족과 화폐

융통에 대한 수요간의 대립(결코 일치가 아니다)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무슨 원인으로 리자를 저하시키는가? 사정은 상인과 산업가가 보다 쉽게 서로 신용을 줄수 있도록 되여있다. 이렇게 상업신용이 용이하게 되였기때문에 산업가나 상인이나 이전처럼 은행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자률은 낮아질수 있다. 이 낮은 리자률은 귀금속의 류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비록 이 량자는 서로 나란히 진행될수 있으며 또 수입품의 가격을 저하시키는것과 동일한 원인이 또한 수입되는 귀금속의 과잉을 조성할수 있는것이지만. 수입품시장이 현실적으로 공급과잉이라면 그것은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증명할것이다. 그리고 이 수요의 감소는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국내산업생산의 축소의 결과로서밖에는 설명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 생산축소는 또 낮은 가격으로의 과대한 수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설명될수 없을것이다. 완전히 황당한 이것은 물가의 저락이 리자의 저하와 동일하다는것을 증명하려는것이다. 이 량자는 동시에 병존할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운동이 진행되는 방향과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운동이 진행되는 방향의 대립의 표현으로서 병존하며 그것들의 동일성의 표현은 아니다.

명제 (3)에서는 상품이 과잉하게 존재한다면 왜 화폐리자가 낮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은 이상과 같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도 알수 없다. 만약 상품이 저렴하다면 일정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례컨대 이전의 2,000파운드 대신에 1,000파운드가 있으면 된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아마도 2,000파운드를 투하하고 그것으로 이전의 2배의 상품을 구입하고 아마도 내가 차용하지 않으면 안될 동일한 자본을 선대하는데 의하여 나의 사업을 확장할것이다. 나는 이제 이전과 같이

2,0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그러므로 상품시장에서의 나의 수요는 상품가격의 저락에 따라 증대하더라도 화폐시장에서의 나의 수요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만약 상품시장에서의 나의 수요가 감소된다면 즉 상품가격의 저락에 따라 생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제학자》 지의 모든 법칙들과는 모순되게 될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리윤은 증대된다 하더라도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것이다. 그러나 이 증가되는 리윤은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를 조성할것이다, 그런데 상품가격이 낮은것은 세개의 원인에서 생길수 있다. 첫째로는 수요의 부족에서이다, 이 경우에는 리자률은 낮은데 그것은 생산이 마비되기때문인것이며 상품이 저렴하기때문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저렴한것은 생산마비의 표현에 불과하기때문이다. 둘째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너무 크기때문이다. 이것은 공황을 초래하는 시장의 공급과잉 등등의 결과일수 있다. 그리고 또 공황중에서는 높은 리자률과 함께 나타나는 일도 있다. 셋째로는 상품의 가치가 저락하였으므로 동일한 수요를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써 충족시킬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다. 이 마지막 경우에는 왜 리자률이 저하되는가? 리윤이 증대하기때문인가? 만약 동일한 생산자본 또는 상품자본을 얻는데 이전보다 적은 화폐자본이면 되기때문이라면 이것은 다만 리윤과 리자는 호상 반비례한다는것을 증명할따름이다. 여하간 《경제학자》 지의 일반적명제는 그릇된것이다. 상품의 화폐가격이 낮은것과 리자률이 낮은것은 반드시 일치하는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물의 화폐가격이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는 리자률도 가장 낮아야 할것이며 농산물의 화폐가격이 가장 높은,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는 리자률도 가

장 높아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지는 화폐의 가치가 저락하여도 그것은 리자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있다. 100파운드는 여전히 105파운드를 가져온다. 100파운드가 이전보다 적은 가치를 가진다면 5파운드의 리자도 역시 그러한것이다. 이 비률은 원 금액의 가치증가 또는 가치감소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가치로서 보면 일정한 상품량은 일정한 화폐액과 같다. 만약 상품량의 가치가 오르면 이 상품량은 보다 큰 화폐액과 같다. 상품량의 가치가 내리면 반대로 된다. 만약 그 가치가 2,000이라면 그 5%는 100이다. 1,000이라면 5%는 50이다. 그러나 이것은 리자률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가운데서 합리한것은 같은 량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2,000파운드가 필요하다면 1,000파운드가 필요한 경우보다 많은 화폐융통이 요구된다는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는 리윤과 리자간의 반비례를 표시할따름이다. 왜냐하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요소들이 저렴하여짐에 따라 리윤은 증대하고 리자는 내리기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또 실제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다. 례컨대 면화는 방사와 직물에 대한 수요가 없기때문에 저렴하여질수 있다. 또 면방직업에서의 큰 리윤이 면화에 대한 큰 수요를 초래하기때문에 면화가 상대적으로 고가로 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면화의 가격이 낮기때문에 산업가의 리윤이 높아질수 있다. 하버드의 표는 리자률과 상품가격은 서로 전혀 관계없는 운동을 하는데 리자률의 운동은 금속준비와 환자시세의 운동에 정확히 적합하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①

① 본권 623~624페지를 보라.—편집자

《그러므로 상품이 과잉하게 현존한다면 화페리자는 낮지 않으면 안된다.》

고 《경제학자》지는 말한다. 이와 정반대의것이 공황때에 일어난다. 상품은 과잉이고 화페로 전화될수 없으며 따라서 리자률은 높다. 순환의 다른 한 단계에서는 상품에 대한 큰 수요가 있고 따라서 환류가 용이하지만 동시에 상품가격은 오른다. 그리고 환류가 용이하기때문에 리자률은 낮다. 《만약 그것(상품)이 적다면 화페리자는 높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그 반대의것이 공황후의 불경기에는 일어난다. 상품은 수요에 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해서 부족하며 리자률은 낮다.

명제 (4)에서는 시장이 공급과잉인 경우에는 상품소유자는 상품의 현존재고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비하여 싸게 방매될것이라—대체로 판매될수만 있다면—는것은 어지간히 명백한것이다. 그러나 왜 그때문에 리자률이 낮아지는가 하는것은 그리 명백하지는 않다.

시장이 수입상품으로써 공급과잉이 된다면 어떻게 하여서든 시장에 상품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유자들측으로부터의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기때문에 리자률은 상승할수도 있다. 또는 상업신용을 얻기가 용이하므로 은행신용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에 리자률은 저하될수도 있다.

《경제학자》지는 리자률의 상승과 화페시장에 대한 기타의 압박이 1847년의 환자시세에 준 급격한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것은 환자시세의 전환에

도 불구하고 금은 4월말까지 류출을 계속하였다는것이다. 이 경우의 전환은 5월초에야 비로소 일어났다.

1847년 1월 1일에는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는 1,506만 6,691파운드, 리자률은 $3\frac{1}{2}$%, 3개월불환자시세는 빠리에 대해서는 25.75, 함부르그에 대해서는 13.10, 암스테르담에 대해서는 $12.3\frac{1}{4}$이였다. 3월 5월에는 금속준비는 1,159만 5,535파운드로 감소되였고 할인률은 4%로 상승하였다. 환자시세는 빠리에 대해서는 $25.67\frac{1}{2}$로, 함부르그에 대해서는 $13.9\frac{1}{4}$로, 암스테르담에 대해서는 $12.2\frac{1}{2}$로 저락하였다. 금 류출은 계속되였다. 다음표를 보라.

1847년 월 일	잉글랜드은행의 귀금속준비 (파운드)	화폐시장	3개월불환자시세의 최고		
			빠리	함부르그	암스테르담
3월 20일	11,231,630	은행할인률4%	$25.67\frac{1}{2}$	$13.09\frac{3}{4}$	$12.2\frac{1}{2}$
4월 3일	10,246,410	은행할인률5%	25.80	13.10	$12.3\frac{1}{2}$
4월 10일	9,867,053	화폐 심히 부족	25.90	$13.10\frac{1}{3}$	$12.4\frac{1}{2}$
4월 17일	9,329,841	은행할인률$5\frac{1}{2}$%	$26.02\frac{1}{2}$	$13.10\frac{3}{4}$	$12.5\frac{1}{2}$
4월 24일	9,213,890	핍박	26.05	13.12	12.6
5월 1일	9,337,716	핍박증대	26.15	$13.12\frac{3}{4}$	$12.6\frac{1}{2}$
5월 8일	9,588,759	핍박최대	$26.27\frac{1}{2}$	$13.15\frac{1}{2}$	$12.7\frac{3}{4}$

[《경제학자》지 1847년 8월 21일]

1847년에는 영국으로부터의 귀금속의 총수출액은 860만 2,597파운드였다.

미국으로 ····· 3,226,411파운드
프랑스로 ····· 2,479,892파운드
한사동맹가입도시들로 ····· 958,781파운드
화란으로 ····· 247,743파운드

3월말의 환자시세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금류출은 아직도 옹근 한달동안이나 계속되는데 아마도 미국으로 류출되였을 것이다.

{《경제학자》지, 1847년 954페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자시세의 역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금의 류출을 다시 영국으로 향하도록 변경시키기 위하여서도 리자률의 인상과 그뒤를 따르는 화폐핍박의 작용이 얼마나 급속하고 적절하였는가를 보게 된다. 이 작용은 국제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났다. 리자률의 상승은 영국 및 외국의 유가증권의 가격을 저락시켰으며 외국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대량구매가 일어나게 하였다. 이것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수형액을 증대시켰으며 다른 한편 리자률이 높아서 화폐를 입수하기가 매우 곤난하였으므로 이러한 수형의 액은 증대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였다.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외국상품에 대한 주문이 취소되였으며 외국유가증권에 대한 영국의 투자가 화폐로 전화되고 그 화폐가 영국으로 부송되여 투하되였다. 례컨대 5월 10일의 〈리오데 쟈네로 물가시보〉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환자시세{영국에 대한}는 새로운 저락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주로 영국의 계산으로 다액의 {브라질의} 국채의 매각이 진행되여 그 대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시장에 압박이 가하여진것으로 말미암은것이다. 영국에서 리자률이 매우 낮았던 때에 외국에서 각이한 유가증권들에 투하되였던 영국자본은 이와 같이 리자률이 상승하였을 때에 돌아온것이다.》

영국의 무역수지

인도만으로도 《선정》의 보상으로서 약 500만의 공물,

즉 영국자본의 리자나 배당 등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것에는 부분적으로는 해마다 관리들이 자기들의 봉급에서 저축으로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과 영국상인들이 자기들의 리윤의 일부분을 영국에서 투하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금액은 전혀 포함되여있지 않다. 동일한 원인으로 영국의 매개 식민지로부터도 부단히 다액의 송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스트랄리아, 서인도, 카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영국자본에 의하여 설립된것이고 배당은 영국에 지불되게 되여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외국의 국채증권, 구라파나 남북아메리카의 국채증권을 많이 가지고있어 그 리자를 받을수 있다. 그 밖에 또 영국은 외국 철도, 운하, 광산 등등에 출자하고있어 그에 해당한 배당이 있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에 관한 송금은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수출액을 초과하는 생산물로써 실시된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유가증권의 소유자들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서와 외국에 있는 영국인들의 소비를 위하여 영국으로부터 외국으로 나가는 금액은 이상의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것이다.

문제는 무역수지나 환자시세에 관한 한에서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도 시간의 문제이다. 통례로…영국은 그 수출에 대해서는 장기신용을 주고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어떤 시기에는 이 지불기한의 차이는 환자시세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 나라의 수출이 1850년과 같이 몹시 증대되는 시기에는 영국자본의 투하가 부단히 확대되고있지 않으면 안된다…이리하여 1850년의 송금이 1849년에 수출된 상품에 대한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1850년에는 수출이 1849년의 수출을 600만파운드 초과하였다면 그 실제상의 결과는 이해에 환류한것보다도 이 금액만큼 더 많은 화폐가 국외로 송금되였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자시세

와 리자률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공황때에 우리 나라의 사업이 침체되여 우리 나라의 수출이 심히 축소되게 되면 그 이전의 수년간의 보다 거액의 수출에 대하여 지불되는 송금이 우리 나라의 수입의 가치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 환자시세는 이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자본은 국내에서 급속히 축적되며 리자률은 저하된다》(《경제학자》지, 1851년 1월 11일).

외국환자시세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수 있다.

1. 당면의 국제수지에 의하여. 이것이 어떠한 원인들에 의하여 규정되든 즉 순 상업적원인에 의하여서든 외국에서의 투자에 의하여서든 또는 전쟁 등등에 있어서 외국에서 현금 지불이 실시되는 한에서는 국가지출에 의하여서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2. 한 나라에서의 화폐의 가치감소에 의하여. 그것은 금속화폐이든 지페이든 상관없다. 이 경우에 환자시세의 변동은 순전히 명목적인것이다. 만약 1파운드가 이전의 화폐의 반액밖에 대표하지 못한다면 두말할것없이 그것은 25프랑으로가 아니라 12.5프랑으로 환산될것이다.

3. 한 나라는 《화폐》로서 은을 사용하고 한 나라는 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두 나라간의 환자시세는 두 금속의 상대적인 가치변동에 의하여 좌우된다. 왜냐하면 이 변동은 분명히 두 금속간의 평가를 변화시키기때문이다. 이러한 실례는 1850년의 환자시세이다. 그것은 영국의 수출이 매우 증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불리하였다. 그러나 그래도 금류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금가치에 비하여 은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결과였다(《경제학자》지, 1850년 11월 30일부 참조).

환자시세의 평가는 1파운드당 빠리에 대하여서는 25프랑 20쌍뗨, 함부르그에 대하여서는 13마르크뱅크 $10\frac{1}{2}$실링, 암스테르담에 대하여서는 11플로린 97센트이다. 빠리에 대한 환자시세가 25.20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그것은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채무자 또는 프랑스상품의 구매자에게는 보다 유리하게 된다. 두 경우에 다 영국인은 이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적은 파운드가 필요하게 된다. 귀금속을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먼 나라들에서는 수형이 적어서 영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당연한 결과로 보통 영국에 수출되는 생산물의 가격이 등귀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그것을 수형 대신 영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증대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인도에서 종종 일어난다.

영국에서 화폐의 매우 큰 과잉이 있고 리자률이 낮고 유가증권의 가격이 높은 때에는 환자시세의 역조가, 지어는 금류출까지도 일어날수 있다.

1848년중에 영국은 인도로부터 대량의 은을 받았는데 그것은 좋은 수형은 적었고 보통수형은 1847년의 공황[216]과 인도와의 거래에서의 큰 신용상실로 하여 잘 인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은은 전부 도착하기가 바쁘게 즉시 구라파대륙으로 흘러갔는데 거기에서는 혁명이 도처에서 화폐축장을 일으켰던것이다. 이 동일한 은은 1850년에는 대부분 인도로 돌아갔다. 그것은 이번에는 환자시세가 그것을 유리하게 만들었기때문이다.

중금주의[229]는 본질적으로 천주교적인것이며 신용주의는

본질적으로 신교적인것이다. 《스코틀랜드인은 금을 싫어한다.》[244] 지폐로서는 상품의 화폐정재는 하나의 사회적정재를 가지고있을따름이다. 구제하는것은 **신앙**이다.[259] 상품의 내재적령혼으로서의 화폐가치에 대한 신앙, 생산방식과 그 예정질서에 대한 신앙, 자기 자신을 증식하는 자본의 단순한 인격화로서의 개개의 생산당사자들에 대한 신앙. 그러나 신교가 천주교의 기초로부터 해방되지 않은것처럼 신용주의도 중금주의의 기초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

제 36 장

자본주의이전

리자부자본 또는 고리대자본(고대적형태의 리자부자본을 이렇게 부를수 있다)은 그 쌍둥이인 상인자본과 함께 자본의 대홍수이전의 형태[260]에 속한다.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보다 훨씬 전부터 있은것이며 또한 극히 각이한 경제적사회구성체들에 나타나는 자본형태에 속한다.

고리대자본의 존재를 위하여서는 적어도 생산물의 일부분이 상품으로 전화되고 또 상품거래와 동시에 화폐가 그 각종 기능에서 발전되여야 한다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고리대자본의 발전은 상인자본의 발전 특히 화폐거래자본의 발전과 결부되여있다. 고대로마에서는 제조업이 고대의 평균발전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 있은 공화제말기이래 상인자본, 화폐거래자본 및 고리대자본—고대적형태에서—은 발전의 최고점에 도달하였었다.

이미 본바와 같이 화폐가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화폐축장도 나타난다.[261] 그러나 직업적화폐축장자는 그가 고리대금업자로 전화될 때에 비로소 중요하게 되는것이다.

상인이 화폐를 차용하는것은 그것을 리용하여 리윤을 얻

기 위하여서이며 그것을 자본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즉 자본으로서 지출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형태에서 화폐대부업자가 상인에 대립하는것은 그가 현대적자본가에 대립하는것과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이 특수한 관계는 천주교의 대학들에 의해서도 감득되였다.

《알깔라, 쌀라만까, 잉골슈타트, 브라이스가우의 프라이부르그, 마인쯔, 퀠른 및 트리르 대학들은 련이어 상업대부에 대한 리자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최초의 5개 대학들에 의한 이 인정은 리옹시청의 기록중에 보존되여있으며 〈고리 및 리자론〉, 리옹, 브류이세-폰투스의 부록중에 인쇄되여있다》(M. 오지에 《공공신용에 관하여》, 빠리, 1842년판 206페지).

노예경제(가부장적인것이 아니고 후의 희랍로마시대의 것)가 치부의 수단으로 존속되여있었으며 따라서 화폐가 노예나 토지 등의 구입에 의하여 타인의 로동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인 모든 형태에서는 화폐는 바로 이렇게 투하할수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서 증식될수 있는것으로 되며 리자를 낳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전시대에 고리대자본이 취하는 특징적존재형태들에는 두가지가 있다. 나는 특징적형태를 말한다. 같은 이러한 형태들은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도 재현되지만 그것은 다만 종속적인 형태들로서이다. 그것들은 여기에서는 이미 리자부자본의 성격을 규정하는 형태들이 아니다. 이 두 형태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첫째로는** 랑비적인 귀족, 주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화폐대부에 의한 고리대이다. **둘째로는** 자기 자신의 로동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소생산자들에 대한 화폐대부에 의한 고리대이다. 이 소

생산자들중에는 수공업자도 포함되고있지만 주로는 농민이 포함되고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이전상태에서는 그것이 독립적인 개별적소생산자들의 존재를 허용하는 한에서는 농민계급이 그 대다수를 이루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고리대에 의한 부유한 토지소유자들의 령락과 소생산자들의 피착취는 둘 다 큰 화폐자본의 형성과 집적을 가져오는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이 과정이 현대구라파에서와 같은 낡은 생산방식을 폐지시키는가 하는것 그리고 그것이 낡은 생산방식 대신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출현시키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력사적발전단계에 의하여 그리고 이에 의하여 주어지는 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리자부자본의 특징적형태로서의 고리대자본은 소생산의 우세에, 즉 농민과 소수공업장주의 우세에 상응하는것이다. 발전한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와 같이 로동조건들과 로동생산물이 자본으로서 로동자에 대립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로서의 로동자는 화폐를 차용할 필요가 없다. 그가 화폐를 차용한다면 그것은 례컨대 전당포에서 자기의 개인적필요를 위하여 하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조건과 자기의 생산물의 현실적 또는 명목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생산자로서의 그는 고리대자본으로서 그에게 대립하는 화폐대부자의 자본과 관계를 가지는것이다. 뉴먼이, 은행업자는 존경을 받고 고리대금업자는 증오와 멸시를 받는것은 전자는 부자에게 대부하고 후자는 빈자에게 대부하기때문이라고 한것은(F. W. 뉴먼 《정치경제학강의》, 1851년 런던판 44페지) 이 사태의 저속한 표현이다. 그가 보지 못한것은 여기에는 두개의 사회적생산방식의 구별, 그것들에 상응하는 사회적제도의 구별이 있으며 사태는 빈부의 대립으로써 해결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오히려 가난한 소생산자에게서 착취하는 고리대가 부유한 대토지소유자에게서 착취하는 고리대와 손잡고 나아가는것이다. 로마귀족의 고리대가 로마의 평민인 소농민을 철저히 파멸시켰을 때 이 착취형태는 종말을 고하였고 그때에 소농민경제 대신에 순수한 노예경제가 나타났던것이다.

여기서는 리자의 형태로 생산자의 가장 필요한 생활수단(후의 로임에 상당한 액)을 넘는 전체 잉여분(후에 리윤 및 지대로서 나타나는것)이 고리대금업자에 의하여 삼켜질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것을 제외한 **전체** 잉여가치를 고리대금업자가 차지하는 경우의 **이** 리자의 높이를 리자가 적어도 정상적인 리자가 이 잉여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한 경우의 그런 현대적리자률의 높이와 비교한다는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비교에서는 임금로동자는 자기를 고용하는 자본가에게 리윤, 리자 및 지대를 요컨대 전체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제공한다는것이 망각되고있다. 캐어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비교를 하여 그것으로써 자본의 발전과 그에 수반되는 리자률의 저하가 로동자에게 얼마나 유리한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는 자기의 희생자의 잉여로동을 착취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희생자의 로동조건 자체 즉 토지, 가옥 등의 소유권을 점차 자기의것으로 만들며 이리하여 부단히 희생자에 대한 수탈에 몰두하고있다면 이렇게 완전히 로동자로부터 그 로동조건을 수탈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지향하는 결과인것이 아니라 이 생산방식의 출발점으로 되는 기성의 전제라는것이 망각되고있다. 임금노예는 진정한 노예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적어도 생산자의 자격으로서는 채무노예로 될

가능성으로부터 배제되고있다. 그는 오직 소비자의 자격으로서만 채무노예로 될수 있다. 이 형태에서는 사실상 고리대자본은 생산방식을 변경시킴이 없이 직접적생산자들의 전체 잉여로동을 취득하며 또 이 형태에서는 로동조건들에 대한 생산자들의 소유 또는 점유—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분산된 소생산—가 본질적전제이며 따라서 자본은 로동을 직접 자체에 종속시키지는 않으며 따라서 산업자본으로서 로동에 대립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형태에서는 고리대자본은 이 생산방식을 빈곤하게 만들며 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마비시키며 동시에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영구화시키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에서와는 달리 로동의 사회적생산성이 로동 그 자체를 희생으로 하여 발전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고리대는 한편으로는 고대적 및 봉건적 부와 고대적 및 봉건적 소유를 전복하고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소농민적 및 소시민적 생산을, 간단히 말하여 생산자가 아직 자기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들을 전복하고 파멸시킨다.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서는 로동자는 생산조건들 즉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나 자기가 가공하는 원료 등등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생산자로부터의 생산조건들의 이러한 소외[262]에는 생산방식 그 자체에서의 현실적변혁이 상응한다. 따로따로 있던 로동자들은 대작업장에 집결되여 분업화되고 호상 긴밀히 맞물린 기능을 수행한다. 도구는 기계로 된다. 생산방식 자체가 이제는 이러한 소규모의 소유와 결부된 생산도구의 분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로동자 자신의 고립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고리대는 이제는 생산자로부터 생산조건들을 분리시킬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

은 이미 분리되여있기때문이다.

고리대는 생산수단이 분산되여있는 곳에서 화폐재산을 집중시킨다. 고리대는 생산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고 기생충으로서 이것에 붙어 빨아먹고 이것을 비참하게 만든다. 고리대는 생산방식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이것을 쇠약하게 만들며 재생산이 점점 더 보잘것없는 조건하에서 진행되지 않을수 없게 강제한다. 그렇기때문에 고리대에 대한 민중의 증오는 고대세계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조건의 소유자인것이 동시에 정치적관계의 기초였으며 시민의 독립성의 기초였기때문이다.

노예제도가 지배하는 한에서는 또는 잉여생산물이 봉건령주와 그 가신들에 의하여 다 먹히고마는 한, 그리고 노예소유자 또는 봉건령주가 고리대업자의 손아귀에 걸려드는 한에서는 생산방식은 여전히 동일하다. 다만 그것이 로동자에게 더욱 가혹한것으로 될따름이다. 채무를 진 노예소유자나 봉건령주가 더욱더 많이 빨아먹는것은 그 자신이 더욱더 많이 빨리우기때문이다. 또는 결국 그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자리를 양도하고 고리대금업자 자신이 고대로마의 기사와도 같이 토지소유자 또는 노예소유자로 된다. 옛 착취자의 착취는 그것이 대체로 정치적권력수단이였기때문에 다소간에 가부장적이였는데 이 착취자 대신에 랭혹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졸부가 나타난다. 그러나 생산방식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이전의 모든 생산방식하에서 고리대가 혁명적으로 작용하는것은 오직 고리대가 소유형태들을 파괴하며 분해시키기때문임에 불과하다. 즉 이 소유형태의 공고한 기초와 그것이 동일한 형태로 부단히 재생산되는데에 정치제도가 립각하고있는것이다. 아시아적형태들에서는 고리대는 경제적

쇠퇴와 정치적부패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일으킴이 없이 오래동안 존속할수 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타 조건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또는 그것이 존재하는 때에만 비로소 고리대는 한편으로는 봉건령주들과 소생산자들의 몰락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에로의 로동조건들의 집중에 의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의 형성수단의 하나로서 나타난다.[263]

《중세기에는 어느 나라에도 일반적리자률이 없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리자거래를 금지하였다. 법률과 재판은 대부를 거의 보장하여주지 않았다. 개개의 경우들에서는 리자률은 그만큼 더 높았다. 보잘것 없는 화폐류통, 대부분의 지불을 현금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은 화폐를 차용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수형거래가 아직 발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그러하였다. 리자률에 있어서나 고리대의 개념에 있어서나 큰 차이가 있었다. 칼 대제시대에는 100%를 받는자가 있으면 그것을 고리대로 인정하였다. 보덴호기슭의 린다우에서는 1344년에 토착시민들이 $216\frac{2}{3}$%를 받았다. 쮜리히에서는 시회가 $43\frac{1}{3}$%를 법정리자로 정하였다. 이딸리아에서는 12~14세기에 보통의 리자률은 20%를 넘지 않았지만 때로는 40%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베로나에서는 $12\frac{1}{2}$%를 법정리자로 정하였다. 황제 프리드리히2세는 10%로 정하였으나 이것은 유태인에 대하여서만이였다. 그는 기독교도에 대하여서는 언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13세기에는 라인연안의 독일에서는 10%가 이미 보통이였다》(휠만 《중세기의 도시제도》, 제2권 55~57페지[264]).

고리대자본은 자본의 생산방식을 가짐이 없이 자본의 착취방식을 가지고있다, 이 관계는 자산계급경제내부에서도 락후한 산업부문들에서나 현대적생산방식으로의 이행에 반항하는 산업부문들에서 재현된다. 례컨대 영국의 리자률을 인도의 리자률과 비교하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잉글랜드은행의 리자률을 취할것이 아니라 례컨대 가내공업의 소생산자들에

게 소기계를 임대하는자들이 받는 리자률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리대는 소비적부에 비하면 그 자체가 자본의 발생과정으로서 력사적으로 중요하다. 고리대자본과 상인재산은 토지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화폐재산의 형성을 매개한다. 생산물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발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교환가치가 생산을 그것의 전체 너비와 깊이에 있어서 정복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화폐는 더욱더 사용가치로서의 부의 제한된 표시방식에 대립하여 본래의 부 그 자체로서, 일반적부로서 나타난다. 화폐축장은 이에 기초하고있다. 세계화폐 및 축장화폐로서의 화폐를 도외시한다면 특히 지불수단으로서의 형태에서야말로 화폐가 상품의 절대적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특히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야말로 리자를 따라서 또 화폐자본을 발전시키는것이다. 랑비적이고 퇴폐적인 부가 원하는것은 화폐로서의 화폐, 무엇이나 살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화폐이다(또 채무지불을 위하여서도). 소생산자가 화폐를 필요로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불을 위해서이다(령주와 국가에 대한 부역이나 현물납부가 화폐지대나 화폐조세로 전화하는것은 여기서는 큰 역할을 논다). 두 경우에다 화폐는 화폐로서 사용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축장은 고리대에서 비로소 현실적인것으로 되며 그 꿈을 실현한다. 축장화폐의 소유자가 요구하는것은 자본이 아니고 화폐로서의 화폐이다. 그러나 그는 리자를 통해서 이 축장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즉 잉여로동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자기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또 생산조건 자체의 일부분을 비록 그것이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타인의 소유로서 그에게 대립하고있더라도 자기의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화시킨다.

고리대는 생산의 틈속에서 사는것 같은데 이것은 마치도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신들이 세계와 세계의 빈자리에 살고있는 것과 같은것이다.[171] 상품형태가 생산물의 일반적형태로 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화폐를 얻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고리대금업자는 화폐수요자의 지불능력 또는 저항능력이외에는 전혀 아무런 제한도 모른다. 소농민적생산이나 소시민적생산에서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 사용되는것은, 주로 생산조건이 재난이나 비상사변으로 말미암아 로동자의 수중에서(이 생산방식하에서는 로동자가 아직도 생산조건들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상실되거나 또는 적어도 재상산의 보통행정에서는 보상될수 없는 경우이다. 생활수단과 원료는 이러한 생산조건들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러한것들이 값이 비싸게 되면 생산물매상금중에서 이러한것들을 보상할 수 없게 되는것은 마치 단순한 흉작만으로도 농민이 자기의 종곡을 현물로써 보상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로마의 귀족은 전쟁에 의하여 평민들을 파멸시켰으며 평민을 군무에 강제하여 그들의 로동조건의 재생산을 방해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는데(그리고 빈궁화, 재생산조건들의 위축 또는 상실이 여기서는 우세한 형태이다) 이 동일한 전쟁은 귀족의 창고와 지하실을 전리품으로 로획한 구리 즉 당시의 화폐로써 충만시켰다. 귀족은 평민들에게 필요되는 곡물이나 말이나 유각가축 등을 직접 내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소용되지 않는 동을 그들에게 대부하였으며 이 상태를 리용하여 보통이 아닌 고리를 짜내고 그리하여 평민을 자기의 채무노예로 만들었다. 칼 대제의 치하에서 프랑크의 농민들도 역시 전쟁에 의하여 몰락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채무자로부터 농노로 될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다 아는바와 같

이 로마제국에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유민들이 자기들의 자녀와 자기 자신을 부자에게 노예로 팔게 되는 일이 흔히 있었다. 이상은 일반적전환점에 대하여 말한것이다. 개개의 경우로 보면 소생산자들에게 있어서의 생산조건들의 유지 또는 상실은 무수한 우연의 재난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매개 우연의 재난 또는 상실은 빈궁화를 의미하는것이고 고리대기생충이 들어붙을수 있는 점으로 되는것이다. 소농민에게 있어서는 한마리의 소가 죽기만 하여도 이미 종래의 규모로 그의 재생산을 다시 시작할수는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고리대금업자의 손아귀에 걸려들며 그리고 한번 걸려들면 결코 다시는 자유로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고리대의 본래의 큰 독특한 지반이다. 일정한 기한의 어떤 화폐납부 즉 차지료, 공납, 조세 등등은 모두 화폐지불의 필요성을 수반한다. 그렇기때문에 대체로 고리대는 고대로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징세청부인, 총징세청부인, 징세인에 붙어있다. 그리고 상업의 발전과 상품생산의 일반화에 따라 구매와 지불과의 시간적분리가 발전한다. 화폐는 일정한 기한에 인도되여야 한다. 그때문에 오늘날도 화폐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의 구별이 똑똑하지 않은 상태로 되는 일이 있다는것은 현대의 화폐공황에 의하여 증명되고있다. 그런데 동일한 고리대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필요성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주요수단으로 된다. 왜냐하면 고리대는 생산자를 점점 더 채무로 얽어매며 그리고 생산자로 하여금 리자의 중하로 그의 규칙적인 재생산조차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의 일상적지불수단을 빼앗기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고리대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로부터 발생하여 화폐의 이 기능 즉 고리대의 고

유한 지반을 확대한다.[265]

신용제도의 발전은 고리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실현된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고대저술가들, 교부들, 루테르 또는 낡은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의미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리자부자본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조건들 및 요구에 종속되였다는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 그 이하의 아무것도 아니다.

대체로 리자부자본은 현대적신용제도하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제 조건에 적응하게 된다. 고리대 자체는 비단 계속 존재하고있을뿐만아니라 자본주의적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고리대에 설정하였던 모든 낡은 립법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된다. 리자부자본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의미에서는 차용하지 않는 또는 차용할수 없는 사람들과 계급들에 대해서나 또는 그러한 제 사정하에서는 고리대자본의 형태를 유지한다. 례컨대 전당포에서 개인적필요로 차용하는 경우, 향락생활을 하는 부자가 랑비를 위하여 차용하는 경우, 또는 생산자가 소농민, 수공업자 등등과 같은 비자본주의적생산자이며 따라서 아직 직접적생산자로서 자기 자신의 생산조건의 소유자인 경우, 끝으로 자본주의적생산자 자신이 작은 규모로 경영하며 따라서 자기로 로동하는 생산자에 흡사한 경우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본질적요소를 이루는 한에서의 리자부자본을 고리대자본으로부터 구별하는것은 결코 이 자본자체의 성질이나 특성이 아니다. 그 구별은 다만 이 자본이 기능하는 조건들이 변하였고 따라서 또 화폐대부자에 대립하는 차용자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였다는것뿐이다. 재산이 없

는 사람이 산업가 또는 상인으로서 신용을 얻는 경우에까지도 그것은 그가 자본가로서 기능하며 차용한 자본으로써 부지불로동을 취득할것이라는 신뢰가 있기때문이다. 그는 잠세적자본가로서 신용을 얻는것이다. 또 재산은 없지만 정력, 견실성, 능력 및 사업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자본가로 전환될수 있다—사실 대체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는 매개인의 상업가치가 다소간에 정확하게 평가되는것이다—는 이 사정은 경제학적변호론자들의 대단한 감탄을 받는것이고 또 개개의 기존자본가들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련의 새로운 행운의 기사를 전장으로 불러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정은 자본 자체의 지배를 공고히 하며 이 지배의 기초를 확대하며 그것이 자본으로 하여금 사회의 하층으로부터의 새로운 력량에 의하여 부단히 보충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마치 중세기의 천주교회가 신분, 출신 및 재산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중의 우수한 사람들로써 그 위계제를 형성하였다는 사정이 성직자의 지배와 속인의 압박을 공고히 하는 주요수단이였다는것과 마찬가지이다. 피지배계급의 가장 우수한 인물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지배계급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배는 더욱 견고하고 또 더욱 위험하다.

그렇기때문에 현대신용제도의 창시자들은 리자부자본일반을 추방하는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공공연히 승인하는데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는 빈민을 고리대로부터 보호하려던, 고리대에 대한 반작용 레컨대 공영전당포[266](1350년에는 프랑슈—꽁떼의 사르랑에 설립되였고 그후 1400년과 1479년에는 이딸리아의 뻬루쟈 및 싸보나에 설립되였던것)와 같은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것들이 주목할만한것은 경건한 념원이

그 실현과정에서 그 정반대물로 전변되고있다는 력사의 풍자를 보여주기때문일뿐만아니다. 영국의 로동계급은 적게 잡더라도 100%를 이 공영전당포의 후신인 전당포에 지불하고있다.(21) 여기에서는 또한 례컨대 17세기 90년대에 토지소유에 기초한 지폐를 발행하는 토지은행에 의해서 영국의 귀족을 고리대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였던 휴 체임벌린의사나 죤 브리스코우 등의 신용환상에 대하여도 말하지 않기로 한다.(22)

12세기 및 14세기에 베네찌아와 제노와에서 설립된 신용조합들은 구식고리대의 지배와 화폐거래의 독점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해상무역과 이에 기초한 도매상업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시공화국들에 설립된 본래의 은행들은 동시에 공공신용을 위한 시설로서 나타나고 이 시설로부터 국가는 징수하기로 예정된 조세를 담보로 하여 선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잊어서는 안될것은 그 신용조합들을 설립한 상인들 자신은 이러한 나라의 일류인물들이고 따라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자기들의 정부와 자기들 자신을 해방시키는(23)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를 자기들에게

---

(21) 《전당포리자가 이렇게 과도한것은 같은 한달동안에 빈번히 전당잡혔다 찾아냈다 하는 결과이며 또 어떠한 물건을 찾아내려고 다른 물건을 전당잡히며 그래서 약간의 화폐차액을 얻는 결과이다. 런던에는 240개의 허가된 전당포가 있고 지방에는 약 1,450개의 전당포가 있다. 사용자본은 약 100만으로 추측된다. 이 자본은 1년에 적어도 3회전하며 매번 평균 $33\frac{1}{2}$%를 낸다. 그리하여 영국의 하층계급은 전당잡힌 물건을 찾을 기일을 놓침으로써 입는 손실은 제외하고라도 일시적인 선대 100만에 대하여 매년 100%를 지불한다》(J. D. 타키트 《로동인구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의 력사》, 1846년 런던판 제1권 114페지).

(22) 그들은 자기들의 저서[267]의 표제에도 다음과 같은것을 주요목적으로 들고있다. 《토지소유자의 일반적복지, 토지소유가치의 대인상, 귀족 및 신사계급 등의 조세로부터의 해방, 이들의 년소득의 증가 등등》. 고리대금업자만이 손해를 볼것이라는것이다. 즉 프랑스로부터의 침입군도 입힐수 없었던 더 큰 손해를 귀족과 자유농민[268]에게 입힌 국민의 최악의 원쑤만이 손해를 볼것이라는것이다.

(23) 《례컨대 영국의 찰즈 2세만 하여도 〈금장〉 〔온행업자의 선구〕 에게 20～

더욱더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복종시키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잉글랜드은행을 설립하려고 하였을 때 토리당은 다음과 같이 항의하였다.

《은행이란 공화국의 시설이다. 번영하는 은행들이 베네찌아, 제노와, 암스테르담 및 함부르그에는 있었다. 그런데 누가 프랑스은행 또는 에스빠냐은행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었는가?》

1609년의 암스테르담은행도 함부르그은행(1619년)과 마찬가지로 현대신용제도의 발전에서 한 시대를 열어놓은것은 아니다. 그것은 순전한 예금은행이였다. 이 은행이 발행한 수형은 사실상 은행에 예탁된 주조귀금속 또는 미주조귀금속에 대한 령수증에 불과하였으며 그 령수자의 양도서명에 의하여 류통하였을뿐이였다. 그러나 화란에서는 상업 및 제조공업과 함께 상업신용과 화폐거래가 발전하였으며 리자부자본은 발전행정 그 자체에 의하여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 종속되여있었다. 이것은 이미 리자률이 낮은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서는 화란은 바로 오늘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발전의 모범국으로 인정되고있었다. 빈궁을 기초로 한 구식고리대의 독점은 화란에서는 이미 스스로 붕괴되였다.

18세기 전체를 통하여 화란을 선례로 들면서 리자부자본

30%라는 엄청난 고리와 액면초과금을 지불하여야 하였다. 거래가 이렇게 유리하였기때문에 〈금장들〉은 신이 나서 국왕에게 더욱더 많은 선대를 하였으며 모든 조세수입을 선취하고 의회에서 화폐지출을 가결하면 즉시로 그것을 저당잡고 또 자기들사이에서도 서로 다투어 수형이나 지불지도서나 대차할부를 구입하였고 저당잡았으며 그리하여 실지에 있어서 모든 국가수입이 그들의 손을 통과하게 되였다》(존.프란씨스 《잉글랜드은행사》, 1848년 런던판 제1권 30~31페지). 《은행의 설립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차례 제안되였다. 그것이 마침내 필요하게 되였다》(우와 같은 책, 38페지). 《이 은행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빨리우고있던 정부에 대하여서만도 의회의 교부금을 담보로 하여 적당한 리자률로써 화폐를 입수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다》(우와 같은 책, 59~60페지).

을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에 종속시키고 그 반대로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리자률의 강제적인하를 요구하는 웨침소리가 높아갔다.—그리고 립법은 이 취지에서 행동하였다. 주창자는 영국에서의 표준적인 사영은행업의 아버지인 죠우싸이어 챠일드경이였다. 그는 대기성복제조업자인 모제스 부자상회가 자체를 《사인재봉업자들》의 독점에 대한 공격자로서 부르고있는것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고리대금업자들의 독점에 대한 반대를 선언한다. 이 죠우싸이어 챠일드는 동시에 영국의 주식매매업의 아버지이기도 한것이다. 그리하여 동인도회사의 독재자인 그는 상업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의 독점을 옹호한다. 그는 토머스 맨리(《오해된 화폐리자》)[269]를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고리대금업자대의 전사로서 그는 그의 주요포대를 내가 가장 약한 곳이라고 말한 그 지점에 구축하고있다…그는 낮은 리자률이 부의 원인이라는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것은 부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상업에 관한 론술》, 1669년, 영문에서 번역, 1754년 암스테르담 및 베를린판[120페지]). 《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것이 상업이고 또 리자의 인하가 상업을 증진시킨다면 리자의 인하 또는 고리대의 제한은 의심할바 없이 일국의 치부의 주요한 원인이다. 동일한것이 동시에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원인이고, 다른 조건하에서는 결과일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결코 엉터리없는 소리가 아니다》(우와 같은 책, 155페지). 《닭알은 암탉의 원인이고 암탉은 닭알의 원인이다. 리자의 인하는 부의 증가의 원인으로 될수 있고 부의 증대는 리자의 보다 더 큰 인하의 원인으로 될수 있다》(우와 같은 책, 156페지), 《나는 근면의 변호자이고 나의 반대자는 라태와 무위를 변호한다》(179페지).

고리대에 대한 이 맹렬한 공격, 리자부자본을 산업자본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 요구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이러한

조건들을 현대은행제도에서 만들어내는 유기적창조물의 선구에 불과하다. 이 은행제도는 한편으로는 모든 사장된 화폐준비를 집중하여 화폐시장에 투입하는데 의하여 고리대자본으로부터 그 독점을 박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화폐의 창조에 의하여 귀금속 자체의 독점을 제한한다.

여기서 챠일드의 저서에서 본것과 마찬가지로 17세기 마지막 3분의 1기 및 18세기 초엽의 영국의 은행제도에 관한 모든 저술들에서도 고리대에 대한 반대, 고리대로부터 상업, 산업 및 국가를 해방시킬데 대한 요구가 발견될것이다: 동시에 신용, 귀금속독점배제의 기적적작용, 지페에 의한 귀금속의 대체 등등에 관한 굉장한 환상을 발견할것이다. 잉글랜드은행과 스코틀랜드은행의 창립자인 스코틀랜드인 윌리암 패터슨은 실로 로 제1세[270]라고 할만하다.

잉글랜드은행에 대하여서는 《모든 금장들과 전당포주들이 격분의 고함을 질렀다》(머콜리 《영국력사》, 제4권 499페지).

《최초의 10년동안 잉글랜드은행은 여러가지 큰 곤난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외부로부터의 큰 적대가 있었다. 그 은행권은 명목가치보다 훨씬 낮게 인수되였다…금장들 (이들의 수중에서 귀금속거래는 유치한 은행업무의 기초로 되였던것이다) 은 잉글랜드은행에 대하여 큰 옴모를 꾸몄다. 왜냐하면 이 은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래는 감소되였고 그들의 할인률은 인하되였으며 정부와의 그들의 거래는 이 적수의 수중으로 넘어갔기때문이다》(J. 프란씨스 《잉글랜드은행사》 73페지).

이미 잉글랜드은행의 설립에 앞서 1683년에 국립신용은행설립계획이 나왔는데 그 목적은 특히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즉

《사업가들이 대량의 상품을 가지고있는 경우에 그들이 이 은행의 지지에 의하여 그들의 상품을 예탁하고 그들의 고착되고있는 재고를 담보로 신용을 받으며 또 그들의 사용인들을 취업시키고 유리한 시장이 발견될 때까지 손해를 보고 판매함이 없이 그들의 사업을 확장할수 있다는것》[271]

이였다.

많은 노력끝에 이 신용은행은 드디여 비숍스케이트거리의 데본셔하우스에 설립되였다. 이 은행은 산업가들과 상인들에게 예탁상품을 담보로 하여 그 가치의 4분의 3을 수형으로써 대부하였다. 이 수형에 류통력을 주기 위하여 매개 사업부문에서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형의 소유자는 누구나 현금지불을 청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그 수형을 주고 조합에서 상품을 받을수 있게 하였다. 이 은행은 거래가 번창하지 않았다. 기구가 지나치게 복잡하였으며 상품의 가치감소에 의한 위험이 지나치게 컸던것이다.

영국의 현대적신용제도의 형성에 리론적으로 수반하였으며 그것을 촉진시킨 이러한 저술들의 현실적내용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발견되는것은 리자부자본,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될수 있는 생산수단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제 조건의 하나로서 이 생산방식에 복종시킬데 대한 요구에 불과한것이다. 단순한 문구상으로 본다면 매개의 용어에 이르기까지 쌩-씨몽파의 은행 및 신용 환상과 일치하고있다는데 종종 놀라게 될것이다.

중농학파에게 있어서는 경작자[cultivateur]는 현실적경작자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대차지농업가를 의미하는데 그와 꼭 마찬가지로 쌩-씨몽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일관하게

그의 학파에 있어서는 근로자[travailleur]는 로동자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산업자본가나 상업자본가를 의미하고있다.

《근로자는 조수, 보조자, **로동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는 총명한 사람, 숙련된 사람, 충실한 사람을 구한다. 그는 이들을 일시키며 그들의 로동은 생산적이다》([앙팡땡]《쌩-씨몽의 종교, 정치경제학과 정치학》, 1831년 빠리판 104페지).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은 쌩-씨몽은 그의 최후의 저술《신기독교》에서 비로소 직접 로동계급의 대변자로서 나타났으며 이 계급의 해방을 자기의 노력의 종국적목적으로서 언명하고있다는것이다. 이전의 그의 모든 저술들은 이미 실제상 봉건사회를 대비한 현대자산계급사회의 찬미, 또는 나뽈레옹시대의 원수들과 법률제조가들에 대비한 산업가들과 은행업자들의 찬미에 불과하다. 동시대의 오엔의 저술들에 비하여 얼마나 다른가![24] 방금 인용한 개소에서 분명한바와 같이 쌩-씨몽의 후계자들에게 있어서도 산업자본가는 특히 훌륭한 의미에서의 근로자이다. 그들의 저술들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면 그들의 신용 및 은행 몽상의 실현이 이전의 쌩-씨몽주의자 에밀 뻬레르에 의하여 창립된 동산신용은행[272]이였다는데 놀라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신용제도

(24) 만일 맑스가 원고에 다시 손을 댈 기회가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 개소를 크게 수정하였을것이다. 이 개소는 프랑스의 제2제정하에서의 이전의 쌩-씨몽파의 역할에 감흥을 일으킨것인데 맑스가 이 개소를 쓴 바로 그때에 프랑스에서는 이 파의 세계구제적신용환상이 력사의 풍자에 의하여 전대미문의 사기로서 실현되였던것이다. 그후에 맑스는 오로지 쌩-씨몽의 천재와 백과전서적 두뇌에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쌩-씨몽이 그의 초기의 저작들에서 자산계급과 당시 프랑스에서 방금 발생하고있던 무산계급간의 대립을 무시하였다면 또 그가 자산계급중 생산에 종사하는 부분을 근로자속에 넣었다면 그것은 자본과 로동을 화해시키려고 한 푸리에의 견해에 상응하는것이고 당시의 프랑스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상태에 의하여 설명되는것이다. 오엔이 이 점에서 더 앞을 내다보았다면 그것은 오직 그가 다른 환경에서 즉 산업혁명과 이미 첨예화되고있는 계급대립속에서 살고있었기때문이다.—F. 엥겔스

도 대산업도 아직 현대적수준에까지 발전되지 않았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만 우세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것은 있을수 없었다.—《쌩-씨몽의 학설 해설, 제1년, 1828～1829년》(1831년 빠리 제3판)의 다음 개소에서는 이미 동산신용은행의 싹이 숨어있다. 물론 은행업자는 자본가나 개인고리대금업자보다도 저렴하게 선대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행업자들에 있어서는

《차용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비교적 속기 쉬운 토지소유자들과 자본가들보다 훨씬 싸게 즉 **보다 낮은 리자로** 산업가들에게 도구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하다》(202페지).

그런데 저자들은 스스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첨가하고 있다.

《무위도식자들과 근로자들사이를 은행업자가 매개하는데서 나오지 않을수 없는 리익은 우리의 무질서한 사회가 리기주의에 여러가지 기만과 사기를 할 기회를 주는데 의하여 종종 상쇄되며 심지어는 소멸된다. 은행업자들은 종종 근로자들과 무위도식자들간에 개입하여 사회에 해롭게 량자를 착취한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산업자본가를 가리킨다. 그런데 현대 은행업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자금을 단순히 무위도식자들의 자금으로 보는것도 잘못이다. 첫째로, 그것은 산업가들과 상인들이 자본중 화폐준비로서 또는 앞으로 투하할 자본으로서 일시 화폐형태로 놀고있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것은 유휴자본이지만 무위도식자들의 자본인것은 아니다. 둘째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수입이나 저축중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축적에 돌려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은행제도의 성격에 대하여 본질적인것이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은 첫째로, 화폐—귀금속형태의—가 여전히 토대이며 신용제도는 그 성질상 이 토대로부터 **결코** 리탈할수 없다는것이다. 둘째로는 신용제도는 사인의 수중에서의 사회적생산수단(자본 및 토지소유의 형태에서의)의 독점을 전제로 하고있다는것이며 신용제도 자체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내재적형태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방식을 그 가능한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추진력이라는것이다.

은행제도는 그 형태적인 조직 및 집중의 점으로 보면 이미 1697년에 《영국의 리자에 관한 몇가지 의견》에도 지적된바와 같이 대체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만들어내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완성된 산물이다. 바로 그때문에 잉글랜드은행과 같은 기관이 상업이나 산업에 대하여 거대한 힘을 행사하는것이다. 비록 상업 및 산업의 현실적운동은 전적으로 이 은행의 활동령역밖에 있으며 또 이 은행은 이 운동에 피동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은행제도에서는 물론, 사회적규모에서의 생산수단의 일반적인 부기 및 분배의 형태가 부여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직 형태뿐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개개의 자본가의 평균리윤 또는 각 개별적자본의 평균리윤은 이 자본이 직접 취득하는 잉여로동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총자본이 취득하는 총잉여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 이 량에서 각 개별적자본은 다만 자기가 총자본중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서만 자기의 배당을 얻을뿐이다. 자본의 이러한 사회적성격은 신용 및 은행제도의 충분한 발전에 의하여 비로소 매개되며 충분히 실현되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용 및 은행 체도는 앞으로 더 나아간다. 신용제도와 은행제도는 사회의 모든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본을

그리고 잠세적인 아직 적극적으로 기능하지 않고있는 자본까지도 산업자본가들과 상업자본가들의 처분에 맡긴다. 그리하여 이 자본의 대부자와 사용자는 이 자본의 소유자도 아니며 생산자도 아니다. 이리하여 신용제도와 은행제도는 자본의 사적성격을 폐기하고 그리하여 자체속에, 그러나 자체속에만 자본 자체의 폐기를 내포한다. 은행제도는 자본의 분배를 하나의 특수한 업무로서, 사회적기능으로서 사자본가들 및 고리대금업자들의 수중으로부터 박탈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은행 및 신용은 동시에 자본주의적생산을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또 공황과 사기적 행위의 가장 효과적인 매개물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그리고 은행제도는 여러가지 형태의 류통하는 신용으로써 화폐를 대체함으로써 화폐는 사실상 로동 및 그 생산물의 사회적성격의 하나의 특수한 표현일따름이라는것, 그러나 이 사회적성격은 사적생산의 기초와 대립하는것으로서 결국은 항상 하나의 물건으로서, 다른 상품들과 병존하는 특수한 상품으로서 나타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끝으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으로부터 결합로동의 생산방식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신용제도가 강력한 공간으로서 작용할것이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생산방식 자체에서의 다른 큰 유기적변혁들과의 관련속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의미에서의 신용 및 은행 제도의 기적적인 힘에 관한 여러가지 환상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그 형태의 하나로서의 신용제도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나오는것이다. 생산수단이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게 되면(이것에는 사적토지소유의 폐지도 포함되여있다) 신용 그 자체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가

지지 않는데 이것은 쌩-씨몽주의자들도 리해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존속하는 한 리자부자본은 이 생산방식의 제 형태의 하나로서 존속하며 실제상 이 생산방식의 신용제도의 기초를 이룬다. 오직 인기를 끄는 저술가인 쁘루동, 상품생산은 존속케 하고 화폐는 폐기하려고 생각한 그 쁘루동만이(25) 비로소 무상신용[274]이라는 기괴한것, 이 소자산계급적립장의 야속한 념원의 실현이라는것을 몽상할수 있었다.

《쌩-씨몽파의 종교. 경제학과 정치학》의 45페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일방의 사람은 산업의 도구를 소유하고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타방의 근면한 사람은 로동도구를 아무것도 가지고있지 않은 그러한 사회에서는 신용의 목적은 이 도구를 가능한 한 용이한 방식으로 그것의 소유자인 전자의 수중으로부터 그것을 사용할줄 아는 후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것은 이 정의에 의하면 신용이란 소유가 구성되는 방식의 결과이라는것이다.》

따라서 신용은 이 소유의 구성과 함께 소멸된다. 그리고 또 98페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오늘날의 은행은

《자기밖에서 진행되는 거래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운동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거래 자체에 자극을 주지 않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고있다. 바꾸어말하면 은행은 자기가 자본을 선대해주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본가의 역할을 하는것이다.》

은행은 스스로 지도를 맡아야 하며 또

---

(25) 칼 맑스 《철학의 빈곤》, 1847년, 브류쎌 및 빠리판.—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64페지[273].

《지휘되는 기관들과 그의 발의에 의하여 수행되는 로동의 수와 유용성으로써》(101페지)

뛰여난것이여야 한다는 사상속에는 이미 동산신용은행이 잠재하고있다. 꽁스땅땡 뻬꾀르도 역시 은행들(쌩-씨몽파들이 일반적은행제도라고 부르고있는것)이 《생산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뻬꾀르는 훨씬 급진적이였지만 본질적으로 쌩-씨몽파이다. 그는

《신용기관이…국민적생산의 전체 운동을 통제할》 것을 원한다.—《시험적으로 하나의 국민적신용기관을 창설하여 재산없는 유능자와 유공자에게 자금을 선대하지만 그러나 이 차용자들을 생산과 소비에서의 긴밀한 련계성으로써 강제로 서로 련결시키지 않고 반대로 그들 자신에게 자기들의 교환과 생산을 결정하도록 하게 해보라.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들이 달성하는것은 오늘날 이미 사영은행들이 달성하고있는것 즉 무정부상태, 생산과 소비간의 불균형, 일방의 사람들의 돌연한 파멸과 타방의 사람들의 돌연한 치부일따름일것이다. 즉 당신들의 기관이 할수 있는 일은 타방의 사람들이 입는 불행의 량과 동등한 행복의 량을 일방의 사람들을 위하여 조성하는것 이상으로는 결코 더 나아가지 않을것이다…다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선대를 받는 임금로동자들에게 오늘날 그들의 자본가적고용주들이 하고있는바와 동일한 경쟁을 호상 진행할수 있는 수단을 주었을따름이다》(C. 뻬꾀르 《사회 및 정치경제학의 신리론》, 1842년 빠리판 433～434페지).

이미 본바와 같이 상인자본과 리자부자본은 자본의 가장 오랜 형태이다.[260] 그런데 보통의 관념에서는 리자부자본이 제일 좋은 의미에서의 자본의 형태로서 나타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인자본에 있어서는 어떤 매개적활동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기만이라고 해석되든 로동이라고 해석되든 또는 다른 어떠한것이라고 해석되든간에 여하튼 그런 활동이 진행

된다. 이와는 반대로 리자부자본에 있어서는 자본의 자체재생산적성격이, 자기 증식적인 가치가, 잉여가치생산이 신비한 성격으로서 순수하게 나타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의 정치경제학자들까지도 특히 프랑스에서와 같이 산업자본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리자부자본을 자본의 기본형태라고 고집하여 그리고 례컨대 지대를, 이 경우에도 대부형태가 우세하다는 리유로 리자부자본의 다른 형태에 불과한것이라고 보게 되는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내부구조는 전혀 부당하게 리해되고 토지도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에게만 대부된다는것이 전적으로 간과된다. 물론 화폐 대신에 기계, 영업용건물 등등과 같은 현물로서의 생산수단이 대부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러한 생산수단들은 일정한 화폐액을 대표하며 리자 이외에 일부분은 마멸분으로서 지불되는것은 이러한 자본요소들의 사용가치, 그러한 특수한 현물형태에서 나오는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결정적인것은 그 생산수단들이 직접 생산자에게 대부되는가 또는 산업자본가에게 대부되는가 하는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적어도 이러한 대부가 실시되는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비존재를 전제로 하며 후자의 경우가 바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의 전제이다. 개인적소비를 위한 가옥 등등의 대부를 여기에 끌어들인다는것은 더욱더 부적당하고 무의미하다. 로동계급은 이 형태에서도 기만을 당한다는것, 그것도 극악무도하게 기만당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동계급에게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소매상인들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그것은 생산과정 자체내부에서 직접 수행되는 본원적착취와 병행되는 2차적인 착취이다. 판매와 대부간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좋

은 순전히 형식적인 차이이고 이러한 차이는 이미 명백히 된 바와 같이① 현실적련관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한자에게만 본질적인것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고리대는 상업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생산방식을 착취하는것이며 생산방식을 창조하지는 않고 외부로부터 이 생산방식과 관계를 가지는것이다.[275] 고리대는 생산방식을 부단히 새로 착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직접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고리대는 보수적이며 다만 현존생산방식을 더 비참하게 만들뿐이다. 생산요소들이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가며 또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화폐로써 생산요소들을 조성한다는것은 더욱더 특수한 행위로서 나타난다. 류통이 사회적재생산에서 노는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리대는 그만큼 더 번영한다.

화폐재산이 특수한 재산으로서 발전한다는 사실은 고리대자본에 관하여 말하면 고리대자본은 그 모든 청구권을 화폐청구권의 형태로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의 주요부분이 현물급부 등에, 따라서 사용가치에 국한되면 될수록 그 나라에서 고리대자본은 더욱더 발전한다.

고리대가 두가지를 실현하는 한, 즉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상인신분과 함께 독립적인 화폐재산의 형성을 실현하며 둘째로는 로동조건들을 자기것으로 만든다는, 즉 낡은 로동조건의 점유자들을 파산시키는것을 실현하는 한 고리대는 산업자본의 전제를 형성하는 강력한 공간이다.

---

① 본권 386~392페지를 보라.—편집자

중세기의 리자

《중세기에는 인구는 순전히 농업적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는 봉건통치하에서 그러한바와 같이 교역이 얼마 없으며 따라서 리윤도 얼마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고리대를 취체하는 법률들이 중세기에는 정당화되였다. 뿐만아니라 농업국에 있어서는 빈궁에 쪼들리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화폐를 차용하게 되는 일은 드물었다…헨리 8세는 리자를 10%로, 제임즈1세는 8%로, 찰즈2세는 6%로, 안녀왕은 5%로 제한하고있다…당시는 화폐대부자들은 법률상의 독점자는 아니였더라도 사실상의 독점자였으며 따라서 다른 독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현재에는 리윤률이 리자률을 규제하지만 당시에는 리자률이 리윤률을 규제하였다. 화폐대부자가 상인에게 높은 리윤률을 부과하였다면 상인은 그의 상품에 보다 높은 리윤률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므로 다액의 화폐가 구매자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와서 화폐대부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길버트 《은행업의 력사 및 원리》, 164~165페지).

《듣는바에 의하면 현재 매년 라이프찌히 정기시에서는 10굴덴, 즉 100에 대하여 30이 징수된다고 한다.[276] 그밖에 또 노이엔부르그 정기시를 더 보기때문에 100에 대하여 40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보다 더 많은지 어떤지 나는 모른다. 이게 무슨 창피한 꼴인가!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것인가?…오늘 라이프찌히에서 100플로렌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매년 40플로렌을 얻는데 이것은 1년동안에 1명의 농민 또는 시민을 먹어버린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가 1,000플로렌을 가지고있다면 매년 400플로렌을 얻는데 이것은 1년동안에 1명의 기사 또는 부유한 귀족을 먹어버린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가 10,000플로렌을 가지고있다면 매년 4,000을 얻는데 이것은 1년동안에 1명의 부유한 백작을 먹어버린다는것을 의미한다. 막약 그가 100,000을 가지고있다면(대상인이면 이만한것을 가지고있을것이지만) 매년 40,000을 얻는데 이것은 1년동안에 1명의 부유한 대공을 먹어버린다는것을 의미

한다. 만약 그가 1,000,000을 가지고있다면 그는 매년 400,000을 얻는데 이것은 1년동안에 1명의 대왕을 먹어버린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 그는 신체에나 상품에나 아무런 위험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난로옆에 앉아서 사과를 구우면 된다. 그러니 이 도적이 집에 앉아서 10년이면 전 세계를 먹어버릴수 있을것이다》(1540년에 출판된 《목사 제씨들이여,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라》에서 인용. 《루테르전집》, 1589년 위텐베르그판 제6책[312페지]).

《15년전에 나는 고리대를 반대하여 쓴바 있는데 당시에 이미 고리대는 어떠한 개선도 바랄수 없을 정도로 세력을 뻗쳤던것이다. 그 이래로 고리대는 심히 거만하여졌으며 악덕, 죄악 및 치욕으로 간주되려고 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마치도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기독교적봉사를 베풀어주는듯이 순전한 덕행이며 영예라고 뽐내게 되였다. 치욕이 영예로 되고 악덕이 덕행으로 된 이상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것인가》(《목사 제씨들이여,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라》, 1540년 위텐베르그판).

《유태인, 금융업자, 고리대금업자, 흡혈귀, 이들이 우리 나라의 최초의 은행업자이며 우리의 최초의 은행상인이였으며 이들의 특질은 거의 무치하다고 불러야 할것이였다…그리고 다음에는 런던의 금장들이 그들의 패거리에 들었다. 대체로…우리의 최초의 은행업자들은…매우 나쁜 무리들이였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들이였으며 랭혹한 흡혈귀들이였다》(D. 하드카슬 《은행 및 은행업자》, 1843년 런던 제2판 19~20페지).

《베네찌아가 보여준 실례〔은행설립〕는 이와 같이 신속히 모방되였다. 모든 연해도시들이, 또 일반적으로 그 독립과 그 상업으로써 이름을 떨친 모든 도시들이 그 최초의 은행들을 설립하였다. 이 도시들의 선박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래 기다리는 일이 많았으므로 불가피하게 신용수여의 습관이 생기게 되였으며 아메리카의 발견과 그에 수반되는 아메리카와의 무역은 이 습관을 더욱더 강화하였다》(이것은 주요한 점이다). 《선박으로 화물을 실어보내기 위해서는 큰 선대를 받지 않을수 없었는데 이것은 이미 고대에도 아테네나 회랍에서 그러하였던것이다. 1308년에 한자동맹가입도시 브뤼게는 이미 하나의 보험시

설을 가지고있었다(M. 오지에 《공공신용에 관하여》, 1842년 빠리판 202~203페지).

17세기의 마지막 3분의 1기에, 현대적신용제도가 아직 발전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부 따라서 또 일반적으로 향락적부에 대한 대부가 영국에서도 얼마나 우세하였던가 하는것은 특히 다들리 노쓰의 저술에서, 영국의 일류상인의 한사람이였을뿐만아니라 당시의 가장 저명한 리론경제학자의 한사람이기도 한 그의 저술[277]에서 알수 있다.

《우리 국민들속에서 리자를 받고 대출되는 화폐중 사업가들에게 사업경영을 위하여 대출되는 부분은 아직 10분의 1도 훨씬 되지 못한다. 그 대부분은 사치품의 구입을 위하여 대출되며 대토지소유자이지만 자기의 토지소유가 화폐를 가져오기전에 화폐를 지출하는 사람들의 지출을 위하여 대출된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소유지를 팔기 싫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저당잡히기때문이다》(《무역론》, 1691년 런던판 6~7페지).

18세기의 뽈스까에서는 다음과 같았다.

《와르샤와에서는 수형거래가 대량으로 진행되였는데 그것은 주로 와르샤와의 은행업자들의 고리대에 기초한것이였으며 또 고리대를 목적하는것이였다. 그들은 8%로 또 그 이상의 리자률로 랑비적인 귀인들에게 대부할수 있는 화폐를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융통수형신용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즉 이 수형신용은 상품거래에 기초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수형조작에 의하여 조달된 송금이 두절되지 않는 동안은·외국의 수형지불인에 의하여 관대하게 인수된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탑페르나 그밖에 와르샤와의 명망있는 대은행업자들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큰 대가를 치루었다》(J. G, 뷔슈 《상업의 리론적 및 실무적 해설》, 1808년 함부르그 제3판 제2권 232~233페지).

리자금지가 교회에 준 리익

《리자를 받는것을 교회는 금지하고있었다. 그러나 곤경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판매하는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그뿐만아니라 재산을 화폐대부자에게 자기의 일정한 기간 또는 상환할 때까지 양도하고 화폐대부자는 그것을 담보로 간주하는 동시에 점유기간에 그것을 리용함으로써 자기가 대부해준 화폐의 보상을 얻는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았다…교회 자신도, 교회에 속하는 단체들이나 자선기구도 특히 십자군시대에는 이것에서 큰 리익을 얻었다. 이것은 국민의 부의 큰 부분이 소위 〈죽은 손〉이 점유하게 하였다.[278] 그것은 특히 이러한 고정적인 저당의 점유를 감추어둘수 없었으므로 유태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고리대를 할수가 없었기때문이다…리자의 금지가 없었던들 교회와 수도원은 결코 그렇게 부유해질수 없었을것이다》(우와 같은 책, 55페지).

제 6 편

초과리윤의 지대로의 전화[279]

제 37 장

서 론

토지소유를 그 각이한 력사적형태에서 분석하는것은 이 저술의 범위에 속하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자본에 의하여 산생된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토지소유자의것으로 되는 한에서만 토지소유를 취급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농업이 제조업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즉 농업이 자본가에 의하여 경영되며 이 자본가를 다른 자본가와 구별하는것은 우선 그들의 자본과 이 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임금로동이 투하되는 요소뿐이라는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차지농업가가 밀 등등을 생산하는것은 공장주가 실이나 기계를 생산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농업을 장악하였다는 전제는 이 생산방식이 생산 및 자산계급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한다는것, 따라서 또한 이 생산방식의 제 조건, 즉 자본들간의 자유로운 경쟁, 한 생산분야로부터 다른 생산

분야로의 자본의 이전의 가능성, 평균리윤의 동등한 수준 등등이 완전히 성숙되여있다는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고찰하는 토지소유형태는 토지소유의 하나의 특수한 력사적형태이며 봉건적토지소유이든, 농민이 생계를 위하여 경영하는 소농적 농업—여기에서는 토지**점유**는 직접적생산자를 위한 생산조건들중의 하나로서 나타나며 그의 토지**소유**는 **그의** 생산방식의 가장 유리한 조건, **그** 번영의 조건으로서 나타난다—이든간에 그것은 자본 및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영향에 의하여 **전화된** 형태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일반이 로동자들로부터의 로동조건의 수탈을 전제로 한다면, 이 생산방식은 농업에서는 농업로동자들로부터의 토지의 수탈과, 리윤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에게의 농업로동자들의 종속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그밖에도 토지소유나 농업의 제 형태들은 존재하였거나 또 지금도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지적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전개에 대하여서는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 반박인것이다. 그러한 반박은 다만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그것에 상응하는 토지소유형태를 력사적범주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범주로서 취급하는 경제학자들에 대하여서만 타격으로 될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토지소유의 현대적형태의 고찰이 필요한것은 요컨대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투하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생산관계 및 교환관계를 고찰하는것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이 고찰이 없이는 자본의 분석은 완전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본래의 농업에 대한 투자, 즉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요식물소재의 생산에 대한 투자에만 고찰을 국한하기로 한다. 그것은 례컨대 밀이라도 좋다. 왜냐하면 밀은 현대의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제 국민의 주요식료이기

때문이다(또는 농업 대신에 광산업을 들어도 좋다. 왜냐하면 법칙은 동일하기때문이다).

다른 농업생산물 례컨대 아마, 염료식물, 독립적축산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지대가 주요식료의 생산에 투하된 자본이 낳는 지대에 의하여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전개한 것은 A. 스미스의 큰 공적의 하나이다.[280] 사실 스미스 이후에는 이 점에서는 아무런 진보도 없었던것이다. 우리가 한정적으로나 또는 부가적으로 지적할수 있는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토지소유의 독립적인 고찰에 속하는것이고 여기에 속하는것은 아닌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소유가 밀생산용토지에 관한것이 아닌 한에서는 우리는 구태여 그것을 론하지 않기로 하며 다만 례증을 위하여서만 때때로 그것에 되돌아갈것이다.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말하여둘것은 여기서는 물 등도 그것이 소유자를 가지고있고 토지의 부속물로 되여있는 한에서는 토지로 리해된다는것이다.

토지소유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지구의 일정한 부분들을 그들의 개인적의사의 전유령역으로서 지배하는 독점을 전제로 한다.(26) 이것을 전제로 하면

---

(26) 사적토지소유에 관한 헤겔의 학설보다 더 가소로운것은 없다.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외적자연의 령혼으로서의 자기의 의지에 현실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이 자연을 자기의 사적소유로서 점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인격》의 즉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규정이라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인격으로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안되는것으로 될것이다. 토지의 자유로운 사적소유—극히 현대적 산물—는 헤겔에 의하면 일정한 사회적관계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관계이며 《모든 사물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취득권》이다(헤겔 《법철학》 1840년 베를린판 79페지).[281] 우선 다음과 같은것은 분명하다. 즉 개개의 인격은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타인의 의지에 대항하여 자기를 소유자라고 주장할수 없으며 그것은 타인의 의지도 역시 지구의 동일한 단편에서 자기를 구현하려고 하기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선량한 의지와는 전혀 다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격》은 자기에 대하

문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의 이 독점의 경제적가치 즉 그것의 경제적실현을 설명하는데 있는것이다. 지구의 어떤 부분을 사용 또는 람용하는 이러한 개인들의 법률적권력이라는것을 꺼내도 그것으로써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권력의 행사는 오로지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경제적조건들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법률적관념 그 자체가 의미하는것은 다만 어느 상품소유자나 다 자기의 상품을 자유로 취급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자유로 취급할수 있다는것뿐이다. 그리고 이 관념—자유로운 사적토지소유라는 법률적관념—은 고대세계에서는 다만 유기적사회질서가 해체되는 시기에만 나타나며[282] 현대세계에서는 다만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서만 나타난다. 아시아에서는 이 개념은 다만 이곳저곳에서 구라파사람들에 의하여 수입되였을따름이다. 시초축적에 관한 부분(제1권, 제24장)

여 자기의 의지의 실현의 한계를 어디다 두는가, 그 의지의 정제는 한 나라의 전체에서 실현되는가 또는 그것은 《사물에 대한 나의 의지의 지상을 표명하기》 [80페지] 위하여 다수의 나라의 전체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것은 절대로 알수 없는것이다. 사실 헤겔도 여기에서는 완전히 좌절되고만다. 《점유는 완전히 개별적성질의것이다. 나는 나의 몸으로 접촉할수 있는것보다 많은것은 점유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에 계속되는 두번째것은 외부에 있는 제 사물들은 내가 포착할수 있는것보다 더 큰 너비를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이리하여 내가 무엇을 점유할 때 그것에는 또 다른것이 련결되여있는것이다. 나는 손에 의하여 점유를 실현하는데 그러나 점유의 령역은 확대될수 있다》 (90~91페지). 그러나 이 다른것에는 또 다른것이 련결되여있으며 이리하여 어디까지 나의 의지가 령혼으로서 토지로 흘러들어가야 할것인가 하는 한계는 소멸된다. 《내가 어떤것을 점유하면 오성은 곧 직접 점유된것뿐만아니라 그것과 관련된것도 나의것이라는것으로 이행한다. 여기서는 실정법이 사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왜냐하면 개념으로부터는 그 이상 아무것도 도출하지 않기때문이다》 (91페지). 이것은 《개념》의 매우 소박한 고백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증명하고있다. 즉 개념은 토지소유의, 완전히 특정적인 자산계급사회에 속하는 법률적관념을 절대적인것이라고 보는 오유를 처음부터 범하고있는데 그러한 개념은 이 토지소유의 현실적모습에 대하여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가운데 포함되여있는것은 사회적인 즉 경제적 발전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 《실정법》은 그 결정을 변경할수 있으며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백이다.

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이 생산방식은 한편으로는 토지의 단순한 부속물(예농, 농노, 노예 등등의 형태로의)지위로부터의 직접적생산자들의 해방을 전제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대중으로부터의 토지의 수탈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토지소유의 독점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력사적전제이고 영속적인 기초이며 그것은 이러한 독점이 이러저러한 형태로서의 대중의 착취에 립각하고있는 종전의 모든 생산방식의 력사적인 전제이고 영속적인 기초인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산생될 때에 그것이 당면한 토지소유의 형태는 이 생산방식에 상응한것은 아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형태는 농업을 자본에 종속시킴으로써 이 생산방식 자체에 의하여 비로소 창조되는것이다. 그리하여 봉건적토지소유, 클랭[283]소유 또는 마르크공동체[284]를 수반한 소농민적소유는 그 법률적형태들이 얼마나 다르더라도 이 생산방식에 상응하는 경제적형태로 전화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큰 성과의 하나는 이 생산방식이, 한편으로는 농업을 사회의 가장 발달하지 못한 부분의 단순히 경험적이며 기계적으로 전승되는 경영방법으로부터 대체로 사적소유의 조건하에서, 가능한 한계내에서 농학의 의식적인 과학적응용에로 전화시킨다는것이며(27) 이 생산방식이 토지소유를 한편으로는 지배와

---

(27) 아주 보수적인 농업화학자, 레컨대 존스턴과 같은 사람도 참으로 합리적인 농업은 어디서나 사적소유에 있어서 넘을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285] 그것은 지구에 대한 사적소유의 독점을 공공연히 변호하는 저술가들도 인정하는것인데 레컨대 샤를 꽁뜨씨는 사적소유의 변호를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2권으로 되는 저작에서 그것을 인정하고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국민을 부양하는 토지의 각 부분에 일반적리익과 가장 잘 조화되는 용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국민은 그 성질에서 당연히 나오게 되는 행복과 힘에 도달할수 없다. 그 국민의 부의 큰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될수만 있으면 단 하나의 그리고 우선 개명된 의지가 그 국민의 령토의 각 부분의 처리를 맡아서 어느 부분이나 다른 모든 부분의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의 존재는…토지를 사유지로 분할하는것과는…또 자기

예속 관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조건으로서의 토지를 토지소유 및 토지소유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토지소유자에 있어서는 토지는 그의 독점에 의하여 산업자본가 즉 차지농업가로부터 징수하는 일정한 화폐조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이며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소유지는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콘스탄티노플에서 보낼수 있을만큼 토지소유와 토지와의 련관을 끊어버린다는것이다. 이리하여 토지소유는 그 이전에 거기에 붙어있던 모든 정치적 및 사회적 장식물과 혼합물을 버림으로써 요컨대 산업자본가들 자신과 그들의 리론적대변자들이, 후에 보는바와 같이 토지소유와의 치렬한 투쟁에서 쓸모 없고 황당한 무용지물이라고 비난한 모든 전통적부속물을 버림으로써 그 순 경제적인 형태를 얻는다. 한편으로는 농업을 합리화하여 처음으로 그 사회적경영을 가능하게 한것,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소유의 불합리성을 보여준것, 이것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큰 공적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이 진보를 그것이 이룩한 다른 모든 력사적진보와 마찬가지로 우선 직접적생산자들의 완전한 빈궁화에 의하여 달성하였다.

우리가 본론 자체에 넘어가기전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간의 머리말이 필요하다.

의 재산을 거의 절대적인 방식으로 처분할수 있다는, 어느 소유자에나 보장되여있는 능력과는 량립하지 않을것이다》.[286] 존스턴, 꽁뜨 등은 소유와 합리적농학과의 모순에 당면하여 다만 일국의 토지를 하나의 전체로서 경작할 필요성만을 념두에 두고있을뿐이다. 그러나 특수한 토지생산물의 재배가 시장가격의 변동에 좌우된다는것, 또 이 가격변동에 따라 이 재배가 부단히 변화한다는것, 그리고 자본주의적생산의 전 정신이 직접 목전의 돈벌이에 쏠리고있다는것, 이러한것들은 서로 련결되여있는 수세대의 인간들의 항구적생활조건 전체를 보장하여야 할 농업과는 모순된다. 그 적절한 실례는 삼림인데, 삼림은 다만 그것이 사적소유가 아니라 국가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어느 정도 전체의 리익에 접합되게 관리되는 일도 있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인 경작자는 자본가 즉 차지농업가에게 고용되는 임금로동자들이며 이 차지농업가들은 농업을 자본의 특수한 리용장소로서, 하나의 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자기의 자본의 투하로서 경영할따름이다. 이 차지농업가인 자본가는 이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자기의 자본을 사용하는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토지의 소유자에게 즉 자기가 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기한마다 례컨대 해마다 계약에 확정된 화폐액을 지불한다(바로 화폐자본의 차용자가 일정한 리자를 지불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 화폐액은 그것이 경작지, 건축용지, 광산, 어장, 삼림 등등 어느것에 대해서 지불되든간에 마찬가지로 다 지대라고 불리운다. 이 화폐액은 토지소유자가 계약에 따라 토지를 차지농업가에게 대부하여준 전 기간, 즉 임대하여준 전 기간에 걸쳐 지불된다. 따라서 지대는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가 경제적으로 실현되며 리용되는 형태이다. 그다음으로 이 경우에는 현대사회의 골격을 이루고있는 세 계급이 다 함께 서로 대립하면서 나타난다. 그것은 즉 임금로동자, 산업자본가, 토지소유자이다.

자본은 토지에 고정되고 토지에 합체될수 있다. 그것은 화학적성질의 개량, 시비 등등의 경우처럼 일시적일수도 있고 배수구, 관개시설, 땅고르기, 농장건물 등등의 경우처럼 보다 장기적일수도 있다. 이러한 토지에 합체된 자본을 나는 다른 장소에서 토지자본(28)이라고 부른 일이 있다. 그것은

---

(28) 《철학의 빈곤》 165페지.[287] 거기에서 나는 토지물질과 토지자본과를 구별하고있다. 《이미 생산수단으로 전화된 토지에 대한 두번째의 투자를 가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써 토지물질 즉 토지너비에는 아무것도 가함이 없이 토지자본을 증대시킬수 있다…토지자본은 다른 어떤 자본에 비하여서도 그 이상으로 영원성을 가지고있는것은 아니다…토지자본은 고정자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정자본도 소모되는것은 류동자본과

고정자본의 범주에 속한다. 토지에 합체된 자본과 이러한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에 가해진 개량에 대한 리자는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의 일부분을 이룰수 있으나(29) 그것은 토지가 자연상태로 있든 또는 경작되고있든간에 관계없이 토지사용 자체에 대하여 지불되는 본래의 지대를 형성하는것은 아니다. 토지소유를 체계적으로 론술하는것은 우리의 계획에 속하지 않는것이지만 이러한 론술을 한다면 토지소유자의 수입의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론술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하여 조금만 언급하면 충분하다. 농업에서의 보통의 생산과정에 수반되는 비교적 일시적인 자본투하는 례외없이 모두 차지농업가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러한 투자는 만일 경작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례컨대 왕년의 미국의 노예소유자들에 있어서처럼 토지의 란폭한 착취—그렇지만 토지소유자 제씨는 계약에 의하여 이 착취를 방지하는것이지만—에 귀착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경작일반에서도 그러한것처럼 토지를 개량하고(30) 그 생산물을 증가시키며 토지를 단순한 물질로부터 토지자본으로 전화시키는것이다. 기경지는 동일한 자연적성질을 가지고 있는 미경지보다 가치가 더 크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보다 장기간에 소모되는 토지에 합체된 고정자본도 그 대부분이, 어떤 분야들에서는 흔히 그 전부가 차지농업가에 의하여 투하된다. 그러나 계약에 확정된 차지기간이 지나면—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차지

마찬가지이다.》

(29) 여기서 내가 《수 있다》고 말하는것은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이 리자는 지대의 법칙에 의하여 규제되며 따라서 례컨대 자연적비옥도가 높은 새 토지와의 경쟁이 있으면 소멸될수 있기때문이다.

(30) 제임즈 앤더슨 및 캐어리의 저서를 보라.[288]

기간을 될수록 단축하려고 하는 리유의 하나이지만—토지에 합체된 개량은 토지라는 실체와 불가분리적인 부속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물로 된다. 새로 차지계약을 체결할 때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합체된 자본의 리자를 본래의 지대에 첨가하는데 이제 그가 토지를 임대하는 상대가 이 개량을 실시한 차지농업가이든 다른 어떤 차지농업가이든 그것은 상관없다. 그리하여 그의 지대는 불어난다. 또는 그가 토지를 팔려고 한다면—토지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것은 이제 곧 보게 될것이다—이제는 그 토지의 가치가 증대되였다. 그는 토지를 팔뿐만아니라 개량된 토지를, 그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은, 토지에 합체된 자본을 파는것이다. 이것이—본래의 지대의 운동은 전적으로 도외시하고—경제발전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부가 증대되고 그들의 지대가 부단히 불어나며 그들의 토지의 화폐적가치가 증대하는 비밀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혀 자기의 힘을 들이지 않고 이룩한 사회적발전의 성과를 그들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열매를 소비하기 위하여 태여난자들이다.[289]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합리적농업의 최대의 장애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차지농업가는 자기의 차지기간중에 완전한 환류를 기대할수 없는 일체 개량과 지출을 회피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정이 부단히 이러한 장해로서 비난을 받고있는것을 보게 된다. 즉 그것은 전세기에는 현대적지대리론의 본래의 발견자인 동시에 실지로 차지농업가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중요한 농학자이기도 한 제임즈 앤더슨[290]에 의하여 비난되였고 또 오늘날에는 영국의 현재의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반대자들에 의하여 비난되고있는것이다.

A. A. 월턴 《대브리텐 및 아일랜드의 차지제도사》(1865년

런던판 96~97페지)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수많은 농업기관들의 모든 노력도 경작의 개량이 차지농업가나 농촌로동자의 형편을 개선하는것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로 토지소유의 가치와 토지소유자의 지대액을 증대시키는 한 개량된 경작의 현실적진보에 있어서의 극히 중요한 결과 또는 실제로 주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올수는 없다. 량호한 배수나 충족한 시비나 훌륭한 경영이 토지를 근본적으로 정화 또는 개조하기 위하여 로동의 적용의 증가와 결부되면 토지의 개량에서나 생산의 증가에서나 놀랄만한 성과를 거둘것이라는것은 대체로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나 그의 토지관리인과 마찬가지로, 또는 지어는 농업협회의 회장과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에는 다액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지농업가들은 아무리 자기가 토지를 개량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제고시킨다 하더라도 그 리익의 대부분은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이 증대된 지대와 등귀된 토지가격으로서 거두어들일것이라는것도 역시 잘알고있다…그들도 어리석지 않은만큼 이 변사들 (농업관계의 연회에서의 토지소유자나 그 관리인들) 이 이상하게도 언제나 그들에게 말하는것을 잊어버리고있는 사실—즉 차지농업가들에 의하여 실시된 모든 개량의 최대의 몫은 결국 언제나 토지소유자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느끼고있는것이다. 이전의 차지가가 아무리 차지를 개량한다 하더라도 그의 후계자는 이전의 개량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데 비례하여 토지소유자는 지대를 인상할것이라는것을 반드시 발견할것이다.》

본래의 농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은 토지를 건축지로서 리용하는 경우와 같이 그렇게 똑똑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영국에서는 건축용이기는 하나 자유보유지로서 팔리지는 않는 토지의 큰 부분은 99년간이나 가능하다면 더 짧은 기간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임대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건물은 토지 자체와 함께 토지소유자의것으로 된다.

《그들(차지인들)은 임차계약이 만기가 되면 그때까지 굉장히 높은 지대를 물어오고도 가옥을 거주할수 있는 좋은 상태로 대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될가말가 할 때에 지주의 대리인 또는 검사인이 와서 당신의 가옥을 검사하고 당신이 그 가옥을 좋은 상태로 두도록 주의를 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여 그의 지주의 소유권에 넣어버린다. 이러한 제도가 완전히 유효한것으로서 앞으로도 장기간 허용된다면 왕국의 모든 가옥소유가 농촌의 토지소유와 마찬가지로 대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가고말것이라는것은 사실이다. 런던 노스웨스턴[291]의 거의 전 지역, 템플바[292]의 남북이 대체로 반타스의 대지주의것으로 되여있고 막대한 지대로 임대되고있으며 임대계약이 아직 전부 만기가 되고있지 않는 곳에서도 급속히 꼬리를 물고 계속 만기가 된다. 동일한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왕국의 모든 도시에 대하여서도 같이 말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러한 탐욕적인 배타적 독점적 제도는 정지되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 항구도시의 거의 모든 부두 설비들은 동일한 횡탈과정에 의하여 거대한 륙지해수들의 수중에 들어간다》(우와 같은 책, 92~93페지).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다음과 같은것도 명백한것이다. 즉 1861년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총인구 2,006만 6,224명중 가옥소유자수는 36,032명으로 되여있지만, 대소유자를 한편에 놓고 소소유자를 다른 한편에 놓고 본다면 가옥수나 인구수에 대한 소유자의 비률은 전혀 다른 광경을 보여줄것이라는것이다.

건물의 소유에 관한 이러한 실례가 중요한것은 1) 이 실례는 본래의 지대와 토지에 합체된 고정자본의 리자와의 구별, 즉 지대에 대한 추가분을 이룰수 있는 리자와의 구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때문이다. 건물의 리자도, 농업에 있어서 차지농업가에 의하여 토지에 합체된 자본의 리자도 임대차계약기간중에는 산업자본가나 건축투기업자나 차지농업가의것

으로 되는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매년 일정한 기한에 토지리용의 대가로서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는 지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다. 2) 상술한 실례는 토지와 함께 토지에 합체된 타인의 자본도 결국 토지소유자의것으로 되며 이 자본의 리자는 그의 지대를 증대시킨다는것을 보여주기때문이다.

저술가들중의 어떤 사람들은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토지소유자의 대변자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례컨대 캐어리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체제를 대립의 체제로가 아니라 《조화》의 체제로 천화시키려고 하면서 토지소유의 특수한 경제적표현인 지대를 리자와 동일한것으로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즉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와의 대립이 해소된다는것이다.[293] 자본주의적생산의 초기에는 이것과는 반대의 방법이 사용되였다. 당시 민중의 관념으로는 토지소유는 아직 사적소유의 원시적인 훌륭한 형태로서 간주되였는데 자본의 리자는 고리대로서 비난을 받았다. 그렇기때문에 다들리 노스, 로크 등도 뛰르고가 리자의 정당화를 지대의 존재로부터 도출한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리자를 지대와 류사한 형태로서 설명하였다.[294]—이러한 현대의 저술가들이 망각하고있는것은(지대는 순수한 형태에서도, 즉 토지에 합체된 자본의 리자를 조금도 추가함이 없이도 존재할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존재하고있다는것은 전혀 도외시하더라도) 이렇게 하여 토지소유자는 자기에게 조금도 비용이 들지 않는 타인의 자본에서 리자를 얻을뿐만아니라 또 그 우에 타인의 자본을 무상으로 얻게 된다는것이다. 토지소유를 정당화하는것은 일정한 생산방식에 수반되는 다른 모든 소유형태들을 정당화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산방식 자체가 력사적인 과도적인 필연성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또 생산방식에서 발

생하는 생산 및 교환 관계도 그러한 필연성을 가지고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는바와 같이① 토지소유는 어떤 발전단계에 이르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립장에서 보아도 불필요하며 유해로운것으로 나타난다는데 의하여 다른 종류의 소유와 구별되지만.

지대는 다른 한 형태로도 리자와 혼동될수 있으며 그때문에 그 특수한 성격이 잘못 리해될수 있다.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지면을 임대하는데 의하여 매년 받아내는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일정한 모든 화폐수입은 자본화될수 있다. 즉 어떤 상상적자본의 리자로 간주될수 있다.[295] 그러므로 례컨대 중등리자률이 5%라면 년액 200파운드의 지대는 4,000파운드라는 자본의 리자로 간주될수 있다. 이렇게 자본화된 지대는 토지의 구입가격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얼핏 보아도 분명히 로동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범주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로동의 생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가치를 가지고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불합리한 형태의 배후에는 하나의 현실적생산관계가 숨어있다. 어떤 자본가가 년액 200파운드의 지대를 낳는 토지를 4,000파운드로 구입한다면 그는 년평균 5%의 리자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이 자본을 리자부증권에 투하한 경우나 또는 그것을 5%의 리자로 직접 대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4,000파운드라는 자본을 5%로 증식하는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는 20년간에 자기 소유지의 구입가격을 토지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회수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영국에서는 토지구매가격이 그 토지에서 얻는 년수익의 몇개년분인가에 따

① 본권 918페지를 보라.—편집자

라 계산되는데[296] 그것은 지대의 자본화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이 구매가격은 사실상 토지의 구입가격이 아니고 토지가 낳는 지대를 보통의 리자률에 의하여 계산한 지대의 구입가격이다. 그러나 지대의 이 자본화는 지대를 전제로 하는데 지대는 반대로 그 자체의 자본화로부터 도출되고 설명될수는 없다. 판매에는 관계없이 지대가 존재한다는것이 오히려 여기에서는 전제이며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지대를 불변량이라고 전제하면 토지가격은 리자률이 오르내리는데 반비례하여 오르내릴수 있다는것으로 된다. 만약 보통의 리자률이 5%로부터 4%로 내렸다면 년액 200파운드의 지대는 4,000파운드의 자본이 아니라 5,000파운드의 자본의 년간중식을 대표할것이며 그리하여 동일한 지면의 가격은 4,000파운드로부터 5,000파운드로 또는 20년분의 수익으로부터 25년분의 수익으로 오른것으로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 이것은 지대 자체의 운동에는 관계없는, 다만 리자률에 의해서만 규제되는 토지가격의 운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리윤률은 사회적발전행정에서 저하하는 경향을 가지고있고 따라서 리자률도 리윤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한에서는 저하하는 경향을 가지고있으며 그리고 또 리윤률을 도외시하더라도 리자률은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증가의 결과로서도 저하하는 경향을 가지고있으므로 토지가격은 지대의 운동과 지대가 그 일부분으로 되는 토지생산물가격의 운동과는 관계없이도 오르는 경향을 가지고있다고 할수 있다.

지대 자체를 지대가 토지의 구매자에게 대하여 취하는 리자형태와 혼동하는것—지대의 성질을 전혀 모르는데에 립각한 혼동—은 아주 기묘한 궤변적결론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다. 모든 오랜 나라들에서는 토지소유는 특히 고상한 소유

형태로 간주되며 그밖에 또 토지소유의 구입은 특히 확실한 투자라고 간주되기때문에 지대가 구매되는 경우에 기준으로 되는 리자률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치는 다른 투자의 경우에 비하여 대체로 낮다. 그리하여 례컨대 토지의 구매자는 다른데 투자한다면 동일한 자본에 대하여 5%를 받을것인데 토지의 구입가격에 대하여서는 4%밖에 받지 못한다. 또는 결국 같은것으로 되지만 그는 지대에 대하여서는 다른 투자에서 동일한 년화폐수입에 대하여 지불하는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지불하게 된다. 이로부터 띠에르씨는 소유에 관한 그의 대체로 극히 졸렬한 저술(그가 1848년 프랑스국민의회에서 쁘루동을 반대하여 한 연설의 단행본)[297]에서 지대가 낮다는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은 다만 지대의 구입가격이 높다는것을 증명하는데 불과하다.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가격 또는 토지가치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토지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된다는 사정은 약간의 변호론자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를 정당화하는 리유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에 대하여도 등가를 지불하였으며 그리고 토지소유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그 소유자를 바꾸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정당화의 리유는 노예제도에 대하여도 타당할것이다. 왜냐하면 노예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한 노예소유자에게 있어서는 노예의 로동으로부터의 수익은 다만 노예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의 리자를 표시하는데 불과하기때문이다. 지대의 매매로부터 지대의 존재의 정당화를 도출하는것은 요컨대 지대의 존재를 지대의 존재에 의하여 정당화하는것이다.

지대—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의 토지소유

의 독립적인 특수한 경제적형태—의 과학적분석을 위하여는 지대를 불순하게 하고 애매하게 하는 일체 혼입물을 제거하고 지대를 순수하게 고찰하는것이 중요한데 다른 한편으로 토지소유의 실제적효과를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지어는 지대의 개념이나 성질과는 모순되면서도 지대의 존재형태로서 나타나는 많은 사실들을 리론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서도 리론상의 이러한 혼탁의 원천으로 되는 요소들을 아는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실지는 물론 토지경작을 허락받은 대가로서 차지농업가가 차지료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모든것이 지대로서 나타난다. 이 공물은 그것이 어떠한 구성부분들로써 구성되여있든간에, 그것이 어떠한 원천에서 생기든간에 지구의 일부분에 대한 독점이 소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공물을 징수하고 조세를 부과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본래의 지대와 공통적인것이다. 이 공물은 토지가격을 규정한다는것을 본래의 지대와 공통적인것으로 되게 하는데 토지가격은 우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토지의 임대로부터 오는 수입을 자본화한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토지에 합체된 자본의 리자는 지대의 이러한 이종적(异种的)구성부분을 이룰수 있는데 이 구성부분은 경제적발전행정에 따라 일국의 총지대액에 대한 부단히 증대하는 추가분을 형성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리자를 도외시하더라도 차지료가운데는 평균리윤이나 정상적인 로임 또는 동시에 이 량자로부터의 공제분이 부분적으로 포함될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들—즉 본래의 지대가 전혀 없고 따라서 토지가 현실적으로 무가치한 경우—에는 그 공제분이 차지료를 전부 차지하는 일이 있을수 있다. 이

부분이 리윤의 일부분이든 로임의 일부분이든간에 그것이 여기서 지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것은 이 부분이 정상적인 경우처럼 산업자본가나 임금로동자에게 귀속되는것이 아니라 차지료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기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도 지대를 형성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그것은 현실적인 지대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되며 그의 독점의 경제적실현으로 되며 토지가격에 대하여 현실적지대와 마찬가지로 규정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로 삼는것은 아니지만 어떤 관계하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즉 차지농업가 자신이 산업자본가가 아닌데 또는 그의 경영방식이 자본주의적방식이 아닌데 지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며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상응하는 토지소유방식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일이 있다. 례컨대 **아일랜드**에서 그러하다. 아일랜드에서는 차지농업가는 대체로 소농민이다. 그가 차지료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것은 흔히 그의 리윤의 일부분, 즉 그가 자기 자신의 로동도구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가지고있는 그 자신의 잉여로동의 일부분을 흡수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다른 관계하에서라면 그가 동일한 로동량에 대하여 받았을 정상적인 로임의 일부분도 흡수한것이다. 그밖에 여기에서는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차지농업가의 적은 자본—차지농업가가 대부분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토지에 첨가한—을 수탈하는것인데 이것은 동일한 사정하에서 고리대금업자가 하는것과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다만 고리대금업자는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자기 자신의 자본을 걸고 모험한다는 차이가 있을따름이다.

이러한 부단한 수탈은 아일랜드의 토지립법에 관한 분쟁의 대상을 이루고있는데 이 토지립법은 근본적으로는 차지농업가에게 계약해제통고를 하는 토지소유자는 차지농업가가 실시한 토지개량 또는 토지에 첨가된 자본을 보상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귀착된다.[298] 파머스톤은 이에 대하여 항상 다음과 같이 로골적으로 대답한다.

《하원은 토지소유자의 의원이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례외적인 제 관계도 문제로 하지 않는다. 즉 그러한 관계하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이 수행되는 나라들에서까지도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생산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높은 차지료를 짜낼수 있는데 례컨대 영국 공업지방들에서는 적은 정원을 위하여서나 또는 여가에 취미로 하는 농사를 위하여 작은 지면을 공장로동자들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그러하다(《공장감독관의 보고》).

우리가 문제로 삼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이 발전된 나라들에서의 농업지대이다. 례컨대 영국의 차지농업가들중에는 교육, 교양, 전통, 경쟁 및 기타 사정들로 말미암아 차지농업가로서 자기의 자본을 농업에 투하하게 되여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는 상당한 수의 소자본가들이 있다. 그들은 평균리윤보다 적은 리윤으로써 만족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것도 그 일부분을 지대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자본을 토지에, 농업에 투하하는 것이 허락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어디서나 토지소유자들은 립법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그것도 영국에서는 압도적인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영향력은 전체 차지농업가계급을 사취하기 위하여 리용될수 있다. 례컨대 1815년의 곡물법[68]—이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반자꼬벵전쟁[222]중에 비상히 증대된 지대수입의 존속을 무위도식하는 지주들에게 확보해주기 위하여 이 나라에 부과된 빵세이다—은 물론 약간의 례외적인 풍년을 도외시하면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자유로운 곡물수입의 조건하에서 저락하였을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법률은 립법자인 토지소유자들이 외국곡물의 수입에 대한 법정한계를 이룰만한 표준가격으로 지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결과는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차지계약은 이 표준가격을 념두에 두고 체결되였다. 이 환상이 깨여지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여 새로운 표준가격이 정해졌는데 이 새로운 표준가격도 이전의 표준가격과 다름없이 탐욕스러운 토지소유환상의 무력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지농업가들은 1815년부터 30년대까지 기만당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이 전 시기를 통하여 농업곤경이 간단없이 문제로 되였다. 그렇기때문에 이 시기를 통하여 온 1세대의 차지농업가들이 수탈당하고 파멸되였으며 그들 대신에 새로운 자본가계급들이 나타났다.(31)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본래의 농업로동자들의 로임이 그 정상적인 평균수준이하로 저하되고 그리하여 로임의 일부분이 로동자에게서 공제되여 차지료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지대라는 가면밑에 로동자에게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것이다. 례컨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약간의 특히 유리한 지위에 있는

---

(31) 반곡물법현상론문[299]을 보라. 그러나 곡물법은 항상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것은 상층의 차지농업가에게는 유리하였다. 그들은 리유가 있든 없든 례외적인 평균가격을 바라다본 대다수의 차지농업가가 보호관세로 말미암아 처해있던 정체상태에서 리익을 얻었다.

주를 례외로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영국에서 곡물법이 실시되기전에 설정된 로임수준에 관한 의회의 조사위원회의 로작들[300]—이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19세기 로임력사에 대한 가장 가치있고 거의 전혀 리용되지 않은 재료들이며 동시에 영국의 귀족 및 자산계급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세운 치욕의 기념비이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즉 그것은 반자꼬벵전쟁중의 높은 지대률과 이에 상응하는 토지가격의 상승은 부분적으로는 오직 로임으로부터의 공제와 생리적최저한도이하까지로의 로임의 인하때문이라는, 즉 정상적로임의 일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된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여러가지 사정들, 그가운데서도 화폐의 가치감소, 농업지방들에서 빈민구제법의 실시[301] 등등이 차지농업가들의 수입이 비상히 증대되고 토지소유자들이 그처럼 크게 치부한 바로 그 시기에 그러한 조작을 가능하게 한것이다. 사실상 곡물관세의 실시를 주장하는 차지농업가들 및 토지소유자들 측의 주요론거의 하나는 농업날품팔이군들의 로임을 이 이상 더 인하하는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상태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며 영국에서도 다른 모든 구라파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로임의 일부분이 여전히 지대로 들어가고있다. 샤프쯔버리백작, 당시는 애쉴리경이라 한 박애귀족의 한사람인 그가 영국공장로동자들의 상태에 비상히 격동되여 10시간로동일운동의 의회에서의 대변자[302]로 등장하였을 때 산업가들의 대변자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그의 지배하에 있는 촌락들에서의 농업날품팔이군들의 로임에 관한 통계를 공포하였다(제1부 제23장 제5절 e, 영국농업무산계급을 보라).[303] 이 통계는 이 박애가의 지대의 일부분이 오직 그의 차지농업가

가 그를 위하여 농업로동자의 로임에 대하여 감행한 략탈에서 나오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 공포된 통계는 또한 그것에 포함되고있는 사실들이 1814년 및 1815년의 위원회들[304]이 폭로한 최악의 사실들과 어깨를 겨눌수 있는것이라는 리유에서도 흥미있는것이다. 여러가지 사정들로 말미암아 부득불 농업날품팔이들의 로임을 일시적으로 인상시킬 때마다 차지농업가들이 비명을 지르며 로임을 다른 산업부문들에서 통용되는것과 같은 정상적수준으로 인상하는것은 그와 동시에 지대를 인하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것은 자기들을 파멸시키지 않을수 없다고 부르짖는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르짖음속에는 차지농업가들이 지대라는 명목밑에 로임의 공제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다는 고백이 포함되여 있다. 례컨대 1849~1859년간에 영국에서는 농업로동자들의 로임은 일련의 결정적인 사정들이 발생한 결과 인상되였다. 그것은 아일랜드로부터의 외국에로의 이주가 진행되여 그곳으로부터의 농업로동자의 공급이 단절된것, 제조업에 의하여 농업인구가 비상히 흡수된것, 전쟁[305]을 위한 군대의 수요가 있은것, 오스트랄리아나 합중국(캘리포니아)으로의 비상한 이주가 있은것, 그밖에 여기에서는 상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원인들이다. 동시에 이 기간에 1854~1856년의 흉작을 례외로 하면 이 시기의 곡물의 평균가격은 16% 이상이나 내렸다. 차지농업가들은 지대의 인하를 요구하여 부르짖었다. 그들이 성공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 요구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특히 증기기관과 새로운 기계를 대량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생산비를 저하시키는데 출로를 구하였는데 이 기계들은 부분적으로는 말을 대체하고 말을 경영에서 구축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농업날품팔이군들을 유리시

킴으로써 인위적인 과잉인구를 조성하고 따라서 로임의 새로운 저하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것은 이 10년간에 총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일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의 순 농업지방에서는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긴것이다.(32) 당시 케임브리지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였던(우정대신으로서 1884년에 죽은) 포씨트도 1865년 10월 12일 사회과학회의[307]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업날품팔이군들은 국외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차지농업가들은 국외이주의 결과 로동이 값비싸게 되였기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지불해오던 그러한 높은 지대는 지불할수 없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다》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높은 지대가 직접 낮은 로임과 동일시되고있다. 그리고 토지가격의 높이가 지대를 증가시키는 사정들에 기초하는 한에서는 토지의 가치증가는 로동의 가치감소와 같은것이며 토지가격이 높은것은 로동가격이 낮은것과 같은것이다.

프랑스에 대하여서도 동일한것을 말할수 있다.

《차지료가 오르는것은 한편으로는 빵, 포도주, 고기, 남새 및 과실의 가격이 오르기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의 가격이 변하지 않기때문이다. 만약 로인들이 그들의 부친들의 계산서를 비교하여본다면 이것은 우리를 약 100년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것으로 되는데 그때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것은 당시 프랑스농촌에서 1로동일의 가격은 바로 오늘날의 그것과 동일하다는것일것이다. 고기가격은 그후 3배로 올

---

(32) 죤 C. 모튼 《농업에 리용되는 힘》. 이것은 1859년 런던기술협회[306]에서 한 보고인데 이 보고는 스코틀랜드의 12개 주와 잉글랜드의 35개 주의 약 100명의 차지농업가에게서 수집한 신뢰할만한 기록에 기초한것이다.

랐다…이러한 대변화의 희생자는 누구인가? 차지의 소유자인 부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지를 경작하는 빈민들인가?…차지가격의 등귀는 공중의 불행의 증거이다》(M. 뤼비숑 《프랑스 및 영국에서의 사회기구에 대하여》, 1837년 빠리 제2판 101페지).

한편으로는 평균리윤으로부터의, 다른 한편으로는 평균로임으로부터의 공제의 결과로서의 지대의 실례—

우에서 인용한 토지관리인이며 농업기사인 모튼[308]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큰 차지의 지대는 비교적 작은 차지의 지대보다 낮다는것이 많은 지방에서 운운되여왔는데 그것은

《작은 차지때문에 일어나는 경쟁은 통례로 큰 차지때문에 일어나는 경쟁보다 심하기때문이며 또 농업이외의 다른 사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아주 적은 소차지농업가들은 보다 적당한 사업을 찾아야 할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너무 높다는것을 자기로서도 알고있는 지대를 즐겨 지불하는 일이 흔히 있기때문이다》(죤 L. 모튼 《토지의 자력》, 1858년 런던판 116페지).

그러나 잉글랜드에서는 이 차이가 점차 소멸되여갈것인데 이것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바로 소차지농업가계급간에서의 국외이주가 크게 작용하고있다. 이 모튼이 들고있는 한 실례로서는 차지농업가 자신의 로임, 따라서 더욱 확실하게는 그의 사용인들의 로임으로부터의 공제분이 명백히 지대에 들어가고있는것이다. 즉 두 말이 끄는 쟁기를 가질수 없는 70~80에이커(30~34헥타르)이하의 차지의 경우가 그러하다.

《차지농업가는 로동자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손으로써 근면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차지에 의해서 살아갈수 없다. 만약 그가 로동의 실행은 사용인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만 감독밖에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얼마 안가서 그가 지대를 지불할수 없다는것을 발견할것이다》(우와 같은 책, 118페지).

이로부터 모튼은 다음과 같이 결론한다. 즉 만약 이 지방의 차지농업가들이 몹시 가난하지 않다면 차지는 70에이커 이하여서는 안되며 그리하여 차지농업가는 2~3마리의 말을 사양할수 있다고 결론한다.

학사원[309]원사 및 중앙농업협회 회원인 레옹스 드 라배른 뉴씨는 비범한 지혜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의 저서 《잉글랜드의 농촌경제》(1855년 런던판, 영문역본에 따라 인용)에서, 프랑스에서는 사용되나 영국에서는 말이 대신하기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소에서 나오는 년수익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있다(42페지).

프랑스		영국	
우유 …	400만파운드	우유 …	1,600만파운드
고기 …	1,600만파운드	고기 …	2,000만파운드
로동 …	800만파운드	로동 …	—
	2,800만파운드		3,600만파운드

그런데 영국에서 보다 큰 금액의 생산물이 나오는것은 그 자신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우유의 가격이 프랑스에서보다 2배나 되기때문인데 소고기값은 두 나라에서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있다(35페지). 그러므로 영국의 우유생산물은 800만파운드로 축소되고 총생산물은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2,800만파운드로 축소된다. 만일 라배른뉴씨가 생산물량과 가격차를 동시에 그의 계산에 넣고 그리하여 영국이 프랑스보다 어떤 물품을 비싸게 생산한다는, 기껏하여 차지농업가나 토지소유자의 리윤이 보다 크다는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한것이 영국농업의 우점으로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사실

너무나 지나친것이다.

라배른뉴씨는 영국농업의 경제적성과를 알고있을뿐만아니라 영국의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들의 편견도 믿고있다는것을 그는 48페지에서 증명하고있다.

《알곡식물에는 보통 큰 불리함이 결부되고있다…그것은 알곡식물이 그 재배지를 피폐하게 한다.》

라배른뉴씨는 다른 식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을뿐만아니라 사료식물이나 근채류는 토지를 비옥하게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사료식물은 그 성장의 주요요소들을 대기중에서 섭취하는데 토지에 반환하는것이 토지에서 섭취하는것보다 더 많다. 그리하여 사료식물은 알곡식물 및 기타 토양을 피폐시키는 작물들이 끼친 손해를 2중의 방식으로, 즉 직접적으로도 또는 동물분뇨로 전화하는것으로써도 보상한다. 그러므로 사료식물을 적어도 이 작물들과 교체하여 재배하여야 한다는것이 원칙이다. 노포크식륜작이란 이것이다》 (50~51페지).

영국농촌에 류행되고있는 이러한 옛이야기를 믿고있는 라배른뉴씨가 또한 곡물관세페지이래 영국농촌날품팔이군들의 로임이 종전의 변칙성을 상실하였다는것을 믿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이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앞서 제1부 제23장 제5절 701~729페지에서 서술한것을 참조하라).[310] 그러나 우리는 1865년 12월 13일 버밍엄에서의 죤 브라이트씨의 연설도 들어보자. 그는 의회에 전혀 대표를 가지고있지 않는 500만의 가족에 대하여 말한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이러한 사람들중 불행한 구제대상자표에 오른자는 련합왕국에 100만 또는 오히려 100만 이상이 있다. 그다음에 또 100만은 구제를

받을 상태까지는 되고있지 않으나 항상 구제대상자로 될 위험에 있다. 그들의 현상태와 전도도 구제대상자에 비하여 나을것이 없다. 그러면 한번 사회의 이 부분의 무지한 하층을 생각해보라. 그들의 버림받는 상태, 그들의 빈궁, 그들의 고난, 그들의 완전한 절망상태를 보라. 합중국에 있어서까지도 노예제가 지배적이였던 남부 제 주에 있어서까지도 어느때든 환락의 그날이 닥쳐올것이라는 신념을 어느 혹인이나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솔직히 말하지만 이 사람들, 즉 우리 나라에서의 최하층의 이 대중에게는 어떠한 개선에 대한 신념도, 개선에 대한 념원조차도 없다. 당신들은 최근의 신문에서도 도씨트군의 농업날품팔이군인 죤 크로스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가? 그는 한주일에 6일간 일을 하였고 8실링의 주 임금으로 24년간 일하여준 그의 고용주의 우수증명서를 가지고있었다. 이 로임으로 죤 크로스는 자기의 오두막에서 7명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병든 처와 젖먹이 어린애를 덥혀주기 위하여 6펜스의 값이 있는 나무울타리를 뜯어갔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훔쳤다고 생각하지만. 이 범행때문에 그는 치안판사에게서 14~20일의 금고의 판결을 받았다. 죤 크로스사건과 같은것은 전국에서 특히는 남부에서 몇천건이라도 발견될수 있으며 또 그들의 상태야말로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나가는가 하는 비밀을 극히 성실한 연구가도 오늘까지 해명할수 없을 정도의것이라는것을 나는 단언할수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전국에 눈을 돌려 이 500만의 가족과 이 주민층이 처하고있는 절망상태를 생각해보라. 선거권에서 배제된 이 국민대중이 고역에 고역을 거듭하면서 거의 전혀 휴식을 모르고있다는것은 진실이라고 말할수 없겠는가? 이들과 지배계급과를 비교하여보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공산주의라고 비난할것이지만…그러나 일에 시달리면서도 선거권이 없는 다수의 이 국민과 국민가운데서도 지배계급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과를 비교하여보라. 그들의 부,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그들의 사치를 보라. 그들의 피로를 보라—사실 그들에게도 피로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향락에 지친 피로이다. 그리고 마치도 새로운 락을 발견하는것만이 해야 할 일인듯이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분주히 돌아다니고있는것을 보라》(《새별》지, 1865년 12월 14일부).

잉여로동 따라서 또한 잉여생산물일반이 지대와, 즉 잉여생산물중 적어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량적 및 질적으로 특수하게 규정되는 부분과 어떻게 혼동되는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 나타나고있다. 잉여로동일반의 자연발생적 기초, 즉 그것이 없이는 잉여로동이 가능하지 않은 자연조건은 자연이 필요한 생활수단을—토지의 식물적 또는 동물적 생산물로든 어업 등으로든—로동일의 전부를 삼키지 않는 로동시간의 사용에 의하여 공급한다는것이다. 농업로동(여기에는 단순한 채집, 사냥, 어로, 목축 로동도 포함되고있다)의 이러한 자연발생적생산성은 모든 잉여로동의 기초이다. 왜냐하면 모든 로동은 첫째로 그리고 본원적으로 식료의 취득과 생산에 돌려지고있기때문이다(그러나 동물은 동시에 기후가 보다 찬 곳에서는 방한용모피를 제공한다. 이밖에 동굴주택 등).

잉여생산물과 지대와의 이와 같은 혼동은 더브씨[311]에게서도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있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은 시초에는 서로 분리되여있는것이 아니다. 후자는 전자에 결부되여있다. 농업을 경영하는 종족인 가정공동체 또는 가족의 잉여로동 및 잉여생산물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을 다 포괄하고있다. 량자는 손에 손을 잡고 나간다. 사냥, 어로, 농업은 해당한 도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직조, 방적 등은 처음에는 농업의 부업으로서 수행된다.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312] 한 로동자의 로동이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 분할되듯이 로동계급의 총로동도 로동계급의 전체 생활수단(그것에 필요한 생산수단도 포함하여)을 생산하는 부분이 전 사회를 위한 필요로동을 수행하는것으로 분할하여 볼수 있다. 로동계급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로동은 잉여로동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필요로동은 결코 농업로동만을 포함하는것이 아니라 로동자의 평균소비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기타 모든 생산물을 생산하는 로동도 포함한다. 또 사회적견지에서 말하면 한편의 로동자들이 필요로동만을 수행하는것은 다른 한편의 로동자들이 잉여로동만을 수행하기때문이며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간에서의 분업에 불과하다. 농업로동자일반과 공업로동자일반간에서의 분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한편에서의 로동의 순 공업적인 성격에 다른 한편에서의 로동의 순 농업적인 성격이 상응한다. 이 순농업적인 로동은 결코 자연발생적인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사회적발전의 산물, 그것도 극히 현대적인, 결코 어디서나 달성될수 있는것이 아닌 산물이며 전적으로 특정된 한 생산발전단계에 상응하는것이다. 농업로동의 일부분은 사치에만 복무하든가 또는 공업용원료로는 되지만 결코 식료로는 되지 않는, 더구나 대중의 식료로는 되지 않는 생산물에 대상화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 공업로동의 일부분도 농업로동자들 및 비농업로동자들의 필요소비수단에 복무하는 생산물에 대상화된다. 이 공업로동을 사회적견지에서 잉여로동으로서 보는것은 잘못이다. 이 공업로동은 부분적으로는 농업로동의 필요로동부분과 마찬가지로 필요로동이다. 그것은 또한 이전에 농업로동과 자연발생적으로 결부되였던 공업로동의 일부분이 독립한 형태에 불과하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순 농업로동의 필요한 호상보충물에 불과하다(순전히 물질적으로 본다면 례컨대 500명의 기계직조공은 이전보다 훨씬 큰 정도로 잉여직물을, 즉 그들 자신의 의류에 필요되는것보다 많은 직물을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지대의 현상형태, 즉 생산목적이든 소비목적이든간에 토지를 리용하는 대가로서 지대의 명의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차지료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 물건, 즉 토지와 같이 로동의 생산물이 아닌 물건들 또는 골동품이나 일정한 명가의 예술품 등등과 같이 적어도 로동에 의하여 재생산될수 없는 물건들의 가격은 일련의 극히 우연적인 사정들의 배합에 의하여 결정될수 있다는것을 명기하여야 한다.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독점될수 있고 양도될수 있다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없다.

지대를 취급함에 있어서 분석을 모호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한 오유를 피하여야 한다.

1. 사회적생산과정의 각이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각이한 지대형태의 혼동.

지대의 특수형태가 어떠하든간에 그 모든 류형에 공통적인것은 지대의 취득은 토지소유가 실현되는 경제적형태라는 것이며 그리고 지대는 또 토지소유를, 즉 지구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일정한 개인의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소유자가 아시아, 애급 등에서와 같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이든 또는 이 토지소유가 노예제나 농노제하에서와 같이 직접적생산자들의 인신에 대한 일정한 개인의 소유의 우연한 부속물에 불과하든 또는 이 토지소유가 자연에 대한 비생산자들의 순수한 사적소유, 단순한 토지소유권이든 또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식민지이주민과 소농민적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와 같이 그 로동이 고립적이고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생산자들에 의한 일정한 지면

의 생산물의 취득과 생산에 직접 포함되여있는듯이 나타나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관계이든 아무래도 좋다.

각이한 지대형태들의 이러한 **공통성**—각이한 개인으로 하여금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법적의제인 토지소유의 경제적실현이라는 공통성—이 그 차이들을 간과하게 하는것이다.

2. 모든 지대는 잉여가치이며 잉여로동의 생산물이다. 지대는 그것의 비교적 발전하지 못한 형태인 현물지대형태에 있어서는 아직 직접 잉여생산물이다.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오유가 나온다. 그것은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상응하는 지대—이것은 항상 리윤을 넘는 초과분 즉 상품가치중 그 자체가 잉여가치(잉여로동)로써 구성되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이다—, 잉여가치의 이 특수한 독자적인 구성부분은 잉여가치 및 리윤일반의 일반적존재조건들을 설명하는데 의하여 설명된다는 오유이다. 이 존재조건들이란 다음과 같은것이다. 직접적생산자들은 그들 자신의 로동력 즉 그들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보다 많이 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잉여로동일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주관적조건이다. 그러나 객관적조건은 그들이 잉여로동도 수행**할 수 있다**는것이다. 즉 생산자로서의 그들의 재생산과 자기유지를 위하여서는 그들이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시간의 일**부분**으로써 충분하고 그들의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이 그들의 전체 로동력을 소비하지 않는 그러한 자연조건들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여기에는 자연의 비옥도가 하나의 한계, 하나의 출발점, 하나의 기초를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발전이 다른 하나의 한계, 출발점, 기초를 이룬다. 더 상세히 고찰하면 식료의 생산은 직접적생산

자들의 생활 및 온갖 생산일반의 선차적조건이므로 이 생산에 사용되는 로동, 따라서 가장 넓은 경제적의미에서의 농업로동은 리용될수 있는 로동시간이 전부 직접적생산자들의 식료의 생산에 흡수되지 않도록, 즉 농업적잉여로동 따라서 또 농업적잉여생산물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생산적이여야 한다. 그리고 또 발전하면 사회의 일부분이 수행하는 농업총로동—필요로동과 잉여로동—이 사회 전체를 위하여, 따라서 또 비농업로동자들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식료를 충분히 생산하는것, 따라서 농업자와 공업자간의 대분업 그리고 또한 농업자들중 식료를 생산하는 사람들과 원료를 생산하는 사람들간의 분업이 가능한것이다. 이리하여 직접 식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로동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 분할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에 관하여서는 오직 식료의 생산에만 필요한 필요로동을 표시한다. 동일한것은 개개의 작업장내부의 분업과는 구별되는 사회 전체내부의 분업에 있어서 생긴다. 이것은 특수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로동, 이 특수한 물품에 대한 사회의 특수한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이다. 이 분업이 균형이 잡힌것이라면 각이한 부류의 생산물들은 그것들의 가치대로(더 발전된 조건하에서는 생산가격으로) 팔리든가 또는 이 가치 또는 생산가격이 일반적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되여 수정된것인 가격대로 팔린다. 이것은 사실상 개별적 상품 또는 물품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분업에 의하여 독립화된 특수한 사회적생산분야들의 그때그때의 총생산물에 대하여 효력을 나타내는 가치법칙이다. 즉 각개 상품에 대해서 필요로동시간만이 소비되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사회적총로동시간중 필요한 비례적 분배량만이 각이한 부류에 소비되고있는것이다. 왜냐하면 조

건은 역시 사용가치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용가치는 개개의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이 그 자체로서 어떠한 욕망을 충족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면 사회적생산물량의 경우에는 그 생산물량이 매개 특수한 종류의 생산물에 대한 량적으로 규정된 사회적용망에 적당한가, 따라서 로동이 이 량적으로 한정된 사회적욕망에 비례하여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 균형적으로 분배되고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각이한 생산분야들로의 자본분배에 있어서 고려되여야 한다.) 사회적욕망 즉 사회적규모에서의 사용가치가 여기에서는 사회적총로동시간중 각이한 특수한 생산분야들에 할당되는 부분을 규정하는것으로 나타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개개의 상품의 경우에 나타나는 그 동일한 법칙에 불과하다. 즉 상품의 사용가치는 상품의 교환가치 따라서 상품의 가치의 전제라는 법칙이다. 이 점이 필요로동과 잉여로동간의 관계에 관련이 있는것은 이 균형이 파괴되여 상품가치, 따라서 또 그 가치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가 실현될수 없는 한에 있어서뿐이다. 례컨대 비률로 보아 너무 많은 면직물이 생산되였다고 하자. 이 직물이란 총생산물에는 주어진 제 조건하에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시간만이 실현되였다고 하자. 그러나 어쨌든 이 특수한 부문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로동이 지출되고있는것이다. 즉 생산물의 일부분은 용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전체가 마치도 그것이 필요한 비례로 생산된것처럼으로만 판매된다. 사회적로동시간중 각이한 특수한 생산분야들에 지출될수 있는 부분들의 이러한 량적제한은 가치법칙일반의 보다 전개된 표현에 불과하다. 비록 필요로동시간은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있는것이지만 즉 사회적로동시간중 이만큼한 분량이 사회적욕망의 충족

을 위하여 필요하다는것이다. 여기에서 제한은 사용가치를 통하여 나타난다. 주어진 생산조건하에서 사회는 그 총로동시간중 이만큼한 분량을 이 한 종류의 생산물에 지출할수 있을뿐이다. 그러나 잉여로동 및 잉여가치일반의 주관적 및 객관적인 조건들은 리윤이나 지대라는 특정된 형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러한 조건들은 잉여가치가 어떤 특수한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계없이 잉여가치 그 자체에 적용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은 지대를 설명하는것은 아니다.

3. 바로 토지소유의 경제적실현에 있어서, 즉 지대의 전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것은 특별히 독특한것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즉 지대의 액은 결코 지대의 수납자의 관여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가 조금도 참가하지 않은, 그와는 관계없는 사회적로동의 발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생산의 기초우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전체 범위에 걸쳐 상품생산인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 모든 생산부문들 및 그 부문들의 모든 생산물에 공통적인것이 지대의(그리고 농업생산물일반의) 특성으로 보이기 쉬운것이다.

사회적발전행정에서 지대의 량(그리고 그와 함께 토지의 가치)은 사회적총로동의 결과로서 증대한다. 그와 함께 한편으로는 토저생산물에 대한 시장과 수요가 증대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비농업부문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업부문들을 위한 경쟁적생산조건으로서의 토지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더 상세히 말하면 지대 따라서 또 토지의 가치는 본래의 농업지대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토지생산물을 위한 시장과 함께, 따라서 또 비농업인구의 증대에 따라서 발전한다. 즉 부분적으로는 식료에 대한, 부분적으로는 원료에 대한 비농

업인구의 욕망 및 수요와 함께 발전한다. 비농업인구에 비하여 농업인구를 부단히 감소시킨다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본성으로부터 생기는것이다. 왜냐하면 공업(협의의)에서는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증대는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증대하는것과 관련되여있는데 한편 농업에서는 일정한 지면을 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변자본은 절대적으로 감소되며 따라서 가변자본은 새로운 토지가 경작되는 한에서만 증대될수 있는데 이것은 또 비농업인구의 보다 큰 증가를 전제로 하는것이다.

사실상 이 현상은 농업 및 그 생산물의 특유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한것은 상품생산 및 그것의 절대적형태인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다른 모든 생산부문들과 생산물들에 대하여서도 해당된다.

이러한 생산물들은 다만 다른 상품들이 그 생산물들을 위한 등가물을 이루고 다른 생산물들이 그 생산물들에 상품으로서 그리고 가치로서 대립하는 범위에서만 상품이며 교환가치, 그것도 실현될수 있는, 화폐로 전화될수 있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사용가치이다. 바꾸어말하면 그 생산물들이 그 생산자 자신을 위한 직접적생활유지수단으로서 생산되는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즉 교환가치(화폐)로의 전화에 의해서만, 그것의 양도에 의해서만 사용가치로 되는 생산물로서 생산되는 범위에서 그러하다. 이 상품들을 위한 시장은 사회적분업에 의하여 발전한다. 생산적로동들의 분할은 이러한 로동들 각자의 생산물들을 호상 상품으로, 서로서로를 위한 등가물로 전화시키며 그 생산물들을 호상 시장으로서 복무하게 한다. 이것은 결코 농업생산물에만 특유한것은 아니다.

지대는 상품생산의 기초우에서만, 보다 상세히 말하면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만 화폐지대로 발전할수 있다. 그리고 지대는 농업생산이 상품생산으로 되는것과 동일한 정도로, 따라서 비농업생산이 농업생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발전하는것과 동일한 정도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그와 동일한 정도로 농업생산물은 상품으로, 교환가치로 그리고 가치로 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생산과 함께 상품생산이 따라서 가치생산이 발전하는것과 동일한 정도로 잉여가치 및 잉여생산물의 생산도 발전한다. 그런데 후자가 발전하는것과 동일한 정도로 토지소유가 토지를 독점함으로써 이 잉여가치중 더욱 크게 되는 부분을 탈취하는 능력, 따라서 자기가 받는 지대의 가치를 높이고 또 토지 자체의 가격을 높이는 능력도 발전한다. 자본가는 이 잉여가치 및 잉여생산물의 발전에 있어서 아직은 자기로 행동하는 기능자이다. 토지소유자는 다만 잉여생산물 및 잉여가치중 이와 같이 자기의 관여없이 증대하는 몫을 탈취하면 된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지위에 특유한것이다. 그러나 토지생산물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수요가 증대되며 또 그것과 함께 토지생산물에 대립하는 상품세계가 확대되며 바꾸어말하면 비농업적상품생산자의 수와 비농업적상품생산의 량이 증대하는데 따라 더욱더 토지생산물의 가치가 증대하고 따라서 또 토지의 가치도 증대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지위에 특유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관여없이 이루어지기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가치의 량, 잉여가치의 량 및 이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지대로 전화하는것은 사회적생산과정에 의존하며 상품생산일반의 발전에 의존한다는 현상은 어떤 특유한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렇기때문에 레컨대 더브는 이로부터 지대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지대는 농업생산물의

량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나[313] 이 가치는 비농업인구의 량과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생산물에 대하여서도 해당되는것인데 어떤 생산물이나 그것이 상품으로서 발전하는것은 오직 그 생산물에 대하여 등가물로 되는 일련의 다른 상품들의 량과 다양성의 발전에 수반하여서만이다. 이것은 이미 가치의 일반적설명에 있어서 보여준것이다.[314]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한 생산물의 교환능력은 그 생산물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품들이 다종다양한데 의존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이 생산물 자신이 상품으로서 생산될수 있는 량이 이 다양성에 의존한다.

공업생산자이든 농업생산자이든간에 어떤 생산자나 고립적으로 고찰하면 가치 또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의 생산물이 가치로 되며 상품으로 되는것은 오직 일정한 사회적관련속에서만이다. 첫째로는 그 생산물이 사회적로동의 발현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 생산자 자신의 로동시간이 사회적로동시간일반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나는 한에서만 그렇게 된다. 둘째로는 그의 로동의 이러한 사회적성격은 그의 생산물에 찍힌 사회적성격으로서 그의 생산물의 화폐적성격에서 그리고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 생산물의 일반적교환가능성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지대가 설명되는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잉여가치 또는 더욱 편협한 리해에 있어서는 잉여생산물일반이 설명된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상품 및 가치로서의 모든 생산물에 속하는 성격을 오로지 농업생산물에만 귀속시키는 오유를 범하고있다. 이 오유가 일층 더 천박한것으로 되는것은 가치의 일반적규정으로부터 일정한

상품가치의 **실현**으로 넘어가는 경우이다. 매개 상품은 자기의 가치를 류통과정에서만 실현할수 있으며 상품이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그때그때의 시장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물이 가치로 발전하고 또 가치로서 발전한다는것, 즉 농업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에 대립하고 또 비농업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농업생산물에 대립한다는것 또는 농업생산물이 사회적로동의 특수한 표현으로써 발전한다는것은 지대의 특성인것은 아니다. 지대의 특성은 농업생산물이 가치(상품)로서 발전하기 위한 조건들과 함께 또 농업생산물의 가치의 실현조건들과 함께 토지소유가 자기의 관여없이 창조되는 이 가치중 더욱더 증대하는 일부분을 취득하는 힘도 발전하며 잉여가치중 더욱더 증대하는 일부분이 지대로 전화된다는것이다.

제 38 장

차액지대. 개론

지대를 분석함에 있어서 우선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하려 한다. 그것은 즉 이러한 지대를 지불하는 생산물, 즉 그 잉여가치의 일부분 따라서 또 총가격의 일부분이 지대로 전화되는 생산물—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농산물이나 또는 광산물을 념두에 두면 충분하다—따라서 토지생산물 또는 광산물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 생산가격대로 판매된다는 전제이다. 즉 그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그 비용요소들(소비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 플라스 리윤과 같으며 이 리윤은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선대자본중의 소비된 부분과 소비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이 생산물의 평균판매가격은 그 생산가격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음에 문제로 되는것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대가 어떻게 발전할수 있는가, 즉 리윤의 일부분이 어떻게 지대로 전화될수 있는가, 따라서 상품가격의 일부분이 어떻게 토지소유자의것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 지대형태의 일반적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대다수의 공장들은 증기기관에 의하여 돌아가나 소

수의 공장은 자연적폭포에 의하여 돌아간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산업부문들에서의 생산가격은 100이라는 자본이 소비되는 상품량에 대하여 115라고 가정하자. 이 15%라는 리윤은 100이라는 소비된 자본에 대해서 계산될뿐만아니라 이 상품가치의 생산에 사용되고있는 총자본에 대해서도 계산된다. 이 생산가격은 앞에서 론한바와 같이① 각 생산적산업가의 개별적비용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 생산분야 전체에서의 자본의 평균적조건하에서 그 상품에 평균적으로 소비되는 비용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시장생산가격이며 시장가격의 진동들과 구별되는 평균적시장가격이다. 상품의 가치의 성질이 나타나는것은, 즉 상품의 가치가 일정한 상품량 또는 개별적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일정한 개개의 생산자에게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즉 시장에 있는 그 상품종류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량을 주어진 평균적인 사회적생산조건하에서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이 나타나는것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의 모습에서이며 더 상세히 말하면 조절적시장가격 또는 시장생산가격의 모습에서이다.

그리고 또 일정한 수량관계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좋으므로 우리는 수력에 의하여 돌아가는 공장들에서의 비용가격은 100이 아니라 90밖에 안된다고 가정하자. 이 상품량의 시장을 규제하는 생산가격은 15%의 리윤을 포함한 115이므로 수력으로 기계를 돌리는 공장주들도 역시 115로, 즉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평균가격으로 팔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리윤

① 본권 193~221페지를 보라.—편집자

은 15가 아니라 25일것이며 규제적생산가격은 그들로 하여금 10%의 초과리윤을 얻을수 있게 할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상품을 생산가격보다 비싸게 팔기때문이 아니라 생산가격대로 팔기때문이며 그들의 상품이 례외적으로 유리한 조건하에서 즉 이 생산분야에서 지배적인 평균수준보다 높은 조건하에서 생산되기때문이며 바꾸어말하면 그들의 자본이 이러한 조건하에서 기능하기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곧 명백해지게 된다.

첫째로, 자연적폭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생산자의 초과리윤은 우선 류통과정에서의 거래의 우연적인 결과나 또는 시장가격의 우연적인 변동의 결과가 아닌 모든 초과리윤(이 범주는 이미 생산가격의 서술에서① 설명되였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이 초과리윤은 유리한 조건들에 놓여있는 생산자들의 개별적생산가격과 이 생산분야 전체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시장규제적생산가격과의 차액과 같다. 이 차액은 이 상품의 일반적생산가격이 그 개별적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과 같다. 이 초과분의 두 조절적한계는 한편으로는 개별적비용가격, 따라서 개별적생산가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생산가격이다. 폭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보다 적은것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총량이 보다 적기때문이다. 즉 대상화된 형태로 불변자본의 일부로서 생산에 들어가는 로동이 보다 적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로동은 같은 종류의 대다수 공장들에서 사용되는 로동보다 생산적이며 그 개별적생산력은 보다 크다. 그 로동의 생산력이 보다 크다는것은 동일한 량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

① 본권 219~221페지를 보라.—편집자

다른 공장들에서보다도 적은 불변자본을, 보다 적은 대상화된 로동을 필요로 하며 그밖에 또 수차는 가열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보다 적은 산로동을 필요로 하는데서 나타난다. 사용되는 로동의 이 보다 큰 개별적생산력은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키지만 또 상품의 비용가격도 따라서 또 상품의 생산가격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산업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의 상품의 비용가격이 보다 낮은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보다 적은 대상화된 로동에 대하여 지불하면 되며 또한 보다 적게 사용되는 산로동력에 대하여 보다 적은 로임을 지불하면 된다. 그의 상품의 비용가격이 보다 낮기때문에 그의 개별적생산가격도 보다 낮다. 그에게 있어서 비용가격은 100이 아니라 90이다. 따라서 그의 개별적생산가격도 115가 아니라 다만 $103\frac{1}{2}$ ($100:115=90:103\frac{1}{2}$)이다. 그의 개별적생산가격과 일반적생산가격과의 차액은 그의 개별적비용가격과 일반적비용가격과의 차액에 의하여 한계가 지어지고있다. 이것은 그의 초과리윤의 한계를 이루는 량의 하나이다. 다른 하나의 량은 일반적생산가격의 크기인데 여기에는 일반적리윤률이 규제적요인의 하나로서 들어간다. 만약 석탄이 값싸게 되면 그의 개별적비용가격과 일반적비용가격과의 차액은 감소될것이며 따라서 그의 초과리윤도 감소될것이다. 만약 그가 상품을 그의 개별적가치 또는 그의 개별적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생산가격으로 팔지 않을수 없게 된다면 그 차액은 없어질것이다. 이 차액은 한편으로는 상품이 그것의 일반적시장가격으로, 즉 경쟁으로 말미암아 개별적가격이 평균화되는 가격으로 팔리는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의 보다 큰 개별적생산력이 로동자들의 리익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로동의 모든 생산력이 그러한바와 같이 그들의 고용주의 리익으로 되는 즉 그 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 초과리윤의 하나의 한계는 일반적리윤률의 높이를 그 제 요인의 하나로 하는 일반적생산가격의 높이이므로 이 초과리윤은 다만 일반적생산가격과 개별적생산가격과의 차액으로부터만, 따라서 개별적리윤률과 일반적리윤률과의 차액으로부터만 생길수 있다. 이 차액을 넘는 초과분은 생산물이 시장에 의하여 규제되는 생산가격으로서 팔리는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는 증기 대신에 자연적폭포를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공장주의 초과리윤은 다른 모든 초과리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있다. 모든 정상적인 초과리윤 즉 우연적인 판매행위나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초래되지 않는 초과리윤은 이 특수한 자본의 상품의 개별적생산가격과 이 생산분야일반의 자본의 상품의 시장가격 또는 이 생산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의 상품의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일반적생산가격과의 차액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차이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 어떠한 사정의 덕택으로 공장주는 그의 초과리윤을 얻게 되는가? 즉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생산가격이 그 개인에게 제공하는 초과분을 얻게 되는가?

우선 하나의 자연력, 폭포라는 동력의 덕택이다. 이 폭포는 천연적으로 주어져있는것인데 물을 증기로 전화시키는 석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로동생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가치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등가물에 의하여 지불될 필요가 없으며 비용이 들지 않는것이다. 폭포는 그 생산에 아무런 로동

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의 자연적생산요인인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다. 중기기관으로 작업하는 공장주도 자연력을 리용하는데 이러한 자연력은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나 로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자들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의 생산을 더 .저렴하게 하는 한에서는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며 따라서 리윤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력은 협업, 분업 등등에서 생기는 로동의 사회적자연력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자본에 의하여 독점된다. 공장주는 석탄에는 대가를 지불하지만 물이 그 응집상태를 변경하여 증기로 되는 능력이나 증기의 탄력 등등에 대하여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자연력의 독점 즉 자연력에 의하여 초래되는 작업능력의 제고에 대한 독점은 증기기관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모든 자본에 공통한것이다. 이 독점은 로동생산물중 로임으로 전화되는 부분에 비하여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을 증가시킬수 있다. 그렇게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독점은 일반적리윤률을 제고시키지만 바로 평균리윤을 넘는 개별적리윤의 초과분인 초과리윤은 창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폭포라는 자연력의 리용이 초과리윤을 창조한다면 로동생산력의 제고가 이 경우에 자연력의 리용에 기인하고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될수는 없다. 그렇게 되려면 변화를 일으키는 다른 사정들이 더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산업에서의 자연력의 단순한 리용만으로도 일반적리윤률의 수준이 영향을 받을수 있다. 그것은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의 량에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조금도 일반적리윤률로부터의 배리를 조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배리야

말로 여기서 문제로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들에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개별적자본에 의하여 실현되는 초과리윤—왜냐하면 특수한 생산분야들사이에서의 리윤률의 배리는 부단히 평균리윤률로 평균화되기때문에—은 우연적인것에 불과한 배리를 도외시하면 비용가격 즉 생산비의 감소에서 생긴다. 이 감소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정의 어느 하나에 기인한다. 즉 자본이 평균보다 큰 량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생산에서 비생산적비용이 감소됨과 함께 로동생산력을 제고하는 일반적원인들(협업, 분업 등)이 보다 큰 로동장소에서 작용하는데 의하며 보다 높은 정도로, 보다 큰 강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에 기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능자본의 규모를 도외시하면 보다 훌륭한 로동방법, 새로운 발명, 개량된 기계, 화학적인 제조상의 비결 등 요컨대 새로운 개량된 평균수준이상의 생산수단 및 생산방법이 사용된다는 사정에 기인하든가 한다. 비용가격의 감소와 거기에서 나오는 초과리윤은 이 경우에 기능자본이 사용되는 방식에서 생기는것이다. 그것들은 자본이 례외적으로 대량으로 한사람의 수중에 집적되여있다는것—이 사정은 동등한 크기의 자본량이 평균적으로 사용되자마자 소멸된다—에서 발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크기의 자본이 특히 생산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는것—이 사정은 이 례외적인 생산방법이 보급되든가 또는 보다 더 발전된 생산방법에 의하여 릉가되든가 하면 곧 소멸된다—에서 생기는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초과리윤의 원인은 자본 자체(여기에는 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도 포함된다)에서—사용자본의 크기의 차이에서든 그것의 보다 합목적적인 사용방식에서든간에—생기는것이고 동일한 생산분야에서의 모든 자본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는것을 방해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자본들간의 경쟁은 이 차이를 더욱더 평균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사회적필요로동시간에 의한 가치의 규정은 상품을 값싸게 하는데 있어서, 또 동일한 유리한 조건하에서 상품을 생산하게 강요하는데 있어서 관철된다. 그러나 폭포를 리용하는 공장주의 초과리윤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가 사용하는 로동의 제고된 생산력은 자본 및 로동 자체에서 생기는것도 아니며 자본 및 로동과는 구별되나 자본에 합체된 자연력의 단순한 사용에서 생기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력의 리용과 결부된 보다 큰 자연발생적로동생산력에서 생기는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연력은 증기의 탄력과 같이 동일한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이 다 리용할수 있는 자연력은 아니다. 따라서 무릇 자본이 이 분야에 사용되기만 하면 그 사용은 자명한것인 그러한 자연력은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그것은 폭포와 같이 다만 토지의 특수한 부분과 그 부속물을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자만이 리용할수 있는, 독점할수 있는 자연력이다. 로동의 보다 큰 생산력의 자연조건을 창조하는것은 매개 자본이 물을 증기로 전화시킬수 있는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이 자연조건은 자연계에서 국부적으로만 있는것이고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일정한 투자로써 조성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계, 석탄 등등과 같이 로동에 의하여 창조될수 있는 생산물과 결합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토지부분의 일정한 자연조건과 결합되여있는것이다. 폭포를 소유하고있는 공장주들은 폭포를 소유하고있지 않은 공장주들을 이 자연력의 리용으로부터 배제한다. 왜냐하면 토지는 제한되여있으며 수력자원의 혜택을 받는 토지는 더구나 제한되여있기때문이다.

이것은 한 나라에서의 자연적폭포의 수량이 제한되여있다 하더라도 산업에 리용할수 있는 수력의 수량이 증가될수 있다는것을 배제하는것은 아니다. 폭포는 그 동력을 충분히 리용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끌어들일수도 있다. 폭포가 있으면 수차를 개량하여 수력을 될수 있는대로 많이 리용할수 있다. 물공급상태로 보아 보통수차가 적당하지 않은 곳에서는 타빈을 사용할수도 있다 등등. 이 자연력의 점유는 그 점유자의 수중에서 독점—자본 자체의 생산과정에 의하여는 창조될수 없는 투하자본의 높은 생산력의 조건—을 형성한다.(33) 이와 같이 독점될수 있는 이 자연력은 언제나 토지에 붙어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력은 그 생산분야의 일반적조건들에 속하는것도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창조할수 있는 그 생산분야의 조건들에 속하는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가 폭포를, 그것이 속하고있는 토지와 함께 이 토지부분의 소유자 즉 토지소유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들은 다른 사람이 폭포에 자본을 투하하며 자본으로 폭포를 리용하는것을 배제한다. 그들은 그 리용을 허락할수도 있으며 거부할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은 그 자체로 폭포를 창조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폭포의 리용에서 생기는 초과리윤은 자본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라 독점할수 있으며 또 독점되여있는 자연력의 자본에 의한 리용에서 생기는것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초과리윤은 지대로 전화된다. 즉 그것은 폭포의 소유자의 수중에 들어간다. 만약 공장주가 폭포의 소유자에게 그의 폭포에 대하여 매년 10파운드를 지불한다면 공장주의 리윤은 15파운드로 되

(33) 초과리윤에 관하여는 《최근 말사스씨가 주장하는 수요의 성질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말사스에 대한 반박)를 보라.[315]

며 그 경우에 그의 생산비인 100파운드에 대하여 15%로 된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생산분야에서 중기로 작업하는 기타 모든 자본가들과 완전히 마찬가지의 처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은 처지에 있다. 자본가 자신이 폭포를 소유하고있다 하더라도 사태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을것이다. 그는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폭포의 소유자로서 여전히 10파운드의 초과리윤을 얻을것이다. 그리고 이 초과분은 바로 그의 자본 자체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라 그의 자본과는 분리될수 있으며 독점될수 있고 범위가 제한되고있는 자연력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다는것에서 생기기때문에 지대로 전화되는것이다.

첫째로, 이 지대는 언제나 차액지대라는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품의 일반적생산가격의 형성에 참가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이 생산가격을 전제로 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 지대는 언제나 독점된 자연력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개별자본의 개별적생산가격과 그 생산분야일반에 투하된 자본의 일반적생산가격과의 차액에서 생기는것이다.

둘째로, 이 지대는 사용되는 자본 또는 이 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 로동의 생산력의 절대적증대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다. 증대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킬수 있을따름이다. 이 지대는 일정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일정한 개별자본의 생산성이 생산력의 이 례외적인, 자연적으로 구비된 유리한 조건들로부터 배제되고있는 투자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크다는것에서 생기는것이다. 례컨대 석탄은 가치를 가지고있고 수력은 가치를 가지고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기의 리용이 훨씬 큰 리익을 주고 이 리익은 수력의 리용에서는 배제되여있고 또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수력은 리용되지 않을것이며 또 아무런 초과리윤도 산생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지대도 산생하지 않을것이다.

셋째로, 자연력은 초과리윤의 원천이 아니라 례외적으로 높은 로동생산력의 자연적기초이기때문에 초과리윤의 자연적 기초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용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가치의 담당자이고 교환가치의 원인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사용가치도 만약 로동이 없이 창조될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교환가치도 가지지 않을것이지만 사용가치로서의 그 자연적유용성은 여전히 가지고있을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어떤 물건이 사용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즉 로동의 그러한 자연적담당자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교환가치도 가지지 않을것이다. 만약 각이한 가치들이 생산가격으로 평균화되지 않으며 각이한 개별적생산가격들이 일반적인 시장규제적생산가격으로 평균화되지 않는다면 단지 폭포의 사용에 의하여 로동생산력이 높아진다는것만으로는 폭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을 저하시킬뿐 이 상품들에 포함되여있는 리윤부분을 증가시킬수는 없을것이다. 이것은 마치도 다른 한편 만약 자본이 자기가 사용하는 로동의 자연적 및 사회적 생산력을 자기 자신의 생산력으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이 제고된 로동생산력은 결코 잉여가치로 전화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넷째로, 폭포의 토지소유 자체는 잉여가치(리윤)의 이 부분, 따라서 폭포의 도움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일반중의 이 부분의 창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초과리윤은 토지소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례컨대 폭포가 속해있는 토지가 주인없는 토지로서 공장주에게 리용되더라도 역시 존재할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는 초과리윤으로 전화되는 가치부분을 창조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소유자 즉 폭포의 소유

자가 이 초과리윤을 공장주의 주머니로부터 자기의 주머니에 옮겨놓게 할따름이다. 토지소유는 이 초과리윤의 창조의 원인이 아니라 초과리윤을 지대의 형태로 전화시키는 원인이며 따라서 리윤 또는 상품가격중의 이 부분이 토지소유자 또는 폭포소유자에 의하여 취득되는 원인이다.

다섯째로, 폭포의 가격, 즉 토지소유자가 폭포를 제삼자 또는 공장주 자신에게 판매하여 받는 가격은 그 공장주의 개별적비용가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품의 생산가격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대는 증기기관으로 생산되는 동종상품의, 폭포와는 관계없이 규제되는 생산가격에서 생기기때문이다. 그러나 또 폭포의 이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 배후에 현실적, 경제적 관계가 숨어있는 불합리한 표현이다. 폭포는 토지나 모든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아무런 로동도 대상화되여있지 않기때문에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통례로 화폐로 표현된 가치에 불과한 가격도 가지지 않는다. 가치가 없는 곳에는 물론 화폐로 표시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가격은 자본화된 지대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토지소유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개별적리윤과 평균리윤과의 차액을 점유할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점유되여 매년 갱신되는 리윤은 자본화될수 있고 그 경우에는 자연력 자체의 가격으로서 나타난다. 폭포의 리용이 공장주에게 주는 초과리윤이 매년 10파운드이고 평균리자가 5%라면 이 10파운드는 매년 200파운드라는 자본의 리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폭포로 하여 그 소유자가 공장주로부터 매년 점유할수 있는 10파운드가 이렇게 자본화된것이 폭포 자체의 자본가치로서 나타난다. 폭포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며 폭포의 가격은 점유된 초과리윤을 자본주의적

으로 계산한 단순한 반영에 불과하다는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하여서도 곧 명백해진다. 즉 200파운드라는 가격은 10파운드의 초과리윤에 20년을 승한 적을 표시할따름이지만 한편 다른 조건들이 변함없다면 동일한 폭포는 30년, 100년, x년이라는 미정의 기간에 걸쳐 그 소유자가 매년 이 10파운드를 점유할수 있게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력에서는 응용될수 없는 새로운 생산방법이 중기기관으로써 생산되는 상품의 비용가격을 100파운드로부터 90파운드로 저하시킨다면 초과리윤도, 따라서 지대도, 따라서 또 폭포의 가격도 없어질것이라는 점에서 곧 명백해진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차액지대의 일반적개념을 확정해놓고 이제는 본래의 농업에 있어서의 차액지대의 고찰로 넘어가자. 본래의 농업에 관하여 말하는것은 대체로 광산업에도 해당된다.

제 39 장

차액지대의 제1형태
(차액지대 Ⅰ)

리카도의 다음과 같은 명제들은 완전히 옳은것이다.

《지대 (즉 차액지대. 그는 차액지대이외는 어떠한 다른 지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있다) 란 언제나 두개의 동등한 량의 자본 및 로동을 사용하는데 의하여 얻어지는 생산물간의 차액이다》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판 59페지).

문제가 지대이고 초과리윤일반이 아닌 한에서 그는 《동일한 면적의 토지에서》 라고 첨가했어야 할것이였다.

바꾸어말하면 초과리윤은 그것이 류통과정에서의 우연적인 사정들에 의하여 산생되는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산생된것인 한 언제나 두개의 동등한 량의 자본 및 로동의 생산물간의 차액으로서 생산되며 이 초과리윤은 두개의 동등한 량의 자본 및 로동이 동등한 면적의 지면에 사용되여 부동등한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지대로 전화하는것이다. 그밖에 이 초과리윤이 동등한 량의 사용된 자본의 부동등한 결과에서 생긴다는것은 결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것은 아니다. 각이한 투자들에서 부동등한 크기의 자본이 사용될수도 있다. 게다가 대부

분의 경우에 이것이 전제이다. 그러나 각 자본중의 동등한 비례적 부분, 례컨대 각 자본중의 100파운드는 부동등한 결과들을 가져온다. 즉 리윤률은 각이하다. 이것은 투자일반의 임의의 한 분야에 있어서의 초과리윤의 존재를 위한 일반적전제이다. 둘째는 이 초과리윤이 지대(일반적으로 리윤과 구별되는 형태로서의 차지료)의 형태로 전화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사정하에서 진행되는가는 어느 경우에나 연구하여야 할 문제이다.

리카도의 다음과 같은 명제도 그것이 차액지대에 국한되는 한에서는 역시 옳은것이다.

《동일한 토지 또는 새로운 토지에서 얻는 생산물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모든것은 지대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그리고 이 차이를 증대시키는 모든것은 필연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작용을 산생하여 지대를 높이는 경향을 가진다》(우와 같은 책, 74페지).

그러나 이 원인들중에는 일반적인 원인(비옥도와 위치)뿐만아니라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원인들도 있다. 즉 1) 조세의 부과가 균등하게 작용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데 의한 차이. 영국에서와 같이 조세의 부과가 중앙집중화되고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조세가 토지에 부과되고 지대에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언제나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2) 지방에 따라 농업발전도가 각이하므로 하여 생기는 차이, 왜냐하면 이 산업부문은 그 전통적성격때문에 제조업에 비하여 수준화되기가 어렵기때문이다. 3) 차지농업가들간의 자본분배의 불균형.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의한 농업의 점령, 자영적농민의 임금로동자에로의 전화는 사실상 이 생산방식일반이 수행하는 최후 정복이므로 이러한 차이들은 농

업에서는 다른 어떤 산업부문보다도 큰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비적설명 다음에 리카도 등의 전개와 다른 나의 전개의 특징을 극히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선 같은 면적의 각이한 토지에 사용되는 같은 량의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같지 않은 결과를 고찰하자. 또는 면적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계산된 결과들을 고찰하자.

이 같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자본과는 관계없는 두 개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비옥도**(이 첫째 점과 관련하여서는 각이한 토지의 자연적비옥도에는 대체 무엇이 포함되며 어떠한 각이한 계기들이 포함되는가를 해명해야 한다). 2) 토지의 **위치**. 이 위치는 식민지의 경우에는 결정적인것이며 또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토지가 련달아 경작되는 순서에 있어서 결정적인것이다. 그리고 또 차액지대의 이 두 개의 각이한 원인인 비옥도와 위치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어떤 토지가 위치는 대단히 좋지만 비옥도는 대단히 낮을수 있으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수 있다. 이 사정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나라의 토지 개간에 있어서 좋은 토지로부터 나쁜 토지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도 될수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을 설명하여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생산일반의 진보는 한편으로는 지방시장들을 조성하며 교통운수수단의 건설에 의하여 위치를 창조하는데 의하여 차액지대의 원인으로서의 위치를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을 제조공업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생산의 큰 중심을 형성함으로써 농촌을 상대적으로 고립화하는데 의하여 여러가지 토지

의 지방적위치의 차이를 확대한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선 토지의 위치라는 이 점은 제쳐놓고 다만 자연적비옥도만을 고찰하기로 하자. 기후 등 계기들을 도외시하면 자연적비옥도의 차이는 각이한 지면의 화학적구성의 차이에 있다. 즉 그러한 지면에 포함되여있는 식물의 영양소의 차이에 있다. 그러나 두개의 지면의 화학적성분이 같고 이 의미에서 자연적비옥도가 같다고 전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유효한 비옥도는 이 영양소들이 식물의 영양을 위하여 동화되기 쉽고 직접 리용되기 쉬운 모습으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다를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자연적비옥도가 같은 여러가지 토지에서 이 자연적비옥도를 어느 정도까지 리용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부분적으로는 농업의 화학적발전에 의존하며 부분적으로는 농업의 기계적발전에 의존할것이다. 그러므로 비옥도는 그것이 토지의 객관적속성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일정한 관계를, 즉 농업의 주어진 화학적 및 기계적 발전상태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는것이며 따라서 이 발전상태에 따라 변화한다. 화학적수단(례컨대 굳은 점토질토양에 어떤 류동성 비료를 사용하는것, 또는 무거운 점토질토양을 하소하는것)에 의하여서나 또는 기계적수단(례컨대 무거운 토양에 특수한 쟁기를 사용하는것)에 의하여서든간에 같은 비옥도의 토지를 사실상 보다 비생산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장애들은 제거될수 있다(배수도 또한 이에 속한다). 이것은 각이한 종류의 토지가 경작되는 순서조차도 변경시킬수 있다. 례컨대 영국 농업의 어떤 발전기에 가벼운 사질토양과 무거운 점토질토양간에서 그러하였다. 이것은 또 력사적으로—경작이 발전하는 과정에—어떻게 비옥도가 높은 토지로부터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 이전될수 있고 또 그 반대로도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동일한 결과들은 또한 토양구성을 인공적으로 개량하는데 의하여서도 또는 영농방법상의 단순한 변화에 의하여서도 달성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결과는 하층토까지도 경작권내에 인입되여 경지에 추가되면 하층토의 상태가 다르므로 하여 각종 토지의 등급이 변화되는데서도 생길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영농방법의 응용(례컨대 사료식물의 재배)에 의하여 생기며 부분적으로는 하층토를 표토로 만들든가 또는 하층토와 표토를 혼합하든가 또는 하층토를 우에로 갈아올리지 않고 경작하든가 하는 기계적수단에 의하여 생긴다.

각이한 토지의 각이한 비옥도에 미치는 이상의 모든 영향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것으로 귀결된다. 즉 경제적비옥도로 보면 로동생산력의 수준도 즉 여기에서는 토지의 자연적비옥도를 즉시에 리용할수 있게 하는 농업의 능력—이 능력은 발전단계가 다르면 다른것이지만—도 토지의 화학적구성 및 기타 자연적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토지의 자연적비옥도의 한 계기라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의 일정한 발전단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토지의 등급은 이 발전단계에 따라 평가된다—여러가지 토지들에 대하여 동시에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하지만—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 경우에는 차액지대는 상승적 또는 하강적 순서로 표현될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경작되고있는 여러가지 토지의 총체에 대하여서는 순서는 이미 주어진것이지만 이 순서가 형성된 련속적운동은 부단히 진행되여왔기때문이다.

4종류의 토지 A, B, C, D를 가정하자. 그리고 또 밀 1쿼터의 가격을 3파운드 즉 60실링이라고 가정하자. 지대는 단순한 차액지대이므로 쿼터당 60실링이라는 이 가격은 제일

나쁜 토지에 있어서는 생산비[316]와 같다. 즉 자본 플라스 평균리윤과 같다.

A는 이 제일 나쁜 토지이고 50실링의 투하로 1쿼터=60실링을 낸다고 하자. 즉 리윤은 10실링 또는 20%이다.

B는 동일한 투하로 2쿼터=120실링을 낸다고 하자. 이것은 70실링의 리윤 또는 60실링의 초과리윤을 주는것으로 될것이다.

C는 동일한 투하로 3쿼터=180실링을 낸다고 하자. 총리윤=130실링, 초과리윤=120실링이다.

D는 4쿼터=240실링=180실링의 초과리윤을 낸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될것이다.

표 I

토지종류	생산물		선대자본	리 윤		지 대	
	쿼터	실링		쿼터	실 링	쿼터	실링
A	1	60	50	$\frac{1}{6}$	10	—	—
B	2	120	50	$1\frac{1}{6}$	70	1	60
C	3	180	50	$2\frac{1}{6}$	130	2	120
D	4	240	50	$3\frac{1}{6}$	190	3	180
합 계	10	600	—	—	—	6	360

이것들의 지대는 D에 있어서는 190실링-10실링 즉 D와 A간의 차액이고 C에 있어서는 130실링-10실링 즉 C와 A간의 차액이고 B에 있어서는 70실링-10실링 즉 B와 A간의 차액이

다. 그리고 B, C, D의 총지대는 60쿼터=360실링이고 D와 A, C와 A, B와 A간의 각 차액의 합계와 같다.

어떤 주어진 상태하에서 어떤 주어진 생산물을 표시하는 이 순서는 추상적으로 보면(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될수 있는 리유는 이미 설명하였다) 하강적순서(D로부터 A로, 즉 비옥도가 높은 토지로부터 점점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 하강하는 것)로 될수도 있고 상승적순서(A로부터 D로,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부터 점점 비옥도가 높은 토지로 상승하는것)로도 될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또 번갈아 때로는 하강하고 때로는 상승하여 례컨대 D로부터 C로, C로부터 A로, A로부터 B로의 순서로도 될수 있다.

하강적순서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은 1쿼터의 가격이 례컨대 15실링으로부터 60실링으로 점차 오른다는것이였다. D에 의하여 생산되는 4쿼터(이것은 백만단위로 생각하여도 좋다)로는 이미 부족하게 되면 밀의 가격은 부족분이 C에 의하여 공급될수 있을 때까지 등귀하였다. 즉 가격은 쿼터당 20실링까지 오르지 않을수 없었다. 밀의 가격이 쿼터당 30실링으로 오르자 B가, 그리고 60실링으로 오르자 A가, 그것에 투하된 자본이 20%보다 낮은 리윤률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없이 경작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D에 있어서는 최초에는 쿼터당 5실링 즉 그것이 생산하는 4쿼터에 대하여는 20실링의 지대가 형성되였으며 그다음에는 쿼터당 15실링, 즉 4쿼터에 대하여는 60실링, 또 그다음에는 쿼터당 45실링, 즉 4쿼터에 대하여는 180실링의 지대가 형성되였다.

D의 리윤률이 최초에는 역시 20%였다면 4쿼터에 대한 그 총리윤도 10실링에 불과하였으나 이 10실링은 곡물가격이 15실링이였던 때에는 그것이 60실링인 때보다 더 많은 곡물을

대표하였다. 그런데 곡물은 로동력의 재생산에 들어가는것이고 또 매 쿼터중 일부분은 로임을 보상하고 다른 일부분은 불변자본을 보상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 전제밑에서는 잉여가치는 보다 컸을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정들이 동등하다면 리윤률도 보다 컸을것이다(리윤률에 관한 문제는 더 특별히 그리고 보다 상세히 연구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반대로 되여 과정이 A부터 시작되였다면 새로운 경지가 경작되지 않을수 없게 되였을 때 쿼터당 가격은 처음에 60실링이상으로 올랐다. 그러나 필요한 공급량 2쿼터가 B에 의하여 제공되였으므로 가격은 다시금 60실링으로 내렸다. 왜냐하면 B는 비록 쿼터당 30실링으로 생산하였지만 B의 공급은 바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쿼터당 60실링으로 팔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우선 B에 있어서 60실링의 지대가 형성되였고 또 동일하게 C 및 D에 있어서도 지대가 형성되였다. 어느 경우에나 전제로 되고있는것은 C와 D는 각각 1쿼터당 20실링 및 15실링의 현실적가치로 생산하였지만 A가 제공하는 1쿼터의 공급이 의연히 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기때문에 시장가격은 의연히 60실링이라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A에 의하여 그 다음에는 A 및 B에 의하여 충족된 수요를 넘어서 더 수요가 증대되였다는것은 B, C, D를 순차적으로 경작되게 한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작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게 하였고 비옥도가 보다 높은 토지가 나중에야 비로소 우연히 그 범위에 들어오게 하였을것이다.

첫째 순서에서는 가격이 오르는데 따라서 지대는 오르고 리윤률은 저하될것이다. 이 저하는 반대로 작용하는 사정들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저지될수 있을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후에 상세히 언급하여야 하겠다. 잊어

서는 안될것은 일반적리윤률은 잉여가치에 의하여 **모든** 생산분야들에서 균등하게 규정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농업리윤이 공업리윤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317]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겠다.

둘째 순서에서는 투하자본에 대한 리윤률은 의연히 동일할것이다. 리윤의 량은 보다 적은 곡물로 표시될것이다. 다른 상품에 비한 곡물의 상대적가격은 오를것이다. 다만 리윤의 증가분은 그것이 생기는 경우에는 산업가인 차지농업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서 리윤의 증대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지대형태로서 리윤으로부터 분리될것이다. 그러나 곡물가격은 지금까지의 전제밑에서는 변함없을것이다.

차액지대의 발전 및 증대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도 그리고 나쁜 토지로부터 좋은 토지로 부단히 전진하는 경우에도, 좋은 토지로부터 나쁜 토지로 부단히 후퇴하는 경우에도 변함없을것이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1. 가격이 한 순서에 있어서는 오르고 다른 한 순서에 있어서는 변함없다는것. 2. 좋은 토지로부터 나쁜 토지로 또는 반대로 나쁜 토지로부터 좋은 토지로 부단히 진행된다는것.

그러나 이번에는 곡물수요가 최초의 10쿼터로부터 17쿼터로 증대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제일 나쁜 토지 A는 다른 토지 A에 의하여 구축되며 이 후자는 60실링의 생산비(50실링의 비용 플라스 10실링, 즉 20%의 리윤)로써 $1\frac{1}{3}$쿼터를 제공하며 따라서 그 1쿼터당 생산가격은 45실링이라고 가정하자. 또는 종전의 토지 A는 부단한 합리적경작에 의하여 개량되였든가 또는 례컨대 토끼풀 등등을 채용함으로써 비용

은 변함이 없는데 보다 생산적으로 경작하게 되였고 그리하여 그 생산물이 동일한 선대자본으로 $1\frac{1}{3}$쿼터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토지 B, C, D는 여전히 동일한 량의 생산물을 제공하는데 비옥도가 A와 B의 중간에 있는 새로운 토지 A′와 비옥도가 B와 C의 중간에 있는 B′, B″가 경작되게 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생길것이다.

첫째로, 밀 1쿼터의 생산가격 또는 그 규제적시장가격은 60실링으로부터 45실링으로, 즉 25% 내릴것이다.

둘째로, 비옥도가 높은 토지로부터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의 이행과 보다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부터 비옥도가 높은 토지로의 이행이 동시에 진행될것이다. 토지 A′는 A보다는 비옥도가 높으나 이전부터 경작되고있는 B, C, D보다는 비옥도가 낮다. 그리고 B′, B″는 A, A′및 B보다는 비옥도가 높으나 C 및 D보다는 비옥도가 낮다. 따라서 진행의 순서는 교차될것이다. A 등등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 이행되지는 않을것이나 이때까지 비옥도가 제일 높았던 토지들인 C 및 D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 이행될것이다. 다른 한편 절대적으로 비옥도가 높은 토지로 이행되지는 않을것이다. 이때까지 비옥도가 제일 낮았던 A에 비교하면 또는 A와 B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높은 토지로 이행될것이다.

셋째로, B의 지대는 감소될것이다. C 및 D의 지대도 감소될것이다. 그러나 곡물로 표현된 지대총액은 6쿼터로부터 $7\frac{2}{3}$쿼터로 증가될것이다. 경작되여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의 량은

증가하며 생산물의 총량도 10쿼터로부터 17쿼터로 증가될것이다. A에 있어서 리윤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곡물로 표현되면 증가될것이다. 리윤률 자체는 상대적잉여가치가 증가될것이기 때문에 제고될수도 있을것이다. 이 경우에는 생활수단이 값싸게 되기때문에 로임이 내려가며 따라서 가변자본에 대한 투하가 감소되며 따라서 총투자액도 감소될것이다. 화폐로 표현된 지대총액은 360실링으로부터 345실링으로 감소될것이다.

다음에 새로운 순서를 도표로 만들어보기로 하자.

표 Ⅱ

토지종류	생산물		자본투자	리윤		지대		쿼터당 생산가격
	쿼터	실링		쿼터	실링	쿼터	실링	실링
A	$1\frac{1}{3}$	60	50	$\frac{2}{9}$	10	—	—	45
A′	$1\frac{2}{3}$	75	50	$\frac{5}{9}$	25	$\frac{1}{3}$	15	36
B	2	90	50	$\frac{8}{9}$	40	$\frac{2}{3}$	30	30
B′	$2\frac{1}{3}$	105	50	$1\frac{2}{9}$	55	1	45	$25\frac{5}{7}$
B″	$2\frac{2}{3}$	120	50	$1\frac{5}{9}$	70	$1\frac{1}{3}$	60	$22\frac{1}{2}$
C	3	135	50	$1\frac{8}{9}$	85	$1\frac{2}{3}$	75	20
D	4	180	50	$2\frac{8}{9}$	130	$2\frac{2}{3}$	120	15
합계	17	—	—	—	—	$7\frac{2}{3}$	345	—

마지막으로 여전히 토지 A, B, C, D만이 경작되는데 그것들의 생산성은 제고되여 A는 1쿼터가 아니라 2쿼터를, B는 2쿼터가 아니라 4쿼터를, C는 3쿼터가 아니라 7쿼터를, D는 4쿼터가 아니라 10쿼터를 생산하였다면 따라서 동일한 원인들이 여러가지 토지에 대하여 각이하게 작용하였다면 총생산은 10쿼터로부터 23쿼터로 증가될것이다. 인구의 증가와 가격의 저하로 이 23쿼터가 수요에 의하여 흡수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것이다.

표 III

토지종류	생산물		자본 투자	쿼터당 생산가격	리윤		지대	
	쿼터	실링			쿼터	실링	쿼터	실링
A	2	60	50	30	$\frac{1}{3}$	10	0	0
B	4	120	50	15	$2\frac{1}{3}$	70	2	60
C	7	210	50	$8\frac{4}{7}$	$5\frac{1}{3}$	160	5	150
D	10	300	50	6	$8\frac{1}{3}$	250	8	240
합계	23	—	—	—	—	—	15	450

수량관계는 이 표에서도 다른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의적인것이지만 가정은 완전히 합리적인것이다.

제1의 주요한 가정은 농업에 있어서의 개량이 여러가지 종류의 토지에 불균등하게 작용하며 이 경우에는 제일 좋은 토지인 C 및 D에 대하여는 A 및 B에 대해서보다도 더 크게 작용한다는것이다. 경험이 보여준바에 의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이것이 통례이다. 개량이 좋은 토지에 대해서 보다도 나쁜 토지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한다면 좋은 토지의 지대는 증가되지 않고 감소될것이다.—그러나 이 표 III에서는 모든 종류의 토지의 비옥도의 절대적인 증대와 함께 보다 좋은 토지인 C 및 D의 보다 높은 상대적비옥도의 증대가 전제로 되여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투자에서의 생산물의 차액의 증대, 따라서 또 차액지대의 증대가 전제로 되여있다.

제2의 전제는 총생산물의 증대에 보조를 맞추어 총수요도 증대한다는것이다. **첫째로**, 증대가 돌연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표 III의 순서가 형성될 때까지 점차 증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둘째로**, 필요생활수단이 저렴화되는데 따라 그 소비가 증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영국에서의 곡물법[68]의 폐지(뉴먼의 저서[318]를 보라)는 이와 반대되는것을 증명하며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단지 일기때문에 수확상에 갑자기 큰 차이가 생기여 곡물가격이 때로는 지나치게 떨어지고 때로는 지나치게 오른다는데서 나오고있는데 불과한것이다. 이 경우에는 저렴화가 돌연적이고 단기간이여서 소비의 확대에 충분한 작용을 할수 없다고 하면 저렴화가 조절적생산가격 자체의 저하에서 생기고 따라서 계속적인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셋째로**, 곡물의 일부분은 브란데나 맥주로서 소비될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물건의 소비증가도 결코 협소한 한계에 구속되여있는것은 아니다. **넷째로**, 혹은 문제가 인구의 증가에 달려있고 혹은 이 나라가 18세기중엽을 넘어서까지도 아직 영국이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곡물수출국이며 수요가 단순히 한 나라의 소비한계에 의하여 규제되는것이 아닐수 있다. **마지막으로**, 밀의 생산이 증가되고 가격이 저렴하게 된 결과로 호밀 또는 귀밀 대신에

밀이 인민대중의 주요식료로 되며 따라서 이미 그때문에만도 밀의 시장이 확대될수 있는데 그것은 생산물이 감소되고 가격이 오르면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전제들과 가정된 수량관계하에서는 표 III의 순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즉 1쿼터당 가격은 60실링으로부터 30실링으로, 즉 50% 내린다. 생산은 표 I의 순서에 비교하면 10쿼터로부터 23쿼터로, 즉 130% 증가한다. 지대는 토지 B에서는 변하지 않으나 C에서는 25% 증가하며 D에서는 $33\frac{1}{3}$% 증가하며 지대총액은 18파운드로부터 22$\frac{1}{2}$파운드로, 즉 25% 증가된다.

이상의 세 표(그중 표 I의 순서는 A로부터 D로 상승하는 경우와 D로부터 A로 하강하는 경우와의 이중적인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회의 어떤 주어진 상태에 있어서의 주어진 단계들—례컨대 각이한 세 나라에 병존하는것—로서 볼수도 있고 또는 동일한 나라의 각이한 발전기에 서로 뒤따르는 단계들로서 볼수도 있는데 이 세 표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순서는 완성된것으로서는—그 형성과정이 어떠했든간에—언제나 하강적인것 같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대를 고찰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언제나 처음에 최대한의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로부터 출발하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토지에 이를것이기때문이다.

2.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제일 나쁜 토지에서의 생산가격은 언제나 규제적시장가격이다. 비록 표 I이 상승적순서로 형성된 경우에 규제적시장가격이 변하지 않은것은 점점 더

좋은 토지가 경작되는데 의해서만일것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 A가 언제까지 계속 규제적인가 하는것이 제일 좋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량에 달려있는 한에서는 제일 좋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가격이 규제적이다. 만약 B, C, D가 수요를 충가하여 생산하면 A는 규제적인것이 아니게 될것이다. 슈또르흐가 최우등지가 규제적인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고있는것이다.[319] 이리하여 미국의 곡물가격은 영국의 곡물가격을 규제하는것이다.

3. 차액지대는 그때그때에 주어진 경작발전단계에 있어서 주어진 토지의 자연적비옥도(여기에서는 아직 토지의 위치를 도외시한다)의 차이에서 생긴다. 즉 제일 좋은 토지의 면적이 제한되여 있다는데서, 또 같은 량의 자본이 여러가지 종류의 토지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이 여러가지 종류의 토지들은 같은 량의 자본에 대하여 같지 않은 량의 생산물을 제공한다는 사정에서 생기는것이다.

4. 차액지대의 존재와 등급별 차액지대의 존재는 하강적 순서로, 즉 좋은 토지로부터 나쁜 토지로의 이행에 의하여서도 또는 반대로 나쁜 토지로부터 좋은 토지로의 이행에 의하여서도 또는 두 방향이 교차되여 이행하는데 의하여도 생길수 있다(순서 Ⅰ은 D로부터 A로의 이행에 의하여도, A로부터 D로의 이행에 의하여도 형성될수 있다. 순서 Ⅱ는 두 운동을 포괄하고있다).

5. 차액지대는 그 형성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올라도 내려도 형성될수 있다. 가격이 내리는 경우에는 최렬등지 A는 보다 좋은 토지에 의하여 구축되고있든가 또는 그 자체가 보다 좋은 토지로 되고 있든가 하며 또 다른 좋은 토지들에서는, 그리고 최우등지에

서까지도 지대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총생산과 지대총액은 증가될수 있고 또 지금까지 지대가 없었던 토지에서 지대가 형성될수 있다(표 II). 이 과정은 지대총액(화폐로 표현된)의 감소와 결부될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작의 일반적인 개량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내리고 따라서 최렬등지의 생산물이 감소되고 생산가격이 내리는 경우에는 지대는 좋은 토지의 일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든가 또는 감소될수 있으나 최우등지에서는 증대할수 있다. 최렬등지에 비교한 각종 토지의 차액지대는 생산물량의 차액이 주어진 경우에는 확실히 레컨대 1쿼터당 밀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차액지대는 생산물량의 차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모든 토지의 절대적비옥도가 제고되는 경우에도 좋은 토지의 비옥도가 나쁜 토지의 비옥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제고된다면 그와 함께 이 차액의 크기도 또한 증대된다. 그리하여 가격이 60실링인(표 I) 경우에는 D의 지대는 A에 비한 D의 생산물차액에 의하여 즉 3쿼터라는 초과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지대는 3×60=180실링이다. 그러나 가격이 30실링인 표 III에 있어서는 D의 지대는 A에 비한 D의 생산물초과량=8쿼터에 의하여 규정되고있으며 8×30=240실링이다.

이로 하여 웨스트, 말사스, 리카도에게서[320] 아직도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차액지대의 첫째 그릇된 전제 즉 차액지대는 필연적으로 점점 더 나쁜 토지로의 이행 또는 점점더 낮아지는 농업비옥도를 전제로 한다는것은 무너지고만것이다. 차액지대는 이미 본바와 같이 점점 더 좋은 토지로 나아가는 경우에도 생길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종전의 나쁜 토지대신에 보다 좋은 토지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생길수 있다. 그것은 농업의 가일층의 진보와 결합될수도 있다. 차액지대의 조건은 다만 토지종류의 부동등성뿐이다. 생산성의 발전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는 차액지대는 전체 경지의 절대적비옥도의 제고가 이 부동등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든가 또는 변함없게 하든가 또는 다만 감소시킨다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18세기 초엽부터 중엽에 이르는 동안 영국에서는 금, 은의 가격이 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곡물가격은 부단히 저락하였고 동시에(이 시기 전체를 고찰하면) 지대, 지대총액, 경지면적, 농업생산 및 인구는 증대하였다. 이것은 표 I이 상승적순서의 표 II와 결합된것에 상응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렬등지 A가 개량되든가 또는 곡물경작에서 제외되든가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토지 A가 다른 농업적 목적이나 공업적목적에 리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19세기 초엽(시기를 정확하게 표시할것[321])부터 1815년에 이르는 동안 곡물가격은 부단히 오르고 그와 동시에 지대, 지대총액, 경지면적, 농업생산 및 인구도 부단히 증대하였다. 이것은 하강적순서의 표 I에 해당한다(여기에 당시의 나쁜 토지의 경작에 관한 인용문을 들것).[322]

페티나 다비넌트의 시대에는 개량이나 개간에 대하여 농촌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이 있었다. 좋은 토지에서의 지대의 감소가 있었으며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면적의 확대로 인한 지대총액의 증대가 있었다.[323]

(이상 세 점에 대하여 나중에 상세한 인용문을 들것. 한 나라에서의 각이한 경작지부분들의 비옥도의 차이에 관하여도 그렇게 할것.)

차액지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적하여야 할것은 생산물량의 시장가치는 언제나 총생산가격을 초과한다는것이다. 례컨대 표 I을 들어보자. 10쿼터의 총생산물이 600실링으로 팔리는것은 1쿼터당 60실링이라는 A의 생산가격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규정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생산가격은 다음과 같다.

A	1쿼터=60실링	1쿼터 =60실링
B	2쿼터=60실링	1쿼터 =30실링
C	3쿼터=60실링	1쿼터 =20실링
D	4쿼터=60실링	1쿼터 =15실링
	10쿼터=240실링	평균1쿼터=24실링

10쿼터의 현실적생산가격은 240실링이다. 그것은 600실링으로 팔린다. 즉 250%로 비싸게 팔린다. 1쿼터의 현실적평균가격은 24실링이다. 시장가격은 60실링이며 역시 250%로 비싸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 경쟁을 매개로 하여 실현되는 시장가치에 의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하나의 허위적인 사회적가치를 산생한다. 이것은 토지생산물이 종속되는 시장가치의 법칙에서 발생한다. 생산물 따라서 또 토지생산물의 시장가치의 규정은 비록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사회적행위이며 이 행위는 토지 및 그것의 비옥도의 차이에 기초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생산물의 교환가치에 기초한다. 자본주의적사회형태가 폐지되고 사회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결합체로서 조직된다고 생각하면 이 10쿼터는 240실링에 포함되고있는것과 같은 량의 독립적인 로동시간을 표시할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 토지생산물을 그것에 포함되고있는 현실적

로동시간의 2배 반으로 사들이지는 않을것이다. 이때문에 토지소유자계급이 존재할 기초는 무너지고말것이다. 그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생산물가격이 같은 금액만큼 값싸게 되는것과 꼭같이 작용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현재의 생산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차액지대가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간다고 전제하는 경우에 기타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동일하리라고 말하는것은 옳지만 자본주의적생산이 결합체에 의하여 교체되여도 생산물의 가치가 동일하리라고 말하는것은 잘못이다. 같은 종류의 상품들의 시장가격이 동일하다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개인**간의 상품교환에 립각하고있는 생산의 기초우에서 가치의 사회적성격이 실현되는 방식인것이다. 소비자로서 본 사회가 토지생산물에 너무 많이 지불하는것, 그것은 토지생산에서의 사회적로동시간의 실현상의 마이나스로 되는것이 이제는 사회의 한 부분인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플라스로 되는것이다.

둘째 사정은 다음장 차액지대 Ⅱ에서 서술할 내용을 리해하는데 중요한것인데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에이커당 또는 1헥타르당 지대, 일반적으로는 1에이커당 생산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 또는 개별적생산가격과 일반적생산가격과의 차액이 문제로 될뿐만아니라 또한 각종 토지가 몇에이커 경작되고있는가 하는 사정도 문제로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직접적으로는 다만 지대총액의 크기, 즉 전체 경지면적의 지대총액의 크기에만 관계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또 가격을 저락하여도 토지종류의 상대적비옥도의 차이는 증대하지 않는데 지대률은 제고된다는데 대한 설명에로 넘어가는

데 기여한다. 우에서는 다음과 같았다.

표 I

토지종류	에이커	생산비	생산물	곡물지대	화폐지대
A	1	3파운드	1쿼터	0쿼터	0파운드
B	1	3파운드	2쿼터	1쿼터	3파운드
C	1	3파운드	3쿼터	2쿼터	6파운드
D	1	3파운드	4쿼터	3쿼터	9파운드
합계	4	—	10쿼터	6쿼터	18파운드

다음에 각 부류의 경작지의 에이커수가 2배로 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표 Ia

토지종류	에이커	생산비	생산물	곡물지대	화폐지대
A	2	6파운드	2쿼터	0쿼터	0파운드
B	2	6파운드	4쿼터	2쿼터	6파운드
C	2	6파운드	6쿼터	4쿼터	12파운드
D	2	6파운드	8쿼터	6쿼터	18파운드
합계	8	—	20쿼터	12쿼터	36파운드

이제 두 경우를 더 가정하자. 첫째는 두 종류의 최렬등지에서 생산이 확대되는 경우인데 다음과 같다.

표 Ib

토지종류	에이커	생산비		생산물	곡물지대	화폐지대
		에이커당	합계			
A	4	3파운드	12파운드	4쿼터	0쿼터	0파운드
B	4	3파운드	12파운드	8쿼터	4쿼터	12파운드
C	2	3파운드	6파운드	6쿼터	4쿼터	12파운드
D	2	3파운드	6파운드	8쿼터	6쿼터	18파운드
합계	12	—	36파운드	26쿼터	14쿼터	42파운드

마지막으로 4개의 토지종류에서 생산 및 경작지역이 불균등하게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하여보자.

표 Ic

토지종류	에이커	생산비		생산물	곡물지대	화폐지대
		에이커당	합계			
A	1	3파운드	3파운드	1쿼터	0쿼터	0파운드
B	2	3 〃	6 〃	4 〃	2 〃	6 〃
C	5	3 〃	15 〃	15 〃	11 〃	30 〃
D	4	3 〃	12 〃	16 〃	12 〃	36 〃
합계	12	—	36 〃	36 〃	24 〃	72 〃

우선 이상의 I, Ia, Ib, Ic의 모든 경우에 1에이커당 지대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사실상 같은 종류의 토지 1에이커당의 같은 량의 자본의 성과는 동일하였기때문이다. 여기서는 다만 어느 나라에서나 주어진 순간에 늘 볼수 있는것이

가정되고있을뿐이다. 즉 각이한 토지종류가 총경작지에 일정한 비률로 참가한다는것이며 그리고 서로 비교되는 두 나라에서, 또는 동일한 나라에서도 각이한 시점에서 항상 볼수있는것 즉 총경작지가 각이한 토지종류들로 나뉘여지는 비률이 변동한다는것이다.

Ia를 I과 비교하여보면 네부류의 토지의 경작이 같은 비률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경작지 에이커수가 2배로 되면 총생산은 2배로 되며 또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도 2배로 증대된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Ib와 Ic를 I과 순차로 비교해보면 두 경우에 다 경지면적은 3배로 된다는것을 발견한다. 두 경우에 다 경지면적은 4에이커로부터 12에이커로 증가되여있으나 Ib에서는 전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A부류와 최소의 차액지대를 가져오는 B부류가 최대의 증가분을 차지하고있다. 즉 새로 경작되는 8에이커중 3에이커씩 합계 6에이커가 A와 B의 몫으로 되여있고 한편 다만 1에이커씩 합계 2에이커만이 C와 D의 몫으로 되여있다. 바꾸어말하면 증가분의 $\frac{3}{4}$은 A와 B에 속하고 $\frac{1}{4}$이 C와 D에 속할따름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 Ib에 있어서는 I에 비하여 3배로 된 경작지면적에 대응하여 생산물이 3배로 되고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생산물은 10쿼터로부터 30쿼터로 증가되지 않고 다만 26쿼터로밖에 증가되지 않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증가분중 상당히 큰 부분이 전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A부류에 속하고 또 좋은 토지의 증가분중에서도 주요한 부분은 B부류에 속하기때문에 곡물지대는 6쿼터로부터 14쿼터로, 화폐지대는 18파운드로부터 42파운드로

증가하고있는데 불과하다.

반대로 Ic를 I과 비교해보면 거기서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최소의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는 조금만 증가할뿐이며 주요한 증가분은 C와 D에 속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발견된다. 경작지면적이 3배로 됨에 따라 생산은 10쿼터로부터 36쿼터로, 즉 3배이상으로 증가되였다. 곡물지대는 6쿼터로부터 24쿼터로, 즉 4배로 증가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폐지대도 18파운드로부터 72파운드로 증가되였다.

이상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본질상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지대총액은 경작의 확대에 따라, 이 확장이 아무런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최렬등지에서만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증가된다. 그러나 이 증가되는 방식은 각이하다. 그 확장이 좋은 토지에서 일어나는데 비례하여 즉 생산물량이 토지의 확장에 비례하여 증가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례하여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도 증가한다. 최렬등지나 그에 린접한 토지종류가 특히 확장의 큰 비률을 차지하는데 비례하여(이 경우에 최렬등지는 언제나 최렬등부류라고 가정한다) 지대총액은 경지의 확장에 비례하여 증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토지 A가 질적으로 동일한 두 나라가 있다면 지대총액은 최렬등지나 비교적 렬등한 토지종류가 경지총면적에서 차지하는 상승한 부분에 반비례하며 따라서 또 동일한 크기의 총면적에 대한 동일한 액의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의 생산물량에 반비례한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총토지면적의 한계내에서의 최렬등지의 량과 우등경지의 량과의 비률이 지대총액에 미치는 작용은 최렬등경지의 질과 우등지 및 최우등

지의 질과의 관계가 1에이커당의 지대에 미치는 작용, 따라서 다른 사정들이 같다면 지대총액에 미치는 작용과는 반대인것이다. 이 두 계기의 혼동은 차액지대에 대한 여러가지 그릇된 반대의론을 일으킬 원인으로 되였다.

요컨대 지대총액은 경작의 확장에 의하여 그리고 이와 결부된 토지에 대한 자본과 로동의 사용의 확장에 의하여 증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즉 전제에 의하면 여러가지 토지종류의 1에이커당으로 계산한 지대들간의 비률은 여전히 동일하고 따라서 또 매 에이커당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관계에서 본 지대률도 여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것을 알게 된다. 즉 표 Ia를 표 I과 비교해보면—경작에이커수와 이에 대한 자본투자가 비례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보면—경지면적의 확대에 비례하여 총생산이 증대하였으나, 즉 량자가 다 2배로 되여있으나 그것과 같이 지대총액도 증대되였다는것을 발견한다. 에이커수가 4로부터 8로 증가된것과 마찬가지로 지대총액은 18파운드로부터 36파운드로 증대되였다.

4에이커라는 총면적을 들어본다면 거기에서의 지대총액은 18파운드이며 따라서 전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토지도 계산에 넣은 평균지대는 $4\frac{1}{2}$파운드였다. 례컨대 4에이커 전부를 한 토지소유자가 가지고있다면 그는 이렇게 계산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 전체의 평균지대도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계산되는것이다. 18파운드라는 지대총액은 10파운드라는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에 나온다. 이 두 수의 비률을 우리는 지대률이라고 한다. 즉 여기서는 180%이다.

Ia에서는 4에이커 대신에 8에이커가 경작되고있으나 모든 토지종류가 동일한 비률로 증가에 참가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같은 지대률로 된다. 36파운드라는 지대총액을 8에이커의 토지와 20파운드의 사용자본에 대하여 계산하면 1에이커당 $4\frac{1}{2}$파운드의 평균지대와 180%의 지대률로 된다.

그런데 증가가 주로 두 종류의 렬등지에서 진행된 Ib의 경우를 고찰한다면 12에이커로부터 42파운드의 지대를 얻게 되며 따라서 1에이커당 $3\frac{1}{2}$파운드의 평균지대를 얻게 된다. 투하총자본은 30파운드이고 따라서 지대률은 140%이다. 그리하여 1에이커당 평균지대는 1파운드만큼 감소되고 지대률은 180%로부터 140%로 저하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대총액은 18파운드로부터 42파운드로 증가되였는데 평균지대는 1에이커당으로 계산하여도, 자본에 대하여 계산하여도 다 감소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도 증대하기는 하였지만 비례적으로 증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것은 모든 토지종류에서의 지대가 1에이커당으로 계산하여도, 투하자본에 대하여 계산하여도 여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것이다.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것은 증가분의 $\frac{3}{4}$이 전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토지 A와 최소의 지대밖에 가져오지 않는 토지 B에 속한다는데 있다.

Ib의 경우에 확대가 전부 토지 A에서만 일어났다고 하면 A는 9에이커로 되고 B, C, D는 각각 1에이커로 될것이다. 지대총액은 여전히 18파운드일것이며 따라서 12에이커에 대하여 1에이커당 평균지대는 $1\frac{1}{2}$파운드로 될것이다. 그리고 30

파운드의 투하자본에 대한 지대는 18파운드이므로 60%의 지대률로 될것이다. 평균지대는 1에이커당으로 계산하여도, 사용자본에 대하여 계산하여도 몹시 감소되였는데 한편 지대총액은 증대되지 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 Ic를 I 및 Ib와 비교하여보자. I과 비교하여보면 토지면적은 3배로 되고 투하자본도 3배로 되였다. 지대총액은 12에이커에 대하여는 72파운드이고 따라서 1에이커당으로는 I의 경우의 $4\frac{1}{2}$파운드에 비하여 6파운드이다. 투하자본에 대한 지대률(72파운드:30파운드)은 180% 대신에 240%이다. 총생산물은 10쿼터로부터 36쿼터로 증가되였다.

Ib와 비교하여보면 경작 에이커총수, 사용된 자본 및 경작되는 토지종류간의 차이는 동일하나 그 분배가 다르며 생산물은 26쿼터가 아니라 36쿼터로 되였고 1에이커당의 평균지대는 $3\frac{1}{2}$파운드가 아니라 6파운드로 되였으며 그리고 동등한 량의 선대총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지대률은 140%가 아니라 240%로 되여있다.

표 Ia, Ib, Ic에서의 각이한 상태들을 각이한 나라들에 동시에 병존하는 상태들로 보든 또는 동일한 나라에서의 순차적인 상태로 보든 여하간 이상에서 서술한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것을 알수 있다. 최렬등의 무지대 토지에서의 수확이 변함이 없기때문에 곡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 각종 경작지부류의 비옥도에서의 차이가 변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여러가지 토지부류의 경작면적의 각각 동등한 부분(에이커)에 대한 자본투하가 동등한 경우, 따라서 각 토지종류의 1에이커당 지대간의 비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같은

종류의 각 토지부분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지대률이 동등한 경우에는 **첫째로**, 전체 증가분이 무지대의 토지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대총액은 언제나 경작면적의 확장과 함께, 따라서 투자의 증가와 함께 증대된다. **둘째로**, 1에이커당 평균지대(지대총액을 경작 에이커총수로 제한것)도 평균지대률(지대총액을 투하총자본으로 제한것)도 극히 크게 변동될수 있다. 게다가 량자가 다 동일한 방향에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 호상간에서는 각이한 비률로 변동될수 있다. 증가가 무지대의 토지 A에서만 일어나는 경우를 무시한다면 1에이커당 평균지대와 농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률은 여러가지 토지부류가 경작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달려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 결국 같은것이지만 비옥도가 다른 여러가지 토지종류에 대한 사용총자본의 분배에 달려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경작되는 토지의 많고적음에 관계없이, 따라서(증가가 A에서만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대총액의 크고적음에 관계없이 1에이커당 평균지대와 사용자본에 대한 평균지대률은 여러가지 토지종류가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변하지 않는 한 여전히 동일하다. 경작의 확대와 투자의 증대에 따르는 지대총액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현저한 증대에도 불구하고 만약 무지대의 토지나 적은 차액지대만을 가져올따름인 토지의 확장이 많은 지대를 가져오는 보다 좋은 토지의 확장에 비하여 보다 크다면 1에이커당 평균지대와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률은 감소되는것이다. 반대로 보다 좋은 토지가 총면적에서 비교적 큰 비률을 차지하고 따라서 비교적 많은 자본이 그 토지들에 투자되는 정도에 따라 1에이커당 평균지대와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률은 제고된다.

그리하여 동일한 시대에 있어서의 각이한 나라들을 비교하든가 또는 동일한 나라에서의 상이한 시대를 비교할 때 통계학저서에서 보통 하고있는바와 같이 총경작지의 1에이커당 또는 1헥타르당 평균지대를 고찰하면 1에이커당 지대의 평균수준 따라서 또 지대총액은 일정한 비률로(비록 결코 동일한 비률이 아니라 더욱더 빠른 비률로이지만) 한 나라의 농업의 상대적비옥도가 아니라 절대적비옥도에 상응한다는것, 즉 그 나라가 동등한 면적에서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생산물량에 상응한다는것을 볼수 있다. 왜냐하면 총면적중에서 보다 좋은 토지가 차지하는 비률이 크면 클수록 동등한 액의 투자에 의하여 동등한 면적의 토지에서 얻는 생산물량은 그만큼 크며 또 1에이커당 평균지대도 그만큼 크기때문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사태가 반대로 된다. 그리하여 지대는 비옥도의 차이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비옥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 같이 보이며 따라서 차액지대의 법칙은 폐지되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일정한 현상들이 부정되든가 또는 평균곡물가격과 각종 경작지의 비옥도의 차이간에 존재하지 않는 구별에 의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 현상들이란 다만 다음과 같은데 원인이 있는 현상들이다. 즉 무지대토지의 비옥도가 동등하고 따라서 생산가격이 동등하고 또 여러가지 토지종류간의 차이가 동등한 경우에는 경작지의 총면적에 대한 것이든 토지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한것이든 지대총액의 비률은 비단 1에이커당의 지대나 자본에 대한 지대률에 의하여 규정될뿐만아니라 또한 각종 토지의 에이커수가 총경작에이커수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 또는 결국 같은것이지만 여러가지 토지종류간에의 사용총자본의 분배에 의하여도 규정된다는것을 원인으로 하는 현상들이다. 이 사

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이상하게도 완전히 간과되여왔다. 여하간 다음의것은 분명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연구진행을 위하여서는 중요한것이다. 즉 가격이 변함없고 각종 경작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변함없고 또 1에이커당 지대도, 또는 현실적으로 지대를 가져오는 각 토지부류에 투하된 1에이커당 자본에 대한 지대률, 또는 현실적으로 지대를 가져오는 모든 자본에 대한 지대률도 변함없는 경우에는 1에이커당 평균지대의 상대적수준과 평균지대률 또는 토지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한 지대총액의 비률은 경작의 단순한 외연적확대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될수 있다는것이다.

차액지대 I에서 고찰한 형태에 관련하여 아직 다음과 같은것을 보충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차액지대 II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첫째로, 이미 본바와 같이 경작이 확장되고 가격이 변하지 않으며 경작지들의 비옥도의 차이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에이커당 평균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률은 제고될수 있다. 한 나라의 모든 토지가 점유되여있고 토지에 대한 투자, 경작 및 인구가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면—이러한 사정들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지배적이 되여 농업도 정복하게 되면 모두 전제로 되고있는것이지만—각이한 질의 미경지의 가격은(단지 차액지대만을 전제로 하면) 그것과 동등한 질의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기경지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이 미경지는 지대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 가격은 첨가되는 개간비를 공제하면 기경지와 동일하다. 토지가격은 확실히 지대가 자본화된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경지의 경우에도 가격으로서는 다만 미래의 지대가 지불될따름이다. 례

컨대 표준리자률이 5%라면 20년분의 지대가 한꺼번에 선불되는것이다. 토지가 판매되는 한 그것은 지대를 가져오는것으로서 판매되는것이며 지대(그것은 이 경우에는 토지의 과실로—외관상으로 그러할따름이지만—간주된다)의 예견적인 성격은 미경지를 기경지와 구별하지 않는다. 미경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지대—가격은 그 합계식을 표현한다—와 마찬가지로 이 토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순전히 환상적이다. 그러나 그 가격은 그와 같이 미리 결정되며 구매자가 발견되자 그 가격이 실현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한 나라의 현실적인 평균지대는 그 나라의 현실적인 년평균총지대와 총경작지면적에 대한 이 지대액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미경지부분의 가격은 기경지부분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그것은 기경지에 대한 그 투자와 그 성과의 반영에 불과하다. 최렬등지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종류가 지대를 가져오기때문에(그리고 이 지대는 우리가 차액지대 Ⅱ에서 볼것이지만 자본의 량과 이에 상응하는 경작의 집약성이 증대됨에 따라 증대된다) 이렇게 미경지에 대한 명목가격이 형성되며 또 이리하여 이 미경지부분이 하나의 상품으로 되며 그 소유자에게 있어서 부의 원천으로 된다. 이것은 동시에 미경지도 포함한 전 지역의 토지가격이 왜 오르는가 하는것을 설명하여준다(옵다이크[324]). 토지투기 례컨대 합중국에서 보는바와 같은 토지투기는 다만 자본 및 로동이 미경지에 던지는 이상과 같은 반사에만 립각한것이다.

둘째로, 경작지의 확장은 일반적으로 보다 나쁜 토지를 향하여 진행되든가 또는 주어진 각종 토지들에서 그것들의 상태에 따라 각이한 비률로 진행되든가 한다. 렬등지에로의 진행은 물론 결코 자유선택에서 나오는것은 아니고—자본주

의적생산방식을 전제로 하면—가격등귀의 결과일수 있을따름이며 또 어떠한 생산방식하에서도 필요한 결과일수 있을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런것은 아니다. 렬등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토지보다 먼저 선택되는것은 위치때문인데 위치는 청소한 나라들에서는 경작의 확장에 대하여 항상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질이 전체로서는 비옥도가 보다 높은 부류에 속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좋은 토지와 나쁜 토지가 서로 뒤섞여있는것이고 나쁜 토지는 그것이 좋은 토지와 직접 련결되고있다는 리유만으로 경작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나쁜 토지가 좋은 토지들사이에 끼여있는 경우에는 그 나쁜 토지는 좋은 토지에 의하여, 이미 경작되고있거나 또는 이제부터 경작되기로 되여있는 토지와 련결되고있지 않는 비옥도가 보다 높은 토지에 비하여 위치의 우월성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미쉬간주는 서부 주들중 최초에 곡물수출주로 된 주의 하나였다. 이 주의 토지는 전체로서는 척박하였다. 그러나 이 주가 뉴요크주와 린접하고있다는것, 또 호수와 에리운하에 의하여 수로련락이 좋다는것이 우선 그 주에 천연적인 비옥도는 보다 높으나 서방에 위치한 제 주들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준것이였다. 이 주의 례는 그것을 뉴요크주와 비교해보면 좋은 토지로부터 나쁜 토지로의 이행도 보여준다. 뉴요크주의 토지 특히 이 주의 서부의 토지는 비할바없이 비옥하며 특히 밀재배를 위하여 그렇다. 그런데 이 비옥한 토지는 조방경작에 의하여 척박한 토지로 되였고 지금에는 미쉬간의 토지가 보다 비옥한 토지로 나타났다.

《1838년에는 밀가루는 주로 뉴요크나 상부 카나다의 밀산지로부

터 바펄로우에서 배에 실려 서부로 수송되였다. 그런데 불과 12년후인 오늘에 와서는 서부로부터 막대한 량의 밀과 밀가루가 실려와 에리호를 따라, 그리고 에리운하를 거쳐 바펄로우 및 그 린접항을 경유하여 블래크로크에서 동부로 향하는 배에 실리고있다. 밀 및 밀가루의 수출은 특히 1847년 구라파에서의 기근에 의하여 자극을 받았다. 그리하여 밀은 뉴요크주의 서부에서는 저렴하게 되여 밀재배의 수익이 줄어들었다. 그때문에 뉴요크주의 농업가들은 가축사양이나 락농업이나 과수재배 등에 종사하게 되였는데 이러한 부문에서는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서북부는 직접 그들과 경쟁할수 없을것이라는것이다》(J. W. 존스턴 《북아메리카 농업, 경제 및 사회문제 비망록》, 1851년 런던판 제1권 222~223페지).

셋째로, 곡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수 있는 식민지나 일반적으로 청소한 나라들에서는 그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토지의 자연적비옥도가 보다 높다는것은 그릇된 전제이다. 곡물은 여기에서는 그 가치보다 저렴하게 판매될뿐만 아니라 그 생산가격보다도 저렴하게, 즉 보다 오랜 나라들에서의 평균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생산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것이다.

만약 우리가 존스턴이 말하는것처럼(우와 같은 책, 223페지) 우리는

《해마다 이러한 다량의 밀의 공급을 바펄로우로 보내고있는 이 새로운 제 주들과 높은 자연적비옥도나 무한한 풍요한 토지라는 관념을 련계시켜 생각하는데 습관되여있다》

고 한다면 이것은 우선 경제적사정에 의존하고있다. 례컨대 미쉬간과 같은 지방의 전 인구는 처음에는 거의 오로지 농업에만 종사하며 또 특히 공업제품이나 열대생산물과 교환할수 있는 유일한것인 대량적인 농업생산물의 생산에만 종사한다. 그러므

로 그들의 전체 잉여생산물은 곡물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세계시장의 기초우에 건설된 식민지국가들을 그 이전의 식민지국가 특히는 고대세계의 식민지국가들과 처음부터 구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다른 사정하에서라면 자신이 제조하지 않으면 안될 생산물 즉 의류, 도구 등을 완성품으로서 세계시장을 통하여 받는다. 오직 이러한 기초우에서만 합중국의 남부 주들은 면화를 자기들의 주요생산물로 생산할수 있었다. 세계시장에서의 분업이 이러한 주들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주들이 청소하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것을 보면 극히 많은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토지가 비옥하기때문이 아니며 또 그 로동이 효과적이기때문도 아니며 그 로동과 따라서 그 로동이 표시되는 잉여생산물의 일면적인 형태때문이다.

그리고 또 비교적 비옥도가 낮은 경작지라도 새로 경작되기 시작하였을뿐 아직 경작된 일이 없는 토지는 그 기후적 상태가 전혀 불리하지 않은 한 적어도 그 상층에는 용해되기 쉬운 다량의 식물영양소가 퇴적되고있으므로 거름을 주지 않아도 그리고 그저 표면만 경작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수확을 제공할수 있는것이다. 게다가 서부의 대초원의 경우에는 거의 아무런 개간비도 필요없고 자연적으로 이미 개간되여있다는 사정이 첨가된다.[33a] 이러한 종류의 비교적 비옥도가 낮

(33a) {이러한 대초원 또는 황야지대의 경작이 급속히 발전하는 사실이야말로 《인구는 생활수단을 압박한다》[325]는 유명한 말사스의 명제를 최근에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며 또 이와는 반대로 인구를 압박하는 생활수단을 강력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농업도 그리고 이와 함께 독일도 파멸하고 말것이라는 지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 황야, 대초원, 팜파스초원, 라소초원 등의 개간은 이제 방금 착수하였을따름이다. 그렇기때문에 구라파농업에 대한 그 변혁적작용은 앞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래와는 아주 다르게 느껴질것이다.—F. 엥겔스}

은 지역들에서는 잉여생산물이 나오는것은 토지의 높은 비옥도에 의한것이 즉 1에이커당 생산물량에 의한것이 아니라 얕게 경작할수 있는 에이커수가 많은데 의한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든가 또는 보다 오랜 나라들에 비하면 극히 적은 비용밖에 들이지 않게 하기때문이다. 례컨대 뉴요크나, 미쉬간이나 카나다 등의 제 지방들에서와 같은 분익소작계약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러하다. '한 가족이 례컨대 100에이커를 얕게 경작하면 1에이커당의 생산물은 크지 않더라도 100에이커의 생산물은 판매를 위하여 상당한 잉여생산물을 낸다. 여기에 또 인공적 목초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천연적방목장에서의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가축사양이 첨가된다. 이 경우에 결정적인것은 토지의 질이 아니라 량이다. 이러한 표면경작의 가능성은 물론 새로운 토지의 비옥도에 반비례하여 그리고 그 생산물의 수출에 정비례하여 많게나적게나 급속하게 없어지고만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나라는 밀까지도 포함하여 훌륭하게 첫수확을 거둘것이다. 토지로부터 첫 진액을 빨아내는 사람은 풍부한 여분의 밀을 시장에 보낼수 있을것이다》(우와 같은 책, 224페지).

오래전부터 경작이 진행되고있는 나라들에서는 소유관계나 기경지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미경지의 가격 등이 이러한 조방경영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렇기때문에 리카도가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이 토지가 반드시 대단히 비옥한것이 아니면 안될것도 없고 또 같은 비옥도의 토지만이 경작되는것도 아니라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미루어 알수 있다. 미쉬간주에서는 1848년에 밀이 46만 5,900에이커 파종되여 473만 9,300부쉘 즉 1에이커당 평

균 $10\frac{1}{5}$부쉘 생산되였다. 이것에서 종곡을 공제하면 1에이커당 9부쉘 미만으로 된다. 이 주의 29군중 1에이커당 평균 7부쉘을 생산한것은 2개 군이며 8부쉘을 생산한것은 3개 군, 9부쉘을 생산한것은 2개 군, 10부쉘을 생산한것은 7개 군, 11부쉘을 생산한것은 6개 군, 12부쉘을 생산한것은 3개 군, 13부쉘을 생산한것은 4개 군이며 16부쉘을 생산한것은 1개 군뿐이며 18부쉘을 생산한것이 또 1개 군이 있다(우와 같은 책, 225페지).

실제경작에 있어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비교적 높다는것은 이 비옥도의 즉시적인 리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것과 일치된다. 이러한 리용가능성은 천연적으로 비옥한 토지에 있어서보다 천연적으로 척박한 토지에 있어서 더 클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토지야말로 식민지이주민들이 우선 경작할 토지이며 또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 경작하지 않을수 없는 토지이다.

마지막으로, A로부터 D까지의 여러가지 토지종류에서의 보다 큰 면적으로의 경작의 확대—방금 고찰한바와 같이 기경지보다 나쁜 토지에 의뢰하지 않을수 없는 경우를 도외시하고—따라서 례컨대 B지나 C지의 보다 큰 면적의 경작은 결코 곡물가격의 사전의 등귀를 전제로 하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도 례컨대 면방적업의 매년 진행되는 확대가 면사가격의 부단한 상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시장가격의 큰 등귀 또는 저락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 점은 도외시하고 비록 평균가격의 높이가 생산에 저해적인 작용도 하지 않고 비상히 촉진적인 작용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농업에서는(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는 다른 모

든 생산부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과잉생산이 부단히 일어난다. 즉 이 상대적과잉생산은 그 자체로서는 축적과 동일하며 또 다른 생산방식하에서는 직접 인구의 증가에 의하여 그리고 식민지에서는 계속적인 이민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수요는 부단히 증대된다. 그리고 이것을 예상하고 부단히 새로운 자본이 새로운 토지에 투하된다. 비록 그 토지생산물은 사정에 따라 다른것이지만. 이러한것을 그 자체로서 수반하는것은 새로운 자본의 형성이다. 그러나 개개의 자본가에 대하여 말하면 그는 자기의 생산규모를, 그것을 아직 자기로 감시할수 있는 한에서는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자기의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가 관심하고있는것은 시장에서 될수록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이다. 만약 생산이 과잉된다면 그 책임을 그는 자기가 지는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에게 전가시킨다. 개개의 자본가는 그가 주어진 시장의 보다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의하여서도 자기의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데 의하여서도 자기의 생산을 확대할수 있다.

제 40 장

차액지대의 제2형태
(차액지대 Ⅱ)

지금까지는 차액지대를 비옥도가 다른 같은 면적의 토지에 투하된 같은 량의 자본의 각이한 생산성의 결과로서만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지대없는 가장 나쁜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수익과 좋은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수익과의 차액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이 경우에는 투자는 각이한 지면들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따라서 자본의 새로운 투하에는 번번이 토지의 보다 넓은 범위의 경작, 경작면적의 확대가 상응하였다. 그러나 결국 차액지대는 사실상 토지에 투하된 같은 량의 자본의 각이한 생산성의 결과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생산성이 다른 각 자본량이 련속적으로 동일한 토지에 투하되는 경우와 그 자본량이 각이한 토지에 동시에 투하되는 경우간에는 다만 결과는 동일하다는것만을 전제하면 두 경우간에 어떠한 구별이 있겠는가?

우선 부인할수 없는것은 초과리윤의 형성을 고찰하는 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경우는 동일하다는것이다. 즉 토지 A의 1에이커에 3파운드의 생산비가 투하되여 1쿼터를 생산하며 따라서 3파운드가 1쿼터의 생산가격이고 규제적시장가격이며

토지 B의 1에이커당 3파운드의 생산비는 2쿼터를 생산하며 따라서 3파운드의 초과리윤을 제공하며 마찬가지로 토지 C의 1에이커당 3파운드의 생산비는 3쿼터를 생산하여 6파운드의 초과리윤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토지 D의 1에이커당 3파운드의 생산비는 4쿼터를 생산하여 9파운드의 초과리윤을 제공하는것이나 이 12파운드의 생산비 또는 10파운드의 자본이 이것과 동일한 순서로 동일한 성과를 내면서 동일한 1에이커에 사용됨으로써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것이나 그것은 다 같은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10파운드라는 자본의 련속적으로 투하되는 $2\frac{1}{2}$ 파운드씩의 가치부분이 비옥도가 다른 4개의 1에이커에 동시에 투하되든 또는 동일한 1에이커에 련속적으로 투하되든간에 매개 가치부분의 생산량이 각이하기때문에 한 부분은 조금도 초과리윤을 가져오지 않지만 다른 부분들은 각각 수익이 이 지대없는 투자의 수익을 넘는 차액에 비례하여 어떤 초과리윤을 제공하는것이다.

자본의 각이한 가치부분들에 있어서의 초과리윤과 각이한 초과리윤률은 어느 경우에나 다 동일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지대는 이 초과리윤의 한 형태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이 초과리윤이 지대의 실체를 이룬다. 그러나 어쨌든 제2방식에서는 초과리윤의 지대로의 전화에 있어서 즉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로부터 토지소유자로의 초과리윤의 이전을 내포하고있는 이 형태변화에 있어서 여러가지 곤난이 생긴다. 그렇기때문에 정부의 농업통계에 대한 영국의 차지농업가들의 완강한 반항이 일어나는것이다. 또한 그들의 투자의 현실적성과의 확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들과 토지소유자들간의 투쟁도 여기에 기인한다(모튼[326]). 즉 지대는 토지의 임대차가 진행될 때에 확정

되고 그후에 차지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순차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초과리윤은 차지농업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므로 장기의 차지계약을 얻으려는 차지농업가의 투쟁이 일어나며 또 이와 반대로 지주의 우세에 의하여 매년 해제될수 있는 차지계약이 증가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같은 량의 자본이 같은 면적의 토지들에 각이한 결과들을 가지고 동시에 투하되든 또는 그 자본이 같은 토지부분에 순차로 투하되든 초과리윤의 형성의 법칙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과리윤의 지대로의 전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것은 처음부터 명백한것이다. 후자의 방식은 이 전화를 한편으로는 보다 협소한 한계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불안정한 한계에 몰아넣는다. 그렇기때문에 집약적경작(경제학에 있어서 집약적경작이란 공간적으로 나란이 있는 토지들에로 자본이 분배되지 않고 동일한 토지부분에로 자본이 집적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이 진행되는 나라들에서는 세무원의 사업이 모든이 자기의 《토지의 자력》에서 전개하고있는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하고 곤난한 직업으로 되고있다. 보다 영속적인 토지개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차지계약이 만기가 되면 토지의 인공적으로 제고된 비옥도의 차이는 토지의 자연적비옥도의 차이와 합치되며 따라서 지대의 평가는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른 비옥도일반의 평가와 합치된다. 이와는 반대로 초과리윤의 형성이 경영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경영자본하에서의 지대의 크기는 그 나라의 평균지대에 가산될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차지농업가는 동일한 집약적방식으로 경작을 계속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본을 자유로 처분할것을 요구한다.

차액지대 Ⅱ의 고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차액지대 Ⅱ의 기초와 그 출발점은 력사적으로 뿐만아니라 주어진 모든 시기에 있어서의 그 운동이 문제로 되는 한에 있어서도 차액지대 Ⅰ이다. 즉 비옥도와 위치가 각이한 토지종류의 경작이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되는것이며 따라서 농업총자본중의 각이한 구성부분을 각이한 질의 토지들에 동시적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적으로는 자명한것이다. 식민지에서는 식민지이주자들은 적은 자본을 투하하여도 된다. 주요한 생산요인은 로동과 토지이다. 매개 가장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독립적인 경영장소를 동료 이주자들의 그것과는 따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대체로 본래의 농업에서는 이미 전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다. 독립적인 생산부문으로서의 목양 및 일반적으로 목축업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공동적인 토지리용이 실시되며 그것은 처음부터 조방적인 성격을 띤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생산수단이 사실상으로 또는 법률상으로 경작자 자신의 소유물인 그 이전의 생산방식들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수공업적인 농업경영으로부터 출발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수공업의 경영으로부터 비로소 점차적으로 생산수단의 집적과 그 자본에로의 전화가 고용로동자로 전화된 직접적생산자들에 대립하여 발전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처음에는 우선 특히 목양 및 목축업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토지에서의 자본의 집적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대규모적

인 생산으로서 진행되며 따라서 말의 유지비와 기타 생산비가 절약된다. 그러나 사실상 동일한 토지에서 보다 많은 자본을 사용하는데 의하여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다. 더우기 경작이 어떤 정도의 높이에 도달하며 그에 상응하여 토지가 피폐해지면 자본—여기에서는 동시에 이미 생산된 생산수단의 의미에서의—이 토지경작의 결정적인 요소로 되는것은 농업경작의 자연법칙에 속하는것이다. 기경지가 미경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을 이루고 그리고 지력이 아직 피폐되지 않고있는 한(이것은 본래의 농업과 채식이 우세하게 되기 전의 시기에 있어서 목축과 육식이 우세였던 경우에 그러하다) 방금 시작되고있는 새로운 생산방식은 특히 한 자본가의 계산으로 경작되는 토지면적의 규모에 의하여, 따라서 또 공간적으로 보다 큰 토지면적에서의 자본의 조방적사용에 의하여 농민적생산에 대항하게 된다. 따라서 차액지대 Ⅰ이 력사적기초이며 이것이 출발점으로 된다는것은 처음부터 념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개 주어진 순간에 있어서의 차액지대 Ⅱ의 운동은 그 자체가 이번에는 차액지대 Ⅰ의 다채로운 기초로 되는 령역에서만 일어나는것이다.

둘째로, Ⅱ형태의 차액지대에 있어서는 비옥도의 차이외에 차지농업가들간의 자본(및 신용능력)의 분배상의 차이가 첨가된다. 본래의 제조공업에서는 매개 생산부문에 있어서 기업규모의 독자적최소한도가 형성되고 또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최소한도가 형성되며 그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별적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할수 없다. 마찬가지로 매개 생산부문에서는 이 최소한도를 넘는 자본의 표준적인 평균적크기가 형성되여 생산자의 대다수가 이만큼한 크기의 자본을 자유로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실제상에서 처분하고있다. 이 크

기를 넘는것은 특별리윤을 형성할수 있다.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은 평균리윤도 얻지 못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오직 완만하고 불균등하게 농업을 장악할뿐이며 그것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고전국인 영국에서 보는바와 같다. 자유로운 곡물수입이 존재하지 않든가 또는 그 량이 제한되고있기때문에 그 영향도 제한되고있을따름인 한에서 나쁜 토지에서 일하는 생산자들 즉 평균적생산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이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농업에 사용되는 그리고 대체로 농업이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본총량의 큰 부분은 이와 같은 생산자들의 수중에 있다.

례컨대 농민은 자기의 작은 분할지에 많은 로동을 지출한다는것은 옳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된 로동이며 생산성의 객관적인 조건—사회적조건과 물질적조건—을 상실한 로동이다.

이 사정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들은 초과리윤의 일부분을 취득할수 있다. 초과리윤은 적어도 이 점이 문제인 한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농업에서도 제조공업에서와 같이 균등하게 발전한다면 없어지게 될것이다.

우선 차액지대 Ⅱ에 있어서의 초과리윤의 형성만을 고찰하고 이 초과리윤의 지대로의 전화가 진행될수 있는 조건은 잠시 문제로 하지 말기로 하자.

여기서 명백한것은 차액지대 Ⅱ는 다만 차액지대 Ⅰ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사실상 Ⅰ과 일치한다는것이다. 차액지대 Ⅰ에 있어서 각이한 토지종류의 비옥도의 차이가 작용하는것은 오직 이 차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것이 생기는 한에서만이다. 즉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 또는 자본의 크기의 비률로 보아 그러한 자본이 같지 않은

결과, 같지 않은 생산물들을 내는 한에서만이다. 이 같지 않은 결과가 같은 토지부분에 련속적으로 투자된 각 자본들사이에서 생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종류가 다른 여러 토지에 사용된 각 자본사이에서 생기는가 하는것은 비옥도의 차이 또는 그 자본의 생산물의 차이에는, 따라서 보다 생산적으로 투하된 자본부분에 대한 차액지대의 형성에는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나 투자액이 같을 때 토지는 여전히 각이한 비옥도를 표시하는데 다만 Ⅱ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련속적으로 투하되는 한 자본을 위하여 동일한 토지가 제공하는것을 Ⅰ에서는 각이한 토지종류가 사회적자본중의 각 토지종류에 투하되는 같은 량의 각 부분을 위하여 제공할뿐이다.

표 Ⅰ[①]에서는 10파운드라는 자본이 $2\frac{1}{2}$파운드씩 독립적인 자본의 모습으로 각이한 차지농업가들에 의하여 A, B, C, D라는 4종류의 토지의 각 1에이커에 투하되고있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만약 이 동일한 자본이 동일한 D의 1에이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투하되고 제1차 투하는 4쿼터, 제2차 투하는 3쿼터, 제3차 투하는 2쿼터, 최후의 투하는 1쿼터를 제공한다면(또는 이와 반대의 순서라도 좋다) 수익이 가장 적은 자본부분이 제공하는 이 1쿼터의 가격=3파운드는 아무런 차액지대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것은 생산가격 3파운드의 밀의 공급이 아직 필요한 한에서는 생산가격을 규정할것이다. 그리고 전제에 의하면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3파운드라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2\frac{1}{2}$파운드의 자본이 제공하

① 본권 746페지를 보라.—편집자

는 평균리윤을 포함하고있기때문에 $2\frac{1}{2}$파운드씩의 기타 세부분은 이 생산물의 차액에 따라서 초과리윤을 가져올것이다. 왜냐하면 이 생산물은 그 자신의 생산가격으로 판매되는것이 아나라 $2\frac{1}{2}$파운드씩의 투자중 수익이 가장 적은 투자의 생산가격으로 판매되기때문이다. 이 투자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으며 또 이 투자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가격은 생산가격의 일반적법칙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다. 초과리윤의 형성은 표 Ⅰ의 경우와 동일할것이다.

여기에서도 또 차액지대 Ⅱ는 차액지대 Ⅰ을 전제로 한다는것이 분명하게 된다. $2\frac{1}{2}$파운드의 자본이 가져오는 생산물의 최소한 즉 최렬등지에서 가져오는 생산물은 여기서는 1쿼터라고 가정되고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토지 D의 차지농업가가 투하하는 $2\frac{1}{2}$파운드는 그에게 4쿼터를 가져오고 그 대신에 그는 3쿼터의 차액지대를 지불하는데 이 $2\frac{1}{2}$파운드 이외에 그는 동일한 토지에서 다시 $2\frac{1}{2}$파운드를 투하하고 이 $2\frac{1}{2}$파운드는 동일한 액의 자본이 최렬등지 A에서 가져오는 것과 동일한 1쿼터밖에 그에게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투자일것이다. 왜냐하면 차지농업가에게 다만 평균리윤만이 취득되였기때문이다. 거기에는 지대로 전화될 아무런 초과리윤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D에 대한 제2차 투자의 수익의 이러한 감소도 리윤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토지 A의 다른 새로운 1에이커에 $2\frac{1}{2}$파운드가 새로 투하된것과 동일할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초과리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또 토지종류 A, B, C, D의 차액지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 차지농업가에 있어서는 D에 대한 이 $2\frac{1}{2}$파운드의 추가적투자는 동일한 D의 1에이커에 대한 최초의 $2\frac{1}{2}$파운드의 투자가 전제에 의하면 바로 그에게 리익을 가져온것과 동일한것만큼의 리익을 가져올것이다. 비록 최초의 $2\frac{1}{2}$파운드의 투하는 4쿼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후의 각각 $2\frac{1}{2}$파운드씩의 2차의 투자가 제1차는 3쿼터, 제2차는 2쿼터의 추가생산물을 차지농업가에게 준다면 그 경우에도 또 D에 대한 최초의 $2\frac{1}{2}$파운드의 투자가 4쿼터의 수익을, 따라서 3쿼터의 초과리윤을 준것에 비하면 역시 수익의 감소가 생겼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초과리윤의 크기의 감소일따름일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평균리윤에도 규제적생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다. 그 영향이 미치는것은 이러한 감소되는 초과리윤을 가져오는 추가적생산이 A에서의 생산을 무용한것으로 만들며 따라서 경지중에서 A의 1에이커를 경작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만 있게 될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D의 1에이커에서의 추가적투자의 수익성의 저하에는 생산가격의 저하가 수반될것이다. 례컨대 B의 1에이커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토지로 된다면 3파운드로부터 $1\frac{1}{2}$파운드로의 생산가격의 저하가 수반될것이다.

D의 생산물은 이전에는 4쿼터였는데 이제는 4+1+3+2=10

쿼터일것이다. 그러나 B에 의하여 규제되는 1쿼터의 가격은 $1\frac{1}{2}$파운드로 저락될것이다. D와 B와의 차액은 10—2=8쿼터이고 1쿼터당 $1\frac{1}{2}$파운드에서는 12파운드일것인데 D의 화폐지대는 이전에는 9파운드였던것이다. 이것은 주의를 요하는것이다. 각각 $2\frac{1}{2}$파운드씩의 2차의 추가적자본들에 대한 초과리윤률은 저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커당으로 계산하면 지대는 $33\frac{1}{3}$%만큼 제고되였을것이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차액지대일반 특히는 형태 Ⅰ과 결합된 형태 Ⅱ에서의 차액지대는 매우 복잡한 조합을 일으킬수 있는데 그것을 례컨대 리카도는 매우 일면적으로 단순한 사물①로서 취급하고있다. 례컨대 우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규제적시장가격이 저락하는 동시에 비옥한 토지의 지대가 증대하며 그리하여 절대적생산물도 절대적초과생산물도 증대하는 경우들이 있다(하강순서의 차액지대 Ⅰ의 경우에는 1에이커당 절대적초과생산물은 여전히 동일하든가 또는 감소되기까지 하여도 1에이커당 상대적초과생산물, 따라서 1에이커당 지대는 증대할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토지에 차례로 뒤를 이어 실시되는 투자의 수익성은 그중 큰 부분이 보다 비옥한 토지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소된다. 어떤 관점으로 보면—생산물에 관하여서도, 생산가격에 관하여서도—로동의 생산성은 제고되였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저하되였다. 왜냐하면 동일한 토지에서의 각이한 투자에 대한 초과리윤률과 1에이커당 초과생산물은 감소되기때

① 본권 731~732페지를 보라.—편집자

문이다.

순차적인 투자의 생산성이 감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차액지대 Ⅱ가 필연적으로 생산가격의 상승이나 생산성의 절대적 저하와 결부되는것은 다만 이러한 투자가 최렬등지 A에서밖에 실시되지 않는 경우뿐일것이다. 만일 A의 1에이커가 처음에는 $2\frac{1}{2}$파운드의 투자에 의하여 1쿼터를 3파운드의 생산가격으로써 생산하였는데 그것이 다음의 $2\frac{1}{2}$파운드의 투하에서는, 따라서 5파운드의 총투자에서는 합계 $1\frac{1}{2}$쿼터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1\frac{1}{2}$쿼터의 생산가격은 6파운드이며 따라서 1쿼터의 생산가격은 4파운드이다. 투자가 증가할 때마다 생산성이 감소되여간다는것은 이 경우에는 언제나 1에이커당 생산물의 상대적감소일것이다. 그러나 보다 좋은 토지종류에서는 그것은 다만 여분의 초과생산물의 감소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성질상 당연한 일이지만 집약적경작이 발전함에 따라 즉 동일한 토지에서의 순차적인 투자에 따라 그러한 일이 생기는것은, 또는 보다 높은 정도로 생기는것은 주로 보다 좋은 토지들에서이다(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될수 없었던 토지를 사용될수 있는 토지로 전화시키는 항구적인 개량들에 관하여 말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순차적인 투자의 생산성이 감소되여가는것은 주로 상술한바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수 없다. 이 경우에 보다 좋은 토지가 선발되는것은 그 토지에서는 거기에 투하되는 자본이 수익을 낼 희망이 가장 크기때문이며 이 희망이 큰것은 그 토지에는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 자연적 제 요소를 많이 포함

하고있어 그저 이 요소를 리용될수 있는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기때문이다.

곡물법[68]이 폐지되면서부터 영국에서는 경작이 더욱 집약적으로 되였을 때 종전의 많은 밀재배지는 다른 목적들에, 특히 목장으로 사용되게 되였는데 이와는 반대로 밀재배에 가장 적합한 비옥한 토지는 배수나 기타의 개량이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밀재배를 위한 자본은 보다 좁은 지역에 집중되였다.

이 경우에는—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좋은 토지의 최고의 초과생산물과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토지 A의 생산물사이의 모든 가능한 초과률은 1에이커당 초과생산물의 상대적증가가 아니라 절대적증가와 일치하지만—새로 형성되는 초과리윤(가능한 지대)은 이전의 평균리윤중에서 지대로 전화되는 부분(생산물중 이전에는 평균리윤을 표시하던 부분)을 표시하는것이 아니라 추가적초과리윤을 표시하는것이며 이것이 이 형태로부터 지대로 전화되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여 시장가격이 A의 생산가격보다 높아지고 그때문에 A나 B나 그밖의 어느 부류의 토지에서도 초과생산물을 3파운드보다 높은 가격으로 밖에 공급할수 없게 되는 경우,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A, B, C, D 중 어느 부류에 대한 추가적투자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감소에는 생산가격 및 규제적시장가격의 상승이 결부될것이다. 이러한 형편이 비교적 장기간 고정되고 추가된 토지 A(적어도 A와 같은 질의 토지)의 경작을 초래하지 않는 한, 또는 기타의 영향이 보다 저렴한 공급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사정들이 변함이 없다면 빵가격의 등귀로 인하여 로임은 오르고 그에 따라 리윤률은 내릴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대한 수요가 A보다 나쁜 토지를 경작에 인입함으로써 충족

되든 또는 4개의 토지종류중 어느 하나에 대한 추가적투자에 의하여 충족되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을것이다. 차액지대는 리윤률의 저하에 따라 증대될것이다.

이 하나의 경우에는 이미 경작되고있는 토지종류에 후에 추가되여가는 자본의 생산성의 감소가 생산가격의 상승, 리윤률의 저하, 증대된 차액지대의 형성을 초래할수 있는데—왜냐하면 차액지대는 주어진 사정하에서는 마치도 이제는 A보다 나쁜 토지가 시장가격을 조절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종류에서 증대될것이기때문이다—이 하나의 경우가 리카도에 의하여 유일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경우로서 락인이 찍혔으며 그는 차액지대 Ⅱ의 형성을 모두 이 하나의 경우에 귀착시키고있다.①

이것은 토지종류 A만이 경작되고 이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들이 그것에 비례하는 생산물의 증대와 결부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할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차액지대 Ⅱ에서는 차액지대 Ⅰ이 완전히 망각되고만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경작되고있는 토지종류에서의 공급이 불충분하고 따라서 새로 추가된 보다 나쁜 토지가 경작되기까지 또는 여러가지 토지종류에 투하된 추가적자본의 총생산물이 종래 인정되던것보다 높은 생산가격으로만 제공될수 있을 때까지 시장가격이 계속 생산가격보다 높은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자본들의 생산성의 비례적감소는 규제적생산가격에도, 리윤률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세 경우가 더 있을수 있다.

---

① 본권 731~732페지를 보라.—편집자

(a) 토지종류 A, B, C, D중의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적자본이 다만 A의 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리윤률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것에 의하여서는 초과리윤이 형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또 가능적인 지대도 형성되지 않는데 그것은 추가된 토지 A가 경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것이다.

(b) 추가자본이 보다 많은 생산물을 가져온다면 규제적 가격이 여전히 동일한 한에서는 두말할것도 없이 새로운 초과리윤(잠세적지대)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즉 이 추가적생산이 토지 A를 경작지밖으로 배제하며 따라서 서로 경쟁하는 여러가지 토지종류의 대렬밖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규제적생산가격은 저락한다. 만일 이것에 로임의 저하가 결부되든가 또는 보다 저렴한 생산물이 요소로서 불변자본에 들어가든가 하면 리윤률은 제고될것이다. 만일 추가자본의 생산성의 제고가 가장 좋은 토지들인 C나 D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증가된 초과리윤의(따라서 또 증가된 지대의) 형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의 저락이나 리윤률의 제고와 결부될것인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제고된 생산성의 높이와 새로 추가된 자본의 량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 이 리윤률은 로임이 저하되지 않아도 불변자본의 요소들이 저렴해지는데 의하여 제고될수 있다.

(c) 초과리윤의 감소를 수반하는 추가적투자가 실시되여도 그 생산물이 토지 A에서의 같은 량의 자본의 생산물을 초과한다. 초과분을 남기도록 실시된다면 증가된 공급으로 말미암아 토지 A가 경지밖으로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초과리윤의 새로운 형성이 생기며 그것은 D, C, B, A에서 동시에 생길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렬등지 A가 경지밖으로 배제된다면 규제적생산가격은 저락하며 화폐

로 표현된 초과리윤 따라서 또한 차액지대가 오르는가 내리는가 하는것은 1쿼터당 가격의 저하와 초과리윤을 형성하는 쿼터수의 증가와의 비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여하간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즉 순차적인 투자의 초과리윤이 감소됨에 따라 생산가격은 얼핏 보면 등귀하지 않을수 없는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저락할수도 있다는것이다.

초과수익의 감소를 수반하는 이러한 추가투자는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응하는것이다. 즉 비옥도가 각각 A와 B의 중간, B와 C의 중간, C와 D의 중간에 있는 토지종류들에서 례컨대 $2\frac{1}{2}$파운드씩의 4개의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이 투하되여 그러한 자본이 각각 $1\frac{1}{2}$쿼터, $2\frac{1}{3}$쿼터, $2\frac{2}{3}$쿼터 및 3쿼터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모든 토지종류들에서 4개의 모든 추가자본들에 있어서 초과리윤, 잠세적지대가 형성될것이다. 비록 초과리윤률은 각각 보다 좋은 토지들에 대한 동등한 액의 투자의 초과리윤과 비교하면 감소될것이지만. 그리고 이 4개의 자본이 D 등에 투하되든 또는 D와 A간에 분배되든 그것은 완전히 같은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차액지대의 두 형태사이의 본질적차이에 도달한다.

생산가격이 여전히 동일하고 또 차액도 여전히 동일하다면 차액지대 I에서는 지대총액과 함께 에이커당 평균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률도 증대할수 있다. 그러나 평균은 다만 추상에 불과하다. 에이커당으로 또는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현실적인 지대의 높이는 이 경우에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전제하에서 투하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지대률은 여전히 동일하더라도 에이커당으로 계산한 지대의 높이는 제고될수 있다.

A, B, C, D에 상대적인 비옥도는 변동없다고 하고 각각 $2\frac{1}{2}$파운드씩이 아니라 5파운드씩 따라서 합계로는 10파운드가 아니라 20파운드의 자본이 투하됨으로써 생산이 2배로 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마치도 이러한 토지종류들이 각각 1에이커씩이 아니라 2에이커씩, 그것도 이전과 같은 비용으로써 경작되는것과 동일할것이다. 리윤률은 여전히 동일할것이며 또한 초과리윤 또는 지대에 대한 리윤률의 관계도 역시 동일할것이다. 그러나 이제 만약 A는 2쿼터, B는 4쿼터, C는 6쿼터, D는 8쿼터를 가져온다면 이 증가는 자본이 동일하고 비옥도가 2배로 된데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이 2배로 되고 상대적비옥도가 변함없는데 기인하기때문에 생산가격은 여전히 1쿼터당 3파운드일것이다. A의 2쿼터에는 이전에 그 1쿼터에 3파운드의 비용이 든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6파운드의 비용이 들것이다. 리윤은 4종류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2배로 될것이나 그것은 다만 투하된 자본이 2배로 된때문이다. 그러나 지대도 동일한 비률로 2배로 되였을것이다. 지대는 B에 있어서는 1쿼터가 아니라 2쿼터, C에 있어서는 2쿼터가 아니라 4쿼터, D에 있어서는 3쿼터가 아니라 6쿼터일것이다. 또 그에 따라 화폐지대는 B, C, D에 있어서 각각 6파운드, 12파운드, 18파운드로 될것이다. 1에이커당의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1에이커당 화폐지대도 2배로 되고 따라서 또 이 화폐지대가 자본화된것인 토지가격도 2배로 될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곡물지대의 높이와 화폐지대의 높이도 증대되고

따라서 토지가격도 증대되는데 그것은 1에이커라는 토지가격의 계산척도가 변하지 않는 크기의 토지면적이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투하된 자본에 대한 지대률로서 계산하면 지대의 비률적높이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투하자본 20에 대한 지대총액 36의 비는 투하자본 10에 대한 지대총액 18의 비와 같다. 동일한것은 각 토지종류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그 각 토지종류의 화폐지대의 비에 대하여도 말할수 있다. 례컨대 C에서는 자본 5파운드에 대한 지대 12파운드의 비는 이전의 자본 $2\frac{1}{2}$파운드에 대한 지대 6파운드의 비와 같다. 이 경우에는 투하된 자본들간에 새로운 차이가 생기는것은 아니나 새로운 초과리윤이 생기는것인데 그것은 다만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중의 어느 하나에 또는 그 전체에 동일한 비례적생산물을 수반하는 추가자본이 투하되기 때문이다. 례컨대 C에 대하여서만 2배의 투하가 실시된다 하여도 자본에 대하여 계산된 차액지대는 C, B, D간에서 변함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차액지대의 량은 C에서는 2배로 되지만 거기서는 투하자본도 2배로 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생산가격이 동일하고 리윤률이 동일하고 비옥도의 차이가 동일하더라도(따라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초과리윤 또는 지대의 률도 동일하더라도) 1에이커당의 생산물지대 및 화폐지대의 높이, 따라서 토지가격은 증대될수 있다.

동일한것은 초과리윤의 률 따라서 지대의 률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즉 여전히 지대를 가져오는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일어날수 있다. 제2차의 $2\frac{1}{2}$파운드의 투

자들이 생산물을 2배로 되게 하지 않고 B에서는 $3\frac{1}{2}$쿼터, C에서는 5쿼터, D에서는 7쿼터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제2차 $\frac{1}{2}$ 파운드의 자본에 대한 차액지대는 B에는 1쿼터가 아니고 $\frac{1}{2}$쿼터, C에서는 2쿼터가 아니고 1쿼터, D에서는 3쿼터가 아니라 2쿼터밖에 안될것이다. 이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2차의 투자에 대하여 지대와 자본간의 비률은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제1차 투자	제2차 투자
B:	지대 3파운드 자본 $2\frac{1}{2}$파운드,	지대 $1\frac{1}{2}$파운드 자본 $2\frac{1}{2}$파운드
C:	지대 6파운드 자본 $2\frac{1}{2}$파운드,	지대 3파운드 자본 $2\frac{1}{2}$파운드
D:	지대 9파운드 자본 $2\frac{1}{2}$파운드,	지대 6파운드 자본 $2\frac{1}{2}$파운드

자본의 상대적생산성의 률, 따라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초과리윤의 률이 이렇게 저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는 B에서는 1쿼터로부터 $1\frac{1}{2}$쿼터로(3파운드로부터 $4\frac{1}{2}$파운드로), C에서는 2쿼터로부터 3쿼터로(6파운드로부터 9파운드로), D에서는 3쿼터로부터 5쿼터로(9파운드로부터 15파운드로) 증대되였을것이다. 이 경우에 A에 투하된 자본과 비한 추가자본들의 차이는 감소될것이며 생산가격은 변함이 없을것이나 1에이커당의 지대와 따라서 1에이커당의 토지가격은 제고되였을것이다.

그러면 차액지대 Ⅰ을 기초로서 전제로 하는 차액지대 Ⅱ의 조합들은 다음과 같다.

제 41 장

차액지대 Ⅱ. 제1의 경우—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이 전제에는 시장가격이 여전히 최렬등지 A에 투하된 자본에 의하여 규제된다는것이 포함된다.

Ⅰ.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 B, C, D의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자본이 토지 A에서 동등한 자본이 생산하는것만큼밖에는 생산하지 않는다면, 즉 그것이 규제적생산가격으로는 평균리윤밖에 가져오지 않고 아무런 초과리윤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 지대에 미치는 영향은 령이다. 모든것은 종래와 다름이 없다. 이것은 마치도 최렬등지 A와 같은 질의 임의의 에이커수가 종래의 경지면적에 추가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Ⅱ. 추가자본이 각 토지종류에서 그 각 자본들의 크기에 비례하는 추가적생산물을 가져오는 경우. 즉 생산규모가 각 토지종류의 특수한 비옥도에 따라 추가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대되는 경우. 우리는 제39장에서 다음의 표 Ⅰ에서 출발하였다.

표 I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초과리윤률
								쿼터	파운드	
I										
A	1	$2\frac{1}{2}$	$\frac{1}{2}$	3	1	3	3	0	0	0
B	1	$2\frac{1}{2}$	$\frac{1}{2}$	3	2	3	6	1	3	120%
C	1	$2\frac{1}{2}$	$\frac{1}{2}$	3	3	3	9	2	6	240%
D	1	$2\frac{1}{2}$	$\frac{1}{2}$	3	4	3	12	3	9	360%
합계	4	10	—	12	10	—	30	6	18	—

이 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표 II로 전화된다.

표 II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초과리윤률
								쿼터	파운드	
II										
A	1	$2\frac{1}{2}+2\frac{1}{2}=5$	1	6	2	3	6	0	0	0
B	1	$2\frac{1}{2}+2\frac{1}{2}=5$	1	6	4	3	12	2	6	120%
C	1	$2\frac{1}{2}+2\frac{1}{2}=5$	1	6	6	3	18	4	12	240%
D	1	$2\frac{1}{2}+2\frac{1}{2}=5$	1	6	8	3	24	6	18	360%
	4	20	—	—	20	—	60	12	36	—

여기서는 이 표에서와 같이 모든 토지종류들에서 투자가 2배로 되는것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들의 어느 하나 또는 몇개에 대하여 추가자본이 사용되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비률로 사용되든간에 법칙은 동일하다. 필요한것은 다만 어느 토지종류에서도 생산은 자본과 동일한 비률로 증가된다는것뿐이다. 이 경우에 지대는 다만 토지에 대한 투자의 증가의 결과로써만, 그리고 이 자본증가에 비례하여서만 증대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물과 지대가 투자의 증가의 결과로서, 또 그것에 비례하여 증대하는것은 생산물량이나 지대의 량에 관하여 말하면 지대를 가져오는 동일한 질의 토지의 경작면적이 증가되고 그것이 이전에 동일한 토지종류에 투하된것과 동등한 투자로써 경작되게 된 경우와 동일하다. 례컨대 표 Ⅱ의 경우에는 1에이커당 $2\frac{1}{2}$파운드의 추가자본이 토지 B, C 및 D의 각각 제2의 1에이커씩에 투하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여전히 동일할것이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이 전제로 하는것은 자본이 이전보다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는것이 아니라 다만 보다 많은 자본이 이전과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사용되는것뿐이다.

이 경우에 모든 상대적관계는 이전과 동일하다. 물론 비례적차액들이 아니라 순전히 산수적인 차액들을 고찰한다면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에서의 차액지대는 변동될수 있다. 례컨대 추가자본이 B와 D에만 투하되였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D와 A간의 차액은 이전에는 3쿼터였는데 7쿼터이고 B와 A간의 차액은 이전에는 1쿼터였는데 3쿼터이고 C와 B간의 차액은 이전에는 플라스 1쿼터였는데 마이나스 1쿼터인 등이다. 그러나 이 산수적차액은 차액지대 Ⅰ의 경우에는 동일한

액의 투자들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차이가 그것을 표현하는 한 결정적의의를 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왜냐하면 이 산수적차액은 다만 각이한 토지들에 투하되는 동등한 액의 각 자본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불변인 경우의 자본투하의 각이한 증가 또는 자본투하의 비증가의 결과에 불과하기때문이다.

Ⅲ. 추가자본들이 초과생산물을 가져오고 따라서 초과리윤을 형성하나 그 률이 저하되여 자본의 증대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표 Ⅲ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초과리윤률
								쿼터	파운드	
A	1	$2\frac{1}{2}$	$\frac{1}{2}$	3	1	3	3	0	0	0
B	1	$2\frac{1}{2}+2\frac{1}{2}=5$	1	6	$2+1\frac{1}{2}=3\frac{1}{2}$	3	$10\frac{1}{2}$	$1\frac{1}{2}$	$4\frac{1}{2}$	90%
C	1	$2\frac{1}{2}+2\frac{1}{2}=5$	1	6	3+2=5	3	15	3	9	180%
D	1	$2\frac{1}{2}+2\frac{1}{2}=5$	1	6	$4+3\frac{1}{2}=7\frac{1}{2}$	3	$22\frac{1}{2}$	$5\frac{1}{2}$	$16\frac{1}{2}$	330%
	—	$17\frac{1}{2}$	$3\frac{1}{2}$	21	17	—	51	10	30	—

이 제3의 가정하에서도 다음과 같은것은 아무래도 좋다. 즉 제2차 추가적투자가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에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실시되는가, 초과리윤의 생산의 감소가 동등한 비률로 또는 동등하지 않은 비률로 일어나는가, 추가적투

자는 모두 지대를 가져오는 동일한 토지종류에 실시되는가 또는 지대를 가져오는 각이한 질의 토지들간에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분배되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우리가 이제부터 전개하려는 법칙에 대하여서는 아무래도 좋다. 유일한 전제는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의 그 어느 하나에 대한 추가적투자들은 초과리윤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비률은 자본증가의 정도에 비하면 감소된다는것이다. 이 감소의 한계는 우에서 든 표의 례에서는 가장 좋은 토지 D에 대한 제1차 투자의 생산물 4쿼터=12파운드와 가장 나쁜 토지 A에 대한 동일한 액의 투자의 생산물 1쿼터=3파운드간에서 변동한다. 자본 Ⅰ의 투하에 의한 최우등지의 생산물은 순차적투자의 생산성이 감소되는 경우에 초과리윤을 가져오는 토지종류의 어느 하나에 대한 순차적투자가 가져오는 생산물의 최고한계를 이루며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초과리윤을 제공하지 않는 최렬등지 A에서의 동일한 투자에 의한 생산물은 그 최저한계를 이룬다. 만일 가정 Ⅱ는 좋은 토지종류의 경작면적에 동등한 질의 새로운 토지가 첨가되는데 상응하며 또 경작되는 토지종류의 어느 하나의 량이 증가되는데 상응한다면 가정 Ⅲ은 추가된 토지들이 경작되여 그러한 토지의 각이한 정도의 비옥도가 D와 A 간에, 즉 최우등지의 비옥도와 최렬등지의 비옥도간에 분포되는데 상응하는 것이다. 만약 순차적투자들이 오로지 토지 D에서만 실시된다면 그 투자들은 D와 A간에 존재하는 차이, 그리고 또 D와 C간의 차이, 또한 마찬가지로 D와 B간의 차이도 포함할수 있다. 만약 투자가 모두 토지 C에서만 실시된다면 C와 A 또는 B간의 차이만을 포함할수 있으며 B에서만 실시된다면 B와 A간의 차이만을 포함할수 있다.

그러나 법칙은, 지대는 이 모든 토지종류들에서 추가적으로 투하되는 자본에 비례해서 증대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는 증가한다는것이다.

초과리윤률은 추가자본에 대해서나 토지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해서나 저하된다. 그러나 초과리윤의 절대량은 증대된다. 그것은 마치도 자본일반의 리윤률의 저하가 대개는 리윤의 절대량의 증가와 결부되여있는것과 같은것이다. 례컨대 B에 대한 투자의 평균초과리윤률은 자본에 대하여 90%인데 그것은 제1차 투자에서는 120%였다. 그러나 총초과리윤은 1쿼터로부터 $1\frac{1}{2}$쿼터로, 또 3파운드로부터 $4\frac{1}{2}$파운드로 증가한다. 총지대를 그 자체로서—그리고 선대자본의 2배로 된 크기에 관련하여서가 아니라—본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증가되였다.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의 지대의 차액도, 또 그것들의 호상 비률도 이 경우에는 변동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액의 변동은 이 경우에는 호상 대비된 지대들의 증가의 결과인것이고 그 원인인것은 아니다.

Ⅳ. 보다 좋은 토지종류들에 대한 추가적투자들이 최초의 투자보다 많은 량의 생산물을 가져오는 경우는 이 이상의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전제밑에서는 1에이커당 지대는 증대된다는것,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토지종류에서 추가자본의 투하가 실시되든간에 추가자본보다 큰 비률로 증대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투자는 개량과 결부되여있다. 이것에는 보다 적은 자본의 추가가 이전에 보다 많은 자본의 추가가 생산한것과 동일하든가 또는 그보다 큰 결과를 생산한 경우가 포함되여있다. 이 경우는 이전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것은 아니며 이 구별은 모든 투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례컨대 만약 100이 10이라는 리윤을 제공하고 또 200이 일정한 형태로 사용되여 40이라는 리윤을 제공한다고 하면 리윤은 10%로부터 20%로 증가된것이며 그러한 한에 있어서 그것은 50이 보다 유효한 형태로 사용되여 5대신에 10이라는 리윤을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우리는 이 경우에 리윤의 증가는 생산물의 비례적증가와 결부되여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차이는 한 경우에는 나는 자본을 2배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종래의 자본을 가지고 2배의 효과를 거둔다는데 있다. 내가, 1) 이전의 절반의 산로동과 대상화된 로동으로써 이전과 동일한 량의 생산물을 생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2) 이전과 동일한 량의 로동으로써 이전의 2배의 생산물을 생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3) 이전의 2배의 로동으로써 이전의 4배의 생산물을 생산하는가 하는것은 결코 동일한것이 아니다. 첫째 경우에는 로동—산형태로 또는 대상화된 형태로서의—이 유리되여 그것이 다른 곳에 사용될수 있다. 로동과 자본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자본(및 로동)의 유리는 그 자체로서는 부의 증가이다. 그것은 마치도 이 추가자본이 축적에 의하여 얻어지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그러나 축적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00이라는 자본이 10메터의 생산물을 생산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100에는 불변자본도 포함되여있고 산로동과 리윤도 포함되여있다고 하자. 그러면 1메터에는 10의 비용이 든다. 만약 내가 동일한 100이라는 자본으로써 이제는 20메터를 생산할수 있다면 1메터의 비용은 5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50이라는 자본으로써 10메터를 생산할수 있다면 1메터의 비용은 역시 5이며 이전의 상품공급으로써 충분한 한에서는 50이

라는 자본이 유리된다. 만약 내가 40메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의 자본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1메터의 비용은 역시 5이다. 이 경우에는 가치규정 또는 가격규정에는 아무런 차이도 인정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자본선대에 비례하는 생산물량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첫째 경우에는 자본이 유리된다. 둘째 경우에는 만약 2배의 생산이 필요한 한에서는 추가자본이 절약된다. 셋째 경우에는 증가된 생산물을 얻을수 있는것은 다만 선대자본이 증대하기때문이다. 비록 그 증대의 비률은 증가된 생산물이 이전의 생산력으로써 제공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이것은 Ⅰ편에 속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견지에서 잉여가치의 증대가 아니라 비용가격의 감소를 고려하면—그리고 잉여가치형성요소인 로동에 대한 비용의 절약도 자본가에게 이러한 봉사를 하는것이며 규제적생산가격이 변함없는 한에서는 그를 위하여 리윤을 형성하는것이지만—불변자본의 사용은 항상 가변자본의 사용보다 저렴하다.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적응한 신용의 발전과 대부자본의 풍족을 전제로 한다. 가령 100파운드가 5명의 로동자들의 생산물이라고 할 때 내가 한편으로는 1년간에 100파운드의 추가적불변자본을 사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100파운드를 가변자본으로 사용한다고 하자. 만약 잉여가치률이 100%라면 5명의 로동자가 창조한 가치는 200파운드이다. 그런데 100파운드의 불변자본의 가치는 100파운드이며 또 리자률이 5%라면 자본으로서는 아마도 105파운드일것이다. 동일한 화폐액이 생산에 불변자본의 가치량으로서 선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변자본의 가치량으로서 선대되는가에 따라서, 그 생산물로부터 보면 극히 각이

한 가치를 표현한다. 그리고 자본가의 견지에서 본 상품의 비용에 관하여 말하면 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그것은 즉 100파운드의 불변자본에서는 그것이 고정자본으로 투하되는 한 다만 그 마멸분이 상품의 가치에 들어갈뿐이지만 로임에 투하되는 100파운드는 전부 그 상품가치중에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이이다.

식민지이주민이나 일반적으로 독립적소생산자들이 전혀 자본을 자유로 처분할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높은 리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물중 로임을 대표하는 부분은 그들의 수입이지만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자본의 선대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자는 이 로동투하를 우선 문제로 되는 로동수익의 필수적전제조건으로서 본다. 그러나 이 필요한 로동을 공제한후에 남는 그의 여분의 로동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물론 여분의 생산물로 실현된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판매할수 있거나 또는 자기가 사용할수 있다면 그는 이 생산물을 자기에게는 대상화된 로동이 들지 않았기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은것으로 본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대상화된 로동의 지출만이 부의 양도라고 인정되는것이다. 물론 그는 될수록 비싸게 팔려고 한다. 그러나 가치보다 이하로의 그리고 자본주의적생산가격 이하로의 판매까지도 역시 그에게는 리윤으로 인정된다. 비록 이 리윤이 채무, 저당 등등으로 말미암아 선취되지 않는 한에서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들에는 가변자본의 투하도 불변자본의 투하와 마찬가지로 역시 자본의 선대이다. 불변자본의 상대적으로 보다 큰 선대는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다면 상품의 비용가격을 감소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그 가치도 감소시킨다. 그렇기때문에 리윤은 다만 잉여로동에서

만, 따라서 가변자본의 사용에서만 생기는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자본가에게는 산로동은 그의 생산비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요소이며 무엇보다도 최소한도로 축소시켜야 할 요소인것으로서 보일수 있다. 이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 옳은 견해가 자본주의적으로 외곡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즉 산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과거로동의 사용은 사회적로동의 생산성의 제고와 사회적부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경쟁의 견지에서 보면 모든것이 이렇게 허위적이며 모든것이 이렇게 거꾸로 나타난다.

생산가격이 변동없는것을 전제하면 보다 좋은 토지들 즉 B이상의 모든 토지에서 실시되는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은 이전과 동일할수도 있고 이전보다 높든가 또는 낮을수도 있다. 우리의 전제하에서 이 추가적투자가 A 자체에서 가능한것은 다만 생산성이 변하지 않고 그 토지가 여전히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이든가 또는 생산성이 증대하는 경우뿐인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토지 A에 투하된 자본의 일부분은 지대를 가져올것이고 다른 부분은 가져오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토지 A에서의 생산력이 감퇴된다고 가정하면 A에서의 추가적투자는 불가능할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생산가격은 변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오를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정하에서도 즉 추가적투자가 가져오는 초과생산물이 추가적투자의 크기에 비례하여도, 이 비례를 넘어서도, 이 비례에 도달하지 못하여도—따라서 자본이 증대하는 경우에 자본의 초과리윤률이 변함없어도, 제고되여도 또는 저하되여도—1에이커당의 초과생산물 및 그것에 상응하는 초과리윤은 증대하며 따라서 결국 지대도, 곡물지대도 화폐지대도 증대할수 있다. 1에이커당으로 계산한 초과리윤, 또는

지대의 단순한 량의 증대, 즉 어떤 불변한 한 단위, 즉 이 경우에는 에이커나 헥타르라는 일정한 량의 토지에 대하여 계산한 량의 증가가 비률의 증대로서 표현된다. 그렇기때문에 1에이커당으로 계산한 지대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단순히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증가의 결과로서 증가한다. 그리고 이 증대는 생산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것이며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든, 감소되든 또는 증가하든 그것에는 관계없이 생긴다. 이 후자의 사정은 1에이커당 지대의 높이가 증대되는 정도를 변경시키지만 이 증대라는 사실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것은 차액지대 Ⅱ에 특유하고 차액지대 Ⅱ를 차액지대 Ⅰ로부터 구별하는 현상이다. 만약 추가적투자가 동일한 토지에서 시간적으로 서로 뒤를 이어 실시되지 않고 해당한 질의 새로 추가된 토지에서 공간적으로 서로 나란이 실시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지대총액은 증대될것이며 또 앞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경작총면적의 평균지대도 증가될것이지만 그러나 1에이커당의 지대의 높이는 증대되지 않을것이다. 총생산 및 초과생산물의 량 및 가치를 고찰하는 한에서는 결과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다 협소한 지면에서의 자본의 집적은 1에이커당 지대의 높이를 증대시키는데 동일한 사정하에서 보다 넓은 면적에 걸친 자본의 분산은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는 한 이러한 결과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동일한 지면에서의 자본의 집적도 더욱 커지며 따라서 1에이커당으로 계산한 지대도 더욱 증대된다. 그러므로 만약 두 나라에서 생산가격이 동일하고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의 차이도 동일하며 또 동일한 량의 자본이 투하되여도 한 나라에서는 보다 많이 제한된 지면에의 순차적투하형태로 진행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보다 넓은 면적에의 병렬적인 투하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1에이커당의 지대, 따라서 또 토지가격은 첫째 나라에서는 높고 둘째 나라에서는 낮을것이지만 지대의 량은 두 나라에서 같을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지대의 높이에서의 차이는 여러가지 토지종류의 자연적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사용되는 로동의 량의 차이에 의해서도 설명될수 없고 다만 투자방식의 차이에 의해서만 설명될수 있을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과생산물이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것을 생산물중 초과리윤을 표시하는 해당 부분이라는 의미로 리해하여야 한다. 다른 경우에 우리가 잉여생산물 또는 초과생산물이라고 하는것은 총잉여가치를 표시하는 생산물부분이며 또 개별적경우들에는 평균리윤을 표시하는 생산물부분이기도 한것이다. 이 말이, 지대를 가져오는 자본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에 가지는 특수한 의의는 앞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오해들을 일으키게 한다.

제 42 장

차액지대 Ⅱ. 제2의 경우— 생산가격이 저하되는 경우

생산가격은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든가 저하하든가 또는 제고되는 경우에 저락될수 있다.

Ⅰ.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이 경우는 여러가지 토지종류에서 그 각 토지들의 질에 따라 생산물이 그 각 토지들에 대한 투하자본과 동일한 비률로 증가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의 차이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의 증가에 비례하는 초과생산물의 증가를 포함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차액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A에서의 일체 추가적투자를 배제하는것이다. A에서의 초과리윤률은 령이다. 그것이 여전히 령인것은 추가자본의 생산력이 변하지 않고 따라서 초과리윤률도 변하지 않는다는것이 전제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하에서 규제적생산가격은 A에서의 생산가격 대신에 바로 그다음의 보다 좋은 토지인 B의 생산가

격 또는 일반적으로 A보다 좋은 토지에서의 생산가격이 규제적인것으로 되기때문에 저락할수 있을따름이다. 즉 자본이 A로부터 회수되거나 또는 토지 C에서의 생산가격이 규제적인 생산가격으로 되는 경우, 즉 C보다 나쁜 모든 토지는 밀을 생산하는 토지종류의 경쟁으로부터 탈락하는 경우에는 A 및 B로부터 자본이 회수되기때문일따름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주어진 전제하에서는 추가적투자의 추가적생산물이 수요를 충족시키며 따라서 보다 나쁜 토지 A 등의 생산이 공급량의 생산을 위하여서는 불필요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례컨대 표 Ⅱ를 들어보는데 다만 20쿼터가 아니라 18쿼터가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A는 탈락할것이고 B 및 이와 함께 1쿼터당 30실링이라는 생산가격이 규제적인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면 차액지대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표 Ⅳ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쿼터당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초과리윤률
								곡물 (쿼터)	화폐 (파운드)	
B	1	5	1	6	4	$1\frac{1}{2}$	6	0	0	0
C	1	5	1	6	6	$1\frac{1}{2}$	9	2	3	60%
D	1	5	1	6	8	$1\frac{1}{2}$	12	4	6	120%
합계	3	15	3	18	18	—	27	6	9	—

그리하여 표 Ⅱ와 비교하면 지대총액은 36파운드로부터 9파운드로 감소되고 곡물로써는 12쿼터로부터 6쿼터로 감소될것인데 총생산은 20쿼터로부터 18쿼터로 2쿼터 감소될뿐일것이다.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초과리윤률은 3분의 1로 저하되여 180%로부터 60%로 될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산가격의 저하에 곡물지대와 화폐지대의 감소가 상응하는것이다.

표 Ⅰ과 비교해보면 화폐지대가 감소되였을뿐이다. 즉 곡물지대는 어느 경우에나 6쿼터이고 다만 이것이 한 경우에는 18파운드로 되고 다른 경우에는 9파운드로 될따름이다. 토지 C에 있어서는 곡물지대는 표 Ⅰ과 비교하면 변함이 없다.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작용하는 추가자본에 의하여 달성되는 추가생산이 토지 A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구축하고 따라서 경쟁적생산요인으로서의 토지 A를 배제한데 의하여 새로운 차액지대 Ⅰ이 형성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전에 보다 나쁜 토지 A가 놀던것과 같은 역할을 보다 좋은 토지 B가 논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B의 지대가 없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제대로 B, C 및 D간의 차이는 추가자본의 투하에 의해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생산물중 지대로 전화되는 부분이 감소되는것이다.

만약 상술한 결과—토지 A가 배제되여도 수요가 충족된다는것—가 C 또는 D 또는 이 량자에 대하여 2배이상의 자본이 투하되였다는데 의하여 초래되였다면 사태는 달라질것이다. 례컨대 제3차 투자가 C에 대하여 실시된다면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표 Ⅳa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초과리윤률
								곡물 (쿼터)	화폐 (파운드)	
B	1	5	1	6	4	$1\frac{1}{2}$	6	0	0	0
C	1	$7\frac{1}{2}$	$1\frac{1}{2}$	9	9	$1\frac{1}{2}$	$13\frac{1}{2}$	3	$4\frac{1}{2}$	60%
D	1	5	1	6	8	$1\frac{1}{2}$	12	4	6	120%
합계	3	$17\frac{1}{2}$	$3\frac{1}{2}$	21	21	—	$31\frac{1}{2}$	7	$10\frac{1}{2}$	—

이 경우에는 표 Ⅳ와 비교하면 C에서는 생산물은 6쿼터로부터 9쿼터로, 초과생산물은 2쿼터로부터 3쿼터로, 화폐지대는 3파운드로부터 $4\frac{1}{2}$파운드로 증가되였다. 이와는 반대로 C의 화폐지대가 12파운드였던 표 Ⅱ와 그것이 6파운드였던 표 Ⅰ과 비교하면 C의 화폐지대는 감소되였다. 곡물로 표현된 지대총액 7쿼터는 표 Ⅱ(12쿼터)와 비교하면 감소되였고 또 표 Ⅰ(6쿼터)과 비교하면 증가되였다. 화폐로 표현된 지대총액($10\frac{1}{2}$파운드)은 두 표(18파운드와 36파운드)와 비교하여도 감소되였다.

만약 $2\frac{1}{2}$파운드의 제3차 투자가 토지 B에서 실시된다면 그것은 생산의 량을 변동시켰을것이지만 지대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을것이다. 왜냐하면 순차적투자들은 동일한 토지종류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전제되여있고 또 토지 B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기때문이다.

그런데 제3차 투자가 토지 C에서가 아니라 D에서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표 Ⅳb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쿼터)	지대 (파운드)	초과리윤률
B	1	5	1	6	4	$1\frac{1}{2}$	6	0	0	0
C	1	5	1	6	6	$1\frac{1}{2}$	9	2	3	60%
D	1	$7\frac{1}{2}$	$1\frac{1}{2}$	9	12	$1\frac{1}{2}$	18	6	9	120%
합계	3	$17\frac{1}{2}$	$3\frac{1}{2}$	21	22	—	33	8	12	—

이 경우에는 총생산물 22쿼터는 표 Ⅰ의 그것의 2배보다 큰데 선대자본은 표Ⅰ의 10파운드에 비하여 $17\frac{1}{2}$파운드밖에 안되며 2배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총생산물은 표 Ⅱ의 그것보다 2쿼터만큼 큰데 선대자본은 표 Ⅱ의 선대자본이 더 크며 20파운드이다.

토지 D에서는 표 Ⅰ과 비교하면 곡물지대는 3쿼터로부터

6쿼터로 증대하였는데 화폐지대는 9파운드로 여전히 동일하다. 표 Ⅱ와 비교하면 D의 곡물지대는 여전히 6쿼터이나 화폐지대는 18파운드로부터 9파운드로 감소되였다.

지대총액을 보면 표 Ⅳb의 곡물지대=8쿼터는 표 Ⅰ의 곡물지대=6쿼터보다도 크며 또 표 Ⅳa의 곡물지대=7쿼터보다도 크지만 그러나 표 Ⅱ의 곡물지대=12쿼터보다도 적다. Ⅳb의 화폐지대=12파운드는 표 Ⅳa의 화폐지대=$10\frac{1}{2}$파운드보다는 크고 표 Ⅰ의 화폐지대=18파운드나 표 Ⅱ의 화폐지대=36파운드보다는 적다.

표 Ⅳb의 제 조건하에서 B의 지대가 없어지더라도 지대총액이 표 Ⅰ의 그것과 동등하기 위하여는 6파운드의 초과생산물을 더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새로운 생산가격인 $1\frac{1}{2}$파운드씩의 4쿼터를 더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더 있게 되면 다시 지대총액은 표 Ⅰ의 경우와 같이 18파운드로 된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본의 크기는 그것을 C에 투하하는가, D에 투하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C와 D에 갈라놓는가에 따라서 달라질것이다.

토지 C에서는 5파운드의 자본이 2쿼터의 초과생산물을 가져오기때문에 10파운드의 추가자본은 4쿼터의 추가적초과생산물을 가져올것이다. 토지 D에서는 4쿼터의 추가곡물지대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는것, 여기서 기초로 되여있는 전제하에서는 5파운드의 추가가 있으면 충분할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게 될것이다.

표 IVc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쿼터)	지대 (파운드)	초과리윤률
B	1	5	1	6	4	$1\frac{1}{2}$	6	0	0	0
C	1	15	3	18	18	$1\frac{1}{2}$	27	6	9	60%
D	1	$7\frac{1}{2}$	$1\frac{1}{2}$	9	12	$1\frac{1}{2}$	18	6	9	120%
합계	3	$27\frac{1}{2}$	$5\frac{1}{2}$	33	34	—	51	12	18	—

표 IVd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쿼터)	지대 (파운드)	초과리윤률
B	1	5	1	6	4	$1\frac{1}{2}$	6	0	0	0
C	1	5	1	6	6	$1\frac{1}{2}$	9	2	3	60%
D	1	$12\frac{1}{2}$	$2\frac{1}{2}$	15	20	$1\frac{1}{2}$	30	10	15	120%
합계	3	$22\frac{1}{2}$	$4\frac{1}{2}$	27	30	—	45	12	18	—

화폐지대총액은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에 추가자본이 투하된 표 Ⅱ의 지대총액에 비하여 꼭 절반일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상의 표들을 표 Ⅰ과 비교해보는것이다.

거기서 볼수 있는것은 생산가격은 절반 저하되여 1쿼터당 60실링으로부터 30실링으로 되였는데 화폐지대총액은 여전히 동일하게 18파운드이고 이에 따라 곡물지대는 2배로, 즉 6쿼터로부터 12쿼터로 되였다는것이다. B에서는 지대는 없어졌다. 토지 C에서는 화폐지대가 표 Ⅳc에서는 절반이 증가하였으나 표 Ⅳd에서는 절반이 감소되였다. 토지 D에서는 화폐지대는 표 Ⅳc에서는 여전히 9파운드이며 표 Ⅳd에서는 9파운드로부터 15파운드로 증가하였다. 생산은 10쿼터로부터 표 Ⅳc에서는 34쿼터로 증가하였고 표 Ⅳd에서는 30쿼터로 증가되였다. 리윤은 2파운드로부터 표 Ⅳc에서는 $5\frac{1}{2}$파운드로, 표 Ⅳd에서는 $4\frac{1}{2}$파운드로 제고되였다. 총투자액은 일방의 경우에는 10파운드로부터 $27\frac{1}{2}$파운드로, 타방의 경우에는 10파운드로부터 $22\frac{1}{2}$파운드로, 즉 두 경우에 다 2배이상 증가하였다. 지대률 즉 지대를 선대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률은 표 Ⅳ로부터 표 Ⅳd까지의 모든 표들에서 어느 토지종류에서나 항상 동일한데 이것은 어느 토지종류에 대한 2차의 순차적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그 가정에 이미 포함되여있은것이다. 그러나 표 Ⅰ과 비교하면 지대률은 모든 토지종류의 평균에서도 매개의 토지종류에서도 저하되였다. 지대률은 표

I 에서는 평균 180%였으나 표 IVc에서는 $\frac{18}{27\frac{1}{2}} \times 100 = 65\frac{5}{11}$%이고 또 표 IVd에서는 $\frac{18}{22\frac{1}{2}} \times 100 = 80$%이다. 1에이커당의 평균 화폐지대는 제고되였다. 화폐지대의 평균은 이전에 표 I 에서는 4에이커 전체에 있어서 1에이커당 $4\frac{1}{2}$파운드였는데 이제는 표 IVc와 표 IVd에서는 3에이커에 대하여 1에이커당 6파운드이다.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에서의 화폐지대의 평균은 이전에는 1에이커당 6파운드였는데 이제는 9파운드이다. 그리하여 1에이커당 지대의 화폐가치는 제고되여 이제는 이전의 2배의 곡물생산물을 표시한다. 그러나 12쿼터의 곡물지대는 이제는 총생산물 34쿼터 및 30쿼터의 절반 이하인데 표 I 에서는 곡물지대 6쿼터는 총생산물 10쿼터의 $\frac{3}{5}$을 차지한다. 즉 지대는 총생산물의 일부분으로서 고찰하면 감소되였고 투하자본에 대하여 계산하더라도 역시 감소되였지만 지대의 1에이커당으로 계산한 화폐가치는 증가되였고 또 그 생산물가치는 더욱 크게 증가되였다. 만약 표 IVd에서의 토지 D를 들어보면 이 경우에는 생산비는 15파운드이고 그중 투하자본은 $12\frac{1}{2}$파운드이다. 화폐지대는 15파운드이다. 표 I 에서는 동일한 토지 D에서의 생산비는 3파운드, 투하자본은 $2\frac{1}{2}$파운드, 화폐지대는 9파운드였고 따라서 화폐지대는 생산비의 3배, 자본의 약 4배였다. 표 IVd에서는 D에서 15파운드의 화폐지대는 생산비와 꼭 같으며 자본보다 다만 $\frac{1}{5}$이 클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에이커당의 화폐지대는 $\frac{2}{3}$가 더 크며 9파운드가 아니라 15파운드이다. 표 Ⅰ에서는 3쿼터의 곡물지대는 4쿼터인 총생산물의 $\frac{3}{4}$이다. 표 Ⅳd에서는 곡물지대는 10쿼터로서 토지 D의 1에이커의 총생산물(20쿼터)의 절반이다. 이것은 지대가 총수익중의 보다 적은 부분을 이루고있더라도, 또 선대자본에 대한 비률에서는 감소된다 하더라도 1에이커당 지대의 화폐가치 및 곡물가치는 증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표 Ⅰ에서는 총생산물의 가치는 30파운드이고 지대는 18파운드이며 지대는 총생산물가치의 절반보다 크다. 표 Ⅳd의 총생산물의 가치는 45파운드이고 그중 18파운드가 지대이며 절반보다 적다.

그러면 가격이 1쿼터당 $1\frac{1}{2}$파운드 즉 50%가 저락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쟁하는 토지가 4에이커로부터 3에이커로 감소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폐지대총액은 변함이 없고 곡물지대는 2배로 되는가, 또 1에이커당으로 계산한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는 증대하는가 하는 그 원인은 보다 큰 쿼터수의 초과생산물이 생산된다는데 있다. 곡물가격은 50%가 저락되는데 초과생산물은 100%가 증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조건하에서는 총생산이 3배로 증가되지 않으면 안되며 보다 좋은 토지에서의 투자가 2배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투자가 어떠한 비률로 증가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추가적투자가 보다 좋은 토지와 가장 좋은 토지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것은 언제나 각 토지종류에서의 자본

의 생산성이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대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생산가격이 저락하는 정도가 보다 적다면 동일한 화폐지대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본은 보다 적을것이다. 만약 토지 A를 경작지밖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급량—이것은 토지 A의 1에이커당 생산물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아니라 또한 토지 A가 총경지면적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하여서도 좌우된다—보다 커진다면 따라서 또 토지 A보다도 좋은 토지에서의 추가자본의 필요량도 보다 크다면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는 한 화폐지대 및 곡물지대는 토지 B에서는 량자가 다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증대할것이다.

만약 토지 A에서 없어지는 자본이 5파운드라면 이 경우를 위하여 비교하여야 할 두 표는 II와 IVd일것이다. 총생산물은 20쿼터로부터 30쿼터로 증가될것이다. 화폐지대는 36파운드이던것이 그 절반, 즉 18파운드밖에 안될것이다. 곡물지대는 여전히 동일하며 12쿼터일것이다.

만약 토지 D에서 44쿼터=66파운드의 생산물을 $27\frac{1}{2}$파운드의 자본으로써 생산할수 있다면—$2\frac{1}{2}$파운드의 자본에 대하여 4쿼터라는 D에서의 이전대로의 률에 따라—그 경우에는 총지대는 다시 표 II의 수준에 이를것이며 그 표는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토지종류	자본 (파운드)	생산물 (쿼터)	곡물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B	5	4	0	0
C	5	6	2	3
D	$27\frac{1}{2}$	44	22	33
합계	$37\frac{1}{2}$	54	24	36

총생산은 표 Ⅱ의 20쿼터에 대하여 54쿼터로 될것이며 화폐지대는 36파운드일것이다. 그러나 총자본은 표 Ⅱ에서는 20파운드였지만 여기서는 $37\frac{1}{2}$파운드로 될것이다. 선대총자본은 약 2배로 되며 생산은 약 3배로 될것이다. 곡물지대는 2배로 되는데 화폐지대는 여전히 동일할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지대를 가져오는 보다 좋은 토지종류 즉 A보다도 좋은 모든 토지종류들에 추가적화폐자본이 투하된 결과로 가격이 저락한다면 총자본은 생산 및 곡물지대와 동일한 비률로는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가격의 저하에 의하여 생기는 화폐지대의 감소는 곡물지대의 증대에 의하여 다시 보상될수 있다. 동일한 법칙은 선대자본이 토지 D보다도 C에 즉 지대를 보다 많이 가져오는 토지보다도 지대를 보다 적게 가져오는 토지에 더 많이 사용되는데 비례하여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도 나타난다.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화폐지대가 여전히 동일하든가 또는 증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량의 추가적초과생산

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은 초과생산물을 가져오는 토지의 비옥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적을것이다. 만약 토지 B와 C의 차이, C와 D간의 차이가 더욱 크다면 필요한 추가자본은 보다 적을것이다. 그 일정한 비률은 다음과 같은것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1) 가격이 저락하는 비률에 의하여, 따라서 이제는 지대를 제공하지 않는 토지인 B와 이전에 지대를 제공하지 않는 토지였던 A간의 차이에 의하여. 2) B이상의 보다 좋은 토지종류들간의 차이의 비률에 의하여. 3) 새로 투하되는 추가자본의 량에 의하여. 4)각이한 질의 토지들에 대한 추가자본의 분배에 의하여.

사실상 이 법칙이 표시하고있는것은 이미 첫째 경우에 전개된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즉 생산가격이 주어져있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어떠하든간에 추가적 투자의 결과로서 지대는 증대될수 있다는것이다. 왜냐하면 A가 배제되였기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차액지대 I을 얻게 되는데 토지 B가 이제는 새로운 최렬등지로 되고 1쿼터당 $1\frac{1}{2}$ 파운드가 새로운 생산가격으로 되기때문이다. 이것은 표 II에 말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표 IV에 대해서도 말할수 있다. 법칙은 동일한데 다만 토지 A 대신에 B가, 3파운드라는 생산가격 대신에 $1\frac{1}{2}$ 파운드라는 생산가격이 출발점으로서 취해진것이다.

여기에서 이 모든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중요할뿐이다. 즉 토지 A로부터 자본을 끌어내고 이 토지가 없이도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만한 추가자본이 필요하였다면 이에 수반하여 1에이커당의 지대가 모든 토지에 있어서

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약간의 토지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경작되는 토지들의 평균에서는 변하지 않거나 증대되거나 또는 감소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미 본바와 같이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는 균등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곡물지대가 아직도 경제학에서 역할을 놀고있는것은 전통에 불과하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례컨대 어떤 공장주는 자기의 5파운드의 리윤으로써 자기 자신의 면사를 이전에 10파운드의 리윤으로 구매할수 있었던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 구매할수 있다는것을 지적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토지소유자 제씨가 동시에 제조공장이나 사탕제조소나 술양조장 등등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이라면 그들은 화폐지대가 감소되더라도 그들 자신의 원료의 생산자로서 여전히 큰 리익을 얻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34)

II. 추가적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고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가격이 저락될수 있는것은 다만 A보다도 좋은 토지종류들에 대한 추가적투자로 말미암아 A의 생산물이 여분으로 되며 그

(34) 이상의 IVa로부터 IVd까지의 표들에는 일관된 계산상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산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으로 하여 이러한 표들로부터 전개된 리론적관점에는 영향은 없었지만 그러나 1에이커당 생산에 관하여는 부분적으로 아주 기괴한 수량관계를 끌어들이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도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것은 아니다. 모든 모형지도다 종단면지도에 있어서는 수직선에 대하여는 수평선에 대하여서보다도 현저히 큰 척도가 사용되는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의 농업적심정이 손상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에이커수에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떠한 수를 승하면 된다. 표 I에서도 1에이커당 1, 2, 3, 4쿼터를 10, 12, 14, 16부쉘(8부쉘=1쿼터)로 바꾸어놓을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수들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표들의 수자도 사실상 있을수 있는 경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본증가에 대한 지대증가의 비률이라는 결과는 완전히 동일하다는것이 발견될것이다. 편집자가 다음 장에 첨가한 표들에서는 그렇게 되고있다.—F. 엥겔스

때문에 A로부터 자본이 회수되든가 또는 A가 다른 생산물의 생산에 돌려지든가 하는 경우뿐이라는 한에서는 이것으로 하여 새로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미 우에서 남김없이 연구되였다. 이 경우에는 1에이커당의 곡물지대 및 화폐지대는 증대될수도 있고 감소될수도 있고 또는 이전과 동일할수도 있다는것은 이미 명백히 보여주었다.

비교의 편리를 위하여 우선 표 I을 다시 들자.

표 I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1쿼터당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곡물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초과리윤률
A	1	$2\frac{1}{2}$	$\frac{1}{2}$	3	1	0	0	0
B	1	$2\frac{1}{2}$	$\frac{1}{2}$	$1\frac{1}{2}$	2	1	3	120%
C	1	$2\frac{1}{2}$	$\frac{1}{2}$	1	3	2	6	240%
D	1	$2\frac{1}{2}$	$\frac{1}{2}$	$\frac{3}{4}$	4	3	9	360%
합계	4	10	—	—	10	6	18	평균 180%

이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 B, C, D에서 제공되는 16쿼터라는 수자가 A를 경작권에서 구축하는데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표 III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전화된다.

표 V

토지종류	에이커	투자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곡물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초과리윤률
B	1	$2\frac{1}{2}+2\frac{1}{2}$	1	$2+1\frac{1}{2}=3\frac{1}{2}$	$1\frac{5}{7}$	6	0	0	0
C	1	$2\frac{1}{2}+2\frac{1}{2}$	1	3+2=5	$1\frac{5}{7}$	$8\frac{4}{7}$	$1\frac{1}{2}$	$2\frac{4}{7}$	$51\frac{3}{7}$%
D	1	$2\frac{1}{2}+2\frac{1}{2}$	1	$4+3\frac{1}{2}=7\frac{1}{2}$	$1\frac{5}{7}$	$12\frac{6}{7}$	4	$6\frac{6}{7}$	$137\frac{1}{7}$%
합계	3	15	—	16	—	$27\frac{3}{7}$	$5\frac{1}{2}$	$9\frac{3}{7}$	평균 $94\frac{2}{7}$%①

이 경우에는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그 저하의 정도가 토지종류에 따라 각이하며 규제적생산가격은 3파운드로부터 $1\frac{5}{7}$파운드로 저락되였다. 투자는 절반 증가되여 10파운드로부터 15파운드로 되였다. 화폐지대는 약 2분의 1로 감소되여 18파운드로부터 $9\frac{3}{7}$파운드로 되였으나 곡물지대는 $\frac{1}{12}$밖에 감소되지 않아 6쿼터로부터 $5\frac{1}{2}$쿼터로 되였다. 총생산물은 10쿼터로부터 16쿼터로, 즉 60%로 증가되였다. 곡물지대는 총생산물의 $\frac{1}{3}$보다 좀더 많다. 선대자본과 화폐

① 엥겔스는 이 표와 다음의 각 표들에서 다만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의 평균수률 계산하고있다. B에서부터 D까지의 평균수는 $62\frac{6}{7}$%이다.—편집자

지대와의 비례는 $15:9\frac{3}{7}$인데 이전의 비례는 10:18이였다.

Ⅲ. 추가적자본의 생산성이 제고되는 경우

이 경우가 이 장의 처음에 든 변화 Ⅰ 즉 생산성이 불변이고 생산가격이 저하되는 경우와 구별되는 점은 토지 A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추가적생산물이 필요된다면 그것은 여기서는 보다 급속히 진행된다는것뿐이다.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제고되는 경우에도 그 작용은 투자가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서 각이할수 있다. 이 각이한 작용이 차이를 균등화하는가 또는 심화하는가에 따라서 보다 좋은 토지들의 차액지대 따라서 지대총액은 감소되든가 증대되든가 할것인데 그것은 이미 차액지대 Ⅰ의 경우에 본바와 같다. 이밖에 모든것은 A와 함께 배제되는 토지의 너비와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고 또 생산성이 제고되는 경우에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추가생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선대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를 이 차액리윤이 어떻게 차액지대로 전화되는가 하는 연구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점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생산가격이 여전히 동일한 첫째 경우에는 추가자본이 토지 A에 투하되여도 차액지대 그 자체에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그 생산물의 가격은 여전히 동일하고 또 계속 시장을 규제하기때문이다.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데 생산가격이 저락하는 둘째 경우

의 변화 Ⅰ에서는 토지 A는 필연적으로 떨어져나가며 변화 Ⅱ(생산성이 저하될 때 생산가격이 저락하는 경우)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A에 대한 추가자본은 생산가격을 높이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제고되기때문에 생산가격이 저락하는 둘째 경우의 변화 Ⅲ에서는 이 추가자본은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보다 좋은 토지종류들에 투하되는것과 마찬가지로 토지 A에 투하될수 있다.

토지 A에 투하된 $2\frac{1}{2}$파운드의 추가자본이 1쿼터가 아니고 $1\frac{1}{5}$쿼터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표 Ⅵ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초과리윤률
								(쿼터)	(파운드)	
A	1	$2\frac{1}{2}+2\frac{1}{2}=5$	1	6	$1+1\frac{1}{5}=2\frac{1}{5}$	$2\frac{8}{11}$	6	0	0	0
B	1	$2\frac{1}{2}+2\frac{1}{2}=5$	1	6	$2+2\frac{2}{5}=4\frac{2}{5}$	$2\frac{8}{11}$	12	$2\frac{1}{5}$	6	120%
C	1	$2\frac{1}{2}+2\frac{1}{2}=5$	1	6	$3+3\frac{3}{5}=6\frac{3}{5}$	$2\frac{8}{11}$	18	$4\frac{2}{5}$	12	240%
D	1	$2\frac{1}{2}+2\frac{1}{2}=5$	1	6	$4+4\frac{4}{5}=8\frac{4}{5}$	$2\frac{8}{11}$	24	$6\frac{3}{5}$	18	360%
합계	4	20	4	24	22	—	60	$13\frac{1}{5}$	36	240%

이 표는 기본표 Ⅰ과 비교하는외에 또한 2배의 투자가 투자에 비례하는 동일한 생산성과 결부되여있는 표 Ⅱ와도 비교하여야 한다.

전제에 의하면 규제적생산가격은 저락한다. 만약 그것이 불변이여서 여전히 3파운드라면 이전에 투자가 $2\frac{1}{2}$파운드에 불과하던 조건하에서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던 최렬등지 A가 이제는 보다 나쁜 토지가 경작에 인입되지 않고도 지대를 가져올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것은 토지 A에서의 생산성이 제고된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제고된것은 다만 자본의 일부분에 대하여서만이고 최초의 자본에 대하여서가 아니다. 제1차의 3파운드의 생산비는 1쿼터를 가져오고 제2차의 3파운드는 $1\frac{1}{5}$쿼터를 가져온다. 그러나 $2\frac{1}{5}$쿼터의 총생산물이 이제는 그 평균가격으로 판매된다. 추가적투자에 수반하여 생산성이 제고되기때문에 이 투자에는 어떤 개량이 포함되여있다. 이 개량은 일반적으로 1에이커당 보다 많은 자본이(보다 많은 비료, 보다 많은 기계작업 등등이) 사용된다는것일수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보다 생산적인 투자의 실시가 이 추가자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것일수도 있다. 두 경우에 다 1에이커당 5파운드의 투자로써 $2\frac{1}{5}$쿼터의 생산물을 얻는데 그 절반인 $2\frac{1}{2}$파운드의 투자로써는 1쿼터의 생산물밖에 얻지 못한다. 시장의 일시적인 사정들을 무시하면 A등급의 토지의 상당한 면적이 계속 1에이커당 다만 $2\frac{1}{2}$파운드의 자본으로써 경작되는 조건하에서만 토지 A의 생산물은 새로운 평균가격이 아니라 보다

높은 생산가격으로 계속 판매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1에이커당 5파운드의 자본이라는 새로운 비률이 일반적인것으로 되고 따라서 경작의 개량이 일반적인것으로 되면 즉시로 규제적생산가격은 $2\frac{8}{11}$파운드로 저락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두 자본부분간의 차이는 소멸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약 1에이커당 다만 $2\frac{1}{2}$파운드의 자본으로써 경작되는 토지 A는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새로운 생산조건들에 상응하지 않게 경작될것이다. 이것은 벌써 동일한 1에이커에 투하된 각이한 자본부분들의 수익간의 차이가 아니라 1에이커당 충분한 총투자와 불충분한 총투자간의 차이일것이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것은 **첫째로**, 다수의 차지농업가들(다수의 차지농업가들이여야 하는것은 소수의 차지농업가들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산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을수 없을 따름이기때문이다)의 수중에 있는 불충분한 자본은 바로 하강순서에서의 토지종류의 분화 자체와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는것이다. 보다 나쁜 토지에서의 보다 나쁜 경작방식은 보다 좋은 토지에서의 지대를 증가시킨다. 그것은 지어는 질적으로 동등하게 나빠도 보다 좋게 경작되는 토지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얻을수 없는 지대를 가져올수 있다. **둘째로**, 알수 있는것은 차액지대가 동일한 총토지면적에 대한 순차적투자로부터 생기는 한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평균적크기로 전화된다는것이다. 이 평균적크기에서는 이미 각이한 투자들의 작용은 이제는 인식될수 없고 구별될수 없는것으로 되고 따라서 가장 나쁜 토지에서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으며 그러한 작용은 1) 례컨대 토지 A의 1에이커당 총수확의 평균가격을

새로운 규제적가격으로 만들며 그리고 2) 새로운 제 조건하에서 토지의 충분한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1에이커당의 자본총량의 변화로서 나타나며 이 자본총량중에는 개개의 순차적 투자도 그것들 각자의 작용들도 융합되여 구별될수 없게 되여있는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좋은 종류의 토지들의 개별적차액지대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차액지대는 어느 경우에나 그 매개 토지종류의 평균생산물을, 증가되여 현재 표준적인것으로 된 투자로써 가장 나쁜 토지에서 얻는 생산물과 비교한 그 차액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토지는 투자가 없이는 생산물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순한 차액지대, 즉 차액지대 I의 경우에도 만약 생산가격을 규제하는 토지 A의 1에이커는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이만한 량의 생산물을 준다고 말하고 또 보다 좋은 토지종류들인 B, C, D는 이만한 량의 차액생산물을 주고 따라서 이 규제적 가격하에서는 이만한 액의 화폐지대를 준다고 말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주어진 생산조건하에서 표준적으로 간주되는 일정한 자본이 사용된다는것이 전제되고있다. 그것은 바로 공업에서도 상품을 그 생산가격으로 생산할수 있기 위하여는 매개 사업부문에 대하여 일정한 최소한도의 자본이 필요한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최소한도는 동일한 토지에서 개량들과 결부된 순차적 투자가 실시되는데 의하여 변화된다 하여도 이 변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것이다. 례컨대 토지 A의 일정한 에이커수가 이 추가적경영자본을 얻지 않는 동안에는 생산가격이 변하지 않기때문에 토지 A중 보다 훌륭하게 경작되는 에이커들에 있어서는 지대가 산생될것이며 보다 좋은 토지종류들인 B, C, D의 모든 지대는 높아진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방법이 보급

되여 그것이 표준적인것으로 되면 생산가격은 저락한다. 보다 좋은 토지들의 지대는 다시 저하되며 토지 A중 이제는 평균적인것으로 되여있는 경영자본을 가지고있지 않은 부분은 생산물을 그 개별적생산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따라서 평균리윤보다도 낮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것은 생산가격이 저락되는 경우에도, 지어는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일어나다. 즉 그러한 경우에도 투자가 증가된 결과 필요한 총생산물이 보다 좋은 토지종류들에 의하여 제공되고 따라서 레컨대 토지 A의 경영자본이 철수되며 따라서 A가 이 일정한 생산물, 레컨대 밀의 생산에서 경쟁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 상술한것과 같은것이 발생한다. 새로운 규제적인 보다 좋은 토지인 B에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자본량이 이제는 표준적인것으로 인정되게 된다. 그리고 토지들의 각이한 비옥도의 차이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1에이커당 자본의 이 새로운 표준량이 사용된다는 것이 가정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평균적인 투자, 레컨대 영국에서는 1848년 이전에는 1에이커당 8파운드, 그 이후에는 12파운드라는 금액이 차지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표준을 이룬다는것은 명백하다. 이보다 많이 지출하는 차지농업가에 있어서 초과리윤은 계약기간중에는 지대로 전화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만기가 된후 이러한 전화가 일어나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동일한 특별선대를 할수 있는 차지농업가들간의 경쟁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있는것은 동등한 투자에 의하여서도 또는 지어 보다 적은 투자에 의하여서도 생산물의 증가를 계속 보장하게 하는 항구적인 토지개량인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량은 자본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자연적질의

차이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작용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차액지대 Ⅱ에서는, 차액지대 Ⅰ 그 자체에서는 전개되지 않는 한 계기가 고찰되는것이다. 왜냐하면 차액지대 Ⅰ은 1에이커당의 표준적투자가 어떻게 변동하여도 그것에 관계없이 존속할수 있기때문이다. 이 계기는 한편으로는 규제적토지 A에서의 개별적인 투자들의 결과의 차이가 말살되는것인데 이러한 투자의 생산물은 이제는 단순히 1에이커당의 표준적인 평균생산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에이커당 투자의 표준적최저한도 또는 평균적크기의 변화인데 이 변화가 토지의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초과리윤이 지대라는 형태로 전화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그리고 또 표 Ⅵ을 표 Ⅰ이나 표 Ⅱ와 비교하여볼 때 표 Ⅵ이 보여주는것은 곡물지대는 표 Ⅰ에 비하여 2배이상, 표 Ⅱ에 비하여 $1\frac{1}{5}$쿼터 증가되였으며 다른 한편 화폐지대는 표 Ⅰ에 비하여 2배로 되였으며 표 Ⅱ에 비하여 변화하지 않았다는것이다. 만약(기타의 전제들은 동등하다고 하고) 자본추가가 보다 많이 보다 좋은 토지들에 돌려지든가 또는 다른 한편으로 토지 A에 대한 자본추가의 작용이 보다 적어서 토지 A의 1쿼터당의 규제적인 평균가격이 보다 높아진다면 화폐지대는 현저히 증대될것이다.

만약 자본추가에 의한 비옥도의 상승이 각 토지종류들에서 각이하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그 각 토지종류들의 차액지대의 변화를 일으킬것이다.

여하간 이미 론증된바와 같이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제고되였기때문에 생산가격이 저하되는 경우에는—즉 이 생산성

이 선대자본보다 큰 비률로 증대된다면—1에이커당의 지대는 례컨대 투자가 2배로 되면 2배로 될뿐만아니라 2배보다 더 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만약 토지 A에서의 생산성이 보다 급속히 증대되였기때문에 생산가격이 보다 낮게 저하된다면 감소될수도 있다.

가령 추가적투자가 례컨대 토지 B나 C에서는 A에서와 동일한 비률로는 생산성이 제고되지 않고 따라서 B나 C에서는 차액의 비률이 감소되여 생산물의 증대가 가격의 저하를 상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표 Ⅱ의 경우에 비하여 지대는 D에서는 증가되고 B나 C에서는 감소될것이다.

표 Ⅵa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물 에이커당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곡물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A	1	$2\frac{1}{2}+2\frac{1}{2}=5$	1	1+3=4	$1\frac{1}{2}$	6	0	0
B	1	$2\frac{1}{2}+2\frac{1}{2}=5$	1	$2+2\frac{1}{2}=4\frac{1}{2}$	$1\frac{1}{2}$	$6\frac{3}{4}$	$\frac{1}{2}$	$\frac{3}{4}$
C	1	$2\frac{1}{2}+2\frac{1}{2}=5$	1	3+5=8	$1\frac{1}{2}$	12	4	6
D	1	$2\frac{1}{2}+2\frac{1}{2}=5$	1	4+12=16	$1\frac{1}{2}$	24	12	18
합계	4	20	—	$32\frac{1}{2}$	—	—	$16\frac{1}{2}$	$24\frac{3}{4}$

마지막으로 만약 비옥도가 동일한 비률로 높아지는 경우에 보다 좋은 토지에서는 토지 A에서보다 더 많은 추가자본이 투하된다면 또는 보다 좋은 토지들에는 추가적투자가 보다 높은 생산성으로써 작용한다면 화폐지대는 증대될것이다.

두 경우에 다 차액은 증대될것이다.

만약 추가적투자에 의한 개량이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 감소시키고 토지 B나 C에 대하여 작용하는것보다 토지 A에 대하여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화폐지대는 감소된다. 가장 좋은 토지의 생산성의 제고가 적으면 적을수록 화폐지대는 더욱 더 감소된다. 곡물지대가 증대되는가 감소되는가 또는 여전히 동일한가 하는것은 미친 영향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데 달린다.

만약 여러가지 토지종류의 추가적비옥도의 차이의 비률이 여전히 동일하고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토지 A에서보다도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들에서 더 많은 자본이 추가되고 또 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에서보다도 보다 높은 지대의 토지에 더 많은 자본이 추가되는 경우나 또는 동등한 추가자본하에서 비옥도가 A에서보다도 좋은 토지와 가장 좋은 토지에서 더 많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화폐지대가 오르고 곡물지대도 오르는데 그것도 이 비옥도의 상승이 보다 낮은 등급의 토지들에서보다도 보다 높은 등급의 토지들에서 큰데 비례하여 오르는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증대가 자본추가의 결과이고 투자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비옥도가 단순히 제고된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지대는 상대적으로 증대된다. 이것은 절대적관점인데 이 절대적관점은 이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 경우에도 지대 및 에이커당 증가된 지대(차액재대 Ⅰ의 경우와 같이 총경작면적에 대하여는 평균지대총액의 높이)는 토지에 대한 투자의 증가의 결과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고 이 증가된 투자가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또는 저락하는 경우에 생산성의 불변으로써 기능하는가 또는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또는 저락하는 경우에 생산성의 감소로써 기능하는가 또는 가격이 저락하는 경우에 생산성의 증대로써 기능하는가 하는것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추가적자본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거나 감소 또는 증대되여도 가격은 변하지 않으며 또 생산성은 변하지 않거나 감소 또는 증대되여도 가격은 저락한다는것인데 이 가정은 결국 다음과 같은것에 귀착되기때문이다. 즉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또는 저락하는 경우에 추가자본의 생산성은 변하지 않으며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또는 저락하는 경우에 생산성은 감소되며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또는 저락하는 경우에 생산성은 제고된다는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대는 변하지 않을수도 있고 감소될수도 있지만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자본의 추가사용이 비옥도의 상승의 조건이 아니라면 지대는 더욱더 심히 감소될것이다. 그 경우에 비록 지대는 절대적으로 감소되였지만 자본추가는 언제나 지대의 상대적높이의 원인인것이다.

제 43 장

차액지대 Ⅱ. 제3의 경우— 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결론

{생산가격의 상승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가장 나쁜 질의 토지의 생산성이 저하되는것을 전제로 한다. 토지 A에 투하된 $2\frac{1}{2}$파운드가 1쿼터 이하를 생산하는 경우, 또는 5파운드가 2쿼터 이하를 생산하는 경우, 또는 토지 A보다도 더 나쁜 질의 토지가 경작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규제적인것으로 가정되는 생산가격은 1쿼터당 3파운드이상으로 상승할수 있다.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든가 또는 상승할 때에는 생산가격의 상승이 가능한것은 오직 $2\frac{1}{2}$파운드의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만일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자주 있다. 례컨대 토지를 얕게 갈 경우에 상층의 비옥한 토양이 낡은 경작방법에 의하여 메말라져 수확의 감소가 생기며 이어서 보다 깊이 가는데 의하여 파올린 하층의 토양이 합리적인 처리에 의하여 다시 이전보다 높은 수확을 올리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서의 문제가 아니다. $2\frac{1}{2}$파운드의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의 저하는 보다 좋은 토지종류들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도 동일한 사태를 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차액지대 Ⅰ의 감소를 일으키는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찰하는것은 차액지대 Ⅱ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차액지대 Ⅱ가 이미 존재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으며 또 사실상 차액지대 Ⅰ의 변형이 차액지대 Ⅱ에 미치는 반작용을 표시하고있기때문에 그 경우의 일례를 다음에 든다.

표 Ⅶ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투하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곡물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지대률
A	1	$2\frac{1}{2}+2\frac{1}{2}$	1	6	$\frac{1}{2}+1\frac{1}{4}=1\frac{3}{4}$	$3\frac{3}{7}$	6	0	0	0
B	1	$2\frac{1}{2}+2\frac{1}{2}$	1	6	$1+2\frac{1}{2}=3\frac{1}{2}$	$3\frac{3}{7}$	12	$1\frac{3}{4}$	6	120%
C	1	$2\frac{1}{2}+2\frac{1}{2}$	1	6	$1\frac{1}{2}+3\frac{3}{4}=5\frac{1}{4}$	$3\frac{3}{7}$	18	$3\frac{1}{2}$	12	240%
D	1	$2\frac{1}{2}+2\frac{1}{2}$	1	6	$2+5=7$	$3\frac{3}{7}$	24	$5\frac{1}{4}$	18	360%
	—	20	—	—	$17\frac{1}{2}$	—	60	$10\frac{1}{2}$	36	240%[327]

화폐지대도 화폐수익도 표 Ⅱ의 경우와 동일하다. 규제적생산가격의 상승은 바로 생산물의 량에서 상실된것을 보상한다. 이 량자은 서로 반비례하여 변동하기때문에 량자의 적이 변하지 않는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상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2차 투자의 생산력은 제1차 투자의 최초의 생산성보다 높다고 가정되였다.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최초의 생산성과 동일할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태는 의연히 동일한것이며 그것은 다음의 표에 표시된것과 같다.

표 Ⅷ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투하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초과리윤률
								곡물 (쿼터)	화폐 (파운드)	
A	1	$2\frac{1}{2}+2\frac{1}{2}=5$	1	6	$\frac{1}{2}+1=1\frac{1}{2}$	4	6	0	0	0
B	1	$2\frac{1}{2}+2\frac{1}{2}=5$	1	6	1+2=3	4	12	$1\frac{1}{2}$	6	120%
C	1	$2\frac{1}{2}+2\frac{1}{2}=5$	1	6	$1\frac{1}{2}+3=4\frac{1}{2}$	4	18	3	12	240%
D	1	$2\frac{1}{2}+2\frac{1}{2}=5$	1	6	2+4=6	4	24	$4\frac{1}{2}$	18	360%
	—	20	—	—	15	—	60	9	36	240%[327]

이 경우에도 생산가격이 동일한 비률로 상승한다는것은 생산성의 저하가 수익에 있어서도, 화폐지대에 있어서도 완전히 보상되는것의 조건으로 된다.

제3의 경우가 순수하게 나타나는것은 제1의 경우에도, 제2의 경우에도 언제나 가정되여있는것처럼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데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뿐이다. 이 경우에는 차액지대 Ⅰ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차

액지대 Ⅱ로부터 생기는 부분에 변동이 일어날뿐이다. 두개의 례를 들어보자. 첫째 례에서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frac{1}{2}$로 저하되고 둘째 례에서는 그것이 $\frac{1}{4}$로 저하된다고 하자.

표 Ⅸ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투하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지대률
								곡물 (쿼터)	화폐 (파운드)	
A	1	$2\frac{1}{2}+2\frac{1}{2}=5$	1	6	$1+\frac{1}{2}=1\frac{1}{2}$	4	6	0	0	0
B	1	$2\frac{1}{2}+2\frac{1}{2}=5$	1	6	2+1=3	4	12	$1\frac{1}{2}$	6	120%
C	1	$2\frac{1}{2}+2\frac{1}{2}=5$	1	6	$3+1\frac{1}{2}=4\frac{1}{2}$	4	18	3	12	240%
D	1	$2\frac{1}{2}+2\frac{1}{2}=5$	1	6	4+2=6	4	24	$4\frac{1}{2}$	18	360%
	—	20	—	—	15	—	60	9	36	240%[327]

표 Ⅸ는 표 Ⅷ과 동일하나 다만 생산성의 저하가 표 Ⅷ에서는 제1차 투자에서 일어나고 표 Ⅸ에서는 제2차 투자에서 일어나고있을뿐이다.

표 X

토지종류	에이커	투자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지대률
								곡물 (쿼터)	화폐 (파운드)	
A	1	$2\frac{1}{2}+2\frac{1}{2}=5$	1	6	$1+\frac{1}{4}=1\frac{1}{4}$	$4\frac{4}{5}$	6	0	0	0
B	1	$2\frac{1}{2}+2\frac{1}{2}=5$	1	6	$2+\frac{1}{2}=2\frac{1}{2}$	$4\frac{4}{5}$	12	$1\frac{1}{4}$	6	120%
C	1	$2\frac{1}{2}+2\frac{1}{2}=5$	1	6	$3+\frac{3}{4}=3\frac{3}{4}$	$4\frac{4}{5}$	18	$2\frac{1}{2}$	12	240%
D	1	$2\frac{1}{2}+2\frac{1}{2}=5$	1	6	4+1=5	$4\frac{4}{5}$	24	$3\frac{3}{4}$	18	360%
	—	20	—	24	$12\frac{1}{2}$	—	60	$7\frac{1}{2}$	36	240%[327]

이 표에서도 총수익, 화폐지대총액, 지대률은 표 Ⅱ, Ⅶ, Ⅷ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것은 여기서도 생산물과 판매가격과는 반비례로 변동하였으나 투자는 의연히 동일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가격이 상승할 때 있을수 있는 다른 한 경우 즉 종래로 경작할만한 가치가 없던 보다 나쁜 토지가 이제 새로 경작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같은 토지가 경쟁에 참가한다고 가정하고 이 토지를 a로 표시하기로 하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던 토지 A가 지대를 가져오게 될것이며 우에서 든 표 Ⅶ, Ⅷ, X은 각각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할것이다.

표 VIIa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쿼터)	지대 (파운드)	증가
a	1	5	1	6	$1\frac{1}{2}$	4	6	0	0	0
A	1	$2\frac{1}{2}+2\frac{1}{2}$	1	6	$\frac{1}{2}+1\frac{1}{4}=1\frac{3}{4}$	4	7	$\frac{1}{4}$	1	1
B	1	$2\frac{1}{2}+2\frac{1}{2}$	1	6	$1+2\frac{1}{2}=3\frac{1}{2}$	4	14	2	8	1+7
C	1	$2\frac{1}{2}+2\frac{1}{2}$	1	6	$1\frac{1}{2}+3\frac{3}{4}=5\frac{1}{4}$	4	21	$3\frac{3}{4}$	15	1+2×7
D	1	$2\frac{1}{2}+2\frac{1}{2}$	1	6	2+5=7	4	28	$5\frac{1}{2}$	22	1+3×7
	—	—	—	30	19	—	76	$11\frac{1}{2}$	46	—

표 VIIIa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쿼터)	지대 (파운드)	증가
a	1	5	1	6	$1\frac{1}{4}$	$4\frac{4}{5}$	6	0	0	0
A	1	$2\frac{1}{2}+2\frac{1}{2}$	1	6	$\frac{1}{2}+1=1\frac{1}{2}$	$4\frac{4}{5}$	$7\frac{1}{5}$	$\frac{1}{4}$	$1\frac{1}{5}$	$1\frac{1}{5}$
B	1	$2\frac{1}{2}+2\frac{1}{2}$	1	6	1+2=3	$4\frac{4}{5}$	$14\frac{2}{5}$	$1\frac{3}{4}$	$8\frac{2}{5}$	$1\frac{1}{5}+7\frac{1}{5}$
C	1	$2\frac{1}{2}+2\frac{1}{2}$	1	6	$1\frac{1}{2}+3=4\frac{1}{2}$	$4\frac{4}{5}$	$21\frac{3}{5}$	$3\frac{1}{4}$	$15\frac{3}{5}$	$1\frac{1}{5}+2\times7\frac{1}{5}$
D	1	$2\frac{1}{2}+2\frac{1}{2}$	1	6	2+4=6	$4\frac{4}{5}$	$28\frac{4}{5}$	$4\frac{3}{4}$	$22\frac{4}{5}$	$1\frac{1}{5}+3\times7\frac{1}{5}$
	5	—	—	30	$16\frac{1}{4}$	—	78	10	48	—

표 Xa

토지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 (쿼터)	지대 (파운드)	증가
a	1	5	1	6	$1\frac{1}{8}$	$5\frac{1}{3}$	6	0	0	0
A	1	$2\frac{1}{2}+2\frac{1}{2}$	1	6	$1+\frac{1}{4}=1\frac{1}{4}$	$5\frac{1}{3}$	$6\frac{2}{3}$	$\frac{1}{8}$	$\frac{2}{3}$	$\frac{2}{3}$
B	1	$2\frac{1}{2}+2\frac{1}{2}$	1	6	$2+\frac{1}{2}=2\frac{1}{2}$	$5\frac{1}{3}$	$13\frac{1}{3}$	$1\frac{3}{8}$	$7\frac{1}{3}$	$\frac{2}{3}+6\frac{2}{3}$
C	1	$2\frac{1}{2}+2\frac{1}{2}$	1	6	$3+\frac{3}{4}=3\frac{3}{4}$	$5\frac{1}{3}$	20	$2\frac{5}{8}$	14	$\frac{2}{3}+2\times6\frac{2}{3}$
D	1	$2\frac{1}{2}+2\frac{1}{2}$	1	6	4+1=5	$5\frac{1}{3}$	$26\frac{2}{3}$	$3\frac{7}{8}$	$20\frac{2}{3}$	$\frac{2}{3}+3\times6\frac{2}{3}$
	—	—	—	30	$13\frac{5}{8}$	—	$72\frac{2}{3}$	8	$42\frac{2}{3}$	—

토지 a가 첨가됨으로써 새로운 차액지대 I이 생긴다. 그다음에 이 새로운 기초우에서 차액지대 II가 역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토지 a는 우에 든 세 표의 어느것에 있어서나 각이한 비옥도를 가지고있다. 비례적으로 제고되는 비옥도의 계렬은 우선 A로부터 시작된다. 증가하는 지대의 계렬도 그에 상응하여 형성된다. 이전에 지대를 제공하지 않다가 지대를 가져오게 된 가장 나쁜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는 하나의 불변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이 보다 높은 모든 지대에 단순히 가하여지게 되는것이다. 이 불변량을 공제한후에야 비로소 보다 높은 지대들에 있어서 차액들의 계렬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또 이 계렬과 각 토지종류들의 비옥도계렬과의 평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것이다. 모든 표들에서 A로부터 D까

지의 비옥도의 비률은 1:2:3:4이며 이에 상응하여 지대의 비는

표 Ⅶa에서는 1:1+7:1+2×7:1+3×7이며,

표 Ⅷa에서는 $1\frac{1}{5}:1\frac{1}{5}+7\frac{1}{5}:1\frac{1}{5}+2\times7\frac{1}{5}:1\frac{1}{5}+3\times7\frac{1}{5}$이며,

표 Xa에서는 $\frac{2}{3}:\frac{2}{3}+6\frac{2}{3}:\frac{2}{3}+2\times6\frac{2}{3}:\frac{2}{3}+3\times6\frac{2}{3}$이다.

요컨대 A의 지대를 n이라 하고 비옥도가 보다 높은 토지의 지대를 n+m이라고 하면 지대의 계렬은 n:n+m:n+2m:n+3m 등등으로 될것이다.—F. 엥겔스}

{상술한 제3의 경우는 원고에서는 완성되여있지 않았기 때문에—거기에는 표제만 있을뿐이다—이상에서와 같이 그것을 될수록 보충하는것이 편집자의 과업으로 되였다. 그러나 편집자에게는 그밖에 다음과 같은 일도 남아있었다. 즉 차액지대 Ⅱ의 세개의 주요한 경우와 아홉개의 파생적경우에 있어서의 이상의 모든 연구로부터 나오는 일반적결론을 얻는 일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원고중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례들은 거의 적합하지 않다. 첫째로, 이러한 례들은 동등한 크기의 면적에서 수익의 비가 1:2:3:4인 여러가지 토지들을 비교하고있다. 따라서 이미 처음부터 심히 과장되여있으며 그 기초우에서 가정들과 계산들이 전개됨에 따라 완전히 무리한 수량관계에 이르게 하는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례들은 전혀 그릇된 외관을 낳게 한다. 비옥도가 1:2:3:4 등등과 같은 비를 이루는 경우에 지대가 0:1:2:3 등등과 같은 계렬을 이룬다면 사람들은 곧 제1계렬로부터 제2계렬을 끌어내고 또 총수익이 2배, 3배 등등으로 되는데로부터 지대가 2배, 3배 등등으로 되는것을 설명해

보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않을것이다. 비옥도의 비가 n:n+1:n+2:n+3:n+4인 경우에도 지대의 비는 0:1:2:3:4이다. 지대는 비옥도의 **정도에** 비례하는것이 아니라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토지를 령점으로 계산한 비옥도의 **차이**에 비례하는것이다.

본문의 설명을 위하여서는 원고의 표들을 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아래에 서술하는 연구의 결과들을 위하여 명확한 기초를 얻기 위하여 나는 아래에서 일련의 새로운 표들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표들에서는 수익을 부쉘($\frac{1}{8}$쿼터 또는 36.35리터) 및 실링(=마르크)으로 표시한다.

제1의 표(XI)는 우의 표 I에 상응하는것이다. 이 표는 50실링이라는 **제1차** 투자에 의하여 A로부터 E까지의 5종의 각이한 질의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과 지대를 보여준다. 이 50실링에 10실링의 리윤을 가한 60실링이 1에이커당의 총생산비를 이룬다. 곡물수익은 1에이커당 10, 12, 14, 16, 18부쉘로 낮게 가정하고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규제적생산가격은 1부쉘당 6실링이다.

아래에 든 13개의 표들은 이 장과 앞 두 장에서 취급된 차액지대 II의 세 경우, 즉 동일한 토지에 1에이커당 50실링의 **추가적**투자가 실시되고 생산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 저하되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에 상응하는것이다. 또 이러한 경우들중의 매개 경우는 제1차 투자에 비하여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1) 변하지 않는 경우 2) 저하되는 경우 3) 상승하는 경우에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가가 표시된다. 이에 있어서 특히 더 설명하여야 할 약간의 변화들이 생긴다.

제1의 경우—생산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있다.

변화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표 XII).

변화 2.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 이 저하는 토지 A에 제2차 투자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만 생긴다. 그리하여 다음 두 경우의 어느 하나로 된다.

(a) 토지 B도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표 XIII) 또는

(b) 토지 B가 전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표 XIV).

변화 3.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표 XV). 이 경우도 토지 A에서의 제2차 투자를 배제한다.

제2의 경우—생산가격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있다.

변화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표 XVI).

변화 2.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표 XVII).

이 두 변화는 토지 A가 경쟁권외로 나가고 토지 B가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되며 생산가격을 규제한다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변화 3.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표 XVIII). 이 경우에는 토지 A는 의연히 규제적이다.

제3의 경우—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사태가 있을수 있다. 즉 토지 A가 의연히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가격을 규제하는것일수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A보다 나쁜 질의 토지가 경쟁에 참가하고 가격을 규제하기 시작하며 따라서 A는 지대를 가져오든가 한다.

제1의 사태. 토지 A가 의연히 규제적인 경우.

변화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표 XIX). 여기에서의 전제하에서 이것이 가능한것은 다만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뿐이다.

변화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표 XX). 이것은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변화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표 XXI). 이것은 또다시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의 저하를 조건으로 한다.

제2의 사태. 보다 나쁜 토지(a로 표시되는)가 경쟁에 참가하며 토지 A가 지대를 가져오는 경우.

변화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표 XXII).

변화 2.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표 XXIII).

변화 3.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표 XXIV).

이 세 변화들은 문제의 일반적인 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것이며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표들을 다음에 들기로 하자.

표 X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	10	6	60	0	0
B	60	12	6	72	12	12
C	60	14	6	84	24	2×12
D	60	16	6	96	36	3×12
E	60	18	6	108	48	4×12
	—	—	—	—	120	10×12

동일한 토지에 제2차 투자가 실시되는 경우.

제1의 경우—생산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

변화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표 XI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60=120	10+10=20	6	120	0	0
B	60+60=120	12+12=24	6	144	24	24
C	60+60=120	14+14=28	6	168	48	2×24
D	60+60=120	16+16=32	6	192	72	3×24
E	60+60=120	18+18=36	6	216	96	4×24
	—	—	—	—	240	10×24

변화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은 저하하고 토지 A에는 제2차 투자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1) 토지 B가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되는 경우.

표 XII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	10	6	60	0	0
B	60+60=120	12+ 8 = 20	6	120	0	0
C	60+60=120	$14+9\frac{1}{3}=23\frac{1}{3}$	6	140	20	20
D	60+60=120	$16+10\frac{2}{3}=26\frac{2}{3}$	6	160	40	2×20
E	60+60=120	18+ 12 = 30	6	180	60	3×20
	—	—	—	—	120	6×20

2) 토지 B가 전혀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되지는 않는 경우.

표 XIV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셸)	판매 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	10	6	60	0	0
B	60+60=120	12+ 9 =21	6	126	6	6
C	60+60=120	$14+10\frac{1}{2}=24\frac{1}{2}$	6	147	27	6+21
D	60+60=120	$16+12\frac{1}{2}=28\frac{1}{2}$	6	168	48	6+2×21
E	60+60=120	$18+13\frac{1}{2}=31\frac{1}{2}$	6	189	69	6+3×21
	—	—	—	—	150	4×6+6×21

변화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은 상승하고 토지 A에는 제2차 투자가 실시되지 않는다.

표 XV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셸)	판매 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	10	6	60	0	0
B	60+60=120	12+15 =27	6	162	42	42
C	60+60=120	$14+17\frac{1}{2}=31\frac{1}{2}$	6	189	69	42+27
D	60+60=120	16+20 =36	6	216	96	42+2×27
E	60+60=120	$18+22\frac{1}{2}=40\frac{1}{2}$	6	243	123	42+3×27
	—	—	—	—	330	4×42+6×27

제2의 경우—생산가격이 저하되는 경우.

변화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다. 토지 A는 경쟁 권밖으로 나가고 토지 B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된다.

표 XV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B	60+60=120	12+12=24	5	120	0	0
C	60+60=120	14+14=28	5	140	20	20
D	60+60=120	16+16=32	5	160	40	2×20
E	60+60=120	18+18=36	5	180	60	3×20
	—	—	—	—	120	6×20

변화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은 저하된다. 토지 A는 경쟁권밖으로 나가고 토지 B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된다.

표 XVI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B	60+60=120	12+ 9 =21	$5\frac{5}{7}$	120	0	0
C	60+60=120	$14+10\frac{1}{2}=24\frac{1}{2}$	$5\frac{5}{7}$	140	20	20
D	60+60=120	16+12 =28	$5\frac{5}{7}$	160	40	2×20
E	60+60=120	$18+13\frac{1}{2}=31\frac{1}{2}$	$5\frac{5}{7}$	180	60	3×20
	—	—	—	—	120	6×20

변화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은 상승한다. 토지 A는 의연히 경쟁권내에 있다. 토지 B는 지대를 가져온다.

표 XVII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60=120	10+15=25	$4\frac{4}{5}$	120	0	0
B	60+60=120	12+18=30	$4\frac{4}{5}$	144	24	24
C	60+60=120	14+21=35	$4\frac{4}{5}$	168	48	2×24
D	60+60=120	16+24=40	$4\frac{4}{5}$	192	72	3×24
E	60+60=120	18+27=45	$4\frac{4}{5}$	216	96	4×24
	—	—	—	—	240	10×24

제3의 경우—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A. 토지 A가 의연히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

변화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의 저하를 조건으로 한다.

표 XIX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60=120	$7\frac{1}{2}+10=17\frac{1}{2}$	$6\frac{6}{7}$	120	0	0
B	60+60=120	9 +12=21	$6\frac{6}{7}$	144	24	24
C	60+60=120	$10\frac{1}{2}+14=24\frac{1}{2}$	$6\frac{6}{7}$	168	48	2×24
D	60+60=120	12 +16=28	$6\frac{6}{7}$	192	72	3×24
E	60+60=120	$13\frac{1}{2}+18=31\frac{1}{2}$	$6\frac{6}{7}$	216	96	4×24
	—	—	—	—	240	10×24

변화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은 저하된다. 이 경우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의 불변을 배제하지 않는다.

표 XX

토지 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60=120	10+5=15	8	120	0	0
B	60+60=120	12+6=18	8	144	24	24
C	60+60=120	14+7=21	8	168	48	2×24
D	60+60=120	16+8=24	8	192	72	3×24
E	60+60=120	18+9=27	8	216	96	4×24
	—	—	—	—	240	10×24

변화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은 상승한다. 이 경우는 여기에서의 제 전제하에서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의 저하를 조건으로 한다.

표 XX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60+60=120	$5+12\frac{1}{2}=17\frac{1}{2}$	$6\frac{6}{7}$	120	0	0
B	60+60=120	6+15 =21	$6\frac{6}{7}$	144	24	24
C	60+60=120	$7+17\frac{1}{2}=24\frac{1}{2}$	$6\frac{6}{7}$	168	48	2×24
D	60+60=120	8+20 =28	$6\frac{6}{7}$	192	72	3×24
E	60+60=120	$9+22\frac{1}{2}=31\frac{1}{2}$	$6\frac{6}{7}$	216	96	4×24
	—	—	—	—	240	10×24

B. 보다 나쁜 토지(a로 표시되는)가 가격을 규제하는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토지 A가 지대를 가져오는 경우. 이것은 모든 변화를 통하여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의 불변을 허용한다.

변화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표 XXI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120	16	$7\frac{1}{2}$	120	0	0
A	60+60=120	10+10=20	$7\frac{1}{2}$	150	30	30
B	60+60=120	12+12=24	$7\frac{1}{2}$	180	60	2×30
C	60+60=120	14+14=28	$7\frac{1}{2}$	210	90	3×30
D	60+60=120	16+16=32	$7\frac{1}{2}$	240	120	4×30
E	60+60=120	18+18=36	$7\frac{1}{2}$	270	150	5×30
	—	—	—	—	450	15×30

변화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

표 XXIII

토지 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 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120	15	8	120	0	0
A	60+60=120	$10+7\frac{1}{2}=17\frac{1}{2}$	8	140	20	20

B	60+60=120	12+ 9 =21	8	168	48	20+28
C	60+60=120	$14+10\frac{1}{2}=24\frac{1}{2}$	8	196	76	20+2×28
D	60+60=120	16+12 =28	8	224	104	20+3×28
E	60+60=120	$18+13\frac{1}{2}=31\frac{1}{2}$	8	252	132	20+4×28
	—	—	—	—	380	5×20+10×28

변화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표 XXIV

토지종류	생산비 (실링)	생산물 (부쉘)	판매가격 (실링)	수익 (실링)	지대 (실링)	지대 증가
a	120	16	$7\frac{1}{2}$	120	0	0
A	60+60=120	$10+12\frac{1}{2}=22\frac{1}{2}$	$7\frac{1}{2}$	$168\frac{3}{4}$	$48\frac{3}{4}$	$15+33\frac{3}{4}$
B	60+60=120	12+15 =27	$7\frac{1}{2}$	$202\frac{1}{2}$	$82\frac{1}{2}$	$15+2\times33\frac{3}{4}$
C	60+60=120	$14+17\frac{1}{2}=31\frac{1}{2}$	$7\frac{1}{2}$	$236\frac{1}{4}$	$116\frac{1}{4}$	$15+3\times33\frac{3}{4}$
D	60+60=120	16+20 =36	$7\frac{1}{2}$	270	150	$15+4\times33\frac{3}{4}$
E	60+60=120	$18+22\frac{1}{2}=40\frac{1}{2}$	$7\frac{1}{2}$	$303\frac{3}{4}$	$183\frac{3}{4}$	$15+5\times33\frac{3}{4}$
	—	—	—	—	$581\frac{1}{4}$	$5\times15+15\times33\frac{3}{4}$

이상의 표들로부터 다음과 같은것이 밝혀진다.

우선 지대의 계렬은 바로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규제적인 토지를 령점으로 한 비옥도의 차이의 계렬과 비례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수익이 아니라 다만 수익들의 차이만이 지대에 있어서는 규정적인것이다.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이 가져오는 1에이커당의 수익이 1, 2, 3, 4, 5부쉘이든 또는 11, 12, 13, 14, 15부쉘이든간에 두 경우에 다 지대의 계렬은 0, 1, 2, 3, 4부쉘 또는 그 화폐수익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동일한 토지에 투자가 반복되는 경우에 지대총액에 관하여 생기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연구된 13 경우중 다섯 경우에는 투자액과 함께 지대의 총액도 **2배**로 즉 10×12실링으로부터 10×24실링=240실링으로 된다. 그 다섯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 제1 경우의 변화 1. 생산이 등속으로 증가하는 경우(표 XII)

가격이 저하되는 제2 경우의 변화 3. 생산이 가속도로 증가하는 경우(표 XVIII)

가격이 상승하는 제3 경우중 토지 A가 의연히 규제적인 제1사태의 세 변화의 전부(표 XIX, XX, XXI).

아래 네 경우에는 지대가 **2배이상**이 증가한다. 즉

제1의 경우의 변화 3. 가격은 변하지 않으나 생산은 가속도로 증가하는 경우(표 XV). 지대총액은 330실링으로 증가한다.

제3의 경우중 토지 A가 지대를 가져오는 제2 사태의 세 변화의 전부(표 XXII에서는 지대는 15×30=450실링이며 표 XXIII에서는 지대는 5×20+10×28=380실링이며 표 XXIV에서는 지대는 $5\times15+15\times33\frac{3}{4}=581\frac{1}{4}$ 실링이다).

한 경우에는 지대가 **증가**하나 제1차 투자에 의하여 나오는 지대의 2배로는 되지 않는다. 즉 다음과 같이 된다.

가격이 불변인 제1 경우의 변화 2. 토지 B가 전혀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되지는 않는 조건하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표 XIV에서 지대는 4×6+6×21=150실링이다).

마지막으로 다만 세 경우에만 모든 토지종류들에 대하여 합계한 제2차 투자에 의한 지대총액이 제1차 투자(표 XI)에 의한 지대총액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 그것은 토지 A가 경쟁권밖으로 나가고 토지 B가 규제적인것으로 되고 따라서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것으로 되는 경우. 즉 토지 B의 지대가 없어질뿐만아니라 지대계렬의 다음 각 환절중에서도 그것이 공제되며 그때문에 상술한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제1의 경우의 변화 2. 토지 A가 떨어져나가는 조건의 경우(표 Ⅷ). 지대총액은 6×20이고 따라서 표 XI의 경우와 같이 10×12=120이다.

제2의 경우의 변화 1과 2. 이 경우에 토지 A는 전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떨어져나가고(표 XVI및 XVⅡ) 지대총액은 역시 6×20=10×12=120실링이다.

요컨대 모든 있을수 있는 경우중의 대다수의 경우에 지대는 토지에 대한 투자의 증가에 의하여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의 1에이커당에 있어서나 또 특히 지대총액에 있어서나 증대하는것이다. 연구된 13 경우중 다만 세 경우에만 지대의 총액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 세 경우란 지금까지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규제적역할을 놀던 최렬등지가 경쟁권밖으로 나가고 그다음으로 질이 높은 토지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고 따라서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에도 가장 좋은 토지의 지대는 제1차 투자에

의한 지대에 비하면 중대한다. C에서의 지대는 24실링으로부터 20실링으로 저하되나 D와 E에서의 지대는 각각 36실링 및 48실링으로부터 40실링 및 60실링으로 상승된다.

지대총액이 제1차 투자때의 수준(표 XI) 이하로 저하될 수 있는것은 다만 토지 A외에 토지 B도 경쟁권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토지 C가 규제적인것으로 되며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경우뿐이다.

요컨대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나라의 농업과 문명일반의 발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1에어커당의 지대와 지대의 총액은 더욱더 증대되며 사회가 초과리윤의 모습으로 대토지소유자들에게 지불하는 공물은 더욱더 증대되는것이다. 하기는 이미 경작되게 된 토지종류가 모두 경쟁능력을 가지고있는 한에서이지만.

이 법칙은 대토지소유자계급의 놀랄만한 생명의 강인성을 설명해주는것이다. 사회에 이 계급처럼 랑비하는 계급은 없으며 이 계급처럼 전래의 《신분에 맞는》 호사를 할 권리를—그것을 위한 화폐가 어디서 나오든간에—요구하는 계급은 없으며 이 계급처럼 경솔하게 부채에 부채를 거듭하는 계급은 없다. 그래도 이 계급은 늘 위험한 고비를 무사히 벗어나온다. 그것은 토지에 투하되는 다른 사람들의 자본이 그것에서 자본가가 얻는 리윤과는 전혀 엄청나게 많은 지대를 그들에게 가져다주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동일한 법칙은 또한 대토지소유자의 이 생명의 강인성이 어째서 점차 소멸되여가는가 하는것도 설명하여준다.

영국의 곡물관세[68]가 1846년에 폐지되였을 때 영국의 공장주들은 이것으로써 토지소유귀족을 구제받을 빈민으로 전

화시킨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런데 도리여 토지소유귀족은 이전의 그 어느때보다도 더 부유하게 되였다. 그것은 웬 영문인가? 극히 간단하다. 첫째로, 차지농업가들은 그후부터는 1년에 1에이커당 8파운드가 아니라 12파운드를 투하할것을 계약에 의하여 강요당하게 되였고 둘째로, 하원에 매우 많은 대표를 가지고있는 지주들은 자기들의 토지의 배수나 기타의 영구적개량을 위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승인받았던것이다. 가장 나쁜 토지의 구축이 진행된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다만 다른 목적에, 그것도 대개는 일시적으로만 다른 용도에 사용되였기때문에 지대는 투자의 증대에 비례하여 증대되고 토지귀족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처지에 있게 되였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것은 덧없는것이다. 대양을 횡단하는 기선이나 남북아메리카의 철도나 인도의 철도는 전혀 독자적인 지역들을 구라파의 곡물시장에서 경쟁할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북아메리카의 프레리, 아르헨띠나의 빰빠느, 즉 자연 그 자체에 의하여 개간된 대초원이 있었으며 원시적경작으로도 시비없이 여러해에 걸쳐 풍부한 수확을 제공하는 처녀지가 있었다. 그리고 또 로씨야나 인도의 공산주의적공동체[328]들의 토지가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국가의 무자비한 전제제도가—흔히는 고통을 주는데 의하여—강요한 조세를 지불하기 위한 화폐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생산물의 일부분을, 그것도 부단히 증대하는 일부분을 팔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생산물은 생산비와는 관계없이 팔리였고 상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가격으로 판매되였다. 왜냐하면 농민은 지불기일까지는 여하튼 화폐를 입수하지 않으면 안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쟁에 대하여서는—처녀지적대초원지의 경쟁과 힘에 겨운 조세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로씨야나 인

도의 농민의 경쟁에 대하여서도—구라파의 차지농업가나 농민은 이미 종전의 지대하에서는 대항할수 없었다. 구라파에서는 토지의 일부분은 곡물경작에서 결정적으로 경쟁권밖으로 나갔고 지대는 도처에서 저하되였으며 우리의 제2의 경우의 변화 2 즉 가격이 저하되고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구라파에 있어서 상례로 되였으며 이리하여 스코틀랜드로부터 이딸리아에 이르기까지의; 그리고 남부프랑스로부터 동부프로씨아에 이르기까지의 지주들의 비탄이 터지게 되였다. 다행히도 아직 모든 초원지대가 경작되고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라파의 대토지소유의 전부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또 소토지소유까지도 파멸시키기에 충분할만큼 아직 남아있는것이다.—F. 엥겔스]

지대를 취급할 경우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A. 차액지대.

1) 차액지대의 개념. 수력에 의한 폐증. 본래의 농업지대에로의 이행.

2) 각이한 토지들의 비옥도의 차이로부터 생기는 차액지대 Ⅰ.

3) 동일한 토지에서의 순차적투자로부터 생기는 차액지대 Ⅱ. 차액지대 Ⅱ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a) 생산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

(b) 생산가격이 저하되는 경우,

(c) 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또

(d) 초과리윤의 지대에로의 전화.

4) 이 지대가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

B. 절대지대

C. 토지가격

D. 지대에 관한 결론적인 고찰.

차액지대의 고찰의 일반적결론으로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얻을수 있다.

첫째로, 초과리윤의 형성은 각이한 경로로 진행될수 있다. 한편으로는 차액지대 Ⅰ을 기초로 하여, 즉 비옥도가 다른 여러가지 토지종류들로써 구성되는 토지면적에서의 총농업자본의 투하를 기초로 하여 진행될수 있다. 그리고 또 차액지대 Ⅱ로서는 동일한 토지에서의 순차적투자의 각이한 생산성의 차이에 기초하여 즉 이 경우에는 가장 나쁘고 지대를 가져오지 않으나 생산가격을 규제하는 토지에서 동일한 투자에 의하여 실현되는 생산성에 비하여 헥컨대 밀의 쿼터수로 표시되는 보다 높은 생산성에 기초하여 진행될수 있다. 그러나 이 초과리윤이 어떻게 생기든간에 그것의 지대에로의 전화, 따라서 차지농업가로부터 토지소유자에로의 그것의 인도는 그 선행조건으로서 언제나 다음과 같은것을 전제로 한다. 즉 개개의 순차적투자의 부분생산물들이 가지는 각이한 현실적인 개별적생산가격(즉 일반적인, 시장규제적인 생산가격으로부터 독립한것)이 미리 평균되여 하나의 개별적평균생산가격으로 된것을 전제로 한다. 1에이커의 생산물의 일반적인 규제적생산가격이 상술한바와 같은 그 생산물의 개별적평균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은 1에이커당의 지대를 형성하며 또 그 크기를 측정하는것이다. 차액지대 Ⅰ에 있어서는 각이한 결과들은 그 자체로서 구별될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는 서로 분리

된, 외적으로 나란히 있는 각이한 토지부분들에서 표준적이라고 인정되는 1에이커당 투자와 그에 상응하는 표준적경작이 진행되는 경우에 생기는것이기때문이다. 차액지대 Ⅱ에 있어서는 이러한 각이한 결과가 우선 구별될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실상 차액지대 Ⅰ로 역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이 역전화는 상술한 방식으로 진행될수밖에 없다. 례컨대 226페지①의 표 Ⅲ을 들어보자.

토지 B는 $2\frac{1}{2}$파운드의 제1차 투자로 1에이커당 2쿼터를 내며 같은 액의 제2차 투자로는 $1\frac{1}{2}$쿼터를 낸다. 동일한 1에이커에서 도합 $3\frac{1}{2}$쿼터를 낸다. 동일한 토지에서 생긴 이 $3\frac{1}{2}$쿼터중에서 얼마만큼한것이 제1차 투자의 생산물이고 얼마만큼한것이 제2차 투자의 생산물인가 하는것은 알수 없다. 그것들은 사실상 5파운드라는 총자본의 생산물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실은 다만 $2\frac{1}{2}$파운드의 자본은 2쿼터를 가져왔으나 5파운드의 자본은 4쿼터가 아니라 $3\frac{1}{2}$쿼터를 가져왔다는것뿐이다. 가령 이 5파운드가 4쿼터를 가져오고 따라서 두 투자의 수익이 동등하였다고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 5쿼터를 가져오고 따라서 제2차 투자가 1쿼터의 초과분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완전히 동일할것이다. 제1의 2쿼터의 생산가격은 1쿼터당 $1\frac{1}{2}$파운드이고 제2의 $1\frac{1}{2}$쿼터의 생산가격은 1쿼터당 2파운드이다. 따라서 도합 $3\frac{1}{2}$쿼터의 비용은 6파운드이다. 이것이 총생산물의 개별적생산가격이고 평균으로는 1

① 본권 776페지를 보라.—편집자

쿼터당 1파운드 $14\frac{2}{7}$실링, 즉 약 $1\frac{3}{4}$파운드로 된다. 이 개별적생산가격은 토지 A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반적생산가격이 3파운드이라고 하면 1쿼터당 $1\frac{1}{4}$파운드, 따라서 $3\frac{1}{2}$쿼터에 대하여는 도합 $4\frac{3}{8}$파운드의 초과리윤을 제공한다. 이것은 토지 B의 평균적생산가격으로는 약 $1\frac{1}{2}$쿼터로 표시된다. 따라서 토지 B의 초과리윤은 토지 B의 생산물의 해당한 일부분인 $1\frac{1}{2}$쿼터로 표시되며 이 $1\frac{1}{2}$쿼터가 곡물로 표현된 지대를 이루며 일반적생산가격에 따라 $4\frac{1}{2}$파운드로 팔린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토지 A의 1에이커의 생산물을 넘는 토지 B의 1에이커의 여분의 생산물이 그대로 초과리윤을 따라서 초과생산물을 표시하는것은 아니다. 전제에 의하면 토지 B의 1에이커는 $3\frac{1}{2}$쿼터를 생산하나 토지 A의 1에이커는 1쿼터밖에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B의 여분의 생산물은 $2\frac{1}{2}$쿼터이나 초과생산물은 $1\frac{1}{2}$쿼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토지 B에는 토지 A에 비하여 2배의 자본이 투하되였고 따라서 토지 B에서는 생산비가 2배나 되기때문이다. 만약 토지 A에도 역시 5파운드의 투하가 실시되고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산물은 1쿼터가 아니라 2쿼터일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초과생산물은 $3\frac{1}{2}$과 1과의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3\frac{1}{2}$과 2와의 비교에 의해서 발견된다는것, 따라서 초과생산물은 $2\frac{1}{2}$쿼

터가 아니라 $1\frac{1}{2}$쿼터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나 만약 토지 B에 제3차의 $2\frac{1}{2}$파운드의 자본이 투하되고 그것이 다만 1쿼터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 1쿼터에 토지 A에서와 마찬가지로 3파운드의 비용이 든다고 하면 3파운드라는 그 판매가격은 다만 생산비를 보상하고 평균 리윤을 가져올뿐이며 아무런 초과리윤도 가져오지 않으며 따라서 또 제대로 전화될수 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것이다. 임의의 어떤 토지종류의 1에이커당 생산물을 토지 A의 1에이커당 생산물과 비교하여본다 하여도 그것이 동액의 투자의 생산물인지 또는 보다 큰 투자의 생산물인지 알수 없으며 또 추가생산물은 단지 생산가격을 보상하는데 불과한지 또는 그것이 추가자본의 보다 높은 생산성에 기인하는지도 알수 없다.

둘째로, 초과리윤의 새로운 형성이 문제로 되는 한 추가적투자의 한계는 다만 생산가격을 보상하는데 불과한 투자 즉 토지 A의 1에이커에서의 동등한 액의 투자와 같은 생산비 따라서 전제에 의하면 3파운드로 1쿼터를 생산하는 그러한 투자인데 이러한 추가적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우에서 서술한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것이 나온다. 즉 토지 B의 1에이커에 대한 총투자가 더는 지대를 형성하지 않게 되는 한계는 토지 B의 1에이커당 생산물의 개별적평균생산가격이 토지 A의 1에이커당 생산가격의 수준에까지 오르는 점이라는것이다.

만일 토지 B에 대한 추가적투자가 다만 생산가격을 보상할따름이고 조금도 초과리윤을 형성하지 않고 따라서 조금도

새로운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물론 1쿼터당 개별적평균생산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이전의 투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초과리윤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지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균생산가격은 여전히 토지 A의 생산가격보다 낮기때문이며 또 1쿼터당 가격초과분은 감소되더라도 쿼터수는 같은 비률로 증가하므로 가격의 총초과분은 변함이 없기때문이다.

우에서 가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B에서의 최초의 2차의 투자합계 5파운드는 $3\frac{1}{2}$쿼터를 생산하며 따라서 전제에 의하면 $1\frac{1}{2}$쿼터의 지대=$4\frac{1}{2}$파운드를 생산한다. 여기에 또 제3차의 $2\frac{1}{2}$파운드의 투자가 첨가되여 그것이 다만 1쿼터의 추가분을 생산할따름이라면 $4\frac{1}{2}$쿼터의 총생산가격(20%의 리윤을 포함한)은 9파운드이고 따라서 1쿼터당 평균가격은 2파운드이다. 그리하여 토지 B에서의 1쿼터당 평균생산가격은 $1\frac{5}{7}$파운드로부터 2파운드로 상승하였고 따라서 토지 A의 규제적가격과 비교한 1쿼터당 초과리윤은 $1\frac{2}{7}$파운드로부터 1파운드로 저하되였다. 그러나 $1\times4\frac{1}{2}=4\frac{1}{2}$파운드로 되며 이전의 $1\frac{2}{7}\times3\frac{1}{2}=4\frac{1}{2}$파운드와 완전히 같다.

만약 토지 B에서 다시 $2\frac{1}{2}$파운드씩의 제4차 및 제5차의 추가적투자가 실시되고 그것들이 1쿼터를 각각 그 일반적생산가격으로 생산할따름이라고 가정하면 이제는 1에이커당의

총생산물은 $6\frac{1}{2}$ 쿼터이며 그 생산비는 15파운드일것이다. 토지 B에서의 1쿼터당 평균생산가격은 다시 2파운드로부터 $2\frac{4}{13}$ 파운드로 상승되고 토지 A의 규제적생산가격과 비교한 1쿼터당의 초과리윤은 다시 1파운드로부터 $\frac{9}{13}$ 파운드로 저하될것이다. 그러나 이 $\frac{9}{13}$ 파운드는 이제는 $4\frac{1}{2}$ 쿼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6\frac{1}{2}$ 쿼터에 대해서 계산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frac{9}{13}\times6\frac{1}{2}=1\times4\frac{1}{2}=4\frac{1}{2}$ 파운드이다.

이상으로부터 우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들에서의 추가적투자를, 지어는 추가자본이 전혀 초과리윤을 가져오지 않게 되고 다만 평균리윤만을 가져오는 정도에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규제적생산가격의 어떠한 상승도 필요하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결론도 나온다. 즉 이 경우에 1에이커당 초과리윤의 총액은 1쿼터당 초과리윤이 얼마나 감소하더라도 의연히 동일하며 이 1쿼터당 초과리윤의 감소는 언제나 그것에 상응하여 1에이커당의 생산물의 쿼터수가 증가하는데 의하여 상쇄되는것이다. 평균생산가격이 일반적생산가격의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하여서는(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지 B에 대하여는 3파운드로 상승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이 추가되여 그 생산물의 생산가격이 3파운드라는 규제적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곧 알게 될것이지만 이것도 다만 그것만으로써는 토지 B에서의 1쿼터당 평균생산가격을 3파운드라는 일반적생산가격의 수준에까지 상승시키

기 위하여는 불충분한것이다.

토지 B에서 다음과 같이 생산된다고 가정하자.

1. $3\frac{1}{2}$쿼터가 종전과 같이 6파운드의 생산가격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2\frac{1}{2}$파운드씩의 2차의 투자는 두번 다 초과리윤을 형성하지만 그 수준은 저하된다.

2. 1쿼터가 3파운드로 생산된다. 이 투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생산가격이 규제적생산가격과 동등할것이다.

3. 1쿼터가 4파운드로 생산된다. 이 투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생산가격이 규제적생산가격보다 $33\frac{1}{3}$% 높다.

이 경우에는 $10\frac{7}{10}$파운드의 투자에 의하여 1에이커당 $5\frac{1}{2}$쿼터가 13파운드로 생산될것이다. 투자는 최초의 투자의 4배로 되였는데 생산물은 제1차 투자의 생산물의 3배도 못될것이다.

13파운드로 $5\frac{1}{2}$쿼터를 얻는다면 1쿼터당 평균생산가격은 $2\frac{4}{11}$파운드로 되며 따라서 규제적생산가격이 3파운드인 경우에는 1쿼터당 $\frac{7}{11}$파운드의 초과분을 제공하여 이 초과분은 지대로 전화될수 있다. $5\frac{1}{2}$쿼터를 3파운드의 규제적가격으로 판매하면 $16\frac{1}{2}$파운드로 된다. 13파운드의 생산비를 공제하면 $3\frac{1}{2}$파운드의 초과리윤 또는 지대가 남는데 이 $3\frac{1}{2}$파운드는 토지 B에서의 현재의 1쿼터당 평균생산가격, 즉 1쿼터당 $2\frac{4}{11}$

파운드로 계산하면 $1\frac{25}{52}$ 쿼터를 대표한다. 화폐지대는 1파운드 감소되고 곡물지대는 약 $\frac{1}{2}$ 쿼터 감소될것이다. 그러나 토지 B에서의 제4차 추가적투자는 초과리윤을 생산하지 않을뿐만아니라 평균리윤보다도 적게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초과리윤이나 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제3의 투자외에 제2의 투자도 규제적생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총생산은 생산비 6파운드로써의 $3\frac{1}{2}$ 쿼터+생산비 8파운드로써의 2쿼터, 도합 생산비 14파운드로써의 $5\frac{1}{2}$ 쿼터이다. 1쿼터당 평균생산가격은 $2\frac{6}{11}$ 파운드일것이며 $\frac{5}{11}$ 파운드의 초과분을 남길것이다. 이 $5\frac{1}{2}$ 쿼터를 1쿼터당 3파운드로 판매하면 $16\frac{1}{2}$ 파운드로 된다. 그중에서 생산비 14파운드를 공제하면 $2\frac{1}{2}$ 파운드가 지대로서 남는다. 이것은 토지 B에서의 현재의 평균생산가격하에서는 $\frac{55}{56}$ 쿼터로 될것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적기는 하지만 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하간 이것으로써 알수 있는바와 같이 좋은 토지들에서는 추가적투자가 실시되여 그에 의한 생산물이 규제적생산가격보다 더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지대는—적어도 실지로 가능한 경우의 한계내에서는—없어지는것이 아니라 다만 감소되지 않을수 없을따름인데 그것도 일방으로는 보다 덜 생산적인 자본이 총투자중에서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타방으로는 이 자본의 생산성의 감소에 비례하여 감소되지 않을수 없을따름이다. 이 자본의 생산물의 평균가격은

의연히 규제적가격보다 낮을것이며 따라서 지대로 전화될수 있는 초과리윤을 의연히 남길것이다.

그러면 생산성이 감소하는 네개의 순차적투자 ($2\frac{1}{2}$파운드, $2\frac{1}{2}$파운드, 5파운드 및 5파운드)의 결과로 토지 B의 1쿼터당의 평균가격은 일반적생산가격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물 (쿼터)	생산비		판매가격 (파운드)	수익 (파운드)	지대를 이루는 초과분	
				쿼터당 (파운드)	합계 (파운드)			(쿼터)	(파운드)
1	$2\frac{1}{2}$	$\frac{1}{2}$	2	$1\frac{1}{2}$	3	3	6	1	3
2	$2\frac{1}{2}$	$\frac{1}{2}$	$1\frac{1}{2}$	2	3	3	$4\frac{1}{2}$	$\frac{1}{2}$	$1\frac{1}{2}$
3	5	1	$1\frac{1}{2}$	4	6	3	$4\frac{1}{2}$	$-\frac{1}{2}$	$-1\frac{1}{2}$
4	5	1	1	6	6	3	3	−1	−3
	15	3	6	—	18	—	18	0	0

차지농업가는 이 경우에 각 1쿼터를 그것의 개별적생산가격으로 판매할것이고 따라서 총쿼터수를 3파운드의 규제적가격과 일치하는 그 1쿼터당 평균생산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러므로 그는 15파운드의 자기자본에 대하여 여전히 20%=3파운드의 리윤을 얻는다. 그러나 지대는 없어졌다. 각 1쿼터의 개별적생산가격이 이렇게 일반적생산가격과 균등화되는 경우에 초과분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제1차의 $2\frac{1}{2}$파운드에 대한 초과리윤은 3파운드였으며 제2차의 $2\frac{1}{2}$파운드에 대한 초과리윤은 $1\frac{1}{2}$파운드였으며 도합

선대자본의 $\frac{1}{3}$에 대한, 즉 5파운드에 대한 초과리윤은 $4\frac{1}{2}$ 파운드=90%였다.

제3차의 투자에서는 5파운드가 아무런 초과리윤도 제공하지 않을뿐아니라 그 생산물 $1\frac{1}{2}$쿼터를 일반적생산가격으로 판매하면 $1\frac{1}{2}$파운드의 마이나스로 된다. 마지막으로 제4차의 역시 5파운드의 투자에서는 그 생산물 1쿼터를 일반적생산가격으로 판매하면 3파운드의 마이나스로 된다. 따라서 이 두 투자의 합계에서는 $4\frac{1}{2}$파운드의 마이나스로 되며 이것은 제1차 및 제2차의 투자에서 나오는 $4\frac{1}{2}$파운드의 초과리윤과 같다.

초과리윤과 부족리윤과는 서로 상쇄된다. 그러므로 지대는 없어진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가능한것은 오직 초과리윤 또는 지대를 형성하고있는 잉여가치의 제 요소가 이제는 평균리윤의 형성에 참가하기때문이다. 차지농업가는 지대의 희생에 의하여 15파운드에 대한 3파운드 즉 20%라는 이 평균리윤을 얻는다.

토지 B의 개별적평균생산가격이 일반적인 시장 규제적인 토지 A의 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된다는것은 최초의 투자들의 생산물의 개별적가격이 규제적가격에 도달하지 않는 차액이 그후의 투자들의 생산물이 규제적가격을 초과하는 차액에 의하여 점점 상쇄되여가고 결국에 가서는 균등화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최초의 투자들의 생산물이 따로따로 판매되는 동안은 초과리윤으로서 나타나는것이 점점 그것들의 투자의 평균적생산가격의 일부분으로 되여가고 따라서 평균리윤의 형성에 참가하며 나중에는 완전히 평균리윤에 흡수되

고만다.

만약 토지 B에 15파운드의 자본이 투하되는것이 아니고 다만 5파운드가 투하될뿐이고 우에서 든 표중의 추가적 $2\frac{1}{2}$ 쿼터는 토지 A의 $2\frac{1}{2}$ 에이커가 새로 1에이커당 $2\frac{1}{2}$ 파운드의 투자로써 경작되는데 의하여 생산된다고 하면 투하된 추가자본은 $6\frac{1}{4}$ 파운드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6쿼터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A와 B에서의 총투자는 15파운드가 아니라 $11\frac{1}{4}$ 파운드에 불과하며 그 총생산비는 리윤을 포함하여 $13\frac{1}{2}$ 파운드밖에 안될것이다. 이 6쿼터는 여전히 도합 18파운드로 판매될것이나 투자는 $3\frac{3}{4}$ 파운드 감소되며 토지 B의 지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에이커당 $4\frac{1}{2}$ 파운드일것이다. 만약 추가적 $2\frac{1}{2}$ 쿼터의 생산을 위하여 A보다도 나쁜 토지 A_{-1}, A_{-2}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그리하여 토지 A_{-1}에서의 $1\frac{1}{2}$ 쿼터에 대하여서는 1쿼터당 생산가격이 4파운드이고 토지 A_{-2}에서의 마지막 1쿼터에 대해서는 그 생산가격이 6파운드라고 하면 사태는 달라질것이다. 이 경우에는 6파운드가 1쿼터당의 규제적생산가격으로 될것이다. 토지 B의 이 $3\frac{1}{2}$ 쿼터는 $10\frac{1}{2}$ 파운드가 아니라 21파운드로 판매되고 그때문에 지대는 $4\frac{1}{2}$ 파운드가 아니라 15파운드로 되고 곡물로는 $1\frac{1}{2}$ 쿼터가 아니라 $2\frac{1}{2}$ 쿼터로 될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토지 A에서도 그 1쿼

터가 이제는 3파운드=$\frac{1}{2}$쿼터의 지대를 제공할것이다.

이 점에 더 깊이 들어가기전에 또 한가지 지적하여둘것이 있다.

토지 B의 1쿼터의 평균가격이 1쿼터당 3파운드라는 토지 A에 의하여 규제된, 일반적생산가격과 균등화되고 그것과 일치되는것은 총자본중 $1\frac{1}{2}$쿼터를 여분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총자본중 $1\frac{1}{2}$쿼터만큼 부족하게 생산하는 부분에 의하여 상쇄되게 되는 때이다. 이 균등화가 얼마나 빨리 달성되는가 또는 이를 위하여는 생산력이 부족한 자본이 얼마나 토지 B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은 최초의 투자들의 초과생산성을 주어진것으로 전제하면 규제적인 최열등지 A에서의 동등한 량의 투자에 비교한, 그후에 투하되는 자본들의 상대적부족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며 바꾸어말하면 규제적가격과 비교한 이러한 이후의 자본들의 생산물의 개별적생산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상에서 말한것으로부터 우선 다음과 같은것이 명백해진다.

첫째로, 추가자본이 동일한 토지에 초과생산성을 보존하면서 투하되는 동안은 비록 그의 생산성이 점점 감소된다 하더라도 1에이커당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는 절대적으로 증대한다. 비록 그것은 상대적으로는 즉 선대자본에 대한 비률에서는(즉 초과리윤 또는 지대의 률은) 감소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한계로 되는것은 평균리윤을 가져올따름인 또는 그 생산물에 있어서 개별적생산가격이 일반적생산가격과 일치하

는 추가자본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상과 같은 제 사정하에서는 공급의 증가에 의하여 나쁜 토지종류들에서의 생산이 필요없는것으로 되지 않는 한 생산가격은 의연히 동일하다. 가격이 저하하는 경우에도 이 추가자본들은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초과리윤을 이전보다 적은것이기는 하지만 생산할수 있다.

둘째로, 평균리윤을 생산할따름이고 그 초과생산성이 령인 추가자본의 투하는 형성된 초과리윤의 량, 따라서 지대의 량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1쿼터당의 개별적평균가격은 좋은 토지종류들에서는 증대하며 1쿼터당 초과분은 감소되나 이 감소된 초과분을 제공하는 쿼터수는 증가되고 따라서 그것의 적은 변하지 않는다.

셋째로, 추가적투자의 생산물의 개별적생산가격이 규제적가격보다 높은 경우, 따라서 추가적투자의 초과생산성이 령일뿐만아니라 령보다 적은 마이나스이며 바꾸어말하면 규제적토지 A에서의 동등한 량의 투자의 생산성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적투자는 보다 좋은 토지의 총생산물의 개별적평균가격을 일반적생산가격에 더욱더 접근시키며 따라서 초과리윤 또는 지대를 형성하는 이 두 가격간의 차액을 더욱더 감소시킨다. 초과리윤 또는 지대를 형성하던것중 더욱더 많은것이 평균리윤의 형성에 참가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B의 1에이커에 투하된 총자본은 계속 초과리윤을 가져온다. 비록 이 초과리윤은 이 생산성이 부족한 자본의 량이 증가됨에 따라 또 이 부족생산성의 정도에 따라 감소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본이 증대하고 생산이 증가되는데 따라 1에이커당의 지대는 절대적으로도 감소되는것이고 제2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투하자본량이 증대하는데 비

하여 상대적으로만 감소되는것이 아니다.

오직 보다 좋은 토지 B의 총생산물의 개별적평균생산가격이 규제적가격과 일치되며 따라서 최초의 보다 생산적인 투자들의 전체 초과리윤이 평균리윤의 형성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지대는 없어질수 있다.

1에이커당 지대의 저하의 최저한계는 이 지대가 없어지는 그 점이다. 그러나 이 점이 나타나는것은 추가적투자들이 부족한 생산성으로써 생산되게 되는 때가 아니라 생산성이 부족한 자본부분의 추가적투하가 증대하여 그 작용이 최초의 투자들의 초과생산성을 상쇄하고 투하총자본의 생산성이 토지 A에서의 자본의 생산성과 동등하게 되며 따라서 토지 B에서의 1쿼터당 개별적평균가격이 토지 A에서의 1쿼터당 개별적평균가격과 동등하게 되는 때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대는 없어질것이지만 1쿼터당 3파운드라는 규제적생산가격은 변하지 않을것이다. 다만 이 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생산가격은 추가자본의 부족생산성의 정도의 증대의 결과로든 동일한 부족생산성을 가진 추가자본의 크기의 증대의 결과로든 상승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례컨대 상기 265페지①의 표에 있어서 1쿼터당 4파운드로 동일한 토지에서 $1\frac{1}{2}$쿼터가 아니라 $2\frac{1}{2}$쿼터가 생산된다고 하면 전체로서는 22파운드의 생산비로 7쿼터를 얻게 될것이다. 1쿼터의 비용은 $3\frac{1}{7}$파운드로 될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생산가격보다 $\frac{1}{7}$파운드 높게 되며 일반적생산가격은 상승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① 본권 827페지를 보라.—편집자

그리하여 가장 좋은 토지에서의 1쿼터당 개별적평균가격이 일반적생산가격과 동등하게 될 때까지는 즉 전자를 넘는 후자의 초과분이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초과리윤 및 지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때까지는 아직도 오래동안 생산성이 부족한 추가자본 지어는 생산성의 부족이 더욱더 심해지는 추가자본까지도 사용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까지도 보다 좋은 토지들에서의 지대가 없어짐과 함께 보다 좋은 토지들의 생산물의 개별적인 평균가격은 비로소 일반적생산가격과 일치할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생산가격의 상승은 아직 필요하지 않을것이다.

이상의 례에서 보다 좋은 토지 B—이것은 보다 좋은 토지 즉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의 계렬에서 최하급의 토지이지만—에서는 초과생산성을 가진 5파운드의 자본에 의하여 $3\frac{1}{2}$ 쿼터가 생산되고 부족생산성을 가진 10파운드의 자본에 의하여 $2\frac{1}{2}$ 쿼터가 생산되여 도합 6쿼터가 생산되고 따라서 $\frac{5}{12}$ 가 후자들의 부족생산성을 가지고 투하되는 자본부분들에 의하여 생산된다. 그리고 이 점에서 비로소 6쿼터의 개별적평균생산가격은 1쿼터당 3파운드로 상승하고 따라서 일반적생산가격과 일치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의 법칙하에서는 최후의 $2\frac{1}{2}$ 쿼터는 그것이 토지종류 A의 새로운 $2\frac{1}{2}$ 에이커에서 생산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상과 같이 1쿼터당 3파운드로 생산될수는 없을것이다. 추가자본이 이미 일반적생산가격으로밖에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한계를 이룰것이다. 이 한계를 넘으면 동일

한 토지에서의 추가적투자는 정지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즉 차지농업가가 처음 2차의 투자를 위하여 일단 $4\frac{1}{2}$파운드의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면 그는 계속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며 1쿼터를 3파운드보다 비싸게 생산하는 투자는 모든 그에 대하여서는 자기의 리윤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될것이다. 이것은 부족생산성의 경우에는 개별적평균가격의 균등화를 방해하는것이다.

이 경우를 1쿼터당 3파운드라는 토지 A에서의 생산가격이 토지 B에서의 가격을 조절하는 앞의 례에서 들어보자.

자본 (파운드)	리윤 (파운드)	생산비 (파운드)	수익 (쿼터)	1쿼터당 생산비 (파운드)	판매가격		초과 리윤 (파운드)	손실 (파운드)
					1쿼터당 (파운드)	합계 (파운드)		
$2\frac{1}{2}$	$\frac{1}{2}$	3	2	$1\frac{1}{2}$	3	6	3	—
$2\frac{1}{2}$	$\frac{1}{2}$	3	$1\frac{1}{2}$	2	3	$4\frac{1}{2}$	$1\frac{1}{2}$	—
5	1	6	$1\frac{1}{2}$	4	3	$4\frac{1}{2}$	—	$1\frac{1}{2}$
5	1	6	1	6	3	3	—	3
15	3	18	—	—	—	18	$4\frac{1}{2}$	$4\frac{1}{2}$

처음 2차의 투자에 대한 $3\frac{1}{2}$쿼터의 생산비는 차지농업가에게는 역시 1쿼터당 3파운드이다. 왜냐하면 그는 $4\frac{1}{2}$파운드의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의 개별적생산가격과 일반적생산가격간의 차액은 그의 호주머니로 들어오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처음 2차의 투자의 생산물가격의 초과분은 제3차 및 제4차 투자에 있어서의

결손을 상쇄하는데 복무할수는 없을것이다.

제3차 투자로부터의 $1\frac{1}{2}$쿼터는 차지농업가에게는 리윤을 포함하여 6파운드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그는 규제적가격이 1쿼터당 3파운드인 경우에는 그것을 $4\frac{1}{2}$파운드로밖에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전체 리윤을 잃을뿐만아니라 그우에 $\frac{1}{2}$파운드 즉 투하자본 5파운드의 10%를 더 잃을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리윤 및 자본에 있어서의 손실은 제3차 투자에 있어서는 $1\frac{1}{2}$파운드, 제4차 투자에 있어서는 3파운드, 도합 $4\frac{1}{2}$파운드일것이며 이것은 바로 보다 유리한 투자들에 있어서의 지대액과 동일할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유리한 투자들에 있어서의 개별적생산가격은 토지 B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에 그 평균화요소로서 들어갈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 초과분은 지대로서 제삼자에게 계속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만약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추가적인 $1\frac{1}{2}$쿼터를 제3차의 투자에 의하여 생산하는것이 필요하다면 규제적시장가격은 1쿼터당 4파운드로 상승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렇게 규제적시장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토지 B에서의 제1차 투자와 제2차 투자에 대한 지대는 증가될것이고 또 토지 A에서는 지대가 형성될것이다.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다만 초과리윤의 지대로의 형태적 전화에 불과하고 토지소유는 이 경우에 소유자로 하여금 초과리윤을 차지농업가로부터 자기의 수중으로 이전시킬수 있

게 할따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것을 보게 된다. 즉 동일한 토지면적에서의 순차적투자,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동일한 토지면적에 투하된 자본의 증가는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규제적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빨리 그 한계에 부닥친다는것, 실제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의 결과로서의 초과리윤의 지대로의 단순한 형태적전화에 의하여 많든적든 하나의 인위적인 제한에 부닥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보다도 협소한 한계내에서 필요하게 되는 일반적생산가격의 상승이 여기서는 차액지대의 증대의 원인으로 될뿐만아니라 지대로서의 차액지대의 존재가 동시에 필요하게 된 증가생산물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생산가격이 더 빨리 더 급속히 상승하게 되는 원인으로 된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토지 B에서의 자본의 추가로 말미암아 규제적가격이 앞의 례에서와 같이 4파운드로 상승할수 없는 경우는 토지 A가 제2차 투자에 의하여 추가생산물을 4파운드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일것이다. 또는 A보다도 나쁜 새로운 토지가 경쟁에 참가하게 되고 그 생산가격이 3파운드보다 높으나 4파운드보다는 낮은 경우일것이다. 요컨대 차액지대 Ⅰ과 차액지대 Ⅱ는 전자는 후자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서로 한계를 이루는것이며 그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에서의 순차적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토지에서의 병행적투자가 필요하게 되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경우, 례컨대 보다 좋은 토지가 계렬에 들어서는 경우에도 차액지대 Ⅰ과 Ⅱ는 서로 한계로서 작용한다.

제 44 장

차액지대는 가장 나쁜 경작지에서도 생긴다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공급은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에서의 생산성이 부족한 순차적투자에 의하여서이든가 또는 토지 A에서의 동일하게 생산성이 감소되는 추가적투자에 의해서이든가 또는 A보다도 나쁜 질의 새로운 토지에서의 투자에 의해서든가 그 어느 하나에 의해서 충족시킬수밖에 없다고 하자.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들의 대표로서 토지 B를 들자.

토지 B에서의 1쿼터(이것은 여기에서는 100만쿼터라고 하여도 좋으며 또는 각 1에이커는 100만에이커라고 하여도 좋다)의 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투자는 시장가격이 종래의 1쿼터당 3파운드라는 규제적생산가격보다 높이 오를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 경우에는 C와 D 등등 최고의 지대를 제공하는 토지종류들에서도 또한 추가생산물이 생길수 있으나 그 초과생산력은 감퇴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B에서의 그 1쿼터가 필요한것으로서 전제되고있다. 만약 이 1쿼터가 토지 B에서의 추가자본에 의하여 례컨대 토지 A에서의 동등한 추가자본에

의한것보다 렴가로 생산될수 있다면 또는 레컨대 토지 A에서의 추가자본에 의하여서도 1쿼터당 $3\frac{3}{4}$파운드로 생산할수 있는데 1쿼터를 4파운드로써밖에는 생산할수 없는 토지 A_{-1}에 하강하는것보다 렴가로 생산할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토지 B에서의 추가자본이 시장가격을 규제하게 될것이다.

토지 A는 이전과 같이 1쿼터를 3파운드로 생산한다고 하자. 토지 B도 또한 이전과 같이 도합 $3\frac{1}{2}$쿼터를 도합 6파운드의 개별적생산가격으로 생산한다고 하자. 이제 또 1쿼터를 새로 생산하기 위하여 토지 B에서는 4파운드의 생산비(리윤을 포함하여)의 추가가 필요한데 토지 A에서는 그것이 $3\frac{3}{4}$파운드로 생산될수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토지 A에서 생산되는것이지 토지 B에서는 생산되지 않을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그것이 토지 B에서는 $3\frac{1}{2}$파운드의 추가적생산비로 생산될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3\frac{1}{2}$파운드가 총생산에 있어서 규제적가격으로 될것이다. 그러면 토지 B는 금후에는 자기의 생산물 $4\frac{1}{2}$쿼터를 $15\frac{3}{4}$파운드로 판매할것이다. 그중 최초의 $3\frac{1}{2}$쿼터의 생산비로서 6파운드, 최후의 1쿼터의 생산비로서 $3\frac{1}{2}$파운드, 합계 $9\frac{1}{2}$파운드가 있을것이다. 남아서 지대로 된 초과리윤은 이전에는 다만 $4\frac{1}{2}$파운드였으나 지금은 $6\frac{1}{4}$파운드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 A의 1에이

커도 $\frac{1}{2}$파운드의 지대를 가져올것이다. 그러나 가장 나쁜 토지 A가 아니라 보다 좋은 토지 B가 $3\frac{1}{2}$파운드라는 생산가격을 규제할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가정되여있다. 즉 이전부터 경작되고있는 토지와 동일하게 위치가 좋고 토지 A와 질이 같은 새로운 토지를 리용할수 없어서 기경지 A에 제2차 투자를—이전보다 생산비가 더 큰 투자를—하든가 또는 A보다 나쁜 토지 A_{-1}을 경작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이다. 련속적투자에 의하여 차액지대 Ⅱ가 실현된다면 생산가격의 등귀의 한계는 보다 좋은 토지에 의하여 규제될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액지대 Ⅰ의 기초인 가장 나쁜 토지도 또한 지대를 가져올수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때에는 단순한 차액지대의 경우에도 모든 경작지가 지대를 가져올것이다. 그 경우에 다음과 같은 두개 표를 얻게 될것이다. 이 표들에서 생산비라는것은 선대자본에 20%의 리윤을 합한것이고 따라서 매 $2\frac{1}{2}$파운드의 자본에 대하여 $\frac{1}{2}$파운드의 리윤이고 합계하면 3파운드이다.

토지 종류	에이커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화폐수익 (파운드)	곡물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A	1	3	1	3	3	0	0
B	1	6	$3\frac{1}{2}$	3	$10\frac{1}{2}$	$1\frac{1}{2}$	$4\frac{1}{2}$
C	1	6	$5\frac{1}{2}$	3	$16\frac{1}{2}$	$3\frac{1}{2}$	$10\frac{1}{2}$
D	1	6	$7\frac{1}{2}$	3	$22\frac{1}{2}$	$5\frac{1}{2}$	$16\frac{1}{2}$
합계	4	21	$17\frac{1}{2}$	—	$52\frac{1}{2}$	$10\frac{1}{2}$	$31\frac{1}{2}$

이것은 1쿼터밖에 가져오지 않는 $3\frac{1}{2}$파운드의 새로운 투자가 토지 B에서 실시되기 이전의 사태이다. 이 투자가 실시된후의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토지 종류	에이커	생산비 (파운드)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화폐수익 (파운드)	곡물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A	1	3	1	$3\frac{1}{2}$	$3\frac{1}{2}$	$\frac{1}{7}$	$\frac{1}{2}$
B	1	$9\frac{1}{2}$	$4\frac{1}{2}$	$3\frac{1}{2}$	$15\frac{3}{4}$	$1\frac{11}{14}$	$6\frac{1}{4}$
C	1	6	$5\frac{1}{2}$	$3\frac{1}{2}$	$19\frac{1}{4}$	$3\frac{11}{14}$	$13\frac{1}{4}$
D	1	6	$7\frac{1}{2}$	$3\frac{1}{2}$	$26\frac{1}{4}$	$5\frac{11}{14}$	$20\frac{1}{4}$
합계	4	$24\frac{1}{2}$	$18\frac{1}{2}$	—	$64\frac{3}{4}$	$11\frac{1}{2}$	$40\frac{1}{4}$

{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되고있지는 않다. 토지 B의 차지농업가에게 있어서 이 $4\frac{1}{2}$쿼터에는 첫째로, 생산설비로서 $9\frac{1}{2}$파운드, 둘째로, 지대로서 $4\frac{1}{2}$파운드, 도합 14파운드가 들며 1쿼터당 평균은 $3\frac{1}{2}$파운드이다. 이렇게 되여 그의 총생산의 이 평균가격이 규제적시장가격으로 된다. 그러므로 A의 지대는 $\frac{1}{2}$파운드가 아니라 $\frac{1}{9}$파운드로 되고, 토지 B의 지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4\frac{1}{2}$파운드로 될것이다. 즉 1쿼터당 $3\frac{1}{9}$파운드씩 $4\frac{1}{2}$쿼터이면 14파운드로 되고 거기에서 $9\frac{1}{2}$파운드의 생산비를 공제하면 $4\frac{1}{2}$파운드가 초과리윤

으로서 남을것이다. 그리하여 수자는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더라도 이 례는 이미 지대를 가져오는 보다 좋은 토지가 차액지대 II를 매개로 하여 가격을 규제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지대를 가져오지 않던 토지도 포함한 **일체**의 토지가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로 전화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F. 엥겔스}

곡물의 규제적생산가격이 상승하면 즉 규제적토지에서의 곡물 1쿼터당 생산가격이 상승하든가 또는 토지종류들의 하나에서의 규제적투자가 증대하면 곡물지대는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마치도 모든 토지종류들의 비옥도가 저하되고 모든 토지가 례컨대 $2\frac{1}{2}$파운드의 새로운 투자로써 1쿼터가 아니라 $\frac{5}{7}$쿼터밖에는 생산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러한 토지들이 동일한 투자로써 보다 많이 생산하는 곡물은 초과리윤 따라서 지대를 표시하는 초과생산물로 전화된다. 리윤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차지농업가는 자기의 리윤으로써 이전보다 적은 곡물밖에 살수 없다. 리윤률이 의연히 동일할수 있는것은 로임이 오르지 않는 경우인데 로임이 오르지 않는것은 로임이 육체적최저한으로, 따라서 로동력의 정상적인 가치 이하로 인하되기때문이든가, 또는 제조공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로동자들의 기타 소비대상이 비교적 저렴하게 되였기때문이든가, 또한 로동일이 연장 또는 강화되고 따라서 비농업적생산부문들에서의 리윤률, 그러나 농업리윤을 규제하는 그 리윤률이 비록 증대하지는 않더라도 전과 변함이 없기때문이든가, 또는 농업에서는 동일한 량의 자본이 투하되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불변자본과 보다 적은

가변자본이 투하되기때문이든가 할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것은 종래에 가장 나쁜 토지였던 A에서 그보다 더 나쁜 토지가 경작권내에 인입함이 없이 지대의 발생이 가능하게 되는 첫째 방식이다. 즉 이 지대는 토지 A의 종래로 규제적이던 개별적생산가격과 최후의 추가자본이 보다 좋은 토지에서 부족생산력을 가지고 필요한 추가생산물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다 높은 생산가격과의 차액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다.

만약 1쿼터를 4파운드로써밖에는 제공할수 없는 토지 A_{-1}에 의하여 추가생산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면 토지 A에서의 1에이커당 지대는 1파운드로 오를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A_{-1}이 가장 나쁜 경작지로서 A 대신에 들어설것이며 A는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의 계렬에 최저급의 일원으로 들어갈것이다. 차액지대 Ⅰ은 변동될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동일한 토지에서의 련속적투자의 생산성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차액지대 Ⅱ의 고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밖에도 또 2중의 방식으로 차액지대는 토지 A에서 발생할수 있다.

첫째로는 가격—어떤 가격이든 종전의 가격에 비하여 저락한 가격이라도 상관없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적투자가 초과생산성을 낳는 경우이다. 이것은 분명히 일정한 한계까지는 바로 가장 나쁜 토지에서 언제나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둘째로는 이와 반대로 토지 A에서의 순차적투자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에나 수요의 상태가 생산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차액지대의 견지에서 보면 앞에서 서술한 법칙 즉 총생산(또는 총투하자본)에 대하여 계산된 1쿼터당 개별적평균생산가격이 언제나 규정적이라는 법칙과 관련하여 하나의 특수한 곤난이 나타난다. 그러나 토지 A에 있어서는 보다 좋은 토지종류들에 있어서와는 달라서 새로운 투자들에 있어서 개별적생산가격과 일반적생산가격과의 균등화를 제한하는 생산가격이 외부로부터 주어져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A에서의 개별적생산가격이 바로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일반적생산가격이기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1. **순차적투자들의 생산력이 제고되는 경우에는** 토지 A의 1에이커에서 6파운드의 생산비에 상응하는 5파운드의 자본선대로써 2쿼터가 아니라 3쿼터가 생산될수 있다. $2\frac{1}{2}$파운드의 제1차 투자는 1쿼터를 제공하고 그 제2차 투자는 2쿼터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6파운드의 생산비로 3쿼터가 제공되며 따라서 1쿼터의 비용은 평균 2파운드로 된다. 그리하여 3쿼터가 1쿼터당 2파운드로 판매된다면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다만 차액지대 Ⅱ의 기초가 달라질뿐이다. 3파운드 대신에 2파운드가 규제적생산가격으로 된것이다. $2\frac{1}{2}$파운드의 자본이 이제는 가장 나쁜 토지에서 평균 1쿼터가 아니라 $1\frac{1}{2}$쿼터를 생산하며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2\frac{1}{2}$파운드를 투자한 경우의 모든 보다 좋은 질의 토지들에 있어서의 공인된 비옥도이다. 이러한 토지들의 종래의 초과생산물의 일부분은 이때로부터 이 토지들의 필요생산물의 형성에 참가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토지들의 초과리윤의 일부분이 평

균리윤의 형성에 참가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보다 좋은 토지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생산가격이 투자의 한계로서 주어져있기때문에 평균계산에 의하여 절대적초과분이 조금도 변동되지 않는데 그러한 토지들에서와 같이 계산을 한다면 제1차 투자의 1쿼터의 비용은 3파운드이며 제2차 투자의 2쿼터의 비용은 1쿼터당 $1\frac{1}{2}$파운드밖에 안된다. 그리하여 토지 A에서는 1쿼터의 곡물지대와 3파운드의 화폐지대가 생기게 될것이나 이 3쿼터는 이전의 가격으로 도합 9파운드로 판매될것이다. 만약 $2\frac{1}{2}$파운드의 제3차 투자가 제2차 투자와 동등한 생산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이제는 9파운드의 생산비로써 도합 5쿼터가 생산될것이다. 만약 A의 개별적인 평균생산가격이 의연히 규제적인것이라면 이제는 1쿼터가 $1\frac{4}{5}$파운드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평균가격은 다시 저하될것이지만 그것은 제3차 투자의 생산성이 새로 제고되였기때문이 아니라 다만 제2차 투자와 동일한 추가적생산성을 가진 새로운 투자가 추가되였기때문이다. 토지 A에서 수행되는 순차적투자의 생산성은 이전보다 높으나 이제는 불변인데 이 투자는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들에서와 같이 지대를 높이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생산가격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또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토지종류들에서의 차액지대를 비례적으로 저하시킬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3파운드의 생산비로 1쿼터를 생산하는 제1차 투자가 그 자체로서 의연히 표준적인것이라면 5쿼터는 15파운드로 판매되고 토지 A에서의 그후의 투자들의 차액지대는 6파운드로 될것이다. 토지 A의 1에이커에 대한 증가자

본의 추가는 어떤 형태로 수행되든간에 이 경우에는 하나의 개량일것이다. 그리고 추가자본은 최초의 자본부분을 보다 생산적인것으로 만들것이다. 자본의 $\frac{1}{3}$이 1쿼터를 생산하고 나머지 $\frac{2}{3}$가 4쿼터를 생산한다고 말하는것은 무의미할것이다. 1에이커당 9파운드는 언제나 5쿼터를 생산할것이고 3파운드이면 1쿼터밖에 생산하지 못할것이다. 이 경우에 지대, 초과리윤이 발생하는가 안하는가는 전적으로 그때의 사정에 달려있을것이다. 통례로는 규제적생산가격이 저하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할것이다. 즉 개량된 그러나 보다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경작이 토지 A에서 실시되는것은 다만 그것이 보다 좋은 토지들에서도 실시되기 —농업에서 일반적혁명이 일어나기—때문에만 실시되는 경우가 그것인데 따라서 이제 토지 A의 자연적비옥도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토지 A가 3파운드가 아니라 6파운드 또는 9파운드로 경작된다고 가정될것이다. 이러한것은 이 나라의 공급의 대량을 제공하는 토지 A의 기경지면적수의 대부분이 이 새로운 방법으로 경작되는 경우에 특히 적용될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량이 우선 A의 토지면적의 적은 부분에만 미친다면 이보다 잘 경작된 부분은 초과리윤을 제공할것이고 그것을 토지소유자는 재빨리 전부 또는 일부분 지대로 전화시키고 지대로서 고착시키려고 할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수요가 공급의 증가와 보조를 맞춘다면 토지 A의 전면적에 점차 새로운 경작방법이 리용되게 됨에 따라 A종의 모든 토지에서 순차적으로 지대가 형성되고 초과생산성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 몰수될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토지 A의 생

산가격이 투자가 증가된 경우의 토지 A의 생산물의 평균가격에 평균화되는것은 이 증가된 투자의 초과리윤이 지대의 형태로 고착되는데 의하여 방해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또다시 우리가 이전에 보다 좋은 토지들에서 추가자본의 생산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본바와 같이 생산가격을 높이는것은 초과리윤의 지대로의 전화 즉 토지소유의 개입이고 차액지대는 다만 개별적생산가격과 일반적생산가격과의 차액의 결과일뿐인것은 아닐것이다. 토지소유의 개입은 토지 A에 있어서는 토지 A의 평균생산가격에 의한 생산가격의 규제를 방해할것이기때문에 개별적생산가격과 일반적생산가격과의 일치를 방해할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필요한 생산가격보다도 높은 생산가격을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대를 조성할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곡물수입이 진행되는 경우에까지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또는 존속될수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차지농업가들은 외부로부터 규정되는 생산가격으로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곡물경작에서 경쟁할수 있는 토지를 부득이 다른 용도로 례컨대 목장으로 돌리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지대를 가져오는 토지만이 즉 외부로부터 규정되는 생산가격보다 낮은 1쿼터당 개별적평균생산가격으로 생산하는 토지만이 곡물경작에 돌려지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총적으로 이 경우에는 생산가격은 저하되나 그 평균가격의 수준까지는 저하되지 않고 그보다 높을것이기는 하겠지만 최렬등경작지 A의 생산가격보다도 낮을것이고 따라서 A종의 새로운 토지의 경쟁은 제한될것이라고 인정할수 있을것이다.

2. **추가자본들의 생산력이 감소되는 경우.** 토지 A_{-1}은 추가적1쿼터를 4파운드로만 생산할수 있는데 토지 A는 $3\frac{3}{4}$파운

드로 즉 A_{-1}보다 저렴하나 A의 제1차 투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1쿼터보다는 $\frac{3}{4}$파운드 비싸게 생산할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A에서 생산되는 2쿼터의 총가격은 $6\frac{3}{4}$파운드일것이며 따라서 1쿼터당 평균가격은 $3\frac{3}{8}$파운드일것이다. 생산가격은 높아질것이나 $\frac{3}{8}$파운드만 높아질것인데 만일 추가자본이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여 이 토지가 $3\frac{3}{4}$파운드로 1쿼터를 생산한다면 생산가격은 다시 $\frac{3}{8}$파운드 상승하여 $3\frac{3}{4}$파운드로 되며 따라서 다른 모든 차액지대의 비례적상승을 일으킬것이다.

그리하여 토지 A의 1쿼터당 $3\frac{3}{8}$파운드라는 생산가격은 투자가 증가되는 경우의 토지 A의 평균생산가격으로 평균화되여 규제적인것으로 될것이다. 따라서 토지 A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 토지는 초과리윤을 가져오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제2차 투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이 1쿼터가 $3\frac{3}{4}$파운드로 판매되게 된다면 이제는 토지 A는 $\frac{3}{4}$파운드의 지대를 낳을것인데 그것도 아무런 추가적투자도 실시되지 않고 여전히 3파운드로 1쿼터를 생산하는 A의 매 1에이커에서도 그러할것이다. A의 미경지가 아직 존재하는 한 가격은 일시적으로만 $3\frac{3}{4}$파운드로 상승할수 있을뿐이다. A의 새로운 토지의 경쟁은 그의 유리한 위치에 의하여 1쿼터를 $3\frac{3}{4}$파운

드보다 저렴하게 생산할수 있는 A의 모든 토지가 다 리용될 때까지 생산가격을 3파운드로 유지할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1에이커의 토지라도 지대를 가져온다면 다른 어떤 1에이커도 지대없이는 차지농업가에게 맡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이 가정할수 있을것이다.

생산가격이 평균가격으로 평균화되는가 또는 제2차 투자의 개별적생산가격 $3\frac{3}{4}$파운드가 규제적인것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역시 또 현존하는 토지 A에서의 제2차 투자의 일반화정도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 $3\frac{1}{4}$파운드가 규제적인것으로 되는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 1쿼터당 $3\frac{3}{4}$파운드의 가격으로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얻어지는 초과리윤을 지대로서 고정시키기 위한 시간이 얻어지는 경우뿐이다.

순차적인 투자가 실시되는 경우의 토지의 생산성의 감소에 관하여는 리비히의 저서[329]를 참조할수 있을것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투자들의 초과생산력의 순차적감소는 생산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언제나 1에이커당의 지대를 증가시키며 또 생산가격이 저락하는 경우에까지도 증가시킬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즉 이전에는 지불되지 않던것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언제나 그 생산물의 상대적인 등귀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에 소비된 자본의 보상으로서는 다만 일정한 생산수단으로 표시되는 가치의 보상만을 생각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아무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고 요인으로서 생산에 참가하는 자연요소들은 그것들이 생산에 어떠한 역할을 놀든간에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생산에 참가하는것은 아니고 자본의 무상자연력으로서 즉 로동의 무상자연생산력으로서 생산에 참가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로동의 무상자연생산력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원래는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 이러한 자연력이 생산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도움에 의하여 제공되는 생산물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동안은 그것은 가격의 결정에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발전행정에서 이 자연력의 도움에 의하여 생산될수 있는것보다 많은 생산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면 즉 이 추가적생산물이 이 자연력의 도움을 받음이 없이 또는 인간의 조력, 인간로동의 협력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면 하나의 새로운 추가적요소가 자본에 들어간다. 따라서 동일한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자본이 투하되게 된다. 다른 모든 사정들이 동등하다면 생산의 등귀가 일어난다.

{《1876년 2월중순부터 집필》이라는 노트에서[330]}

차액지대와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단순한 리자로서의 지대.

이른바 항구적개량—이것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조작들에 의하여 토지의 물리적성질을 변경시키며 부분적으로는 또한 화학적성질도 변경시키는것인데 토지에의 자본의 합체로 볼수 있다—이라는것은 그 거의 전부가 어떤 일정한 토지부분에 즉 어떤 일정한 국한된 장소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

른 장소에 있는 토지, 또 때로는 곧 그 곁에 있는 다른 토지가 천연적으로 가지고있는 성질들을 부여한다는것으로 귀착된다. 어떤 토지는 천연적으로 평탄하게 되여있는데 다른 토지는 평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토지는 천연적인 배수로가 있는데 다른 토지는 인공배수가 필요하다. 어떤 토지는 천연적으로 두터운 부식토를 가지고있는데 다른 토지에서는 그것을 인공적으로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점토질토양에는 천연적으로 적량의 모래가 섞여있는데 다른 토지에서는 인공적으로 이 적당한 비률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초지는 천연적으로 관개되거나 또는 습기있는 토층으로 덮이여있는데 다른 목초지는 로동에 의하여 또는 자산계급적경제학의 용어로 말하면 자본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인 우월성들이 인공적으로 획득되고있는 토지에서는 지대는 리자이지만 그 우월성들을 천연적으로 갖추고있는 다른 토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것은 참 우스운 리론이다.① (그런데 실지는 일방의 경우에는 지대가 현실적으로 리자와 일치하기때문에 실지로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도 지대는 리자라고 불리우며 리자라고 둘러맞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문제는 외곡되여간다.) 그러나 투자가 실시된후에 토지가 지대를 가져오게 되는것은 자본이 그 토지에 투하되였기때문이 아니라 투자가 그 토지를 이전에 비하여 보다 생산적인 투하장소로 만들었기때문이다. 가령 한 나라의 모든 토지에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 투자를 받지 않은 매개 토지는 이제부터 이 단계를

① 본권 701~702페지를 보라.—편집자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미 투자를 받은 토지가 가져오는 지대(주어진 경우에 이 토지가 가져오는 리자)는 바로 이 토지가 천연적으로 이러한 우월성을 가지고있고 다른 토지는 이제부터 인공적으로 그 우월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차액지대인것이다.

리자로 귀착되는 이러한 지대도 투하된 자본이 상각되면 순수한 차액지대로 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본이 자본으로서 이중으로 존재하는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가장 우스운 현상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것이다. 즉 오직 로동에 의한 가치규정을 공격하는 리카도의 반대자들[331]은 모두 토지들의 차이에서 나오는 차액지대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로동이 아니라 자연이 가치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이 규정을 위치에 의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경작에 있어서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리자에 의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것이다. 어떤 주어진 시간에 만들어지는 생산물에 대하여 말하면 동일한 로동은 동일한 가치를 낳는다. 그러나 이 생산물의 크기 또는 량 따라서 또 이 생산물을 등분한 각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부분도 로동의 량이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오직 생산물의 량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며 생산물의 량은 또한 주어진 로동량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고 이 로동량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이 생산성이 자연에 기인하는가 또는 사회인가 하는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것이다. 이 생산성 자체가 로동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그것은 생산비를 새로운 구성부분만큼 증가시키는것이고 단순한 자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것이다.

제 45 장

절대지대

차액지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가장 나쁜 토지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지대를 지불하는 토지는 다만 그 생산물에 있어서는 개별적생산가격이 시장규제적생산가격보다 낮고 따라서 거기서 지대로 전화하는 초과리윤이 생기는 토지뿐이라는것이다. 우선 지적하여야 할것은 차액지대 자체의 법칙은 이 전제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것이다.

일반적인 시장규제적생산가격을 P라고 한다면 P는 제일 나쁜 토지 A의 생산물에 있어서는 그 개별적생산가격과 일치된다. 즉 이 가격은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 및 가변자본 플라스 평균리윤(=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을 보상한다.

지대는 이 경우에는 령이다. 보다 좋은 종류의 토지 B의 개별적생산가격은 P′이고 P>P′이다. 즉 P는 B등급의 토지의 생산물의 현실적생산가격보다 많은것을 보상한다. 이제 P-P′=d라고 하자. 따라서 P′를 초과하는 P의 초과분 d는 이 B등급의 토지의 차지농업가가 얻는 초과리윤이다. 이 d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여야 할 지대로 전화한다. 제3등급의 토지

C에 있어서 P″가 현실적생산가격이고 P-P″=2d라고 하면 이 2d는 지대로 전화한다. 마찬가지로 제4등급의 토지 D에 있어서도 개별적생산가격은 P‴이고 P-P‴=3d라고 하면 이것이 지대로 전화한다 등등. 이제 A등급의 토지에 있어서 지대는 0이고 따라서 그 생산물의 가격은 P+0이라는 전제가 그릇된것이라고 하자. 반대로 토지 A도 지대 r를 지불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로, A등급의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그 생산가격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고 그것을 넘는 초과분을 포함하며 P+r일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상적상태에 있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전제로 하면 즉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초과분 r가 로임으로부터의 공제도 자본의 평균리윤으로부터의 공제도 표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전제로 하면 차지농업가가 이 r를 지불할수 있는것은 다만 그의 생산물이 생산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따라서 만약 그가 이 초과분을 지대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좋다면 그것은 그에게 초과리윤을 줄것이라는것에 의하여서만이다. 그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모든 종류의 토지의 총생산물의 규제적시장가격은 자본일반이 모든 생산분야에서 낳는 생산가격 즉 비용 플라스 평균리윤과 같은 가격이 아니라 생산가격 플라스 지대 즉 P+r이고 P는 아닐것이다. 왜냐하면 A등급의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규제적인 일반적시장가격의 한계 즉 총생산물이 제공될수 있는 가격의 한계를 표현하는것이고 그 한에 있어서 이 총생산물의 가격을 조절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 경우에 토지생산물의 일반적가격은 본질적으로 수정된다 하더라도 차액지대의 법칙은 결코 이것으로 하여 폐기되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A등급의 생산물의

가격 따라서 또한 일반적시장가격이 P+r라고 하면 B, C, D 등등 등급의 가격도 역시 P+r일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B등급에 있어서는 P-P′=d이기때문에 (P+r)-(P′+r)도 역시 d일것이고 또 C에 있어서는 P-P″=(P+r)-(P″+r)=2d일것이며 마지막으로 D에 있어서는 P-P‴=(P+r)-(P‴+r)=3d일것이다 등등. 그리하여 비록 지대는 이 법칙과는 관계없은 한 요소를 포함하며 토지생산물의 가격과 동시에 일반적인 증가분을 가져올것이지만 차액지대는 여전히 동일한것이고 동일한 법칙에 의하여 규제될것이다. 그러므로 비옥도가 가장 낮은 종류의 토지의 지대가 어떻든간에 차액지대의 법칙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을뿐만아니라 차액지대 자체를 그 성격과 합치하게 파악하는 유일한 방식은 A등급의 토지의 지대를 령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즉 A의 지대가 령인가 또는 령보다 큰가 하는것은 차액지대가 고찰되는 한 아무래도 좋고 사실상 고려에 넣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차액지대의 법칙은 이하의 연구결과와는 관계가 없는것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제일 나쁜 토지 A의 생산물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대답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다. 토지생산물 례컨대 곡물의 시장가격이 어떤 수준에 달하여 A등급의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추가적선대가 보통의 생산가격을 지불하게 되였다면 따라서 자본을 위하여 보통의 평균리윤을 가져오게 되였다면 이 조건은 A등급의 토지에서의 추가자본의 투하를 위하여 충분하다. 즉 이 조건은 자본가에 있어서 새로운 자본을 보통의 리윤으로 투하하고 정상적방식으로 증식하는데 충분하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것은 이 경우에도 시장가격은 A의

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공급이 조성되면 분명히 수요공급관계는 변화되기때문이다. 이전에는 공급이 부족하였는데 지금은 공급이 충분하다. 따라서 가격은 저락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이 저락될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미 A의 생산가격보다 높은것이 되여있어야 한다. 그런데 새로 경작되게 된 A등급의 토지의 비옥도가 보다 낮다는 성질때문에, 가격은, B등급의 생산가격이 시장을 규제하고있던 때와 같이 낮게는 저락되지 않는다. 토지 A의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상승에 있어서의 한계를 이룬다.—이와는 반대로 만일 새로 경작되게 된 토지가 지금까지 규제적이던 A등급의 토지보다 비옥하지만 그러나 추가적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뿐이라면 시장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최하급의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가 어떤가 하는데 대한 연구는 이 경우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연구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토지등급 A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시장가격이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에게 있어서는 이 가격으로 바로 소비자본 플라스 평균리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으로써 즉 간단히 말하면 시장가격이 그에게 그의 상품의 생산가격을 제공한다는것으로써 설명될것이기때문이다.

여하튼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는 그가 자본가로서 결정권을 가지는 한 이러한 제 조건하에서 A등급의 토지를 경작할수 있다. 토지종류 A에서 자본이 정상적으로 증식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는 차지농업가는 비록 지대는 지불할수 없다 하더라도 자본증식의 평균적인 상태에 적합하게 자본을 토지종류 A에 투하할수 있으리라는 전제로부터는 A등급에 속하는 이 토지가 곧바로 무조건적으로 차지농업가의

자유처분으로 맡겨지게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차지농업가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자본을 보통의 리윤으로 증식시킬수 있다는 사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토지를 차지농업가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 사업상 친구에게 자선적으로 무상신용을 줄만한 리유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는 토지소유의 추상을, 토지소유의 폐지를 의미하는데 이 토지소유의 존재야말로 바로 토지에로의 자본의 투하에 대한, 그리고 토지에서의 자본의 임의의 증식에 대한 제한을 이루는것이다.—이 제한은 차지농업가가 단순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즉 만약 자기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즉 만약 그가 실지로 토지소유를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취급할수 있다면 곡물가격의 수준은 토지종류 A의 리용에 의하여 자기의 자본으로부터 보통의 리윤을 끌어낼수 있게 할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소유의 독점, 자본의 제한으로서의 토지소유는 차액지대에 있어서는 전제로 되고있다. 왜냐하면 이 토지소유가 없이는 초과리윤은 지대로 전화되지 않을것이며 차지농업가의것으로 되고 토지소유자의것으로 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한으로서의 토지소유는 차액지대로서의 지대가 없는 곳에서도 즉 토지종류 A에서도 의연히 존속한다. 자본주의적생산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지대를 지불하지 않아도 토지에 대한 투자가 실시될수 있는 경우들을 고찰한다면 거기에서 발견할수 있는것은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토지소유의 비록 법률적폐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폐지를 포함하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폐지는 다만 아주 특정적인 그 성질상 우연적인 제 사정하에서만 일어날수 있는것이다.

첫째, 토지소유자 자신이 자본가이든가 또는 자본가 자신

이 토지소유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토지종류 A인 토지에서 생산가격을 즉 자본의 보상 플라스 평균리윤을 끌어내는데 충분할만큼 시장가격이 상승한다면 그는 자기의 토지를 **스스로 경작할**수 있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토지소유가 그의 자본투하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이루지 않기때문이다. 그는 토지를 단순한 자연요소로서 취급할수 있고 따라서 오로지 자기 자본의 증식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서만 즉 자본주의적고려에 의하여서만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실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례외적으로만 있을뿐이다. 토지의 자본주의적경작은 기능자본과 토지소유와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데 그것과 전적으로 마찬가지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자신에 의한 경영을 배제한다. 이러한 경우가 완전히 우연적이라는것은 곧 알수 있다. 만약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자기 경영을 하는 소유자들의 수중에 있는것보다 더 넓은 면적의 토지종류 A를 경작하는것이 필요하게 된다면, 즉 대체로 경작이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토지종류 A의 일부분이 임대되지 않으면 안되다면 토지소유가 자본의 투하에 대하여 조성하는 제한의 이러한 가설적페지[①]는 곧 사라진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상응하는 자본과 토지와의 분리,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와의 분리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에는 토지소유가 독립적으로 자본에 대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은 토지의 경작에서 지대를 끌어내지 않을것이라는 범위에 이르기까지 또 그러한 경우에는 어디서나 토지소유자의 자기 경영을 원칙으로서 전제한다는것은 엉터리없는 모순이다(아래에서 나오는 광산지대에 관한 A. 스미스로부터의 인용개소를 보라[②]). 토지소유의 이러한 페

① 초판에는 《견해》로 되여있다. 맑스의 원고에 의하여 고쳤다.—편집자

② 본권 876페지를 보라.—편집자

지는 우연적이다. 그것은 일어날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다.

둘째, 한 임대지를 이루는 복합지중에는 주어진 수준의 시장가격하에서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따라서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되고있는 개별적토지부분들이 있을수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그렇게는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안중에 있는것은 임대한 토지의 총지대이고 그 토지의 개별적구성부분들의 특수한 지대가 아니기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차지농업가에 있어서는 임차지중의 무지대 구성부분이 고찰되는 한 자본투하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토지소유는 사라지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 자신과의 계약에 의하여 사라진다. 그러나 그가 이 토지부분에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것을 다만 그가 이 토지부분들을 부속지로 하고있는 토지에 지대를 지불하기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조합이 전제로 되고 있다. 즉 공급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독립적인 새로운 생산장소로서의 보다 나쁜 토지 A에 의뢰할 필요가 없고 다만 토지 A가 보다 좋은 토지에 끼여있는 불가분적부분을 이룰따름이라는 그러한 조합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바로 A종의 토지부분들이 독립적으로 경작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일반적전제하에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다.

셋째, 차지농업가는 동일한 임차지에 추가자본을 투하하여 얻은 추가생산물이 현재의 시장가격하에서는 그에게 다만 생산가격을 제공하고 그에게 보통리윤을 가져올따름이고 추가적지대를 지불할 가능성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추가자본을 투하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는 토지에 투

하한 자본의 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대를 지불하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문제해결에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것은 다음것을 보면 알수 있다. 즉 만약 시장가격(그리고 동시에 토지의 비옥도)이 그로 하여금 추가자본에 의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게 하며 이 수익이 종래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생산가격외에 초과리윤을 가져온다면 그는 이 초과리윤을 차지계약의 존속중에는 자기 수중에 집어넣는다는것이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차지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은 토지에의 그의 자본의 투하에 대한 토지소유의 제한은 사라져있기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이 초과리윤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렬등지가 독립적으로 개간되고 독립적으로 임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 단순한 사정으로도 종래의 토지에서의 추가자본의 투하로써는 필요한 공급증가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것을 쟁론할 여지없이 증명한다. 일방의 가정은 타방의 가정을 배제한다. 그런데 물론 다음과 같이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가장 나쁜 토지 A의 지대는 소유자 자신이 경작하는(그러나 이러한 일은 순전히 우연적인 례외로서만 있다) 토지와 비교하든 또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추가적투자와 비교하든 그 자체가 차액지대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1)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의 비옥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닌, 따라서 토지종류 A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생산물을 생산가격으로 판매한다는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차액지대일것이다. 그리고 2) 동일한 임차지에서의 추가적투자가 지대를 가져오는가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사정은 새로 경작되여야 할 A등급의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가 지불하지 않는가 하는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상관이 없는것이다. 이것은

마치도 레컨대 어떤 새로운 독립적인 제조기업소의 설립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업부문의 다른 제조업자가 자기의 자본의 일부분을 자기의 사업에서 충분히 증식시킬수 없기때문에 그것을 리자부증권에 투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충분한 리윤은 가져오지 않으나 어쨌든 리자보다는 더 많은것을 가져오는 일련의 개별적확장을 하든가 하는것이 아무래도 좋은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그에 있어서는 부차적인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추가적인 새로운 사업은 평균리윤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며 또 이것을 기대하고 설립되는것이다. 물론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추가적투자와 A종의 새로운 토지의 추가적경작은 호상 제한을 이룬다. 추가자본이 동일한 임차지에서 보다 불리한 생산조건하에서 투하될수 있는 한계는 토지종류 A에서의 경쟁적인 신투자에 의하여 부여된다. 타방으로는 이 토지종류가 가져올수 있는 지대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경쟁적인 추가적투자에 의하여 한계가 그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릇된 구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곡물(이것은 우리의 이 연구에서는 모든 토지생산물을 대표한다)의 시장가격이 충분한 높이에 달하여 토지종류 A의 제 부분들이 경작될수 있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경작지에 투하된 자본이 생산물의 생산가격 즉 자본의 보상 플라스 평균리윤을 끌어낸다고 가정하자. 즉 토지종류 A에서의 자본의 정상적인 증식을 위한 조건들이 현존한다고 가정하자.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그 경우에는 이 자본은 현실적으로 투하될수 있는가? 또 시장가격은 가장 나쁜 토지 A도 지대를 가져올 정도로 상승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즉 토지소유자의 독점은 이 독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순자본주의적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제

한을 자본투하에 부과하는가? 문제제기 자체의 조건들로부터 알수 있듯이 례컨대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다만 평균리윤을 가져올따름인 추가적투자가 종래의 임차지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정은 역시 평균리윤은 가져오나 지대는 가져오지 않는 토지종류 A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자본이 투하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코 해결하는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추가적투자들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것은 새로운 A종류의 토지를 인입할 필요성에 의하여 증명되고있다. 토지 A가 지대를 제공하며 따라서 생산가격보다 많은것을 가져오는 한에서만 토지 A의 추가적경작이 실시된다면 다만 두가지 경우만이 가능하다. 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최후의 추가적투자들까지도 초과리윤을 가져올만큼의 높이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이 초과리윤을 차지하는것이 차지농업가이든 토지소유자이든 관계없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것과 최후의 추가적투자가 이렇게 초과리윤을 가져오는것은 토지 A가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경작될수 없다는것의 결과일것이다. 왜냐하면 경작을 위하여 생산가격만으로, 평균리윤만으로 충분하다면 가격은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것이며 또 새로운 토지가 이 생산가격을 가져오기만 한다면 이미 새로운 토지의 경쟁이 개시될 것이기때문이다. 그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추가적투자들과 토지 A에서의 역시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투자들간에 경쟁이 진행될것이다.—또 하나의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최후의 투자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으나 시장가격은 토지 A가 경작될수 있게 되여 지대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등귀하였다. 이 경우에 지대를 가져오

지 않는 추가적투자가 가능한것은 다만 시장가격이 지대를 가져올수 있게 할 때까지는 토지 A는 경작될수 없기때문일뿐이다. 이 조건이 없다면 토지 A의 경작은 가격수준이 보다 낮은 때에 이미 시작되였을것이다. 그리고 지대없는 보통리윤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높은 시장가격을 필요로 하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그후의 투자들은 실시될수 없었을것이다. 심지어 시장가격이 높아도 이 투자들은 다만 평균리윤만을 가져올따름이다. 따라서 만약 토지 A가 경작되면 그 생산가격으로서 규제적인것으로 될 보다 낮은 시장가격하에서는 이 투자들은 이 리윤을 가져오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이 투자들은 이 전제하에서는 결코 실시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리하여 토지 A의 지대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이 투자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액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러나 A종류의 토지가 이러한 차액지대를 형성한다는것은 다만 이 토지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한 결코 경작될수 없다는것의 결과에 불과하다. 즉 그 자체로서는 결코 토지종류들의 차이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는 이 지대의 필요성이 생기여 그것이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추가자본의 가능한 투하에 대한 제한을 형성한다는것의 결과에 불과하다. 어느 경우에나 토지 A의 지대는 곡물가격의 등귀의 단순한 결과가 아닐것이다. 그런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일 나쁜 토지도 그것이 경작될수 있기 위해서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이야말로 이 조건을 충족할수 있는 점까지 곡물가격을 등귀시키는 원인일것이다.

차액지대에 특유한것은 토지소유가 이 경우에는 다만 토지소유가 없으면 차지농업가가 차지할 초과리윤을, 그리고 일정한 제 사정하에서는 그의 차지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은

실제로 차지농업가가 차지하는 초과리윤을 탈취하는데 불과하다는것이다. 토지소유는 이 경우에는 상품가격중, 토지소유의 조력없이(오히려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생산가격이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로) 생기며 초과리윤으로 되는 부분의 이전—이 가격부분의,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의, 자본가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로의 이전—의 원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토지소유는 이 경우에는 이 가격의 구성부분을 또는 그 전제인 가격등귀를 **조성하는** 원인은 아니다. 다른 한편 만약 제일 나쁜 토지 A—그 경작은 생산가격을 가져올 것이지만—가 이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 즉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이 경작될수 없다면 토지소유는 **이** 가격등귀의 창조적원인이다. **토지소유 자체가 지대를 낳았다.** 상술한 둘째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제 토지 A에 의하여 지불되는 지대가 생산가격을 지불하는데 불과한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최종적인 추가적투자와 비교하여 차액지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사태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 A가 지대를 가져올수 있을만큼의 높이에 규제적시장가격이 상승할 때까지는 토지 A는 경작될수 없다는 사정—오직 이 사정만이 이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최후의 투자에 대하여는 다만 그 생산가격만을 지불하는 점까지, 그러나 동시에 토지 A를 위한 지대를 가져오는 그러한 생산가격을 지불하는 점까지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기때문이다. 토지 A가 여하튼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은 이 경우에는 토지 A와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최후의 투자간의 차액지대를 조성하는 원인인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곡물가격이 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전제하에서—토지종류 A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할 경우에는 우리는 지대를 이 용어의 범주적의미에서의 지대로 리해한다. 만일 차지농업가가 지불하는 차지료가 그의 로동자들의 정상적로임이든 그 자신의 정상적평균리윤이든간에 그것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룬다면 그가 지불하는것은 지대가 아니며 그의 상품의 가격중에서 로임이나 리윤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성부분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부단히 나타나는것이다. 어떤 나라의 농업로동자의 임금이 일반적으로 로임의 정상적인 평균수준 이하로 인하되고 따라서 로임으로부터의 공제분 즉 로임의 일부분이 일반적으로 지대로 들어가는 한 이것은 가장 나쁜 토지의 차지농업가에 있어서도 례외적경우를 이루는것이 아니다. 가장 나쁜 토지를 경작할수 있게 하는 그 생산가격 자체에서 이미 이 낮은 로임이 하나의 구성항목을 이루며 따라서 생산물을 생산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이 토지의 차지농업가로 하여금 지대를 지불할수 없게 한다. 토지소유자는 또한 어떤 로동자가 로임을 넘는 판매가격이 그에게 주는것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대형태로 타인에게 지불하는데 만족한다면 자기의 토지를 로동자에게 임대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는 차지료는 지불된다 하더라도 현실적 지대는 지불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상응하는 제 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지대와 차지료는 일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하여야 할것은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이다.

여기에서 고찰한 경우에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내부에서 지대를 가져옴이 없이 토지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실시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미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식민지관계를 운운하는것은

더구나 쓸데 없을것이다. 식민지를 식민지로 만드는것은—여기에서 말하는것은 본래의 농업식민지에 관해서만이지만—다만 대량의 옥토가 자연상태로 존재한다는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토지들이 점유되여있지 않고 토지소유에 종속되여있지 않고있다는 사정이다. 바로 이것이 토지가 문제로 되는 한 오랜 나라들과 식민지간에 큰 차이를 이루는것이다. 즉 웨이크필드(35)가 옳게 지적하였고[332]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중농주의자인 대미라보와 기타 옛 경제학자들이 발견한바와 같이 토지소유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비존재이다. 식민지이주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토지가격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다만 합법적인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수료만을 국가에 지불하는가 하는것은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아무래도 좋다. 또한 이미 정착하고있는 식민지이주자들이 법률상의 토지소유자라는 사정도 아무래도 좋다. 실제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토지소유는 자본의 투하, 또는 자본없는 로동의 투하에 대한 제한을 이루는것이 아니다. 이미 정착하고있는 식민지이주자들이 토지의 일부분을 점령하고있다는것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새 토지를 자기들의 자본 또는 로동의 사용장소로 만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의 투하장소로서의 토지를 토지소유가 제한하고있는 곳에서는 토지소유가 토지생산물의 가격과 지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을 연구하는것이 중요하다면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방식도 그에 상응하는 토지소유형태도 존재하지 않고 대체로 토지소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자산계급적식민지를 운운

---

(35) 웨이크필드 《영국과 아메리카》, 1883년 런던판, 또한 《자본론》, 제1부 제25장도 참조하라.

하는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례컨대 리카도는 지대에 관한 장[333]에서 그렇게 하고있다. 그는 서두에서 토지의 점유가 토지생산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곧 다음에 식민지를 례로 들고 거기에서는 토지가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그 리용이 토지소유의 독점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있다.

토지의 단순한 법률상의 소유는 소유자를 위하여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토지가 본래의 농업에 사용되든 또는 건축물 등등과 같은 기타 생산적목적들에 사용되든 그 토지의 경제적리용이 소유자를 위하여 일정한 초과분을 가져오는것을 경제적 제 관계가 허용할 때까지는 자기의 토지를 리용하지 못하게 할 권력을 소유자에게 부여한다. 그는 이 취업장소의 절대량을 증감시킬수는 없으나 시장에 있는 그 량을 증감시킬수는 있다. 그때문에 이미 푸리에도 말한바와 같이 어느 문명국에서나 토지의 비교적 큰 부분이 항상 경작되지 않은채로 남아있다는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로 되고있는것이다.[334]

따라서 수요가 새로운 토지의 개간, 말하자면 종래 경작되고있는 토지보다도 비옥도가 낮은 토지의 개간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생산물의 시장가격이 올라서 이 토지에서의 투자가 차지농업가에게 생산가격을 보상하며 따라서 보통리윤을 가져오게 되였다고 하여 과연 이 토지를 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것이다. 투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 토지소유자는 자기에게 차지료가 지불될수 있어야 비로소 토지를 임대한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생산가격을 넘어서 P+r로 올라 토지소유자에게 지대가 지불될수 있게 되여야 한

다. 전제에 의하면 토지소유는 임대없이는 조금도 수익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시장가격이 생산가격보다도 조금이라도 높으면 제일 나쁜 종류의 새로운 토지를 시장에 진출시키는데 충분한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것이 문제로 된다. 즉 제일 나쁜 토지가 비옥도의 차이로부터 나올수 없는 지대를 가져온다는것으로부터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보통의미에서의 독점가격 또는 조세가 들어가는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지대가 들어가는 가격이고 다만 그것을 징수하는것이 국가가 아니고 토지소유자라는 차이가 있을따름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세에는 일정한 경제적제한이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조세를 제한하는것은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추가적투자이며 외국의 토지생산물의 경쟁—그 자유로운 수입을 전제로 하고—이며 토지소유자 호상간의 경쟁이며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욕망과 지불능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제일 나쁜 토지에서 지불되는 지대가 전제에 의하면 일반적시장가격을 규제하는 그 토지의 생산물의 가격에 바로 조세가 과세상품의 가격에 들어가는것과 같이 즉 그 상품의 가치와는 관계없는 한 요소로서 들어가는가 어떤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결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장되고있는것은 다만 상품의 가치와 생산가격과의 차이가 지금까지 리해되고있지 않았기때문이였을따름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상품의 생산가격은 결코 그 상품의 가치와 동일한것은 아니다. 비록 총체적으로 보면 상품들의 생산가격은 오직 상품들의 총가치에 의해서만 규제되며 또 여러가지 상품종류의 생산가격운동은 기타 모든 조건들이 변함없다고 가정

하면 오직 그 상품들의 가치운동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것이지만.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보다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으며 오직 례외적으로만 그 상품의 가치와 일치한다. 따라서 토지생산물들이 그 생산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된다는 사실은 결코 그 생산물들이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된다는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마치도 공업생산물들이 평균적으로 그 생산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이 결코 그 생산물들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것을 증명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농업생산물들이 그 생산가격보다 높으나 그 가치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것은 마치도 다른 한편으로 많은 공업생산물들이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되기때문에만 생산가격을 가져오는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것이다.

상품의 가치에 대한 그 상품의 생산가격의 비률은 오직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불변부분에 대한 가변부분의 비률에 의하여서만 즉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유기적구성에 의하여서만 규정된다. 만약 어떤 생산분야의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즉 그 자본중 로임에 투하되는 가변구성부분이 물질적로동조건들에 투하되는 불변구성부분에 대한 비률로 보아 사회적평균자본의 경우보다도 더 높다면 그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러한 자본은 사회적평균자본의 동등한 크기의 해당 부분에 비하여 그보다 많은 산로동을 사용하기때문에 로동에 대한 착취가 동등한 때에는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또 보다 많은 리윤을 생산한다. 따라서 이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높다. 왜냐하면 이 생산가격은 자본보상분 플라스 평균리윤과 같으며 이 평균리

윤은 이 상품에 생산되여있는 리윤보다 낮기때문이다. 사회적평균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는 이러한 구성이 낮은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보다 작다. 일정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높다면 사태는 반대로 된다. 이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낮다. 이것은 가장 발전된 산업의 생산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현상이다.

만약 일정한 생산분야에서의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보다도 낮다면 이것은 우선 이 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사회적로동의 생산력이 평균수준보다도 낮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도달한 단계는 가변자본부분에 대하여 불변자본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데서 또는 주어진 자본중 로임에 투하되는 구성부분이 부단히 감소되여가는데서 표현되기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만일 일정한 생산분야에 있어서의 자본구성이 평균보다도 높다면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이 평균수준보다 높다는것을 표현한다.

본래의 예술적로동의 고찰은 문제의 성질로 보아 우리의 론제에서 제외되여있으므로 이러한 로동을 도외시하면 여하튼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대하여 필요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비률이 각이한 분야의 기술적특성에 따라 각이하다는것, 그리고 산로동이 어떤 분야들에서는 보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분야들에서는 보다 작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자명하다. 례컨대 농업과는 엄밀히 구별되여야 할 채취공업에서는 불변자본의 한 요소로서의 원료는 전혀 없고 보조자재도 단지 이따금 중요한 역할을 놀뿐이다. 그러나 광산업에서는 불변자본의 다른 한 부분인 고정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상대적인 증대에 의하여 발전의 진도를 측정할수 있을것이다.

본래의 농업에서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이것은 분명히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농업이 가공공업과 동일한 정도로는 발전하지 않았다는것을 표시할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타의 모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결정적인 경제적사정들을 도외시하더라도 이미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도 설명될것이다. 즉 화학, 지질학 및 생리학 특히는 또 농업에서의 그것들이 응용이 비교적 늦으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어린데 비하여 력학적과학들에서의 그것들의 응용은 보다 이르고 또 보다 급속한데서도 설명될것이다. 여하간 농업 자체의 진보가 항상 가변자본부분에 비한 불변자본부분의 상대적증대에서 표현되고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오래전부터 알려진(36) 사실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이 진행되고있는 일정한 나라 례컨대 영국에서 농업자본의 구성이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낮은가 어떤가 하는것은 통계적으로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 상세히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는 무용할것이다. 여하간 리론적으로 확실한것은 이 전제하에서만 농업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높을수 있다는것이다. 즉 주어진 크기의 자본에 의하여 농업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는, 또는 결국 마찬가지이지만 그 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지휘되는 잉여로동(따라서 또 사용되는 산로동일반)은 사회적평균구성을 가진 같은 크기의 자본의 경우보다 크다는것이다.

---

(36) 동발[335] 및 R. 죠운즈[336]를 참조하라.

그리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그리고 이 가정하에서만 생길수 있는 지대형태에 대하여는 이 가정을 하는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것에 상응하는 지대형태도 없어진다.

그러나 농업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의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각이한 토지종류들간의 비옥도의 차이 또는 동일한 토지에서의 련속적투자들사이의 생산성의 차이와는 관계없는 지대, 요컨대 차액지대와는 개념상 구별되는 지대 따라서 **절대지대**라고 부를수 있는 지대의 존재를 설명하는데는 결코 충분한것이 아니다. 제조공업생산물중에도 그 가치가 그 생산가격보다 높다는 성질을 가지고있는것은 매우 많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생산물들이 지대로 전화될수 있는, 평균리윤을 넘는 초과분 또는 초과리윤을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이다. 생산가격 및 그에 포함되여있는 일반적리윤률의 존재와 개념은 개별적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는데 립각하고있다. 생산가격은 상품가치들의 평균화로부터 생기는데 이 평균화는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소비된 각자의 자본가치를 보상한후 총잉여가치를 그 개별적생산분야들에서 생산되고 따라서 그 분야들의 생산물에 포함되여있는 비례로 분배하는것이 아니라 선대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평균리윤이 생기고 이 평균리윤을 특징적요소로 하는 상품의 생산가격이 생기는것이다.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분배에 있어서의 이 평균화를 경쟁에 의하여 실현하고 이 평균화에 대한 일체 장애를 극복하는것은 자본들의 부단한 경향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상품의 가치와 생산가격과의 차이로부터 생기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시장규제적생산가격과 그와는 구별되는 개별적생산가격간의 차이로부터 생기는 초과리윤, 오직 이러한 초과리윤만을 허용하는것이 자본들의 경향이다. 따라서 또 이 초과리윤은 두개의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 생기는것이 아니라 매개 생산분야내부에서 생기는것이며 따라서 각이한 분야들에서의 일반적생산가격 즉 일반적리윤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와 일반적리윤률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 전제의 기초로 되는것은 사회적총자본이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서 분배되는 비례의 부단한 변동이며 자본들의 부단한 출입이동이며 한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로의 자본의 이동의 가능성이며 요컨대 사회적총자본의 독립적인 부분들을 위한 같은 수의 리용할수 있는 투하분야로서의 그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서의 그 자본들의 자유로운 운동이다. 동시에 또 다음과 같은것도 전제로 한다. 즉 자본들간의 경쟁에 있어서 례컨대 상품들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보다 높은 생산분야 또는 생산된 잉여가치가 평균리윤보다 큰 생산분야에서는 가치를 생산가격에 귀착시키고 이와 함께 이 생산분야의 초과잉여가치를 자본에 의하여 착취되는 모든 분야들에 비례적으로 분배하는것을 방해하는 제한은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우연적이며 일시적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과는 반대의 경우가 생기여 자본이 하나의 외적인 힘에 부닥치여 이러한 힘을 자본이 부분적으로밖에는 극복할수 없든가 또는 전혀 극복할수 없고 이 힘이 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자본의 투하를 제한하며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은 잉여가치의 평균리윤으로의 일반적인 평균화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배체하는 조건하에서만 이 투하를

허용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생산분야들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을 넘는 상품가치의 초과분에 의하여 초과리윤이 생기며 이 초과리윤은 지대로 전화되여 지대로서 리윤에 대하여 독립화될수 있는것일것이다. 그런데 자본이 토지에 투하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외적인 힘 및 제한으로서 토지소유가 자본에 또는 토지소유자가 자본가에 대립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는 장벽이다. 이 장벽은 지대를 지불받지 않고서는 종래의 미경지 또는 미임대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비록 새로 경작되는 토지는 아무런 차액지대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리고 토지소유가 없다면 시장가격이 조금만 올랐다 하더라도 경작될수 있었을것이고 따라서 규제적시장가격은 이 가장 나쁜 토지의 경작자에게 그의 생산가격만을 보상하였을 그러한 종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장벽은 지대를 지불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토지소유가 설정하는 제한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은, 이 토지가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 즉 지대를 지불할수 있는 점까지 오르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농업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는 전제에 의하면 그 상품의 생산가격보다 높기때문에 이 지대는(곧 연구하게 될 한 경우를 제외하면)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 또는 이 초과분의 일부분을 이룬다. 지대가 가치와 생산가격간의 전체 차액과 같은가 또는 이 차액의 크거나 작은 일부분과 같을따름인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의 상태와 새로 경작되는 토지면적에 달린다. 지대가 농업생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그 생산물의 가치의 초과분과 같지 않는한 이 초과분의 일부분은 언제나 각이한 개별적자본가들간에서의 총잉여가치의 일반적평균화와 비례적분배에 참가할것이

다. 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과 같다면 잉여가치중 평균리윤을 넘는 이 부분 전체가 이 평균화로부터 떨어져나올것이다. 그러나 이 절대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 전체와 같든 또는 그 일부분과만 같든간에 농업생산물은 언제나 독점가격으로 판매될것인데 그것은 그 가격이 그 가치보다 높기때문이 아니라 그 가격이 가치와 같기때문이며 또는 그 가격이 가치보다는 낮지만 생산가격보다는 높기때문이다. 농업생산물의 독점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에서 그 가치가 일반적생산가격보다 높은것과는 달라서 생산가격에 수준화되지 않는다는데 있을것이다. 가치와 생산가격의 일부분은 실지로 주어져있는 불변량 즉 비용가격,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k이기때문에 가치와 생산가격간의 차이는 타방의 가변량부분인 잉여가치에 있으며 이 잉여가치는 생산가격중에서는 리윤 p와 즉 총잉여가치가 사회적자본과 그 상응하는 부분으로서의 매 개별적자본에 대하여 계산된것과 같으나 상품의 가치중에서는 이 특수한 자본이 생산한 그리고 이 특수한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가치의 하나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현실적잉여가치와 같다. 만일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생산가격보다 높다면 생산가격은 k+p이고 가치는 k+p+d이며 p+d는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와 같다. 따라서 가치와 생산가격간의 차액은 d이다. 즉 이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가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이 자본에 할당되는 잉여가치를 넘는 초과분이다. 이때문에 농업생산물의 가격은 그 생산물의 가치에는 도달하지 않아도 그 생산물의 생산가격보다 높을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또 농업생산물의 가격이 그 생산물의 가치에 도달하기전에 일정한 점까지는 계속 올라갈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또 토

지소유의 독점의 결과로써만 농업생산물의 가치중 그 생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은 그 생산물의 일반적시장가격의 하나의 규정적계기로 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는 생산물의 등귀가 지대의 원인인것이 아니라 지대가 생산물등귀의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가장 나쁜 토지의 단위면적의 생산물의 가격이 P+r이라고 하면 모든 차액지대는 r의 해당한 배수만큼 증대한다. 그것은 전제에 의하면 P+r가 규제적시장가격으로 되기때문이다.

만약 비농업적인 사회적자본의 평균구성이 85c+15v이고 잉여가치률이 100%라고 하면 생산가격은 115일것이다. 농업자본의 구성을 75c+25v라고 하면 잉여가치률이 동일한 경우에 생산물의 가치와 규제적시장가격은 125일것이다. 농업생산물이 비농업생산물과 평균되여 평균가격으로 된다고 하면 (간단히 하기 위하여 총자본은 두 생산부문에서 같다고 가정한다) 총잉여가치는 40이며 따라서 200의 자본에 대하여 20%일것이다. 어느 부문의 생산물이나 다 120으로 판매될것이다. 따라서 생산가격으로의 평균화가 진행된다면 비농업생산물의 평균시장가격은 그 가치보다 높아지게 되고 농업생산물의 평균시장가격은 그 가치보다 낮아지게 될것이다. 만약 농업생산물이 그것의 완전한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그것은 평균화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5만큼 높고 공업생산물은 5만큼 낮을것이다. 만약 시장상황이 농업생산물을 그 완전한 가치대로 판매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생산가격을 넘는 전체 초과분을 판매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량극의 중간으로 될것이다. 즉 공업생산물은 그 가치보다 얼마간 높게, 농업생산물은 그 생산가격보다 얼마간 높게 판매될것이다.

토지소유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을 그 생산가격보다 높이

등귀시킬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로 생산가격을 넘어 가치에 접근하게 되는가, 따라서 주어진 평균리윤을 초과하여 농업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지대로 전화되며 어느 정도까지 평균리윤으로의 잉여가치의 일반적평균화에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토지소유에 달린것이 아니라 일반적시장상황에 달린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으로부터 생기는 이 절대적인 지대는 다만 농업잉여가치의 일부분일따름이며 이 잉여가치의 지대에로의 전화, 토지소유자에 의한 그것의 탈취일따름이다. 이것은 마치도 차액지대가 일반적, 규제적 생산가격하에서 초과리윤의 지대에로의 전화, 토지소유에 의한 그것의 탈취로부터 생기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대의 이 두 형태는 유일하게 정상적인 형태이다. 이 형태외의 지대는 본래의 독점가격에 립각할수 있을뿐인데 이 독점가격은 상품의 생산가격에 의하여도, 그것의 가치에 의하여도 규정되지 않고 구매자들의 욕망과 지불능력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 이 독점가격의 고찰은 시장가격의 현실적운동을 연구하는 경쟁론에 속하는 것이다.

만약 일국내의 농업에 사용될수 있는 토지가 전부 임대되고있다면—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정상적인 제 관계를 일반적인것으로서 전제한다면—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토지는 없을것이나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투자, 토지에 투하된 자본중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개별적부분들은 있을수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토지가 일단 임대되면 토지소유는 필요한 투자에 대한 절대적제한으로서는 작용하지 않게 되기때문이다. 그 경우에도 토지소유는 상대적인 제한으로서는 작용을 계속한다. 즉 토지에 합체된 자본의 토지소유자에게로의 귀속이 차

지농업가에게 대하여 이 경우에 극히 명확한 제한을 이루고 있는 한에서는 그 작용을 계속하는것이다. 오직 이 경우에만 모든 지대는 차액지대로 전화할것이다. 하기는 토지의 질적 차이에 의하여 규정되는 차액지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토지에서의 최후의 투자후에 생기는 초과리윤과 가장 나쁜 토지의 임대에 지불되는 지대간의 차액에 의하여 규정되는 차액지대로 전화될것이다. 토지소유가 절대적제한으로서 작용하는것은 대체로 자본투하장소로서 허용되는것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공납을 조건으로 하는 한에서만이다. 일단 이 허용이 있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주어진 토지에서의 투자의 량적규모에 대하여 어떠한 절대적제한도 더는 가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가옥건축에 대하여는 가옥이 건축되여야 할 토지에 대한 제삼자의 토지소유에 의하여 제한이 설정되고있다. 그러나 이 토지가 일단 가옥건축에 임대되면 그 우에 높은 집을 짓는가 또는 낮은 집을 짓는가 하는것은 차지인의 의향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약 농업자본의 평균구성이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과 같든가 또는 그 보다 높다면 언제나 방금 설명한 의미에서의 절대지대는 즉 차액지대와도 구별되고 본래의 독점가격에 립각한 지대와도 구별되는 지대는 없어질것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농업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을것이다. 또 농업자본은 비농업자본에 비하여 더 많은 로동을 움직이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보다 많은 잉여로동을 실현하지도 않을것이다. 만약 농업자본의 구성이 경작의 진보에 따라 사회적평균자본의 구성과 평균화된다면 역시 동일한 현상이 생길것이다.

얼핏 보면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즉 일방으로는 농업자본의 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그 가변부분에 비하여 불변부분이 증대하는데 타방으로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올라서 종래의 토지보다도 나쁜 새로운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게 되고 지대는 이 경우에 다만 가치와 생산가격을 넘는 시장가격의 초과분으로부터만, 간단히 말하면 다만 생산물의 독점가격으로부터만 생길수 있다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우선 리윤률의 형성을 고찰할 때 이미 본바와 같이 각이한 자본이 기술적으로 보면 구성이 같다 하더라도 즉 기계 및 원료에 대한 비률에 있어서는 같은 량의 로동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불변자본부분들의 가치가 다름으로 하여 각이한 구성을 가질수 있다. 원료 또는 기계는 일방의 경우에는 타방의 경우보다 고가일수 있다. 동일한 량의 로동을 움직이기 위하여(그리고 이것은 전제에 의하면 같은 량의 원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할것이다) 일방의 경우에는 타방의 경우보다도 더 많은 자본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왜냐하면 례컨대 자본이 100인 경우에 같은 이 100에서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는 원료의 비용이 일방의 경우에는 40이고 타방의 경우에는 20이라면 이 100의 자본을 가지고 같은 량의 로동을 움직일수는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의 구성이 기술적으로 같다는것은 보다 비싼 원료의 가격이 보다 저렴한 원료의 가격으로 저락되면 곧 명백하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사용되는 산로동과 사용되는 로동조건의 량이나 성질간의 기술적관계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가치비률은 어느 경우에나 같게 될것이다. 다른 한편 유기적구성이 보다 낮은 자본도 단순한 가치구성의 견지에서 보면 그 불변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것만으로 유기적구성이 보다 높은 자본과 외관상 같은 단계에 놓일수 있다. 가령 주어진 한 자본은 산로동력에 비하여 많은 기계와 원료를 사용하기때문에 60c+40v로 되고 다른 한 자본은 많은 산로동(60%)과 적은 기계(례컨대 10%) 및 로동력에 비하여 적고 저렴한 원료(례컨대 30%)를 사용하기때문에 40c+60v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만 원료나 보조재료의 가치가 30으로부터 80으로 증대되는것만으로 기술적구성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도 구성은 평균화될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제2자본에 있어서는 기계 10에 대하여 원료 80, 로동력 60으로 즉 90c+60v로 될것이며 이것은 백분비적으로 분할하면 역시 60c+40v로 될것이다. 따라서 유기적구성이 같은 자본들도 각이한 가치구성을 가질수 있고 또 백분비가치구성이 같은 자본들도 유기적구성의 각이한 단계들에 처할수 있으며 따라서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각이한 발전단계들을 표시할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구성으로 보아 농업자본이 일반적수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이 농업자본에서도 같은 높이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증명하지 않을것이다. 그 사정에 의하여 명백히 될수 있는것은 다만 농업자본 자체의 생산물—이것은 또 농업자본의 생산조건들의 일부분을 이루는것이지만—이 등귀하였다는것이나 또는 비료와 같은, 이전에는 가까운 곳에서 입수할수 있던 보조재료를 이제는 먼곳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는것 등등일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도외시하고 농업의 특유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을 절약하는 기계, 화학적인 보조수단 등등이 농업에서 전보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따라서 불변자본이 기술적

으로 즉 가치상으로뿐아니라 량적으로도 사용되는 로동력의 량에 비하여 증대한다고 하면 농업에서는(광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동의 사회적생산성이 문제로 될뿐만아니라 로동의 자연적조건들에 의존하는 자연발생적로동생산성도 문제로 된다. 농업에서의 사회적생산력의 증대는 단순히 자연력의 감퇴를 보상할따름이든가 또는 보상조차 하지 못하며—이 보상은 언제나 일시적으로밖에 작용할수 없다—따라서 농업에서는 기술발전이 일어나도 생산물은 저렴하여지는것이 아니라 다만 생산물이 더 비싸지는것을 저지하는데 불과한 일이 있을수 있다. 또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절대적인 생산물량은 감소하지만 상대적인 초과생산물은 증가하는 일도 있을수 있다. 즉 이것은 주로 마멸분만을 보상하면 되는 기계나 가축으로써 구성되는 불변자본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며 그에 따라 로임에 투하되고 항상 전부가 생산물중에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변자본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 있을수 있다.

그러나 또 만약 기술적보조수단의 수준이 보다 낮다면 시장가격이 보다 상승할것을 요하는, 보다 나쁜 토지가 경작되게 되고 동시에 지대를 가져올수 있기 위하여서는 농업의 진보가 있으면 다만 시장가격이 평균보다 얼마간 높기만 하면 되는 일도 있을수 있다.

례컨대 대규모적인 축산업에 있어서 가축 자체로 존재하는 불변자본에 비하여 사용되는 로동력의 량이 대단히 적다는 사정은 농업자본이 백분비로 계산하면 비농업적인 사회적 평균자본보다도 더 많은 로동력을 움직인다는 명제를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론거로서 간주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우리는 지대의 설명에서는 농업자본

중 결정적인 식물성영양수단 즉 일반적으로 문명한 국가의 주요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부분을 규정적인것으로 하고 이로부터 출발한다는것이다. 이미 A. 스미스가 지적한바와 같이 (그리고 그것은 그의 공적의 하나이다) 축산업에 있어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요생활수단 례컨대 곡물의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고 토지에 투하되는 모든 자본의 평균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가격규정이 진행된다. 즉 이 경우에는 가격은 다음과 같은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례컨대 인공적목장으로서 축산에 리용되나 마찬가지로 일정한 질의 경지로도 전화될수 있는 토지의 생산물의 가격은, 동등한 질의 경지가 가져오는 것과 동일한 지대를 가져올수 있을만큼 높이 상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337]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곡물경작지의 지대가 규정적으로 가축의 가격에 들어가는데 그렇기때문에 램지는 가축의 가격은 이와 같이 지대에 의하여 토지소유의 경제적표현에 의하여 즉 토지소유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높아진다[338]는것을 옳게 지적하였다.

《경작이 확장되였기때문에 이제는 미경지만으로는 식용가축에 대한 공급을 충족시킬수 없게 된다. 기경지의 현저한 부분이 가축의 사양이나 비육에 사용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가축의 가격은 그것에 사용되는 로동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충족할뿐만아니라 만약 이 토지가 농경지로서 경작되였다면 토지소유자가 거기에서 끌어낼수 있었을 지대와 차지농업가가 끌어낼수 있었을 리윤을 지불하는데 충족한 높이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혀 개간되여있지 않는 니탄지에서 사양된 가축도 가장 잘 개간된 토지에서 사양된 가축도 중량과 질에 따라 같은 시장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러한 니탄지의 소유자들은 이것으로 하여 리익을 얻으며 자기들의 토지의 지대를 가축의 가격에 비례하여 높인다》(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제1편 제11장 제1절).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곡물지대와는 달리 보다 나쁜 토지를 위한 차액지대가 생긴다.

절대지대는 얼핏 보면 지대가 마치도 단순한 독점가격에서 생기는듯이 보이게 하는 약간의 현상들을 설명하여준다. A. 스미스의 실례와 관련하여 우리는 레컨대 노르웨이에서 그러한것처럼 아무런 인간의 조력도 없이 존재하는, 따라서 조림의 생산물로서 존재하는것이 아닌 삼림의 소유자를 들어보자. 이 소유자에게는 레컨대 영국으로부터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목재를 채벌하는 자본가들에 의하여 지대가 지불된다면, 또는 이 소유자 자신이 자본가로서 그 목재를 채벌한다면 그에게는 선대자본에 대한 리윤외에 목재로 많거나 적은 지대가 지불될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순수한 자연생산물의 경우에는 순수한 독점부가금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지는 이 경우에 자본은 거의 가변자본 즉 로동에 투하되는 자본으로써만 구성되고 따라서 또 같은 크기의 다른 자본보다 더 많은 잉여로동을 움직인다. 따라서 목재가치에는 구성이 보다 높은 자본들의 생산물에 포함되여있는것보다 많은 부지불로동 또는 잉여가치의 보다 큰 초과분이 포함되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리윤이 목재로부터 지불될수 있고 그것도 현저한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삼림소유자의것으로 될수 있다. 반대로 만약 목재채벌을 쉽게 확대할수 있고 따라서 이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킬수 있다면 목재가격이 그 가치와 같게 되기 위하여서는, 따라서 부지불로동의 전체 초과분(부지불로동중 평균리윤으로서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가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이 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수요가 대단히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로 경작되는 토지는 최후에 경작되는 가장 나쁜 토지보다도 질적으로 더 나쁜 토지라고 가정하였다. 만약 그것이 보다 좋은 토지라면 그것은 차액지대를 가져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하는것은 바로 지대가 차액지대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거기에는 다만 두 경우만이 있을수 있다. 즉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최후에 경작되는 토지보다 나쁜 경우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이다. 그것이 보다 나쁘다면 그 경우는 이미 연구되였다. 그러므로 더 연구하여야 할것은 그것이 질적으로 동등한 경우뿐이다.

우리가 이미 차액지대를 연구할 때 서술한바와 같이 경작의 진보에 따라 보다 나쁜 토지와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동등한 토지 그리고 보다 좋은 토지까지도 새로 경작되는 일이 있을수 있다.

첫째로, 차액지대에 있어서는(그리고 지대일반에 있어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비차액지대의 경우에도 일방으로는 토지의 비옥도일반이, 타방으로는 토지의 위치가 규제적시장가격하에서 리윤과 지대를 가져오면서 이 토지를 경작하는것을 허용하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가 부단히 제기되기때문이다) 두 조건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그것들은 때로는 서로 마비시키고 때로는 번갈아 결정적영향을 일으키기때문이다. 시장가격의 상승은—경작의 비용가격은 저하되지 않는다는것, 바꾸어말하면 기술상의 진보가 새로운 경작을 위한 새로 첨가되는 계기를 이루지 않는다는것을 전제로 하면—이전에는 그 위치로 말미암아 경쟁에서 배제되고있던 비옥도가 보다 높은 토지를 경작권내에 끌어들일수 있다. 또는 비옥도가 보다 낮은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상승은 위치의 유리함

을 높여 보다 빈약한 수익능력이 그것에 의하여 보상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시장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위치는 교통수단의 개량에 의하여 보다 좋은 토지를 경쟁에 들어서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북아메리카의 대초원 제 주들에서 대규모로 보는바와 같다. 이러한것은 구문명국들에서도 부단히 일어난다. 하기는 식민지에서와 같은 정도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식민지에서는 웨이크필드가 옳게 말한바와 같이 위치가 결정적역할을 노는것이다.[339] 따라서 첫째로는 위치와 비옥도와의 모순되는 작용들과 위치라는 요인—이 요인은 부단히 평균화되여가고 평균화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의 가변성이 번갈아 동등한 질의 토지나 보다 좋은 토지 또는 보다 나쁜 토지를 종래의 경작지와의 새로운 경쟁에 참가시킨다.

둘째로, 자연과학이나 농학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도 변화한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토지의 요소들을 즉시에 리용할수 있는것으로 만들수 있는 수단들이 변화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나쁜 토지로 간주되던 프랑스나 잉글랜드 동부 제 주들의 경질토지가 최근에는 제1등급의 토지로 상승되였다(파씨를 참조하라[340]).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화학적 구성때문에 나쁜 토지로 간주된것이 아니라 다만 일정한 기계적, 물리적장애들로 말미암아 경작되지 않았을따름인 토지도 이 장애들을 극복하는 수단들이 발견되게 되면 좋은 토지로 전화된다.

셋째로, 모든 구문명국들에서는 낡은 력사적이며 전통적인 제 관계로 하여 례컨대 국유지, 공유지 등등의 형태로 전혀 우연적으로 광대한 토지가 경작에서 배제되게 되였는데 이러한 토지는 점차적으로만 경작되게 된다. 이 토지가 경작

되게 되는 순서는 그 질에도, 그 위치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외부적사정들에 의존한다. 만약 우리가 영국의 공유지의 력사에 관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련이어 울치기법[341]에 의하여 사유화되여 개간될수 있게 되여간 그 자취를 더듬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환상적인 전제보다도 더 가소로운것은 없을것이다. 그 전제에 의하면 현대적농업화학자, 례컨대 리비히와 같은 사람이 이 순서의 선택을 지도하여 어떤 토지는 그 화학적속성으로 보아 경작에 적합하다고 하고 다른것은 배제하였다고 하는것이다. 그런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논것은 오히려 도적질을 하게 한 기회였으며 대지주들의 점유를 위해 그들에게 제공된 다소간에 그럴듯한 법률적구실들이였다.

넷째로, 그때그때에 도달된 인구증가와 자본증가의 발전단계가 토지경작의 확장에 대하여 비록 신축성이 있는것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이룬다는것을 도외시하면 그리고 일련의 순조로운 계절과 불순한 계절과 같은 일시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우연적인 작용을 도외시하면 토지경작의 공간적확장을 한 나라에서의 자본시장이나 사업상황의 전반적상태에 의하여 좌우된다. 자본의 팽박기에는 미경지가 차지농업가에게 평균리윤을 가져올수 있다—그가 지대를 지불하든 하지 않든간에—는것만으로는 추가자본을 농업에 돌리게 하기에는 불충분할것이다. 자본의 과다기에는 시장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기타 정상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여있기만 하면 자본은 농업으로 흘러간다. 지금까지 경작되고있은 토지보다 좋은 토지는 사실상 다만 위치라는 계기만으로 또는 그것을 배제할수 있는 제한들이 아직 타파되고 있지 않다는것만으로 또는 다만 우연에 의하여서만 경쟁으로

부터 배제될수 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최후에 경작되게 된 토지종류와 동등한 토지종류만을 문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와 최후에 경작된 토지간에는 언제나 개간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간이 실시되는가 어떤가는 시장가격이나 신용관계의 상태에 달려있다. 이 토지가 현실적으로 경쟁에 참가하게 되면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한 시장가격은 다시 이전의 수준으로 저락하며 그 경우에 새로 가입한 토지는 그것에 상응하는 이전부터의 토지와 동일한 지대를 가져올것이다. 이 토지가 지대를 가져오지 않을것이라는 전제를 그 지지자들은 지금부터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는것 즉 최후의 토지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것을 가정하는데 의하여 증명하는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최후에 건축된 가옥은 그것이 임대되더라도 본래의 집세외에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가옥은 흔히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있어서 아직 집세를 제공하기전에 지대를 자져오는것이다. 바로 한 토지에서의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투자가 그것에 비례하는 잉여수익을 가져올수 있으며 따라서 최초의 투자와 동일한 지대를 가져올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최후에 경작된 토지와 같은 질의 경작지들은 같은 비용으로 같은 수익을 가져올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같은 질의 경작지들이 순차적으로 경작되게 되는가, 그리고 어째서 전부가 한꺼번에 경작되지 않는가 또는 어째서 모든 토지의 상호경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도 경작되지 않는가 하는것은 대체로 리해될수 없을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언제나 지대를 얻으려고 즉 무엇인가를 무상으로 얻으려고 노리고있다. 그러나 자본은 그들의 념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일정

한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때문에 여러가지 토지의 호상간의 경쟁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들을 경쟁시키려고 하는것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작지에서 다른 자본과 경쟁하기 위한 자본이 있는가 하는것에 달려있다.

본래의 농업지대가 단순한 독점가격인 한, 이 독점가격은 극히 적은것으로 밖에는 될수 없으며 또한 이 경우에는 절대지대도 정상적인 제 조건하에서는 생산물의 가치중 그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이 얼마이든간에 극히 적은것일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절대지대의 본질은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있는 같은 크기의 자본이 그 각자의 평균구성의 각이함에 따라 같은 잉여가치률 또는 같은 로동착취하에서는 각이한 량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것에 있다. 공업에서는 이러한 각이한 잉여가치량이 평균화되여 평균리윤으로 되며 그것이 사회적자본의 해당 부분들로서의 개별적자본들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토지소유는 농업을 위하여서든 원료채취를 위하여서든간에 생산이 토지를 필요로 하면 토지에 투하된 자본들에 대한 이 평균화를 방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리윤률로의 평균화에 참가할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탈취한다. 이 경우에는 지대는 상품의 가치의 일부분, 더 정확히는 상품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이루는데 이 부분은 다만 로동자들로부터 그것을 짜낸 자본가계급의 수중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자본가들로부터 그것을 짜낸 토지소유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 경우에 전제로 되고있는것은 농업자본은 비농업자본의 같은 크기의 일부분에 비하여 더 많은 로동을 움직인다는것이다. 이 편차가 어느 정도인가 또는 대체로 그러한 편차가 존재하는가 하는것은 공업에 비한 농업의 상대적발전에 달려있다. 만일 자본의 불변부분에 비하여 가변부분이 감

소되는 비률이 공업자본에서는 농업자본에서보다 더 크지 않다면 농업의 진보에 따라 이 차이는 감소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이 절대지대는 본래의 채취공업에서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것은 이 공업에서는 불변자본의 한 요소인 원료가 전혀 없고 또한 기계나 기타의 고정자본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이 대단히 큰 부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자본구성이 무조건적으로 지배적이기때문이다. 이 채취공업에서는 지대가 오로지 독점가격에 기인하는듯이 보이며 바로 이 경우에는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기 위하여는 또는 지대가 상품의 잉여가치중 생산가격을 넘는 전체 초과분과 같게 되기 위하여는 비상히 유리한 시장관계들이 필요하다. 례컨대 어장, 채석장, 야생림 등등의 지대의 경우가 그러하다.(37)

(37) 리카도는 이것을 극히 소홀하게 처리하고있다. 노르웨이의 산림지대에 관하여 A . 스미스를 반대하고있는 개소를 보라.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제2장 서두를 보라.[342]

제 46 장

건축지지대. 광산지대. 토지가격

차액지대는 대체로 지대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다 출현하며 또 농업차액지대와 동일한 법칙에 따른다. 자연력들이 독점될수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산업가에게 초과리윤을 보장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이 폭포이건 풍부한 광산이건, 어류가 많은 수역이건 위치가 좋은 건축지이건 지구의 일부분에 대한 그의 권리에 의하여 그 자연대상들의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 초과리윤을 기능자본으로부터 지대형태로 탈취한다. 건축용토지에 관하여서는 이미 A. 스미스가 그 지대의 기초가 다른 모든 비농업용토지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농업지대에 의하여 규제되고있다는것을 설명하였다(《제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제1편 제11장 제2 및 3절). 이 지대의 특징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여기에서는 위치가 차액지대에 압도적인 영향을 준다는것이다(레컨대 포도재배의 경우와 대도시의 건축지의 경우에는 이 영향이 대단히 크다). 둘째로, 소유자의 완전한 피동성이 명백하다는것인데 그의 능동성은 다만(특히 광산의 경우에) 사회적발전의 진보를 리용하는데 있으며 이 진보에 대하여 그는 산업자본가와는 달라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또 아

무런 모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경우에 독점가격의 우세이며 특히 빈민에 대한 극도로 철면피한 착취의 우세이며(왜냐하면 빈민이 집세에 대하여서는 한때 뽀또씨의 광산[343]이 에스빠냐에 대하여서 그러하였던것보다 더 풍부한 원천이였기때문에(38)) 그리고 이 토지소유가 동일한 사람의 수중에서 산업자본과 결합하여 로임을 위한 투쟁에서 산업자본이 로동자들을 그들의 거주지인 지구상으로부터 실지로 배제할수 있게 하는 경우에(39) 이 토지소유가 부여하는 거대한 힘이다. 이 경우에는 사회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지구상에 거주하여도 좋다는 권리의 대가로서 공납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토지소유에는 토지의 신체나 토지의 내장이나 공기를 착취하며 따라서 생명의 유지와 발전을 착취할 소유자의 권리가 포함되여있기때문이다. 인구의 증가 따라서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뿐만아니라 토지에 합체된 또는 토지에 뿌리를 박고 토지에 립각한 고정자본의 발전도 즉 모든 산업용건물 레컨대 철도, 창고, 공장건물, 도크 등등과 같은 고정자본의 발전도 필연적으로 건축지지대를 증대시킨다. 가옥에 투하된 자본의 리자 및 상각분인 한에서의 집세를 단순한 토지에 대한 지대와 혼동하는것은 여기에서는 캐어리식의 호의[346]로써도 불가능한것이다. 특히 영국에서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축투기업자가 전혀 별개의 인물인 경우에는 그러하다. 이 경우에는 두개의 요소가 고찰된다. 즉 한편으로는 재생산 또는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리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생산 및 온갖 인간활동의 요소로서

---

(38) 랭, 뉴먼 [344]

(39) 크로울링턴의 파업, 엥겔스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307페지.[345]

필요한 장소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토지소유는 공납을 요구한다. 건축용지에 대한 수요는 장소 및 집터로서의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그에 의하여 동시에 건축재료로서 복무하는 토지의 요소들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킨다. (40)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들 특히 런던에서와 같이 건축이 공장적방식으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건축투기의 본래의 주요 대상은 가옥이 아니라 지대이다. 이것에 관하여는 우리는 이미 제2권 제12장 215, 216페지에서, 1857년의 은행위원회에 한 런던의 대건축투기업자 에드워드 캡스의 증언에서 일례를 들었다.[348] 그는 그 증언의 제5435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견실한 사업에만 매달려가지고는 출세를 거의 기대할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그는 그밖에도 반드시 투기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도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건축업자는 건물 자체로부터는 극히 적은 리윤밖에 얻지 못하며 그의 주요리윤은 지대의 등귀로부터 얻기때문이다. 례컨대 그가 어떤 토지를 빌리고 그것에 대하여 년 300파운드를 지불한다고 하자. 만약 그가 면밀한 건축계획에 따라 거기에다 적당한 종류의 가옥을 세운다면 그는 그것에서 매년 400파운드나 450파운드를 얻을수 있을것인데 그의 리윤은 많은 경우에 거의 그가 념두에도 두지 않는 건물에서 나오는 리윤이라기보다 오히려 1년에 100 내지 150파운드의 지대증가분일것이다.》

이 경우에 잊어서는 안될것은 대개 99년간의 임차계약이 만기가 된후에는 토지는 그 우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함께

---

(40) 《런던거리들의 포장은 스코틀랜드해안에 있는 약간의 불모의 암석들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던 암석지로부터 지대를 얻을수 있게 하였다》 (A. 스미스, 제1편 제11장 제2절[347]).

또한 그사이에 대개 2배 이상, 3배 이상으로 오른 지대와 함께 건축투기업자 또는 그의 권리계승자로부터 다시 토지의 최후의 소유자의 수중으로 돌아간다는것이다.

본래의 광산지대는 농업지대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규정된다.

《광산들중에는 그 생산물이 겨우 로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투하된 자본에 보통의 리윤을 가하여 보상하기에 자랄가말가하다. 그러한 광산들은 기업가에게 약간의 리윤을 가져오지만 토지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한 광산들을 유리하게 채굴할 수 있는것은 오직 그 자신이 기업가로서 자기의 투하자본으로부터 보통의 리윤을 얻는 토지소유자뿐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많은 탄광이 이러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다른 방식으로는 경영될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경영할것을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에 지대를 지불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A. 스미스, 제1편 제11장 제2절[349]).

여기에서 구별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지대에는 관계없는 생산물 또는 토지 자체의 독점가격이 존재하기때문에 지대가 독점가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대가 존재하기때문에 생산물이 독점가격으로 팔리는가 하는것이다. 우리가 독점가격이라고 말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일반적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격에도, 생산물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격에도 관계없이 오직 구매자들의 구매욕과 지불능력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가격을 두고 말한다. 아주 특별한 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일반적으로 비교적 적은 량의 포도주밖에 생산하지 않는) 포도원은 독점가격을 낳는다. 이 독점가격이 생산물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은 오직 상류의 포도주음주가들의 부와 기호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이

독점가격으로 하여 포도재배자는 큰 초과리윤을 실현할것이다. 이 경우에 독점가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초과리윤은 지대로 전화되고 이 지대라는 형태로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특수한 속성을 구비한 이 토지부분에 대한 그의 소유권에 의해서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독점가격이 지대를 낳는다. 이와는 반대로 지대가 독점가격을 낳는것은 토지소유가 미경지에서의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투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결과로 곡물이 그 생산가격보다 비싸게 팔릴뿐만아니라 그 가치보다도 비싸게 팔리는 경우일것이다. 약간의 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잉여로동의 일부를 공납으로서 취득할수 있게 하는, 그것도 생산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증대하는 정도로 취득할수 있게 하는것이 이 사람들이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소유권에 불과하다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본화된 지대 따라서 바로 이 자본화된 공납이 토지의 가격으로서 나타나고 그때문에 토지는 다른 온갖 거래품과 마찬가지로 팔릴수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은폐된다. 그렇기때문에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지대청구권은 무상으로 얻는것 즉 로동도 모험도 자본의 기업정신도 없이 무상으로 얻는것으로서 나타나지는 않고 그 등가를 지불하고 얻는것으로서 나타난다. 이미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①

그에게는 지대는 그가 토지를 따라서 지대청구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자본의 리자로서만 나타난다. 그것은 마치도 흑인을 구입한 노예소유자에게는 흑인에 대한 그의 소유가 노예제도 그 자체에 의하여 얻은것이 아니라 상품의 매매에 의하여 얻은것으로서 나타나는것과 전적으로 마찬가지이다. 그

① 본권 702~704페지를 보라.—편집자

러나 권리 자체는 판매에 의하여 산생되는것이 아니라 다만 이전될뿐이다. 이 권리는 그것을 팔수 있기전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한번의 판매로 권리를 창조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이러한 판매도 판매의 부단한 반복도 이 권리를 창조할수는 없다. 요컨대 이 권리를 창조한것은 생산관계이다. 이 생산관계가 그 외피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 도달하자마자 이 권리와 이 권리에 기초한 일체 거래의 물질적원천, 즉 경제적 및 력사적으로 시인되는 원천, 사회적인 생명생산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천은 없어지고만다. 보다 높은 경제적사회구성체의 견지에서 보면 토지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소유는 어떤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의 사적소유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어리석은것으로 나타날것이다. 심지어 한 사회 전체, 한 민족, 아니 모든 동시대의 시회를 합한것도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들은 다만 토지의 점유자, 토지의 리용자에 불과하며 선량한 가부로서 토지를 개량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여야 한다.

아래에서의 토지가격의 연구에서는 경쟁상의 변동과 토지투기는 모두 도외시하기로 한다. 또한 토지가 생산자들의 주요한 수단을 이루기때문에 토지가 어떠한 가격으로도 그들에 의하여 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소토지소유도 도외시하기로 한다.

Ⅰ. 토지의 가격은 지대가 오르지 않아도 오를수 있다. 즉

1. 단순히 리자률이 저하되기때문에. 그때문에 지대는 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따라서 자본화된 지대인 토지가격은 오른다.

2. 토지에 합체된 자본의 리자가 증대하기때문에.

II. 토지가격은 지대가 증대하기때문에 오를수 있다.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오르기때문에 증대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나쁜 경작지에서의 지대가 높든 낮든 또는 전혀 없든간에 차액지대의 률은 언제나 높아진다. 여기에서 률이란 토지생산물을 생산하는 선대자본에 대한 지대로 전화되는 잉여가치부분의 비률을 말한다. 이 비률은 총생산물에 대한 초과생산물의 비률과는 다른것이다. 왜냐하면 총생산물은 선대자본의 전부를 포함하고있지 않기때문이다. 즉 생산물과 나란히 존속하는 고정자본을 포함하고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런데 차액지대를 가져오는 토지종류들에서는 생산물중의 더욱 증대하는 일부분이 여분의 초과생산물로 전화된다는것에는 이 률이 포함되여있다. 가장 나쁜 토지에서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상승이 비로소 지대를 조성하며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조성한다.

그러나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도 증대할수 있다.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변하지 않을수도 있고 지어는 저하될수도 있다.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대는(독점가격을 도외시하면) 오직 다음과 같은 두개의 리유중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서만 증가할수 있다. 즉 하나는 종래의 토지들에서의 투하자본량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보다 좋은 질의 새로운 토지들이 경작된다는 리유에 의하여서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토지들은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족할따름이므로 규제적시장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종래의 토지들의 가격은 오르지 않으나 새로 경작되게 된 토지의 가격은 종래의 토지의 가격보다도 높아진다.

또는 상대적비옥도도 시장가격도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토지를 리용하는 자본의 량이 증대한다는 리유에 의하여 지대는 증대한다. 그렇기때문에 지대는 선대자본에 대한 비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지대의 량은 례컨대 자본자체가 2배로 되기때문에 2배로 된다. 가격의 저하는 일어나지 않았기때문에 제2차 투자도 제1차 투자와 마찬가지로 초과리윤을 가져오는것이며 이 초과리윤은 임차기간의 경과후에는 지대로 전화된다. 이 경우에 지대의 량이 증대하는것은 지대를 낳는 자본의 량이 증가하기때문이다. 동일한 토지에서의 각이한 순차적투자들이 지대를 낳을수 있는것은 다만 그것들의 수익이 같지 않기때문에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한에서이라는 주장은 각각 1,000파운드씩의 두 자본이 비옥도가 같은 두 경작지에 투하되는 경우에 이 두 경작지가 다 차액지대를 낳는 보다 좋은 토지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중 하나만이 지대를 가져올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총지대의 량, 일국의 지대총액은 개별적토지의 가격, 또는 지대률, 또는 개별적토지에서의 지대량이 반드시 증대하지 않아도 자본투하량에 따라 증대한다. 총지대의 량은 이 경우에는 경작면적의 확장에 따라 증대한다. 이 증대는 심지어 개별적토지들에서의 지대의 저하와도 결합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장은 다른 하나의 주장으로 즉 두개의 각이한 토지들에서의 병행적투자는 동일한 토지에서의 순차적투자와는 별개의 법칙에 복종된다고 하는 주장으로 귀착될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차액지대를 두 경우에 법칙이 동일하다는것으로부터 이끌어내며 동일한 경작지이든 각이한 경작지이든 어쨌든 투자의 수확이 증대하는데로부터도 이끌어내는것이다. 이 경우에 존재하고 유일한 수정으로

사람들이 간과하고있는것은 순차적투자는 그것이 장소적으로 각이한 토지들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의 제한에 부닥치는데 동일한 토지에서의 순차적투자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각이한 투하형태가 실제에 있어서 호상 제한하는 반대의 작용도 생기는것이다. 이 경우에 결코 자본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자본의 구성이 변하지 않고 잉여가치률도 변하지 않는다면 리윤률은 변하지 않으며 자본이 2배로 되면 리윤량도 2배로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가정된 제 사정하에서는 지대률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 1,000파운드의 자본이 x라는 지대를 가져온다고 하면 전제된 제 사정하에서는 2,000파운드의 자본은 2x라는 지대를 가져온다. 그러나 가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에서 2배의 자본이 작용하기때문에 토지면적은 변함이 없으며 이 토지면적에 따라 계산하면 지대의 량이 증가된 결과로 지대의 높이도 제고되였다. 즉 2파운드의 지대를 가져오던 동일한 1에이커가 이제는 4파운드를 가져온다.(41)

잉여가치의 일부분인 화폐지대—화폐는 가치의 자립적표

---

(41) 이 점을 전개한것은 로드베르투스의 공적의 하나인데 지대에 관한 그의 중요한 저술[350]에 대하여는 우리는 제4부에서 되돌아가 보기로 하겠다.[86] 다만 그는 다음과 같은 오유를 범하고있다. 첫째로, 자본에 있어서는 리윤의 증대는 언제나 자본의 증대로서 표현되며 따라서 리윤의 량은 증가하여도 그 비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구성이 변하면 로동에 대한 착취가 변하지 않아도 리윤률은 자본의 가변부분에 비한 불변부분의 가치의 비률이 감소하기때문에 상승될수 있는 까닭이다.—둘째로, 그가 범하고있는 오유는 어떤 일정한 크기의 토지, 례컨대 1에이커의 토지에 대한 화폐지대의 상술한 비률을 고전경제학이 지대의 증감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한것으로서 취급한 점이다. 이것도 역시 잘못이다. 고전경제학은 현물형태로의 지대를 고찰하는 한에서는 언제나 지대률을 생산물에 관련시켜 취급하고 지대를 화폐지대로서 고찰하는 한에서는 언제나 지대률을 선대자본에 관련시켜 취급하고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것이 실제로 합리적인 표현이기때문이다.

현이기때문에—의 토지에 대한 비률이란 그 자체가 엉터리없고 불합리한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서로 계산의 기준으로 되는것 즉 일방에 있는 일정한 사용가치 몇평방피트의 토지와 타방에 있는 가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잉여가치는 비교할수 없는 량이기때문이다. 사실상 이 비률은 다음과 같은것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즉 주어진 제 사정하에서는 몇 평방피트의 토지에 대한 소유의 덕분에 토지소유자는 감자를 뒤적거리는 돼지처럼 몇 평방피트를 뒤적거리는 자본{원고에서는 여기에서 괄호속에 리비히[351]라고 썼다가 지워버렸다}이 실현한 부지불로동의 일정한 량을 탈취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표시하고있을따름이다. 그러나 얼핏 보아도 분명히 이 표현은 5파운드의 은행권과 지구의 직경을 비교하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제적 제 관계가 그속에 표현되고 그속에 실제적으로 총괄되는 불합리한 형태들의 매개는 일상거래에서의 이 제 관계의 실제적담당자들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제 관계속에서 활동하는데 습관되고있기때문에 그들의 리성은 그것들에 대하여 조금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다. 완전한 모순도 그들에게는 조금도 신비로운것이 아니다. 내적련관으로부터 소외된 그리고 그것만을 고립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현상형태속에서 그들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편안함을 느낀다. 여기서는 헤겔이 그 어떤 수학적공식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 즉 상식이 불합리라고 보는것은 합리적인것이고 상식으로 합리적인것은 불합리 그 자체라는것이 들어맞는것이다.[352]

이리하여 토지면적 자체에 관련시켜 고찰하면 지대의 량의 증대가 바로 지대의 률의 상승과 마찬가지로 표현되며 따라서 일방의 경우를 설명할수 있는 조건이 타방의 경우에는

결여되여있으면 당황해하는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에도 오를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액의 증대에 의하여 보다 좋은 토지의 차액지대가 증대하며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이 증대할수 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동의 생산력이 제고되는 조건하에서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내려가지만 그러나 생산의 증가가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을수 있다. 가령 1쿼터에 60실링이 들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동일한 1에이커에서 동일한 자본으로 1쿼터가 아니라 2쿼터가 생산되고 1쿼터가 40실링으로 내려간다면 2쿼터는 80실링을 가져오며 그리하여 1쿼터당 가격은 3분의 1만큼 내려가지만 동일한 1에이커에서의 동일한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는 3분의 1만큼 오르게 된다. 이러한것이 생산물이 그것의 생산가격 또는 가치보다 더 높게 판매되지 않고도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것은 차액지대를 연구할 때 서술되였다. 그것은 실제상 다음 두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즉 일방으로는 차액지대가 증대하는 경우 즉 일반적개량이 여러가지 토지종류들에 불균등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나쁜 토지는 경쟁권밖으로 떨어져나가지만 좋은 토지의 가격은 오른다. 다른 한 경우에는 로동의 생산성이 높아졌기때문에 가장 나쁜 토지에서 동일한 생산가격(절대지대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치)이 보다 큰 생산물량으로 표현된다. 생산물은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표시하나 그 해당 부분들의 가격은 내렸는데 타방으로 이 해당 부분들의 수는 증가한것이다. 동일한 한 자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가치가 임의의 각 생산물량으로 표현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추가

자본이 석고나 해조분 등등을 위하여 요컨대 그 작용이 다년에 걸치는 개량들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조건은 1쿼터의 가격은 내려가지만 쿼터수의 증가와 동일한 비률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것이다.

Ⅲ. 지대가 오르기 위한 따라서 토지가격일반 또는 개별적인 토지종류의 가격이 오르기 위한 이러한 각이한 조건들은 부분적으로는 호상 경쟁하는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호상 배제하는것이며 그리고 번갈아 작용할수 있을따름이다. 그러나 상술한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토지가격의 등귀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지대의 증대를 결론지을수 없으며 또 지대의 증대는 언제나 토지가격의 등귀를 수반하기는 하나 지대의 증대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토지생산물의 증가를 결론지을수는 없다.(42)

토지피페의 현실적인 자연적원인은 차액지대에 관하여 저술한 모든 경제학자들에게는 그들 시대의 농업화학의 상태로 말미암아 알려지지 않은것이였는데 지금까지는 이 원인들의 고찰에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한정된 경작지에 어떤 임의의 량의 자본을 투하할수 없다는 천박한 견해에 매달렸다. 례컨대 《에딘버러론평》지가 리처드 죠운즈를 반대하여 쏘우호우광장[354]의 경작에 의하여는 전 영국을 먹여 살릴수는 없다고 주장한것이 그것이다.[355] 만약 이것을 농업의 특별히 불리한 점이라고 본다면 그 정반대의것이야말로 진실이다. 농업에서는 토지 자체가 생산수단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투자들을 생산적으로 실시할수 있는데 이것

---

(42) 실지로 지대의 증대에 수반하는 토지가격의 저하에 관하여는 파씨를 참조하라.[353]

은 토지가 다만 기초로서, 장소로서, 장소적인 작업기초로서 기능할뿐인 공장의 경우에는 없는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다만 대단히 협소한 한계내에서만 있는것이다. 물론 작게 분립되여있는 수공업에 비하면 작은 장소에 큰 생산설비를 집중시킬수 있다.—그리고 대공업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고있다. 그러나 생산력발전단계가 주어져있다고 하면 역시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며 또 고층건축에도 일정한 실제적인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으면 생산의 확장은 토지면적의 확장도 필요로 한다. 기계 등에 투하된 고정자본은 그 사용에 의하여 좋게 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멸된다. 새로운 발명에 의하여 이 경우에도 개별적인 개량을 실시할수는 있으나 생산력의 발전을 주어진것이라고 전제하면 기계는 다만 나빠지게 될따름이다. 만약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한다면 낡은 기계 전체가 보다 유리한 기계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포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토지는 이것을 옳게 다루면 부단히 개량된다. 이전의 투자들의 리익이 상실됨이 없이 순차적투자가 리익을 가져올수 있다는 토지의 우점은 또한 순차적투자들사이에 수익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포함하고있다.

제 47 장

자본주의적지대의 발생

Ⅰ. 서　　론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리론적표현으로서의 현대경제학의 견지에서는 지대를 취급함에 있어서의 곤난은 본래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이 근간의 많은 저술가들에게도 아직 리해되고있지 않다는것은 지대를 《새로》 설명하려는 모든 반복적인 시도들이 증명하여주고있는 바다. 여기에서 새로운것이란 거의 언제나 이미 오래전에 극복된 견지로 되돌아가는것이다. 곤난은 농업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생산물과 그에 상응하는 잉여가치일반을 설명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모든 생산적자본—이것이 어떠한 분야에 투하되든간에—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분석에서 해결되고있다. 곤난은 잉여가치가 각이한 자본들간에서 평균리윤으로 평균화된후에 즉 한데 합친 모든 생산분야들에서의 사회적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총잉여가치 중에서 각 자본들이 그 크기에 비례하여 받는 몫으로 평균화된후에, 다시말하면 이 평균화후에 대체로 분배되여야 할 모든 잉여가치가 외견상 이미 분배된후에 이 잉여가치중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지대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초과

분은 대체 어디로부터 생기는것인가를 론증하는데 있다. 토지소유를 반대하는 산업자본의 대변자로서의 현대경제학자들을 자극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게 한 실제적동기—이 동기를 우리는 지대의 력사에 관한 장에서 보다 상세히 론술할것이다—를 전혀 도외시하더라도 이 문제는 리론가로서의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관심을 끄는것이였다. 농업에 투하된 자본에 있어서 지대라는 현상은 투하분야 자체의 특수한 작용으로부터 생기며 지각 자체에 속하는 속성들로부터 생긴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은 가치개념 자체를 포기하는것 따라서 이 령역에서의 과학적인식의 온갖 가능성을 포기하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지대가 토지생산물의 가격에서 지불된다는—이것은 차지농업가가 자기의 생산가격을 얻는다면 지대가 현물형태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생긴다—이 간단한것을 관찰하더라도 보통의 생산가격을 넘는 이 가격의 초과분을 즉 농업생산물의 상대적고가를 다른 산업부문들의 생산성을 넘는 농업의 자연발생적생산성의 초과분에서 설명하려는것은 엉터리없는 것임을 알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는 반대로 로동이 생산적이면 생산적일수록 같은 량의 로동 따라서 같은 가치를 표시하는 사용가치의 량은 그만큼 더 크므로 로동생산물의 매개 해당 부분은 그만큼 더 저렴하게 되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지대분석에서의 전체 곤난은 평균리윤을 넘는 농업리윤의 초과분을 설명하는데 있으며 잉여가치가 아니라 이 생산분야에 특유한 초과잉여가치를 설명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또 《순생산물》이 아니라 기타 산업부문들의 순생산물을 넘는 이 분야의 순생산물의 초과분을 설명하는데 있다. 평균리윤 그 자체는 전적으로 특정적인 력사적생산관계하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생활과정의 산물, 그 형성물이며

우리가 본바와 같이 대단히 복잡한 매개를 전제로 하는 산물이다. 대체로 평균리윤을 넘는 초과분을 론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이 평균리윤 자체가 척도로서, 또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 그러한바와 같이 생산일반의 조절기로서 확립되여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이 아직 일체 잉여로동을 강요하고 일체 잉여가치를 맨 먼저 취득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사회형태 따라서 자본이 아직 사회적로동을 포섭하지 않았거나 또는 산재적으로밖에는 포섭하지 않은 사회형태들에서는 현대적의미에서의 지대, 평균리윤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 즉 사회적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중 각 개별적자본이 그 크기에 비례하여 차지할 몫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는 전혀 문제로 될수 없다. 례컨대 파씨씨(아래를 보라)가 이미 원시상태에서도, 리윤—잉여가치의 력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형태—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를 론하고있다면 그것은 그의 소박성을 보여주는것이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이러한 사회형태는 파씨씨에 의하면 아마 사회가 없이도 존재할수 있는것일것이다.[353]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분석에 착수하려고 하였을따름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대의 분석에는 아무런 곤난도 없었거나 곤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곤난이였다. 페티나 깡띠용, 일반적으로 봉건시대에 가깝던 저술가들은 지대를 잉여가치일반의 정상적인 형태로서 보고있으며[356] 한편 리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불명확하게 로임과 융합되고있거나 또는 기껏해야 이 잉여가치중 자본가가 토지소유자에게서 빼앗아가는 일부분으로서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상태로부터 출발한다. 그것

은 즉 첫째로, 농업인구가 아직 국민의 훨씬 압도적인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둘째로, 토지소유자가 아직 토지소유의 독점에 의하여 직접적생산자들의 잉여로동을 맨 먼저 취득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토지소유도 아직 생산의 주요조건으로서 나타난다는 상태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견지로부터 보아 어찌하여 토지소유는 자본이 생산하고(즉 직접적생산자들로부터 착취하고) 직접으로 이미 취득한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다시 자본으로부터 탈취하게 되는가 하는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의 제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존재할수 없었다.

중농학파[357]에게 있어서는 곤난은 이미 성질이 다른것이였다. 실제로 자본의 최초의 체계적인 해석자로서 그들은 잉여가치일반의 성질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분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대의 분석과 일치하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대는 잉여가치가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대를 낳는 자본 또는 농업자본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자본이며 또 이 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농업로동은 잉여가치를 낳는 유일한 로동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적견지에서 보면 완전히 정당하게도 유일한 생산적인 로동이다. 잉여가치의 생산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정당하게도 규정적인것으로 인정되는것이다. 제4부[86]에서 언급될 다른 공적들은 도외시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우선 중상주의[180]에 대립하는것이며 류통분야에서만 기능하는 상업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 되돌아가는 위대한 공적이 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중상주의와 대립하는데 중상주의는 그 조잡한 현실주의에 의하여 당시의 본래의 속류경제학을 이루며 이 경제학의 실제적리해관계앞에서 페티와 그의 후계

자들에 의한 과학적분석의 단서도 전혀 후면으로 밀리우고말았던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상주의의 비판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것은 자본 및 잉여가치에 관한 그들의 견해뿐이다. 중금주의[229]는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전화, 따라서 화폐로의 전화를 정당하게도 자본주의적생산의 전제 및 조건이라고 선포하고있다는것은 이미 우에서 서술한 바이다.[240] 중금주의를 계승한 중상주의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것은 벌써 상품가치의 화폐에로의 전화가 아니라 잉여가치의 생산이지만 그러나 류통분야의 무개념적견지로부터 본 그것이며 따라서 동시에 이 잉여가치는 잉여화폐로 나타나고 무역수지의 잔고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중상주의는 당시의 리해관계자인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을 정당하게 특징짓는것이며 또 그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자본주의적발전시기에 알맞는것이다. 그것은 봉건적인 농업적사회로부터 산업적사회로의 전화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세계시장에서의 각 국가들의 산업전에 있어서는 소위 자연적방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강제수단에 의하여 달성되는 자본의 급속한 발전이 기본문제이라는 점에서 그러한것이다. 국민적자본이 점차로 완만하게 산업자본으로 전화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호관세를 매개로 하여 주로 토지소유자나 중소 농민 및 수공업에게 부과되는 조세에 의하여 독립적인 직접적생산자들의 가속적수탈에 의하여, 자본의 강행적으로 가속화된 축적 및 집적에 의하여, 요컨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제 조건의 가속적형성에 의하여 이 전화가 시간적으로 촉진되는가 하는것은 거대한 차이를 이룬다. 그것은 동시에 자연적인 국민적생산력의 자본주의적 및 산업적리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이룬다. 그렇기때문에 중상주의의 국민적성격은 그 대변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다. 다만 국민의 부와 국가의 자원만을 문제로 한다는 구실하에 그들은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의 리익과 치부일반이 국가의 최종목적이라고 선언하고 낡은 천국을 대치하여 자산계급적사회를 선포한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자본 및 자본가계급의 리익의 발전,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이 현대사회에서의 국민적실력 및 국민적우월의 기초로 되였다는 의식도 있는것이다.

그리고 또 중농학파들에게 있어서 옳은 점은 모든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또 모든 자본의 발전은 자연적기초에서 보면 사실상 농업로동의 생산성에 립각하고있다는것이다. 만약 대체로 인간이 1로동일에 매개 로동자가 그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것보다 더 많은 생활수단 따라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보다 많은 농업생산물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면 즉 만약 매개 로동자의 전체 로동력의 매일의 지출이 겨우 그의 개인적필요에 불가결한 생활수단을 생산하는데 족할뿐이라면 대체로 잉여생산물도 잉여가치도 문제로 될수 없을것이다. 로동자의 개인적욕망을 넘는 농업로동의 생산성은 모든 사회의 기초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인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은 사회의 부단히 증대하는 일부분을 직접적생활수단의 생산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을 스튜어트가 말하는 맺힌데 없는 일손[358]으로 전화시키고 다른 분야들에서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대르[359]나, 파씨[353] 등과 같은 최근의 경제학적저술가들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말하여야 할것인가? 그들은 전체 고전경제학의 만년에 지어는 그 림종의 침상에서 잉여로동의, 따라서 잉여가치일반의 자연적조건들에 관한 극히 원시적인 견해들을 반복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대에 대

하여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잉여가치의 특수한 한 형태, 특수한 한 부분으로서 설명되였는데도 어떤 새로운 적절한 의견이라도 제기한것처럼 생각하고있는것이다. 어떤 일정한, 이미 과거로 된 발전단계에서는 참신하고 독창적이고 심오하고 정당하던것을 이제는 그것이 평범하고 진부하고 그릇된것으로 되고있는 시대에 속류경제학은 그것을 반복하고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속류경제학의 특징을 이루는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의하여 속류경제학은 고전파경제학이 연구한 문제들에 대하여 조금도 모르고있다는것을 고백하고있는것이다. 속류경제학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만 자산계급사회의 보다 낮은 발전수준에서만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과 혼동하고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속류경제학은 자유무역에 관한 중농학파의 명제들을 지칠줄 모르고 의기양양하여 되씹고있다. 이러한 명제들은 비록 이러저러한 국가에 대하여는 실제상의 흥미를 끄는것이라 할지라도 리론적흥미는 벌써 오래전에 완전히 상실되여버렸다.

본래의 자연경제에서는 례컨대 고대로마의 많은 대소유지에서도, 칼 대제의 령지에서도 그러하였던것처럼 그리고 중세기 전체를 통하여 다소간에 그러하였던것처럼(방카르 《프랑스의 로동과 로동자의 력사》를 보라) 농업생산물은 전혀 류통과정에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그 극히 적은 부분이 류통과정에 들어갈뿐이며 또 생산물중의 토지소유자의 수입을 대표하는 부분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부분이 류통과정에 들어갈뿐인데 이러한 자연경제에서는 대령지의 생산물도 잉여생산물도 결코 농업로동의 생산물로써만 구성되는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또한 공업로동의 생산물도 포함되여있다. 가내수공업로동과 공장제수공업로동은 그 기초를 이

루는 농업의 부업으로서 이 자연경제의 기초로 되고있는 생산방식의 조건인데 구라파의 고대나 중세에 그러하였고 또 오늘날도 그 전통적인 조직이 아직 파괴되지 않고있는 인도의 공동체[328]에서 그러하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이 관련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과정은 대체로 특히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의 영국에 의하여 연구할수 있다. 많게나적게나 반봉건인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 례컨대 헤렌슈완드는 18세기 말에도 아직 이러한 농업과 제조업과의 분리를 무모한 사회적모험으로 보고있으며 리해할수 없는 위험한 존재방식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고대의 농업경영중에서 자본주의적농업과의 최대의 류사성을 보여준 까르타고나 로마의 고대농업경영에서도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적착취방식에 상응하는 형태와 류사한것보다도 오히려 식민지 대농장경영과 더 류사한것이다.(42a) 어떤 형태상의 류사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리해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례컨대 몸젠(43)씨와 같이 모든 화폐경제에서 이미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발견하지는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본질적인 점들에서 전적으로 착각으로서 나타나지만 이러한 형태상의 류사가 고대에는 대륙이딸리아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씨칠리아에서만 볼수 있는것은 이 섬이 로마에 대한 농업적공납국으로서 존

(42a) A. 스미스는 당시(그리고 이것은 열대 및 아열대 나라들에서의 식민지 대농업에 대하여는 우리의 시대에도 적용된다)에는 례컨대 카토가 자기의 소유지에서 그러하였던것처럼[361] 토지소유자가 동시에 자본가이기때문에 지대와 리윤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360] 그러나 이 분리는 바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전제이며 또 노예제라는 기초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개념과는 대체로 모순된다.

(43) 몸젠씨는 그의 《로마사》에서 자본가라는 용어를 결코 현대경제학 및 현대사회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통속적관념—영국 또는 미국에서가 아니라 대륙에서 과거상태의 옛 전통으로서 류행되고있는—의 방식에서 사용하고있다.[361]

재하였고 따라서 농업이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있었기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근대적의미에서의 차지농업가들이 발견된다.

지대의 성질에 대한 하나의 부정확한 리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즉 중세기의 자연경제로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조건들과는 완전히 모순되면서 현물형태로서의 지대가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10분의 1세로서, 부분적으로 낡은 계약에 의하여 영구화된 골동품으로서 현대까지 전하여온 사실이다. 그때문에 지대는 농업생산물의 가격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의 량으로부터 생기고 따라서 사회적 제 관계로부터가 아니라 토지로부터 생기는것 같은 외관이 생긴다. 이미 우에서 보여준바와 같이[363] 잉여가치는 초과생산물로 표시되기는 하나 반대로 생산물량의 단순한 증가분이라는 의미에서의 초과생산물이 잉여가치를 표시하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초과생산물은 가치의 마이나스를 표시할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면방직업은 1860년에는 1840년에 비하여 막대한 잉여가치를 표시하였어야 할것인데 반대로 면사의 가격은 저락하였다. 흉작이 계속되면 곡물의 가격이 오르기때문에 지대는 몹시 증대할수 있지만 이 초과가치는 보다 비싸게 된 밀의 절대적으로 감소된 량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반대로 풍작이 계속되면 곡물의 가격이 저락하기때문에 지대는 감소될수 있으나 이 감소된 지대는 값싸게 된 밀의 보다 많은 량으로 표시되는것이다. 그러면 생산물지대에 대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즉 생산물지대는 이미 로쇠한 생산방식으로부터 전하여져 폐물로서 여명을 보존하고있는 단순한 인습인데 그것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모순된다는것은 그것이 사적계약으로부터 자연히 사라졌다는것에서 나타나며 또 영국의 교회의 10분의 1세에

있어서와 같이 립법의 간섭이 가능하였던 곳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한것으로서 강제적으로 폐기되였다는것에서 나타난다.[364] 그러나 둘째로 생산물지대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 존속한 경우에는 그것은 화폐지대의 중세기적으로 가장된 표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였고 또 그 이외의 다른 어떤것으로도 될수 없었다. 밀 1쿼터가 레컨대 40실링이라고 하자. 이 1쿼터중에서 일부분은 그것에 포함되여있는 로임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로임을 다시 투하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일부분은 1쿼터에 부과되는 조세부분을 지불하기 위하여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이에 따라 사회적분업이 발전되고 있는 곳에서는 종자와 지어는 비료의 일부분도 상품으로서 재생산에 들어가며 따라서 보상을 위하여 구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화폐를 공급하기 위하여서도 그 1쿼터중의 일부분이 다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상품으로서 구입될 필요가 없고 생산물 자체중에서 현물로 떼여내여 새로 생산조건으로서 생산물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한에서는—이러한것은 농업에서뿐만아니라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많은 생산부문들에서도 발생하는것이지만—그것들은 계산화폐로 표현되여 계산에 들어가고 비용가격의 구성부분으로서 공제된다. 기계나 고정자본 일반의 마멸분은 화폐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는 리윤인데 이것은 현실적화폐 또는 계산화폐로 표현되는 이러한 비용의 총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 리윤은 총생산물중 그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부분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지대를 형성한다. 만약 계약상의 생산물지대가 가격에 의하여 규정된 이 나머지 부분보다 크다면 그것은

지대를 형성하는것이 아니고 리윤으로부터의 공제인것이다.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생산물지대는 즉 생산물의 가격에 따르지 않고 따라서 현실적지대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다만 리윤으로부터의 공제뿐만아니라 자본보상의 구성부분들로부터의 공제도 이룰수 있는 생산물지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태이다. 사실상 이 생산물지대는 그것이 명목상으로뿐만아니라 실지상으로도 지대인 한에서는 오직 생산물가격중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에 의하여만 규정된다. 다만 그것은 이 가변량을 하나의 불변량으로서 가정하고있을따름이다. 그러나 현물로서의 생산물은 첫째로, 로동자들을 먹여살리는데 충분하고 그다음에는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것 이상의 식료품을 남기는데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는 초과분은 현물지대를 형성한다고 하는것은 아주 정다운 느낌을 주는 관념이다. 이것은 마치도 직포업자가 20만엘레를 직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 20만엘레는 다만 그의 로동자들을 입히고 그의 안해와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 자신을 입히는데 충분할뿐만아니라 그밖에도 판매하기 위한 면포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면포로 막대한 지대를 지불하는데 충분하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다! 20만엘레의 면포로부터 생산비를 공제하면 여분의 면포가 지대로서 남지 않을수 없다. 면포의 판매가격을 모르고 20만엘레의 면포중에서 1만파운드의 생산비를 공제한다는것, 면포에서 화폐를 공제한다는것, 사용가치 그 자체로부터 교환가치를 공제한다는것, 그리고 그다음에는 1만파운드를 넘는 20만엘레의 면포의 초과분을 규정한다는것은 사실상 순진한 관념이다. 이것은 원형을 같은 면적의 정방형으로 만들려는것보다 더 황당한것이다. 왜냐하면 원의 정방형화에는 적어도 직선

과 곡선과의 구별이 없어지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그 기초에 놓여있기때문이다. 그런데 파씨씨의 처방은 바로 이것이다.[353] 면포를 머리속에서나 또는 현실적으로나 화폐로 전화시키기전에 우선 면포에서 화폐를 공제하라! 남는것은 지대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물로 감촉될수 있는것이고(례컨대 칼 아른드를 참조하라[365]) 《궤변적인》 마술에 의하여는 감촉될수 없는 지대이다! 이 어리석음에, 현물지대의 몇 쉐펠의 밀로부터 생산가격을 공제하는데에, 체적으로부터 화폐액을 감하는데에 이러한 현물지대의 전체 부흥이 귀착된다.

II. 로동지대[366]

지대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로동지대**의 형태에서 지대를 고찰한다면 즉 직접적생산자가 1주간의 일부분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자기에게 속하는 로동도구(쟁기, 가축 등등)를 가지고 사실상 자기에게 속하는 토지를 경작하고 1주간의 나머지 몇날을 지주의 토지에서 지주를 위하여 무상으로 로동하는 형태에서 지대를 고찰하면 사태가 극히 명백하며 지대와 잉여가치는 여기서는 동일하다. 여기서는 리윤이 아니라 지대가 부지불잉여로동을 표현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로동자(자립적농노)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에게 불가결한 생활수단을 넘는 초과분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는 로임이라고 부르는것을 넘는 초과분을 얻을수 있는가 하는것은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의 로동시간이 그 자신을 위한 로동시간과 지주를 위한 부역로동시간으로 분할되는 비률에 달린다. 그리하여 필수적인 생활수단을 넘는 이 초과분,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는 리윤으로서 나타나는것의 이 맹아는 전적으로 지대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경우에 지대는 직접적인 부지불잉여로동일뿐만아니라 또 부지불잉여로동 자체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생산조건의 《소유자》를 위한 부지불로동이며 이 생산조건은 여기서는 토지와 일치하며 또 토지와 구별되는 한에서는 오직 토지의 부속물로서만 인정될따름이다. 이 경우에는 부역민의 생산물이 그의 생존수단외에 그의 로동조건들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어떤 생산방식에서나 변함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방식의 특수한 형태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련속적이고 재생산적인 로동일반의 자연조건이며 모든 련속적인 생산의 자연조건이기때문이며 이 생산은 언제나 동시에 재생산이며 따라서 또 그 자신의 작용조건의 재생산인 것이다. 그리고 또 분명한것은 직접적로동자가 아직 자기 자신의 생존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 및 로동조건의 《점유자》라는 형태에서는 어느 형태에서나 소유관계는 동시에 직접적지배와 예속관계로서 나타나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직접적생산자는 부자유인으로서 나타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이 부자유는 부역로동을 수반하는 농노제로부터 단순한 공납의무에 이르기까지 점점 약화되는것이다. 전제에 의하면 이 경우에 직접적생산자는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점유하고있으며 자기의 로동의 실현과 자기의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로동조건들을 점유하고있다. 그는 자기의 농업과 이와 결합된 농촌가내공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한다. 이 독립성은 례컨대 인도에서와 같이 이 소농민들이 서로 많게나적게나 자연발생적인 생산공동체를 형성하고있다는것에 의하여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명

목상의 지주에 대립하는 독립성만이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이러한 제 조건하에서는 명목상 토지소유자를 위한 잉여로동은 소농민들로부터 다만 경제외적강제에 의하여서만 강탈할 수 있으며 이 강제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간에 그러한것이다.(44) 이 형태를 노예경제 또는 농장경제와 구별하는 점은 노예는 타인의 생산조건으로써 로동하고 독립적으로 로동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인신적종속관계가 필요하며 어떤 정도의것이든 인신적부자유가 그리고 토지의 부속물로서 토지에 결박되여있는것이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예속제도가 필요하다. 만약 그들에게 직접 토지소유자로서 대립하는 동시에 주권자로서 대립하는것이 사적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처럼 국가이라면 지대와 조세는 일치한다. 또는 오히려 그 경우에는 이러한 지대형태와 구별되는 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종속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국가에 대한 모든 신종관계에 공통한 형태보다 더 가혹한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국가는 여기서는 최고의 령주이다. 주권은 여기서는 국가적규모에서 집중된 토지소유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 경우에는 사적토지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토지의 사적점유 또는 공동점유나 리용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생산자들로부터 부지불잉여로동을 빼앗아내는 특수한 경제적형태가 지배와 예속관계를 규정하는데 이 관계는 직접 생산 자체로부터 발생하고 그 자체가 또 규정적으로 생산에 반작용한다. 그러나 생산관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공동체의 전체 모습과 동시에 그것의 특수한 정치적모습

---

(44) 나라를 정복한후 정복자들에게 있어서의 다음 과업은 언제나 사람들도 점취하는것이였다. 랭개[367] 를 참조하라. 또 뫼제르[368] 도 보라.

도 이에 립각하고있다. 직접적생산자들에 대한 생산조건의 소유자들의 직접적관계—이 관계의 그때그때의 형태는 항상 자연적으로 로동방식 따라서 사회적로동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한다—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그것에서 전체 사회구조의, 따라서 주권 및 종속관계의 정치적형태의, 요컨대 그때그때의 특수한 국가형태의 가장 깊은 비밀, 숨은 기초를 발견하는 그러한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경제적기초—주요조건으로부터 보아 동일한 경제적기초—가 무수하게 각이한 경험적사정들 즉 자연조건, 종족관계,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력사적영향 등등으로 말미암아 현상에서의 무한한 변이와 뉴안스를 나타낼수 있다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데 이러한 변이와 뉴안스들은 경험적으로 주어진 이 사정들의 분석을 통해서만 리해될수 있는것이다.

지대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시초적인 형태인 로동지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것만은 명백하다. 즉 지대는 이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시초적형태이고 잉여가치와 일치하다는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와 타인의 부지불로동과의 일치는 이 경우에는 아무런 분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일치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형태로 존재하기때문이다. 그것은 직접적생산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로동은 아직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가 지주를 위하여 하는 로동과 분리되여있으며 후자는 직접 제삼자를 위한 강제로동이라는 야만적형태로 나타나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지대를 낳는다는 《속성》도 이 경우에는 명백히 드러난 비밀로 된다. 왜냐하면 지대를 제공하는 자연에는 토지에 결박된 인간로동력도 포함되여있고 또 이 로동력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불가결한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한

도를 넘어서 이 로동력을 긴장시키고 활동시키도록 강요하는 소유관계도 포함되여있기때문이다. 지대는 직접적으로 로동력의 이러한 초과지출을 토지소유자가 취득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생산자는 그외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지대도 지불하지 않기때문이다. 여기서는 잉여가치와 지대가 동일물일뿐만아니라 잉여가치는 아직 명료하게 잉여로동의 형태를 취하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대의 자연조건이나 한계도 명백한것이다. 왜냐하면 잉여로동일반의 자연적조건과 한계가 뚜렷하기때문이다. 직접적생산자는 그에게 그 자신의 필수적욕망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로동을 넘는 여분의 로동을 할 가능성이 남기 위하여서는 1) 충분한 로동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며 2) 그의 로동의 자연조건 따라서 무엇보다도먼저 경작되는 토지의 자연조건이 충분히 비옥하지 않으면 안되며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로동의 자연발생적생산성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가능성이 지대를 조성하는것은 아니고 다만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는 강제만이 지대를 조성한다. 그러나 이 가능성 자체는 주관적 및 객관적인 자연조건들과 결합되여있다. 여기에도 신비로운것은 전혀 없다. 만약 로동력이 작고 로동의 자연조건들이 빈약하다면 잉여로동은 작지만 그러나 그 경우에 일방으로는 생산자들의 욕망도 작고 타방으로는 잉여로동의 착취자들의 상대적 인수도 작고 마지막으로 이 비교적 소수의 착취적소유자들을 위한, 생산성이 낮은 이 잉여로동이 실현되는 잉여생산물도 작은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생산자가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며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며 불가결한 생존수단을 넘는 초과분을 생산할수 있는가 또는 자본주의적표현

방식을 앞당겨 사용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리윤 즉 그 자신이 생산하는 자기의 로임을 넘는 초과분을 생산할수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모든 다른 조건들이 같다고 전제하면 전적으로 잉여로동 또는 부역로동의 상대적크기에 달려있다는것은 로동지대의 경우에는 자명하다. 지대는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체를 다 흡수하는, 말하자면 합법적인 잉여로동형태인것이며 결코 리윤을 넘는 초과분 즉 이 경우에는 로임을 넘는 어떤 다른 초과분 이상의 초과분인것은 아니다. 이러한 리윤의 크기뿐만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다면 지대의 크기에 즉 소유자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수행되는 잉여로동의 크기에 달려있는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약간의 력사가들이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다. 즉 직접적생산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일따름이며 또 사실상 법적으로 그의 전 잉여로동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하고있으므로 대체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부역의무자 또는 농노측에 재산의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하면 부의 독립적발전이 수행될수 있는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런데 이 사회적생산관계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방식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자연발생적이고 미발전의 상태하에서는 전통이 우세한 역할을 놀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또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현존하는 사물을 법률로서 신성화하고 또 이 사물에 관습과 전통에 의하여 부여된 제한들을 법적제한들로서 고정시키는것은 사회의 지배자부분의 리익으로 된다는것도 명백하다. 다른 모든것은 도외시하고 여하튼 현존상태의 기초 즉 이 상태의 근저에 있는 관계의 부단한 재생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규칙

화되고 질서화된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것이다. 그리고 이 규칙이나 질서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고화되고 단순한 우연 또는 자의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할것이라고 한다면 온갖 생산방식의 불가결한 계기인것이다. 이 규칙과 질서야말로 모든 생산방식의 사회적확립의 형태이며 따라서 또 단순한 우연 및 단순한 자의로부터의 그 상대적해방의 형태이다. 어떠한 생산방식도 생산과정 및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적 제 관계가 정체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단순한 반복적인 재생산에 의하여 이 형태에 도달한다. 이 형태가 한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은 관습 및 전통으로서 확립되고 마침내는 명문화된 법률로서 신성화된다. 그런데 이 잉여로동의 형태인 부역로동은 로동의 모든 사회적 생산력의 미발전에 립각하고 로동방식 자체의 미숙성에 립각하고있기때문에 그것은 물론 발전된 생산방식의 경우에 비하여 특히 자본주의적생산의 경우에 비하여 직접적생산자들의 총로동중에서 훨씬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수 없다. 례컨대 령주를 위한 부역로동이 원래는 1주에 2일이였다고 가정하자. 1주에 2일이라는 부역로동은 이로 하여 고정되여 관습법 또는 성문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제되는 하나의 불변량이다. 그러나 직접적생산자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나머지 주일들의 생산성은 하나의 가변량이며 그것은 그의 경험이 증대함에 따라 증대하지 않을수 없는데 이것은 마치도 그가 알게 되는 새로운 욕망, 그의 생산물을 위한 시장의 확대, 그의 로동력중의 이 부분을 자유로 사용할수 있는 보증의 증대가 그를 자극하여 자신의 로동력의 긴장도를 높이도록 할것이라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될것은 이 로동력의 적용은 결코 농업에 국한되는것이 아니

라 농촌가내공업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소간에 유리한 사정들, 타고난 종족적특성 등등에 의존하는 일정한 경제적발전의 가능성이 이 경우에는 주어져있다.

Ⅲ. 생산물지대

로동지대의 생산물지대로의 전화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지대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지대의 본질은 여기에서 고찰하는 형태들에 있어서는 지대가 잉여가치 또는 잉여로동의 유일하게 지배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형태라는 점에 있다.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도 표현된다. 즉 지대는 자기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조건들을 **점유**하고있는 직접적생산자가 이 상태에서 모든것을 포괄하는 로동조건으로서의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지 않으면 안되는 유일한 잉여로동 또는 유일한 잉여생산물이며 또 타방으로는 직접적생산자에 대하여는 타인의 소유물이고 자기에 대하여 독립화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 인격화된 로동조건으로서 대립하는것은 다만 토지뿐이라고. 생산물지대가 지대의 지배적인, 가장 발전된 형태인 한 그것은 언제나 많게나적게나 이전의 형태의 잔재를 수반한다. 즉 직접 로동으로 지불되여야 할 따라서 부역로동으로 지불되여야 할 지대를 수반하며 령주가 사인이든 국가이든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생산물지대는 직접적생산자의 보다 높은 문화수준을 따라서 그의 로동 및 사회일반의 보다 높은 발전단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생산물지대를 이에 선행하는 형태와 구별하는것은 이제는 잉여로동이 그 자연적모습으로는 수행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제는 령주나 그의 대리인의 직

접적인 감독이나 강제하에서 수행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직접적생산자는 직접적강제 대신에 제 관계의 힘에 의하여, 채찍 대신에 법적규정에 의하여 구사되며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잉여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잉여생산, 즉 직접적생산자의 불가결한 수요를 넘어서 수행되며 사실상 그 자신에게 속하는 생산장소에서, 즉 그 자신이 리용하는 토지에서 수행되며 이전처럼 그의 농지와 나란히 그리고 그밖에 있는 령주의 농지에서 수행되는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잉여생산은 이 경우에는 이미 자명한 정칙으로 되여있다. 이러한 관계하에서는 직접적생산자는 자기의 전체 로동시간을 많게나 적게나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다. 비록 이 로동시간의 일부분, 시초에는 그 초과분의 거의 전부가 여전히 무상으로 토지소유자의것으로 되지만. 다만 토지소유자는 이것을 이제는 직접 그 자체의 현물형태로 받지 않고 그것이 실현되여있는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받을뿐이다. 토지소유자를 위한 로동으로 인한 시끄러운 중단, 그리고 부역로동의 규제에 따라서 다소간 교란적으로 끼여드는 중단(제1부 제8장 제2절 《공장주와 령주》를 참조)은 생산물지대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없어지며 혹은 또 생산물지대와 나란히 어떤 부역로동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년중의 얼마 안되는 짧은 중단기간으로 감소된다. 생산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로동과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로동은 이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순수한 형태의 생산물지대는 보다 발전된 생산방식과 생산관계에도 그 파편이 남아있을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경제를 전제로 한다. 즉 경제조건의 전부 또는 절대 대부분이 그 경제 자체에서 생산되고 그 경제의 총생산물중에서 직접 보상되고 재생

산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또 농촌가내공업과 농업과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지대를 형성하는 잉여생산물은 이 결합된 농공업적가족로동의 생산물인데 중세기에 흔히 볼수 있었던것과 같이 생산물지대중에 많든적든 공업생산물이 포함되는가 또는 본래의 토지생산물의 형태로만 제공되는가 하는것은 상관이 없다. 이 형태의 지대에서는 잉여로동을 표시하는 생산물지대는 결코 농촌가족의 전체 초과로동을 흡수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산자에게는 로동지대의 경우에 비하면 초과로동을 할 시간을 가지기 위한 보다 큰 여지가 주어지며 이 초과로동의 생산물이 그 자신에게 속하는것은 그의 가장 불가결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의 로동생산물이 그에게 속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이 형태와 함께 개개의 직접적생산자들의 경제적상태사이의 보다 큰 차이도 나타날것이다. 적어도 거기에는 이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 직접적생산자가 그 자신 또는 타인의 로동을 직접 착취하기 위한 수단을 얻을 가능성도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것이다. 여기서는 생산물지대의 순수한 형태를 문제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대의 각이한 형태들이 결합되고 불순화되고 혼합될수 있는 무한히 각이한 조합들에도 깊이 들어갈수 없다. 생산물지대의 형태가 생산물이나 생산 자체의 일정한 종류와 결부되여있다는것으로 말미암아, 이 형태에는 농업과 가내공업과의 결합이 불가결하다는것으로 말미암아, 농민가족이 그때문에 거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유지하고있는것으로 말미암아, 시장으로부터도 그리고 그들의 외부에 있는 사회부분의 생산이나 력사의 움직임으로부터도 농민가족이 독립하고있는것으로 말미암아, 요컨대 자연경제일반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 형태는 정지적인 사회상태의 기초를

이루기에 아주 적합한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례컨대 아시아에서 보는바와 같다. 이 형태에서는 그 이전의 로동지대의 형태에 있어서와 같이 지대는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이며 따라서 또 잉여로동의 정상적인 형태이다. 즉 직접적생산자가 무상으로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강제적으로—이 강제는 이제는 낡은 야만적인 형태로 그에게 대립하는것은 아니지만—그의 가장 중요한 로동조건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지 않으면 안되는 초과로동 전체의 정상적인 형태이다. 그릇되게 미리 말하는것이지만 필요로동을 넘는 직접적생산자의 로동의 초과분중 그가 자기 자신의것으로 만드는 부분을 리윤이라고 부른다면 그 경우에는 리윤이 생산물지대를 규정하는것은 아니며 리윤은 오히려 생산물지대의 배후에서 성장하며 생산물지대의 크기를 그의 자연적인 한계로 하는것이다. 이 생산물지대의 크기는 로동조건의 재생산, 생산수단 자체의 재생산을 엄중하게 위태롭게 하고 생산의 확대를 크게나적게나 불가능하게 하며 직접적생산자의 생존수단을 육체적최소한에까지 줄이는 정도에 달하게 할수 있다. 특히 이 형태가 정복자인 상업국민, 례컨대 인도에서의 영국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되고 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Ⅳ. 화폐지대

여기에서 화폐지대라고 하는것은—평균리윤을 넘는 초과분에 불과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기초한 산업지대 또는 상업지대와는 구별하여—생산물지대 자체가 로동지대의 전화된것에 불과한것과 같이 생산물지대의 단순한 형태전화로부

터 생기는 지대이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생산자는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물의 가격을 그의 토지소유자(이것이국가이건 사인이건 관계없이)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현물형태로서의 생산물초과분으로서는 이제는 부족하다. 초과분은 이 형물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직접적생산자는 여전히 자기의 생존수단의 적어도 최대부분을 스스로 계속 생산하지만 그의 생산물의 일부분은 이제는 상품으로 전화되여야 하며 상품으로서 생산되여야 한다. 따라서 생산방식 전체의 성격은 다다소소 변화된다. 그것은 사회적련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분리성을 상실한다. 이제는 많게나 적게나 생산비에 화폐지출이 들어가는 그 비률이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여하간 총생산물중 한편으로는 다시 재생산수단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생활수단으로서 복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을 넘어서 화폐로 전화하는 부분의 초과분이 결정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대의 기초는 이미 해체되여가고는 있으나 이 기초는 아직 출발점을 이루고있는 생산물지대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직접적생산자는 여전히 상속 또는 기타 전통에 의한 토지의 점유자이며 그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이 생산조건의 소유자인 령주에게 여분의 강제로동을 즉 부지불의, 등가없이 수행되는 로동을 화폐로 전화된 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제공하지 않으며 안된다. 토지와는 다른 로동조건들인 농기구 및 기타 동산의 소유는 이전의 형태들에서도 처음에는 사실상 그다음에는 법률상으로도 직접적생산자들의 소유로 전화되는데 화폐지대의 형태에 대하여서는 이러한것이 더욱 전제로 된다. 처음에는 산재적으로 그다음에는 다다소소로 전국적규모에서 진행되는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화는 상업, 도시공업, 상품생

산일반 따라서 화폐류통이 이미 보다 현저한 발전을 전제로 한다. 이 전화는 또 생산물들의 시장가격과 생산물이 다소간 그 가치에 근사한 가격으로 판매되는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이전의 형태들에서는 결코 필요한것은 아니다. 구라파 동부에서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 전화가 진행되는것을 목격할수 있다. 이러한 전화가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이 없이는 얼마나 수행되기 어려운가 하는것은 로마제정하에서 이 전화의 여러가지 시도가 실패한 사실에 의하여 그리고 이 지대중 적어도 국세로서 존재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화폐지대로 전화시키려고 한후에 현물지대로 되돌아간 사실들에 의하여 증명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행의 곤난은 례컨대 프랑스에서 혁명[369]전에 화폐지대가 그 이전의 형태들의 잔재에 의하여 혼화되고 불순화되고있었다는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그러나 생산물지대의 전화형태로서의 또 그것에 대립하는것으로서의 화폐지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하여온 종류의 지대의 즉 잉여가치 및 생산조건들의 소유자에게 제공할 부지불잉여로동의 정상적인 형태로서의 지대의 최종형태인 동시에 그 해체의 형태이다. 이 지대는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로동지대나 생산물지대와 마찬가지로 리윤을 넘는 초과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념상으로 말하면 리윤을 흡수해버린다. 리윤이 사실상 초과로동의 특수한 한 부분으로서 화폐지대와 나란히 발생하는 한에서는 화폐지대는 그 이전의 형태들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맹아적리윤의 정상적인 제한이며 이 맹아적리윤은 화폐지대로 표시되는 잉여로동을 수행한후에 남는 자신의 초과로동이나 타인의 로동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

적으로 이 지대외에 리윤이 발생한다면 리윤이 지대의 제한인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대가 리윤의 제한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바와 같이 화폐지대는 동시에 지금까지 고찰하여온바와 같은 얼핏 보아도 분명히 잉여가치 및 잉여로동과 일치되는 지대의 즉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지배적인 형태로서의 지대의 해체형태이기도 하다.

화폐지대는 그것이 가일층 발전하면—모든 중간형태 례컨대 소농민적차지인의 형태를 도외시하면—자유로운 농민적 소유로의 토지의 전화에 도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형태로 즉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가 지불하는 지대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다.

화폐지대와 함께 토지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경작하는 예속농민과 토지소유자간의 전통적인 관습법적관계는 필연적으로 계약적인, 실정법의 정칙에 따라 규정된 순수한 화폐관계로 전화된다. 그렇기때문에 경작자인 토지점유자는 사실상 단순한 소작인으로 된다. 이 전화는 한편으로는 기타의 일반적생산관계가 적합하면 재래의 농민적점유자들을 점점 수탈하고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로써 그들을 대체하는데 리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의 점유자가 돈을 지불하고 자기의 지대지불의무를 면제받아서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독립적농민으로 전화되게 한다. 그리고 또 현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화는 재산이 없는, 화폐로 고용되는 일용로동자계급의 형성을 필연적으로 동반할뿐만아니라 이 형성이 그 전화에 앞서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계급이 아직 산재적으로 나타날따름인 그 발생기에는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지대지불의무를 가진 농민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미 봉건시대에 얼마간 재산이 있는 예속적농민들 자신

이 다시 예농을 보유한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계산으로 농촌 고용로동자들을 착취하는 관습이 필연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 있어서는 일정한 재산을 모아서 자기 자신을 장래의 자본가로 전화시킬 가능성이 점점 발전한다. 이리하여 재래의 자기로 로동하는 토지점유자 자신들가운데서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들의 온상이 생기는데 그 발전은 농촌밖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의 일반적발전을 조건으로 하며 16세기의 영국에서 당시의 화폐의 루진적가치감소가 인습적인 장기차지계약하에서 토지소유자를 희생으로 하여 차지농업가들을 치부하게 한것과 같이 이 온상이 특히 유리한 사정으로 그들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특히 급속히 발전한다.

그리고 또 지대가 화폐지대의 형태를 취하고 그와 함께 지대를 지불하는 농민과 토지소유자간의 관계가 계약관계의 형태를 취하면—이러한 전화는 일반적으로 세계시장, 상업 및 제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이 이미 주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필연적으로 종래에는 농촌의 한계밖에 서있던 자본가에로의 토지의 임대가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러한 자본가는 도시에서 획득한 자본과 이미 도시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적경영방식 즉 단순한 상품이고 단순한 잉여가치취득수단인 생산물의 생산을 농촌과 농업으로 이전하는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될수 있는것은 봉건적생산방식으로부터 자본주의적생산방식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나라들의 경우뿐이다. 토지소유자들과 현실적으로 로동하는 농민간에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가 개입하게 되면 낡은 농촌적생산방식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관계는 해소된다. 차지농업가는 이러한 농업로동자들의 현실적인 지휘자로 되며 그들의 잉여로동의 현실적인 착취자로 되는데 한편

토지소유자는 다만 이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관계, 그것도 단순한 화폐관계 및 계약관계를 가진다. 이와 함께 지대의 성질도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이전의 형태하에서도 보게 된바와 같이 단지 사실상으로 우연적으로 변할뿐만아니라 정상적으로 그 공인된 지배적형태로 변한다. 지대는 잉여가치 및 잉여로동의 정상적인 형태로부터 이 잉여로동중 착취하는 자본가에 의하여 리윤의 형태로 취득되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으로 저락된다. 또 잉여로동 전체 즉 리윤과 리윤을 넘는 초과분이 이제는 직접 자본가에 의하여 착취되여 총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수득되고 화폐화된다. 그가 지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주는것은 다만 그가 자기의 자본으로써 농업로동자들을 직접 착취함으로써 짜낸 이 잉여가치의 한 초과분에 불과하다. 그가 토지소유자에게 주는것이 얼마나 많은가 또는 얼마나 적은가 하는것은 평균적으로는, 한계로서는 자본이 비농업적생산분야들에서 가져오는 평균리윤에 의하여 그리고 이 평균리윤에 의하여 규제되는 비농업적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대는 잉여가치 및 잉여로동의 정상적인 형태로부터 농업이라는 이 특수한 생산분야에 특유한 잉여로동의 초과분으로 즉 잉여로동중에서 자본이 미리 정상적으로 자기에 귀속되는것으로서 요구하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으로 전화된것이다. 지대 대신에 이제는 리윤이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로 되였으며 지대는 다만 잉여가치일반이 아니라 그 일정한 곁가지인 초과리윤이 특수한 사정하에서 독립한 한 형태로서 인정될뿐이다. 이 전화에, 어떻게 생산방식 자체의 점차적인 전화가 상응하는가 하는것에 이 이상 더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러한것은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도 명백하다. 즉 이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에 있어서는 토지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하는것이 정상적인것이라는 사실로부터도, 또 이전에는 그의 생활수단을 넘는 초과분만이 상품으로 전화되였는데 이제는 이 상품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부분만이 직접 그의 생활수단으로 전화된다는 사실로부터도 명백하다. 벌써 토지가 아니라 바로 자본이 이제는 농업로동까지도 자기와 자기의 생산성하에 직접 종속시킨것이다.

평균리윤 및 그것에 의하여 규제되는 생산가격은 농촌의 제 관계밖에서 도시의 상업과 제조업의 범위내에서 형성된다. 지대지불의무를 진 농민의 리윤은 리윤의 평균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농민의 관계는 자본주의적관계가 아니기때문이다. 그가 리윤을 얻는 한에서는 즉 그가 자기 자신의 로동에 의하여든 또는 타인의 로동에 대한 착취에 의하여든간에 자기의 필요생존수단을 넘는 초과분을 실현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정상적관계의 배후에서 수행되는것이고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한 이 리윤의 높이는 지대를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리윤의 한계로서의 지대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중세기에 리윤률이 높았던것은 자본의 구성이 낮아서 로임으로 투하되는 가변적요소가 우세를 차지하였다는데만 기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농촌에서 성행된 사기, 토지소유자의 지대와 그의 예속민의 수입의 일부분을 취득한데도 기인한다. 중세기에는 이딸리아에서처럼 봉건제도가 도시의 례외적인 발전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디서나 농촌이 도시를 정치적으로 착취하는데 한편 도시는 어디서나 례외없이 그 독점가격이나 그 조세제도나 그 동업조합제도나 그 직접적인 상인적사기나 그 고리대

에 의하여 농촌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가 농업생산에 출현한다는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즉 이러저러한 형태로 이전부터 지대를 지불해온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적어도 이 출현당시에는 제조업의 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이 이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독점가격의 높이에 달한때문이든 또는 그 가격이 토지생산물의 가치에까지 올랐고 이 가치가 평균리윤에 의하여 규제되는 생산가격보다 실제로 높기때문이든 상관없다는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가격이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주어져있을 때 우선 이 생산물의 가격으로부터 평균리윤을 실현하고 다음에 또 이 동일한 가격중에서 이 리윤을 넘는 초과분을 지대의 형태로 지불할수 없을것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할수 있을것이다. 즉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맺을때 그의 기준으로 되는 일반적리윤률은 지대를 포함함이 없이 형성되였으며 따라서 그것이 농업생산에서 규제적역할을 놀게 되면 이 초과분을 발견하여 그것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다고 례컨대 로드베르투스씨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문제를 설명하고있다.[350] 그러나

첫째로, 이와 같이 자본이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력량으로서 농업에 출현하는것은 단번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리고 특수한 생산부문들에서 진행된다. 이것이 우선 장악하는것은 본래의 농업이 아니라 목축 특히 목양과 같은 생산부문이다. 이 목양의 주요생산물인 양모는 산업의상승기에 처음에는 생산가격을 넘는 시장가격의 부단한 초과분을 제공하고 이 초과분은 후에야 비로소 평

균화된다. 례컨대 16세기의 영국에서 그러하였다.

둘째로, 이 자본주의적생산은 처음에는 다만 산재적으로 출현할뿐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정은 반대할수 없다. 즉 자본주의적생산이 처음에 지배하는것은 특수한 비옥도나 특히 유리한 위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차액지대를 지불할수 있는 토지들뿐이라는 가정이다.

셋째로, 사실상 도시수요의 비중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출현하였을 때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례컨대 17세기 마지막 3분의 1기에 영국에서 의심할바없이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생산가격보다 높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생산방식이 자본에의 농업의 단순한 종속으로부터 일정한 정도로 벗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이 생산방식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여있는 농업상의 개량과 생산비의 저하가 일어나기만 하면, 18세기의 전반기에 영국에서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토지생산물의 가격저하라는 반작용에 의하여 상쇄될 것이다.[370]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방식으로써는 평균리윤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를 설명할수 없다. 력사적으로 주어진 어떠한 조건하에서 지대가 처음 출현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뿌리를 박게 되면 지대는 이에 우에서 서술한바와 같은 현대적조건하에서만 발생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화에 관하여 또 지적하여야 할것은 이 전화와 함께 자본화된 지대 즉 토지가격이 따라서 토지의 양도가능성과 양도 자체가 본질적계기로 된다는것이며 또 그와 함께 이전의 지대지불의무자가 독립적인 농민적소유자로 전화될수 있을뿐만아니라 도시의 화폐소유자나 기타의 화폐소유자들도 토지를 구매하여 그것

을 농민이나 자본가에게 임대하고 그들이 이렇게 투하한 자본의 리자형태로서 지대를 받을수 있다는것이며 따라서 이 사정도 이전의 착취방식 즉 소유자와 현실적경작자와의 관계 및 지대 자체의 변화를 촉진한다는것이다.

V. 분익농제와 농민적분할지소유

우리는 여기서 지대에 대한 일련의 연구의 결말에 도달한다.

모든 이러한 지대형태들에 있어서는 즉 로동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생산물지대의 단순한 전화형태로서의)에 있어서는 지대지불자는 언제나 토지의 현실적인 경작자이고 점유자이며 그의 부지불잉여로동은 직접 토지소유자의것으로 된다는것이 전제로 되고있다. 마지막 형태인 화폐지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순수한 한에서는 즉 생산물지대의 단순한 전화형태인 한에서는 이러한 전제는 가능할뿐만아니라 실제로 그러한것이다.

지대의 시초적형태로부터 자본주의적지대로의 과도형태로 볼수 있는것은 분익농제인데 이 경우에는 경영자(차지인)는 로동(그 자신의 또는 타인의)외에 경영자본의 일부분을 제공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외에 경영자본의 다른 일부분(례컨대 가축)을 제공하며 생산물은 나라에 따라 다른 일정한 비률로 차지인과 토지소유자간에 분할된다. 완전한 자본주의적경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 한편으로는 차지인에게 충분한 자본이 결여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얻는 몫은 지대의 순수한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상 그가 선대한 자본에 대한 리자와 초과지대를 포함할수 있다. 그것은 또 사실상 차지인의 잉여로동전부를 흡수할수도 있으며 또는 이 잉여로동의 많거나 적은 일부를 차지인에게 남길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점은 이 경우에 지대는 이미 잉여가치일반의 정상적인 형태로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것이다. 한편으로는 차지인은 자기의 로동만을 사용하든 타인의 로동도 사용하든간에 로동자로서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로동도구의 일부분의 소유자로서의 자격, 자기 자신의 자본가로서의 자격으로 생산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몫을 다만 자기의 토지소유에 의해서뿐만아니라 또 자본의 대부자로서도 요구한다.(44a)

낡은 토지공유의 잔재는 독립적농민경영에로의 이행후에도 례컨대 뿔스까와 로므니아에서 유지되고있었는데 이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잔재가 보다 낮은 지대형태로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로 되여왔다. 토지의 일부분은 개개의 농민들에게 속하고 그들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경작된다. 다른 일부분은 공동으로 경작되고 잉여생산물을 형성하는데 이 잉여생산물은, 일부분은 공동체의 지출에 사용되고 일부분은 흉작 등에 대한 예비로서 사용된다. 잉여생산물중의 이 마지막 두 부분 그리고 결국은 잉여생산물 전체가 그것을 낳은 토지와 함께 점차로 국가관리나 사인에 의하여 략탈되며 이리하여 본래는 자유롭던 농민적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이들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은 부역의무자 또는 생산물지대지불의무자로 전화되는데 한편 공유지의 략

(44a) 뷔래, 또끄빌, 씨스몽디를 참조하라.[371]

탈자들은 략탈한 공유지를 소유할뿐만아니라 농민소유지까지도 소유하는 토지소유자로 전화된다.

본래의 노예경영(이것도 또한 주로 자가사용을 위한 가부장제로부터 세계시장을 위하여 일하는 본래의 식민지농장제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들을 통과한다)이나 지주경영에 대하여서는 이 이상 상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지주경영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경작하고 모든 생산도구를 소유하며 현물급여 또는 화폐로써 지불을 받는 부자유적인 고용농민이나 자유적인 고용농민의 로동을 착취하는것이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생산도구들의 소유자 따라서 또 이 생산요소들에 들어가는 로동자의 직접적착취자는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지대와 리윤도 일치하며 잉여가치의 각이한 형태들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잉여생산물로 표시되는 로동자들의 전체 잉여로동읍 직접 모든 생산도구의 소유자가 로동자들로부터 짜내는데 이 생산도구중에는 토지와 노예제의 최초의 형태에서는 직접적생산자 자신도 포함된다. 아메리카의 식민지농장들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적관념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이 잉여가치 전체가 리윤으로 간주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이 생산방식에 상응하는 관념이 아직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이식되지도 않은 곳에서는 그것은 지대로서 나타난다. 여하튼 이 형태는 아무런 곤난도 보여주지 않는다.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든 토지소유자의 수입 즉 그에 의하여 취득되는,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잉여생산물은 이 경우에는 부지불잉여로동의 전부가 직접 취득되는 정상적이며 지배적인 형태이며 토지소유는 이 취득의 기초를 이룬다.

그리고 또 **분할지소유**를 보기로 하자. 농민은 이 경우에

는 동시에 그의 토지의 자유로운 소유자이며 그의 토지는 그의 주요한 생산도구로서 나타나며 그의 로동과 자본의 불가결한 종업장소로서 나타난다. 이 형태에서는 어떠한 차지료도 지불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대는 잉여가치의 단독적형태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기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지대는 다른 생산부문과 비한 초과리윤으로서 나타나기는 하나 농민의 로동의 전체 수익이 그렇게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농민의것으로 되는 초과리윤으로서 나타나는것이지만.

토지소유의 이 형태는 다음과 같은것을 전제로 한다. 즉 그 이전의 보다 낡은 토지소유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인구가 도시인구에 비하여 수적으로 현저한 우세를 차지한다는것 따라서 비록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지배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발전하지 않았으며 그때문에 또 다른 생산부문들에서도 자본의 집적은 협소한 한계내에서 움직이고 자본의 분산이 우세하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농업생산물의 압도적인 부분이 그 생산자인 농민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인 생존수단으로서 소비되지 않으면 안되며 다만 그것을 넘는 초과분만이 상품으로서 도시와의 상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토지생산물의 평균시장가격이 어떻게 규제되든간에 차액지대, 즉 보다 좋은 토지 또는 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에 있어서의 상품가격의 초과부분은 분명히 이 경우에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체로 아직 일반적시장가격이 전혀 발전하지 않은 사회형태에서 이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차액지대는 존재한다. 그 경우에는 차액지대는 초과잉여생산물로서 나타난

다. 다만 그것은 보다 유리한 자연조건하에서 자기의 로동을 실현하는 농민의 주머니로 들어갈뿐이다. 바로 이 형태에서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토지의 가격이 하나의 요소로서 사실상의 생산비에 들어가며—왜냐하면 이 형태가 가일층 발전하면 유산분할에 있어서 토지가 일정한 화폐가치로 인수되기때문이며 또는 전체 재산이나 그 구성부분의 부단한 이전에 있어서 토지가 경작자 자신에 의하여 대부분은 저당으로 빌린 화폐로 구입되기때문이다—따라서 자본화된 지대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토지가격이 이 형태에서는 하나의 전제적요소이며 그렇기때문에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의 어떠한 차이와도 관계없이 존재하는것 같이 보이는데 바로 이 형태에 있어서야말로 일반적으로 절대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가장 나쁜 토지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다. 왜냐하면 절대지대는 생산물의 가치중 생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이 실현된것이든가, 또는 생산물의 가치보다 높은 독점가격을 전제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농업의 대부분은 직접적생존유지를 위한 경작으로서 존재하고 토지는 인구의 다수에 대하여 그들의 로동 및 자본의 불가결한 종업장소로서 존재하기때문에 생산물의 규제적시장가격은 특별한 사정하에서만 그 가치에 도달할것이다. 그런데 이 가치는 산로동이라는 요소가 우세하기때문에 통례로 생산가격보다 높을것이다. 비록 가치중 생산가격을 넘는 이 초과분도 분할지경영이 우세한 나라들에서는 비농업자본의 구성이 낮은것으로 하여 역시 제한되고있을것이지만. 분할지농민에게 있어서의 착취의 한계로서 나타나는것은 일방으로는 그가 소자본가인 한에서는 자본의 평균리윤이 아니고 타방으로는 그가 토지소유자인 한에서는 지대의 필요성도 아니다. 소

자본가로서의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한계로서 나타나는것은 본래의 비용들을 공제한후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는 로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생산물의 가격이 그에게 로임을 보충하는 한에서는 그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할것이다. 그리고 흔히 로임이 육체적최소한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할것이다. 토지소유자로서의 그의 자격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토지소유에 의한 제한은 없어지는데 이 제한이 제한으로서 작용할수 있는것은 다만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자본(로동을 포함하여)에 대립하여 자본의 투하에 대한 장애를 이루는데 의하여서이다. 대개는 어떤 제삼자 즉 저당권자에게 지불되여야 할 토지가격의 리자는 확실히 하나의 제한인것이다. 그러나 이 리자는 바로 잉여로동중 자본주의적 제 관계하에서는 리윤을 형성할 부분에서 지불될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토지가격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지불되는 리자에 있어서 예상되는 지대는 농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로동을 넘는 그의 잉여로동이 상품가격중 전체 평균리윤과 같은 부분으로 실현됨이 없이, 더구나 평균리윤으로 실현되는 잉여로동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초과리윤으로 실현됨이 없이 자본화된 잉여로동의 일부분이외의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지대는 평균리윤으로부터의 한 공제분일수도 있고 혹은 또 지어는 평균리윤중 유일하게 실현되는 부분일수도 있다. 따라서 분할지농민이 자기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서는, 또는 경작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서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와 같이 토지생산물의 시장가격이 그에게 평균리윤을 가져오리만큼 등귀할 필요는 없으며 더구나 이 평균리윤을 넘어서 지대의 형태로 고정되는 초과분을 가져오리만큼 등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그의 생산물의 가치 또는 생산가격의 수준으로까지 등귀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곡물의 가격이 분할지소유가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나라들에서보다 낮은 원인의 하나이다.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로동하는 농민들의 잉여로동의 일부분은 무상으로 사회에 증여되고 생산가격의 규제에도 가치형성일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가격은 생산자들의 빈궁의 결과인것이고 결코 그들의 로동의 생산성의 결과인것은 아니다.

자영농민들의 이 자유로운 분할지소유형태는 지배적이며 정상적인 형태로서는, 일방으로는 고전적고대의 최성기에 있어서의 사회의 경제적기초를 이루는것이고, 타방으로는 현대적 각국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을 봉건적토지소유의 해체로부터 나오는 형태의 하나로서 발견하게 된다. 영국의 자유농민[268], 스웨리예의 농민신분, 프랑스와 서부독일의 농민이 그러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식민지에 관하여서는 문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립농민은 식민지에서는 다른 조건하에서 발전하기때문이다.

자유농민의 자유소유는 분명히 소경영을 위한 토지소유의 가장 정상적인 형태이다. 즉 이 소경영의 생산방식에 있어서는 토지의 점유는 로동자가 자기 자신의 로동의 생산물에 대한 소유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며 그리고 경작자는 자유소유자이든 예속농민이든간에 언제나 자기의 생존수단을 자기 자신으로 독립하여 고립적로동자로서 자기의 가족과 함께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토지소유가 이러한 생산방식의 완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것은 마치도 도구의 소유가 수공업적경영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는 개인적독립의 발전을 위한 기초

로 된다. 그것은 농업 자체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필요한 과도적단계이다. 이 토지소유를 몰락시키는 원인들은 이 토지소유의 한계를 표시한다. 그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이 토지소유의 정상적인 보충으로 되는 농촌가내공업이 대공업의 발전으로 하여 파멸되는것, 이렇게 경작되고있던 토지가 점차 척박하여져 더 짜낼수 없게 되는것, 어디서나 분할지경영의 제2의 보충으로 되고 또 그때문에 가축의 사육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지가 대토지소유자들에 의하여 략탈되는것, 식민지농장으로서 경영되거나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는 대규모경작이 경쟁에 참가하는것이다. 일방으로는 토지생산물가격의 저락을 초래하고 타방으로는 보다 큰 투자와 보다 풍부한 물질적생산조건들을 필요로 하는 농업상의 개량도 상술한 토지소유의 몰락에 기여하는것은 18세기 전반기에 영국에서 볼수 있었다.

분할지소유는 그 성질로 보아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발전, 로동의 사회적형태, 자본의 사회적집적, 대규모의 축산, 과학의 루진적응용을 배제한다.

고리대와 조세제도는 도처에서 분할지소유를 파멸시키지 않을수 없다. 자본을 토지가격에 투하하는것은 이 자본을 경작으로부터 끌어낸다. 생산수단은 무한히 분산되고 생산자 자신은 무한히 분리된다. 인간력의 막대한 랑비가 일어난다. 생산조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생산수단이 비싸게 되는것은 분할지소유의 필연적법칙이다. 이 생산방식에 있어서의 풍작도 불행으로 된다.(45)

소농업이 자유로운 토지소유와 결부되여있는 경우의 특

---

(45) 투크가 인용한 프랑스 국왕의 연설을 보라.[372]

수한 결함의 하나는 경작자가 자본을 토지의 구입에 투하한다는것으로부터 생긴다(동일한것은 대토지소유자가 첫째로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둘째로는 자기 자신의 차지농업가로서 이 토지를 자기로 경영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하하는 과도적형태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가 단순한 상품으로서 가동성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의 변경이 많아진다.(46)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마다, 유산분할이 있을 때마다 토지는 농민의 립장에서 보면 새로 투자로서 들어간다. 바꾸어말하면 농민에 의하여 구입되는 토지로 된다. 이 경우에는 토지가격은 개별적인 허위적생산비 또는 개별적생산자들에게 있어서의 생산물의 비용가격의 하나의 압도적요소를 이룬다.

토지가격이란 자본화된 따라서 앞당겨 치른 지대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농업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고 토지소유자는 지대만을 받으며 차지농업가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년지대외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구입에 투하한 자본은 그에게 있어서는 물론 리자를 가져오는 투자이지만 농업 자체에 투하된 자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농업에서 기능하는 고정자본의 일부분을 이루는것도 아니고 류동자본의 일부분을 이루는것도 아니다.(47) 그것은 오히려 다만 구매자에게 년지대를

---

(46) 무니에 및 뤼비송을 보라.[373]

(47) 박사 H. 마론씨(《조방인가 집약인가?》[이 소책자에 관하여 더 자세한것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자기가 공격하고있는 상대편의 그릇된 전제로부터 출발하고있다.[374] 그는 토지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은 《투하자본》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에는 투하자본과 경영자본 즉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각 개념규정에 대하여 론쟁하고있다. 자본일반에 관한 그의 전혀 학생적인 견해—비록 그것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독일 《국민경제학》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용서되여야 할것이기는 하지만—때문에 이 자본이 투하자본도 경영자본도 아니라는것을 그는 모른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거래소에서 주

받을데 대한 권리를 제공할따름이고 이 지대의 생산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 토지구매자는 바로 토지판매자에게 자본을 지불하는것이고 그 대신에 판매자는 자기의 토지소유를 포기한다. 따라서 이 자본은 이제는 구매자의 자본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이제는 그 자본을 가지고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구매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토지 자체에 투하할수 있는 자본에는 속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토지를 비싸게 구입하였는가 싸게 구입하였는가 또는 무상으로 얻었는가 하는것은 차지농업가가 경영에 투하하는 자본을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며 또 지대를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며 다만 지대가 그에게 대하여 리자로서 나타나는가 리자가 아닌것으로서 나타나는가 또는 높은 리자로서 나타나는가 낮은 리자로서 나타나는가 하는것을 변경시킬따름이다.

례컨대 노예경영을 들어보자. 이 경우에는 노예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가격은 노예로부터 짜낼 잉여가치 또는 리윤이 앞당겨 치러지고 자본화된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노예의 구입에 지불되는 자본은 노예로부터 리윤 또는 잉여로동을 짜내는데 필요한 자본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이다. 그것은 노예소유자가 양도한 자본이고 그가 현실적생산에서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자본으로부터의 공제이다. 그것은 노예소유자에 있어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였으며 그것은 마치도 토지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이 농업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하여주는것은 노예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노예 또는 토지를 다시 판매한 때에야 비로소 그 자본은 다시 그에게

식이나 국채의 구입에 투하한 자본이 그 개인에 대하여는 투자를 표시하지만 어떠한 생산부문에 《투하》 되는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존재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매자에게 있어서 동일한 관계가 생긴다. 그가 노예를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그로 하여금 노예를 착취할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그 착취는 그가 노예경영 자체에 또 다른 자본을 투하하는데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것이다.

동일한 자본이 이중으로 존재하는것은 아니다. 즉 토지를 판매한 사람의 수중에 있으면서 또 토지를 구매한 사람의 수중에 존재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매자의 수중으로부터 판매자의 수중으로 이전하는것이며 그것으로 일은 끝난다. 구매자는 이제는 자본은 가지고있지 않으나 그 대신에 토지를 가지고있다. 이 토지에서의 현실적투자로부터 얻는 지대가 이번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그가 이 토지에 투하한 자본의 리자로서가 아니라 토지의 획득을 위하여 투하한 자본의 리자로서 간주한다는 사정은 토지라는 요인의 경제적성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데 이것은 마치도 어떤 사람이 3% 리률의 공채에 1,000파운드를 지불하였다는 사정이 국채의 리자를 지불하기 위한 수입을 가져오는 자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토지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되는 화폐가 국채의 구입에 지출되는 화폐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다만 **그 자체로서**만 자본인데 이것은 어떠한 가치액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그 자체로서 자본이며 잠세적자본인것과 마찬가지이다. 토지에 지불되는것은 국채나 기타 구매상품에 지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화폐액이다. 이 화폐액은 그 자체로서 자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으로 전화될수 있기때문이다. 판매자가 입수한 화폐가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화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

가에 달려있다. 구매자에 있어서는 그 화폐가 이제는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없다. 그것은 그가 다른 어떤 화폐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출하면 그 기능을 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화폐가 그에게 있어서는 리자부자본으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가 토지의 지대로서나 국채의 리자로서 받은 수입을 자기가 이 수입의 청구권의 구입에 소비한 화폐의 리자로서 계산하기때문이다. 구매자가 그것을 자본으로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다시 팔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또 다른 한 사람 즉 새로운 구매자가 원구매자가 처하였던것과 동일한 관계에 들어서는것이며 이렇게 지출된 화폐는 그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여도 지출자에 있어서는 현실적자본으로 전화될수 없다.

소토지소유의 경우에는 토지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있어서 기계나 원료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자본으로서 생산물의 생산가격에 들어가는듯한 환상은 훨씬 더 확고하여진다. 그러나 이미 본바와 같이 지대가 따라서 자본화된 지대로서의 토지가격이 토지생산물의 가격에 규정적으로 들어갈수 있는것은 다만 두 경우뿐이다. 첫째로는 농업자본—토지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자본—의 구성에 의하여 토지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보다 높으며 또 시장관계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 차액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독점가격이 생기는 경우이다. 그런데 두 경우가 다 분할지경영이나 소토지소유하에서는 극히 드문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경우들에는 생산은 극히 대부분 자기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이고 일반적리윤률에 의한 조절과는 관계없이 진행되기때문이다. 분할지경영이 임차지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임차료는 다른 어떠한 관계하에서보

다 훨씬 더 많이 리윤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심지어는 로임으로부터의 공제분까지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차지료는 명목적지대에 불과하고 로임이나 리윤에 대립하는 독립적범주로서의 지대인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토지의 구입을 위한 화폐자본의 지출은 농업자본의 투하가 아니다. 이 지출은 소농민이 자기의 생산분야 자체에서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자본을 그만큼 감소시킨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산수단의 량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생산의 경제적기초를 협소하게 만든다. 그것은 소농민을 고리대에 예속시킨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본래의 신용은 조금밖에 실시되지 않기때문이다. 그것은 이 토지구입이 대지주경영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도 농업의 장애로 된다.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모순되는데 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채무를 지고있는가 어떤가, 그가 그 소유지를 상속하였는가 또는 그것을 구입하였는가 하는것은 대체로 상관이 없다. 그가 지대를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는가 또는 그것을 다시 저당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은 임차지 자체의 경영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미 본바와 같이 지대가 주어진 경우에는 토지가격은 리자률에 의하여 규제된다. 리자률이 낮으면 토지가격은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높은 토지가격과 낮은 리자률은 병행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만일 리자률이 낮기때문에 농민이 토지에 대하여 고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낮은 리자률은 또 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자본을 신용으로 제공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분할지소유가 지배하는 경우에는 사태

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첫째로, 신용의 일반적법칙들은 농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자본가로서의 생산자를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둘째로, 분할지소유가 지배하고—여기에서는 식민지는 문제로 하지 않는다—분할지농민이 국민의 기본을 이루는 경우에는 자본형성, 즉 사회적재생산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또 상술한 의미에서의 대부될수 있는 화폐자본의 형성은 더욱 미약하다. 이 화폐자본의 형성은 집적을 전제로 하며 부유하고 무위도식하는 자본가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매씨)[375]. 셋째로,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가 생산자의 대다수에 대하여 생활조건을 이루며 또 그들의 자본을 위한 불가결의 투하장소를 이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릉가하는데 의하여 토지가격은 리자률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흔히 리자률과 반비례하여 등귀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는 분할지로서 판매되면 크게 모두어 판매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작은 구매자의 수는 많고 큰 구매자의 수는 적기때문이다(매점동맹[376], 뤼비숑[377], 뉴먼[378]). 이 모든 원인들로 하여 이 경우에는 토지가격은 리자률이 비교적 높더라도 등귀한다. 이 경우에 농민이 토지구입에 투하한 자본으로부터 얻는 상대적으로 낮은 리자(무니에[379])에 대하여 여기서는 반대되는 측면으로 농민 자신이 그의 저당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리대적인 높은 리자률이 상응한다. 아일랜드의 제도[380]도 동일한것을 보여주는데 다만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보여줄따름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생산 자체와는 관계없는 토지가격이라는 요소가 이 경우에는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에까지 도달할수 있다(동발).

토지가격이 이러한 역할을 논다는것, 토지의 매매, 상품으로서의 토지의 류통이 이러한 정도에까지 발전한다는것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의 결과이다. 즉 이 생산방식하에서는 상품이 모든 생산물과 모든 생산도구의 일반적형태로 되는 한에서는 그러한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발전이 있게 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제한된 발전을 할따름이고 그 특성을 아직 전부 전개하지 않은 경우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전은 바로 농업이 이미—또는 아직—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 놓이지 않고 이미 몰락된 사회형태로부터 전하여온 생산방식하에 놓이고있다는데 립각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결함과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물의 화폐가격에 의존하는것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불충분한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결함과 일치한다. 농민은 자기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할수 있는 조건이 없이 상인으로 되고 산업가로 되는것이다.

생산자에 있어서의 비용가격의 요소로서의 토지가격과 생산물에 있어서의 생산가격의 비요소로서의 토지가격(토지생산물의 가격에 지대가 규정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20년이나 또는 그 이상의 년간에 걸쳐 선대되는 자본화된 지대는 결코 그것에 규정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간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토지사유와 합리적농업과의 즉 토지의 정상적인 사회적리용과의 모순이 표시되는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사유 따라서 직접적생산자들로부터의 토지의 수탈—일방의 사람들에 의한 토지의 사유는 타방의 사람들에 의한 토지의 비소유를 포함한다는 사유—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이다.

이 소규모적인 경작에서는 토지의 사유의 형태이며 결과

인 토지의 가격은 생산 자체의 제한으로서 나타난다. 대농업과 자본주의적경영방식에 기초하고있는 대토지소유에 있어서도 소유는 역시 제한으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소유는 차지농업가에 대하여 결국은 자기의 리익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리익으로 되는 생산적투자를 하는것을 제한하기때문이다. 이 두 형태에 있어서 다 토지를, 공동적이며 영구적인 소유로서, 교체되여가는 인간세대의 련쇄의 양도할수없는 생존 및 재생산 조건으로서 자각적이며 합리적으로 취급할 대신에 지력의 착취와 탕진이 나타난다(이 착취를 사회적발전의 도달된 수준에 의존케 하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생산자들의 우연적이며 불균등한 사정들에 의존케 한다는것은 도외시하더라도). 소소유의 경우에는 이것은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과 과학이 결여한데로부터 생긴다. 대소유의 경우에는 차지농업가와 소유자의 부를 될수있는대로 급속히 늘이기 위하여 이 수단을 리용함에 따라 그것이 생긴다. 두 경우에 다 시장가격에의 의존에 의하여 그것이 생기는것이다.

소토지소유에 대한 모든 비판은 결국 농업에 대한 제한 및 장애로서의 사유에 대한 비판에 귀착된다. 대토지소유에 대한 반대적비판도 역시 그러하다. 정치적인 부차적고려는 여기에서는 물론 두 경우에 다 도외시한다. 이러한 제한과 장애는 온갖 토지사유가 농업생산에 대하여 그리고 토지 그 자체의 합리적취급, 유지 및 개량에 대하여 설치되는데 그것이 다만 대토지소유와 소토지소유에 있어서는 각이한 형태로서 발전할뿐이며 폐해의 이 특수한 형태들에 관한 론쟁에서는 폐해의 궁극적원인은 망각된다.

소토지소유가 전제로 하는것은 인구의 압도적다수가 농

촌에서 살고 사회적로동이 아니라 고립적로동이 지배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부와 재생산의 발전, 그 물질적조건과 정신적 조건의 발전은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배제되고있으며 따라서 또 합리적경작의 조건도 배제되고있다는것이다. 타방으로 대토지소유는 농업인구를 부단히 저하되는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대립하여 대도시에 밀집하는 공업인구를 부단히 증대시킨다. 이리하여 대토지소유에 의하여 발생된 제 조건은 생명의 자연법칙에 의하여 지시되는 사회적물질대사의 과정에 회복될수 없는 틈을 조성시키는데 그때문에 지력은 랑비되고 또 이 랑비는 상업을 통하여 자국의 경계를 넘어서 먼곳으로 운반되여간다(리비히[381]).

만약 소토지소유가 원시적사회형태의 온갖 조야와 문명제국의 모든 고통 및 모든 불행을 겸한, 절반 사회밖에 놓여있는 미개인계급을 만들어낸다면 대토지소유는 로동력을 그 자연발생적에네르기의 도피장소이고 그것을 제 국민의 생명력의 갱신을 위한 예비원천으로서 저장되는 최후의 령역인 농촌 그 자체에서 파괴한다. 대공업과 공업적으로 경영되는 대농업은 함께 작용한다. 원래 이 량자를 구별하는것은 전자는 보다 더 로동력을, 따라서 인간의 자연력을 랑비하고 파멸시키고 후자는 보다 더 직접 토지의 자연력을 랑비하고 파괴하는것이라면 그후의 발전행정에서는 량자는 손을 잡고 나간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도 공업적체계가 로동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동시에 공업과 상업은 또 농업에 토지를 피폐시키는 수단을 제공하기때문이다.

제 7 편

제 수입과 그 원천[382]

제 48 장

삼위일체적공식

I(48)[383]

자본-리윤(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 토지-지대, 로동-로임, 이것은 사회적생산과정의 모든 비밀을 포함하는 삼위일체적형태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① 리자는 자본의 본래의 특징적인 산물로서 나타나나 기업자리득은 이와는 반대로 자본과는 관계없는 로임으로서 나타나므로 이 삼위일체적형태는 보다 상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귀착된다.

자본-리자, 토지-지대, 로동-로임. 이 형태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특수하게 특징짓는 잉여가치형태인 리윤은 다행히도 제거되고있다.

---

(48) 이하의 세 단편은 제6편 원고의 여기저기에 있는것이다.—F. 엥겔스

---

① 본권 제23장을 보라.—편집자

그러면 이 경제적삼위일체를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것을 발견할수 있다.

첫째로, 매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부의 소위 원천들은 전혀 각이한 분야에 속하며 서로 아무런 류사점도 없다. 그것들간의 호상관계는 공증인의 수속비와 순무우와 음악간의 관계나 다름없다.

자본, 토지, 로동! 그러나 자본은 물건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인, 일정한 력사적사회구성체에 속하는 생산관계이며 이 생산관계가 어떤 물건으로 나타나고 이 물건에 특수한 사회적성격을 부여하는것이다. 자본은 물질적인 생산된 생산수단의 합계가 아니다. 자본이란 자본으로 전화된 생산수단이며 생산수단 그 자체가 자본이 아닌것은 금은 그 자체가 화폐가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사회의 일정한 부분에 의하여 독점된 생산수단이며 산로동력에 대하여 독립화된, 다름아닌 이 로동력의 생산물과 활동조건인바 이것들이 이 대립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격화되는것이다. 자본은 로동자의 생산물이 독립적인 력량으로 전화된것, 그 자신이 생산자들의 지배자 및 구매자로서의 생산물일뿐만아니라 이 로동의 사회적력량과 장래의…{? 알아보기 어렵다}① 형태가 로동의 생산물의 속성으로서 로동자에게 대립하게 된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나의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생산과정의 요인의 하나가 가지고있는 일정한, 일견 극히 신비적인 사회적형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본과 함께 토지가, 무기적인 자연자체가, 전적으로 야생 그대로의 《조잡하고 혼돈된 덩어

① 우리는 《사회적력량 및 관련되는 형태》로 판독한다.—편집자

리》[384]가 있다. 가치는 로동이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토지일 수 없다. 토지의 절대적비옥도는 일정한 량의 로동이 토지의 자연적비옥도에 의하여 제약된 생산물을 제공한다는것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가져오는것은 같은 량의 로동과 자본, 따라서 같은 가치가 다른 량의 토지생산물들로 나타난다는것, 따라서 이 생산물들이 다른 개별적가치를 가진다는것이다. 이 개별적가치가 시장가치로 평균화된다는것은,

《나쁜 토지에 비하여 비옥한 토지가 가져오는 리익은…경작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지주에게로 이전된다》(리카도 《원리》, 62페지)

는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삼위일체중의 제3위[385]로서 단순한 유령—로동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상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 그 자체로서 본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또는 만약 우리가…{알아볼수 없다}취하여 본다면①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의 물질변환을 그에 의하여 매개하는 생산적활동일반이다. 그런데 이것은 온갖 사회적형태나 성격규정도 벗어났을뿐만아니라 사회와 독립한, 어떠한 사회로부터도 떠난 그 단순한 자연적존재에 있어서까지도 이러한 매개를 하는것이며 또 생명의 발현과 생명의 실증으로서 대체로 아직 사회적이 아닌 인간에 대하여서나,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에 대하여서나 공통한것이다.

①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로 본다면》으로 판독한다.—편집자

II

자본-리자. 토지소유, 토지의 사적소유 그것도 근대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상응하는 사적소유-지대. 임금로동-로임.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수입의 원천들사이의 련관은 존재한다. 자본과 마찬가지로 임금로동과 토지소유는 력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형태이다. 하나는 로동의 사회적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된 토지의 사회적형태이며 그것도 량자가 다 자본에 상응하는 동일한 경제적사회구성체에 속하는 형태이다.

이 공식에서 첫째로 눈에 띄우는것은 자본과 나란히, 한 생산요소의 형태, 즉 일정한 생산방식에 속하고 사회적생산과정의 일정한 력사적모습에 속하는 형태와 나란히, 따라서 일정한 사회적형태와 결합되였으며 이 사회적형태로 나타나는 한 생산요소와 나란히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이라는 현실적인 로동과정의 두 요소가 단순히 배렬되여있다는것인데 이러한것들은 그 소재적형태에 있어서 모든 생산방식들에 공통하며 온갖 생산과정의 소재적요소들이고 이 생산과정의 사회적형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들이다.

둘째로, 자본-리자, 토지-지대, 로동-로임이라는 공식에서는 자본, 토지, 로동은 각각 그것들의 생산물이고 과실인 리자(리윤이 아니라), 지대 및 로임의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전자는 근거이고 후자는 귀결이며 전자는 원인이고 후자는 결과이다. 그것도 매개 원천들은 자기로부터 떨어져나오고 생산된것으로서의 그것들의 생산물에 관련되여있는것이다. 리자

(리윤이 아니라), 지대, 로임이라는 세 수입은 모두 생산물의 가치의 세 부분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부분들이며 또는 화폐로 표현하면 일정한 화폐부분이며 가격부분이다. 그런데 자본-리자라는 공식은 자본의 가장 무개념적인 공식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자본의 한 공식이다. 그러나 토지는 어떻게 가치를, 즉 사회적으로 규정된 량의 로동을, 그것도 그 자체의 생산물의 가치중 지대를 형성하는 특수한 부분을 창조할수 있는가? 토지는 례컨대 밀이라는 사용가치의, 물질적생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토지는 **밀의 가치**의 생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가치가 밀에 나타나는 한에서는 밀은 일정한 량의 대상화된 사회적로동으로서 간주될따름이며 이 로동을 표시하는 특수한 소재나 또는 이 소재의 특수한 사용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1) 다른 사정들이 동등하다면 밀이 싼가 비싼가 하는것은 토지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농업로동의 생산성은 자연조건들과 결부되여있으며 이 생산성여하에 따라 동일한 량의 로동은 많은 또는 적은 량의 생산물로, 사용가치로 표시된다. 1쉐펠로 표시되는 로동량의 크기는 동일한 량의 로동이 몇 쉐펠을 제공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경우에 가치가 얼마만한 량의 생산물로 표시되는가 하는것은 토지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 가치는 이러한 분배에는 관계없이 주어져있는것이다. 가치는 사용가치로 표시된다. 그리고 사용가치는 가치창조의 하나의 조건이다. 그러나 일방에는 하나의 사용가치, 즉 토지가 서있고 타방에는 가치가, 그것도 더구나 하나의 특수한 가치부분이 서있다는 대립을 만들어내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 {여기에서 원고는 중단되고있다.[386]}

III

속류경제학은 자산계급적생산관계에 사로잡힌 이 생산의 당사자들의 제 관념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하고 변호하는 이외에는 실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제적 제 관계의 소외된 표현형태, 거기서는 이 경제적 제 관계가 일견하여 황당하고 완전한 모순인것 같은 효현형태—그리고 만약 사물의 효현형태와 본질이 직접 일치한다면 온갖 과학은 무용한것으로 될것이다—바로 이러한 효현형태에서 속류경제학은 아주 편안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제 관계의 내적련관이 은폐되면 될수록, 이 제 관계가 평범한 관념에 익숙하면 할수록 속류경제학에는 그만큼 더욱 자명한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도 기이한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속류경제학은 자기가 출발점으로 하고있는 삼위일체, 즉 토지—지대, 자본—리자, 로동—로임 또는 로동의 가격이라는 삼위일체가 3개의 일견 불가능한 조합이라는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우선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 **토지**라는 사용가치와 **지대**라는 교환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사회적관계가 물건으로서 파악되여 자연에 대한 비례관계에 놓여있다. 즉 두개의 비교할수 없는 량이 하나의 상호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는 **자본-리자**이다. 만약 자본이 화폐에 독립적으로 표시된 일정한 가치액으로서 리해된다면 어떤 가치가 그것이 값가는것보다 더 큰 가치라는것은 얼핏 보아도 분명히 무의미하다. 바로 자본-리자라는 형태에서는 일체의 매개는 사라지고 자본은 그것의 가

장 일반적인, 그러나 그때문에 그 자체로부터는 설명될수 없는 불합리한 공식으로 환원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속류경제학자는 자본-리윤이라는 공식보다는 오히려 어떤 가치가 그 자체와 동등하지 않다는 신비로운 성질을 가진 자본-리자라는 공식을 택한다. 왜냐하면 전자에 있어서는 벌써 현실적인 자본관계에 보다 접근하게 되기때문이다. 그리고 또 4는 5가 아니며 따라서 100탈레르는 110탈레르일수 없다는 불안감때문에 속류경제학자는 가치로서의 자본으로부터 자본의 소재적실체로 도피한다. 즉 기계, 원료 등등과 같은 로동의 생산조건으로서의 자본의 사용가치로 도피한다. 그리하여 또다시 4=5이라는 리해할수 없는 최초의 관계 대신에, 일방의 사용가치인 물건과 타방의 일정한 사회적생산관계인 잉여가치사이의 전혀 비교될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데 토지소유의 경우가 그러하다. 속류경제학자가 일단 이 비교할수 없는것에 도달하게 되면 그에게는 모든것이 명백하게 되며 그는 그 이상 깊이 생각해볼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자산계급적관념의 《합리적인것》에 도달하였기때문이다. 끝으로 **로동-로임** 즉 로동의 가격이라는 표현은 이미 제1부①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분명히 가치의 개념에 모순되는 표현이며 마찬가지로 또 일반적으로 그 자체는 다만 가치의 일정한 표현에 불과한 가격의 개념에도 모순되는 표현이다.[387]

그리고 《로동의 가격》이란것도 이를테면 《황색의 대수》라는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속류경제학자는 점점 더 만족해한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자기는 로동에 대하여 화폐를 지불한다는 자산계급의 깊은 인식에

---

① 《자본론》 제1권을 가리킨다.—편집자

도달하였기때문이며 또 바로 가치의 개념에 대한 이 공식의 모순은 가치를 리해할 의무로부터 그를 해방시키는것이기때문이다.

우리가(49)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사회적생산과정일반의 력사적으로 규정된 한 형태이다. 이 사회적생산과정은 인간생활의 물질적생존조건들의 생산과정인 동시에 특수한 력사적, 경제적 생산관계속에서 진행되는 이 생산관계 자체를 생산하며 재생산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또 이 과정의 담당자들을, 그들의 물질적생존조건들과 그들의 호상관계들을 즉 그들의 일정한 경제적사회형태를 생산하며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생산의 담당자들은 자연에 대하여서나 그들 호상간에서나 이러한 관계속에 있으며 그속에서 그들은 생산을 진행하고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전제는 바로 그 경제적구조로부터 본 사회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그것에 선행한 모든 생산과정이 그러한것처럼 일정한 물질적조건하에서 진행되는것이지만 이 물질적조건은 동시에 개인이 자기들의 생활의 재생산과정에서 맺는 일정한 사회적관계의 담당자이다. 그러한 조건과 이러한 관계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전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의 결과이며 산물이다. 그것들은 이 생산과정에 의하여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바와 같이 자본은—그리고 자본가는 다만 인격화된 자본에 불과하며 생산과정에서는 다만 자본의 담당자로서만 기능할뿐이다—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생산과정에서 일정한 량의 잉여로동을 직접

---

(49) 원고에서는 여기서부터 제48장이 시작된다.—[F. 엥겔스]

적생산자 또는 로동자로부터 짜내는데 이 잉여로동은 자본이 등가없이 취득하는것이며 또 그것이 아무리 자유로운 계약상 합의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본질로 보면 여전히 강제로동인것이다. 이 잉여로동은 잉여가치로 나타나며 이 잉여가치는 잉여생산물로 존재한다. 잉여로동일반은 주어진 욕망의 정도를 넘는 로동으로서 언제나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제도에서나 노예제도 등등에서는 잉여로동은 오직 적대적형태를 취하며 사회의 일정한 부분의 순전한 무위도식에 의하여 보충된다. 일정한 량의 잉여로동은 우연적 사고에 대한 보험을 위하여 필요하며 욕망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에 상응하는 재생산과정의 필연적인 루진적확장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 확장은 자본주의적립장에서는 축적이라고 불리워지는것이다. 자본의 문명적인 측면의 하나는 자본이 생산력과 사회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서나 보다 높은 새로운 형태를 위한 요소들의 창조를 위하여서나 이전의 노예제나 농노제 등등의 형태들하에서보다 유리한 방식과 조건하에서 이 잉여로동을 강요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을 희생으로 하는 사회적발전(그의 물질적리익과 지적리익을 포함하여)의 강제와 독점이 없어지는 단계를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 단계는 보다 높은 사회형태에서 이 잉여로동을 물질적로동일반에 들이는 시간의 보다 큰 제한과 결부시킬수 있게 하는 제 관계를 위한 물질적수단과 싹을 창조한다. 왜냐하면 잉여로동은 로동생산력의 발전여하에 따라 총로동일이 작더라도 클수 있으며 또 총로동일이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을수 있기때문이다. 만약 필요로동시간이 3이고 잉여로동이 3이라면 총로동일은 6이고 잉여로동의 률은 100%이다. 필요로동이 9이고 잉여로동이 3

이라면 총로동일은 12이고 잉여로동의 률은 다만 $33\frac{1}{3}$%이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또 일정한 잉여로동시간에 얼마만한 사용가치가 생산되는가 하는것은 로동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회의 현실적부와 사회의 재생산과정의 부단한 확장의 가능성은 잉여로동의 길이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잉여로동의 생산성에 의존하며 그것이 수행되는 생산조건들이 풍부한가 빈약한가에 의존한다. 사실상 자유의 왕국은 가난과 외적인 합목적성에 강요되여 로동을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따라서 그것은 사물의 본성으로 보아 당연히 본래의 물질적생산분야의 저편에 놓여있는것이다. 미개인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자연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처럼 문명인도 그러한 투쟁을 하지 않을수 없으며 어떠한 사회형태에서도, 어떠한 있을수 있는 생산방식하에서도 그러한 투쟁을 하지 않을수 없다. 그의 발전에 따라 자연적필연의 왕국이 확대된다. 그것은 욕망이 확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생산력도 확대된다. 자유는 이 왕국에서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있을뿐이다. 즉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들이 자기들과 자연과의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자기들의 공동적 통제하에 두고 그 물질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서 그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며 가장 적게 힘을 들이고 자기들의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가장 적합한 조건하에서 이 물질대사를 수행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언제나 필연의 왕국이다. 이 왕국의 저편에서, 자기목적으로서 인정되는 인간의 힘의 발전이, 참다운 자유의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 자유의

왕국은 그 필연의 왕국을 그 기초로 하여 그우에서만 개화할 수 있는것이다. 로동일의 단축이 기본조건이다.

이 잉여가치 또는 이 잉여생산물은 자본주의적사회에서는—분배의 우연적인 변동을 도외시하고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 그것의 기준을 설정하는 한계를 고찰한다면—자본가들사이에서 사회적자본중 각 자본가에게 속하는 몫에 비례하여 배당으로서 분배된다. 잉여가치는 이러한 모습에서는 자본의 수중에 들어가는 평균리윤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평균리윤 자체는 다시 기업자리득과 리자로 나뉘우며 이 두 범주하에서 각이한 종류의 자본가들에게 차례질수 있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이러한 취득과 분배는 토지소유에 의하여 제한된다. 바로 기능자본가가 로동자들로부터 잉여로동을 빼앗아내고 따라서 또 리윤의 형태하에서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을 빼앗아내는것처럼 토지소유자는 이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을 다시 자본가의 수중으로부터 지대의 형태하에서 상술한 법칙에 따라 빼앗아낸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잉여가치중 자본에 귀속하는 몫으로서의 리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우리가 념두에 두고있는 평균리윤(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와 같다)은 총리윤(그 량에 있어서는 총잉여가치와 동일하다)으로부터의 지대의 공제에 의하여 이미 제한되고있으며 지대의 공제가 전제로 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자본리윤(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과 지대는 잉여가치의 두개 특수한 구성부분들에 불과하며 잉여가치가 자본에 귀속하는가 또는 토지소유에 귀속하는가에 따라 구별되는 범주들, 그러나 잉여가치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 항목들에 불가하다. 이 두 항목의 합계는 사회적잉여가치의 총액으로 된다. 자본은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

로 표시되는 잉여로동을 로동자들로부터 직접 빼앗아낸다. 그러므로 이 의미에서는 자본을 잉여가치의 생산자라고 볼수 있다. 토지소유는 현실적생산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토지소유의 역할은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자본의 호주머니로부터 자기의 호주머니로 옮겨놓는데 국한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노는데 그것은 비단 토지소유자가 자본에 압박을 가한다는것때문만이 아니며 또 비단 대토지소유가 로동자로부터의 로동조건들의 수탈의 전제이며 조건이므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전제이며 조건이라는것때문만도 아니다. 그것은 특히 토지소유자가 가장 중요한 생산조건중의 하나의 인격화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끝으로 로동자는 자기 자신의 로동력의 소유자이며 판매자로서 로임이라는 명의하에 생산물의 일부분을 받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의 로동중 우리가 필요로동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표시된다. 필요로동이란 이 로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인데 이 유지와 재생산의 조건들이 보다 빈약하든 보다 풍부하든, 보다 유리하든 보다 불리하든 그것이 필요한것이라는데는 변함없는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다른 점에서는 아무리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즉 자본은 매년 자본가에게 리윤을 가져오며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가져오고 로동력은—정상적인 제 관계하에서는 그리고 그 로동력이 사용될수 있는 로동력인 한에서는—로동자에게 로임을 가져온다는것이다. 매년 생산되는 총가치중의 이 세개의 가치부분은, 그리고 이것들에 상응하는, 매년 생산되는 총생산물중의 세개의 부분은—우리는 여기에서는 당분간 축적을 도외

시한다—그것들의 재생산의 원천이 고갈됨이 없이 그것들의 각 소유자들에 의하여 매년 소비될수 있다. 이 세 부분은 다년생의 한 나무의 또는 보다 정확히는 세 나무의 매년 소비될수 있는 열매처럼 나타난다. 그것들은 자본가와 토지소유자와 로동자라는 세 계급의 매년의 수입 즉 잉여로동을 직접 빼앗아내는자이며 로동일반을 직접 사용하는자인 기능자본가에 의하여 분배되는 수입을 이룬다. 그리하여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의 자본이,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토지가 그리고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로동력이 또는 보다 정확히는 그의 로동 자체가(왜냐하면 로동자는 로동력을 다만 겉에 나타난 로동력으로서만 현실적으로 판매하기때문이며 또 그에게 있어서 로동력의 가격은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필연적으로 로동의 가격으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리윤, 지대, 로임이라는 그들의 특수한 수입의 세개의 각이한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그것들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수입의 원천으로 된다. 즉 자본은 자본가에게는 잉여로동의 항구적인 양수기이며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 자본이 빼앗아낸 잉여가치의 일부를 끌어당기는 항구적인 자석이며 끝으로 로동은 로동자가 창조한 가치의 일부분을, 따라서 또 사회적생산물중 이 가치부분에 의하여 측정되는 일부분을, 즉 필요생활수단을 로임이라는 명의로 취득하기 위한, 부단히 갱신되는 조건이며 부단히 갱신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한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도 그러한것이다. 즉 자본은 년로동의 가치의 일부분, 따라서 그 생산물의 일부분을 리윤의 형태로 고정시키고 토지소유는 다른 일부분을 지대의 형태로 고정시키며 임금로동은 제3의 일부분을 로임의 형태로 고정시키며

그리고 바로 이 전화에 의하여 그것들을 자본가와 토지소유자와 로동자의 수입으로 전화시킨다—그러나 이 각이한 범주들로 전화되는 실체 그 자체를 창조함이 없이 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분배는 오히려 이 실체를 현존하는것으로서 전제한다. 즉 대상화된 사회적로동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년생산물의 총가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즉 생산과정의 각이한 기능의 담당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된 형태에서 나타난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것은 우리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더 상세히 설명할것이다. 자본과 토지소유와 로동은 그 생산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세개의 각이한 독립적인 원천들로서 나타나며 그러한것으로서의 이 원천들로부터 매년 생산되는 가치의—따라서 이 가치가 그속에 존재하는 생산물의—세개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 세개의 원천들로부터는 이 가치의 각이한 형태가 사회적생산과정의 개개의 요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수입으로서 발생할뿐만아니라 이 가치 그 자체가, 따라서 이러한 수입형태들의 실체가 발생하는것이다.

{원고에서는 여기에서 2절판 전지 한장이 탈락되고있다.}

…차액지대는 토지의 상대적비옥도 따라서 토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속성들과 결합되고있다. 그러나 차액지대가 첫째로, 각이한 종류의 토지의 생산물의 여러가지 개별적가치들에 기초하는 한에서는 이것은 방금 언급한 규정에 불과하다. 차액지대가 둘째로, 이러한 개별적가치들과 구별되는 규제적인 일반적시장가치에 기초하는 한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경쟁에 의하여 실현되는 법칙이며 이 법칙은

토지와도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와도 관계가 없다.

적어도 《로동-로임》이라는 형태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관계가 나타나고있는것처럼 보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것은 《토지-지대》라는 형태와 마찬가지이다. 로동이 가치를 형성하고 상품의 가치로 표시되는 한에서는 로동은 각이한 범주들사이에의 이 가치의 분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로동이 임금로동이라는 특수한 사회적성격을 가지는 한에서는 그것은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 어쨌든 앞에서 분명히 된바와 같이 로임 또는 로동의 가격은 다만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나타내는 불합리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로동력이 판매되는 일정한 사회적조건들은 일반적인 생산요인으로서의 로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로동은 상품가치중 로임으로서 로동력의 가격을 형성하는 구성부분에도 대상화된다. 로동이 생산물의 이 부분을 창조하는것은 다른 부분들을 창조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로동이 이 부분에 대상화되는것은 지대나 리윤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상화되는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동을 가치를 형성하는것으로서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산조건으로서의 그것의 구체적모습에서 고찰하는것이 아니라 임금로동이라는 사회적규정성과는 다른 하나의 사회적규정성에서 고찰하는것이다.

《자본-리윤》이라는 표현도 여기에서는 부정확한것이다. 만일 자본을 그것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단 하나의 점에서 파악한다면 다시말해서 그것이 로동력 즉 임금로동자에 가하는 강제에 의하여 잉여가치를 착취한다는, 로동자에 대한 자본의 관계에서 파악한다면 이 잉여가치는 리윤(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외에 지대도 요컨대 분할되지 않은 잉여

가치 전체를 포괄하고있는것이다. 이와 반대로 여기에서는 수입의 원천으로서는 자본은 단지 자본가에 귀속되는 부분과만 관련되는것이다. 이 부분은 자본이 짜내는 잉여가치의 전부가 아니라 자본이 자본가를 위하여 짜내는 그 부분에 불과하다. 이 공식이 《자본-리자》라는 공식으로 전화된다면 일체의 관련은 더욱더 사라지고만다.

우리는 첫째로, 세 원천의 불일치를 고찰하였는데 이번에는 둘째로, 그와는 반대로 세 원천의 산물이고 그것들의 자식인 각종 수입들이 모두 동일한 령역에, 가치의 령역에 속한다는것을 고찰하자. 그러나 이러한것(비교될수 없는 량들사이에서뿐만아니라 전혀 불균등하고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비교될수 없는 물건들사이에서의 이 관계)은 사실상 자본이 토지나 로동과 같이 단순히 그 소재적실체의 면에서만 즉 다만 생산된 생산수단으로서만 고찰되고 이 경우에 로동자에 대한 관계로서의 자본도, 가치로서의 자본도 사상된다는것에 의하여 일치된다.

셋째로,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자본-리자(리윤), 토지-지대, 로동-로임이라는 공식은 균일한 대칭적인 불일치를 보여준다. 사실상 임금로동이 로동의 사회적으로 규정된 한 형태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모든 로동이 그 성질상 임금로동으로서 나타나기때문에(자본주의적생산관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것에 의하여 대상적인 로동조건들—생산된 생산수단과 토지—이 임금로동에 대립하여 취하는 일정한 특유한 사회적 제 형태(그것들은 또 반대로 임금로동을 전제로 한다)도 그대로 직접 이러한 로동조건들의 소재적정재와 일치한다. 바꾸어말하면 이러한 로동조건이 일반적으로 현실적로동과정에서 취하는 모습과 즉 로동과정

의 모든 력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형태와 관계없이, 실로 그 **모든** 사회적형태와 관계없이 직접 일치한다. 그러므로 로동으로부터 소외된 로동에 대하여 독립화된 따라서 또 이미 전화된 로동조건들의 모습,—즉 생산된 생산수단은 자본으로 전화되고 토지는 독점된 토지로, 토지소유로 전화된 모습—이러한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속하는 모습은 생산과정일반에서의 생산된 생산수단과 토지의 정재 및 기능과 일치한다. 이 생산수단은 그 자체로서, 그 본성으로 하여 자본이다. 자본은 이 생산수단을 표시하는 단순한 《경제학적명칭》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토지도 그 자체로서 그 본성으로 하여 일정한 수의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독점된 토지이다. 자본과 자본가—이것은 사실상 인격화된 자본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에 있어서 생산물이 생산자들에 대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력량으로 되는것처럼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 토지는 인격화되고 또한 들고일어나서 독립적인 력량으로서 그것의 도움으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자기의 몫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토지가 생산물중 자기의 생산성의 보상과 제고를 위하여 자기에게 차례지는 부분을 얻는것이 아니라 토지 대신에 토지소유자가 이 생산물중의 한 몫을 비싸게 팔고 랑비하기 위하여 얻는다. 자본은 임금로동으로서의 로동을 전제로 한다는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것은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즉 임금로동으로서의 로동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때문에 로동일반과 임금로동과의 일치가 자명한것으로 보인다면 자본과 독점된 토지도 로동일반에 대립하여 로동조건들의 자연적형태로서 나타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자본은 이제는 로동수단의 자연적형태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순전히 물적인, 로동과정일반에서의 그 기능에서 발생하는 성격으로

서 나타난다. 이리하여 자본과 생산된 생산수단은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사적소유에 의하여 독점된 토지도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천성적으로 자본인 로동수단 그 자체가 리윤의 원천으로 되고 토지 그 자체가 지대의 원천으로 된다.

로동 그 자체 즉 합목적적인 생산적활동으로서의 단순한 규정성에 있어서의 로동은 사회적형태규정성에 있어서의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재적실체에 있어서의 로동의 재료 및 수단으로서의 생산수단과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생산수단은 역시 소재적으로만, 사용가치로서만 서로 구별된다. 즉 토지는 생산된것이 아닌 로동수단으로서, 그밖의것은 생산된 로동수단으로서 서로 구별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이 임금로동과 일치한다면 로동조건들이 이제는 로동에 대립하여 취하는 일정한 사회적형태도 로동조건의 소재적정재와 일치한다. 그 경우에는 로동수단은 로동수단으로서 자본이며 토지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이다. 그 경우에는 로동에 대한 이러한 로동조건들의 형식적독립화, 로동조건들이 임금로동에 대립하여 취하는 이 독립화의 특수한 형태는 물건으로서의, 물질적인 생산조건으로서의 로동조건과 분리할수 없는 성질이며 생산요소들로서의 로동조건들에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내재적으로 고유한 성격이다. 이러한 로동조건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서 취하는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적성격은 그러한것들이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옛날로부터 생산과정의 요소들로서 태여날 때부터 가지고있는 물적성격이다. 그렇기때문에 토지가 로동의 시초적종업분야로서, 자연력의 령역으로서, 모든 로동대상의 천연적창고로서 생산과정일반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생산된 생산수단(도구나 원료 등)이

거기에서 차지하는 다른 역할은 자본과 토지소유로서의 그것들에 각기 할당된 몫, 즉 그것들의 사회적대표자들에게 리윤(리자)과 지대의 형태로 할당되는—바로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로동이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로임의 형태로 그들의 몫으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각자의 몫에서 표현되는듯이 보이지 않을수 없다. 이리하여 지대와 리윤과 로임은 토지와 생산된 생산수단과 로동이 단순한 로동과정에서 노는 역할에서 발생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 로동과정을 단순히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서 진행되는것으로서 고찰하고 모든 력사적규정성을 도외시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보이는것이다. 임금로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진행하는 로동이 그의 수익, 그의 수입으로서 표시되는 생산물은 로임에 불과하며 가치중(따라서 이 가치에 의하여 측정되는 사회생산물중) 그의 로임을 표시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하여도 역시 동일한것을 다른 형식으로 말하는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금로동과 로동일반이 일치한다면 로임도 로동의 생산물과 일치하고 로임이 표시하는 가치부분도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일반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가치부분들인 리윤과 지대도 역시 독립적으로 로임에 대립하게 되며 그것들은 로동과는 특수한것으로서 로동에 의존하지 않는 고유한 원천들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은 공동으로 작용하는 생산요소들에서 발생하고 그것들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리윤은 자본의 소재적요소들인 생산수단에서 발생하고 지대는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토지 또는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로쉐르[388]).

이리하여 토지소유와 자본과 로임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

서의 수입의 원천으로부터, 즉 자본은 자본가가 로동에서 짜내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리윤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끌어가고 토지의 독점은 다른 일부분을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끌어가고 로동은 마지막으로 남은 처분할수 있는 가치부분을 로임의 형태로 로동자의것으로 되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원천으로부터, 즉 가치의 일부분이 리윤의 형태로, 제2의 일부분이 지대의 형태로, 제3의 일부분이 로임의 형태로 전화되는것을 매개하는 원천으로부터 현실적원천으로 전화하여 이 원천으로부터 이러한 가치부분이 발생하며 또 생산물중의 그것에 해당 부분들 즉 이러한 가치부분들이 그속에서 존재하든가 또는 그것들로 전화될수 있는 생산물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그것을 종국적원천으로 하여 거기에서 생산물가치 자체가 발생하게 되는것이다.(50)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적생산방식, 지어는 상품생산의 가장 단순한 범주들에 대하여 서술한 곳에서, 즉 상품과 화폐에 대하여 서술한 곳에서 신비적인 성격을 지적하였는데 이 성격은 사회적 제 관계, 즉 생산에 있어서는 부의 소재적요소들이 그것의 담당자로서 복무하는 사회적 제 관계를 이러한 물건들 자체의 속성으로 전화시키고(상품), 또 더욱 뚜렷하게 생산관계 자체를 물건으로 전화시킨다(화폐). 모든 사회형태는 그것이 상품생산과 화폐류통을 가져오는 한에서는 이러한 전화에 참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서는 그리고 그 지배적인 범주이며 규정적인 생산관계인 자본하에

---

(50) 《로임, 리윤, 지대는 모든 수입 및 모든 교환가치의 3개의 시초적원천이다》(A. 스미스[389]).— 《이리하여 물질적생산의 원인들은 동시에 현존하는 모든 시초적수입의 원천이다》(슈또르흐[《정치경제학강의》, 1815년 싼크트 뻬쩨르부르그] 제1권 259페지).

서는 이 마술에 걸린, 전도된 세계는 훨씬 더 발전한다. 자본을 우선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잉여가치를 짜내는것으로서—고찰한다면 이 관계는 아직 극히 간단하다. 현실적관련은 이 과정의 담당자인 자본가 자신에게 박두하며 아직 그들에게 의식된다. 로동일의 한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격렬한 투쟁은 이것을 적절하게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없는 분야, 즉 로동과 자본간의 직접적과정의 분야에 있어서까지도 사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본래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하에서의 상대적잉여가치의 발전에 따라 로동의 사회적생산력도 발전하는데 이 발전에 따라 이 생산력과 직접적로동과정에서의 로동의 사회적관련은 로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옮겨지는것으로서 나타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자본은 극히 신비로운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로동의 모든 사회적생산력이 로동 자체에 속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에 속하는 힘으로서, 자본 자체의 태내에서 생기는 힘으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동시에 또 거기에 류통과정이 개입하게 되여 이 과정의 물질대사와 형태변환에는 자본, 지어는 농업자본의 모든 부분들이 특수한 자본주의적인 생산방식이 발전하는것과 동일한 정도에서 끌려들어온다. 이 류통과정이야말로 시초의 가치생산의 제 관계가 완전히 뒤쪽으로 물러서는 분야이다. 이미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도 자본가는 동시에 상품생산자로서, 상품생산의 지휘자로서 활동한다. 따라서 이 생산과정은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결코 단순히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으로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본이 직접적생산과정에서 빼앗아내여 상품으로 나타낸 잉여가치가 얼마이든간에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가치와 잉여가치는 류통과정에서 비로소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생산에 선대된 가치의 회수

도, 또 특히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도 류통에서 실현될뿐만아니라 류통에서 발생하는것처럼 보인다. 이 외관은 특히 두개의 사정에 의하여 공고해진다. 첫째는 양도시의 리윤이 사기, 간책, 전문지식, 기능 및 무수한 시장상황에 의존한다는 사정이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여기에서는 로동시간외에 제2의 규정적요소로서 류통기간이 첨가된다는 사정이다. 이 류통기간은 다만 가치 및 잉여가치 형성의 소극적제한으로서 작용할뿐이지만 그러나 로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원인인듯한, 그리고 자본의 본성에서 생기고 로동에는 관계없는 규정을 가져오는듯한 외관을 보여준다. 우리는 제2부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 류통분야를 단지 이 분야가 낳는 여러가지 형태규정들과 관련시켜서만 서술하고 이 분야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모습의 가일층의 발전을 지적하기만 하면 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분야는 경쟁의 분야이며 그것은 개개의 경우를 보면 우연에 의하여 지배되고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이러한 우연을 통하여 자체를 관철하고 그것들을 규제하는 내재적법칙은 이러한 우연이 대량적으로 개괄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볼수 있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거기에서는 이 법칙은 개개의 생산당사자들자신으로서는 여전히 볼수도 없고 리해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생산과정은 직접적생산과정과 류통과정의 통일로서 여러가지 새로운 모습들을 낳는데 이러한 모습들에서는 점점 더 내적련관의 줄이 상실되고 생산관계는 서로 독립하며 가치의 구성부분들은 서로 독립적형태들로 화석화된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잉여가치의 리윤으로의 전화는 생산과정에 의하여서 규정되는 동시에 류통과정에 의하여도 규정된다. 잉여가치는 리윤의 형태에서는 이제는 그것의 원

천인 로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에는 관계되지 않고 총자본에 관계된다. 리윤률은 고유한 법칙들에 의하여 규제되는데 이 법칙들은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더라도 리윤률이 변동하는 것을 용허하고 또 이 변동을 일으키기까지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잉여가치의 진정한 성질을 따라서 자본의 현실적인 기구를 은폐한다. 이러한것은 리윤이 평균리윤으로 전화되고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즉 시장가격의 규제적인 평균으로 전화되면 더욱더 심하게 된다. 여기에는 하나의 복잡한 사회적과정인 자본의 평균화과정이 개입하는데 이 과정은 상품들의 상대적평균가격을, 그것들의 가치로부터 분리시키고 각이한 생산분야들(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개별적투자는 전혀 도외시한다)에서의 평균리윤을 개개의 자본들에 의한 로동의 현실적인 착취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렇게 보일뿐만아니라 여기서는 사실상 상품들의 평균가격은 그 상품들의 가치 즉 그 상품들속에 실현되여있는 로동과 다르며 그리고 개개의 자본의 평균리윤은 이 자본이 자기가 고용하는 로동자들로부터 짜낸 잉여가치와는 다르다. 상품의 가치는 직접적으로는 로동생산력의 변동이 생산가격의 저하 또는 상승 즉 그것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나타날뿐이며 그것이 생산가격의 최종적한계에 미치는 영향에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리윤은 부대적으로 로동에 대한 직접적착취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으로서 나타날뿐이다. 즉 이 착취가 자본가에게 외관상 이 착취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규제적인 시장가격하에서 평균리윤으로부터 배리된 리윤을 실현하는것을 허용하는 한에서 리윤은 그러한것으로서 나타날뿐이다. 정상적인 평균리윤 자체는 자본에 내재하고 착취와는 관계없는것인듯이 보인다. 비정상적인 착취 또는 유리한 례외적 제 조건하에서의 평균

적인 착취도 평균리윤으로부터의 배리의 조건으로 될뿐이고 평균리윤 자체의 조건이 아닌것처럼 보인다. 기업자리득과 리자로의 리윤의 분렬(류통을 기초로 하고 전적으로 류통에서 발생하고 생산과정 자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듯이 보이는 상업리윤과 화폐거래업리윤의 개입에 관하여는 전혀 문제로 하지 않더라도)은 잉여가치의 형태의 독립화를 완성하며 그것의 실체, 그것의 본질에 대한 그것의 형태의 화석화를 완성한다. 리윤의 일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립하여 자본관계 자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임금로동을 착취하는 기능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자본가 자신의 임금로동에서 발생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립하여 다음에는 리자가 로동자의 임금로동과도 자본가 자신의 로동과도 관계없이 자기의 고유한 독립적원천으로서의 자본에서 발생하는것처럼 보인다. 자본이 시초에 류통의 표면에서 자본물신으로서, 가치를 낳는 가치로서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제는 또 리자부자본의 모습에서 그 가장 소외된, 가장 독특한 형태에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또 《자본-리자》라는 공식은 《토지-지대》 및 《로동-로임》에 대한 제3의것으로서는 《자본-리윤》보다 훨씬 철저한것이다. 왜냐하면 리윤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기원을 상기시키는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리자에 있어서는 사라지고말았을뿐만아니라 이 기원에 대립적인 형태로 고착되고있기때문이다.

끝으로 잉여가치의 독립적인 원천으로서의 자본과 나란히 토지소유가 평균리윤을 제한하는것으로서 그리고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은 한 계급의 수중에 양도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그 계급이란 자기로 로동하는것도 아니고 로동자들을 직접 착취하는것도 아니며 또 리자부자본처럼 례컨

대 자본을 대부할 때의 위험이나 희생과 같은 도덕적으로 위안을 주는 리유를 마음껏 즐길수도 없는 계급이다.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직접 사회관계와 결부되여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요소인 토지와 결부되여있는것처럼 보이기때문에 잉여가치의 각이한 부분들의 호상간의 독립화와 화석화의 형태는 완성되고 내적련관은 종국적으로 분렬되며 잉여가치의 원천은 바로 생산과정의 각이한 소재적요소들과 결부되여있는 생산관계의 호상독립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매몰되고있다.

자본-리윤 또는 보다 더 적절하게는 자본-리자, 토지-지대, 로동-로임에서는 즉 가치 및 부 일반의 구성부분들과 그 원천들과의 관련으로서의 이 경제적삼위일체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신비화, 사회적관계의 물화, 물질적생산관계와 그 력사적, 사회적 규정성과의 직접적유착이 완성되여있다. 그것은 마법에 걸린, 전도된, 거꾸로 선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자본씨와 토지부인이 사회적등장인물로서 또 동시에 직접 단순한 물건으로서 괴상한 짓을 하고있다. 이러한 그릇된 외관과 기만, 이러한 부의 각이한 사회적요소들의 호상간의 독립화와 화석화, 이러한 사물의 인격화와 생산관계의 물화, 이러한 일상생활의 종교, 대체로 이러한것을 분해한것은 고전경제학의 위대한 공적이다. 그것은 고전경제학이 리자를 리윤의 일부분으로 환원시키고 지대를 평균리윤을 넘는 초과분으로 환원시키며 이 량자를 잉여가치에서 일치시키고있기때문이며 또 류통과정을 제 형태의 단순한 변태로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생산과정에서 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를 로동에 환원시키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고전경제학의 가장 우수한 대변자들까지도- 자산계급적관점에서는 피치못할

일이지만—자기들이 비판적으로 분배한 외관의 세계에 여전히 다다소소로 사로잡혀있으며 따라서 모두가 다다소소로 불철저성, 중도반단 및 해결할수 없는 모순들에 빠지고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생산당사자들이 이 자본-리자, 토지-지대, 로동-로임이라는 소외된 불합리한 형태들에서 아주 안도감을 느낀다는것도 역시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외관의 모습속에서 그들은 움직이고있으며 그 모습들을 매일과 같이 상대로 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지만 속류경제학은 즉 현실적생산당사자들의 일상적인 관념의, 교훈적인, 다소간 교의적인 번역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이러한 관념사이에 얼마간 조리있는 질서를 가져다주는 속류경제학은 바로 이 일체 내적련관이 소멸된 삼위일체에서 자기의 천박한 존재의 자연적이며 일체의 의문을 초월한 기초를 발견하는것이다. 이 공식은 동시에 지배계급들의 리익에도 일치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계급의 수입원천의 자연적필연성과 영원한 정당성을 선언하고 그것을 하나의 교조로까지 높이는것이기때문이다.

생산관계의 물화의 서술이나 생산당사자들에 대한 생산관계의 독립화의 서술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련관들이 어떻게 세계시장, 그 경기변동, 시장가격의 운동, 신용기간, 산업 및 상업의 순환, 번영과 공황의 교체를 통하여 생산당사자들에게 대하여 불가항력적인, 그들을 자연발생적으로 지배하는 자연법칙으로서 나타나며 그들에게 대하여 맹목적인 필연성으로서 작용하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론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경쟁의 현실적운동은 우리의 계획의 범위밖의 일이며 우리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내부적조직을, 말하자면 그 리상적인 평균에서 서술하면 되기때문이다.

이전의 사회형태들에서는 이 경제적신비화는 주로 화폐와 리자부자본에 관련하여서만 생긴다. 그러한 신비화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는 사물의 본성으로 보아 당연히 배제되여있다. 즉 첫째로는 사용가치를 위한, 직접적인 자기 수요를 위한 생산이 우세한 경우이다. 둘째로는 고대나 중세기에서와 같이 노예제나 농노제가 사회적생산의 광범한 기초를 이루고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생산자들에 대한 생산조건의 지배는 지배 및 예속관계에 의하여 은폐되여있으며 이 지배 및 예속관계가 생산과정의 직접적인 동력으로서 나타나며 또 눈에 보이는것이다. 원시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원시공동체에 있어서는—그리고 고대도시공동체에 있어서도—이 공동체자체가 그것의 제 조건과 함께 생산의 기초로서 나타나며 또한 공동체의 재생산이 생산의 최종목적으로서 나타난다. 중세기의 동업조합제도에 있어서조차도 자본과 로동은 구속을 받지 않는것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고 그것들의 상호관계는 조합제도나 이 제도와 관련되는 제 관계나 이 관계들에 상응하는 직업상의무와 장주신분 등등의 제 관념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있어서 비로소…①

① 여기에서 원고는 중단되고있다.—편집자

제 49 장

생산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이하의 연구에 있어서는 생산가격과 가치간의 차이는 도외시할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고찰하는바와 같이 로동의 년총생산물의 가치 따라서 사회적총자본의 생산물가치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러한 차이는 사라져버리기때문이다.

리윤(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과 지대는 상품의 잉여가치의 개개의 부분들이 취하는 특유한 형태들에 불과하다. 잉여가치의 크기는 잉여가치가 분할될수 있는 부분들의 크기의 총계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평균리윤 플라스 지대는 잉여가치와 같다.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로동 따라서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평균리윤으로의 평균화에 참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품가치의 일부분은 전혀 상품의 가격에서 표현되지 않는 일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로는 다음과 같은것에 의하여 보상된다. 즉 그 가치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이 불변자본의 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리윤률이 증대된다는것에 의해서든가 또는 그 가치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이 개인소비재로서 가치중 수입으로서 소비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리윤이나 지대가

보다 많은 생산물에서 표시된다는것에 의하여 보상된다. 그러나 둘째로는 이러한 사정들은 평균운동에서 해소된다. 여하튼 잉여가치중 상품가격에서 표현되지 않은 일부분이 가격형성에 있어서 없어지고마는 경우에도 그 정상적인 형태에서의 평균리윤 플라스 지대의 총계는 총잉여가치보다 적을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클수는 없다. 그 정상적인 형태는 로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로임을 전제로 한다. 독점지대조차도 그것이 로임으로부터의 공제가 아니고 따라서 특수한 범주를 이루는것이 아닌 한에서는 간접적으로 언제나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이루는것이 아니면 안된다. 즉 그것은 차액지대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것을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하는 상품 자체의 생산비를 넘는 가격초과분의 일부분을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그것을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하는 상품 자체의 잉여가치중 평균리윤에 의하여 측정되는 부분을 넘는 그 상품 자체의 잉여가치의 초과부분을 이루지 않는다(절대지대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더라도 다른 상품들 즉 독점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 상품과 교환되는 상품들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이루는것이다.—평균리윤 플라스 지대의 총계는 결코 그것들을 그 부분으로 하고있는, 그리고 이 분할이전에 이미 주어져있는 크기보다 클수 없다. 그러므로 상품의 잉여가치 전체가 즉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로동전부가 그 상품의 가격에서 실현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다. 잉여로동은 이미 다음과 같은 리유때문에도 전부가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즉 로동의 생산력이 부단히 변동하기때문에 어떤 일정한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의 량은 부단히 변동하게 되며 이런 형편에서 상품들의 일부는 항상 비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생산되며 따라서 그것들의

개별적가치보다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을수 없다는 리유때문이다. 여하간 리윤 플라스 지대는 실현된 잉여가치(잉여로동) 전체와 같으며 여기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위해서는 실현된 잉여가치는 잉여가치 전체와 같다고 해도 좋다. 왜냐하면 리윤과 지대는 실현된 잉여가치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에 들어가는 잉여가치이고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가격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잉여가치의 전체이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입의 제3의 독특한 형태를 이루는 로임은 항상 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과 같다. 즉 로동수단에가 아니라 산로동력의 구입에, 로동자들에 대한 지불에 투하되는 구성부분과 같다. (수입의 지출에 있어서 지불되는 로동은 그 자체가 로임, 리윤 또는 지대중에서 지불되는것이고 따라서 이 로동에 대한 지불에 사용되는 상품들의 가치부분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로동은 상품가치와 그것이 분할되는 구성부분들의 분석에 있어서는 고찰되지 않는다.) 그것은 로동자의 총로동일중 가변자본의 가치, 따라서 로동의 가격을 재생산하는 부분의 대상화이며 상품가치중 로동자가 자기 자신의 로동력의 가치 또는 자기 로동의 가격을 그것으로써 재생산하는 부분이다. 로동자의 총로동일은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한 부분은 로동자가 그 자신의 생활수단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량의 로동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그의 총로동중 대가를 지불받는 부분이고 그의 로동중 그 자신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이다. 로동일중의 나머지 부분 전체, 로동자가 자기의 로임의 가치에 실현되는 로동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초과로동량의 전체는 잉여로동이고 부지불로동이며 이것은 그의 전체 상품생산의 잉여가치로 되여

(따라서 초과량의 상품에서) 나타나고 이 잉여가치는 또 이미 알려져있는 각이한 명칭을 가지는 부분에 리윤(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과 지대로 분할된다.

요컨대 상품의 가치중 1일 또는 1년동안에 첨가되는 로동자들의 총로동이 그것에 실현되는 부분의 전체, 년생산물의 가치중 이 로동이 창조하는 가치의 전체는 로임의 가치와 리윤과 지대로 분할된다. 왜냐하면 이 총로동은 로동자가 생산물가치중 그 자신에게 지불되는 부분, 즉 로임을 창조하는 필요로동과 로동자가 생산물가치중 잉여가치를 표시하며 후에 리윤과 지대로 분렬되는 부분을 창조하는 부지불잉여로동으로 분할되기때문이다. 로동자는 이 로동외에는 아무런 로동도 수행하지 않으며 또 로임, 리윤, 지대의 형태들을 취하는 생산물의 총가치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년생산물의 가치중 1년간에 새로 첨가되는 그의 로동을 표시하는 부분은 로임 또는 가변자본의 가치 플라스 잉여가치와 같으며 이 잉여가치가 다시 리윤과 지대의 형태들로 분할된다.

이리하여 년생산물의 가치중 로동자가 1년간에 창조하는 부분의 전체는 세개의 수입의 년가치총액으로 즉 로임, 리윤 및 지대의 가치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1년간에 창조되는 생산물가치중에는 분명히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는 재생산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로임은 생산에 선대되는 가변자본부분의 가치와 같을따름이며 또 지대와 리윤은 잉여가치에, 즉 불변자본의 가치 플라스 가변자본의 가치와 같은 선대자본의 총가치를 넘어 생산되는 가치초과분과 같을따름이기때문이다.

리윤과 지대의 형태로 전화된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수입

으로서 소비되지 않고 축적에 복무한다는 사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곤난에 대하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잉여가치중 축적기금으로서 적립되는 부분은 새로운 추가자본의 형성에는 복무하지만 구자본의 보상에는 즉 구자본중 로동력에 투하된 구성부분의 보상과 로동수단에 투하된 구성부분의 보상에는 복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제 수입을 전부 개인적소비로 들어간다고 가정할수 있다. 곤난은 2중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입들 즉 로임, 리윤, 지대가 소비하는 년생산물가치는 그 자체속에, 이 년생산물로 들어간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부분과 같은 일정한 가치부분을 포함한다. 년생산물은 로임으로 분해되는 가치부분과 리윤 및 지대로 분해되는 가치부분이외에 이 가치부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년생산물의 가치는 로임+리윤+지대+C와 같은데 이 C는 그 불변가치부분을 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로임+리윤+지대와 같을따름인 1년간에 생산되는 가치가(로임+리윤+지대)+C의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구매할수 있는가? 어떻게 1년간에 생산되는 가치가 자기 자신보다도 큰 가치를 가지는 생산물을 구매할수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우리가 불변자본중 생산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 따라서 그 가치는 감소된다 하더라도 년간 상품생산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따라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소비되지는 않은 고정자본을 잠시 사상한다면 선대자본중 원료나 보조재료의 형태로 있는 불변부분은 전부 새로운 생산물로 넘어갔으나 로동수단의 일부분은 전부 소비되고 다른 부분은 다만 부분적으로만 소비되였으며 따라서 그 가치의 일부만이 생산에서 소비되여있

다. 불변자본중 이렇게 생산에서 소비된 부분은 전부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모든 사정들 특히 로동생산력이 불변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부분의 보상에는 이전과 동일한 로동량이 필요하다. 즉 그것은 대등한 가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재생산 자체가 원래의 규모로 진행될수 없다. 그러나 누가 이 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누가 이 로동을 수행하고있는가?

생산물에 포함되여있는 불변가치부분은 누가 무엇으로써 지불하여야 하는가 하는 제1의 곤난에 있어서는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의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부분으로서 재현한다는것이 가정되여있다. 이것은 제2의 곤난의 제 전제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제1부 제5장(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새로운 로동은 낡은 가치를 재생산하는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에 대한 첨가분을 창조하고 추가적가치를 창조할따름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로동의 단순한 첨가에 의하여 동시에 낡은 가치가 생산물중에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 즉 로동일반인 한에서가 아니고 일정한 생산적로동으로서 기능하는 로동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수입 즉 1년간에 창조되는 전체 가치가 그것에 치출되는 생산물중의 불변부분의 가치를 계속 보존하기 위하여는 아무런 추가로동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로부터 보나 사용가치로부터 보나 지난 년간에 소비된 불변자본의 보상 즉 그러한 보상이 없이는 재생산이 대체로 불가능한 이 보상을 위하여서는 새로운 추가로동이 필요한것이다.

새로 첨가되는 모든 로동은 1년간에 새로 창조되는 가치로 표시되며 이 가치는 또 전부 세 종류의 수입 즉 로임, 리

윤 및 지대로 분할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일부분은 현물로서나 가치로서 재생산되여야 하지만 일부분은 가치상으로만(단지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위하여) 재생산되여야 할 소비된 불변자본의 보상을 위한 여분의 사회적로동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1년간에 로동에 의하여 창조되며 로임, 리윤 및 지대의 형태들로 분할되고 이 형태들로 지출되는 가치는 그것들 자체의 가치외에 년생산물중에 포함되여있지 않으면 안되는 불변자본부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또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하여서는 충분하지 않은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이미 제2부 제3편에서 사회적총자본의 재생산을 고찰할 때에 해결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로 돌아오는것은 첫째로 거기에서는 잉여가치가 아직도 리윤(기업자리득 플라스 리자)과 지대라는 그 수입형태에서는 전개되지 않았기때문이며 따라서 또 이 형태들에서는 그것을 취급할수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또 둘째로는 바로 이 로임, 리윤, 지대라는 형태에는 A. 스미스이래의 전체 정치경제학을 관통하고있는 믿기 어려운 분석상의 큰 잘못이 련결되여있기때문이다.[390]

우리는 거기에서 전체 자본을 2대 부류로 나누었다. 즉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I부류와 개인적소비수단을 생산하는 II부류로 나누었다. 어떤 종류의 생산물이 개인적사용을 위하여서도 생산수단으로서도 사용될수 있다(말이나 곡물 등)는 사정은 결코 이 구분의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다. 이 구분은 사실상 가설이 아니라 사실의 표현일따름이다. 한 나라의 년생산물을 들어보자. 생산물의 일부분은 그것이 아무리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

다 하더라도 개인적소비로 들어간다. 이러한 생산물로 로임, 리윤 및 지대가 지출된다. 이 생산물은 사회적자본의 일정한 부류의 생산물이다. 이 동일한 자본이 I부류에 속하는 생산물도 생산하는 일이 있을수 있다. 그러한 한에서는 I부류에 속하는, 생산적으로 소비될수 있는 생산물들을 제공하는것은 이 자본중 II부류의 생산물 즉 현실적으로 개인적소비로 들어가는 생산물에 소비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 II부류의 전체 생산물 즉 개인적소비로 들어가며 따라서 수입들이 그것으로 지출되는 II부류의 전체 생산물은 그것에 소비된 자본 플라스 생산된 초과분의 정재이다. 따라서 그것은 다만 소비수단의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년생산물중 재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하는 I부류 즉 원료나 로동도구는 그밖에 이 생산물이 소비수단으로서 복무할수 있는 어떤 능력을 현물로서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다만 생산수단의 생산에만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이다. 불변자본을 형성하는 생산물의 극히 큰 부분은 소재적으로도 개인적소비에 들어갈수 없는 형태로 있다. 그러나 례컨대 농민이 자기의 종곡을 먹어버리고 자기의 역축을 도살할수 있는것처럼 그것이 개인적소비에 들어갈수 있는 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제한은 마치도 이 부분이 소비될수 없는 형태로 있는것처럼 작용한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두 부류에 있어서 불변자변중 현물로서도 가치로서도 두 부류의 년생산물로부터 독립하여 존속하는 고정부분을 사상한다.

로임, 리윤, 지대가 그 생산물로 지출되는, 간단히 말하면 수입이 그 생산물로 소비되는 II부류에서는 생산물은 그 가치로 보면 그 자체가 세 구성부분으로써 이루어진다. 한

구성부분은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부분의 가치와 같다. 둘째 구성부분은 생산에서 선대된, 로임으로 투하된 가변자본부분의 가치와 같다. 끝으로 셋째 구성부분은 생산된 잉여가치 즉 리윤+지대와 같다. Ⅱ부류의 생산물의 첫째 구성부분인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는 Ⅱ부류의 자본가에 의하여도 로동자에 의하여도 또는 토지소유자에 의하여도 소비될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수입의 어떤 부분도 이루지 않고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렇게 보상될수 있기 위하여는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 생산물의 나머지 두 구성부분은 이 부류에서 생산된 수입의 가치 즉 로임+리윤+지대와 같다.

Ⅰ부류에서는 생산물은 형태로 보면 동일한 구성부분들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입을 형성하는 부분인 로임+리윤+지대, 간단히 말하면 가변자본부분+잉여가치는 여기에서는 이 Ⅰ부류의 생산물들의 현물형태에서 소비되는것이 아니라 Ⅱ부류의 생산물에서 소비된다. 그러므로 Ⅰ부류의 수입의 가치는 Ⅱ부류의 생산물중 보상되여야 할 Ⅱ부류의 불변자본을 이루는 부분에서 소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Ⅱ부류의 생산물중 Ⅱ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은 그 현물형태에 있어서 Ⅰ부류의 로동자, 자본가 및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소비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입을 Ⅱ의 이 생산물에 지출한다. 다른 한편으로 Ⅰ부류의 생산물은 그것이 Ⅰ부류의 수입을 대표하는 한에서는 그것의 현물형태에 있어서 불변자본이 현물로 보상되는 Ⅱ부류에 의하여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끝으로 Ⅰ부류의 소비된 불변자본부분은 바로 로동수단, 원료 및 보조재료 등등으로써 이루어지고있는 이 부류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보상되며 이 보상은 부분적으로는

I의 자본가들 호상간에서의 교환에 의하여 진행되고 부분적으로는 이 자본가들의 일부분이 자기들 자신의 생산물을 직접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사용할수 있다는것에 의하여 진행된다.

이전에 보여준 단순재생산의 도식(제2부 제20장 제2절)을 들어보자.[391]

$$\left.\begin{array}{l} \text{Ⅰ.}\ 4,000c+1,000v+1,000m=6,000 \\ \text{Ⅱ.}\ 2,000c+\ 500v+\ 500m=3,000 \end{array}\right\}=9,000$$

이것에 의하면 Ⅱ에서는 생산자들과 토지소유자들에 의하여 500v+500m=1,000이 수입으로서 소비된다. 남은 2,000c가 보상되여야 한다. 이것은 1,000v+1,000m=2,000이라는 수입을 가지고있는 I부류의 로동자와 자본가와 지대수득자들에 의하여 소비된다. 소비되는 Ⅱ의 생산물은 I부류의 수입으로서 소비되며 소비될수 없는 생산물로 표시되는 I의 수입부분은 Ⅱ의 불변자본으로서 소비된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하여야 할것은 I부류의 4,000c이다. 이것은 Ⅰ 자체의 생산물=6,000 또는 더 정확하게는=6,000-2,000에 의하여 보상된다. 왜냐하면 이 2,000은 이미 Ⅱ를 위한 불변자본으로 전환되였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수자는 물론 임의로 가정한것이고 따라서 I의 수입의 가치와 Ⅱ의 불변자본의 가치간의 비률도 임의적인것으로 보인다는것이다. 그러나 재생산과정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따라서 축적을 도외시하고 진행되는 한 I부류에서의 로임과 리윤과 지대의 가치총액은 Ⅱ부류의 불변자본부분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렇지 않다면 Ⅱ부류가 자기의 불변자본을 보상할수 없거나 I부류가 자기의 수입

을 소비될수 없는 형태로부터 소비될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년상품생산물의 가치는 개개의 투자의 상품생산물의 가치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또 각개의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두개의 가치구성부분으로 분해된다. 즉 일방의 구성부분 A는 선대된 불변자본의 가치를 보상하며 타방의 구성부분 B는 수입의 형태를 취하여 로임과 리윤과 지대로 표시된다. 이 후자의 가치구성부분 B는 전자의 가치구성부분 A에 대하여 일종의 대립을 이룬다. 즉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A는 1) 결코 수입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2) 항상 자본의 형태, 그것도 불변자본의 형태로 환류하는 한에서는 A에 대하여 대립을 이룬다. 그러나 타방의 구성부분 B는 또 그 자체 내에도 대립을 포함하고있다. 리윤 및 지대와 로임은 공통점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그 셋이 모두 수입의 형태를 이룬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리윤과 지대에서는 잉여가치 따라서 부지불로동이 표시되고 로임에서는 지불로동이 표시된다는것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생산물의 가치중 지출된 로임을 표시하며 따라서 로임을 보상하며 또 여기에서 전제되는것처럼 재생산이 동일한 규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시 로임으로 전화하는 부분은 우선 가변자본으로서, 재생산에 새로 선대되여야 할 자본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환류한다. 이 구성부분은 이중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우선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자본으로서 로동력과 교환된다. 그것은 로동자의 수중에서는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력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전화되며 수입으로서 생활수단으로 전화되고 소비된다. 이 이중적과정은 화폐류통에 의하여 매개되여 나타난다. 가변자본은 화폐로

선대되고 로임으로서 지불된다. 이것은 그것이 자본으로서 수행하는 첫째의 기능이다. 그것은 로동력으로 전환되고 이 로동력의 발현에로, 로동에로 전화된다. 이것은 자본가에 있어서의 과정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 화폐로써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상품생산물중 이 화폐에 의하여 측정되는 부분을 구매하며 이 부분은 그들에 의하여 수입으로서 소비된다. 우리가 화폐류통을 떠나서 생각해본다면 로동자의 생산물중 일부는 자본가의 수중에서 현존자본의 형태를 취하고있다. 자본가는 이 부분을 자본으로서 선대하고 새로운 로동력의 대가로 로동자에게 주는데 로동자는 그것을 직접 또는 다른 상품과의 교환을 거쳐 수입으로서 소비한다. 그러므로 생산물가치중 재생산에 있어서 로임으로, 즉 로동자들의 수입으로 전화되여야 할 부분은 우선 자본의 형태로, 보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가변자본의 형태로 자본가의 수중으로 환류한다. 그것이 이 형태로 환류한다는것은 로동이 고용로동으로서, 생산수단이 자본으로서 그리고 생산과정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으로서 부단히 새로 재생산되기 위한 하나의 본질적인 조건이다.

불필요한 곤난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하여는 총수익과 순수익을 총수입과 순수입으로부터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수익 또는 총생산물은 재생산된 생산물 전체이다. 고정자본중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소비되지는 않은 부분을 제쳐놓고 생각하면 총수익 또는 총생산물의 가치는 선대되여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불변자본 및 가변자본—의 가치 플라스 리윤과 지대로 분해되는 잉여가치와 같다. 또는 개개의 자본이 생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총자본의 생산물을 고찰한다면 총수익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형성하는 물질적요소 플라스

리윤과 지대를 나타내는 잉여생산물의 물질적요소와 같다.

총수입은 총생산물중 선대되여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그 가치부분 및 이 가치부분에 의하여 측정되는 생산물부분을 공제한후에 남는 가치부분 및 이 가치부분에 의하여 측정되는 생산물부분이다. 따라서 총수입은 로임(또는 생산물중 다시 로동자의 수입으로 될 사명을 가진 부분)+리윤+지대와 같다. 이와 반대로 순수입은 잉여가치이며 따라서 로임을 공제한후에 남는 잉여생산물이며 따라서 사실상 자본에 의하여 실현되여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분할하여야 할 잉여가치와 그 잉여가치에 의하여 측정되는 잉여생산물을 표시하는것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매개의 상품의 가치나 매개의 자본의 상품생산물 전체의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그 한부분은 다만 불변자본을 보상할뿐이고 다른 부분은, 그 일소부분은 가변자본으로서 환류하고 따라서 또 자본의 **형태**로 환류하지만 전부가 총수입으로 전화되여야 하며 합계하면 총수입으로 되는 로임, 리윤 및 지대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 본바와 같이 한 사회의 년총생산물의 가치도 역시 같은것이다. 개별적자본가의 생산물과 사회의 생산물사이에 차이가 생기는것은 오직 개별적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입과 총수입은 구별된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후자에는 로임이 포함되나 전자에는 로임이 포함되지 않기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수입을 보면 국민적수입은 로임 플라스 리윤 플라스 지대로 즉 총수입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추상이다. 왜냐하면 전 사회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자본주의적관점에 서는것이고 따라서 리윤 및 지대로 분해되는 수입만을 순수입으로 보기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레컨대 쌔이씨에게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전체 수익, 총생산물은 한 나라에 있어서는 순수익으로 분해된다거나 또는 순수익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환상, 따라서 이 구별은 국민적관점에서 보면 없어진다는 환상은 애담 스미스 이래 전체 정치경제학을 관통하고있는 허무맹랑한 교조, 즉 상품의 가치는 종국적으로는 전부 수입으로, 즉 로임, 리윤 및 지대로 분해된다는 교조의 필연적이며 최후의 표현에 불과하다. (51)[394]

개개의 자본가의 경우에는 그의 생산물의 일부분이 자본으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재생산의 확대 또는 축적을 도외시하더라도) 그것도 그 자신이 다시 로동자들을 위한 수입으로 즉 수입형태로 전화되여야 할 가변자본으로 재전화되여야 할뿐만아니라 결코 수입으로 전화될수 없는 불변자본으로도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리해하는것—이 리해는 물론 대단히 쉬운것이다. 생산과정을 극히 간단히 관찰하기만 하더라도 이 점은 아주 명백하다. 곤난은 생산과정을 전체로서 고찰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생산물중 수입으로서 로임과 리윤과 지대의 형태로 소비되는 부분(그것이 개인적

---

(51) 리카도는 분별없는 쌔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극히 적절한 견해를 서술하고있다. 《순생산물과 총생산물에 대하여 쌔이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생산된 전체 가치는 총생산물이다. 그것에서 생산비를 공제하면 이 가치는 순생산물이다!〉 (제2권, 491페지).[392] 그렇다고 하면 순생산물이란것은 있을수 없다. 왜냐하면 쌔이씨에 의하면 생산비는 지대, 로임 및 리윤으로써 이루어지기때문이다. 508페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어떤 생산물의 가치, 어떤 생산적봉사의 가치, 생산비의 가치는 모두 사물을 그 자연적인 움직임에 맡겨두는 한 동일한 가치이다.〉 전체에서 전체를 공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리카도 《원리》 제32장 512페지 주). 그런데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바와 같이[393] 리카도도 A. 스미스의 그릇된 상품가격분석, 제 수입의 가치총액에로의 상품가격의 분해를 어디서나 반박한 일이 없다. 그는 이 그릇된 분석에는 개의하지 않고 그가 상품의 불변가치부분을 《사상하는》 한에서는 자기의 분석에서도 그것을 옳은것으로 보고있는것이다. 그도 때때로 동일한 사고방식에 되돌아가고있다.

으로 소비되는가 생산적으로 소비되는가 하는것은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다) 전체의 가치는 사실상 분석하여보면 모두 로임 플라스 리윤 플라스 지대로써 이루어지는 가치총액으로 즉 세 수입의 총가치로 된다. 비록 이 생산물부분의 가치는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부분의 가치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에 포함되여있는 불변자본의 가치 C와 동등한 가치부분을 포함하며 따라서 명백히 수입의 가치만으로 국한될수는 없지만. 이상과 같은 사정은 한편으로는 실제로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부정할수 없는 리론적모순인데 이것은 곤난이다. 이 곤난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아주 쉽게 속여넘길수 있다. 즉 상품가치는 다만 외관상으로 개별적자본가의 관점으로 보아 수입형태로 존재하는 부분과 구별되는 다른 가치부분을 포함할뿐이라는 말로써 속여넘길 수 있다. 일방에 대하여 수입을 형성하는것이 타방에 대하여는 자본으로서 나타난다는 공담은 그 이상의 어떠한 사고도 불필요하게 한다. 이 경우에 만약 전체 생산물의 가치가 수입의 형태로 소비될수 있다면 어떻게 원래의 자본을 보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매 개별적자본의 생산물의 가치는 세 수입의 가치액 플라스 불변자본 C와 같을수 있는데 모든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액을 합계한것은 세 수입의 가치액 플라스 0과 같을수 있는가, 이것은 물론 풀수 없는 수수께끼로서 나타나며 이것을 설명할수 있는것은 대체로 분석에 의하여 가격의 단순한 요소들을 해결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분석은 오히려 악순환과 무한진행으로 만족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에 의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즉 불변자본으로서 나타나는것은 로임, 리윤, 지대로 분해될수 있으나 로임, 리윤, 지대가 표시되는 상품가치는 그 자체가 이번에는 다시 로임, 리윤, 지대

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리하여 무한히 이것이 반복되여간다.(52)

상품의 가치는 결국은 로임+리윤+지대로 분해될수 있다는 근본적으로 그릇된 교조는 소비자는 결국은 총생산물의 총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도 표현된다. 혹은 또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의 화폐류통은 결국 생산자 자신들사이의 화폐류통과 같은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투크[397]) 는식으로도 표현된다. 이 모든 명제들은 그것들이 의거하고 있는 근본명제와 마찬가지로 그릇된것들이다.

이 그릇된 그리고 명백히 리치에 어긋나는 분석으로 이르게 하는 곤난들은 요컨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1.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근본관계, 따라서 잉여가치의 성질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전체 기초가 리해되고 있지 않다는것. 자본의 각 부분생산물의 가치, 매 개별적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과 동등한 가치부분과 가변자본과 동등한 가치부분(로동자의 로임으로 전화된다)과 잉여가치와 동등한 가치부분(후에 리윤과 지대로 분리된다)을 포함한다.

---

(52) 《어느 사회에서나 매개 상품의 가격은 결국은 이 세부분 (즉 로임, 리윤, 지대) 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전부로 분해된다…혹은 차지농업가의 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또는 그의 역축이나 기타 농구의 마멸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4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농구의 가격 례컨대 부림말의 가격은 그 자체가 또 동일한 세 부분, 즉 부림말이 사양되는 토지의 지대, 그것을 사양하는 로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로동에 대한 로임을 선대하는 차지농업가의 리윤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곡물의 가격은 말의 가격도 유지비도 지불해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격은 직접적으로 또는 결국 동일한 세 부분, 즉 지대, 로동 (로임을 의미한다) 및 리윤으로 분해된다》 (A. 스미스[395]). 우리가 나중에 또 지적하겠지만 A. 스미스자신도 이 핑계의 모순과 불충분을 느끼고있다.[396] 이것을 핑계라고 하는것은 그가 어디서도, 그 생산물의 가격이 종국적으로 그 이상 더 나감이 없이 순수하게 이 세 부분으로 되여버리는 현실적인 투자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다니기만 할뿐이라면 그것은 핑계이외의 다른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 로동자는 자기의 로임으로써, 자본가는 자기의 리윤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지대로써 각개가 이 구성부분들의 하나뿐만아니라 세개를 전부 포함하는 상품들을 구매할수 있다는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로임과 리윤과 지대의 따라서 세 수입원천을 합계한것의 가치총액이 이 수입들을 받는 사람들의 총소비로 들어가는 상품들, 즉 이 세 가치구성부분들외에 또 하나의 여분의 가치구성부분, 즉 불변자본을 포함하는 상품들을 구매할수 있다는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들은 세 부분의 가치로써 네 부분의 가치를 구매할수 있는가?(53) 우리는 이 분석을 제2부 제3편에서 주

(53) 쁘루동은 이것을 리해할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을 다음과 같은 암둔한 방식으로써 표명하고있다. 즉 로동자는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되살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생산물에는 리자가 포함되여있어 그것이 원가에 첨가되기때문이[398]라는것이다. 그러나 외젠 포르까드씨는 어떻게 쁘루동의 잘못을 시정하고있는가?[399] 《가령 쁘루동의 리론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본의 리윤에 적중할뿐만아니라 산업의 생존가능성조차 부정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만약 로동자가 그것을 사기 위하여 80밖에 받지 않았는데 그 대가로 100을 지불하지 않을수 없다면, 만약 임금으로는 어떤 생산물에서 그가 그 생산물에 첨가한 가치밖에 되살수 없다면 로동자는 아무것도 되살수 없으며 로임으로는 아무 대가도 지불할수 없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사실 원가중에는 언제나 로동자의 임금이상의 것이 포함되여있으며 판매가격에는 기업자의 리윤이상의것, 례컨대 외국에 지불되는 일이 많은 원료의 가격이 포함되여있다…쁘루동은 국민적자본이 부단히 장성하는것을 망각하고있다. 그는 이 장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있어서, 기업자에게 있어서도 로동자에게 있어서도 확실하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신구대륙평론》 1848년, 제24권 998, 999페지).[400] 여기에는 자산계급적인 분별없는 락천주의가 그것에 가장 알맞는 지혜의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첫째로, 포르까르씨는 로동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가치외에 더 높은 가치를 받지 않는다면 생활할수 없을것이라고 믿고있는데 반대로 로동자가 만약 그가 생산하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받는다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불가능할것이다. 둘째로, 그는 쁘루동이 그렇게 협소한 관점으로 제기한 곤난을 옳게 일반화하고있다. 상품의 가격은 로임을 넘는 초과분뿐만아니라 리윤을 넘는 초과분, 즉 불변가치부분도 포함한다. 따라서 쁘루동의 리치대로 한다면 자본가도 자기의 리윤으로써 상품을 되살수 없을것이다. 그러면 포르까드는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의 무의미한 문구—자본의 장성에 의하여서이다. 따라서 자본의 부단한 장성은 특히 다음과 같은데서도 표현되여야 한다. 즉 자본이 100인 경우에 경제학자에게 불가능한 상품가격의 분석이 자본이 10,000인 경우에는 무용하게 된다는데서도 표현되여야 한다. 토지생산물이 토지에 포함되여있는것보다도 더 많은 탄소를 포함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

었다.

2. 로동이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것에 의하여 낡은 가치를 새로 생산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에서 보존하는 그 방식이 리해되고있지 않다는것.

3. 재생산과정의 일반적관련이 개별적자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총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것이 리해되고있지 않다는것. 로임과 잉여가치, 따라서 1년간에 새로 추가된 로동이 창조한 전체 가치가 실현되는 생산물은 어떻게 그 불변가치부분을 보상하고 동시에 다만 수입에 의하여서만 제한된 가치로 분해될수 있는가 하는 곤난. 그리고 또 새로 첨가된 로동의 총량은 로임과 잉여가치로만 실현되고 이 량자의 가치총액에서 남김없이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은 소재적으로도 가치적으로도 새로운 불변자본에 의하여 보상될수 있는가 하는 곤난. 바로 이 점에 재생산의 분석에 있어서 그리고 그 소재적성격과 그 가치관계의 두 측면에서 본 재생산의 각이한 구성부분의 관계의 분석에 있어서 큰 곤난이 있다.

4. 그러나 이것에 또 하나의 곤난이 첨가되는데 그것은 잉여가치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호상 독립적인 각종 수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더욱 심하게 된다. 즉 수입과 자본이라는 확고한 규정들이 서로 바뀌여지고 그 위치를 변경하며 그리하여 그 규정들은 개별적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규정들에 불과하고 총생산과정을 고찰하면 없어지는듯이 보인다는 곤난이다. 례컨대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I부류의 로동자와

운 토지생산이 부단히 장성하기때문이라는 대답을 주는 화학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할것인가? 속류경제학에서는 자산계급세계를 가장 훌륭한 세계로 간주하려는 선량한 념원이 진리에 대한 사랑과 과학탐구욕의 모든 필요성을 대신한다.

자본가의 수입은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Ⅱ부류의 자본가들의 불변자본을 가치적으로나 소재적으로나 보상한다. 그리하여 일방에 있어서 수입인것이 타방에 있어서는 자본이며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상품가치의 구성부분들의 현실적독립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관념에 의하여 곤난은 회피될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수입이 지출의 소재적요소를 이루어야 할, 즉 소비수단으로 들어가야 할 상품들도 1년간에 각이한 단계들 례컨대 털실이나 모직물의 단계를 통과한다. 그것들은 한 단계에서는 불변자본의 부분을 형성하며 다른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소비되며 따라서 모조리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A. 스미스와 함께 불변자본은 다만 상품가치의 하나의 외관상의 요소에 불과하며 그 요소는 전체 관련에서는 없어지고 만다고 생각할수 있다.[401] 그리고 또 가변자본과 수입과의 교환이 진행된다. 로동자는 자기의 로임으로써 상품중 자기의 수입을 이루는 부분을 구매한다. 이것에 의하여 그는 동시에 자본가를 위하여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를 보상한다. 끝으로 불변자본을 형성하는 생산물중의 일부분은 불변자본의 생산자들 자신에 의하여 현물로 또는 교환을 통하여 보상된다. 이것은 소비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과정이다.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입이 전체 생산물을, 따라서 불변가치부분도 보상한다는 외관이 생기는것이다.

5.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가 일으키는 혼란을 제외하고도 잉여가치가 특수적인, 호상 독립적인 그리고 각이한 생산요소들에 관련되는 수입형태 즉 리윤과 지대로 전화한다는데 의하여 또 하나의 곤난이 발생한다. 상품의 가치가 기초이라는것은 망각되여버린다. 또 다음과 같은것도 망각되여버린다. 즉 이 상품가치가 특수한 구성부분들로 분렬된다는

것도, 이러한 가치구성부분들이 수입형태들로 가일층 발전한다는것 즉 이러한 가치구성부분들이 각이한 생산요소들의 각이한 소유자들과 이러한 개별적가치구성부분들과의 관계로 전화하며 일정한 범주와 명의에 따라 이러한 소유자들간에 분배된다는것도 가치규정이나 그 법칙 자체를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라는것이 망각된다. 마찬가지로 가치법칙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는다. 그것은 리윤의 평균화, 즉 각이한 자본들사이에서의 총잉여가치의 분배나 부분적으로(절대지대에 있어서) 토지소유가 이 평균화에 대하여 설치하는 장애가 상품의 규제적평균가격을 상품의 개별적가치들로부터 배리시킨것으로서 규정한다는 사정이다. 이 사정은 또한 각이한 상품가격들에의 잉여가치의 추가에 영향을 줄따름이고 잉여가치 자체를 그리고 이 각이한 가격구성부분들의 원천으로서의 상품의 총가치를 소멸시키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고찰하게 될 오해인데 이 오해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그 자체의 구성부분들에서 발생하는 듯한 외관과 관련되여있다. 즉 우선 상품의 각이한 가치구성부분들이 각이한 수입에 있어서 각각 독립적형태들을 얻으며 이러한 수입으로서, 그것들의 원천으로서의 상품의 가치에가 아니라 그것들의 원천으로서의 개개의 소재적생산요소들과 관련되게 된다. 그것들은 이 소재적생산요소들과 현실적으로 관련되고있지만 그러나 가치구성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수입으로서, 생산당사자들의 이 일정한 부류 즉 로동자, 자본가, 토지소유자의 수중에 들어가는 가치구성부분들로서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가치구성부분들이 상품가치의 분해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그것들의 결합에 의하여 상

품가치를 형성한다고 상상할수 있으며 그리하여 상품가치는 로임, 리윤, 지대의 가치총액에서 발생하고 로임, 리윤, 지대의 가치는 그 자체가 이번에는 다시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등의 훌륭한 악순환이 나오는것이다.(54)

재생산의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로동의 일부분만이 불변자본의 생산에 사용되며 따라서 또 그 보상에 사용된다. 즉 바로 소비수단의 생산 즉 수입의 소재적요소에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이 불변부분이 Ⅱ부류에 있어서는 아무런 추가적로동도

(54) 《재료나 원료나 완제품에 사용되는 류동자본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상품으로써 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필요가격은 또 동일한 요소들로써 이루어지고있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상품총체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류동자본의 이 부분을 필요가격의 구성부분에 가산하는것은 이중계산으로 될것이다》(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제2권 140페지). 슈또르흐가 류동자본의 요소라고 하는것은(고정자본은 다만 형태를 바꾼 류동자본에 불과하다) 불변가치부분인것이다. 《로동자의 임금은 기업자의 리윤중 로임—만일 로임을 생활수단의 일부분으로서 본다면—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역시 시장가격으로 구매되는 상품들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품들은 그 자체가 또한 로임, 자본리자, 지대 및 기업자리득을 포함한다는것은 사실이다…이러한 확인은 필요가격을 그 가장 간단한 요소들로 분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하는데 기여할따름이다》(우와 같은책, 140페지의 주). 슈또르흐는 자기의 《국민수입의 본성에 관한 고찰》, (1824년 빠리판)에서는 쎄이와 론쟁하는 개소에서 확실히 상품가치를 단순한 제수입으로 분해하는 상품가치의 그릇된 분석에서 생기는 불합리성을 리해하고 이러한 결론들이 황당하다는것을—개별적자본가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관점에서—정당하게 서술하고있으나 그 자신도 필요가격의 분석에서는 일보도 전진하고있지 않으며 이 필요가격에 대하여는 이것을 그릇된 한정없는 순환론에 빠지지 않고 그것의 현실적 요소들로 분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자기의 《강의》에서 언명하고있다. 《년생산물의 가치는 자본에 대한 부분과 리윤에 대한 부분으로 분할된다는것, 그리고 년생산물의 이 가치부분들은 각각 규칙적으로 국민이 그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서와 그의 소비기금을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물들을 구매한다는것은 분명하다》(134~135페지). 《…그들 〔자기로 로동하는 농민가족〕은 자기들의 고간과 외양간에서 살고 자기들의 종곡과 가축사료를 먹고 자기들의 역축으로써 옷을 해입고 자기들의 농구로 즐길수 있는가? 쎄이씨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135~136페지). 《…만일 사람들이 한 나라의 수입은 그들의 총생산물과 같다는것 즉 총생산물에서 자본을 공제하지 않아도 좋다는것을 인정한다면 사람들은 또한 한 나라는 그 장래의 수입에 조금도 손실을 끼침이 없이 그 년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비생산적으로 지출할수 있다는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147페지). 《한나라의 자본을 이루는 생산물들은 소비될수 없는것이다》(150페지).

필요로 하지 않는것에 의하여 상쇄된다. 그러나 이 불변자본은(총재생산과정, 즉 I부류 및 II부류사이의 상쇄를 포함하는 총재생산과정을 고찰하면) 새로 첨가된 로동의 생산물이 아닌—비록 이 생산물도 불변자본없이는 생산될수 없을것이지만—이 불변자본은 소재상으로 보면 재생산과정중에 이러저러한 재해와 위험에 처하여있으며 그때문에 큰 손해를 받을수도 있다(그리고 또 가치상으로 보아도 불변자본은 로동의 생산력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가치가 감소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개별적자본가들과만 관계가 있을뿐이다). 이에 상응하여 리윤 즉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따라서 또 새로 첨가되는 로동만을(가치상으로부터 보아) 표시하는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은 보험기금으로서 복무한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개별적사업으로서 이 보험기금을 관리하는가 어떤가는 사태의 성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수입중 수입으로서 소비되지도 않고 또 반드시 축적기금으로서 복무하지도 않는 유일한 부분이다. 이것이 사실상 축적기금으로서 복무하는가 또는 재생산의 결손을 보상할따름인가 하는것은 우연에 달린다. 이것은 또 잉여가치 및 잉여생산물중의, 따라서 잉여로동중의 축적을 위하여 즉 재생산과정의 확대를 위하여 복무하는 부분외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소멸후에도 존속하지 않으면 안될 유일한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직접적인 생산자들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이 그것의 현재와 같은 최소한도에 국한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전제로 한다. 년령관계로 아직 생산에 참가하지 못하든가 또는 더는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잉여로동을 제외하고는 로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양을 위한 로동은 일체 없어질것이다. 사회의 발단을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생산된 생

산수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가치가 생산물로 들어가고 동일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에서는 그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정도에 따라 생산물중에서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불변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자연이 처음에는 생산할 필요가 없는 생활수단을 직접 주고있다. 그러므로 자연은 얼마 안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미개인에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새로운 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시간을 주는것이 아니라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생활수단의 획득에 필요한 로동을 제한외에 다른 천연생산물들을 활, 돌칼, 쪽배 등과 같은 생산수단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준다. 미개인에게 있어서의 이 과정은 소재적측면에서만 보면 전적으로 잉여로동의 새로운 자본으로의 재전화에 상응한다. 축적과정에서는 초과로동의 이러한 생산물의 자본으로의 전화가 부단히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자본은 리윤, 지대 또는 기타의 수입형태로부터 즉 잉여로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정은 상품의 모든 가치가 수입에서 발생한다는듯한 그릇된 관념을 초래한다. 리윤의 자본으로의 이러한 재전화는 보다 더 상세히 분석하면 오히려 반대로 추가로동—그것은 항상 수입의 형태로 표시된다—은 낡은 자본가치의 유지 또는 재생산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으며 그것이 수입으로서 소비되지 않는 한에서는 새로운 초과자본의 창조를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전체 곤난은 다음과 같은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새로 첨가되는 모든 로동은 그것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가 로임으로 되지 않는 한에서는 리윤—여기에서는 잉여가치일반의 형태로서 간주되는—으로서 즉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가치로서 따라서 그를 위하여 어떠한 선대된

것도, 어떠한 자본도 보상하지 않아도 좋은 가치로서 나타난다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치는 차유로 처분할수 있는 추가적부의 형태로, 간단히 말하면 개별적자본가의 관점에서는 그의 수입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새로 창조된 이 가치는 개인적으로 소비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으로도 소비될수 있고 수입으로서 소비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으로서도 소비될수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그 현물형태로 보아도 생산적으로 소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매년 첨가되는 로동이 수입을 창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자본도 창조한다는것은 명백하며 그것은 사실 또 축적과정에서도 나타나는바이다. 그러나 로동력중 자본의 창조에 돌려지는 부분(따라서 비유하면 로동일중 미개인이 식료품을 취득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식료품을 취득하는데 쓰이는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소비하는 부분)은 잉여로동의 전체 생산물이 우선 리윤의 형태로 나타난다는데 의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리윤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이 잉여생산물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다만 자본가와 그가 차지하는 잉여가치와의 개인적관계에만 관련되는것이다. 확실히 로동자가 창조하는 잉여가치는 수입과 자본으로 분할된다. 즉 소비수단과 추가적생산수단으로 분할된다. 그러나 그 전해부터 계승된 낡은 불변자본(손상을 입은, 따라서 그만큼 없어진 부분은 도외시하고 재생산될 필요가 없는 한에서의 불변자본을 말하는데 재생산과정의 이러한 교란은 보험문제에 속한다)은 그 가치로 보면 새로 첨가되는 로동에 의하여 재생산되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로 첨가되는 로동은 다만 로임, 리윤, 지대라는 수입만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 첨가

되는 로동의 일부분은 언제나 소비된 불변자본의 재생산과 보상에 흡수된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것을 간과하고있다. 1) 이 로동의 생산물의 가치의 일부분은 새로 첨가되는 이 로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기존의 소비된 불변자본이라는것, 따라서 또 이 가치부분을 나타내는 생산물부분도 수입으로는 전화되지 않고 현물로 이 불변자본의 생산수단을 보상한다는것, 2) 이 새로 첨가된 로동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가치부분은 현물로 수입으로서 소비되지는 않고 다른 분야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이 불변자본이 수입으로서 소비될수 있는 현물형태로 전화되지만 그러나 이 현물형태는 역시 전적으로 새로 첨가된 로동의 생산물은 아니라는것이다.

재생산이 변함없는 규모에서 진행되는 한에서는 불변자본중의 소비된 매개 요소는 해당 종류의 신품에 의하여, 동일한 량이나 형태의 신품이 아니라도 작용능력이 동일한 신품에 의하여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생산력이 변함없다면 이 현물보상은 이전의 형태에서의 불변자본이 가지고있던것과 동일한 가치의 보상을 포함한다. 그러나 로동생산력이 높아져 동일한 소재적요소들을 보다 적은 로동으로써 재생산할수 있게 되면 생산물중의 보다 적은 가치부분으로써도 불변부분을 완전히 현물로 보상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은 부분은 새로운 추가자본의 형성에 복무할수 있거나 또는 생산물의 보다 큰 부분에 소비수단의 형태를 부여할수 있거나 또는 잉여로동을 줄일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로동생산력이 낮아지면 생산물의 보다 큰 부분이 낡은 자본의 보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며 잉여생산물은 줄어든다.

리윤 또는 일반적으로 잉여가치의 어떠한 형태가 자본으

로 재전화한다는것은—만일 우리가 력사적으로 규정된 경제적형태를 도외시하고 이 재전화를 단지 새로운 생산수단의 단순한 형성으로서 본다면—로동자가 직접적인 생활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로동외에 생산수단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로동을 사용하는 상태가 언제나 계속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리윤의 자본으로의 전화가 의미하는것은 초과로동의 일부분이 새로운 추가적생산수단의 형성에 사용된다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리윤의 자본으로의 전화의 형태로 진행된다는것은 로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초과로동을 자유로 처분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이 초과로동이 우선 그것이 수입으로서 나타나는 한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례컨대 미개인의 경우라면 그것은 직접 생산수단의 생산에 돌려지는 초과로동으로서 나타나는데)는것은 다만 이 로동 또는 그 생산물이 비로동자에 의하여 취득된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그러나 사실상 자본으로 전화되는것은 리윤 그 자체가 아니다.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는 다만 잉여가치 및 잉여생산물이 자본가에 의하여 수입으로서 개인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전화되는것은 가치이고 대상화된 로동이며 또는 이 가치를 직접 나타내는 생산물이거나 이 가치가 먼저 화폐로 전화된후에 그것과 교환되는 생산물이다. 리윤이 자본으로 재전화되는 경우에도 리윤이라는 잉여가치의 이 규정된 형태가 새로운 자본의 원천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 잉여가치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화될따름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만드는것은 이 형태전화가 아니다. 이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은 상품이고 그 가치이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가 지불되고있지 않다는것—그리고 오직 이것에

의하여서만 그 가치는 잉여가치로 된다—은 로동의 대상화, 가치 그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오해는 각이한 형태들로 표현된다. 례컨대 불변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도 역시 로임, 리윤, 지대의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형태로, 또는 일방에 대하여 수입을 나타내는것이 타방에 대하여서는 자본을 나타내며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관계에 불고하다는 형태로 표현된다. 례컨대 방적업자의 면사는 그의 리윤을 표시하는 가치부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직조업자가 면사를 구매한다면 그는 방적업자의 리윤을 실현하는데 그러나 그 자신에 대하여는 이 면사는 그의 불변자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수입과 자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미 이전에 서술한것외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가치로 보아 면사와 함께 직조업자의 자본으로 그 구성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면사의 가치이다. 이 가치의 부분들이 방적업자 자신에 있어서 어떻게 자본과 수입으로, 바꾸어말하면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으로 분해되였는가 하는것은 상품의 가치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래도 좋다(평균리윤으로 인한 변경을 도외시한다). 여기에서 언제나 배후에 숨어있는것은 리윤, 일반적으로 잉여가치는 상품가치를 넘는 초과분이며 이 초과분은 오직 가격추가, 호상사취, 양도리득으로써만 얻어진다는것이다. 상품의 생산가격 또는 지어는 상품의 가치가 지불된다면 물론 상품의 판매자에게 있어서는 수입의 형태로 표시되는 상품의 가치구성부분도 지불된다. 독점가격은 여기에서는 물론 문제로 되지 않는다.

둘째로, 불변자본을 구성하는 상품구성부분도 다른 모든 상품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생산자와 소유자에 있어

서는 로임, 리윤, 지대로 분해되는 가치부분으로 환원될수 있다는것은 전적으로 옳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품가치라는 것은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사회적필요로동의 척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자본주의적표현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제1부에서 지적한바와 같이[402] 이것은 매개 자본의 상품생산물이 개개의 부분으로 분할되여 그중 한 부분은 다만 불변자본부분을 표시하며 다른 한 부분은 가변자본부분을, 그리고 제3의 부분은 잉여가치만을 표시한다는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슈또르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기타의 많은 사람들의 견해도 표현하고있다.

《국민적수입을 이루는, 판매될수 있는 생산물들은 정치경제학에서는 두가지 다른 방식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치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로서 고찰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국의 수입은 개개인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가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의 유용성 또는 그것이 충족시킬수 있는 욕망에 의하여 평가되기때문이다》(《국민적수입의 본성에 관한 고찰》, 19페지).

첫째로, 그 생산방식이 가치에 기초하고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되고있는 어떤 나라를 다만 국민적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서만 로동하는 총체로서 고찰한다는것은 그릇된 추상이다.

둘째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폐절된후에도 사회적생산이 유지되는 한 가치규정은 로동시간의 규제나 각이한 생산집단들사이로의 사회적로동의 분배, 끝으로 그것에 관한 부기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유력하게 작용한다.

제 50 장

경쟁의 외관

이미 보여준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 또는 상품의 총가치에 의하여 규제되는 생산가격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로 분해된다.

1.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가치부분 즉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형태로 소비된 과거로동을 표시하는 가치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의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생산수단의 가치 또는 가격.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것은 결코 개개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자본 즉 일정한 기간 례컨대 1년간의 자본의 생산물이 표시하는 형태이다. 개개의 상품은 다만 이 상품자본의 한 요소를 형성할따름이며 이 요소는 또한 그것의 가치로 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성부분들로 분해된다.

2. 로동자의 수입의 크기를 측정하며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로임으로 전화되는 가변자본의 가치부분. 따라서 로동자는 이 로임을 자본의 이 가변가치부분에서 재생산하였다. 요컨대 상품의 생산에서 제1의 불변부분에 새로 첨가된 로동의 지불부분을 표시하는 가치부분.

3. 잉여가치 즉 상품생산물중 부지불로동 또는 잉여로동

을 표시하는 가치부분. 이 마지막 가치부분은 다시 또 수입의 형태들인 다음과 같은 독립적형태들을 취한다. 즉 자본의 리윤의 형태(자본으로서의 자본의 리자와 기능자본으로서의 자본의 기업자리득)와 생산과정에서 함께 작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의것으로 되는 지대가 그것이다. 이 2와 3에 속하는 구성부분들 즉 항상로임(이것은 반드시 미리 가변자본의 형태를 통과한것이다). 리윤 및 지대라는 수입형태들을 취하는 가치구성부분은 불변부분인 상품의 생산수단에 새로 첨가된 로동의 대상화된 전체 가치가 이 가치구성부분으로 된다는것에 의하여 1의 불변구성부분과는 구별된다. 이제 우리가 불변가치부분을 도외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은 정당하다. 즉 상품의 가치는 새로 첨가된 로동을 표시하는 한에서는 언제나 세개의 수입형태들을 이루는 세 부분으로 즉 로임, 리윤, 지대로 분해되며(55), 이것들 각자의 가치의 크기 즉 이것들이 총가치중에서 차지하는 각 해당 부분들은 상술한바와 같은 각이한, 독특한 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말하는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반대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은 잘못일것이다. 즉 로임의 가치, 리윤의 률 및 지대의 률은

---

(55) 불변자본부분에 첨가된 가치가 로임, 리윤, 지대로 분할된다면 이것들이 가치부분들이라는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러한것들이 이 가치를 표시하는 직접적생산물속에, 즉 로동자와 자본가가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 례컨대 방적업에서 생산한 직접적생산물인 면사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것들이 이 생산물에서 표시되는것은 동일한 가치의 어떤 다른 상품, 소재적부의 어떤 다른 구성부분에서 표시되는것과 전적으로 같은것이다. 또 실지로 로임은 화폐로써 즉 순전한 가치표현으로 지불된다. 리자와 지대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자본가에 있어서는 그의 생산물이 순전한 가치표현으로 전화한다는것은 극히 중요한것이다. 분배 자체에 있어서는 이 전화가 이미 전제되고있다. 이 가치들이 동일한 생산물, 동일한 상품—이것의 생산에서 그 가치들이 발생한—으로 재전화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로동자가 자기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분을 되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다른 종류의 로동의 생산물을 구매하는가 하는것은 이 문제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로드베르투스씨가 이 문제에 열중하고있는것은 전혀 무익한 일이다.[403]

각기 독립적인 가치구성요소들을 형성하며 불변구성부분을 도외시하면 이것들의 합계에서 상품의 가치가 나온다고 말하는것, 바꾸어말하면 이것들은 상품가치 또는 생산가격의 구성적인 제 부분들을 형성한다고 말하는것은 잘못일것이다. (56)

차이는 누구나 즉시 알수 있다.

가령 500이라는 자본의 생산물가치=400c+100v+150m=650이라 하고 이 150m은 또 리윤 75+지대 75로 분할된다고 하자. 그리고 또 불필요한 곤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자본은 중등의 구성의것이고 그리하여 그 생산가격은 그 가치와 일치한것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일치는 이 개별적자본의 생산물을 총자본중 이 자본의 크기에 상응하는 부분의 생산물이라고 간주할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변자본에 의하여 측정되는 로임은 선대자본의 20%이고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 잉여가치는 30%, 즉 15%의 리윤과 15%의 지대이다. 상품가치중 새로 첨가된 로동이 대상화되고있는 구성부분의 총액은 100v+150m=250이다. 이 가치구성부분의 크기는 그것이 로임, 리윤 및 지대로 분할되는것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 부분들의 호상 비률에서 알수 있듯이 100이라는 화폐, 례컨대 100파운드의 지불을 받는 로동력이 250파운드라는 화폐량으로 표시되는 로동량을 제공하였다, 이것으로부터 로동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로동의 1배 반의 잉여로동을 수행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로동일이 10시간이였다면 로동자는 4시간은 자신을 위하여, 6시

(56) 《원료 및 가공상품의 가치를 규제하는 동일한 일반적원칙은 금속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것을 지적하면 충분할것이다. 금속의 가치는 리윤률에도, 로임률에도, 광산에 지불되는 지대에도 의존하는것이 아니며 금속을 채취하여 시장에 운송하는데 필요한 로동총량에 의존한다》(리카도 《원리》 제3장 77페지).

간은 자본가를 위하여 로동하였다. 따라서 100파운드의 지불을 받은 로동자의 로동이 250파운드라는 화폐가치로 표현된다. 이 250파운드라는 가치외에는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에서도, 자본가와 토지소유자사이에서도 분할할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생산수단의 가치 400에 새로 첨가된 총가치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생산되였으며 그것에 대상화된 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가치 250은 로동자, 자본가, 토지소유자가 각기 로임, 리윤, 지대라는 수입의 형태를 이 가치에서 끌어낼수 있는 배당의 한계를 이룬다.

가령 동일한 유기적구성의 자본 즉 사용되는 산 로동력과 움직여지는 불변자본과의 비률이 동일한 어떤 자본이 400이라는 불변자본을 움직이는 동일한 로동력에 100파운드가 아니라 150파운드를 지불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자. 그리고 또 리윤과 지대가 잉여가치를 분할하는 비률도 다르다고 하자. 이전에 1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움직인것과 동일한 로동량을 15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움직인다고 전제되여있으므로 새로 생산된 가치는 여전히 250일것이며 총생산물의 가치도 여전히 650일것이다. 이 경우에는 400c+150v+100m으로 될것이다. 그리고 이 100m은 례컨대 45의 리윤과 55의 지대로 분할될것이다. 새로 생산된 총가치가 로임, 리윤, 지대로 분배되는 비률은 극히 다를것이다. 선대총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총량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선대총자본의 크기도 역시 각이할것이다. 선대자본에 대하여 로임은 $27\frac{3}{11}$%, 리윤은 $8\frac{2}{11}$%, 지대는 10%로 될것이며 따라서 총잉여가치는 18%를 좀 넘을것이다.

로임이 상승한 결과로 총로동중 부지불부분은 변경될것이며 따라서 잉여가치도 변경될것이다. 10시간로동일에서 로동자는 자신을 위하여 6시간을 로동하고 자본가를 위하여서는 다만 4시간을 로동하게 될것이다. 리윤과 지대의 비률도 다르고 감소된 잉여가치가 전과는 다른 비률로써 자본가와 토지소유자사이에 분할될것이다. 끝으로 불변자본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선대된 가변자본의 가치가 증대하였기때문에 감소된 잉여가치는 더욱 심하게 저하된 총리윤률로 표현될것이다. 여기에서 총리윤률이라고 하는것은 선대총자본에 대한 총잉여가치의 비률을 의미한다.

로임의 가치, 리윤의 률, 지대의 률에 있어서의 변동은 이 부분들의 비률을 규제하는 법칙들의 작용이 어떠하든간에 새로 창조된 상품가치 250에 의하여 설정되는 한계내에서만 일어날것이다. 지대가 독점가격에 립각하는 경우에만 례외가 생길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법칙을 변경시키는것은 아니고 다만 연구를 복잡하게 할따름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생산물 자체만을 고찰한다면 잉여가치의 분할만이 다를것이고 다른 상품들에 대한 이 생산물의 상대적가치를 고찰한다면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다른 상품들로부터 이 특수한 상품으로 이전된다는 차이만이 발견될것이기때문이다.

이상의것을 요약하여보자.

생산물의 가치	새로운 가치	잉여가치률	총 리윤률
첫째 경우:400c+100v+150m=650	250	150%	30%
둘째 경우:400c+150v+100m=650	250	$66\frac{2}{3}$	$18\frac{2}{11}$ %

첫째로, 잉여가치는 이전의 액의 3분의 1만큼 감소하여

150으로부터 100으로 되였다. 리윤률은 3분의 1보다 좀 많이 저하하여 30%로부터 18%로 되였다. 이것은 감소된 잉여가치가 증대된 선대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그러나 리윤률은 결코 잉여가치률과 동일한 비률로써 저하되는것은 아니다. 잉여가치률은 $\frac{150}{100}$으로부터 $\frac{100}{150}$으로 즉 150%로부터 $66\frac{2}{3}$%로 저하하는데 리윤률은 $\frac{150}{500}$으로부터 $\frac{100}{550}$으로 즉 30%로부터 $18\frac{2}{11}$%로 저하할따름이다. 따라서 리윤률이 저하되는 비률은 잉여가치량이 감소되는 비률보다는 크지만 잉여가치률이 저하되는 비률보다는 작다. 그리고 사용되는 로동량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선대자본은 그 가변적구성부분의 증가의 결과로 증대한다 하더라도 생산물의 가치와 총량은 이전과 동일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선대자본의 이러한 증대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자본가에게는 확실히 통절하게 느껴질것이다. 그러나 재생산 전체를 고찰한다면 가변자본의 증대는 새로 첨가되는 로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되는 가치의 보다 큰 부분이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로가 아니라 로임으로 따라서 우선 가변자본으로 전화되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가치는 이전과 동일한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변자본가치=400에 의하여 제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첨가된 로동을 표시하는 250이라는 수자에 의하여 제한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량자의 크기는 이전과 동일하다. 이 생산물은 그 자체가 다시 불변자본으로 들어가는 한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가치량으로써 동등한 사용가치량을 표시할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량의 불변자본요소들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할것이

다. 로임이 증대하는것이 로동자가 그 자신의 로동중 보다 큰 부분을 받게 되는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로동중 보다 큰 부분을 받게 되는것이 로동의 생산성이 저하된때문이라면 사태는 다르게 될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가치에는 지불로동도 부지불로동도 포함하여 동일한 로동이 표시되므로 총가치는 이전과 동일할것이다. 그러나 이 로동량을 표시하는 생산물량은 감소할것이며 따라서 이 생산물의 매개 해당 부분의 가격은 생산물의 각 부분이 보다 많은 로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상승할것이다. 150이라는 상승된 로임은 이전에 100이라는 로임이 표시하는것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표시하지는 않을것이다. 100이라는 감소된 잉여가치는 이전에 비하여 $\frac{2}{3}$의 생산물을 즉 이전에 100에서 표시된 사용가치량의 $66\frac{2}{3}\%$를 표시할따름일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 생산물이 불변자본으로 들어가는 한에서는 불변자본도 비싸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임의 상승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로임의 상승이 상품의 등귀의 결과이며 또 동일한 량의 로동의 생산성이 저하된 결과일것이다. 여기에서 마치도 로임의 상승이 생산물을 등귀시킨듯한 외관이 발생한다. 그러나 로임의 상승은 여기에서는 원인인것이 아니라 로동의 생산성의 저하에 의한 상품의 가치변동의 결과인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정들이 같은 경우에 즉 동일한 사용로동량이 여전히 250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이 로동에 의하여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동일한 생산물량의 가치도 동일한 크기만큼 증대 또는 감소할것이다. 450c+100v+150m이면 생산물가치는 700이다. 그러나

350c+100v+150m이면 동일한 생산물량의 가치가 이전에는 650이였는데 이제는 60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로동량을 움직이는 선대자본이 증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 증대 또는 감소가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량의 변화로부터 생기는것이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다른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증대 또는 감소한다. 이와는 반대로 선대자본의 증대 또는 감소가 로동생산력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가변자본부분의 가치량의 변화로부터 생기는것이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불변자본의 경우에는 그 가치의 증대 또는 감소는 반대의 운동에 의하여도 상쇄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변자본의 경우에는 로동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그 가치의 증대 또는 감소는 잉여가치측에서의 반대의 운동에 의하여 상쇄되며 그리하여 가변자본의 가치 플라스 잉여가치 즉 로동에 의하여 생산수단에 새로 첨가되며 생산물에서 새로 표시되는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가변자본 또는 로임의 가치의 증대 또는 감소가 상품의 가격의 등귀 또는 저락의 결과이라면 즉 이 투자에서 사용되는 로동의 생산성의 저하 또는 상승의 결과이라면 이것은 생산물의 가치에 작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로임의 상승 또는 저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우에서 든 례에서 불변자본 400c는 변하지 않고 100v+150m으로부터 150v+100m으로의 변동 즉 가변자본의 증대가 이 특수한 부문 례컨대 면방적업에서의 로동의 생산량의 저하의 결과가 아니라 로동자의 식료품을 제공하는 농업에서의 로동생산력의 저하의 결과이며 따라서 이 식료품의 등귀의 결과이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650의 가치는 여전히 동일한 량의 면사로 표시될것이다.

그리고 또 상술한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절약 등등에 의한 불변자본투하의 감소가 로동자의 소비로 들어가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부문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로동자의 생활수단을 저렴하게 하기때문에 사용되는 로동 자체의 생산성의 직접적인 제고와 마찬가지로 로임의 저하를 초래하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증대를 초래할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리윤률은 그중의 원인에 의하여 증대될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불변자본의 가치가 감소하기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가치가 증가하기때문이다. 잉여가치의 리윤으로의 전화를 고찰할 때에 우리는 로임은 저하하지 않고 불변이라고 가정하였는데 그 리유는 거기에서는 잉여가치률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리윤률의 변동을 연구하여야 하였기때문이다. 그밖에 거기에서 전개된 법칙들은 일반적인것들이며 이 법칙들은 로동자의 소비로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을 생산하며 따라서 그 생산물의 가치변동이 로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투자에도 적용되는것이다.

이리하여 새로 첨가되는 로동에 의하여 생산수단 또는 불변자본부분에 매년 새로 추가되는 가치가 로임, 리윤, 지대라는 각이한 수입형태들로 구분되고 분해되는것은 가치 그 자체의 한계에는, 따라서 이 각이한 범주들사이에 분배되는 가치총액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이러한 개개의 부분들 호상간의 비률의 변동이 이러한 부분의 총액을, 이 주어진 가치량을 변경시킬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100이라는 주어진 수는 그것이 50+50으로 분해되든

20+70+10으로 분해되든 또는 40+30+30으로 분해되든 언제나 동일하다. 생산물의 가치중 이러한 수입으로 분할되는 부분은 자본의 불변가치부분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상품들의 가치에 의하여 즉 그때마다 상품들에 대상화된 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따라서 첫째로는 로임, 리윤, 지대로 분배되는 상품의 가치량,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개개의 가치부분들의 합계의 절대적한계는 주어지는것이다. 둘째로는 개개의 범주들 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의 평균적인 규제적인 한계들도 역시 주어지는것이다. 로임은 제 범주의 이러한 한계설정의 기초를 이룬다. 로임은 한편으로는 자연법칙에 의하여 규제되는것이다. 그 최저한계는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필요한 생활수단의 최저한계에 의하여 따라서 일정한 량의 상품들에 의하여 주어지는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가치는 그것들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생산수단에 새로 첨가되는 로동중 또는 로동일중 로동자가 이러한 필요생활수단의 가치의 등가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례컨대 로동자의 평균적인 1일분의 생활수단이 가치로 보아 6시간의 평균로동과 동등하다면 그는 그의 1일의 로동중 평균 6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로동력의 현실적가치는 이 육체적최소한과는 다르다. 그것은 풍토나 사회발전수준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것은 육체적필요에 의하여 결정될뿐만 아니라 제2의 자연으로 되는 력사적으로 발전된 사회적필요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한 시기에는 이 규제적인 평균로임은 어떤 일정한 크기이다. 따라서 나머지 모든 수입의 가치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가치는 언제

나 총로동일(이것은 사회적총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총로동량을 포괄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서는 평균로동일과 일치한다.)이 구체화되는 가치에서 로임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을 감한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가치의 한계는 부지불로동을 나타내는 가치의 한계에 의하여 즉 이 부지불로동의 량에 의하여 주어지는것이다. 로동일중 로동자가 자기의 로임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의 임금의 육체적 최소한을 자체의 최후의 한계로 한다면 로동일중 그의 잉여로동을 나타내는 다른 부분 따라서 또 잉여가치를 나타내는 가치부분은 로동일의 육체적최대한을 즉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면서 줄수 있는 1일의 로동시간의 총량을 자체의 한계로 한다. 당면의 연구에 있어서는 1년간에 새로 첨가되는 총로동이 나타내는 가치의 분배가 문제이므로 로동일은 여기에서는 그것이 그 자체의 육체적최저한으로부터 많이 배리하든 적게 배리하든간에 불변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 불변량으로서 전제되여있다. 따라서 잉여가치를 형성하고 리윤과 지대로 분해되는 가치부분의 절대적인 한계는 주어져있다. 이 가치부분은 로동일중 지불부분을 넘는 부지불부분의 초과분에 의하여, 즉 총생산물의 가치중 이 잉여로동이 실현되고있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다. 이와 같이 한계가 규정되여있는 잉여가치가 선대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것을 내가 이미 이름한것처럼 리윤이라고 부른다면 이 리윤은 그 절대량으로 보면 잉여가치와 같으며 따라서 그 한계도 잉여가치와 마찬가지로 법칙적으로 규정되여있다. 그런데 리윤률의 높이도 역시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한계들사이에 있는 크기이다. 리윤률의 높이는 생산에 선대된 사회적총자본에 대한 총잉여가치의 비률이다. 이

자본이 500(베컨대 100만단위로)이고 잉여가치가 100이라면 20%가 리윤률의 절대적한계를 이룬다. 각이한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자본들사이에 이 률을 기준으로서 사회적리윤이 분배되는것은 상품의 가치로부터 배리된 생산가격을 낳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규제적인 평균시장가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리는 가치에 의한 가격의 규정이나 리윤의 합법칙적인 한계를 없애는것이 아니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소비된 자본 플라스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와 같다면 그 상품의 생산가격은 이제는 그 상품에 소비된 자본 k 플라스 일반적리윤률에 따라 그 상품에 할당되는 잉여가치, 즉 소비된 자본뿐만아니라 단순히 사용된 자본도 포함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선대된 자본에 대한 례컨대 20%를 k에 가한것과 같다. 그러나 이 20%의 추가 자체는 사회적총자본에 의하여 조성된 잉여가치와 자본의 가치에 대한 이 잉여가치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 그때문에 그것은 20%인것이고 10%나 100%인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는 리윤의 한계를 없애는것이 아니라 다만 사회적자본을 구성하는 각이한 개별적자본들사이로의 리윤의 분배를 변경시킬뿐이며 다만 리윤을 이 자본들에 균등하게 즉 이러한 자본이 이 총자본의 가치부분들을 이루는 비률에 따라 분배할 따름이다. 시장가격은 이 규제적인 생산가격보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동들은 상쇄된다. 비교적 긴 기간의 가격표를 본다면 그리고 로동의 생산력의 변동에 의하여 상품의 현실적가치가 변한 경우들과 또한 자연적 또는 사회적 재해로 말미암아 생산과정이 교란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 보면 첫째로는 배리의 한계가 비교적 협소한데 대하여 놀랄것이며 둘째로는 그것들의 배리가 규칙적으로 상쇄

된다는데 대하여 놀랄것이다. 여기서는 께뜰래가 사회적현상들에 대하여 지적한것과 동일한, 규제적평균의 지배가 발견될것이다.[404] 만일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평균화가 아무런 장애에도 부딪치지 않는다면 지대는 차액지대로 되여버린다. 즉 지대는 규제적인 생산가격에 의하여 일부의 자본가에게 초과리윤이 주어지더라도 다음에는 그것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취득되는 초과리윤의 평균화에 의하여 제한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지대는 일반적리윤률에 의한 생산가격의 규제가 일으키는 개별적리윤률의 배리들속에 자체의 일정한 가치한계를 가진다. 토지소유가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평균화에 대한 장애로 되여 절대지대를 취득한다면 이 절대지대는 토지생산물들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에 의하여, 즉 일반적리윤률에 따라 자본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리윤을 넘는, 그 토지생산물들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초과분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 경우에는 이 차액이 지대의 한계를 이루는것이며 지대는 여전히 다만 상품들에 포함되여있는 주어진 잉여가치의 일정한 부분을 이룰따름이다.

끝으로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잉여가치의 평균리윤으로의 평균화가 인위적인 또는 자연적인 독점 특히 토지소유의 독점이라는 장애에 부딪쳐 그때문에 독점의 작용을 받게되는 상품들의 생산가격과 가치를 넘는 독점가격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주어지는 한계가 그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것이다. 일정한 상품들의 독점가격은 다른 상품들의 생산자들의 리윤의 일부분을 독점가격을 가진 상품들로 이전시킬따름일것이다. 간접으로는 각이한 생산분야들사이에서의 잉여가치의 분배에 국부적인 교란이 발생할것이

지만 이 교란도 이 잉여가치 자체의 한계를 변동시키지는 않을것이다. 만일 독점가격을 가진 상품이 로동자의 필요소비에 들어간다면—로동가자 여전히 자기의 로동력의 가치를 지불받는 경우라면—그 상품은 로임을 인상시킬것이며 따라서 잉여가치를 감소시킬것이다. 그 상품이 로임을 로동력의 가치이하로 끌어내릴수 있을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은 로임이 그 육체적최소한의 한계보다 높은 한에서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점가격은 실질로임(즉 로동자가 동일한 량의 로동에 의하여 받는 사용가치의 량)으로부터의 공제나 다른 자본가들의 리윤으로부터의 공제에 의하여 지불될것이다. 독점가격이 상품가격의 정상적인 규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한계는 확정되여있고 정확히 계산될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새로 첨가된 일반적으로 수입들로 분해될수 있는 상품가치의 분할이 필요로동과 잉여로동과의 비률 즉 로임과 잉여가치와의 비률에서 그의 주어진 규제적인 한계를 발견하는것처럼 잉여가치 자체의 리윤과 지대로의 분할도 또한 리윤률의 평균화를 규제하는 법칙들에서 이러한 한계를 발견한다. 리자와 기업자리득으로의 분할에서는 평균리윤 자체가 량자를 합친것의 한계를 이룬다. 평균리윤은 일정한 가치량을 제공하며 이 제공된 가치량을 리자와 기업자리득은 분할하여야 하며 또 그것만을 분할할수 있다. 일정한 분할비률은 이 경우에는 우연적이다. 즉 오직 경쟁관계들에 의하여 규정될뿐이다. 다른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일치는 시장가격의 그 규제적평균가격으로부터의 배리를 해소하는 즉 경쟁의 영향을 해소하는것에 상당한데 이 경우에는 경쟁은 유일한 규정적요소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동일한 생산요소인 자본이 자기의것으로 되는 잉여가치부분을 동일한 생산요소

의 두 소유자사이에 분배하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평균리윤의 분할을 위한 일정한 합법칙적인 한계가 없다는 사정은 상품가치의 부분으로서의 평균리윤의 한계를 없애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업의 두 출자자가 여러가지 외부적사정들로 말미암아 리윤을 부동등하게 분할한다는 사정이 이 리윤의 한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품가치중 생산수단의 가치에 새로 첨가되는 로동을 나타내는 부분은 각이한 부분들로 분해되고 이 부분들이 각이한 수입의 형태로 호상 독립적인 모습들을 취한다 하더라도 결코 로임, 리윤, 지대가 구성요소로 된 그것들의 합성 또는 총계에서 상품의 규제적가격(《자연가격》, 《필요가격》) 자체가 발생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불변가치부분을 공제한후의 상품가치가 이 3부분으로 분할되는 원래의 통일체인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3부분의 각자의 가격이 독립적으로 규정되는것이고 이 세개의 독립적인 량의 합계에 의하여 비로소 상품의 가격이 형성된다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는 상품가치는 전제로 된 크기이고 로임, 리윤, 지대의 호상간의 상대적크기가 어떻든간에 이것들의 총가치의 전체이다. 상술한 그릇된 견해에서는 로임, 리윤, 지대는 세개의 독립적인 가치량이고 이것들의 총량이 상품가치량을 생산하고 제한하고 규정한다.

우선 명백한것은 만약 로임, 리윤, 지대가 상품가격을 구성한다면 이것은 상품가치의 불변부분에도,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를 나타내는 기타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될것이라는것이다. 따라서 이 불변부분은 여기에서는 전혀 무시되여도 좋다. 왜냐하면 이 불변부분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치도 역시

로임, 리윤, 지대라는 가치들의 합계로 귀착될것이기때문이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이러한 견해는 그러한 불변가치부분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것이다.

그리고 또 명백한것은 여기에서는 모든 가치개념이 사라진다는것이다. 남는것은 오직 일정한 화폐량이 로동력, 자본 및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지불된다는 의미에서의 가격이라는 관념뿐이다. 그러나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는 물건이 아니고 가치의 일정한 형태이며 따라서 또한 가치를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려는것은 일정한 량의 금 또는 은이 이러한 생산요소들에 지불된다는것 또는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머리속에서 이 금은량에 등치된다는것이다. 그런데 금은은(그리고 계몽된 경제학자는 이 인식을 자랑한다) 다른 모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상품이다. 따라서 금은의 가격도 로임, 리윤, 지대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로임, 리윤, 지대를 그것들이 일정한 량의 금은에 등치된다는것에 의하여 규정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삼자의 등가로서 이 삼자의 평가기준으로 되여야 할 금은의 가치는 바로 이 삼자에 의하여, 금은에는 관계없이, 즉 바로 이 삼자의 산물인 매개 상품의 가치에도 관계없이 먼저 규정되여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로임, 리윤, 지대의 가치는 그것들이 일정한 량의 금은과 동등한데 있다고 말하는것은 로임, 리윤, 지대는 일정한 량의 로임, 리윤, 지대와 동등하다고 말하는것을 의미할따름일것이다.

우선 로임을 들어보자. 왜냐하면 이 견해의 경우에도 로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면 로임의 규제적인 가격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즉 로임의 시장가격의 진동의 중심으로 되는 가격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우리는 로동력의 수요공급에 의하여서라고 말하고싶다. 그러나 로동력의 어떠한 수요인가? 자본에 의한 수요이다. 따라서 로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공급과 동등한것이다. 자본의 공급에 관하여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본이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은 무엇으로써 이루어지는가? 자본의 가장 간단한 현상들을 든다면 화폐와 상품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화폐는 상품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본은 상품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전제에 의하면 첫째로 상품을 생산하는 로동의 가격에 의하여 즉 로임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임은 여기에서는 상품가격의 구성요소로서 전제되며 또 그러한것으로서 취급된다. 따라서 이 가격은 공급되는 로동의 자본에 대한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본 자체의 가격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격과 동등하다. 로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는 자본의 공급과 동등하다. 그리고 자본의 공급은 주어진 가격을 가진 상품액의 공급과 동등하고 또 이 가격은 첫째로 로동의 가격에 의하여 규제되며 이 로동의 가격은 또 상품가격중 로동자에게 그의 로동과의 교환으로 인도되는 가변자본을 이루는 부분과 동등하다. 그리고 이 가변자본을 이루는 상품들의 가격 자체는 다시 첫째로 로동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임, 리윤, 지대라는 가격들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로임을 규정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자본을 전제로 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 자체의 가치는 로임의 참여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밖에 여기에 경쟁을 들고나오더라도 아무런 소용도 없다. 경쟁은 로동의 시장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그러나 로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는 로임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경쟁에 의하여서이다. 그러나 경쟁이 규정하지 않게 된다는것, 경쟁은 그것의 반대되는 두개의 힘의 균형에 의하여 그 작용을 무효로 되게 한다는것이 지금 전제로 한바이다. 우리가 지금 발견하려고 하는것은 다름아닌 로임의 자연가격 즉 경쟁에 의하여 규제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쟁을 규제하는 로동의 가격이다.

이제는 로동의 필요가격을 로동자의 필요생활수단에 의하여 규정하는것밖에 더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생활수단은 가격을 가진 상품들이다. 따라서 로동의 가격은 필요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며 생활수단의 가격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첫째로는 로동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로동의 가격은 로동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로동의 가격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우리는 로동의 가격이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인가를 모른다. 여기에서 무릇 로동이 가격을 가지는것은 그것이 상품으로서 간주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로동의 가격에 관하여 말하려면 우리는 가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가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것은 이런 방식으로써는 도저히 알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로동의 필요가격이 규정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상품가격의 제2의 요소를 형성하는 평균리윤 즉 정상적인 관계하에서의 매개 자본의 리윤은 어떠한가? 평균리윤은 평균리윤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평규리윤률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자본가들사이에서의 경쟁에 의하여서인가? 그러나 이 경쟁은 이미 리윤의 존재를 전제하고있다. 경쟁은 동일한 생산부문에서

진행되든 각이한 생산부문에서 진행되든간에 각이한 리윤률을 전제하며 따라서 각이한 리윤을 전제한다. 경쟁이 리윤률에 작용할수 있는것은 오직 그것이 상품의 가격에 작용하는 한에서이다. 경쟁이 일으킬수 있는것은 오직 동일한 생산분야내의 생산자들은 그들의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것, 또 그들은 각이한 생산분야들내에서는 그들의 상품을 그들에게 같은 리윤을 주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는것, 즉 이미 부분적으로 로임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는 상품가격에 대한 동일한 비례적인 추가분을 그들에게 주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경쟁은 오직 리윤률에 있어서의 차이들을 평균화할수 있을뿐이다. 차이가 있는 리윤률들을 평균화하기 위하여는 리윤은 상품가격의 요소로서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은 리윤을 창조하지 않는다. 경쟁은 평균화가 진행되는 때에 나타나는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만 이 수준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리윤의 필연적인 률을 론할 때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것은 바로 경쟁의 운동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그 자체가 경쟁을 규제하는 리윤률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평균리윤률은 호상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때에 나타난다. 경쟁은 이 균형을 조성할수 있으나 이 균형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리윤률을 조성할수는 없다. 그런데 이 균형이 조성되였을 때 왜 일반적 리윤률은 10% 또는 20% 또는 100%인가? 경쟁때문인가?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경쟁은 10% 또는 20% 또는 100%로부터의 배리들을 낳는 원인들을 제거하였다. 경쟁은 매개 자본이 자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동등한 리윤을 낳는 그러한 상품가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리윤 자체의 크기는 경쟁과는 관계가 없다. 경쟁은 모든 배리들을 언제나 부단히 이 크기로

귀착시킬따름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다. 그리고 경쟁은 그에게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왜 이 가격은 10 또는 20 또는 100인가?

그리하여 이제는 리윤률 따라서 리윤을 이제까지는 로임에 의하여 규정되였던 상품가격에 대한 리해할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추가분으로서 설명하는것밖에 남지 않는다. 경쟁이 우리에게 말하여주는 유일한것은 이 리윤률은 어떤 주어진 크기가 아니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리윤률이나 리윤의 《필요가격》에 관하여 말할 때부터 알고있었다.

이러한 쓸데없는 절차를 지대에 대하여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절차를 얼마간이라도 철저히 일관시킨다면 리윤과 지대는 첫째로 로임에 의하여 규정된 상품가격에 대한 리해할수 없는 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단순한 가격추가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것은 알수 있다. 요컨대 경제학자들이 경쟁을 설명하였어야 할것인데 반대로 경쟁이 경제학자들의 모든 개념상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여기에서 류통에 의하여 창조되는 즉 판매에서 발생하는 가격구성부분, 리윤과 지대라는 환상을 도외시하면—그리고 류통은 그에게 미리 주어져있지 않은것을 줄수는 없는것이다—사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것으로 귀착된다.

로임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가격을 100, 리윤률을 로임의 10%, 지대를 로임의 15%라고 하자. 그러면 로임, 리윤, 지대의 합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 상품의 가격은 125이다. 이 25라는 추가분은 상품의 판매에서 발생할수는 없다. 왜냐

하면 상품들을 호상 판매하는 사람들은 모두 100의 로임이 든것을 서로 125로 판매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모두 100으로 판매하는것과 완전히 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작은 류통과정과는 관계없이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는 125의 비용이 드는 상품 자체를 삼자가 분할한다고 하면—자본가가 우선 125로 판매하고 그다음에 로동자에게 100을, 자기 자신에게 10을 그리고 지대수득자에게 15를 지불한다고 하여도 사태는 변하지 않는다—로동자는 가치와 생산물의 $\frac{4}{5}$=100을 받는다. 자본가는 가치와 생산물의 $\frac{2}{25}$를, 지대수득자는 $\frac{3}{25}$을 받는다. 자본가는 100으로 판매하지 않고 125로 판매하더라도 로동자에게는 그의 로동을 나타내는 생산물의 $\frac{4}{5}$만을 준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로동자에게 80을 주고 20을 자기의 수중에—그중 8은 자기의 몫으로, 12는 지대수득자의 몫으로 되게—남겨두어도 사태는 전적으로 마찬가지일것이다. 그 경우에는 그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판매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가격추가는 이 전제하에서는 로임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의 가치와는 관계없는 가격인상이기때문이다. 우회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것으로 귀착될것이다. 즉 이 견해에 있어서는 로임이라는 용어 즉 100은 생산물의 가치 즉 이 일정한 로동량을 표시하는 화폐액과 동등하지만 그러나 이 가치는 다시 현실적로임과는 다르며 따라서 약간의 초과분을 남긴다는것이다.. 이 초과분이 여기에서는 명목적인 가격추가에 의하여 나올뿐이다. 따라서 로임이 100이 아니라 110이라고 한다면 리윤은 11이고 지대는 $16\frac{1}{2}$이며

따라서 상품가격은 $137\frac{1}{2}$이 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이렇게 되여도 비률은 역시 변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분할은 언제나 로임에 대한 일정한 백분비의 명목적추가에 의하여 유지되므로 가격은 로임의 증감에 따라 오르내릴것이다. 로임은 여기에서는 우선 상품의 가치와 동등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이 가치와 다르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사태는 무의미하게 우회적인 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것으로 귀착된다. 즉 상품의 가치는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나 로임의 가치는 필요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고 로임을 넘는 가치초과분은 리윤과 지대를 형성한다는것으로 귀착된다.

상품의 가치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공제한것, 그 주어진, 상품생산물에 대상화된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치량이 세 구성부분으로 분해되여 이러한 구성부분이 로임, 리윤, 지대로서 독립적이고 호상 관계없는 수입형태의 모습을 취하는것—이 분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공개된 표면에서는 따라서 이것에 사로잡힌 당사자들의 관념에서는 전도되여 나타난다.

어떤 상품의 총가치가 300이고 그중 200이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 즉 불변자본요소의 가치라고 하자. 그러면 100이 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그것에 첨가된 새로운 가치의 총액으로서 남는다. 이 100이라는 새로운 가치는 세 수입형태들로의 분할을 위하여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것의 전부이다. 로임=x, 리윤=y, 지대=z라고 한다면 x+y+z의 합계는 이 경우에는 언제나 100일것이다. 그러나 산업가나 상인이나 은행업자의 관념에서는 또 속류경제학자들의 관념에서도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품의 가

치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공제한 후에 남는것이 100이라는 주어진것이고 다음에 이 100이 x, y, z로 분할되는것이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은 단순히 로임, 리윤, 지대라는, 상품의 가치로부터도 호상간에도 독립하여 규정되는 세 가치량으로써 구성되고 그리하여 x, y, z는 각각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주어지고 규정되는것이며 이러한 량의 총액—그것은 100보다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다—으로부터 즉 이러한 상품가치형성요소의 합계로부터 비로소 상품 자체의 가치량이 결과로서 나온다. 이 혼동은 다음과 같은 리유로 말미암아 필연적이다.

첫째로는 상품가치의 각 구성부분들은 독립적인 수입들로서 서로 대립하며 이 수입들은 독립적인 수입으로서 로동, 자본, 토지라는 3개의 전혀 다른 생산요소들에 관계되여있으며 따라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것처럼 보이기때문이다. 로동력의 소유, 자본의 소유, 토지의 소유는 상품의 이 각이한 가치구성부분들을 그것들의 각이한 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키며 따라서 그 구성부분들을 그들을 위한 수입들로 전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가치는 수입으로의 전화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전화되며 수입이라는 모습을 취할수 있기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세 부분들의 상호간의 상대적크기의 규정은 서로 각이한 종류의 법칙들에 복종하며 이 법칙들과 상품가치 자체와의 관련 및 이것에 의한 그 법칙들의 제한은 결코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만큼 이 전도된 것의 외관은 더욱더 확고하게 되지 않을수 없다.

둘째로는 이미 우리가 본바와 같이① 로임의 일반적인 상

① 본권 222~226페지를 보라.—편집자

승 또는 저하는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과는 반대방향에로의 일반적리윤률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의하여 각이한 상품들의 생산가격을 변동시키며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자본의 평균구성여하에 따라 그중 어떤것은 높이고 다른것은 낮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의 생산분야들에서는 상품의 평균가격은 로임이 상승하였기때문에 오르고 로임이 저하하였기때문에 내린다는것을 경험은 보여준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주지 않는것은 이러한 변동이 로임과는 관계없이 상품가치에 의하여 슬그머니 조절된다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로임의 상승이 국부적이고 단지 특수한 생산분야들에서 특유한 사정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에 상응한 이 상품들의 명목적인 가격인상이 나타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처럼 어떤 종류의 상품들의 상대적가치가 로임이 변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상품들에 비하여 올라간다는것은 각이한 생산분야들로의 잉여가치의 균등한 분배의 국부적교란에 대한 반동에 불과하며 특수한 리윤률들의 일반적리윤률로의 평균화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 얻어지는 《경험》도 또한 가격이 로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 경험이 보여주는것은 로임이 상품가격을 규정한다는것이다. 경험이 보여주지 않는것은 이 관련의 숨은 원인이다. 그리고 또 로동의 평균가격 즉 로동력의 가치는 필요생활수단의 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후자가 오르거나 내린다면 전자도 오르거나 내린다. 여기에서 다시 경험이 보여주는것은 로임과 상품가격 사이의 관련의 존재이다. 그러나 원인이 결과로서 나타날수도 있고 결과가 원인으로서 나타날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장가격의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시장가격의 운동에 있

어서는 평균이상으로의 로임의 상승은 번영기와 결부된 생산가격이상으로의 시장가격의 상승에 상응하며 그뒤에 일어나는 평균이하로의 로임의 저하는 생산가격이하로의 시장가격의 저하에 상응한다. 시장가격의 진동적운동을 무시한다면 생산가격이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제약된다는것에는 명백히 로임이 올라가면 리윤률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라는 경험이 항상 상응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① 리윤률은 로임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불변자본의 가치의 운동에 의하여 규정될수 있으며 따라서 로임과 리윤률은 반대방향으로가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운동하며 량자가 함께 오르내릴수 있다. 만일 잉여가치률이 직접 리윤률과 함께 내린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수 없을것이다. 생활수단의 가격이 올라갔기때문에 로임이 올라가는 경우에 로동강도의 증대와 로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리윤률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지어는 상승할수도 있다. 이 모든 경험들은 가치구성부분들의 독립적인 전도된 형태로 말미암아 생기는 외관, 마치 로임만이 또는 로임과 리윤이 함께 상품가치를 규정하는듯한 외관을 확증한다. 일단 로임에 관하여 그렇게 보인다면, 따라서 로동의 가격과 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가 일치하는것처럼 보인다면 이 외관은 리윤과 지대에 있어서는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리윤과 지대의 가격 즉 화폐표현은 로동 및 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와는 관계없이 규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는 상품의 가치 또는 다만 외관상으로만 이 가치로부터 독립한 생산가격이 직접적으로 항시적인 현상면에서

---

① 본권 120~137페지를 보라.—편집자

상품의 시장가격과 일치하여 그것이 시장가격의 부단한 변동의 부단한 상쇄에 의하여 규제적인 평균가격으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재생산은 언제나 동일한 변함없는 제 관계하에서 진행되고 따라서 로동의 생산성은 자본의 모든 요소들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끝으로 상품생산물의 가치중 매개 생산분야에서 생산수단의 가치에의 새로운 로동량 따라서 새로 생산되는 가치의 추가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은 항상 변함없는 비률로 로임, 리윤, 지대로 분해되고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로임, 실제로 실현되는 리윤, 실제적지대는 로동력의 가치, 총잉여가치중 평균리윤률에 의하여 총자본의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각 부분에 귀속하는 부분 그리고 그 기초우에서 지대가 정상적으로 그속에 구속되고있는 한계에 언제나 직접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가치생산물의 분배도 생산가격의 규제도 자분주의적기초우에서 진행되지만 그러나 그 경우에 경쟁은 배제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것으로서 나타날것이며 상품생산물의 가치중 수입들로 분해되는 부분은 불변의 크기일것이며 항상 불변의 크기로서 표시될것이며 끝으로 이 주어진 불변의 가치부분은 항상 불변의 비률로써 로임, 리윤, 지대로 분해될것인데 이러한 전제하에서까지도 현실적운동은 필연적으로 전도된 모습으로 나타날것이다. 즉 미리 주어진 가치량이 서로 독립한 수입형태들을 취하는 세 부분으로 분할되는것으로서가 아니라 반대로 로임, 리윤, 지대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구성요소들의 합계에 의하여 이 가치량이 형성되는것으로서 나타날것이다. 이와 같은 외관은 필연적으로 발생할것이다.

왜냐하면 개별적자본과 그것의 상품생산물의 현실적운동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그것의 분해의 전제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분해되는 구성부분들이 상품가치의 전제로서 기능하기때문이다. 최초에 먼저 우리가 본것은 매개 자본가에게는 상품의 비용가격은 주어진 크기로서 나타나며 또 현실적생산가격에서 부단히 주어진 크기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비용가격은 불변자본 즉 선대된 생산수단의 가치 플라스 로동력의 가치와 동등한데 이 로동력의 가치는 생산당사자에게는 로동의 가격이라는 불합리한 형태로 표시되고 그리하여 로임은 동시에 로동자의 수입으로서 나타난다. 로동의 평균가격이 하나의 주어친 크기인것은 로동력의 가치가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중 로임으로 분해되는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가치부분은 그것이 로임이라는 이 형태를 취한다는것, 즉 자본가가 로동자에게 로동자 자신의 생산물중의 로동자의 몫을 로임이라는 현상형태로 선대한다는것으로부터 발생하는것이 아니다. 로동자가 자기의 로임에 상응하는 등가를 생산한다는것, 즉 로동자의 1일 또는 1년 로동의 일부분이 로동자의 로동력의 가격에 포함되여있는 가치를 생산한다는데로부터 발생하는것이다. 그러나 로임은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등가물이 생산되기전에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므로 상품과 상품가치가 생산되기전에 그 크기가 주어져있는 하나의 가격요소로서 즉 비용가격의 구성부분으로서 로임은 독립적인 형태에서 상품의 총가치로부터 분리되는 한 부분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이 총가치를 미리 규정하는 주어진 크기로서, 즉 가격 또는 가치형성자로서 나타난다. 로임이 상품의 비용

가격에서 노는것과 같은 역할을 평균리윤은 상품의 생산가격에서 논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비용가격 플라스 선대자본에 대한 평균리윤과 같기때문이다. 이 평균리윤은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가 자신의 관념과 계산에서는 하나의 규제적인 요소로서 들어간다. 즉 그것이 한 투자분야에서 다른 투자분야로의 자본의 이전을 규정하는 한에서 들어갈뿐만아니라 다소간 장기간에 걸치는 재생산과정을 포괄하는 모든 판매와 계약들에 있어서 들어간다. 그러나 평균리윤이 이와 같이 들어가는 한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전제로 된 크기이며 이 량은 사실상 매개 특수한 생산부문에서 창조되는 가치나 잉여가치와는 독립한것이며 따라서 또 이러한 부문의 매 개별적투자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나 잉여가치와는 더구나 독립한것이다. 현상은 평균리윤을 가치의 분렬의 결과로서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상품생산물의 가치와는 독립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처음부터 주어진 그리고 상품의 평균가격자체를 규정하는 크기로서 즉 가치형성자로서 나타낸다. 그런데 잉여가치는 그것의 각이한 부분들이 완전히 호상 독립한 형태들로 분해되기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형태에서 상품가치형성의 전제로서 나타난다. 평균리윤의 일부분은 리자의 형태로, 상품과 그것의 가치의 생산에 전제로 된 한 요소로서 기능자본가에게 독립적으로 대립한다. 리자의 크기는 변동한다 하더라도 리자는 매개 순간에 있어서는 그리고 매개 자본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어진 크기이며 그것이 개별적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가는것이다. 농업자본가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정해진 차지료라는 형태에서의 지대가 그러하며 또 기타의 기업가들에 있어서는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료의 형태를 취하는 지대가 그러하다.

이 부분들은 잉여가치가 분해된것인데 매 개별적자본가에 있어서는 비용가격의 제 요소로서 주어지기때문에 반대로 잉여가치의 형성자로서, 즉 로임이 상품가격중의 다른 부분을 형성하는것처럼 상품가격의 일부를 형성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상품가치의 분해의 이러한 산물들이 왜 부단히 가치형성 자체의 전제들로서 나타나는가 하는 비밀은 다만 다음과 같은데 있다.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다른 모든 생산방식들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물질적생산물을 재생산할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제 관계를, 이 생산물형성의 경제적형태규정을 재생산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산방식의 결과는 부단히 그것의 전제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것의 전제가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동일한 관계들의 이러한 부단한 재생산은 바로 개별적자본가가 자명한것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예상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 자체가 존속하는 한 새로 첨가되는 로동의 일부분은 부단히 로임으로 분해되고 다른 한 부분은 리윤(리자와 기업자리득)으로, 그리고 제3부분은 지대로 분해된다. 각이한 생산요인들의 소유자들사이에서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것이 전제로 되며 이 전제는 이러한 상대적인 량적관계가 매 개별적경우에 얼마나 변동한다 하더라도 옳은것이다. 각이한 가치부분이 각기 일정한 모습으로 대립하는것이 전제되는것은 그 모습이 부단히 재생산되기때문이며 또 그것이 부단히 재생산되는것은 그것이 부단히 전제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확실히 경험과 현상이 또 보여주는것은 시장가격—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가치규정이 다만 그 영향하에서만 나타난다—은 그것의 크기로 보면 결코 상술한 예상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아니라는것이며 또 리자와 지대가 높게

약정되는가 낮게 약정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것도 아니라는것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은 변동을 통해서만 불변한것이며 비교적 장기간에 있어서의 그것의 평균이야말로 로임, 리윤, 지대의 각자의 평균을 불변의 크기로서 따라서 시장가격을 종국적으로 지배하는 크기로서 낳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은 극히 간단하게 보인다. 즉 로임, 리윤, 지대가 가치형성인것은 그것들이 가치생산의 전제로 나타나며 그리고 개별적자본가에 있어서는 비용가격이나 생산가격에 전제되여있기때문이라면 불변자본부분도 또한 그 주어진 가치가 주어진 크기로서 매개 상품의 생산에 들어가므로 가치형성자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불변자본부분은 상품들, 따라서 상품가치들의 합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품가치는 상품가치의 형성자이고 그 원인이라고 하는것은 어리석은 동의반복으로 귀착될것이다.

그러나 자본가가 이 문제에 고려를 돌리는데 어떤 리해관계를 가진다면—그런데 자본가로서의 그의 고려는 다만 그의 리해관계와 그의 리기적인 동기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것이다—그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물은 다른 생산분야들에 불변자본부분으로서 들어가고 또 이 다른 생산분야들의 생산물들은 그의 생산물에 불변자본부분으로서 들어간다는것을 경험은 그에게 보여줄것이다. 따라서 그의 새로운 생산이 진행되는 한 그에게 있어서 가치추가분은 외관상으로는 로임, 리윤, 지대의 크기들로써 형성되므로 이러한것은 또한 다른 자본가들의 생산물로써 구성되는 불변부분에도 적용되는것이며 따라서 결국은 불변자본부분의 가격도 따라서 또 상품의 총가치도 사실 끝까지 파고들어 갈수 없는 방식으로써이지만

종국적으로는 독립적이며 각이한 법칙들에 따라 규제되고 또 각이한 원천들에서 형성되는 가치형성요소로서의 로임, 리윤, 지대의 합계로서 생기는 가치총액으로 귀착된다.

넷째로는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따라서 가치규정 자체는 개별적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전혀 아무래도 좋다. 가치규정은 이미 처음부터 자본가의 배후에서 자본가와는 독립한 제 관계들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는것이다. 왜냐하면 매개 생산부문에서 규제적인 평균가격을 형성하는것은 가치가 아니라 가치와는 다른 생산가격이기때문이다. 가치규정 자체가 매개 생산분야의 개별적자본가나 자본의 관심을 끌고 또 그것들을 규정하는것은 로동생산력의 증대 또는 감소에 따라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의 감소 또는 증대가 일방의 경우에는 기존 시장가격하에서 자본가가 특별리윤을 얻을수 있도록 하며 타방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로임이나 보다 많은 불변자본이나 따라서 또 보다 많은 리자가 부분생산물 또는 개개의 상품에 할당되므로 자본가에게 상품가격의 인상을 강제하는 한에서이다. 가치규정이 자본가의 관심을 끄는것은 그것이 자본가 자신에 있어서 상품의 생산비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한에서이며 따라서 그것이 그를 례외적인 위치에 놓는 한에서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에게 있어서 로임, 리자, 지대는 리윤중 기능자본가로서의 그에게 귀속되는 부분 즉 기업자리득을 그가 실현할수 있는 가격의 규제적한계로서 나타날뿐만 아니라 재생산이 계속될수 있기 위하여는 그가 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수 있지 않으면 안되는 가격의 규제적한계로서도 나타난다. 로임, 리윤, 지대에 의하여 그에게 있어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비용가격을 넘는 보통의 또는 보통이상의

기업자리득을 그가 가격에서 끌어내기만 한다면 그가 판매에 의하여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가치나 잉여가치를 실현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그에게는 전혀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불변자본부분을 도외시하면 로임, 리자, 지대가 그에게는 상품가격의 한계를 짓는 요소로서 따라서 상품가격의 창조적인 규정적요소로서 나타난다. 그가 례컨대 로임을 로동력의 가치이하로 즉 그것의 정상적인 높이이하로 인하하고 자본을 보다 낮은 리자률로 얻고 또 차지료를 지대의 정상적인 수준이하로 지불하는데 성공한다면 고가 생산물을 그 가치보다 저렴하게 또 지어는 일반적인 생산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따라서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로동의 일부분을 무상으로 내놓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그에게는 전혀 아무래도 좋다. 이러한것은 불변자본부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례컨대 어떤 산업가가 원료를 그 생산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다면 그것에 의하여 그는 그것을 설사 완성상품으로서 다시 생산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더라도 손실을 면한다. 상품가격중 대가를 지불하고 등가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들을 넘는 초과분이 여전히 동일하든가 또는 증가하기만 하면 그의 기업자리득은 여전히 동일할수 있고 지어는 증가할수도 있다. 그러나 주어진 크기의 가격으로서 그의 상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수단의 가치외에는 한계를 긋고 규제하는 크기의 가격으로서 이 생산에 들어가는것은 바로 로임, 리자, 지대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것이 상품가격을 규정하는 요소들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자리득은 우연적인 경쟁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가격중의 상술한 세 가격요소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재적인 상품가치를 넘는 초과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나타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자리득 자체가 시장가격에 규정적영향을 주는 한에서는 기업자리득 자체는 역시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처럼 나타난다.

개별적자본가들 호상간의 경쟁에 있어서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서나 로임, 리자, 지대의 주어진 그리고 미리 전제로 된 크기가 불변의 그리고 규제적인 크기로서 계산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불변이라는것은 그것들의 크기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매 개별적경우에 주어져있으며 부단히 변동하는 시장가격에 있어서의 불변의 한계를 이룬다는 의미에서이다. 례컨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것은 오직 주어진 로임, 리자, 지대를 지불하면서 상품을 주어진 일반적시장가격이나 또는 그것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리익을 낼수 있는가 어떤가 즉 해당한 기업자리득을 실현할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것뿐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일반적으로 발전되고있지 않기때문에 로임이나 토지가격은 낮지만 자본의 리자는 높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로임이나 토지가격은 명목적으로 높지만 자본의 리자는 낮다면 자본가는 전자의 나라에서는 보다 많은 로동과 토지를 사용하고 후자의 나라에서는 보다 많은 자본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 두 나라사이의 경쟁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 하는데 있어서는 이 요소들이 결정적요소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은 로임, 리자, 지대에 의하여 즉 로동, 자본, 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가격요소가 규제적인 가격형성자라는것을 경험은 리론적으로 보여주고 자본가의 리해계산이 실제로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서는 전제되여있는것이 아니고 상품의 시장가격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요소가 언제나 남는다. 즉 상술한 로임, 리자, 지대라는 요소의 합계로써 형성되는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이다. 이 제4요소는 매 개별적경우에는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으로서 나타나고 개별적경우들의 평균에서는 역시 동일한 경쟁에 의하여 그러나 보다 장기간의 경쟁에 의하여서만 규제되는 평균리윤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다섯째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새로 첨가되는 로동을 표시하는 가치를 로임, 리윤, 지대라는 수입형태들로 분해시키는것은 극히 자명한것으로 되므로 이 방법은 이 수입형태들의 존재조건들이 결여되여있는 곳에서도 적용된다(우리가 지대의 연구에 있어서 례로서 든 과거의 력사적시기들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더라도). 즉 모든것이 류추에 의하여 이 수입형태들로 포섭된다.

만일 한 독립적인 로동자—이것을 한 소농민이라고 해보자.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세 수입형태를 모두 적용할수 있기때문이다—가 그 자신을 위하여 로동하고 그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한다면 그는 우선 자기 자신을 로동자로서 사용하는 자기 자신의 고용주(자본가)로서 간주되고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차지농업가로서 사용하는 자기 자신의 토지소유자로서 간주된다. 그는 임금로동자로서의 자기에게는 로임을 지불하고 자본가로서의 자기를 위하여서는 리윤을 요구하며 토지소유자로서의 자기에게는 지대를 지불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이에 상응하는 제 관계를 일반적인 사회적기초로서 전제한다면 이 독립적인 로동자가 자기 자신의 잉여로동을 취득할수 있는것은 그의 로동의 덕택이 아니라 생산수

단—이미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의 형태를 취하고있다—의 소유의 덕택인 한에서 이상과 같은 포섭은 옳다. 그리고 또 그가 자기의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하고 따라서 그 가격에 의존하는 한에서는(이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가격은 예산될수 있다) 그가 가치로서 실현할수 있는 잉여로동의 량은 그 자체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일반적리윤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잉여가치의 분배몫을 넘는 초과분이 있다면 그것도 또 그가 수행한 로동의 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가 토지의 소유자라는 리유에 의해서만 그에 의하여 취득될수 있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상응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생산형태가 자본주의적수입형태들로 포섭될수 있기때문에—어느 정도까지는 부당하지 않은—자본주의적 제 관계가 모든 생산방식의 자연적 제 관계인듯한 외관은 더욱더 확고히 된다.

여하튼 로임을 그 일반적기초로 즉 로동자 자신의 로동생산물중 로동자의 개인적소비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환원시킨다고 하자. 이 몫을 자본주의적제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것을 한편으로는 사회의 현존생산력(즉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로동으로서의 그 자신의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이 허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의 충분한 발전이 요구하는 소비의 범위까지 확장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만약 잉여로동과 잉여생산물을 사회의 주어진 생산조건하에서 한편으로는 보험 및 예비기금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욕망에 의하여 규정되는 정도로의 재생산의 부단한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까지 축소시킨다고 하자. 끝으로 1) 필요로동과 2) 잉여로동중에 사회성원중 로동능력있는자가 로동

능력이 아직 없거나 또는 더는 없는자를 위하여 항상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로동량을 포함시킨다고 하자. 즉 로임 및 잉여가치, 필요로동 및 잉여로동으로부터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벗기여버린다고 하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남는 것은 이제는 이러한 형태들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생산방식에 공통한 이러한 형태들의 기초뿐이다.

그밖에 이러한 종류의 포섭은 이전의 지배적인 생산방식들 례하면 봉건적생산방식에도 고유한것이였다. 봉건적생산방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그밖에 있은 생산관계가 봉건적인 관련하에 포섭되여있었다. 례컨대 잉글랜드에서는 자유농민보유지[tenures in common so cage](이것은 기사보유지[tenures on knight's service]에 대립하는것이다)가 그러하다. 이것은 화폐납부의무만을 포함하는것으로서 명칭상으로만 봉건적이였다.[405]

제 51 장

분배관계와 생산관계

그리하여 매년 새로 첨가되는 로동에 의하여 새로 첨가되는 가치는—따라서 또 년생산물중 이 가치를 표시하며 총수익에서 끌려나올수 있고 분리될수 있는 부분도—세개의 각이한 수입형태를 취하는 세 부분으로 분할되는데 이 형태들은 이 가치의 일부분을 로동력의 소유자에게, 일부분을 자본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제3의 일부분을 토지소유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것으로서 또는 귀속하는것으로서 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것들은 분배의 제 관계 또는 제 형태이다. 왜냐하면 이 형태들은 새로 생산된 총가치가 각이한 생산요소들의 소유자들간에서 분배되는 제 관계를 표시하기때문이다.

보통의 견해에 의하면 이 분배관계는 자연적관계로서, 모든 사회적생산의 본성으로부터 생기고 인간적생산 자체의 제 법칙으로부터 생기는 관계로서 나타난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들이 다른 분배방식들을 보여준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경우에는 이 분배방식들은 이 자연적분배관계의 아직 발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가장한, 자체의 가장 순수한 표현과 최고의 모습으로 환원되지 않은, 다른 색채를 가진 방식들이라고 해석되는것이다.

이 견해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점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즉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생산(례컨대 자연발생적인 인도의 공동체[328] 또는 뻬루인의 보다 인위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을 전제하면 로동은 언제나 두 부분으로 구별되는데 그 하나는 생산자와 그 가족이 직접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생산적소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도외시하면—언제나 잉여로동이며 그 생산물은 항상 일반적인 사회적용망의 충족에 복무하는것으로서 이것은 이 잉여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되든 또 누가 이 사회적욕망의 대표자로서 기능하든 관계없는것이다. 따라서 각이한 분배방식의 동일성은 그것들의 차이와 특수한 형태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의 차이들에 대립되는 그것들의 통일만을 고집할 때에는 그것들은 동일하다는것으로 귀착된다.

보다 교양이 있고 보다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분배관계의 력사적으로 발전한 성격을 승인하기는 하나(56a) 그 대신 생산관계 자체의 변함없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따라서 모든 력사적발전과는 독립한 성격을 더 집요하게 고집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과학적분석은 다음과 같은것을 증명하고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특수한 종류의, 특수한 력사적규정성을 가진 생산방식이라는것. 그것은 기타의 모든 특정적인 생산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생산력과 그 발전형태의 일정한 단계를 자기의 력사적조건으로서 전제로 하며 그 조건 자체는 선행과정의 력사적결과이고 산물이지만 새로운 생산방식이 자기의 주어진 기초로서의 그 조건으로부터 출발한다는것. 이 특수한, 력사적으로 규정된

(56a) J.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의 약간의 미해결문제에 관한 론술》, 런던, 1844년.

생산방식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인간이 자기의 사회적생활과정에서, 자기의 사회적생활의 생산에서 맺는 관계—는 특수한, 력사적인,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것. 끝으로 분배관계는 본질적으로 이 생산관계와 동일하며 생산관계의 반면이며 따라서 량자는 동일한 력사적인, 일시적인 성격을 공통으로 가지고있다는것.

분배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선 년생산물이 로임, 리윤 및 지대로 분해된다는 소위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이 사실은 그릇된것이다. 생산물은 두가지로 갈라져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으로 된다. 이 수입들중의 하나인 로임은 언제나 **자본의 형태**로 미리 동일한 로동자와 대립한후에야 비로소 그 자체가 하나의 수입의 형태, 즉 이 로동자의 수입의 형태를 취한다. 생산된 로동조건과 로동생산물일반이 자본으로서 직접적생산자와 대립한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로동자들에 대한 물적로동조건의 일정한 사회적성격을 포함하며 따라서 로동자들이 생산 자체에 있어서 로동조건의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도, 그들 호상간에서도 맺는 일정한 관계를 포함한다. 이 로동조건의 자본으로의 전화는 그 자체가 또한 직접적생산자들로부터의 토지의 수탈을 포함하며 따라서 토지소유의 일정한 형태를 포함한다.

만약 생산물의 한 부분이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도 로임, 리윤 및 지대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것이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생산조건의 이 특정적인 사회적모습을 전제로 한다면 이 생산방식은 또 이같은 모습을 부단히 재생산한다. 이 생산방식은 비단 물질적생산물을 생산할뿐만아니라 물질적생산물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

산관계를 부단히 재생산하며 따라서 또 이에 상응하는 분배관계도 부단히 재생산한다.

물론 자본(자본의 대립물로서의 토지소유도 포함하여) 자체는 이미 어떤 분배를 전제로 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즉 로동자들로부터의 로동조건의 수탈, 소수의 개인들의 수중에의 이 조건들의 집적, 다른 개인들에 있어서의 토지의 배타적소유 요컨대 시초축적에 관한 장(제1부 제24장)에서 전개된 제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는 사람들이 생산관계에 대립시켜서 분배관계에 하나의 력사적성격을 부여하려고 할 때 리해하는 분배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이 후자의 분배관계는 생산물중 개인적소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전자의 분배관계는 생산관계 자체의 내부에서 직접적생산자들에 대립하여 생산관계의 일정한 당사자들에게 할당되는 특수한 사회적기능의 기초이다. 이 분배관계는 생산조건 자체와 그 대표자들에게 특수한 사회적자격을 부여한다. 그것은 생산의 전체 성격과 전체 운동을 규정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처음부터 구별되게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두개의 특징이다.

첫째로, 이 생산방식은 그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한다. 상품을 생산한다는것은 이 생산방식을 다른 생산방식들로부터 구별되게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품이라는것이 그의 생산물의 지배적이며 규정적인 성격이라는것은 확실히 이 생산방식을 다른 생산방식으로부터 구별한다. 이러한것은 우선 로동자 자신이 오직 상품판매자로서, 따라서 자유로운 임금로동자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로동이 일반적으로 임금로동으로서 나타난다는것을 포함하고있다. 이제까지 전개해온

만큼 자본과 임금로동과의 관계가 이 생산방식의 전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을 새로 론증하는것은 이제는 불필요한 일이다. 이 생산방식 자체의 주요당사자들인 자본가와 임금로동자는 그 자체로서는 자본과 임금로동의 육체화, 인격화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회적생산과정이 개인들에게 락인을 찍는 일정한 사회적성격이며 이 일정한 사회적생산관계의 산물이다.

1.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성격과 2. 자본의 생산물로서의 상품의 성격은 이미 모든 류통관계를 포함하고있다. 즉 생산물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리고 생산물이 거기에서 일정한 사회적성격을 얻는 일정한 사회적과정을 포함하고있다. 동시에 이 두개의 성격은 또 생산당사자들의 일정한 관계를 포함하고있으며 이 관계에 의하여 그들의 생산물의 가치실현과 생활수단으로나 생산수단으로의 그 생산물의 재전화가 규정된다. 그러나 이 점은 도외시하더라도 상술한 두개의 성격 즉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성격 또는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서의 상품의 성격으로부터 가치규정 전체가 또 가치에 의한 총생산의 규제가 나온다. 가치의 이 완전히 특수한 형태에서 한편으로는 로동은 사회적로동으로서만 인정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로동의 분배와 그 생산물의 호상보충 즉 그 생산물의 물질변환, 사회적련동장치에의 그 종속과 편입, 이 모든것은 개개의 자본주의적생산자들의 우연적이며 상쇄적인 활동에 맡겨진다. 자본주의적생산자들은 상품소유자들로서만 서로 대립하며 또 각자가 자기의 상품을 될수 있는대로 비싸게 팔려고(외관상으로는 생산 자체의 규제에 있어서도 다만 자기의 자의에 의하여서만 지도되는듯이 보인다) 하므로 내적법칙은 오직 그들의 경쟁, 그들이 서로 가

하는 압력을 매개로 하여서만 관철되는데 이 경쟁이나 압력에 의하여 여러가지 배리들이 상쇄된다. 가치법칙은 여기에서는 내적법칙으로서 개개의 당사자들에 대하여서는 맹목적인 자연법칙으로서 작용할뿐이며 생산의 사회적균형을 생산의 우연적인 파동의 한가운데를 통하여 유지된다.

그리고 또 이미 상품에는 특히 자본의 생산물로서의 상품에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 전체를 특징짓는 사회적인 생산규정들의 물화와 생산의 물질적기초의 주체화가 포함되여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특히 구별되게 하는 **둘째** 특징은 생산의 직접적목적 및 규정적동기로서의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자본을 생산하는데 자본이 그렇게 하는것은 오직 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한에서이다. 이미 상대적잉여가치를 고찰할 때에도, 또 나아가서는 잉여가치의 리윤으로의 전화를 고찰할 때에도 본바와 같이 바로 이 점에 자본주의적시대에 특유한 생산방식이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이 생산방식은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그러나 로동자에 대립하여 독립한 자본의 힘으로 되였고 따라서 로동자 자신의 발전과 직접 대립하는 생산력의 발전의 한 특수한 형태인것이다. 가치와 잉여가치를 위한 생산은 더 상세한 설명이 보여준바와 같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 즉 그 상품의 가치를 그때에 존재하는 사회적평균보다 낮추려는 부단히 작용하는 경향을 포함한다. 비용가격을 그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려는 충동은 사회적로동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가장 강력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 제고는 여기에서는 자본의 생산력의 부단한 제고로서만 나타난다.

자본가가 자본의 인격화로서 직접적생산과정에서 얻는 권위, 그가 생산의 지휘자 및 지배자로서 수행하는 사회적기

능은 노예나 농노 등등에 의한 생산에 기초한 권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직접적생산자대중에 대하여 그들의 생산의 사회적성격이 엄격히 규제적인 권위의 형태로 그리고 로동과정의 완전한 위계제도로서 형성된 사회적기구의 형태로 대립하는데—그러나 이 권위의 담당자는 다만 로동에 대립하는 로동조건의 인격화로서만 이 권위를 얻으며 이전의 생산형태들에서와 같이 정치적 또는 신정적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얻는것이 아니다—이 권위의 담당자들, 서로 상품소유자로서 대립할따름인 자본가 자신들사에서는 가장 완전한 무정부상태가 지배하며 이 상태에서는 생산의 사회적련관은 다만 개인적자의에 대한 압도적인 자연법칙으로서 나타날뿐이다.

임금로동의 형태로 있는, 로동과 자본의 형태로 있는 생산수단이 전제되여있기때문에만—따라서 이 본질적인 두 생산요인들이 이 특수한 사회적모습을 취하고있는 결과로서만—가치(생산물)의 일부분은 잉여가치로서 나타나며 이 잉여가치는 리윤(지대)으로서, 자본가의 리득으로서, 자본가에게 속하는 추가적이며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부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또 그 가치부분이 그와 같이 **그의 리윤**으로서 나타나기때문에만, 재생산의 확대에 돌려지고 리윤의 일부분을 이루는 추가적인 생산수단은 새로운 추가자본으로서 나타나는것이며 재생산과정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축적과정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임금로동으로서의 로동의 형태는 전체 과정의 모습에 대하여서나 생산 자체의 특수한 방식에 대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이지만 임금로동이 가치를 규정하는것은 아니다. 가

치규정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사회적로동시간일반이고 그 사회일반이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로동량이며 각이한 생산물들에 의한 이 로동량의 상대적흡수는 말하자면 이 생산물들 각자의 사회적비중을 규정한다. 사회적로동시간이 상품의 가치에 있어서 규정적요인으로서 관철되는 일정한 형태는 물론 임금로동으로서의 로동의 형태와 관련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자본으로서의 생산수단의 형태와 관련된다. 이러한 관련이 있는것은 오직 이 기초우에서만 상품생산이 생산의 일반적형태로 될수 있는 한에서이다.

그리고 소위 분배관계 자체를 보기로 하자. 로임은 임금로동을 전제로 하고 리윤은 자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정한 분배형태는 생산조건의 일정한 사회적성격과 생산당사자들의 일정한 사회적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분배관계는 다만 력사적으로 규정된 생산관계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제는 리윤을 보기로 하자. 잉여가치의 이 일정한 형태는 생산수단의 새로운 형성이 자본주의적생산의 형태로 진행되기 위한 전제이며 따라서 재생산을 지배하는 관계이다.—비록 개개의 자본가에게는 본래 전체 리윤을 수입으로서 먹을수 있는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이 경우에 여러가지 제한에 봉착하는데 이러한 제한은 이미 보험금 및 준비금, 경쟁의 법칙 등등의 형태로 그의 앞에 나타나며 또 리윤은 결코 개인적으로 소비될수 있는 생산물의 단순한 분배범주가 아니라는것을 실제로 그에게 증명한다. 그리고 또 전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러나 규제적인 생산가격은 그 자체가 또 리윤률의 평균화와 그에 상응하는 각이한 사회적생산분야에로의 자본의

분배에 의하여 규제된다. 따라서 리윤은 이 경우에는 생산물의 분배의 주요요소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생산자체의 주요요소로서, 자본과 로동자체의 각이한 생산분야들로의 분배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난다. 리윤의 기업자리득 및 리자로의 분렬은 동일한 수입의 분배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분렬은 우선 자기 자신을 증식하고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로서의 자본의 발전에서, 지배적생산과정의 이 일정한 사회적모습의 발전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그 자신으로부터 신용과 신용시설을 발전시키며 따라서 생산의 모습을 발전시킨다. 리자 등등의 소위 분배형태들은 규정적인 생산계기로서 가격에 들어간다.

지대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분배형태인것처럼 보일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 자체는 생산과정 자체에서 아무런 기능도, 적어도 아무런 정상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1) 지대가 평균리윤을 넘는 초과분으로 제한된다는 사정, 2) 토지소유자가 생산과정 및 사회적생활과정 전체의 지휘자 및 지배자로부터 단순한 토지임대자, 토지고리대금업자 및 단순한 지대수득자로 떨어진다는 사정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특수한 력사적결과이다. 토지가 토지소유의 형태를 얻었다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력사적 전제이다. 토지소유가 농업의 자본주의적경영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들을 얻는다는것은 이 생산방식의 특수한 성격의 산물이다. 토지소유자의 수입은 다른 사회형태에서도 지대라고 불리울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생산방식에서 나타나는 지대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소위 분배관계는 생산과정의 력사적으로 규정된 특수한 사회적형태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생활의 재

생산과정에서 서로 맺는 제 관계에 상응하는것이며 또 이 형태들과 제 관계에서 발생하는것이다. 이 분배관계의 력사적 성격은 생산관계의 력사적성격이며 분배관계는 다만 생산관계의 한 측면만을 표시할뿐이다. 자본주의적분배는 다른 생산방식에서 발생하는 분배형태들과는 다르며 매개 분배형태는 자기가 거기에서 나왔고 자기가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한 생산형태와 함께 소멸하는것이다.

단지 분배관계만을 력사적인것으로 보고 생산관계는 그렇지 않은것으로 보는 견해는 한편으로는 자산계급적경제학에 대한, 이미 시작은 하였으나 아직 편견에 사로잡힌 비판의 견해에 불과하다.[40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견해는 사회적생산과정을 변측적이고 고립된 인간이 아무런 사회적원조도 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순한 로동과정과 혼동하고 동일시하는데 기초하고있다. 로동과정이 다만 인간과 자연간의 단순한 과정에 불과한 한에서는 로동과정의 단순한 요소들은 로동과정의 모든 사회적발전형태에 언제나 공통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매개 일정한 력사적형태는 이 과정의 물질적기초와 사회적형태를 더욱 발전시킨다. 일정한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일정한 력사적형태는 포기되고 보다 높은 형태에 자리를 내준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였다는것은 한편으로는 분배관계 따라서 또 이 분배관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의 일정한 력사적모습과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력, 생산능력 및 그 요소들의 발전과의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확대되고 심화될 때에 보게 된다. 그때에는 생산의 물질적발전과 생산의 사회적형태사이에 충돌이 생긴다.(57)

---

(57) 경쟁과 협동에 관한 저술(1832년?)[407]을 참조하라.)

제 52 장

계 급

로임, 리윤, 지대를 각기 수입원천으로 하는 단순한 로동력의 소유자, 자본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 즉 임금로동자, 자본가, 토지소유자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기초로 하는 현대사회의 3대 계급을 이루고있다.

영국에서는 현대사회가 그 경제적구성에 있어서 론쟁할 여지 없이 가장 현저하게, 가장 전형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도 이 계급구성은 아직 순수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나라에서도(농촌에서는 도시에서보다 비할수 없을만큼 적지만) 중간계층과 과도적계층이 도처에서 한계규정을 애매하게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것은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다. 이미 본바와 같이 생산수단을 점점 더 로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분산된 생산수단을 점점 더 큰 집단으로 집적시키고 따라서 로동을 임금로동으로 전화시키고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전화시킨다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부단한 경향이며 발전법칙이다. 그리고 이 경향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및 로동으로부터의 토지소유의 독립적분리가 상응한다.(58) 바꾸어말하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상응

---

(58) F. 리스트는 정당하게 지적한다— 《대령지에서의 지배적인 자체경영은 문명,

하는 토지소유형태에로의 모든 토지소유의 전화가 상응한다.

우선 해답하여야 할것은 무엇이 계급을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임금로동자, 자본가, 토지소유자를 3대 사회적계급으로 만드는가 하는 다른 문제에 해답을 주는데 의하여 스스로 분명해진다.

첫눈에 들어오는것은 수입 및 수입원천들의 동일성이다. 3대 사회적집단이 있는데 그 구성분자, 그것들을 형성하는 개인들은 각각 로임, 리윤, 지대에 의하여, 즉 그들의 로동력, 그들의 자본, 그들의 토지소유의 리용에 의하여 생활한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면 레컨대 의사와 관리도 두 계급을 형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개의 각이한 사회적집단에 속하며 이 두 집단의 매개 성원들의 수입은 동일한 원천에서 나오기때문이다. 사회적분업에 의하여 로동자도 자본가도 토지소유자도 각기 여러가지 리해관계와 지위가 무한히 세분된다는것—토지소유자들은 레컨대 포도재배지소유자, 경작지소유자, 삼림소유자, 광산소유자, 어장소유자로 세분된다는것—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원고는 여기에서 단절되고있다.}

교통수단, 국내산업 및 부유한 도시의 결여를 증명할따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로씨야, 뽈스까, 웽그리아, 메클렌부르그에서 도처에 발견된다. 이전에는 그것은 영국에서도 지배적이였다. 그러나 상업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대신에 중간적크기의 경리들로의 분할과 임대가 들어섰다》(《농지제도, 령세경영 및 이주》, 1842년, 10페지).

에프. 엥겔스

《자본론》 제3부에 대한 보유[408]

《자본론》 제3부는 공중의 비판에 붙여진 이래로 이미 많은 각이한 해석을 받아왔다. 그것은 물론 예기한것이였다. 그것을 간행함에 있어서 내가 특히 주의를 돌린것은 될수 있는대로 진정한 원문을 재현하는것, 맑스가 연구한 새로운 성과들을 될수 있는대로 맑스 자신의 말로써 나타내는것, 나 자신의 말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어넣되 그 경우에도 누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있는가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게 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것을 비난하였다.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나는 내앞에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으로 만들어야—프랑스사람들이 말하듯이 en faire un livre—할것, 바꾸어말하면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문의 진실성을 희생시켜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임무를 그런것으로는 리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개작할 권한은 나에게는 전혀 없었다. 맑스와 같은 인물에게는 자기의 말을 들려줄 권리가 있으며 자기의 과학적발견들을 완전히 진정한 자기 자신의 서술로 후세에 전할 권리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또 그처럼 탁월한 인물의 유고를 그런 방법으로 모독하는것은—나에게는 이렇게밖에 리해되지 않는다—나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렇게 하는것은 배신이라고 나에게는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렇게 하는것은 전혀 무익하였을것이다. 읽을수 없거나 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제1부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리해하기에 필요한것보다도 더 큰 노력을,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기 위하여 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들인다는것은 대체로 쓸데없는 일

이다. 그러나 진정한 리해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원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개작은 기껏해서 주해의 가치밖에 없었을것이다. 그것도 그 주석은 출판도 되지 않고 입수할수도 없는것에 대한 주해인것이다. 최초의 론쟁에서 벌써 원문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되였고 두번째 세번째 론쟁에서는 원문 전체의 간행이 불가피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새로운것을, 그것도 다만 총망히 써놓았고 군데군데 탈락이 있는 최초의 초고의 형태로 제출하고 있을뿐인 저작의 경우에는 이러한 론쟁이 일어나는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리해의 곤난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도, 원문에서는 그것들의 의의가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관점들을 보다 더 눈에 띄우게 하기 위해서도, 또 1865년에 씌여진 원문에 대한 일부 중요한 보충들을 1895년의 사태에 근거하여 추가하기 위하여서도 내가 좀 손을 대는것은 확실히 유용할수 있다. 사실상 이미 현재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생각되는 점이 두개 있다.

Ⅰ. 가치법칙과 리윤률

이 두 요소간의 외관상의 모순의 해결은 맑스의 원문이 발표된 다음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론의를 일으키리라는것은 예상되는 일이였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기적을 기대하고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실망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예기한 요술 대신에 간단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무미건조한, 대립의 해결을 눈앞에 보았기때문이다.

가장 기뻐하면서 실망하고있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이 저명한 로리아이다. 그는 드디여 아르키메데스의 지레대의 지점을 발견하였다.[409] 이 지점으로부터 자기와 같은 난쟁이라도 맑스에 의하여 견고하게 거대된 건축물을 공중에 추켜올려 분쇄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는 격분하여 부르짖는다. 이러한 것이 해결이란 말인가? 그것은 순전한 기만이다! 경제학자들이 가치에 대하여 운운할 때에는 그들은 실제로 교환에서 결정되는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상품이 그것대로 판매되지 않으며 **또 결코 판매될수도 없는**(nè possono vendersi mai) 가치를 연구하는 일은 적어도 분별있는 경제학자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것이며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것이다…맑스는, 상품이 결코 그것대로는 판매되지 **않는** 가치가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에 비례하여 규정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그 경우에 그가 말하는것은 상품이 그것대로 판매되는 가치는 그 상품에 소비된 로동에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정통파경제학자들의 명제를 다만 전도된 형태로 반복하고있을따름이 아닌가?…또 맑스는 개별적가격은 개별가치로부터 배리함에도 불구하고 전 상품의 총가격은 전 상품의 총가치, 즉 상품총량에 포함되여있는 로동량과 항상 일치한다고 말하는데 이런것을 말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가치란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률에 불과하므로 총가치라는 관념 자체가 이미 하나의 배리이며 하나의 무의미이며…하나의 형용상의 모순이기때문이다.》

맑스는 자기의 저작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교환이 두 상품을 등치시킬수 있는것은 오직 그것들에 포함되여있는 같은 종류의 그리고 같은 크기의 요소, 즉 그것들에 포함되여있는 같은 크기의 로동량에 의해서만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는 제 상품들은 그것들에 포함되고있는 로동량의 비률과는 전혀 다른 비률로 교환된다고 단언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설을 장엄하게 부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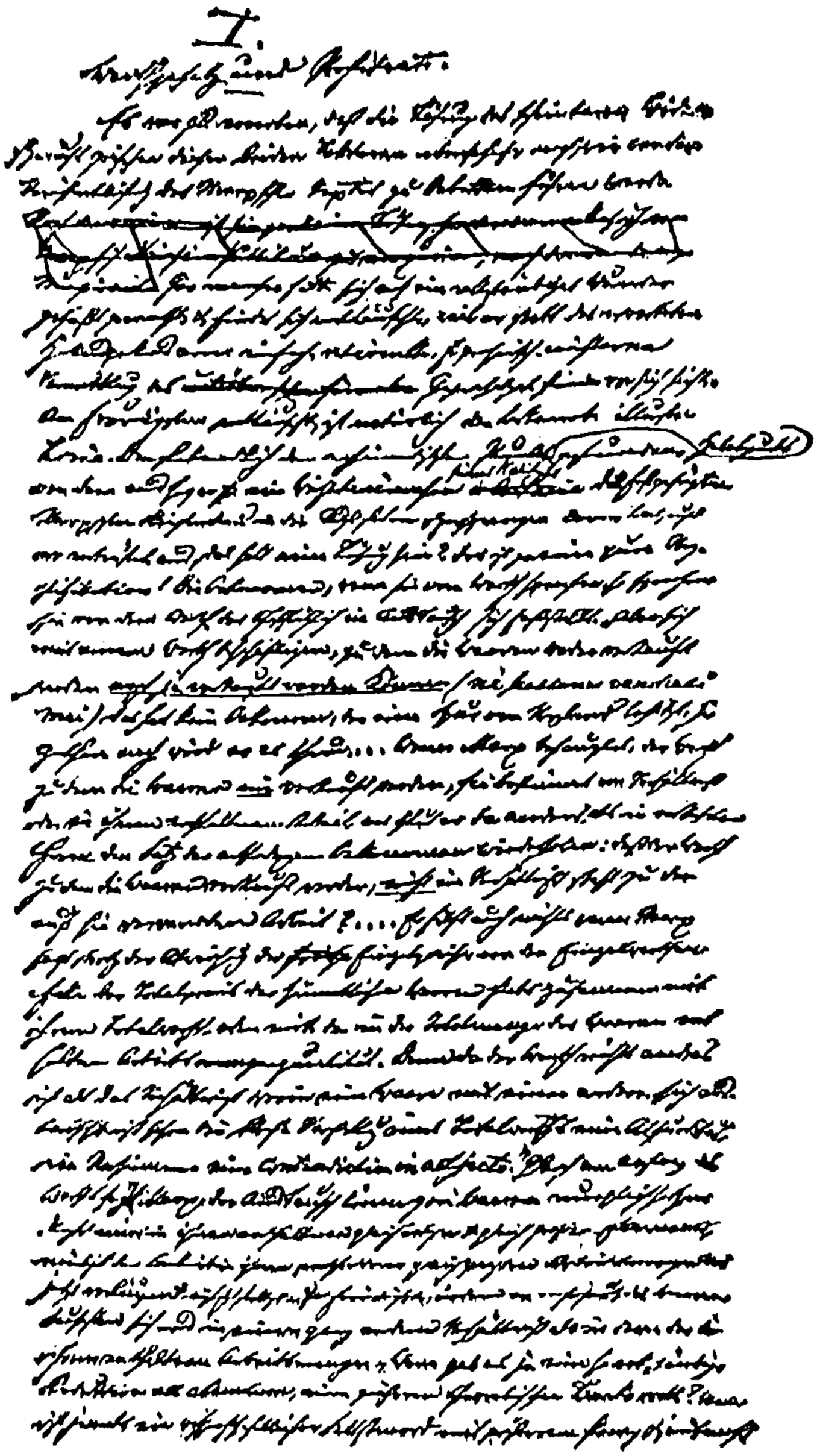
《이보다 더 완전한 배리에로의 귀착, 이보다 더 큰 리론적파산을 본적이 있는가? 하나의 학문적자살이 이보다 더 위풍있고 장엄하게 진행된적이 있는가?》(《누오바 안톨로기아》, 1895년 2월 1일, 477~479페지)

우리의 로리아는 기뻐서 어쩔줄을 모른다. 그가 맑스를 자기 따위의 흔히 볼수 있는 사기군으로 취급하는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보다싶이 맑스는 로리아와 전혀 마찬가지로 자기의 독자를 우롱하며 이 아주 뵤잘것 없는 이딸리아의 경제학교수와 전혀 마찬가지로 기만을 일삼고있다. 그러나 이 둘까마라는 자기의 직업에 능란하므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서투른 북국인. 맑스는 완전히 난처한 처지에 빠지고 무의미하고 미련한 짓을 하며 그리하여 결국에는 장엄하게 자살하는 수밖에는 없는것이다.

상품은 로동에 의하여 규정된 가치대로 판매된 일도 없고 또 판매될수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후에 서술하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다만 로리아씨의 다음과 같은 단언에 대해서만 언급하자.

《가치란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률에 불과하며 따라서 상품들의 총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하나의 배리이며 무의미이다. 운운.》

두 상품이 교환되는 비률 즉 그 상품의 가치는 순전히 우연적인것이며 외부로부터 날아와 상품들에 부착한것이며 오늘은 이만할수 있고 래일은 저만할수 있는것이라는것이다. 1쩬트네르의 밀이 1그람의 금과 교환되는가 또는 1킬로그람의 금과 교환되는가 하는것은 이 밀 또는 이 금에 내재하고



엥겔스의 《가치법칙과 리윤률》 원고의 첫페지

있는 조건들에는 조금도 관계되지 않고 이 량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정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조건들은 교환에서도 그 힘을 나타내고 교환을 대체로 지배하며 그리고 교환을 떠나서라도 독립적인 존재를 가져야 할것이며 그리하여 상품들의 총가치에 관하여도 운운할 수 있을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 무의미한것이라고 저명한 로리아는 말한다. 두 상품이 어떠한 비률로 교환되더라도 그것이 그것들의 가치인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가치는 가격과 동일하며 또 매개 상품은 그것이 가질수 있는 가격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 그 이상의것을 질문하는자는 해답을 기대한다면 어리석은자이다.

그러나 사태에는 좀 시끄러운 점이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수요와 공급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세계에 현존하는 상품 전체를 절반절반으로, 수요의 군과 같은 크기의 공급의 군으로 나누어보자. 그리고 또 각 군이 1조마르크(프랑, 파운드 또는 다른 어떤것이라도 좋다)라는 가격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아담 리제에 따르면 이것은 도합 2조의 가격 또는 가치로 된다. 무의미하다, 배리이다 라고 로리아씨는 말한다. 두 군을 합계하면 2조의 가격을 표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치에 있어서는 사태는 다르다. 우리가 가격을 말한다면 10,000+ 10,000=20,000이다. 그러나 가치를 말한다면 10,000+10,000=0이다. 적어도 모든 상품들의 전체가 문제로 되는 이 경우에는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두 군중의 일방이 각각 타방의 상품에 대하여 1조를 주려고 하며 또 줄수 있으므로 두 군중의 매개 군의 상품은 1조의 가치를 가질뿐이기때문이다. 그런데 두 군의 상품 전체를 제삼자의

수중에 집중한다면 일방은 이제는 그 수중에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으며 타방도 그렇고 또 제삼자도 물론 그러하며 결국 누구나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남국인 깔료쓰뜨로가 가치개념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만큼 때려부신 그의 수완에 다시한번 경탄한다.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속류경제학의 완성이다!(1)

---

(1) 《그 명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하이네의 말로 하면) 이 신사는 좀 나중에 제3권에 대한 나의 서문에 대답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하였다—즉 그것은 이 서문이 1895년의 《평론》 제1호에 이딸리아어로 발표된후의 일이다. 대답은 1895년 2월 25일의 《사회개혁》에 게재되고있다. 그는 우선 그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바로 그때문에 이중으로 불쾌한 찬사를 나에게 퍼부은 다음에 자기는 유물사관에 관한 맑스의 공적을 자기의것으로 하려고 생각한 일은 없다고 언명한다. 그는 이미 1885년에 즉 어떤 잡지론설에서 지나가는김에 맑스의 공적을 인정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이것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즉 이것과 관계되는 그의 저서에서는 입을 꽉 다물고있는데 거기에서는 129페지에서 겨우 맑스의 이름을 그것도 프랑스에서의 소토지소유의 문제에 관하여 론하는 기회에만 들고있을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대담하게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맑스는 결코 이 리론의 창시자가 아니다. 벌써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대체로 암시하였다는것은 그만두고라도 의심할바없이 해링턴이 이미 1656년에 이것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맑스보다 훨씬 이전에 일련의 력사가, 정치학자, 법학자 및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전개되였다고. 로리아의 저서의 프랑스어판에 씌여있는것이란 대체로 이러한것이다. 요컨대 완전한 표절자이다. 내가 그에게 그이상 더 맑스로부터 표절하여 나발을 불지 못하게 하자 그는 뻔뻔스럽게도 그 자신과 전혀 마찬가지로 맑스도 남의 털로써 자신을 장식하고있다고 주장한다.—그밖에 내가 가한 공격으로부터 그가 들고나오는것은 로리아에 의하면 맑스는 《자본론》 제2권, 더구나 제3권은 결코 쓸 생각이 없었다고 내가 말했다는것이다. 《이제 엥겔스는 제2권과 제3권을 나에게 내던짐으로써 의기양양하게 대답한다…훌륭하다! 이 두권의 책이 이처럼 많은 지적향락을 주는것은 나의 대단한 기쁨이고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승리도 오늘의 이 패배만큼 즐거운것은 없었다.—만일 이것이 정말 패배이라면.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패배인가? 엥겔스가 경건한 우정을 가지고 수집한, 이 관련없는 노트들을 맑스가 발표할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것은 참으로 진실인가? 맑스가…이렇게 쓴것들로써 자기의 저작과 자기의 체계를 완성하려 하였다고 참으로 추정할수 있겠는가? 맑스가 몇해전부터 약속하여온 해결이 아주 절망적인 기만과 극히 비속한 문구의 유희로 귀착되고있는 그 평균리윤률에 관한 장을 그가 발표하였을것이라는것은 사실 확실한가? 적어도 그것에 대하여 의문부를 부칠수 있다…이것은 맑스가 자기의 훌륭한(splendido) 책을 출판한후에 그 속권을 낼 생각이 없었던가 또는 자기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의 후계자에게 이 대작의 완성을 맡기려고 하였다는것을 증명한다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이것은 267페지에 씌여있다. 하이네는 자기의 독일인 속물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장 경멸적인 말을 할수 있었다. 《저자는 드디여 자기의 독자에게 친숙하여져서

브라운의 《사회립법문고》(제7권 제4호)에서 웨르네르 좀바르트는 맑스체계의 륜곽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훌륭한 서술을 주고있다. 독일의 대학교수로서 맑스의 저술들에서 맑스가 실제적으로 말한것이 무엇인가를 대체로 보아냈고 맑스의 체계의 비판은 그것을 반박—《그런 일은 정치적야심가에게 맡기면 된다》—하는것으로 될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언명한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물론 좀바르트도 우리의 론제를 취급하고있다. 그는 가치가 맑스의 체계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있다. 가치는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의 교환관계에서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치는 자본주의적생산당사자들의 의식속에 살아있지는 않다. 그것은 경험적인 사실은 아니며 사상적사실, 리론적사실이다. 맑스에 있어서 물질적규정성에 있어서의 가치개념은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이 경제적정재의 기초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경제학적표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경제제도하에서는 종국적으로는 경제현상들을 지배하며 이 경제제도에 있어서는 극히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있다. 즉 상품의 가치는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적현상들을 지배하는 로동생산력의 규정적작용이 실현되는 특수하며 력사적인 형태이라는것이다.—

그들이 마치도 리성적인 생물인것처럼 생각한다》[410] 고. 저명한 로리아는 자기의 독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여야 할것인가?

마지막에서 나라는 불행한자에게 새로운 찬사를 베풀어주시고있다. 이 경우에 우리의 스가나렐은 저주하기 위하여 왔으나 그의 입술은 의지와는 반대로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는 발람과 흡사하다. 사람좋은 발람은 그가 타고다니는 당나귀가 그 주인보다도 총명하다는것으로써 특징적이였다. 이번에는 발람은 명백히 자기의 당나귀를 집에 두고온것이다.[411]

이상이 좀바르트의 설이다. 자본주의적생산형태에 있어서의 가치법칙의 의의를 그렇게 파악하는것이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파악은 너무나 넓으며 보다 좁은, 보다 정확한 파악을 요구한다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 파악은 결코 가치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의 경제적발전단계들에 있어서의 가치법칙의 전체 의의를 남김없이 포섭하는것은 아니다.

1895년 2월 25일부 브라운의 《사회정치중앙신문》 제22호에는 《자본론》 제3권에 관한 콘라드 슈미트의 역시 훌륭한 론문이 실려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것은 맑스에 의한 잉여가치로부터의 평균리윤률의 도출은 종래의 경제학이 한번도 제기한 일이 없는 문제에 처음으로 해답을 주었다는 론증이다. 즉 이 평균리윤률의 높이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또 그것이 례컨대 10% 또는 15%이고 50% 또는 100%가 아닌것은 어떻게 돼서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산업자본가가 첫번째로 취득하는 잉여가치는 리윤이나 지대가 나오는 유일한 원천이라는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래로는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는것이다. 슈미트의 론문의 이 부분은 직접 로리아따위의 경제학자들을 위하여 씌여진것이라고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보기를 원하지 않는자들을 위해서도 눈을 뜨게 해주는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기만 하다면.

슈미트도 가치법칙에 관하여 그 자신의 형식적인 의문을 품고있다. 그는 가치법칙을 사실적교환과정의 설명을 위하여 세워진 과학적인 **가설**이라고 부르며 이 가설은 외관상으로는 이것과는 전혀 모순되는듯한 경쟁가격의 현상들에 대하여서도 필연적인 리론적출발점으로서 광명을 던져주는 불가결한 것으로서 실증되는것이라 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가치법

칙이 없이는 자본주의적현실의 경제적기구의 어떠한 리론적 인식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슈미트는 나에게 인용할것을 허락한 어떤 개인적서신에서 자본주의적생산형태내부에서의 가치법칙은 설사 리론적으로 필요한것일지는 모르나 하나의 허구라고 솔직히 언명하고있다.[412] 그러나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리해는 전혀 부당하다.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단순한 가설이 가지는 의의보다도—하물며 필요할지도 모르는 허구가 가지는 의의보다도—훨씬 더 큰 그리고 훨씬 더 명확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좀바르트도 슈미트도—저명한 로리아를 나는 여기에서는 유쾌한 속류경제학적견본으로서 말하는김에 상기시킬따름이다—여기에서 문제인것은 순전히 론리적인 과정일뿐만아니라 력사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을 설명하는 사고의 반영이고 이 과정의 내적련관들의 론리적연구이라는데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돌리고있지 않다.

결정적인 개소는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1분책, 154페지①에 있다. 《모든 곤난은 상품들이 단순히 **상품들**로서 교환되는것이 아니라 **자본의 생산물들**로서 교환되고 자본은 잉여가치총량으로부터 그 크기에 비례하여 자기의 몫을 또는 그 크기가 동등한 경우에는 동등한 몫을 요구하는데 의하여 생기는것이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로동자들이 자기의 생산수단들을 소유하고 평균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로동하며 자기들의 상품을 직접 서로 교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두 로동자는 하루에 그들의 로동에 의하여 그들의 생산물에 동등한 량의 새로운 가치를 첨가할것이지만

① 본권 196페지를 보라.—편집자

각자의 생산물은 생산수단들에 이전부터 이미 체화되여있는 로동에 따라 각이한 가치를 가질것이다. 이 후자의 가치부분은 자본주의적경제의 불변자본을 대표하고 새로 첨가된 가치중 로동자의 생활수단으로 돌려지는 부분은 가변자본을 대표하고 새로운 가치중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잉여가치를 대표할것인데 이 잉여가치는 이 경우에는 로동자에게 속할것이다. 따라서 두 로동자는 그들이 선대하였을따름인 《불변》 가치부분에 대한 보상분을 공제한후에는 동등한 량의 가치를 얻을것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가치에 대한 잉여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의 비률—이것은 자본주의적리윤률에 해당할것이다—은 량자에 있어서 각이할것이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교환에 있어서 자기의 생산수단의 가치를 회수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전혀 아무래도 좋을것이다. 따라서 가치대로의 또는 근사적으로 가치대로의 상품교환은 자본주의적발전의 일정한 높이를 필요로 하는 생산가격대로의 교환에 비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단계**를 필요로 하는것이다…그리하여 가치법칙에 의한 가격 및 가격운동의 지배는 도외시하더라도 상품의 가치를 **리론적으로**뿐만아니라 **력사적으로**도 생산가격의 선행자로 간주하는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 그것은 **생산수단이 로동자에게 속하는** 그러한 상태에 적용되며 이러한 상태는 고대세계에서도 근대세계에서도 자신의 로동으로써 생활하며 토지를 소유하는 농민에게서도 수공업자에게서도 볼수 있다. 이것은 또한 우에서 말한 견해와도 일치한다. 즉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발전은 동일한 공동체의 성원들사이에서의 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이한 공동체들사이에서의 교환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원시적상태에 적용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후의 노예제나 농노제에 기초하는 상태에도 적

용되며 또 수공업의 동업조합적조직에도 적용된다. 하기는 각 생산부문에 고정된 생산수단들이 한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로 쉽게는 이전될수 없으며 따라서 각이한 생산분야들의 호상관계는 일정한 정도까지는 각이한 나라들 또는 공산주의적공동체들사이의 관계나 마찬가지인 한에 있어서 그러하다》(맑스 《자본론》, 제3권 제1분책, 155~156페지①)

맑스가 제3부를 다시한번 추고할수 있었다면 그는 이 개소를 좀더 훨씬 상세하게 전개하였으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개소는 이대로는 문제로 되는 점에 관하여 말해야 할 내용의 륜곽을 줄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서술하자.

누구나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초기의 사회에서는 생산물은 생사자들 자신에 의하여 소비되며 이 생산자들은 다소간에 공산주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여있다. 이 생산물의 잉여를 다른 공동체사람들과 교환하는것은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전화의 발단으로 되는것이지만 그것은 후기에 속하는것이며 교환은 시초에는 개개의 이족적공동체들사이에서만 진행되나 나중에는 공동체내부에서도 진행되게 되여 공동체가 크고작은 가족집단들로 분해되는데 본질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이 분해후에도 교환을 진행하는 가장은 여전히 로동하는 농민들인데 이 농민들은 자기의 필수품의 거의 전부를 가족의 도움에 의하여 자기의 경지에서 생산하고 필수품의 적은 부분만을 자기의 로동생산물의 잉여물로 외부와 교환하여 얻는다. 가족은 농사와 목축에 종사할뿐만아니라 또한 자기들의 생산물을 가공하여 완성소비

① 본권 197~198페지를 보라. —편집자

품으로 만들고 곳에 따라서는 또 스스로 손매돌로 가루를 내며 빵을 굽고 아마와 양털을 방적, 염색, 직조하며 가죽을 이기며 목조가옥을 세우고 수리하며 도구와 기구를 만들며 목공일과 철공일을 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족 또는 가족집단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한다.

그런데 그러한 가족이 다른 가족으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얻든가 또는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얼마 많지 않은것들은 독일에서는 19세기초엽까지도 주로 수공업적생산품들로써 이루어지고있었다. 즉 그것들의 제조법은 농민에게 알려지고있지 않은바가 아니나 농민은 원료를 얻지 못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매하는 물품이 훨씬 보다 좋든가 극히 저렴하든가 하기때문에 자기로 생산하지 않은 물건들로써 이루어지고있었다. 따라서 중세기의 농민은 자기가 교환에 의하여 얻는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로동시간을 거의 정확히 알고있었다. 마을의 대장쟁이와 수레제조공은 농민의 눈앞에서 일하고있었다. 재봉사와 제화공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나의 소년시대만 하여도 우리 라인지방의 농가를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자체로 생산한 원료로 의복과 구두를 만들고있었다. 농민도, 농민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도 모두 자기 자신이 로동자였고 교환에 내놓는 물품은 그들 자신의 생산물이였다. 그들은 이 생산물들의 생산에 무엇을 지출하였는가? 로동이며 오직 로동뿐이다. 그들은 도구의 보충을 위하여서도, 원료의 생산을 위하여서도, 원료의 가공을 위하여서도 자기 자신의 로동력이외에는 아무것도 지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 생산물을 다른 로동하는 생산자들의 생산물과 교환함에 있어서 그 생산물에 지출된 로동에 비례하여 교환하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을수 있는가? 그 경

우에는 이러한 생산물에 지출된 로동시간이 교환되는 크기의 량적규정을 위한 유일하게 적당한 척도였을뿐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대체로 이 이외의 척도는 있을수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농민과 수공업자는 일방의 10시간로동의 생산물을 타방의 단 1시간로동의 생산물과 교환하여주리만큼 어리석었다고 생각할수 있는가? 농민적자연경제의 전체 시대에 걸쳐서 교환되는 상품량이 점점 더 그것들에 구현되여있는 로동량에 의하여 측정되는 경향을 가지는 교환외에 다른 어떠한 교환도 있을수 없다. 이 경제방식에 화폐가 출현하는 순간으로부터 가치법칙(맑스에 의하여 정식화된 그것임에 주의하라)에의 적응의 경향은 일방으로는 더욱 현저하게 되나 타방으로 이 경향이 이미 고리대자본과 재정적착취의 간섭에 의하여 파괴되며 평균적으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무시해도 좋을 크기로 되는 기간은 이미 꽤 길어지게 된다.

농민의 생산물과 도시수공업자의 생산물간의 교환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 이 교환은 처음에는 직접, 상인의 매개없이 도시의 장날에 진행되며 그런 장날에 농민은 생산물을 팔기도 하고 사들이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농민이 수공업자의 로동조건들을 알고있을뿐만아니라 수공업자도 농민의 로동조건들을 알고있다. 왜냐하면 수공업자 자신도 아직 일개의 농민으로서 그는 채전과 과수원을 가지고있을뿐만 아니라 또 적은 돼기의 포전과 한두마리의 암소, 돼지, 가금 등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세기의 사람들은 각자가 서로 생산비를 원료, 보조재료, 로동시간에 따라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었다—적어도 일반 일용품에 관해서는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로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교

환에 있어서 이 로동량은 비록 간접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생산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였는가? 그것은 비교적 긴 기간에 진행되며 불규칙적인 중단기간이 있으며 생산의 성과가 불확실한 로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물, 례컨대 곡물이나 가축의 경우이다. 그리고 더구나 계산할줄 모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떠하였는가? 명백히 긴 시간이 걸리는, 때로는 암중모색의 과정이나 우여곡절을 걸쳐 접근하는 과정을 통할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것처럼 손해를 보고서야 비로소 령리하게 되였다. 그러나 각자가 대체로 자기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필요성은 언제나 옳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을 도왔다. 그리고 교환에 들어오는 물품종류가 적은것도 그것들의 생산의 방식이 종종 수세기에 걸쳐 변하지 않은것도 목표에 도달하는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생산물들의 상대적인 가치의 크기가 상당히 근사적으로 확정되게 되기까지에는 결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것은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만으로써도 증명된다. 즉 각개의 생산기간이 길기때문에 이 확정이 극히 곤난하게 보이는 상품 즉 가축이 최초의 거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화폐상품으로 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성립시키기 위하여서는 가축의 가치 즉 가축과 다수의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의 비률이 이미 비교적 류별난, 다수 종족들의 지역에서 이의없이 인정된 확정에 도달하고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고 확실히 당시의 사람들은—가축사육자들도 그들의 고객들도—자기들이 지출한 로동시간을 교환에서 등가없이 양도하지 않으리만큼은 령리하였다. 그와 반대로 상품생산의 원시상태에 접근한 사람들일수록—례컨대 로씨야인이나 동양인—오늘날까지도 아직 길고 집요한 흥정

에 의하여 자기들이 생산물에 지출한 로동시간의 완전한 대가를 얻기 위하여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것이다.

로동시간에 의한 이러한 가치규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상품생산이 발전하였으며 또 이와 함께 《자본론》 제1부 제1편에서 서술되고있는바와 같은 가치법칙의 각이한 측면들이 효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관계들이 발전하였고 따라서 특히 그 밑에서만 로동이 유일한 가치형성자로 되는 조건들이 발전하였다. 더구나 이 조건들은 당사자들의 의식에는 오르지 않고 관철되는것들이며 어려운 리론적연구에 의하여서만 일상적인 실천으로부터 추상될수 있는것들이며 따라서 맑스도 상품생산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것으로서 증명한바와 같은 자연법칙의 방식으로 작용하는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확한 진보는 금속화폐에로의 이행이였으나 이 이행은 또 로동시간에 의한 가치규정이 이미 상품교환의 표면에는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수반하였다. 화폐는 실제적인 리해에 있어서는 결정적가치척도로 되였다. 그리고 거래되는 상품이 다양하게 되면 될수록, 또 상품들이 먼 나라들의 산물인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따라서 이 상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검증될수 없게 되면 없게 될수록 더욱 그렇게 되였다. 그러나 화폐 자체도 처음에는 대개 외국으로부터 왔다. 귀금속이 국내에서 채취되는 경우에도 농민들이나 수공업자들은 한편으로는 귀금속의 채취에 지출된 로동을 근사적으로나마 계산할수 없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계산의 관습으로 말미암아 가치척도로서의 로동의 속성에 관한 그들의 의식은 상당히 몽롱하게 되였다. 화폐가 민중의 관념에서 절대적가치를 대표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맑스의 가치법칙은 일반적으로 경제법

칙들이 적용되는 한에서 단순상품생산의 전 시대에 걸쳐 즉 자본주의적생산형태의 출현에 의하여 단순상품생산이 변화되게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때까지는 가격은 맑스의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치로 기울어지며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변동하는것이며 따라서 단순상품생산이 충분히 발전하면 할수록 외부의 폭력적인 교란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은 비교적 긴 기간의 평균가격은 무시할수 있는 차이의 범위내에서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이리하여 맑스의 가치법칙은 생산물을 상품으로 전화시키는 교환이 시작되면서부터 기원 15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일반적타당성을 가진다. 그런데 상품교환이 나타난 시대는 모든 기록된 력사이전의 시기에 속하며 애급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2,500년에, 아마도 기원전 5,000년에 소급되며 바빌론에서는 기원전 4,000년 아마도 6,000년까지 소급된다. 따라서 가치법칙은 5,000년 내지 7,000년동안에 걸쳐 지배하고있다. 그리하여 이제야말로 우리는 로리아씨의 철저성에 감탄하는것이다. 실로 그는 이러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타당한 가치를, 그것대로 상품들이 판매되지도 않았고 판매될수도 없는 가치,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경제학자라면 누구도 문제로 삼지 않을 가치라고 부르고있으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상인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상인의 개입을 고려에 넣는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상품생산으로부터 자본주의적상품생산으로의 전화에로 이행하려고할 때까지 뒤로 미룰수 있었다. 상인은 다른 모든것이 안정된, 말하자면 세습제에 의하여 안정된 이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요소였다. 이 사회에서는 농민은 자기의 분할지뿐만아니라 자유로

운 소유자, 자유로운 또는 예속적인 소작농 또는 농노라는 자기의 지위를, 도시수공업자는 자기의 수공업과 동업조합적 특권을 세습적으로 그리고 거의 양도할수 없는것으로서 계승하였고 게다가 그를 각자는 자기의 고객, 자기의 판매시장, 그리고 소년시대로부터 세습적인 직업을 위하여 습득한 자기의 기능도 계승하였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계에 상인이 나타났고 이것에 의하여 이 세계의 변혁이 시작되게 되였다. 그러나 상인은 의식적인 혁명가로서 나타난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세계의 살을 살로 하고 이 세계의 뼈를 뼈로 하는자로서 나타났다. 중세기의 상인은 결코 개인주의자인것이 아니였다. 그는 모든 동시대인들이 그러한것처럼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원이였다. 농촌에서는 원시공산주의에서 싹튼 마르크공동체가 일반적이였다. 원래는 매개 농민은 평등한 크기의 각종 성질의 토지로 이루어진 평등한 크기의 분할지를 가지고있었고 또 그것에 상응하여 공유마르크에 있어서의 제 권리의 평등한 크기의 몫을 가지고있었다. 마르크공동체가 폐쇄적인 공동체로 되고 새로운 분할지들이 더는 분여되지 않게 된 이래로 상속 등에 의한 분할지의 소분할이 나타났고 이에 상응하여 마르크권리의 세분할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분할지가 단위로 되여있고 따라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라는 분할지가 있었고 거기에는 마르크공동체의 제 권리에서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라는 권리가 상응하였다. 그후의 모든 산업공동체, 그중에도 도시의 동업조합은 마르크공동체의 모범을 따른것인데 동업조합의 규약은 마르크제도를 하나의 구획된 지역에가 아니라 하나의 수공업특권에 적용한것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조직의 중심점은 전체를 위하여 확보된 제 특권이나 제 수익에 각 성원

이 평등하게 참가하는것인데 그것은 1527년의 엘베르펠트 및 바르멘의 《연사업》의 특허장에서 적절하게 표명되고있는바와 같다(툰 《하부라인의 공업》 제2부, 164페지이하). 광산의 채광조합에 대하여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 광산주주들은 동등한 몫을 가지고있었으며 또 마르크 공동체성원의 분할지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나 의무와 함께 분할될수 있었다. 또 동일한것은 이와 못지 않을 정도로 해외무역을 초래한 상인조합들에도 적용된다. 알렉싼드리아나 콘스탄티노플의 항구에 있은 베네찌아인이나 제노바인, 매개 나라의 시장—주택, 식당, 창고, 전시판매장 및 본부사무소—에 있은 각 《국민》은 완전한 상업조합을 형성하고있었다. 이 조합들은 경쟁자들과 고객들에 대하여 봉쇄되여있었다. 그들은 호상협약에 의하여 제정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그들의 상품은 공적검사와 혼히는 검인에 의하여 보장된 일정한 품질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토착민들의 생산물에 지불하여야 할 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노르웨이의 베르겐에 있는 독일교에 있은 한사동맹의 상인들도 그렇게 하였고 또 그들의 경쟁자들인 화란인과 영국인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이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든가 비싸게 구입하면 혼이 난다! 그가 당한 보이꼬트는 이 조합이 그에게 내리는 직접적처벌을 젖혀놓더라도 당시는 무조건적파멸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또 일정한 목적들을 가진 보다 협소한 조합들도 설립되였다. 례컨대 14세기 및 15세기의 소아시아의 포캐아 명반갱이나 키오스도의 명반갱을 장기간 지배하고있은 제노바의 《마오나》, 그리고 또 14세기말 이래로 이딸리아나 에스빠냐를 상대로 거래를 하였고 거기에서 자기의 거류지를 설정한 라벤스베르그 대무역회사, 아우그스부르그의 상인들

인 푸게르, 웰제르, 펠린, 회흐슈테테르 등등 및 뉘론베르그의 상인들인 히르쉬포겔 기타의 독일인회사가 그러하였는데, 이 후자는 6만 6,000두카트의 자본과 세척의 배를 가지고 1505~1506년의 뽀루뚜갈의 인도원정에 참가하여 150%(일설에 의하면 175%라고 한다.)의 순리윤을 얻었다(하이드 《레완트①무역》 제2권 524페지). 그밖에도 루테르가 그렇게 분개하여 말하고있는 일련의 《독점》 회사들이 그러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리윤과 리윤률에 봉착한다. 그런데 바로 상인들의 노력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 리윤률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균등하게 하려는데 돌려지고 있었다. 레완트에서의 베네찌아인들, 북방에서의 한사동맹상인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사는 상품에 대하여 자기의 이웃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였으며 상품의 운수비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동일하였으며 누구나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서는 자기의 《국민》의 다른 모든 상인들과 동일한 가격을 받았으며 복항화물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였다. 따라서 리윤률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등하였다. 대무역회사들의 경우에 불입된 자본의 몫에 비례하여 리익이 분배된다는것은 바로 마르크권리에의 참가가 정당한 분할지몫에 비례하였고 또는 광산리익에의 참가가 광산분배몫에 비례한것과 마찬가지로 자명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그의 충분히 발전한 형태로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최종적결과의 하나인 균등한 리윤률이 그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는 자본의 력사적출발점의 하나이라는것, 지어는 이 균등한 리윤률은 그 자체가 또 원시공산주의의 직접적소산인 마르크공동체의 직접적소산이라

① 지중해 동쪽해안 나라들이 옛 명칭이다.—역자

는것이 증명되고있다.

이러한 최초의 리윤률은 필연적으로 대단히 높은것이였다. 사업은 대단히 위험하였는데 그것은 해적의 횡행때문만은 아니였다. 경쟁하는 국민들도 기회만 있으면 갖은 폭행을 감행하였다. 끝으로 판매와 판매조건들은 외국의 군주의 특허에 근거하고있었는데 이 특허는 또 흔히 파기되거나 취소되였다. 그러므로 리윤속에는 높은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밖에 거래는 완만하게 진행되였고 회전은 지연되였는데 최량의 시기—물론 오래 지속하는 일은 희귀하였지만—에는 사업은 독점리윤을 수반하는 독점상업이였다. 리윤률이 평균하여 대단히 높았다는것은 또 당시 일반적이였던 대단히 높은 리자률—이것은 전체로서는 언제나 보통의 상업리윤의 률보다는 낮지 않으면 안되였다—에 의하여 증명된다.

그러나 조합적협력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 높은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균등한 리윤률은 조합원사이에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민》의 범위내에서 국부적으로 통용되였다. 베네찌아인, 제노바인, 한사동맹상인, 화란인은 각 국민별로 그리고 아마도 많든적든간에 처음에는 매개 판매지역별로도 단독적인 리윤률을 가지고있었다. 이와 같은 각이한 조합들의 리윤률의 평균화는 상반되는 방도로써 즉 경쟁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우선 동일한 국민의 시장마다 다른 리윤률들이 평균화되였다. 만약 베네찌아의 상품에 대하여 끼쁘로스, 콘스탄티노플 또는 트라페준트보다도 알렉싼드리아가 보다 큰 리윤을 제공한다면 베네찌아인은 알렉싼드리아에 보다 많은 자본을 돌리고 다른 시장들과의 교역으로부터는 자본을 끌어낼것이다. 다음에는 동일한 시장들로 동일한 또는 류사한 상

품들을 수출하는 개개의 국민들사이에서 리윤률이 점점 평균화되지 않을수 없었는데, 이때 이러한 국민들중의 일부는 파산되여 무대에서 사라진 일도 매우 많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정치적사건들에 의하여 부단히 중단되였다. 례컨대 전체 레완트무역은 몽고인이나 토이기인의 침입에 의하여 파멸되였다. 1492년이래의 지리상, 상업상의 대발견[174]들은 이 파멸을 촉진하였고 다음에는 이 파멸을 완성하였을따름이다.

이것에 뒤따라 일어난 돌연적인 판로확장과 이와 관련한 교통로선의 변혁은 우선 상업경영방식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인도 및 아메리카에 향해서도 우선은 주로 조합들이 상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첫째로 이 조합들의 배후에는 더욱 큰 국민이 서있었다. 레완트무역을 진행하였던 까딸루냐인 대신에 아메리카무역에서는 대련합된 에스빠냐 전체가 나타났다. 에스빠냐와 나란히 영국과 프랑스라는 2대국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나라들인 화란과 뽀르뚜갈까지도 전대의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상업국민이였던 베네찌아와 적어도 동등한 정도로 크고 강하였다. 이러한것은 16세기 및 17세기의 려행상인 모험상인에게 하나의 방패를 주었고 이때문에 무기로써도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조합을 점점 더 불필요한것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조합의 비용을 직접 무거운 부담으로 만들었다. 다음에는 개개인의 수중에 있는 부의 증대가 비상히 급속하게 되여 얼마 안가서 이전에는 전체 회사가 아니면 낼수 없던 자금을 단독적인 상인도 한개 기업에 낼수 있었다. 무역회사들은 그것들이 아직 존속한 경우에는 대개 무장단체로 변하여 모국의 보호와 주권하에서 새로 발견된 지방 전체를 정복하고 독점적으로 착취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들에서도 식민지가 점점 더 주로 국가에 의하여

설치되게 됨에 따라 조합상업은 점점 더 후퇴하여 개개의 상인들이 진행하는 상업이 이를 대신하였고 그와 함께 리윤률의 평균화는 점점 더 전적으로 경쟁의 일로 되였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게 된것은 상업자본의 리윤률뿐이였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상업자본과 고리대자본만 있었고 산업자본은 겨우 이제부터 발전하여야 할것이였기때문이다. 생산은 아직도 많이는 로동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었는데 이 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로동은 자본을 위하여 잉여가치를 낳는것이 아니였다. 그들이 생산물의 일부분을 무상으로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않을수 없었다면 그것은 봉건령주에 대한 공납의 형태로 수행되였다. 그러므로 상인자본은 자기의 리윤을 적어도 처음에는 다만 국내생산물의 외국구매자들로부터나 또는 외국생산물의 국내구매자들로부터만 얻을수 있었다. 이 시기가 끝날무렵에야—따라서 이딸리아에서는 레완트무역의 쇠퇴와 함께—비로소 외국의 경쟁과 판매의 곤난으로 말미암아 수출상품의 수공업적생산자가 상품을 그 가치보다 싸게 수출상인에게 팔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개개의 생산자들 호상간에서의 국내 소매거래에서는 상품이 평균적으로 그 가치대로 판매되나 국제무역에서는 상술한 리유에서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 현상이 통례라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에서 보게 되는것과는 정반대이다. 오늘날 국제적무역과 도매상업에서는 생산가격이 통용되고있지만 도시의 소매상업에서는 전혀 다른 리윤률에 의하여 가격형성이 규제된다. 례컨대 오늘날 소고기가 런던의 도매상인으로부터 런던의 개개의 소비자들에 이르는 도중에 올라가는 가격이 시카고의 도매상인으로부터—운임이 포함되여—런던의 도매상인에 이르는

도중에 올라가는 가격보다 더 크다.

가격형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혁을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도구로 된것은 산업자본이였다. 이미 중세기에 산업자본의 싹이 형성되였는데 그것도 수운, 광산, 섬유공업이라는 세 령역에서였다. 이딸리아나 한사동맹의 해양공화국들에 의하여 운영된 규모에서의 해운업을 해원, 즉 임금로동자(그의 임금관계는 리익분배를 수반하는 조합적형태하에 은폐된 일도 있었을것이다)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또 당시의 갈레선에 있어서도 노젓는 임금로동자 또는 노예없이는 불가능하였다. 광산조합은 원래는 로동자들의 조합이였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임금로동자에 의하여 채광을 경영하는 주식회사로 변하였다. 그리고 섬유공업에서는 상인은 소직물장주들에게 방사를 공급하고 고정임금을 지불하여 상인의 계산으로 직물로 가공시키는데 의하여 즉 자기가 단순한 구매자로부터 소위 **도매상**으로 되는데 의하여 장주들이 직접 상인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는것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잉여가치형성 자체의 발단을 보게 된다. 채광조합은 봉쇄적인 독점단체로서 도외시할수 있다. 해운업자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들의 리윤은 적어도 국내의 보통리윤에 보험이나 선박의 손상 등의 비용을 필요이상으로 가산한것과 동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직접 자본가의 계산으로 생산된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 수공업자의 계산으로 생산된 동일한 종류의 상품과 경쟁하게 한 직물도매상들에 있어서는 사태가 어떠하였는가?

거기에는 상업자본의 리윤률이 이미 있었다. 그것은 또 이미 적어도 매개 지방에서는 평균되여 하나의 근사적인 평균률로 되고있었다. 그런데 상인을 고무하여 도매상이라는

특별한 영업을 담당하게 할수 있은것은 무엇인가? 단 하나—타인과 동등한 판매가격으로 보다 큰 리윤을 얻는다는 희망이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소장주들을 일시키는것에 의하여 생산의 전통적인 제한을 즉 생산자는 다만 자기의 완성생산물을 팔뿐이고 다른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는 제한을 타파하였다. 상업자본가는 로동력을 구매하였으며 이 로동력은 아직 당분간은 자기의 생산도구를 가지고있었으나 원료는 이미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상업자본가는 직조공에게 규칙적인 취업을 보장하여주면서 그 대신 직조공의 임금을 제공된 로동시간의 일부분이 부지불로 되도록 낮출수 있었다. 그리하여 도매상은 자기의 지금까지의 상업리윤을 넘는 잉여가치의 취득자로 되였다. 물론 그 대신 그는 방사 등을 구매하여 그것을 직물이 완성될 때까지 직조공의 수중에 맡겨두기 위하여 추가자본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전에는 이 직물을 구입할 때에 비로소 그것의 전 가격을 지불하면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여분의 자본을 직조공에 대한 선대로 사용하였으며 통례로는 채무노예상태만이 직조공을 새로운 생산조건들에 굴복시킬수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이상과 같은것을 도외시하더라도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가령 우리의 상인은 30,000(두카트, 쩨히네, 파운드 또는 기타 무엇이든 좋다)의 자본으로써 수출업을 경영한다고 하자. 그중 10,000은 국내상품의 구입에 지출되며 20,000은 해외의 판매시장에서 사용된다고 하자. 이 자본은 2년에 1회 전하고 년회전액은 15,000이라고 하자. 지금 우리의 상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직조를 하게 하며 도매상이 되려 한다고 하

자. 그러면 그는 얼마만한 자본을 추가하여야 하는가? 그가 판매하는 직물 한필의 생산기간은 평균 2개월이라고 하자. 이것은 확실히 너무 긴 기간이다. 그리고 또 그는 모든것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는 자기의 직조공에게 2개월분의 방사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1년에 15,000을 회전시키므로 2개월에는 2,500의 직물을 구매하게 된다. 그 중 2,000은 방사의 가치를 표시하고 500은 직조공의 로임을 표시한다고 하면 우리의 상인은 2,000의 추가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가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직조공에게서 취득하는 잉여가치는 직물의 가치의 5%에 불과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25%라는 확실히 대단히 낮은 잉여가치률로 된다(2,000c+500v +125m; $m' = \frac{125}{500} = 25\%$, $p' = \frac{125}{2500} = 5\%$). 그렇게 되면 이 상인은 15,000이라는 자기의 년회전액에 대하여 750이라는 특별리윤을 얻으며 따라서 자기의 추가자본을 벌써 $2\frac{2}{3}$년에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판매 따라서 자기의 회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의하여 동일한 자본으로써 더 짧은 기간에 동일한 리윤을—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기간에 보다 큰 리윤을—얻기 위하여 자기의 잉여가치의 소부분을 구매자에게 증여하고 자기의 경쟁자들보다 싸게 판매할것이다. 이 경쟁자들도 점차로 도매상으로 변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특별리윤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증대된 자본에 대한 보통의 리윤으로 또는 지어는 보통보다 낮은 리윤으로 내려간다. 이리하여 리윤률의 균등은 회

복된다. 비록 그것은 국내에서 얻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외국의 구매자들에게 양도되는것에 의하여 다른 수준에서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산업이 자본에 종속되여가는데서의 다음의 일보는 공장제수공업의 도입에 의하여 내디뎌졌다. 이 공장제수공업에 의하여 17세기 및 18세기에는—독일에서는 1850년까지 아직 거의 일반적으로 그러하였고 곳에 따라서는 오늘날도 아직 그러하다—대개 아직도 자기 자신의 수출상인이였던 제조업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경쟁자인 수공업자보다 저렴하게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동일한 과정이 반복된다. 즉 공장제수공업자본가가 취득하는 잉여가치가 크기때문에 그러나 또는 그것의 분배에 참여하는 수출상은 자기의 경쟁자들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할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다시 평균화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된다. 이미 그전부터 있은 상업리윤률은 그것이 지방적으로 평균화되여있는 경우에도 의연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있어서와 같이 거기에서 나오는 초과산업잉여가치는 용서없이 잘려나가는것이다.

이미 공장제수공업에서도 생산물을 저렴하게 만드는데 의하여 번영하였다면 대공업은 훨씬 더 그러하였으며 대공업은 그것이 부단히 되풀이되는 생산혁명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비를 점점 더 저하시키고 이전의 모든 생산방식들을 무자비하게 배제한다. 대공업은 또 이렇게 하여 국내시장을 최종적으로 자본을 위하여 정복하고 자급자족적인 농민가족의 소생산과 자연경제를 종결시키며 소생상자들간의 직접적교환을 배제하고 전체 국민을 자본에 봉사시킨다. 그것은 또한 각이한 상업부문들과 산업부문들의 리윤률들을 **하나의** 일반적리윤률로 평균화하며 그리고 끝으로 이 평균화에 의하여 산업

을 위하여 그것에 합당한 강력한 지위를 보증한다. 왜냐하면 이 평균화는 지금까지 한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으로의 자본의 이전을 방해하던 장애의 대부분을 제거하기때문이다. 이리하여 대체로 교환과정 전체에 대하여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가 수행된다. 따라서 이 전화는 당사자들의 의식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객관적법칙들에 따라 수행된다. 일반적인 률을 넘는 리윤이 경쟁에 의하여 일반적수준으로 인하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을 넘는 잉여가치가 경쟁에 의하여 최초의 산업가적취득자의 수중으로부터 다시 끌려나간다는것은 리론상으로는 아무런 곤난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점점 곤난해진다. 왜냐하면 초과잉여가치를 낳는 생산부문, 따라서 가변자본이 크고 불변자본이 작은 부문들, 즉 자본구성이 낮은 생산부문들은 그 성질상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불완전하게 자본주의적경영하에 놓이기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구성이 높은 부문들의 생산물에 포함되여있는 불충족한 잉여가치를 평균리윤률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가격을 상품의 가치보다 높게 끌어올릴데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리론상으로는 극히 곤난하게 보이나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실제로는 가장 용이하게, 가장 일찍 진행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상품들이 처음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고 자본주의적상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과 경쟁하는 같은 종류의 상품은 전(前)자본주의적방법들에 의하여 제조된것이며 따라서 보다 값비싼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생산자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포기하더라도 그 지방에서의 일반적인 리윤률을 얻을수 있다. 그리고 이 리윤률은 원래는 잉여가치와는 직접적관계가 없는것이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체로 자본주의적생산이 진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따라서 산업리윤률이라는것이 가능하게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상업자본으로부터 발생한것이였기때문이다.

Ⅱ. 거래소

1. 제3권 제5편 특히 제[27]장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일반에서 거래소가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는것이 명백하게 되였다. 그런데 이 책이 씌여진 1865년이래로 하나의 변화가 생기였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거래소에 현저하게 큰 역할을 부여하고있으며 그 역할은 점점 커지고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더한층 발전하면 그것은 공업도 농업도 포함한 전체 생산을, 또 교통수단도 교환기능도 포함한 전체 교역을 거래업자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그리하여 거래소는 자본주의적생산 자체의 가장 뛰여난 대표자로 되는 것이다.

2. 1865년에는 거래소는 아직 자본주의적체계에서 **제2차적**요소였다. 국채증서는 거래증권의 주체를 대표하였는데 그 량도 아직 비교적 적었다. 그밖에 주식은행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륙과 아메리카에서는 우세하였으나 영국에서는 이제 겨우 귀족적개인은행을 흡수하려고 하는참이였다. 그러나 량적으로는 아직 별로 많은것은 아니였다. 셋째로, 철도주도 현재에 비하면 아직 상당히 미약하였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적인 사업들도 주식형태를 취한것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당시에는 아직도 《주인의 눈》이 하나의 극복될수 없는 미신이였다. 그리고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다 가난한** 나라들

례컨대 독일, 오지리, 아메리카 등등이 가장 현저하게 그러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아직 거래소는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축적한 자본을 서로 탈취하는 장소였으며 로동자들에게 직접으로는 다만 자본주의경제의 퇴폐적인 일반적작용의 새로운 증거로서만 그리고 은총에 의한 선택 또는 우연은 이 세상에서 지상의 행복과 영원한 벌을 결정하며 부를 즉 향락과 권력을 결정하며 빈궁을 즉 결핍과 예속을 결정한다는 깔뱅파의 교조의 확증으로서만 관계되는것이였다.

3. 지금은 그렇지 않다. 1866년의 공황이래 축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는데 그것도 공업국 특히 영국에서는 생산의 확대가 축적의 증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고 개개의 자본가들의 축적이 그 자신의 사업의 확장에서는 충분히 리용될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였다. 벌써 1845년의 영국의 면방직업, 철도투기가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 축적과 함께 금리생활자들의 수효도 늘어났다. 즉 사업에서의 규칙적인 긴장에 싫증이 난 사람들 즉 향락만을 바라든가 또는 회사의 취체역이나 감사역으로서 경한 일만 하는 사람들의 수효도 늘어났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러한 화폐자본으로서 류동하는 대량의 자본의 투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아직 그것이 진행되고있지 않은 곳에서는 어디서나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법률상의 형태들이 생겼으며 종전의 무한책임주주들의 의무도 다다소소 경감되였다(1890년의 독일에서의 주식회사. 응모의 40%!).

4. 이것에 계속하여 산업이 점차 주식기업들로 전화한다. 산업부문들이 련달아 이 운명에 떨어진다. 무엇보다먼저 지금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철(그 이전에는 광산인데, 다만

이것이 아직 분배몫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는 화학공업 그리고 기계제작공장. 대륙에서는 섬유공업, 영국에서는 아직 랭카셔의 일부 지방들에서만(오울덤의 방적공장, 번리의 직물공장 등, 재봉업조합,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공황에서 다시 주인의 수중으로 떨어질 전단계에 불과하였다), 양조공장(수년전에 아메리카의 공장이 영국자본에 팔리였다. 이어서 긴네스, 베스, 알소프). 그다음에는 트레스트, 이것은 공동관리부를 가지는 거대기업을 창조한다(유나이테드 알칼리와 같이). 보통의 단독상사는 점점 사업을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크기에까지 되게 하기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게 된다.

상업도 동일하다. 리프상회, 파슨상회, 몰레이상회, 모리슨상회, 디론상회가 모두 주식회사로 되였다. 지금은 이미 소매상점들도 그러한데 그것도 단순히 《련합점》 형식의 협동조합이라는 외관하에서만 그러할뿐이 아니다.

영국에서의 은행 및 기타 신용기관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무수한 새로운것들이 생겼는데 모두 유한책임주식회사이다. 게린과 같은 낡은 은행까지도 7명의 개인주주를 가진 유한책임회사로 된다.

5. 농업분야에서도 동일하다. 비상히 확장된 은행이 특히 독일에서는(여러가지 관료적인 명칭하에서) 점점 더 저당권의 소유자로 되고 그 은행들의 주식과 함께 토지재산의 현실적상위소유권이 거래소에 인도되며 그리고 토지가 채권자의 수중으로 넘어갈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초원경작의 농업혁명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토지도 거래증권화될 시기를 예견할수 있다.

6. 그리고 또 지금은 대외투자도 모두 주식으로서 진행된다. 영국에 대하여만 말한다면, 아메리카의 철도, 북부 및 남부(주식거래소표를 참조). 골드버그 등등.

7. 그다음에는 식민. 이것은 오늘날은 순전히 거래소의 지점이다. 거래소의 리익을 위하여 구라파렬강은 몇해전에 아프리카를 분할하였고 프랑스인은 뚜니스와 통킹①을 정복하였다. 아프리카는 직접 몇개 회사에 임대되였다(니제르, 남아프리카, 독일령 서남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 머쇼널랜드 및 너탤은 거래소를 위하여 로우즈가 소유하는것으로 되였다.

① 웰남북부에 대한 옛명칭이다.—편집자

주　　해

주 해

1 엥겔스가 편집한 《자본론》 제3권은 맑스의 주요 경제학저서의 리론부분으로서 1894년 함부르그에서 출간되였다.

맑스는 1843년말부터 정치경제학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는 그보다 먼저 정치경제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모든 중대성과들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성과에서 나타나는 일부 견해들의 한계성을 극복해나갔다. 그가 얻은 최초의 연구성과들은 《1844년 경제학철학 친필원고》, 《철학의 빈곤》(1847년), 《임금로동과 자본》(1849년) 등과 같은 저서에 반영되여있다. 그당시 맑스는 주로 자산계급정치경제학의 고전저술가 특히는 D. 리카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본주의생산관계의 력사적인 일시적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 사람들보다 한걸음 크게 앞서나갔다.

50년대는 맑스주의정치경제학이 창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바로 50년대말에 맑스는 방대한 량의 1857～1858년 경제학 친필원고 즉 《자본론》 최초의 원고의 집필을 끝냈다. 그의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도 1859년에 출간되였다. 맑스는 이들 저서에서 과학적가치학설을 창립하였으며 최초로 잉여가치학설을 내놓아 자본의 착취의 성격을 발가놓았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그후 《자본론》 제3권에서 취급된 중요문제의 하나인 잉여가치 및 그의 리윤으로의 형태전화 사이의 상호관계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아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친필원고의 마지막 편에서 최초로 리윤률의 경향적인 저하라는 이 자산계급생산의 가장 중요한 법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맑스는 점차 자본에 대한 연구를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생각을 하였다. 이 3개의 부분은 즉 자본의 생산과정, 자본의 류통과정, 량자의 통일 또는 자본과 리윤이

다(맑스가 1858년 3월 11일 F. 라쌀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

맑스는 1861~1863년 경제학 친필원고 즉 《자본론》 제2원고에서 그의 자본론연구의 마지막부분의 내용을 확정할 때 또 한걸음 크게 전진하였다. 이 친필원고의 노트 XV와 XVI 및 《잉여가치학설》로 불리는 친필원고부분에서는 그가 제3권의 기초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문제들을, 말하자면 비용가격과 생산가격, 평균리윤, 각 부문간의 경쟁체제와 부문내부의 경쟁체제, 상업자본과 화폐자본, 지대, 수입 및 그 원천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해결하였는가는 보여주고있다. 맑스는 《자본론》 제3권을 집필할 때 이 친필원고에 포함되여있는 일부 기본사상들을 리용하였을뿐아니라 원고의 많은 단편들도 채용하였다. 이는 상기 문제들에 대한 친필원고의 연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있는가를 말해준다.

1863~1865년은 《자본론》의 세번째 원고를 창작한 시기였다. 이 기간에 맑스는 《자본론》 제1부의 본문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자본론》 제1권이 인쇄에 회부될수 있게 된 기초였다. 이 기간에 맑스는 또 제2부 본문의 초고를 완성하였는데 그는 이 원고를 《제Ⅰ원고》라고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기간에 제3부의 유일하게 완전한 친필원고를 창작하였다. 이 시기에 이 친필원고의 집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였는지는 맑스와 엥겔스사이의 편지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맑스는 1864년 가을에 집필을 시작하였고 1865년 7월 31일 엥겔스에게 《이제 3장만 더 쓰면 리론부분(전3부)을 끝낼수 있습니다》고 알려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3부》는 바로 《자본론》 제1~제3부를 말한다. 1866년 2월 23일 맑스는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집필상황을 이야기하면서 《12월말에 이미 **완성**하였습니다》고 말하였다.

1867년 9월에 《자본론》 제1권이 세상에 빛을 본후 맑스는 계속하여 그다음의 2권을 집필하였다. 그당시의 그의 생각대로 한다면 제2권에는 자본류통과정의 분석(제2부)과 자본주의적생산의 총과정에 있어서의 제 형태의 연구(제3부)를 포함시키고 제3권에는 학설사(제4부)(《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3페지를 보라)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70년대에 맑스는 제3부의 집필을 위해 자료

수집을 하였는데 이 시기의 편지와 노트들이 이 점을 증명해주고있다. 이 시기의것에 속하는것으로는 또 제3부 제1장의 2개 수정원고의 머리부분과 《잉여가치률과 리윤률과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설명한》(본권 중문판 8페지를 보라) 노트가 있다. 이 기간에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2판 특히는 프랑스문판을 준비하기 위해 대량의 작업을 하느라 제2, 제3부의 완성을 여러번 미루게 되였다(맑스가 1873년 2월 12일 F. 볼트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 다른 한편 저술계에서 알려진 일부의 새로운 자료들 특히는 로씨야와 미국의 토지관계 및 토지소유형성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은 맑스로 하여금 일부 보충적인 연구를 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맑스는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몇번이나 이야기하였다. 례컨대 1872년 12월 12일 N. F. 다니엘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자본론〉 제2부 토지소유에 관한 그 편에서 로씨야의 토지소유형식을 상세히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70년대 하반기에 맑스는 다년간 국제로동계급을 위해 많은 실제활동과 리론활동을 해온 관계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그리하여 맑스는 《자본론》 제1권 이후의 나머지 권들을 인쇄에 회부할수 있도록 준비할수 없었다. 이 중임은 엥겔스의 어깨에 떨어졌다.

엥겔스는 편집과정에 제2부와 제3부를 각각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으로 편집해 출판하기로 하였다. 1885년 2월에 제2권이 완성된후 엥겔스는 즉시 제3권의 친필원고의 최종원고를 식별하고 구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은 7월중순인가 7월말인가까지 지속되였고 엥겔스는 마침내 《읽기 쉬운 원고》(본권 중문판 7페지를 보라)를 얻게 되였고 이를 인쇄에 회부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친필원고 자체가 미완성적인것이여서 그로 인한 큰 곤난을 극복해야 하는 외에도 기타의 많은 일들을 해야 했던 관계로 친필원고의 편집작업을 지연하지 않을수 없었다. 첫째로, 엥겔스는 독일의 그리고 국제의 사회주의운동방면의 많은 일들을 해야 했다. 둘째로, 그는 자기의 신구 저서와 맑스의 저서를 인쇄에 회부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했다. 《자본론》 제1권의 영문판 교열작업과 독일문판 제4판의 준비작업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않을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여 작업을 빨리 진척시킬수 없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이 중임을 완성하였다. 1894년에 《자본론》 제3권이 출간되였다.

본권은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1판 제25권을 《자본론》 1894년 독일문판 제3권에 근거하여 새로 교정하여 만든것이다.—3페지

2 영문판 《자본론》 제1권은 S. 무어와 E. 에이블링이 독일문판 제3권에 근거하여 번역하였고 나중에 엥겔스가 심사하였다. 1877년초에 영국의 출판업자 W. S. 상난샤언이 두책으로 나누어 런던에서 출판하였다.—3페지

3 **국제로동자협회**는 최초의 국제성격을 띤 무산계급의 혁명조직으로서 1864년 가을 맑스에 의해 창립되였고 그후 제1국제라고 불렸다. 맑스와 엥겔스는 제1국제를 책임지고 각국 로동자들을 령도하여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쁘루동주의, 바꾸닝주의, 로동조합주의, 라쌀주의 등 반맑스주의류파와 치렬한 투쟁을 벌려 각국 로동자들의 국제단결을 튼튼히 다졌다. 제1국제는 1872년 헤이그대표대회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였으며 1876년에 정식으로 해산되였다. 제1국제의 력사적의의는 그것이 《로동자국제조직의 기초를 마련하여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본을 향한 혁명적진공을 준비할수 있게 한》데 있다(《레닌전집》 중문판 제2판 제36권 290페지를 보라).—7페지

4 **로씨야 1861년 개혁**이란 로씨야가 농노제도를 페지시킨 개혁을 말한다. 19세기중엽에 농노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크게 저애하였다. 1853～1856년 크림전쟁(주해 221을 보라)이 실패한후 혁명형세가 발전하면서 농민운동이 날로 기세차게 일어났다. 알렉싼드르2세정부는 핍박에 의해 《농민들이 농노예속관계로부터 자유로울데 관한 1861년 2월 19일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 법령은, 농민은 인신자유를 가지며 지주는 농노를 매매 또는 증정하지 못한다, 농민은 자기의 재산을 지배하고 소를 제기하며 상공업에 종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토지는 여전히 지주의 소유에 속하며 농노는 상기 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액의 몸값을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개혁은 비록 지주계급의 리익을 수호하고있지만 어찌됐든

자본주의발전에 조건을 지어주었다.—10페지

5 맑스가 1868년 4월 30일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본론》 제3권의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다. 그는 편지의 결말부분인 제Ⅶ점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수입의 3대 형태에 대응하는 3대 계급간에는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11페지

6 《은행법특별위원회의 보고. 위원회 회의기록, 증언, 부록 및 색인》을 하원의 지시에 의해 1857년 7월 30일과 1858년 7월 1일 인쇄한것을 두고 말한다.—12페지

7 엥겔스는 《잉여가치학설》을 《자본론》 제4권으로 출판하려던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1905～1910년 기간에 칼 카우쯔키는 《잉여가치학설》 독일문판을 편집출판하였다. 1954～1961년기간에 쏘련공산당 중앙맑스레닌주의연구원은 《잉여가치학설》 로씨야문판을 새로 출판하였고 민주독일은 1956～1962년에 로씨야문판에 근거하여 독일문판을 새로 출판하였다. 《잉여가치학설》은 《맑스엥겔스전집》 로씨야문판 제2판 제26권(3책)의 내용으로 각각 1962년과 1963년, 1964년에 출판되였다. 《잉여가치학설》의 최초의 중문판번역은 곽대력이 카우쯔키의 판본에 근거하여 번역하였으며 책이름을 《잉여가치학설사》라 달고 3권으로 편집하여 1949년 6월 장춘에서 신중국서국이 출판발행하였다. 현재 《잉여가치학설》은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3～35권에 수록되여있다.—12페지

8 독일강단사회주의자 즉 국가사회주의자 및 그 추종자들을 두고 말한다. 특히는 L. H. 마이에르, T. 케자크, A. 와그나를 두고 말한다.—12페지

9 W. 렉시스는 《콘라드년지》 즉 《국민경제와 통계년지》 신편 1885년 제11권에서 《맑스의 자본리론》이란 글을 발표하여 《자본론》 제2권을 평가하였다.

렉시스의 이 글에 관해서는 또 엥겔스가 1888년 10월 8일과 1895년 3월 12일 K. 슈미트에게 보낸 편지와 1886년 11월 9일 N. F. 다니엘슨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할수 있다.—12페지

10 《**한계효용**》설은 19세기 70년대에 나타난 자산계급의 속류적인 가치학설이다. 이 학설의 창시자는 오지리의 경제학자 S. 멩거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K. 제번즈 그리고 프랑스의 경제학자 L. 왈라이다. 이 설은 맑스의 로동가치설과 대립되는데 그 기초가 《한계효용》가치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가치의 기초에 놓여있는 것은 사회적필요로동이 아니라 소위 상품의 한계효용이며 이 한계효용이 구매자의 가장 절실하지 않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상품의 효용의 주관적평가를 반영한다는것이다. 《한계효용》설의 지지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로동가치설은 부정확한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상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가치는 보통 우연적인, 생산과는 관계없는 상태에 의하여, 상품의 희소성 등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임금로동에 대한 착취를 은폐하고있다는것이다. 현대자산계급정치경제학에서 《한계효용》설은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널리 전파되였다.—14페지

11 **복본위제**란 금과 은 두가지 금속이 동시에 화폐의 역할을 하고있는 화폐제도를 말한다. W. 렉시스가 복본위제에 대해 변호하면서 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의 《화폐본위문제의 비판적분석》(1881년 《독일제국의 립법과 행정 및 국민경제 년지》 제5권 제1분책 87～132페지)을 보라.—15, 357페지

12 콘라드 슈미트의 이 저서에 대해서는 엥겔스가 1888년 10월 8일, 1889년 10월 17일, 1890년 4월 12일, 1895년 3월 12일 콘라드 슈미트에게 보낸 편지, 1889년 11월 15일 O. 베벨에게 보낸 편지, 1889년 4월 20일, 1891년 9월 28일 K. 카우쯔끼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15페지

13 헤겔의 개념과 현실의 관계에 관하여 즉 이른바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의 관계에 관한 견해를 두고 말한다. 엥겔스는 1895년 3월 12일 콘라드 슈미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슈미트의 리윤률과 가치법칙에 관한 견해를 분석하면서 헤겔의 개념과 현실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15페지

14 콘라드 슈미트의 《평균리윤률과 맑스의 가치법칙》을 두고 말한다. 1892～1893년 《신시대》지 제11년권 제1권 제3호 68～75페

지, 제4호 112~124페지를 보라.—17페지

15 P. 파이어맨의 《맑스의 가치리론비판》을 두고 말한다. 1892년 《국민경제와 통계년지》 제3집 제3권 793~808페지를 보라.—17페지

16 《자본론》 제3권이 제1권과 모순되는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엥겔스는 《자본론》 제3권에 대한 보유에서 《자본론》의 출발 전제인 단순상품생산의 고찰에로 되돌아갔다. 본권 1006~1027페지를 보라.—17페지

17 파이어맨의 글에 관해서는 엥겔스가 1891년 12월 27일, 1895년 1월 3일 K. 카우쯔끼에게 보낸 편지, 1892년 9월 12일, 1895년 3월 12일 콘라드 슈미트에게 보낸 편지, 1894년 12월 4일 F. A. 조르게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18페지

18 J. 월프의 《맑스의 평균리윤률의 수수께끼》를 두고 말한다. 1891년 《국민경제와 통계년지》(즉 《콘라드년지》) 제3집 제2권 352~367페지를 보라.

월프의 글에 관해서는 엥겔스가 1891년 9월 28일 K. 카우쯔끼에게 보낸 편지, 1891년 11월 1일, 1892년 2월 4일 K. 슈미트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19페지

19 A. 로리아의 론문 《칼 맑스》를 두고 말한다. 1883년 4월 《과학, 문학 및 예술 새 문집》 제38권 제7호 509~542페지를 보라.

로리아의 론문에 관해서는 엥겔스가 1883년 4월말경에 로리아에게 보낸 편지와 1980년 4월 12일 K.슈미트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20페지

20 경제관계와 정치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경제관계가 제1위라는 이 발견에 관해서는 사실 맑스와 엥겔스가 1884년에 쓴 《신성한 가족》 제4장과 제5장의 머리부분 및 1845~1846년에 쓴 《독일의 의식형태》 중 《1. 포이에르바흐》에서 명확히 서술하고있다.—21페지

21 여기의 제1권은 A: 로리아가 사용한 《자본론》 제1권 프랑스문판을 말하며 그중 제11장은 독일문판 제9장 《잉여가치률과 잉여가치량》에 해당한다.—21페지

22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71~372페지를 참조하라.—21페지

23 맑스는 1867년에 쓴 《자본론》 제1판 서문에서 《자본론》 제2권은 《자본의 류통과정(제2부)과 총과정의 제 형태(제3부)를 취급하게 될것이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2권은 후에 엥겔스가 두권으로 편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이다.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3페지를 보라.—22페지

24 엥겔스가 맑스의 《자본론》 제2권을 위해 쓴 서문의 결말부분을 두고 말한다(《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24～25페지를 보라).—22페지

25 《슈티벨링씨의 론문 〈자본의 농축이 로임 및 로동의 착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에 대한 평론》을 두고 말한다. 《신시대》 1887년 제3호 123～127페지를 보라.—24페지

26 엥겔스가 본권에서 《자본론》 제1권의 인용문을 언급하면서 표기한 페지는 《자본론》 제1권의 독일문판 제2판과 제3판의 페지이다. 여기에서의 201/193페지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45페지에 해당한다.—33페지

27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171～387페지를 보라.—40페지

28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58페지 및 그 이하를 보라.—41페지

29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45페지를 보라.—41페지

30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47페지를 보라.—41페지

31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630～632페지를 보라.—45페지

32 Q. 램지의 《부의 분배》 1836년 에딘버러판 184페지를 보라.—47페지

33 말사스가 토런즈의 견해를 동의하는 뜻에서 인용한것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758～759페지를 보라.—47페지

34 18세기에 화학에서 지배적이였던 견해에 의하면 연소의 과정은 연소시에 가연물로부터 분리되는 연소((燃素)라는 특수한 물질이 그 가연물에 존재한다는데 의하여 제약된다는것이다. 그런데 금속은 공기중에서 연소할 때 그 중량이 증대된다는것이 알려져있었으므로 이 연소설의 신봉자들은 연소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물리적부중

이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화학자 A. L. 라봐지예는 연소과정은 연소하는 물질과 산소와의 화합작용이라는것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이 연소설이 무근거함을 증명하였다. 연소설이 일으켰던 적극적인 역할에 관해서는 엥겔스가 《〈반듀링론〉의 옛날 서문》의 결말 부분과 《자본론》 제2권의 서문에서 론술하고있다.—47페지

35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Ⅳ 26～27페지(《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0권 408～410페지)를 보라.—47페지

36 **쁘루동의 인민은행**은 1849년 1월에 설립되였다. 쁘루동은 이 은행의 도움에 의하여 평화적방법으로 신용리자를 없애고 생산자들이 자기의 로동수입의 완전등가를 취득하는 기초우에서 무화폐교환을 진행하는 그의 《사회주의》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이 은행은 설립된후 2개월만에 파산되였다. 맑스는 《철학의 빈곤. 쁘루동씨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에서 쁘루동의 견해에 대한 상세한 비판적분석을 가하였다.—47페지

37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55페지를 보라.—48페지

38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55페지를 보라.—48페지

39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96～197, 821～823페지를 보라.—49페지

40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613～622페지를 보라.—53페지

41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86～387페지를 보라.—53페지

42 말사스의 비속한 가치규정에 관하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765～767페지를 보라.—56페지

43 대개 헤겔의 《론리학》 제1권 《객관론리》의 제2부 《본질론》 중의 표현법을 두고 말한다. 그중의 제1장 《반성자체로서의 본질》 특히는 제3절 《반성》중에 이 방면의 론술이 있다. 또는 《철학전서요강》중의 《본질론》 제112～122절을 보라. 아울러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72페지를 보라.—56페지

44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68～371페지를 보라.—59페지

45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593～606페지를 보라.—60페지

4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326페지 및 그 이하를 보라.—83페

지

47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280～281페지를 보라.—84페지

48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제16장 326～341페지를 보라.—87, 89페지

49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53페지를 보라.—88페지

50 $153\frac{11}{13}$은 응당 $153\frac{11}{13}$%로 하여야 한다.—89페지

51 W. 렉시스를 두고 말한다. 그의 《맑스의 자본리론》(1885년 《국민경제와 통계년지》 신편 제11권 458～460페지)을 보라. 여기에서 취급한 《자본론》 제2권의 실례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326～346페지를 보라.—89페지

52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76～377페지를 보라.—93페지

53 A. 유어의 《공장철학. 또는 대브리텐공장제도의 과학적, 도덕적 및 상업적 경제의 해설》 1835년 런던 제2판.—95페지

54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697～698페지를 보라.—97페지

55 로마의 채무자의 신체가 채권자의 화폐를 대표하고있은듯이라는 랑게의 말은 그의 저서 《민법론. 또는 사회의 기본원리》 1767년 런던판 제2권 제5책 제20장에 있다.—99페지

5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77～378페지를 보라.—100페지

57 로츠대일(만체스터공업구)의 로동자들이 공상적사회주의자의 사상영향을 받아 1844년에 공평선구사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소비합작사를 두고 말한다. 그것은 영국 및 기타 나라의 로동합작운동의 맹아였다.—100페지

58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67～350페지를 보라.—101페지

59 **《살해는 살인이 아니다》**(Killing no murder)는 말은 영국에서 널리 류행된 표현이다. 이 말은 본시 17세기중엽 영국자산계급혁명시기에 출판된 한 소책자의 제목이다. 이 소책자의 저자인 평등주의파 쎅스비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호민관 올리버 크롬웰을 살해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이러한 살해행위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였다.—105페지

60 **녀왕좌재판소**는 영국의 고등법원의 하나로 1873년 개혁이후 최고

법원의 분원이 되였다. 그 이전에는 줄곧 최고형사법원과 모든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최고상소법원이였으며 하급사법기구의 판결을 재심리할 권한이 있었다.—105페지

61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535페지를 보라.—106페지

62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38~339페지를 보라.—107페지

63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94~295페지를 보라.—110페지

64 맑스는 일찌기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27페지에서, 그후 또 《자본론》 제1권 제13장 《기계와 대공업》에서 네이즈미스의 이 편지를 인용하였다(《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442~443, 477~478페지를 보라).—112페지

65 A. 유어 《공장철학. 또는 대브리텐공장제도의 과학적, 도덕적 및 상업적 경제의 해설》 1835년 런던 제2판, Ch. 배버지 《기계와 공장의 절약에 관하여》 1832년 런던판 280~281페지를 보라.—119페지

66 R. 토렌즈 《부의 생산에 관한 론술》 1821년 런던판 28페지 및 그 이하를 보라.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토렌즈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V 782~790페지를 보라.—122페지

67 D. 리카도의 세계무역이 리윤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판 제3권 131~138페지를 보라. 맑스는 리카도의 그릇된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672~673페지를 보라.—122페지

68 영국의 **곡물관세**는 이른바 곡물법에 의하여 징수하였다. 1815년의 곡물법은 국외로부터의 곡물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였으며 대지주의 리익을 위해 실행되였다. 곡물법은 영국자국의 곡물가격이 쿼터당 80실링 이하일 경우에는 곡물수입을 금지하기로 규정하였다. 1822년에 이 법률을 일부 수정하였고 1828년에는 국내시장에서 곡물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곡물수입관세를 인상하고 반대로 영국곡물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곡물수입가격을 낮추는 활동비률제를 실행하였다. 곡물법의 실행은 빈민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 동시에 로동력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국내 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산업자산계급에게 불리하였다. 곡물법은 토지귀족을 반대하는 산업자산계급의 투쟁을 야기시켰다. 이 투쟁은 만체스터의 공장주 L. 커브던과 J. 블래터가 1838년에 창립한 반곡물법동맹에 의해 자유무역의 주장아래 진행되였다. 1846년 6월 영국의회가 곡물법폐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곡물관세는 폐지되였다.—122, 365, 706, 766, 820페지

69 **10시간로동법안**은 영국의회가 1847년 6월 8일에 통과시켰고 1848년 5월 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법안은 녀공과 아동공의 로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였지만 많은 공장주들이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온갖 구실을 대여 녀공과 아동공의 로동시간을 아침 5시 반부터 밤 8시 반까지 연장시켰다. 헤컨대 공장감독관 L. 호너의 보고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있다.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14～330페지를 상세히 보라.—123페지

70 **미국의 남북전쟁** 즉 1861～1865년기간에 일어난 미국국내전쟁이다. 19세기중엽에 미국남부의 식물재배원 농장주들이 실시하는 노예제와 북부자산계급이 실시하는 고용로동제간에는 모순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1860년 11월 노예제제한을 주장한 공화당 립후보자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남부의 노예주들은 노예제를 수하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다. 1861년 2월에 선후로 독립을 선포한 남부의 11개 주는 몽고메리대회에서 미국남부동맹을 결성하고 공공연히 국가를 분렬하였으며 그해 4월 12일에 샘터요새(남칼로리나주)를 포격하고 국내전쟁을 도발하였다. 1865년 4월 남부 동맹의 수도 리치먼드가 점령되고 남부동맹련합군이 투항함으로써 전쟁은 종식되였다. 북부 각주는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였으며 자본주의의 줄기찬 발전에 나서는 장애물을 제거하였다.—125, 144페지

71 Ch. 배버지 《기계와 공장의 절약에 관하여》 1832년 런던판 280～281페지.—129페지

72 경제학자중의 조화론자 캐어리씨는, 로동자가 총제품에서 차지하는 몫의 가치가 증가하는데 반해 자본은 리윤의 증가를 통해 보상

받고있다고 보고있다.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155페지를 보라.—129페지

73 D. 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제2장.—130페지

74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389~590페지를 보라.—133페지

75 **1861~1865년의 면화기근 또는 면화공황** — 미국국내전쟁시기(주해 70을 보라) 북부 각 주의 해군이 남부 각 주를 봉쇄하여 아메리카로부터의 면화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영국과 다른 일부 나라들에 조성된 면화의 심각한 부족을 두고 말한다. 면화기근은 과잉생산공황의 전야에 발생하였으며 공황과 교착되여있었다. 1862년에 영국의 5분의 3의 방추와 직기가 돌아가지 못하였으며 75%이상의 직조공이 련속 2~3년동안 실업 또는 반실업 상태에 있었다. 구라파의 대부분 면방직업이 마비되였으며 이것은 로동자들의 처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137페지

7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660페지 및 이하 몇페지를 보라.—149페지

77 **1848년의 국민작업장**은 프랑스의 실업로동자들을 위한 공공사업(주로는 토목사업)조직형태로서 1848년 2월혁명(주해 232를 보라) 직후에 프랑스림시정부의 명령에 의해 설립되였다. 국민작업장에서는 생산이 군사방식으로 진행되였으며 로동자들에게 구제 대신 일자리를 주고 빵배급카드와 군인처럼 급여와 보급품을 발급하였다. 국민작업장을 설립한 목적은 한편으로는 로동자들에게서 로동의 조직에 관한 루이 블랑의 사상영향을 없애려는데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방식으로 조직된 국민작업장의 로동자들을 혁명적인 무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 리용하려는데 있었다. 로동계급을 분렬시키려던 이 계획은 실패하고 혁명정서가 국민작업장에서 점점 더 높아지자 정부는 로동자인수를 줄이거나 그들을 다른 성의 공공사업에 파견하는 등 방법으로 국민작업장을 취소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빠리무산계급을 격분시켰으며 빠리 6월폭동의 원인의 하나가 되였다. 폭동자들은 국민작업장내에 존재하던 군사조직을 리용하였다. 폭동이 진압된후 까밴냐크정부는 1848년 7월 3일 국

민작업장의 해산령을 내렸다.—151페지

78 로드베르투스의 자본의 량적변화가 리윤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견해에 관해서는 그의 《폰 키르호만에게 보내는 사회문제에 관한 편지. 제3편지—리카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 및 신지대론의 론증》 1851년 베를린판 125페지를 보라. 로드베르투스의 리윤률에 관한 리론에 대해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상세히 비판하고 분석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73～482페지를 보라.—155페지

79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XVI 1000～1001페지(《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2권 451～453페지)를 참조하라.—157페지

80 스미스의, 생산분야가 다르면 로동의 착취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데 대하여는 그의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776년 런던판 제1권 제10장을 보라.—159페지

81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57～58페지를 보라-159페지

82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707페지를 보라.—163페지

83 A. 쉐르뷜리에 《부 또는 빈곤. 사회적부의 현 분배의 인과》 1841년 빠리판. 쉐르뷜리에의 일반리윤률의 형성에 관한 견해를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특별히 고찰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XVIII 1109～1110페지를 보라.—178페지

84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54～255페지를 보라.—180페지

85 T. 코비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혹은 무역과 투기원리의 해석》 1841년 런던판. 코비트의 관련 론술에 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083～1084페지를 참조하라.—186페지

86 《잉여가치학설》을 두고 말한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 220～221, 259～263페지, 노트 VII 319페지, 노트 XVI 994페지를 보라.—188, 880, 886페지

87 T. L. 말사스의 《정치경제학원리》 1836년 런던 제2판 268페지.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72페

지, 노트 XIII 765~766페지, 노트 XVI 974페지에서 자본의 매개부분은 균등하게 리윤을 생산한다는 말사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190페지

88 Th. 코비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또는 무역과 투기의 원리에 관한 설명》 1841년 런던판. 코비트의 관련 론술에 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076~1077페지를 보라. —191페지

89 **정주법**(Settlement Laws)은 1662년부터 영국에서 실시된 법률인데 사실은 농업로동자들의 타지방이주의 권리를 박탈한 법률이다. 정주법은 빈민구제법(주해 301을 보라)의 구성부분이기도 한데 빈민구제소에 구제청구를 한 농업로동자에 대해 그들은 모두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출생지 또는 상주지에 돌아가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립법은 로동자들의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따라서 고용주들에게 로동자들의 임금을 최저한도까지 인하할 조건을 지어주었다. 1854년 2월 10일 하원에 제출된 법안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빈민의 강박적인 이주를 금지시킬데 대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195페지

90 G. L. 마우레르의 저서 《마르크, 농가, 촌락, 도시 제도 및 공공정권의 력사개요》 1854년 뮌헨판, 《독일에 있어서의 마르크제도의 력사》 1856년 에를랑겐판, 《독일의 부역농장, 농가 및 농가제도의 력사》 1862~1863년 에를랑겐판 제1~4권, 《독일에 있어서의 촌락제도의 력사》 1865~1866년 에를랑겐판 제1~2권, 《독일에 있어서의 도시제도의 력사》 1869~1871년 에를랑겐판 제1~4권을 보라.

L. H. 모르건의 《고대사회 또는 미개에서 야만상태를 경과하여 문명에 이르는 인류진보의 경로의 연구》 1877년 런던판. 아울러 엥겔스의 《가족, 사유제와 국가의 기원》을 보라. —198페지

91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07페지를 보라. —198페지

92 D.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판 제3판 60~61페지를 보라. 아울러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80페지를 참조하라. —200페지

93 D.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판 제3판 15페지를 보라. 아울러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26～527페지를 참조하라.—200페지

94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424, 438페지를 보라.—203페지

95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419～431페지를 보라.—203페지

96 이러한 견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보라. D.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60～61페지, H. 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또는 국민의 번영을 결정하는 원리의 설명》 1815년 뻬쩨르부르그판 제2권 78～79페지를 보라.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이 견해에 대해 평가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85～487페지를 보라.—204페지

97 Th. 코비트의 가격이 최량의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또는 무역과 투기의 원리에 관한 설명》 1841년 런던판 42～44페지를 보라.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078페지에 이 견해에 대해 평가하였다.—204페지

98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0권 392페지를 보라.—211페지

99 닉명저서 《정치경제학에 있어서의 약간의 용어상 론쟁에 관한 고찰》의 저자가 인용한 이 말은 말사스의 《정치경제학원리》 1820년 런던판 75페지에서 따온 말이다.—213페지

100 Th. R. 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 1836년 런던판 77～78, 208페지.—220페지

101 D. 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36～41페지.—226페지

102 **《흉내 잘 내는 노복》**(Servum pecus imitatorum), 이것은 호라찌우스의 《서한집》에 나오는 《오, 흉내 낼줄밖에 모르는 노복들

이여!》 (O imitatores, servum pecus!)라는 말을 바꾸어 한 말이다.—226페지

103 리카도의 로임의 변동이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견해와 그 일면성에 대해서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비판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36～542페지를 보라.—226페지

104 자본주의사회의 표면상의 본질과 현상은 전도되여있다는 견해에 관하여는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0권 394페지, 제31권 163～164페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 994페지를 보라.—231페지

105 T. 코비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또는 무역과 투기의 원리에 관한 설명》 1841년 런던판 100～102페지를 보라.—232페지

106 맑스의 《잉여가치학설》 중 리카도의 리윤 관련 리론과 축적 관련 리론에 관한 장과 절을 두고 말한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673～694, 730～732페지를 보라.—237, 250페지

107 **라이트** 즉 인도농민은 18세기말 19세기초 영국식민자들이 새로운 토지조세법을 실행하기 이전까지는, 영국식민자들이 인도의 부락공동체를 파괴하기 이전까지는, 충분히 권리를 향유하는 부락공동체의 농민이였다. 1793년부터 이른바 자민다르제를 실행한 지구에서는 라이트가 자민다르(지주)의 소작농이 되였다. 19세기초에 뭄바이와 마드라스 두 관할구에서 《라이트와르》 토지조세제도를 실행한후 라이트는 국유토지의 소유자가 되였고 인도영국정부가 제멋대로 규정한 수액에 따라 지대를 납부하였다. 《라이트와르》 제에 근거하여 라이트들은 동시에 그들이 소작맡은 토지의 소유자가 되였다. 이 법률상 모순되는 토지조세제도를 실행한 바람에 농민들에게 납세하기 어려운 높은 지대가 정해졌고 따라서 미납세금이 날로 쌓이면서 농민들의 토지는 점차 고용주와 고리대금업자에게로 넘어갔다.—239페지

108 로동이 아직 형식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되고있지 않은 나라들에서

의 리자와 리윤의 관계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 1314～1315페지, 노트 XV 944～945페지를 보라.—239페지

109 빈궁이 인구를 산생한다는데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 1342페지를 보라.—243페지

110 《자본론》 제1권에서 서술한 자본주의축적의 절대적법칙과 일반적법칙을 두고 말한다.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742페지를 보라.—247페지

111 **《그의 눈물은 이때문에 생긴다!》**(Hinc illae lacrimae!)는 말은 로마의 극작가 푸블리우스 테렌찌우스의 희극 《안드로스의 처녀》 제1막 제1장에 있는 말이다.—249페지

112 W. 로쉐르의 《국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스투트가르트-오그스부르그 증보판 제3판 제108절 192페지를 보라.—250, 343페지

113 스미스의 리윤에 관한 리론에 대해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52～560페지를 보라.—250페지

114 **양도리윤**(Profit upon Alienation)은 J. 슈트어트가 《정치경제학원리》 1805년 런던판 제1권 244페지에서 사용한 용어로 이 말은 자본가의 리윤은 상품을 그 가치이상으로 높게 파는데서 온다는 뜻이다.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이 표현법을 분석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 220～221페지를 보라.—256, 367페지

115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67～373, 381～383, 462～465, 470～472, 697～699, 717～722페지를 보라.—256페지

11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68～369페지를 보라.—256페지

117 비속한 경제학자의 이 방법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891, 912, 922페지를 보라.—256페지

118 리카도의 리윤률에 대한 대외무역의 영향에 관한 견해는 그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제7장을 보

라.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리카도의 이 그릇된 견해에 대해 분석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 637페지, 노트 XIII 672～673페지를 보라.—264페지

119 리카도의 잉여가치와 로임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는 맑스가 《잉여가치학설》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 655～656, 659～660페지를 보라.—269페지

120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 1006페지를 참조하라.—270페지

121 E. 웨스트의 《토지에의 자본의 사용에 대하여. 아울러 곡물수입을 엄격히 제한한 실책에 대하여》, 옥스퍼드대학 학원의 한 연구원의 저술, 1815년 런던판.—270페지

122 리카도의 산업리윤에는 전부의 잉여가치가 포함되여있다는 이 가정에 대하여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에서 평가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52페지를 보라.—271페지

123 잉여가치의 생산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직접적목적이며 결정적동기라는것에 관하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705페지를 보라.—272페지

124 높은 리윤률과 로동일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881페지를 보라.—274페지

125 T. 찰머즈 《정치경제학과 사회의 도덕상태 및 도덕의 미래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1832년 글라스고 제2판 88～89페지 및 이하 몇페지를 보라.—274페지

126 영국국교회 즉 잉글랜드 성공회를 두고 말한다. 영국국교회는 구라파종교개혁운동시기에 영국에서 생겨났다. 그당시 잉글랜드의 신귀족들과 자산계급은 로마교황이 영국의 사무를 간섭하는것에 대해 날이 갈수록 불만해하였다. 1533년에 영국국왕 헨리8세는 잉글랜드교회가 로마교황청에 공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1534년에는 국회를 재촉하여 《지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

안은, 잉글랜드교회는 더 이상 교황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국왕이 최고원수이며 잉글랜드교회를 잉글랜드지구의 국교로 하고 영국국교회라 칭한다고 규정하였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등지의 성공회는 모두 국교가 아니며 조직상 영국국교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잉글랜드성공회는 초기에 교의와 의식, 조직제도에 있어서 대부분 천주교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17세기이후에는 갈빈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274페지

127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 1002페지 및 이하 몇페지를 보라.—275페지

128 이 말은 잉여가치률이 같은 전제하에서만 정확하다. 례하면 하루에 2시간밖에 로동하지 않는 24명의 로동자가 매 사람이 매일 10분간의 잉여로동만 제공한다고 하자. 그런데 하루에 12시간의 로동을 하는 2명의 로동자는 매 사람이 매일 6시간의 잉여로동을 제공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2명의 로동자가 제공하는 잉여로동은 24명이 제공하는 잉여로동의 3배가 된다.—276페지

129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0권 390～391페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 1310페지를 참조하라.—279페지

130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 1005페지를 보라.—279페지

131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706～708페지, XVI 1006페지를 보라.—286페지

132 맑스는 여기에서 분명히 D.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판 341～342페지를 두고 말한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711～712, 722페지를 보라.—286페지

133 D. 리카도는 그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판 339～340페지에서 이 견해를 갖고있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710～711페지를 보라.—286페지

134 맑스의 리카도의 이 견해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

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497페지를 보라.—288페지

135 로동생산성과 자연조건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또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 1010～1011, 1014페지를 보라.—289페지

13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450～452페지를 보라.—292페지

137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 1014～1017페지를 두고 말한다.—292페지

138 이상 몇 단락의 글(본권 292～294페지)은 엥겔스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 1018～1021페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시 쓴것이다.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717～724페지를 보라.—294페지

139 리윤률저하에 관한 론술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 1023～1025페지를 참조하라.—295페지

140 L. 죠운즈의 관련 견해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132～1133페지를 보라.—295페지

141 이상 몇단락의 글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137페지를 참조하라.—296페지

142 리카도와 몇몇 사람들이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을 혼동하고있는것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72～973페지를 참조하라.—297페지

143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101～115페지를 보라.—297페지

144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71～175페지를 보라.—298페지

145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116～137페지를 보라.—299페지

146 이 단락과 그 이하의 7단락의 론술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65～967페지를 참조하라.—305페지

147 이 단락부터 이 장이 끝나는데까지의 론술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68～971페지를 참조하라.—309페지

148 뉴먼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075페지를 참조하라.—311페지

149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138～145페지를 보라.—313페지

150 상인자본이 생산적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 또는 리윤중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을 어떻게 끌어오는가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73페지를 참조하라.—314페지

151 J. 벨러즈의 《빈민, 공업, 무역, 식민지 및 도덕적타락에 대하여》 1699년 런던판 10페지에 있는 한 단락의 말 즉 《한 대가정에 있어서의 심부름군이나 사무원, 집사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 있어서 상인들은 각 군과 각 지구에 필요되는 물품을 타지방으로부터 공급하기 위해 근로인민이 생산한 각종 물품을 들여온다. 상인들이 상업에서 얻는 리윤은 그들의 로동의 보수인것이다…비록 상인은 분배령역에 있어서는 유용한 사람들이지만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로동뿐일것이다…》는 말을 두고 하는듯 하다.—319페지

15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 1030, 1035페지를 참조하라.—327페지

15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 1032페지를 참조하라.—333페지

154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 1033～1034페지를 참조하라.—335페지

155 이상 3단락의 론술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64페지, XVII 1034, 1035페지를 참조하라.—336페지

15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470～477페지와 478～483페지를 보라.—340페지

157 **화란동인도회사**는 1602년부터 1798년까지 존재하였다.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화란인의 식민주의략탈정책의 도구였다. 회사는 무역독점권은 물론 정부직권도 갖고있었다. 회사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전 자본주의적생산관계(노예점유제관계와 봉건관계)

를 공고히 하고 보존하며 화란인을 위하여 복무하는 봉건적관료기구인 토착정권의 방조하에 피정복주민을 략탈하였다. 회사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출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의하여 거액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후에는 강제적으로 새로운 농작물(특히 커피)을 도입시키고 그 수확을 전부 회사가 점유하였다. 화란인의 잔혹한 착취와 압박은 인도네시아인민들의 대규모봉기를 유발하였으며 화란공화국이 전면적으로 쇠퇴하면서 회사는 1798년에 해산을 선고하였다.—342, 367페지

158 T. 코비트의 이 말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077페지에서 가져온것이다.—342페지

159 《자본론》 제1권 제15장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량적변동》(《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593～606페지)을 보라.—343페지

160 맑스가 1857～1858년 경제학 친필원고 집필과정에 형성한 경제학 리론구조계획에 따르면 그는 자본을 《일반성》, 《특수성》, 《개별성》 등 몇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가 완성한 《자본론》은 대체상 《일반성》의 범위에 든다. 그러나 《각 자본의 경쟁》은 《특수성》의 범위에서 상세히 연구할 문제에 속해야 하기때문에 《자본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0권 220, 233～234페지를 참조하라.—346, 401페지

161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55～356, 367～368, 621～622, 656페지를 참조하라.—348페지

16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 1036페지를 참조하라.—353페지

163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443페지를 보라. 《자본론》 제1권에도 화폐는 교환과정의 산물이라는 서술이 있다.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06～107페지를 보라.—353페지

164 로마와 희랍의 환자업에 관해서는 K. D. 휠만 《중세기의 도시제도》 1826～1827년 본판 442～450페지를 보라. 맑스의 《런던필기》 노트 XVII에도 이 책에서 적록한것이 있다.—354페지

165 이상의 4단락의 론술에 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 1037, 노트 XV 963, 960~961페지를 참조하라.—356페지

166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63페지를 참조하라.—360페지

167 W. 로쉐르가 생산자체를 《매개》라고 한것에 대해서는 그의 《국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스투트가르트-오그스부르그 중보판 제3권 제60절 103페지를 보라.—361페지

168 W. 로쉐르는 1848년부터 라이프찌히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라이프찌히적교육》이라고 하는것은 로쉐르의 설교를 들었음을 암시한다.—361페지

169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672페지, 노트 XV 972~973페지를 참조하라.—362페지

170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47~947a페지를 참조하라.—366페지

171 고대 희랍의 철학자 에페쿠로스에게 있어서 세계는 무수하다. 이 무수한 세계는 그 자체의 자연법칙에 따라 생기고 존재한다. 비록 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신은 이 세계의 밖에, 이 세계의 간극에 끼워 존재하므로 우주의 발전이나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368, 677페지

172 이 단락과 이하 3단락에 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47, 949페지를 참조하라.—368페지

173 마르틴 루테르의 《상거래와 고리대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말인데 이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마르틴 루테르박사의 저작집 제6부》 1589년 위텐베르그판 296~297페지를 보라.—369페지

174 **지리적발견**이란 꾸바, 아이띠, 바하마군도의 발견, 북아메리카대륙의 발견, 아프리카남단을 에돌아 인도에 이르는 항로의 발견 및 남아메리카대륙의 발견을 두고 말하며 이 발견에 의하여 세계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식민지략탈이 시작되였으며 구라파자본의 원시축적이 가속화되였다. 지리적발견이 있은후 이딸리아북부의 제노바, 베네찌아 등 상업도시가 그 역할이 상실되고 뽀루뚜갈,

네델란드, 에스빠냐와 영국이 대서양에 면한 위치의 덕분에 세계 무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였다. —371, 1022페지

175 J. 매씨의 익명의 저서 《자연적리자률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이 론제에 관한 W. 페티경과 로크씨의 의견에 대한 검토》, 1750년 런던판 60페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 1300페지를 참조하라. —371페지

176 **해불리트탑구역**은 런던동부의 구역이다. —373페지

177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156페지를 참조하라. —374페지

178 J. H. M. V. 포페의 《과학의 부흥으로부터 18세기말까지의 공예학력사》 1807년 괴팅겐판 제1권 70페지를 보라. —374페지

179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00페지를 참조하라. —375페지

180 **중상주의**에 관해서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67～168, 181페지를 보라. —375, 886페지

181 화폐의 두가지 대부형식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33페지를 참조하라. —384페지

182 《신용의 무보상성. F. 바스띠아씨와 쁘루동씨간의 론쟁》 1850년 빠리판 9페지에서 인용한 이 말은 《인민의 소리》 지 편집자중의 한 사람인 S. F. 셰워에게서 나온 말이다. 셰워는 《신용의 무보상성》이란 책의 《첫번째 서한》의 저자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36페지를 함께 보라. —386페지

18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893～894페지를 참조하라. —390페지

184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04～905페지를 참조하라. —398페지

185 J. 매씨의 이 말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 1300페지에서 따온 말이다. —406페지

186 G. 오브다이크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론술》 1851년 뉴욕판 86～

87페지에는 이런 한 단락의 말이 있다. 《한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는 그 돈이 발휘하는 역할이나 용도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리자라고 한다. 이런 보수는 일반적으로 매년 빌려준 돈액수의 3～9%에 해당한다. 물론 특수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따라서 평균치는 대략 6%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과 손실위험을 감안하여 1%를 덜어낸다면 나머지 5%가 매년 화폐형태 자본의 평균 순리득이 된다. 화폐는 생산자본의 매 하나의 기타 형태와도 상호교환이 가능하며 그것도 그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동등한 액으로 상호교환이 가능하기때문에 매년의 그 5%는 또한 매 하나의 생산자본의 평균 순리득이 된다. 그리고 생산자본은 토지와도 동등한 액으로 상호교환이 가능하므로 토지의 년간 순리득 역시 5%인셈이다.》—407페지

187 맑스는 K. 아른드를 풍자적으로 《축견세의 철학가》라고 불렀다. 그것은 이 저자가 자기의 저서의 제88절에서 축견세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전문적으로 론증하였기때문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57～1858년 친필원고)》 노트 VII 51페지(《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264페지)와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 923페지를 참조하라.—407페지

188 이 단락부터 이 장이 끝나는 때까지의 론술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896～899페지를 참조하라.—413페지

189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16～917페지를 참조하라.—421페지

190 J. 매씨의 익명의 저서 《자연적리자률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이 론제에 관한 W. 페티경과 로크씨의 의견에 대한 검토》 1750년 런던판 49페지, D. 흄의 《리자에 관한 론술》(1752년에 세상에 빛을 본 이 글은 D. 흄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론술》(2권집)제1권, 1764년 런던신판, 329～336페지에 수록되여있다)을 보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 1293a～1294a페지, 노트 XXI 1300～1301페지를 참조하

라.—422페지

191 G. 램지의 리자에 관한 견해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099페지를 참조하라.—425페지

19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14페지를 참조하라.—428페지

193 자본소유자와 구별되는 산업자본가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16페지를 참조하라.—429페지

194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편 제6장을 보라. 아울러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18페지를 참조하라.—431페지

195 **빌리쿠스**(Villicus)는 노예제농장의 농장관리인이다. 고대 로마시절의 빌리쿠스는 관리인으로서 농업노예들의 우두머리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노예들이 하는 일보다 수월하였기 때문에 받는 보수도 노예들에 비해 적었다》(T. 몸젠의 《로마사》 1856년 제2판 제1권 809～810페지를 보라).—432페지

196 **마곤의 농서**는 까르타고의 저술가 마곤이 농업에 관하여 쓴 저서이며 특히는 까르타고에서 대단히 발달한 노예제에 기초한 대농장경영에 대하여 론술한 책이다. 이 저서는 도합 28권으로 되여 있으며 집필년월일은 똑똑하지 않다. 이 저서는 까르타고가 멸망된후 로마원로원의 비준에 의하여 라틴어로 번역되였으며 로마농업의 합리적인 조직을 위한 모범저서로 공식적으로 추천되였다.—432페지

197 1859년 12월 20일부 《뉴욕 데일리 트리뷴》지 제5822호를 보라.—433페지

198 A. 유어의 이 말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 1250페지를 참조하라.—434페지

199 속물경제학자들의 이 견해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18, 923페지를 참조하라.—435페지

200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18～919페지를 참조하라.—437페지

201 이 장의 시작부터 여기까지의 론술에 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891～899페지를 참조하라.—443페지

202 《**가슴속에 사랑이 싹텄다**》는 괴테의 《파우스트》 제1부 제5장(《라이프찌히의 아우에르바흐술집》)을 보라. 맑스는 《자본론》 제1권 제5장 제2절 《가치증식과정》(《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27페지)에서 자본은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라고 서술하면서 《사랑에 번민하듯》 《일》 한다고 하였다.—443페지

203 마르틴 루테르의 고리대를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37～938페지에 론술되여있다.—443페지

204 **스콜라학**은 구라파 중세기기독교회 학원에서 나타난 일종의 철학인데 그들은 철학을 《신학의 하녀》로 보면서 번쇄한 론증을 통해 기독교의 교의와 신조를 설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개개의 사물에 있어서 일반속성(신이 창조한다는)은 영구하다는것이다. 어떠한 사물이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숨어있는 자질》 즉 그것에 고유한 속성을 찾는데 있다는것이다.—444페지

205 W. 피트의 상환기금에 관해서는 맑스가 1858년 4월에 집필한 《디스레리씨의 예산》을 보라. 맑스가 L. 프라이스의 복리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비판한것에 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I 47～48페지(《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254～255페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066～1068페지를 보라.—444페지

206 T. L. 말사스의 《인구원리》 1798년 런던판 25～26페지를 보라.—446페지

207 《경제학자》지의 이 말을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067페지에서 따온 말이다.—447페지

208 J. S. 밀의 《정치경제학원리 및 그것이 사회철학에 있어서의 일

부 응용》 1849년 런던 제2판 제1권 91~92페지, H. Ch. 캐어리의 《사회과학원리》 1859년 필라델피아판 제3권 71~73페지, W. 로쉐르의 《국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스투트가르트-오그스부르그 증보판 제3판 제45절을 보라.—448페지

209 T. 호지스킨의 복리문제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879~889페지에 상세한 론술이 있다.—449페지

210 **수형교환소**는 1775년 런던 롬바드거리(주해 213을 보라)에 있는데 잉글랜드은행과 런던의 기타 대은행들이 그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수형교환소는 이들 은행의 수형과 수표 등으로 그들간의 채권을 상쇄하여주는 일을 전담하고있다.—451페지

211 **위탁판매**(consignatio)는 국외에서 상품을 대리판매하는 한 형태이다. 수출상(위탁판매인)이 상품을 국외위탁판매상(대리판매인)의 창고에 실어가면 대리판매인은 쌍방이 맺은 서면계약의 조건에 따라 상품을 대리판매하게 된다.—459, 556페지

212 **1844년 은행법**의 내용과 의의에 관해서는 본권 제34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영국의 은행립법》을 보라.—460, 476, 490, 536, 608, 640페지

213 **롬바드거리**는 런던의 금융중심지인 씨티구에 있는 거리인데 대은행들이 이 거리에 자리잡고있다. 런던금융시장의 동의어로 쓰인다.—461, 564페지

214 **민씽골목**은 런던에 있는 거리인데 식민지산 상품도매중심지이다.—461, 564, 635페지

215 **오버렌드-거니회사**는 19세기중엽 영국 런던 증권업과 금융업중의 대주주회사의 하나로 《은행업자의 은행업자》로 불리기도 하였다. 거니가 죽고 10년이 지난 1866년 5월 10일 동 회사는 1,100만파운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되였고 이는 당시 런던주식시장의 유명한 《암흑의 금요일》 공황을 야기시켰다. 거니의 투기에 관해서는 맑스와 엥겔스가 쓴 《인민과 경찰의 충돌—크림사건에 대한 론술》을 참조하라.—463페지

216 **1847년의 공황**은 40년대중반에 영국에서 곡물의 흉작으로 말미

암아 생활수단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서 잉글랜드은행의 황금이 대량으로 국외로 빠져나간것이 그 원인이였다. 1847년 4월 화폐시장에서 공황이 발생하였고 같은 시기에 곡물시장에 상품이 가득차면서 대량의 화폐와 대부가 필요하게 되였다. 1847년 10월에 공황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1844년 필 은행법(본권 제34장을 보라)의 집행정지로 하여 잉글랜드은행은 신속히 화폐공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공간을 찾게 되였다. 그러나 경제공황의 근본원인으로 되였던 생산과잉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465, 471, 549, 629, 670페지

217 1849년 10월 25일 J. 라슬경의 1844년 필 은행법의 집행(본권 제34장을 보라)을 정지할데 관한 통고서한을 두고 말한다. 1847년에 영국은 황금비축이 줄어들면서 잉글랜드은행권의 발행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동 은행의 발행부는 발행량의 고갈로 인하여 파산당하게 되였다. 라슬내각은 10월 23일에 필 은행법의 잠정적인 집행금지를 결정하였다. 라슬경은 25알 정부서한의 형식으로 이 결정을 정식으로 통고하였다.—469페지

218 《**통화원리**》(Currency principle) 또는 《**통화학설**》(Currency theory)은 19세기 영국에서 널리 류행되였던 통화리론으로서 1825년에 나타나기 시작한 자본주의주기성발전에 대한 자산계급 경제학자들의 일종 반응이였다. 이 학설은 리카도의 화폐수량설에서 출발하여 상품의 가치와 가격은 류통분야의 화폐수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안정적인 화폐류통을 유지하는것이였으며 은행권의 필수적인 황금담보와 귀금속수출입 상황에 근거한 은행권발행량의 조절이 이 목적에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 《통화학설》파는 생산과잉에 의한 경제공황의 결정적원인이 그들에 의해 선포된 화폐류통법칙을 위반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 리론의 대표인물로는 S. J. 로이드(1850년부터는 오버스턴남작), R. 토런즈, J. W. 노르만, W. 클래어, J. 아버스넛 등이였다. 그들은 금속류통의 추상적법칙을 은행권발행에 적용시킬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금속화페이외에 은행권을 역시 《통화》라고 하였다.

이 리론에 립각한 영국정부의 여러가지 시도(1844년 은행법과 1845년 은행법을 포함하여)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 리론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실천상에서도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였을뿐이다(본권 제34장과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576~579페지를 보라).—472, 506, 622페지

219 **류통자본**과 류동자본의 구별에 관해서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186~188페지를 보라.—476페지

220 1857년 8월의 공황에 관해서는 맑스와 엥겔스 1857년 12월의 통신을 보라.—477, 497, 629, 640페지

221 **크림전쟁**은 1853~1856년에 로씨야가 영국, 프랑스, 토이기, 사르데냐의 련합군과 벌인 전쟁을 말한다. 이 전쟁은 근동에 있어서의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리익이 충돌되면서 발생한 것이며 이 전쟁을 동방전쟁이라고도 한다.—479페지

222 **1792~1815년전쟁** 즉 반자꼬벵전쟁은 영국, 프로시아, 오지리와 로씨야 등 나라들이 참가한 구라파국가동맹이 프랑스공화국을 반대하여 나뽈레옹의 프랑스와 진행한 수차의 전쟁을 두고 말한다. 영국은 1793년에 전쟁에 참가하였다. 전쟁기간에 영국정부는 근로자를 반대하는 테로정부를 수립하였다. 영국통치자들은 각종 인민봉기를 진압함과 동시에 모든 로동자들의 결사를 반대하는 법령을 반포하였다. 자산계급은 이 시기에 근로시간을 10시간에서 12, 14시간과 18시간으로 연장할것을 요구하였다.—479, 706페지

223 에르멘-엥겔스상사를 두고 말한다.—486페지

224 리카도적화폐론은 그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제7장 《대외무역에 관한 론술》을 보라. 맑스의 이 리론에 대한 비판은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 제2장(《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569~574페지)을 보라.—487페지

225 **빠나마운하사기**는 빠나마운하주식회사가 프랑스의 국가활동가, 판원 그리고 신문을 매수하여 만들어낸 사기극이다. 기사이며 실업가인 페르디낭 레쎕스는 빠나마지협을 지나는 운하를 파는데 필

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1879년에 프랑스에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1888년에 파산되였다. 그 결과 소주주들이 파멸되고 다수의 기업소가 파산되였다. 그후 1892년에 알려진바에 의하면 이 회사는 진실한 재정상태와 주주들이 불입한 자금을 랑비한 상황을 숨기기 위하여 매수 또는 뢰물공여 등의 수단을 널리 사용하였던것이였다. 왕년의 프랑스 내각 총리 프래씨내, 루비에, 플로깨 및 기타 요직에 있는 관원들이 모두 뢰물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1893년에 빠나마운하회사사건은 자산계급 법정에 의해 슬그머니 마무리되였다. 회사의 사장 레쎕스와 일부 부차적인 인물들의 유죄를 선고받는데 그치였다. 《빠나마》란 이 말은 한 때 사기극의 대명사로 통하였다. 엥겔스는 1892년 12월 31일 F. A. 조르게에게 보낸 편지에서 빠나마사건에 대해 이야기한적이 있다.—498페지

226 맑스는 《국제로동자협회 창립선언》(1864년 10월)에서 **로동자들 자신의 협동조합공장**을 《위대한 사회실험》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499페지

227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31～74페지를 보라.—504페지

228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499페지를 보라.—508페지

229 귀금속을 유일한 진정한 부라고 생각하는 **중금주의**는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552～554페지, 제44권 101페지를 보라.—513, 649, 670, 887페지

230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543～547페지,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68～170페지를 보라.—514페지

231 아마도 윌리엄 페티의 저서 《현자에게는 한마디면 족하다》의 제8페지에 있는 한 구절의 말을 두고 말하는것 같다. 그 말은 이러하다. 《가령 매년 자국의 자본이나 부의 수입이 1,500만파운드에 지나지 않고 지출은 4,000만파운드에 이른다고 하자. 그러면 부족한 2,500만파운드는 인간의 로동에 의해 제공되여야 할것이다.…매년 1,500만파운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왕국의 자본가치가 2조 5,000만파운드라면 2,500만파운드를 생산하는 인간의

가치는 $416\frac{20}{30}$ 만파운드일것이다.》—528페지

232 **2월혁명**이란 1848년 2월에 일어난 프랑스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두고 말한다. 금융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7월왕조》는 극단적인 반동정책을 실시하면서 모든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반대하고 자본주의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무산계급과 농민을 보다 가혹하게 착취하여 전국인민의 불만을 자아냈다. 농업의 흉작과 경제공황은 국내모순을 가일층 격화시켰다. 1848년 2월 22～24일에 빠리에서 혁명이 일어나 《7월왕조》를 무너뜨렸다. 자산계급공화파는 림시정부를 건립하고 프랑스제2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2월혁명은 구라파 1848～1849년 대혁명중의 제1차혁명이였다. 무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이 이 혁명에 참가하였지만 혁명의 성과는 자산계급의 몫이 되였다.—531페지

233 A. 스미스의 저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848년 애버딘-런던판 236페지.—534페지

234 자본의 소위 과다에 관하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706～708페지를 참조하라.—539, 573페지

235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470～473페지를 보라.—544페지

23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473페지를 보라.—551페지

237 1842년 영국침략자가 아편전쟁이후 청조정부를 강박하여 체결한 《남경조약》을 두고 말한다.—551페지

238 엥겔스는 1885년초부터 공황의 순환주기의 변화(그 시기 그가 쓴 글 《1845～1885년의 영국》을 보라)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는 1886년 《자본론》 제1권 영문판 서문(《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34～35페지)에서, 그리고 1887년 《영국로동자계급의 형편》 미국판 서문 《영국의 로동운동》에서 공황의 순환주기의 변화를 다시한번 언급하였다.—544페지

239 **오스트랄리아와 캘리포니아의 금광**은 각각 1851년과 1848년에 발견되였는데 이들 금광의 채굴은 자본주의국가의 공업과 증권거래소를 발전시키는 자극제가 되였다. 금광이 발견되면서 일어난

영향에 관하여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40～141페지, 860～861페지를 보라.—568, 601, 641페지

240 산업자본가가 수행하는 현실적축적에 관하여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653～887페지를 보라.—568, 887페지

241 **절약과 금욕**에 관하여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23～224, 264, 682～691페지를 보라.—574페지

242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41～142페지, 162～163페지를 보라.—591페지

243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64페지를 보라.—593페지

244 **《스코틀랜드인은 금을 싫어하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의 한 은행의 중역인 윌리엄 켄니디가 상업곤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본권 중문판 637페지를 참조하라.—595, 670페지

245 **은행제한법**(Bank Restriction Act)은 1797년 5월에 영국정부가 반포한 법령이다. 이 법령은 잉글랜드은행권의 강제성통용력을 규정하고 은행권의 금태환을 폐지하였다. 1819년에 은행권의 금태환을 회복할데 관한 법령이 통과되였다. 실제상 이 금태환은 1821년에야 완전히 회복되였다. 은행제한법의 발효시기는 1799～1819년이였다. 맑스는 여기서 이 법의 실시기간을 1797년～1820년이라 적었다.—601페지

24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435～549페지를 보라.—602페지

247 **배심정**은 영국 최고법원의 법관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을 말한다.—607페지

248 **동인도회사**는 영국의 무역회사로서 1600～1858년기간에 존재하였다. 이 회사는 인도, 중국 및 아시아 기타 나라들에서의 영국의 략탈적식민정책의 도구였다. 18세기중엽부터 이 회사는 군대와 함대를 보유함으로써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였다. 이 회사의 명의하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인도에 대한 점령을 완성하였다. 이 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인도에 대한 무역을 독점하였으며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리기능을 조종하였다. 1857～1859년 인도의 민족해방봉기는 영국인들로 하여금 이 회사를 해산하고 인도를 대브리텐왕국의 령지로 선포하도록 강요하여 그들의 식민지지

배의 형태를 개변시켰다.—607페지

249 **버밍엄학파 또는 소실링론자**로 불리우는 **버밍엄의 애트우드학파**는 19세기상반기에 영국에서 생긴 경제학학파이다. 이 학파의 추종자들은 관념적인 화폐도량에 관한 리론을 창도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화폐를 단순히 계산명칭으로 간주하였다. 이 학파의 대표자 토마스 애트우드 및 머사이어스 애트우드형제와 스푸나 및 기타 사람들은 영국의 화폐단위의 금함유량을 인하시킬데 관한 안을 내놓았는데 이 안은 《소실링안》이라고 불리웠다. 이 학파 자체의 명칭도 여기서 온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실링론자》들은 류통화폐량의 축소를 목적한 정부의 조치를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리론대로 하면 물가의 인위적인 인상을 통하여 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의 보편적인 번영을 확보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제안한 화폐가치저락의 방법은 다만 국가의 채무나 각종 신용의 주요령수자들인 대기업주들의 채무를 가치가 저락된 화폐로써 상환하게 하는데 복무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정한 리득을 가져다주었을따름이다. 맑스의 버밍엄학파에 대한 평가는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476～477페지, 제44권 269페지를 참조하라.—610, 634페지

250 하이네의 풍자시 《종교토론》(시집 《로만쩨로》)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시에는 중세기 천주교의 카프찐 수도승과 유식한 유태교 라비 사이에 벌어진 론쟁이 묘사되여있다. 라비는 이 변론에서 유태교의 성경 《타우스베스 욘트브》를 인용한다. 카프찐수도승은 이에 대하여 《타우스베우 욘트브》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대답한다. 라비는 이에 분노하여 이렇게 소리지른다. 《이제는 〈타우스베우 욘트브〉는 아무 쓸모도 없는가? 대체 무엇이 쓸모가 있는가? 살려다우!》—611페지

251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564～574페지를 보라.—619페지

252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568～569페지를 보라.—620페지

253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577～579페지를 보라.—

622페지

254 1851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천국봉기를 두고 말한다.—625페지

255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476~477페지를 보라.—634페지

256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255~265페지를 보라.—636페지

257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541페지,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62페지를 보라.—649페지

258 1848년에 프랑스 2월혁명(주해 232를 보라)을 계기로 구라파 각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혁명을 두고 말한다.—670페지

259 《**구제하는것은 신앙이다**》는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한것이다. 《신약전서 · 마가복음》 제16장 제16절 《신앙하고 세례를 받는자는 구제받을것이다.》를 보라.—670페지

260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71, 191, 583, 860페지를 참조하라.—671, 688페지

261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53~158페지를 참조하라.—671페지

262 《생산자로부터의 생산조건들의 이러한 소외》에 관하여는 맑스의 《1844년 경제학철학 친필원고》중의 《소외로동과 사유재산》(《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권 39~53페지)에 이미 론술되여있다.—674페지

263 이상 네 단락의 론술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38~939페지를 참조하라.—675페지

264 칼 휠만의 이 서술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44페지에서 따온것이다.—676페지

265 이상 세 단락의 론술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45, 946, 947b~948페지를 참조하라.—678페지

266 **공영전당포**(Monts-de-piété)는 14, 15, 16세기에 이딸리아와 프랑스에서 소고리대금업자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설립되였다. 그 창설자들의 의도는 이 전당포를 복지시설로 하여 빈민들에게 담보부로 소액신용을 주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공영전당포는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리로운 역할을 하였다.—680페지

267 H. 체임벌린 《지주의 일반적리익, 지가의 대등귀, 무역과 상공업의 적지 않은 리익을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하여 설립한 확실한 류통신용의 은행을 위한 에쎅스거리의 H. 체임벌린박사의 제안》, 1695년 (런던판).

J. 보리스코우 《백만기금법, 복권법 및 잉글랜드은행의 최근의 기금에 관한 론술. 이러한 기금이 귀족과 신사계급들에게는 유해하며 국가의 무역에 대해서 파괴적임을 명시함. 국립농업은행에 의하여 국왕에게 우대조건으로 화폐를 제공하고 귀족, 신사들의 조세를 면제하여 그들의 년수입을 증대시키며 국왕의 전체 신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제안을 첨부》 1696년 런던 제3판—680페지

268 **자유농민**이라 함은 인신자유가 있으나 지주의 땅을 경작하는 농민을 두고 말한다. 영국의 자유농민에 관하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I 1403, 1406, 1410, 1452페지와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829~233페지를 보라.—680, 911페지

269 《오해된 화폐리자에 관하여. 또는 리자인하는 국가의 부유의 결과이지 국가의 부유의 원인이 아니며 6%의 리자률은 왕국의 현 상황에서는 합리적임을 론증함.》은 1668년 런던에서 출판된 익명의 저서이다. 현재 아직 토머스 맨리가 그 저자임이 증명되지 않고있다.—682페지

270 스코틀랜드의 재정경제학자 죤 로를 가리킨다. 로는, 국가는 태환불가능한 은행권을 류통에 투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나라의 부를 증대시킬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16년에 그는 프랑스에서 한 개인은행을 설립하였다. 이 은행은 1718년에 국립은행으로 개편되였다. 로의 은행은 무제한으로 신용권을 발행한 동시에 류통으로부터 금속화폐를 회수하였다. 그리하여 거래소의 공거래와 대투기가 전례없이 성행하였으며 드디여 1720년에는 이 국립은행은 철저히 파산되고 《로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682페지

271 이 말은 《은행신용. 또는 신용은행의 유용성 및 안전성의 연구. 시골귀족과 런던상인 사이의 담화》에서 인용하였다. J. 프란씨

스의 저서 《잉글랜드은행사》, 1848년 런던 제3판 제1권 39~40 페지를 보라.—683페지

272 **동산신용은행**(Société générale du Crédit Mobilier)은 프랑스의 대주식은행으로서 1852년에 에밀 뻬레르와 이삭 뻬레르 형제에 의하여 창립되고 1852년 11월 18일에 법적비준을 받았다. 동산신용은행의 주요목적은 신용매개와 산업적 및 기타 기업의 창설에 참여하기 위한것이였다. 이 은행은 프랑스, 오지리, 웽그리아, 스위스, 에스빠냐, 로씨야의 철도건설에 참가하였다. 이 은행의 주요수입원천은 증권거래소에서의 투기였다. 동산신용은행은 본 은행의 주식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으로 각종 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동산신용은행의 주식은 다만 본 은행이 보유하는 기타 기업의 유가증권에 의하여서만 보증되였으며 각종 회사들의 주식은 그들 자체의 재산가치에 의하여 보증되였다. 이리하여 동일한 하나의 실제적재산이 2배의 의제자본의 원천이 되였다. 말하자면 재산이 하나는 기업주식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다른 하나는 기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리용되는 동산신용은행의 주식형태로 존재하였다. 이 은행은 나뽈레옹3세 정부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었으며 그 정부의 보호하에 투기를 진행하였다. 이 은행은 1867년에 파산되였고 1871년에 청산되였다. 동산신용은행이 19세기 50년대에 새로운 형의 금융기업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구속적인 거래소공거래와 투기에 의하여 특징지어진 이 시대의 특수성에 있었다. 중부구라파의 기타 많은 나라들에서도 동산신용은행을 본받아 류사한 기관들을 설립하였다. 맑스가 동산신용은행에 대해 한 분석에 대해서는 그가 1856~1857년 사이에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 《프랑스의 Crédit Mobilier》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몇편의 글을 참조하라.—684페지

273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480~481페지를 보라.—687페지

274 쁘루동의 상품생산은 존속케 하고 화폐는 폐기하려고 생각한 견해에 관하여는 그의 《신용의 무상성. F. 바스띠아씨와 쁘루동씨의 론쟁》(1850년 빠리판)에서의 무상신용에 관한 리론을 보라.

맑스의 이 리론에 대한 비판은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255~257페지를 보라.—687페지

275 고리대는 주어진 생산방식을 착취하는것뿐이라는 론술에 대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48페지를 참조보라.—689페지

276 이것은 100굴덴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총 30%의 리자를 지불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라이프찌히에서는 매년 3차의 정기시장이 열리는데 매차 각 10%의 리자를 지불해야 하기때문이다. 이전에 라이프찌히에서는 매년 신년, 부활제(봄), 미가엘제(가을)에 3차례의 정기시장이 열렸다.—690페지

277 맑스는 다들리 노쓰의 저서 《무역론》에서 발취한적이 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II 1418~1420페지를 보라. —691페지

278 중세기 구라파에 있어서 봉건령주들은 부동산을 흔히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부동산은 교회에 양도된 이후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소위 《죽은 손》에 점유되였다고 하였다.—692페지

279 이 편의 집필과 편집에 관하여는 맑스가 1866년 2월 13일에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 1870년 1월 24일에 S. D. 바프에게 보낸 편지와 엥겔스가 1886년 11월 9일에 N. F. 다니엘슨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693페지

280 A. 스미스의 저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의 새로운 번역본에 대한 역자 R. 가르니에의 주해와 설명, 1802년 빠리판 제1권 310~336페지를 보라. 그리고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 626~627페지를 보라.—694페지

281 헤겔은 《법철학원리》 1840년 베를린 제2판 79페지 제44절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어떤 사물에든지 구현시킬수 있으며 이로써 그 사물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다. 인간은 그의 실체성의 목적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왜냐하면 사물자체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있지 않으며 인간자체의 의

지에 의하여 사물의 규정과 령혼을 얻기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모든 사물을 점유하는 절대적권리이다.》 —695페지

282 사적토지소유의 형성에 관하여는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0권 478페지 및 그 이하의 몇페지를 참조하라.—696페지

283 **클랭** 즉 씨족을 말한다. 켈트민족에게 있어 클랭은 민족이 아닌 부락을 가리키기도 한다. 씨족관계가 해체되던 시기에는 클랭이 혈연적으로 가깝고 공동의 상상적선조를 지닌 사람들을 가리켰다. 클랭 내부에는 토지공유제와 씨족제도의 오랜 관습이 보존되여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일부 지역에서는 클랭이 19세기까지 존속하였다.—696페지

284 **마르크공동체**는 원시적공산주의를 토대로 성장한 마을공동체조직이며 고대 게르만인들이 씨족공동체에서 사적토지소유제로 과도하는 시기의 사회조직형태이였다. 4~6세기에 게르만인들은 로마제국에 진입한후 각지에서 공동체조직을 이루어 정착하였다. 이밖에 마르크는 프랑스의 북부, 잉글랜드, 스웨리예, 노르웨이 및 단마르크 일대에도 존재하였다. 엥겔스가 1882년에 쓴 《마르크》라는 글(《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25권 564~584페지)을 참조하라.—696페지

285 J. W. 죤스턴 《농업과 경제 및 사회의 측면에서 본 북아메리카의 견문기》 1851년 에딘버러 및 런던판 제1권 53~54페지를 보라.—696페지

286 샤를 콩뜨의 《재산론》 1834년 빠리판 제1권 228페지를 보라.—697페지

287 맑스의 《철학의 빈곤》 제2장 제4절 《토지소유권 또는 지대》를 보라.—698페지

288 J. 앤더슨 《영국에 있어서의 현재의 곡물부족을 초래한 제 사정의 랭정한 연구》 1801년 런던판 35~36, 38페지를 보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12~513페지에서는 앤더슨의 관련 글과 H. C. 캐어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 1848년 필라델피아판 129페지의 견해를 인용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490a페

지를 보라.—699페지

289 **《열매를 소비하기 위하여 태여난자》**(Fruges consumere nati), 호라찌우스 《서한집》 제1권 제2편지 제27행을 보라.—700페지

290 J. 앤더슨은 1777년 익명의 저서 《곡물법의 성격에 대한 연구. 스코틀랜드의 새 곡물법안에 대한 론술》에서 《겸하여 지대의 성격을 연구》하였다. 이 저서의 평론에 관하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495～515페지를 보라. 앤더슨은 그후의 저서에서도 지대문제를 론한적이 있는데 맑스는 그의 이러한 저서의 내용을 발취하였다.——700페지

291 **런던 노스웨스턴**은 귀족과 대자산계급의 주택이 대거 집중되여있는 런던의 고급주택단지이다.—701페지

292 템플바는 런던의 력사적기념물로서 스트랜드거리와 플리트거리 사이에 있는 돌문이였다. 이 돌문은 씨티구와 웨스트민스터구를 련결하고있었다. 1879년에 철거되였다.—701페지

293 H. C. 케어리의 《정치경제학원리》 제1권 《부의 생산과 분배 법칙에 관하여》 1837년 필라델피아판 129～130페지를 보라.—702페지

294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II 1418～1419페지에서, 노스와 로크의 견해는 페티의 견해에 기대고있는데 후자는 고리대금업자를 수호하고 지주를 반대하면서 《화폐지대》와 《토지지대》를 동등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견해에 관하여는 윌리엄 페티의 《조세공납론》 1667년 런던판 제4장 19～27페지, 제5장 28페지, 다들리 노스의 《무역론》 1691년 런던판 4페지, 죤 로크의 《금리저하와 화폐가치 앙등의 결과에 관한 고찰(1681년)》, 안 로베르 자크 뛰르고의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0. 대르가 새로 편찬한 《뛰르고전집》 1844년 빠리판 제1권 제73, 85절)을 보라. 그리고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05～906페지를 보라.——702페지

295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668～678페지를 보라.—702페지

296 죤 커닝햄은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조세에 관한 고찰을

포함》 1770년 런던판 102페지에서, 1600년에는 토지매입가격이 《12년의 지대》에 맞먹었지만 1688년에는 《18년의 지대》에 맞먹었다고 말하였다. E. 스미스는 《순 지대를 영원한 수입으로 보는 그릇된 견해》 1850년 런던판에서, 토지가격이 그 당시 60년간 그냥 《28년의 지대에서 30년의 지대》사이에 있었다고 지적하였다.—703페지

297 1848년 7월 26일 아돌프 띠애르가 프랑스국민의회 재정위원회에서 쁘루동의 제안을 반대하여 한 연설(《국민의회 회의록》 1849년 빠리판 제2권 666~671페지를 보라.)를 두고 말한다. 띠애르의 이 연설에 관하여는 또한 맑스가 1848년에 쓴 《쁘루동이 띠애르의 연설을 반대하다》를 보라.—704페지

298 1853년 영국 하원에서 통과된 《차지권법안》에 의하면 차지농업가는 차지기간이 만기되였을 때 자기가 실행한 토지개량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되여있다. 이에 관하여는 맑스의 《인도문제—아일랜드차지법》(《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12권 171~177페지)을 보라.—706페지

299 《농업과 곡물법에 관한 세편의 현상론문》을 두고 말한다. 이 저서는 전국반곡물법동맹에 의해 편찬되였으며 1842년 만체스터와 런던에서 출판되였다. 이 저서에는 죠지 호우프, R. 그레그, A. 모스의 반곡물법동맹의 상을 받은 세편의 론문이 수록되여있다.—707페지

300 청서 《왕국의 곡물법과 관련된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 증언과 부록 첨부》를 두고 말한다. 이 청서는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1814년 7월 26일에 인쇄되였다. 《곡물과 곡물법에 관한 보고. 곡물의 생장, 무역 및 소비의 상태와 이에 관계되는 모든 법규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원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보고》는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1814년 11월 23일에 인쇄하였다.

청서(Blue Books)는 영국 의회와 정부 그리고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 또는 보고서의 총칭이다. 표지가 푸른색으로 되여있어서 이렇게 불리워왔고 영국에서 17세기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영국의 경제사와 외교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요한 공식

자료가 되고있다.—707페지

301 **빈민구제법**은 영국이 16세기중엽부터 반포하기 시작한 빈민구제와 관련한 일련의 법률의 총칭이다. 빈민구제법에 의하면 매 교구에서 빈민구제를 위한 특별세를 징수하는데 교구내에 있는 주민이 본인 및 가정의 생활을 유지할수 없을 경우에 빈민구제회를 통해 구제받을수 있었다. 빈민구제법이 농촌에서 실시된 상황에 관하여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776～777페지를 참조하라.—708페지

302 A. 애쉴리는 1844년부터 1846년초사이에 영국 하원에 로동일을 10시간으로 단축할데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1840년 애쉴리의 제의에 따라 왕국위원회가 설립되고 1833년의 공장법을 실시하지 않는 산업부문의 로동자들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1842년에 애쉴리는 광산에서 녀성로동자와 13세이하의 아동공의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1843년에 애쉴리는 또 꽃무늬천 날염공장에서 아동공의 고용을 제한할데 관한 법안을 제출하였다.—708페지

303 여기에서 말하는 통계에 관하여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778～781페지를 보라. 맑스는 이 통계가 《경제학자》지 1845년 제3권에 게재된 《농업로동자의 임금》에서 인용한것임을 지적한적이 있다.—708페지

304 영국 상원의 임금수준문제조사위원회를 두고 말한다. 이 위원회는 1814～1815년에 회의를 개최한적이 있다.—708페지

305 1849～1859년기간에 영국은 몇차례의 전쟁을 진행하였다. 크림전쟁(1853～1856년), 대(对)중국전쟁(1856～1858년과 1859-1860년), 대(对)페르샤전쟁(1856～1857년) 그리고 인도정복을 위한 몇차의 전쟁과 1857～1859년기간중 인도의 민족해방봉기탄압 등이 그러하다.—708페지

306 **기술협회**(Society of Arts and Trades)는 1754년 런던에서 창설된 자산계급적자선성격의 교육단체이다. 19세기 50년대에 협회의 지도자는 알버트친왕이였다. 이 협회는, 그들의 목적은 《기예, 수공업, 상업을 진흥시키며》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상업

을 확대시키며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사람들》을 표창하는것이라고 허울좋게 말하였다. 협회는 영국의 대중파업운동의 발전과 헌장파가 추진하는 로동자협회의 창설을 막기 위하여 로동자와 기업가사이의 중개자로서 역할하려고 시도하였다. 맑스는 이 협회를 《기술 및 사기술 협회》라고 불렀다.(《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13권 68페지를 보라).—709페지

307 영국의 전국사회과학촉진협회가 개최한 1차의 회의를 두고 말한다.

전국사회과학촉진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cience)는 1857년에 창립된 자산계급적 교육 및 자선 성격의 단체로서 그 성원에는 많은 의회 의원들이 들어있다.—709페지

308 여기에서 인용하고있는것은 죤 로커트 모튼의 저서이고 앞에서 언급된것은 죤 챠머즈 모튼의 저서이다.—710페지

309 프랑스학사원을 두고 말한다. 이 학사원은 프랑스의 최고과학기구로서 몇개 부문 즉 몇개의 학원들로 구성되였으며 1795년에 창설되였다.—710페지

310 레옹스 드 라베른뉴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농촌경제》 1855년 에딘버러—런던판 147페지와 156페지에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공하였다. 영국의 농업임금은 1800년에 매주 평균 7실링 3펜스였지만 일부 지방은 9실링 10펜스였다. 50년대초에는 공업구의 주임금이 제일 높을 때에는 평균 8～12실링이였다. 브리텐의 농업무산계급임금상황은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774～802페지를 보라.—712페지

311 P. E. 더브 《정치학원리》 1854년 에딘버러—런던판 264페지를 보라.—713페지

312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49～251, 267～268페지를 보라.—713페지

313 P. E. 더브 《정치학원리》 1854년 에딘버러—런던판 279페지를 보라.—719페지

314 《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431～433페지와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107～108페지를 보라.—719페지

315 《최근 말사스씨가 주장하는 수요의 성질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 이 연구로부터 얻어낸 결론은 조세와 비생산적소비자를 부양하는것은 재부의 증대를 가져올수 있다.》 1821년 런던판 1057～109페지를 보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V 777페지에 이 닉명의 저작에서 발취한 내용이 있다.—727페지

316 맑스가 여기에서 그리고 뒤부분에서 사용한 《생산비》라는 용어는 생산가격을 가리킨다.—734페지

317 《농업리윤이 공업리윤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의 친필원고)》 노트 XIII 692페지와 노트 XIV 799～800페지를 보라.—737페지

318 F. W. 뉴먼 《정치경제학강의》 1851년 런던판 158페지를 보라.—741페지

319 H. 슈또르흐가 최우등지가 규제적인것이라고 말할 때의 그의 생각은 이러하다.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가 이 토지와 경쟁하는 기타 모든 토지의 지대률을 결정한다. 따라서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만이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으며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와 경쟁하는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개발되지 못하거나 또는 적어도 지대를 제공하지 못한다.》 슈또르흐의 《정치경제학강의. 또는 국민의 번영을 결정하는 원리의 설명》 1815년 싼크트 뻬쩨르부르그판 제2권 78～79페지를 보라. 이 점에 관해서는 또한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년～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88페지, 노트 XII 591페지를 보라.—742페지

320 E. 웨스트 《토지의 자본투하에 관한 론술 및 곡물수입의 대폭제한의 실책을 제시하는 고찰을 포함》, 옥스퍼드대학 대학원 한 교우 저, 1815년 런던판; Th. R. 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 그 실제적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찰》, 저자의 원고와 수기에 의하여 대량 보충. 1836년 런던 제2판; Th. R. 말사스 《지대의 본성과 장성 및 지대를 규제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 1815년 런던판; D. 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제2장.—743페지

321 가능하게 1797년을 가리킬것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06페지를 참조하라.—744페지

322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08페지에 이렇게 쓰고있다. 《웨스트마저 〈농업이 개량된 상황하에서는 낡은 제도하에서 최우등지에서 사용되던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2등 토지 혹은 3등 토지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되였다.〉(에드워드 웨스트경 《곡물가격과 임금》 1826년 런던판 98페지)고 말하였다.》 —744페지

323 페티는 《정치산술》 1699년 런던판 230페지에서 《지주는 습지배수, 삼림채벌, 공유지울치기, 나귀풀재배, 토끼풀재배에 대하여 불평이 많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식품가격이 내려가기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다비넌트는 《공공수입과 영국무역을 론함》 1698년 런던판 제2부분 26～27페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대는 일부 지구와 일부 주내에서는 내려갈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의 토지는 여전히 부단히 개량될수 있다. 이를테면 공원과 삼림이 개발되고 공유지가 략탈되고 습지가 개발되여 많은 땅들이 경작과 시비로 인하여 개량된다면 과거에 이미 충분히 개량되여 지금은 더 이상 개량할수 없는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비록 어떤 사람의 지대수입이 이로 하여 감소되지만 이와 동시에 왕국의 총지대는 이러한 개량을 통하여 제고된다.》 28페지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1666년부터 1688년기간에 사인지대는 내려갔지만 왕국의 지대총액은 몇년전보다 더 크게 증가되였는데 이는 이 기간에 토지에 대한 개량이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크고 더 보편적으로 진행되였기때문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494페지를 참조하라.—744페지

324 G. 옵다이크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론술》 1851년 뉴욕판 88～98페지 및 180페지를 보라.—754페지

325 **인구는 생활수단을 압박한다**는 견해는 말사스가 제기한것이다. 말사스는 《지대의 본성과 장성 및 지대를 규제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 1815년 런던판 48~49페지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은 노력이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되는것을 보기를 원치 않을것이다. 그것은 일시적구제책으로서는 가장 찬양할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부단히 수행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일국의 인구가 극도의 식량핍박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을 때에 발생하는것과 류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것이다.》 —756페지

326 죤 L. 모튼 《토지의 자력. 농업의 개진과 토지의 종합경영》 1858년 런던판을 가리킨다. 세무원의 작업에 관한 론술은 모튼의 이 책 제13장 《토지의 평가》 즉 209~242페지를 보라. —760페지

327 엥겔스가 이 표와 표 VIII, 표 IX, 표 X에서 계산해낸 240%이라는 결과는 B, C, D 세개 종류 토지의 평균지대률을 계산한것이다. A, B, C, D 네개 종류 토지의 평균지대률은 180%이다. 본권 중문판 811페지의 표 I를 보라. —803페지

328 인도의 공산주의적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413~415페지를 참조하라. —820, 889, 993페지

329 맑스의 1865년 발취노트에는 J. 리비히의 《호헨하임의 애밀 월프박사와 농업화학》(1855년)에서 발취한 다음과 같은 발취기록이 있다. 《110파운드를 시비하였을 경우 1파운드의 조분은 감자 $25\frac{1}{2}$ 파운드 증산할수 있으며 220파운드를 시비하였을 경우 1파운드의 조분은 $12\frac{1}{2}$ 파운드밖에 증산하지 못하며 330파운드를 시비하였을 경우 1파운드의 조분은 $2\frac{1}{2}$ 파운드밖에 증산하지 못하며 440파운드를 시비하였을 경우 1파운드의 조분은 $1\frac{3}{4}$ 파운드밖에 증산하지 못한다.》 —842페지

330 맑스는 이 노트의 푸른색가위 안쪽에 《노트 XI(1876년). (5월중순부터 집필, 1페지는 제외) (1페지부터는 (1) 차액지대 I에 관한 필기)》라고 밝혀놓았다.

맑스는 노트 제9페지의 페지수를 《1》이라고 달아놓고

《1876년 2월중순부터 집필》이라고 밝혀놓았으며 그 아래부터는 차액지대에 관한 일반적인 론술을 적었다. 본문의 《차액지대와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단순한 리자로서의 지대》로부터 이 장의 마지막부분까지는 엥겔스가 이 노트에서 발취한 몇단락의 론술이다.—843페지

331 맑스가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에서 언급한 《오직 로동에 의한 가치규정을 공격하는 리카도의 반대자들》로는 S. 베일리, 샤를 가닐, 죤 램지 머칼러크, Th. R. 말사스, 제임스 밀, J. B. 쎄, R. 토런즈 등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II 358～359, 370페지, 노트 XI 523～524, 525, 527, 536～537페지, 노트 XIII 757페지, 노트 XIV 814～815, 827, 834, 836～837, 844～845페지를 보라.—845페지

332 E. G. 웨이크필드의 《영국과 아메리카》 1833년 런던판 제2권 125페지, 《토지가 식민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미경작지여야 할뿐만아니라 또한 사유지로 전환될수 있는 공유지여야 한다.》를 보라.—856페지

333 D.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판 제3판 제2장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60～561페지를 보라.—856페지

334 S. 푸리에의 《경제적 및 협동체적 신세계》 1829년 빠리판 402페지를 보라.—857페지

335 M. 동발의 《로빌의 농업년지. 또는 농업, 농업경제, 농업립법론집》 1828년 빠리판 제4분책 301～330페지를 보라. 아울러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49페지를 보라.—860페지

336 R. 죠운즈의 《부의 분배와 세금의 원천에 관한 론술》 1831년 런던판 227페지를 보라. 아울러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121～1130페지를 보라.—860페지

337 토지의 생산물의 가격변동에 대한 스미스의 분석은 그의 저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776년 런던판 제1권

181～198페지를 보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 632～635페지에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있다.—868페지

338 G. 램지의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836년 에딘버러판 278～279페지를 보라. 아울러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101페지를 보라.—868페지

339 E. G. 웨이크필드의 《영국과 아메리카. 량국의 사회, 정치 상태의 비교》 1833년 런던판 제1권 214～215페지, 《미국이든 오스트랄리아든 모든 새로운 거주지에는 거의 도로가 없으며 시장과 가까운 토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나 시장으로 통한 도로를 얻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렬하다. 따라서 시장과 가까운 곳의 토지가 완전한 불모지가 아니한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비옥한 토지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를 보라.—870페지

340 Hi. 파씨의 《지대》를 가리킨다. 《정치경제학사전》 1854년 빠리판 제2권을 보라. 파씨는 이 책의 515페지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지난세기말 개발할줄 몰라서 버림받고있던 토지가 매우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가 되였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불리던 토지가 지금은 개발이 쉽고 지대가 제일 비싼 토지가 되였다.》 —870페지

341 울치기법에 관하여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832～836페지를 참조하라.—870페지

342 노르웨이의 산림지대에 관한 리카도의 견해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판 제3판 53～55페지를 보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64～567페지에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있다.—873페지

343 **뽀또씨의 광산**은 볼리비아 남부의 자원이 풍부한 은광지구에 위치해있는데 1545년에 발견되여 17세기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은광중심이 되였다. 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은은 당시 세계 은생산량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874페지

344 S. 랭의 저서 《국민적빈곤, 그 원인과 구제책》 1844년 런던판을 가리킨다. 랭은 이 책의 150페지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로

동계급의 거주조건에서처럼 인권이 공공연히 또 철면피하게 소유권의 희생물이 된 곳은 없다. 대도시는 모두가 다 인간이 희생되는 장소이며 해마다 수천명이 탐욕스러운 몰로크를 위하여 도살당하는 제단이다.》

F. W. 뉴먼의 《정치경제학강의》 1851년 런던판 129~130페지에도 빈민, 집세 등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다.—875페지.

345 엥겔스의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중의 한 절인 《광산업무산계급》을 보라.—875페지

346 자산계급사회에서 계급의 조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H. Ch. 캐어리의 견해에 대한 은유이다. 주해 72를 보라.—875페지

347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776년 런던판 제1권 204~205페지를 보라.—875페지

348 《은행법특별위원회의 보고. 위원회 회의기록, 증언, 부록 및 색인》,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1857년 7월 30일에 인쇄, [1857년판] 509페지를 보라.—876페지

349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776년 런던판 제1권 207페지를 보라.—876페지

350 J. K. 로드베르투스 《폰 키르흐만에게 보내는 사회문제에 관한 편지. 제3편지. 리카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 및 신지대론의 론증》 1851년 베를린판을 가리킨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45~522페지에서 로드베르투스의 지대론에 대하여 상세히 비판하고 분석하였다.—880, 905페지

351 J. 리비히는 《농업과 생리학에의 화학의 응용》이라는 저서에서 《감자는 뿌리가 사처로 확산되기때문에 마치도 돼지가 땅을 뒤적거려놓은듯 토지가 푸석푸석해지게 하며 지어 비교적 척박한 토지에서도 곡식이 잘 자라게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맑스는 1865년에 이 책에서 발취한적이 있다.—881페지

352 G. W. F. 헤겔의 《철학적 제 과학의 백과전서적 제요》 제1부 《론리학》 1840년 베를린판(《헤겔전집》 제6권)을 보라. 헤겔은 이 책의 404페지에 이렇게 쓰고있다. 《여기에서도 다른데서와 마찬가지로 용어가 거꾸로 되였다. 즉 합리적인것이라고 보는것

은 리지적인것이고 불합리적인것이라고 보는것은 리성의 발단이고 혼적이다.》 —881페지

353 Hi. 파씨의 《지대》를 가리킨다. 《정치경제학사전》 1854년 빠리판 제2권을 보라. 지대에 관한 파씨의 견해는 이 책의 511페지를 보라.—882, 886, 888, 892페지

354 **쏘우호우광장**은 런던 쏘우호우구의 번화한 곳이다.—881페지

355 《에딘버러론평》에 발표된, 죠운즈가 갓 출판한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을 평론한 닉명의 글을 가리킨다. 《에딘버러론평》 1831년 런던판 8～12월 제54권 94～95페지를 보라.—882페지

356 페티는 그의 저서 《조세공납에 관한 론술》 1667년 런던판 23～24페지에서 지대는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라고 말하였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에서 페티의 견해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 친필원고 노트 VIII 318, 346～347, 364페지, 노트 XXII 1348～1351, 1397～1399페지를 보라.

깡띠용은 그의 저서 《상업일반의 성질에 관한 시론》에서 이와 류사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깡띠용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정론집》 1756년 암스테르담판 제3권 175～177페지를 보라.—886페지

357 이 문제에 있어서의 **중농학파**의 기여 및 그 체계의 모순에 대한 론술은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23, 681～682페지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 222～223페지를 보라.—886페지

358 **《맺힌데 없는 일손》**이라는 말은 J. 스튜어트가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원리연구》 1770년 베를린판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유리되여 공업생산에 종사하는 로동력을 가리킨다. 스튜어트는 이 책의 제1권 30～31, 48, 151, 153 및 396페지에서 맺힌데 없는 손을 수차 거론하였다.

맑스는 1851년에 그의 런던필기, 노트 VIII에서 스튜어트저서의 말을 상세하게 인용하였다. 맑스는 12페지에서 스튜어트의 《맺힌데 없는 일손》에 관해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스튜어트가 말하는 **맺힌데 없는 일손**은 반드시 식품생산에

종사해야 하는 그 부분의 인구를 말하는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로동은 농민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사회수요에 부합되는 로동을 통하여 생활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기때문이다. 이런 로동은 사회수요가 다름에 따라 변화될수 있으며 사회수요 역시 시대정신이 다름에 따라 변화될수 있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57～1858년 친필원고)》 노트 VII 26페지에서도 스튜어트의 저서 제1권 396페지의 관련 론술을 인용하였다.(《맑스엥겔스전집》 중문판 제2판 제31권 185페지를 보라)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57～1858년 친필원고)》에서 스튜어트의 경제학견해를 일반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히는 《맺힌데 없는 일손》이 력사적으로 나타나게 된 조건에 관한 스튜어트의 사상을 서술하였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 225페지에서 스튜어트의 견해를 고찰하면서 이 문제의 과학적인 해결에 이바지한 스튜어트의 기여를 특별히 강조하였다.—888페지

359 E. 대르의 《서론》을 보라. E. 대르의 서론과 주석은 《중농학파》 1846년 빠리판 제1부에 부록으로 게재되였다. 본권 909～910페지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 229페지를 참조하라.—888페지

360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776년 런던판 제1권 64페지를 보라.—889페지

361 이 사실은 맑스가 T.몸젠의 《로마사》 1856년 베를린판 제2판 제1권 806페지와 807페지의 주해에서 발취한것이다.—889페지

362 T. 몸젠은 그의 저서 《로마사》 1856년 베를린판 제2판 제1권의 807페지와 832페지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로마자본가들이 대규모의 해외령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때만이 소작을 주는것이 진정으로 가치를 발하게 된다…자본가들은 더는 리자를 벌기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리자가 이제는 눈에 차지 않게 되였다. 왜냐하면 소공장주들에게는 리윤이 별로 남지 않기때문이다. 아니, 자본가들은 리자가 눈에 차지 않다기보다는 경지를 매입하고 또 좋기는 경지를 임차인이 관리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생산을 노예에게 맡기려는것이다》—889페지

363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65～266, 655～656, 719～720페지를 보라.—890페지

364 1836～1860년에 영국에서 실시했던 10분의 1세의 제도를 금납세제도로 전환함에 관한 법령을 가리킨다. 이 법령에 의하여 실물납세로서의 교회의 10분의 1세의 제도는 폐지되고 정기적인 금납세가 이를 대체하였다.—890페지

365 K. 아른드 《독점정신과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자연적국민경제학, 관계문헌의 회고를 첨부》 1845년 하나우판 126～137, 461～462페지를 보라. 그리고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Ⅵ 225페지를 보라.—892페지

366 여기서부터 937페지 첫단락까지의 론술은 맑스가 리챠드 죠운즈의 《부의 분배와 세금의 원천에 관한 론술》(1831년 런던판)중의 자료에 의거하였다. 맑스는 1851년에 이 책의 내용을 상세하게 발취하였다(《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중판 제4부분 제8권 615～640페지를 보라.) 무려 300페지나 되는, 풍부한 내용이 담긴 이 저서에서 절반의 편폭으로 자본주의 이전의 각종 지대형식에 관한 력사를 기록하고있다. 그중에는 《로역지대 또는 농노지대》, 《배당제지대》, 《초사빈민지대》 및 《차지농장주지대》가 포함된다. 맑스는 상세한 분석을 통해 죠운즈의 력사서술에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지대를 구분하는 각종 력사형태면에 대한 그의 중대한 기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III 1121～1133페지를 보라.—892페지

367 N. 랭개의 《민법론 또는 사회의 기본원리》 1767년 런던판(2권집)을 보라. 이 책 제1권 309페지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최초의 정복자들은 다만 하는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징벌을 받지 아니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 통치를 실시하였던것이다. 그들은 단지 생존수단을 소유하기 위해 국왕이 되였던것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Ⅷ 438～440페지를 참조하라.—893페지

368 J. 뫼제르의 《오스나브뤼크력사》 1780년 베를린-슈테틴판 제4권 164～167페지를 보라.—893페지

369 1789～1794년 프랑스자산계급이 봉건독재통치를 뒤엎고 자본주의 제도를 수립한 혁명을 두고 말한다.—901페지

370 제임즈 앤더슨은 《현하 브리텐의 식량난에 대한 랭정한 고찰》 1801년 런던판 11페지에서 《1700년부터 1750년에 이르기까지 밀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1쿼터당 2파운드 18실링 1펜스에서 1파운드 12실링 6펜스가 되였다.》 이에 관한 자료와 통계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507～512페지를 보라.—906페지

371 E. 뷔래 《정치경제학강의》 1842년 브뤼쎌판, A. 또끄빌 《낡은 체제와 혁명》 1856년 빠리판, J. C. L. 씨몽드 드 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또는 인구와의 관계에서 본 부에 관하여》 1827년 빠리판 제2판 제1권을 보라.—908페지

372 Th. 투크와 W. 뉴마치 《1848년부터 1856년까지의 물가와 통화상태의 력사》(2권집), 즉 《1792년부터 지금까지의 가격사》 제5～6권을 보라. 투크가 인용한 프랑스국왕의 연설은 우의 책 1857년 런던판 제6권 29～30페지를 보라.—912페지

373 L. 무니에의 《공문서에 의한 프랑스의 농업에 대하여. M. 뤼비숑에 의한 평론을 첨부함》 1846 빠리판 제1～2권과 M. 뤼비숑의 《프랑스 및 영국에 있어서의 사회의 기구에 대하여》 1837년 빠리 신판 47페지 및 그 이하 몇페지, 64페지, 105페지를 보라.—913페지

374 H. 마론씨는 《조방인가 집약인가? 농업경영학의 한 장》 1859년 오뻴른판 5～6페지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우리와 같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후예들은 자신의 로동을 한 뙈기의 토지에 몰부울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간의 자본을 투하하여야 함을 똑똑히 알고있다(국민경제학에서 말하는 축적로동). 이 선대자본을 우리는 창업자본이라 하며 이 자본 또는 그 등가물(물품)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는 로동 또는 이 로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자본을 우리는 보통 경영자본이라고 한다.

이 소책자의 집필에 착수하기전에 나는 〈창업자본과 경영자

본) 이라는 이 개념에 대하여 농민들이 잘 분간하고있는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이 소책자의 집필을 위해 사람들이 접할수 있는 각종 경영학설을 대강 훑어보고나서 통일된 통용개념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에 관한 통일된 용어도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믿지 않을수 없었다(이러한 용어가 있었다면 몰라도).》—913페지

375 J. 매씨 《자연적리자률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이 문제에 관한 윌리엄 페티경과 로크씨의 견해의 고찰》 1750년 런던판을 보라.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 1300페지에서 이 책의 내용을 발취하였다.—916페지

376 **매점동맹**(Bandes Noires)은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생긴 투기업자들의 단체이다. 이 단체는 프랑스혁명기간에 국가재산으로 선포된 전지와 장원, 토지재산, 수도원을 대규모로 매점하여가지고 그것을 소토지에 대한 수요가 대토지보다 많아 소토지의 가격이 훨씬 높아질 때 대토지를 분할매각하여 고액의 리익을 남겼다.—917페지

377 M. 뤼비숑 《프랑스 및 영국에 있어서의 사회의 기구에 대하여》 1837년 빠리신판을 보라.—917페지

378 F. W. 뉴먼의 《정치경제학강의》 1851년 런던판 180～181페지를 보라.—917페지

379 L. 무니에 《공문서에 의한 프랑스의 농업에 대하여. M 뤼비숑에 의한 평론을 첨부함》 1846년 빠리판 제1권 267～273, 295～297페지를 보라.—917페지

380 **아일랜드의 제도**에 관하여는 본권 중문판 705～706페지를 보라. 아울러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803～819페지를 보라.—917페지

381 J. 리비히 《농업과 생리학에의 화학의 응용》 1862년 브라운슈와이그 제7판 292～302페지를 보라.—919페지

382 본편은 맑스의 친필원고 제7장 《제 수입과 그 원천》에서 발취하였다. 그중 일부분은 그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891～944페지중의 《제 수입과 그 원천》을 의거로 하였다.—921페지

383 엥겔스가 편집한 제48장의 절과 순서배렬은 맑스의 원고와 똑같지 않다. 맑스의 원고에서의 첫부분은 엥겔스가 각주(49)를 단 부분이며(본권 중문판 926페지를 보라.) 엥겔스가 이 장의 제Ⅰ, 제Ⅱ절로 편찬한 글은 엥겔스가 《원고에서는 여기에서 2절판 전지 한장이 탈락되고있다.》고 밝힌 곳(본권 중문판 931페지를 보라.)에 이어져야 한다. 제Ⅲ절의 첫단락(본권 중문판 925～926페지를 보라.)은 원래 맑스가 친필원고 제6편에 삽입했던 한 단락의 글이다(그 위치는 본권 중문판 881페지 첫단락의 마지막 쪽이다).—921페지

384 《**조잡하고 혼돈된 덩어리**》(Rudis indigestaque moles)는 오비디우스의 《변형》 제1장 제7행의 시구이다.—922페지

385 《**제3위**》는 쉴레르의 서사시 《보증》에서 나온 말이다. 폭군 디오니씨우수가 두 충실한 벗이 동맹에 가입할것을 요구할 때에 한 말이다.—923페지

386 사실상 원고는 중단되지 않았다. 원고지를 바꿔썼을뿐이다. 《… 차액지대는 토지의 상대적비옥도, 따라서 토지 그자체에서 발생하는 성질들과 결합되고있다.》(본권 중문판 931페지를 보라.)를 시작으로 계속 론술되고있다.—925페지

387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로임에로의 전화에 관하여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613～622페지를 보라.—926페지

388 W. 로쉐르의 《국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스투트가르트-아우그스부르그 수정증보판 제3판을 보라.—936페지

389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776년 런던판 제1권 63페지를 보라. 로임과 리윤, 지대를 가치의 원천으로 본 스미스의 견해에 대한 맑스의 상세한 분석은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Ⅵ 251～265페지를 보라. 아울러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제19장 제Ⅱ절 《A. 스미스》를 보라.—936페지

390 경제학자들의 이 잘못된 론술에 관하여는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597～598페지를 보라.—948페지

391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2권 438～442페지를 보라.—949페지

392 J. B. 쎄의 《정치경제학개론. 또는 재부는 어떻게 산생, 분배되고 소비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론술》 1819년 빠리 제4판 제2권을 보라. —953페지

39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 666페지를 보라. —953페지

394 상품의 가치는 종국적으로는 전부 수입으로 분해된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은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680～682페지를 참조하라. —953페지

395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776년 런던판 제1권 60～61페지를 보라. —954페지

396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 265～269페지를 보라. —954페지

397 Th. 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1844년 런던 제2판 제1권 36페지를 보라. —955페지

398 P. J. 쁘루동 《재산이란 무엇인가? 또는 법과 통치와의 원리에 관한 연구》 1841년 빠리판 201～202페지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제 아무리 다른 직업이라 할지라도 시종 같은 경제법칙이 적용된다. 즉 생산자들로 하여금 생활을 유지할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로임으로 자신의 제품을 되살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과학적이라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고집스레 소유권과 로임의 불평등, 고리대의 합법성 및 리윤의 공정성을 수호하려 하는가? 이 모든 사항은 그 경제법칙과 위배되며 나아가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 기업가가 10만프랑으로 원료를 사고 5만프랑으로 로임을 지급한후 제품에서 20만프랑의 대가를 얻으려 한다. 즉 원료와 고용자의 로동에서 리윤을 얻으려 한다. 그런데 원료의 공급자와 로동자의 로임을 합친 돈으로 자신들이 기업자를 위해 생산한 제품을 되살수 없다면 그들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수 있겠는가?》 —955페지

399 외젠 포르까드씨의 쁘루동에 대한 《시정》에 관하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 210～211페

지, 노트 Ⅶ 275페지를 참조하라.—955페지

400 외젠 포르까드의 《사회주의의 전쟁》 제2편 《혁명적 및 사회적 정치경제학》을 보라. 1848년 《신구대륙평론》(빠리) 신집 제24권에 실렸음.—956페지

401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Ⅵ 255～257페지를 참고하라.—957페지

402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245페지를 보라.—964페지

403 J. K. 로드베르투스 《폰 키르흐만에게 보내는 사회문제에 관한 편지. 제3편지. 리카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 및 신지대론의 론증》 1851년 베를린판 27페지 및 그 이하의 몇페지를 보라.—967페지

404 A. 께뜰래 《인간과 그의 능력의 발전에 대하여. 또는 사회물리학에 대한 론술》 1835년 빠리판 제1권～제2권을 참조하라.—975페지

405 Ch. 네트의 《토지재산의 력사와 현황에 관한 두편의 강연. 1859～1860년 옥스퍼드대학에서 발표한 시리즈강연의 첫 두편》 1860년 런던 옥스퍼드대학판 22페지를 참조하라.—992페지

406 분배관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Ⅱ 76～78페지, 노트 XIV 775, 790페지, 노트 XV 920페지를 참조하라. 아울러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1권 96～97페지를 보라.—1000페지

407 《경쟁과 협동의 공과에 관한 현상론문》 1834년 런던판을 말하고 있을것이다.—1000페지

408 엥겔스의 이 글은 맑스의 《자본론》 제3권이 간행된후에 집필한 것이다. 엥겔스는 1895년 5월 21일에 카우쯔끼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신시대》 잡지에 《자본론》 제3권에 대한 보유로 론문 두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제1론문 《가치법칙과 리윤률》은 자산계급경제학저작들이 소위 《자본론》 제1권과 제3권사이의 《모순》이라는것을 둘러싸고 일으킨 론의에 상대하여 쓴것이다. 이 론문은 엥겔스가 서거한후 얼마 안되여 독일사회민주당기관지 《신시대》에 발표되였다. 제2론문에서 엥겔스는 이

론문에서 고찰하려고 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7개의 론점을 포함하는 초안밖에 쓰지 못하였다. 이 원고의 표제는 《거래소. 〈자본론〉 제3권에 대한 보유》로 되여있다.—1003페지

409 고대 그리스의 수학가 아르키메데스의 명언 《나에게 어딘가에 (지구밖의) 발붙일 곳과 충분한 길이의 막대를 준다면 지구를 움직여보이겠다.》를 가리킨다.—1006페지

410 하이네시집 《〈로만쩨로〉 후기》를 보라.—1012페지

411 성경에 나오는 전설중의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전서 · 민수기》 22~24장을 보라.—1012페지

412 콘다르 슈미트의 자본주의적생산형태내부에서의 가치법칙은 하나의 허구라는 견해에 관하여는 그가 1895년 3월 1일에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 엥겔스는 1895년 3월 12일 슈미트에게 보내는 회답편지에서 이 그릇된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가하였다.—1013페지

本书根据人民出版社2004年1月第2版北京第1次印刷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인민출판사 2004년 1월 제2판 북경 제1차인쇄본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맑 스

자 본 론

제 3 권

★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번역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 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컴퓨터조판
북경시예휘인쇄유한회사 인쇄 각지 신화서점 판매
조문실 전화: 58130528 발행부 전화: 64211734
2010년 1월 제1판 2010년 1월 북경 제1차 인쇄
판본기록: 850×1168mm 1/32 전지: 43.875

값: 80.00원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资本论. 第三卷：朝鲜文 / 中央马列编译局编；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译. —北京：民族出版社，2010. 1
ISBN 978-7-105-10613-4

Ⅰ. 资… Ⅱ. ①中…②中… Ⅲ. 马克思著作-马克思主义政治经济学-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 ①A12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014900号

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译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微机照排
北京市艺辉印刷有限公司　　各地新华书店经销
朝文室电话：58130528　发行部电话：64211734
2010年1月第1版　2010年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50×1168毫米 1/32　　印张：43.875
ISBN 978-7-105-10613-4/A · 103
民文(朝17)　　定价：80.00元